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계연도	예산	결산	추경
2027	O		

공통요구자료	Ⅱ-1

202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Ⅱ-1)

2026. 9.

법 무 부

목 차

Ⅰ. 총 괄 표 ····· 1

Ⅱ. 일 반 회 계 ····· 5

1. 총 괄 ····· 7

가. 2027년도 세입예산 총괄표 ····· 7
나. 2027년도 세출예산 총괄표 ····· 9

2. 세 입 ····· 21

○ 토지대여료 ····· 23
○ 건물대여료 ····· 25
○ 기타관유물대여료 ····· 27
○ 기타재산이자수입 ····· 29
○ 기타재산이자외수입 ····· 31
○ 벌금 및 과료 ····· 33
○ 몰수금 및 추징금 ····· 39
○ 과태료 ····· 41
○ 징계부과금 ····· 44
○ 변상금 ····· 46
○ 위약금 ····· 49
○ 가산금 ····· 51
○ 기타경상이전수입 ····· 53
○ 면허료 및 수수료 ····· 55
○ 기타잡수입 ····· 58
○ 면허료 및 수수료(수입대체경비) ····· 60
○ 기타잡수입(수입대체경비) ····· 62

3. 세　　출 ····· 65

< 법무활동 >

○ 국가송무수행 및 공익법무관운영 ····· 69
○ 국가배상금 지급 ····· 80
○ 정부법무공단 운영지원 ····· 87
○ 정부부처 등 국제법무 법률지원 ····· 95
○ 국제거래 및 국제통상 법률지원 ····· 107
○ 개발도상국 법제정비지원(ODA) ····· 125
○ 국제투자분쟁중재수행 및 대응 ····· 136
○ 기업환경지수 개선 ····· 151
○ 국민편익증진 법제정비 ····· 162
○ 성장동력확충을 위한 기업법제 선진화 ····· 175
○ 공증제도운영 및 활성화 ····· 189
○ 변호사제도의 선진화 ····· 199
○ 변호사시험 및 법조윤리시험 관리 ····· 212
○ 통일대비법률통합실질화 ····· 221
○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운영 ····· 231

< 인권활동 >

○ 법률구조 ····· 243
○ 서민 법률보호를 위한 법률홈닥터 ····· 264
○ 대한법률구조공단 정보화 운영비(정보화) ····· 274
○ 인권교육 ····· 283
○ 아동인권 증진 ····· 291
○ 국제인권역량강화 ····· 302

< 이민정책활동 >

○ 국제협력 및 이민정책연구 ····· 317
○ 출입국외국인관서시설운영 ····· 328
○ 외국인등록증발급 수입대체경비 ····· 339
○ 출입국정보시스템 운영(정보화) ····· 346
○ 외국인보호관리 ····· 364
○ 외국인사회통합지원 ····· 376
○ 사회통합프로그램이수제운영 ····· 393

< 형사사법활동 >

○ 공소청시설운영 ····· 405
○ 검사국외훈련 및 국제형사협력지원 ····· 414
○ 법과학인프라구축 ····· 424
○ 국제형사협력지원(ODA) ····· 434
○ 인권보호 등 공소청업무지원 ····· 442
○ 첨단기술 융합형 차세대 Forensic 기술 연구 개발(R&D) ····· 455
○ 공소청업무정보화(정보화) ····· 467
○ 첨단범죄 및 디지털수사협력(정보화) ····· 487
○ 형사부 등 수사협력지원 ····· 502
○ 공판활동지원 ····· 511
○ 형집행 및 범죄수익환수 ····· 520
○ 형사보상 ····· 534
○ 형사법정비 ····· 541

< 교정활동 >

○ 교도소 행정지원 ····· 555
○ 교정시설장비운용 및 현대화 ····· 572
○ 대체복무 시설개선 및 운영 ····· 602
○ 교정시설 수용관리 및 공공요금 ····· 612
○ 교정교화 ····· 629

< 범죄예방활동 >

○ 범죄예방기관시설운영 ····· 647
○ 재범징후의 선제적 감지 및 대응력 강화(R&D) ····· 656
○ 소년원생수용 ····· 675
○ 청소년비행예방 ····· 690
○ 소년범죄예방 ····· 700
○ 갱생보호활동 ····· 716
○ 치료감호자수용관리 ····· 731
○ 보호관찰활동 ····· 742
○ 전자감독 ····· 753

○ 전자감독시스템운영(정보화) ····· 766
○ 법질서 준수 및 법교육 활동 ····· 771

< 특별감찰관활동 >

○ 특별감찰관인건비 ····· 787
○ 특별감찰관기본경비 ····· 794
○ 특별감찰활동 ····· 802

< 법무교육훈련 >

○ 연수원 시설관리 및 운영 ····· 811
○ 법무·공소청 공무원 등 교육운영 및 개선 ····· 820
○ 법무연수원 수입대체경비 ····· 832
○ 신임검사 양성 및 교육 지원 ····· 837

< 법무 및 형사사법행정지원 >

○ 본부 인건비(총액) ····· 849
○ 출입국외국인관서운영 인건비(총액) ····· 853
○ 공소청운영인건비(총액) ····· 858
○ 법무연수원 인건비(총액) ····· 864
○ 교도소운영 인건비(총액) ····· 869
○ 소년원운영 인건비(총액) ····· 874
○ 치료감호소운영 인건비(총액) ····· 879
○ 보호관찰소운영 인건비(총액) ····· 884
○ 기관운영 기본경비(총액) ····· 889
○ 법무실 기본경비(총액) ····· 895
○ 외국인본부 기본경비(총액) ····· 901
○ 형사사법국기본경비(총액) ····· 906
○ 교정본부 기본경비(총액) ····· 911
○ 범죄예방정책국 기본경비(총액) ····· 916
○ 인권국기본경비(총액) ····· 921
○ 국제법무국 기본경비(총액) ····· 927
○ 기관운영 기본경비 ····· 934

○ 법무실 기본경비 ····· 940
○ 외국인본부 기본경비 ····· 949
○ 형사사법국기본경비 ····· 955
○ 교정본부 기본경비 ····· 960
○ 범죄예방정책국 기본경비 ····· 966
○ 인권국기본경비 ····· 972
○ 국제법무국 기본경비 ····· 978
○ 출입국외국인관서운영 기본경비(총액) ····· 987
○ 공소청운영기본경비(총액) ····· 992
○ 법무연수원 기본경비(총액) ····· 997
○ 교도소 운영 기본경비(총액) ····· 1002
○ 소년원운영기본경비(총액) ····· 1007
○ 치료감호소운영기본경비(총액) ····· 1013
○ 보호관찰소운영 기본경비(총액) ····· 1018
○ 출입국외국인관서운영 기본경비 ····· 1024
○ 공소청운영기본경비 ····· 1030
○ 법무연수원 기본경비 ····· 1034
○ 교도소 운영 기본경비 ····· 1040
○ 소년원운영 기본경비 ····· 1047
○ 치료감호소운영기본경비 ····· 1053
○ 보호관찰소운영 기본경비 ····· 1059
○ 행정효율성 증진 및 능력개발 ····· 1065
○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민원·정책 피드백 ····· 1073
○ 행정서비스지원인력경비 ····· 1081
○ 양성평등정책 지원 ····· 1087
○ 법무행정정보화(정보화) ····· 1095
○ 법무정책 대국민 소통 강화 ····· 1112
○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정보화) ····· 1121
○ 차세대형사사법공통시스템구축(정보화) ····· 1134
○ 기타 법무시설 개보수 및 확충 ····· 1146
○ 법무부 기록관 운영 ····· 1155

Ⅲ. 교도작업특별회계 ····· 1163

1. 총 괄 ····· 1165

가. 2027년도 교도작업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괄표 ····· 1165

나. 2027년도 교도작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괄표 ····· 1166

2. 세 입 ····· 1167

○ 기타재산이자수입 ····· 1167

○ 설비부담금 ····· 1169

○ 기타경상이전수입 ····· 1171

○ 교도소수입 ····· 1173

○ 기타잡수입 ····· 1175

○ 전년도세계잉여금 ····· 1177

○ 예탁원금회수 ····· 1178

○ 예탁이자수입 ····· 1180

3. 세 출 ····· 1182

○ 교도작업 ····· 1182

○ 직업훈련 ····· 1190

○ 시설보완 ····· 1197

○ 교특회계관리기본경비 ····· 1203

○ 교도작업운영기본경비 ····· 1209

○ 공공자금관리기금예탁 ····· 1215

Ⅳ. 범죄피해자보호기금 ····· 1221

1. 총 괄 ····· 1223

가. 2027년도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수입 계획 총괄표 ····· 1223

나. 2027년도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지출 계획 총괄표 ····· 1224

다. 최근 3년 내 기획예산처의 기금운용평가결과 및 개선사항 ····· 1225

라. 기획예산처의 기금존치평가결과 및 개선사항(가장 최근) ····· 1225
마.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여유자금 운용현황 ····· 1225
바.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재정상태표(대차대조표) ····· 1226
사.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재정운용표(손익계산서) ····· 1227
아.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순자산변동표(자본변동표) ····· 1227

2. 수 입 ····· 1228

○ 기타 재산 이자 수입 ····· 1228
○ 변 상 금 ····· 1230
○ 기타 경상이전 수입 ····· 1232
○ 통화금융기관 예치금 회수 ····· 1234
○ 일반회계전입금 ····· 1236

3. 지 출 ····· 1238

○ 범죄피해자 치료 및 자립지원 ····· 1238
○ 형사조정을 통한 피해회복 지원 ····· 1261
○ 범죄피해구조금 ····· 1273
○ 범죄피해자통합지원시스템(정보화) ····· 1282
○ 실질적인 범죄피해자 등의 신변보호 강화 ····· 1289
○ 진술조력인 양성 및 배치 ····· 1298
○ 성폭력 피해자 지원 ····· 1308
○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 1321
○ 기금관리비 ····· 1333
○ 통화금융기관 예치 ····· 1339

Ⅰ. 총 괄 표

Ⅰ. 총괄표

1.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총괄표

1-1. 총계 기준

□ 일반회계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결산	2026예산		2027예산안		증감	
		본예산(A)	추경예산	요구	조정(B)	B-A	%
세입	1,481,820	1,548,832	1,548,832	1,549,729	1,549,729	897	0.1
세출	4,724,036	4,614,659	4,615,404	5,634,493	5,298,602	683,943	14.8

□ 교도작업특별회계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결산	2026예산		2027예산안		증감	
		본예산(A)	추경예산	요구	조정(B)	B-A	%
세입	134,667	130,284	130,284	131,048	131,031	747	0.6
세출	120,368	130,284	130,284	131,048	131,031	747	0.6

□ 범죄피해자보호기금

(단위: 백만원, %)

기금명	2025결산	2026계획		2027계획안		증감	
		당초(A)	수정	요구	조정(B)	B-A	%
수입	149,813	145,142	145,142	133,796	133,796	△11,346	△7.8
지출	149,813	145,142	145,142	138,808	133,796	△11,346	△7.8

1-2. 총수입·총지출 기준

□ 일반회계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결산	2026예산		2027예산안		증감	
		본예산(A)	추경예산	요구	조정(B)	B-A	%
세입	1,481,820	1,548,832	1,548,832	1,549,729	1,549,729	897	0.1
세출	4,635,274	4,523,513	4,524,258	5,541,389	5,213,142	689,629	15.2

□ 교도작업특별회계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결산	2026예산		2027예산안		증감	
		본예산(A)	추경예산	요구	조정(B)	B-A	%
세입	64,546	67,321	67,321	67,321	67,321	-	-
세출	70,401	78,375	78,375	82,674	82,657	4,282	5.5

□ 범죄피해자보호기금

(단위: 백만원, %)

기금명	2025결산	2026계획		2027계획안		증감	
		당초(A)	수정	요구	조정(B)	B-A	%
수입	6,946	5,950	5,950	5,950	5,950	-	-
지출	90,223	102,756	102,756	114,811	109,799	7,043	6.9

2. 202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상 신규사업(세부사업 기준) 내역

<일반회계 : 총 1개 신규 세부사업>

(단위: 백만원, %)

단위사업명	세부사업명	2027년		담당부서	담당자성명 (연락처)
		요구	조정		
소년보호	소년범죄예방	26,043	26,043	범죄예방기획과	정재희 (02-2110-3787)

Ⅱ. 일 반 회 계

1. 총 괄

2. 세 입

3. 세 출

Ⅱ. 일반회계

1. 총 괄

가. 2027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결산	2026예산		2027예산안		증 감	
		본예산(A)	추경예산	요구	조정(B)	(B-A)	%
총 계	**1,481,820**	**1,548,832**	**1,548,832**	**1,549,729**	**1,549,729**	**897**	**0.1**
총수입	**1,481,820**	**1,548,832**	**1,548,832**	**1,549,729**	**1,549,729**	**897**	**0.1**
관유물 대여료	**891**	**1,419**	**1,419**	**1,419**	**1,419**	-	-
토지대여료 (51-511)	390	699	699	699	699	-	-
건물대여료 (51-512)	489	703	703	703	703	-	-
기타관유물대여료 (51-513)	12	17	17	17	17	-	-
기타이자수입 및재산수입	**1,137**	**1,167**	**1,167**	**1,180**	**1,180**	**13**	**1.1**
기타재산이자수입 (54-546)	1,032	1,106	1,106	1,106	1,106	-	-
기타재산이자수입 (54-547)	105	61	61	74	74	13	21.3
벌금,몰수금 및과태료	**1,407,831**	**1,480,433**	**1,480,433**	**1,480,873**	**1,480,873**	**440**	**0.03**
벌금및과료 (56-561)	1,253,989	1,337,329	1,337,329	1,337,329	1,337,329	-	-
몰수금및추징금 (56-562)	141,748	130,898	130,898	131,338	131,338	440	0.3
과태료 (56-563)	12,059	12,167	12,167	12,167	12,167	-	-
징계부과금 (56-564)	35	39	39	39	39	-	-
변상금 및위약금	**782**	**1,548**	**1,548**	**1,548**	**1,548**	**-**	**-**
변상금 (57-571)	105	252	252	252	252	-	-
위약금 (57-572)	677	1,296	1,296	1,296	1,296	-	-

구분	2025결산	2026예산		2027예산안		증 감	
		본예산(A)	추경예산	요구	조정(B)	(B-A)	%
가산금	**0.5**	**4**	**4**	**4**	**4**	**-**	**-**
가산금 (58-581)	0.5	4	4	4	4	-	-
기타경상 이전수입	**13,627**	**9,094**	**9,094**	**9,094**	**9,094**	**-**	**-**
기타경상이전수입 (59-596)	13,627	9,094	9,094	9,094	9,094	-	-
면허료 및수수료	**33,708**	**27,919**	**27,919**	**28,339**	**28,339**	**420**	**1.5**
면허료및수수료 (65-651)	33,708	27,919	27,919	28,339	28,339	420	1.5
잡수입	**758**	**935**	**935**	**951**	**951**	**16**	**1.7**
기타잡수입 (69-691)	758	935	935	951	951	16	1.7
면허료 및수수료	**22,909**	**26,162**	**26,162**	**26,162**	**26,162**	**-**	**-**
면허료및수수료 (수입대체) (65-651)	22,909	26,162	26,162	26,162	26,162	-	-
잡수입	**177**	**151**	**151**	**159**	**159**	**8**	**5.3**
기타잡수입 (수입대체) (69-691)	177	151	151	159	159	8	5.3

나. 202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결산	2026예산		2027예산안		증 감	
		본예산(A)	추경예산	요구	조정(B)	(B-A)	%
총 계	**4,724,036**	**4,614,659**	**4,615,404**	**5,634,493**	**5,298,602**	**683,943**	**14.8**
총지출	**4,635,274**	**4,523,513**	**4,524,258**	**5,541,389**	**5,213,142**	**689,629**	**15.2**
법무활동	**467,412**	**173,922**	**173,992**	**869,115**	**868,115**	**694,193**	**399.1**
국가송무수행	**440,646**	**148,080**	**148,080**	**843,071**	**843,048**	**694,968**	**469.3**
국가송무수행 및 공익법무관운영 (1031-300)	2,689	2,543	2,543	2,341	2,318	△225	△8.8
국가배상금지급 (1031-301)	437,279	144,835	144,835	840,000	840,000	695,165	480.0
정부법무공단 운영지원 (1031-302)	678	702	702	730	730	28	4.0
국제법무운영 및 외국법제연구	**11,715**	**8,944**	**9,014**	**8,860**	**8,842**	**△102**	**△1.1**
정부부처등 국제법무법률지원 (1032-300)	503	510	510	693	693	183	35.9
국제거래 및 국제통상법률지원 (1032-301)	702	842	842	877	877	35	4.2
개발도상국법제 정비지원(ODA) (1032-302)	152	216	216	214	214	△2	△0.9
국제투자분쟁 중재수행및대응 (1032-303)	7,706	4,723	4,793	4,523	4,523	△200	△4.2
기업환경지수개선 (1032-307)	2,652	2,653	2,653	2,553	2,535	△118	△4.4
민상사법령의 선진화	**7,208**	**9,010**	**9,010**	**9,172**	**8,869**	**△141**	**△1.6**
국민편익증진 법제정비 (1033-300)	4,650	4,554	4,554	5,332	5,332	778	17.1
성장동력확충을위한 기업법제선진화 (1033-304)	2,559	4,456	4,456	3,840	3,537	△919	△20.6

구분	2025결산	2026예산		2027예산안		증 감	
		본예산(A)	추경예산	요구	조정(B)	(B-A)	%
법률서비스산업의 선진화및법조인선발	**6,774**	**6,823**	**6,823**	**6,950**	**6,507**	**△316**	**△4.6**
공증제도운영 및 활성화 (1038-300)	822	947	947	991	991	44	4.6
변호사제도의 선진화 (1038-303)	764	767	767	744	301	△466	△60.8
변호사시험 및 법조윤리시험관리 (1038-305)	5,188	5,109	5,109	5,215	5,215	106	2.1
통일대비법률 통합실질화	**817**	**774**	**774**	**774**	**595**	**△179**	**△23.1**
통일대비법률 통합실질화 (1041-300)	817	774	774	774	595	△179	△23.1
북한인권기록 보존소운영	**252**	**291**	**291**	**288**	**254**	**△37**	**△12.7**
북한인권기록 보존소운영 (1042-300)	252	291	291	288	254	△37	△12.7
인권활동	**73,083**	**73,023**	**73,023**	**91,507**	**84,909**	**11,886**	**16.3**
법률구조	**72,444**	**72,320**	**72,320**	**90,802**	**84,229**	**11,909**	**16.5**
법률구조 (1131-300)	62,312	61,240	61,240	75,963	71,153	9,913	16.2
서민법률보호를위한 법률홈닥터 (1131-301)	5,108	5,718	5,718	5,987	5,987	269	4.7
대한법률구조공단 정보화 운영비(정보화) (1131-304)	5,024	5,362	5,362	8,852	7,089	1,727	32.2
인권증진	**413**	**437**	**437**	**439**	**439**	**2**	**0.5**
인권교육 (1133-300)	173	192	192	131	131	△61	△31.8
아동인권증진 (1133-302)	240	245	245	308	308	63	25.7

구분	2025결산	2026예산		2027예산안		증 감	
		본예산(A)	추경예산	요구	조정(B)	(B-A)	%
국제인권증진	225	266	266	266	241	△25	△9.4
국제인권역량강화 (1139-300)	225	266	266	266	241	△25	△9.4
이민정책활동	**160,613**	**191,415**	**191,415**	**206,244**	**206,244**	**14,829**	**7.7**
국제이민협력	**3,628**	**4,012**	**4,012**	**4,434**	**4,434**	**422**	**10.5**
국제협력 및 이민정책연구 (1231-300)	3,628	4,012	4,012	4,434	4,434	422	10.5
출입국외국인 관서운영	**95,074**	**116,456**	**116,456**	**121,556**	**121,556**	**5,100**	**4.4**
출입국외국인 관서시설운영 (1232-300)	55,157	65,441	65,441	66,418	66,418	977	1.5
외국인등록증발급 수입대체경비 (1232-304)	9,534	10,000	10,000	10,349	10,349	349	3.5
출입국정보시스템 운영(정보화) (1232-305)	30,383	41,015	41,015	44,789	44,789	3,774	9.2
외국인체류관리	**61,911**	**70,947**	**70,947**	**80,254**	**80,254**	**9,307**	**13.1**
외국인보호관리 (1233-300)	21,278	24,011	24,011	25,117	25,117	1,106	4.6
외국인사회통합 지원 (1233-301)	16,380	21,579	21,579	24,554	24,554	2,975	13.8
외국인체류질서 확립 (1233-302)	10,652	11,402	11,402	13,430	13,430	2,028	17.8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제운영 (1233-304)	13,601	13,955	13,955	17,153	17,153	3,198	22.9
형사사법활동	**419,739**	**358,117**	**358,792**	**363,289**	**295,316**	**△62,801**	**△17.5**
공소청운영	**126,874**	**138,187**	**138,187**	**145,746**	**129,869**	**△8,318**	**△6.0**
공소청시설운영 (1333-300)	79,670	83,131	83,131	89,968	78,507	△4,624	△5.6

구분	2025결산	2026예산		2027예산안		증 감	
		본예산(A)	추경예산	요구	조정(B)	(B-A)	%
검사국외훈련 및 국제형사협력지원 (1333-301)	7,351	7,937	7,937	8,953	8,571	634	8.0
법과학 인프라구축 (1333-302)	11,549	11,410	11,410	10,036	9,449	△1,961	△17.2
국제형사 협력지원(ODA) (1333-303)	2,498	2,128	2,128	2,115	2,100	△28	△1.3
인권보호등 공소청업무지원 (1333-306)	23,445	31,381	31,381	32,474	29,262	△2,119	△6.8
첨단기술융합형 차세대Forensic 기술연구개발(R&D) (1333-307)	2,361	2,200	2,200	2,200	1,980	△220	△10.0
공소청업무정보화	**42,551**	**41,919**	**41,919**	**38,756**	**35,634**	**△6,285**	**△15.0**
공소청업무 정보화(정보화) (1334-500)	32,786	29,633	29,633	28,673	27,613	△2,020	△6.8
첨단범죄및디지털 수사협력(정보화) (1334-501)	9,765	12,286	12,286	10,083	8,021	△4,265	△34.7
수사협력 및 역량강화	**113,972**	**125,049**	**125,724**	**120,505**	**72,672**	**△52,377**	**△41.7**
형사부등 수사협력지원 (1335-301)	80,983	87,824	87,824	87,054	72,672	△15,152	△17.3
공공수사 (1335-302)	2,287	2,982	2,982	2,982	-	△2,982	순감
국민생활침해 범죄수사 (1335-303)	12,753	13,768	14,284	11,938	-	△13,768	순감
마약수사 (1335-304)	8,878	10,621	10,621	9,021	-	△10,621	순감

구분	2025결산	2026예산		2027예산안		증 감	
		본예산(A)	추경예산	요구	조정(B)	(B-A)	%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수사 (1335-305)	3,332	3,856	3,856	3,856	-	△3,856	순감
사회공정성 저해 사범수사 (1335-306)	5,738	5,998	6,157	5,654	-	△5,998	순감
공판활동 및 형집행	**136,124**	**52,612**	**52,612**	**57,828**	**56,688**	**4,076**	**7.7**
공판활동지원 (1337-300)	1,592	1,992	1,992	3,804	3,455	1,463	73.4
형집행 및 범죄수익환수 (1337-301)	7,078	6,620	6,620	8,024	7,233	613	9.3
형사보상 (1337-302)	127,454	44,000	44,000	46,000	46,000	2,000	4.5
형사사법선진화	**218**	**349**	**349**	**453**	**453**	**104**	**29.8**
형사법정비 (1338-300)	218	349	349	453	453	104	29.8
교정활동	**475,603**	**475,003**	**475,003**	**536,412**	**536,287**	**61,284**	**12.9**
교도소운영	**151,171**	**159,401**	**159,401**	**207,744**	**207,619**	**48,218**	**30.2**
교도소행정지원 (1531-300)	51,242	52,918	52,918	59,593	59,593	6,675	12.6
교정시설장비운용 및현대화 (1531-302)	83,719	91,557	91,557	133,225	133,225	41,668	45.5
대체복무시설 개선및운영 (1531-304)	16,210	14,926	14,926	14,926	14,801	△125	△0.8
재소자수용 및교화	**324,432**	**315,602**	**315,602**	**328,668**	**328,668**	**13,066**	**4.1**
교정시설수용관리 및공공요금 (1532-300)	313,203	302,342	302,342	314,834	314,834	12,492	4.1
교정교화 (1532-301)	11,228	13,260	13,260	13,834	13,834	574	4.3

구분	2025결산	2026예산		2027예산안		증 감	
		본예산(A)	추경예산	요구	조정(B)	(B-A)	%
범죄예방활동	**169,176**	**181,263**	**181,263**	**204,413**	**192,502**	**11,239**	**6.2**
범죄예방기관운영	**18,891**	**22,554**	**22,554**	**19,254**	**16,030**	**△6,524**	**△28.9**
범죄예방기관 시설운영 (1631-304)	16,891	19,554	19,554	16,254	13,430	△6,124	△31.3
재범징후선제적감지 및대응력강화기술 연구개발사업(R&D) (1631-305)	2,000	3,000	3,000	3,000	2,600	△400	△13.3
소년보호	**32,141**	**34,839**	**34,839**	**65,529**	**57,684**	**22,845**	**65.6**
소년원생수용 (1632-300)	26,733	29,183	29,183	31,641	31,641	2,458	8.4
청소년비행예방 (1632-301)	5,408	5,656	5,656	7,845	-	△5,656	순감
소년범죄예방 (1632-302)	-	-	-	26,043	26,043	26,043	순증
갱생보호	**46,856**	**48,468**	**48,468**	**48,065**	**48,065**	**△403**	**△0.8**
갱생보호활동 (1633-300)	46,856	48,468	48,468	48,065	48,065	△403	△0.8
치료감호	**12,357**	**14,776**	**14,776**	**12,676**	**11,834**	**△2,942**	**△19.9**
치료감호자 수용관리 (1634-300)	12,357	14,776	14,776	12,676	11,834	△2,942	△19.9
보호관찰	**52,783**	**54,948**	**54,948**	**53,219**	**53,219**	**△1,729**	**△3.1**
보호관찰활동 (1635-300)	16,905	17,682	17,682	16,024	16,024	△1,658	△9.4
전자감독 (1635-301)	35,878	37,266	37,266	33,308	33,308	△3,958	△10.6
전자감독시스템 운영(정보화) (1635-303)	-	-	-	3,887	3,887	3,887	순증

구분	2025결산	2026예산		2027예산안		증 감	
		본예산(A)	추경예산	요구	조정(B)	(B-A)	%
법질서준수 및 법교육	**6,149**	**5,678**	**5,678**	**5,670**	**5,670**	**△8**	**△0.1**
법질서준수 및 법교육활동 (1636-304)	6,149	5,678	5,678	5,670	5,670	△8	△0.1
특별감찰관활동	**761**	**915**	**915**	**2,408**	**2,408**	**1,493**	**163.2**
특별감찰관 인건비	**-**	**259**	**259**	**738**	**738**	**479**	**184.9**
특별감찰관 인건비 (1802-150)	-	259	259	738	738	479	184.9
특별감찰관 기본경비	**55**	**252**	**252**	**376**	**376**	**124**	**49.2**
특별감찰관 기본경비 (1818-250)	55	252	252	376	376	124	49.2
특별감찰활동	**706**	**404**	**404**	**1,294**	**1,294**	**890**	**220.3**
특별감찰활동 (1831-300)	706	404	404	1,294	1,294	890	220.3
법무교육훈련	**7,753**	**8,335**	**8,335**	**8,459**	**8,459**	**124**	**1.5**
연수원운영	**7,753**	**8,335**	**8,335**	**8,459**	**8,459**	**124**	**1.5**
연수원시설관리 및운영 (5131-300)	5,187	5,611	5,611	5,268	5,268	△343	△6.1
법무,공소청공무원등 교육운영및개선 (5131-301)	1,432	1,579	1,579	2,046	2,046	467	29.6
법무연수원 수입대체경비 (5131-311)	135	137	137	137	137	-	-
신임검사양성 및교육지원 (5131-312)	999	1,008	1,008	1,008	1,008	-	-

구분	2025결산	2026예산		2027예산안		증 감	
		본예산(A)	추경예산	요구	조정(B)	(B-A)	%
법무및형사사법행정지원	**2,861,134**	**3,061,521**	**3,061,521**	**3,259,543**	**3,018,902**	**△42,619**	**△1.4**
본부인건비	**193,707**	**203,006**	**203,006**	**217,216**	**208,632**	**5,626**	**2.8**
본부인건비(총액)(7001-100)	193,707	203,006	203,006	217,216	208,632	5,626	2.8
소속기관인건비	**2,407,439**	**2,562,093**	**2,562,093**	**2,769,299**	**2,551,149**	**△10,944**	**△0.4**
출입국외국인관서운영인건비(총액)(7002-100)	176,279	185,120	185,120	217,842	217,842	32,722	17.7
공소청운영인건비(총액)(7002-101)	820,474	883,665	883,665	945,522	751,659	△132,006	△14.9
법무연수원인건비(총액)(7002-102)	12,829	16,007	16,007	17,127	16,374	367	2.3
교도소운영인건비(총액)(7002-103)	1,163,188	1,232,837	1,232,837	1,319,136	1,299,631	66,794	5.4
소년원운영인건비(총액)(7002-105)	67,127	67,915	67,915	72,669	71,620	3,705	5.5
치료감호소운영인건비(총액)(7002-106)	32,377	34,724	34,724	37,155	34,175	△549	△1.6
보호관찰소운영인건비(총액)(7002-107)	135,166	141,825	141,825	159,848	159,848	18,023	12.7
본부기본경비(일반)	**18,918**	**21,058**	**21,058**	**21,919**	**21,606**	**548**	**2.6**
기관운영기본경비(총액)(7011-200)	3,345	3,543	3,543	4,093	4,093	550	15.5
법무실기본경비(총액)(7011-201)	558	807	807	831	807	-	-
외국인본부기본경비(총액)(7011-203)	630	775	775	820	820	45	5.8

구분	2025결산	2026예산		2027예산안		증 감	
		본예산(A)	추경예산	요구	조정(B)	(B-A)	%
형사사법국 기본경비(총액) (7011-204)	409	461	461	475	470	9	2.0
교정본부 기본경비(총액) (7011-205)	638	744	744	766	731	△13	△1.7
범죄예방정책국 기본경비(총액) (7011-207)	209	261	261	269	261	-	-
인권국 기본경비(총액) (7011-208)	180	292	292	292	292	-	-
국제법무국 기본경비(총액) (7011-210)	110	136	136	142	142	6	4.4
기관운영 기본경비 (7011-250)	3,409	4,160	4,160	4,047	4,037	△123	△3.0
법무실 기본경비 (7011-253)	663	723	723	745	723	-	-
외국인본부 기본경비 (7011-255)	1,595	1,668	1,668	1,776	1,776	108	6.5
형사사법국 기본경비 (7011-256)	735	852	852	878	852	-	-
교정본부 기본경비 (7011-257)	4,052	4,397	4,397	4,529	4,359	△38	△0.9
범죄예방정책국 기본경비 (7011-261)	740	778	778	801	788	10	1.3
인권국 기본경비 (7011-263)	991	1,099	1,099	1,099	1,099	-	-
국제법무국 기본경비 (7011-266)	654	362	362	356	356	△6	△1.7

구분	2025결산	2026예산		2027예산안		증 감	
		본예산(A)	추경예산	요구	조정(B)	(B-A)	%
소속기관 기본경비(일반)	**144,219**	**148,291**	**148,291**	**153,569**	**141,441**	**△6,850**	**△4.6**
출입국외국인관서 운영기본경비(총액) (7018-200)	3,427	3,890	3,890	4,007	3,967	77	2.0
공소청운영 기본경비(총액) (7018-202)	30,298	31,524	31,524	32,470	28,171	△3,353	△10.6
법무연수원 기본경비(총액) (7018-204)	554	636	636	708	708	72	11.3
교도소운영 기본경비(총액) (7018-206)	17,446	20,190	20,190	20,796	20,048	△142	△0.7
소년원운영 기본경비(총액) (7018-207)	2,612	2,995	2,995	3,287	3,287	292	9.7
치료감호소운영 기본경비(총액) (7018-208)	643	670	670	690	664	△6	△0.9
보호관찰소운영 기본경비(총액) (7018-209)	5,488	5,915	5,915	6,458	6,458	543	9.2
출입국외국인관서 운영기본경비 (7018-250)	11,040	11,013	11,013	11,357	11,357	344	3.1
공소청운영 기본경비 (7018-252)	16,293	16,297	16,297	16,786	10,227	△6,070	△37.2
법무연수원 기본경비 (7018-254)	4,844	5,309	5,309	4,836	4,836	△473	△8.9
교도소운영 기본경비 (7018-256)	38,291	36,435	36,435	38,275	38,275	1,840	5.1
소년원운영 기본경비 (7018-258)	4,507	4,581	4,581	4,718	4,581	0	△
치료감호소운영 기본경비 (7018-259)	1,278	1,388	1,388	1,430	1,111	△277	△20.0
보호관찰소운영 기본경비 (7018-260)	7,498	7,448	7,448	7,751	7,751	303	4.1

구분	2025결산	2026예산		2027예산안		증 감	
		본예산(A)	추경예산	요구	조정(B)	(B-A)	%
법무행정개선	**18,923**	**21,414**	**21,414**	**18,254**	**18,254**	**△3,160**	**△14.8**
행정효율성증진 및능력개발 (7032-300)	542	608	608	608	608	-	-
국민불편해소를위한 민원정책피드백 (7032-301)	104	120	120	120	120	-	-
행정서비스 지원인력경비 (7032-303)	18,030	20,436	20,436	17,276	17,276	△3,160	△15.5
정보기획지원 (7032-304)	37	37	37	37	37	-	-
양성평등정책 지원 (7032-305)	212	213	213	213	213	-	-
법무행정정보화	**41,337**	**44,554**	**44,554**	**36,712**	**35,983**	**△8,571**	**△19.2**
법무행정정보화 (정보화) (7034-500)	41,337	44,554	44,554	36,712	35,983	△8,571	△19.2
법무정책대국민 소통강화	**775**	**848**	**848**	**969**	**969**	**121**	**14.3**
법무정책대국민 소통강화 (7037-300)	775	848	848	969	969	121	14.3
형사사법 공통시스템운영	**23,353**	**50,359**	**50,359**	**29,726**	**29,726**	**△20,633**	**△41.0**
형사사법공통 시스템운영(정보화) (7038-300)	2,691	2,442	2,442	2,046	2,046	△396	△16.2
차세대형사사법 정보시스템구축 (정보화) (7038-301)	20,662	47,917	47,917	27,680	27,680	△20,237	△42.2

구분	2025결산	2026예산		2027예산안		증 감	
		본예산(A)	추경예산	요구	조정(B)	(B-A)	%
기타법무시설조성	**12,462**	**9,898**	**9,898**	**11,879**	**11,142**	**1,244**	**12.6**
기타법무시설 개보수및확충 (7039-300)	7,114	5,101	5,101	5,923	5,923	822	16.1
법무부기록관운영 (7039-302)	5,348	4,797	4,797	5,956	5,219	422	8.8
회계기금간전출	**88,762**	**91,146**	**91,146**	**93,104**	**85,460**	**△5,686**	**△6.2**
범죄피해자 보호기금전출 (8810-880)	88,762	91,146	91,146	93,104	85,460	△5,686	△6.2

2. 세 입

2. 세 입

토지대여료
51-511

(단위: 백만원, %)

목명	2025년 결산액	2026년		2027년		증감	
		본예산(A)	추경	요구안	조정안(B)	(B-A)	(B-A)/A
토지대여료	390	699	699	699	699	-	-

가. 법적 근거

○ 국유재산법 제32조(사용료) ①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

나. 세입 개요

○ 토지대여에 따른 수입

다. 2027년 세입예산안 내역

○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단위: 천원)

연 도		금 액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2026	본예산	699,000	'22~'24 편성 수준 고려
	추경	699,000	'22~'24 편성 수준 고려
2027예산안		699,000	전년 수준 반영

라.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수납률 (C/A)	수납률 (C/B)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본예산	추경(A)							
2023	699	699	699	662	477	68.2	72.1	137	-
2024	699	699	699	464	365	52.2	78.7	98	-
2025	485	485	485	477	390	80.4	81.7	87	-
2026	699	699	699	301	197	28.2	65.5	104	-
2027(안)	699	699	-	-	-	-	-	-	-

마. 최근 3개년 간 동 세입에 대한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 해당없음

바. 담당자 정보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실	강의곤	유재륜 서기관	박길
		02-2110-3099	02-2110-3098	02-2110-3096

건물대여료
51-512

(단위: 백만원, %)

목명	2025년 결산액	2026년		2027년		증감	
		본예산(A)	추경	요구안	조정안(B)	(B-A)	(B-A)/A
건물대여료	489	703	703	703	703	-	-

가. 법적 근거

○ 국유재산법 제32조(사용료) ①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

나. 세입 개요

○ 건물대여에 따른 수입

다. 2027년 세입예산안 내역

○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단위: 천원)

연 도		금 액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2026	본예산	703,000	'22~'24 편성 수준 고려
	추경	703,000	'22~'24 편성 수준 고려
2027예산안		703,000	전년 수준 반영

라.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수납률 (C/A)	수납률 (C/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본예산	추경(A)							
2023	703	703	703	594	524	74.5	88.2	62	8
2024	703	703	703	736	694	98.7	94.3	43	-
2025	613	613	613	528	489	79.7	92.6	39	-
2026	703	703	703	308	265	37.7	86.2	43	-
2027(안)	703	703	-	-	-	-	-	-	-

마. 최근 3개년 간 동 세입에 대한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 해당없음

바. 담당자 정보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실	강의곤	유재륜 서기관	박길
		02-2110-3099	02-2110-3098	02-2110-3096

기타관유물대여료
51-513

(단위: 백만원, %)

목명	2025년 결산액	2026년		2027년		증감	
		본예산(A)	추경	요구안	조정안(B)	(B-A)	(B-A)/A
기타관유물 대여료	12	17	17	17	17	-	-

가. 법적 근거

○ 국유재산법 제32조(사용료) ①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

나. 세입 개요

○ 토지와 건물 이외의 관유물 대여 수입

다. 2027년 세입예산안 내역

○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단위: 천원)

연 도		금 액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2026	본예산	17,000	최근 '22~'24 편성 수준 고려
	추경	17,000	최근 '22~'24 편성 수준 고려
2027예산안		17,000	전년 수준 반영

라.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수납률 (C/A)	수납률 (C/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본예산	추경(A)							
2023	17	17	17	14	14	82.4	100.0	-	-
2024	17	17	17	13	13	75.1	100.0	-	-
2025	13	13	13	13	12	93.7	94.6	1	-
2026	17	17	17	-	-	-	-	-	-
2027(안)	17	17	-	-	-	-	-	-	-

마. 최근 3개년 간 동 세입에 대한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 해당없음

바. 담당자 정보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실	강의곤	유재륜 서기관	박길
		02-2110-3099	02-2110-3098	02-2110-3096

기타재산이자수입
54-546

(단위: 백만원, %)

목명	2025년 결산액	2026년		2027년		증감	
		본예산(A)	추경	요구안	조정안(B)	(B-A)	(B-A)/A
기타재산이자수입	1,032	1,106	1,106	1,106	1,106	-	-

가. 법적 근거

○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96조(국고예금의 이자계산 및 납부) ① 한국은행은 이자계산 기준일에 금융회사등으로부터 국고예금계좌별로 계산하여 통보된 이자 상당액을 한국은행에 개설되어 있는 당해 금융회사등의 당좌예금 계좌에서 인출하여 해당 출납공무원이 소속된 회계·기금 또는 계정의 수입징수관 수입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나. 세입 개요

○ 기타 정부의 재산, 금융자산, 무형자산의 소유로 인한 수입

다. 2027년 세입예산안 내역

○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단위: 천원)

연 도		금 액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2026	본예산	1,106,000	'24 결산 수준 고려
	추경	1,106,000	'24 결산 수준 고려
2027예산안		1,106,000	전년 수준 반영

라.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수납률 (C/A)	수납률 (C/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본예산	추경(A)							
2023	331	331	331	561	554	167.4	98.8	7	-
2024	331	331	331	1,113	1,106	334.1	99.4	7	-
2025	264	264	264	1,039	1,032	391.1	99.3	7	-
2026	1,106	1,106	1,106	422	415	37.6	98.4	7	
2027(안)	1,106	1,106	-	-	-	-	-	-	-

마. 최근 3개년 간 동 세입에 대한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 해당없음

바. 담당자 정보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실	강의곤	유재륜 서기관	박길
		02-2110-3099	02-2110-3098	02-2110-3096

기타재산이자외수입
54-547

(단위: 백만원, %)

목명	2025년 결산액	2026년		2027년		증감	
		본예산(A)	추경	요구안	조정안(B)	(B-A)	(B-A)/A
기타재산이자외수입	105	61	61	74	74	13	21.3

가. 법적 근거

○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수입금의 한국은행등에의 납부) 수입금출납공무원은 영수한 현금 등을 별지 제6호서식의 납부서에 따라 지체 없이 한국은행등, 국고대리점 및 체신관서에 납부하고 영수증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한국은행등, 국고대리점 및 체신관서의 영업이 마감한 후에 영수한 현금 등은 다음날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

나. 세입 개요

○ 제주 공소청연수원의 사용료 수입에 따른 수입

○ 법무연수원의 사용료 수입에 따른 수입

다. 2027년 세입예산안 내역

○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단위: 천원)

연 도		금 액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2026	본예산	61,000	최근 3년('22～'24) 수납 평균 고려
	추경	61,000	최근 3년('22～'24) 수납 평균 고려
2027예산안		74,000	최근 3년('23～'25) 수납 평균 고려

라.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수납률 (C/A)	수납률 (C/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본예산	추경(A)							
2023	-	-	-	53	53	-	100.0	-	-
2024	-	-	-	64	64	-	100.0	-	-
2025	51	51	51	105	105	206.0	100.0	-	-
2026	61	61	61	79	79	130.1	100.0	-	-
2027(안)	74	74	-	-	-	-	-	-	-

마. 최근 3개년 간 동 세입에 대한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 해당없음

바. 담당자 정보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검찰국	검찰과	나하나	검사 구자원	수사관 박성인
		02-2110-4190	02-2110-4194	02-2110-4209
법무연수원	총무과	서혜주	이자희	조예덕
		043-531-1540	043-531-1541	043-531-1554

벌금 및 과료
56-561

(단위: 백만원, %)

목명	2025년 결산액	2026년		2027년		증감	
		본예산(A)	추경	요구안	조정안(B)	(B-A)	(B-A)/A
벌금 및 과료	1,253,989	1,337,329	1,337,329	1,337,329	1,337,329	-	-

가. 법적 근거

1) 공소청 벌금

○ 형법 제41조(형의 종류) 형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사형 2. 징역 3. 금고 4. 자격상실 5. 자격정지 6. 벌금 7. 구류 8. 과료 9. 몰수

○ 형사소송법 제477조(재산형 등의 집행) ① 벌금, 과료, 몰수, 추징, 과태료, 소송비용, 비용배상 또는 가납의 재판은 검사의 명령에 의하여 집행한다.

② 전항의 명령은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③ 제1항의 재판의 집행에는 「민사집행법」의 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단, 집행전에 재판의 송달을 요하지 아니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재판은 「국세징수법」에 따른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⑤ 검사는 제1항의 재판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99조제2항을 준용한다.

○ 공소청법 제58조(위임규정) 공소청,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사무에 관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2) 출입국 벌금

○ 출입국관리법 제93조의2(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입국심사를 받아야 하는 외국인을 집단으로 불법입국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한 사람
2. 제12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외국인을 집단으로 불법입국 또는 불법출국하게

하거나 대한민국을 거쳐 다른 국가로 불법입국하게 할 목적으로 선박등이나 여권 · 사증, 탑승권, 그 밖에 출입국에 사용될 수 있는 서류 및 물품을 제공하거나 알선한 사람

3. 제12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불법으로 입국한 외국인을 집단으로 대한민국에서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하거나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할 목적으로 교통수단을 제공하거나 이를 알선한 사람

○ 출입국관리법 제93조의3(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입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입국한 사람
2. 제91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사람
3. 제93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영리를 목적으로 한 사람은 제외한다)

○ 출입국관리법 제9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출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
2. 제7조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입국한 사람
3. 제7조의2를 위반한 사람
4. 제12조의3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제93조의2제2항 또는 제93조의3제1호 ·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5. 제14조제1항에 따른 승무원 상륙허가 또는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관광상륙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상륙한 사람
6. 제14조제3항에 따른 승무원 상륙허가 또는 제14조의2제3항에 따른 관광상륙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사람
7.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한 사람
8.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하고 취업활동을 한 사람
9.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한 사람
10. 제18조제4항을 위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 · 권유한 사람
11. 제18조제5항을 위반하여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자기 지배하에

두는 행위를 한 사람

11의2. 제19조의5제9항을 위반하여 계절근로자의 선발, 알선 및 채용에 개입하는 행위를 한 사람

12. 제20조를 위반하여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한 사람

13.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근무처의 변경허가 또는 추가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한 사람

14. 제22조에 따른 제한 등을 위반한 사람

15. 제23조를 위반하여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하고 체류한 사람

16. 제24조를 위반하여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한 사람

17. 제25조를 위반하여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한 사람

17의2. 제26조를 위반한 사람

18. 제28조제1항이나 제2항을 위반하여 출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

19. 제33조의3을 위반한 사람

20. 제69조(제70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사람

○ 출입국관리법 제95조(벌칙) 제9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입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입국한 사람

2. 제13조제2항에 따른 조건부 입국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사람

3. 제15조제1항에 따른 긴급상륙허가, 제16조제1항에 따른 재난상륙허가 또는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난민 임시상륙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상륙한 사람

4. 제15조제2항, 제16조제2항 또는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허가조건을 위반한 사람

5.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정된 근무처가 아닌 곳에서 근무한 사람

6. 제21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추가한 사람 또는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근무처의 변경허가 또는 추가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한 사람

7. 제31조의 등록의무를 위반한 사람

8. 제51조제1항 · 제3항, 제56조, 제63조제1항 · 제2항 또는 제63조의3제1항에 따라 보호 또는 일시보호된 사람으로서 도주하거나 보호 또는 강제퇴거 등을 위한 호송 중에 도주한 사람(제93조의2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9. 제63조의2제4항 및 제63조의3제2항에 따른 주거의 제한, 정기 보고, 신원보증인의 지정, 보증금의 납부 등 그 밖의 조건을 위반한 사람
10. 삭제

○ 출입국관리법 제96조(벌칙) 제9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1조제4항(제70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출항의 일시정지 또는 회항 명령이나 선박등의 출입 제한을 위반한 사람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73조(제70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하였거나 제73조의2제1항(제70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3항(제70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열람 또는 문서제출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75조제1항(제70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2항(제70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사람

○ 출입국관리법 제9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8조제4항을 위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알선ㆍ권유한 사람(업으로 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2.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근무처의 변경허가 또는 추가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알선한 사람(업으로 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3. 제72조(제70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선박등이나 출입국심사장에 출입한 사람
4. 제74조(제70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제출 또는 통보 의무를 위반한 사람
5. 제75조제4항(제70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5항(제70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고 또는 방지 의무를 위반한 사람
6. 제76조제1항(제70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송환의무를 위반한 사람
7. 제76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난민인정증명서 또는 난민여행증명서를 반납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난민여행증명서 반납명령을 위반한 사람

○ 출입국관리법 제9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7조에 따른 여권등의 휴대 또는 제시 의무를 위반한 사람

2. 제36조제1항에 따른 체류지 변경신고 의무를 위반한 사람

○ 출입국관리법 제102조(통고처분) ① 사무소장· 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은 출입국사범에 대한 조사 결과 범죄의 확증을 얻었을 때에는 그 이유를 명확하게 적어 서면으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범칙금”이라 한다)을 지정한 곳에 낼 것을 통고할 수 있다.

나. 세입 개요

○ 법령에 의하여 국가가 수납할 벌금, 과료, 즉결재판에 의한 벌금, 과료

다. 2027년 세입예산안 내역

○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단위: 천원)

연 도		금 액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2026	본예산	1,337,329,000	전년 수준 반영
	추경	1,337,329,000	전년 수준 반영
2027예산안		1,337,329,000	전년 수준 반영

라.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수납률 (C/A)	수납률 (C/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본예산	추경(A)							
2023	1,128,869	1,128,869	1,128,869	1,337,409	1,337,329	118.5	99.9	80	-
2024	1,128,869	1,128,869	1,128,869	1,303,242	1,302,066	115.3	99.9	1,175	-
2025	1,337,329	1,337,329	1,337,329	1,254,163	1,253,989	93.8	100.0	174	-
2026	1,337,329	1,337,329	1,337,329	729,616	725,956	54.3	99.5	3,661	-
2027(안)	1,337,329	1,337,329	-	-	-	-	-	-	-

마. 최근 3개년 간 동 세입에 대한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 해당없음

바. 담당자 정보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검찰국 (공소청 벌금)	검찰과	나하나	검사 구자원	수사관 박성인
		02-2110-4190	02-2110-4194	02-2110-4209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 벌금)	출입국기획과	유성오	김원희	구본민
		02-2110-4010	02-2110-4026	02-2110-4028

몰수금 및 추징금
56-562

(단위: 백만원, %)

목명	2025년 결산액	2026년		2027년		증감	
		본예산(A)	추경	요구안	조정안(B)	(B-A)	(B-A)/A
몰수금 및 추징금	141,748	130,898	130,898	131,338	131,338	440	0.3

가. 법적 근거

○ 형법 제41조(형의 종류) 형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사형 2. 징역 3. 금고 4. 자격상실 5. 자격정지 6. 벌금 7. 구류 8. 과료 9. 몰수

○ 형법 제48조(몰수의 대상과 추징) ①범인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후 범인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다음 기재의 물건을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

1.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2.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3. 전2호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

② 전항에 기재한 물건을 몰수하기 불능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③ 문서, 도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 또는 유가증권의 일부가 몰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부분을 폐기한다.

○ 형사소송법 제477조(재산형 등의 집행) ① 벌금, 과료, 몰수, 추징, 과태료, 소송비용, 비용배상 또는 가납의 재판은 검사의 명령에 의하여 집행한다.

② 전항의 명령은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나. 세입 개요

○ 법령에 의하여 국가가 수납할 몰수금, 몰수물품, 압수물 공매대금 및 가액에 대한 추징금

다. 2027년 세입예산안 내역

○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단위: 천원)

연 도		금 액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2026	본예산	130,898,000	'23~'24 편성 수준 반영
	추경	130,898,000	'23~'24 편성 수준 반영
2027예산안		131,338,000	'23~'25 수납실적 수준 반영

라.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장수결정액 (B)	수납액 (C)	수납률 (C/A)	수납률 (C/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본예산	추경(A)							
2023	130,898	130,898	130,898	105,260	105,260	80.4	100.0	-	-
2024	130,898	130,898	130,898	147,006	147,006	112.3	100.0	-	-
2025	123,093	123,093	123,093	141,748	141,748	115.2	100.0	-	-
2026	130,898	130,898	130,898	106,581	106,519	81.4	99.9	63	-
2027(안)	130,898	130,898	-	-	-	-	-	-	-

마. 최근 3개년 간 동 세입에 대한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 해당없음

바. 담당자 정보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검찰국	검찰과	나하나	검사 구자원	수사관 박성인
		02-2110-4190	02-2110-4194	02-2110-4209

과태료
56-563

(단위: 백만원, %)

목명	2025년 결산액	2026년		2027년		증감	
		본예산(A)	추경	요구안	조정안(B)	(B-A)	(B-A)/A
과태료	12,059	12,167	12,167	12,167	12,167	-	-

가. 법적 근거

○ 형사소송법 제447조(재산형 등의 집행) ① 벌금, 과료, 몰수, 추징, 과태료, 소송비용, 비용배상 또는 가납의 재판은 검사의 명령에 의하여 집행한다.

② 전항의 명령은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 출입국관리법 제10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9조의 신고의무를 위반한 자
2. 제19조의4제1항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정을 위반한 사람
3. 제21조제1항 단서의 신고의무를 위반한 사람
4. 제33조제4항 또는 제3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영주증을 재발급받지 아니한 사람
5. 과실로 인하여 제75조제1항(제70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2항(제70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출ㆍ입항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출ㆍ입항보고서의 국적, 성명, 성별, 생년월일, 여권번호에 관한 항목을 최근 1년 이내에 3회 이상 사실과 다르게 보고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5조나 제37조를 위반한 사람
2. 제79조를 위반한 사람
3. 제81조제4항에 따른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장부 또는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외국인등록증 발급신청을 하지 아니한 사람

1의2. 제81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여권 등 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숙박외국인

1의3. 제81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숙박외국인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숙박업자

2. 이 법에 따른 각종 신청이나 신고에서 거짓 사실을 적거나 보고한 자(제94조제17호의2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출입국 · 외국인관서의 장이 부과 · 징수한다.

⑤ 법무부장관은 출입국사범의 나이와 환경, 법 위반의 동기와 결과, 과태료 부담능력, 그 밖의 정상을 고려하여 이 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면제할 수 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이의제기) ①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1조(법원에의 통보) ① 제20조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6조(재판) ① 과태료 재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한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7조(결정의 고지) ① 결정은 당사자와 검사에게 고지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42조(과태료 재판의 집행) ① 과태료 재판은 검사의 명령으로써 집행한다. 이 경우 그 명령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나. 세입 개요

○ 법령에 의하여 국가가 수납할 과태료

다. 2027년 세입예산안 내역

○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단위: 천원)

연 도		금 액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2026	본예산	12,167,000	최근 '22~'24 편성 수준 고려
	추경	12,167,000	최근 '22~'24 편성 수준 고려
2027예산안		12,167,000	전년 수준 반영

라.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수납률 (C/A)	수납률 (C/B)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본예산	추경(A)							
2023	12,167	12,167	12,167	21,904	11,915	97.9	54.6	9,989	-
2024	12,167	12,167	12,167	21,638	11,123	91.4	51.4	10,512	2
2025	11,514	11,514	11,514	23,206	12,059	104.7	52.0	11,147	-
2026	12,167	12,167	12,167	20,167	8,043	66.1	39.9	12,124	-
2027(안)	12,167	12,167	-	-	-	-	-	-	-

마. 최근 3개년 간 동 세입에 대한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 해당없음

바. 담당자 정보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검찰국	검찰과	나하나	검사 구자원	수사관 박성인
		02-2110-4190	02-2110-4194	02-2110-4209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기획과	유성오	김원희	구본민
		02-2110-4010	02-2110-4026	02-2110-4028

징계부과금
56-564

(단위: 백만원, %)

목명	2025년 결산액	2026년		2027년		증감	
		본예산(A)	추경	요구안	조정안(B)	(B-A)	(B-A)/A
징계부과금	35	39	39	39	39	-	-

가. 법적 근거

○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징계부과금) ① 제78조에 따라 공무원의 징계 의결을 요구하는 경우 그 징계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징계 외에 다음 각 호의 행위로 취득하거나 제공한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금전이 아닌 재산상 이득의 경우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징계위원회에 요구하여야 한다.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하기 전에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 경우(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환수나 가산징수 절차에 따라 환수금이나 가산징수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된 범위에서 징계부가금 부과를 의결하여야 한다.

③ 징계위원회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한 후에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자가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 경우(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환수금이나 가산징수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미 의결된 징계부가금의 감면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세입 개요

○ 법령에 의하여 국가가 수납할 징계부과금 등

다. 2027년 세입예산안 내역

○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단위: 천원)

연 도		금 액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2026	본예산	39,000	최근 3년('22～'24) 수납 평균 고려
	추경	39,000	최근 3년('22～'24) 수납 평균 고려
2027예산안		39,000	전년 수준 반영

라.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수납률 (C/A)	수납률 (C/B)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본예산	추경(A)							
2023	30	30	30	686	6	20.0	0.9	680	-
2024	30	30	30	779	61	203.2	7.8	718	-
2025	31	31	31	1,108	35	112.8	3.2	1,073	-
2026	39	39	39	1,242	4	11.2	0.4	1,238	-
2027(안)	39	39	-	-	-	-	-	-	-

마. 최근 3개년 간 동 세입에 대한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 해당없음

바. 담당자 정보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실	강의곤	유재륜 서기관	박길
		02-2110-3099	02-2110-3098	02-2110-3096

변상금
57-571

(단위: 백만원, %)

목명	2025년 결산액	2026년		2027년		증감	
		본예산(A)	추경	요구안	조정안(B)	(B-A)	(B-A)/A
변상금	105	252	252	252	252	-	-

가. 법적 근거

○ 국가배상법 제2조(배상책임)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향토예비군대원이 전투·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순직하거나 공상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유족연금·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② 제1항 본문의 경우에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다.

○ 국가배상법 제5조(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 ① 도로·하천,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조제1항 단서, 제3조 및 제3조의2를 준용한다.

○ 국유재산법 제72조(변상금의 징수) ① 중앙관서의 장 등은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재산에 대한 사용료나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한다.

○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회계관계직원의 변상책임) ① 회계관계직원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이나 그 밖의 관계 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를 위반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감사를 받는 단체 등의 재산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변상할 책임이 있다.

② 현금 또는 물품을 출납·보관하는 회계관계직원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게을리하여 그가 보관하는 현금 또는 물품이 망실(亡失)되거나 훼손(毁損)된 경우에는 변상할 책임이 있다.

③ 제2항의 경우 현금 또는 물품을 출납·보관하는 회계관계직원은 스스로 사무를 집행하지 아니한 것을 이유로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그 손해가 2명 이상의 회계관계직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각자의 행위가 손해발생에 미친 정도에 따라 각각 변상책임을 진다. 이 경우 손해발생에 미친 정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그 정도가 같은 것으로 본다.

나. 세입 개요

○ 법령과 계약에 의거하여 국가가 수납할 변상금

다. 2027년 세입예산안 내역

○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단위: 천원)

연 도		금 액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2026	본예산	252,000	'24 편성 수준 고려
	추경	252,000	'24 편성 수준 고려
2027예산안		252,000	전년 수준 반영

라.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수납률 (C/A)	수납률 (C/B)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본예산	추경(A)							
2023	205	205	205	2,524	114	55.6	4.5	2,405	-
2024	252	252	252	2,555	83	32.9	3.2	2,470	97
2025	202	202	202	2,641	105	51.9	4.0	2,535	1
2026	252	252	252	2,638	68	27.1	2.6	2,570	-
2027(안)	252	252	-	-	-	-	-	-	-

마. 최근 3개년 간 동 세입에 대한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 해당없음

바. 담당자 정보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실	강의곤	유재륜 서기관	박길
		02-2110-3099	02-2110-3098	02-2110-3096

위약금
57-572

(단위: 백만원, %)

목명	2025년 결산액	2026년		2027년		증감	
		본예산(A)	추경	요구안	조정안(B)	(B-A)	(B-A)/A
위약금	677	1,296	1,296	1,296	1,296	-	-

가. 법적 근거

○ 출입국관리법 제66조(보호 일시해제의 취소) ① 지방출입국 · 외국인관서의 장은 보호로부터 일시해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호의 일시해제를 취소하고 다시 보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도주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겨우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일시해제에 붙인 조건을 위반한 경우

②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은 제1항에 따라 보호의 일시해제를 취소하는 경우 보호 일시해제 취소서를 발급하고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증금의 국고 귀속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출입국관리법 제66조(보호 일시해제의 취소) ②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호의 일시해제를 취소하는 경우 보호 일시해제 취소서를 발급하고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다.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9조(입찰보증금)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해당 입찰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2조(계약보증금)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지체상금을 내도록 하여야 한다.

나. 세입 개요

○ 법령과 계약에 의거하여 국가가 수납할 위약금

다. 2027년 세입예산안 내역

○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단위: 천원)

연 도		금 액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2026	본예산	1,296,000	수납실적 감소추세 고려
	추경	1,296,000	수납실적 감소추세 고려
2027예산안		1,296,000	전년 수준 반영

라.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장수결정액 (B)	수납액 (C)	수납률 (C/A)	수납률 (C/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본예산	추경(A)							
2023	783	783	783	1,495	1,494	190.8	99.9	1	-
2024	1,541	1,541	1,541	767	766	49.7	99.9	1	-
2025	1,826	1,826	1,826	678	677	37.1	99.8	1	-
2026	1,296	1,296	1,296	497	492	38.0	99.1	4	-
2027(안)	1,296	1,296	-	-	-	-	-	-	-

마. 최근 3개년 간 동 세입에 대한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 해당없음

바. 담당자 정보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실	강의곤	유재륜 서기관	박길
		02-2110-3099	02-2110-3098	02-2110-3096

가산금
58-581

(단위: 백만원, %)

목명	2025년 결산액	2026년		2027년		증감	
		본예산(A)	추경	요구안	조정안(B)	(B-A)	(B-A)/A
가산금	0.5	4	4	4	4	-	-

가. 법적 근거

○ 국유재산법 제73조(연체료 등의 징수) ① 중앙관서의 장 등은 국유재산의 사용료, 관리소홀에 따른 가산금, 대부료, 매각대금, 교환자금 및 변상금(징수를 미루거나 나누어 내는 경우 이자는 제외한다)이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아니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체료를 징수할 수 있다.

나. 세입 개요

○ 각종 경비의 체납에 따른 가산금 부과

다. 2027년 세입예산안 내역

○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단위: 천원)

연 도		금 액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2026	본예산	4,000	최근 3년('22～'24) 수납 평균 고려
	추경	4,000	최근 3년('22～'24) 수납 평균 고려
2027예산안		4,000	전년 수준 반영

라.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수납률 (C/A)	수납률 (C/B)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본예산	추경(A)							
2023	39	39	39	1,331	2	5.1	0.2	1,293	-
2024	39	39	39	1,334	10	25.6	0.7	1,324	-
2025	2	2	2	1,360	0.5	24.1	0.0	1,359	-
2026	4	4	4	1,380	1	16.0	0.0	1,379	-
2027(안)	4	4	-	-	-	-	-	-	-

마. 최근 3개년 간 동 세입에 대한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 해당없음

바. 담당자 정보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실	강의곤	유재륜 서기관	박길
		02-2110-3099	02-2110-3098	02-2110-3096

기타경상이전수입
59-596

(단위: 백만원, %)

목명	2025년 결산액	2026년		2027년		증감	
		본예산(A)	추경	요구안	조정안(B)	(B-A)	(B-A)/A
기타경상이전수입	13,627	9,094	9,094	9,094	9,094	-	-

가. 법적 근거

○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 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제23조

○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명예퇴직 등) ③ 제1항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한 국가기관의 장이 그 명예퇴직 수당을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국가공무원으로 재임용된 경우에는 재임용한 국가기관의 장이 환수하여야 한다.

1.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1의2. 재직 중에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2. 경력직공무원,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3. 명예퇴직 수당을 초과하여 지급받거나 그 밖에 명예퇴직 수당의 지급 대상이 아닌 자가 지급받은 경우

○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13조(위탁교육훈련) ② 인사혁신처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교육훈련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공무원이 제3항에 따른 지도·감독을 위한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4항에 따른 복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이나 연대보증인에게 교육훈련에 든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납을 명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나. 세입 개요

○ 한미행정협정에 따른 미국측 공무상 손해배상 분담금

- 미합중국 군대 구성원이나 고용원이 대한민국 에서 공무집행 중에 발생한 사건에 대한 손해배상 분담금

○ 명예퇴직수당 및 교육훈련비 반환 등

다. 2027년 세입예산안 내역

○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단위: 천원)

연 도		금 액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2026	본예산	9,094,000	'24 편성 수준 고려
	추경	9,094,000	'24 편성 수준 고려
2027예산안		9,094,000	전년 수준 반영

라.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장수결정액 (B)	수납액 (C)	수납률 (C/A)	수납률 (C/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본예산	추경(A)							
2023	8,229	8,229	8,229	6,232	5,983	72.7	96.0	246	-
2024	9,094	9,094	9,094	7,142	6,884	75.7	96.4	257	-
2025	7,945	7,945	7,945	13,902	13,627	171.5	98.0	275	-
2026	9,094	9,094	9,094	15,995	15,685	172.5	98.1	310	-
2027(안)	9,094	9,094	-	-	-	-	-	-	-

마. 최근 3개년 간 동 세입에 대한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 해당없음

바. 담당자 정보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실	강의곤	유재륜 서기관	박길
		02-2110-3099	02-2110-3098	02-2110-3096

면허료 및 수수료
65-651

(단위: 백만원, %)

목명	2025년 결산액	2026년		2027년		증감	
		본예산(A)	추경	요구안	조정안(B)	(B-A)	(B-A)/A
면허료 및 수수료	33,708	27,919	27,919	28,339	28,339	420	1.5

가. 법적 근거

○ 변호사시험법시행령 제5조(법조윤리시험의 시행) ② 법조윤리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응시 수수료를 지정기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 변호사시험법시행령 제13조(응시수수료) ①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응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외국법자문사법 제3조(외국법자문사 자격승인의 신청) ④ 신청인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 외국법자문사법 제15조(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설립 신청 등) ④ 신청인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 출입국관리법 제87조(출입국관리수수료) ① 이 법에 따라 허가 등을 받는 사람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48조(사회통합 프로그램의 내용 및 개발) ⑤ 법무부장관 또는 제4항에 따라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법무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사회통합 프로그램 참여자로부터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수 있다.

나. 세입 개요

○ 변호사시험 인터넷 원서접수 응시수수료

○ 법조윤리시험 인터넷 원서접수 응시수수료

○ 외국법자문사 자격승인 심사수수료,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설립인가 심사수수료, 각종 출입국허가증 발급 민원수수료

○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 수수료(외국인 자부담)

다. 2027년 세입예산안 내역

○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단위: 천원)

연 도		금 액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2026	본예산	27,919,000	(K-ETA 수수료) 면제 기간 연장 고려, 10,400,000 (응시수수료 등) 최근 3년('22~'24) 수납 평균 고려, 13,319,000 (교육 수수료) '24 참여자 수 6만명*10만원*70%, 4,200,000
	추경	27,919,000	(K-ETA 수수료) 면제 기간 연장 고려, 10,400,000 (응시수수료 등) 최근 3년('22~'24) 수납 평균 고려, 13,319,000 (교육 수수료) '24 참여자 수 6만명*10만원*70%, 4,200,000
2027예산안		28,339,000	(교육 수수료) 전년('26) 대비 10% 증가 = 4,620,000 그 외 전년 수준 반영

라.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장수결정액 (B)	수납액 (C)	수납률 (C/A)	수납률 (C/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본예산	추경(A)							
2023	50,123	50,123	50,123	37,371	37,371	74.6	100.0	-	-
2024	22,061	22,061	22,061	23,925	23,925	108.4	100.0	-	-
2025	32,427	32,427	32,427	33,708	33,708	103.9	100.0	-	-
2026	27,919	27,919	27,919	16,936	16,936	60.7	100.0	-	-
2027(안)	28,339	28,339	-	-	-	-	-	-	-

마. 최근 3개년 간 동 세입에 대한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전자여행허가(K-ETA) 한시면제 반복 연장(당초 '24년말→'25년말→'26년말)으로 제도 도입 취지 저해, 세입 결손 대책(일몰제 등) 검토 필요(예결위, '26.예산 검토보고서)
- '26년말까지 연장된 K-ETA 면제('25.9.25. 제10차 국가관광전략회의)를 반영하여 '26년 K-ETA 수수료 등 항목은 적정 수준으로 감액 조정 필요(법사위, '26.예산)
- '25년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자 수가 '26년 세입 예산안의 산출 근거로 적용한 '24년 교육 참여자 수보다 증가 추세임을 고려하여, '26년 동 교육 수수료 세입 예산안의 증액 조정을 검토할 필요(예결위, '26.예산 검토보고서)

2) 감사원 감사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 해당 없음
3) 자체평가·감사 : 해당 없음
4)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 해당 없음
5)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26년말까지 K-ETA 수수료 한시면제 연장(관광활성화 국가관광전략회의) 등 감안, 동 면허료 및 수수료 '26년 세입 200억원 감액 의결(예결위, 본회의)
- 국가관광전략회의 등을 통해 관계부처, 관광업계 등과 비자, K-ETA, 입국절차 개선 등 긴밀히 협의
- '27년 세입예산안에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 수수료 세입액 10% 증액 편성

바. 담당자 정보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실	강의곤	유재륜 서기관	박길
		02-2110-3099	02-2110-3098	02-2110-3096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	출입국기획과	유성오	김원희	구본민
		02-2110-4010	02-2110-4026	02-2110-4028

기타잡수입
69-691

(단위: 백만원, %)

목명	2025년 결산액	2026년		2027년		증감	
		본예산(A)	추경	요구안	조정안(B)	(B-A)	(B-A)/A
기타잡수입	758	935	935	951	951	16	1.7

가. 법적 근거

○ 형사소송법 제178조(여비, 감정료 등) 감정인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여비, 일당, 숙박료 외에 감정료와 체당금의 변상을 청구할 수 있다.

○ 피치료감호자 분류 및 처우관리준칙 제59조(감정대상 및 기간) ① 형사사건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정신상태에 대한 감정이 필요하여 법원 또는 검찰 및 경찰로부터 정신감정(이하 “감정”이라 한다)의뢰된 자를 대상으로 한다.

○ 피치료감호자 분류 및 처우관리준칙 제64조(비용) ① 피감정인에 대한 급양 및 수용비, 진료비, 감정료 등 감정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전액 의뢰기관으로 징수한 후 이를 국고에 세입하여야 한다.

나. 세입 개요

○ 치료감호소 정신감정수수료, 폐기물 및 불용품 매각대 등

다. 2027년 세입예산안 내역

○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단위: 천원)

연 도		금 액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2026	본예산	935,000	최근 3년('22～'24) 수납 평균 고려
	추경	935,000	최근 3년('22～'24) 수납 평균 고려
2027예산안		951,000	최근 3년('23～'25) 수납 평균 고려

라.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수납률 (C/A)	수납률 (C/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본예산	추경(A)							
2023	740	740	740	1,274	1,274	172.2	100.0	-	-
2024	740	740	740	821	821	110.9	100.0	-	-
2025	871	871	871	758	758	87.1	100.0	-	-
2026	935	935	935	447	373	39.9	83.4	74	-
2027(안)	951	951	-	-	-	-	-	-	-

마. 최근 3개년 간 동 세입에 대한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 해당없음

바. 담당자 정보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실	강의곤	유재륜 서기관	박길
		02-2110-3099	02-2110-3098	02-2110-3096

면허료 및 수수료(수입대체경비)
65-651

(단위: 백만원, %)

목명	2025년 결산액	2026년		2027년		증감	
		본예산(A)	추경	요구안	조정안(B)	(B-A)	(B-A)/A
면허료 및 수수료	22,909	26,162	26,162	26,162	26,162	-	-

가. 법적 근거

○ 국가재정법 제53조, 국가재정법시행령 제24조(예산총계주의원칙 예외-수입대체경비) 수입대체경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경비를 말함

1. 국가가 특별한 용역 또는 시설을 제공하고 그 제공을 받은 자로부터 비용을 징수하는 경우의 당해 경비

2. 수입의 범위 에서 관련 경비의 총액을 지출할 수 있는 경우의 당해 경비

○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제72조(각종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외국인의 입국 및 체류와 관련된 허가 및 출입국사실증명 발급 등에 관한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0. 외국인등록증 발급 및 재발급 : 3만 5천원

10의2. 영주증 재발급: 3만 5천원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수수료) 법 제7조 제6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증의 발급 등에 관한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거소신고증 발급 및 재발급 : 3만 5천원

2.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1통당) : 2천원

나. 세입 개요

○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외국인등록증 발급 및 재발급, 국내거소신고증 발급 시 징수하는 수수료(1매당 35,000원)로 2011회계연도부터 수입대체경비로 지정

다. 2027년 세입예산안 내역

○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단위: 천원)

연 도		금 액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2026	본예산	26,162,000	외국인등록증 발급 예상인원 조정 ('25년 외국인력 쿼터 대비 실입국 약 80% 예상) [물량: 795천매→747천매 / 단가: 35,000원(전년 동)]
	추경	26,162,000	외국인등록증 발급 예상인원 조정 ('25년 외국인력 쿼터 대비 실입국 약 80% 예상) [물량: 795천매→747천매 / 단가: 35,000원(전년 동)]
2027예산안		26,162,000	전년 수준 반영

라.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수납률 (C/A)	수납률 (C/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본예산	추경(A)							
2023	11,850	11,850	11,850	18,652	18,652	157.4	100.0	-	-
2024	17,338	17,338	17,338	19,256	19,195	110.7	99.7	61	-
2025	26,880	26,880	26,880	22,909	22,909	85.2	100.0	-	-
2026	26,162	26,162	26,162	15,206	15,206	58.1	100.0	-	-
2027(안)	26,162	26,162	-	-	-	-	-	-	-

마. 최근 3개년 간 동 세입에 대한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최근 6년간('19~'24년) 외국인등록증 발급 실적을 보면 70만 매 이상 발급 실적이 없으므로 '26년 74.7만매는 과다한 것 아닌지 검토 필요(법사위, '26.예산 검토보고서)
   - 외국인등록증 발급 규모를 보다 합리적으로 산정하여 예산액을 편성함으로써 예산액과 징수결정액 간 불일치 최소화 노력 필요(법사위, '25.결산 검토보고서)
2) 감사원 감사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 해당 없음
3) 자체평가·감사 : 해당 없음
4)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 해당 없음
5)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27년 세출 예산안(외국인등록증 발급 70만 매)과 동일하게 세입 예산안(70만 매) 요구

바. 담당자 정보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	출입국기획과	유성오	김원희	구본민
		02-2110-4010	02-2110-4026	02-2110-4028

기타잡수입(수입대체경비)
69-691

(단위: 백만원, %)

목명	2025년 결산액	2026년		2027년		증감	
		본예산(A)	추경	요구안	조정안(B)	(B-A)	(B-A)/A
기타잡수입	177	151	151	159	159	8	5.3

가. 법적 근거

○ 국가재정법 제53조, 국가재정법시행령 제24조(예산총계주의원칙 예외-수입대체경비)
수입대체경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경비를 말함

1. 국가가 특별한 용역 또는 시설을 제공하고 그 제공을 받은 자로부터 비용을 징수하는 경우의 당해 경비

2. 수입의 범위에서 관련 경비의 총액을 지출할 수 있는 경우의 당해 경비

나. 세입 개요

○ 법무연수원에서 교육대상자로부터 징수하는 교육료로 2011회계연도부터 수입대체경비로 지정

다. 2027년 세입예산안 내역

○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단위: 천원)

연 도		금 액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2026	본예산	151,000	최근 2년('23～'24) 수납 평균 고려
	추경	151,000	최근 2년('23～'24) 수납 평균 고려
2027예산안		159,000	최근 3년('23～'25) 수납 평균 고려

라.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수납률 (C/A)	수납률 (C/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본예산	추경(A)							
2023	151	151	151	154	154	102.0	100.0	-	-
2024	151	151	151	147	147	97.4	100.0	-	-
2025	137	137	137	177	177	129.3	100.0	-	-
2026	151	151	151	103	103	68.5	100.0	-	-
2027(안)	159	159	-	-	-	-	-	-	-

마. 최근 3개년 간 동 세입에 대한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 해당없음

바. 담당자 정보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법무연수원	총무과	서혜주	이자희	조예덕
		043-531-1540	043-531-1541	043-531-1554

3. 세　　출

법무활동

사 업 명
국가송무수행 및 공익법무관운영 (1031-3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법무부	법무실	일반회계	020	022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000	1031	300
명칭	법무활동	국가송무수행	국가송무수행 및 공익법무관운영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6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국가송무수행 및 공익법무관운영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법무실	국 진	이인재	김혜진
		국가소송과	02-2110-3202	02-2110-3208	02-2110-4505
	사업시행주체	-	-	-	-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년 결산	2026년 예산		2027년		증감	
		본예산(A)	추경	요구안	조정안(B)	(B-A)	(B-A)/A
국가송무수행 및 공익법무관운영	2,689	2,543	2,543	2,341	2,318	△225	△8.8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25					2026(2026.7월말)							2027 예산안
	예산액(추경)	예산현액	집행액[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현액	집행액[실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예상액	불용예상액	
									예산현액	집행액[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2,961	2,746	2,689	-	57	2,543	2,543	1,153	2,543	1,153	-	-	2,318
· 소송 및 자문예산	700	492	482	-	10	700	700	228	700	228	-	-	471
· NDSL 운영경비	1,676	1,676	1,660	-	16	1,248	1,248	664	1,248	664	-	-	1,348
· 송무관련 운영경비	585	578	546	-	31	595	595	261	595	261	-	-	499
○ 비목별 분류(합계)	2,961	2,746	2,689	-	57	2,543	2,543	1,153	2,543	1,153	-	-	2,318
· 일반수용비(210-01)	870	662	657	-	5	871	871	339	871	339	-	-	641
· 공공요금및제세(210-02)	11	6	5	-	1	10	10	4	10	4	-	-	10
· 특근매식비(210-05)	72	70	58	-	11	85	85	20	85	20	-	-	85
· 임차료(210-07)	7	7	7	-	-	7	7	-	7	-	-	-	7
· 관리용역비(210-15)	1,046	1,046	1,040	-	6	1,046	1,046	523	1,046	523	-	-	1,348
· 국내여비(220-01)	56	56	49	-	7	56	56	34	56	34	-	-	56
· 국외업무여비(220-02)	14	14	13	-	1	14	14	14	14	14	-	-	14
· 사업추진비(240-01)	83	83	80	-	3	83	83	54	83	54	-	-	85
· 특정업무경비(250-03)	37	37	37	-	-	34	34	23	34	23	-	-	32
· 일반연구비(260-01)	620	620	620	-	-	202	202	141	202	141	-	-	-
· 정책연구비(260-02)	40	40	35	-	5	40	40	-	40	-	-	-	-
· 포상금(320-03)	30	30	30	-	-	30	30	-	30	-	-	-	30
· 자산취득비(430-01)	75	65	57	-	8	65	65	1	65	1	-	-	10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2,961	2,746	2,689	-	57	2,543	2,543	1,153	2,543	1,153	-	-	2,318
· 소송 및 자문예산	700	492	482	-	10	700	700	228	700	228	-	-	471
-일반수용비(210-01)	700	492	482	-	10	700	700	228	700	228	-	-	471
· NDSL 운영경비	1,676	1,676	1,660	-	16	1,248	1,248	664	1,248	664	-	-	1,348
-일반연구비(260-01)	620	620	620	-	-	202	202	141	202	141	-	-	-
-관리용역비(210-15)	1,046	1,046	1,040	-	6	1,046	1,046	523	1,046	523	-	-	1,348
-자산취득비(430-01)	10	10	-	-	10	-	-	-	-	-	-	-	-
· 송무관련운영경비	585	578	546	-	31	595	595	261	595	261	-	-	499
-일반수용비(210-01)	170	170	175	-	△5	171	171	111	171	111	-	-	170
-공공요금및제세(210-02)	11	6	5	-	1	10	10	4	10	4	-	-	10

	2025					2026(2026.7월말)							2027 예산안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특근매식비(210-05)	72	70	58	-	11	85	85	20	85	20	-	-	85
-임차료(210-07)	7	7	7	-	-	7	7	-	7	-	-	-	7
-국내여비(220-01)	56	56	49	-	7	56	56	34	56	34	-	-	56
-국외업무여비(220-02)	14	14	13	-	1	14	14	14	14	14	-	-	14
-사업추진비(240-01)	83	83	80	-	3	83	83	54	83	54	-	-	85
-특정업무경비(250-03)	37	37	37	-	-	34	34	23	34	23	-	-	32
-일반연구비(260-01)	-	-	-	-	-	-	-	-	-	-	-	-	-
-정책연구비(260-02)	40	40	35	-	5	40	40	-	40	-	-	-	-
-포상금(320-03)	30	30	30	-	-	30	30	-	30	-	-	-	30
-자산취득비(430-01)	65	65	57	-	8	65	65	1	65	1	-	-	1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소송 및 자문예산)** 법무부 소관 헌법·행정·국가소송 등 고액, 중요사건 대응을 위한 예산
- **(NDSL 운영경비)** 효율적인 국가·행정 소송수행과 관리를 위한 국가송무정보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한 예산
- **(송무관련 운영경비)** 국가·행정소송의 원활한 수행 및 국가기관의 법률업무 지원을 위한 공익법무관 운영·교육 등 필수적인 운영경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전항), 헌법재판소법(제25조, 제44조), 정부법무공단법(전항), 공익법무관에관한법률(전항)
- 공익법무관관리지침(법무부예규656호)

② 추진경위

- 1951. 10.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이 제정되어 국가소송 및 행정소송의 효율적 수행 및 소송사무의 적정 관리 도모
- 1988. 9. 헌법재판소법이 제정되어 위헌법률심판 등 헌법재판사건에 대한 의견서 작성 · 제출
- 1994. 12. 공익법무관에관한법률이 제정되어 1995년도부터 사법시험 합격자 중 병역미필자를 군복무에 갈음하여 법무부 소속 공익법무관으로 임용, 법률구조업무 및 국가소송 등에 종사
- 2007. 12. 정부법무공단법 공포('07. 12. 21. 시행) 및 정부법무공단 출범에 따른 정부부처 소송예산 현실화 방안 국무회의 보고('07. 5. 8.)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967년~계속(국가송무수행), 1995년~계속(공익법무관 운영)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3	2024	2025	2026	2027(안)
사업비	4,112	4,022	2,961	2,543	2,318

- 기타: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법무부 법무실
- 사업 수혜자 :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7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

① 국가송무정보시스템(NDSL) 운영

: (2026 본예산) 1,248백만원 → (2026 요구) 1,348백만원, 100백만원 증액

- (요구) 국가송무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 ('26) 1,046백만원 → ('27요구) 1,348백만원 +8.0%
  · 국가소송 및 행정소송의 지휘청 및 소송수행청 사용자 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시스템의 안정적인 시스템 관리 필요하여 유지관리율은 상용SW 유지관리 적용 4등급(요율 14%), 이윤은 직접인건비에 근거하여 10% 적용하여 +302백 증액
- (산출)
  * **889** {기존 유지관리비 683[4,881(개발비) × 14%(유지관리율)] + 1,474('23~'24 개발비) ×14%(유지관리율)}
  + **69** {기존 HW/SW 유지관리 38[1,202(자산취득비) x 3.2%(유지관리율)] + 222('23~'24 자산취득비)×14%(유지관리율)}
  + **390** {기존 위탁운영비 325[117(인건비) + 129(제경비) + 79(기술료)] + 59(1명 추가 인건비) + 6(이윤 10%)}

ㅇ 2026년도 예산 및 2027년도 예산안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6년 본예산		2027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248	○ **유지보수비 : 1,046,000천원** 가. NDSL 유지보수비 720,893천원 ・ H/W 및 S/W : 장비유지보수비율 0.032*HW,SW 구매비용 1,202,164,000원=38,469천원 ・ NDSL 응용프로그램 개발 : 개발유지보수비율 0.14*개발비용 4,881,388,781원=683,394천원 ・ 계수조정 : △970천원 나. NDSL 위탁운영비 325,107천원 : PM 및 테스터 인건비 117,282,607원 + 제경비 129,010,868원 + 기술료 등 78,813,912원 ○ **연구용역비 : 202,000천원** 가. SW 기술자인건비 73,000천원 + 제경비 80,000천원 + 기술료 31,000천원 + 부가세 18,000천원	1,348	○ **유지보수비 : 1,348,000천원** 가. NDSL 유지보수비 958,000천원 ・ H/W 및 S/W : 38,469천원(장비유지보수비율 0.032*HW,SW 구매비용 1,202,164,000원) + (자산취득 222,000,000×14%) = 69,549천원 ・ NDSL 응용프로그램 개발 : 683,394천원(개발유지보수비율 0.14* 개발비용 4,881,388,781원) + (개발비용 1,474,894,665×14%) = 889,879천원 ・ 계수조정 : △1,428천원 나. NDSL 위탁운영비 390,000천원: 325,107천원(PM 및 테스터 인건비 117,282,607원 + 제경비 129,010,868원 + 기술료 등 78,813,912원) + 인건비 58,893,000원 + 이윤 6,000,000원

② 송무관련 운영경비

: (2026 본예산) 595백만원 → (2027 요구) 499백만원, 96백만원 감액

- (요구) 국가소송의 원활한 수행 및 국가기관의 법률업무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공익법무관 운영 등을 위한 필수적인 비용(운영비, 여비 등)으로 전년 대비 연구용역비, 자산취득비 등 지구조 반영되어 감액 편성
- (산출)
  * 공익법무관 운영경비 75백만원 = 운영경비 44백만원 + 직무교육 31백만원
  * 공익법무관 워크숍 임차료 7백만원 = 2,333천원 x 3회
  * 행정소송비용 확정액 4백만원 = 2 x 2건
  * 국가소송 및 헌법재판 경비 64백만원 = 인쇄비 30 + 송무관련 사무용품, 물품 등 34
  * 검찰청 송무지원 경비 23백만원 = 교재비 8 + 교육비 15
  * 공공요금 및 여비 80백만원 = 공공요금 10 + 여비 70(국내여비 56+국외여비14)
  * 특근매식비 85백만원 = 58(132명x4회x12월x9천원)+소송수행직원 24(56명x4회x12월x9천원)+국고손실 환수 관련 2(10명x2회x12월x9천원)

* 업무추진비 85백만원 = 공익법무관 관련 경비 8 + 송무관련 경비 18 + 국고손실 환수 관련 13 + 행정소송 관련 업무협의 43 + 행정소송 수행자 역량 강화지원 3
* 보전금, 법령번역및통역 34백만원 = 포상금 30(0.3X101명) + 법령번역및통역 4
* 자산취득비 및 특정업무경비 42백만원 = 자산취득비 10 + 특정업무경비 32

ㅇ 2026년도 예산 및 2027년도 예산안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6년 본예산		2027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595,000	○ **송무관련 운영경비 595,000천원** 가. 공익법무관 운영경비 : 75,380천원 나. 공익법무관 워크숍 임차료 : 7,000천원 다. 국가소송 및 헌법재판 경비 ・ 인쇄비 30,020천원 + 워크숍경비등 4,000천원 + 물품구입 31,040천원 = 65,060천원 라. 검찰청 송무 지원 경비 ・ 교재비 및 교육비 22,570천원 + 행정소송비용확정액 4,200천원 = 26,770천원 마. 공공요금 및 여비 ・ 공공요금 10,100천원 + 여비 70,136천원 = 80,236천원 바. 특근매식비 ・ 200명 x 3.9회 x 12월 x 9천원 = 84,471천원 사. 연구비 및 업무추진비 등 ・ 40,000천원 + 82,753천원(73명x28.4회x40천원) = 122,753천원 아. 보전금(포상) 및 사례금 ・ (101명 x 300천원) + (12건 x 300천원) = 33,900천원 자. 자산취득비 및 특정업무경비 ・ 자산취득비 65,000천원 + 특정업무경비 34,343천원 = 99,343천원	499,000	○ **송무관련 운영경비 499,000천원** 가. 공익법무관 운영경비 : 75,380천원 나. 공익법무관 워크숍 임차료 : 7,000천원 다. 국가소송 및 헌법재판 경비 ・ 인쇄비 30,020천원 + 워크숍경비등 4,000천원 + 물품구입 30,240천원 = 64,260천원 라. 검찰청 송무 지원 경비 ・ 교재비 및 교육비 22,570천원 + 행정소송비용확정액 4,200천원 = 26,770천원 마. 공공요금 및 여비 ・ 공공요금 10,100천원 + 여비 70,136천원 = 80,236천원 바. 특근매식비 ・ 200명 x 3.9회 x 12월 x 9천원 = 84,471천원 사. 업무추진비 ・ 85,088천원(73명x29.1회x40천원) = 85,088천원 아. 보전금(포상) 및 사례금 ・ (101명 x 300천원) + (12건 x 300천원) = 33,900천원 자. 자산취득비 및 특정업무경비 ・ 자산취득비 10,000천원 + 특정업무경비 32,119천원 = 42,119천원

③ 소송 및 자문예산

: (2026 본예산) 700백만원 → (2027 요구) 471백만원, 229백만원 감액

- (요구) 헌법, 행정, 국가소송의 국가적 중요성과 소송 건수의 실제 필요한 예산 수요 고려
- (산출)
  * 국가소송 착수금 및 보수금 396백만원 = 60건 x 6.6백만원
  * 행정소송 착수금 및 보수금 55백만원 = 6건 x 9.3백만원
  * 헌법재판 착수금 및 보수금 14백만원 = 2건 x 7백만원
  * 중요사건 자문료 7백만원 = 2건 x 3.5백만원

※ 최근 5년간 국가소송, 행정소송의 평균 접수 건수 및 집행 추세 반영, 건당 금액은 5년 건당 평균 집행액 반영

2026년 본예산		2027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700,000	○ **소송 및 자문 : 700,000천원** 가. 국가소송 착수금 및 보수금 554,000천원 ・ 75건x7,400천원 = 554,000천원 나. 행정소송 착수금 및 보수금 103,000천원 ・ 10건x10,300천원 = 103,000천원 다. 헌법재판 착수금 및 보수금 35,000천원 라. 중요사건 자문료 8,000천원 ・ 3건x,2,700천원 = 8,000천원	471,000	○ **소송 및 자문 : 471,000천원** 가. 국가소송 착수금 및 보수금 396,000천원 ・ 60건x6,600천원 = 396,000천원 나. 행정소송 착수금 및 보수금 55,000천원 ・ 6건x9,300천원 = 55,000천원 다. 헌법재판 착수금 및 보수금 14,000천원 라. 중요사건 자문료 7,000천원 ・ 2건x,3,500천원 = 7,000천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 국가소송 현황

(단위 : 건)

구 분	접 수	처 리				계속중
		계	승 소	패 소	취하 등	
2022	11,049	4,600	1,750	450	2,400	6,449
2023	9,598	4,958	1,919	459	2,580	4,640
2024	12,466	4,570	1,798	419	2,353	7,896
2025	16,677	6,522	1,975	578	3,969	10,155

※ 행정소송 현황

(단위 : 건)

구 분	접 수	처 리				계속중
		계	승 소	패 소	취하 등	
2022	42,736	15,561	8,478	1,752	5,331	27,175
2023	46,021	18,922	1,750	1,692	6,007	27,099
2024	46,083	20,109	1,919	1,887	5,874	25,974
2025	43,319	17,402	9,875	2,067	5,460	25,917

③ 향후(2027년도 이후) 기대효과

- 국가·행정소송 승인 및 지휘 역량 강화
- 국가·행정소송 직접수행 내실화, 소송수행청 지도 감독 철저
- 소송수행자에 대한 소송지휘·지원 강화
- 국가·행정소송 패소율 억제 및 국가예산 절감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국가 원고 또는 피고 소제기 → 소장 송달(국가소송은 법원에서 검찰청, 행정소송은 법원에서 행정청) → 소송수행자 지정(검사, 공익법무관, 법무부 직원, 소송수행청 공무원) → 소송진행 및 보고(준비서면, 답변서 제출, 법정출석 대응) → 판결선고 → 판결문 송달(국가소송은 법원에서 검찰청, 행정소송은 법원에서 행정청) → 항소·상고 여부 판단(국가소송은 검찰지휘, 행정소송은 법무부) → 확정 또는 항소심, 상고심 진행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25~2029	2,961	2,543	2,318	3,206	3,206	
2026~2030		2,543	2,318	2,318	2,318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해당없음

2) 감사원 감사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해당없음

3) 자체평가·감사
- 2022년도 법무부 자체 재정사업 자율평가: 보통

4)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해당없음

5)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해당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해당없음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해당없음

12) 동 사업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 해당없음

13) 2026년도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 결과 및 후속 조치 현황: 해당없음

14) 부처 건의사항: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3	4,112	-	4,112	-	△254	-	3,858	3,830	93.1	99.3	-	28
2024	4,022	-	4,022	-	△237	-	3,785	3,677	91.4	97.1	-	108
2025	2,961	-	2,961	-	△215	-	2,746	2,689	90.8	97.9	-	57
2026	2,543	-	2,543	-	-	-	2,543	-	-	-	-	-

2) 주요 결산사항

□ 2023~2026년 결산사항

2023	- 해당없음
2024	○ 국가배상금 소송비용의 반복적 전용 개선 필요 - 법무부는 국가소송 관련 송달료 등의 면밀한 지출 소요 분석을 바탕으로 예산 편성의 정확도 제고함으로써, 타 사업 예산을 반복적으로 전용하여 집행하는 것을 지양할 것
2025	- 해당 없음
2026	- 해당 없음

□ 2026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해당없음

□ 2026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해당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해당없음

사 업 명
국가배상금 지급 (1031-3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법무부	법무실	일반회계	020	022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000	1031	301
명칭	법무활동	국가송무수행	국가배상금 지급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6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국가배상금 지급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법무실	국 진	이인재	김혜진
		국가소송과	02-2110-3202	02-2110-3208	02-2110-4505
	사업시행주체	-	-	-	-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년 결산	2026년 예산		2027년		증감 (B-A)	(B-A)/A
		본예산(A)	추경	요구안	조정안(B)		
국가배상금 지급	437,279	144,835	144,835	840,000	840,000	695,165	480.0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25					2026(2026.7월말)							2027 예산안
	예산액(추경)	예산현액	집행액[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현액	집행액[실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예상액	불용예상액	
									예산현액	집행액[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131,765	437,280	437,279	-	1	144,835	390,535	369,744	390,535	369,744	-	-	840,000
· 소송비용	700	915	915	-	-	940	940	278	940	278	-	-	940
· 배상금	131,065	436,365	436,364	-	1	143,895	389,595	369,466	389,595	369,466	-	-	839,060
○ 비목별 분류(합계)	131,765	437,280	437,279	-	1	144,835	390,535	369,744	390,535	369,744	-	-	840,000
· 일반수용비(210-01)	700	915	915	-	-	940	940	278	940	278	-	-	940
· 배상금(310-01)	131,065	436,365	436,364	-	1	143,895	389,595	369,466	389,595	369,466	-	-	839,060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131,765	437,280	437,279	-	1	144,835	390,535	369,744	390,535	369,744	-	-	840,000
· 소송비용	700	915	915	-	-	940	940	278	940	278	-	-	940
-일반수용비(210-01)	700	915	915	-	-	940	940	278	940	278	-	-	940
· 배상금	131,065	436,365	436,364	-	1	143,895	389,595	369,466	389,595	369,466	-	-	839,060
-배상금(310-02)	131,065	436,365	436,364	-	1	143,895	389,595	369,466	389,595	369,466	-	-	839,06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소송비용)** 민사소송비용법 및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인정된 소송행위에 필요한 한도의 비용으로 편성된 예산(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등)
- **(배상금)** 공무원의 불법행위나 공공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국가의 손해배상(단, 특별회계·국방부 소관 제외)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조항 적시

-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 국가배상법 제2조, 제5조

② 추진경위

- '67년부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의한 국가배상금 및 소송비용지급을 목적으로 추진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967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3	2024	2025	2026	2027(안)
사업비	100,000	100,000	131,765	144,835	840,000

- 기타: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전국 14개 고·지검에서 예산집행)
- 사업시행주체 : 법무부 법무실
- 사업 수혜자 : 국가 또는 행정청을 상대로 한 국가소송, 행정소송에서 승소한 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없음

3) 2027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

① 소송비용

: (2026 본예산) 940백만원 → (2027 요구) 940백만원, 전년동

- (요구) 국가소송을 수행하면서 소요되는 인지대, 검증, 감정료 등의 수요 반영하여 전년수준 편성
- (산출) 소송비용 940백만원 = 4,159건 x 226천원

ㅇ 2026년도 예산 및 2027년도 예산안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6년 본예산		2027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940,000	○ 소송비용 : 940백만원 * 4,159건 x 226천원 = 940,000천원	940,000	○ 소송비용 : 940백만원 * 4,159건 x 226천원 = 940,000천원

② 배상금

: (2026 본예산) 143,895백만원 → (2027 요구) 839,060백만원, 695,165백만원 증액

- (요구) ①국가의 소멸시효 항변 등을 배척하는 대법원 판례, ②제2기 진실화해위원회('20. 12.~25. 5.)의 진상규명 결정 및 제3기 진실화해위원회 출범('26.2.), ③형제복지원·선감학원 사건 등 과거사 사건 관행적 상소 자제 등에 따라 과거사 배상금 지급 소요가 급증하여 증액 편성
- (산출) 839,060백만원

2026년 본예산		2027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43,895,000	○ **배상금 143,895,000천원** 가. 법원 판결금 ・ 336건×402백만원 = 135,059백만원 나. 배상심의회 결정금 ・ 73건×2.2백만원 = 159백만원 다. 소송비용 확정액 ・ 507건×17.1백만원 = 8677백만원	839,060,000	○ **배상금 839,060,000천원** 가. 법원 판결금 ・ 소액사건 1,650,474,153+ 단독사건 137,219,887,907 + 합의사건 686,129,637,940 나. 배상심의회 결정금 ・ 67건*6,000,000원 = 402백만원 다. 소송비용 확정액 ・ 1,415건*13,000,000원= 18,395백만원 ■ 판결금은 '27년 선고될 사건에 대한 소가 x 인용률적용 * 소가 1.65조원 × 인용비율 50% ■ 배상심의회 결정금, 소송비용 확정액은 소송대응 정책기조 변화로 '25.7. 이후의 실지급 소요 반영하여 현실화한 물량, 단가 적용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해당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해당없음

③ 향후(2027년도 이후) 기대효과

- 국가배상금의 적정한 편성으로 청구 즉시 지급함으로써 고객만족도 제고 및 연 5~12% 고율의 지연손해금 절감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 법 개정으로 2015. 10. 1. 이전에는 20%, 이후에는 15%, '19.6.1. 이후부터는 12%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공무원의 불법행위나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발생 → 배상신청 또는 국가소송 제기 → 배상결정 또는 확정판결 → 배상금 지급(전국 14개 고·지검에서 예산 집행)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25~2029	131,765	144,835	840,000	840,000	840,000	
2026~2030		144,835	840,000	840,000	840,000	840,000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국회(상임위 등)	지적사항	비고
- '25년 국회 법사위, 예결위 '24회계연도 결산심사	국가배상금 지연손해금 이월액 최소화 필요	
- '24년 국회 법사위, 예결위 '23회계연도 결산심사	국가배상금 소송비용의 반복적 전용 개선 필요	

2) 감사원 감사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해당없음

3) 자체평가·감사: 해당없음

4)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해당없음

5)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해당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국가송무수행 역량 강화를 통한 국가승소율 제고(배상원금 및 지연이자 절감)
- 정밀한 소요 예측에 의한 적정 규모 예산 편성으로 예비비 지출 최대한 억제 등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해당없음

12) 동 사업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 해당없음

13) 2026년도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 결과 및 후속 조치 현황: 해당없음

14) 부처 건의사항: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3	100,000	-	100,000	-	254	-	100,254	100,253	100.0	100.0	-	1
2024	100,000	-	100,000	-	7,743	-	107,743	107,743	107.7	100.0	-	-
2025	131,765	-	131,765	-	-	305,300	437,280	437,279	331.9	99.9	-	1
2026	144,835	-	144,835	-	-	245,700	390,535	369,744	255.3	94.7	-	-

2) 주요 결산사항

□ 2023~2026년 결산사항

2023	- 해당없음
2024	○ 국가배상금 소송비용의 반복적 전용 개선 필요 - 법무부는 국가소송 관련 송달료 등의 면밀한 지출 소요 분석을 바탕으로 예산 편성의 정확도 제고함으로써, 타 사업 예산을 반복적으로 전용하여 집행하는 것을 지양할 것
2025	○ 국가배상금 지연손해금 이월액 최소화 필요
2026	- 해당없음

□ 2026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해당없음

□ 2026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26.5.20. 1차 예비비 245,700백만원(배상금)

라. 기타 추가자료: 해당없음

사 업 명
정부법무공단 운영지원 (1031-30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법무부	법무실	일반회계	020	022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000	1031	302
명칭	법무활동	국가송무수행	정부법무공단 운영지원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6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정부법무공단 운영지원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법무실	국 진	이인재	김혜진
		국가소송과	02-2110-3202	02-2110-3208	02-2110-4505
	사업시행주체	정부법무공단	기획홍보팀	박내칠	02-2182-0077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년 결산	2026년 예산		2027년		증감 (B-A)	(B-A)/A
		본예산(A)	추경	요구안	조정안(B)		
정부법무공단 운영지원	678	702	702	730	730	28	4.0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25					2026(2026.7월말)							2027 예산안
	예산액(추경)	예산현액	집행액[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현액	집행액[실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예상액	불용예상액	
									예산현액	집행액[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678	678	678	-	-	702	702	702	702	702	-	-	730
· 인건비 지원	678	678	678	-	-	702	702	702	702	702	-	-	730
○ 비목별 분류(합계)	678	678	678	-	-	702	702	702	702	702	-	-	730
· 민간경상보조(320-01)	678	678	678	-	-	702	702	702	702	702	-	-	730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678	678	678	-	-	702	702	702	702	702	-	-	730
· 민간경상보조(320-01)	678	678	678	-	-	702	702	702	702	702	-	-	73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민간경상보조)** 전문성 강화를 위한 변호사 등 인력 충원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국가에서 보조하여 공단의 재정적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공단이 국가 등의 소송수행, 법률자문 등을 통해 국가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합법성을 확보하여 국민을 위한 법치행정 구현에 이바지하는 설립 목적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기 위함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조항 적시

- 정부법무공단법 제21조의2

② 추진경위

- 국가로펌으로서 안정적 정착을 위해 상당 기간 예산지원이 필수적임에도 다른 공단과 달리 설립 첫해에만 운영비용 중 일부를 지원하다보니 상당 부분 적자가 발생하였고, 필요한 인원을 충원하지 못해 업무부담 가중됨
- 이는 업무처리에 지장을 가져와 결과적으로 소송 등에서 국가 등의 손실을 초래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어 내실 있는 소송수행을 위해 인건비의 일부를 2011년부터 국가가 지원(정부법무공단법 일부 개정)
- 자체 수입만으로는 흑자와 적자가 반복되고 있고, 내실 있는 소송수행을 위해 결원상태에 있는 변호사의 충원 필요하므로 공단 재정안정을 위해 인건비 지원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11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3	2024	2025	2026	2027(안)
사업비	287	658	678	702	730

- 기타: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보조
- 사업시행주체 : 정부법무공단
- 사업 수혜자 : 정부법무공단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7예산안)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정부법무공단 운영지원	보조	정부법무공단	730백만원	정액	정부법무공단법 제21조 제1호, 제21조의2

3) 2027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

① 정부법무공단 운영지원

: (2026 본예산) 702백만원 → (2027 요구) 730백만원, 28백만원 증액

- (요구) 정부법무공단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인력 충원 및 유지 등을 위해 정부법무공단 변호사 및 보조인력 인건비 중 변호사 9명, 지원인력 3명에 대한 평균 인건비의 59.5%에 해당하는 730백만원 요구
- (산출) {(변호사 9명 x 12,059만원) + (직원 3명 x 4,520만원)} x 59.5%

ㅇ 2026년도 예산 및 2027년도 예산안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6년 본예산		2027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702	○ **인건비 : 702백만원** ・ {(변호사 9명 × 12,059만원) + (직원 3명 × 4,520만원)} × 57.5%	702	○ **인건비 : 730백만원** ・ {(변호사 9명 × 12,119만원) + (직원 3명 × 4,543만원)} × 59.5%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국가 등에 대한 법률지원 성과(건)	목표	-	-	1,692 (신규)	1,678	1,691	최근 3년간 법률지원 건수 평균 1,691건 ('23년 1,610건, '24년 1,760건, '25년 1,704건)	공단이 수임한 사건의 종류별(국가, 행정, 민사, 헌법, 중재) 본안사건수 + 신청사건수	정부법무공단 법률업무지원 시스템(로탑) 수임 통계
	실적	-	-	1,760	1,704	-			
	달성도	-	-	104.0	101.5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소송 1,516건, 자문 2,121건, 연구용역 3건, 법률고문 189기관
2023	○ 소송 1,610건, 자문 2,176건, 연구용역 7건, 법률고문 193기관
2024	○ 소송 1,760건, 자문 2,322건, 연구용역 6건, 법률고문 199기관
2025	○ 소송 1,704건, 자문 2,382건, 연구용역 4건, 법률고문 205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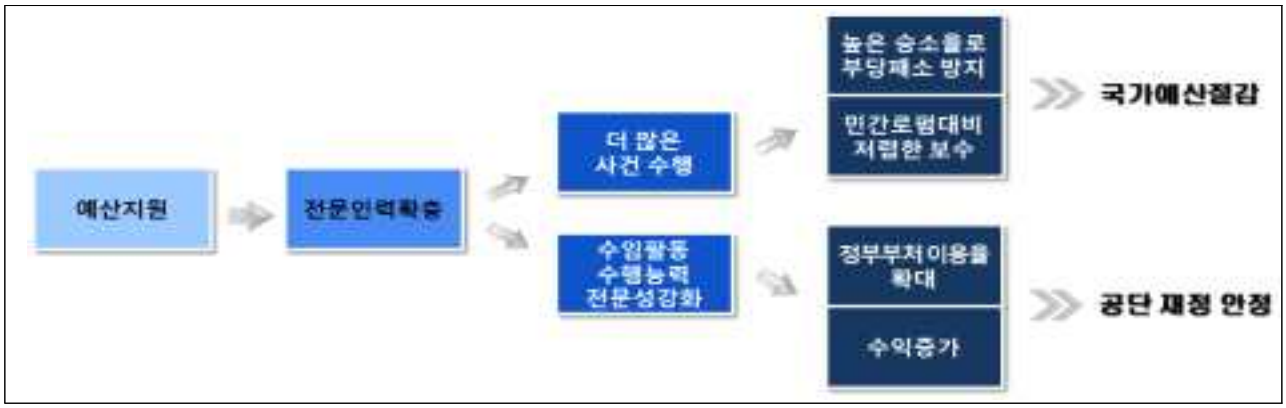
③ 향후(2027년도 이후) 기대효과

- 인력 충원 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음으로써 공단은 전문변호사 충원 및 유지 가능
- 높은 전부승소율로 부당 패소로 지출되는 국고를 절감하고, 민간 대비 저렴한 보수로 국가 소송예산 절감에 기여
- 인력 충원으로 경쟁력과 전문성 강화되고, 수임 사건 확대 가능해져 재정안정 도모 가능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25~2029	678	702	730	730	730	
2026~2030		702	730	730	730	730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국회(상임위 등)	지적사항	비고
- '22년 회계연도 국회결산 보고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	정부법무공단의 승소율 산정방식을 개정하고, 변호사 퇴사 방지 및 승소율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 정부법무공단의 경쟁력 제고 및 우수 변호사 충원 유지를 위한 단기적인 재정지원 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	

2) 감사원 감사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해당없음

3) 자체평가·감사: 해당없음

4)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해당없음

5)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조치완료) 승소율 산정방식을 법무부 산정방식으로 개정, 변호사 퇴사방지와 경쟁력 제고 위한 우수변호사 충원 유지 위해 예산 4억원 증액 및 변호사 보수 인상, 전문성 강화 및 승소율 제고 위한 교육 훈련과 정례적인 자체 세미나 실시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정부 등 다양한 법률수요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인적규모를 확보하고, 전문성·경쟁력을 제고시켜, 자체 재정으로 흑자 기조 유지될 수 있도록 필요재정 지원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해당없음

12) 동 사업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 해당없음

13) 2026년도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 결과 및 후속 조치 현황: 해당없음

14) 부처 건의사항

- 인건비 일부 지원에 따른 전문인력 충원으로 전문성이 한층 강화되었고, 신뢰도·인지도 상승으로 수임 사건과 매출액이 증가하는 등 재정이 안정되어 가는 상황
- 다만, 보조금을 제외하면 2011년, 2013년, 2017년~2020년, 2022년 적자가 발생하는 등 아직 자립할만한 재정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고, 흑자 기조 유지될지 불투명
- 경쟁력·전문성 제고, 다양한 분야의 법률서비스 제공을 위해 변호사를 점진적으로 충원할 필요가 있으나, 저가의 수임료로 인해 자체 재정만으로는 순조로운 인력 충원이 어려운 상황이 고려될 필요
- 정부예산을 고려하여 저렴한 보수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소송수행자 교육 지원 등 공익 기능 수행에서 오는 손실을 일부 보전 필요
- 높은 승소율로 국가배상금 절감하고, 저렴한 보수로 국가의 소송예산을 절감하는 등 비용 대비 효용성이 매우 큰 사업이므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 필요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3	287	-	287	-	-	-	287	287	100.0	100.0	-	-
2024	658	-	658	-	-	-	658	658	100.0	100.0	-	-
2025	678	-	678	-	-	-	678	678	100.0	100.0	-	-
2026	702	-	702	-	-	-	702	702	100.0	100.0	-	-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본예산	추경(A)								
2023	287	287	287	287	-	287	287	-	-	100.0
2024	658	658	658	658	-	658	658	-	-	100.0
2025	678	678	678	678	-	678	678	-	-	100.0
2026	702	702	702	702	-	702	702	-	-	100.0

2) 주요 결산사항

□ 2023~2026년 결산사항

2023	- 정부법무공단의 승소율 산출방식 변경, 변호사 퇴사 방지 및 승소율 제고 방안 마련
2024	- 해당없음
2025	- 해당없음
2026	- 해당없음

□ 2026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해당없음

□ 2026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해당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해당없음

사 업 명
정부부처 등 국제법무 법률지원 (1032-3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법무부	국제법무국		020	022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000	1032	300
명칭	법무활동	국제법무운영및외국법제연구	정부부처 등 국제법무 법률지원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6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정부부처 등 국제법무 법률지원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국제법무국	김민정	김준성 검사	조혜영
		국제법무지원과	02-2110-3670	02-2110-3659	02-2110-3662
	사업시행주체	-	-	-	-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년 결산	2026년 예산		2027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요구안	조정안(B)		(B-A)/A
정부부처 등 국제법무 법률지원	503	510	510	693	693	183	35.9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25					2026(2026.7월말)							2027 예산안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516	516	503	-	13	510	510	331	510	331	-	-	693
· 국제소송 법률지원 및 국제법무동향분석	179	179	174	-	5	179	179	101	179	101	-	-	227
· 해외진출기업 국제법률지원	337	337	329	-	8	273	273	197	273	197	-	-	234
· 국제법무 예방역량 강화	-	-	-	-	-	-	-	-	-	-	-	-	142
· 전문위원 운영	-	-	-	-	-	58	58	33	58	33	-	-	90
○ 비목별 분류(합계)	516	516	503	-	13	510	510	331	510	331	-	-	693
· 상용임금(110-03)	-	-	-	-	-	48	48	27	48	27	-	-	74
· 일반수용비(210-01)	327	327	319	-	8	263	263	191	263	191	-	-	304
· 임차료(210-07)	6	6	6	-	-	6	6	3	6	3	-	-	12
· 복리후생비(210-12)	-	-	-	-	-	1	1	1	1	1	-	-	1
· 일반용역비(210-14)	-	-	-	-	-	-	-	-	-	-	-	-	124
· 국외업무여비(220-02)	114	114	109	-	5	114	114	74	114	74	-	-	114
· 사업추진비(240-01)	19	19	19	-	-	19	19	10	19	10	-	-	19
· 정책연구비(260-02)	50	50	50	-	-	50	50	20	50	20	-	-	30
· 고용부담금(320-09)	-	-	-	-	-	9	9	5	9	5	-	-	15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516	516	503	-	13	510	510	331	510	331	-	-	693
· 국제소송 법률지원 및 국제법무동향 분석	179	179	174	-	5	179	179	101	179	101	-	-	227
-일반수용비(210-01)	57	57	56	-	1	57	57	45	57	45	-	-	125

	2025					2026(2026.7월말)							2027 예산안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국외업무여비(220-02)	65	65	61	-	4	65	65	32	65	32	-	-	65
-사업추진비(240-01)	7	7	7	-	-	7	7	4	7	4	-	-	7
-정책연구비(260-02)	50	50	50	-	-	50	50	20	50	20	-	-	30
・해외진출기업 국제법률지원	337	337	329	-	8	273	273	197	273	197	-	-	234
-일반수용비(210-01)	270	270	263	-	7	206	206	146	206	146	-	-	161
-임차료(210-07)	6	6	6	-	-	6	6	3	6	3	-	-	12
-국외업무여비(220-02)	49	49	48	-	1	49	49	42	49	42	-	-	49
-사업추진비(240-01)	12	12	12	-	-	12	12	6	12	6	-	-	12
・국제법무 예방역량 강화	-	-	-	-	-	-	-	-	-	-	-	-	142
-일반수용비(210-01)	-	-	-	-	-	-	-	-	-	-	-	-	18
-일반용역비(210-14)	-	-	-	-	-	-	-	-	-	-	-	-	124
・전문위원 운영	-	-	-	-	-	58	58	33	58	33	-	-	90
-상용임금(110-03)	-	-	-	-	-	48	48	27	48	27	-	-	74
-복리후생비(210-12)	-	-	-	-	-	1	1	1	1	1	-	-	1
-고용부담금(320-09)	-	-	-	-	-	9	9	5	9	5	-	-	15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정부부처 등 국제법무 법률지원) 정부부처 등이 당사자인 주요 국제소송 법률지원 및 해외진출기업(중소·중견기업) 법률지원 등을 통해 국제법무 대응 역량 강화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의3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조의3

② 추진경위

- (추진배경) ’23. 8. 8. 국제법무국 및 국제법무지원과 신설에 따라 정부부처 등이 당사자인 주요 국제소송 직접 수행 등 법률지원, 해외진출기업 법률지원, 국제규범 동향 파악 및 분석 등 업무 추진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24.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3	2024	2025	2026	2027(안)
사업비	-	381	516	510	693

- 기타: 해당 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법무부 국제법무국 국제법무지원과
- 사업 수혜자 : 정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중소·중견기업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7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

① 국제소송 법률지원 및 국제법무동향 분석

: (2026 본예산) 179백만원 → (2027 요구) 227백만원, 48백만원 증액

- (요구) 최근 국제소송·중재는 전문 기술 분야가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어 법률검토 과정에서 관련 기술 분야에 대한 전문 자문이 필수적으로 요구됨, 국제분쟁 실효적 대응 강화 위해 전년대비 48백만원 증액 요구
- (산출) 국제소송·중재 법률지원 132백만원
  국제회의 참석 및 국제규범 조사 65백만원
  국제법무동향 정책연구 30백만원

ㅇ 2026년도 예산 및 2027년도 예산안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6년 본예산		2027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79,000	○ **일반수용비(210-01) : 57,000천원** 가. 국제소송 법률지원 및 국제법무동향분석(51,000천원) ・ 전문가 자문료 : 3,000천원×15건=45,000천원 ・ 외국법령 통번역비 : 3,000원x4개국x500매=6,000천원 나. 국제소송 및 규범 자문회의 운영(6,000천원) ・ 수당 및 자문료 : 400천원x15명=6,000천원 ○ **국외업무여비(220-02) : 65,000천원** 가. 국제규범 관련 국제회의 등 참석(41,504천원) ・ 항공료 등 : 5,188천원x2명x4개국=41,504천원 나. 해외정부 방문 등 규범조사(23,500천원) ・ 항공료 등 : 5,875천원x2명x2개국=23.,500천원 다. 조정재원 (-4천원) ○ **사업추진비(240-01) : 7,000천원** 가. 국제법무동향 분석 관계기관 업무협의(7,000천원) ・ 사업추진비 : 500천원x14회=7,000천원 ○ **정책연구비(260-02) : 50,000천원** 가. 국제법무동향 정책연구(50,000천원) ・ 연구용역비 : 10,000천원x1회+20,000천원x2회=50,000천원	227,000	○ **일반수용비(210-01) : 125,000천원** 가. 국제소송 법률지원 및 국제법무동향분석(125,000천원) ・ 전문가 자문료 : 5,000천원×25건=125,000천원 ○ **국외업무여비(220-02) : 65,000천원** 가. 국제규범 관련 국제회의 등 참석(41,504천원) ・ 항공료 등 : 5,188천원x2명x4개국=41,504천원 나. 해외정부 방문 등 규범조사(23,500천원) ・ 항공료 등 : 5,875천원x2명x2개국=23.,500천원 다. 조정재원 (-4천원) ○ **사업추진비(240-01) : 7,000천원** 가. 국제법무동향 분석 관계기관 업무협의(7,000천원) ・ 사업추진비 : 500천원x14회=7,000천원 ○ **정책연구비(260-02) : 30,000천원** 가. 국제법무동향 정책연구(30,000천원) ・ 연구용역비 : 15,000천원x2회=30,000천원

② 해외진출기업 국제법률지원

: (2026 본예산) 273백만원 → (2026 요구) 234백만원, 39백만원 감액

- (요구) 해외진출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국외 현지 법률상담회 개최는 확대하고, 해외진출기업 법률자문을 체계화를 통한 중복 자문 방지 및 사업 우선순위 조정 등 사업 효율화를 추진하여 전년대비 39백만원 감액 요구
- (산출) 해외진출기업 법률지원 등 161백만원
  국외 상담회 개최 등 국제 법무협력 강화 61백만원
  국외 업무지원 등 12백만원

ㅇ 2026년도 예산 및 2027년도 예산안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6년 본예산		2027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273,000	○ **일반수용비(210-01) : 206,000천원** 가. 해외진출기업 법률지원 강의 등 개최(78,160천원) ・ 법률설명회 강사료 : 360천원×6건=2,160천원 ・ 법률상담·자문료 등 : 1,000천원x72건=72,000천원 ・ 동시통역비 : 2,000천원x2회=4,000천원 나. 해외진출기업 법률지원 책자 등 발간(39,200천원) ・ 원고료 : 5,000천원x4종=20,000천원 ・ 인쇄비 등 : 16,000원x4종x300부=19,200천원 다. 해외진출기업 온라인 법률지원(89,000천원) ・ 자문료 : 1,000천원x89회=89,000천원 라. 조정재원 (-360천원) ○ **임차료(210-07) : 6,000천원** 가. 해외진출기업 대상 강연장 등 대관료(6,000천원) ・ 임차료 : 3,000천원x2회=6,000천원 ○ **국외업무여비(220-02) : 49,000천원** 가. 해외진출기업 법률지원 설명회 참석(23,440천원) ・ 항공료 등 : 2,930천원x2명x4개국=23,440천원 나. 해외진출기업 지원을 위한 외국정부와의 법무협력 강화 (25,635천원) ・ 항공료 등 : 2,136천원x6명x2개국=25,635천원 다. 조정재원 (-75천원) ○ **사업추진비(240-01) : 12,000천원** 가. 해외진출기업 강의 지원(4,800천원) ・ 사업추진비 : 400천원x12회=4,800천원 나. 국외업무 지원 경비(7,452천원) ・ 사업추진비 : $5,400×1회 = 7,452천원 다. 조정재원 (-252천원)	234,000	○ **일반수용비(210-01) : 161,000천원** 가. 해외진출기업 법률지원 강의 등 개최(131,160천원) ・ 법률설명회 강사료 : 360천원×6건=2,160천원 ・ 법률상담·자문료 등 : 1,000천원x129건=129,000천원 나. 해외진출기업 법률지원 책자 등 발간(29,940천원) ・ 원고료 : 5,000천원x3종=15,000천원 ・ 인쇄비 등 : 16,600원x3종x300부=14,940천원 라. 조정재원 (-100천원) ○ **임차료(210-07) : 12,000천원** 가. 해외진출기업 대상 강연장 등 대관료(12,000천원) ・ 임차료 : 3,000천원x4회=12,000천원 ○ **국외업무여비(220-02) : 49,000천원** 가. 해외진출기업 법률지원 설명회 참석(23,440천원) ・ 항공료 등 : 2,930천원x2명x4개국=23,440천원 나. 해외진출기업 지원을 위한 외국정부와의 법무협력 강화 (25,635천원) ・ 항공료 등 : 2,136천원x6명x2개국=25,635천원 다. 조정재원 (-75천원) ○ **사업추진비(240-01) : 12,000천원** 가. 해외진출기업 강의 지원(4,800천원) ・ 사업추진비 : 400천원x12회=4,800천원 나. 국외업무 지원 경비(7,452천원) ・ 사업추진비 : $5,400×1회 = 7,452천원 다. 조정재원 (-252천원)

③ 국제법무 예방역량 강화

: (2026 본예산) 0백만원 → (2026 요구) 142백만원, 순증

- (요구) AI 기반 국제투자분쟁 리스크 분석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관계부처와 실무협의체를 신설 및 운영하는 등 국제법무 예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142백만원 예산(신규) 요구
- (산출) AI 기반 리스크 분석 프로그램 구축 124백만원
  국제법무 실무협의체 운영 18백만원

ㅇ 2026년도 예산 및 2027년도 예산안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6년 본예산		2027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	-	142,000	○ **일반수용비(210-01) : 18,000천원** 가. 국제법무 실무협의체 운영(18,000천원) ・ 실무협의체 운영 9,000천원×2건=18,000천원 ○ **일반용역비(210-14) : 124,000천원** 나. AI 기반 리스크 분석 프로그램 구축(124,000천원) ・ 시스템 구축 및 운영 124,000천원×1식=124,000천원

④ **전문위원 운영**

: (2026 본예산) 58백만원 → (2026 요구) 90백만원, 32백만원 증액

- (요구) '26년 배정된 전문 연구위원 인건비가 채용 공고 등 채용 기간을 고려한 9개월분만 편성되어 있어 12개월분으로 확대가 필요하여 전년대비 32백만원 증액 요구
- (산출) 인건비 90백만원

ㅇ 2026년도 예산 및 2027년도 예산안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6년 본예산		2027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57,604	○ **상용임금(110-03) : 47,700천원** 가. 보수 : 4,672,617원x9개월x1명=42,054천원 나. 명절휴가비 : 4,672,617원x60%x1회(추석)x1명=2,804천원 다. 정액급식비 : 140,000원*9개월x1명=1,260천원 라. 초과근무수당 : 37,893원x3시간x9개월x1명=1,023천원 마. 연가보상비 : 202,100원x3일x1명=606천원 바. 조정재원 (+23천원) ○ **복리후생비(210-12) : 375천원** 가. 복리후생비 : 500천원x9/12개월x1명=375천원 ○ **고용부담금(320-09) : 9,459천원** 가. 47,700천원x19.55%=9,325천원 나. 조정재원 (+134천원)	89,878	○ **상용임금(110-03) : 74,330천원** 가. 보수 : 4,873,540원x12개월x1명=58,482천원 나. 명절휴가비 : 4,873,540원x60%x2회x1명=5,848천원 다. 정액급식비 : 160,000원*12개월x1명=1,920천원 라. 초과근무수당 : 39,625원x15시간x12개월x1명=7,133천원 마. 연가보상비 : 202,100원x4일x1명=808천원 바. 조정재원 (+139천원) ○ **복리후생비(210-12) : 600천원** 가. 복리후생비 : 600천원x12/12개월x1명=600천원 ○ **고용부담금(320-09) : 14,948천원** 가. 74,330천원x19.8%=14,948천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3~2027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3	2024	2025	2026	2027	2027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국제소송지원 및 국제투자분쟁 대응 (단위: 건)	목표	-	50 (신규)	51.5	(삭제)	(삭제)	'26.부터 '국제법무활동 프로그램'이 '법무활동' 프로그램으로 통합됨에 따라 삭제	관계부처 등 회의 건수 + 심리기일·재판 및 관련 국제회의 참석건수 + 각종 서면·증거 검토 및 제출 건수 + 자문건수 + 보도자료 및 알림자료 건수	관련 공문, 제출서면, 보고서 등
	실적	-	50	-	-	-			
	달성도	-	100%	-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3	○ 국제법무지원과 신설('23. 8. 8.) ○ 해외진출기업 법률자문 총 370건
2024	○ 해외진출기업 법률자문 총 423건 ○ 해외진출기업 대상 강의 등 법률설명회 개최 총 29회 - 해외 현지 설명회 4회 개최('24. 5. 브라질, '24. 7. 베트남, 홍콩, '24. 9. 독일) - 국내 온·오프라인 설명회 25회(대한상공회의소, 무역협회 등 공동 개최) ○ 관련 자료 책자 발간 3권 - 글로벌 준법경영 가이드북 - 해외진출기업 법률 길라잡이(2024 최신동향) - 해외진출기업 법률 길라잡이(독일편)
2025	○ 해외진출기업 법률자문 총 485건 ○ 해외진출기업 대상 강의 등 법률설명회 개최 총 20회 - 해외 현지 설명회 6회 개최('25. 3. 키르기스스탄, '25. 4. 독일 프랑크푸르트·베를린, '25. 7. 인도. '25. 9. 베트남 '25. 12. 프랑스) - 국내 온·오프라인 설명회 14회(대한상공회의소, 무역협회 등 공동 개최) ○ 관련 자료 책자 발간 2권 - 해외진출기업 법률 길라잡이(UAE편) - 해외진출기업 법률 길라잡이(일본편, 근간)
2026	○ 법무부-우크라이나 법률설명회 및 상담회 개최 ○ 해외진출기업 법률 길라잡이(호주편) 발간 ○ 중동 정세 악화 및 호르무즈 해협 봉쇄 위기 관련 「우리 기업의 불가항력 대응 전략」 안내자료 제작 및 배포 등

③ 향후(2027년도 이후) 기대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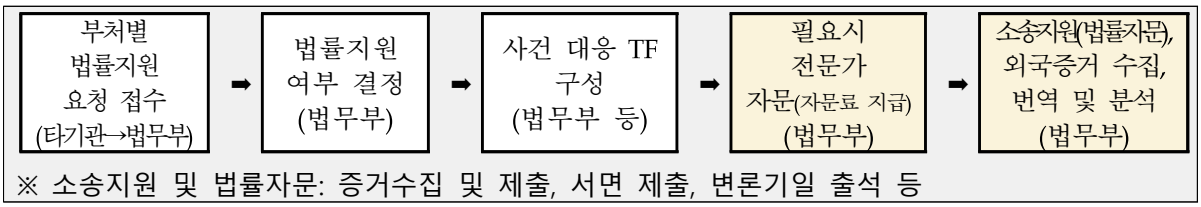
- 정부부처 등이 당사자인 주요 국제소송 직접 수행 및 법률 자문 제공을 통해 적극 대응하여 국고 손실을 방지
- 국제규제·규범 동향 모니터링 및 리서치, 세부내용 검토를 통해 정부 시책 등에 영향을 미칠 소지가 있는 부분들을 미리 추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대응방안 마련하는 등 사전 리스크 관리하여 각종 국제 이슈에 기민하게 대응
- 해외 법률기관, 해외 현지 법률가로 구성된 전문가 집단 등과의 네트워크 체계 구축하여 정부부처 국제법률 지원에 적극 활용
- 고부가가치 산업에 종사하는 중소·중견기업 대상 해외진출 법률지원 제공을 통해 국가 수출전략인 원전, 방산, 해외 건설, 콘텐츠 등 산업의 수출·수주 확대 지원 실현 일조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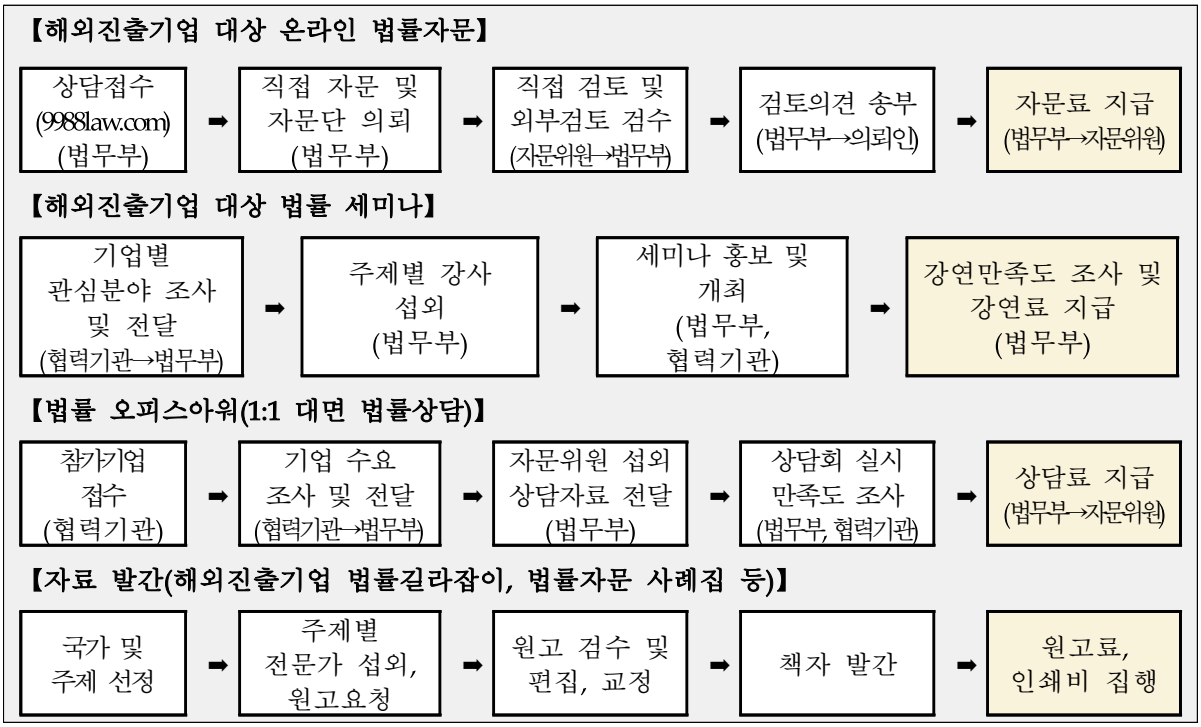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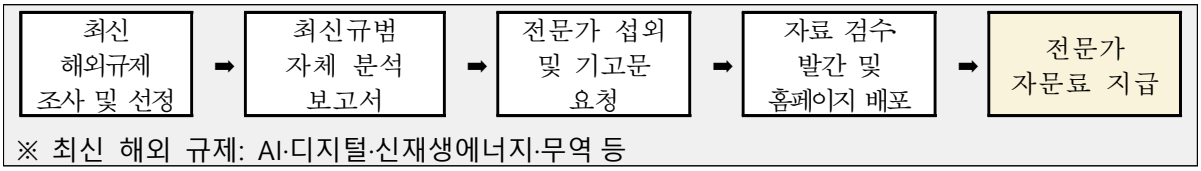
- 부처별 법률지원



- 해외진출기업 법률지원(법률 세미나 및 대면 법률 상담 진행, 자료 발간)



- 최신 해외 규제 동향 모니터링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25~2029	516	381	381	381	381	
2026~2030		510	693	714	735	757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우리나라 정부, 지자체 등과 관련된 각종 국제소송 대응을 위해 국제법무지원과가 신설되었지만 이를 대응할 전문인력이 전무한 상황으로 인력 증원(2명) 및 인건비 증액 필요성이 있음(법사위, 25예산)
   - 최근 외국기업들이 제기하는 소송들이 늘어나고 있어 국익을 지키기 위한 보다 충실한 법률지원이 요구되는데, 현재 국제소송을 담당하는 부서에 전문위원 등 인력이 부족해 보여 그 보강을 위한 공무직 인건비 증액 필요성이 있음(예결위, 25예산)

2) 감사원 감사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 해당없음

3) 자체평가·감사 : 해당없음

4)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 해당없음

5)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향후 기재부와 협의하여 전문인력 증원 및 인건비 증액을 적극 추진하여 '26년 예산에 반영됨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정부부처 등이 당사자인 국내·외 국제소송 中 소가, 사회적 파급효 등 기준으로 주요 국제소송 직접 수행 및 종합적 법률자문 제공
- 해외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을 대상 온·오프라인 법률자문, 현지 법률설명회·상담회 등 개최 통해 해외진출기업 법률지원 강화
- 미국, EU, 중국 등 우리나라의 핵심산업 및 수입·수출에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대상국들을 중심으로 안보·환경·디지털·투자 등 분야의 주요 규범·규제에 대한 리서치를 실시하고, 관련 주요 국제회의 참가하여 동향 파악, 정부의견 개진, 국내 전파 등 시행
- 주요 교역 국가를 중심으로 디지털·ESG·AI·투자 등 최신분야의 중요 규범·규제에 대한 리서치 및 분석, 중·장기적 대응 방안 마련하고, 관련 국제회의 협의체 등에 참석하여 정부입장 개진 및 국내법과의 법률 정합성 제고에 기여
- 외교부, KOTRA 등을 통한 현지 사정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평가를 기초로, 국내 소관부처와 외국 정부기관 간 우리기업 지원(상호 상대방 국가 기업 지원)을 위한 법무협력 강화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 없음

12) 동 사업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 : 해당 없음

13) 2026년도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 결과 및 후속 조치 현황 : 해당 없음

14) 부처 건의사항 : 해당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3	-	-	-	-	-	-	-	-	-	-	-	-
2024	381	-	381	-	-	-	381	360	94.5	94.5	-	21
2025	516	-	516	-	-	-	516	503	97.5	97.5	-	13
2026	510	-	510	-	-	-	510	331	64.9	64.9	-	-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 해당 없음

2) 주요 결산사항

□ 2023~2026년 결산사항

2024	- '이·전용 등'의 상세내역 기술 : 해당없음 - 예비비 배정 사유 : 해당없음 - 추경 편성 사유 : 해당없음 - 이월 사유 및 불용 사유(집행부진사유) : 총 21백만원 불용 발생, 예산 편성 첫 해('24)로서 국제소송 및 국제법무 전문가풀 분석 및 확보 절차, 소송 진행과 자문 회신에 일부 지연이 발생하여 12백만원 불용, 국회 출장 관련 항공기 결항 등에 따른 환불 등 7백만원 불용, 연구용역 부가세 면제에 따라 2백만원 불용
2025	- '이·전용 등'의 상세내역 기술 : 해당없음 - 예비비 배정 사유 : 해당없음 - 추경 편성 사유 : 해당없음 - 이월 사유 및 불용 사유 : 집행잔액 13백만원
2026	- 해당 없음

□ 2026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 없음

□ 2026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 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 해당 없음

사 업 명
국제거래 및 국제통상 법률지원 (1032-3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법무부	국제법무국		020	022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000	1032	301
명칭	법무활동	국제법무운영및외국법제연구	국제거래및국제통상법률지원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6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국제거래 및 국제통상 법률지원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국제법무국	최성겸	박노화	박상아
		국제법무정책과	02-2110-4533	02-2110-4534	02-2110-4536
	사업시행주체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년 결산	2026년 예산		2027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요구안	조정안(B)		(B-A)/A
국제거래 및 국제통상 법률지원	702	842	842	877	877	35	4.2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25					2026(2026.7월말)							2027 예산안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734	738	702	22	15	842	864	559	842	537	-	-	877
· 국제거래규범 성안·도입	165	177	167	10	-	265	275	210	265	200	-	-	275
· 법률서비스 국제경쟁력 강화	117	109	99	10	-	117	127	106	117	96	-	-	117
· 기업·청년 해외진출지원	88	88	88	-	-	88	88	4	88	4	-	-	88
· 통상협상 법률지원	80	80	80	-	-	80	80	69	80	69	-	-	80
· 법무분야 국제협력	60	60	60	-	-	60	60	46	60	46	-	-	71
·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17	17	15	2	-	17	19	8	17	6	-	-	17
· 공무직 보수	207	207	193	-	15	215	215	116	215	116	-	-	228
○ 비목별 분류(합계)	734	738	702	22	15	842	864	559	842	537	-	-	877
· 상용임금(110-03)	172	172	161	-	11	179	179	104	179	104	-	-	188
· 일반수용비(210-01)	235	223	223	-	-	261	261	136	260	136	-	-	261
· 공공요금및제세(210-02)	7	7	7	-	-	7	7	6	7	6	-	-	7
· 임차료(210-07)	15	27	27	-	-	15	15	7	15	7	-	-	15
· 복리후생비(210-12)	2	2	2	-	-	2	2	1	2	1	-	-	2
· 국내여비(220-01)	7	7	7	-	-	7	7	6	7	6	-	-	7
· 국외여비(220-02)	195	195	195	-	-	246	246	216	246	216	-	-	258
· 사업추진비(240-01)	21	21	21	-	-	25	25	22	25	22	-	-	26
· 특정업무비(250-03)	12	12	12	-	-	11	11	10	11	10	-	-	10
· 정책연구비(260-02)	30	34	12	22	-	50	72	36	50	14	-	-	50

	2025					2026(2026.7월말)							2027 예산안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고용부담금(320-09)	34	34	30	-	4	35	35	11	35	11	-	-	38
·국제부담금(340-02)	4	4	4	-	-	4	4	4	4	4	-	-	15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734	738	702	22	15	842	864	559	842	537	-	-	877
·국제거래규범 성안·도입	165	177	167	10	-	265	275	210	265	200	-	-	275
-일반수용비(210-01)	26	26	26	-	-	51	51	30	51	30	-	-	51
-임차료(210-07)	15	27	27	-	-	15	15	7	15	7	-	-	15
-국외여비(220-02)	109	109	109	-	-	160	160	140	160	140	-	-	170
-사업추진비(240-01)	5	5	5	-	-	9	9	9	9	9	-	-	9
-정책연구비(260-02)	10	10	-	10	-	30	40	24	30	14	-	-	30
·법률서비스 국제경쟁력 강화	117	109	99	10	-	117	127	106	117	96	-	-	117
-일반수용비(210-01)	81	69	69	-	-	81	81	71	81	71	-	-	81
-국내여비(220-01)	4	4	4	-	-	4	4	3	4	3	-	-	4
-국외여비(220-02)	15	15	15	-	-	15	15	15	15	15	-	-	15
-사업추진비(240-01)	7	7	7	-	-	7	7	7	7	7	-	-	7
-정책연구비(260-02)	10	14	4	10	-	10	20	10	10	-	-	-	10
·기업·청년 해외진출지원	88	88	88	-	-	88	88	4	88	4	-	-	88
-일반수용비(210-01)	87	87	87	-	-	87	87	4	87	4	-	-	87
-사업추진비(240-01)	1	1	1	-	-	1	1	-	1	-	-	-	1
·통상협상 법률지원	80	80	80	-	-	80	80	69	80	69	-	-	80
-일반수용비(210-01)	30	30	30	-	-	30	30	20	30	20	-	-	30
-국내여비(220-01)	3	3	3	-	-	3	3	3	3	3	-	-	3
-국외여비(220-02)	43	43	43	-	-	43	43	43	43	43	-	-	45
-사업추진비(240-01)	3	3	3	-	-	3	3	3	3	3	-	-	3
·법무분야 국제협력	60	60	60	-	-	60	60	46	60	46	-	-	71
-일반수용비(210-01)	9	9	9	-	-	9	9	9	9	9	-	-	9
-공공요금및제세(210-02)	7	7	7	-	-	7	7	6	7	6	-	-	7
-국외여비(220-02)	24	24	24	-	-	24	24	14	24	14	-	-	24
-사업추진비(240-01)	4	4	4	-	-	4	4	3	4	3	-	-	4

	2025					2026(2026.7월말)							2027 예산안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특정업무비(250-03)	12	12	12	-	-	11	11	10	11	10	-	-	11
-국제부담금(340-02)	4	4	4	-	-	4	4	4	4	4	-	-	15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17	17	15	2	-	17	19	8	17	6	-	-	17
-일반수용비(210-01)	2	2	2	-	-	2	2	2	2	2	-	-	2
-국외여비(220-02)	4	4	4	-	-	4	4	4	4	4	-	-	4
-사업추진비(240-01)	1	1	1	-	-	1	1	-	1	-	-	-	1
-정책연구비(260-02)	10	10	8	2	-	10	12	2	10	-	-	-	10
・공무직 보수	207	207	193	-	15	215	215	116	215	116	-	-	228
-상용임금(110-03)	172	172	161	-	11	179	179	104	179	104	-	-	188
-복리후생비(210-12)	2	2	2	-	-	2	2	1	2	1	-	-	2
-고용부담금(320-09)	34	34	30	-	4	35	35	11	35	11	-	-	38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국제거래규범 성안·도입) 선진적인 민·상사 법제를 구축하기 위해 UN국제상거래법위원회, 국제사법회의 등 국제회의에 참석하여 신규 국제규범 성안 과정부터 우리의 입장을 반영하고, 논의 결과를 분석하여 국내 도입 및 이행 추진
- (법률서비스 국제경쟁력 강화) 외국법자문사 관리·감독, 「통상법률」 학술지 발간 등 법률시장 개방에 대응하여 법률서비스의 국제경쟁력 강화 추진
- (기업·청년 해외진출지원) 해외진출기업 국제법무지원단 운영, 청년법조인 대상 국제법무 전문 교육과정인 'O.K.아카데미' 및 국제기구·로펌 실습 프로그램 '글로벌 펠로우십' 진행
- (통상협상 법률지원) FTA, BIT 등 통상·투자 협정 제·개정 시 법률자문역으로 참여하여 상대국과의 세부 문언 협상을 지원하고, 관련 법률검토 실시
- (법무분야 국제협력) 해외 법무요인 등과 국제법무 관련 교류 및 타국과 법무협력협정 체결 등을 추진하고 해외 주재 법무협력관 자료 공유 및 회의 운영

-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12. 가입한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의 중앙당국으로서 아동반환을 위한 행정지원, 관련 제도개선 및 각 국 중앙당국과의 네트워크 구축
- (공무직 보수) 국제업무 특성상 필수적인 영문 에디터 및 국제법 전문위원 운용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정부조직법 제32조(법무부)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의3(국제법무국)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조의3(국제법무국)

② 추진경위

- ’09. 한-미 FTA 후속조치로 ‘외국법자문사법’ 제정 및 시행
- ’10. 법무부 주요 정책 및 최신 판례 등을 소개하는 「Recent Trends of Law & Regulation in Korea」영문저널 발간 시작
- ’12.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가입, ’13. 3. 이행법률 제정 및 시행
- ’13. ‘청년 취업·창업 활성화 및 해외진출지원’이 국정과제로 선정되어 ’14.부터 ‘O.K 아카데미(청년법조인 해외진출사업)’ 추진
- ’18. 캄보디아·세계지식재산기구(WIPO), ’19. 카타르·홍콩, ’20. 세계은행 등 다른 나라 및 국제기구와 법무협력협정 체결
- ’19. 외국법자문사 22명 자격승인 및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3건 설립인가, 찾아가는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설명회 총 7회 개최, 해외진출 중소기업 총 294건 자문,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사건 지원(누계 50건, 신규 6건), 해외 로펌·국제기구 등에 청년법조인 총 45명 파견
- ’20. OECD 경쟁위원회 등 국제회의와 한-중 FTA, RCEP 등 각종 통상협상 참석 및 관련 자문 제공, 해외진출 중소기업 총 268건 자문, 외국법자문사 및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자격승인 12건,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사건 지원(신규 12건) 등
- ’21. 「싱가포르조정협약」이행법률 제정 T/F 발족, 「국제사법」 전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제규범 관련 국내·외 회의 참석 총 40회, 각종 통상협상 참석 총 32회 및 관련 법률자문 총 30건, 해외진출 중소기업 총 324건 자문, 외국법자문사 8명 자격승인 및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1건 설립인가 등
- ’22. UN국제상거래법위원회 6개 실무작업반 및 본회의 등 참석, 미국 국무부(헤이그 아동탈취협약 중앙당국) 면담, 국제거래법연구단 정례회의 개최, 외국법자문사 15명 자격승인 및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2건 설립인가 등

- ’23. ‘국제법무국 신설’에 따른 조직개편 및 사업확대, 사법통일국제연구소(UNIDROIT) 총회 등 법무 관련 국제회의 13회 참석,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세미나 개최 3회, 「통상법률」의 ‘등재학술지’ 재승격 등
- ’24. UN국제상거래법위원회 본회의 및 5개 실무작업반 등 국제회의 11회 참석,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세미나 개최 2회, 「싱가포르 조정협약」 이행법률 제정 T/F 운영 재개, 외국법자문사 10명 자격승인 및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2건 설립인가 등
- ’25. 유럽평의회 인공지능위원회, UN국제상거래법위원회 등 국제회의 10회 참석,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세미나 개최 2회, 「싱가포르 조정협약」 이행법률 제정 T/F 운영, 외국법자문사법 개정위원회 발족 및 운영, 외국법자문사 9명 자격승인 등
- ’26. 유럽평의회 인공지능위원회, UN국제상거래법위원회 등 국제회의 9회 참석, 유럽평의회 신기술운영위원회 옵저버 가입,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세미나 개최 2회, 국제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고위급 예방 2회, 국제중재 활성화를 위한 계약학과 신설 협의, 외국법자문사법 개정위원회 발족 및 운영, 외국법자문사 5명 자격승인 등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04.~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3	2024	2025	2026	2027(안)
사업비	743	728	734	842	877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법무부 국제법무국
- 사업 수혜자 :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3) 2027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

① 국제거래규범 성안·도입

: (2026 본예산) 265 → (2027 요구) 275백만원, 10백만원 증액

- (요구) AI 국제규범 질서 주도를 위해 국제회의 참석 범위 확대, AI 협약 가입 검토·절차 진행, 국내 이행법률 제·개정 추진 등을 위해 증액
- (산출) 국제회의 참석 등 161백만원
  국제세미나 개최 84백만원
  관련 연구용역 30백만원

ㅇ 2026년도 예산 및 2027년도 예산안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6년 본예산		2027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264,505	**○ 일반수용비(210-01) : 50,945천원** 가. 국제세미나 개최 (35,380천원) ・ 홍보물 제작 등 : 17,690천원×2회=35,380천원 나. 국제규범 관련 제·개정 추진 등 (15,565천원) ・ 회의 등 운영경비 : 15,565천원 다. 조정재원 (62천원) **○ 임차료(210-07) : 15,000천원** 가. 국제세미나 개최 행사장 임차 (15,000천원) ・ 5,000천원x3회=15,000천원 **○ 국외업무여비(220-02) : 159,638천원** 가. UNCITRAL 등 국제회의 참석(127,788천원) ・ 4,564천원x2명x14회=127,788천원 나. 국제세미나 관련 외빈 초청(31,850천원) ・ 4,550천원x7개국=31,850천원 **○ 사업추진비(240-01) : 8,860천원** 가. 국제규범 제·개정 관련 활동경비 (7,000천원) ・ 간담회 : 1,000천원×1회=1,000천원 ・ 관계기관 업무협의 : 500천원×8회=4,000천원 ・ 대외교섭비 : 400천원×5회=2,000천원 나. 국제세미나 관련 업무협의 (1,600천원) 다. 조정재원 (260천원) **○ 정책연구비(260-02) : 30,000천원** 가. 국제거래규범 관련 연구용역 (3,000천원) ・ 10,000천원×1회+20,000천원x1회=30,000천원	274,751	**○ 일반수용비(210-01) : 50,945천원** 가. 국제세미나 개최 (35,380천원) ・ 홍보물 제작 등 : 17,690천원×2회=35,380천원 나. 국제규범 관련 제·개정 추진 등 (15,565천원) ・ 회의 등 운영경비 : 15,565천원 다. 조정재원 (62천원) **○ 임차료(210-07) : 15,000천원** 가. 국제세미나 개최 행사장 임차 (15,000천원) ・ 5,000천원x3회=15,000천원 **○ 국외업무여비(220-02) : 169,446천원** 가. UNCITRAL 등 국제회의 참석(137,596천원) ・ 4,914천원x2명x14회=137,596천원 나. 국제세미나 관련 외빈 초청(31,850천원) ・ 4,550천원x7개국=31,850천원 **○ 사업추진비(240-01) : 9,360천원** 가. 국제규범 제·개정 관련 활동경비 (7,500천원) ・ 간담회 : 1,000천원×1회=1,000천원 ・ 관계기관 업무협의 : 500천원×9회=4,500천원 ・ 대외교섭비 : 400천원×5회=2,000천원 나. 국제세미나 관련 업무협의 (1,600천원) 다. 조정재원 (260천원) **○ 정책연구비(260-02) : 30,000천원** 가. 국제거래규범 관련 연구용역 (3,000천원) ・ 10,000천원×1회+20,000천원x1회=30,000천원

② 법률서비스 국제경쟁력 강화

: (2026 본예산) 117백만원 → (2027 요구) 117백만원, 전년동

- (요구) 법률시장 개방에 대응하고 법률서비스의 지속적인 국제경쟁력 강화 필요성에 따라 전년 수준의 예산 요구
- (산출) 국제법 연구역량 강화 52백만원
  법률시장 개방 대응 55백만원
  관련 연구용역 10백만원

ㅇ 2026년도 예산 및 2027년도 예산안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6년 본예산		2027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17,020	○ **일반수용비(210-01) : 81,225천원** 가. 국제법 연구 역량 강화 (18,000천원) ・ 사무용품 구입 등 : 2,000천원×4회=8,000천원 ・ 연구책자 등 참고자료 구입 : 10,000천원×1회=10,000천원 나. '국제법무연구' 발간 (26,225천원) ・ 인쇄비 등 : 3,169천원x4회=12,675천원 ・ 원고료 및 심사료 : (500천원+300천원)x4편x4회 ・ 편집위원회 수당 : 5명x150천원 다. 영문잡지 발간 (21,000천원) ・ 인쇄비 등 : 6,000천원x3회=18,000천원 ・ 관련 번역비 : 1,000천원x3회=3,000천원 라. 법률시장 개방 대응 및 법률서비스 선진화 (14,000천원) ・ 도서구입 등 : 800천원x2회=1,600천원 ・ 연구자료 발간 : 3,200천원x2종=6,400천원 ・ 홍보비 : 2,400천원x1회=2,400천원 ・ 번역비 : 300천원x1회=300천원 ・ 법률시장 개방 전문가 사례금 : 500천원x1회=500천원 ・ 법률시장 리서치 비용 : 1,400천원x2회=2,800천원 마. 외국법자문사 관리·감독 (2,000천원) ・ 운영비 : 250천원x1식 ・ 자료수집 등 : 1,250천원x1식 ・ 제도 홍보비 : 500천원x1회 ○ **국내여비(220-01) : 4,004천원** 가. 법률시장 개방 대응 및 법률서비스 홍보 (4,004천원) ・ 167천원x2명x12회=4,004천원 ○ **국외업무여비(220-02) : 14,891천원** 가. 법률시장 개방 대응 및 법률서비스 홍보 (14,891천원) ・ 4,894천원x2명x1회=9,788천원 ・ 2,551천원x2명x1회=5,103천원 ○ **사업추진비(240-01) : 6,900천원** 가. 법률서비스 경쟁력 강화 간담회 등 (6,900천원) ・ 1,000천원×6회=6,000천원 ・ 900천원×1회=900천원 ○ **정책연구비(260-02) : 10,000천원** 가. 법률시장 개방 대비 관련 연구용역 (1,000천원) ・ 10,000천원×1회=10,000천원	117,701	○ **일반수용비(210-01) : 81,325천원** 가. 국제법 연구 역량 강화 (14,000천원) ・ 사무용품 구입 등 : 2,000천원×2회=4,000천원 ・ 연구책자 등 참고자료 구입 : 10,000천원×1회=10,000천원 나. '국제법무연구' 발간 (26,225천원) ・ 인쇄비 등 : 3,169천원x4회=12,675천원 ・ 원고료 및 심사료 : (500천원+300천원)x4편x4회 ・ 편집위원회 수당 : 5명x150천원 다. 영문잡지 발간 (12,000천원) ・ 인쇄비 등 : 6,000천원x2회=12,000천원 라. 법률시장 개방 대응 및 법률서비스 선진화 (27,100천원) ・ 연구자료 발간 : 3,200천원x2종=6,400천원 ・ 홍보비 : 2,400천원x1회=2,400천원 ・ 법률시장 개방 전문가 사례금 : 500천원x1회=500천원 ・ 법률시장 리서치 비용 : 1,400천원x2회=2,800천원 ・ 국제중재 경쟁력 강화 : 15,000천원 마. 외국법자문사 관리·감독 (2,000천원) ・ 운영비 : 250천원x1식 ・ 자료수집 등 : 1,250천원x1식 ・ 제도 홍보비 : 500천원x1회 ○ **국내여비(220-01) : 4,004천원** 가. 법률시장 개방 대응 및 법률서비스 홍보 (4,004천원) ・ 167천원x2명x12회=4,004천원 ○ **국외업무여비(220-02) : 15,472천원** 가. 법률시장 개방 대응 및 법률서비스 홍보 (15,472천원) ・ 5,054천원x2명x1회=10,109천원 ・ 2,681천원x2명x1회=5,363천원 ○ **사업추진비(240-01) : 6,900천원** 가. 법률서비스 경쟁력 강화 간담회 등 (6,900천원) ・ 1,000천원×6회=6,000천원 ・ 900천원×1회=900천원 ○ **정책연구비(260-02) : 10,000천원** 가. 법률시장 개방 대비 관련 연구용역 (1,000천원) ・ 10,000천원×1회=10,000천원

③ 기업·청년 해외진출지원

: (2026 본예산) 88백만원 → (2027 요구) 88백만원, 전년동

- (요구) 우리 기업 등의 해외진출이 활발해지며 자문 및 법률지원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사업의 지속 추진을 위해 전년 수준의 예산 요구
- (산출) 해외진출기업 법률지원 82백만원
  청년법조인 해외진출지원 6백만원

ㅇ 2026년도 예산 및 2027년도 예산안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6년 본예산		2027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87,600	○ **일반수용비(210-01) : 86,600천원** 가. 해외진출기업 국제법무지원단 운영 (81,000천원) ・ 자문료 : 374천원×190회=71,000천원 ・ 자료발간 : 10,000천원×1회=10,000천원 나. 청년법조인 해외진출지원 (5,600천원) ・ 강사료 : 300천원x12회=3,600천원 ・ 교육자료발간 : 2,000천원x1회=2,000천원 ○ **사업추진비(240-01) : 1,000천원** 가. 해외진출기업 국제법무지원단 간담회 (1,000천원) ・ 1,000천원x1회=1,000천원	87,600	○ **일반수용비(210-01) : 86,600천원** 가. 해외진출기업 국제법무지원단 운영 (81,000천원) ・ 자문료 : 374천원×190회=71,000천원 ・ 자료발간 : 10,000천원×1회=10,000천원 나. 청년법조인 해외진출지원 (5,600천원) ・ 강사료 : 300천원x12회=3,600천원 ・ 교육자료발간 : 2,000천원x1회=2,000천원 ○ **사업추진비(240-01) : 1,000천원** 가. 해외진출기업 국제법무지원단 간담회 (1,000천원) ・ 1,000천원x1회=1,000천원

④ 통상협상 법률지원

: (2026 본예산) 80백만원 → (2027 요구) 80백만원, 전년동

- (요구) 신규 통상·투자 협상 및 기체결된 협정의 개정협상이 진행됨에 따라 주요 협상 참석을 위해 전년 수준의 예산 요구
- (산출) 통상협상 참석 40백만원
  국제법무 법률지원 등 40백만원

ㅇ 2026년도 예산 및 2027년도 예산안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79,918	○ **일반수용비(210-01) : 30,430천원** 가. 국제법무 관련 회의체 운영 (6,418천원) ・ 회의 : 1,640천원×1회=1,640천원 ・ 자료발간 : 1,778천원×1회=1,778천원 ・ 자료구입 : 1,000천원×3회=3,000천원 나. 국제거래법 관련 실무리서치 등 국가업무조력자 사례금 (24,012천원) ・ 115,440원x4명x52주=24,012천원 ○ **국내여비(220-01) : 2,754천원** 가. FTA 등 통상협상 참가 (1,400천원) ・ 100천원x14회=1,400천원 나. 국제법무자문 관련 업무협의 (1,354천원) ・ 150천원x9회=1,354천원 ○ **국외업무여비(220-02) : 43,437천원** 가. 국제통상 관련 협상 (36,086천원) ・ 9,021천원x4회=36,086천원 나. 법률위원회 등 참석 (7,351천원) ・ 7,351천원x1회=7,351천원	81,061	○ **일반수용비(210-01) : 30,430천원** 가. 국제법무 관련 회의체 운영 (6,418천원) ・ 회의 : 1,640천원×1회=1,640천원 ・ 자료발간 : 1,778천원×1회=1,778천원 ・ 자료구입 : 1,000천원×3회=3,000천원 나. 국제거래법 관련 실무리서치 등 국가업무조력자 사례금 (24,012천원) ・ 115,440원x4명x52주=24,012천원 ○ **국내여비(220-01) : 2,754천원** 가. FTA 등 통상협상 참가 (1,400천원) ・ 100천원x14회=1,400천원 나. 국제법무자문 관련 업무협의 (1,354천원) ・ 150천원x9회=1,354천원 ○ **국외업무여비(220-02) : 44,580천원** 가. 국제통상 관련 협상 (37,229천원) ・ 9,307천원x4회=37,229천원 나. 법률위원회 등 참석 (7,351천원) ・ 7,351천원x1회=7,351천원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 **사업추진비(240-01) : 3,297천원** 가. 국제통상 업무협의 (1,297천원) ・ 1,297천원x1회=1,000천원 나. 국제법무 관련 회의체 업무협의 및 간담회 (2,000천원) ・ 1,000천원x2회=2,000천원		○ **사업추진비(240-01) : 3,297천원** 가. 국제통상 업무협의 (1,297천원) ・ 1,297천원x1회=1,000천원 나. 국제법무 관련 회의체 업무협의 및 간담회 (2,000천원) ・ 1,000천원x2회=2,000천원

⑤ 법무분야 국제협력

: (2026 본예산) 60백만원 → (2027 요구) 71백만원, 11백만원 증액

- (요구)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필수 사업 추진을 위해 전년 수준 요구하되, 국제부담금 미납분 해소를 위한 국제부담금 11백만원 증액
- (산출) 법무분야 국제협력 45백만원
  국제부담금 15백만원(+11백만원)
  특정업무경비 10백만원(△1백만원)

ㅇ 2026년도 예산 및 2027년도 예산안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60,313	○ **일반수용비(210-01) : 9,270천원** 가. 국제법무 교류협력 강화 관련 (9,270천원) ・ 인쇄비 : 1,770천원×3회=5,310천원 ・ 자료구입 및 복사 : 240천원×4회=960천원 ・ 비품 구입 등 지원 : 1,000천원×3회=3,000천원 ○ **공공요금 및 제세(210-02) : 7,131천원** 가. 법무교류협력, 국제법 연구 관련 (4,512천원) ・ 자료집 등 발송 : 61,000천원x4회x12월=2,928천원 ・ 전화, FAX 등 : 33,000천원x4회x12월=1,584천원 나. 국제전화 사용료 (1,723천원) ・ 4,488원x32회x12월=1,723천원 다. 해외주재관(미, 일, 스, 중 프 등) 자료송부 (302천원) ・ 33,500천원x9개국=302천원 라. 조정재원 (594천원) ○ **국외업무여비(220-02) : 24,458천원** 가. 법무협력관 귀국보고회의 (17,050천원) ・ 2,131천원x8명x1회=17,050천원 나. 법무협력협정체결 등 해외 법무협력 (7,408천원) ・ 2,469천원x3명x1회=7,408천원 ○ **사업추진비(240-01) : 4,000천원** 가. 외국법무요인 초청 등 국제법무 협력관련 (4,000천원) ・ 500천원×8회=4,000천원 ○ **특정업무경비(250-03) : 11,151천원** 가. 국제규범 관련 정보수집 등 (11,151천원) ・ 5,000천원+6,151천원=11,151천원 ○ **국제부담금(340-02) : 3,999천원**	70,790	○ **일반수용비(210-01) : 9,270천원** 가. 국제법무 교류협력 강화 관련 (9,270천원) ・ 인쇄비 : 1,770천원×3회=5,310천원 ・ 자료구입 및 복사 : 240천원×4회=960천원 ・ 비품 구입 등 지원 : 1,000천원×3회=3,000천원 ○ **공공요금 및 제세(210-02) : 7,131천원** 가. 법무교류협력, 국제법 연구 관련 (4,512천원) ・ 자료집 등 발송 : 61,000천원x4회x12월=2,928천원 ・ 전화, FAX 등 : 33,000천원x4회x12월=1,584천원 나. 국제전화 사용료 (1,723천원) ・ 4,488원x32회x12월=1,723천원 다. 해외주재관(미, 일, 스, 중 프 등) 자료송부 (302천원) ・ 33,500천원x9개국=302천원 라. 조정재원 (594천원) ○ **국외업무여비(220-02) : 24,738천원** 가. 법무협력관 귀국보고회의 (17,137천원) ・ 2,142천원x8명x1회=17,137천원 나. 법무협력협정체결 등 해외 법무협력 (7,601천원) ・ 2,534천원x3명x1회=7,601천원 ○ **사업추진비(240-01) : 4,500천원** 가. 외국법무요인 초청 등 국제법무 협력관련 (4,000천원) ・ 500천원×9회=4,500천원 ○ **특정업무경비(250-03) : 10,151천원** 가. 국제규범 관련 정보수집 등 (10,151천원) ・ 5,000천원+5,151천원=10,151천원 ○ **국제부담금(340-02) : 15,000천원**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가. 국제기구 분담금 (3,392천원) ・ $2,458×1,380원=3,392천원 나. 조정재원 (607천원) ・ 환율변동 등에 따른 조정		가. 국제기구 분담금 (15,000천원) ・ $10,067×1,490원=15,000천원 나. 조정재원 (294천원) ・ 환율변동 등에 따른 조정

⑥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 (2026 본예산) 17백만원 → (2027 요구) 17백만원, 전년동

- (요구) 기체결한 국제협약의 지속적이고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전년 수준의 예산 요구
- (산출) 중앙당국 수행 7백만원
  관련 연구용역 10백만원

ㅇ 2026년도 예산 및 2027년도 예산안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7,018	○ **일반수용비(210-01) : 2,050천원** 가. 중앙당국 수행 (2,050천원) ・ 문서번역비 : 30천원×35회=1,050천원 ・ 자료구입 : 10,000천원×1회=1,000천원 ○ **국외업무여비(220-02) : 3,568천원** 가. 중앙당국 수행 (3,568천원) ・ 3,568천원x1회=3,568천원 ○ **사업추진비(240-01) : 1,400천원** 가.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업무협의 (1,400천원) ・ 700천원x2회=1,400천원 ○ **정책연구비(260-02) : 10,000천원** 가. 국제아동탈취 관련 연구용역 (1,000천원) ・ 10,000천원×1회=10,000천원	17,137	○ **일반수용비(210-01) : 2,050천원** 가. 중앙당국 수행 (2,050천원) ・ 문서번역비 : 30천원×35회=1,050천원 ・ 자료구입 : 10,000천원×1회=1,000천원 ○ **국외업무여비(220-02) : 3,687천원** 가. 중앙당국 수행 (3,687천원) ・ 3,687천원x1회=3,687천원 ○ **사업추진비(240-01) : 1,400천원** 가.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업무협의 (1,400천원) ・ 700천원x2회=1,400천원 ○ **정책연구비(260-02) : 10,000천원** 가. 국제아동탈취 관련 연구용역 (1,000천원) ・ 10,000천원×1회=10,000천원

⑦ 공무직 보수

: (2026 본예산) 216백만원 → (2027 요구) 228백만원, 12백만원 증액

- (요구) 처우개선 반영
- (산출) 상용임금 188백만원(+9백만원)
  복리후생비 2백만원
  고용부담금 38백만원(+3백만원)

ㅇ 2026년도 예산 및 2027년도 예산안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215,843	○ **상용임금(110-03) : 178,917천원** 가. 영문 에디터 (50,282천원) ・ 50,282천원×1명=50,282천원	227,667	○ **상용임금(110-03) : 188,050천원** 가. 영문 에디터 (52,612천원) ・ 52,612천원×1명=52,612천원 나. 국제법 전문위원 (135,843천원)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나. 국제법 전문위원 (127627천원) ・ 63,813천원x2명=127627천원 다. 조정재원 (1,008천원) **○ 복리후생비(210-12) : 1,500천원** 가. 맞춤형복지비 (1,500천원) ・ 500천원x3명=1,500천원 **○ 고용부담금(320-09) : 35,426천원** 가. 4대보험, 퇴직연금 등 (35,426천원) ・ 178,917천원x19.80%=35,426천원		・ 63,813천원x2명=127627천원 다. 조정재원 (△405천원) **○ 복리후생비(210-12) : 1,800천원** 가. 맞춤형복지비 (1,800천원) ・ 600천원x3명=1,800천원 **○ 고용부담금(320-09) : 37,817천원** 가. 4대보험, 퇴직연금 등 (87,817천원) ・ 188,050천원x20.11%=37,817천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3~2027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3	2024	2025	2026	2027	2027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국제소송지원 및 국제투자분쟁 대응 (단위: 건)	목표	-	50 (신규)	51.5	(삭제)	(삭제)	'26.부터 '국제법무활동 프로그램'이 '법무활동' 프로그램으로 통합됨에 따라 삭제	관계부처 등 회의 건수 + 심리기일·재판 및 관련 국제회의 참석건수 + 각종 서면·증거 검토 및 제출 건수 + 자문건수 + 보도자료 및 알림자료 건수	관련 공문, 제출서면, 보고서 등
	실적	-	50	-	-	-			
	달성도	-	100%	-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3	○ 국제거래규범 성안·도입 - UN국제상거래법위원회, 헤이그국제사법회의 등 국제규범 성안·도입 관련 국내외 회의 참석(13회) - 법무부-WIPO 공동 국제 지식재산권 세미나(2월), 아시아·태평양 에이디알(ADR) 컨퍼런스 등 국제기구와 공동으로 국제규범 관련 국제행사 개최 ○ 통상협상 참가 및 법적 지원, 국제 법무협력 강화 - 통상협상 참가(28건) 및 법률자문 제공(20건) ○ 법률시장 개방 대응 및 국내 법률서비스 국제경쟁력 강화 -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 자문 제공(자문위원 213명, 자문 370건, 법률상담 행사 및 설명회 11회) - 외국법자문사 자격승인(10명) 및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등 설립인가(2개소)
2024	○ 국제거래규범 성안·도입 - UN국제상거래법위원회 등 국제규범 성안·도입 관련 국내외 회의 참석(11회) - 싱가포르조정협약 이행법률 제정 T/F 재개(9.9) - 아시아·태평양 에이디알(ADR) 컨퍼런스 등 국제기구와 공동으로 국제규범 관련 국제행사 개최(11월) ○ 통상협상 참가 및 법적 지원, 국제 법무협력 강화 - 통상협상 참가 및 법률자문 제공(22건) ○ 법률시장 개방 대응 및 국내 법률서비스 국제경쟁력 강화 - 외국법자문사 자격승인(10명) 및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설립인가(2개소)
2025	○ 국제거래규범 성안·도입 - UN국제상거래법위원회 등 국제규범 성안·도입 관련 국내외 회의 참석(10회) - 싱가포르조정협약 이행법률 제정 T/F 운영 -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법률 개정 T/F 발족(5월) 및 운영

	- 외국법자문사법 개정위원회 발족(6월) 및 운영 - 'HCCH Asia-Pacific Week'(6월), 아시아·태평양 에이디알(ADR) 컨퍼런스(11월) 등 국제규범 관련 국제행사 개최 ○ 통상협상 참가 및 법적 지원, 국제 법무협력 강화 - 통상협상 참가 및 법률자문 제공(37건) ○ 법률시장 개방 대응 및 국내 법률서비스 국제경쟁력 강화 - 외국법자문사 자격승인(9명)
2026	○ 국제거래규범 성안·도입 - UN국제상거래법위원회 등 국제규범 성안·도입 관련 국내외 회의 참석(9회) - 유럽평의회 신기술운영위원회 옵저버 가입 - 외국법자문사법 개정위원회 운영 - 아시아·태평양 에이디알(ADR) 컨퍼런스(4월) 등 국제규범 관련 국제행사 참석 - UN국제상거래법위원회 60주년 기념행사 참석 및 사이드이벤트 개최(7월) ○ 법률서비스 국제경쟁력 강화 - 국제중재 계약학과 신설 관련 서울대 업무협의 추진 ○ 통상협상 참가 및 법적 지원, 국제 법무협력 강화 - 통상협상 참가 및 법률자문 제공(37건) ○ 법률시장 개방 대응 및 국내 법률서비스 국제경쟁력 강화 - 외국법자문사 자격승인(5명)

③ 향후(2027년도 이후) 기대효과

- 국민의 실생활에 영향을 끼치는 신기술, 신산업 관련 신규 거래유형이 다수 발생하는 상황에서 국제거래규범 성안과정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연구 및 국내 도입을 추진하여 선진적인 민·상사 법제 구축
- FTA, BIT 등 각종 통상협상에 직접 참가 및 관계부처에 대한 법률지원, 전문 학술지 발간 등으로 범국가적 통상 역량 강화에 기여
- 법률시장 개방에 대응하여 국내 법조인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등 우리나라 법률서비스의 국제경쟁력 강화
- 고부가 법률서비스 산업인 국제중재·조정 활성화, 해외진출기업 국제법무지원단 운영 등을 통하여 경제활성화에도 기여
- 국제적으로 탈취된 아동의 신속한 반환을 위한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의 중앙당국으로서 내실있는 지원을 통해 아동 인권 보호 강화에 기여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UN국제상거래법위원회 규범 성안>

본회의 의제 선정 → 워킹그룹(WG) 구성 → 실무회의 진행 → 모델법 도출 → 본회의 보고 → 본회의 채택

<헤이그 아동탈취협약 중앙당국 업무>

신청서 검토 → 아동반환 지원 (소재 및 현황 파악, 집행관 및 유관기관 협조요청, 원활한 출국지원 등) → 사후관리 → 국제협력

※ 부모 일방에 의해 해외로 무단 이동되거나 불법 유치되어 있는 아동의 신속한 반환을 목적으로 하는 협약으로 우리나라는 협약 가입('12년) 후 이행법률 제정 및 시행('13년)

<외국법자문사 자격승인>

예비심사 → 서약식 → 정식심사 → 자격승인

<통상협상 참여 및 법률자문>

통상협정 국가 및 일정 조율 → 범부처 사전회의 및 쟁점 확정 → 세부 쟁점별 검토의견 제시 → 통상협상 참가 및 의견 개진 → 합의문 분석 및 체계정합성 검토

<국제법무 인력양성>

【국제법무 아카데미(O.K.아카데미) 운영(16주 과정)】

주제별 강사 섭외 → 수강신청 (대한변협) → 아카데미 실시(16주간) (법무부, 대한변협) → 강사료 지급 (법무부→강사) → 수료식 (법무부, 대한변협)

【글로벌 펠로우십 프로그램】

파견기관 섭외 → 파견기관별 설명회 개최 (법무부, 대한변협) → 기관별 선발절차 진행 → 합격자 발표 → 파견자 간담회 등 개최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25~2029	728	734	743	757	773	
2026~2030		842	867	893	920	947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예산편성 시 심의되지 않은 신규사업 추진 및 예산 전용 지양 필요(21결산)
- 국외여비의 연례적 편성 목적 외 사용 지양 필요(21결산)
- 외국법자문사 제도 실효성 제고 필요(21결산)
- 학술 관련 자료발간 업무의 전문성 강화 필요(예결위, 22결산)
- 연구용역의 연례적인 연말발주 실태 개선 필요(법사위, 25결산)

2) 감사원 감사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 해당 없음

3) 자체평가·감사 : 해당 없음

4)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 해당 없음

5)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지적사항	후속 조치사항
▪ 예산편성 시 심의되지 않은 신규사업 추진 및 예산 전용 지양 필요	▪ 향후 국제거래 및 국제통상 법률지원 사업으로 스타트Law 예산 불지출 - 향후 신사업 추진 시 기획 단계에서부터 국회 심의를 거친 후 추진
▪ 국외여비의 연례적 편성 목적 외 사용 지양 필요	▪ 명목 예산을 수요에 맞도록 현실화하여 편성 : '23. 예산안 편성 시 국외여비 예산을 수요에 맞게 조정하였음 - UNCITRAL 참석 등 국외여비 : 64 → 71백만원(+8) - 법무협력협정체결 등 해외 법무협력 : 7.1 → 7.4(+0.3) - 법률서비스 홍보 지원 : 11 → 8백만원(△3) - 국제통상 관련 협상 : 42 → 40백만원(△2) -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 4.4 → 3.4백만원(△1)
▪ 외국법자문사 제도 실효성 제고 필요	▪ 한-미FTA서비스투자위원회 등을 통해 국내 법률시장에 대한 미국 업계 의견 수렴 완료 ▪ 행정안전부와 협업하여 외국법자문사 신청절차에 '문서24 디지털공공서식'을 활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관리감독의 효율성 및 용이성 제고 - 외국법자문사 자격승인 및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설립인가 신청을 위한 문서24 공공서식 제작 완료
▪ 학술 관련 자료발간 업무의 전문성 강화 필요	▪ 「국제법무연구」는 국제통상 전문가로 구성된 편집위원 및 심사위원의 우수한 연구 실적, 엄격한 심사 등을 바탕으로 학술지의 전문성을 인정받아 '23. 12. 3년마다 진행되는 KCI 학술지 평가 결과 기존 '등재후보학술지'에서 '등재학술지'로 승격
▪ 연례적 연구용역 연말발주 실태 개선 필요	▪ 매년 12월 '차년도 연구용역 발주계획' 사전 확정 및 분기별 점검을 내부 지침으로 제도화하고 연내 계약 종료를 정착시켜 재정운용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립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국제거래규범 성안·도입
- 각종 민·상사 규범 관련 국제회의에 적극 참석하여 국제규범 성안 단계부터 우리나라의 법제와 입장 반영하고, 선진적인 국제규범에 대한 연구 지속
- 국제협약의 국내 도입 및 이행 추진

○ 법무분야 국제협력
- 국제기구 및 여러 국가들과의 다양한 협력 방안 모색

○ 법률서비스 국제경쟁력 강화 및 기업·청년 해외진출지원
- 법률서비스 분야 경상수지 개선의 일환으로 국제분쟁 해결 수단으로서 국제중재·조정 활성화를 추진하여 경제발전과 우리나라가 동북아시아 국제중재의 허브로 도약하는 데 기여
- 외국법자문사에 대한 관리·감독 시스템 체계화하고 청년 법조인의 국제기구·해외로펌 진출에 보다 초점을 맞추어 추진하는 등 법률시장 개방에 적극 대응

○ 통상협상 법률지원
- 각종 국제통상 협상에 적극 참여하고 정부 부처에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하여 국가적 통상 관련 대응 역량 강화하고 국익 극대화 노력

○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의 중앙당국으로서 충실한 이행 및 관련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매뉴얼 제작, 홍보 등 다각적인 지원체계 구축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 없음

12) 동 사업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 : 해당 없음

13) 2026년도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 결과 및 후속 조치 현황 : 해당 없음

14) 부처 건의사항 : 해당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3	743	-	743	-	△3	-	740	618	83.2	83.5	3	119
2024	728	-	728	3	-	-	731	671	92.2	91.8	4	56
2025	734	-	734	4	-	-	738	702	95.6	95.1	22	15
2026	842	-	842	22	-	-	864	373	44.3	43.2	-	-

2) 주요 결산사항

□ 2023~2026년 결산사항

2023	- 전용 : '통일대비 법률통합 실질화' 사업 고용부담금 부족분 충당을 위해 3백만원 전용 - 이월 : 연구용역 발주 지연에 따른 미완료로 잔금 3백만원 이월
2024	- 불용 : 공무직 퇴직 후 충원에 따른 공백기간 발생으로 상용임금 등 26백만원, 집행잔액 30백만원 불용
2025	- 이월 : 연구용역 주제에 관한 국제회의가 연말에 진행됨에 따라 논의결과를 반영하기 위한 발주 일정에 따른 미완료로 22백만원 이월
2026	- 해당없음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 없음

□ 2025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 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해당없음

사 업 명
개발도상국 법제정비지원(ODA) (1032-30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법무부	국제법무국		020	022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000	1032	302
명칭	법무활동	국제법무운영및외국법제연구	개발도상국법제정비지원(ODA)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6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개발도상국 법제정비지원 (ODA)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국제법무국	최성겸	박노화	박상아
		국제법무정책과	02-2110-4533	02-2110-4534	02-2110-4536
	사업시행주체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년 결산	2026년 예산		2027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요구안	조정안(B)		(B-A)/A
개발도상국 법제정비지원(ODA)	138	216	-	214	214	△2	0.9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25					2026(2026.7월말)							2027 예산안
	예산액(추경)	예산현액	집행액[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현액	집행액[실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예상액	불용예상액	
									예산현액	집행액[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150	174	152	-	22	216	216	57	216	57	-	-	214
・법제정비 지원	92	116	105	-	11	156	156	22	156	22	-	-	151
・공무직 보수	58	58	47	-	11	60	60	35	60	35	-	-	63
○ 비목별 분류(합계)	150	174	152	-	22	216	216	57	216	57	-	-	214
・상용임금(110-03)	48	48	38	-	10	50	50	32	50	32	-	-	52
・일반수용비(210-01)	18	18	13	-	5	28	28	3	28	3	-	-	28
・공공요금및제세(210-02)	1	1	-	-	1	1	1	-	1	-	-	-	1
・임차료(210-07)	7	7	6	-	1	9	9	2	9	2	-	-	7
・복리후생비(210-12)	1	1	1	-	-	1	1	-	1	-	-	-	1
・국외여비(220-02)	25	25	21	-	4	60	60	9	60	9	-	-	57
・사업추진비(240-01)	11	11	11	-	-	18	18	8	18	8	-	-	18
・정책연구비(260-02)	30	54	54	-	-	40	40	-	40	-	-	-	40
・고용부담금(320-09)	9	9	8	-	1	10	10	3	10	3	-	-	10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150	174	152	-	22	216	216	57	216	57	-	-	214
・법제정비 지원	92	116	105	-	11	156	156	22	156	22	-	-	151
-일반수용비(210-01)	18	18	13	-	5	28	28	3	28	3	-	-	28
-공공요금및제세(210-02)	1	1	-	-	1	1	1	-	1	-	-	-	1
-임차료(210-07)	7	7	6	-	1	9	9	2	9	2	-	-	7
-국외여비(220-02)	25	25	21	-	4	60	60	9	60	9	-	-	57
-사업추진비(240-01)	11	11	11	-	-	18	18	8	18	8	-	-	18

	2025					2026(2026.7월말)							2027 예산안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정책연구비(260-02)	30	54	43	-	-	40	40	-	40	-	-	-	40
· 공무직 보수	58	58	56	-	11	60	60	35	60	35	-	-	63
-상용임금(110-03)	48	48	46	-	10	50	50	32	50	32	-	-	52
-복리후생비(210-12)	1	1	1	-	-	1	1	-	1	-	-	-	1
-고용부담금(320-09)	9	9	9	-	1	10	10	3	10	3	-	-	1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개발도상국 법제정비지원) ODA 사업의 일환으로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을 위한 법제정비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우리나라의 국격을 제고하고 우리의 법제 모델을 수출·전수하여 장기적으로 우리 기업에 친숙한 해외 투자환경 및 현지 진출기반 조성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정부조직법 제32조(법무부)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의3(국제법무국)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조의3(국제법무국)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조(법무에 관한 자료 조사, 부처 법령 자문, 각종 법령 해석), 제9조 제3항(법령안의 기초 및 심사, 법무제도 및 그 운영에 관한 연구·개선, 민사관계 법령 연구)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2조, 제5조 제1항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② 추진경위

- ’19. 3. ‘남태평양 도서국가 국제 중재법 세미나’ 공동 개최(아시아개발은행)
- ’19. 5. ‘라오스 법원판결 및 중재판정의 집행법제 개선방안‘ 현지 세미나 개최
- ’19. 6. ‘대한민국과 몽골의 형사법제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 실시
- ’19. 8. 우즈베키스탄 법무부 초청 단기 교육 프로그램 운영
- ’19. 9. ‘미얀마 지식재산권 법령 법제 정비지원’ 세미나 개최

- ’20. 1. ‘몽골 형사법제 정비지원’ 현지 세미나 개최
- ’20. 3. 지난 5개년 법제정비 지원 사업 자체평가
- ’20. 11. ADR 컨퍼런스 개최(개도국 법률전문가 대상 교육 프로그램 및 특별세션)
- ’20. 12. ‘캄보디아 중재·조정법제 개선 방안’ 연구용역 실시, 지난 5개년 ‘법제정비지원 사업 결과 종합 자료집’ 발간
- ’21. 11. UNCITRAL과 개도국 공무원·법률가 대상으로 ‘ADR 스페셜 세션’ 개최
- ’21. 12. ‘아태지역 조정법제 개선 세미나’ 개최
- ’22. 7. 태국 사법연구원 대상 워크숍 개최
- ’22. 11. ‘제11회 아태지역 ADR 컨퍼런스’, ‘UNCITRAL 아태지역사무소 개소 10주년 세미나’ 개최
- ’23. 4. 캄보디아 고위급 공무원 초청하여 조정법제 개선방안 연구결과 전달 및 우리나라 조정 실무 소개
- ’23. 12. 캄보디아 정부 주도의 분쟁해결기구(약칭 ‘NADR’) 설립 지원을 위한 한국-캄보디아 법무부 공동 세미나 개최
- ’24. 9. 캄보디아 조정인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연구용역(3월)을 토대로 NADR 소속 조정인 및 사무국원을 초청하여 단기 집중 교육 및 관련기관 견학 실시하고, 법무부 고위급을 초청하여 캄보디아의 조정기본법 제정을 위한 양국 공동연구 실시 합의 및 후속 사업 논의
- ’24. 11. NADR의 효과적 운영방안을 주제로 현지 세미나 실시
- ’25. 6. 캄보디아 조정기본법 제정을 위해 주요 5개국(한국, 일본, 호주, 말레이시아, 싱가포르)의 조정법제를 비교·분석하는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캄보디아에 가장 적합한 조정법제 모델을 탐색
- ’25. 7. 캄보디아 법무부 고위급 및 NADR 소속 조정인, 법관을 초청하여 캄보디아 조정기본법 제정 및 상사법원 설립 지원을 위한 세미나 및 관련 기관 견학
- ’25. 11. 일본 ADR Week에 캄보디아 ADR 전문가를 초청 및 함께 참석하여 국제 ADR 동향에 대한 견문 확장
- 26. 2. 캄보디아 상사법원 설립 지원 관련 캄보디아 법무부 면담 등 현지 실사
- 26. 5. 캄보디아 상사법원 법관 교육 프로그램 제작을 위한 연구용역 발주
- 26. 6. 캄보디아 상사법원의 회생사건 처리체계 마련을 위한 국내 회생법제 검토 연구용역 발주
- ’26. 10. 캄보디아 법무부 고위급 및 NADR 소속 조정인, 법관을 초청하여 캄보디아 조정기본법 제정 및 상사법원 설립 지원을 위한 세미나 및 관련 기관 견학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12.~계속 (’26.~’30. 캄보디아 상사분쟁 해결 법제 정비 5개년 계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3	2024	2025	2026	2027(안)
사업비	156	158	150	216	214

- 기타: 해당 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법무부 국제법무국
- 사업 수혜자 : 개발도상국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3) 2027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

① 법제정비 지원

: (2026 본예산) 156 → (2027 요구) 151백만원, 5백만원 감액

- (요구) 캄보디아 조정법제 정비 5개년('21.~'25.) 계획의 후속사업인 캄보디아 상사분쟁 해결 법제 정비 5개년('26.~'30.) 계획 2차년도 사업 추진에 따라 전년 수준 예산 요구하되, 지출효율화를 위한 임차료(△2백만원) 및 국외여비(△3백만원) 감액
- (산출) 법제정비 및 역량강화 교육 118백만원
  세미나 개최 33백만원

ㅇ 2026년도 예산 및 2027년도 예산안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6년 본예산		2027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55,674	**○ 일반수용비(210-01) : 28,020천원** 가. 국제세미나 개최 (13,420천원) ・ 개최 경비 : 15,000원×34명x2회=1,020천원 ・ 통역비 등 : 3,700천원×2회=7,400천원 ・ 자료 및 홍보물 제작 : 1,500천원×2회=3,000천원 ・ 행사지원용품 구입 등 : 1,000천원×2회=2,000천원 나. 법제정비 지원 및 역량강화 교육 (14,600천원) ・ 리서치 및 전문가 자문료 : 7,500천원 ・ 자료집 발간 : 2,800천원x1회=5,600천원 ・ 연구용역 평가료 및 심사료 : 100천원x5명x3회=1,500천원 **○ 공공요금 및 제세(210-02) : 1,056천원** 가. 우편, 전화 및 FAX 이용료 (1,056천원) **○ 임차료(210-07) : 9,000천원** 가. 국제세미나 개최 행사장 임차 (9,000천원) **○ 국외업무여비(220-02) : 59,998천원** 가. 세미나 개최 (12,875천원) ・ 1,609천원x4명x2회=3,465천원 나. 개발도상국 현지 실태조사 (8,664천원) ・ 1,444천원x3명x2회=8,664천원 다. 초청 교육 (30,460천원) ・ 1,523천원x20명=30,460천원 라. MOU 체결 (8,037천원) ・ 2,009천원x4명x1회=8,037천원 마. 조정재원 (△38천원) **○ 사업추진비(240-01) : 17,600천원** 가. 현지 정부관계자 업무협의 등 (17,600천원) **○ 정책연구비(260-02) : 40,000천원** 가. 선진 시스템 관련 연구 (20,000천원) ・ 10,000천원×2회=20,000천원 나. 개도국 법제 연구 (20,000천원) ・ 20,000천원×1회=20,000천원	150,674	**○ 일반수용비(210-01) : 28,020천원** 가. 국제세미나 개최 (13,420천원) ・ 개최 경비 : 15,000원×34명x2회=1,020천원 ・ 통역비 등 : 3,700천원×2회=7,400천원 ・ 자료 및 홍보물 제작 : 1,500천원×2회=3,000천원 ・ 행사지원용품 구입 등 : 1,000천원×2회=2,000천원 나. 법제정비 지원 및 역량강화 교육 (14,600천원) ・ 리서치 및 전문가 자문료 : 7,500천원 ・ 자료집 발간 : 2,800천원x1회=5,600천원 ・ 연구용역 평가료 및 심사료 : 100천원x5명x3회=1,500천원 **○ 공공요금 및 제세(210-02) : 1,056천원** 가. 우편, 전화 및 FAX 이용료 (1,056천원) **○ 임차료(210-07) : 7,000천원** 가. 국제세미나 개최 행사장 임차 (7,000천원) **○ 국외업무여비(220-02) : 56,998천원** 가. 세미나 개최 (12,875천원) ・ 1,609천원x4명x2회=3,465천원 나. 개발도상국 현지 실태조사 (8,664천원) ・ 1,444천원x3명x2회=8,664천원 다. 초청 교육 (27,460천원) ・ 1,373천원x20명=27,460천원 라. MOU 체결 (8,037천원) ・ 2,009천원x4명x1회=8,037천원 마. 조정재원 (△38천원) **○ 사업추진비(240-01) : 17,600천원** 가. 현지 정부관계자 업무협의 등 (17,600천원) **○ 정책연구비(260-02) : 40,000천원** 가. 선진 시스템 관련 연구 (20,000천원) ・ 10,000천원×2회=20,000천원 나. 개도국 법제 연구 (20,000천원) ・ 20,000천원×1회=20,000천원

② 공무직 보수

: ('25) 60백만원 → ('26) 63백만원, +3백만원

- (요구) 처우개선 반영
- (산출) 상용임금 52백만원(+2백만원)
  복리후생비 1백만원
  고용부담금 10백만원

ㅇ 2026년도 예산 및 2027년도 예산안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6년 본예산		2027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60,326	○ **상용임금(110-03) : 49,938천원** 가. 영문 에디터 (49,938천원) ・ 48,098천원×1명=49,938천원 ○ **복리후생비(210-12) : 500천원** 가. 맞춤형복지비 (500천원) ・ 500천원x1명=500천원 ○ **고용부담금(320-09) : 9,888천원** 가. 4대보험, 퇴직연금 등 (9,888천원) ・ 49,938천원x19.80%=9,888천원	63,301	○ **상용임금(110-03) : 52,203천원** 가. 영문 에디터 (49,938천원) ・ 48,098천원×1명=49,938천원 ○ **복리후생비(210-12) : 600천원** 가. 맞춤형복지비 (600천원) ・ 600천원x1명=500천원 ○ **고용부담금(320-09) : 10,498천원** 가. 4대보험, 퇴직연금 등 (10,498천원) ・ 52,203천원x20.11%=10,498천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3~2027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3	2024	2025	2026	2027	2027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국제소송지원 및 국제투자분쟁 대응 (단위: 건)	목표	-	50 (신규)	51.5	(삭제)	(삭제)	'26.부터 '국제법무활동 프로그램'이 '법무활동' 프로그램으로 통합됨에 따라 삭제	관계부처 등 회의 건수 + 심리기일·재판 및 관련 국제회의 참석건수 + 각종 서면·증거 검토 및 제출 건수 + 자문건수 + 보도자료 및 알림자료 건수	관련 공문, 제출서면, 보고서 등
	실적	-	50	-	-	-			
	달성도	-	100%	-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3	○ 4. 캄보디아 조정법제 개선 세미나 개최(4. 25.~26.) ○ 12. 캄보디아 조정법제정비 지원 현지 세미나 개최(12. 6.)
2024	○ 9. 캄보디아 분쟁해결기구(NADR) 소속 조정인 등 초청하여 단기 집중교육 실시(9. 24~28.) ○ 9. 캄보디아 법무부 고위급 초청하여 캄보디아 조정기본법 제정을 위한 양국 공동연구 실시 합의 및 후속사업 논의 ○ 11. NADR의 효과적 운영방안 관련 현지 세미나 개최(11.27.~12.1.)
2025	○ 6. 캄보디아 조정기본법 제정을 위해 주요 5개국(한국, 일본, 호주, 말레이시아, 싱가포르)의 조정법제를 비교·분석 ○ 7. 캄보디아 고위급 초청 조정법제 비교법 연구 세미나 개최(7.23.) ○ 11. 일본 ADR Week에 캄보디아 ADR 전문가를 초청 및 함께 참석하여 국제 ADR 동향에 대한 견문 확장
2026	○ 2. 캄보디아 상사법원 설립 지원 관련 캄보디아 법무부 면담 등 현지 실사 ○ 5. 캄보디아 상사법원 법관 교육 프로그램 제작을 위한 연구용역 발주 ○ 6. 캄보디아 상사법원의 회생사건 처리체계 마련을 위한 국내 회생법제 검토 연구용역 발주 ○ 10. 캄보디아 법무부 고위급 및 NADR 소속 조정인, 법관을 초청하여 캄보디아 조정기본법 제정 및 상사법원 설립 지원을 위한 세미나 및 관련 기관 견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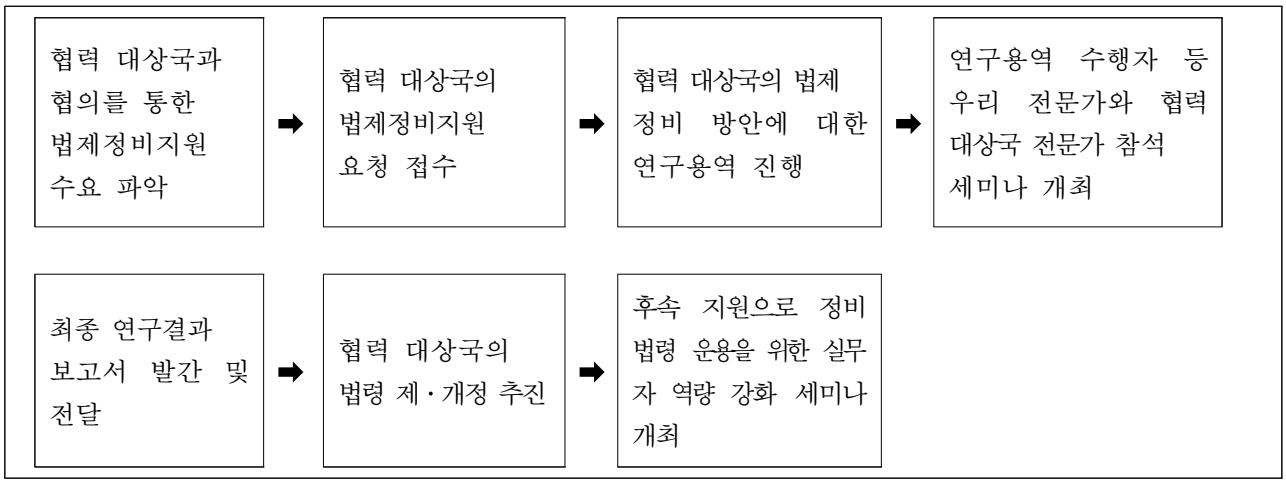
③ 향후(2027년도 이후) 기대효과

- 개발도상국의 법치주의 확립 및 우리나라의 ODA 공여국으로서의 국제적 위상 제고에 기여
- 개도국에 우리나라와 유사한 법체계가 형성될 경우 해외 진출하는 우리 기업들은 법적 리스크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게 되어 주요 경쟁국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유리
- 국내 로펌 및 국내 법조인들 진출의 발판 마련
-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대규모 프로젝트 방식의 일반적인 ODA와 달리, 법제정비 개선 사업은 전문가 단기 파견 및 연구 등 비교적 소규모 예산으로 막대한 사회·경제적 파급 효과 예상
  · 한국거래소(증권거래소 실제 진출), 대한상사중재원, KOTRA 등과 같이 경제적 효과를 담보할 수 있는 기관과 협력하여 실질적인 지원 효과 기대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25~2029	728	734	743	757	773	
2026~2030		734	792	816	840	865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국제개발협력(ODA) 사업 예산으로 아시아·태평양 조정 컨퍼런스 개최 부적정(22결산)
 - 공무직 퇴직 예정 시 충원절차를 신속히 하여 공백 기간 발생으로 인한 상용임금 불용액을 최소화할 것(23결산, 예결위)
 - 연구용역의 연례적인 연말발주 실태 개선 필요(법사위, 25결산)
2) 감사원 감사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 해당없음
3) 자체평가·감사 : 해당없음
4)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 해당없음
5)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지적사항	후속 조치사항
▪ 국제개발협력(ODA) 사업 예산으로 아시아·태평양 조정 컨퍼런스 개최 부적정	▪ 다음 연도 컨퍼런스는 '국제거래 및 국제통상 법률지원' 예산으로 개최
▪ 공무직 퇴직 후 충원절차를 신속히 하여 공백기간 발생으로 인한 상용임금 불용액을 최소화할 것	▪ 채용분야(통·번역) 특성상 퇴직시기 예측이 어려우나 계약 시 사전 통보기간 설정, 수시 면담 실시 등 공백기관 발생 최소화를 위해 최대한 조치
▪ 연례적 연구용역 연말발주 실태 개선 필요	▪ 매년 12월 '차년도 연구용역 발주계획' 사전 확정 및 분기별 점검을 내부 지침으로 제도화하고 연내 계약 종료를 정착시켜 재정운용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립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개발도상국의 중재법 등 경제 관련 법제에 대한 정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장기적으로 우리 법조인력 진출의 발판을 마련하고, 우리 기업 진출에 유리한 법률 환경 조성에 기여
- 한편, 법제정비 지원을 통해 장기적인 원조 효과가 큰 개발도상국의 법치주의 확립을 지원하고, 우리나라의 ODA 공여국으로서의 국제적 위상 제고에 기여
- UNCITRAL 아태사무소 등 국제기구와의 협업을 통한 개발도상국 법제정비 지원 실시 추진 및 주요 선진국의 법제정비 지원 사례 수집·연구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 없음

12) 동 사업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 : 해당 없음

13) 2026년도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 결과 및 후속 조치 현황 : 해당 없음

14) 부처 건의사항 : 해당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3	156	-	156	2	-	-	158	123	78.8	77.8	3	32
2024	158	-	158	3	-	-	161	125	79.1	77.6	24	12
2025	150	-	150	24	-	-	174	162	108	93.1	-	-
2026	216	-	216	-	-	-	216	57	26.4	26.4	-	-

2) 주요 결산사항

□ 2023~2026년 결산사항

2023	- 해당없음
2024	- 불용 : 공무직 퇴직 후 충원에 따른 공백 기간 발생으로 인한 상용임금 등 8백만원 불용, 기타 집행잔액 4백만원 불용 - 이월 : 연구용역 연구자 선정 지연에 따른 미완료로 잔금 24백만원 이월
2025	- 해당없음
2026	- 해당없음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 없음

□ 2025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 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 해당없음

사 업 명
국제투자분쟁중재수행 및 대응 (1032-303)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법무부	국제법무국		020	022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000	1032	303
명칭	법무활동	국제법무운영및외국법제연구	국제투자분쟁중재 수행 및 대응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6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국제투자 분쟁중재 수행및대응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국제법무국	조아라	김원태	정혜림
		국제투자분쟁과	02-2110-3331	02-2110-3867	02-2110-4319
	사업시행주체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년 결산	2026년 예산		2027년		증감	
		본예산(A)	추경	요구안	조정안(B)	(B-A)	(B-A)/A
국제투자분쟁 중재수행 및 대응	7,706	4,723	4,793	4,523	4,523	△200	△4.2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5					2026(2026.7월말)							2027 예산안
	예산액(추경)	예산현액	집행액[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현액	집행액[실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예상액	불용예상액	
									예산현액	집행액[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4,717	7,731	7,706	-	25	4,723	4,793	3,350	4,793	3,350	-	-	4,523
· 론스타	1,984	5,185	5,185	-	-	1,984	890	505	890	505	-	-	1,734
· 쉰들러	1,227	136	136	-	-	1,227	1,427	733	1,427	733	-	-	1,505
· 민봉진	845	5	5	-	-	845	1,703	1,702	1,703	1,702	-	-	200
· 다야니2차	441	2,172	2,172	-	-	441	241	126	241	126	-	-	466
· 파생절차 등 대응	-	-	-	-	-	-	-	-	-	-	-	-	140
· 국제공조강화	-	-	-	-	-	-	-	-	-	-	-	-	118
· 국제투자분쟁 예방및대응	72	85	85	-	-	72	378	209	378	209	-	-	135
· 전문위원 인건비	148	148	123	-	25	154	154	75	154	75	-	-	225
○ 비목별 분류(합계)	4,717	7,731	7,706	-	25	4,723	4,793	3,350	4,793	3,350	-	-	4,523
· 상용임금(110-03)	123	123	102	-	21	128	128	68	128	68	-	-	186
· 일반수용비(210-01)	4,496	7,506	7,506	-	-	4,496	4,496	3,185	4,496	3,185	-	-	4,071
· 임차료(210-07)	-	-	-	-	-	-	-	-	-	-	-	-	10
· 복리후생비(210-12)	1	1	1	-	-	1	1	1	1	1	-	-	2
· 국내여비(220-01)	5	5	5	-	-	5	5	4	5	4	-	-	5
· 국외여비(220-02)	45	49	49	-	-	45	115	71	115	71	-	-	165
· 사업추진비(240-01)	23	23	23	-	-	23	23	15	23	15	-	-	27
· 정책연구비(260-02)	-	-	-	-	-	-	-	-	-	-	-	-	20
· 고용부담금(320-09)	24	24	20	-	4	25	25	6	25	6	-	-	37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4,717	7,731	7,706	-	25	4,723	4,793	3,350	4,793	3,350	-	-	4,523
· 론스타	1,984	5,185	5,185	-	-	1,984	890	505	890	505	-	-	1,734
-일반수용비(210-01)	1,954	5,155	5,155	-	-	1,954	885	502	885	502	-	-	1,729
-국외여비(220-02)	25	25	25	-	-	25	-	-	-	-	-	-	-
-사업추진비(240-01)	5	5	5	-	-	5	5	3	5	3	-	-	5
· 쉰들러	1,227	136	136	-	-	1,227	1,427	733	1,427	733	-	-	1,505
-일반수용비(210-01)	1,222	131	131	-	-	1,222	1,422	728	1,422	728	-	-	1,500
-국외여비(220-02)	-	-	-	-	-	-	-	-	-	-	-	-	-
-사업추진비(240-01)	5	5	5	-	-	5	5	5	5	5	-	-	5

	2025					2026(2026.7월말)							2027 예산안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민봉진	845	5	5	-	-	845	1,703	1,702	1,703	1,702	-	-	200
-일반수용비(210-01)	840	-	-	-	-	840	1,683	1,683	1,683	1,683	-	-	195
-국외여비(220-02)	-	-	-	-	-	-	15	15	15	15	-	-	-
-사업추진비(240-01)	5	5	5	-	-	5	5	4	5	4	-	-	5
· 다야니2차	441	2,172	2,172	-	-	441	241	126	241	126	-	-	466
-일반수용비(210-01)	436	2,167	2,167	-	-	436	236	124	236	124	-	-	436
-국외여비(220-02)	-	-	-	-	-	-	-	-	-	-	-	-	25
-사업추진비(240-01)	5	5	5	-	-	5	5	2	5	2	-	-	5
· 파생절차 등 대응	-	-	-	-	-	-	-	-	-	-	-	-	140
-일반수용비(210-01)	-	-	-	-	-	-	-	-	-	-	-	-	90
-국외여비(220-02)	-	-	-	-	-	-	-	-	-	-	-	-	50
· 국제공조강화	-	-	-	-	-	-	-	-	-	-	-	-	118
-일반수용비(210-01)	-	-	-	-	-	-	-	-	-	-	-	-	27
· 임차료(210-07)	-	-	-	-	-	-	-	-	-	-	-	-	10
· 정책연구비(260-02)	-	-	-	-	-	-	-	-	-	-	-	-	20
· 국외여비(220-02)	-	-	-	-	-	-	-	-	-	-	-	-	56
-사업추진비(240-01)	-	-	-	-	-	-	-	-	-	-	-	-	5
· 국제투자분쟁 예방 및 대응	72	85	85	-	-	72	378	209	378	209	-	-	135
-일반수용비(210-01)	44	53	53	-	-	44	270	148	270	148	-	-	94
- 국내여비(220-01)	5	5	5	-	-	5	5	4	5	4	-	-	5
-국외여비(220-02)	20	24	24	-	-	20	100	56	100	56	-	-	34
-사업추진비(240-01)	3	3	3	-	-	3	3	1	3	1	-	-	2
· 전문위원 인건비	148	148	123	-	25	154	154	75	154	75	-	-	225
-상용임금(110-03)	123	123	102	-	21	128	128	68	128	68	-	-	186
-복리후생비(210-12)	1	1	1	-	-	1	1	1	1	1	-	-	2
-고용부담금(320-09)	24	24	20	-	4	25	25	6	25	6	-	-	37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국제투자분쟁 중재수행 및 대응) 론스타, 쉰들러, 민봉진, 다야니 2차 등 외국인 투자자의 우리정부 상대 ISDS 제소에 따른 중재수행 및 대응

▸ (론스타) ‘12. 11. 론스타는 금융위의 부당한 외환은행 매각승인 지연 및 국세청의 자의적 과세처분으로 약 5.8조 원(46.8억 달러)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한-벨기에-룩셈부르크 투자협정에 근거하여 ICSID(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 중재 제기, ’22. 8. 31. 판정 선고가 있었으며, ‘23. 7.~9. 정부와 론스타 양측 모두 판정 취소 신청 제기, ’25. 11. 18. ICSID 취소위원회로부터 정부 전부 승소 취지의 원 판정 취소 결정을 선고받아 배상책임 약 4천억 원 소멸 및 소송비용 약 74.7억 원 국고 환수, 론스타 측이 2차 중재 의사를 밝혀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

▸ (쉰들러) ’18. 10. 스위스 승강기업체 쉰들러가 현대엘리베이터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우리 정부의 조사·감독 의무 해태로 인해 최소 약 2,600억 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한-EFTA FTA 부속 투자협정에 근거하여 우리 정부를 상대로 중재 제기함에 따라 사건 대응 수행, ’26. 3. 정부 승소에 따라 최초 청구액 약 4,900억 원, 최종 청구액 약 3,250억 원 상당의 쉰들러 측의 배상청구를 전액 방어하고, ’26. 4. 정부의 소송비용 약 96억 원까지 전액 환수, 취소소송 등 후속 대응이 필요

▸ (민봉진) ’20. 7. 중국투자자는 본인 소유 국내 회사(백익 인베스트먼트) 주식에 대한 우리은행의 담보권 실행으로 인한 위법한 수용 및 대한민국 법원의 관련 민형사 재판의 절차적 하자 및 부당한 판단 등이 사법 거부에 해당하여 대한민국 정부가 한-중 투자보장협정(BIT)를 위반, 약 2,600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한-중 BIT에 근거하여 우리 정부를 상대로 중재 제기함에 따라 사건 대응 수행 (‘24. 5. 정부측 전부승소, ‘24. 9. 민봉진 측 취소신청 제기하여 현재 취소절차 진행 중)

▸ (다야니2차) ’15. 9.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수 과정에서 몰취당한 계약금(약 578억원) 반환 등을 청구하는 ISDS를 제기하여 승소(금융위 대응)하였으나 미국 대이란 제재 등을 이유로 한국 정부가 배상금(약 1억 달러)을 미지급하였음을 이유로 중재 제기, 현재 중재절차 진행 중

- (파생절차 등 대응)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 이후 진행되는 파생절차(주로 국외 법원 승인·집행 소송* 및 소송비용 환수를 위한 소송, 강제집행절차 등) 등에 적시 대응하여 국익 보호

* 선고 후 중재판정금 등의 지급(패소시) 또는 소송비용 등의 환수(승소시)

- (국제공조 강화) 주요 중재인들과 국가 대표단이 참석하는 국제회의에 참석하여, 중동 사태(고환율·고유가 등 상황) 등에 대한 정부 긴급조치의 ISDS 제소 위험에 대해 선제적 대응(우호적 지형 사전 확보, 분쟁 조기 진화 등), 최근 ISDS 3연승 등 K-ISDS 대응 모델 우수성 홍보 및 ISDS 최신 우수사례와 대응 기법 습득 등 수행
- (국제투자분쟁 예방 및 대응) 중재의향서 접수사건 대응, UNCITRAL 등 ISDS 제도 개선 관련 국제회의 참석, ISDS 예방 교육 및 FTA·BIT 등 투자협정 협상 등을 통한 ISDS 사전 방지 ※예방 사업은 국제법무지원과 수행 사업
- (전문위원 인건비) ISDS 전담 수행을 위한 국제법 전문위원에 대한 인건비 지급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정부조직법 제32조,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의3 제2항 제3호(국제투자분쟁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사항) 및 시행규칙 제7조의3 6항(⑥ 국제투자분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제투자분쟁 대응에 관한 사항 2. 국제투자분쟁 관련 법적 지원에 관한 사항 3. 국제투자분쟁대응단의 실무 운영에 관한 사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에 관한 국내외 관계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국제투자분쟁의 예방 및 대응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② 추진경위

- (론스타) ’12. 11. 론스타 중재제기 → ’22. 8. 31. 중재판정부, 대한민국 정부에 2,858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선고 → ’23. 7. ~ 9. 양측 취소신청 제기하여 취소절차 진행 → ’25. 11. 원 판정 취소 결정 선고
- (쉰들러) ’18. 10. 쉰들러 중재제기 → 절차 중단(’19. 2. ~ 8., ’20. 10. ~ ’21. 11.) → ’21. ~ ’23. 서면공방 → ’24. 4. 구술심리 → ’26. 3. 판정선고(정부 전부승소)
- (민봉진) ’20. 7. 민봉진 중재제기 → ’20. ~ ’23. 서면공방 → ’23. 11. 구술심리 → ’24. 5. 판정선고(정부 전부승소) → ’24. 9. 민봉진 측 취소신청 제기 → ’25. 2. 구술심리 → ’26. 3. 구술심리 등 현재 취소절차 진행 중
- (다야니2차) ’21. 10. 다야니 중재제기 → ’21. ~ ’23. 서면공방 → ’24. 9. ~ 10. 구술심리 등 중재절차 진행 중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9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3	2024	2025	2026	2027(안)
사업비	5,504	5,275	4,717	4,723	4,523

- 기타: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제법무국 국제투자분쟁과
- 사업 수혜자 :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7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

① 론스타

: (2026) 1,985백만원 → (2027안) 1,734백만원, 251백만원 감액

- (요구) 국제투자분쟁대응 역량 내재화를 통한 개선(관행적 법률자문료 비용 등 절감) 등 감액 요구
- (산출) 법률자문비용 1,729백만원, 업무추진비 5백만원

ㅇ 2026년도 예산 및 2027년도 예산안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6년 예산		2027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985,000	○ **일반수용비(210-01) : 1,955,000천**원 가. 국내로펌 법률자문비용 649,000천원 ・ 8명×453천원×179시간 = 나. 국외로펌 법률자문비용 1,180,000천원 ・ 8명×$689×155.2시간 = 다. 중재기관 납입료 등 행정비용 126,000천원 ○ **국외업무여비(220-02) : 25,000천원** 가. ISDS 사건 중재절차 참여 25,000천원 ○ **사업추진비(240-01) : 5,000천원** 가. 전략회의 5,000천원 ・ 500천원×10회 =	1,734,000	○ **일반수용비(210-01) : 1,729,000천**원 가. 국내로펌 법률자문비용 504,000천원 ・ 8명×453천원×139시간 = 나. 국외로펌 법률자문비용 1,100,000천원 ・ 8명×$689×133.9시간 = 다. 중재기관 납입료 등 행정비용 126,000천원 ○ **사업추진비(240-01) : 5,000천원** 가. 업무추진 5,000천원 ・ 500천원×10회 =

② 쉰들러

: (2026) 1,227백만원 → (2027안) 1,505백만원, 278백만원 증액

- (요구) 승소조건부 확급 약정 비용 지급을 위한 증액 요구
- (산출) 법률자문비용 1,500백만원, 업무추진비 5백만원

ㅇ 2026년도 예산 및 2027년도 예산안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6년 예산		2027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227,000	○ **일반수용비(210-01) : 1,222,000천원** 가. 국내로펌 법률자문비용 476,000천원 ・ 7명×453천원×150시간 = 나. 국외로펌 법률자문비용 746,000천원 ・ 8명×$689×98.14시간 = ○ **사업추진비(240-01) : 5,000천원** 가. 전략회의 5,000천원 ・ 500천원×10회 =	1,505,000	○ **일반수용비(210-01) : 1,500,000천원** 가. 승소조건부 환급약정 비용 1,500,000천원 ・ 1,500,000천원×1회 = ○ **사업추진비(240-01) : 5,000천원** 가. 업무추진 5,000천원 ・ 500천원×10회 =

③ 민봉진

: (2026) 845백만원 → (2027안) 200백만원, 645백만원 감액

- (요구) 국제투자분쟁대응 역량 내재화를 통한 개선(관행적 법률자문료 비용 등 절감) 등 감액 요구
- (산출) 법률자문비용 195백만원, 업무추진비 5백만원

ㅇ 2026년도 예산 및 2027년도 예산안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6년 예산		2027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845,000	○ **일반수용비(210-01) : 840,000천원** 가. 국내로펌 법률자문비용 246,000천원 ・ 8명×453천원×68시간 = 나. 국외로펌 법률자문비용 593,000천원 ・ 8명×$689×78시간 = ○ **사업추진비(240-01) : 5,000천원** 가. 전략회의 5,000천원 ・ 500천원×10회 =	200,000	○ **일반수용비(210-01) : 195,000천원** 가. 국내로펌 법률자문비용 65,000천원 ・ 8명×453천원×18시간 = 나. 국외로펌 법률자문비용 130,000천원 ・ 8명×$689×15.8시간 = ○ **사업추진비(240-01) : 5,000천원** 가. 업무추진 5,000천원 ・ 500천원×10회 =

④ 다야니2차

: (2026) 441백만원 → (2027안) 466백만원, 25백만원 증액

- (요구) 사건 진행 상황에 따라 중재절차 참여 수행을 위한 증액 요구
- (산출) 법률자문비용 436백만원, 중재절차참여 25백만원, 업무추진비 5백만원

ㅇ 2026년도 예산 및 2027년도 예산안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6년 예산		2027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441,000	○ **일반수용비(210-01) : 436,000천원** 가. 국내로펌 법률자문비용 117,000천원 ・ 7명×507천원×33시간 = 나. 국외로펌 법률자문비용 193,000천원 ・ 7명×$713×28시간 = 다. 중재기관 납입료 등 행정비용 126,000천원 ○ **사업추진비(240-01) : 5,000천원** 가. 전략회의 5,000천원 ・ 500천원×10회 =	466,000	○ **일반수용비(210-01) : 436,000천원** 가. 국내로펌 법률자문비용 117,000천원 ・ 7명×507천원×33시간 = 나. 국외로펌 법률자문비용 193,000천원 ・ 7명×$713×26시간 = 다. 중재기관 납입료 등 행정비용 126,000천원 ○ **국외업무여비(220-02) : 25,000천원** 가. ISDS 사건 중재절차 참여 25,000천원 ○ **사업추진비(240-01) : 5,000천원** 가. 업무추진 5,000천원 ・ 500천원×10회 =

⑤ 파생절차 등 대응(신규)

: (2026) - → (2027안) 140백만원, 순증

- (요구) 파생절차 대응을 위한 법률자문료, 정부대표단의 현지 대응 등을 위한 예산 요구
- (산출) 법률자문비용 90백만원, 국외업무여비 50

ㅇ 2026년도 예산 및 2027년도 예산안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6년 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	-	140,000	○ **일반수용비(210-01) : 90,000천원** 가. 법률자문료 900,000천원 ・ 30백만원×3회 = ○ **국외업무여비(220-02) : 50,000천원** 가. 파생절차 참여 50,000천원 ・ 25,000천원×2회 =

⑥ 국제공조 강화(신규)

: (2026) → (2027안) 118백만원, 순증

- (요구) 국제회의 참석 등을 통한 ISDS 선제적 방어 활동 및 K-ISDS 대응 모델 홍보, '22 발간된 국제투자중재 연구서에 최근 ISDS 승소사례 포함 개정 등을 위한 예산 요구
- (산출) 국제세미나 개최 경비 등 28백만원, 국제회의실 등 임차료 10백만원, 개정판 발간 등을 위한 정책 연구비 20백만원, 국제중재 회의 참석을 위한 국외업무여비 56백만원, 업무추진비 4백만원

ㅇ 2026년도 예산 및 2027년도 예산안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6년 예산		2027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	-	118,000	○ **일반수용비(210-01) : 28,000천원** 가. 자료집 발간 3,168천원 ・ 3백만원×1회 = 나. 자료 리서치 10,8790천원(GAR 등 평균 구독료) ・ 11백만원×1회 = 다. 국제세미나 개최 경비 13.500천원 ・ 2.25백만원×6회 = ○ **임차료(210-07) : 10,000천원** 가. 국제세미나 회의실 등 임차료 10,000천원 ・ 5,000천원×2회= ○ **국외업무여비(220-02) : 56,000천원** 가. 국제중재 관련 회의 참석 56,000천원 ・ 18,666천원×3회 = ○ **사업추진비(240-01) : 4,000천원** 가. 국제공조 강화 관련 업무협의 등 4,000천원 ・ 500천원×8회 = ○ **정책연구비(240-01) : 20,000천원** 가. 해외 ISDS 대응 사례 등 연구 20.000천원 ・ 20,000천원×1회 =

⑦ 국제투자분쟁 예방 및 대응

: (2026) 71백만원 → (2027안) 135백만원, 64백만원 증액

- (요구) ISDS 관련 제도개선을 위한 UNCITRAL 회의 참석 확대, ISDS 초기대응 강화 등을 위한 증액 요구
- (산출) 법률자문비용 및 예방교육 등 94백만원, 국내여비 5백만원, 국외업무여비 34백만원, 업무추진비 2백만원

ㅇ 2026년도 예산 및 2027년도 예산안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71,000	○ **일반수용비(210-01) : 44,000천원** 가. 국제투자분쟁 예방교육 및 자료 발간 등 24,000천원 나. 현안 관련 법률자문료 20,000천원 ・ 5백만원×4회 = ○ **국내여비(220-01) : 5,000천원** 가. ISDS 사건 관련 로펌 등 유관기관 협의 참석 ・ 170천원×2명×15회= ○ **국외업무여비(220-02) : 20,000천원**	135,000	○ **일반수용비(210-01) : 94,000천원** 가. 국제투자분쟁 예방교육 및 자료 발간 등 24,000천원 나. 현안 관련 법률자문료 20,000천원 ・ 5백만원×4회 = 다. ISDS 초기 대응 법률자문료 50,000천원 ・ 5백만원×10회 = ○ **국내여비(220-01) : 5,000천원** 가. ISDS 사건 관련 로펌 등 유관기관 협의 참석 ・ 170천원×2명×15회=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가. UNCITRAL 회의 참가 10,000천원 ・ 10,000천원×1회 = 나. 투자협상 참석 10,000천원 ・ 10,000천원×1회 = ○ **사업추진비(240-01) : 2,000천원** 가. 국제투자분쟁 대응 관련 업무협의, 간담회 2,000천원 ・ 500천원×4회 =		○ **국외업무여비(220-02) : 34,000천원** 가. UNCITRAL 회의 참가 24,000천원 ・ (공식회의) 10,750천원×2회 = ・ (회기간회의) 2,500천원×1회 = 나. 투자협상 참석 10,000천원 ・ 10,000천원×1회 = ○ **사업추진비(240-01) : 2,000천원** 가. 국제투자분쟁 대응 관련 업무협의 등 2,000천원 ・ 500천원×4회 =

⑧ 전문위원 인건비

: (2026) 154백만원 → (2027안) 225백만원, 71백만원 증액

- (요구) ISDS 대응기능 확대, 사건 수 및 중대성·복잡성 등 증가로 인한 전문위원 1명 증원 및 공무직 처우개선 증액 요구
- (산출) 상용임금 186백만원, 복리후생비 2, 고용부담금 37백만원

ㅇ 2026년도 예산 및 2027년도 예산안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54,000	○ **상용임금(110-03) : 128,000천원** 가. 봉급, 명절상여금, 급식보조비 등 128,000천원 ・ 64,000천원×2명 = ○ **복리후생비(210-12) : 1,000천원** 가. 맞춤형 복지비 1,000천원 ・ 500천원×2명 = ○ **고용부담금(320-09) : 25,000천원** 가. 공무직 4대보험, 퇴직연금 등 24,,000천원 ・ 128,000천원×19.8% =	154,000	○ **상용임금(110-03) : 186,000천원** 가. 봉급, 명절상여금, 급식보조비 등 186,000천원 ・ 68,000천원×2명 = ・ 68,000천원×1명×9/12월 = ○ **복리후생비(210-12) : 2,000천원** 가. 맞춤형 복지비 2,000천원 ・ 600천원×2명 = ・ 500천원×1명×9/12월 = ○ **고용부담금(320-09) : 37,000천원** 가. 공무직 4대보험, 퇴직연금 등 37,,000천원 ・ 128,000천원×20.02% =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3~2027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3	2024	2025	2026	2027	2027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국제소송지원 및 국제투자분쟁 대응 (단위: 건)	목표	-	50	51.5	(삭제)	(삭제)	'26.부터 '국제법무활동 프로그램'이 '법무활동' 프로그램으로 통합됨에 따라 삭제	관계부처 등 회의건수 + 심리기일·재판 및 관련 국제회의 참석건수 + 각종서면·증거 검토 및 제출건수 + 자문건수 + 보도자료 및 알림자료 건수	관련 공문, 제출서면, 보고서 등
	실적	-	50	-	-	-			
	달성도	-	100%	-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론스타 사건 판정 선고 / 정부입장발표 브리핑 실시('22. 8. 31.) · 론스타 사건 판정문 정정 신청('22. 10. 15.) · 다야니2차 사건 중재판정부 구성('22. 7. 8.)
2023	· 론스타 사건 정부 및 론스타 양측 판정 취소신청 제기('23. 7. ~ 9.) · 중국투자자 사건 심리기일 참석('23. 11)
2024	· 중국투자자 사건 정부 전부승소 판정 선고('24. 5.) · 다야니 2차 사건 심리기일 참석('24. 10.)
2025	· 론스타 사건 취소절차 구술심리 참석('25. 1)
2026	· 민봉진 사건 취소절차 구술심리 참석('26.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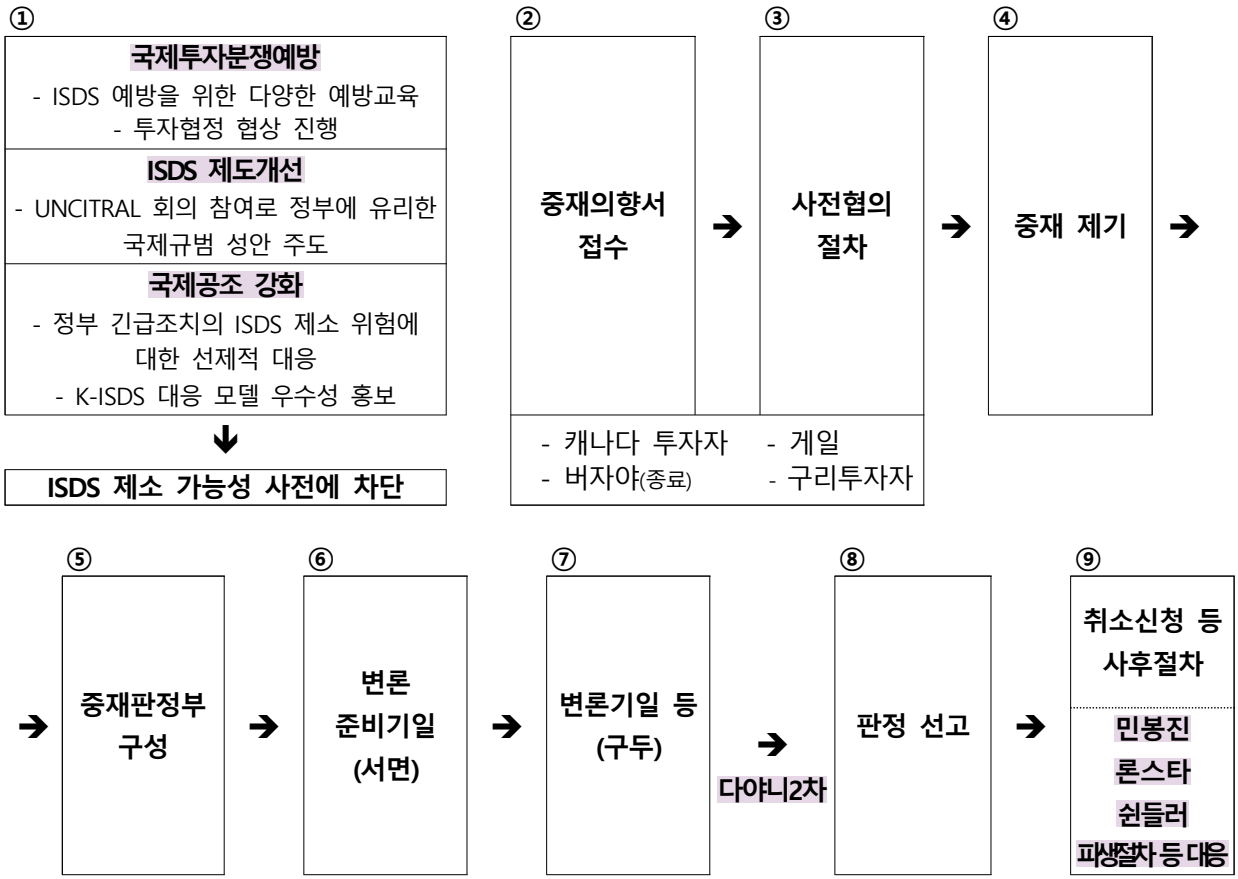
③ 향후(2027년도 이후) 기대효과

-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사건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통한 국익 제고
- UNCITRAL 등 각종 국제회의 참석을 통한 제도개선 논의 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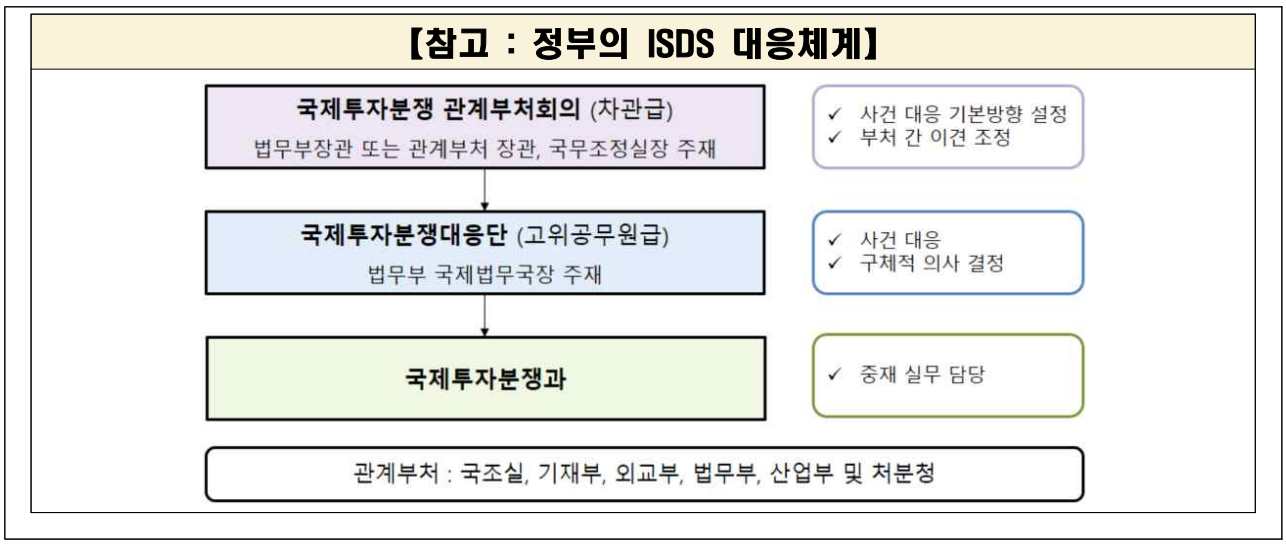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세부사업명	해당 업무절차	주요내역
국제투자 분쟁 중재수행 및 대응	론스타	⑨	ISDS 대응 정부대리로펌에 대한 국내, 국외 법률자문료 중재기관 납입 행정비용 등 기타비용 ISDS 중재기일 참석 국외업무여비
	쉰들러	⑨	
	민봉진	⑨	
	다야니2차	⑦ ~ ⑧	
	파생절차 등 대응	⑨	중재판정 이후 진행되는 파생절차에 적시 대응하기 위한 법률자문료, 국외업무여비
	국제공조 강화	①	ISDS 선제적 방어 활동, K-ISDS 대응 모델 홍보를 위한 국제중재회의 참석 및 세미나 개최경비 국제투자중재 개정판 발간 등에 대한 정책연구비
	국제투자분쟁예방및대응	①	ISDS 현안 관련 법률자문 UNCITRAL 및 투자협상 참여 국제투자분쟁 예방교육 및 자료발간
	전문위원 인건비	전문위원 인건비	국제법 전문위원 인건비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25~2029	4,717	4,723	4,481	4,387	4,245	
2026~2030		4,723	4,523	4,659	4,798	4,942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결산보고서 재무제표 주석에 론스타 사건의 충실한 기재 필요(예결위,23결산)
- 국제투자분쟁중재사건의 항소 여부 원점 재검토 필요(예결위,23결산)
- 정부의 배상책임이 확정된 즉시, 정부 배상책임에 원인을 제공한 불법행위자들에 대해 구상권 준비 필요(예결위,23결산)
- 서로 다른 프로그램의 예산을 별도의 이용절차 없이 혼용하여 집행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예결위·상임위, 24결산)

2) 감사원 감사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 해당없음

3) 자체평가·감사 : 해당없음

4)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 해당없음

5)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2024년 결산서 재무제표 주석에 사건 경과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완료
- '24. 9.경부터 12.경까지 항소계속여부에 관하여 관계부처, 정부대리로펌, 외부 전문가 등의 검토 결과, 이미 취소절차가 상당부분 진행된 점, 항소포기시 향후 ISDS 대응에 미칠 악영향 등을 고려하여 최선을 다해 취소절차에 임하는 것이 국익에 부합하는 길이라는 결론 도출
- 관계부처, 정부대리로펌, 외부 전문가들의 긴밀한 의견 수렴 등 협의를 거쳐 구상권 및 손해배상청구 가부 및 관련 법리 등 검토 진행 중
- 사건별 진행 경과, 정부대리로펌과의 계약 금액 및 미지급 금액 등을 예산 편성 시 면밀히 분석·반영하여 예산이 실제 소요에 부합하게 편성되도록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향후 집행단계에서도 이·전용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여 예산 관리에 만전을 기할 예정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해당없음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2) 해당사업에 대한 부처 자체평가의 결과

1) 2023년도 부처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미흡
(국제투자분쟁 중재수행 및 대응 사업은 '22년 예산 집행률 78.5%로 부진하여 재정사업 자율평가 시 미흡사업으로 선정)

2) 2024년도 부처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보통
(성과지표 달성, 집행률 제고, 예산 편성 및 집행 관리 철저)

13) 2026년도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 결과 및 후속 조치 현황

평가결과	성과평가 주요내용	조치결과
사업개선	○ (사업계획 적정성 측면) - 국제법 전문 변호사(전문위원) 이직에 따른 채용 공백 문제가 있는바 **장기근속 유인책 마련** 등을 통해 인력 운용의 안정성을 꾀함으로써 사업의 영속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집행 효율성 측면) - 전문위원 **인건비의 반복적 불용을 해소하기 위해** 임금 상승 및 근로조건 개선 등 운영 체계 개선 필요 ※ 최근 3년 전문위원 인건비 불용액 : ('25년) 25백만원, ('24년) 13백만원 ('23년) 23백만원 - 예측 불가능한 소송 상황 등 사업 특수성이 반영된 집행 지침을 마련하여 예산 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업무강도 적정화 - 전문위원 증원 추진(1명) ○ 정기적인 전문위원 면담 및 업무 만족도 조사 실시 - 이직 의사를 사전에 파악 - 퇴직 예상 시 즉각적인 채용 절차에 착수하여 공백 기간 최소화, 사업 영속성 확보

14) 부처 건의사항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3	5,504	-	5,504	-	-	-	5,504	5,472	99.4	99.4	-	32
2024	5,275	-	5,275	-	-	-	5,275	5,262	99.8	99.8	-	13
2025	4,717		4,717	-	4	3,010	7,731	7,706	163.4	99.7	-	25
2026	4,723	70	4,793	-	-		4,793	3,350	69.9	69.9	-	-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 해당없음

2) 주요 결산사항

□ 2023~2026년 결산사항

2023	- 전용: '23년 쉰들러 및 다야니 사건 대응과 관련한 로펌 업무증가로 인한 법률자문비용 증액 필요에 따라 국제투자분쟁중재 수행 사업내 국외여비로부터 일반수용비로 111백만원 전용
2024	- 전용: '24년 쉰들러 사건 PCA 중재비용 예납금 납부 및 다야니 사건 법률자문비용 지급을 위해 국제투자분쟁중재 수행 및 대응 사업 내 국외여비로부터 일반수용비로 141백만원 전용
2025	- 예비비 : 론스타 측이 추가 서면 및 증거 제출 등 공세를 강화함에 따라 이에 대응하고자 예산 편성 시 예측할 수 없었던 추가 예산 3,010백만원 편성
2026	- 추경 : 중동사태 등 정부 비상조치 관련 ISDS 선제대응을 위한 예산 70백만원 편성

□ 2026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

□ 2026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 해당없음

사 업 명
기업환경지수 개선(1032-307)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법무부	법무실	일반회계	020	022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000	1032	307
명칭	법무활동	국제법무운영 및 외국법제연구	기업환경지수 개선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6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기업환경지수개선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법무실	최성수	이인구	강은아
		상사법무과	02-2110-3629	02-2110-3631	02-2110-3851
	사업시행주체	대한상사중재원	경영기획팀	차장 이명희	02-551-2011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년 결산	2026년 예산		2027년		증감	
		본예산(A)	추경	요구안	조정안(B)	(B-A)	(B-A)/A
기업환경지수 개선	2,652	2,653	2,653	2,553	2,535	△118	△4.4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25					2026(2026.7월말)							2027 예산안
	예산액(추경)	예산현액	집행액[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현액	집행액[실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예상액	불용예상액	
									예산현액	집행액[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2,653	2,653	2,652 [2,260]	-	1	2,653	2,653	2,404	2,653	2,404	-	-	2,535
· 국제세미나 개최	56	56	56	-	-	56	56	4	56	4	-	-	56
· 서울국제콘퍼런스	79	79	79	-	1	79	79	0	79	0	-	-	79
· 기업투자환경 개선 세미나	28	28	28	-	-	28	28	0	28	0	-	-	-
· 기업환경 법제분석 연구용역	90	90	90	-	-	90	90	0	90	0	-	-	-
· 기업환경평가대응 분쟁해결분야 역량강화	2,400	2,400	2,400 [2,008]	-	-	2,400	2,400	2,400	2,400	2,400	-	-	2,400
○ 비목별 분류(합계)	2,653	2,653	2,652 [2,260]	-	-	2,653	2,653	2,404	2,653	2,404	-	-	2,535
· 일반수용비(210-01)	53	53	53	-	-	53	53	0	53	0	-	-	37
· 임차료(210-07)	34	34	34	-	-	34	34	0	34	0	-	-	22
· 일반용역비(210-14)	27	27	27	-	-	27	27	0	27	0	-	-	27
· 국외여비(220-02)	40	40	39	-	-	40	40	0	40	0	-	-	40
· 사업추진비(240-01)	9	9	9	-	-	9	9	4	9	4	-	-	9
· 정책연구비(260-01)	90	90	90	-	-	90	90	0	90	0	-	-	0
· 민간경상보조(320-01)	2,400	2,400	2,400 [2,008]	-	-	2,400	2,400	2,400	2,400	2,400	-	-	2,400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2,653	2,653	2,652 [2,260]	-	1	2,260	2,260	2,404	2,653	2,404	-	-	2,535
· 국제세미나 개최	56	56	56	-	-	56	56	4	56	4	-	-	56
-일반수용비(210-01)	23	23	23	-	-	23	23	0	23	0	-	-	23
-임차료(210-07)	12	12	12	-	-	12	12	0	12	0	-	-	12
-국외여비(220-02)	14	14	14	-	-	14	14	0	14	0	-	-	14
-사업추진비(240-01)	7	7	7	-	-	7	7	4	7	4	-	-	7
· 서울국제콘퍼런스	79	79	79	-	1	79	79	0	79	0	-	-	79
-일반수용비(210-01)	14	14	14	-	-	14	14	0	14	0	-	-	14
-임차료(210-07)	10	10	10	-	-	10	10	0	10	0	-	-	10
-일반용역비(210-14)	27	27	27	-	-	27	27	0	27	0	-	-	27
-국외여비(220-02)	26	26	25	-	1	26	26	0	26	0	-	-	26

	2025					2026(2026.7월말)							2027 예산안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사업추진비(240-01)	2	2	2	-	-	2	2	0	2	0	-	-	2
· 기업투자환경 개선 세미나	28	28	28	-	-	28	28	0	28	0	-	-	-
-일반수용비(210-01)	16	16	16	-	-	16	16	0	16	0	-	-	-
-임차료(210-07)	12	12	12	-	-	12	12	0	12	0	-	-	-
· 기업환경 법제분석 연구용역	90	90	90	-	-	90	90	0	90	0	-	-	-
-정책연구비(260-02)	90	90	90	-	-	90	90	0	90	0	-	-	-
· 기업환경평가 대응 분쟁해결분야 역량 강화	2,400	2,400	2,400 [2,008]	-	-	2,400	2,400	2,400	2,400	2,400	-	-	2,400
-민간경상보조(320-01)	2,400	2,400	2,400 [2,008]	-	-	2,400	2,400	2,400	2,400	2,400	-	-	2,40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국제세미나 개최)** 세계은행의 기업환경평가(B-Ready)에 대비한 평가체계 분석 및 기업환경 우수국가 기업법제 분석과 우리나라의 기업환경 제도개선 노력 홍보를 위하여 기업법제 우수국가 등에서 세미나 개최하려는 것임
- **(서울국제콘퍼런스)** 기업환경평가기준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기업환경개선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 협력대상국 관계자, 기업환경개선 전문가 등을 초청하여 각국의 기업환경개선 사례를 공유하고 기업환경 법제 개선점을 모색하려는 것임
- **(기업투자환경 개선 세미나)** 우리나라 기업환경지수 개선을 위하여 상법 등 우리 기업·투자 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오피니언 리더들이 참여하는 세미나를 개최하려는 것임
- **(기업환경 법제분석 연구용역)** 복합위기 시대를 맞이하여 기업환경이 변화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에 대한 기업법제의 변화방향 및 구체적인 법제 내용을 선제적·적극적으로 분석하고 연구하려는 것임
- **(기업환경평가대응 분쟁해결분야 역량 강화)** 최근 법원 재판 지연 대책 및 중소기업 분쟁해결비용 경감 등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대체적 분쟁해결 제도 역량 강화를 위한 기반 조성하려는 것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정부조직법 제32조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조(법무에 관한 자료 조사, 부처 법령자문, 각종 법령 해석)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9조제3항(법령안의 기초 및 심사, 법무제도 및 그 운영에 관한 연구·개선, 민사관계법령 연구)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5조제13항
- 중재법 제40조(상사중재기관에 대한 보조) 및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재정 지원)

② 추진경위

- 세계은행은 국가별 기업 친화적 환경 조성 정도를 매년 정량적으로 평가하여(3개 필라, 10개 분야) 기업환경지수 발표하고 기업환경평가 결과는 정책 혁신을 위한 참고자료, 기업환경 관련 연구 기초 자료 및 외국인 투자자들의 투자 판단 시 주요 참고 자료로 활용

- 세계은행 기업환경지수는 글로벌 기업의 투자 의사결정에 활용되는 주요 지표로, 재정경제부가 총괄하여 각 부처가 분야별 평가점수 향상을 위한 정책 추진 중
  * 법무부는 위 10개 분야 중 입지선정, 금융, 분쟁해결, 도산 부분을 주관하고, 그 외 분야의 법령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자문 수행
- 기업환경지수는 정책입안자, 회사, 투자자들에게 객관적 정보를 제공하여 투자 유치 및 경제 성장에 영향을 미친다는 실증적 분석 결과 확인
- 세계은행은 2020년 기존 기업환경평가(EoDB)를 중단하고 2023년 기업환경평가(B-Ready) 사업 재개하여 3년 간의 시범기간을 거쳐 2027년 본격적인 평가가 시작될 예정으로, 보다 적극적인 대응 필요한 것으로 2015년부터 투자유치 확대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향후 기업환경 개선 방향을 도출하기 위한 사업임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15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3	2024	2025	2026	2027(안)
사업비	223	253	2,653	2,653	2,535

- 기타: 해당 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민간보조
- 사업시행주체 : 법무부 법무실, 대한상사중재원(국제중재센터)
- 사업 수혜자 : 기업,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7예산안)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기업환경 평가대응 분쟁해결 분야 역량 강화	보조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센터)	2,400	정액	중재법 제40조 및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재정 지원)

3) 2027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

① 국제세미나 개최

: (2026 본예산) 56만원 → (2027 요구) 56백만원, 전년동

- (요구) 세계은행 기업환경지수는 투자자들이 투자 결정을 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세계은행 등을 상대로 법제 설명을 시행하기 위한 예산
- (산출) 56백만원
  * 통·번역료, 자료집 발간 등 23백만원 = 2회×11.5백만원
  * 국제세미나 임차료 12백만원 = 2회×6백만원
  * 국외여비 14백만원 = 2회×7백만원
  * 업무추진 7백만원 = 2회×3.5백만원

ㅇ 2026년도 예산 및 2027년도 예산안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6년 본예산		2027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56,000	**1. 일반수용비 : 통·번역료 자료집 발간 등(210-01) 23,000천원** · 2회×11,500천원 **2. 임차료 : 행사장 등 임차료(210-07) 12,000천원** · 2회×6,000천원 **3. 국외여비(220-02) 13,657천원** · 2회×6,828천원 **4. 사업추진비(240-01) 7,000천원** · 2회×3,500천원	56,000	**1. 일반수용비 : 통·번역료 자료집 발간 등(210-01) 23,000천원** · 2회×11,500천원 **2. 임차료 : 행사장 등 임차료(210-07) 12,000천원** · 2회×6,000천원 **3. 국외여비(220-02) 13,657천원** · 2회×6,828천원 **4. 사업추진비(240-01) 7,000천원** · 2회×3,500천원

② 서울국제콘퍼런스 개최

: (2026 본예산) 79백만원 → (2027 요구) 79백만원, 전년동

- (요구) 세계은행 및 협력대상국 관계자, 기업환경지수 전문가 등을 초청하여 콘퍼런스를 개최, 각국의 기업환경개선 사례를 공유하여 우리나라 기업환경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예산
- (산출) 79백만원
  * 통번역료, 자료집 발간 등 : 14백만원=1회×14백만원
  * 임차료 : 10백만원=1회×10백만원
  * 일반용역비 : 27백만원=1회×27백만원
  * 국외여비 : 26백만원=15명×3일×0.58백만원
  * 행사지원, 업무추진 : 2백만원=1회×2백만원

ㅇ 2026년도 예산 및 2027년도 예산안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6년 본예산		2027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79,000	**1. 일반수용비 : 통·번역료 자료집 발간 등(210-01) 14,000천원** · 1회×14,000천원 **2. 임차료 : 행사장 임차료(210-07) 10,000천원** **3. 일반용역비(210-14) 27,000천원** · 1회×27백만원 **4. 국외여비(220-02) 26,000천원** · 15명×3일×580천원 **5. 사업추진비(240-01) 2,000천원**	79,000	**1. 일반수용비 : 통·번역료 자료집 발간 등(210-01) 14,000천원** · 1회×14,000천원 **2. 임차료 : 행사장 임차료(210-07) 10,000천원** **3. 일반용역비(210-14) 27,000천원** · 1회×27백만원 **4. 국외여비(220-02) 26,000천원** · 15명×3일×580천원 **5. 사업추진비(240-01) 2,000천원**

③ 기업투자환경 개선 세미나

: (2026 본예산) 28백만원 → (2027 요구) 28백만원, 전액 감액

④ 기업환경 법제분석 연구용역

: (2026 본예산) 90백만원 → (2027 요구) 90백만원, 전액 감액

⑤ **기업환경평가대응 분쟁해결분야 역량 강화**

: (2026 본예산) 2,400백만원 → ('26안) 2,400백만원

- (요구) 최근 법원 재판 지연 대책 및 중소기업 분쟁해결비용 경감 등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대체적 분쟁해결 제도 기반 조성
- (산출) 2,400백만원

* 민간경상보조 2,400백만원 = 전문인력 확보 1,400백만원 + 국제중재유치 활동 사업비 600백만원 + 운영비 400백만원

ㅇ 2026년도 예산 및 2027년도 예산안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6년 본예산		2027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2,400,000	○ **민간경상보조(320-01) 2,400,000천원** **가. 전문인력 확보 1,400,000천원** · 사무국 전문인력(중재사건처리 변호사) 1,100,000천원 = 33,333천원*12월*1명 + 25,000천원*12월*1명 + 16,667천원*12월*2명 · 홍보/운영인력 200,000천원 = 6,667천원*12월*1명 + 4,167천원*12월*1명 + 2,917천원*12월*2명 · 위원회 위원 수당 100,000천원 = 417천원*12월*20명 **나. 사업비 600,000천원** · Civil Law Summit for Asian Arbitration 개최 100,000천원 = 메인콘퍼런스 25,000천원 + 행사위탁(계약) 40,000천원 + 운영비 35,000천원 · 한국국제중재 홍보 100,000천원 = 법제, 판례, 중재판정 등 영문자료 제작 100,000천원*1년 · 국제중재센터 설명회/세미나 200,000천원 = (해외전략 대상국가 설명회 임차료 30,000천원 + 여비 13,600천원 + 운영비 6,400천원) + (해외중재기관 개최 행사 참석 및 홍보 여비 61,200천원 + 참가비 22,800천원 + 홍보비 66,000천원) · 국내기업 대상 산업별 국제중재 홍보사업 100,000천원 = 강사사례금 500천원*5회*10명 + 자료집 5,000천원*5회 + 운영비 8,000천원*5회+행사안내 2,000천원*5회 · 중재전문인력 양성 100,000천원 = Vis Pre-Moot 행사 50,000천원 + 한국인 국제중재인 양성 프로그램 50,000천원 **다. 운영비 400,000천원** · 임차료, 관리비, 시설비 등 400,000천원*1년	2,400,000	○ **민간경상보조(320-01) 2,400,000천원** **가. 전문인력 확보 1,400,000천원** · 사무국 전문인력(중재사건처리 변호사) 1,100,000천원 = 33,333천원*12월*1명 + 25,000천원*12월*1명 + 16,667천원*12월*2명 · 홍보/운영인력 200,000천원 = 6,667천원*12월*1명 + 4,167천원*12월*1명 + 2,917천원*12월*2명 · 위원회 위원 수당 100,000천원 = 417천원*12월*20명 **나. 사업비 600,000천원** · Civil Law Summit for Asian Arbitration 개최 100,000천원 = 메인콘퍼런스 25,000천원 + 행사위탁(계약) 40,000천원 + 운영비 35,000천원 · 한국국제중재 홍보 100,000천원 = 법제, 판례, 중재판정 등 영문자료 제작 100,000천원*1년 · 국제중재센터 설명회/세미나 200,000천원 = (해외전략 대상국가 설명회 임차료 30,000천원 + 여비 13,600천원 + 운영비 6,400천원) + (해외중재기관 개최 행사 참석 및 홍보 여비 61,200천원 + 참가비 22,800천원 + 홍보비 66,000천원) · 국내기업 대상 산업별 국제중재 홍보사업 100,000천원 = 강사사례금 500천원*5회*10명 + 자료집 5,000천원*5회 + 운영비 8,000천원*5회+행사안내 2,000천원*5회 · 중재전문인력 양성 100,000천원 = Vis Pre-Moot 행사 50,000천원 + 한국인 국제중재인 양성 프로그램 50,000천원 **다. 운영비 400,000천원** · 임차료, 관리비, 시설비 등 400,000천원*1년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3~2027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사항 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3	○ 2023. 11. 기업환경평가 관련 국제세미나 개최 ○ 2023. 12. 기업환경지수 국제 컨퍼런스 개최
2024	○ 2024. 10. 기업투자환경 개선 세미나 개최 ○ 2024. 8. ~ 12. 기업환경평가 관련 국제세미나 개최 ○ 2024. 12. 기업환경지수 국제 컨퍼런스 개최
2025	○ 2025. 11. 기업투자환경 개선 세미나 개최 ○ 2025. 11. 기업환경평가 관련 국제세미나 개최 ○ 2025. 12. 기업환경지수 국제 컨퍼런스 개최
2026	○ 2026. 기업투자환경 개선 세미나 개최(예정) ○ 2026. 기업환경평가 관련 국제세미나 개최(예정) ○ 2026. 기업환경지수 국제 컨퍼런스 개최(예정)

③ 향후(2027년도 이후) 기대효과

- 각국의 기업환경개선 우수사례를 공유하여 우리나라 기업환경지수 순위 향상
- 우리나라의 기업환경 개선 성과를 세계은행과 각국에 알려 기업환경지수 상승을 도모하고, 투자유치 확대로 경제 활성화 기여('19년 기준 190개국 중 5위)

※ 세계은행은 2020년 기존 기업환경평가(EoDB)를 중단하고 2023년 기업환경 평가(B-Ready) 사업 재개하여 3년 간의 시범기간을 거쳐 2027년 본격적인 평가가 시작될 예정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세계은행 기업환경지수 발표 - 평가자료 분석 - 개선분야, 협력국 등 선정 - 법무부·기재부 공동추진 협의	➡	기업환경지수 개선사항 발굴 - 기업투자환경 개선 세미나 개최 - 평가지표 분석 또는 지표별 우수사례 연구용역 추진 - 현지 국제세미나 개최 - 국제콘퍼런스 개최 - 대한상사중재원 국고 보조
	➡	기업환경지수 개선 - 발굴한 개선사항과 실무 노하우를 활용, 기업환경 평가 대응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25~2029	2,653	2,653	2,653	2,653	2,653	
2026~2030		2,653	2,535	2,535	2,535	2,535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해당 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하반기 우리나라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해외현지 세미나 및 기재부, 세계은행 공동으로 서울 국제콘퍼런스 개최 예정
- 최근 법원 재판 지연 대책 및 중소기업 분쟁해결비용 경감 등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대체적 분쟁해결 제도 기반 조성을 위한 인력충원 및 홍보 추진 예정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 없음

12) 동 사업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 : 해당 없음

13) 2026년도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 결과 및 후속 조치 현황

평가결과	성과평가 주요내용	조치결과
사업개선	- 국재중재센터의 사업운영 성과 수준 및 인건비 불용 가능성에 대한 관리·감독 노력 강화 필요 - 국제중재 사업지원에 대한 실질적인 성과관리 방안 마련 필요	- '26. 4. 보조사업에 대한 점검 실시 및 사업목적에 맞게 보조비목 계상 조치 등 관리감독 실시 - 보조사업 성과지표 사업 세분화 및 홍보노력도를 배점 반영

14) 부처 건의사항 : 해당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3	223	-	223	-	-	-	223	222	99.6	99.6	-	1
2024	253	-	253	-	-	-	253	239	94.5	94.5	-	14
2025	2,653	-	2,653	-	-	-	2,653	2,652	99.9	99.9	-	1
2026	2,653	-	2,653	-	-	-	2,653	2,404	90.6	90.6	-	-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 · 피보조 기관 등)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본예산	추경(A)								
2023	-	-	-	-	-	-	-	-	-	-
2024	-	-	-	-	-	-	-	-	-	-
2025	2,400	2,400	2,400	2,400	-	2,400	2,008	-	392	83.7
2026. 7월기준	2,400	2,400	-	2,400	-	2,400	1,145	-	-	47.72

2) 주요 결산사항

□ 2023~2026년 결산사항

2023	- 불용: 서울국제콘퍼런스 집행 잔액 1백만원 불용
2024	- 불용: 기업투자환경 개선 세미나 축소 집행(12. 3. 비상계엄사태로 대규모 세미나 개최 곤란)에 따라 행사 용역에 지출 예정이던 일반수용비 등 14백만원 불용
2025	- 불용 : 보조사업 중 인건비 미집행으로 392백만원 불용, 국외여비 잔액 1백만원 불용 - 보조기관 불용 : 보조사업 시행 첫해 대한상사중재원(피보조기관) 전문인력 채용 과정상 예상치 못한 차질(당사자의 계약 취소)에 따라 인건비에서 불의의 집행 잔액이 발생, '26년에는 전액 집행 가능
2026	- 해당없음

□ 2026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 없음

□ 2026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 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 해당 없음

사 업 명
국민편익증진 법제정비 (1033-3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법무부	법무실	일반회계	020	022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000	1033	300
명칭	법무활동	민상사법령의 선진화	국민편익증진 법제정비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6예산 시 소관
	O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국민편익증진 법제정비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법무실	(代)이윤구	김해경	양진원
		법무심의관실	02-2110-3501	02-2110-4262	02-2110-3513
	사업시행주체	직접집행	해당없음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년 결산	2026년 예산		2027년		증감 (B-A)	(B-A)/A
		본예산(A)	추경	요구안	조정안(B)		
국민편익증진 법제정비	4,650	4,554	-	5,332	5,332	778	17.1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25					2026('26.7월말)							2027 예산안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4,659	4,659	4,650 [4,416]	-	9	4,554	4,554	3,035	4,554	3,035	-	-	5,332
· 법제정비(민사법등)	882	882	881	-	1	888	888	319	888	319	-	-	1,547
· 주택·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3,414	3,414	3,414 [3,180]	-	-	3,299	3,299	2,474	3,299	2,474	-	-	3,616
· 법제정비(민법개정)	324	324	316	-	8	324	324	219	324	219	-	-	122
· 공무·직상·용임금	39	39	39	-	-	43	43	23	43	23	-	-	47
○ 비목별 분류(합계)	4,659	4,659	4,650 [4,416]	-	9	4,554	4,554	3,035	4,554	3,035	-	-	5,332
· 상용임금(110-03)	32	32	33	-	-	35	35	20	35	20	-	-	38
· 일반수용비(210-01)	622	622	752	-	-	622	622	314	622	314	-	-	619
· 특근매식비(210-05)	45	45	55	-	6	51	51	11	51	11	-	-	41
· 임차료(210-07)	78	78	88	-	-	78	78	67	78	67	-	-	66
· 복리후생비(210-12)	1	1	1	-	-	1	1	1	1	1	-	-	1
· 국내여비(220-01)	38	38	36	-	2	38	38	17	38	17	-	-	28
· 국외여비(220-02)	40	40	40	-	1	40	40	26	40	26	-	-	40
· 사업추진비(240-01)	63	63	63	-	-	63	63	32	63	32	-	-	63
· 정책연구비(260-02)	320	320	340	-	-	320	320	71	320	71	-	-	812
· 고용부담금(320-09)	7	7	6	-	-	8	8	3	8	3	-	-	8
· 법정민간대행(320-08)	3,414	3,414	3,414 [3,180]	-	-	3,299	3,299	2,474	3,299	2,474	-	-	3,616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4,659	4,659	4,650 [4,416]	-	9	4,554	4,554	3,035	4,554	3,035	-	-	5,328
· 법제정비(민사법등)	882	882	830	-	1	888	888	319	888	319	-	-	1,547
· 법제정비(민사법등)	882	882	830	-	1	888	888	319	888	319	-	-	735
-일반수용비(210-01)	469	469	419	-	-	469	469	181	469	181	-	-	536
-특근매식비(210-05)	35	35	35	-	-	41	41	8	41	8	-	-	41
-임차료(210-07)	63	63	61	-	-	63	63	62	63	62	-	-	63
-국내여비(220-01)	28	28	28	-	-	28	28	12	28	12	-	-	28
-국외여비(220-02)	40	40	40	-	1	40	40	26	40	26	-	-	40
-사업추진비(240-01)	27	27	27	-	-	27	27	19	27	19	-	-	27
-정책연구비(260-02)	220	220	220	-	-	220	220	11	220	11	-	-	-
· 법무실 정책연구비(260-02)	-	-	-	-	-	-	-	-	-	-	-	-	812

	2025					2026('26.7월말)							2027 예산안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주택·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3,414	3,414	3,414 [3,180]	-	-	3,299	3,299	2,474	3,299	2,474	-	-	3,616
・법제정비(민법개정)	324	324	316	-	8	324	324	219	324	219	-	-	122
-일반수용비(210-01)	153	153	153	-	-	153	153	133	153	133	-	-	83
-사업추진비(240-01)	36	36	36	-	-	36	36	13	36	13	-	-	36
-특근매식비(210-05)	10	10	4	-	6	10	10	3	10	3	-	-	-
-임차료(210-07)	15	15	27	-	-	15	15	5	15	5	-	-	3
-국내여비(220-01)	10	10	8	-	2	10	10	5	10	5	-	-	-
-정책연구비(260-02)	100	100	120	-	-	100	100	60	100	60	-	-	-
・공무직상용임금	39	39	39	-	-	43	43	23	43	23	-	-	47
-상용임금(110-03)	32	32	33	-	-	35	35	20	35	20	-	-	38
-고용부담금(320-09)	7	7	6	-	-	8	8	3	8	3	-	-	8
-복리후생비(210-12)	1	1	1	-	-	1	1	1	1	1	-	-	1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법제정비 지원 - 민사법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민사 법령의 지속적 정비와 효율적 시행으로 국민 편익을 증진하고 경제 활성화 실현에 기여, 국민의 재산·가족관계를 규율하는 민생의 기본법인 민법과 그 밖의 민사 법령을 선진화하고 기타 민원 질의·해설 사례집 발간 등 대국민 법률서비스 제공
- **(주택·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4조에 따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설치된 공공기관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법률분쟁을 심의 조정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도모. '23년 1월 인권구조과 소관에서 법무심의관실 소관으로 이관
- **(법제정비 지원 - 민법개정위원회)** 국민 생활과 경제활동의 가장 중요한 기본법인 「민법」은 1958년 제정된 이래 65년간 전면 개정 없이 유지되어와 사회·경제 변화 및 글로벌 스탠더드를 반영하지 못함, 민법의 현대화는 변화한 경제·사회 현실반영이 필수적이며 국가의 중대과제이므로 이를 위한 범정부적인 지원과 법조계·학계의 협력을 위해 '23. 6. 16. 민법개정위원회 출범하고 개정작업 착수, 2025. 12. 1차 과제인 계약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다음 과제인 담보법, 권리변동법 등 개정작업 진행 중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민법, 민사소송법,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시행령, 집합건물법·시행령,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시행령,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시행령 등
- 정부조직법 제27조(법무에 관한 사항)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조(법무에 관한 자료 조사, 부처 법령자문, 각종 법령 해석), 제9조 제3항(법령안의 기초 및 심사, 법무제도 및 그 운영에 관한 연구·개선, 민사관계법령 연구, 법무자료 발간 및 도서관리)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4조 및 시행령 제 21조
-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0조 및 시행령 제8조

② 추진경위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사업추진 경과>

- 2016. 5. 29.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시행일 2017. 5. 30.)
- 2017. 5. 30.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지부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 2017. 7. 1. 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지부(5곳)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 2018. 10. 16.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시행일 2019. 4. 17.)
- 2019. 4. 17. 서울중앙·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지부(6곳)에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 주택·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통합 운영

- 2023년부터 법률구조(민간경상보조)사업에서 국민편익증진법제정비(법정민간대행) 사업으로 분리됨.

<국민편익증진법제정비 사업 업무추진 경과>

- 2022. 1.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제출
- 2022. 1.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제출
- 2022. 1. 민사소송비용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제출
- 2022. 1. 등기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제출
- 2022. 4.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제출
- 2022. 4.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제출
- 2022. 11.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 국회제출
- 2022. 11. 민사소송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제출
- 2023. 2.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회제출
- 2023. 3.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2023. 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 2023. 4.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
- 2023. 6.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제출
- 2023. 7.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2023. 7. 민사소송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2023. 9.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
- 2023. 10.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제출
- 2023. 11.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제출
- 2024. 7.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제출
- 2024. 7. 공익법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제출
- 2024. 8.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제출

- 2024. 9. 전세사기피해자법 일부 개정
- 2025. 12. 민법 개정 1차 과제(계약법) 국회제출
- 2026. 1. 민사집행법 시행령 일부 개정
- 2026. 4.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
- 2026. 6.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일부 개정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00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3	2024	2025	2026	2027(안)
사업비	4,341	5,162	4,659	4,554	5,332

* '23년부터 대한법률구조공단 주택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예산 이관

- 기타 : 해당 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민간대행
- 사업시행주체 : 법무부 법무실, 대한법률구조공단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 사업 수혜자 : 국민
- 민간대행사업에 대한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7예산안)**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주택상가건물 임대차분쟁 조정위원회	법정 민간 대행	대한법률 구조공단	3,616	전액 국고지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4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0조

3) 2027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

① 법제 정비(민사법 등)

: (2026 본예산) 888백만원 → (2027 요구) 1,547백만원, 659백만원 증액

- 민생규제 혁신 및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지시과제 입법 지원 167백만원 증액
- 연구과제의 전략적 기획 및 효율적 예산운영을 위한 법무실 연구용역비 492백만원 증액(법무실 통합)

2026년 예산		2027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888	○ **법제정비 사업 운영(민사법 등) : 888백만원** **1. 일반수용비(210-01) : 469백만원** - 공청회 15백만원 ・자료 인쇄비 19,268원×350부 ・초청장 제작·발송 1.200,000원×2회 ・사회자 등 사례금 (600,000원×1명+300,000원×8명)×2회 - 홍보비 70백만원 ・자료인쇄비 28,790원*2,000부 ・발송비 4,000원*535부*6종 - 자료집 발간 15백만원 ・민사소송법 인쇄비 6,307원*650부 발송비 4,000원*400부 ・집합건물법 인쇄비 4,941원*650부 ・개정 민법 인쇄비 12,846원*445부 - 법제사례 수집 10백만원 ・50만원×20종 - 번역료 37백만원 ・3,000원×4종×3,075매 - 여론조사 40백만원 ・(20,000,000원×1회)+(10,000,000원×2회) - 수당 및 자문료 119백만원 ・민사소송법 (100,000원×8명×10회)+(150,000원×8명×10회) ・주임차보호법,상임차보호법 (100,000원×10명×10회)+(150,000원×10명×10회) ・민법 (100,000원×12명×9회)+(150,000원×10명×6회) ・가사소송법 (100,000원×8명×10회)+(150,000원×8명×10회) ・후속법령 (150,000원×10명×14회)+(1,000,000원×10회) ・법무자문위원회 100,000원×16명×1회 ・주택임대차위원회 100,000원×10명×2회 - 법령개정 전문가 공동 학술대회 36백만원 ・수당 및 상금 (1,000,000원×8명)+(1,000,000원×10팀)+(5,000,000원×2회) ・소모품비 8,000,000원 - 녹취비 21백만원 ・민사소송법 800,000원×월1회×5월 ・동산, 채권담보법 800,000원×월1회×5월 ・민법 800,000원×월1회×6월= ・후속법령 800,000원×월1회×5월 - 자료·도서 구입 25백만원 - 사무용품 구입 등 46백만원 ・소모품 23백만+사무용품 23백만 - 주택임대차보호법 법제정비 35백만원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법제개선 관련 홍보비 30,000,000원×1건 ・기타자료집 발간 5,000,000원*종 **2. 사업추진비(240-01) : 27백만원** - 법제 개선 관련 관계자 등 간담회 7백만(30,000원*9명*5개분야*5회) - 공청회 개최 2백만(30,000원*30명*2회) - 학술대회 개최 3백만(1,690,000원*2회) - 법 개정 관련 위원회 및 각종 행사 9백만(180,000원*4회*12월) - 기타 및 후속법령 개정 관련 6백만(180,000원*월3회*12월) **3. 특근매식비(210-05) : 42백만원** - 국정과제 관련 법제 개선 16백만(9,000원*12명*12일*12월) - 국민생활 관련 법률상담 및 자문 등 16백만(9,000원*12명*12일*12월) - 법제업무평가 및 제도개선 10백만(9,000원*12명*8일*12월)	1,547	○ **법제정비 사업 운영(민사법 등) : 1,547백만원** ▪ **법제정비 사업 운영(민사법 등) : 735백만원** **1. 일반수용비(210-01) : 536백만원** - 공청회 15백만원 ・자료 인쇄비 19,268원×350부 ・초청장 제작·발송 1.200,000원×2회 ・사회자 등 사례금 (600,000원×1명+300,000원×8명)×2회 - 홍보비 70백만원 ・자료인쇄비 28,790원*2,000부 ・발송비 4,000원*535부*6종 - 자료집 발간 15백만원 ・민사소송법 인쇄비 6,307원*650부 발송비 4,000원*400부 ・집합건물법 인쇄비 4,941원*650부 ・개정 민법 인쇄비 12,846원*445부 - 법제사례 수집 10백만원 ・50만원×20종 - 번역료 104백만원 ・33,000원*9종*350매 - 여론조사 40백만원 ・(20,000,000원×1회)+(10,000,000원×2회) - 수당 및 자문료 119백만원 ・민사소송법 (100,000원×8명×10회)+(150,000원×8명×10회) ・주임차보호법,상임차보호법 (100,000원×10명×10회)+(150,000원×10명×10회) ・민법 (100,000원×12명×9회)+(150,000원×10명×6회) ・가사소송법 (100,000원×8명×10회)+(150,000원×8명×10회) ・후속법령 (150,000원×10명×14회)+(1,000,000원×10회) ・법무자문위원회 100,000원×16명×1회 ・주택임대차위원회 100,000원×10명×2회 - 법령개정 전문가 공동 학술대회 36백만원 ・수당 및 상금 (1,000,000원×8명)+(1,000,000원×10팀)+(5,000,000원×2회) ・소모품비 8,000,000원 - 녹취비 21백만원 ・민사소송법 800,000원×월1회×5월 ・동산, 채권담보법 800,000원×월1회×5월 ・민법 800,000원×월1회×6월= ・후속법령 800,000원×월1회×5월 - 자료·도서 구입 25백만원 - 사무용품 구입 등 46백만원 ・소모품 23백만+사무용품 23백만 - 주택임대차보호법 법제정비 35백만원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법제개선 관련 홍보비 30,000,000원×1건 ・기타자료집 발간 5,000,000원*종 **2. 사업추진비(240-01) : 27백만원** - 법제 개선 관련 관계자 등 간담회 7백만(30,000원*9명*5개분야*5회) - 공청회 개최 2백만(30,000원*30명*2회) - 학술대회 개최 3백만(1,690,000원*2회) - 법 개정 관련 위원회 및 각종 행사 9백만(180,000원*4회*12월) - 기타 및 후속법령 개정 관련 6백만(180,000원*월3회*12월) **3. 특근매식비(210-05) : 42백만원** - 국정과제 관련 법제 개선 16백만(9,000원*12명*12일*12월) - 국민생활 관련 법률상담 및 자문 등 16백만(9,000원*12명*12일*12월) - 법제업무평가 및 제도개선 10백만(9,000원*12명*8일*12월)

2026년 예산		2027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4. 임차료(210-07) : 63백만원 - 공청회 장소 임차 5백만(2,500,000원*2회) - 회의장 임차 58백만(4,860,000원*12월) **5. 국내여비(220-01) : 28백만원**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 관련 지도·교육 4백만(300,000원*4명*3회) - 부동산실명법 지도·감독 2백만(300,000원*2명*3회) - 각종 법령 개정위원회 회의 참석 등 17백만(25,000원*15회*12월) - 관계부처 간담회 등 참석 3백만(25,000원*월3회*3명*12월) - 현장실태 점검 2백만(200,000원*2명*6개소) **6. 국외여비(220-02) : 40백만원** - UNCITRAL 분과위원회 회의 참석 8백만 ・뉴욕(검사 1명, 7일) + 오스트리아 빈(검사 1명, 7일) - 채권공정추심법제 연구(영국, 서기관 1명, 6일) 4백만 - 중재법 연구(미국 캘리포니아, 서기관 1명, 교수 1명, 9일) 9백만 - 사회적 약자의 사법지원 제도 연구(독일 베를린 서기관 1명 교수 1명 9일) 10백만 - 민법 연구(프랑스 파리, 서기관 1명, 9일) 5백만 - 성년후견법제 선진사례 연구(호주 시드니, 서기관 1명, 8일) 4백만 **7. 정책연구비(260-02) :220백만원** ・20,000,000×11건		**4. 임차료(210-07) : 63백만원** - 공청회 장소 임차 5백만(2,500,000원*2회) - 회의장 임차 58백만(4,860,000원*12월) **5. 국내여비(220-01) : 28백만원**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 관련 지도·교육 4백만(300,000원*4명*3회) - 부동산실명법 지도·감독 2백만(300,000원*2명*3회) - 각종 법령 개정위원회 회의 참석 등 17백만(25,000원*15회*12월) - 관계부처 간담회 등 참석 3백만(25,000원*월3회*3명*12월) - 현장실태 점검 2백만(200,000원*2명*6개소) **6. 국외여비(220-02) : 40백만원** - UNCITRAL 분과위원회 회의 참석 8백만 ・뉴욕(검사 1명, 7일) + 오스트리아 빈(검사 1명, 7일) - 채권공정추심법제 연구(영국, 서기관 1명, 6일) 4백만 - 민법 연구(미국 캘리포니아, 서기관 1명, 교수 1명, 9일) 9백만 - 노동분쟁 해결제도 연구(독일 베를린 서기관 1명 교수 1명 9일) 10백만 - 담보제도 연구(프랑스 파리, 서기관 1명, 9일) 5백만 - 성년후견법제 선진사례 연구(호주 시드니, 서기관 1명, 8일) 4백만
0	-	812	**▪ 법무실 정책연구비 : 812백만원**

② 민간대행[주택·상가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 (2026 본예산) 3,299백만원 → (2027 요구) 3,616백만원, 317백만원 증액

- 인건비 처우개선(3.5%) 88백만원 증액
-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사무실의 검찰청 청사 이전 비용 379백만원 증액
- 우선순위 조정으로 인한 업무전산화 유지비용 및 청사 운영비용 150백만원 감액

2026년 본예산		2027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3,299	○ **법정민간대행(320-08) : 3,299백만원** **1. 인건비(2,518백만원)** ・ 분쟁조정업무 수행 인력의 기본급, 수당, 퇴직금 : 42명×59,952천원 = 2,518백만원 **2. 경상비(107백만원)** ・ 직무수행경비 등 경상비 : 42명×2,548천원 = 107백만원 **3. 사업비(674백만원)** ・ 분쟁조정활동비 : 78백만원 ・ 청·관사취득 및 관리 : 339백만원 청·관사 임차료, 시설유지·관리비 등: 6개기관×56,500천원 = 339백만원 ・ 업무전산화 : 138백만원 전산시스템 유지관리, 전자서명송달시스템 등 : 6개기관×23,000천원 = 138백만원 ・ 기관운영비 : 82백만원 공공요금, 일반수용비 등 : 6개기관×13,667천원 = 82백만원 ・ 분쟁조정제도·조사연구 : 12백만원 연구개발 7백만원, 제도조사 5백만원 ・ 홍보 및 법계몽활동 : 25백만원 6개기관×4,166천원 = 25백만원	3,616	○ **법정민간대행(320-08) : 3,616백만원** **1. 인건비(2,606백만원)** ・ 분쟁조정업무 수행 인력의 기본급, 수당, 퇴직금 : 42명×62,048천원 = 2,606백만원 **2. 경상비(107백만원)** ・ 직무수행경비 등 경상비 : 42명×2,548천원 = 107백만원 **3. 사업비(903백만원)** ・ 분쟁조정활동비 : 78백만원 ・ 청·관사취득 및 관리 : 624백만원 청사이전, 청·관사 임차료, 시설유지·관리비 등 : 6개기관×104,000천원 = 624백만원 ・ 업무전산화 : 82백만원 전산시스템 유지관리, 전자서명송달시스템 등 : 6개기관×13,667천원 = 82백만원 ・ 기관운영비 : 82백만원 공공요금, 일반수용비 등 : 6개기관×13,667천원 = 82백만원 ・ 분쟁조정제도·조사연구 : 12백만원 연구개발 7백만원, 제도조사 5백만원 ・ 홍보 및 법계몽활동 : 25백만원 6개기관×4,167천원 = 25백만원

③ 법제 정비(민법개정)

: (2026 본예산) 324백만원 → (2027 요구) 122백만원, 202백만원 감액

- 민법개정 진행 속도를 고려한 운영예산 조정 202백만원 감액

'26년 예산		'27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324	○ **법제정비 지원(민법개정위원회) : 324백만원** **1. 일반수용비(210-01) : 153백만원** - 공청회 14백만원	122	○ **법제정비 지원(민법개정위원회) : 122백만원** **1. 일반수용비(210-01) : 83백만원** - 수당 및 자문료 45백만원

'26년 예산		'27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자료 인쇄비 19,268원×270부 ・초청장 제작·발송 1,200,000원×2회 ・사회자 등 사례금 (600,000원×1명+300,000원×8명)×2회 - 홍보비 12백만원 ・자료인쇄비 28,790원*360부 ・발송비 4,000원*73부*5종 - 자료집 발간 11백만원 ・민법 총칙·물권 인쇄비 6,307원*600부 발송비 4,000원*450부 ・민법 계약·가족 인쇄비 4,941원*600부 발송비 4,000원*570부 - 법제사례 수집 5백만원 ・500,000원×10종 - 번역료 11백만원 ・3,000원×1,320매×3종 - 여론조사 5백만원 ・5,000,000원×1회 - 수당 및 자문료 52백만원 ・전체위원회 (100,000원×25명×4회)+(150,000원×25명×4회) ・분과위원회 (100,000원×10명×20회)+(150,000원×10명×5회) - 녹취비 19백만원 ・800,000원×6개월×4회 - 자료·도서 구입 10백만원 - 사무용품 구입 등 14백만원 ・소모품 4백만+사무용품 10백만 **2. 사업추진비(240-01) : 36백만원** ・민법 개정 간담회 26백만(30,000원×35명×5개분야x5회) ・민법 개정 행사 10백만(200,000원×4회×12월) **3. 특근매식비(210-05) : 10백만원** ・민법 개정 법제 개선 9백만(7,000원×7명×15일×12월) ・민법 개정 제도개선 1백만(7,000원×9명×16일) **4. 임차료(210-07) : 15백만원** ・3,000,000원X5회(전체회의 및 분과회의 5회) **5. 국내여비(220-01) : 10백만원** ・국내 25,000원×5개분야×80회 **6. 정책연구비(260-02) :100백만원** ・20,000,000×5건		・전체위원회 (200,000원×22명×6회) ・검토위원회 (150,000원×5명×11회)+(200,000원×5명×10회) - 녹취비 38백만원 ・단체법, 용익법 등 2종×800,000원×24회 <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3~2027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3	2024	2025	2026	2027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변호사제도 개선 관련 활동 건수(건)	목표	-	52.5 (신규)	57	59	83	각 세부지표들의 최근 3년 간의 실적 평균값에 5%를 가산하여 설정	변호사 징계위원회 개최 건수+변호사 징계 건수+변호사 징계 관련 행정소송 심급별 종결 건수+변호사제도 개선 관련 위원회(TF 등) 개최 건수+변호사제도 개선 관련 연구용역 건수	변호사징계 개최 관련 공문, 행정소송 관련 대법원 사건조회 결과, 변호사제도 개선(TF 등) 위원회 개최 관련 공문, 연구용역 관련 공문 등
	실적	-	55	111	-	-			
	달성도	-	104.7	194.7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3	- 정부내 로펌으로서 법령자문 활성화 : 5,948건 - 기관 및 관련 민원 처리 : 2,730건
2024	- 정부내 로펌으로서 법령자문 활성화 : 6,706건 - 기관 및 관련 민원 처리 : 1,683건
2025	- 정부내 로펌으로서 법령자문 활성화 : 6,237건 - 기관 및 관련 민원 처리 : 2,345건
2026.7.	- 정부내 로펌으로서 법령자문 활성화 : 4,488건 - 기관 및 관련 민원 처리 : 1,638건

③ 향후(2027년도 이후) 기대효과

- 65년만의 민법 전면 개정 (민법개정위원회)

· 민법은 국민생활과 경제활동의 기본법이자 법체계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국가의 기본 인프라임, 변화한 경제 사회 현실을 반영하기 위한 민법의 현대화를 통해 국가의 역동적 경제성장을 뒷받침

- 정부 내 로펌으로서 고품질 법무서비스 지원

· 유권해석 강화 등을 위한 국내외 자료 수집·교류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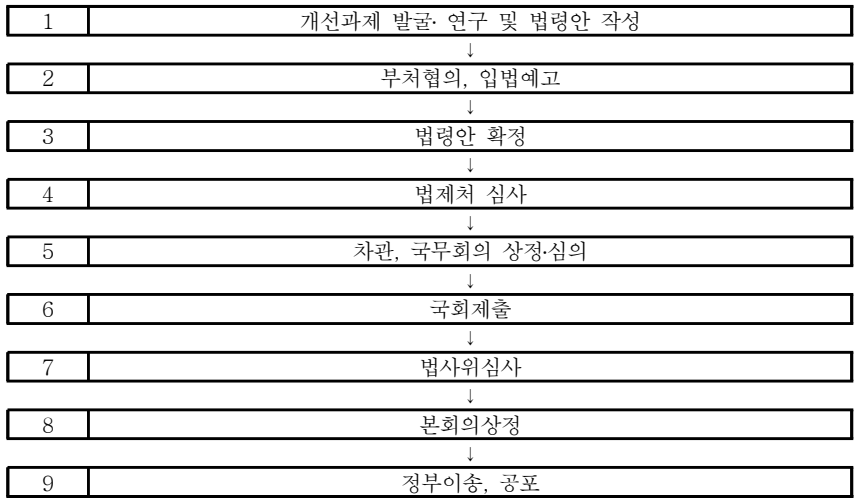
- 임대차분쟁 조정으로 국민 권리 증진 [주택임대차보호법]

· 집값 급등과 전문자격사 가담 사기 등 복합적 요인으로 증가한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지원하고, 분쟁조정업무 강화와 신속한 피해 회복을 통해 국민 주거 안정을 도모하며, 사례연구와 홍보활동을 통해 분쟁조정제도의 인지도와 신뢰성을 제고하고,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임대차 제도 발전과 정책 개선에 기여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개선과제 발굴: 학술대회, 연구용역발주를 통한 개정 대상 및 범위 사전 조사
※ 개선과제 연구: 개정위원회 구성, 운영 및 연구(분과위원회, 전체위원회 등을 통해 토론)
※ 법령안 작성: 분과위원회별 담당 과제에 대한 개정시안 작성, 전체위원회 표결 등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25~2029	4,649	4,798	4,941	5,089	5,242	
2026~2030		4,554	4,691	4,832	4,977	5,126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해당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민생규제 혁신 및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입법과제 적극 수행으로 국민 삶의 질 향상
- 정부 내 로펌 기능을 성실하게 수행함으로써 고품질 법무서비스 지원
- 민법개정위원회 운영을 통해 민법 개정안의 순차적 성안을 위해 노력
- 국회에 제출된 민법 개정안의 원활한 국회 심의 및 통과를 위해 적극적인 대응
- 적극적인 임대차분쟁 조정으로 국민 권리 증진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2) 동 사업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 : 해당없음

13) 2026년도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 결과 및 후속 조치 현황 : 해당없음

14) 부처 건의사항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3	4,341	-	4,341	20	-	-	4,361	4,361	100.0	100.5	-	-
2024	5,162	-	5,162	-	△47	-	5,115	5,110	99.0	99.9	-	5
2025	4,659	-	4,659	-	-	-	4,659	4,650	99.8	99.8	-	9
2026	4,554	-	4,554	-	-	-	4,554	3,237	69.5	69.5	-	-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본예산	추경(A)								
2022	265	265	265	265	-	265	265	-	-	100.0
2023(임조위)	3,407	3,407	3,031	3,407	-	3,031	3,031	-	376	89.0
2024(임조위)	3,697	3,697	3,233	3,697	-	3,233	3,233	-	464	87.4
2025.(임조위)	3,414	3,414	3,414	3,414	-	3,414	3,180	-	234	93.1
2026. 7.(임조위)	3,299	3,299	2,474	2,474	-	2,474	2,474	-	-	75

<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보조사업 >

- '22년까지 인권구조 사업에서 운영
- '23년부터 국민편익증진법제정비사업 - 법정민간대행사업비로 이관

2) 주요 결산사항

□ 2023~2026년 결산사항

2023	- 불용 : 임조위 심사관 등 채용부진으로 인건비 약 360백 불용, 공공기관 예산절감으로 약 16백 불용
2024	- 전용 : 국가소송과 감정료 등 부족으로 국민편익에서 국가배상금 지급으로 50백만원 전용 장기 근무 공무직 퇴직으로 고용부담금이 부족하여 법무과 공증제도 예산에서 3백 전용 - 불용 : 임조위 심사관 등 채용부진으로 인건비 423백 불용, 임조위 경상비 38백 및 사업비 3백 불용 법무심의관실 임차료 1.9백, 국내여비 2.4백불용
2025	- 불용 : 임조위 심사관 등 채용부진으로 인건비 216백, 경상비 18백 불용 법무심의관실 특근매식비 6백, 국내여비 2백, 국외여비 1백 불용
2026	- 해당 없음

□ 2026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사항 없음

□ 2026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 해당 없음

사 업 명
성장동력확충을 위한 기업법제 선진화(1033-304)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법무부	법무실	일반회계	020	022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000	1033	304
명칭	법무활동	민상사법령의 선진화	성장동력확충을 위한 기업법제선진화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6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성장동력확충을위한기업법제선진화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법무실	최성수	이인구	강은아
		상사법무과	02-2110-3629	02-2110-3631	02-2110-3851
	사업시행주체	대한상사중재원	경영기획팀	차장 이명희	02-551-2011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년 결산	2026년 예산		2027년		증감	
		본예산(A)	추경	요구안	조정안(B)	(B-A)	(B-A)/A
성장동력확충을 위한 기업법제선진화	2,559	4,456	4,456	3,840	3,537	△919	△20.6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25					2026(2026.7월말)							2027 예산안
	예산액(추경)	예산현액	집행액[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현액	집행액[실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예상액	불용예상액	
									예산현액	집행액[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2,595	2,595	2,561	30	4	4,456	4,486	3,893	4,456	3,863	-	-	3,537
· 법제정비	499	499	465	30	4	500	530	169	500	139	-	-	372
· 법제운영	325	325	325	-	-	327	327	95	327	95	-	-	292
· 중재산업활성화	1,771	1,771	1,771	-	-	3,629	3,629	3,629	3,629	3,629	-	-	2,863
○ 비목별 분류(합계)	2,595	2,595	2,561	30	4	4,456	4,486	3,893	4,456	3,863	-	-	3,537
· 상용임금(110-03)	46	46	45	-	1	51	51	25	51	25	-	-	54
· 일반수용비(210-01)	508	494	494	-	-	508	508	143	508	143	-	-	473
· 공공요금및제세(210-02)	7	7	5	-	2	7	7	2	7	2	-	-	7
· 특근매식비(210-05)	24	24	24	-	-	30	30	5	30	5	-	-	20
· 임차료(210-07)	25	25	25	-	-	25	25	5	25	5	-	-	25
· 복리후생비(210-12)	1	1	1	-	-	1	1	0	1	0	-		1
· 관리용역비(210-15)	25	25	25	-	-	25	25	20	25	20	-	-	25
· 국내여비(220-01)	13	13	13	-	-	13	13	6	13	6	-	-	13
· 국외업무여비(220-02)	28	42	41	-	1	28	28	17	28	17	-	-	28
· 사업추진비(240-01)	8	8	8	-	-	8	8	6	8	6	-	-	8
· 정책연구비(260-02)	130	130	100	30	-	121	151	30	121	0	-	-	0
· 민간경상보조(320-01)	1,771	1,771	1,771	-	-	3,629	3,629	3,629	3,629	3,629	-	-	2,863
· 고용부담금(320-09)	9	9	9	-	-	10	10	5	10	5	-	-	10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2,595	2,595	2,561	30	4	4,456	4,486	3,893	4,456	3,863	-	-	3,537
· 법제정비	499	499	465	30	4	500	530	169	500	139	-	-	372
-상용임금(110-03)	46	46	45	-	1	51	51	25	51	25	-	-	54

	2025					2026(2026.7월말)							2027 예산안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일반수용비(210-01)	231	217	217	-	-	231	231	68	231	68	-	-	231
-공공요금및제세(210-02)	7	7	5	-	2	7	7	2	7	2	-	-	7
-특근매식비(210-05)	18	18	18	-	-	22	22	5	22	5	-	-	12
-임차료(210-07)	21	21	21	-	-	21	21	5	21	5	-	-	21
-복리후생비(210-12)	1	1	1	-	-	1	1	0	1	0.3	-	-	1
-국내여비(220-01)	8	8	8	-	-	8	8	6	8	6	-	-	8
-국외업무여비(220-02)	21	35	34	-	1	21	21	17	21	17	-	-	21
-사업추진비(240-01)	7	7	7	-	-	7	7	6	7	6	-	-	7
-정책연구비(260-02)	130	130	100	30	-	121	151	30	121	0	-	-	0
-고용부담금(320-09)	9	9	9	-	-	10	10	5	10	5	-	-	10
· 법제운영	325	325	325	-	-	327	327	95	327	95	-	-	292
-일반수용비(210-01)	277	277	277	-	-	277	277	75	277	75	-	-	242
-특근매식비(210-05)	6	6	6	-	-	8	8	0	8	0	-	-	8
-임차료(210-07)	4	4	4	-	-	4	4	0	4	0	-	-	4
-관리용역비(210-15)	25	25	25	-	-	25	25	20	25	20	-	-	25
-국내여비(220-01)	5	5	5	-	-	5	5	0	5	0	-	-	5
-국외업무여비(220-02)	7	7	7	-	-	7	7	0	7	0	-	-	7
-사업추진비(240-01)	1	1	1	-	-	1	1	0	1	0	-	-	1
· 중재산업활성화	1,771	1,771	1,771	-	-	3,629	3,629	3,629	3,629	3,629	-	-	2,863
-민간경상보조(320-01)	1,771	1,771	1,771	-	-	3,629	3,629	3,629	3,629	3,629	-	-	2,863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법제정비)** 상사 관계 법령의 체계적 정비로 기업 활동의 기본법을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선진화하고, 기업하기 좋은 법적 환경을 조성하여 창업과 투자를 유도함으로써 국가 성장동력의 기반 마련과 경제 활성화 기반 구축을 지원하는 것임

- **(법제운영)** 중소·벤처기업을 위한 체계적인 법률지원, 공익신탁제도의 활성화 등 경제 관련 법제 운영을 지원하는 것임
- **(중재산업 활성화)** 소송 외 중재, 조정 등 대체적분쟁해결제도 활성화를 통해 사회 갈등 해소 비용을 감소시키고, 국제중재사건 유치를 통해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경제 재도약의 발판 마련을 지원하는 것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상법, 상법시행법, 상업등기법, 어음법, 수표법, 신탁법,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주식 · 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상법 시행령 등 33개 소관법령
- 정부조직법 제32조(법무에 관한 사항)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조(법무에 관한 자료 조사, 부처 법령자문, 각종 법령 해석), 제9조제3항(법령안의 기초 및 심사, 법무제도 및 그 운영에 관한 연구
- 중재법 제40조(상사중재기관에 대한 보조) 및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 (재정 지원)

② 추진경위

- ’16. 03.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정(금융위 공동 소관)
- ’16. 05.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개정(만기 단축)
- ’16. 11.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관할 집중 등)
- ’16. 12.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
- ’17. 10. 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
- ’18. 02. 최고금리인하 이자제한법 시행
- ’18. 05. 어음만기 단축 위한 전자어음법 시행
- ’18. 05. 서울국제중재센터 개소
- ’18. 12. 중재산업진흥 기본계획 수립
- ’18. 12. 표준준법통제기준 개정
- ’19. 09. 전자증권제도 도입 위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전면 시행
- ’19. 09. 주주총회 내실화 위한 「상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 ’19. 11. 「법무부 공익신탁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정
- ’20. 01. 주주총회 내실화 등을 위한 상법 시행령 개정
- ’20. 02. 감사위원회 자격요건 정비를 위한 상법 시행령 개정

- ’20. 02.~06. 블록체인 관련 「지역특구법」등 규제 샌드박스 지정 심의
- ’20. 06.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을 위한 상법 개정안 마련 및 입법예고
- ’20. 06. 집단소송·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위한 전문가 간담회 개최
- ’20. 06. 전자문서 활성화 위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개정
- ’20. 08. 도산 전문분야 9988 중소기업 법률지원 자문단 정비
- ‘20. 08. 기업지배구조 개선 「상법」개정안 국회 제출
- ‘20. 09. 집단소송, 징벌적 손해배상 확대 도입 관련「집단소송법안」·「상법」 개정안 입법예고
- ‘20. 12. 이자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20. 12. 기업지배구조 개선 개정「상법」공포·시행
- ’21. 02. 「상법 시행령」개정
- ‘21. 0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
  ※ 개인회생절차 이용 대상 부채 한도 상향
- ‘21. 04.「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일부개정
  ※ 기존 연 24% → 연 20%로 개정
- ‘21. 10. 전자어음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 ‘21. 1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
  ※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 원리금의 파산 면책 인정
  ※ ‘20. 12. ~ ‘21. 1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 특별분과위원회 총 21회 운영
- ‘22. 02. 스타트업 창업지원 법무플랫폼 구축
- ‘22. 01.~12. 스타트업 창업지원 법무플랫폼을 통하여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법률 지원(비용지원 87건)
- ‘23. 01~09. 상법 개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상법특별위원회 회의 연중 9회 개최
- ’23. 12. 보험회사의 배당가능 이익 안정화를 위한 상법 시행령 개정, 시행
- ‘23. 01.~12. 스타트업 창업지원 법무플랫폼을 통하여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법률 지원(비용지원 75건)
- ‘24. 02. 법인 회생절차에서 증자·출자 전환 등록면허세 미과세 등을 위한 채무자회생법 개정
- ’24. 06.~12. 경제형벌 개선을 관련 채무자회생법 개정안 국회 제출 및 개정
- ’24. 08.~09. 법인의 본점 이전등기 절차 간소화 등을 위한 상법 개정안 국회 제출 및 개정
- ‘24. 12. 제2차 중재산업 진흥 기본계획 시행(2024~2028)
- ‘24. 01.~12. 중소기업 법률지원 홈페이지를 통하여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법률 지원(비용지원 46건)
- ’25. 07.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신설, 전자주주총회 및 독립이사 제도 도입 등을 위한 상법 개정
- ’25. 09.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 발표(110개 규정)
- ’25. 09.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을 위한 상법 개정

- ’25. 12. 경제형벌 합리화 2차 방안 발표(331개 규정)
- ‘25. 01.~12. 중소기업 법률지원 홈페이지를 통하여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법률지원(비용지원 30건)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07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3	2024	2025	2026	2027(안)
사업비	3,271	3,400	2,595	4,456	3,537

- 기타: 해당 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민간보조
- 사업시행주체 : 법무부 법무실, 대한상사중재원(국제중재센터)
- 사업 수혜자 : 기업,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7예산안)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중재산업 활성화	보조	대한상사중재원	2,863	정액	중재법 제40조 및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재정 지원)

3) 2027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

① 법제정비

: (2026 본예산) 500백만원 → (2027 요구) 372백만원, 131백만 원 감액

- (요구) 국제회의 참석, 연구용역, 학술지 발간 등 입법자료 수집과정 및 공청회 개최, 위원회 운영 등 입법 주진 과정을 통한 선진 상사 법제 정비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사업우선순위 조정에 따라 특근배식 10백만원 감액 및 연구용역비 통합운영에 따른 121백만원 감액하고 공무직 처우개선에 따라 3백만원 증액
- (산출)
  * 위원회 운영 등 : 145백만 원 = 위원수당 90백만 원(15명 x 20회 x 3개 x 100천 원) + 녹취비 38백만 원(3시간 x 21회 x 3개 x 200천 원) + 회의록 발간 11백만 원(360부 x 30천 원) + 자료집 발간 6백만 원(300부 x 2천 원)
  * 공청회 및 세미나 개최 : 41백만 원 = 참석자 사례금 10백만 원(5회 x 2,000천 원) + 자료집 발간 9백만 원(5회 x 1,800천 원) + 사례집 발간 7백만 원(270부 x 25,000천 원) + 장소 임차료 15백만 원(6회 x 2,500천 원)
  * 자료 구입비 : 8백만 원 = 3회 x 2,500천 원
  * 국제회의 참석 여비 : 21백만 원 = UN상거래법위원회(뉴욕, 비엔나, 각 2회, 1명) 15백만 원(뉴욕 2회 x 4,040천 원+ 오스트리아 2회 x 3,535천 원) + OECD기업지배구조위원회 회의 참석(파리, 2회, 과장 및 서기관) 6백만 원(1회 x 2명 x 3,139천 원)
  * 선진법제포럼 개최 : 19백만 원 = 강연자 사례금 5백만 원(10명 x 500천 원) + 자료집 발간 8백만 원(400부 x 20천 원) + 임차료 6백만 원
  * 선진상사법률연구 발간 : 43백만 원 = 원고료 7백만 원(24명) + 심사료 12백만 원(120편) + 발간 20백만 원(4회) + 발송비 4백만 원(4회)
  * 공무직(영문에디터) 운용 : 65백만 원 = 상용임금 54백만 원 + 맞춤형복지비 0.6백만 원 + 연금지급금 10백만 원
  * 기타 : 40백만 원 = 공공요금 7백만 원 + 매식비 12백만 원 + 국내여비 8백만 원(80회 x 100천 원) x 업추비 7백만 원

ㅇ 2026년도 예산 및 2027년도 예산안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6년 본예산		2027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500,232	**1. 상용임금(110-03) : 51,658천원** **2. 일반수용비(210-01) : 230,550천원** 가. 위원회 운영 등 170,850천원 나. 입법자료 수집 : 59,700 **3. 공공요금(210-02) : 7,000천원** - 자료발송비 3,000천원 **4. 특근매식비(210-05) : 22,140천원** - 기업법률상담 8,100천원 + 국정과제 법제개선 4,320천원 +회사법 등 관련 5,400천원 + 전자어음 관련 4,320천원 **5. 임차료(210-07) : 21,000천원** - 공청회 등 임차료 15,000천원 + 선진법제포럼 임차료 6,000천원 **6. 복리후생비(210-12) : 500천원** **7. 국내여비(220-01) : 7,700천원** - 중소기업 관련 5,700천원 + 신탁법 관련 2,000천원 **8. 국외여비(220-02) : 21,425천원** · UN상거래법위원회 참석(뉴욕, 비엔나 각 2회) 15,148천원 · OECD기업지배구조위원회 회의 참석(파리 2명) 6,277천원 **9. 사업추진비(240-01) : 7,080천원** **10. 정책연구비(260-02) : 121,000천원** **11. 고용부담금(320-09) : 10,229천원**	372,447	**2. 상용임금(110-03) : 54,119천원** **2. 일반수용비(210-01) : 230,550천원** 가. 위원회 운영 등 170,850천원 나. 입법자료 수집 : 59,700 **3. 공공요금(210-02) : 7,000천원** - 자료발송비 3,000천원 **4. 특근매식비(210-05) : 12,256천원** - 기업법률상담 5,940천원 + 국정과제 법제개선 1,700천원 +회사법 등 관련 2,916천원 + 전자어음 관련 1,700천원 **5. 임차료(210-07) : 21,000천원** - 공청회 등 임차료 15,000천원 + 선진법제포럼 임차료 6,000천원 **6. 복리후생비(210-12) : 600천원** **7. 국내여비(220-01) : 7,700천원** - 중소기업 관련 5,700천원 + 신탁법 관련 2,000천원 **8. 국외여비(220-02) : 21,425천원** · UN상거래법위원회 참석(뉴욕, 비엔나 각 2회) 15,148천원 · OECD기업지배구조위원회 회의 참석(파리 2명) 6,277천원 **9. 사업추진비(240-01) : 7,080천원** **10. 고용부담금(320-09) : 10,883천원**

② 법제운영

: (2026 본예산) 327백만원 → (2027 요구) 292백만원, 35백만 원 감액

- (요구) 선진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공익신탁 활성화, 중소기업 법률지원 등 상사 관련 법제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사업우선순위 조정으로 공익신탁활성화 홍보비 35백만원 감액

- (산출)
  * 공익신탁 제도 활성화 : 76백만 원 = 홍보 50백만 원 + 자문위원회 운영 12백만 원 +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5백만 원 + 국외출장(영국, 3박5일, 2명 x 3,702천 원) 7백만 원 + 업추비 1백만 원
  * 중소기업 법률지원 : 216백만 원 = 법률지원단 운영 178백만 원(자문비용 161백만 원 + 홍보 17백만 원) + 매식비 8백만 원 + 워크숍 개최 6백만 원(수용비 2,000천 원 + 임차료 4,000천 원) +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20백만 원 + 국내여비 4백만 원(43회 x 100천 원)

ㅇ 2026년도 예산 및 2027년도 예산안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6년 본예산		2027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326,523	**. 일반수용비(210-01) : 277,589천원** 가. 공익신탁제도 활성화 97,249천원 = 홍보물 84,999천원 + 자문위원회 운영 4,750천원 + 전문가 자문료 7,500천원 나. 중소기업 법률지원 180,340천원 = 자문비용 지원 161,000천원₩ + 리플릿 17,340천원 + 워크숍 운영 2,000천원 **2. 특근매식비(210-05) : 7,560천원**(중소기업 법률지원) **3. 임차료(210-07) : 4,000천원**(중소기업 법률지원) **4. 관리용역비(210-15) : 24,600천원** · 공익신탁공시시스템 유지보수 4,600천원 · 중소기업 법률지원 시스템 유지보수 : 20,000천원 **5. 국내여비(220-01) : 4,320천원**(중소기업 법률지원) **5. 국외업무여비(220-02) : 7,404천원** **6. 사업추진비(240-01) : 1,050천원**(공익신탁)	291,523	**1. 일반수용비(210-01) : 277,589천원** 가. 공익신탁제도 활성화 97,249천원 = 홍보물 49,999천원 + 자문위원회 운영 4,750천원 + 전문가 자문료 7,500천원 나. 중소기업 법률지원 180,340천원 = 자문비용 지원 161,000천원₩ + 리플릿 17,340천원 + 워크숍 운영 2,000천원 **2. 특근매식비(210-05) : 7,560천원**(중소기업 법률지원) **3. 임차료(210-07) : 4,000천원**(중소기업 법률지원) **4. 관리용역비(210-15) : 24,600천원** · 공익신탁공시시스템 유지보수 4,600천원 · 중소기업 법률지원 시스템 유지보수 : 20,000천원 **5. 국내여비(220-01) : 4,320천원**(중소기업 법률지원) **5. 국외업무여비(220-02) : 7,404천원** **6. 사업추진비(240-01) : 1,050천원**(공익신탁)

③ 중재산업 활성화

: (2026 본예산) 3,629백만원 → (2027 요구) 2,863백만원, 919백만원 감액

- (요구) 분쟁해결 수단으로서 중재를 활성화하고 우리나라가 동북아시아 중재 중심지로 도약함으로써 경제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예산으로 대한상사중재원 역량 집중을 위한 홍보 사업 정비를 위한 예산으로 사업 우선순위 조정에 따라 홍보비 140백만원, 전자중재구축비 616백만원 감액
- (산출)
  * 홍보사업 : 139백만 원 = 인력양성 139백만 원
  * 복합중재심리시설 운영 : 1,349백만 원
  * APEC ODR Service Provider 수행을 위한 전자중재시스템 구축 : 1,384백만 원

ㅇ 2026년도 예산 및 2027년도 예산안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6년 본예산		2027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3,629,000	**1. 민간경상보조(320-01) : 3,629,000천원** - 사업비 279,000천원 = 중재콘텐츠 강화 94,000천원 + 중재전문인력 양성 185,000천원 - 운영비 1,349,000천원 - APEC ODR Service Provider 수행을 위한 전자중재시스템 구축 2,000,000천원	2,863,000	**1. 민간경상보조(320-01) :2,863,000천원** - 사업비 139,000천원 = 중재전문인력 양성 185,000천원 - 운영비 1,349,000천원 - APEC ODR Service Provider 수행을 위한 전자중재시스템 구축 1,384,000천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3~2027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3	2024	2025	2026	2027	2027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기업법제 선진화 (단위: 점, %)	목표	753	-	-	-	-	'23년 성과계획서 변동에(세부사업 →단위사업)따라, 성과지표에서 제외	법령 제·개정사항 발굴+법령 제·개정안 마련 및 의견수렴+법령 제·개정절차+선진법제 개선 자료 수집 관련 + 선진상사법률 연구 발간 관련+공익신탁 활성화 관련	각종 회의자료 및 보고서, 법률안 초안 및 확정안, 의견수렴 내역, 보도자료 등
	실적	870	-	-	-	-			
	달성도	116	-	-	-	-			
중재산업활성화 (단위: 점, %)	목표	224	-	-	-	-	'23년 성과계획서 변동에(세부사업 →단위사업)따라, 성과지표에서 제외	(국내중재 활성화 실적)*1/2 + (국제중재 활성화 실적)*1/2	행사 및 세미나 자료, 홍보 자료, 교육 실적, 중재사건 실적 관련 자료 등
	실적	260	-	-	-	-			
	달성도	152.9	-	-	-	-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기업 법률지원(점)	목표	190	-	-	-	-	'23년 성과계획서 변동에(세부사업 →단위사업)따라, 성과지표에서 제외	(국내중재 활성화 실적)*1/2 + (국제중재 활성화 실적)*1/2	행사 및 세미나 자료, 홍보 자료, 교육 실적, 중재사건 실적 관련 자료 등
	실적	161	-	-	-	-			
	달성도	84.7	-	-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3	○ '23. 1~9. 상법 개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상법특별위원회 회의 연중 9회 개최 ○ '23. 11. 법인 회생절차에서 증자·출자 전환 등록면허세 미과세 등을 위한 채무자 회생법 개정안 국회 제출 ○ '23. 12. 전자주주총회 도입 및 물적분할 반대주주 등을 위한 상법 개정안 국회 제출 ○ '23. 12. 보험회사의 배당가능 이익 안정화를 위한 상법 시행령 개정, 시행 ○ '23. 12. 2023년 선진법제포럼 토론회 개최(중소기업을 위한 회생절차 개선방안) ○ '23. 1.~12. 중소기업 법률지원 홈페이지를 통하여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법률지원(비용지원 75건)
2024	○ '24. 2. 법인 회생절차에서 증자·출자 전환 등록면허세 미과세 등을 위한 채무자 회생법 개정 ○ '24. 6.~12. 경제형벌 개선을 관련 채무자회생법 개정안 국회 제출 및 개정 ○ '24. 8.~9. 법인의 본점 이전등기 절차 간소화 등을 위한 상법 등 개정 ○ '24. 11. 2024년 선진법제포럼 토론회 개최(기업 컴플라이언스 구축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 '24. 12. 제2차 중재산업 진흥 기본계획 시행(2024~2028) ○ '24. 1.~12. 중소기업 법률지원 홈페이지를 통하여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법률지원(비용지원 46건)

2025	○ ’25. 7.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신설, 전자주주총회 및 독립이사 제도 도입 등을 위한 상법 개정 ○ ‘25. 9. 영세업자 도산 시 과도한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채무자회생법 개정안 국회 제출 ○ ’25. 9. 경제형벌 합리화 TF 출범 및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 발표(110개 규정) ○ ’25. 9.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을 위한 상법 개정 ○ ‘25. 12. 2025년 선진법제포럼 토론회 개최(기업 조직개편 시 이사의 행위규범 가이드라인 제정 방향) ○ ’25. 12. 경제형벌 합리화 2차 방안 발표(331개 규정) ○ ‘25. 1.~12. 중소기업 법률지원 홈페이지를 통하여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법률지원(비용지원 30건)
2026	○ ’26. 3. 상법 3차 개정하여 주주환원 강화 ○ ’26. 7. 상법 시행령」 개정으로 ‘전자주주총회 제도’(1차 개정 시 도입, ’27.1. 시행)의 차질 없는 시행

③ 향후(2027년도 이후) 기대효과

- 상사법의 체계적 정비로 기업활동의 기본법을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선진화하여 기업하기 좋은 법적 환경조성
- 아울러 지배주주의 불법적인 사익 추구 행위를 견제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상사법에 기업 투명성을 위한 장치를 둠으로써 경제정의 실현에 이바지하여 기업과 국가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구조를 마련
- 고부가가치의 국제중재를 산업으로 육성하여 고급의 청년 일자리 창출 및 만성적인 법률 분야 무역수지 적자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법제 개선사항 발굴 - 중소기업 세미나 등 애로사항 파악, 의견 청취를 통한 과제 발굴 - 체계적 법령정비를 위한 중재 및 기업법제 선진화 연구용역 수행 - 상사분야 동향 파악을 위한 선진법제 포럼 운영 및 선진상사법률연구 발간	➡	글로벌 수준에 부합하는 법제 개선 추진 및 운영 - 법령 제·개정 관련 위원회 운영, 의견수렴 및 해설자료 발간 등 법제 개선 추진 - 공익신탁제도 운영·관리 및 중재산업 활성화 추진 및 창업·중소기업 법률지원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25~2029	2,595	4,456	4,456	4,456	4,456	
2026~2030		4,456	3,537	3,537	3,537	3,537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국회(상임위 등)	지적사항	비고
- '23년 국회예결위 22회계연도 결산분석보고서	- 중소기업 법률지원의 편의성 제고 및 관계부처·기관과의 협업 필요	
- '24년 국회예결위 23회계연도 결산분석보고서	- 공익신탁 홍보 제고와 공익신탁 자문위원회 활성화 및 전문가 자문료 예산 적정 편성 필요 - 대한상사중재원의 국제중재실적 제고 및 중재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조속한 수립 필요 - 공익신탁제도 활성화 사업 성과 부진 개선방안 마련 필요	
- '25년 국회예결위 24회계연도 결산분석보고서	-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실적 제고 필요 - 공익신탁 활성화 미흡, 중장기적 대책 마련 필요	

2) 감사원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 해당없음

3)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 해당없음

4)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지적사항	후속 조치사항
▪ 공익신탁 홍보 개선방안 마련 및 공익신탁자문위원회 활성화 필요	▪ 공익신탁자문위원회 개최('22.11.2.) : 공익신탁 제도 활성화 방안 ▪ 공익신탁자문위원회의 주된 역할 중 하나가 공익신탁의 인가에 대한 자문이므로, 신규 인가 신탁이 증가할 수 있도록 공익신탁 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지속 검토하여 제도 활성화 및 홍보 활성화 지속 추진
▪ 중소기업 법률지원의 편의성 제고 및 관계부처·기관과의 협업 필요	▪ 법률구조플랫폼을 통한 중소기업 법률지원 안내 실시('26.1.21.)
▪ 공익신탁 홍보 제고와 공익신탁자문위원회 활성화 및 전문가 자문료 예산 적정 편성 필요	▪ 공익신탁 관련 세제 개선 및 공익법인 활용 등 제도 개선 사항에 대한 자문 실시 및 공익신탁자문위원회 위원 간담회(8월) 및 위원회 회의(12월) 개최 ▪ 경제지 지면 광고와 수탁기관 및 공익법인 행사 소책자 배포 등 홍보 방식 다양화

지적사항	후속 조치사항
▪ 대한상사중재원의 국제중재실적 제고 및 중재산업진흥 기본계획의 조속한 수립 필요	▪ 대한상사중재원 역량 강화를 위한 예산 활용 및 온라인 분쟁해결시스템 구축 추진 등을 반영한 제2차 중재산업진흥 기본계획 수립
▪ 공익신탁제도 활성화 사업 성과 부진 개선방안 마련 필요	▪ 공익신탁법 개정 추진 : 기재부 세제 개선방안 논의(9월), 특례기부금 등 자문 5회 실시, 개정 초안 부내 의견조회(10월)
▪ 대한상사중재원의 국제중재실적 제고 필요	▪ 제2차 중재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통하여 중재제도·인프라 강화, 국제중재 유치 확대, 국내중재 제도 정착, 중재산업 기반 강화 등 추진 전략별 과제 추진 ▪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 서비스 경쟁력 제고 및 전세계 이용자 확대를 위한 국제중재사무처리규정 개정
▪ 공익신탁 활성화 미흡, 중장기적 대책 마련 필요	▪ 수탁금융기관 간담회를 통하여 장기 미운영 공익신탁에 대한 집행·종료·합병 등 방안 마련 지시 ▪ 공익신탁 활성화 방안 검토를 위한 “공익신탁 인식조사를 통한 홍보방안 연구” 용역 실시 ▪ 공익신탁 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수탁자 외연 및 내용 확대, 신탁재산 운용 방식 개선, 관리·감독 강화 등 제도 개선 사항을 공익신탁자문위원회에 보고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상법의 체계적 정비
- 지배주주의 부당한 사익추구행위 방지 및 소수주주권 보장을 위한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 기업 경영의 투명성 및 안정성을 제고하는 상법 개정 지속

○ 선진 도산법제의 구축
- 2006. 4.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정 시 기존의 법률들을 물리적으로만 통합하였던 한계를 극복하고, 편제와 용어 전반을 정비하여 화학적으로 통합하는 등 도산절차 프로세스 개선하여 선진국 수준의 도산법제 마련

○ 경제 관계의 합리적 규율을 위한 법제 개선
- 결함 개념의 명확화, 소송절차 개선 등 제조물책임법 개정 및 집단소송 체계 명확화를 통해 경제주체 간의 이해를 조정하는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개정 추진

○ 금융 법제의 선진화
- 신탁법, 이자제한법, 전자상거래 관련 법제 등의 체계적 정비 및 전자유가증권의 등록·관리 시스템의 완비

○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법률지원을 통하여 동반성장 실현
-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처해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안정적 경영기반 확보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 없음

12) 동 사업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 : 해당 없음

13) 2026년도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 결과 및 후속 조치 현황

평가결과	성과평가 주요내용	조치결과
사업개선	- 전자중재시스템 구축으로 투입 비용 대비 장래의 실질적 중재 유치 실적 증가가 반영되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 - 연구용역비의 이월 문제는 사업 관리의 예측 가능성을 저해하는 바, 용역 발주 시기 조정 및 수행 공정 관리를 강화하는 등의 개선이 필요	- 전자중재시스템 구축 관련 예산이 적정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면밀하게 살피고, 전자중재시스템이 차질 없이 구축·운영될 수 있도록 할 예정 - 입법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되,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한 주제의 경우 연내에 연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

14) 부처 건의사항 : 해당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3	3,271	-	3,271	38	-	-	3,309	3,282	100.3	99.2	20	7
2024	3,400	-	3,400	20	△50	-	3,370	3,354	98.6	99.5	-	16
2025	2,595	-	2,595	-	-	-	2,595	2,561	98.7	98.7	30	4
2026	4,456	-	4,456	30	-	-	4,486	3,893	87.3	86.7	-	-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본예산	추경(A)								
2023	2,365	2,365	2,365	2,365	-	2,365	2,364	-	1	100
2024	2,578	2,578	2,578	2,578	-	2,578	2,578	-	-	100
2025	1,771	1,771	1,771	1,771	-	1,771	1,771	-	-	100
2026. 7월기준	3,629	3,629	3,629	3,629	-	3,629	2,011	-	-	55.4

2) 주요 결산사항

□ 2023~2026년 결산사항

2023	-이월 : 연구용역비(260-02) 20백만원 이월 -불용 : 집행잔액 7백만원(일반수용비 2백만원, 공공요금 3백만원, 국외여비 1백만원, 대한상사중재원 1백만원)
2024	-전용 : 국외여비 부족으로 15백만원 세부사업 내 전용, 국가소송과 감정료 등 부족으로 국가배상금 지급 세부사업으로 50백만원 전용 -불용 : 영문에디터 퇴직 및 채용 기간 차이(9.10. ~11.27.)에 따른 상용임금, 고용부담금 등 13백만원, 국외여비 및 공공요금 집행잔액 3백만원 등 총 16백만원 불용
2025	- 불용 : 상용임금 1백만원, 국외여비 및 공공요금 집행잔액 3백만원 등 총 4백만원 불용 - 이월 : 연구용역비(260-01) 30백만원 이월
2026	- 해당없음

□ 2026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 없음

□ 2026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 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 해당 없음

사 업 명
공증제도운영 및 활성화(1038-3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법무부	법무실	-	020	22
명칭					공공질서 및 안전	법무 및 검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000	1038	300
명칭	법무활동	법률서비스 산업의 선진화 및 법조인 선발	공증제도운영 및 활성화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6예산 시 소관
	O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공증제도운영 및 활성화	법무부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법무실	이윤구	김승재 서기관	김동원
		법무과	02-2110-3175	02-2110-3173	010-****-3179
	사업시행주체	직접수행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년 결산	2026년 예산		2027년		증감	
		본예산(A)	추경	요구안	조정안(B)	(B-A)	(B-A)/A
공증제도운영 및 활성화	822	947	947	991	991	44	4.6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25					2026(2026.7월말)							2027 예산안
	예산액(추경)	예산현액	집행액[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현액	집행액[실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예상액	불용예상액	
									예산현액	집행액[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826	826	822	-	4	947	947	450	947	450	-	-	991
· 전자공증시스템 운영	470	470	467	-	3	570	570	268	570	268	-	-	450
· 공무직 상용임금	207	207	206	-	1	228	228	117	228	117	-	-	412
· 공증제도운영 및 신뢰도 제고	149	149	149	-	-	149	149	65	149	65	-	-	129
○ 비목별 분류(합계)	826	826	822	-	4	947	947	450	947	450	-	-	991
· 상용임금(110-03)	171	171	171	-	-	188	188	104	188	104	-	-	339
· 일반수용비(210-01)	88	88	88	-	-	88	88	24	88	24	-	-	88
· 복리후생비(210-12)	3	3	3	-	-	3	3	2	3	2	-	-	5
· 관리용역비(210-15)	407	407	404	-	2	507	507	250	507	250	-	-	410
· 국외여비(220-02)	34	34	34	-	-	34	34	34	34	34	-	-	34
· 사업추진비(240-01)	4	4	4	-	-	4	4	4	4	4	-	-	4
· 특정업무경비(250-03)	3	3	3	-	-	3	3	3	3	3	-	-	3
· 정책연구비(260-02)	20	20	20	-	-	20	20	-	20	-	-	-	-
· 고용부담금(320-09)	34	34	32	-	2	37	37	11	37	11	-	-	68
· 자산취득비(430-01)	63	63	63	-	-	63	63	18	63	18	-	-	40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826	826	822	-	4	947	947	450	947	450	-	-	991
· 전자공증시스템 운영	470	470	467	-	3	570	570	268	570	268	-	-	450
-관리용역비(210-15)	407	407	404	-	3	507	507	250	507	250	-	-	410
-자산취득비(430-01)	63	63	63	-	-	63	63	18	63	18	-	-	40
· 공무직 상용임금	207	207	206	-	1	228	228	117	228	117	-	-	412
-상용임금(110-03)	171	171	171	-	-	188	188	104	188	104	-	-	339
-복리후생비(210-12)	3	3	3	-	-	3	3	2	3	2	-	-	5
-고용부담금(320-09)	34	34	32	-	1	37	37	11	37	11	-	-	68
· 공증제도운영 및 신뢰도 제고	149	149	149	-	-	149	149	65	149	65	-	-	129
-일반수용비(210-01)	88	88	88	-	-	88	88	24	88	24	-	-	88
-국외여비(220-02)	34	34	34	-	-	34	34	34	34	34	-	-	34
-사업추진비(240-01)	4	4	4	-	-	4	4	4	4	4	-	-	4
-특정업무경비(250-03)	3	3	3	-	-	3	3	3	3	3	-	-	3
-정책연구비(260-02)	20	20	20	-	-	20	20	-	20	-	-	-	-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공증제도운영 및 활성화)
- (전자공증시스템 운영) 전자공증시스템의 원활한 운영 및 유지보수
- (공무직 상용임금) 법무부 아포스티유* 업무를 지원하는 공무직(5명)에 대한 보수
- (공증제도운영 및 신뢰도 제고) 공증제도 활성화를 통해 예방사법 기능 강화 및 선진 법률문화 촉진을 위한 공증위원회, 공증인 직무교육, 공증사무 감사 등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공증인법 제66조의3(지정공증인의 지정 등), 제66조의4(지정공증인의 지정 취소), 제66조의5(전자문서의 인증), 제66조의6(전자화문서의 인증), 제66조의7(지정공증인의 전자서명), 제66조의8(인증한 전자문서 등의 보존 등), 제66조의9(인증정보의 제공 등), 제66조의10(위임규정), 제66조의11(기술의 개발 · 보급)

② 추진경위

- 2009. 2. 공증인법 개정안 공포(전자공증제도는 2010. 8. 7. 시행)
- 2009. 10. ~ 2010. 4. 전자공증시스템 구축
- 2010. 8. 전자공증제도 시행
- 2011. 2. ~ 전자공증시스템 위탁관리・운영 중
- 2016. 11. ~ 12. 화상공증제도 도입 등을 포함한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2017. 1.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제출
- 2017. 7. ~ 12. 전자공증시스템 고도화 및 화상공증시스템 구축 완료
- 2017. 11. 공증브로커 처벌 규정 마련 등을 포함한 공증인법 일부 개정
- 2017. 12. 화상공증제도 도입 등을 포함한 개정 공증인법(법률 제15150호) 공포·시행
- 2018. 2. ~ 5.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 등 신분증 진위확인시스템 연계 구축 완료
- 2018. 6. 20. 공증인법 시행령 및 지정공증인의 사무처리 등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른 화상공증제도 시행
- 2019. 2. ~ 3. 화상공증 홍보 동영상 제작 및 재외공관 대상 화상공증제도 집중 홍보
- 2019. 12. 헤이그 아포스티유 협약의 이행 등에 관한 규정 제정 추진

- 2020. 4. 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 제정·공포
- 2020. 9. 전자공증시스템 문서관리솔루션 이중화
- 2020. 10. 공증인 직무교육 지침 개정
- 2022. 6. 차세대 전자공증시스템 업무프로세스 재설계·정보화 전략계획(BPR/ISP) 사업 완료
- 2022. 7. 제22차 공증제도개선위원회 개최
- 2022. 9. ~ 12. 과기부 주관 블록체인 지원사업 최종선정
- 2023. 3. 블록체인기반 전자공증시스템 공정증서 고도화
- 2024. 6. 블록체인기반 전자공증시스템 사서증서 및 종이공증 고도화
- 2025. 5. 신규 지정공증인 전자공증시스템 활용 교육실시
- 2026. 1. 전자공증시스템 문서 보안을 위한 문서 자체 암호화(DRM) 구축
- 2026. 3. 화상공증시스템 이중화 구축 완료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09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3	2024	2025	2026	2027(안)
사업비	1,274	820	826	947	991

- 기타: 공증인(임명공증인 79명, 지정공증인 113명, 인가공증 241개 사무소), 공증처리건수 약 총 4,000만건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법무부 법무실 법무과
- 사업 수혜자 : 일반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7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

① 전자공증시스템 운영
: ('26) 570백만원 → ('27요구) 450백만원, 120백만원 감액
- (요구) 사업 우선순위 조정에 따른 지출구조조정(△120백만원)

ㅇ 2026년도 예산 및 2027년도 예산안 산출 세부내역 비교

'26년 예산		'27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506,500	○ **관리용역비(210-15) : 506,500천원** 가. 상용 S/W 유지보수 203,937천원 ・ 1,807,948,000원*11.28%(유지보수 요율) 나. 응용 S/W 유지보수 302,349천원 ・ 2,678,655,118원*11.3%	410,000	○ **관리용역비(210-15) : 410,000천원** 가. 상용 S/W 유지보수 102,204천원 ・ 1,793,048,000원*5.7%(유지보수 요율) 나. 응용 S/W 유지보수 306,707천원 ・ 2,599,207,829원*11.8%
63,000	○ **공증시스템 취득비(430-01) : 63,000천원** ・ 63,000,000원*1식=63,000천원	40,000	○ **공증시스템 취득비(430-01) : 40,000천원** ・ 40,000,000원*1식=40,000천원

② 법무부 아포스티유 공무직 5명 상용임금
: ('26) 228백만원 → ('27요구) 379백만원, 151백만원 증액
- (요구) 아포스티유 공무직 3명 증원 반영
- (산출) '26 : 상용임금 188백만원, 복리후생비 3백만원, 고용부담금 37백만원 = 228백만원
'27 : 상용임금 339백만원, 복리후생비 5백만원, 고용부담금 68백만원 = 412백만원

ㅇ 2026년도 예산 및 2027년도 예산안 산출 세부내역 비교

'26년 예산안		'27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88,365	○ **공무직 근로자 보수(110-03) : 188,365천원** 가. 급여 등 : 165,561천원 나. 명절상여금 : 1,440,380.7월*2회*5명=14,404천원 다. 급식보조비 : 140,000원*12월*5명=8,400천원	339,371	○ **공무직 근로자 보수(110-03) : 339,371천원** 가. 급여 등 : 299,974천원 나. 명절상여금 : 1,502,317월*2회*8명=24,037천원 다. 급식보조비 : 160,000원*12월*8명=15,360천원
2,500	○ **공무직 근로자 맞춤형 복지비(210-12) : 1,200천원** - 5명*500,000원=2,500천원	4,800	○ **공무직 근로자 맞춤형 복지비(210-12) : 4,800천원** - 8명*600,000원=4,800천원
37,297	○ **공무직 근로자 보험료 및 퇴직금(320-09) : 37,297천원**	68,248	○ **공무직 근로자 보험료 및 퇴직금(320-09) : 68,248천원**

③ 공증제도 운영 및 신뢰도 제고
: ('26) 149백만원 → ('27요구) 129백만원, 20백만원 감액
- (요구) 공증제도개선 위원회 운영, 공증징계위원회, 공증감사 및 직무비용 등 전년동 편성
유사중복 사업 통합으로 연구용역비 지출구조조정(△20백만원)

ㅇ 2026년도 예산 및 2027년도 예산안 산출 세부내역 비교

'26년 예산		'27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87,585	○ **공증제도 관련 각종 운영비 등(210-01) : 87,585천원** 1. 공증인 직무교육 경비 900천원 ・3회*300,000원=900천원 2. 공증인 직무교육 외부강사 수당 1,200천원 ・2명*4회*150,000원=1,200천원 3. 공증인 징계위원회 경비 5,400천원 가. 참석수당 ・ 3명*4회*150,000원=1,800천원 나. 검토수당 ・ 3명*4회*100,000원=1,200천원	87,544	○ **공증제도 관련 각종 운영비 등(210-01) : 87,544천원** 1. 공증인 직무교육 경비 600천원 ・2회*300,000원=600천원 2. 공증인 직무교육 외부강사 수당 1,200천원 ・2명*4회*150,000원=1,200천원 3. 공증인 징계위원회 경비 5,400천원 가. 참석수당 ・ 3명*4회*150,000원=1,800천원 나. 검토수당 ・ 3명*4회*100,000원=1,200천원

'26년 예산		'27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다. 속기료 ・ 2시간*4회*200,000원=1,600천원 라. 진행경비 ・ 4회*200,000원=800천원 4. 공증제도개선위원회 경비 13,000천원 가. 참석수당 ・ 8명*5회*150,000원=6,000천원 나. 검토수당 ・ 8명*5회*100,000원=4,000천원 다. 속기료 ・ 2시간*5회*200,000원=2,000천원 라. 진행경비 ・ 5회*200,000원=1,000천원 5. 공증제도 활성화 방안 53,000천원 가. 신문, 인터넷, 방송 매체 등 ・ 4회*11,000,000원=44,000천원 나. 전자공증 안내 책자 및 자료집 발간 ・ 3회*3,000,000원=9,000천원 6. 공증제도 설문조사 13,000천원		다. 속기료 ・ 2시간*4회*200,000원=1,600천원 라. 진행경비 ・ 4회*200,000원=800천원 4. 공증제도개선위원회 경비 13,000천원 가. 참석수당 ・ 8명*5회*150,000원=6,000천원 나. 검토수당 ・ 8명*5회*100,000원=4,000천원 다. 속기료 ・ 2시간*5회*200,000원=2,000천원 라. 진행경비 ・ 5회*200,000원=1,000천원 5. 공증제도 활성화 방안 56,000천원 가. 신문, 인터넷, 방송 매체 등 ・ 4회*11,000,000원=44,000천원 나. 전자공증 안내 책자 및 자료집 발간 ・ 3회*3,000,000원=9,000천원 6. 공증제도 설문조사 11,400천원
34,034	**○ 재외공관 공증감사 등 국외 출장비(220-02) : 34,000천원** 1. 재외공관 공증사무소 지도점검(영국, 벨기에, 부장검사 1명, 사무관 1명, 9일) 6,522천원 가. 항공료 ・ 1,100,000원*2명=2,400천원 나. 일비 ・ ($50+$30)*8일=883천원 다. 숙박비 ・ ($389+$176)*7박=5,458천원 라. 식비 ・ ($160+$81)*8일=2,661천원 2. 재외공관 공증사무소 지도점검(이탈리아, 이집트, 서기관 1명, 주무관 1명, 9일) 6,441천원 가. 항공료 ・ 1,200,000원*2명=2,400천원 나. 일비 ・ ($30+$26)*8일=578천원 다. 숙박비 ・ ($137+$123)*7박=2,348천원 라. 식비 ・ ($59+$49)*8일=1,115천원 3. 재외공관 직무교육(워싱턴 D.C, 애틀랜타, 벤쿠버, 자메이카, 서기관 1명, 주무관 1명, 각 4일) 16,127천원 가. 항공료 ・ (500,000원+1,200,000원+1,200,000원+1,300,000원)*2명=8,200천원 나. 일비 ・ ($30+$26)*4회*4일=1,236천원 다. 숙박비 ・ ($137+$123)*4회*3박=4,306천원 라. 식비 ・ ($59+$49)*4회*4일=2,385천원	34,000	**○ 재외공관 공증감사 등 국외 출장비(220-02) : 34,000천원** 1. 재외공관 공증사무소 지도점검(영국, 벨기에, 부장검사 1명, 사무관 1명, 9일) 11,720천원 가. 항공료 ・ 1,000,000원*2명=2,000천원 나. 일비 ・ ($50+$30)*8일=954천원 다. 숙박비 ・ ($389+$176)*7박=5,893천원 라. 식비 ・ ($160+$81)*8일=2,873천원 2. 재외공관 공증사무소 지도점검(이탈리아, 이집트, 서기관 1명, 주무관 1명, 9일) 6,667천원 가. 항공료 ・ 1,000,000원*2명=2,000천원 나. 일비 ・ ($30+$26)*8일=668천원 다. 숙박비 ・ ($137+$123)*7박=2,712천원 라. 식비 ・ ($59+$49)*8일=1,287천원 3. 재외공관 직무교육(워싱턴 D.C, 애틀랜타, 벤쿠버, 자메이카, 서기관 1명, 주무관 1명, 각 4일) 15,559천원 가. 항공료 ・ (500,000원+1,000,000원+1,000,000원+1,000,000원)*2명=7,000천원 나. 일비 ・ ($30+$26)*4회*4일=1,335천원 다. 숙박비 ・ ($137+$123)*4회*3박=4,649천원 라. 식비 ・ ($59+$49)*4회*4일=2,575천원
4,017	**○ 공증제도 관련 사업추진비(240-01) : 4,000천원** 1. 공증제도개선위원회 업무협의 2,700천원 ・5명*6회*90,000원=2,700천원 2. 공증인징계위원회 간담회 1,200천원 ・5명*4회*60,000원=1,200천원 3. 공증 업무협의 100천원	4,000	**○ 공증제도 관련 사업추진비(240-01) : 4,000천원** 1. 공증제도개선위원회 업무협의 2,700천원 ・5명*6회*90,000원=2,700천원 2. 공증인징계위원회 간담회 1,200천원 ・5명*4회*60,000원=1,200천원 3. 공증 업무협의 100천원
3,037	**○ 공증감사 수행경비(250-03) : 3,037천원** ・2명*12회*126,000원=3,024천원	3,037	**○ 공증감사 수행경비(250-03) : 3,037천원** ・2명*12회*126,000원=3,024천원
20,000	**○ 공증제도개선 연구용역비(260-02) : 20,000천원** 1. 공증제도개선위원회 업무협의 20,000천원	-	**○ 공증감사 수행경비(250-03) : 0천원** ※ 유사중복 사업 일괄 통합(연구용역)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3~2027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3	○ 공증사무 처리 건수 : 2,105,575건 ○ 공증인 인원 : 임명공증인 83명, 인가공증 225개 사무소
2024	○ 공증사무 처리 건수 : 2,004,956건 ○ 공증인 인원 : 임명공증인 83명, 인가공증 225개 사무소
2025	○ 공증사무 처리 건수 : 1,985,550건 ○ 공증인 인원 : 임명공증인 83명, 인가공증 240개 사무소
2026	○ 공증사무 처리 건수 : 1,175,635건 ○ 공증인 인원 : 임명공증인 79명, 인가공증 241개 사무소

③ 향후(2027년도 이후) 기대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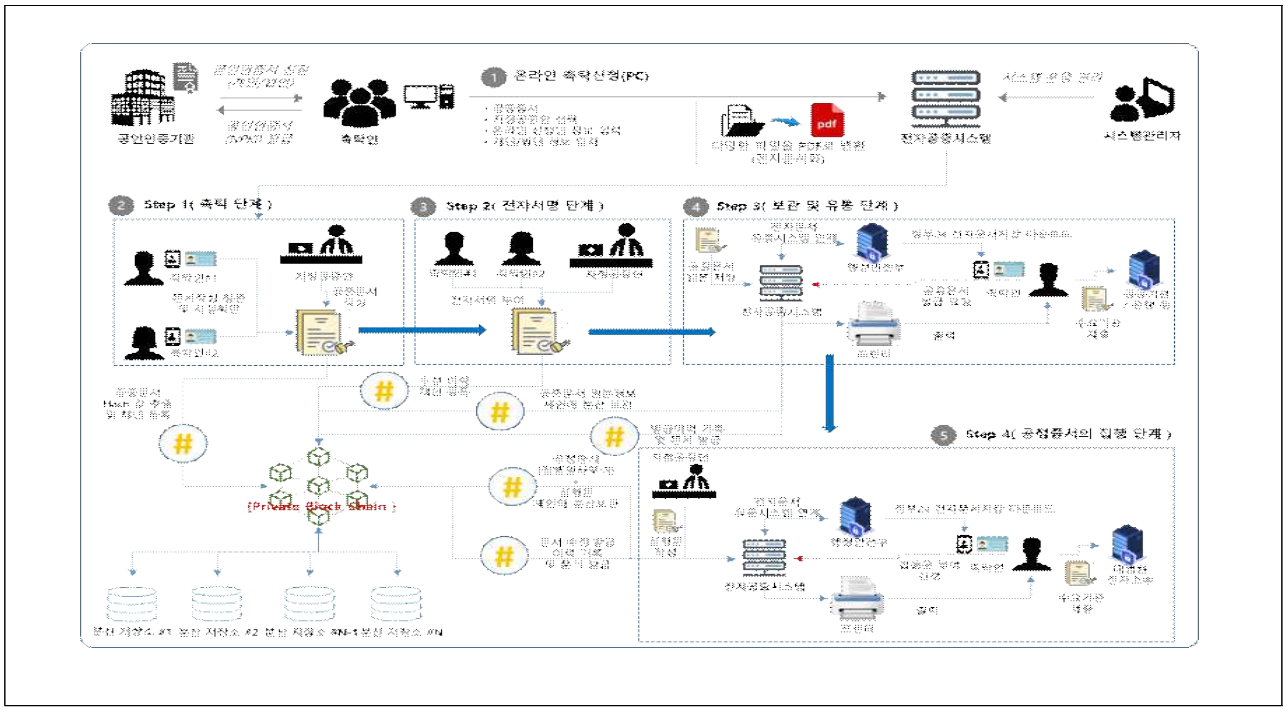
: 공증제도 개선을 통한 공증제도의 신뢰성 제고 및 예방사법적 기능 강화

: 전자공증시스템 활성화를 통한 공증 제도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 및 이용편의성 향상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25~2029	820	947	950	955	960	
2026~2030		947	1,043	1,050	1,055	1,060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전자공증시스템 활성화를 위한 시스템 및 제도개선 필요(예정처, 23결산)
- 전자공증시스템 이용실적 제고를 위한 이용 접근성 강화 필요(예결위, 23결산)
- 전자공증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예정처, 24결산)

2) 감사원 지적 : 해당없음

3) 기타 언론 및 민원 : 해당없음

4)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지적사항	후속 조치사항
▪ 온라인 공증실적을 제고하기 위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	▪ 전자공증 실적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자공증 시스템 고도화 사업(예산 18억원) 추진, 전자공증 문서의 범위 확대(사서증서→공정증서까지 확대), 모바일 앱 재구축('23.12.) 등 대국민 접근성 강화를 위해 노력 ▪ 블록체인 기반 전자공증시스템 고도화 2차사업 추진 - 모바일 상 간편인증 기능 구현, 사서증서 인증 기능 구현 등('25.3.) - 모바일 사서증서 촉탁신청 기능 개발('25.12.) ▪ 전자문서 형식의 공증증서 작성에 관한 「공증인법」 개정 추진('25.2. 개정안 국회 발의) ▪ 전자공증의 홍보와 교육 강화 등을 위해 지하철 역사 내 전자공증 홍보 광고 실시, 홍보물품 제작, 행정복지센터 등 전자공증 홍보포스터 및 공증관계 법령집 발간 및 배부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ㅇ 공증제도 개선 지속 추진
ㅇ 공증사무소에 대한 철저한 공증감사 및 교육 실시
- 전국에 산재한 공증사무소에서 처리되는 공증업무의 통일성·적정성 도모
- 위법·부당한 업무처리에 대하여 엄정하게 감독권을 행사함으로써 예방 사법기능을 수행하는 공증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제고
ㅇ 재외공관에 대한 공증서류검열 강화
ㅇ 공증제도 홍보 및 전자공증 활성화
- 화상공증 활성화를 위한 대국민 홍보 강화
- 블록체인 기반 차세대 전자공증 시스템 활성화 운영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2) 동 사업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 : 해당없음

13) 2026년도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 결과 및 후속 조치 현황 : 해당없음

14) 부처 건의사항

- 아포스티유 가입국 증가(베트남 등)에 따른 법무부 아포스티유 공무직 증원 필요(3명)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3	1,247	-	1,247	6	-	-	1,280	1,273	99.9	99,5	-	7
2024	820	-	820	-	△3	-	817	724	88.3	88.6	-	93
2025	826	-	826	-	-	-	826	822	99.5	99.5	-	4
2026	947	-	947	-	-	-	947	450	47.5	47.5	-	-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 해당없음

2) 주요 결산사항

□ 2023~2026년 결산사항

2023	- 불용 : 집행잔액 6백만원
2024	- 전용 : 2024년, 법무심의관실 공무직 상용임금 부족에 따른 3백만원 전용 - 불용 : 공무직 퇴직에 따른 상용임금 등 22백만원, 관리용역비 낙찰차액 71백만원
2025	- 불용 : 공무직 고용부담금 집행잔액 2백만원, 관리용역비 낙찰차액 2백만원
2026	- 해당없음

□ 2026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

□ 2026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 해당없음

사 업 명
변호사제도의 선진화(1038-303)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법무부	법무실	-	020	22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000	1038	303
명칭	법무활동	법률서비스 산업의 선진화 및 법조인 선발	변호사제도의 선진화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6예산 시 소관
	O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O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변호사제도의 선진화	법무부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법무실	이윤구	김승재 서기관	김동원
		법무과	02-2110-3175	02-2110-3173	02-2110-3179
	사업시행주체	직접수행			
법조윤리협의회 운영지원	법무부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법조윤리협의회	사무국장 김종현	유정은 주임	
		사무국	02-3476-4067	02-3476-4061	
	사업시행주체	법조윤리협의회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년 결산	2026년 예산		2027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요구안	조정안(B)		(B-A)/A
변호사제도의 선진화	764	767	767	744	301	466	△60.8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25					2026(2026.7월말)							2027 예산안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779	779	764 [764]	-	15	767	767	387 [282]	767	387 [282]	-	-	301
· 변호사제도개선 및 법률서비스 제고	489	489	474	-	15	489	489	109	489	109	-	-	243
· 민간경상보조	232	232	232	-	-	220	220	220 [115]	220	220 [115]	-	-	-
· 변호사 전자민원 시스템	58	58	58	-	-	58	58	58	58	58	-	-	58
○ 비목별 분류(합계)	779	779	764	-	15	767	767	387	767	387	-	-	301
· 일반수용비(210-01)	401	401	398	-	3	401	401	84	401	84	-	-	203
· 임차료(210-07)	13	13	3	-	10	13	13	5	13	5	-	-	5
· 관리용역비(210-15)	58	58	58	-	-	58	58	29	58	29	-	-	58
· 국외여비(220-02)	25	25	22	-	2	25	25	25	25	25	-	-	25
· 사업추진비(240-01)	10	10	10	-	-	10	10	10	10	10	-	-	10
· 정책연구비(260-02)	40	40	40	-	-	40	40	14	40	14	-	-	-
· 민간경상보조(320-01)	232	232	232	-	-	220	220	220	220	220	-	-	-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779	779	764	-	15	767	767	387 [282]	767	387 [282]	-	-	301
· 변호사제도개선 및 법률서비스 제고	489	489	474	-	15	489	489	109	489	109	-	-	243
-일반수용비(210-01)	401	401	398	-	3	401	401	84	401	84	-	-	203
-임차료(210-07)	13	13	3	-	10	13	13	5	13	5	-	-	5
-국외여비(220-02)	25	25	22	-	2	25	25	25	25	25	-	-	25
-사업추진비(240-01)	10	10	10	-	-	10	10	10	10	10	-	-	10
-정책연구비(260-02)	40	40	40	-	-	40	40	14	40	14	-	-	-

	2025					2026(2026.7월말)							2027 예산안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변호사 전자민원 시스템	58	58	58	-	-	58	58	58	58	58	-	-	58
-관리용역비(210-15)	58	58	58	-	-	58	58	58	58	58	-	-	58
·민간경상보조	232	232	232 [232]	-	-	220	220	220 [115]	220	220 [115]	-	-	-
-민간경상보조(320-01)	232	232	232 [232]	-	-	220	220	220 [115]	220	220 [115]	-	-	-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변호사제도의 선진화)
- (내역사업명)
- (변호사제도 개선 및 법률서비스 제고) 법조환경 변화에 따라 변호사 정보에 대한 접근성 제고, 변호사 관리 · 감독 및 비위 예방 강화, 마을변호사 제도 운영 등
- (법조윤리협의회 운영지원 등) 법조윤리를 확립하고 건전한 법조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법령·제도 및 정책에 관한 협의, 법조윤리 실태 분석과 법조윤리 위반행위에 대한 대책, 징계 개시신청 등 업무 수행
- (변호사 전자민원 시스템) 업무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위해 변호사 정보 공유, 법무법인 정관 변경 전산화 등을 위한 변호사 전자민원 처리시스템 운영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변호사법 제41조(설립절차), 변호사법 제1조(변호사의 사명), 제21조의2(법률사무소 개설 요건 등), 제92조(변호사징계위원회의설치), 변호사법 제89조의3(법조윤리협의회의 조직·운영 및 예산)

② 추진경위

○ 변호사제도 개선(위원회 운영 등)

- 2013. 6. 마을변호사제도 운영(250개 마을, 415명의 마을변호사로 시작)
- 2017. 3. 법조윤리협의회의 현장조사권 신설 등을 포함한 변호사법 개정
- 2017. 6. 매경 2017 국가대표브랜드 대상 마을변호사 수상
- 2017. 9. 변호사법 시행령 개정
- 2018. 7. 매경 2018 국가대표브랜드 대상 마을변호사 2년 연속 수상
- 2018. 12.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 구성 변경 등을 포함한 변호사법 개정
- 2019. 3. ~ 11. 형사공공변호인 관련 개정안 마련 및 국회 제출
- 2020. 3.「법조계 전관특혜 근절방안」발표
- 2020. 5. 제4기 변호사제도개선위원회 운영

- 2020. 7. 전국 1,491개 읍·면·동에 1,349명의 제5기 마을변호사 위촉 및 전국 시·군·구, 읍·면·동에 1,636명의 마을법률담당공무원 지정
- 2021. 1. '변호사 6개월 실무수습 제도 개혁에 관한 심포지엄' 개최
- 2021. 6.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 변호사법 개정안 국회 제출
- 2021. 6. 국가기관 법률사무종사 변호사 선발(13개 기관, 115명)
- 2021. 7. 경기 광주시에서 마을변호사 온라인예약 및 화상상담 시범사업 시행
- 2021. 9.~22. 7. 리걸테크 TF 구성・운영(기간 중 총8회 진행)
- 2021. 12. 변호사 징계위원회 4회 개최, 변호사·법무법인 46건 징계
- 2021. 12.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기관 다양화 변호사법 개정안 국회 제출
- 2022. 6. 국가기관 법률사무종사 변호사 선발(18개 기관, 130명)
- 2022. 6. 마을변호사 대학생 서포터즈 선발
- 2023. 5. 학교폭력피해자를 위한 마을변호사 모집 및 활동(전국 7개 시·도 75명)
- 2023. 12. 마을변호사 10주년 기념식 개최
- 2024. 10. 제7기 마을변호사 위촉
- 2026. 9. 제8기 마을변호사 위촉(예정)

○ 법조윤리협의회 운영

- 2005. 9.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에서 법조윤리 확립방안의 하나로 법조윤리협의회 설치·운영 의결
- 2007. 1. 변호사법 개정으로 법조윤리협의회 도입(공직퇴임 및 특정변호사 수임자료 심사)
- 2007. 7. 27. 법조윤리협의회 출범
- 2011. 5. 변호사법 개정으로 법무법인 등 취업 퇴직공무원의 활동내역 심사
- 2017. 3. 변호사법 개정으로 법조윤리협의회에 현장조사권 부여
- 2017. 9. 법조윤리협의회 현장조사 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한 변호사법 시행령 개정
- 2017. 9. ~ 2018. 6. 법조윤리협의회 위원 전원회의 및 간사회의 개최
- 2018. 1. ~ 2020. 12. 변호사 수임자료 심사 8,801명(공직퇴임변호사 3,101명, 특정변호사 5,700명), 징계개시신청 108명(경고 255명)
- 2019. 12. 변호사 수임자료 심사 2,814명(공직퇴임변호사 1,027명, 특정변호사 1,787명) 징계개시신청 27명 (경고 127명)
- 2020. 12. 변호사 수임자료 심사 3,313명(공직퇴임변호사 1,160명, 특정변호사 2,153명), 징계개시신청 26명 (경고 128명)
- 2021. 12. 변호사 수임자료 심사 3,313명, 징계개시신청 등 152명(경고 127명)

- 2022. 12. 변호사 수임자료 심사 3,776명, 징계개시신청 등 151명(경고 119명)
- 2023. 12. 변호사 수임자료 심사 2,130명, 징계개시신청 등 53명(경고 162명), 수사의뢰 2건
- 2024. 12. 변호사 수임자료 심사 5,203명, 징계개시신청 등 98명(상반기) / 99명(하반기)
- 2025. 12. 변호사 수임자료 심사 5,382명, 징계개시신청 등 89명(상반기) / 254명(하반기)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12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3	2024	2025	2026	2027(안)
사업비	773	744	779	767	301

- 기타: **(법조윤리협의회)** 변호사 등록 인원 36,319명, 법조윤리관련 수임자료 심사 5,382명 중 343명 적발(징계개시 신청, 주의촉구 등) **(마을변호사)** 전국 1,425개 읍·면·동 마을변호사 1,239명 위촉, 마을 법률 담당공무원 1,580명 지정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민간경상보조
- 사업시행주체 : 법무부 법무실, 법조윤리협의회
- 사업 수혜자 : 일반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7예산안)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법조윤리협의회 운영지원	보조	법조윤리 협의회	-	-	변호사법 제89조의 3

3) 2027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

① 변호사제도개선 및 법률서비스 제고
: ('26) 489백만원 → ('27) 243백만원(△246)
- 마을변호사제도 관련 예산 삭감(△141백만원), 사업우선순위 조정에 따른 지출구조조정(△105백만원)

ㅇ 2026년도 예산 및 2027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6년 예산		'27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387,821	○ **변호사제도개선 관련 각종 운영비 등(210-01) : 387,821천원** 1. 변호사제도 개선위원회 25,000천원 가. 전체회의의 참석수당 ・ 6회*15명*150,000원=13,500천원 나. 전체회의의 안건검토수당 ・ 6회*15명*100,000원=9,000천원 다. 분과회의의 참석수당 ・ 6회*10명*150,000원=9,000천원 라. 분과회의의 안건검토수당 ・ 6회*10명*100,000원=6,000천원 2. 변호사 징계위원회 9,000천원 가. 회의수당 ・ 6명*5회*150,000원=4,500천원 나. 안건검토수당 ・ 6명*5회*150,000원=4,500천원 3. 변호사제도개선 도서구입 및 자료발간 5,600천원 4. 변호사징계회의 자료 인쇄비 20,000천원 ・ 4회*5,000,000원=20,000천원 5. 법률개정 및 마을변호사 관련 회의 개최비 12,500천원 가. 자료집 인쇄 5,500천원 나. 사회자, 발표자, 토론자 등 수당 ・ (5명*300,000원)+(5명*200,000원)=2,500천원 다. 현수막 등 행사물품 구입비 4,500천원 6. 변호사제도개선위원회 및 징계위원회 관련 녹취비 6,000천원 ・ 10회*600,000원=6,000천원 7. 마을변호사제도 운영 관련 275,214천원 가. 마을변호사제도 홍보 141,500천원 1) 리플릿 및 동영상 제작 배포 81,000천원 2) 언론 및 블로그 등에 제도 알리기 60,500천원 나. 마을변호사제도 운영 133,714천원 1) 마을변호사 활동비 ・ 260명*100,000원=26,000천원 2) 학술정보사이트 50,000천원 3) 마을변호사 활동 물품 33,714천원 8. 법조인접직역 및 법률 현안 등 제도개선 59백만원 - 법제 사례 수집(해외 사례 포함) 14백만원 = 70만원 x 20종 - 번역료 5백만원 : 5천원x500매x2종 - 공청회 및 공동학술대회 등 35백만원 - 자료·도서, 회의 운영 물품 구입 : 5백만원 = 100만원 x 5회	202,884	○ **변호사제도개선 관련 각종 운영비 등(210-01) : 202,884천원** 1. 변호사제도 개선위원회 47,500천원 가. 전체회의의 참석수당 ・ 6회*15명*150,000원=13,500천원 나. 전체회의의 안건검토수당 ・ 6회*15명*100,000원=9,000천원 다. 분과회의의 참석수당 ・ 6회*10명*150,000원=9,000천원 라. 분과회의의 안건검토수당 ・ 6회*10명*100,000원=6,000천원 마. 변호사 제도개선 관련 도서구입 및 자료 발간 : 10,000천원 2. 변호사 징계위원회 43,800천원 가. 회의수당 ・ 6명*6회*150,000원=5,400천원 나. 안건검토수당 ・ 6명*6회*150,000원=5,400천원 다. 변호사 징계 관련 인쇄비 ・ 6회*5,000,000원=30,000천원 라. 징계위원회 운영비 ・ 6회*500,000원=3,000천원 3. 변호사제도개선위원회 및 징계위원회 관련 녹취비 ・ 20회*600,000원=12,000천원 4. 법률개정 등 회의 개최비 19,500천원 가. 자료집 인쇄 7,000천원 나. 사회자, 발표자, 토론자 등 수당 ・ (5명*300,000원)+(5명*200,000원)=2,500천원 다. 현수막 등 행사물품 구입비 10,000천원 5. 법조인접직역 및 변호사비밀유지권, 법률 현안 등 제도개선 80,000천원 가. 법제 사례 수집(해외 사례 포함) 20백만원 = 100만원 x 20종 나. 번역료 5백만원 : 5천원x500매x2종 다. 공청회 및 공동학술대회 등 45백만원 라. 자료·도서, 회의 운영 물품 구입 : 10백만원 = 200만원 x 5회
13,200	○ **변호사제도개선 관련 장소 대여료(210-01) : 13,200천원** 1. 변호사제도개선위원회 회의 장소 임차료 5,200천원 가. 전체회의 ・ 4회*800,000원=3,200천원	5,200	○ **변호사제도개선 관련 장소 대여료(210-01) : 5,200천원** 1. 변호사제도개선위원회 회의 장소 임차료 5,200천원 가. 전체회의 ・ 4회*800,000원=3,200천원

'26년 예산		'27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나. 분과회의 ・ 4회*500,000원=2,000천원 2. 법률개정 및 마을변호사 관련 장소 임차료 8,000천원		나. 분과회의 ・ 4회*500,000원=2,000천원
24,891	**○ 법률서비스선진화를 위한 현지 실태조사(220-02) : 24,891천원** 1. 독일, 네덜란드(부장검사 1명, 사무관 1명, 8일) 10,840천원 가. 항공료 ・ 2,500,000*2명=5,000천원 나. 일비 ・ ($50+$30)*8일=773천원 다. 숙박비 ・ ($389+$176)*7박=3,323천원 라. 식비 ・ ($160+$81)*8일=1,744천원 2. 일본, 인도(서기관 1명, 사무관 2명, 8일) 14,118천원 가. 항공료 ・ 2,400,000원*3명=7,200천원 나.일비 ・ $30*8일*3명=994천원 다. 숙박비 ・ $137*7박*3명=3,970천원 라. 식비 ・ $59*8일*3명=1,954천원	24,891	**○ 법률서비스선진화를 위한 현지 실태조사(220-02) : 24,891천원** 1. 독일, 네덜란드(부장검사 1명, 사무관 1명, 8일) 10,905천원 가. 항공료 ・ 2,300,000*2명=4,600천원 나. 일비 ・ ($40+$30)*8일=834천원 다. 숙박비 ・ ($207+$137)*7박=3,588천원 라. 식비 ・ ($99+$59)*8일=1,883천원 2. 일본, 인도(서기관 1명, 사무관 2명, 8일) 13,986천원 가. 항공료 ・ 2,200,000원*3명=6,600천원 나.일비 ・ $30*8일*3명=1,073천원 다. 숙박비 ・ $137*7박*3명=4,287천원 라. 식비 ・ $59*8일*3명=2,110천원
10,044	**○ 변호사제도선진화 관련 사업추진비(240-01) : 10,044천원** 1. 법률서비스 접근성 강화 관련 업무협의 2,880천원 ・ 12명*8회*30,000원=2,880천원 2. 변호사제도개선위원회 업무협의 3,840천원 ・ 16명*8회*30,000원=3,840천원 3. 외국 관계자 면담 등 해외출장 지원 경비 1,700천원 4. 변호사징계위원회 업무협의 1,624천원	10,044	**○ 변호사제도선진화 관련 사업추진비(240-01) : 10,044천원** 1. 법률서비스 접근성 강화 관련 업무협의 2,880천원 ・ 12명*8회*30,000원=2,880천원 2. 변호사제도개선위원회 업무협의 3,840천원 ・ 16명*8회*30,000원=3,840천원 3. 외국 관계자 면담 등 해외출장 지원 경비 1,700천원 4. 변호사징계위원회 업무협의 1,624천원
40,000	**○ 변호사제도 관련 연구용역(240-02) : 40,000천원** 1. 법률시장 효율성 제고 및 법조 공익성 강화 관련 연구용역 20,000천원 ・ 2건*10,000,000원=20,000천원 2. 법률서비스 접근성 강화 관련 연구용역 20,000천원 ・ 1건*20,000,000원=20,000천원	-	**○ 변호사제도 관련 연구용역(240-02) : 0천원** ※ 유사중복 사업 일괄 통합(연구용역)

② 법조윤리협의회 운영지원(민간경상보조)

: ('26) 220백만원 → ('27) 0백만원 (전액삭감)

ㅇ 2026년도 예산 및 2027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6년 예산		'27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232,080	**○ 법조윤리협의회 운영비(320-01) : 220,080천원** 1. 인건비 140,491천원 2. 운영비 79,589천원	-	**○ 법조윤리협의회 운영비(320-01) : 0천원** -

③ 변호사전자민원시스템 유지보수비용

: ('26) 58백만원 → ('27) 58백만원, 전년동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5년 예산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57,977	**○ 변호사 전자민원시스템 유지보수(210-15) : 57,977천원** . 변호사 전자민원시스템 유지보수 가. 상용 S/W 유지보수 35,984천원 ・ 372,500,000원*유지관리요율9.66%=35,984천원 나. 응용 S/W 유지보수 21,997천원 ・ 유지관리비 19,997,000원*vat 포함 110%=21,997천원	57,981	**○ 변호사 전자민원시스템 유지보수(210-15) : 57,981천원** 1. 변호사 전자민원시스템 유지보수 가. 상용 S/W 유지보수 35,984천원 ・ 372,500,000원*유지관리요율9.66%=35,984천원 나. 응용 S/W 유지보수 21,997천원 ・ 유지관리비 19,997,000원*vat 포함 110%=21,997천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3~2027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3	2024	2025	2026	2027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변호사제도 개선 관련 활동 건수(건)	목표	-	52.5 (신규)	57	59	83	각 세부지표들의 최근 3년 간의 실적 평균값에 5%를 가산하여 설정	변호사 징계위원회 개최 건수+변호사 징계 건수 +변호사 징계 관련 행정소송 심급별 종결 건수 +변호사제도 개선 관련 위원회(TF 등) 개최 건수 +변호사제도 개선 관련 연구용역 건수	변호사징계 개최 관련 공문, 행정소송 관련 대법원 사건조회 결과, 변호사제도 개선(TF 등) 위원회 개최 관련 공문, 연구용역 관련 공문 등
	실적	-	55	111	-	-			
	달성도	-	104.7	194.7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3	○ 학교폭력 피해자를 위한 마을변호사 모집 및 활동지원(전국 7개 시도, 75명 활동) ○ 전국 1,414개 읍면동에서 1,228명의 마을변호사와 1,627명의 마을 법률담당 공무원 활동
2024	○ 제7기 마을변호사 위촉 ○ 전국 1,414개 읍면동에서 1,239명의 마을변호사와 1,476명의 마을 법률담당 공무원 활동
2025	○ 전국 1,425개 읍면동에서 1,239명의 마을변호사와 1,580명의 마을 법률담당 공무원 활동
2026	○ 전국 1,425개 읍면동에서 1,239명의 마을변호사와 1,580명의 마을 법률담당 공무원 활동 ○ 제8기 마을변호사 위촉(예정)

③ 향후(2027년도 이후) 기대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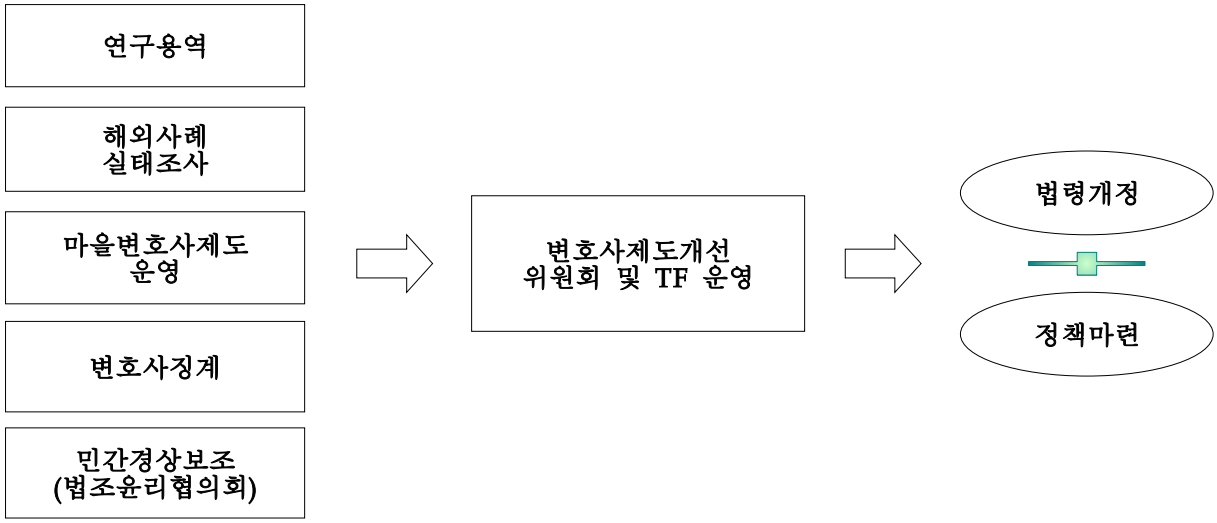
- 변호사법 개정을 통한 변호사제도 및 법률서비스 선진화 도모
- 국민의 법조접근성 강화 및 법률복지 실현, 변호사의 공익 활동 강화 등 적극 추진
- 비위 법조인 퇴출 등 법률시장 윤리 · 공익성 강화
- 리걸테크 산업 등 변호사제도 공공성 훼손하지 않으며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법·제도 개선 검토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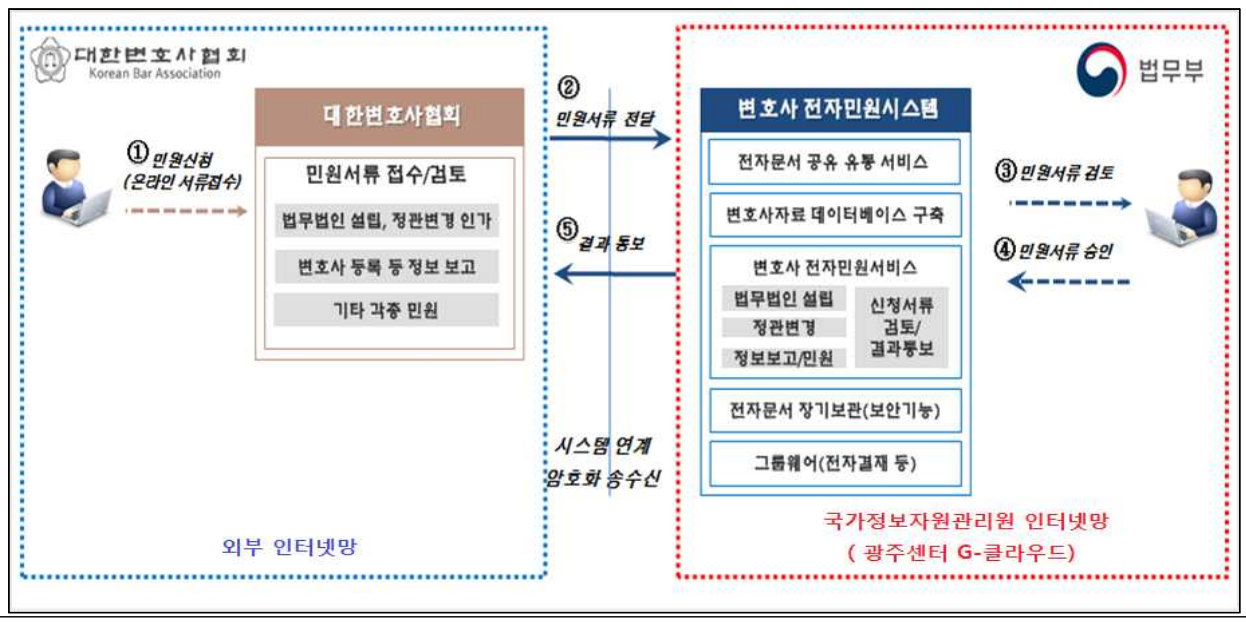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변호사 제도개선 등



○ 변호사 전자민원시스템(법무법인 설립, 정관 변경 등 처리 절차)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25~2029	779	767	790	800	820	
2026~2030		767	797	797	797	797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법조윤리협의회, 심사자료 검토수당 지급기준의 적정성 검토 필요(법사위, 23결산)
- 법조윤리협의회,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부합하지 않는 업무추진비 집행 개선 필요(법사위, 24결산)
- 마을변호사 사업규모 및 배치적정성 검토 등 개선필요(예정처, 24결산)

2) 감사원 지적 : 해당없음

3) 기타 언론 및 민원 : 해당없음

4)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지적사항	후속 조치사항
▪ (2023년) 법조윤리협의회 심사자료 검토수당 지급기준의 적정성 검토 필요	▪ 위원장 및 사무총장에 대한 심사자료 검토수당 등 지급 관련 규정 개정('24.11.)
▪ (2024년) 법조윤리협의회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부합하지 않는 업무추진비 집행개선 필요	▪ 법조윤리협의회에 예산 지침에 부합하는 집행을 하도록 통보, 2026년도 예산(안)에 관련 예산 항목(업무추진비, 일반수용비)을 조정하여 편성
▪ (2024년) 마을변호사에 대한 지역별 수요조사를 통한 배치의 적절성 검토 필요	▪ 마을변호사 제도의 국민 인지도 및 만족도 조사, 마을변호사 대상 상담실적 등 조사 실시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변호사 수 급증 등 최근 빠르게 변화하는 법조 환경에 대응하고 법조비리 감독체계 개선, 정보접근성 강화, 법조통계 구축 등을 위해 법적·제도적 개선 방안 마련
- 비대면 사회에 부합하는 마을변호사 제도 개선을 위해 마을변호사 온라인 상담 예약창구와 화상상담 공간의 점진적 확장, 마을변호사 제도의 발전적 정착 추구
- 법조윤리 및 선진 법조문화 정착을 통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법조풍토 조성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2) 동 사업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 : 해당없음

13) 2026년도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 결과 및 후속 조치 현황(보조사업)

평가결과	성과평가 주요내용	조치결과
사업개선	- **(재정지원 필요성)** 법조윤리 확보에 대한 국가적 책무보다는 변호사업계의 자율규제 확대가 강조되는 상황에서 중장기적으로는 정부에 의한 재정지원 필요성 검토 필요 - **(사업내용 적정성)** 인건비 중심의 사업내용이 구성되고 있는 부분은 보조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 관리를 위해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정부재정 지원이 요구되는 사업을 중심으로 사업내용을 재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대상사업의 규모가 확대되는 상황에 발맞춰 사업범위 및 수행 방식의 개선방안도 함께 검토

14) 부처 건의사항

- 법조윤리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지원 예산 복구 필요(민간이전경비 전액 삭감)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3	773	-	773	-	-	-	773	723 [723]	93.5	93.5	40	10
2024	744	-	744	40	-	-	784	778 [778]	104.6	99.2	-	6
2025	779	-	779	-	-	-	779	764 [764]	98.1	98.1	-	15
2026	767	-	767	-	-	-	767	387 [387]	50.6	50.6	-	-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본예산	추경(A)								
2023	274	274	274	274	-	274	274	-	-	100
2024	232	232	232	232	-	232	232	-	-	100
2025	232	232	232	232	-	232	232	-	-	100
2026. 7월기준	220	220	220	220	-	220	115	-	-	52.3

2) 주요 결산사항

□ 2023~2026년 결산사항

2023	- 불용 : 집행잔액 10백만원 - 이월 : 연구용역비 40백만원
2024	- 불용 : 집행잔액 6백만원
2025	- 불용 : 집행잔액 15백만원
2026	- 해당없음

□ 2026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

□ 2026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 해당없음

사 업 명
변호사시험 및 법조윤리시험 관리 (1038-305)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법무부	법무실		020	022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000	1038	305
명칭	법무활동	법률서비스산업의 선진화	변호사시험 및 법조윤리시험 관리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6예산 시 소관
	O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변호사시험 및 법조윤리시험 관리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법무실	이동근	권호연	박주현
		법조인력과	02-2110-3244	02-2110-3389	02-2110-3815
	사업시행주체	직접수행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년 결산	2026년 예산		2027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요구안	조정안(B)		(B-A)/A
변호사시험 및 법조윤리시험 관리	5,188	5,109	-	5,215	5,215	106	△2.1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25					2026(2026.7월말)							2027 예산안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5,283	5,283	5,188	-	95	5,109	5,109	4,248	5,109	4,248	-	-	5,215
· 변호사시험	4,912	4,912	4,819		93	4,738	4,738	3,975	4,738	3,975	-	-	4,838
· 법조윤리시험	371	371	369	-	2	371	371	273	371	273	-	-	377
○ 비목별 분류(합계)	5,283	5,283	5,188	-	95	5,109	5,109	4,248	5,109	4,247	-	-	5,215
· 상용임금(110-03)	33	33	30	-	3	36	36	20	36	20	-	-	40
· 일용임금(110-04)	138	138	78	-	60	83	83	37	83	37	-	-	87
· 일반수용비(210-01)	737	832	830	-	2	737	757	692	757	692	-	-	787
· 공공요금및제세(210-02)	16	16	13	-	3	16	16	11	16	11	-	-	16
· 특근매식비(210-05)	33	33	28	-	5	38	18	6	18	6	-	-	18
· 임차료(210-07)	1,687	1,267	1,267	-	-	1,518	1,295	909	1,295	909	-	-	1,304
· 유류비(210-08)	3	3	2	-	1	3	3	2	3	2	-	-	3
· 복리후생비(210-12)	1	1	1	-	-	1	1	1	1	1	-	-	1
· 일반용역비(210-14)	553	581	581	-	-	553	598	519	598	519	-	-	611
· 관리용역비(210-15)	77	77	76	-	1	77	77	75	77	75	-	-	77
· 기타운영비(210-16)	1,728	1,982	1,979	-	3	1,778	1,956	1,857	1,956	1,857	-	-	1,865
· 국내여비(220-01)	78	121	121	-	-	78	81	73	81	73	-	-	114
· 국외업무여비(220-02)	19	19	19	-	-	19	16	16	16	16	-	-	19
· 사업추진비(240-01)	43	43	43	-	-	43	43	26	43	26	-	-	43
· 일반연구비(260-01)	50	50	50	-	-	50	50	0	50	0	-	-	170
· 고용부담금(320-09)	24	24	7	-	17	16	16	4	16	4	-	-	17
· 자산취득비(430-01)	63	63	63	-	-	63	63	0	63	0	-	-	43

	2025					2026(2026.7월말)							2027 예산안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5,283	5,283	5,188	-	95	5,109	5,109	4,248	5,109	4,248	-	-	5,215
・변호사시험	4,912	4,912	4,819	-	93	4,738	4,738	3,975	4,738	3,975	-	-	4,838
- 상용임금 (110-03)	33	33	30	-	3	36	36	20	36	20	-	-	40
- 일용임금(110-04)	134	134	74	-	60	79	79	33	79	33	-	-	83
- 일반수용비 (210-01)	674	769	767	-	2	674	694	629	694	629	-	-	724
- 공공요금및제세 (210-02)	9	9	8	-	1	9	9	4	9	4	-	-	9
- 특근매식비(210-05)	22	22	17	-	5	27	7	0	7	0	-	-	7
- 임차료(210-07)	1,547	1,127	1,127	-	-	1,378	1,155	769	1,155	769	-	-	1,162
- 유류비(210-08)	3	3	2	-	1	3	3	2	3	2	-	-	3
- 복리후생비(210-12)	1	1	1	-	-	1	1	1	1	1	-	-	1
- 일반용역비(210-14)	523	551	551	-	-	523	568	489	568	489	-	-	581
- 관리용역비(210-15)	77	77	76	-	1	77	77	75	77	75	-	-	77
- 기타운영비(210-16)	1,621	1,875	1,872	-	3	1,671	1,849	1,843	1,849	1,843	-	-	1,754
- 국내여비(220-01)	73	116	116	-	-	73	76	68	76	68	-	-	109
- 국외여비(220-02)	19	19	19	-	-	19	16	16	16	16	-	-	19
- 사업추진비(240-01)	39	39	39	-	-	39	39	22	39	22	-	-	39
- 일반연구비(260-01)	50	50	50	-	-	50	50	0	50	0	-	-	170
- 고용부담금(320-09)	24	24	6	-	17	16	16	4	16	4	-	-	17
- 자산취득비(430-01)	63	63	63	-	-	63	63	0	63	0	-	-	43
・법조윤리시험	371	371	369	-	2	371	371	273	371	273	-	-	377
- 일용임금(110-04)	4	4	4	-	-	4	4	4	4	4	-	-	4
- 일반수용비(210-01)	63	63	63	-	-	63	63	63	63	63	-	-	63
- 공공요금및제세(210-02)	7	7	5	-	2	7	7	7	7	7	-	-	7
- 특근매식비(210-05)	11	11	11	-	-	11	11	6	11	6	-	-	11
- 임차료(210-07)	140	140	140	-	-	140	140	140	140	140	-	-	142
- 일반용역비(210-14)	30	30	30	-	-	30	30	30	30	30	-	-	30
- 기타운영비(210-16)	107	107	107	-	-	107	107	14	107	14	-	-	111
- 국내여비(220-01)	5	5	5	-	-	5	5	5	5	5	-	-	5
- 사업추진비(240-01)	4	4	4	-	-	4	4	4	4	4	-	-	4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변호사시험)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 취득(예정)자를 대상으로 변호사에게 필요한 법률지식 및 사고능력을 검정하기 위한 시험을 주관
- (법조윤리시험)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 취득 예정자를 대상으로 변호사에게 필요한 직업윤리를 검정하기 위한 시험을 주관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변호사시험법 제3조(시험실시기관) 및 제8조(시험의 방법)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변호사시험 : 2007. 7.「법학전문대학원 설치 ·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로스쿨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2012. 1. 최초 변호사시험 실시(매년 1회 실시)
- 법조윤리시험 : 2009. 8. 변호사시험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변호사시험의 한 부분으로서 법조윤리시험을 2010. 10. 9. 최초 실시(매년 1회 실시)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3	2024	2025	2026	2027(안)
사업비	4,499	5,197	5,283	5,109	5,215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법무부
- 사업 수혜자 :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7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

① 변호사시험

: (2026 본예산) 4,738백만원 → (2027 요구) 4,838백만원, 100백만원 증액

- (요구) 변호사시험의 안정적 운영 및 장애인 응시자 권익 증진, CBT 체계 고도화 추진을 위한 예산 요구
- (산출) 변호사시험 시행 4,418백만원
  장애인 응시자 권익 증진 59백만원
  CBT 체계 고도화 348백만원
  공무직 및 일용근로자 처우개선 13백만원

② 법조윤리시험

: (2026 본예산) 371백만원 → (2027 요구) 377백만원, 6백만원 증액

- (요구) 법조윤리시험 안정적 운영 및 장애인 응시자 권익 증진을 위한 예산 요구
- (산출) 법조윤리시험 시행 371백만원
  장애인 응시자 권익 증진 6백만원

ㅇ 2026년도 예산 및 2027년도 예산안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6년 본예산		2027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5,109,000	○ **상용임금(110-03) : 35,928천원** 가. 공무직근로자 (35,928천원) ○ **일용임금(110-04) : 83,285천원** 가. 시험 보조인력 (83,285천원) ○ **일반수용비(210-01) : 737,398천원** 가. 변호사시험 인쇄비, 법전 제작비 등 (737,398천원) ○ **공공요금및제세(210-02) : 15,679천원** 가. 시험장 임시전화 설치비 등 (15,679천원) ○ **특근매식비(210-05) : 37,900천원** 가. 시간외 근무자 식대(37,900천원) ○ **임차료(210-07) : 1,517,770천원** 가. 시험장, 합숙출제시설, CBT 공용 노트북 등 임차(1,517,770천원) ○ **유류비(210-08) : 3,165천원** 가. 시험 업무 지원 차량 유류비 (3,165천원) ○ **복리후생비(210-12) : 500천원** 가. 공무직 맞춤형복지 (500천원) ○ **일반용역비(210-14) : 553,350천원** 가. 합숙출제시설 보안, 인터넷 원서 접수, CBT 기술지원(553,350천원) ○ **관리용역비(210-15) : 77,040천원** 가. 시험관리 시스템 유지보수 (17,040천원) 나. CBT 프로그램 유지보수 (60,000천원)	5,215,000	○ **상용임금(110-03) : 39,955천원** 가. 공무직근로자 (39,955천원) ○ **일용임금(110-04) : 86,385천원** 가. 시험 보조인력 (86,385천원) ○ **일반수용비(210-01) : 787,000천원** 가. 변호사시험 인쇄비, 법전 제작비 등 (787,000천원) ○ **공공요금및제세(210-02) : 15,679천원** 가. 시험장 임시전화 설치비 등 (15,679천원) ○ **특근매식비(210-05) : 18,000천원** 가. 시간외 근무자 식대(18,000천원) ○ **임차료(210-07) : 1,304,000천원** 가. 시험장, 합숙출제시설, CBT 공용 노트북 등 임차(1,304,000천원) ○ **유류비(210-08) : 3,165천원** 가. 시험 업무 지원 차량 유류비 (3,165천원) ○ **복리후생비(210-12) : 600천원** 가. 공무직 맞춤형복지 (600천원) ○ **일반용역비(210-14) : 610,800천원** 가. 합숙출제시설 보안, 인터넷 원서 접수, CBT 기술지원(610,800천원) ○ **관리용역비(210-15) : 77,040천원** 가. 시험관리 시스템 유지보수 (17,040천원) 나. CBT 프로그램 유지보수 (60,000천원)

2026년 본예산		2027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 **기타운영비(210-16) : 1,777,622천원** 가. 출제, 감독, 채점 등 수당(1,777,622천원) ○ **국내업무여비(220-01) : 78,451천원** 가. 시험위원 등 참석, 시험장 점검 등(78,451천원) ○ **국외업무여비(220-02) : 19,459천원** 가. 선진국 법조인 선발제도 및 시험문제유형 실태조사(19,459원) ○ **사업추진비(240-01) : 42,915천원** 가. 시험 관련 업무 추진 등(42,915천원) ○ **일반연구비(260-01) : 50,000천원** 가. 변호사시험 출제 연구 (50,000천원) ○ **고용부담금(320-09) : 15,488천원** 가. 공무직 및 일용직 고용부담금 (15,488천원) ○ **자산취득비(430-01) : 63,050천원** 가. 출제 관련 전문 도서비 등 (63,050천원)		○ **기타운영비(210-16) : 1,865,652천원** 가. 출제, 감독, 채점 등 수당(1,865,652천원) ○ **국내업무여비(220-01) : 114,451천원** 가. 시험위원 등 참석, 시험장 점검 등(114,451천원) ○ **국외업무여비(220-02) : 19,459천원** 가. 선진국 법조인 선발제도 및 시험문제유형 실태조사(19,459원) ○ **사업추진비(240-01) : 42,915천원** 가. 시험 관련 업무 추진 등(42,915천원) ○ **일반연구비(260-01) : 170,000천원** 가. 변호사시험 출제 연구 (170,000천원) ○ **고용부담금(320-09) : 16,809천원** 가. 공무직 및 일용직 고용부담금 (16,809천원) ○ **자산취득비(430-01) : 42,730천원** 가. 출제 관련 전문 도서비 등 (42,730천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3~2027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3	- 2023. 1. 제12회 변호사시험 실시(3,644명 출원) - 2023. 8. 제14회 법조윤리시험 실시(2,162명 출원)
2024	- 2024. 1. 제13회 변호사시험 실시(3,736명 출원) - 2024. 8. 제15회 법조윤리시험 실시(2,167명 출원)
2025	- 2025. 1. 제14회 변호사시험 실시(3,763명 출원) - 2025. 8. 제16회 법조윤리시험 실시(2,389명 출원)
2026	- 2026. 1. 제15회 변호사시험 실시(3,757명 출원) - 2026. 8. 제16회 법조윤리시험 실시(2,163명 출원)

③ 향후(2027년도 이후) 기대효과 : 변호사시험·법조윤리시험 안정적 운영을 통해 공정하고 우수한 법조인 선발 체계 구축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변호사시험

전년 7월	시험장 실사 및 확정	
↓		
전년 9월	시험 실시계획 공고	변호사시험 홈페이지·관보
↓		
전년 10월	응시원서 접수 및 교부	인터넷 접수
↓		
전년 12월-1월	시험 준비(문제 출제·인쇄, 시험장·수험생 배치 등)	출제합숙, 인쇄합숙
↓		
1월	시험 시행	
↓		
2월-3월	답안지 채점	답안지 정리·회수·채점, 검증 및 점수조정
↓		
4월	합격자 발표	변호사시험 홈페이지

❍ 법조윤리시험

2월	시험 시행공고	변호사시험 홈페이지·관보
↓		
4월~5월	시험장 실사 및 확정	
↓		
6월~7월	응시원서 접수	인터넷 접수
↓		
8월	법조윤리시험 시행	
↓		
9월	법조윤리시험 합격자 발표	변호사시험 홈페이지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25~2029	5,190	5,110	4,800	4,690	4,550	
2026~2030		5,110	5,540	5,710	5,890	6,060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합숙출제위원 수당 현금지급 등 지양(예결위 결산소위, 22결산)
- 예산 편성의 정확도를 제고함으로써 반복적 전용 집행 지양(예결위 결산소위, 23결산)
- 변호사시험관리시스템 구축 고도화 중·장기적 계획 수립 필요(예결위 결산소위, 24결산)

2) 감사원 감사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 해당없음

3) 자체평가·감사 : 해당없음

4)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 해당없음

5)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수당 지급방식을 전자자금이체(계좌이체) 방식으로 개선 (22결산)
- 예산편성 시, 지출소요를 면밀히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23결산)
- 변호사시험 CBT 도입에 맞춰 시험관리시스템 고도화 방안 등 예산 요구 예정(24결산)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변호사시험·법조윤리시험 안정적 운영을 통해 공정하고 우수한 법조인 선발 체계 구축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1) 재정사업자율평가(2025년까지) : 해당없음
통합재정사업성과평가(2026년 이후) : 정상추진

12) 동 사업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 : 해당없음

13) 2026년도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 결과 및 후속 조치 현황

평가결과	성과평가 주요내용	조치결과
정상추진	- 법조인 양성이라는 정책 목표를 차질 없이 수행 중으로, 정상 추진될 필요	- 해당없음

14) 부처 건의사항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3	4,499	-	4,499	-	-	-	4,499	4,439	98.7	98.7	-	60
2024	5,197	-	5,197	-	-	-	5,197	5,112	98.4	98.4	-	85
2025	5,283	-	5,283	-	-	-	5,283	5,188	98.2	98.2	-	95
2026	5,109	-	5,109	-	-	-	5,109	4,248	83.1	83.1	-	-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 해당없음

2) 주요 결산사항

□ 2023~2026년 결산사항

2023	- (전용) 고용부담금 등 부족으로 일용임금 등에서 자체전용 53백만원 - (불용) 집행잔액 60백만원
2024	- (전용) 고용부담금 등 부족으로 일용임금 등에서 자체전용 82백만원 - (불용) 집행잔액 85백만원
2025	- (전용) 국내여비 부족으로 임차료에서 자체전용 43백만원 - (불용) 집행잔액 95백만원
2026	- 해당없음

□ 2026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

□ 2026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 해당없음

사 업 명
통일대비법률통합실질화 (1041-3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법무부	법무실	일반회계	020	022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0000	1041	300
명칭	법무활동	통일대비법률통합실질화	통일대비법률통합실질화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6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통일대비 법률통합 실질화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법무실	권영필	홍진희	
		통일법무과	02-2110-3223	02-2110-3228	
	사업시행주체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년 결산	2026년 예산		2027년		증감 (B-A)	(B-A)/A
		본예산(A)	추경	요구안	조정안(B)		
통일대비법률통합 실질화	817	774	774	774	595	△179	△23.1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25					2026(2026.7월말)							2027 예산안
	예산액(추경)	예산현액	집행액[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현액	집행액[실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예상액	불용예상액	
									예산현액	집행액[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771	837	817		20	774	774	272	774	272			595
· 통일대비 법률통합 인프라 구축	394	394	391		2	393	393	158	393	158			388
· 통일법제 연구 및 DB 유지·관리	377	443	426		18	381	381	115	381	115			207
○ 비목별 분류(합계)	771	837	817		20	774	774	272	774	272			595
· 상용임금(110-03)	32	32	31		1	35	35	18	35	18			39
· 일반수용비(210-01)	241	241	241			241	241	93	241	93			236
· 공공요금및제세(210-02)	4	4	4			4	4	3	4	3			4
· 임차료(210-07)	27	27	26		1	27	27	2	27	2			27
· 복리후생비(210-12)													1
· 관리용역비(210-15)	160	160	147		14	160	160	74	160	74			160
· 국내여비(220-01)	17	17	16			17	17	6	17	6			17
· 국외업무여비(220-02)	61	61	60		1	61	61	24	61	24			61
· 사업추진비(240-01)	20	20	20			20	20	9	20	9			21
· 특정업무경비(250-03)	9	9	9			8	8	5	8	5			8
· 정책연구비(260-02)	179	245	242		3	179	179	22	179	22			
· 고용부담금(320-09)	6	6	6			7	7	1	7	1			8
· 자산취득비(430-01)	15	15	15			15	15	13	15	13			15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771	837	817		20	774	774	272	774	272			595
· 통일대비 법률통합 인프라 구축	394	394	391		2	393	393	158	393	158			388
-일반수용비(210-01)	241	241	241			241	241	93	241	93			236
-공공요금및제세(210-02)	4	4	4			4	4	3	4	3			4
-임차료(210-07)	27	27	26		1	27	27	2	27	2			27
-국내여비(220-01)	17	17	16			17	17	6	17	6			17
-국외업무여비(220-02)	61	61	60		1	61	61	24	61	24			61
-사업추진비(240-01)	20	20	20			20	20	9	20	9			21
-특정업무경비(250-03)	9	9	9			8	8	5	8	5			8
-자산취득비(430-01)	15	15	15			15	15	13	15	13			15

	2025					2026(2026.7월말)							2027 예산안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통일법제 연구 및 DB 유지·관리	377	443	426		18	381	381	115	381	115			207
-상용임금(110-03)	32	32	31		1	35	35	18	35	18			39
-복리후생비(210-12)													1
-관리용역비(210-15)	160	160	147		14	160	160	74	160	74			160
-정책연구비(260-02)	179	245	242		3	179	179	22	179	22			
-고용부담금(320-09)	6	6	6			7	7	1	7	1			8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통일대비 법률통합 인프라 구축)
  · 법무자문위원회 산하 남북법령연구 특별분과위원회 구성, 통일법무 분야의 각종 문제에 대하여 수시로 자문하며, 소위별 매월 회의를 개최하여 관련 주제 연구
  · 통일·체제전환국·개혁개방국의 경험과 관련 자료 등을 연구하여 통일과정에서의 시행착오와 사회적비용 최소화 필요, 체제전환국 및 북한법제 관련 자료수집, 등재학술지 '통일과 법률' 발간 등
  · 북한이탈주민에게 특화된 법률교육 및 지원을 위한 법률교육 교재(동영상 법률교재 등), 북한이탈주민 법률상담 사례집 제작 배포, 통일법 전문가 양성을 위한 '통일과 법률 아카데미' 개최, 통일부, 외교부, 국방부, 법제처, 헌법재판소, 대법원, 국정원, 대한변협 등 통일관련 관계부처와 통일법제 연구 공동세미나 및 협의회 등 운영
  · 정부위원 베니스위원회 참석, 체제전환국 실태조사, 아시아 개혁 개방국 실태조사, PSI 참석 및 입법조사 관련 국내·외 여비
- (통일법제 연구 및 DB 유지·관리내역사업명)
  · 북한법령, 남북법률통합 등 관련자료를 기반으로 법무부, 통일부, 법제처의 통일법제 DB 시스템을 통합·공동 관리('14.~), 행정의 효율성 및 대국민서비스 제고를 위한 시스템 유지보수 추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정부조직법」제35조(법무부) ① 법무부장관은 검사사무 · 행형 · 인권옹호 · 출입국관리 그 밖에 법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제9조(법무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2. 남북통일 관련 법무계획 수립 · 추진, 남북문제 및 통일 관련 법무관계 법령안의 기초 · 심사 및 남북 교류협력 관련 법무관계 법령의 해석

22의2. 북한의 반법치국가범죄 실태 등에 관한 조사 · 자료수집 · 연구 및 간행

23. 남북교류 · 협력의 진전에 따른 법적 분쟁 조절을 위한 대비계획의 종합 · 조정

24. 북한 법제 및 통일 관련 외국 법제에 관한 조사 · 자료수집 · 연구 및 간행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통일대비 법률통합 실질화' 사업은 ⅰ) 법무부 및 각 부처의 법률통합 작업을 실질적으로 지원, ⅱ) 남북법률통합(안)을 곧바로 적용 가능한 수준으로 완비, ⅲ) 통일 이후 통합을 위한 인적·물적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주된 내용임
- 2002년 '베니스위원회 참여사업' 목적으로 최초 예산 배정

※「유럽평의회」 산하 베니스위원회는 동유럽 체재전환국에 대한 법제 자문과 지원을 담당하는 국제기구

- 2006. 6. 1. 베니스위원회 정회원국 가입
- 2006년부터 '통일대비 체제전환국 법제연구'로 사업명칭 변경 및 사업 목적 확대
- 2010. 2. 정부의 대북정책 공유 등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축적된 통일법제 관련 연구성과를 실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학술지 '통일과 법률' 발간(연 4회)
- 2011년 통일에 대비한 남북법률통합(안) 마련 등을 위한 '통일대비 남북법률통합 실질화 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여 예산 배정
- 2012. 5. '통일대비 체제전환국 법제연구 사업'과 '통일대비 남북법률통합 실질화 사업'을 과목구조 개편하여 하나의 단위 사업인 '통일대비 법률통합 실질화' 사업으로 통합
- 최근 남북관계는 예측이 불가능할 정도로 시시각각 변화하고 있으므로 통일에 대비한 법제 및 남북법률통합 방안 수립의 체계화·고도화 필요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02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3	2024	2025	2026	2027(안)
사업비	692	766	771	774	595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법무부 법무실
- 사업 수혜자 : 정부기관, 학계, 연구기관,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7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

① 통일대비 법률통합 인프라 구축

: (2026 본예산) 393백만원 → (2027 요구) 388백만원, 5백만원 감액

- (요구) 남북법령연구 특별분과위원회 운영, 등재학술지 '통일과 법률' 발간, '통일과 법률 아카데미' 개최 등을 위한 전년 수준의 예산 요구
- (산출) 위원회 운영 44백만원, 통일법제 자료 수집 및 발간 수용비 등 90백만원, 탈북민 법치주의 적응 및 관계부처 협의회 운영 등 154백만원 등

ㅇ 2026년도 예산 및 2027년도 예산안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6년 본예산		2027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393,000	**○ 위원회 운영 수용비 등(210-01) 등 : 44,000천원** - 8회×8명×3개소위×229천원(임차료 포함)=44,000천원 **○ 통일법제 자료 수집 및 발간 수용비(210-01) 등 : 90,000천원** - 체제전환국 및 북한법제 자료수집 등 (58,000천원) - 학술지 '통일과 법률' 발간 (32,000천원) **○ 공공요금세제(210-02) : 4,000천원** **○ 자산취득비(430-01) : 15,000천원** **○ 관계부처 협의회 운영 및 탈북민 법치주의 적응 등 : 159,000천원** - 관계부처협의회 운영 등 (31,000천원) - 통일법제 전문가 양성 (13,000천원) - 통일법제 네트워크 구축·운영 (42,000천원) - 북한이탈주민 법률지원(홍보, 교육 운영 등) : 73,000천원 **○ 국외여비(220-02) 및 업무추진비(240-01) : 64,000천원** - 베니스위원회 등 (44,000천원) - 체제전환국 실태조사 등 (12,000천원) - PSI 참석 입법조사 등 (8,000천원) **○ 국내여비(220-01) : 17,000천원** - 위원회 운영 등 (2,000천원) - 북한이탈주민 법률교육 및 상담 (15,000천원)	388,000	**○ 위원회 운영 수용비 등(210-01) 등 : 44,000천원** - 8회×8명×3개소위×229천원(임차료 포함)=44,000천원 **○ 통일법제 자료 수집 및 발간 수용비(210-01) 등 : 90,000천원** - 체제전환국 및 북한법제 자료수집 등 (58,000천원) - 학술지 '통일과 법률' 발간 (32,000천원) **○ 공공요금세제(210-02) : 4,000천원** **○ 자산취득비(430-01) : 15,000천원** **○ 관계부처 협의회 운영 및 탈북민 법치주의 적응 등 : 154,000천원** - 관계부처협의회 운영 등 (26,000천원) - 통일법제 전문가 양성 (13,000천원) - 통일법제 네트워크 구축·운영 (42,000천원) - 북한이탈주민 법률지원(홍보, 교육 운영 등) : 73,000천원 **○ 국외여비(220-02) 및 업무추진비(240-01) : 64,000천원** - 베니스위원회 등 (44,000천원) - 체제전환국 실태조사 등 (12,000천원) - PSI 참석 입법조사 등 (8,000천원) **○ 국내여비(220-01) : 17,000천원** - 위원회 운영 등 (2,000천원) - 북한이탈주민 법률교육 및 상담 (15,000천원)

② 통일법제 연구 및 DB 유지·관리

: (2026 본예산) 381백만원 → (2027 요구) 207백만원, 174백만원 감액

- (요구) 북한법령, 남북법률통합 등 관련 통일법제 DB 시스템 유지·보수 등 예산 요구
- (산출) 관리용역비 160,000천원, 공무직 인건비 47,000천원

ㅇ 2026년도 예산 및 2027년도 예산안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6년 본예산		2027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381,000	**○ 관리용역비(201-15) : 160,000천원** **○ 상용임금(110-03) 및 고용부담금(320-09) : 38,000천원** - 사무보조 인건비(임금35,000천원+고용부담금 등 7,000천원) **○ 정책연구비(260-02) : 179,000천원**	207,000	**○ 관리용역비(201-15) : 160,000천원** **○ 상용임금(110-03) 및 고용부담금(320-09) : 38,000천원** - 사무보조 인건비(임금39,000천원+고용부담금 등 8,000천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3~2027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3	- 위기 북한이탈주민 발굴 및 법률지원 강화 추진 - 통일법 전문학술지 '통일과 법률' 발간(분기별) - '통일과 법률 아카데미' 제13기 과정 운영(10~11월) - 통일법제 논문 공모전 실시, 우수논문 시상 - '남북법령연구특별분과위원회' 운영 및 연례회의 개최 - 법무부·통일부·법제처 등 공동학술대회 개최
2024	- 통일법 전문학술지 '통일과 법률' 발간(분기별) - '통일과 법률 아카데미' 제14기 과정 운영(10~11월) - 통일법제 논문 공모전 실시, 우수논문 시상(11월) - '남북법령연구특별분과위원회' 운영(+소위원회, 매월) 및 연례회의 개최(12월) - 북한이탈주민 법률교육(보호센터·하나원·하나센터) 무료 법률상담 실시 - 북한이탈주민 법률상담 사례집 발간(12월) - 북한이탈주민 지원변호인 워크숍 운영(6월·11월, 2회) - 법무부·통일부·법제처 등 공동학술대회 개최(12월) - 베니스위원회 정기총회 참석 - 법을 통한 민주주의 유럽위원회 연간 활동 보고서 발간(12월)
2025	- 통일법 전문학술지 '통일과 법률' 발간(분기별) - '통일과 법률 아카데미' 제15기 과정 운영(11~12월) - 통일법제 논문 공모전 실시, 우수논문 시상(11월) - '남북법령연구특별분과위원회' 운영(+소위원회, 매월) 및 연례회의 개최(12월) - 북한이탈주민 법률교육(보호센터·하나원·하나센터) 무료 법률상담 실시 - 법무부·통일부·법제처 등 공동학술대회 개최(12월) - 베니스위원회 정기총회 참석 - 법을 통한 민주주의 유럽위원회 연간 활동 보고서 발간(12월)
2026	- 통일법 전문학술지 '통일과 법률' 발간(분기별) - '통일과 법률 아카데미' 제16기 과정 운영(하반기) 예정 - 통일법제 논문 공모전 실시, 우수논문 시상(하반기) 예정 - '남북법령연구특별분과위원회' 운영(+소위원회, 매월) 및 연례회의 개최(하반기) 예정 - 북한이탈주민 법률교육(보호센터·하나원·하나센터) 무료 법률상담 실시 - 북한이탈주민 법률상담 사례집 발간(하반기) 예정 - 법무부·통일부·법제처 등 공동학술대회 개최(하반기) 예정 - 베니스위원회 정기총회 참석 - 법을 통한 민주주의 유럽위원회 연간 활동 보고서 발간(하반기) 예정

③ 향후(2027년도 이후) 기대효과

- 통일법제 전문교육 프로그램 지속 실시를 통해 통일법제 전문가를 체계적 양성하여, 통일과정 및 통일 이후 통일법제 업무를 담당할 법률전문가의 수요증가에 대비
- 법무부·통일부·법제처 협업을 통해 구축한 통일법제 통합 DB 시스템의 보유자료를 확충함으로써 통일법제 연구심화 및 국민편의를 도모
- 통일법제DB 고도화를 통해 민감한 법률상담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본인인증, 보안기술 등을 도입하여 민감정보 안전관리체계 마련
- 통일대비 계획을 곧바로 적용 가능한 수준으로 완비하고, 통일단계에서 발생 가능한 다양한 법적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강구함으로써 통일단계의 법적 공백을 최소화하고, 정치·사회적 혼란상태를 예방함과 아울러 통일비용을 절감
- 한반도 통일시대를 대비하여 법무 인프라 확충 등 평화통일 기반 구축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국제회의 참석, 자문위원회 운영, 학술회의 개최, 관계부처 협의회 개최, 관련자료 발간 등 사업 특성상 도식화 곤란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25~2029	751	774	732	717	694	
2026~2030		774	834	859	885	911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정책연구용역 수의계약 및 예산 이월 최소화 필요(예정처, '24결산)

2) 감사원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 해당없음

3) 자체평가 : 해당없음

4)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 해당없음

5)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해당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남북 법률통합 관련 자문 기능 강화
- 외교부·통일부·국정원 등 각 부처의 통일 관련 법령에 대한 자문 기능 강화

○ 통일대비 계획 실질적 완비 추진
- 민·형사법 통합 등 법무부 소관 통합법령(안)에 대한 실질적 연구를 진행하고 전문가 검증 등을 통해 완성도를 제고

○ 통일법제 통합DB 시스템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통일법제 자료 공유
- 통일대비 생산·수집 자료 및 연구 성과의 공동관리, 상호 간 연구인력 풀 공유, 연구용역 및 학술회의 공동추진 등을 통해 통일대비 법무인프라 구축에 기여
- '통일법제 DB' 고도화를 통해 민감한 법률상담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본인인증, 보안기술 등을 도입하여 민감정보 안전관리체계 구축

○ 베니스위원회 정기총회 연 2회 참석·활동 강화
- 구 공산권 국가들의 체제전환 관련 법적 문제 파악·분석 및 국제적인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향후 북한의 체제 개혁이나 전환에 영향력 행사 기반 확보
- 북한의 개혁·개방 등 체제전환 과정에서의 법제도적 지원체계 구축

○ 학술지「통일과 법률」(연 4회) 발간
- 학술지 발간을 통해 축적된 연구성과를 공유하고, 남북법률통합의 실질적 준비를 추진

○ 법의 따뜻함을 나누는 북한이탈주민 법률 지원
-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국내 정착을 위해 북한이탈주민「전담검사제도」와「지원변호인제도」운영
- 법률전문가가 북한이탈주민 보호센터(국정원)·정착지원사무소(통일부)·하나센터(남북하나재단)를 방문하여「찾아가는 법률교육」실시
- 탈북민 법률상담을 위해 '전담 법무관'을 배치하여 상시 인터넷·전화 상담 제공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2) 동 사업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 : 해당없음

※ 재정사업자율평가 대상 사업의 경우 2025년까지의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기재, R&D 사업의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자체평가 결과를 기재

13) 2026년도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 결과 및 후속 조치 현황 : 해당없음

14) 부처 건의사항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3	692		692		3		695	646	93.4	92.9	44	5
2024	766		766	44	△6		804	719	93.9	89.4	66	19
2025	771		771	66			837	817	106.0	97.6		20
2026	774		774				774	272	35.1	35.1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 해당없음

2) 주요 결산사항

□ 2023~2026년 결산사항

2023	- 전용 : 고용부담금 부족으로 '국제거래 및 국제통상 법률지원' 사업으로부터 3백만원 전용 - 이월 및 불용 : 연구용역비 44백만원 이월 및 관리용역비 낙찰차액, 집행잔액 등 5백만원 불용
2024	- 전용 : 통일대비법률통합실질화 사업에서 '국가배상금 지급' 사업으로 6백만원 전용 - 이월 및 불용 : 연구용역비 66백만원 이월 및 관리용역비 낙찰차액, 집행잔액 등 19백만원 불용
2025	- 불용 : 관리용역비 낙찰차액, 집행잔액 등 20백만원 불용
2026	- 해당없음

□ 2026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

□ 2026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 해당없음

사 업 명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운영 (1042-3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법무부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일반회계	020	022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000	1042	300
명칭	법무활동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운영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운영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6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운영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법무실	권영필 소장	박상도 서기관	양동규 사무관
		북한인권기록보존소	02-2110-3223	02-2110-4804	02-2110-4802
	사업시행주체	직접수행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년 결산	2026년 예산		2027년		증감	
		본예산(A)	추경	요구안	조정안(B)	(B-A)	(B-A)/A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운영	252	291	291	288	254	△37	△12.7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25					2026(2026.7월말)							2027 예산안
	예산액(추경)	예산현액	집행액[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현액	집행액[실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예상액	불용예상액	
									예산현액	집행액[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286	286	252	-	34	291	291	155	291	155	-	-	254
· 북한인권기록보존관리시스템(DB)운영	174	174	155	-	19	174	174	96	174	96	-	-	155
· 북한인권기록 분석·보존·관리	112	112	97	-	15	117	117	59	117	59	-	-	99
○ 비목별 분류(합계)	286	286	252	-	34	291	291	155	291	155	-	-	254
· 상용임금(110-03)	33	33	21	-	12	37	37	18	37	18	-	-	41
· 일반수용비 (210-01)	14	14	14	-	-	14	14	6	14	6	-	-	12
· 임차료(210-07)	13	13	13	-	-	13	13	6	13	6	-	-	3
· 유류비(210-08)	1	1	0	-	1	1	1	0	1	0	-	-	-
· 복리후생비 (210-12)	1	1	1	-	-	1	1	0	1	0	-	-	1
· 관리용역비 (210-15)	158	158	139	-	19	158	158	81	158	81	-	-	139
· 국내여비(220-01)	2	2	2	-	-	2	2	2	2	2	-	-	2
· 국외여비(220-02)	20	20	20	-	-	20	20	20	20	20	-	-	20
· 사업추진비 (240-01)	13	13	13	-	-	13	13	6	13	6	-	-	13
· 정책연구비 (260-02)	10	10	10	-	-	10	10	0	10	0	-	-	-
· 고용부담금 (320-09)	6	6	4	-	2	7	7	2	7	2	-	-	8
· 자산취득비 (430-01)	15	15	15	-	-	15	15	15	15	15	-	-	15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286	286	252	-	34	291	291	155	291	155	-	-	254
· 북한인권기록보존관리시스템(DB)운영	174	174	155	-	19	174	174	96	174	96	-	-	155
-관리용역비(210-15)	158	158	139	-	19	158	158	81	158	81	-	-	139
-사업추진비(240-01)	2	2	2	-	-	2	2	0	2	0	-	-	2
-자산취득비(430-01)	15	15	15	-	-	15	15	15	15	15	-	-	15
· 북한인권기록 분석·보존·관리	112	112	97	-	15	117	117	59	117	59	-	-	99
-상용임금(110-03)	33	33	21	-	12	37	37	18	37	18	-	-	41
-일반수용비(210-01)	14	14	14	-	-	14	14	6	14	6	-	-	12
-임차료(210-07)	13	13	13	-	-	13	13	6	13	6	-	-	3
-유류비(210-08)	1	1	0	-	1	1	1	0	1	0	-	-	-

	2025					2026(2026.7월말)							2027 예산안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복리후생비(210-12)	1	1	1	-	-	1	1	0	1	0	-	-	1
-국내여비(220-01)	2	2	2	-	-	2	2	2	2	2	-	-	2
-국외여비(220-02)	20	20	20	-	-	20	20	20	20	20	-	-	20
-사업추진비(240-01)	11	11	11	-	-	11	11	5	11	5	-	-	11
-정책연구비(260-02)	10	10	10	-	-	10	10	0	10	0	-	-	-
-고용부담금(320-09)	6	6	4	-	2	7	7	2	7	2	-	-	8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운영) : 북한인권 자료 및 관련 연구자료 등의 체계적 보존·관리를 통한 북한주민의 인권 개선·증진,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와 협업체계 구축, UN 인권서울사무소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 북한주민 인권 개선·증진을 위한 연구 활동
- (북한인권기록보존관리시스템DB 운영) : 북한이탈주민이 진술한 인권침해 피해사례를 바탕으로 범죄혐의를 분석한 후 데이터베이스(DB)에 사건정보를 저장하여 보존·관리
- (북한인권기록 분석・보존・관리) : 북한에 대한 향후 형사처벌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경고적 효과와 통일 후 체제 불법 청산(책임규명, 북한공무원 재임용, 피해자 복권) 등의 근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북한인권 자료 등의 체계적 보존·관리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북한인권법 제13조 제5항,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제15조 제1항~제4항,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운영규칙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 2017년
- 추진배경 :
  · 북한인권법 제정('16. 3.)에 따라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신설('16. 10.)
  ·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설립취지 : 북한인권 자료 및 관련 연구자료 등의 체계적 보존·관리를 통한 북한주민 인권 개선·증진
- 중점과제
  · 북한인권자료의 체계적 분석·보존·관리
  · 북한인권자료의 DB화,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북한인권기록 연구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17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3	2024	2025	2026	2027(안)
사업비	239	278	286	291	254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법무부 북한인권기록보존소
- 사업 수혜자 : 북한주민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7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

① 북한인권기록보존관리시스템(DB) 운영

: ('26) 174백만원 → ('27요구) 155백만원 (△19백만원)

- (요구) '24년 12. 낙찰차액 발생으로 불용된 관리용역비 19백만원을 반영하여 관리용역비 감액 요구
  * 북한인권 디지털아카이브 : 북한 형법, 각종 논문, UN 등 국내외 주요 보고서, 국내외 주요 동향 및 실태 분석 자료, 각종 통계 등을 저장하여 북한인권기록 분석에 활용
- (산출) 시설장비 유지 관리용역비 139백만원
  DB 백신프로그램 취득비(1년 사용권) 15백만원
  DB 유지보수, 고도화 등 업무협의 2백만원

ㅇ 2026년도 예산 및 2027년도 예산안 산출 세부내역 비교

'26년 예산		'27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74	○ **북한인권기록보존관리시스템(DB) 운영 : 174백만원** 가. DB 유지관리 173백만원 ・ 시설장비 유지 관리용역비 1년계약x158백만원 = 158백만원 ・ 백신프로그램 자산취득비 1년 사용권x15백만원 = 15백만원 나. DB 유지보수, 고도화 등 업무협의 2백만원 ・ 3회x500천원 = 2백만원	174	○ **북한인권기록보존관리시스템(DB) 운영 : 155백만원 (△19백만원)** 가. DB 유지관리 153백만원 ・ 시설장비 유지 관리용역비 1년계약x139백만원 = 139백만원 ・ 백신프로그램 자산취득비 1년 사용권x15백만원 = 15백만원 나. DB 유지보수, 고도화 등 업무협의 2백만원 ・ 3회x500천원 = 2백만원

② 북한인권기록 분석·보존·관리

: ('26) 117백만원 → ('27요구) 99백만원 (△18백만원)

- (요구) 통·번역비, 북한인권기록보존관리 등 업무협의 비용 등은 전년 수준의 예산 요구
- (산출) DB입력요원 인건비 등 50백만원 (5백만원 증액, 처우개선율 반영)
  북한인권 관련 자료 보완 등 12백만원 (△2백만원)
  북한인권기록보존관리 등 업무협의 등 11백만원

워크샵 등 장소 임차 3백만원 (△10백만원)
유류비 (△1백만원)
실무협의 등 출장 2백만원
국외여비 20백만원
연구용역 (△10백만원)

ㅇ 2026년도 예산 및 2027년도 예산안 산출 세부내역 비교

'26년 예산안		'27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17	○ **북한인권기록 분석·보존·관리 : 117백만원 (5백만원 증액)** 가. DB입력요원 인건비 등 45백만원 ・ 1명×45백만원 = 45백만원 나. 일반수용비(210-01) 14백만원 ・ 전문가 자문회의 등 운영 경비 4백만원 ・ 북한인권 관련 자료 번역.통역 등 5백만원 ・ 자료집, 실무 매뉴얼 등 발간 등 5백만원 ・ 계수조정 192천원 다. 임차료(210-07) 13백만원 ・ 기록이관, 관리용 차량 등 임차 1대×10백만원 = 10백만원 ・ 워크샵 등 장소 임차 1회×3백만원 = 3백만원 라. 유류비(210-08) 1백만원 ・ 차량 유류비 1대×1백만원 = 1백만원 마. 국내여비(220-01) 2백만원 ・ 실무협의 등 출장 2명×20회×50천원 = 2백만원 바. 사업추진비(240-01) 11백만원 ・ 북한인권기록보존관리 등 업무협의 37회×300천원 = 11백만원 사. 정책연구비 10백만원 ・ 연구용역(북한인권기록 보존 활용방안 등) 1건×10백만원 = 10백만원	99	○ **북한인권기록 분석·보존·관리 : 99백만원 (△18백만원)** 가. DB입력요원 인건비 등 50백만원 ・ 1명×50백만원 = 50백만원 나. 일반수용비(210-01) 12백만원 ・ 전문가 자문회의 등 운영 경비 4백만원 ・ 북한인권 관련 자료 번역.통역 등 4백만원 ・ 자료집, 실무 매뉴얼 등 발간 등 4백만원 다. 임차료(210-07) 3백만원 **(△10백만원)** ・ 워크샵 등 장소 임차 1회×3백만원 = 3백만원 라. 유류비(210-08) **(△1백만원)** 마. 국내여비(220-01) 2백만원 ・ 실무협의 등 출장 2명×20회×50천원 = 2백만원 바. 사업추진비(240-01) 11백만원 ・ 북한인권기록보존관리 등 업무협의 37회×300천원 = 11백만원 사. 정책연구비(260-02) **(△10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3~2027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3	- 북한인권 사랑방 좌담회 등 개최 - 연구용역 1건 발주 - 통일부 북한인권자료 111건 이관 및 분석·보존 - 법무부 인권국에서 법무실로 직제변경(8.8.) - 법무실 통일법무과 과장(부장검사)을 소장 직무대리로 발령(8.8.) - 청사 재이전(법무연수원 용인분원→정부과천청사) 및 현판식 개최
2024	- 북한인권 전문가 간담회 등 개최 - 한미 북한인권 협의 참석(4월) - 연구용역 2건 발주 - 통일부 북한인권자료 148건 이관 및 분석·보존(7월 기준) - 「북한인권침해 사건카드 작성매뉴얼」 제4판 발간 - 북한인권 관련 법률자문단 운영규정 개정(7월) -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업무규정집 발간 - 북한인권 실무자료집 개정 발간 - 북한인권 실태보고서 등 발간 - 유엔 인권이사회 보편적정례인권검토(UPR) 북한 국가보고서 심의 참석(11월)
2025	- 북한인권 전문가 간담회 등 개최 - 서울 유엔인권사무소 업무 협력 간담회 - 연구용역 1건 발주 - 통일부 북한인권자료 162건 이관 및 분석·보존(7월 기준) -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와의 실무협의 - 북한인권 실태보고서 등 발간
2026	- 북한인권 전문가 간담회 등 개최 - 서울 유엔인권사무소와의 실무 워크숍 - 연구용역 1건 발주 - 통일부 북한인권자료 95건 이관('26. 2분기 기준) 및 분석·보존 -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와의 업무 협력 간담회 - 독일 코블렌츠 연방기록원 등 방문을 통한 통일 전후 인권침해 기록 보존 및 활용 방안 조사(6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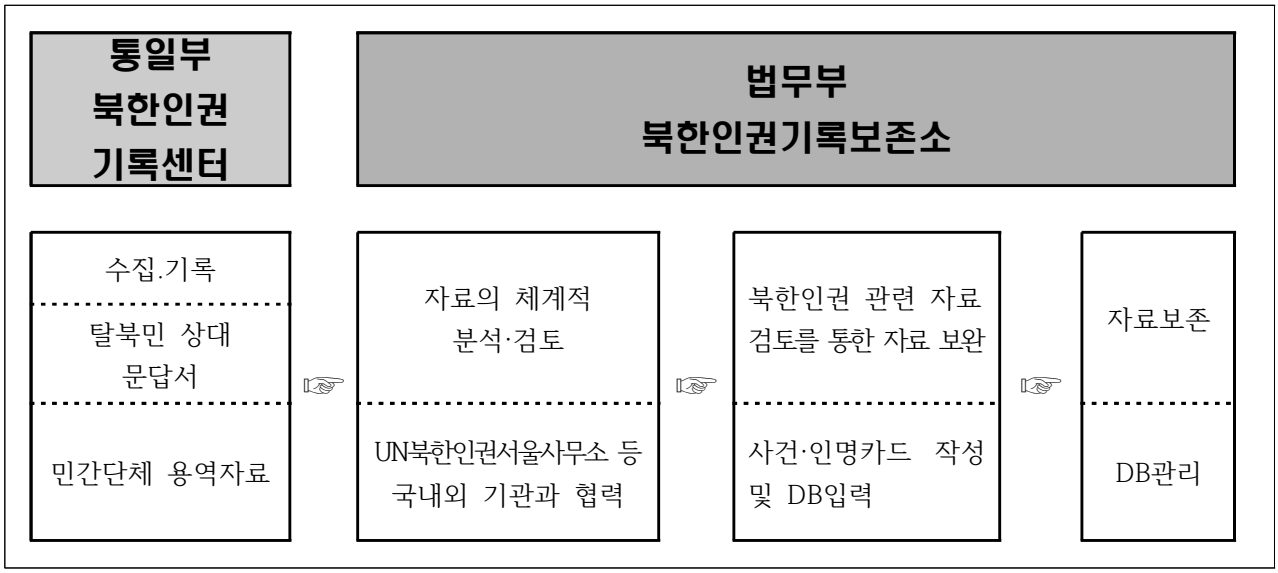
③ 향후(2027년도 이후) 기대효과

- 수집·보존된 북한인권 자료는 향후 형사처벌의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경고적 효과를 통해 북한주민의 인권침해를 억제하여 실질적 인권개선 증진에 기여
- 통일 후 체제불법 청산(책임규명, 북한공무원 재임용 심사, 피해자 복권) 등의 근거자료로 활용함으로써 사회통합에 기여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25~2029	286	291	254	254	254	
2026~2030		291	254	254	254	254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국회 지적

- '23. 8. 8. 법무부의 직제 개정으로 북한인권기록보존소가 인권국에서 법무실로 이관되었으나 예산편성은 여전히 법무활동(1000)이 아닌 인권활동(1100)에서 편성되어 예산편성 체계를 따르지 않고 있음
  -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운영 사업을 법무활동(1000)으로 이관하고 관련 단위사업 및 세부사업을 새롭게 편성하여 예산편성 및 집행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23. 11. 국회 예결위 예산심의)
- '24. 12. 23. DB 운영업체 계약 시 19백만원의 낙찰차액 발생으로 '25년 예산이 불용되었고 '26년 회계연도 결산 시에도 불용될 것으로 예상됨
  ('26. 7. 국회 예산정책처)
- 보존소의 일부 시설·장비기준이 법무부령에 미달한 부분이 있으므로 향후 시설·장비의 보완 방안 검토 필요('26. 7. 국회 예산정책처)

□ 후속조치

-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운영사업을 인권활동 프로그램(1100)에서 법무활동 프로그램(1000)으로 이관하고 이와 함께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운영(1042)'의 단위사업 및 같은 명칭의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운영(300)'의 세부사업을 신설('24. 4. 30. 기재부 신청)
  ※ 이관 전 : 인권국(1100-1139-301) → 이관 후 : 법무실(1000-1042-300)*
  * 25년부터 적용
- '27년도 예산 편성 시, 지출구조조정에 사전 반영하여 관리용역비 19백만원을 감액 요구함
- 예산의 범위 및 활용도 등 고려하여 시설·장비 기준에 부합하는 장비 구입 예정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지속적인 북한인권자료의 체계적 분석·보존·관리를 통해 향후 북한주민의 실질적 인권개선 증진에 기여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2) 동 사업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 : 해당없음

13) 2026년도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 결과 및 후속 조치 현황 : 해당없음

14) 부처 건의사항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3	239	-	239	-	1	-	239	237	99.2	99.2	-	2
2024	278	-	278	-	-	-	278	268	96.4	96.4	-	10
2025	286	-	286	-	-	-	286	252	88.1	88.1	-	34
2026	291	-	291	-	-	-	291	154	54.8	54.8	-	-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 해당없음

2) 주요 결산사항

□ 2023~2026년 결산사항

2023	- '23. 8. 법무부 직제 개정으로 북한인권기록보존소가 인권국에서 법무실 소속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예산편성도 인권활동(1100) 프로그램에서 법무활동(1000) 프로그램으로의 변경이 필요함 → '24년 예산부터 인권활동(1100) 프로그램에서 법무활동(1000) 프로그램으로 변경함
2024	- 해당없음
2025	- 해당없음
2026	- '24. 12. 낙찰차액으로 19백만원의 관리용역비 '25년 및 '26년 불용 발생 → '27년 예산 편성 시, 지출구조조정으로 19백만원 감액

□ 2026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

□ 2026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 해당없음

인권활동

사 업 명
법률구조 (1131-3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법무부	인권국	일반회계	020	022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31	300
명칭	인권활동	법률구조	법률구조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6예산 시 소관
	0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0			0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법률구조기구 관리 및 연계강화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인권국	반 지	오승진	류지원
		인권구조과	02-2110-3641	02-2110-3643	02-2110-3646
	사업시행주체	기관명	조직명	이 름	연락처
법률구조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인권국	반 지	오승진	류지원
		인권구조과	02-2110-3641	02-2110-3643	02-2110-3646
	사업시행주체	대한법률구조공단	예산정책부	오현석 과장	054-810-1143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재무·회계	김현옥 과장	02-782-3427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상담부서	고은지 상담위원	02-2697-0155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총무과	김상우 부장	02-3476-6515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년 결산	2026년 예산		2027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요구안	조정안(B)		(B-A)/A
법률구조	62,312	61,240	61,240	75,963	71,153	9,913	16.2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25					2026(2026.7월말)							2027 예산안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62,313	62,313	62,312 (62,312)	-	-	61,240	61,240	40,807 (40,807)	61,240	40,807 (40,807)	-	-	71,153
· 법률구조기구 관리 및 연계강화	50	50	49 (49)	-	-	238	238	83 (83)	238	83 (83)	-	-	116
· 대한법률구조공단	60,346	60,346	60,346 (60,346)	-	-	58,526	58,526	39,330 (39,330)	58,526	39,330 (39,330)	-	-	68,358
- 인건비	66,457	66,457	66,457 (66,457)	-	-	66,470	66,470	37,427 (37,427)	66,470	37,427 (37,427)	-	-	71,530
- 경상비	2,574	2,574	2,425 (2,425)	-	-	2,501	2,501	1,226 (1,226)	2,501	1,226 (1,226)	-	-	2,613
- 사업비	43,283	43,283	37,034 (37,034)	-	-	33,573	33,573	18,995 (18,995)	33,573	18,995 (18,995)	-	-	39,343
- 국고보조	60,346	60,346	60,346 (60,346)	-	-	58,526	58,526	39,330 (39,330)	58,526	39,330 (39,330)	-	-	68,358
- 자체수입	51,968	51,968	45,571 (45,571)	-	-	44,018	44,018	18,318 (18,318)	44,018	18,318 (18,318)	-	-	45,128
· 가정복지관련 법률구조	1,917	1,917	1,917 (1,917)	-	-	1,976	1,976	1,241 (1,241)	1,976	1,241 (1,241)	-	-	2,138
- 인건비	1,812	1,812	1,600 (1,600)	-	-	1,875	1,875	930 (930)	1,875	930 (930)	-	-	1,949
- 경상비	174	174	128 (128)	-	-	170	170	76 (76)	170	76 (76)	-	-	167
- 사업비	1,914	1,914	1,688 (1,688)	-	-	1,914	1,914	1,004 (1,004)	1,914	1,004 (1,004)	-	-	2,005
- 국고보조	1,917	1,917	1,917 (1,917)	-	-	1,976	1,976	1,241 (1,241)	1,976	1,241 (1,241)	-	-	2,138
- 자체수입	1,983	1,983	1,499 (1,499)	-	-	1,983	1,983	769 (769)	1,983	769 (769)	-	-	1,983
· 기타 법률구조 기구	-	-	-	-	-	500	500	153 (15.3)	500	153 (15.3)	-	-	541
- 인건비	-	-	-	-	-	126	126	66	126	66	-	-	126

	2025					2026(2026.7월말)							2027 예산안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경상비	-	-	-	-	-	4	4	(66) 1 (1)	4	(66) 1 (1)	-	-	4
- 사업비	-	-	-	-	-	370	370	86 (86)	370	86 (86)	-	-	411
○ 비목별 분류(합계)	62,313	62,313	62,312 (62,312)	-	-	61,240	61,240	40,807 (40,807)	61,240	40,807 (40,807)	-	-	71,153
· 일반수용비(210-01)	17	17	17 (17)	-	-	173	173	68 (68)	173	68 (68)	-	-	71
· 임차료(210-07)	3	3	3 (3)	-	-	5	5	3 (3)	5	3 (3)	-	-	5
· 국내여비(220-01)	10	10	10 (10)	-	-	10	10	4 (4)	10	4 (4)	-	-	10
· 일반연구비(260-01)	20	20	20 (20)	-	-	40	40	- (-)	40	- (-)	-	-	20
· 사업추진비(240-01)	-	-	-	-	-	10	10	8 (8)	10	8 (8)	-	-	10
· 민간경상보조 (320-01)	62,263	62,263	62,263 (62,263)	-	-	61,002	61,002	40,724 (40,724)	61,002	40,724 (40,724)	-	-	71,037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62,313	62,313	62,312 (62,312)	-	-	61,240	61,240	40,807 (40,807)	61,240	40,807 (40,807)	-	-	71,153
· 법률구조기구 관리 및 연계강화	50	50	49 (49)	-	-	238	238	83 (83)	238	83 (83)	-	-	116
- 일반수용비(210-01)	17	17	17 (17)	-	-	173	173	68 (68)	173	68 (68)	-	-	71
- 임차료(210-07)	3	3	3 (3)	-	-	5	5	3 (3)	5	3 (3)	-	-	5
- 국내여비(220-01)	10	10	10 (10)	-	-	10	10	4 (4)	10	4 (4)	-	-	10
- 일반연구비(260-01)	20	20	20 (20)	-	-	40	40	- (-)	40	- (-)	-	-	20
- 사업추진비(240-01)	-	-	-	-	-	10	10	8 (8)	10	8 (8)	-	-	10
· 대한법률구조공단	60,346	60,346	60,346 (60,346)	-	-	58,526	58,526	39,330 (39,330)	58,526	39,330 (39,330)	-	-	68,358
- 민간경상보조 (320-01)	60,346	60,346	60,346 (60,346)	-	-	58,526	58,526	39,330 (39,330)	58,526	39,330 (39,330)	-	-	68,358
· 가정복지관련 법률구조	1,917	1,917	1,917 (1,917)	-	-	1,976	1,976	1,241 (1,241)	1,976	1,241 (1,241)	-	-	2,138
- 민간경상보조 (320-01)	1,917	1,917	1,917 (1,917)	-	-	1,976	1,976	1,241 (1,241)	1,976	1,241 (1,241)	-	-	2,138
· 기타 법률구조기구	-	-	-	-	-	500	500	153 (153)	500	153 (153)	-	-	541
- 민간경상보조 (320-01)	-	-	-	-	-	500	500	153 (153)	500	153 (153)	-	-	541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법률구조기구 관리 및 연계강화) 국민들이 법률구조 서비스 혜택을 보다 쉽고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법률구조 기구·제도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기구·제도간 유기적인 연계를 강화
- (대한법률구조공단) 경제적 어려움 및 법률지식의 부족으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법률상담, 소송대리, 기타 법률사무(법계몽 및 법교육사업 등)에 관한 지원을 함으로써 기본적 인권 옹호 및 법률복지 증진
- (가정복지관련 법률구조) 사회적 소외계층을 위하여 가정법률 분야의 법률상담, 조정화해, 대서 및 소송구조 등의 법률구조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여 약자의 인권옹호와 국민의 법률복지 증진에 이바지함
- (기타 법률구조 기구) 대한법률구조공단, 법원 소송구조 및 기타 유관기관이 담당하지 못하는 사각지대의 사건에 대해 보완적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다양한 계층과 사건에 법률구조 서비스 제공하여 법률복지 증진에 이바지함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헌법

제11조【법 앞의 평등】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③ 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제12조【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④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⑤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장소가 지체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제27조【재판받을 권리】

①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③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법률구조법

제1조(목적)
- 이 법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자에게 법률구조(法律救助)를 함으로써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나아가 법률 복지를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2 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국가는 국민의 법률복지 증진을 위하여 법률구조 체제를 구축·운영하고, 법률구조 관련 법령의 정비와 각종 정책을 수립·시행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책무**를 진다.

제4조(보조금의 지급)
- 정부는 제3조에 따라 등록된 법인과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법률구조법인"이라 한다)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제2항【소송비용, 변호사보수 국가부담의무】
- 보훈대상자(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특수임무유공자), 보호대상아동,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범죄피해자 등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국가가 소송비용과 변호사보수를 부담**할 수 있다.

제8조(대한법률구조공단의 설립)
- 법률구조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제21조(사업)
- 공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법률구조** 2. 법률구조제도에 관한 조사·연구
  3. 준법정신을 드높이기 위한 계몽사업 4. 그 밖에 공단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② 추진경위

- '56. 8. 여성법률상담소 창설
- '72. 7. 대한법률구조협회 발족, 법률구조사업 추진
- '87. 7. 법률구조법 제정
- '87. 9. 대한법률구조공단 설립
- '88. 7.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법률구조법인 등록
- '94.12. 법률구조법 개정(공익법무관 법률구조 업무 종사)
- '96. 6. 대한법률구조공단 형사사건 법률구조
- '00. 7. 대한법률구조공단 행정소송, 헌법소원 사건 법률구조 실시
- '02. 5.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법률구조법인 등록
- '08. 3. 법률구조법 개정

【국가의 법률구조사업 재원 조달 책무, 법 제2조의 2】

【소송비용과 변호사비용 국가 부담의무, 법 제7조 2항】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법 제21조2】

【시·군법원 소재지 공단 지소설치, 법 제10조 2항】

- ’09. 1.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 개소

【대통령공약2】 중산층을 복원하고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하여 금융소외자 신용회복지원 강화

【국정과제 53-2】 금융소외자 신용회복 지원

- ’09. 7. 대한법률구조공단 지소 설치(1차년도)

・ 동해·삼척·태백·보령·서천·부여·영주·예천·문경·사천·하동·남해·완도·강진·진도

【대통령공약 17】 저소득층 및 농어촌지역 서민을 위한 법률구조사업 확대

- ’09. 12.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법률구조법인 등록
- ’10. 6. 대한법률구조공단 대구 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 개소
- ’10. 7. 대한법률구조공단 지소 설치(2차년도)

・ 양구·인제·화천·무주·진안·장수·철원·가평·포천·울진·청송·영양·괴산·진천·음성

- ’11. 5. 대한법률구조공단 부산 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 개소
- ’11. 7. 대한법률구조공단 지소 설치(3차년도)

・ 정선·평창·횡성·김제·부안·고창·칠곡·성주·고령·합천·함양·산청·고흥·보성·화순

- ‘12. 7. 대한법률구조공단 지소 설치(4차년도)

・ 당진·청양·예산·영암·나주·무안·함안·의령·고성

- ’12. 8. 대한법률구조공단 광주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 개소
- ’13. 7. 대한법률구조공단 지소 설치(5차)

・ 용인·연천·남양주·창녕·영천·청도·영광·보은·서귀포

- ’13. 7. 대한법률구조공단 대전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 개소
- ’14. 6. 수원, 울산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 개소
- ’14. 7. 대한법률구조공단 지소 설치(6차)

・ 오산·안성·김해·익산

- ’15. 7. 대한법률구조공단 지소 설치(7차)

・ 강화·김포·아산·곡성·함평

- ’19. 3. 대한법률구조공단 지소 설치(8차)

・ 구미

- ’20. 7. 대한법률구조공단 지소 설치(9차)

・ 파주

- ’21. 7. 대한법률구조공단 지소 설치(10차)

・ 경기 광주

- ’21. 12. 중대재해 피해 법률지원체계 구축 및 미성년자의 부모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원스톱 법률지원서비스 실시

- ’22. 7. 전세사기피해자 법률지원 실시(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협업)
- 법률구조서비스 플랫폼 구축 추진
  · ‘23. 6. 법률구조서비스 플랫폼 구축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 ‘23. 4.~12. 플랫폼 유관기관 방문협의 실시
  · ‘24. 7. 법률구조 플랫폼 구축 사업 계약체결
  · ’24. 10. 법률구조 서비스 플랫폼 협의체 구성 및 업무협약 체결
  · ’24. 11. 법률구조 서비스 플랫폼 협의체 워크숍 개최
  · ’25. 1.~ 법률구조 서비스 플랫폼 2차년도 시스템 구축(인공지능컨택센터, 지능형 연계시스템 등)
- 법률구조 취약계층에 대한 부료법률지원 확대
  · ‘23. 1./5/ 인천·광주광역시 아동청소년(24세 이하)을 위한 부모 빚 대물림 방지 무료법률구조 실시
  · ‘23. 4. 저소득 재해근로자의 피해지역 범위를 영남지역에서 전국으로 확대
  · ‘23. 10. 금융취약계층의 개인회생·파산 면책 신청 등 법률지원 강화
  · ‘23. 11. 취약계층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자 법률지원 강화
  · ‘23. 12. 불법대부계약 무효소송 등 불법사금융 피해자 법률지원 확대
  · ‘24. 5. 화물차 운전자 법률지원 확대
  · ‘24. 7. 불법사금융 피해자의 관계인에게 법률지원 확대
  · ‘24. 10. 소상공인 대상자 확대 (중위소득 125%, 매출액 2억이하 → 150%, 3억원)
  · ‘25. 7. 중대재해 피해자의 유족에게 법률지원 확대
    채무상속위기 아동청소년(24세 이하) 법률지원 확대
- ‘25. 7. 인천 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 구축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사업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3	2024	2025	2026	2027(안)
사업비	58,118	61,633	62,312	61,240	71,153

- 기타: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보조
- 사업시행주체 : 법무부·대한법률구조공단·한국가정법률상담소·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 사업 수혜자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25% 이하 국민 및 국내거주 외국인 등 사회·경제적 약자
  - 개인회생·파산신청자 범죄피해자, 전세사기피해자, 성폭력·가정폭력피해자,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농·어업인, 임금체불피해근로자, 다문화가족, 차상위계층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7예산안)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대한법률구조공단	보조	대한법률구조공단	68,358	60.2% (수지차보전)	법률구조법 제4조
가정복지관련 법률구조	보조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138	51.9% (수지차보전)	법률구조법 제4조
기타 법률구조기구	보조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541	100.0%	법률구조법 제4조

3) 2027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

① **법률구조기구 관리 및 연계강화**

: (2026 본예산) 238백만원 → (2027 예산안) 116백만원, 122백만원 감액

- (요구) '26. 1. AI 법률구조 통합 시스템(국정과제 6-4) 서비스 개시에 따른 대국민 홍보비 감액 및 사업우선순위 고려 일반연구비 감액 등
- (산출) · 법률구조기구 간 회의 및 자료 인쇄비 등 5백만원

· 법률구조 플랫폼 협의체, 법률지원단 운영 지원을 위한 물품구매, 기념품 제작 등 66백만원

· 법률구조 기구 간 유관기관과 업무협의 개최를 위한 회의장 임차비 5백만원

· 법률구조기구 지도·감독 및 업무 협의를 위한 여비 10백만원

· 법률지원단 운영 및 유관기관 협의 간담회 개최 등 10백만원

· 산하 기타 공공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의 경영실적평가 용역비 20백만원

ㅇ 2026년도 예산 및 2027년도 예산안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6년 본예산		2027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238,000천원	○ 일반수용비(210-01) : 173,000천원 가. 법률구조기구 간 회의 및 자료 인쇄비 등 (13,000천원) ・ 회의 개최 경비 및 인쇄비 등: 500천원×6회=3,000천원 ・ 회의 자료집 인쇄 : 20천원x500권=10,000천원 나. 법률구조제도 및 통합 시스템 홍보 (160,000천원) ・ 홍보물 제작 : 2회x10,000천원=20,000천원 ・ 대국민 홍보 포스터·리플릿 제작 : 50,000천원 ・ 광고 집행 및 기념품 제작 : 90,000천원 ○ 임차료(210-07) : 5,000천원 가. 법률구조 회의장 임차 (5,000천원) ・ 법률구조 회의장 임차 : 500천원x10회=5,000천원 ○ 국내여비(220-01) : 10,000천원 가. 법률구조기구 지도점검 및 업무협의 출장 등 (10,000천원) ・ 현지 지도점검 및 업무협의 : 250천원x40회=10,000천원 ○ 일반연구비(260-01) : 40,000천원 가. 법률구조 효율적 운영 및 합리적 방향 검토 연구용역 (40,000천원) ○ 사업추진비(240-01) : 10,000천원 가. 법률지원단 운영 및 유관기관 협의 (10,000천원) ・17명(법률구조팀 및 관계자 등)x20천원x31회=10,000천원	116,000천원	○ 일반수용비(210-01) : 71,000천원 가. 법률구조기구 간 회의 및 자료 인쇄비 등 (5,000천원) ・ 회의 개최 경비 및 인쇄비 등: 1,000천원×5회=5,000천원 나. 법률구조 플랫폼 협의체, 법률지원단 운영 및 지원 등(66,000천원) ・5,500천원×12개월=66,000천원 ○ 임차료(210-07) : 5,000천원 가. 법률구조 회의장 임차 (5,000천원) ・ 법률구조 회의장 임차 : 500천원x10회=5,000천원 ○ 국내여비(220-01) : 10,000천원 가. 법률구조기구 지도점검 및 업무협의 출장 등 (10,000천원) ・ 현지 지도점검 및 업무협의 : 250천원x40회=10,000천원 ○ 일반연구비(260-01) : 20,000천원 가. 대한법률구조공단 경영평가 용역(20,000천원) ○ 사업추진비(240-01) : 10,000천원 가. 법률지원단 운영 및 유관기관 협의 (10,000천원) ・17명(법률구조팀 및 관계자 등)x20천원x31회=10,000천원

② 대한법률구조공단

(2026 본예산) 58,526백만원 → (2027 예산안) 68,358백만원, 9,832백만원 증액

- (요구) 위기채무자 무료 법률지원 확대 및 홍보 등 법률구조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예산 증액 요구

- (산출) 인건비 71,530백만원, 경상비 2,613백만원, 사업비 39,343백만원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안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6년 본예산		2027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58,526,000천원	○ 민간경상보조(320-01) 58,526,000천원 가. 인건비 (66,470,000천원) ・ 법률구조 수행 인력의 기본급, 수당, 퇴직금 ・ 740명*89,824천원 나. 경상비 (2,501,000천원) ・ 직무수행경비 등 경상비 ・ 740명*3,380천원 다. 사업비 (33,573,000천원) ・ 법률구조활동비 : 22,786,000천원 135개 기관 x 168,785천원	68,358,000천원	○ 민간경상보조(320-01) 68,358,000천원 가. 인건비 (71,530,000천원) ・ 법률구조 수행 인력의 기본급, 수당, 퇴직금 ・ 777명*92,059천원 나. 경상비 (2,613,000천원) ・ 직무수행경비 등 경상비 ・ 777명*3,363천원 다. 사업비 (39,343000천원) ・ 법률구조활동비 : 25,899,000천원 136개 기관 x 190,434천원

2026년 본예산		2027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 청·관사취득 및 관리 : 6,335,000천원 135개 기관 x 46,926천원 ・ 기관운영비 : 3,239,000천원 135개 기관 × 23,993천원 ・ 법률구조제도·조사연구 : 53,000천원 135개 기관 x 393천원 ・ 홍보 및 법계몽활동비 : 483,000천원 135개 기관 x 3,578천원 ・ 기타배상금 : 22,000천원 135개 기관 x 163천원 ・ 법문화특별회계 전출금 : 100,000천원 135개 기관 x 741천원 ○ 총지출 : 102,544,000천원 ○ 자체수입 : 44,018,000천원		・ 청·관사취득 및 관리 : 5,605,000천원 136개 기관 x 41,213천원 ・ 기관운영비 : 5,276,000천원 136개 기관 × 38,794천원 ・ 법률구조제도·조사연구 : 53,000천원 136개 기관 x 390천원 ・ 홍보 및 법계몽활동비 : 2,388,000천원 136개 기관 x 17,559천원 ・ 기타배상금 : 22,000천원 136개 기관 x 162천원 ・ 법문화특별회계 전출금 : 100,000천원 136개 기관 x 735천원 ○ 총지출 : 113,486,000천원 ○ 자체수입 : 45,128,000천원

③ 가정복지관련 법률구조

: (2026 본예산) 1,976백만원 → (2027 예산안) 2,138백만원, 162백만원 증액

- (요구) 법률구조 플랫폼의 안정적 참여를 위한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91백만원 증액 요구
- (산출) 1)한국가정법률상담소 : 인건비 1,640백만원, 경상비 151백만원, 사업비 1,627백만원
  2)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인건비 309백만원, 경상비 16백만원, 사업비 378백만원

ㅇ 2026년도 예산 및 2027년도 예산안 산출 세부내역 비교

1) 한국가정법률상담소

2026년 본예산		2027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596,000	○ 민간경상보조(320-01) 1,596,000천원 가. 인건비 (1,578,000천원) ・ 법률구조 수행 인력의 기본급, 수당, 퇴직금 (22명 × 71,727천원) 나. 경상비 (155,000천원) ・ 일반수용비, 공공요금및제세 등 기본운영경비 (22명 × 7,045천원) 다. 사업비 (1,579,000천원) ・ 구조비 : 400,000천원 소송구조비, 야간상담비, 법률계몽비, 수탁사건구조비 등 400,000천원 ・예방·교육프로그램 : 5,000천원 가정문제예방 및 교육프로그램 실시, 심포지엄개최 등 5,000천원 ・프로젝트사업비 : 1,172,000천원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등의 프로젝트지원사업 5개 × 234,400천원 = 1,172,000천원 ・기타사업비 : 2회 × 1,000천원 = 2,000천원 ○ 총지출 : 3,312,000천원 ○ 자체수입 : 1,716,000천원	1,702,000	○ 민간경상보조(320-01) 1,702,000천원 가. 인건비 (1,640,000천원) ・ 법률구조 수행 인력의 기본급, 수당, 퇴직금 (22명 × 74,545천원) 나. 경상비 (151,000천원) ・ 일반수용비, 공공요금및제세 등 기본운영경비 (22명 × 6,864천원) 다. 사업비 (1,627,000천원) ・ 구조비 : 400,000천원 소송구조비, 야간상담비, 법률계몽비, 수탁사건구조비 등 400,000천원 ・예방·교육프로그램 : 5,000천원 가정문제예방 및 교육프로그램 실시, 심포지엄개최 등 5,000천원 ・프로젝트사업비 : 1,172,000천원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등의 프로젝트지원사업 5개 × 234,400천원 = 1,172,000천원 ・홈페이지 유지보수 : 12월 × 4,000천원 = 48,000천원 ・기타사업비 : 2회 ×1,000천원 = 2,000천원 ○ 총지출 : 3,418,000천원 ○ 자체수입 : 1,716,000천원

2)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2026년 본예산		2027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380,000	○ 민간경상보조(320-01) 380,000천원 가. 인건비 (297,000천원)	436,000	○ 민간경상보조(320-01) 436,000천원 가. 인건비 (309,000천원)

2026년 본예산		2027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 법률구조 수행 인력의 기본급, 수당, 퇴직금 9명×33,000천원 나. 경상비 (15,000천원) ・ 일반수용비, 공공요금및제세 등 기본운영경비 9명×1,667천원 다. 사업비 (335,000천원) ・ 법률구조비 : 115,000천원 소송구조비, 야간상담비, 조정화해비, 순회상담비 등 30,000천원 + 25,000천원 + 40,000천원 + 20,000천원 ・법률계몽비 : 72,000천원 법률복지 발행 및 계몽교재 제작비 등 48,000천원 + 24,000천원 ・교육사업비 : 42,000천원 생활법률강좌, 분쟁예방교육, 상담원 양성교육 등 3개 × 14,000천원 = 42,000천원 ・청사유지비 : 12월×7,400천원=88,000천원 ・기타사업비 : 12월×1,500천원=18,000천원 ○ 총지출 : 647,000천원 ○ 자체수입 : 267,000천원		・ 법률구조 수행 인력의 기본급, 수당, 퇴직금 9명×34,300천원 나. 경상비 (16,000천원) ・ 일반수용비, 공공요금및제세 등 기본운영경비 9명×1,777천원 다. 사업비 (378,000천원) ・ 법률구조비 : 115,000천원 소송구조비, 야간상담비, 조정화해비, 순회상담비 등 30,000천원 + 25,000천원 + 40,000천원 + 20,000천원 ・법률계몽비 : 72,000천원 법률복지 발행 및 계몽교재 제작비 등 48,000천원 + 24,000천원 ・교육사업비 : 42,000천원 생활법률강좌, 분쟁예방교육, 상담원 양성교육 등 3개 × 14,000천원 = 42,000천원 ・청사유지비 : 12월×7,400천원=88,000천원 ・기타사업비 : 12월×1,500천원=18,000천원 ・홈페이지 유지보수 : 12월 × 3,580천원 = 43,000천원 ○ 총지출 : 703,000천원 ○ 자체수입 : 267,000천원

④ 기타 법률구조 기구

: (2026 본예산) 500백만원 → (2027 예산안) 541백만원, 41백만원 증액

- (요구) 법률구조 플랫폼의 안정적 참여를 위한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41백만원 증액 요구

- (산출) 인건비 126백만원, 경상비 4백만원, 사업비 411백만원

ㅇ 2026년도 예산 및 2027년도 예산안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6년 본예산		2027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500	○ 민간경상보조(320-01) 500,000천원 가. 인건비 (126,000천원) ・정규직 총 1명 × 30,000천원 = 36,000천원 ・계약직 3명 × 25,000천원 = 90,000천원 나. 경상비 (4,100천원) ・공공요금 1,375천원 ・회의 및 소모품비 등 27,250천원 다. 사업비 (369,900천원) ・구조비 : 287,800천원 ・법률상담비 : 30,000천원 60회(회당5시간) × 500,000원(변호사상담비) ・법률교육비 : 20,000천원 강사비- 30회(월2.5회) × 500,000원 교제제작- 5종 × 1,000,000원 ・홍보비 : 4,500천원 홍보 및 교육영상제작 등 ・임차료 : 27,600천원 12개월 × 2,300천원 = 27,600천원	541	○ 민간경상보조(320-01) 540,700천원 가. 인건비 (126,000천원) ・정규직 총 1명 × 30,000천원 = 36,000천원 ・계약직 3명 × 25,000천원 = 90,000천원 나. 경상비 (4,104천원) ・공공요금, 소모품비 등 342,000원×12개월 = 4,104천원 다. 사업비 (411,000천원) ・구조비 : 318.000천원 ・법률상담비 : 10,000천원 20회(회당5시간) × 500,000원(변호사상담비) ・법률교육비 : 10,000천원 강사비- 20회(월1.6회) × 500,000원 ・홈페이지유지보수 : 41,000천원 12개월 × 3,391,670원 ・홍보비 : 4,500천원 홍보 및 교육영상제작 등 ・임차료 : 27,600천원 12개월 × 2,300천원 = 27,600천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3~2027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3	2024	2025	2026	2027	2027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또는 자료출처)
법률지원 서비스 수혜자 수 (단위 : 명)	목표	1,476,334	-	-	-	-	-	당해 연도 법률상담 + 민가사등 법률구조 (단, 본안사건 승소율 적용)+ 행사법률구조	대한법률구조공단 전산통계 프로그램
	실적	1,213,730	-	-	-	-			
	달성도	82.2	-	-	-	-			
사회적 취약계층 법률지원 실적 (단위 : 건)	목표	-	16,195	17,550	18,076	19,90	최근 3년 평균 실적에 최근 3년 평균 증가율(7.9%)가산	주요 사회적 취약계층(장애인, 한부모가족, 범죄피해자, 소액임차인, 북한이탈주민 등) 법률구조 건수	대한법률구조공단 전산통계 프로그램
	실적	-	18,002	20,066	-	-			
	달성도	-	111.2	114.3	-	-			

* 국가의 법률적 도움이 절실한 주요 사회적 취약계층(장애인·한부모가족·범죄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법률구조 역량 집중 및 강화를 위해 성과지표 변경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대한법률구조공단>

2023	○ 법률구조서비스 플랫폼 구축 정보화전략계획(ISP)수립 ○ 청소년 법문화교육사업 실시
2024	○ 화물차 운전자 법률지원 확대 ○ 불법사금융 피해자의 관계인에게 법률지원 확대
2025	○ 인천 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 구축 ○ 소상공인, 채무상속위기 아동청소년 법률지원 확대
2026	○ 제주 및 전주 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 구축 ○ 노무제공자 및 「10·29이태원참사·12·29여객기참사」피해자에 대한 법률지원 실시

<가정복지관련 법률구조>

2023	(한국가정법률상담소) ○ 서울가정법원 및 비혼모시설, 노숙인보호시설 등 출장상담 : 5,836명 ○ 화상상담 실시 : 793건 ○ 위탁가정 미성년후견인선임 사업 : 71건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o UN인권정책센터 베트남 귀환여성 및 서울이주여성디딤터 이주여성 법률구조 o 노숙인모자자활쉼터 흰돌회와 업무 연계, 요구조자 법률상담 실시
2024	(한국가정법률상담소) ○ 서울가정법원 및 비혼모시설, 노숙인보호시설 등 출장상담 : 5,801명 ○ 화상상담 실시 : 870건 ○ 위탁가정 미성년후견인선임 사업 : 68건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o UN인권정책센터 베트남 귀환여성 및 서울이주여성디딤터 이주여성 법률구조 o 노숙인모자자활쉼터 흰돌회와 업무 연계, 요구조자 법률상담 실시
2025	(한국가정법률상담소) ○ 서울가정법원 및 비혼모시설, 노숙인보호시설 등 출장상담 : 6,661명 ○ 화상상담 실시 : 951건 ○ 위탁가정 미성년후견인선임 사업 : 72건 ○ 가정폭력행위자 성행교정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 총11종/33회/연인원 1,601명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o <2025 역량과 법률복지> 공동학술연구회 개최 o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 (40명, 169회) o 무료 생활법률강좌 실시 (반기별, 각 11강, 총 476명 수강)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2026	○ 유선 법률상담: 8,160건/ 출장상담: 44건(2026.7.말) ○ 법률취약계층 법률구조 신청처리: 1,047건(2026.7.말) ○ 자립준비청년을 비롯한 사회초년생들의 예방 중심의 생활법률교육 및 법률지원 확대 ○ 수도권과 지방 간 법률서비스 접근성 격차 해소를 위한 지방 홍보 확대

③ 향후(2027년도 이후) 기대효과 :

<대한법률구조공단>

○ 개인회생·파산 무료 법률지원 사업 대대적 홍보 및 적극적인 사업 수행으로 경제적 위기채무자가 제도를 몰라 극단적 선택에 몰리는 상황 방지 및 경제적 재기 도모

※ '22년 19,461건, '23년 23,814건, '24년 23,480건 '25년 23,529건 수행

○ 「사회복지전달체계 연계 시범실시 사업」을 전국 지자체와 연계사업으로 확대하여 법률지원이 필요한 주민을 조기에 발굴·지원함으로써 법률복지 사각지대 해소

※ '25.7.~'26.6.30. 현재 6개 지자체와 연계하여 소송대리 105건, 법률상담 326건 수행

<가정복지관련 법률구조>

○ 급변하는 사회구조와 가정문제의 다양화에 따른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및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소송구조 강화 및 법률분쟁 예방교육 확대

※ ▲찾아가는 법률구조서비스 확대, ▲온라인과 유튜브 동영상을 통한 법교육 활성화, ▲위탁가정 미성년 후견선임, 한부모가정 양육비, 취약 소외계층 및 가정폭력 피해자 등에 대한 소송구조 확대

○ 국내·외 위기가정 및 귀환이주여성, 코피노 등 우리나라와 연관 있는 국외 거주 외국인에 대한 법률구조와 가정문제의 화해·조정을 통한 인권옹호 및 법률복지 증진

○ 무변지역, 도서지역 및 소외 지역의 가정법률 관련 법률구조 확산 지속

<기타 법률구조 기구>

○ 비영리 민간법인 지원 확대를 통해 소외·취약계층의 신규 발굴 및 새로운 법률구조 사업의 확대를 촉진하고 민간 부문의 사회적 역할 강화

○ 대한법률구조공단, 법원 소송구조 및 기타 유관기관이 담당하지 못하는 사각지대의 미신고·미발굴 피해자에 대해 선제적 발굴 및 지원을 통해 보완적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다양한 계층과 사건에 법률구조 서비스 제공

○ 경제적 약자(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사회적 약자(장애인, 자립준비청년,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범죄피해자, 한부모가정, 북한이탈주민 등) 대상 법률구조 확대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대한법률구조공단		법 무 부
중기사업계획의 수립 및 제출 ○ 사업계획 수립 및 제출(1월) ・(제출) 공단 → 법무부	→	**중기사업계획의 검토 및 제출** ○ 사업 검토 및 제출(1월) ・(제출) 법무부 → 기획예산처
⇩		
국고보조금 예산 편성 및 제출 ○ 법률구조사업 예산 편성 및 제출(5월) ・(수립) 법률구조 실적, 국정과제 등 검토 ・(제출) 공단 → 법무부	→	**예산 제출 및 협의·확정** ○ (제출 및 협의) 법무부→기획예산처(6~8월) ○ (정부안 확정 및 국회제출) 기획예산처→국회(9~12월)
⇩		
사업계획 편성 및 승인신청 ○ 사업계획 및 실행예산 편성 ○ 이사회 의결 및 법무부 승인 신청(12월)	→	**사업계획 승인** ○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12월) ・사업의 적정성, 예산 편성지침 준수 여부 등 검토
⇩		
법률구조사업 수행 ○ 법률구조 절차  ○ 사업추진실적 및 예산집행현황 보고(월별·분기별·연도별) ・국정과제 등 관리 ○ 공단 업무 자체평가 및 직원 성과관리(반기별) ○ 기획예산처 주관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실시 ・고객만족도 제고 계획 수립 및 추진(연중) ○ 감사실의 정기·특별감사 실시 ○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감사 실시	→	**사업 집행의 관리·감독** ○ 사업추진 현황의 관리·감독(월 1회) ・사업계획 추진실적 등 ・가정폭력, 범죄피해자 등 국정과제 추진 상황 관리·점검 및 점검 결과 총리실 보고(정기·수시) ○ 예산 집행 실적 감독(분기) ・세출예산 집행지침 준수 여부 등 ○ 인권구조과 지도점검(수시) ・예산집행 및 사업운영 실태 등 현장 점검 ○ 감사담당관실 정기감사 ・법률구조사건 처리 실태, 국고보조금 집행 적정성, 예납금·보관금 관리 현황, 사건처리규칙 준수 여부 ○ 결산 승인(익년 4월)

⇧

기획예산처, 국회, 감사원(관리·감독)

○ 기획예산처의 통합재정사업평가
○ 국회의 예산·결산 심의 및 국정감사
○ 감사원 감사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25~2029	62,313	61,240	56,604	55,299	53,342	
2026~2030		61,240	71,222	79,016	87,661	97,192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5)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예결위 부대의견 (예결위,23예산)	ㅇ (지적) 법문화교육 사업의 추진 및 지원방식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 ㅇ (조치) 법문화교육 관련 회계가 '일반회계'와 '법문화교육 특별회계'로 이원화된 문제를 해소하라는 지적에 따라 '23년도 예산 편성시 '일반회계'에 편성되었던 법문화교육을 '법문화교육 특별회계'로 일원화하여 편성하였음
	ㅇ (지적) '사업비' 관의 소송성과급을 '인건비' 관으로 이전할 것 ㅇ (조치) '24년도 예산 편성시 변호사 소송과급을 인건비로 이관 완료
	ㅇ (지적) 변호사 소송성과급 지급 재검토 및 관련 규정 정비 필요 ㅇ (조치) 소송성과급 지급기준 관련 규정을 정비하라는 지적에 따라 '23. 11. 28.「소송성과급 지급업무 처리지침」을 개정하여 객관화된 지표를 마련하였음
	ㅇ (지적) 주택·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사업비를 인권활동(1100) 프로그램에서 법무활동(1000) 프로그램으로 이관하고 비목을 민간경상보조사업비(320-01)가 아닌 법정민간대행사업비(320-08)로 변경할 것 ㅇ (조치) '23년부터 법무활동(1000) 프로그램으로 이관 및 법정민간대행사업비(320-08)로 비목 변경 완료
예결위 부대의견 (예결위,24예산)	ㅇ (지적) 구조적인 인건비 문제로 인한 재무건전성 악화에 대한 해결방안 강구 ㅇ (조치) 임원 및 간부직의 '23년, '24년 처우개선 동결 시행 및 인건비 절감노사협의안 마련 중
예결위 부대의견 (예결위,25예산)	ㅇ (지적) 법률구조제도 조사연구비 및 사생활 보호형 상담실 구축 예산 감액 조정 필요 ㅇ (조치) 법률구조제도 조사연구비를 목적 적합성 및 집행률 등을 고려하여 7,100만원, 사생활 보호형 상담실 구축비는 상담직원의 안전보호 및 상담관리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2억 8,900만원 각 감액 조정함
	ㅇ (지적) 인건비와 퇴직적립금 예산 조정 및 편성 구체화 필요 ㅇ (조치) 결원율을 반영한 실소요분에 맞추어 인건비 세부내역을 편성하고 결원만큼의 인건비 차액은 모두 퇴직적립금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각목명세서에 실소요분 인건비와 퇴직적립금을 명확히 표시하여 각 편성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
예결위 결산 시정요구 (예결위,23결산)	ㅇ (지적) 자체수입 산정의 정확성을 제고함으로써 보조금 지원 규모를 합리적으로 산정할 필요 ㅇ (조치) 기획재정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제도 변화 등의 외부 영향을 적절하게 반영한 자체수입 및 지출액을 편성함으로써 적정한 보조금이 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ㅇ (지적) 퇴직적립금 전용 지양으로 과소적립 문제 해결 필요 ㅇ (조치) 인건비 개선안(절감방안)에 대한 협의를 노동조합과 진행함과 동시에 직무급적 연봉제를 도입하여 합리적인 보수체계를 마련할 예정임

	ㅇ (지적) 생활안정자금 대부제도 축소 운영 할 필요 ㅇ (조치) '23년부터 퇴직기금 대부를 시행하지 않고, '25년 예산안에도 대부금액을 편성하지 않음
	ㅇ (지적) 공단 퇴직금 적립률 산정시 생활안정자금 대부에 사용한 장단기대여금을 제외하고, 실제 보유한 가용자금으로 적립률을 산정하여 회계정보의 투명성과 재무건전성을 제고할 필요 ㅇ (조치) 퇴직급여 적립률 산정시 퇴직기금 대부액을 포함한 기존 방식과 함께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 가용자산 기준의 적립률을 병기하여 회계정보의 투명성과 재무건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겠음
예결위 결산 시정요구 (예결위,24결산)	ㅇ (지적) 대한법률구조공단은'법률구조서비스 플랫폼 구축'사업에서 정보화 용역계약 항목 중 감리비의 낙찰차액 6,000만원을 데이터베이스 구축 개발비로 사용하였는데, 이는 「2024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서 규정한 낙찰차액의 활용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ㅇ (조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서 규정한 낙찰차액의 활용 범위를 벗어나서 사용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음
국정감사 (국정감사,24)	ㅇ (지적)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높은 결원율을 고려하여 인력 누수 보완 방안을 마련하고, '132콜센터'의 전담인력 확충을 위해 노력할 것 ㅇ (조치) 법무부와 협의하여 결원 감소 및 인력 보강을 위해 노력하겠음. 현재 추진 중인 '인공지능 법률구조 서비스' 및 '법률구조 서비스 플랫폼'이 구축되면 기존 상담인력 대체 및 법률구조 수요를 분산함으로써 132 유선상담은 취약계층에 집중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므로, 법률상담의 내실화 제고가 예상됨. 시스템 구축 후 효과를 반영하여 검토하겠음

2) 감사원 감사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 해당없음

3) 자체평가·감사

재정사업자율평가 ('23.)	ㅇ (최종의견 및 점수) 97.1점 ㅇ (결과 요약) - 사업 목적이 명확하고 특수성을 감안할 때 국가 재정 투입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 - 예산 조기 집행 70.0% 달성, 예산 집행 관리 적정, 집행률 제고 노력 인정, 보조사업 기관의 자체수입 증대 및 예산절감 실적 우수 -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회제공과 사회통합의 사회적 가치 인정
보조사업연장평가 ('25.)	ㅇ (평가결과) 2026년 일정수준 감축 ㅇ (개선사항) - 사회양극화 심화 및 경제 여건 악화로 새롭게 등장하는 사회적 취약계층을 발굴하는 한편, 법률구조 수요 및 보조사업자 실적 변화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한정된 자원을 보다 도움이 절실한 취약계층에게 집중적으로 제공할 필요 - 법률구조 보조사업 기관별 총지출 규모를 적정하게 추산함으로써 합리적인 자체수입 및 국고보조금 규모를 산정할 필요

4)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 해당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대한법률구조공단>

- ㅇ 개인회생·파산 무료 법률지원 사업 대대적 홍보 및 적극적인 사업 수행으로 경제적 위기채무자가 제도를 몰라 극단적 선택에 몰리는 상황 방지 및 경제적 재기 도모
- ㅇ「사회복지전달체계 연계 시범실시 사업」을 전국 지자체와 연계사업으로 확대하여 법률지원이 필요한 주민을 조기에 발굴·지원함으로써 법률복지 사각지대 해소

<가정복지관련 법률구조>

- ㅇ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및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가사사건을 중심으로 한 화상상담 및 출장상담의 확대로 저소득 소외계층의 상담 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경제적으로 어렵고 법에 대해 아는 것이 없어서 무료소송대리가 필요한 국민들에 대한 소송구조를 확대하여 인권보호와 법률복지를 구현
- ㅇ Post코로나 취약계층, 특히 비대면 접근 취약계층(장애인·노인·중증환자)을 대상으로 한 상담 등 종합적인 법률구조서비스 강화
- ㅇ 무변지역, 오지 등 지리적으로 소외된 계층을 위한 종합 법률구조 서비스 제공
- ㅇ 코피노 등 우리나라와 연관 있는 국외 거주 외국인에 대한 법률구조 확대

<기타 법률구조 기구>

- ㅇ 비영리 민간법인 지원 확대를 통해 소외·취약계층의 신규 발굴 및 새로운 법률구조 사업의 확대를 촉진하고 민간 부문의 사회적 역할 강화 필요성에 따라,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에 수지차 신규 지원 실시
- ㅇ 대한법률구조공단, 법원 소송구조 및 기타 유관기관이 담당하지 못하는 사각지대의 사건에 대해 보완적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다양한 계층과 사건에 법률구조 서비스를 제공 예정
- ㅇ 경제적 약자(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사회적 약자(장애인, 자립준비청년,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범죄피해자, 한부모가정, 북한이탈주민 등) 대상 법률구조 확대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1) 「국가재정법」 제85조의8제1항에 따른 재정사업자율평가 (2023회계연도)
   - 최종의견 및 점수 : 우수, 97.1점
   - 사업관리 및 예산집행 적정, 예산절감 및 효율성 인정, 사회적 가치 실현

2)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2025년)
   - 2026년 일정수준 감축
   - 한정된 자원을 보다 도움이 절실한 취약계층에게 집중적으로 제공하고, 합리적인 자체수입 및 국고보조금 규모를 산정할 필요

12) 동 사업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

1) 2023회계연도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 최종의견 및 점수 : 우수, 97.1점
   - 사업관리 및 예산집행 적정, 예산절감 및 효율성 인정, 사회적 가치 실현

2) 2024회계연도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 최종의견 및 점수 : 우수, 98.4점
   - 예산집행 적정 및 집행 노력 우수, 성과지표 목표치 달성, 사회적 가치 실현

13) 2026년도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 결과 및 후속 조치 현황

평가결과	성과평가 주요내용	조치결과
사업개선	- 취약계층 인권 옹호 등 사업의 공익적 취지가 인정 - 다만, 국회 예결위 등에서 지속 제기된 자체 수입 산정의 불합리성, 퇴직적립금 전용 및 과소적립 문제 등을 해결할 필요	-기획예산처와 협의를 통해 2026회계연도 자체세입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산정함 * '25년 520억원 → '26년 440억원 △80억원 -퇴직적립금전출금은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전용하도록 개정 → 예산총칙 제5조 개정(2024.10.) - 퇴직적립금 부족 개선 노력 (인건비 절감 노력)

14) 부처 건의사항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3	58,118	-	58,118	-	-	-	58,118	58,118	100.0	100.0	-	-
2024	61,633	-	61,633	-	-	-	61,633	61,633	100.0	100.0	-	-
2025	62,313	-	62,313	-	-	-	62,313	62,312	100.0	100.0	-	-
2026	61,240		61,240	-	-	-	61,240	40,807	66.6	66.6	-	-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 · 피보조 기관 등)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본예산	추경(A)								
2023	58,068	58,068	58,068	58,068	-	58,068	58,068	-	-	100.0
2024	61,583	61,583	61,583	61,583	-	61,583	61,583	-	-	100.0
2025	62,263	62,263	62,263	62,263	-	62,263	62,263	-	-	100.0
2026. 7월 기준	61,002	61,002	59,358	59,358	-	59,358	40,724	-	-	66.8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3	○ **예결위 결산 시정요구(예결위,23결산)**
	- (지적) 자체수입 산정의 정확성을 제고함으로써 보조금 지원 규모를 합리적으로 산정할 필요 - (조치) 기획재정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제도 변화 등의 외부 영향을 적절하게 반영한 자체수입 및 지출액을 편성함으로써 적정한 보조금이 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지적) 퇴직적립금 전용 지양으로 과소적립 문제 해결 필요 - (조치) 인건비 개선안(절감방안)에 대한 협의를 노동조합과 진행함과 동시에 직무급적 연봉제를 도입하여 합리적인 보수체계를 마련할 예정임
	- (지적) 생활안정자금 대부제도 축소 운영 할 필요 - (조치) '23년부터 퇴직기금 대부를 시행하지 않고, '25년 예산안에도 대부금액을 편성하지 않음
	- (지적) 공단 퇴직금 적립률 산정시 생활안정자금 대부에 사용한 장단기대여금을 제외하고, 실제 보유한 가용자금으로 적립률을 산정하여 회계정보의 투명성과 재무건전성을 제고할 필요 - (조치) 퇴직급여 적립률 산정시 퇴직기금 대부액을 포함한 기존 방식과 함께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 가용자산 기준의 적립률을 병기하여 회계정보의 투명성과 재무건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겠음
2024	○ **예결위 결산 시정요구(예결위,24결산)** - (지적)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법률구조서비스 플랫폼 구축' 사업에서 정보화 용역계약 항목 중 감리비의 낙찰차액 6,000만원을 데이터베이스 구축 개발비로 사용하였는데, 이는 「2024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서 규정한 낙찰차액의 활용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 (조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서 규정한 낙찰차액의 활용 범위를 벗어나서 사용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음
2025	-
2026	-

□ 2026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

□ 2026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 해당없음

사 업 명
서민 법률보호를 위한 법률홈닥터 (1131-3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법무부	인권국	일반회계	020	022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31	301
명칭	인권활동	법률구조	서민 법률보호를 위한 법률홈닥터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6예산 시 소관
	O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서민 법률보호를 위한 법률홈닥터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인권국	반 지	김영남	-
		인권구조과	02-2110-3641	02-2110-3753	-
	사업시행주체	-	-	-	-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년 결산	2026년 예산		2027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요구안	조정안(B)		(B-A)/A
서민 법률보호를 위한 법률홈닥터	5,109	5,718	5,718	5,987	5,987	269	4.7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25					2026(2026년 7월말)							2027 예산안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5,143	5,143	5,109	-	34	5,718	5,718	2,909	5,718	2,909	-	532	5,987
· 인건비	4,786	4,786	4,752	-	34	5,361	5,361	2,791	5,361	2,791	-	532	5,630
· 운영비	357	357	357	-	-	357	357	118	357	118	-	-	357
○ 비목별 분류(합계)	5,143	5,143	5,109	-	34	5,718	5,718	2,909	5,718	2,909	-	532	5,987
· 상용임금(110-03)	3,976	3,976	3,946	-	30	4,447	4,447	2,519	4,447	2,519	-	444	4,654
· 일반수용비(210-01)	168	168	168	-	-	168	168	49	168	49	-	-	168
· 특근매식비(210-05)	4	4	4	-	-	5	5	1	5	1	-	-	5
· 복리후생비(210-12)	33	33	33	-	-	33	33	20	33	20	-	-	39
· 관리용역비(210-15)	48	48	48	-	-	48	48	20	48	20	-	-	48
· 국내여비(220-01)	113	113	113	-	-	113	113	45	113	45	-	-	113
· 사업추진비(240-01)	9	9	9	-	-	9	9	3	9	3	-	-	9
· 일반연구비(260-01)	14	14	14	-	-	14	14	0	14	0	-	-	14
· 고용부담금(320-09)	777	777	773	-	4	880	880	252	880	252	-	88	936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5,143	5,143	5,109	-	34	5,718	5,718	2,909	5,718	2,909	-		5,987
· 인건비	4,786	4,786	4,752	-	34	5,361	5,361	2,791	5,361	2,791	-	532	5,630
· 상용임금(110-03)	3,976	3,976	3,946	-	30	4,447	4,447	2,519	4,447	2,519	-	444	4,654
· 복리후생비(210-12)	33	33	33	-	-	33	33	20	33	20	-	-	39
· 고용부담금(320-09)	777	777	773	-	4	880	880	252	880	252	-	88	936
· 운영비	357	357	357	-	-	357	357	118	357	118	-	-	357
· 일반수용비(210-01)	168	168	168	-	-	168	168	49	168	49	-	-	168

	2025					2026(2026년 7월말)							2027 예산안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특근매식비(210-05)	4	4	4	-	-	5	5	1	5	1	-	-	5
· 관리용역비(210-15)	48	48	48	-	-	48	48	20	48	20	-	-	48
· 국내여비(220-01)	113	113	113	-	-	113	113	45	113	45	-	-	113
· 사업추진비(240-01)	9	9	9	-	-	9	9	3	9	3	-	-	9
· 일반연구비(260-01)	14	14	14	-	-	14	14	0	14	0	-	-	14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회복지협의회 등에 변호사 자격자인 '법률홈닥터'를 배치, 사회적·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며 내역사업으로 인건비, 운영비가 있음
- (인건비) 동 내역사업은 취약계층 대상 법률지원을 위해 변호사 자격자인 법률홈닥터를 대상으로 상용임금, 맞춤형복지비, 고용부담금을 지원하는 것임
- (운영비) 동 내역사업은 취약계층 대상 법률지원을 위해 수용비, 매식비, 관리용역비, 출장여비, 사업추진비, 일반연구비를 지원하는 것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조항

- 「법률구조법」 제2조의2(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항 국가는 국민의 법률복지 증진을 위하여 법률구조 체제를 구축 · 운영하고, 법률구조 관련 법령의 정비와 각종 정책을 수립 · 시행하며, 필요한 재원 조달 책무를 진다.
- 「범죄피해자보호법」 제4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범죄피해자 보호 · 지원을 위하여 조치를 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책무를 진다. 1호 범죄피해자 보호 · 지원 체제의 구축 및 운영 등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3조 (국가 등의 책무) ①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을 방지하고 성폭력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를 보호 ·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호. 성폭력 신고체계의 구축 · 운영 등

- 「다문화가족 지원법」제8조(국가 등의 책무) ④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등이 가정폭력으로 혼인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법률체계 등에 관한 정보의 부족 등으로 불리한 입장에 놓이지 아니하도록 의견진술 및 사실확인 등에 있어서 언어통역, 법률상담 및 행정지원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추진 경위

- 2011. 4.~2012. 3. 「서민 법률보호를 위한 '법률홈닥터'」 시범사업 실시
- 2012. 5. 정식사업 출범, 법률홈닥터 20명 정식 채용
- 2014. 5. 법률홈닥터 20명 신규 채용, 배치기관 20개에서 40개 기관으로 확대
- 2017. 5. 법률홈닥터 20명 신규 채용, 배치기관 40개에서 60개 기관으로 확대
- 2018. 2. 법률홈닥터 홈페이지를 통한 상담신청 서비스 개시
- 2018. 5. 법률홈닥터 5명 신규 채용, 배치기관 60개에서 65개 기관으로 확대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2012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3	2024	2025	2026	2027(안)
사업비	4,846	4,998	5,143	5,718	5,987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법무부
- 사업 수혜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결혼이주여성, 범죄피해자, 법정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긴급복지지원대상자, 복지사각지대계층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3) 2027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

① 인건비 : (2026 본예산) 5,359,510 → (2027 요구) 5,628,624천원, +269,114천원

- (요구) 법률홈닥터 65명 인건비 처우개선 반영
  * (인건비 상세) 상용임금(월 급여, 명절휴가비, 정액급식비), 복리후생비(법률홈닥터 맞춤형 복지비), 고용부담금(고용부담금, 퇴직연금)
- (산출) 법률홈닥터 인건비 5,630백만원
  · 상용임금 : ('26 본예산) 4,446,975 → ('27 요구) 4,653,754천원 = 65명 x 71,596천원
  * 법률홈닥터 상용임금에 대한 처우개선 반영 요구

・복리후생비 : ('26 본예산) 32,500→ ('27 요구) 39,000천원= 65명 x 600천원
* 법률홈닥터 65명 맞춤형 복지비 처우개선 반영 요구
・고용부담금 : ('26 본예산) 880,035 → ('27 요구) 935,870천원 = 65명 x 12월 x 1,200천원
* 법률홈닥터 65명 퇴직금 적립금, 4대 보험 기관부담금 처우개선 반영 요구

○ 2026년도 예산 및 2027년도 예산안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6년 본예산		2027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5,359,510 천원	○ **인건비 : 5,359,510천원 =** 4,446,975천원(상용임금) + 32,500천원(복리후생비) + 880,035천원(고용부담금) 가. **상용임금(110-03)** : 4,446,975천원 ・법률홈닥터 65명 월급여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65명x 68,415천원= 4,446,975천원 나. 복리후생비**(210-12)** : 32,500천원 ・ 맞춤형복지비 : 65명 x 500천원= 32,500천원 다. 고용부담금 : 880,035천원 ・법률홈닥터 65명 퇴직금 적립금, 4대보험 : 65명 x 13,539천원 =880,035천원	5,628,624 천원	○ **인건비 : 5,628,624천원 =** 4,653,754천원(상용임금) + 39,000천원(복리후생비) + 935,870천원(고용부담금) 가. **상용임금(110-03) : 4,653,754천원** ・ 법률홈닥터 65명 월 급여 정액 급식비 명절휴가비 : 65명 x 71,596천원 = 4,653,754천원 나. 복리후생비**(210-12)** : 39,000천원 ・ 맞춤형복지비 : 65명 x 600천원= 39,000천원 다. 고용부담금 : 935,870천원 ・법률홈닥터 65명 퇴직금 적립금, 4대보험 : 65명x12월x1,200천원 = 935,870천원

② 운영비 : (2026 본예산) 358,490 → (2027 요구) 358,490천원, 전년 동

- (요구) 사업유지를 위한 기본운영비로서 전년 수준 요구
* (내용) 법률홈닥터 사업 홍보비, 법률홈닥터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서비스 수수료, 홈페이지 유지관리 용역비, 법률홈닥터 이용자 만족도 조사 용역비, 출장여비, 간담회 추진비 등
- (산출) 법률홈닥터 운영비 358,490천원
・일반수용비 : (2026 본예산) 168,969천원 → (2027 요구) 168,969천원=
* 취약계층 법률지원 수요 확산을 위해 지속적 홍보 필요, 법률홈닥터 법률서비스 전문성 강화를 위한 법률정보서비스 제공 수수료 등 전년 수준 요구
・특근매식비 : (2026 본예산) 5,232 → ('27 요구) 5,232천원 = 12월 x 436천원
* 법률홈닥터 사업 수행 특근자에 대한 매식비 소요를 위한 전년 수준 요구
・관리용역비 : (2026 본예산) 48,000 → ('27 요구) 48,000천원 = 12월 x 4,000천원
* 개인정보보호, 시스템 장애발생 시 즉각적 대응 등을 위한 홈페이지유지보수 위탁용역비로 전년 수준 요구
・국내여비 : (2026 본예산) 113,035 → ('27 요구) 113,035천원= 65명 x 1,739천원
* 법률상담·유관기관 출장, 배치기관 현장방문 등 여비 소요를 위한 전년 수준 요구
・사업추진비 : (2026 본예산) 9,254 → ('27 요구) 9,254천원 = 1개 x 9,254천원
* 법률홈닥터 권역별 또는 전체 간담회 추진 등 소요를 위한 전년 수준 요구
・일반연구비 : (2026 본예산) 14,000 → ('27 요구) 14,000천원 = 1회 x 14,000천원
* 법률홈닥터 법률지원 이용자 대상 만족도 조사 실시 비용 전년수준 요구

○ 2026년도 예산 및 2027년도 예산안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6년 본예산		2027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358,490 천원	**② 운영비 : 358,490천원** 가. **일반수용비(210-01)** : 168,969천원 ・홍보비, 교육비 등 = 168,317천원 나. 특근매식비**(210-05)** : 5,232천원 ・특근배식비 : 12월 x 436천원 = 5,232천원 다. 관리용역비**(210-15)** : 48,000천원 ・홈페이지 유지관리 : 12월X4,000천원=48,000천원 라. 국내여비**(220-01)** : 113,035천원	358,490 천원	**② 운영비 : 358,490천원** 가. **일반수용비(210-01)** : 168,969천원 ・홍보비, 교육비 등 = 168,317천원 나. 특근매식비**(210-05)** : 5,232천원 ・특근배식비 : 12월 x 436천원 = 5,232천원 다. 관리용역비**(210-15)** : 48,000천원 ・홈페이지 유지관리 : 12월X4,000천원=48,000천원 라. 국내여비**(220-01)** : 113,035천원

2026년 본예산		2027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법률홈닥터 출장여비 등 : 65명 x 1,739천원= 113,035천원 마. 사업추진비 : 9,254천원 ・간담회, 사례회의 등 : 1개 x 9,254천원 = 9,254천원 바. 일반연구비**(260-01) :** 14,000천원 * 법률홈닥터 만족도 조사 : 1회 x 14,000천원 = 14,000천원		・법률홈닥터 출장여비 등 : 65명 x 1,739천원= 113,035천원 마. 사업추진비 : 9,254천원 ・간담회, 사례회의 등 : 1개 x 9,254천원 = 9,254천원 바. 일반연구비**(260-01) :** 14,000천원 * 법률홈닥터 만족도 조사 : 1회 x 14,000천원 = 14,000천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3~2027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3	○ 법률상담 36,263건, 법률문서 작성 조력 2,038건, 조력기관 연계 7,435건, 법교육 560건
2024	○ 법률상담 41,093건, 법률문서 작성 조력 2,871건, 조력기관 연계 9,427건, 법교육 584건
2025	○ 법률상담 39,579건, 법률문서 작성 조력 2,512건 , 조력기관 연계 9,764건, 법교육 494건
2026	○ 법률상담 15,954건, 법률문서 작성 조력 1,089건, 조력기관 연계 3,119건, 법교육 270건 ('26. 7월말.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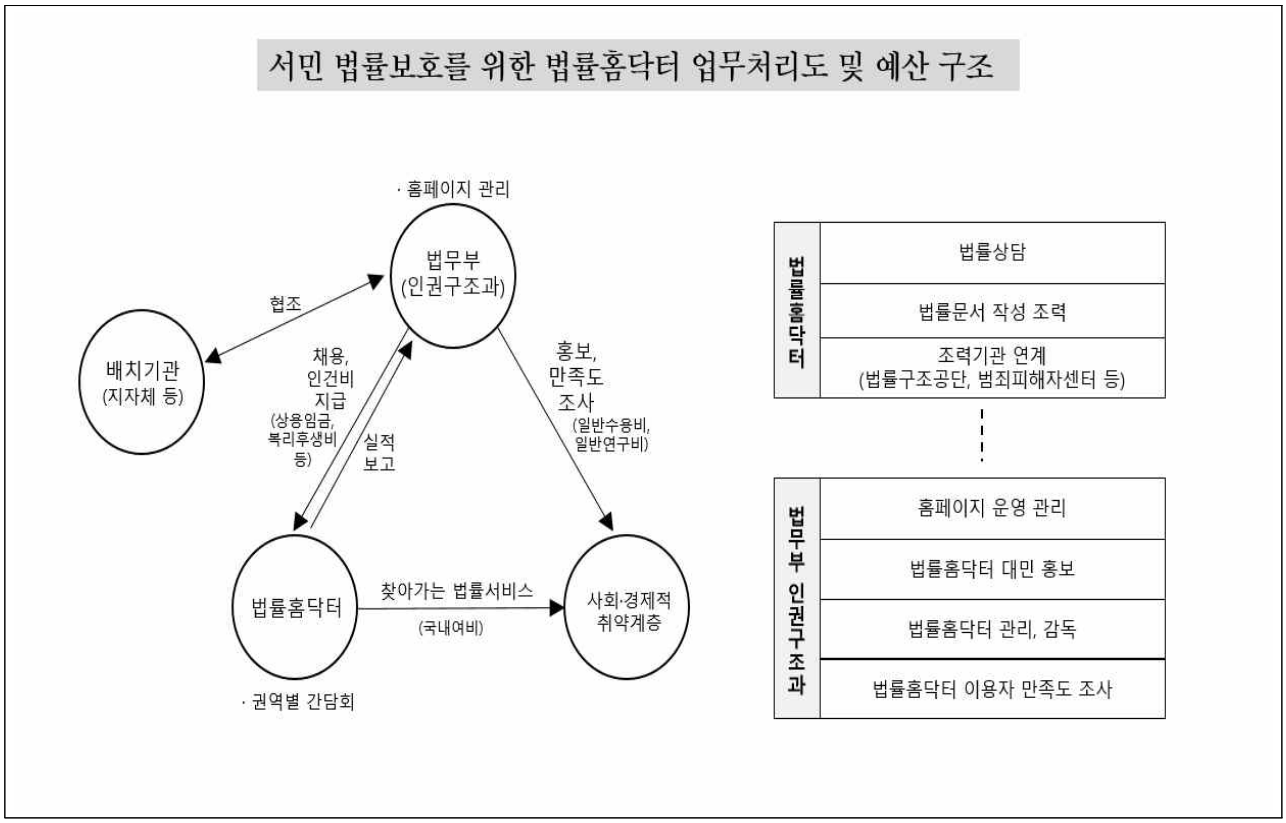
③ 향후(2027년도 이후) 기대효과

- 법률홈닥터 법률복지 서비스 제공을 통한 사회적・경제적 취약계층 법률복지 제고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25~2029	5,143	5,718	5,718	6,004	6,304	
2026~2030		5,718	5,718	6,004	6,304	6,619

* '25~'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의 금액을 입력(산출근거 불필요)

** 전년대비 +5.0%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법률홈닥터 집행부진 해소 방안 마련 필요(예결위, ’23결산)

○ 취약계층 확인 절차 미흡으로 증빙 개선 등 시스템 개편 필요(‘24 국회 결산)

2) 감사원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 해당 없음

3) 자체평가 : 해당 없음

4)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 해당 없음

5)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적극적 수시 채용(’24년 4회 채용 실시)으로 공석 최소화, ’24. 12월 기준 공석 0명

○ 법률상담 신청 시 취약계층 확인 증빙 서류 법률홈닥터 홈페이지 반영 완료(‘26. 4.)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법률홈닥터 사업 홍보 강화 등 인지도 제고를 통해 취약계층 법률지원 강화

- 온라인 등 취약계층의 접근성이 높은 매체를 적극 활용 모색

○ 성과관리관리 체계를 정비하여 법률지원실적 제고 및 취약계층 법률지원 서비스 확대

- 정량실적 외에 정성평가 도입 등을 통해 객관적 평가체계 마련 등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국가재정법」 제85조의8제1항에 따른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2025년까지) 및 통합재정사업성과평가(2026년 이후)에 대한 **기획예산처의 상위평가(심층평가) 결과**

ㅇ (최종의견 및 점수) 사업개선, 우수

ㅇ (결과 요약)

- 최근 3년간 높은 이용자 만족도와 전세사기 피해 지원 등 실질적인 정책적 성과를 거둠
- 다만, 기피 지역 인력 배치 및 유지 대책 수립 등 인력 운용 체계 구축 필요
  - 육아휴직 및 퇴직 등 상시 발생하는 채용 공백에 대해 연고지 출신 우선 채용 등 적극적 채용으로 동일한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예방 필요

12) 동 사업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

※ 재정사업자율평가 대상 사업의 경우 2025년까지의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기재, R&D 사업의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자체평가 결과를 기재

○ 2025년까지의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기재

회계연도	등급	자체평가 주요내용	조치결과
2023	보통	- 사업목적 명확성, 사업구성 적정성, 사업 성과 우수성, 사회적 가치 반영성 등 우수성 인정	- -
2024	보통	- 사업목적 명확성, 사업구성 적정성, 사업 성과 우수성, 성과 목표 달성 등 우수성 인정	

13) 2026년도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 결과 및 후속 조치 현황

평가결과	성과평가 주요내용	조치결과
사업개선	- 최근 3년간 높은 이용자 만족도와 전세사기 피해 지원 등 실질적인 정책적 성과를 거둠 - 다만, 기피 지역 인력 배치 및 유지 대책 수립 등 인력 운용 체계 구축 필요 · 육아휴직 및 퇴직 등 상시 발생하는 채용 공백에 대해 연고지 출신 우선 채용 등 적극적 채용으로 동일한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예방 필요	- 공석 발생 시 적극적 채용을 통한 결원 및 공석 해소 도모 ※ '26. 현재 수시 채용 : 2회 (3월, 6월)

14) 부처 건의사항 : 해당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3	4,846		4,846	-	-	-	4,846	4,030	83.2	83.2	-	816
2024	4,998		4,998	-	-	-	4,998	4,785	95.7	95.7	-	213
2025	5,143		5,143	-	-	-	5,143	5,109	99.3	99.3	-	34
2026	5,718		5,718	-	-	-	5,718	2,909	50.9	50.9	-	532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 해당 없음

2) 주요 결산사항

□ 2023~2025년 결산 사항

2023	- 불용 사유(집행부진사유) · 2023년~2025년 코로나19 상황, 일부 배치기관 장기공석, 육아휴직 등으로 법률홈닥터 결원이 지속되어 불용액 발생
2024	- 불용 사유(집행부진사유) · 2023년~2024년 코로나19 상황, 일부 배치기관 장기공석, 육아휴직 등으로 법률홈닥터 결원이 지속되어 불용액 발생
2025	- 해당 없음

□ 2026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 없음

□ 2026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 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 해당 없음

사 업 명
대한법률구조공단 정보화 운영비(정보화) (1131-304)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법무부	인권국	일반회계	020	022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31	304
명칭	인권활동	법률구조	대한법률구조공단 정보화 운영비(정보화)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6예산 시 소관
	O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대한법률구조공단 정보화 운영비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인권국	반 지	오승진	류지원
		인권구조과	02-2110-3641	02-2110-3643	02-2110-3646
	사업시행주체	대한법률구조공단	인공지능정책부	손창우 과장	054-810-1053
		대한법률구조공단	정보전략부	장기만 과장	054-810-1162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년 결산	2026년 예산		2027년		증감	
		본예산(A)	추경	요구안	조정안(B)	(B-A)	(B-A)/A
대한법률구조공단 정보화 운영비	5,024	5,362	5,362	8,852	7,089	1,727	32.2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25					2026(2026.7월말)							2027 예산안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5,024	5,024	5,024	-	-	5,362	5,362	3,128 (3,128)	5,362	3,128 (3,128)	-	-	7,089
·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3,967	3,967	3,967 (3,967)	-	-	3,591	3,591	2,094 (2,094)	3,591	2,094 (2,094)	-	-	6,032
· 정보통신 이용료	653	653	653 (653)	-	-	853	853	498 (498)	853	498 (498)	-	-	653
· 노후장비 교체 등 전산장비 구매	404	404	404 (404)	-	-	918	918	536 (536)	918	536 (536)	-	-	404
○ 비목별 분류(합계)	5,024	5,024	5,024	-	-	5,362	5,362	3,128 (3,128)	5,362	3,128 (3,128)	-	-	7,089
· 민간경상보조 (320-01)	5,024	5,024	5,024	-	-	5,362	5,362	3,128 (3,128)	5,362	3,128 (3,128)	-	-	7,089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5,024	5,024	5,024	-	-	5,362	5,362	3,128 (3,128)	5,362	3,128 (3,128)	-	-	7,089
·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3,967	3,967	3,967 (3,967)	-	-	3,591	3,591	2,094 (2,094)	3,591	2,094 (2,094)	-	-	6,032
- 민간경상보조(320-01)	3,967	3,967	3,967 (3,967)	-	-	3,591	3,591	2,094 (2,094)	3,591	2,094 (2,094)	-	-	6,032
· 정보통신 이용료	653	653	653 (653)	-	-	853	853	498 (498)	853	498 (498)	-	-	653
- 민간경상보조(320-01)	653	653	653 (653)	-	-	853	853	498 (498)	853	498 (498)	-	-	653
· 노후장비 교체 등 전산장비 구매	404	404	404 (404)	-	-	918	918	536 (536)	918	536 (536)	-	-	404
- 민간경상보조(320-01)	404	404	404 (404)	-	-	918	918	536 (536)	918	536 (536)	-	-	404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운영 중인 정보시스템 및 전산인프라(HW/SW)의 안정적 운영 및 유지관리를 통해 대국민 서비스 안정성 확보 및 24시간 중단없는 법률구조서비스 제공하여 대국민 법률복지 향상
- (정보통신 이용료) 법원·검찰청에 대응하여 전국 137개 지역에 산재한 지역 사무소를 연계하기 위한 인터넷전용회선료, 대국민 법률구조서비스 제공을 위한 132법률상담 회선료, 민원인 통지를 위한 e그린우편 및 SMS발송료, 전자접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자서명 및 송달 등 운영료
- (노후장비 교체 등 전산장비 구매) 내용연수 경과 및 기술지원중단 전산장비 교체하여 정보시스템 안정성 확보 및 24시간 중단없는 대국민 법률구조서비스 제공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헌법

제11조【법 앞의 평등】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③ 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제12조【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④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⑤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장소가 지체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제27조【재판받을 권리】

①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③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법률구조법

제1조(목적)

- 이 법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자에게 법률구조(法律救助)를 함으로써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나아가 법률 복지를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2 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국가는 국민의 법률복지 증진을 위하여 법률구조 체제를 구축·운영하고, 법률구조 관련 법령의 정비와 각종 정책을 수립·시행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책무**를 진다.

제4조(보조금의 지급)

- 정부는 제3조에 따라 등록된 법인과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법률구조법인"이라 한다)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제2항【소송비용, 변호사보수 국가부담의무】

- 보훈대상자(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특수임무유공자), 보호대상아동,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범죄피해자 등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국가가 소송비용과 변호사보수를 부담**할 수 있다.

제8조(대한법률구조공단의 설립)

- 법률구조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제21조(사업)

- 공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법률구조** 2. 법률구조제도에 관한 조사·연구
  3. 준법정신을 드높이기 위한 계몽사업 4. 그 밖에 공단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 국정과제

국정과제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

- 365일 24시간 법률상담 및 법률정보 제공을 통해 대국민 법률복지 증진

국정과제 '법률구조 서비스 플랫폼 구축 및 사회적 취약계층 우선 지원'

- 산재된 법률구조 기관을 종괄·관리하여 연계 강화, 사회적 취약계층에 혜택이 집중될 수 있도록 법률구조 서비스의 대상 및 범위 재조정

② 추진경위

- '01. 법률구조사업관리시스템 구축(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전산원 정보화지원 사업 추진)
- '01. 전자결재시스템 구축
- '02.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구축
- '02. 내부메일시스템 구축
- '02. 웹메일시스템 구축
- '05. 인사급여시스템 구축
- '06. 개인회생·파산지원시스템 구축
- '09.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개편
- '11. 법문화교육센터 홈페이지 구축
- '14. 개인회생·파산지원시스템 고도화
- '16. 웹메일시스템 고도화
- '17. 법률구조사업관리시스템 등 고도화(맞춤형 법률지원서비스 구축 사업 추진)
- '17. 혼자하는 소송 법률지원센터 홈페이지 구축

- ’17. 전자결재시스템 고도화
- ’17. 내부관리시스템 구축
- ’19.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고도화
- ’20. 내부메일시스템 고도화
- ’22. 법률지원단 홈페이지 구축
- ’23. 법문화교육센터 홈페이지 고도화
- ’23. 전자접수시스템 구축
- ’24. 인공지능 법률구조 서비스 구축(인공지능 법률구조 서비스 구축 사업 추진)
- 법률구조서비스 플랫폼 구축
  - ’22. 11. 법무부 주관 법률구조 서비스 플랫폼 구축 실무협의회 구성회의
  - ‘23. 6. 법률구조서비스 플랫폼 구축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 ‘23. 4.~12. 플랫폼 유관기관 방문협의 실시
  - ‘24. 7. 법률구조 플랫폼 구축 사업 계약체결
  - ’24. 7.~12. 법률구조 서비스 플랫폼 1차년도 시스템 단계 구축(대국민 플랫폼 포털, 인공지능 안내시스템 등)
  - ’24. 10. 법률구조 서비스 플랫폼 협의체 구성 및 업무협약 체결
  - ’24. 11. 법률구조 서비스 플랫폼 협의체 워크숍 개최
  - ’25. 1.~12. 법률구조 서비스 플랫폼 2차년도 시스템 구축(인공지능컨택센터, 지능형연계시스템 등)
  - ’25. 9. 새정부 123대 국정과제 선정(AI 기반 법률구조 서비스 통합시스템)
  - ’26. 1. 21. 법률구조 서비스 통합시스템 대국민 서비스 실시
  - ’26. 4. 1. ~ 법률구조 서비스 통합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진행 중

  【국정과제 6-4】AI시대의 선도적 형사사법체계 구축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2001년 ~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3	2024	2025	2026	2027(안)
사업비	1,677	3,184	5,024	5,362	7,089

- 기타 : 해당 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보조
- 사업시행주체 : 대한법률구조공단
- 사업 수혜자 :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제공하는 법률구조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3) 2027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

①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 (2026 본예산) 3,591백만원 → (2027 예산안) 6,032백만원, 2,441백만원 증액

- (요구) 법률구조서비스 통합시스템 및 개인회생시스템 안정화 등 안정적인 대국민서비스 제공을 위해 예산 증액 요구
- (산출) 유지관리 및 안정화 6,032백만원

ㅇ 2026년도 예산 및 2027년도 예산안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6년 본예산		2027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3,591	○ **민간경상보조(320-01) : 3,591,000천원** 가.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3,591,000천원) ・ 개인회생파산홈페이지 : 3.08백만×12개월=37,000천원 ・ 내부관리시스템 : 2.08백만×12개월=25,000천원 ・ 메일수발신시스템 : 2.92백만×12개월=35,000천원 ・ 법률구조사업관리시스템 : 35.33백만×12개월=424,000천원 ・ 법률지원단홈페이지 : 2.92백만×12개월=35,000천원 ・ 법문화교육홈페이지 : 3.75백만×12개월=45,000천원 ・ 인공지능법률정보질의응답 : 51.42백만×12개월=617,000천원 ・ 전자결재및지식관리 : 4.16백만×12개월=50,000천원 ・ 전자접수시스템 : 25.58백만×12개월=307,000천원 ・ 혼자하는소송법률지원센터 : 1.92백만×12개월=23,000천원 ・ 홈페이지시스템 : 9.18백만×12개월=110,00천원 ・ 법률구조서비스통합시스템 : 1,883,000천원 - 클라우드사용료 : 112백만×9개월 = 1,008,000천원 - 유지관리비('24년) : 97백만×9개월 = 875,000천원	6,032	○ **민간경상보조(320-01) : 6,032,000천원** 가.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6,032,000천원) ・ 개인회생파산홈페이지 : 3.08백만×12개월=37,000천원 ・ 내부관리시스템 : 2.08백만×12개월=25,000천원 ・ 메일수발신시스템 : 2.92백만×12개월=35,000천원 ・ 법률구조사업관리시스템 : 35.33백만×12개월=424,000천원 ・ 법률지원단홈페이지 : 2.92백만×12개월=35,000천원 ・ 법문화교육홈페이지 : 3.75백만×12개월=45,000천원 ・ 인공지능법률정보질의응답 : 70.91백만×12개월=851,000천원 ・ 전자결재및지식관리 : 4.16백만×12개월=50,000천원 ・ 전자접수시스템 : 25.58백만×12개월=307,000천원 ・ 혼자하는소송법률지원센터 : 1.92백만×12개월=23,000천원 ・ 홈페이지시스템 : 9.18백만×12개월=110,00천원 ・ 법률구조서비스통합시스템 : 2,578,000천원 - 클라우드사용료 : 84백만×12개월 = 1,008,000천원 - 유지관리비('24년~'25년) : 130백만×12개월 = 1,570,000천원 ・ 법률구조서비스통합시스템 안정화 및 보안강화 : 1,512,000천원 - 법률지식데이터 생성 및 표준화 : 582백만×1식=582,000천원 - GPU서버 증설 : 215백만×2식=430,000천원 - 인공지능 안정화 및 보안강화 : 500백만×1식=500,000천원

② 정보통신 이용료

: (2026 본예산) 853백만원 → (2027 예산안) 653백만원, 200백만원 감액

- (요구) 대국민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터넷전용회선료, 132법률상담회선료 등 정보통신 이용료 예산 요구
- (산출) 정보통신 이용료 653백만원

ㅇ 2026년도 예산 및 2027년도 예산안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6년 본예산		2027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853	○ **민간경상보조(320-01) : 853,000천원** 가. 정보통신 이용료 (853,000천원) ・ 인터넷전용회선료 : 60.77백만×12개월=729,000천원 ・ 132상담회선료 : 5.42백만×12개월=65,000천원 ・ SMS문자이용료 : 3.29백만×12개월=39,000천원	653	○ **민간경상보조(320-01) : 653,000천원** 가. 정보통신 이용료 (653,000천원) ・ 인터넷전용회선료 : 44.1백만×12개월=529,000천원 ・ 132상담회선료 : 5.42백만×12개월=65,000천원 ・ SMS문자이용료 : 3.29백만×12개월=39,000천원

2026년 본예산		2027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 전자접수운용료 : 1.67백만×12개월=20,000천원		・ 전자접수운용료 : 1.67백만×12개월=20,000천원

③ 노후장비 교체 등 전산장비 구매

: (2026 본예산) 918백만원 → (2027 예산안) 404백만원, 514백만원 감액

- (요구) 내용연수 경과 및 기술지원중단 장비 교체 등 안정적인 대국민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후장비 교체 등 예산 요구
- (산출) 노후장비 교체 등 전산장비 구매 404백만원

ㅇ 2026년도 예산 및 2027년도 예산안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6년 본예산		2027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918	○ **민간경상보조(320-01) : 918,000천원** 가. 노후장비 교체 등 전산장비 구매 (918,000천원) ・ 노후장비 등 교체 : 61.2백만×15개=918,000천원	404	○ **민간경상보조(320-01) : 404,000천원** 가. 노후장비 교체 등 전산장비 구매 (404,000천원) ・ 노후장비 등 교체 : 44.89백만×9개=404,000천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3	○ 인공지능 법률구조서비스(2차년도) 구축 ○ 법률구조 전자접수시스템(2차년도) 구축 및 대국민 서비스 실시
2024	○ 인공지능 법률구조서비스(3차년도) 구축 및 대국민 서비스 실시 ○ 법률구조서비스 플랫폼(1차년도) 구축
2025	○ 인공지능 법률구조서비스 유지관리사업 수행('22년~'23년 구축시스템 대상) ○ 법률구조서비스 플랫폼(2차년도) 구축
2026	○ 법률구조서비스 플랫폼 대국민 서비스 실시('26.1.) ○ 법률구조서비스 플랫폼 유지관리 사업 수행('26.4.)

③ 향후(2027년도 이후) 기대효과

- 정보시스템 및 전산인프라의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국가적 지원이 필요한 위기 채무자 등 대국민 법률지원 서비스 강화 및 개인회생·파산면책 법률구조 서비스 접근성 제고, 법률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 대국민 법률복지 서비스 향상
- 지능형 서비스, 공공데이터 개방, 범정부 공통 플랫폼 구현 및 유통, 전자정부 기반 인프라 신기술 적용 등의 체계적인 지원정책 추진

- 사회복지 전달체계 연계 등을 통한 민생위기 상황에서 정부의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대책 마련
- 취약계층의 법률구조서비스 제공을 위해 법률상담, 판례 등 법률지식데이터 생성 및 표준화, GPU서버 증설, AI 언어모델 업그레이드, AI 가드레이 제품 도입 등 법률구조서비스 안정화 및 보안강화 실시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법무부 국고보조금 교부 → 대한법률구조공단(사업시행)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25~2029	5,024	5,362	5,362	5,362	5,362	
2026~2030		5,362	7,362	7,362	7,362	7,362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해당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대한법률구조공단 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유지관리 및 운영 지원
- 법률구조사업관리시스템, 인공지능 법률구조서비스, 법률구조서비스 통합시스템 등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서비스 품질 개선을 통해 대국민 법률복지 서비스 향상 및 고객 만족도 제고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 없음

12) 동 사업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 : 해당 없음

13) 2026년도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 결과 및 후속 조치 현황 : 해당 없음

14) 부처 건의사항 : 해당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3	1,677	-	1,677	-	-	-	1,677	1,677	100	100	-	-
2024	3,184	-	3,184	-	-	-	3,184	3,184	100	100	-	-
2025	5,024	-	5,024	-	-	-	5,024	5,024	100	100	-	-
2026	5,362	-	5,362	-	-	-	5,362	3,128	58.3	58.3	-	-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3	- 해당 없음
2024	- 해당 없음
2025	- 해당 없음
2026	- 해당 없음

□ 2026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 없음

□ 2026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 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 해당 없음

사 업 명
인권교육 (1133-3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법무부	인권국	일반회계	020	022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33	300
명칭	인권활동	인권증진	인권교육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3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인권교육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인권국	서성목	박정순	봉형민
		인권조사과	2110-3220	2110-3217	2110-3706
	사업시행주체	-	-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년 결산	2026년 예산 본예산(A)	2027년		증감 (B-A)	(B-A)/A
			요구	조정(B)		
인권교육	173	192	131	131	61	31.8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5					2026							2027 예산
	예산액(추경)	예산현액	집행액[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현액	집행액[실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예산현액	집행액[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191	191	173	-	18	192	192	88	192	88	-		131
· 인권감수성훈련	158	156	143	-	13	157	157	64	157	64	-		106
· 1:1 맞춤형 교육	24	24	20	-	4	23	23	12	23	12	-		13
· 외부강사 기관방문 교육	9	11	10	-	1	12	12	12	12	12	-		12
○ 비목별 분류(합계)	191	191	173	-	18	192	192	88	192	88	-		131
· 일반수용비(210-01)	54	53	43	-	10	54	54	34	54	34	-		38
· 특근매식비(210-5)	3	3	2	-	1	4	4	1	4	1	-		2
· 임차료(210-07)	98	99	99	-	-	98	98	43	98	43	-		65
· 국내여비(220-01)	36	36	29	-	7	36	36	10	36	10	-		26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191	191	173	-	18	192	192	88	192	88	-		131
· 인권감수성훈련	158	156	143	-	13	157	157	64	157	64	-		106
- 일반수용비(210-01)	21	18	13	-	5	19	19	10	19	10	-		13
- 특근매식비(210-05)	3	3	2	-	1	4	4	1	4	1	-		2
- 임차료(210-07)	98	99	99	-	1	98	98	43	98	43	-		65
- 국내여비(220-01))	36	36	29	-	7	36	36	10	36	10	-		26
· 1:1 맞춤형 교육	24	24	20	-	4	23	23	12	23	12	-		13
- 일반수용비(210-01)	24	24	20	-	4	23	23	12	23	12	-		13
· 외부강사 기관방문 교육	9	11	10	-	1	12	12	12	12	12	-		12
- 일반수용비(210-01)	9	11	10	-	1	12	12	12	12	12	-		12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국가 법질서 확립」의 전제 조건인 **국가 공권력 작용에 대한 신뢰성 제고**를 기능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법무·검찰공무원에 대한 전문성과 현실 적합성 높은 인권교육 지속 추진
- 법무·행정공무원의 인권에 관한 소양과 인권의식을 함양함으로써 인권침해 사건 사전 예방
- (인권감수성훈련) 법무부 소속 검찰·교정·보호·출입국 직렬 공무원을 대상으로 현장

경험이 풍부한 직렬별 인권강사들을 초빙하여 인권에 대한 이해, 차별의 극복, 인권실천계획 등을 내용으로 한 인권국 자체개발 교재로 2박 3일간 합숙 교육 진행

- (1:1 맞춤형 인권프로그램) 검사·검찰수사관을 대상으로 피의자 역할 배우와 모의 피의자신문 진행과정을 영상녹화 후 커뮤니케이션 전문가의 피드백을 받고 수사 시 인권침해적 언동·태도를 개선하여, 검사 및 수사관의 인권의식을 함양하는 1일 과정 교육
- (외부 인권강사 기관방문) 법무부 소속 전 직렬 공무원 중 일선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학계·언론계·법조계 등 인사 중에 위촉된 외부 인권강사단에 의한 기관방문 교육으로, 학계·시민사회의 선진적 인권의식을 법무행정 실무에 접목하는 1일 과정 교육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정부조직법 제35 제1항,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의2 제2항 제12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조의2 제6항, 세계인권선언 제26조 제2항, 고문방지협약 제10조, 사회권규약 제13조 제1항

② 추진경위

- 2006. 5. 법무부의 정부 내 인권옹호 주무부처로서의 위상을 재정립하기 위해 인권국 설립
- 2007. 5. 확정·발표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서 법무행정 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은 주요 이행과제 중 하나로, 법집행과정에서 빈발하는 인권침해 시비를 사전 예방하여 인권친화적 법무행정을 구현하고 국민의 편익증진과 국가경쟁력 도모 위해 사업 실시
- 법집행 작용의 현실과 법무행정 공무원의 직무 특성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실무 적합성 높은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속적 인권교육 시행 필요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08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99	214	204	191	192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법무부 인권국 인권조사과
- 사업 수혜자 : 법무행정·집행 관련 공무원 및 피의자, 수용자, 피해자 등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없음

3) '27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인권감수성훈련

: ('26) 157만원 → ('27) 106백만원(△51백만원)

ㅇ 2026년도 예산 및 2027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6년 예산		'27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58	○ **인권감수성훈련 : 157백만원** 가. 인권감수성훈련 강사료 6.8백만원 ・ 3회×1.2백만원 + 8회×0.4백만원 = 6.8백만원 나. 교재인쇄, 보조자료 구입 등 기타 비용 11.2백만원 ・ 24회×0.47백만원 = 11.2백만원 다. 특근매식비 4백만원 ・ 4명×0.009백만원×105일 = 4백만원 라. 강의실 및 숙소 임차료 98백만원 ・ 20회×5.09백만원+4회×1.6백만원. = 98백만원 바. 내부강사, 운영진 여비 36백만원 ・ 24회×0.19백만원×8명 = 36백만원	158	○ **인권감수성훈련 : 106백만원** 가. 인권감수성훈련 강사료 5백만원 ・ 2회×1백만원 + 8회×0.4백만원 = 5백만원 나. 교재인쇄, 보조자료 구입 등 기타 비용 8백만원 ・ 22회×0.36백만원 = 8백만원 다. 특근매식비 2백만원 ・ 4명×0.009백만원×55일 = 2백만원 라. 인권감수성훈련 임차료 65백만원 ・ 18회×3.3백만원+4회×1.4백만원. = 65백만원 마. 내부강사, 운영진 여비 26백만원 ・ 22회×0.15백만원×8명 = 26백만원

② 1:1 맞춤형 교육

: ('26) 23백만원 → ('27) 13백만원(△10백만원)

ㅇ 2026년도 예산 및 2027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6년 예산		'27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23	○ **1:1 맞춤형 교육 : 23백만원** 가. 외부강사료 22.8백만원 ・ 12회×1.8백만원 = 21.8백만원 나. 보조자료 구입·인쇄비 등 기타 비용 1.2백만원 ・ 12회×0.1백만원 = 1.2백만원	0	○ **1:1 맞춤형 교육 : 13백만원** 가. 외부강사료 12.6백만원 ・ 7회×1.8백만원 = 12.6백만원 나. 보조자료 구입·인쇄비 등 기타 비용 0.7백만원 ・ 7회×0.1백만원 = 0.7백만원

③ 외부강사 기관방문 교육

: ('26) 12백만원 → ('27) 12백만원(전년 동)

ㅇ 2026년도 예산 및 2027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6년 예산		'27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2	○ **외부강사 기관방문 교육 : 12백만원** 가. 외부강사료 12백만원 · 33회×0.36백만원 = 12백만원	9	○ **외부강사 기관방문 교육 : 12백만원** 가. 외부강사료 12백만원 · 33회×0.36백만원 = 12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2~'25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사항 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인권감수성훈련 ·내부강사 역량강화 과정(4회, 42명) ·인권감수성교육(14회/279명) - 1:1 맞춤형 교육(15회, 153명) - 외부강사에 의한 기관방문 인권교육(43회, 1,703명)
2023	- 인권감수성훈련 ·내부강사 역량강화 과정(6회, 119명) ·인권감수성교육(19회/470명) - 1:1 맞춤형 교육(16회, 166명) - 외부강사에 의한 기관방문 인권교육(33회, 1,544명)
2024	- 인권감수성훈련 ·내부강사 역량강화 과정(5회, 100명) ·인권감수성교육(19회/516명) - 1:1 맞춤형 교육(13회, 155명) - 외부강사에 의한 기관방문 인권교육(39회, 1,830명)
2025	- 인권감수성훈련 ·내부강사 역량강화 과정(5회, 79명) ·인권감수성교육(19회/463명) - 1:1 맞춤형 교육(13회, 136명) - 외부강사에 의한 기관방문 인권교육(35회, 1,207명)

③ 향후('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인권친화적 법무행정 구현을 통해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민·형사상 분쟁을 방지하고 행정비용을 절감
- 인권감수성훈련, 1:1 맞춤형·체험형 인권프로그램, 외부강사 기관방문 교육 등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해 전체 법무·검찰 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 실시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사항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인권감수성훈련

검찰·교정·보호·출입국 각 직렬 주무부서를 통해 교육대상자 선발(20명) → 교육대상자 사전설문조사 → 직렬별 내부강사에 의한 교육실시 → 교육대상자 사후설문조사

○ 1:1 맞춤형·체험형 교육

교육장소 협조의뢰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 대검찰청을 통해 교육대상자 선발 → (오전) 모의 피의자신문 과정 영상녹화 → (오후) 외부 교수 초빙해 조사 과정에 대한 피드백 실시 → 교육대상자 설문조사

○ 외부강사 기관방문 교육

일선기관 교육 협조의뢰 → 외부강사와 일선기관 연결 → 외부강사 방문교육 실시 → 교육시행 보고서제출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5	'26	'27	'28	'29	'30
'25~'29	191	192	204	204	204	
'26~'30		192	204	214	224	234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계획대비 실적이 저조한 측면이 있으니 내실있는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용으로 교육대상 인원 확대(법사위, 22결산)
- 관서운영경비를 활용한 임차료 분할집행 개선(법사위, 23결산)
- 출장자외 국내여비 지급 부적정 개선 필요(법사위, 23결산)

2) 감사원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 해당없음

3) 자체평가 : 해당없음

4)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 해당없음

5)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2023년 : 계획 대비 실적 충족, 인권감수성 훈련 교재개편 및 강사 양성 프로그램을 개선
- 2024년 : · 인권감수성훈련 임차료의 경우 500만원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관서운영경비로 집행하지 않고 통상절차에 따라 집행 지출관이 집행하도록 개선함
· 출장자 외 국내여비(교육생 식비) 예산을 임차료 예산으로 비목 변경하여 집행하도록 개선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핵심사업인 '인권감수성훈련' 내실화**
- 법무부 인권교육의 핵심은 개개인의 인권 마인드를 변화시키기 위한 인권감수성 훈련으로서 2박 3일 과정의 체험 및 자기 주도적 참여 학습임
- 인권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인권교육은 지식전달을 위주로 하는 기존의 강의식 교육보다는 대화, 토론, 역할극 같은 방법을 이용한 참여·체험을 통해 이루어지는 인권감수성 교육이 효과적임
- 전체 법무·검찰 공무원에 대한 인권감수성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직렬별 강사를 지속적으로 추가 양성하고, 정기적인 보수교육 과정을 편성해 교육의 질을 제고하여 인권교육의 효율성 및 직무적합성을 제고할 예정

□ **'1:1 맞춤형·체험형 인권교육' 지속 실시**
- 최초 1:1 맞춤형·체험형 인권프로그램은 교육대상 검사(3~15년차)를 대상으로 잘못된 언행, 습관 등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프로그램임
- 1:1 맞춤형 교육을 더욱 확산시키기 위해 신규 임용검사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고, 검찰수사관 대상 1:1 맞춤형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

□ **'외부강사 기관방문교육' 지속 실시**
- 학계·언론계·법조계 등 인사 중에 외부 인권강사를 위촉, 외부 인권강사단에 의한 기관방문 교육으로 선진적 인권의식을 법무행정 실무에 접목하는 교육임
- 외부 인권강사 홍보 및 기관방문 독려, 비대면 교육 활성화 등 집행 실적 목표 달성 노력 예정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사항 없음

12) 부처 건의사항 : 해당사항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214	△15	199	-	-	-	199	153	76.9	76.9	-	46
2023	214	-	214	-	-	-	214	212	99.2	99.2	-	2
2024	204	-	204	-	-	-	204	188	92.2	92.2	-	16
2025	191	-	191	-	-	-	191	173	90.6	90.6	-	18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 해당사항 없음

2) 주요 결산사항

□ 2022년~2025년 결산사항

2022	불용 사유 :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강사료 및 임차료 등 불용 발생
2023	전액 집행
2024	불용사유 : 예산절감을 위하여 강사 및 운영진 숙박, 출장 최소화
2025	불용사유 : 예산절감을 위해 강사, 운영진 출장 및 숙박 최소화, 수용비 절감

□ 2024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2024. 9. 국내여비 7백만원을 임차료로 전용

(국회 법사위 : '국내여비 집행 부적정 집행 지적'에 따라)

□ 2024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사항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 해당사항 없음

사 업 명
아동인권 증진 (1133-30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법무부	인권국	일반회계	020	302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33	302
명칭	인권활동	인권증진	아동인권 증진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아동인권 증진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인권국	차경자	이우람	김소영
		여성아동인권과	(02)2110-3139	(02)2110-3852	(02)2110-4457
	사업시행주체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년 결산	2026년 예산		2027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요구안	조정안(B)		(B-A)/A
아동인권 증진	240	245	-	345	308	63	25.7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25					2026							2027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26.7. 기준)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245	245	240	-	5	245	245	181	245	181	-	-	308
· 아동학대 사건관리 회의 지원	28	28	24	-	4	28	28	9	28	9	-	-	18
· 아동인권 증진 교육 및 홍보	197	197	196	-	1	197	197	152	197	152	-	-	170
· 아동인권 증진 연구	20	20	20	-	-	20	20	20	20	20	-	-	20
· 범죄피해아동 사법지원	-	-	-	-	-	-	-	-	-	-	-	-	100
○ 비목별 분류(합계)	245	245	240	-	5	245	245	181	245	181	-	-	308
· 일 반 수 용 비 (210-01)	155	132	127	-	5	155	50	19	50	19	-	-	243
· 임 차 료 (210-07)	-	23	23	-	-	-	21	21	21	21	-	-	-
· 일 반 용 역 비 (210-14)	70	70	70	-	-	70	154	121	154	121	-	-	45
· 정 책 연 구 비 (260-01)	20	20	20	-	-	20	20	20	20	20	-	-	20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245	245	240	-	5	245	245	2	245	241	-	-	308
· 아동학대 사건관리 회의 지원	28	28	24	-	4	28	28	24	28	24	-	-	18
- 일 반 수 용 비 (210-01)	28	28	24	-	4	28	28	24	28	24	-	-	18
· 아동인권 증진 교육 및 홍보	197	197	196	-	1	197	197	196	197	197	-	-	170
- 일 반 수 용 비 (210-01)	127	104	103	-	1	127	104	103	127	104	-	-	125
- 임 차 료 (210-07)	-	23	23	-	-	-	23	23	-	23	-	-	-

	2025					2026							2027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26.7. 기준)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일 반 용 역 비 (210-14)	70	70	70	-	-	70	70	70	70	70	-	-	45
· 아동인권 증진 연구	20	20	20	-	-	20	20	20	20	20	-	-	20
- 정 책 연 구 비 (260-01)	20	20	20	-	-	20	20	20	20	20	-	-	20
· 범죄피해아동 사법지원	-	-	-	-	-	-	-	-	-	-	-	-	100
- 일 반 수 용 비 (210-01)	-	-	-	-	-	-	-	-	-	-	-	-	10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아동인권 증진) 아동학대 대응인력 역량 강화 교육, 사건관리회의 지원, 아동인권증진 연구 및 홍보 등을 통해 사법영역에서의 아동의 권익 보장 및 인권 증진 도모
- (아동학대 사건관리회의 지원) 검사가 수사과정에서 아동학대사건의 적정한 처분 및 피해아동에 대한 지원 등의 결정을 위하여 의사, 사회복지공무원 등 지역 내 아동학대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는 '아동학대 사건관리회의'를 지원·관리
- (아동인권증진 인식개선 홍보 및 교육)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사법경찰관 등 아동학대 대응인력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아동학대방지 및 아동학대 대처 방안, 사법절차상 아동보호제도 등에 대한 대국민 홍보 추진
- (아동인권 증진 연구) 사법영역에서의 아동인권 증진을 위한 정책연구 실시
- (범죄피해아동 사법지원) 범죄 피해아동의 형사영역 외의 보호를 위해 아동 법률조력 전문인력에게 신속 연계하는 '아동 법률생태계' 구축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55조(아동학대전담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 법무부장관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사법경찰관리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종사자에게 아동학대사건의 조사와 사례관리에 필요한 전문

지식, 이 법에서 정한 절차, 관련 법제도,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아동의 인권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조사방법 등에 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4조(사건관리회의) ①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기 위해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법 제36조제5항 본문에 따른 수탁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의 장, 사법경찰관, 보호관찰관, 의사, 변호사 및 「아동복지법」 제13조에 따른 아동복지전담공무원 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사건관리회의(이하 이 조에서 "회의"라 한다)를 열어 의견 청취 등을 할 수 있다.

② 추진경위

- 중대 아동학대 범죄의 지속적 발생 이후 단일 부처로는 효과적인 아동학대 대응이 어렵다는 판단하에 2012년 보건복지부와 법무부는 복지영역과 사법영역으로 소관사항을 나누어 협력하기로 하고 「아동복지법」 개정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을 함께 추진하여 '13. 12. 31. 두 법안 국회 통과
- '14. 2. 법무부·보건복지부·교육부·경찰청 등 범부처 합동 「아동학대 예방 피해아동 조기발견·보호 종합 대책」 발표
- '14. 9. 시행 개정안에 따라 법무부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에 대한 현장조치·수사·재판·아동보호절차 등 전문지식 교육 실시
- '16. 3. 아동학대를 근본적으로 예방·대응하기 위한 법무부·복지부·교육부·여가부·경찰청 등 5개 부처 공동 「범정부 아동학대 방지 종합대책」 마련
- '17. 12.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명령 상담·치료 위탁을 신설하고 보호처분·이수명령을 불이행한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벌금형을 상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 '20. 3.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조사권한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 '21. 1. 아동친화적 환경에서의 아동학대 조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 '21. 2. '아동인권보호 특별추진단'을 설치하고, 아동학대살해죄 신설·피해아동의 국선변호사 및 국선변호인 선정 의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 '23. 3. 보건복지부와 아동학대 대응인력에 대한 공동 교육을 실시하여 교육대상자의 교육 편의성 및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교육 대상자를 아동학대 전담검사, 전담수사관 등으로 확대

- ’24. 12. 아동학대살해미수죄 신설 및 피해아동 보호조치 실효성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개정
- ’25. 6. 아동학대사건관리회의 개최 사유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 ’25. 11. 임시조치 불응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를 신설하는「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개정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5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3	2024	2025	2026	2027(안)
사업비	265	245	245	245	308

- 기타: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법무부
- 사업 수혜자 : 18세 미만의 아동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7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아동학대 사건관리회의 지원
: (’26) 28백만원 → (’27) 18백만원, △10백만원
- (요구) 실적 감소 추세 및 변화하는 형사사법체계에 대비하여 선제적 감액 편성
- (산출) 84회 × 0.33백만원(2026년) → 54.5회 × 0.33백만원(2027년)

② 아동인권 증진 교육 및 홍보
: (’26) 197백만원 → (’27) 170백만원, △27백만원
- (요구) 아동학대 사망사건 방지·대응 등 아동 권익 보호 중심의 사업 개편을 위해 교육, 홍보 효율화 및 예산 절감
- (산출) 교육 소요비용 122백만원(2026년) → 120백만원(2027년)
  아동인권증진 홍보물 인쇄비 5백만원(2026년) → 5백만원(2027년)
  아동인권증진 홍보 동영상 제작(송출) 70백만원(2026년) → 45백만원(2027년)

③ 아동인권 증진 연구
: (’26) 20백만원 → (’27) 20백만원, 전년동
- (요구)「외국인아동출생등록법 」제정 추진에 따른 하위법령 제정안 등 아동인권 증진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를 실시하기 위해 최소 전년 수준의 예산 요구
- (산출) 정책연구비 20백만원(2026년) → 20백만원(2027년)

④ **범죄피해아동 사법지원**

: ('26) 0 → ('27) 100백만원, 신규

- (요구) 아동 사법지원에 대한 변호사 수당 및 공익법률활동 활성화를 위한 설명회 개최 비용 요구
- (산출) 수당 80백만원 + 공익법률활동 설명회 20백만원

ㅇ 2026년도 예산 및 2027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6년 예산		2027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245	○ **일반수용비(210-01) : 155,000천원(전년동)** 가. 아동학대 사건관리회의 지원 (28,000천원) ・ 회의 개최비 지원 : 330천원×84회=28,000천원 나. 아동인권 증진 교육(122,000천원) ・ 교육진행비(강사료 및 대관료 등) : 186천원×655명 다. 아동인권 증진 홍보물 인쇄(5,000천원) ・ 홍보물 인쇄비 : 5,000천원×1회=5,000천원 ○ **일반용역비(210-14) : 7,000천원** 가. 아동인권 증진 홍보 동영상 제작 등(7,000천원) ・동영상 제작 및 송출 : 3,500천원×2편=7,000천원 ○ **정책연구비(260-01) : 2,000천원** 가. 아동인권 증진 연구(2,000천원) ・ 연구용역비 : 2,000천원×1회=2,000천원	308	○ **일반수용비(210-01) : 243,000천원** 가. 아동학대 사건관리회의 지원 (18,000천원) ・ 회의 개최비 지원 : 330천원×54.5회=28,000천원 나. 아동인권 증진 교육(120,000천원) ・ 교육진행비(강사료 및 대관료 등) : 186천원×645명 다. 아동인권 증진 홍보물 인쇄(5,000천원) ・ 홍보물 인쇄비 : 5,000천원×1회=5,000천원 라. 범죄피해아동 사법지원(100,000천원) ・ 사법지원 변호사 수당 80백만원 + 공익법률활동 설명회 20백만원 ○ **일반용역비(210-14) : 4,500천원** 가. 아동인권 증진 홍보 동영상 제작 등(4,500천원) ・동영상 제작 및 송출 : 2,250천원×2편=4,500천원 ○ **정책연구비(260-01) : 2,000천원** 가. 아동인권 증진 연구(2,000천원) ・ 연구용역비 : 2,000천원×1회=2,000천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3~2027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3	- 아동학대 사건관리회의 지원 : 72회 - 아동학대 예방 홍보 동영상 제작, 온라인(애드패커, 유튜브) 송출 - 교육기관내 아동학대사건 사례·판례분석, 단계별 아동학대 대응 방안 수립에 대한 연구 - 아동학대 대응억량 강화교육 실시 : 754명
2024	- 아동학대 사건관리회의 지원 : 51회 - 아동학대 예방 홍보 동영상 온라인(유튜브) 송출 - 아동학대 대응역량 강화교육 실시 : 800명 수료 - 아동학대의 효과적인 예방을 위한 진술조력인 업무매뉴얼 개정 연구
2025	- 아동학대 사건관리회의 지원 : 52회 - 아동학대 예방 홍보 동영상 온라인(유튜브) 송출 - 아동학대의 효과적 대응을 위한 피해자국선변호사 제도 관련 연구 - 아동학대 대응역량 강화교육 실시 : 817명 수료
2026	- 아동학대 사건관리회의 지원 : 12회 ('26.2분기 집계 기준, 전체 실적은 '27.1월 취합 예정) - 아동학대 예방 홍보 동영상 온라인(유튜브) 송출 - 아동학대의 효과적 대응을 위한 국선변호 매뉴얼 설계 - 아동학대 대응역량 강화교육 실시 : 474명 수료 ('26.6월 집계 기준, 전체 실적은 '26.11월 취합 예정)

③ 향후(2027년도 이후) 기대효과

- 사건관리회의의 경우 회의 개최 필요성을 고려하여 최근 3년간 평균 실시 횟수를 목표로 설정, 지속적인 활성화 추진
- 아동학대 대응인력의 권역별 합동교육을 지속 실시하여 아동학대전담공무원,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 등의 전문성을 향상하고 대응주체 간 협력체계 구축 지원
- 아동학대 예방 홍보(홍보물 인쇄·배포 1회, 동영상 제작 및 송출 등) 및 정책연구 추진(연 1회)를 통한 아동인권 증진 방안 지속적으로 발굴
- 범죄 피해를 입은 아동을 법률조력 전문인력에게 신속 연계함으로써, 범죄 피해 아동의 형사 외 영역까지 보호하는 '아동 법률생태계' 구축에 기여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아동학대 사건관리회의) 검사가 아동학대 사건을 적정하게 처분하고 피해아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의사 등 지역 내 아동학대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는 검찰청의 사건관리회의를 지원·관리
  ※ 근거법령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4조

<아동학대 사건관리회의>

예산배정	→	회의 진행	→	실적 보고	→	실적 및 집행내역 관리
법무부 ⇩ 각급 검찰청		각급 검찰청		각급 검찰청 ⇩ 법무부		법무부

- (아동인권 증진 교육 및 홍보) 아동인권 증진 홍보 동영상 제작·송출, 홍보물 인쇄·배포,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및 사법경찰관리 등 아동학대 대응인력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교육 실시

<아동인권 증진 교육>

교육계획 수립	→	강사섭외 등 교육진행	→	결과보고 및 대금지급
법무부		법무부		법무부

<아동인권 증진 홍보>

홍보계획 수립	→	계약절차 진행	→	홍보물 제작 등 진행	→	대금 지급
법무부		법무부		의뢰기관		법무부

- (아동인권 증진 연구) 사법영역에서의 아동인권 증진 관련 연구주제·연구자 선정, 연구결과 및 시사점을 정책에 반영

<아동인권 증진 연구>

연구주제 수립	→	계약절차 진행	→	연구 진행	→	대금 지급 및 결과활용
법무부		법무부		연구 의뢰기관		법무부

- (범죄피해아동 사법지원)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신청을 통해 지원 대상 아동을 선정하고 공익 변호사를 통한 종합적인 사법 지원 제공, 지원 내역 및 증빙자료 검토를 통해 공익변호사에 지원 수당 지급

<범죄피해아동 사법지원>

대상자 선정	→	아동 사법지원 및 수당청구	→	지원 결과 분석 및 수당 지급
법무부		공익변호사		법무부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25~2029	245	245	233	228	221	
2026~2030		245	365	387	387	387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아동학대 사건관리회의 개최감소 원인을 분석하고 운영지침 보강, 예산 불용 방지, 회의실적 관리를 통한 실효성 있는 자문체계를 확립할 수 있도록 하고, 회의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법사위, '24결산)

2) 감사원 감사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 해당없음

3) 자체평가·감사 : 해당없음

4)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 해당없음

5)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관계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회의 개최를 독려하고 회의의 원활한 개최를 위한 참고자료를 제작·배포하는 등 회의 개최 실적 및 예산 집행 개선할 예정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아동학대 사건관리회의 지원) 피해아동 지원 및 가해자 적정 처분을 위해 사건관리회의 예산을 지원하고 실적을 관리
- (아동학대 대응역량 강화 교육)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사법경찰관리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아동학대 대응역량 강화 교육을 보건복지부와 합동으로 실시하여 교육 대상자의 편의성을 증대시키는 등 효율적인 교육 추진 예정
- (아동인권 증진 홍보 동영상 제작 및 홍보물 인쇄)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지원제도 관련 홍보물 배포 등 아동학대 예방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환기하고 아동학대 신고의무 등을 대국민 대상 홍보 추진
- (아동인권 증진 연구) 법무·인권정책 측면에서 선진국 수준의 아동학대 대응 체계를 갖추기 위한 시스템 개선방안, 대응인력 전문성 제고방안 등 정책연구를 진행
- (범죄피해아동 사법지원) 공익변호사 명단 구성, 아동 지원 수당 지급, 지역별 세미나 개최를 통한 전국적 사업 체계 구축 예정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2) 해당사업에 대한 부처 자체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3) 부처 건의사항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258	△10	248	-	-	-	248	246	99.1	99.1		2
2023	265	-	265	-	-	-	265	256	96.6	96.6		9
2024	245	-	245	-	-	-	245	241	98.4	98.4	-	4
2025	245	-	245	-	-	-	245	240	98.0	98.0	-	5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 해당없음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 이월 사유 및 불용 사유(집행부진사유) : 사건관리회의 지원예산 집행잔액(약 17만원), 교육비 집행잔액(약 70만원)
2023	- 이월 사유 및 불용 사유(집행부진사유) : 사건관리회의 지원예산 집행잔액 (약 93만원), 교육비 집행잔액 (약 86만원)
2024	- 집행잔액 불용
2025	- 집행잔액 불용 - 아동학대 사건관리회의 지원 효율적 예산 집행 및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2024회계연도 법사위 결산 지적)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

□ 2025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 해당없음

사 업 명
국제인권역량강화 (1139-3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법무부	인권국	일반회계	020	022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1139	300
명칭	법무및검찰행정지원	국제인권증진	국제인권역량강화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6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국제인권 역량강화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인권국	노일석	장현주	
		인권정책과	02-2110-3214	02-2110-3782	
	사업시행주체	법무부	인권국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년 결산	2026년 예산		2027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요구안	조정안(B)		(B-A)/A
국제인권역량강화	226	266	266	241	241	25	△9.4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25					2026(2026.7월말)							2027 예산안
	예산액(추경)	예산현액	집행액[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현액	집행액[실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예상액	불용예상액	
									예산현액	집행액[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246	246	226	-	-	266	266	87	266	87	-	-	241
· 전문위원 및 영문에디터 채용	175	175	154	-	-	195	195	84	195	84	-	-	205
· 국제인권 유관기관 연계강화	36	36	36	-	-	36	36	3	36	3	-	-	36
· 인권정책개선연구	35	35	35	-	-	35	35	-	35	-	-	-	-
○ 비목별 분류(합계)	246	246	226	-	-	266	266	87	266	87	-	-	241
· 상용임금(110-03)	145	145	128	-	-	161	161	73	161	73	-	-	169
· 일반수용비(210-01)	6	6	6	-	-	6	6	3	6	3	-	-	6
· 복리후생비(210-02)	2	2	2	-	-	2	2	1	2	1	-	-	2
· 국외업무여비(220-02)	30	30	30	-	-	30	30	-	30	-	-	-	30
· 정책연구비(260-02)	35	35	35	-	-	35	35	-	35	-	-	-	-
· 고용부담금(320-09)	28	28	26	-	-	32	32	10	32	10	-	-	34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246	246	226	-	-	266	266	87	266	87	-	-	241
· 전문위원 및 영문에디터 채용	175	175	154	-	-	195	195	84	195	84	-	-	205
- 상용임금(110-03)	145	145	128	-	-	161	161	73	161	73	-	-	169
- 복리후생비(210-12)	2	2	2	-	-	2	2	1	2	1	-	-	2
- 고용부담금(320-09)	28	28	26	-	-	32	32	10	32	10	-	-	34
· 국제인권 유관기관 연계강화	36	36	36	-	-	36	36	3	36	3	-	-	36
- 일반수용비(210-01)	6	6	6	-	-	6	6	3	6	3	-	-	6
- 국외업무여비(220-02)	30	30	30	-	-	30	30	-	30	-	-	-	30
· 인권정책개선연구	35	35	35	-	-	35	35	-	35	-	-	-	-
- 정책연구비(260-02)	35	35	35	-	-	35	35	-	35	-	-	-	-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국제인권역량강화) 유엔의 대한민국 정책, 법제에 관한 자료 제출 요구 증가, 우리 국민의 국제인권기구 진정사건 증가 등 국제인권기구의 중요성 증대에 부응하여, 정부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국제인권기준에 맞는 국내인권정책 발전을 도모
- (전문위원 및 영문에디터 채용) 동 내역사업은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인권기구에 답변서 또는 보고서 제출 시 국제인권법의 법리와 선례에 근거해 정확하고 전문적인 답변을 내놓을 수 있도록, 해당 분야 전문성을 가진 민간근로자 2인 및 법률문서 번역역량을 갖춘 민간근로자 1인을 공개 채용하는 것임
- (국제인권 유관기관 연계강화) 동 내역사업은 ①정부가 국제인권기구에 답변서 또는 보고서 제출 시 국제기구가 요구하는 기준에 맞게 시민사회 의견수렴 및 전문가의 자문의견을 듣고, ②우리나라가 가입한 국제인권협약기구의 심의 참가 의무에 따라 현지 심의에 정부대표단을 구성해 참석하며, ③인권이사회·포럼 참석 등으로 최신 인권 이슈를 습득하기 위한 것임
- (인권정책개선 연구) 동 내역사업은 우리 정부가 비준한 국제인권조약과 국내 법체계 및 정책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하여 연구용역을 통해 국내 인권정책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것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

- **「정부조직법」 제35조 제1항** '법무부장관은 검찰·행형·인권옹호·출입국관리 그밖에 법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의2 제2항 제1호, 제3호, 제5호**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가 인권정책 수립·총괄·조정, 3. 인권 관련 국제조약·법령에 관한 조사·연구 및 행사·홍보에 관한 사항, 4. 국제인권규약에 따른 정부보고서 및 답변서의 작성'
- **국가인권정책협의회 규정 (대통령훈령 제383호) 제3조** '① 협의회의 의장은 법무부 장관이 되며, 위원은 기획재정부·교육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외교부·통일부·법무부·국방부·

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환경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 및 국무조정실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이 된다.'

-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40조** '1. 이 규약의 당사국은 규약에서 인정된 권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와 그러한 권리를 향유함에 있어서 성취된 진전사항에 관한 보고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할 것을 약속한다. 4. 위원회는 이 규약의 당사국에 의하여 제출된 보고서를 검토한다.'
-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의정서」 제5조** '1. 위원회는 개인 및 관련 당사국으로부터 입수된 모든 서면정보를 참고하여, 이 의정서에 따라 접수된 진정을 심리한다.'
-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6조** '1. 이 규약의 당사국은 규약에서 인정된 권리의 준수를 실현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와 성취된 진전사항에 관한 보고서를 이 부의 규정에 따라 제출할 것을 약속한다. 2. (a) 모든 보고서는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제출된다. 사무총장은 이 규약의 규정에 따라, 경제사회이사회가 심의할 수 있도록 보고서 사본을 동 이사회에 송부한다.'
-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제19조** '1. 당사국은 이 협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에 관하여 이 협약이 자기 나라에 대하여 발효한 후 1년 안에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제연합 사무총장을 통하여 위원회에 제출한다. 그 이후에 당사국은 새로이 취한 조치에 관하여 매 4년마다 추가보고서를 제출하며, 위원회가 요청하는 그 밖의 보고서를 제출한다. 3. 위원회는 각 보고서를 검토하고, 보고서에 관하여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일반적인 의견제시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의견제시를 관련 당사국에 송부한다.'
-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 제29조** '1. 각 당사국은 자국에 대하여 이 협약이 발효한 후 2년 내에 이 협약상 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취한 조치에 관한 보고서를 국제연합 사무총장을 통하여 위원회에 제출한다.'

② 추진경위

- 대한민국은 '78년부터 현재까지 8개의 주요 국제인권협약에 가입하였으며 법무부는 이 중 4개 협약(시민적·정치적 권리에 대한 국제규약,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 이행에 대한 총괄부처임
- 위 4개 협약은 국가보고서 작성·제출, 국내인권상황 심의 수검 의무를 규정하며,

특히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대한 국제규약은 선택의정서에 따른 개인진정 심리 절차를 둠

- 법무부는 그 외 유엔인권이사회 특별절차 등 기타 인권기구의 조사·질의에 대해서도 위 4개 협약 관련 사안에 대한 대응의 주무부처임
- 이에 국제인권업무의 전문성과 효과성을 강화하여 국제사회에 국내인권상황을 정확히 전달하고, 국제인권에 대한 연구 및 검토를 통해 국내인권정책의 수립 및 조정에 활용할 필요가 증가함에 따라 '17년 '국제인권역량강화' 사업 신설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17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3	2024	2025	2026	2027(안)
사업비	226	241	246	266	241

- 기타: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법무부 인권국
- 사업 수혜자 : 법무부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7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

① 전문위원 2인 및 영문에디터 1인 인건비
: ('26) 195백만원 → ('27안) 205백만원, +10백만원
- (요구) 국제인권 업무 수행을 위한 전문인력 인건비(처우개선 분) 증액
- (산출) 상용임금 161백만원, 복리후생비 2백만원, 고용부담금 32백만원(2026년)
→ 상용임금 169백만원, 복리후생비 2백만원, 고용부담금 34백만원(2027년)

② 국제인권 유관기관 연계 강화
: ('26) 36백만원 → ('27안) 36백만원, 전년동
- (요구) 시민사회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등 운영비 6백만원 최소 전년 수준의 예산 요구
우리 정부가 가입한 국제인권조약 심의 참석 의무 수행, 국제인권포럼 등 참석 필요 최소 전년 수준의 예산 요구
- (산출) 국제인권 관련 회의 및 간담회 운영비 및 참석 수당 6백만원 + 국외업무여비 30백만원(2026년) →
국제인권 관련 회의 및 간담회 운영비 및 참석 수당 6백만원 + 국외업무여비 30백만원(2027년)

③ 인권정책개선 연구
: ('26) 35백만원 → ('27안) 0원, △35백만원 (지출구조조정 반영)

ㅇ 2026년도 예산 및 2027년도 예산안 산출 세부내역 비교

'26년 예산		'27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266	○ **상용임금(110-03) : 165,124천원** 가. 전문위원 및 영문에디터 3명 임금 등 (156,084) 나. 명절상여금 (13,258) ・ 2,209,639원x3명x2회 다. 급식비 (5,040) ・ 140,000원x3명x12월 라. 계수조정 (700) ○ **복리후생비(210-12) : 1,500천원** 가. 전문위원 및 영문에디터 맞춤형 복지 ・ 3명x500,000원 ○ **고용부담금(320-09) : 28,372원** 가. 전문위원 및 영문에디터 3명 고용부담금(16,682) 나. 퇴직적립금(11,641) 다. 계수조정 (49) ○ **일반수용비(210-01) : 6,004천원** 가. 국제인권 관련 회의 및 간담회 운영비 및 참석 수당(6,004) ・ 4회x1,500,000원 ○ **국외업무여비(220-02) : 30,000천원** 가. UN국제인권규약 심의 참석(30,000) ・ 항공료 : (5,000,000원x1명)+(1,900,000원x5명) ・ 일비 : ($35x8일x1명)+($30×8일×5명) ・ 숙박비 : ($223x6일x1명)+($176×6일×5명) ・ 식비 : ($107x7일x1명)+($81×7일×5명) 나. 조정재원 (-62,160천원) ○ **정책연구비(260-02) : 35,000천원**	241	○ **상용임금(110-03) : 168,394천원** 가. 전문위원 및 영문에디터 3명 임금 등 (148,806) 나. 명절상여금 (13,828) ・ 2,304,653원x3명x2회 다. 급식비 (5,760) ・ 160,000원x3명x12월 ○ **복리후생비(210-12) : 1,800천원** 가. 전문위원 및 영문에디터 맞춤형 복지 ・ 3명x600,000원 ○ **고용부담금(320-09) : 33,864원** 가. 전문위원 및 영문에디터 3명 고용부담금(20,696) 나. 퇴직적립금(12,401) 다. 계수조정 (767) ○ **일반수용비(210-01) : 6,000천원** 가. 국제인권 관련 회의 및 간담회 운영비 및 참석 수당(6,000) ・ 4회x1,500,000원 ○ **국외업무여비(220-02) : 30,000천원** 가. UN국제인권규약 심의 참석(30,000) ・ 항공료 : (6,5,00,000원x1명)+(1,750,000원x4명) ・ 일비 : ($50x8일x1명)+($30×8일×4명) ・ 숙박비 : ($389x6일x1명)+($176×6일×4명) ・ 식비 : ($160x7일x1명)+($81×7일×4명) 나. 조정재원 (-34,940천원) ○ **정책연구비(260-02) : 0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3~2027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3	유엔 국가별 정례인권검토 제4차 심의 대응 및 정부대표단 총괄, 유엔 자유권규약 제5차 심의 대응 및 정부대표단 총괄, 유엔 사회권규약 제5차 국가보고서 작성 총괄, 유엔인권메커니즘 워크샵 개최, 국제기구·단체·협약기구 위원 등 면담, 유엔 특별절차 질의 대응 지원, 유엔 자유권위원회 개인진정 정부답변서 작성 및 제출, 유엔 강제실종방지협약 최초국가보고서 작성을 위한 기초연구 실시, 유엔 사회권규약 개인진정 결정례 연구 실시, 미 국무부 인권보고서 및 인신매매보고서 대응,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보고관 서면자료 제출 등
2024	유엔 고문방지협약 제6차 심의 대응 및 정부대표단 총괄,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 제9차 심의 및 개인진정 견해 관련 부내 대응 총괄, 유엔 자유권규약 제5차 최종견해에 대한 이행계획 점검, 유엔 자유권위원회 개인진정 정부 답변서 제출, 유엔 강제실종방지협약 최초국가보고서 작성 총괄, 제2회 유엔 인권매커니즘 워크샵 개최, 디지털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인권기반 접근 방안 연구 실시, 제13차 기업과 인권 포럼 참석, 제10차 초국적 기업과 인권 국제규범 실무그룹 회의 참석, 미 국무부 인권보고서 및 인신매매보고서 대응, 국제인권 논문 공모전 개최, 국제인권 카드뉴스 발간,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보고관 서면자료 제출 등
2025	유엔 인종차별철폐협약 제20-22차 심의 정부대표단 참석 및 부내 대응 총괄, 유엔 자유권위원회 개인진정 사건 의견서 제출, 유엔 강제실종방지협약 최초 국가보고서 제출, 제3회 유엔 인권매커니즘 워크샵 개최, 「기업 관련 인권 침해 사례에서의 구제 접근 안내서」 발간, 유엔 사회권규약 선택의정서 비준 촉구 결의안 관련 대응, 유엔 고문방지협약 제6차 국가보고서 심의 후속보고서 제출, 기업과 인권 플랫폼 구축 연구 실시, 미 국무부 인권보고서 및 인신매매보고서 대응, 국제인권 논문 공모전 개최, 국제인권 카드뉴스 발간,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보고관 서면자료 제출 등
2026	유엔 사회권규약 제5차 쟁점목록 답변서 제출, 유엔 인종차별철폐협약 제20-22차 심의 후속조치 현황 제출, 유엔 자유권위원회 개인진정 사건 답변서 제출, 유엔 자의적실무그룹 개인진정 사건 의견서 제출, 유엔 강제실종방지협약 제1차 쟁점목록 답변서 작성,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5차 심의 후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실적 제출,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 제9차 심의 후속보고서 제출,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제2-3차 심의 후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실적 제출, 제4회 유엔 인권매커니즘 워크샵 개최, 미 국무부 인권보고서 및 인신매매보고서 대응, 국제인권 카드 뉴스 발간, 해외진출기업 인권경영 실무협의회 개최,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보고관 서면자료 제출 등

③ 향후(2027년도 이후) 기대효과 :

- 국제인권조약에 따라 조약기구에 제출되는 대한민국 국가보고서 작성 및 심의에 대한 효과적 대응
- 국제인권규범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제인권조약기구 등의 서한 및 진정에 대한 정부 답변서 작성·제출
- 학계·시민사회와의 유기적 협력 강화로(자문·간담회·토론회 등) 국제인권규범과 국내 인권정책의 유기성 강화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국제인권 업무 집행 절차>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권고 등 접수	유엔에서 외교부를 통해 법무부로 전달
⇩	
대한민국 정부의 보고서·답변 등 작성	국제인권규범에 합치하는 답변이 작성되도록 부처간 협의 등 주도
⇩	
보고서에 대한 공청회 및 간담회 개최	**【 내역사업 ② 유관기관 연계 강화 】 유엔이 파트너로 인정하는 NGO 의견수렴, 국가인권위원회 소통 등**
⇩	
답변 내용 감수 및 영문 번역	**【 내역사업 ① 국제인권 전문인력 채용】 전문위원·에디터 등 내부 역량 활용**
⇩	
대한민국 정부 입장 제출 및 사후대응을 통한 국내 인권정책 개선	**【 내역사업 ② 유관기관 연계강화】 - 유엔 권고 수용을 위한 전문가 자문 및 부처간 협업** **【 내역사업 ① 국제인권 전문인력 채용】** **【 내역사업 ③ 인권정책개선 연구】 - 해외 제도, 사례 등 연구(전문위원) - 유엔 권고 및 기준에 따른 국내 인권 제도 정책 개선 도모**

점검 형태	주요 내용
국가별 정례인권검토 (UPR)	► **근거: 유엔총회 결의 60/251**
	► 모든 UN회원국에 대한 인권상황을 주기적으로 심사 ► 매 4.5년 마다 심의 ('17년 11월 우리나라 UPR 심의)
국제인권조약 이행 심사	► **근거: 대한민국이 비준한 국제인권규약상 명문규정** (예: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40조,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제19조 등)
	► 정기적으로(약 4년 주기) 우리나라가 비준한 인권조약의 이행에 관한 국가보고서 제출 ► 각 조약기구가 우리 정부 국가보고서에 대한 심의 실시
특별절차 방문조사	► **근거: 유엔인권이사회 결의** (예: 19년 한국을 조사한 사생활권 특별보고관은 인권이사회 결의 28/16)
	► 특별절차: 특정 인권주제 · 국가에 대한 인권상황을 조사 분석하여 UN에 보고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제도 ► 각 국가에 대해 방문조사를 실시하거나 서한(communication)을 송부, 각국의 인권상황에 대해 관련된 평가와 권고를 제출
개인진정절차	► **근거: 대한민국이 비준한 국제인권규약상 명문규정** (예: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선택의정서」,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 등)
	► 우리나라가 가입한 규약 또는 선택의정서에 근거하여, 개인이 국제인권기구에 특정 인권침해 사안 조사를 요구하는 절차 ► 진정이 접수되면, 당사국은 진정에 관한 의견서 제출 ► 국제인권기구는 사건에 대한 공식적 견해 및 권고 발표 ※ 양심적 병역거부, 탈북 여종업원 사건 등 국내 정치사회적 현안에 대한 개인진정이 다수 이루어져 왔으며, 최근 증가추세에 있음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25~2029	246	273	280	302	309	
2026~2030		266	234	229	221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해당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우리 정부의 인권상황 또는 정책현안에 대한 국제인권기구의 질의, 정보 제공 요청 등에 방어적·소극적 답변을 제출하는 것을 넘어 정부조직법 상 정부의 인권정책 총괄 사무를 실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대한민국의 국제인권법(협약) 이행 상황을 평가받는 심의에 참여하고, 국제인권규범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유엔 인권이사회 및 국제인권 관련 회의, 포럼 등에 대한민국 대표로 참석하여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적극 대변하고 국내 인권상황을 정확히 알림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2) 동 사업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 : 해당없음

13) 2026년도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 결과 및 후속 조치 현황

평가결과	성과평가 주요내용	조치결과
내역사업 즉시 폐지	- 연례적 정책연구용역	- 지출구조조정 반영: 내역사업 폐지(△35백만원)

14) 부처 건의사항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3	226	-	226	-	-	-	226	206	91.2	91.2	-	20
2024	241	-	241	-	-	-	241	207	85.8	85.8	-	34
2025	246	-	246	-	-	-	246	226	91.9	91.9	-	20
2026	266	-	266	-	-	-	266	87	32.7	32.7	-	-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 해당없음

2) 주요 결산사항

□ 2023~2026년 결산사항

2023	- 기존 인력 사직에 따른 인건비 불용 20백만원
2024	- 기존 인력 사직에 따른 인건비 등 불용 34백만원
2025	- 기존 인력 사직에 따른 인건비 등 불용 20백만원
2026	- 해당없음

□ 2026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

□ 2026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참고 **국제인권역량강화 사업 설명**

▢ 개요

○ 대한민국은 ’78년부터 현재까지 8개의 주요 국제인권협약에 가입, 법무부는 이 중 4개 협약(시민적·정치적 권리에 대한 국제규약,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 이행에 대한 총괄 부처임

○ 법무부는 그 외 유엔인권이사회의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UPR), 특별절차 등 국제인권기구의 조사·질의·정보제공 요청 등에 대응

○ 이에 국제인권업무의 전문성과 효과성을 강화하여 국제사회에 국내인권 상황을 정확히 전달하고, 국제인권에 대한 연구 및 검토를 통해 국내인권 정책의 수립 및 조정에 활용하기 위해 ‘17년 신설

▢ 내역사업

① 국제인권 전문인력 채용

- 국제인권 분야 및 통·번역 전문성을 가진 민간인력을 채용하여 업무의 전문성과 효과성을 강화

② 국제인권 유관기관 연계강화

- 유관기관(국가인권위원회, 시민단체, 국제기구, 주요 공관 등) 협의 및 협력 증가 요구에 따라 각종 행사(워크샵·면담·간담회·학술행사 등) 개최 및 참석

③ 인권정책개선 연구

- 우리 정부가 비준한 국제인권조약과 국내 법체계 및 정책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하여 연구용역을 통해 국내 인권정책 개선 방안을 도출

참고2 우리나라의 국제인권협약 국가보고서 심의 현황

가입협약(약칭)/보고서 제출 주기	보고서 심의 경과	소관 부처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사회권규약)/5년	1차 보고서: '93. 제출, '95. 심의 2차 보고서: '99. 제출, '01. 심의 3차 보고서: '07. 제출, '09. 심의 4차 보고서: '16. 제출, '17. 9. 심의 5차 보고서: '23. 제출, **'27년 심의 예정**	**법무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자유권규약)/4년	1차 보고서: '91. 제출, '92. 심의 2차 보고서: '97. 제출, '99. 심의 3차 보고서: '03. 제출, '06. 심의 4차 보고서: '13. 제출, '15. 심의 5차 보고서: '20. 제출, '23. 10. 심의	**법무부**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고문방지협약)/4년	1차 보고서: '96. 제출, '96. 심의 2차 보고서: '04. 제출, '06. 심의 3·4·5차 보고서: '16. 제출, '17. 5. 심의 6차 보고서: '21. 제출, '24. 7. 심의	**법무부**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강제실종방지협약)	최초 보고서: '25. 5. 제출, 심의 미정	**법무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아동권리협약)/5년	2차 보고서: '00. 제출, '03. 심의 3·4차 보고서: '08. 제출, '11. 심의 5·6차 보고서: '17. 제출, '19. 9. 심의 7차 보고서: '24. 제출 예정	**보건복지부**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여성차별철폐협약)/4년	5·6차 보고서: '06. 제출, '07. 심의 7차 보고서: '10. 제출, '11. 심의 8차 보고서: '15. 제출, '18. 2. 심의 9차 보고서: '22. 제출, '24. 5. 심의	**여성가족부**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인종차별철폐협약)/2년	12차 보고서: '02. 제출, '03. 심의 13·14차 보고서: '06. 제출, '07. 심의 15·16차 보고서: '12. 제출, '12. 심의 17·18·19차 보고서: '16. 제출, '18. 12. 심의 20·21·22차 보고서: '22. 제출, '25. 4. 심의	**외교부**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장애인권리협약)/4년	1차 보고서 : '11. 제출, '14. 심의 2·3차 보고서: '19. 제출, '22. 8. 심의	**보건복지부**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 보호에 관한 협약(이주노동자권리협약)	미가입	**미정**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4.5년	1차 보고서: '08. 제출·심의 2차 보고서: '12. 제출·심의 3차 보고서: '17. 제출·심의 4차 보고서: '22. 11. 제출, '23. 1. 심의	**법무부**

이민정책활동

사 업 명
국제협력 및 이민정책연구 (1231-3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		020	022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200	1231	300
명칭	이민정책활동	국제이민협력	국제협력 및 이민정책연구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6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국제협력 및 이민정책연구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	유성오	김원희	구본민
		출입국기획과	02-2110-4010	02-2110-4026	02-2110-4028
	사업시행주체	이민정책연구원	기획관리팀	팀장 이정훈	02-3788-8020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년 결산	2026년 예산		2027년		증감	
		본예산(A)	추경	요구안	조정안(B)	(B-A)	(B-A)/A
국제협력 및 이민정책연구	3,628	4,012	4,012	4,434	4,434	422	10.5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25					2026(2026.7월말)							2027 예산안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3,645	3,645	3,628	-	17	4,012	4,012	3,935	4,012	3,935	-	-	4,434
· 국제협력및정책개발지원	190	190	173	-	17	226	226	149	226	149	-	-	531
· 이민정책연구원운영	3,455	3,455	3,455 [3,414]	-	-	3,786	3,786	3,786 [3,786]	3,786	3,786 [3,786]	-	-	3,903
○ 비목별 분류(합계)	3,645	3,645	3,628	-	17	4,012	4,012	3,935	4,012	3,935	-	-	4,434
· 상용임금(110-03)	45	45	44	-	1	50	50	33	50	33	-	-	52
· 일반수용비(210-01)	-	-	-	-	-	-	-	-	-	-	-	-	11
· 복리후생비(210-12)	1	1	-	-	1	1	1	-	1	-	-	-	1
· 일반용역비(210-14)	38	38	38	-	-	38	38	19	38	19	-	-	319
· 국외업무여비(220-02)	91	91	75	-	16	91	91	73	91	73	-	-	101
· 사업추진비(240-01)	7	7	7	-	-	7	7	7	7	7	-	-	7
· 포상금(310-03)	-	-	-	-	-	30	30	15	30	15	-	-	30
· 민간경상보조(320-01)	3,455	3,455	3,455 [3,414]	-	-	3,786	3,786	3,786 [3,786]	3,786	3,786 [3,786]	-	-	3,903
· 고용부담금(320-09)	9	9	8	-	1	10	10	3	10	3	-	-	10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3,645	3,645	3,628	-	17	4,012	4,012	3,935	4,012	3,935	-	-	4,434
· 국제협력및정책개발지원	190	190	173	-	17	226	226	149	226	149	-	-	531
-상용임금(110-03)	45	45	44	-	1	50	50	33	50	33	-	-	52
-일반수용비(210-01)	-	-	-	-	-	-	-	-	-	-	-	-	11
-복리후생비(210-12)	1	1	-	-	1	1	1	-	1	-	-	-	1
-일반용역비(210-14)	38	38	38	-	-	38	38	19	38	19	-	-	319
-국외업무여비(220-02)	91	91	75	-	16	91	91	73	91	73	-	-	101
-사업추진비(240-01)	7	7	7	-	-	7	7	7	7	7	-	-	7
-포상금(310-03)	-	-	-	-	-	30	30	15	30	15	-	-	30
-고용부담금(320-09)	9	9	8	-	1	10	10	3	10	3	-	-	10
· 이민정책연구원운영	3,455	3,455	3,455 [3,414]	-	-	3,786	3,786	3,786 [3,786]	3,786	3,786 [3,786]	-	-	3,903
-민간경상보조(320-01)	3,455	3,455	3,455 [3,414]	-	-	3,786	3,786	3,786 [3,786]	3,786	3,786 [3,786]	-	-	3,903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세부사업 : 국제협력 및 이민정책연구) 미래 축소사회(저출산·고령화) 대비, 글로벌 경쟁 선도를 위한 국가 이민정책 관련 국제협력, 이민정책개발지원, 이민정책연구원 핵심 정책과제 연구 지원 등
- (내역사업 1 : 국제협력 및 정책개발지원) 국제기구·외국정부 등과 이민정책 국제협력, 이민정책 개발·집행 역량 강화를 위한 선진사례 연구 및 교환연수, 지자체 공무원 및 민간단체·인력 이민정책 교육, 지원인력 운영 등

- (내역사업 2 : 이민정책연구원 운영) 국가 중장기 발전전략으로 이민정책 활용, 국가 간 이주현상 분석 및 현안 해결을 위한 종합적·체계적 이민정책 연구 및 교육 등 수행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출입국관리법 제81조의2

제81조의2(출입국관리공무원의 주재)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에 종사하게 하기 위하여 출입국관리공무원을 재외공관 등에 주재하게 할 수 있다.
1.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증 발급사무
2. 제7조제4항에 따른 외국인입국허가서 발급사무
3. 외국인의 입국과 관련된 필요한 정보수집 및 연락 업무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9조, 제22조, 제22조의2

제9조(정책의 연구 · 추진 등) ① 법무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 실적에 대한 평가,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 운영 등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재한외국인, 불법체류외국인 및 제15조에 따른 귀화자에 관한 실태 조사
2.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연구
3.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에 관한 사전 연구
4. 외국인정책에 관한 자료 및 통계의 관리,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사무 처리
5. 제15조에 따른 사회적응시책 및 그 이용에 관한 연구와 정책의 추진
6. 그 밖에 외국인정책 수립 등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한 연구와 정책의 추진

②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국제교류의 활성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정책과 관련한 국제기구에 참여하거나 국제회의에 참석하고, 정보교환 및 공동 조사 · 연구 등의 국제협력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국제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의2(이민정책연구원) ①「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이주기구 간의 국제이주기구 이민정책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협정」의 이행을 장려하고,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이민정책의 수립 등에 필요한 조사 · 연구를 추진하기 위하여 이민정책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연구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세계 각국의 이민정책과 입법에 관한 조사 · 연구 · 자문 · 정보교환
2. 이민정책 전문가 양성
3. 이민정책 관련 국제교류 · 협력 및 국제회의 개최 · 지원
4. 이민정책 관련 학회 및 학술활동 지원
5. 이민정책 관련 학술자료 · 정기간행물 · 보고서 등 출판물의 발간 · 보급
6. 그 밖에 연구원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④ 연구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⑤ 연구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⑥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대한민국정부와 국제이주기구간의 국제이주기구 이민정책연구원 설립에 관한 협정」('09.6.30)

⊙조약 제2196호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이주기구 간의 국제이주기구 이민정책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협정

대한민국 정부(이하 "정부"라 한다)와 국제이주기구(이하 "IOM"이라 한다)는 국제 이주에 관한 연구와 훈련을 활성화함으로써 인적자원의 보다 자유로운 국제적 이동을 촉진하고 국제사회의 사회, 경제 및 문화발전에 기여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대한민국에 소재한 국제이주기구의 IOM 이민정책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을 통하여 이러한 필요성에 부응할 의지가 있으며, 이 협정을 통하여 연구원의 목적, 기능 및 조직, 그리고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양 당사자의 의무를 규정하기를 희망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목적
연구원의 목적은 IOM 헌장에 규정된 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다.
가. 이주민 및 이주문제에 대한 국제적 이해 증진
나. 연구, 정보교환, 조사 및 이주 관련 교육을 통하여 국가들의 이주정책 개발에 기여
다. 국제이주법, 이주관리 및 이주민의 인권에 관한 훈련을 통하여 국가들의 역량 향상
라. 이주와 개발, 환경, 안보, 인권 및 고용 간의 연관성에 대한 이해 증진에 기여

제2조 기능
1. 연구원은 연구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가. 이주정책 및 국가들의 법률에 관한 이주 관련 조사, 연구, 자문 및 정보 교환
나. 사회통합 프로그램 및 교육훈련
다. 국내외 이주법 및 정책 관련 전문가 훈련
라. 이주정책 및 법률 관련 국제 교류, 협력 프로그램 및 국제회의
마. 이주정책 관련 연구소 및 그 연구 지원 활동
바. 연구논문, 정기간행물, 보고서 및 그 밖의 전문 문서의 발간 및 보급, 그리고
사. 연구원의 목적에 부합하는 그 밖의 활동
2. 연구원은 각국 정부, 국제기구, 학계 및 시민사회 등과 협력하여 활동을 추진할 수 있다.
- (이하 생략) -

② 추진경위

- ('03년~) 인구·경제 등 국가 발전전략으로서 이민정책의 중요성 강화, 출입국관리 공무원의 글로벌 이민정책 역량 강화를 위해 해외 정부, 국제기구 등과 국제협력 및 교류연수 실시
- ('09년~) 국제기구인 IOM(국제이주기구)과 이민정책연구원 설립·운영 협정(조약) 체결 후 이민정책연구원 개원('09.12.17.), 이민정책연구원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국내법적 근거(「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22조의2) 마련('23.07.19.)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03년~계속 (이민정책연구원: '09년~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 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 포함)

연도	2023	2024	2025	2026	2027(안)
사업비	2,658	2,948	3,645	4,012	4,434

- 기타: 국내 체류외국인 293만 명('26.8. 현재)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민간경상보조(이민정책연구원)
- 사업시행주체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민정책연구원
- 사업 수혜자 : 내·외국인(체류외국인 293만명, '26.8.), 지자체, 민간기관·단체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7예산안)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이민정책 연구원운영	보조	이민정책 연구원	3,903	100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22조의2(이민정책연구원) 제6항 등

3) 2027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

① **국제협력 및 정책개발지원 : ('26) 226 → ('27) 531백만원, 305백만원 증액**

■ **이민정책 국제협력 강화** : ('27) 330백만원 (순증)

- (사업개요) 불법이주, 난민, 재외국민 보호, 위험외국인 강제퇴거 등 이슈에 대한 대한민국 주도의 이민정책 국제협력 체계 마련, 단순 국제회의·행사 수동 참여나 직원 교환연수를 넘어,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글로벌 인재경쟁, 국경안전관리 등 대한민국의 문제상황에 맞는 해결을 위한 입체적 국제협력 강화

※ 이민(Migration)은 물의 흐름과 같아서 한 국가의 노력만으로 관리할 수 없는 '국경을 넘는 역동성'이 있으므로, 상호 이익 극대화, 질서 유지, 인권 보호를 위해 국제 공동대응이 필수적

- 국익 위해자 입국 시도 차단, 불법체류자의 신속한 송환을 위한 주한공관 여행증명서(여권) 발급, 해외 우리 교민 보호 등 이민당국 실무자 간 상시 정보공유·협력 필요
- 불법체류자의 강제 퇴거를 위해서는 상대국의 국적 확인과 여행문서 발급이 필수며, 동포 등 해외 교민 체류 고충 해결, 특정국의 비자 완화 또는 제한 조치 등도 이민당국 간 협력을 전제

☞ 예) '25년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LG플랜트 공장 한국인 근로자 대규모 단속 관련, 한-미 이민당국 간 해결 사례 (→ 해당 한국인의 미국 재입국금지 면제 등 교섭 성과)

- (산출내역) 일반용역비 300백+국외여비 20백+일반수용비 10백만원 = 330백만원(순증)

해외 이민당국 고위·실무급 협의체(K-Immigration Summit) 개최('27년 개최 후 일정 주기 고려) → 세계 주요국(아주·유럽·미주·아프리카 등 권역별 안배, 정책 중요도 등 고려) 이민당국 고위·실무급 회담을 통해 대한민국 주도(initiative)의 국제이민협력 대표 플랫폼 구축 (→ 외국 개최 회담의 단순 참여는 의제 주도 등 한계)

※ (비교사례) ① 중국 국가이민관리국 "공공안전정책포럼"(2023년 신설, 주요국가·국제기구 출입국당국 고위급 인사 초청), ②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 "도쿄출입국포럼"('22년 신설, 주요 22개국 출입국당국 고위급 인사 초청), ③ 아세안(ASEAN)+3 이민청장 회의(아세안 회원국 등 출입국·체류관리 정보 공유)

■ **공무직근로자(영문에디터 1명) 보수, 고용부담금, 복리후생비** : ('26) 60 → ('27) 64백만원(+4백)

■ **외국인정책 관련 중앙부처와 지자체 담당 직원, 민간단체 등 관계자의 외국인정책 실무역량 강화 교육** : ('26) 38 → ('27) 19백만원 (감 19백만원)

■ **이민행정 선진사례 연구** : ('26) 73 → ('27) 42백만원(7개국, 10명)

■ **출입국관리공무원 상호교환 연수** : ('26) 17 → ('27) 39백만원(2개국, 9명)

■ **이민정책개발 사업추진비** : ('26) 7 → ('27) 7백만원, 전년 동

* 선진 이민당국등 교류 경비 2,689천원, 이민정책 개발 관련 유관기관 협의 등 3,847천원

■ **이민정책개발 및 제도개선 등 우수직원 등 포상금** : ('26) 30 → ('27) 30백만원, 전년 동

○ 2026년도 예산 및 2027년도 예산안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6년 본예산		2027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226,000	○ **상용임금(110-03) : 50,083천원** 가. 보수 : 1명×3,631,000원×12월=43,572천원 나. 명절휴가비 : 1명×2,178,600원×2회=4,357천원 다. 정액급식비 : 1명×140,000원×12월=1,680천원 라. 기타 수당 : 474,000원 ○ **복리후생비(210-12) : 500천원** 가. 맞춤형복지비 : 1명×500,000원=500천원 ○ **일반용역비(210-14) : 38,276천원** 가. 중앙부처 및 지자체 외국인정책 담당자 교육 : 38,276천원 ○ **국외업무여비(220-02) : 90,688천원** 1. 이민행정 선진사례 연구 : 73,453천원 가. 외국인 온라인 민원신청제도(ANEF) 연구(프랑스, 3명, 7일) : 15,729천원 나. 국제이주기구 GMDAC 글로벌이주데이터 분석연구(독일 3명, 5일) : 12,414천원 다. 유럽 난민법 및 난민제도 연구(스웨덴,독일, 3명, 7일) : 14,285천원 라. 캐나다 보호외국인 정책 및 운영 연구(캐나다, 3명, 7일) : 14,314천원 마. 출국대기자 과밀해소 및 인도적 처우개선 사례조사(네덜란드, 3명, 5일) : 11,804천원 바.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관련국가간 대응방안 연구(태국 3명 4일) : 4,907천원 2. 출입국관리공무원 상호 교환프로그램 : 17,240천원 가. 일본 실무자급 교환프로그램(일본, 4명, 5일) : 9,902천원 나. 중국 실무자급 교환프로그램(중국, 4명, 5일) : 7,338천원 3. 계수조정 : △5천원 ○ **사업추진비(240-01) : 6,536천원** 1. 선진 이민당국 등 교류 경비 : 2,689천원 2. 이민정책 개발 관련 유관기관 협의 등 : 3,847천원 ○ **포상금(310-03) : 30,000천원** 가. 이민정책개발 및 제도개선 등 우수직원 등 포상금 : 30,000천원 ○ **고용부담금(320-06) : 9,917천원** 가. 4대보험료 및 퇴직금 : 50,083,000원×19.8%=9,917천원	531,000	○ **상용임금(110-03) : 52,477천원** 가. 보수 : 1명×3,788,000원×12월=45,456천원 나. 명절휴가비 : 1명×2,272,800원×2회=4,546천원 다. 정액급식비 : 1명×160,000원×12월=1,920천원 라. 기타 수당 : 555,000원 ○ **일반수용비(210-01) : 10,585천원** 1. 이민정책 국제협력 협의체 운영 : 10,585천원 ○ **복리후생비(210-12) : 600천원** 가. 맞춤형복지비 : 1명×600천원=600천원 ○ **일반용역비(210-14) : 319,200천원** 가. 이민정책 국제협력 협의체 운영 : 300,000천원 나. 중앙부처 및 지자체 외국인정책 담당자 교육 : 19,200천원 ○ **국외업무여비(220-02) : 101,049천원** 1. 이민행정 선진사례 연구 : 42,208천원 가. 독일·벨기에 선진 보호제도 연구(독일·벨기에, 2명, 6일) : 10,577천원 나. 미국 난민심사 AI 활용방안 연구(미국, 2명, 6일) : 10,178천원 다. 호주 기술난민제도 연구(호주, 2명, 6일) : 9,280천원 라.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국가간 대응 연구(필리핀 2명 4일) : 3,333천원 마. CIQ 통합신고 플랫폼 및 차세대 자동심사 모델 연구(일본·UAE, 2명 6일) : 8,840천원 2. 출입국관리공무원 상호 교환프로그램 : 38,991천원 가. 미국 교환프로그램(미국, 5명, 6일) : 31,220천원 나. 중국 교환프로그램(중국, 4명, 4일) : 7,771천원 3. 해외 이민당국 등 고위·실무협의체 등 운영 : 20,000천원 4. 계수조정 : △150천원 ○ **사업추진비(240-01) : 6,536천원** 1. 선진 이민당국 등 교류 경비 : 2,689천원 2. 이민정책 개발 관련 유관기관 협의 등 : 3,847천원 ○ **포상금(310-03) : 30,000천원** 가. 이민정책개발 및 제도개선 등 우수직원 등 포상 : 30,000천원 ○ **고용부담금(320-06) : 10,553천원** 가. 4대보험료 및 퇴직금 : 52,477천원×20.1%=10,553천원

② **이민정책연구원 운영 : ('26) 3,786 → ('27) 3,903백만원, 117백만원 증액**

○ (인건비) 직원 보수 및 고용부담금 등 : ('26) 1,918 → ('27) 2,103백만원 (+185백)

※ 이민정책연구원 직원('26.8. 현재) : 28명 [원장(비상임) 1, 부원장(상임) 1, 연구직 15(박사11, 석사4), 행정직 11명]

○ (운영비) 기관 운영비 : ('26) 462 → ('27) 517백만원 (+55백)

- 일반수용비 : ('26) 62 → ('27) 5,195천원×12월 = 62백만원, 전년 수준
- 공공요금및제세 : ('26) 12 → ('27) 1,000천원×12월 = 12백만원, 전년 수준
- 청사 임차료 : ('26) 345 → ('27) 948㎡×34,480원×12월 = 392백만원, 증 47백
- 차량 및 사무기기임차료 : ('26) 16 → ('27) 1,367천원×12월 = 16백만원, 전년 수준
- 여비, 업무추진비 : ('26) 22 → ('27) 1,875천원×12월 = 30백만원, 증 8백
- 기타 수용경비 : ('26) 4 → ('27) 4백만원, 전년 수준

○ (사업비) 이민정책 중점연구과제 등 연구사업비 : ('26) 1,406 → ('27) 1,282백만원 (감 124백)

- 이민정책 연구 : ('26) 1,310 → ('27) 1,193백만원, 감 117백
- 이민정책 전문가 양성 : ('26) 1 → ('27) 1백만원, 전년 수준
- 이민정책연구 국제협력 : ('26) 4 → ('27) 4백만원, 전년 수준
- 이민정책연구 전문저널 발간 : ('26) 7 → ('27) -, 순감

- 이민정책 인식개선 교육 : ('26) 84 → ('27) 84백만원, 전년 수준

ㅇ 2026년도 예산 및 2027년도 예산안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6년 본예산		2027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3,786,000	○ **민간경상보조(320-01) : 3,786백만원** **1. 연구원 보수 : 1,746,098천원** 가. 원장 : 31,302,000원×1명=31,302천원 나. 부원장 : 111,233,000원×1명=111,233천원 다. 선임연구위원 : 99,736,000원×1명=99,736천원 라. 연구위원 : 82,705,000원×1명=82,705천원 마. 부연구위원 : 70,794,000원×9명=637,146천원 바 .전문연구원 : 45,178,000원×4명=180,712천원 사. 책임행정원(재무팀장) : 56,375,000원×1명=56,375천원 아. 선임행정원(기획팀장) : 56,375,000원×1명=56,375천원 자. 행정원 : 38,251,000원×7명=267,757천원 차. 무기계약직 : 34,583,000원×2명=69,166천원 카. 직원 성과급 : 22,000천원 타. 퇴직 충당금 : 131,591천원 **2. 고용부담금 : 172,083천원** **3. 운영비 : 462,000천원** 가. 일반수용비 : 5,195천원×12월=62,336천원 나. 공공요금 및 제세 : 1,000천원×12월=12,000천원 다. 차량 및 사무기기임차료 : 1,367천원×12월=16,400천원 라. 국내여비 : 709천원×12월=8,504천원 마. 업무추진비 : 1,167천원×12월=14,000천원 바. 임차료(관리비 포함) : 948㎡×30.4천원×12월 =344,693천원 **4. 연구사업비 : 1,406,316천원** 가. 이민정책 연구 : 1,203,000천원 나. 이민정책 전문가 양성 : 1,000천원 다. 이민행정연구 국제협력 : 4,316천원 라. 이민정책 인식개선 교육 : 84,000천원 마. 이민정책연구 전문저널 '이민연구' 발간 : 7,000천원 바. 이민정책통계 데이터베이스 운영 : 107,000천원	3,903,000	○ **민간경상보조(320-01) : 3,903백만원** **1. 연구원 보수 : 1,897,110천원** 가. 원장 : 32,397,570원×1명=32,398천원 나. 부원장 : 115,126,155원×1명=115,126천원 다. 선임연구위원 : 103,226,760원×1명=103,227천원 라. 연구위원 : 85,599,675원×1명=85,600천원 마. 부연구위원 : 73,271,790원×10명=732,718천원 바 .전문연구원 : 46,759,230원×4명=187,037천원 사. 책임행정원(재무팀장) : 58,348,125원×1명=58,348천원 아. 선임행정원(기획팀장) : 58,348,125원×1명=58,348천원 자. 행정원 : 39,589,785원×9명=356,308천원 카. 직원 성과급 : 22,000천원 타. 퇴직 충당금 : 146,000천원 **2. 고용부담금 : 206,320천원** **3. 운영비 : 517,254천원** 가. 일반수용비 : 5,195천원×12월=62,350천원 나. 공공요금 및 제세 : 1,000천원×12월=12,000천원 다. 차량 및 사무기기임차료 : 1,367천원×12월=16,400천원 라. 국내여비 : 1,375천원×12월=16,500천원 마. 업무추진비 : 1,167천원×12월=14,000천원 바. 임차료(관리비 포함) : 948㎡×34.5천원×12월 =392,244천원 **4. 연구사업비 : 1,282,316천원** 가. 이민정책 연구 : 1,193,000천원 나. 이민정책 전문가 양성 : 1,000천원 다. 이민행정연구 국제협력 : 4,316천원 라. 이민정책 인식개선 교육 : 84,000천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3~2027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3	2024	2025	2026	2027	2027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이민자의 한국사회 적응에 필요한 기본소양 충족도(%)	목표	53.7	53.8	54.6	56.1	-	-	이민자의 한국사회 적응에 필요한 기본소양 충족도(%) =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자(최종합격) 수 /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수료자 수 × 100	사회통합 정보망
	실적	53.6	54.3	55.7		-			
외국인 체류질서 및 사회통합 안정도(점)	목표	신규	신규	신규	신규	120	불법체류자 수 감소 추세와, 영주 및 귀화 수요 증가에 따라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자 수도 증가하여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여 성과지표 신규설정	불법체류자수 감소분 + 사회통합프로그램 4·5단계 이수자 수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 통계월보 및 사회통합 정보망
	실적	-	-	-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3	· 이민행정 선진사례연구 등 : 25명, 연수보고서 4건 · 이민정책개발 연구용역 : 3건 · 이민정책연구원 연구과제 실적 : 37건
2024	· 이민행정 선진사례연구 등 : 16명, 연수보고서 4건 · 이민정책개발 연구용역 : 3건 · 중앙부처·지자체 외국인정책 담당자 교육 : 총 6회 개최, 609명 참석 · 이민정책연구원 연구과제 실적 : 46건
2025	· 이민행정 선진사례연구 등 : 33명, 연수보고서 8건 · 중앙부처·지자체 외국인정책 담당자 교육 : 총 5회 개최, 739명 참석 · 이민정책연구원 연구과제 실적 : 46건
2026	· 중앙부처·지자체 외국인정책 담당자 교육 : 총 1회 개최, 98명 참석 · 이민정책연구원 연구과제 실적 : 7건 ('26.7. 기준, 주요연구 진행중)

③ 향후(2027년도 이후) 기대효과

- 국가·지역 간 인적 이동 관련 국제사회 공동 이슈 해결을 위한 이민정책 국제협력 확대
- 이민자 유입의 경제·사회적 효과 분석, 적정 비자 규모 및 임금 요건 설정, 사회통합 정책 연구 등을 통한 우수인재 유치 및 잠재적 사회갈등 비용 절감
- 보다 편리하고 신속·정확한 출입국절차로 개선하되 위험 인물은 사전 차단하는 국경관리 강화, 체류질서 확립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해외 이민정책 선진사례 연구 및 출장계획 수립(공무원교육훈련법 제13조, 위탁교육훈련) → 해외 사례연구 출장자 선발 → 출장 및 파견 명령 → 출장업무수행 → 연구보고서 제출 → 범정부 국외출장연수시스템 및 법무부 지식마당 연구보고서 등재(전직원 공유) → 정책수립·집행 등 활용 → 성과평가·관리

■ 이민정책연구원 사업계획서 제출 → 사업 승인 → 국고 교부 → 이민정책연구원 사업수행 (보조금법에 따라 상시 점검·감독) → 결과보고서 제출 → 결산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25~2029	3,645	4,012	2,951	2,889	2,795	
2026~2030		4,012	4,434	4,567	4,704	4,845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외국인정책기본계획 수립의 법정기한 준수 필요(법사위, '23.결산)
- 중앙부처·지자체 외국인정책담당자 교육은 정례화된 교육으로 연초부터 신속히 추진할 필요성이 있고, 2024년도 실시한 총 6차례 교육 중 4차례가 4/4분기에 집중 실시 및 광역단위 권역 위주로 실시되었는데, 이러한 추진방식이 적절한 것인지 사업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동 사업은 이민정책연구원과의 수의계약으로 진행하였는데, 교육장소 마련, 물품 구입, 자료 제작같은 교육진행 위주이므로, 이민정책연구원 교육사업으로 변경·통합 방안으로 검토 필요(법사위 검토보고서, '24.결산)
- 기존 이민정책개발지원 세부사업의 내역사업이 이민정책 개발지원이라는 목적에 부합하는지 점검하여, 목적에 맞는 필수 사업을 발굴하여 예산을 확대하거나, 다른 세부사업으로 통·폐합하는 등 취지에 맞게 사업을 정비할 필요(법사위 검토보고서, '25.결산)
- 이민정책연구원 과천 임차사옥 임차비용이 부족하지 않도록 예산편성액 적정성 확인 필요(법사위 검토보고서, '26.예산)

2) 감사원 감사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 해당 없음

3) 자체평가·감사 : 해당 없음

4)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 해당 없음

5)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5조 등에 따른 외국인정책기본계획 수립 정상 추진중(제5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2028-2032) 관련 정책연구용역 수행중, '27년 수립·협의·확정 예정)(법사위, '23.결산)
- 예산배정 완료(1월 둘째 주) 후 2월 사업계획 검토를 거쳐 3월에 사업공고를 하게 되었으며, 4월에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음. 계약 이후 지자체의 교육 수요와 여건에 따라 권역별 순회교육(총 6회)을 실시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사업 지연 등에 대한 문제점은 없었으나, 다만 향후에는 보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 공고, 계약체결 등의 절차를 더욱 신속히 추진하겠음(법사위 검토보고서, '24결산)
- 이민정책연구원 교육사업은 국민 대상 이민자 인식개선 교육으로, 교육대상이 일반국민이고, 교육내용은 문화다양성 및 상호문화 이해 증진이며, 교육방법도 주로 온라인 콘텐츠를 활용하는 반면에, 중앙-지자체 외국인정책 담당자 교육은 지자체 공무원 대상으로 정부의 이민정책 주요 현안에 대한 교육뿐만 아니라, 지역의 이민수요를 적시에 정확히 파악하여 정책에 반영하고 중앙-지방 간 소통 및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 목적도 중요하므로, 현행 중앙부처 주도의 교육 방식 유지 필요(법사위 검토보고서, '24결산)

- ’26년 5월부터 기존 “이민정책개발지원”과 “이민정책연구원운영”, 두 개의 세부사업을 “국제협력 및 이민정책연구”, 하나의 세부사업으로 통합 개편하고 국제협력 강화 예산을 편성하는 등 목적에 부합하도록 사업 운영 개선(법사위 검토보고서, ’25.결산)
- 이민정책연구원 과천 임차사옥 임차관리비를 ‘27.예산안에 적정 수준으로 편성 (법사위 검토보고서, ’26.예산)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이민정책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국제사회 공동 이슈 해결 주도
- 세계 각국 이민정책 및 입법에 관한 조사・연구・자문・정보교환, 직원 역량 강화
- 이민자 조기적응·사회통합 프로그램 및 교육훈련 확대
- 이민법령·제도 개선 및 이민정책 전문가 양성, 시민사회·단체 협력 강화
- 이민정책 및 입법 관련 국제교류・협력 및 국제회의 지원
- 이민정책 관련 학회 및 학술 활동 지원, 학술연구자료 등 발간・보급
- 대국민 이민자 인식 개선 활동 및 내·외국인 사회통합 강화 등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1) 통합재정사업 성과평가(’26.5.) 결과(이민정책연구원) : 사업개선
   - “이민정책연구원 역할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 ’27년도에 ’이민정책 아카이브’ 구축, ’제5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28~2032)’ 수립, ’사회통합지수 ’(K-MIPEX) 개발 및 연구 등 다양한 신규·확대 사업 추진이 예정되어 있어, 불요불급한 비용을 최대한 절감하고 효율적 사업 진행 노력 필요”
2) 보조사업 연장평가(‘24.4.) 결과(이민정책연구원) : 사업방식 변경
   - “이민정책연구원의 연구수행 역량을 강화하고 국고보조금 연구과제 이외에도 자체 연구사업비를 확보하여 연구활동을 폭넓게 수행할 필요가 있음”

12) 동 사업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 : 해당 없음

13) 2026년도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 결과 및 후속 조치 현황

평가결과	성과평가 주요내용	조치결과
사업개선	이민정책연구원 역할 지속 확대, 다양한 신규·확대 사업 추진 예정으로 계속 추진 필요	연구결과물의 정책 활용도를 반영한 질적 성과관리체계 구축 등 연구원 사업 지속 개선

14) 부처 건의사항 : 해당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3	2,658	-	2,658	-	-	-	2,658	2,638	99.2	99.2	-	20
2024	2,948	-	2,948	-	-	-	2,948	2,889	98.0	98.0	-	59
2025	3,645	-	3,645	-	-	-	3,645	3,628	99.5	99.5	-	17
2026	4,012	-	4,012	-	-	-	4,012	3,935	98.1	98.1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본예산	추경(A)								
2023	2,268	2,268	2,268	2,268	-	2,268	2,268 [2,266]	-	2	100
2024	2,562	2,562	2,562	2,562	-	2,562	2,562 [2,562]	-	-	100
2025	3,455	3,455	3,455	3,455	-	3,455	3,455 [3,414]	-	40	98.8
2026.7월기준	3,786	3,786	3,786	3,786	-	3,786	3,786 [3,786]	-	-	100

2) 주요 결산사항

□ 2023~2026년 결산사항

2023	- 이·전용, 예비비, 추경 등 해당 없음
2024	- 이·전용, 예비비, 추경 등 해당 없음
2025	- 이·전용, 예비비, 추경 등 해당 없음
2026	- 이·전용, 예비비, 추경 등 해당 없음

□ 2026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 없음

□ 2026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 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 해당 없음

사 업 명
출입국외국인관서시설운영 (1232-3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		020	022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200	1232	300
명칭	이민정책활동	출입국외국인관서운영	출입국외국인관서시설운영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6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출입국외국인 관서시설운영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	유성오	김원희	구본민
		출입국기획과	02-2110-4010	02-2110-4026	02-2110-4028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년 결산	2026년 예산		2027년		증감 (B-A)	(B-A)/A
		본예산(A)	추경	요구안	조정안(B)		
출입국외국인관서 시설운영	55,157	65,441	65,441	66,418	66,418	977	1.5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25					2026(2026.7월말)							2027 예산안
	예산액(추경)	예산현액	집행액[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현액	집행액[실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예상액	불용예상액	
									예산현액	집행액[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55,163	55,636	55,157	-	479	65,441	65,041	41,812	65,041	41,812	-	-	66,418
· 공무직근로자 운영	17,872	16,867	16,729	-	138	20,233	20,233	11,305	20,233	11,305	-	-	24,297
· 소속관서 운영경비	29,264	30,842	30,722	-	121	33,231	33,081	26,993	33,081	26,993	-	-	34,805
· 출입국관서 시설공사 및 자산취득	8,027	7,927	7,706	-	221	11,977	11,727	3,514	11,727	3,514	-	-	7,316
○ 비목별 분류(합계)	55,163	55,636	55,157	-	479	65,441	65,041	41,812	65,041	41,812	-	-	66,418
· 상용임금(110-03)	14,651	14,651	14,549	-	102	16,584	16,584	10,103	16,584	10,103	-	-	19,873
· 일용임금(110-04)	46	46	42	-	4	48	48	21	48	21	-	-	50
· 일반수용비(210-01)	517	601	591	-	10	801	801	442	801	442	-	-	756
· 공공요금 및 제세(210-02)	5,350	6,430	6,422	-	8	5,650	5,650	4,060	5,650	4,060	-	-	6,434
· 피복비(201-03)	126	121	105	-	16	126	126	72	126	72	-	-	136
· 임차료(210-07)	19,146	19,551	19,550	-	1	20,606	20,606	19,450	20,606	19,450	-	-	21,711
· 시설장비유지비(210-09)	2,674	2,989	2,979	-	10	3,144	3,144	2,115	3,144	2,115	-	-	3,761
· 복리후생비(210-12)	231	231	223	-	8	239	239	202	239	202	-	-	291
· 국외업무여비(220-02)	105	105	100	-	5	99	199	199	199	199	-	-	300
· 사업추진비(240-01)	22	22	22	-	-	22	22	12	22	12	-	-	22
· 포상금(310-03)	-	-	-	-	-	100	100	55	100	55	-	-	100
· 구호및교정비(320-06)	959	654	572	-	82	658	658	307	658	307	-	-	658
· 고용부담금(320-09)	2,864	1,864	1,851	-	13	3,284	3,284	928	3,284	928	-	-	3,997
· 실시설계비(420-02)	30	30	25	-	5	30	77	32	77	32	-	-	30
· 공사비(420-03)	6,283	6,283	6,076	-	207	8,161	8,113	2,648	8,113	2,648	-	-	4,525
· 감리비(420-04)	66	66	59	-	7	52	52	18	52	18	-	-	43
· 시설부대비(420-05)	-	-	-	-	-	35	35	4	35	4	-	-	18
· 자산취득비(430-01)	1,648	1,548	1,546	-	2	3,699	3,449	812	3,449	812	-	-	2,700
· 무형자산(440-00)	445	445	444	-	1	2,103	1,853	332	1,853	332	-	-	1,013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55,163	55,636	55,157	-	479	65,441	65,041	41,812	65,041	41,812	-	-	66,418
· 공무직근로자 운영	17,872	16,867	16,729	-	138	20,233	20,233	11,305	20,233	11,305	-	-	24,297
-상용임금(110-03)	14,651	14,651	14,549	-	102	16,584	16,584	10,103	16,584	10,103	-	-	19,873
-피복비(201-03)	126	121	105	-	16	126	126	72	126	72	-	-	136
-복리후생비(210-12)	231	231	223	-	8	239	239	202	239	202	-	-	291
-고용부담금(320-09)	2,864	1,864	1,851	-	13	3,284	3,284	928	3,284	928	-	-	3,997
· 소속관서 운영경비	29,264	30,842	30,722	-	121	33,231	33,081	26,993	33,081	26,993	-	-	34,805
-일용임금(110-04)	46	46	42	-	4	48	48	21	48	21	-	-	50
-일반수용비(210-01)	517	601	591	-	10	801	801	442	801	442	-	-	756
-공공요금제세(210-02)	5,350	6,430	6,422	-	8	5,650	5,650	4,060	5,650	4,060	-	-	6,434
-임차료(210-07)	19,146	19,551	19,550	-	1	20,606	20,606	19,450	20,606	19,450	-	-	21,711
-시설장비유지비(210-09)	2,674	2,989	2,979	-	10	3,144	3,144	2,115	3,144	2,115	-	-	3,761
-국외업무여비(220-02)	105	105	100	-	5	99	199	199	199	199	-	-	300
-사업추진비(240-01)	22	22	22	-	-	22	22	12	22	12	-	-	22
-포상금(310-03)	-	-	-	-	-	100	100	55	100	55	-	-	100
-구호및교정비(320-06)	959	654	572	-	82	658	658	307	658	307	-	-	658
-무형자산(440-00)	445	445	444	-	1	2,103	1,853	332	1,853	332	-	-	1,013
· 출입국관서 시설공사 및 자산취득	8,027	7,927	7,706	-	221	11,977	11,727	3,514	11,727	3,514	-	-	7,316
-실시설계비(420-02)	30	30	25	-	5	30	77	32	77	32	-	-	30
-공사비(420-03)	6,283	6,283	6,076	-	207	8,161	8,113	2,648	8,113	2,648	-	-	4,525
-감리비(420-04)	66	66	59	-	7	52	53	18	53	18	-	-	43

	2025					2026(2026.7월말)							2027 예산안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시설부대비(420-05)	-	-	-	-	-	35	35	4	35	4	-	-	18
-자산취득비(430-01)	1,648	1,548	1,546	-	2	3,699	3,449	812	3,449	812	-	-	2,70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세부사업 : 출입국외국인관서시설운영) 출입국관리 소속기관의 공공요금, 청사 임차료 및 관리비, 시설장비 유지관리, 공무직운영 등을 지원하여 원활한 이민행정업무 수행
- (내역사업 1 : 공무직근로자 운영) 사무보조, 청사관리 등 소속기관 지원인력 운영
- (내역사업 2 : 소속관서 운영) 45개 출입국 소속기관에 대한 임차료, 공공요금, 청사 시설관리 및 임차관리비 지출, 기타 소모품 구입 등을 통한 출입국·이민행정 지원
- (내역사업 3 : 출입국관서 시설공사 및 자산취득) 45개 소속기관에 대한 시설·장비 개보수, 업무용 장비 및 집기류 구입 등 원활한 업무수행 지원과 민원환경 개선으로 서비스 제고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법무부령)

② 추진경위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의한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시설 운영을 위한 경상경비 지원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03년~계속 (이민정책연구원: '09년~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 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 포함)

연도	2023	2024	2025	2026	2027(안)
사업비	48,462	51,419	55,163	65,441	66,418

- 기타: 국내 체류외국인 293만 명('26.8. 현재),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45개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법무부
- 사업 수혜자 : 내·외국인(체류외국인 293만명, '26.8.)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3) 2027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

① 공무직 근로자 운영 : ('26) 20,233 → ('27) 24,297백만원, 4,064백만원 증액

ㅇ (개요) 출입국관서시설운영 공무직 근로자('26년 483명+'27년 신규채용 4명=487명)의 보수(상용임금), 복리후생비, 고용부담금

ㅇ (산출)

1) **신규채용 : 평택출입국·외국인사무소 신축청사 관리인력 4명, +84백만원**

- (평택출입국 청사관리원) 사무소 승격 및 평택시 고덕지구 신축청사* 완공 이전 예정('27.6.)인 평택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신축청사 관리원 4명(전기원 1, 기계원 1, 청소원 2) 채용 필요

* 평택출입국 신축청사 : 평택시 고덕동 1906-03 소재, 부지 3,906㎡(1,181평), 건물 2,210㎡(668평)



※ 기존 평택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임차청사로 청사관리원 없었음

※ [공공청사 시설관리원 배치 관련 법령]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기계설비법」 제19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등), 「승강기안전관리법」 제29조(승강기안전관리자),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관리 등) 및 제22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등

2) **기존 공무직 근로자 처우 개선 : +3,980백만원**

- '27년 공무직 근로자 공통처우개선율(4.3% 인상), 통상임금 연동 인상분(야간근무수당 등) 등 반영

ㅇ 2026년도 예산 및 2027년도 예산안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6년 본예산		2027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20,232,573	○ **상용임금(110-03) : 16,584,021천원** 가. 보수 : 483명×2,498,390원×12월=14,480,653천원 나. 명절휴가비 : 483명×기본급의60%×2회=1,291,928천원 다. 정액급식비 : 483명×140천원×12월=811,440천원 ○ **피복비(210-03) : 126,400천원** 가. 청소원, 보안관리요원, 방호원, 청사관리원 피복비 : 316명×400,000원 = 126,400천원 ○ **복리후생비(210-12) : 238,500천원** 가. 맞춤형복지비 : (474명×500천원)+(9명×167천원) =238,500천원 ○ **고용부담금(320-06) : 3,283,652천원** 가. 4대보험료 및 퇴직금 : 16,584,021천원×19.8%=3,283,652천원	24,296,947	○ **상용임금(110-03) : 19,873,405천원** 가. 보수 : 487명×2,973,984원×12월=17,379,965천원 나. 명절휴가비 : 487명×기본급의60%×2회=1,558,400천원 다. 정액급식비 : 487명×160천원×12월=935,040천원 ○ **피복비(210-03) : 136,000천원** 가. 청소원, 보안관리요원, 방호원, 청사관리원 피복비 : 340명×400,000원 = 136,000천원 ○ **복리후생비(210-12) : 291,000천원** 가. 맞춤형복지비 : (483명×600천원)+(4명×300천원) =291,000천원 ○ **고용부담금(320-06) : 3,996,542천원** 가. 4대보험료 및 퇴직금 : 19,873,405천원×20.1%=3,996,542천원

② **소속관서 운영경비 : ('26) 33,231 → ('27) 34,805백만원, 1,574백만원 증액**

ㅇ **청사 및 비상대기소 임차비용** : ('26) 22,709 → ('27) 22,724백만원(+15백)

- (개요) 출입국기관 청사(공항만 포함 전국 출입국기관) 및 비상대기소* 임차료 등 지원

* 공항만 비상출입국심사(천재지변, 기상악화(저시정경보 등) 항공편 결항, 테러 등 국경안전 긴급상황 등), 불법체류 외국인 심야단속, 보호외국인 난동·탈주, 외국인보호시설 화재 등 24시간 비상상황에 대비하여 출입국관리공무원(전국 단위 인사이동)이 대기하는 숙소

- (산출내역) ('27) ①+②+③= +15백

① '27년 행정안전부 청사수급 확정된 비상대기소 신규 임차 44채(1,100㎡)×516천원×12월=272백만원

② '27년 청사 및 비상대기소 임차료 인상분: 833백만원

※ 출입국외국인관서는 공항, 항만에 위치하거나(고정성), 내·외국인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주로 도심지 등에 위치하여 임차비용이 높은 편 → 향후 임차비용 감축을 위해 필요 시 국유 청사수급 추진 등 지속 노력할 계획임

③ 청사 및 비상대기소 임차보증금(무형자산) : 1,090백만원 감액

ㅇ **공항 출국대기실 운영** : ('26) 658백만 → ('27) 658백만 (전년 동)

- (개요) 공항만 입국불허자 출국대기실 운영비용*

* 기존 항공사운영협의회(AOC) 민간 관리에서 '22년부터 국가가 출국대기실 운영(출입국관리법 제76조의3 등)

- (산출내역) ('26) 658백만원 → ('27) 출국대기실 설치 공항만 9개소×6.1백×12월=658백만원 (전년 동)

ㅇ **출입국기관 공공요금** : ('26) 5,650 → ('27) 6,434백만 (+784백)

- 출입국기관 운영 관련 전기, 수도, 선박보험료 등 공공요금 및 제세 → 직제·인원 확충에도 최근 수년간 동결 수준으로 실제 공공요금제세 납부액이 부족으로 연례적 이전용, 물가상승분 등 반영한 최소 수준 인상 필요

※ 출입국관서시설운영 공공요금 부족에 따른 연도별 이전용액(백만원) : ('21) 340 → ('22) 140 → ('23) 350 → ('24) 600 → ('25) 1,080

ㅇ **기타 시설운영 안전관리 등** : ('26) 4,114 → ('27) 4,889백만원(+775백)

- 시설안전, 청소, 환경시설 유지관리, 기타 소규모 시설장비 유지보수(시설장비유지비, 210-09) : ('26) 3,144 → ('27) 45기관×7.0백만×12월=3,761백만원 (+617백)

- 시설운영 유관기관 협의 등 업무추진(사업추진비 240-01) : ('26) 22 → ('27) 22백만 (전년동)

- 일반수용비*(210-01) : ('26) 801 → ('27) 756백만 (감 45백)

* 체류허가 소모품, 입국신고서 서식 인쇄, 자동출입국 이용등록스티커, 외국인 입국심사 확인증(Landing Slip), 재심통역비 등

- 크루즈관광객 선상심사*(국외업무여비, 220-02) : ('26) 99 → ('27) 91회×824천원×4명=300백만 (+201백)

* 선상심사 : 법무부 출입국심사관이 크루즈선의 국외 출항지 등에서 미리 탑승하여 운항 중(국내 입항 전) 출입국심사를 수행함으로써 입항 후 크루즈관광객 수속시간 단축 → 관광소비 등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25년 중·일 갈등 이후 제주·부산·인천 등 입항 크루즈 대폭 증가 ('25. 588척 → '26. 960척)

☞ 크루즈 관광객 : ('23) 212척, 27.4만명 → ('24) 428척, 82.6만명 → ('25) 588척, 107.7만명

- 일용임금(출입국심사장 안내원 등 단기 채용) : ('26) 48 → ('27) 50백만원 (+2백)

ㅇ **국경안전, 시설운영, 체류관리 등 우수직원 등 포상금** : ('26) 100 → ('27) 100백만원(전년 동)

ㅇ 2026년도 예산 및 2027년도 예산안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6년 본예산		2027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33,230,724	○ **일용임금(110-04) : 48,262천원** 가. 82명×10,510원×8시간×7일 = 48,262천원 ○ **일반수용비(210-01) : 800,708천원** 가. 체류허가소모품 등 구입 : 45개기관×189천원×12월=102,000천원 나. 입국재심통역비 : 440,412천원 (입국자수 증가에 따른 입국재심 대상 증가) (59,920명×7천원)+(59,920명×야간비율10%×야간할증3,500원)=440,412천원 다. 입국심사확인증 : 450만매×8원=36,000천원 라. 입국신고서 서식인쇄 : 100만매×10원=10,000천원 마. 자동출입국이용등록 스티커 : 75천매×250원=18,750천원 바. 출국대기실 입실자 통역비 : 16,449천원 - 49,248명(입실연인원)×1,670원(시간당평균실전화통역단가)×20%(통역비조정계수)	34,805,000	○ **일용임금(110-04) : 50,053천원** 가. 82명×10,900원×8시간×7일 = 50,053천원 ○ **일반수용비(210-01) : 756,121천원** 가. 체류허가소모품 등 구입 : 45개기관×189천원×12월=102,000천원 나. 입국재심통역비 : 440,412천원 (입국자수 증가에 따른 입국재심 대상 증가) (59,920명×7천원)+(59,920명×야간비율10%×야간할증3,500원)=440,412천원 다. 입국심사확인증 : 450만매×15원=67,500천원 라. 입국신고서 서식인쇄 : 100만매×16원=16,000천원 마. 자동출입국이용등록 스티커 : 12만매×430원=51,600천원 바. 출국대기실 입실자 통역비 : 16,449천원 - 49,248명(입실연인원)×1,670원(시간당평균실전화통역단가)×20%(통역비조정계수)

2026년 본예산		2027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사. 출국대기실 입실자 수용경비 : 29,160천원 135명(49,248명÷365일)×20천원(보호외국인 수용경비 1인 단가)×12월×90%(절감율) =29,160천원 아.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청사 이전비 : 98,000천원 자. 부산출입국·외국인청 청사 이전비 : 50,000천원 차. 계수조정 : △63천원 ○ **공공요금및제세(210-02) : 5,649,812천원** 가. 전기요금 : 143,813천원×12월=1,725,758천원 나. 상하수도 요금 : 2,030원×200,000㎥=406,000천원 다. 공항시설사용료 : 211,211천원×12월=2,534,530천원 라. 인천공항 통신망비 : 47,360천원×12월=568,320천원 마. 출입국네트워크 망분리회선료 : 25,000천원×12월=300,000천원 바. 청사 화재보험료 : 99,889㎡×500원=49,945천원 사. 출입국감시정 운영 : 3척×1,813천원×12월=65,259천원 ○ **임차료(210-07) : 20,605,809천원** 가. 일반청사 : 12개소×12,713천원×12월=1,830,598천원 나. 항만청사 : 6개소×5,648천원×12월=406,639천원 다. 공항청사 : 8개소×178,281천원×12월=17,115,018천원 라. 비상대기소 : 35개소×2,618천원×12월=1,099,624천원 마. 비상대기소 신규 임차 : 21채(525㎡)×430천원×12월=108,330천원 바. 임차료 인상분 : 45,600천원 ○ **시설장비유지비(210-09) : 3,144,424천원** 가. 임차청사 관리비 : 19개소×4,657천원×12월=1,061,702천원 나. 통합청사 관리비 : 1개소(대구)×5,633㎡×8,950원×12월=604,984천원 다. 청소용역비 : 4개소×13,565천원×12월=651,139천원 라. 시설안전 관리비 : 25개소×921천원×12월=276,412천원 마. 환경시설 유지관리비 : 25개소×683천원×12월=204,785천원 바. 출입국감시정 운영(유지관리) : 3척×2,095천원×12월=75,402천원 사. 소규모 시설장비 유지보수 : 45개기관×500천원×12월=270,000천원 ○ **국외업무여비(220-02) : 98,565천원** 가. 크루즈관광객 사전 선상심사 1) 항공료(4급 이하) : 30회*181,000원*5명=27,150천원 2) 일비(4급 이하) : 30회*$30*3일*5명=18,630천원 3) 숙박비(4급 이하) : 30회*$137*1일*5명= 28,359천원 4) 식비(4급 이하) : 30회*$59*2일*5명=24,426천원 ○ **사업추진비(240-01) : 22,363천원** 가. 시설운영 등 유관기관 회의 : 1,864천원×12월=22,363천원 ○ **포상금(310-03) : 100,000천원** 가. 국경안전, 체류관리 등 우수직원 등 포상금 : 100,000천원 ○ **구호및교정비(320-06) : 657,705천원** 가. 매식비 : 635,252천원 49,248명×6,980원×3식×0.88(식사이용률)×0.9(자구절감)=635,252천원 나. 의료비·침구비 : 135명(49,248명÷365일)×220천원×0.84×0.9=22,453천원 ○ **무형자산(440-00) : 2,103,076천원** 가. 소속기관 비상대기소 임차보증금 인상분 : 353,000천원 나. 비상대기소 신규임차보증금('26 행안부 수급 21채) : 1,528,076천원 다. 부산출입국·외국인청 청사 이전 관련 임차보증금 : 222,000천원		사. 출국대기실 입실자 수용경비 : 29,160천원 135명(49,248명÷365일)×20천원(보호외국인 수용경비 1인 단가)×12월×90%(절감율) =29,160천원 아. 평택출입국·외국인사무소 청사 이전비 : 23,000천원 자. 천안출입국·외국인사무소 청사 이전비 : 10,000천원 ○ **공공요금및제세(210-02) : 6,433,466천원** 가. 전기요금 : 155,482천원×12월=1,865,781천원 나. 상하수도 요금 : 2,170원×210,000㎥=455,700천원 다. 공항시설사용료 : 248,803천원×12월=2,985,634천원 라. 인천공항 통신망비 : 61,075천원×12월=732,900천원 마. 출입국네트워크 망분리회선료 : 25,000천원×12월=300,000천원 바. 청사 화재보험료 : 99,889㎡×500원=49,945천원 사. 출입국감시정 운영 : 2척×1,813천원×12월=43,506천원 ○ **임차료(210-07) : 21,711,315천원** 가. 일반청사 : 12개소×12,245천원×12월=1,763,268천원 나. 항만청사 : 6개소×5,707천원×12월=410,936천원 다. 공항청사 : 8개소×185,495천원×12월=17,807,570천원 라. 비상대기소 : 37개소×2,545천원×12월=1,130,077천원 마. 비상대기소 신규 임차 : 44채(1,100㎡)×516천원×12월=272,372천원 바. 임차료 인상분 : 54,720천원 ○ **시설장비유지비(210-09) : 3,761,115천원** 가. 임차청사 관리비 : 19개소×5,055천원×12월=1,152,683천원 나. 통합청사 관리비 : 2개소×41,222천원×12월=989,341천원 다. 청소용역비 : 4개소×14,838천원×12월=712,226천원 라. 시설안전 관리비 : 25개소×1,268천원×12월=380,412천원 마. 환경시설 유지관리비 : 25개소×773천원×12월=231,785천원 바. 출입국감시정 운영(유지관리) : 2척×2,153천원×12월=51,668천원 사. 소규모 시설장비 유지보수 : 45개기관×450천원×12월=243,000천원 ○ **국외업무여비(220-02) : 300,000천원** 가. 크루즈관광객 사전 선상심사 1) 항공료(4급 이하) : 91회*360,000원*4명=131,040천원 2) 일비(4급 이하) : 91회*$30*4일*4명=65,083천원 3) 숙박비(4급 이하) : 91회*$106*1일*4명= 57,490천원 4) 식비(4급 이하) : 91회*$44*2일*4명=47,728천원 나. 계수조정 : △1,341천원 ○ **사업추진비(240-01) : 22,363천원** 가. 시설운영 등 유관기관 회의 : 1,864천원×12월=22,363천원 ○ **포상금(310-03) : 100,000천원** 가. 국경안전, 체류관리 등 우수직원 등 포상금 : 100,000천원 ○ **구호및교정비(320-06) : 657,705천원** 가. 매식비 : 635,252천원 49,248명×6,980원×3식×0.88(식사이용률)×0.9(자구절감)=635,252천원 나. 의료비·침구비 : 135명(49,248명÷365일)×220천원×0.84×0.9=22,453천원 ○ **무형자산(440-00) : 1,013,000천원** 가. 소속기관 비상대기소 임차보증금 인상분 : 200,000천원 나. 비상대기소 신규 임차보증금('27 행안부 수급 44채) : 813,000천원

③ **출입국관서 시설공사 및 자산취득 : ('26) 11,977 → ('27) 7,316백만원, 4,661백만원 감액**

- ㅇ **평택출입국·외국인사무소 신축청사 완공 이전('27.6. 예정)** : **('27) 875백만원**(순증)
- ㅇ **천안출입국·외국인사무소 나라키움통합청사 이전('27.3. 예정)** : **('27) 104백만원**(순증)
  - 천안시 불당동 566-4 나라키움통합청사(천안출입국 입주면적 : 1,460㎡)
- ㅇ **출입국감시정 운영** : ('26) 2,668 → **('27) 1,830백만원** (감 838백)
  - (**필요성**) 선박 등의 입·출항 시 승무원과 승객의 출입국 적격 여부 확인, 선원명단 일치 여부 확인, 항만 순찰, 법령위반자의 승선 방지 및 조사 등 법령상 의무 준수를 위해 승선 검색 반드시 필요, 내·외항 정박 선박으로 접근 이동할 수단인 친환경 출입국감시정 신규 건조로 항만 국경관리 강화 및 국민 안전 도모

ㅇ 출입국관리법 제69조(선박등의 검색 및 심사) 제1항 "선박 등이 출입국항에 출·입항할 때에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의 검색을 받아야 한다."
※ "전국에 단 두척 뿐인 밀입국감시정, 해상국경 구멍, 단속망 강화 시급" ('23.12.7, 문화일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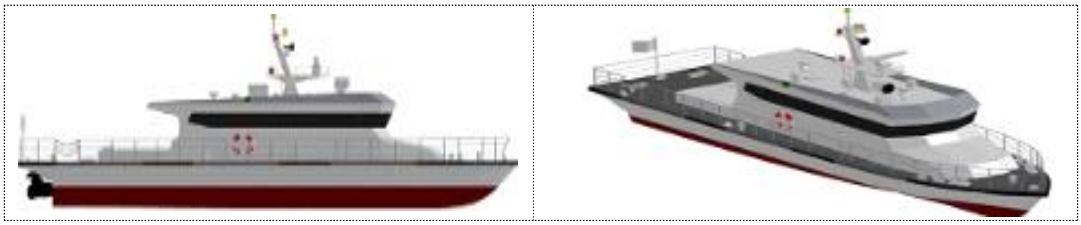
☞ 관세청 세관추적선(출입국감시정 용도로는 맞지 않음)을 관리전환 인수('22.4.)받아 현재 인천항에서 운영중인 현 출입국감시정 1척(선명: 초지진호)은 선령 26년(감시정 사용연수 25년)에 달한 노후 선박으로 잦은 고장, 수리 등으로 인해 원활한 승선 검색에 지장 초래 → 신규 친환경 감시정을 건조, 인천항에 배치함으로써 중국과 거리가 가까워 밀입국이 용이한 서해안 밀입국자 방지 등 해상 국경안전 강화 필요

※ 부산청(부산항 배치) 감시정 1척은 '25년 신규 건조 후 '26년 진수(進水), 운영 중

- (**물량·단가**)

❶ 출입국감시정 신규 건조 : ('26) 2,460백만원 → ('27) 1,730백만원 (감 730백)

선종	선질	예상 선박제원						운항특성		친환경선박 적용기술
		총톤수	길이	너비	깊이	주기관 출력	최대 속력	운항구역	승선인원	
감시정	알루미늄 합금	40톤	24.7m	5.4m	2.8m	3,000kW (2,012HP×2)	35Knots	연해 구역	12명	미세먼지 저감 장치(DFP) 적용



- 공사비: ('26) 1척×2,425백만원 → ('27) 1척×1,700백만원=1,700백만원 (감 725백)

※ 선박 건조 통상 공정기간(2년 이상)에 따른 안정적이고 내실있는 사업관리를 위해 '25년 부산항 출입국감시정 단년도 사업을 인천항 배치 신규 감시정은 2개년도 사업(1차년도 60%, 2차년도 40%)으로 조정 ('26년 1차년도에 이어 '27년 2차년도(완성) 추진)

☞ (1차년도) 설계검토, 디젤엔진 등 핵심장비 조달(해외), 기본공정 등
(2차년도) 내·외장공사, 성능·안전검사, 시험운항, 진수(進水) 배치 등

- 감리비 : ('26) 1척×35백만원 → ('27) 1척×30백만원=30백만원(감 5백)

❷ 감시정 안전검사, 기계설비관리 등(공사비) : ('26) 208 → ('27) 100백만원 (감 108백)

- 보험료, 항해 운용에 필요한 연료유, 육상전기료, 선박검사수수료, 오물·폐유처리비 및 매년 선박안전검사를 위한 선체 수리(조선소 상가), 임시수리, 소화·구명설비, 자동심장충격기 교체, 기타 선박용품 구입
- 주기관(엔진), 보조기관(발전기), 감속기(기어박스), 추진기(워터제트), 연료탱크 개방검사 및 부품 교체, 각종 계측·성능 검사, 법정비품(무선국장비, EPIRB 등) 검사, 기타 감시정에 대한 수리 비용 등 절감

※ 선박관리자의 안전검사 의무 : 선박 안전사고는 대형 인명피해를 초래할 수 있기에 소화.구명설비 및 선체.기관(엔진) 등의 안전관리 이행실태에 대한 공인검사기관의 정기적인 검사 필요

➠ 위반시 항해정지명령 및 최대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선박안전법 제83조)

ㅇ **출입국관서 노후시설장비 개·보수 및 교체 등** : ('26) 9,309 → **('27) 4,507백만** (감 4,802백)

- 노후 청사 시설물 개보수·이전 등 공사 : ('26) 5,528 → ('27) 45개소×3.2백만×12월=1,746백만원 (감 3,782백)
- 실시설계 : ('26) 30 → ('27) 4개소×7.5백만=30백만원 (전년 동)
- 공사감리 : ('26) 17 → ('27) 4개소×3.25백만=13백만원 (감 4백)
- 시설부대비 : ('26) 45개소×778천원=35백만원 → ('27) 4개소×4.4백만=18백만원 (감 17백)
- 노후 업무용장비·비품 등 자산취득 : ('26) 3,699 → ('27) 45개 기관×5백만×12월=2,700백만원 (감 999백)

ㅇ 2026년도 예산 및 2027년도 예산안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6년 본예산		2027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1,977,703	○ **실시설계비(420-02) : 30,000천원** 가. 시설공사 실시설계 : 4개소×7,500천원=30,000천원 ○ **공사비(420-03) : 8,160,635천원** 가. 출입국감시정 신규 건조 : 1척×2,424,600천원=2,424,600천원 나. 출입국감시정 정기검사 및 수리 : 2척×8,667천원×12월=208,000천원 다. 청사 등 노후시설장비 개보수 : 45개소×27,275천원=1,227,375천원 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신축청사 완공 이전 : 1,382,000천원 마. 부산출입국·외국인청 노후청사 일부 이전 : 1,406,660천원 바. 출입국관서 재난안전 강화 : 45개소×33,600천원=1,512,000천원 ○ **감리비(420-04) : 52,400천원** 가. 출입국감시정 1척 건조 감리비 : 35,400천원 나. 시설공사 감리 : 4개소×4,250천원=17,000천원 ○ **시설부대비(420-05) : 35,200천원** 가. 시설공사 조달수수료 등 시설부대비 : 35,200천원 ○ **자산취득비(430-01) : 3,699,468천원** 가. 업무용 장비 및 집기류 등 구입 : 45개소×6,851천원×12월=3,699,468천원	7,315,915	○ **실시설계비(420-02) : 30,000천원** 가. 시설공사 실시설계 : 4개소×7,500천원=30,000천원 ○ **공사비(420-03) : 4,525,315천원** 가. 출입국감시정 신규 건조 : 1척×1,700,000천원=1,700,000천원 나. 출입국감시정 정기검사 및 수리 : 1척×8,333천원×12월=100,000천원 다. 청사 등 노후시설장비 개보수 : 45개소×38,807천원=1,746,315천원 라. 평택출입국·외국인사무소 신축청사 완공 이전 : 875,000천원 마. 천안출입국·외국인사무소 통합청사 이전 : 104,000천원 ○ **감리비(420-04) : 43,000천원** 가. 출입국감시정 1척 건조 감리비 : 30,000천원 나. 시설공사 감리 : 4개소×3,250천원=13,000천원 ○ **시설부대비(420-05) : 17,600천원** 가. 시설공사 조달수수료 등 시설부대비 : 17,600천원 ○ **자산취득비(430-01) : 2,700,000천원** 가. 업무용 장비 및 집기류 등 구입 : 45개소×5,000천원×12월=2,700,000천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3~2027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단위사업 출입국외국인관서운영은 단순 청사 임차료, 청소용역, 시설물 유지보수 사업으로 기본 사업경비에 해당하므로 관리과제 미설정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 출입국 45개 소속기관의 시설운영 지원으로 원활한 출입국관리 업무 수행

③ 향후(2027년도 이후) 기대효과

- 원활한 출입국업무 수행으로 출입국자, 체류외국인의 만족도 향상 및 국가 이미지 제고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소속기관 시설운영비 수요파악 → 예산확보 및 편성 → 소속기관 시설운영비 계약 → 시설운영비(공공요금 및 제세금 등) 예산집행 → 결산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25~2029	55,163	65,441	58,500	57,268	55,421	
2026~2030		65,441	66,418	68,410	70,462	72,576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해당 없음
2) 감사원 감사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 해당 없음
3) 자체평가·감사 : 해당 없음
4)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 해당 없음
5)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해당 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출입국·외국인관서 시설운영비 등 지원으로 원활한 출입국·이민행정 수행
- 내·외국인 편의 및 쾌적한 환경 제공, 시설 안전을 위한 청사신축, 안전관리 강화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 없음

12) 동 사업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 : 해당 없음

13) 2026년도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 결과 및 후속 조치 현황 : 해당 없음

14) 부처 건의사항 : 해당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3	48,462	-	48,462	-	△1,083	-	47,379	46,406	98.8	97.9	-	973
2024	51,419	-	51,419	-	412	-	51,831	50,658	98.5	97.7	-	1,173
2025	55,163	-	55,163	-	473	-	55,636	55,157	100.0	99.1	-	479
2026	65,441	-	65,441	-	△400	-	65,041	41,812	63.9	64.3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 해당 없음

2) 주요 결산사항

□ 2023~2026년 결산사항

2023	ㅇ 전용 :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으로 보호수용되는 외국인 증가하여 급식비, 이송여비, 보호경비대원(공무직) 초과근무수당 등 충당을 위해 각각 123백만원, 1,071백만원, 239백만원 전용 감,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에 따라 부족분 350백만원 전용 증 ㅇ 불용 : 집행잔액 973백만원
2024	ㅇ 불법체류 단속 활동 증가에 따른 국외강제퇴거, 보호이송 등 호송여비 충당을 위해 임차료 전용 감 188백만원, 출입국관서 공공요금 증가분 전용 증 600백만원 ㅇ 불용 : 집행잔액 1,173백만원
2025	ㅇ 전용 : '25.6.1. 외국인보호위원회 신설('25.예산 미 반영) 및 출입국외국인관서 임차료 부족분 등 전용 증 1,878백만원, 출입국시설운영 구호및교정비 및 고용부담금 등 1,405백만원 전용 감 ㅇ 불용 : 집행잔액 479백만원
2026	ㅇ '26.4.5. 외국인사회통합지원 세부사업 내 중앙 계절근로전문기관('26.1.23. 시행 출입국관리법 제19조의5 근거) 1개 운영비로 전용 감 500백만원(시설운영사업 내 자산취득비 250백만원, 무형자산 250백만원 감), '26.6.23. 출입국외국인관서시설운영 세부사업 내 크루즈 선상심사 확대 국외업무여비 100백만원 전용 증(외국인보호관리 사업 내 일반수용비 100백만원 감)

□ 2026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전용 (2026.4.5.)	출입국외국인 관서시설운영 (1232-300)	자산취득비 (430-01)	250	외국인사회통합 지원 (1233-301)	민간경상 보조 (320-01)	중앙 계절근로전문기관('26.1.23. 시행 출입국관리법 제19조의5 근거) 1개 운영비로 전용
전용 (2026.4.5.)	출입국외국인 관서시설운영 (1232-300)	무형자산 (440-00)	250	외국인사회통합 지원 (1233-301)	민간경상 보조 (320-01)	중앙 계절근로전문기관('26.1.23. 시행 출입국관리법 제19조의5 근거) 1개 운영비로 전용
전용 (2026.6.23.)	외국인보호관리 (1233-300)	일반수용비 (210-01)	100	출입국외국인 관서시설운영 (1232-300)	국외여비 (220-02)	크루즈 관광객 신속 입국심사로 관광소비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한 크루즈 선상(船上) 입국심사 확대 국외여비 부족분 전용

□ 2026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 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 해당 없음

사 업 명
외국인등록증발급 수입대체경비 (1232-304)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		020	022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200	1232	304
명칭	이민정책활동	출입국외국인관서운영	외국인등록증발급수입대체경비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6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외국인 등록증발급 수입대체경비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	유성오	김원희	구본민
		출입국기획과	02-2110-4010	02-2110-4026	02-2110-4028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년 결산	2026년 예산		2027년		증감 (B-A)	(B-A)/A
		본예산(A)	추경	요구안	조정안(B)		
외국인등록증발급 수입대체경비	9,535	10,000	10,000	10,349	10,349	349	3.5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25					2026(2026.7월말)							2027 예산안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9,849	9,849	9,534	-	315	10,000	10,000	6,314	10,000	6,314	-	-	10,349
· 공무직근로자 운영	1,498	1,498	1,495	-	3	1,649	1,649	997	1,649	997	-	-	1,998
· 외국인등록증발급비	8,351	8,351	8,039	-	312	8,351	8,351	5,317	8,351	5,317	-	-	8,351
○ 비목별 분류(합계)	9,849	9,849	9,534	-	315	10,000	10,000	6,314	10,000	6,314	-	-	10,349
· 상용임금(110-03)	1,235	1,235	1,233	-	2	1,358	1,358	895	1,358	895	-	-	1,642
· 일반수용비(210-01)	8,351	8,351	8,039	-	312	8,351	8,351	5,317	8,351	5,317	-	-	8,351
· 복리후생비(210-12)	22	22	21	-	1	22	22	19	22	19	-	-	26
· 고용부담금(320-09)	241	241	241	-	-	269	269	84	269	84	-	-	330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9,849	9,849	9,534	-	315	10,000	10,000	6,314	10,000	6,314	-	-	10,349
· 공무직근로자 운영	1,498	1,498	1,495	-	3	1,649	1,649	997	1,649	997	-	-	1,998
-상용임금(110-03)	1,235	1,235	1,233	-	2	1,358	1,358	895	1,358	895	-	-	1,642
-복리후생비(210-12)	22	22	21	-	1	22	22	19	22	19	-	-	26
-고용부담금(320-09)	241	241	241	-	-	269	269	84	269	84	-	-	330
· 외국인등록증발급비	8,351	8,351	8,039	-	312	8,351	8,351	5,317	8,351	5,317	-	-	8,351
-일반수용비(210-01)	8,351	8,351	8,039	-	312	8,351	8,351	5,317	8,351	5,317	-	-	8,351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세부사업 : 외국인등록증발급 수입대체경비) 외국인등록증 발급 개선을 통한 신분증 위조방지 보안요소 강화로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
- (내역사업 1 : 공무직근로자 운영) 외국인등록증발급 사무를 보조할 수 있도록 공무직 근로자 운영
- (내역사업 2 : 외국인등록증발급비) 위·변조 방지 요소 강화 등 품질과 보안성을 높인 외국인등록증 발급을 위해 신분증 제작·발급 전문기관인 한국조폐공사에 위탁

※ 출입국관리법 제33조(외국인등록증의 발급)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7조(국내거소신고증의 발급 등)에 따라 대한민국에 91일 이상 체류하려는 외국인의 외국인등록 및 거소신고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등 발급비용 발생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출입국관리법 제33조(외국인등록증의 발급) 제1항

> **제33조(외국인등록증의 발급 등)** ①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받은 지방출입국 · 외국인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외국인에게 외국인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그 외국인이 17세 미만인 경우에는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제72조(각종 허가등에 관한 수수료) 제10호, 제10의2호

> **제72조(각종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외국인의 입국 및 체류와 관련된 허가 및 출입국사실 증명 발급 등에 관한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0. 외국인등록증 발급 및 재발급: 3만 5천원
> 10의2. 영주증 재발급: 3만 5천원

② 추진경위

- 2009. 06. 외국인등록증의 허술한 보안요소로 인한 위·변조 관련 문제점 지적
- 2009. 10. 전문기관(조폐공사) 위탁발급, 보안성 강화 등 외국인등록증 개선 추진계획 수립
- 2011. 01. 외국인등록증발급 수입대체경비 세부사업 신설 및 조폐공사 발급 위탁
- 2018. 01. 보안요소를 개선한 외국인등록증 발급
- 2018. 09. 출입국관리법 개정('18. 3. 20.)에 따른 영주증 신규발급에 맞춰 보안요소가 개선된 외국인등록증 발급 개시
- 2025. 01.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및 IC칩 삽입 외국인등록증 발급 개시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11년~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 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 포함)

연도	2023	2024	2025	2026	2027(안)
사업비	4,657	5,757	9,849	10,000	10,349

- 기타: 국내 체류외국인 293만 명('26.8. 현재)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사업 수혜자 : 내·외국인(체류외국인 293만명, '26.8.)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3) 2027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

① 공무직 근로자 운영 : ('26) 1,649 → ('27) 1,998백만원, 349백만원 증액

ㅇ (요구) 외국인등록증발급(수입대체경비)사업 공무직 근로자의 보수(상용임금), 복리후생비, 고용부담금

※ 외국인등록증발급사업 공무직 근로자 총인원 43명('26.7. 현재) : 사무원 43

ㅇ (산출) 기존 공무직 근로자 처우 개선 : 349백만원 증액

- '27년 공무직 근로자 공통처우개선율(4.3% 인상) 적용, 통상임금 연동 인상분(야간근무수당 등) 등 반영

ㅇ 2026년도 예산 및 2027년도 예산안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6년 본예산		2027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648,758	○ **상용임금(110-03) : 1,358,271천원** 가. 보수 : 43명×2,229,000원×12월=1,150,164천원 나. 명절휴가비 : 43명×1,337,400원×2회=115,016천원 다. 정액급식비 : 43명×140,000원×12월=72,240천원 라. 수당 등 추가 : 20,851천원 ○ **복리후생비(210-12) : 21,500천원** 가. 맞춤형복지비 : 43명×500,000원=21,500천원 ○ **고용부담금(320-06) : 268,987천원** 가. 4대보험료 및 퇴직금 : 1,358,271천원×19.8%=268,987천원	1,997,975	○ **상용임금(110-03) : 1,641,974천원** 가. 보수 : 43명×2,325,000원×12월=1,199,700천원 나. 명절휴가비 : 43명×1,395,000원×2회=119,970천원 다. 정액급식비 : 43명×160,000원×12월=82,560천원 라. 수당 등 추가 : 239,744천원 ○ **복리후생비(210-12) : 25,800천원** 가. 맞춤형복지비 : 43명×600,000원=25,800천원 ○ **고용부담금(320-06) : 330,201천원** 가. 4대보험료 및 퇴직금 : 1,358,271천원×20.1%=330,201천원

② 외국인등록증 발급비용 : ('26) 8,351 → ('27) 8,351백만원, 전년 동

- (산출내역) ('26) 700,000매×11,931원=8,351백만원 → ('27) 697,430매×11,974원=8,351백만원 (전년 동)

※ 한국조폐공사 단가[제작비 물가상승분 감안, 매당 43원(11,931→11,974원) 인상(조폐공사 사업처-7165, '25.12.24.)]

ㅇ 2026년도 예산 및 2027년도 예산안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6년 본예산		2027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8,351,242	○ **일반수용비(210-01) : 8,351,242천원** 가. 외국인등록증 발급비용 : 700,000매×11,931원=8,351,700천원 나. 계수조정 : △458천원	8,351,025	○ **일반수용비(210-01) : 8,351,025천원** 가. 외국인등록증 발급비용 : 697,430매×11,974원=8,351,027천원 나. 계수조정 : △2천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3~2027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동 세부사업은 신분증 발급 등 단순경비 지출 경비로 성과지표 미설정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3	외국인등록증 발급 707,401매
2024	외국인등록증 발급 681,348매
2025	외국인등록증 발급 678,179매
2026	외국인등록증 발급 438,628매 ('26. 7.기준)

③ 향후(2027년도 이후) 기대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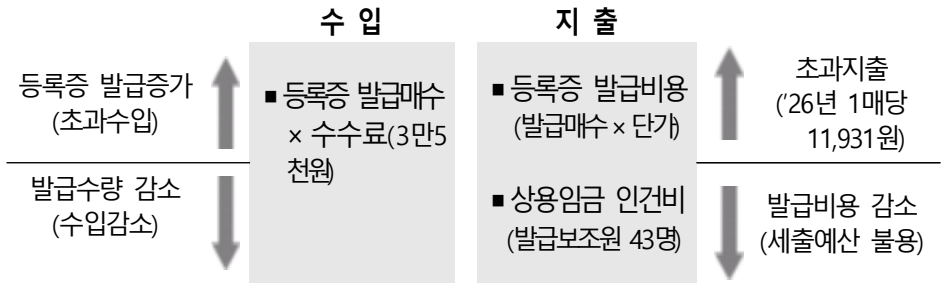
- 신분증 발급 전문기관(한국조폐공사)에 위탁, 보안요소를 갖춘 외국인등록증을 발급하여 외국인 불법체류 방지, 외국인 체류편의 제고 및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외국인등록증 발급 신청 및 수수료징수 → 인쇄 의뢰(한국조폐공사) → 예산집행 → 등록증 교부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25~2029	9,849	10,000	9,357	9,160	8,864	
2026~2030		10,000	10,349	10,659	10,978	11,307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해당 없음
2) 감사원 감사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 해당 없음
3) 자체평가·감사 : 해당 없음
4)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 해당 없음
5)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해당 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신분증 발급 전문기관(한국조폐공사)에 위탁, 보안요소를 갖춘 외국인등록증을 발급하여 외국인 불법체류 방지, 외국인 체류편의 제고 및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 없음

12) 동 사업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 : 해당 없음

13) 2026년도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 결과 및 후속 조치 현황 : 해당 없음

14) 부처 건의사항 : 해당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3	4,657	-	4,657	-	1,437	-	6,094	6,080	130.6	99.8	-	14
2024	5,757	-	5,757	-	416	-	6,173	6,164	107.1	99.9	-	9
2025	9,849	-	9,849	-	-	-	9,849	9,534	96.8	96.8	-	315
2026	10,000	-	10,000	-	-	-	10,000	6,314	63.1	63.1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 해당 없음

2) 주요 결산사항

□ 2023~2026년 결산사항

2023	○ 초과수입 지출 : 외국인등록증 발급량 급증에 따라 1,437백만원 증 ○ 불용 : 집행잔액 14백만원
2024	○ 초과수입 지출 : 외국인등록증 발급량 급증에 따라 416백만원 증 ○ 불용 : 집행잔액 9백만원
2025	○ 이·전용 내역 없음 ○ 불용 : 집행잔액 315백만원
2026	○ 이·전용, 예비비, 추경 등 해당 없음

□ 2026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 없음

□ 2026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 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 해당 없음

사 업 명
출입국정보시스템 운영(정보화) (1232-305)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		020	022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200	1232	305
명칭	이민정책활동	출입국외국인관서운영	출입국정보시스템운영(정보화)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6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출입국 정보시스템 운영 (정보화)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	유성오	김원희	이윤주
		출입국기획과	02-2110-4010	02-2110-4026	02-2110-4367
	사업시행주체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	은기범	천승재	정진우
		이민정보과	02-2110-4090	02-2110-4096	02-2110-4098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년 결산	2026년 예산		2027년		증감	
		본예산(A)	추경	요구안	조정안(B)	(B-A)	(B-A)/A
출입국정보시스템 운영(정보화)	30,383	41,015	41,015	44,789	44,789	3,774	9.2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25					2026(2026.7월말)							2027 예산안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30,410	30,410	30,383	-	27	41,015	41,015	16,727	41,015	16,727	-	-	44,789
・기본 시스템 유지보수 및 위탁 운영	14,224	14,224	14,224	-	1	14,587	14,587	8,509	14,587	8,509	-	-	14,267
・연차별 구축 시스템 유지보수 및 위탁운영	-	-	-	-	-	-	-	-	-	-	-	-	2,856
・업무시스템 임차 등	465	465	465	-	-	465	465	368	465	368	-	-	618
・시스템 개발 및 장비도입	15,721	15,721	15,694	-	26	23,098	23,098	7,849	23,098	7,849	-	-	26,295
・출입국정보화센터 이전 및 클라우드 전환	-	-	-	-	-	2,865	2,865	-	2,865	-	-	-	753
○ 비목별 분류(합계)	30,410	30,410	30,383	-	27	41,015	41,015	16,727	41,015	16,727	-	-	44,789
・공공요금 및 제세(210-02)	290	290	290	-	-	290	290	193	290	193	-	-	492
・임차료(210-07)	175	175	175	-	-	175	175	175	175	175	-	-	126
・관리용역비(210-15)	14,225	14,225	14,225	-	-	14,587	14,587	8,509	14,587	8,509	-	-	17,123
・일반연구비(260-01)	3,025	3,025	3,002	-	23	7,576	8,483	4,468	8,483	4,468	-	-	10,740
・공사비(420-03)	0	0	0	-	-	2,865	2,865	-	2,865	-	-	-	-
・자산취득비(430-01)	12,695	12,695	12,691	-	4	15,522	14,615	3,381	14,615	3,381	-	-	16,308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30,410	30,410	30,383	-	27	41,015	41,015	16,727	41,015	16,727			44,789
- 기본 시스템 유지보수 및 위탁 운영	14,225	14,225	14,225	-	1	14,587	14,587	8,509	14,587	8,509	-	-	14,267
・관리용역비(210-15)	14,225	14,225	14,225	-	1	14,587	14,587	8,509	14,587	8,509	-	-	14,267
- 연차별 구축 시스템 유지보수 및 위탁운영	-	-	-	-	-	-	-	-	-	-	-	-	2,856
・관리용역비(210-15)	-	-	-	-	-	-	-	-	-	-	-	-	2,856
- 업무시스템 임차 등	465	465	465	-	-	465	465	368	465	368	-	-	618
・임차료(210-07)	175	175	175	-	-	175	175	175	175	175	-	-	126
・공공요금 및 제세(210-02)	290	290	290	-	-	290	290	193	290	193	-	-	492
- 시스템 개발 및 장비도입	15,721	15,721	15,694	-	27	8,617	8,617	7,849	8,617	7,849	-	-	26,295
・일반연구비(260-01)	3,025	3,025	3,002	-	23	3,170	4,077	4,468	4,077	4,468	-	-	10,740
・자산취득비(430-01)	12,695	12,695	12,691	-	4	5,447	4,540	3,381	4,540	3,381	-	-	15,555

	2025					2026(2026.7월말)							2027 예산안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출입국정보화센터 이전 및 클라우드 전환	-	-	-	-	-	17,346	17,346	-	17,346	-	-	-	753
・공사비(420-03)	-	-	-	-	-	2,865	2,865	-	2,865	-	-	-	-
・일반연구비(260-01)	-	-	-	-	-	4,406	4,406	-	4,406	-	-	-	-
・자산취득비(430-01)	-	-	-	-	-	10,075	10,075	-	10,075	-	-	-	753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세부사업 : 출입국정보시스템운영) 출입국·이민행정 정보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영 지원
- (내역사업 1~2 : 시스템 유지보수 및 위탁운영) 자동출입국심사대, 바이오정보분석시스템 등 출입국 업무시스템의 H/W, 상용 S/W에 대한 장애처리 등 유지보수 및 외국인지문확인시스템, 비자포털시스템, 사회통합정보망, 차세대이민행정시스템, G4F시스템에 대한 사전적 장애예방 및 성능개선 등 위탁운영을 통한 안정적 업무시스템 유지관리 지원
- (내역사업 3 : 업무시스템 임차 등) 전자여권판독시스템 교체, 자동출입국심사대 도입 사업, 인천공항 제2터미널 정보통신망 및 비상심사시스템 구축 등 사업비 분할 지급 및 EDI 이용료
- (내역사업 4 : 시스템개발 및 장비 도입) 출입국관리, 외국인 체류관리 업무 등 민원업무 포털시스템 운영에 비대면 서비스 확대로 국경관리체계 강화, 이민행정 서비스 제고를 위한 현황, 목표모델 분석 등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AI기술 도입과 시스템 구축
- (내역사업 5 : 출입국정보화센터 이전 및 클라우드 전환)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의 신청사 이전('26. 10.)에 따라 그 산하기관인 출입국정보화센터의 이전에 소요되는 시설 구축 및 시스템 이전 관련 개발과 재해 등 대비를 위해 기존 물리적 서버 등 하드웨어를 클라우드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한 자산취득에 관한 사업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ㅇ 국가정보화기본법 제14조(공공지능정보화의 추진) 제1항

- 국가기관등은 공공서비스의 지능정보화를 도모하고 국민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보건, 사회복지, 교육, 문화, 환경, 교통, 물류, 과학기술, 재난안전, 치안, 국방, 에너지 등 소관 업무에 대한 지능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ㅇ 전자정부법 제16조(전자정부서비스 개발·제공) 제1항

- 행정기관등의 장은 국민의 복지향상 및 편익증진, 국민생활의 안전보장, 창업 및 공장설립 등 기업활동의 촉진 등을 위한 전자정부서비스를 개발하여 제공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키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ㅇ 출입국관리법 제33조(외국인등록증의 발급 등) 제7항

- 법무부장관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모바일외국인등록증 발급 등을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 · 운영할 수 있다.

ㅇ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4(외국인등록증의 진위확인) 제2항, 제3항

- (제2항) 법무부장관은 외국인등록증 진위 여부 확인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을 구축 · 운영할 수 있다.
- (제3항) 외국인등록증의 진위확인 절차, 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 ·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ㅇ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1조의2(정보화기기를 이용한 출입국심사) 제1항

- 행정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국민은 법제3조제2항 및 제6조제3항에 따라 정보화기기에 의한 출입국심사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으로서 정보화기기를 이용한 출입국심사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제2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1.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있을 것
2.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스로 지문과 얼굴에 관한 정보를 등록하였을 것
3. 법 제4조제1항 · 제2항에 따른 출국금지 또는 법 제4조의6제1항에 따른 긴급출국금지 대상이 아닌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14세 이상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것
   나. 7세 이상 14세 미만의 사람으로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제2호의 지문과 얼굴에 관한 정보를 등록하였을 것
4. 그 밖에 「여권법」에 따라 사용이 제한되거나 반납명령을 받은 여권을 가지고 있는 등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심사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② 제1항에 따라 출입국심사를 마친 사람에 대해서는 제1조제3항 본문에 따른 출국심사인이나 입국심사인의 날인을 생략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등록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19년도 예산 국회심사 지적사항에 따라 각 세부사업별 분산되어 있는 출입국 관련 정보화사업 예산의 통합 편성 (법사위 검토보고서, 법사위 부대의견)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20년 ~ 계속사업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3	2024	2025	2026	2027(안)
사업비	25,175	24,608	30,410	41,015	44,789

- 기타 : 해당사항 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사업 수혜자 : 내외국인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사항 없음

3) 2027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

① 시스템 유지보수 및 위탁 운영 : ('26) 14,587 → ('27) 17,123백만원, (+2,536)

ㅇ 2026년도 예산 및 2027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6년 예산		'27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4,587,000	○ **관리용역비(210-15) : 14,587,000천원** 가. 출입국업무시스템 위탁운영 : 5,387,143천원 1) 차세대 이민행정시스템 : 2,096,000천원 2) 외국인 지문확인시스템 : 1,104,000천원 3) 비자포털시스템 : 919,119천원 4)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G4F) 시스템 : 779,000천원 5) 사회통합정보망(Soci-net) : 99,450천원 6) 외국인 행정정보 종합플랫폼 위탁운영 : 389,574천원 나. 시스템 구축사업 도입 SW 및 HW 유지관리 : 1,508,644천원 1) 14개 사업 도입 상용SW 도입분 6,657,288천원 ×8% =532,583천원 2) 15개 사업 HW 도입분 15,016,323천원×6.5% =976,061천원 다. 출입국업무시스템 및 장비 유지보수 : 7,691,403천원 1) '19년도 이전 구축 시스템 및 장비 : 2,797,099천원(△980백만) 2) '20년 구축 시스템 및 장비 : 681,503천원 ① 전자여행허가(ETA)시스템 1차 : 245,141천원 ② 외국인지문확인시스템 고도화(지문) : 144,719천원 ③ 바이오정보 고속검색시스템 고도화 2차 : 94,155천원 ④ 자동출입국심사대 구축분(8대) : 84,396천원 ⑤ 출입국심사장비(통합단말기 368대) 도입분 : 54,828천원	17,123,000	○ **관리용역비(210-15) : 17,123,000천원** 가. 출입국업무시스템 위탁운영 : 5,821,569천원 1) 차세대 이민행정시스템 : 2,096,000천원 2) 외국인 지문확인시스템 : 1,104,000천원 3) 비자포털시스템 : 919,119천원 4)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G4F) 시스템 : 779,000천원 5) 사회통합정보망(Soci-net) : 99,450천원 6) 전자여행허가시스템(K-ETA) 위탁운영 : 494,000천원 7) 전자입국신고서 위탁운영 : 330,000천원 나. 시스템 구축사업 도입 SW 및 HW 유지관리 : 1,291,644천원 1) 14개 사업 도입 상용SW 도입분 5,344,787천원 ×8% =427,583천원 2) 15개 사업 HW 도입분 13,293,246천원×6.5% =864,061천원 다. 출입국업무시스템 및 장비 유지보수 : 10,009,876천원 1) '19년도 이전 구축 시스템 및 장비 : 1,054,893천원 2) '20년 구축 시스템 및 장비 : 681,503천원 ① 전자여행허가(ETA)시스템 1차 : 245,141천원 ② 외국인지문확인시스템 고도화(지문) : 144,719천원 ③ 바이오정보 고속검색시스템 고도화 2차 : 94,155천원 ④ 자동출입국심사대 구축분(8대) : 84,396천원 ⑤ 출입국심사장비(통합단말기 368대) 도입분 : 54,828천원

'26년 예산		'27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⑥ 외국인선원 온라인상륙허가시스템 : 27,331천원 ⑦ 사증신청서류 전자화 도입장비 : 5,088천원 ⑧ 디지털포렌식시스템 도입장비(서울청 이민특수조사대) : 25,845천원 3) '21년 구축 시스템 및 장비 : 1,216,000천원 ① 자동출입국심사대 구축분 : 527,637천원 ② 인공지능 기반 관제시스템 : 429,761천원 ③ 외국인 숙박신고시스템 및 ETA 인프라 보강분 : 90,641천원 ④ 외국인승객 정밀분석시스템 : 95,110천원 ⑤ 출입국심사장비(통합단말기 368대 등) 도입분 : 72,851천원 4) '22~'23년 구축 시스템 및 장비 : 1,258,286천원 ① 자동출입국심사대 구축분 : 283,286천원 ② 외국인 행정정보 종합플랫폼 1차 : 551,862천원 ③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 구축분 : 42,728천원 ④ 바이오정보전문분석시스템 고도화 구축분 : 183,614천원 ⑤ 전자여행허가시스템 3차 구축분 : 111,832천원 ⑥ 사증발급문서 전자화 및 체류외국인관리시스템 고도화 : 84,964천원 5) '23년 구축 시스템 및 장비 : 396,515천원 ① 바이오정보전문분석시스템 고도화 구축분 : 83,348천원 ② 자동출입국심사대 증설분 : 190,021천원 ③ 우범승객 정밀분석시스템 구축분 : 66,164천원 ④ 체류외국인관리시스템 고도화 구축분 : 24,118천원 ⑤ 디지털포렌식시스템 도입 장비 : 32,864천원 6) '24년 구축 시스템 및 장비 : 1,342,000천원 ① 바이오정보전문분석시스템 고도화 유지관리 : 83,000천원 ② 승객정밀분석시스템 고도화 유지관리 : 27,000천원 ③ 위·변조 합성사진 탐지 시스템 유지관리 : 1,000천원 ④ 자동출입국심사대 교체 및 증설 유지관리 : 333,000천원 ⑤ 전자여행허가시스템 고도화 유지관리 : 152,000천원 ⑥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시스템 유지관리 : 532,000천원 ⑦ 외국인 행정정보 종합플랫폼 유지관리(2차) : 61,000천원 ⑧ 출입국 인사배치소프트웨어 관리 : 14,000천원 ⑨ 디지털 포렌식센터 유지관리 : 88,000천원 ⑩ 취업비자 실태조사 통합데이터풀/실태조사 DB 구축 : 51,000천원 라. 계수조정 : △189천원		⑥ 외국인선원 온라인상륙허가시스템 : 27,331천원 ⑦ 사증신청서류 전자화 도입장비 : 5,088천원 ⑧ 디지털포렌식시스템 도입장비(서울청 이민특수조사대) : 25,845천원 3) '21년 구축 시스템 및 장비 : 1,216,000천원 ① 자동출입국심사대 구축분 : 527,637천원 ② 인공지능 기반 관제시스템 : 429,761천원 ③ 외국인 숙박신고시스템 및 ETA 인프라 보강분 : 90,641천원 ④ 외국인승객 정밀분석시스템 : 95,110천원 ⑤ 출입국심사장비(통합단말기 368대 등) 도입분 : 72,851천원 4) '22~'23년 구축 시스템 및 장비 : 1,616,660천원 ① 자동출입국심사대 구축분 : 283,286천원 ② 외국인 행정정보 종합플랫폼 1차 : 551,862천원 ③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 구축분 : 42,728천원 ④ 바이오정보전문분석시스템 고도화 구축분 : 183,614천원 ⑤ 전자여행허가시스템 3차 구축분 : 111,832천원 ⑥ 사증발급문서 전자화 및 체류외국인관리시스템 고도화 : 53,764천원 ⑦ 외국인행정정보 종합플랫폼 위탁운영 : 389,574천원 5) '23년 구축 시스템 및 장비 : 396,515천원 ① 바이오정보전문분석시스템 고도화 구축분 : 83,348천원 ② 자동출입국심사대 증설분 : 190,021천원 ③ 우범승객 정밀분석시스템 구축분 : 66,164천원 ④ 체류외국인관리시스템 고도화 구축분 : 24,118천원 ⑤ 디지털포렌식시스템 도입 장비 : 32,864천원 6) '24년 구축 시스템 및 장비 : 1,342,000천원 ① 바이오정보전문분석시스템 고도화 유지관리 : 83,000천원 ② 승객정밀분석시스템 고도화 유지관리 : 27,000천원 ③ 위·변조 합성사진 탐지 시스템 유지관리 : 1,000천원 ④ 자동출입국심사대 교체 및 증설 유지관리 : 333,000천원 ⑤ 전자여행허가시스템 고도화 유지관리 : 152,000천원 ⑥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시스템 유지관리 : 532,000천원 ⑦ 외국인 행정정보 종합플랫폼 유지관리(2차) : 61,000천원 ⑧ 출입국 인사배치소프트웨어 관리 : 14,000천원 ⑨ 디지털 포렌식센터 유지관리 : 88,000천원 ⑩ 취업비자 실태조사 통합데이터풀/실태조사 DB 구축 : 51,000천원 7) '25년 구축 시스템 및 장비 : 2,032,000천원 ① 바이오정보전문분석시스템 고도화 유지관리 : 244,000천원 ② 자동출입국심사대 증설 유지관리 : 223,000천원 ③ 전자여행허가시스템 고도화 유지관리 : 90,000천원 ④ 제주 크루즈터미널 자동심사대 유지관리 : 396,000천원 ⑤ 가정황정보 DB 및 통합관리시스템 구축(1차) 유지관리 : 411,000천원 ⑥ 외국인 계절근로 통합인력관리플랫폼 구축 유지관리 478,000천원 ⑦ 한미 자동출입국 상호이용시스템 재개발 유지관리 : 79,000천원 ⑧ 취업비자 실태조사 통합 데이터풀 및 DB 구축 유지관리 : 66,000천원 ⑨ 전국 출입국외국인문서 노후 네트워크 인프라 개선(1차) 사업 유지관리 : 45,000천원

② 업무시스템 임차 등 : ('26) 465 → ('27) 618백만원 (+153)

- 자동출입국심사대 임차료 : ('26) 175 → ('27) 68대x1.8백만 = 126백만원 (△49)
- EDI 이용료 : ('26) 290 → ('27) 선박 EDI 36,833천원x12월 + 승객명부 전송료 1천원x50천건 = 442백만 (+152)

ㅇ 2026년도 예산 및 2027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6년 예산		'27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465,000	○ **공공요금및제세(210-02) : 290,000천원** 가. 선박 EDI : 20,000,000원×12월=240,000천원 나. 승객명부 및 안면이미지 전송료 : 1,000원×50,000건=50,000천원 ○ **임차료(210-07) : 175,000천원** 가. 자동출입국심사대 임차(68대) : 175,000천원	618,000	○ **공공요금및제세(210-02) : 492,000천원** 가. 선박 EDI : 36,833천원×12월=442,000천원 나. 승객명부 및 안면이미지 전송료 : 1,000원×50,000건=50,000천원 ○ **임차료(210-07) : 126,000천원** 가. 자동출입국심사대 임차(68대) : 126,000천원

③ 시스템 개발 및 장비 도입 : ('26) 8,617백만원 → ('27) 26,295백만원 (+17,678)

○ AI기반 출입국·이민행정 지능형 대민플랫폼 구축(14,381백만원) : 출입국이민행정의 대표적인 대민포털인 하이코리아와 사회통합정보망 통합대민플랫폼 구축

* ('27년) 개발비 8,529백만원 + SW/HW 5,852백만 = 14,381백만원

가. 필요성

- 민원·행정 목적별로 다수의 사이트·시스템이 분산 운영
- 출입국·외국인 민원시스템의 노후화 심화
- 비대면 민원 수요가 급증하였으나, 대면 업무 중심의 시스템 구조로 대응에 한계 노출
- 모바일·비대면 민원 서비스 제공 한계
- AI 기반 다국어 민원응대서비스 도입 필요성은 높으나, 전면 도입에 앞선 실증·검증 필요

나. 사업 내용

- (전자민원 서비스 혁신) 일원화된 민원 사이트를 통한 민원 통합신청과 심사 전문화 및 이용 편의성 향상, 제출서류 간소화, 맞춤형 민원안내, 본인인증 강화 등 이민행정 민원업무의 질적 혁신
- (지능형 대민 서비스) AI 등 첨단기반의 정보서비스를 도입하여 민원업무의 대부분을 웹(또는 모바일) 기반의 서비스를 확대·강화함으로써 전자민원 신청·처리를 활성화
- (효율적 업무현장 지원) 제출 서류의 전자화, AI 기반 다국어 문서판독 및 민원분류·심사지원 기능, 온라인 사회 통합 교육 인프라 구축, 우수 외국인력 통계분석시스템 설계 등 지능형 정보기술을 활용한 업무 혁신
- (지속성장 기반확보) 클라우드 전환 지속 및 데이터 관리체계 확립을 통한 정보 인프라의 유연성과 안정성 확보 및 통합된 관점의 신뢰성 있는 데이터 제공

다. 사업 주요 추진내용

<통합민원 기능 고도화>



- 전자민원 통합과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지능형 모바일 기술을 활용한 간편한 비대면 민원서비스 제공
- 업무 현장의 정보화 지원 강화
- 보안이 강화된 클라우드 기반 인프라와 데이터 품질관리체계 확보

<지능형 민원상담>



- 홈페이지 입업이 검색해보는 대신 전자민원 대화형 서비스를 통해 질의응답으로 간편하게 서비스에 접근 및 검색 가능
- 단순 민원의 경우, 문답식 질의 형태의 챗봇 민원신청 서비스 제공
- 텍스트, 영상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민원인이 대화형 AI 가이드를 통해 이민행정 전자민원 정책 및 용어 이해도 증대 가능

<맞춤형 민원안내 구현>



- 민원인 **자격 맞춤형** 민원 안내로 전자민원 신청의 **편의성 및 정확성** 확보
- 미납, 과태료 등 의무고지 정보에 대한 **선제적 안내**를 통해 전자민원 신청 및 범칙금 납부 등의 **불이익 제거**

<지능형 모바일 민원서비스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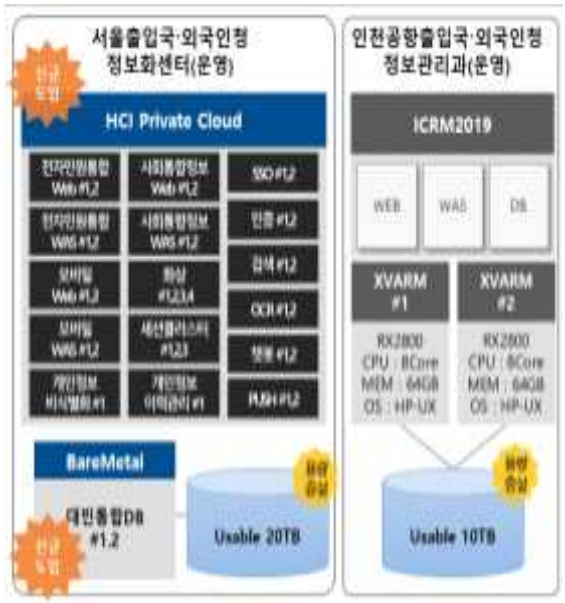
- **모바일** 서비스를 통한 전자민원 신청 **접근성** 및 **활용 확대** 기반 마련
- OCR 등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민원 신청 **편의성** 강화
- 민원처리 결과, 공지 등 **실시간 알림**을 통한 중요 정보 **적시성** 확보

<사회통합정보망 및 온라인교육시스템 재구축>



- 체계적 학습관리시스템 도입으로 교육 서비스 전 **수명주기**에 대한 **운영·관리 효율성** 확보
- 집합교육, 화상교육, 이러닝 등 다양한 **교육 유형·방식 coverage** 확보
- 구술시험, 난민 신청자 면접, 보호 외국인 온라인 접견 등 **이민행정** 업무의 **온라인 서비스** 지원 **기반** 마련
- **모바일** 기반의 교육 서비스 **접근성** 강화 및 업무 **적시성** 확보

<클라우드 인프라 전환>



- 노후화되고 분산되어 있는 정보시스템을 프라이빗 클라우드로 전환하여 유연한 자원관리 및 신속한 장애처리를 구현함
- 도메인별 분산되어 있는 정보시스템을 '전자민원통합시스템(가칭)'으로 통합 구축하여 만족도 높은 대민서비스 지원

<민원인 본인인증 강화>



• 스마트 폰 기반 다양한 방식의 본인 확인서비스를 통해 안정적이고 품질 높은 서비스로 민원인 업무처리 및 업무담당자의 출입국행정에 대한 만족도 상승
• 주요 업무 프로세스별 (회원가입, 국적업무, 난민업무, 수수료업무 등) 필요 할 때 쉬운 방법의 민원인증으로 사용자 편의성 증진

<전자문서 관리시스템 구축>



• 문서분류체계 정립과 메타 정보를 활용한 제출서류의 체계적 관리
• 민원인의 기존 제출자료 재활용을 통한 제출서류 간소화
• 민원제출 서류 검색 편의성 확보
• 스캔문서의 다양한 이미지 인식을 통한 민원서류의 관리 자동화

○ 자동출입국심사대 교체 및 증설(3,654백만원) : 공항만 자동출입국심사대 19대 증설
 * ('27년) 개발비 175백만원 + SW/HW 3,479백만

○ 크루즈 자동출입국심사대 교체 및 증설(1,630백만원) : 크루즈터미널 자동출입국심사대 5대 증설
 * ('27년) 개발비 1,289백만원 + SW/HW 341백만

○ 외국인 계절근로 인력관리 통합플랫폼 구축(583백만원) : 외국인 계절근로 통합관리플랫폼 구축 사업 추진 ('26.~'29년, 총 5차년도 개발)
 * ('27) 개발비 389백만 + SW/HW 194백만 = 583백만

○ 출입국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 연간사용권 구입(477백만원) : 출입국 관련 정보시스템의 유지를 위해 상용 소프트웨어의 연간사용권 구입 필요
 * 상용 소프트웨어(리눅스 등) 라이선스 비용 + 상용 및 공개 소프트웨어(리눅스 등) CarePack 비용 = 총 477백만원 필요

○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 확대(600백만원) : 외국인등록증 위법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 확대 제공

가. 필요성

- 외국인 명의 도용 휴대전화 개통(일명 대포폰)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외국인등록증진위확인시스템'의 통신사로의 확대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現 운용 시스템의 인프라 증설 시급
  ※ 현재는 외국인등록증진위확인시스템이 금융권에만 적용 중
- 범정부 TF 주관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과기부에서 외국인 휴대폰 개통 시 등록증 진위확인 절차 적용 추진 ('26. 하)

나. 사업 내용

- 외국인 통신서비스 불법 이용 차단 목적의 '외국인등록증진위확인시스템'의 서비스 대상을 통신사로 확대하기 위한 인프라 증설

TO BE 통신사 추가된 진위확인서비스 흐름



- 현재 일부 금융권 대상으로 서비스 중인 진위확인시스템은 1초당 10건 이상 동시처리 시 속도 저하가 발생하나, 최근 1초당 최대 평균 8.13건에 육박 → 통신사로 서비스 대상이 확대될 경우, 응답 요구량 대폭 증가 예상

다. 소요예산 산출 : 진위확인 대응용 서버 2대 x 300백만 = 600백만 (별도 개발비 불요)

* ('27) SW/HW 600백만 = 600백만원

○ 경찰청 지문 연계 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및 이중화(534백만원) : 경찰청과 연계되는 지문 정보 시스템 노후화 및 보안 취약성 개선

* ('27) SW/HW 534백만 = 534백만원

가. 필요성

- 공항만 출입국심사 업무의 특성상 365일 무중단 운영되어야 하나 현재 경찰청 지문연계서버와 네트워크는 단일 구조로 서버 또는 네트워크 장애 시 자동출입국심사대 운영 전면 중단 불가피
  → 지문 연계 시스템 이중화를 통해 자동출입국심사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기반 마련 필요

<경찰청 지문 자동출입국심사 이용객 현황>

(단위: 명)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자동심사 이용승객	총계		846,373	10,214,737	37,707,741	49,156,042	**48,720,562**
	내국인	사전등록	430,481	3,593,219	10,477,789	12,954,993	**12,475,647**
		경찰청연계	315,537	4,822,630	19,410,298	**25,442,805**	**24,675,612**
		경찰청연계 이용비율	**42%**	**57%**	**65%**	**67%**	**67%**
	외국인		100,355	1,798,888	7,819,654	**10,758,244**	**11,569,303**

나. 사업 내용

- 자동출입국심사 경찰청 지문연계 시스템 이중화 구축 및 행정정보공동이용 연계를 위한 망솔루션 도입
  > 이중화 구축에 따른 증설 및 추가 + 노후장비 교체

다. 소요예산 산출 : 인프라 534백만원

- 전자여권용 노후 통신장비 교체 등(50백만원) : 소모성 통신장비 교체 비용

○ 크루즈 자동심사대 보안성 강화(615백만원) : 크루즈 자동출입국심사대 센서 등 보안성 강화

* ('27) 개발비 65백만 + SW/HW 550백만 = 615백만

가. 필요성

- 현재 제주도 국제크루즈터미널 내 출입국 자동심사대 38대를 운영 중이나, 2인 동시 진입(Tailgating),

자동심사대 무단 통과 시도, 단체 관광객 집중 시 운영 혼잡 등 보안상 취약점이 상존

※ 2016년 베트남인 2명이 인천국제공항 입국 과정에서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하던 다른 사람 뒤를 바짝 따라 들어가는 방식으로 출입국 심사를 통과한 사건 등 고려 보안성 강화 필수

나. 사업 내용

- 제주 크루즈 자동출입국심사대 38대에 2인 감지 장치 등 보안장치 설치

다. 소요예산 산출 : 총 615백만원 소요

- 심사대 38식 x 16.1백만원 = 615백만원

○ 출입국행정 전산인프라 운영안정성·업무연속성 확보 사업(1,545백만원) : 노후화된 전산인프라 교체로 시스템 운영 안정성 등 확보

* ('27년) SW/HW 1,545백만원 = 1,545백만원

○ AI 기반 고위험 승객 차단 및 자동출입국심사 개편 ISP(253백만원) : AI기술을 기반으로 국경관리의 효율성 극대화와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률 제고를 위한 ISP

* ('27년) ISP 연구개발 = 253백만원

○ AI 기반 출입국정보시스템 통합플랫폼 구축 ISP(421백만원) :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사용 중인 내부시스템을 통합화하고 AI기술을 접목하여 행정효율화 제고

* ('27년) ISP 연구개발 = 421백만원

'26년 예산		'27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8,617백만원	○ **일반연구비(260-01) : 3,170,000천원** 가. 외국인 계절근로 통합인력관리플랫폼 구축 개발비 : 405,000천원 나. 전자여행허가시스템 고도화 개발비 : 243,000천원 다. 국가정황정보 통합데이터베이스 구축 개발비 : 656,000천원 라. 출입국규제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 1,418,000천원 마. 출입국/이민행정 대민포털 개편 ISMP : 448,000천원 ○ **자산취득비(430-01) : 5,447,000천원** 가. 자동출입국심사대 증설 : 805,000천원 나. 계절근로 통합인력관리시스템 구축 장비 : 1,101,000천원 다. 전자여행허가시스템 고도화 장비 : 321,000천원 라. 국가정황정보 통합데이터베이스 구축 장비 : 1,067,000천원 마. .출입국규제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장비 : 1,043,000천원 바 .출입국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 연간사용권 구입 : 244,000천원 사.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 관리시스템 : 288,000천원 아. 1345종합안내센터 시스템 개선 : 528,000천원 자. 전자여권용 노후 통신장비 교체 등 : 50,000천원	26,295백만원	○ **일반연구비(260-01) : 10,740,000천원** 가. 자동출입국심사대 증설 : 175,000천원 나. 크루즈 자동출입국심사대 증설 : 341,000천원 다. 외국인 계절근로 통합인력관리플랫폼 구축 개발비 : 389,000천원 라. 출입국규제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 567,000천원 마. 크루즈 자동심사대 보안성 강화 : 65,000천원 비. AI기반 출입국·이민행정 지능형 대민플랫폼 구축 : 8,529,000천원 사. AI기반 고위험 승객 차단 및 자동출입국 심사 개편 ISP : 253,000천원원 아. AI기반 출입국정보시스템 통합 플랫폼 구축 ISP : 421,000천원 ○ **자산취득비(430-01) : 15,555,000천원** 가. 자동출입국심사대 증설 : 3,479,000천원 나. 크루즈 자동출입국심사대 증설 : 1,289,000천원 다. 계절근로 통합인력관리시스템 구축 장비 : 194,000천원 라. 출입국규제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장비 : 985,000천원 마. 출입국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 연간사용권 구입 : 477,000천원 바.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 확대 : 600,000천원 사. 경찰청 지문연계 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및 이중화 : 534,000천원 아. 크루즈 자동심사대 보안성 강화 : 550,000천원 자. 전자여권용 노후 통신장비 교체 등 : 50,000천원 차. AI 기반 출입국·이민행정 지능형 대민 플랫폼 구축 : 5,852,000천원 카. 출입국행정 전산인프라 운영안정성·업무연속성 확보 : 1,545,000천원

④ 출입국정보화센터 이전 및 클라우드 전환 : ('26)17,346 -> ('27) 753백만원 (16,593백만원 감액)

- (개요)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전에 따른 출입국정보화센터* 동반 이전 및 출입국서비스 무중단을 위한 클라우드 전환 사업 ('26. 10.경 문정동 新청사 입주 예정)

*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의 산하 기관, 이민행정시스템 등 1등급 시스템을 포함한 15개 출입국정보시스템 운용 중

- (산출) 클라우드 전환 위한 SW/HW 구입 17,346백만 = 17,346백

ㅇ 2026년도 예산 및 2027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5년 예산		'27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7,346백만원	○ **일반연구비(260-01) : 4,406,000천원** 가. 출입국정보화센터 이전 관련 기술지원 : 4,406,000천원 ○ **공사비(420-03) : 2,865,000천원** 가. 출입국정보화센터 설비 구축 : 2,865,000천원 ○ **자산취득비(430-01) : 10,075,000천원** 가. 서버 및 각종 이전 관련 자산 취득 : 10,075,000천원	753백만원	○ **자산취득비(430-01) : 753,000천원** 가. 서버 및 각종 이전 관련 자산 취득 : 753,000천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3~2027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3	2024	2025	2026	2027	2027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이민자의 한국사회 적응에 필요한 기본소양 충족도(%)	목표	53.7	53.8	54.6	56.1	-	-	이민자의 한국사회 적응에 필요한 기본소양 충족도(%) =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자(최종합격) 수 /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수료자 수 × 100	사회통합 정보망
	실적	53.6	54.3	55.7		-			
외국인 체류질서 및 사회통합 안정도(점)	목표	신규	신규	신규	신규	120	불법체류자 수 감소 추세와, 영주 및 귀화 수요 증가에 따라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자 수도 증가하여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여 성과지표 신규설정	불법체류자수 감소분 + 사회통합프로그램 4·5단계 이수자 수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 통계월보 및 사회통합 정보망
	실적	-	-	-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3	- (자동출입국심사대) 24대 증설 - (전자여행허가제 신청 현황) 신청자 수 : 2,134,136명 - (통합사증정보시스템) 비자발급 건수 : 1.927.431건 - (비자포털시스템) 전자사증 신청 건수 : 151,813건 - (하이코리아) 전자민원허가 건수 : 252,404건 - (유학생정보시스템) 신규유학생 등록 건수 : 115,320건 - (외국인정보공동이용시스템) 사실증명발급 건수 : 1,539,332건
2024	- (자동출입국심사대) 24대 증설 - (전자여행허가제 신청 현황) 신청자 수 : 961,458건 - (통합사증정보시스템) 비자발급 건수 : 2,325,140건 - (비자포털시스템) 전자사증 신청 건수 : 612,890건 - (하이코리아) 전자민원허가 건수 : 271,869건 - (유학생정보시스템) 신규유학생 등록 건수 : 145,213건 - (외국인정보공동이용시스템) 사실증명발급 건수 : 1,557,967건

2025	- (자동출입국심사대) 20대 증설 - (전자여행허가제 신청 현황) 신청자 수 : 988,272건 - (통합사증정보시스템) 비자발급 건수 : 2,317,563건 - (비자포털시스템) 전자사증 신청 건수 : 854,471건 - (하이코리아) 전자민원허가 건수 : 360,200건 - (유학생정보시스템) 신규유학생 등록 건수 : 161,491건 - (외국인정보공동이용시스템) 사실증명발급 건수 : 1,662,927건
2026. 7월말 기준	- (자동출입국심사대) 5대 증설 ('26.10.설치완료 예정) - (전자여행허가제 신청 현황) 신청자 수 : 588,339건 - (통합사증정보시스템) 비자발급 건수 : 1,754,423건 - (비자포털시스템) 전자사증 신청 건수 : 1,049,220 - (하이코리아) 전자민원허가 건수 : 251,964건 - (유학생정보시스템) 신규유학생 등록 건수 :145,100건 - (외국인정보공동이용시스템) 사실증명발급 건수 : 1,051,846건

③ 향후(2028년도 이후) 기대효과 :

- (AI기반 출입국·이민행정 대민플랫폼 구축) AI 기반으로 한 대민플랫폼을 구축하여 분절화된 시스템 통합과 이용자 친화성을 높이고 기존 서류 기반에서 비서류로 전환과 AI 도우미 기술 등 도입으로 이용자 만족도 제고
- (출입국행정 전산인프라 안정성 및 연속성 확보) 노후화된 장비 등을 교체하여 출입국 행정서비스 제공의 중단 없이 안정적으로 서비스 공급 추진
- (출입국규제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대외기관의 출입국 규제 요청이 실시간 온라인 전송으로 변경됨에 따라 건당 5분 소요되던 입력 작업이 1분 미만으로 단축되어 신속하고 정확한 출입국 규체 처리 가능
- (계절근로 통합관리플랫폼 구축) 계절근로자의 안전보험 가입 여부, 고용주 체납 사실 조회 등의 구현으로 계절근로자 인권 보호 강화
-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서비스 확대) 외국인등록증 대여로부터 발생하는 대포폰 개설 등 각종 위법 행위 근절 및 법질서 확립 강화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사항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정보화사업 내 기관별 역할 >

사업지원	주관기관	계약체결
법무부 이민정보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조달청

전담추진부서	
서울출입국청 출입국정보화센터	인천공항출입국청 정보관리과

사업수행
용역수행업체

< 사업별 진행 체계 >

1. 시스템 유지보수 및 위탁운영

유지보수 수요 파악	예산 확보/편성	유지보수 업체 선정	계약	사업수행 및 감독	예산 집행
서울출입국/ 인천공항출입국	본부 출입국기획과	서울출입국/ 인천공항출입국	서울출입국	(감독) 서울출입국/ 인천공항출입국	서울출입국
10개 시스템의 유지보수 필요 (26년 기준)	**1,342백만원** (26정부안, 관리용역비)	두 기관이 정보화사업 수행 핵심기관임	집행 관리 효율성 위해 대표로 계약	-	-

2. 업무시스템 임차 등

예산 확보/편성	사업 관리	예산 집행
본부 출입국기획과	인천공항출입국	인천공항출입국
465백만원 (26정부안, 공공요금및제세+ 임차료)	정보전송망 이용료 및 자동출입국심사대 임차료	매년 100% 집행

3. 시스템 개발 및 장비 도입

시스템 개발/개선 소요 파악	예산 확보/편성	개발업체 선정	계약	사업수행 및 감독	예산 집행
본부 이민정보과	본부 출입국기획과	서울출입국/ 인천공항출입국	서울출입국/ 인천공항출입국	(감독) 서울출입국/ 인천공항출입국	서울출입국/ 인천공항출입국
10개 시스템의 개발/개선 소요 (26년 기준)	**8,617백만원** (26정부안, 일반연구비+ 자산취득비)	개발요청부서의 협조 하에 개발업체 평가 후 선정	사업특성에 맞게 각 기관에서 계약	-	-

4. 출입국정보화센터 이전 및 클라우드 전환

이전 및 클라우드 전환 대상 파악	예산 확보/편성	관련 업체 선정	계약	사업수행 및 감독	예산 집행
서울출입국	본부 출입국기획과	서울출입국	서울출입국	(감독) 서울출입국/ 본부 출입국기획과	서울출입국
서울출입국 관리 시스템 중 클라우드 전환 대상 파악	**17,346백만원** (26정부안, 공사비+ 일반연구비+ 자산취득비)	사업 및 이전단계의 특성에 맞는 업체 선정	-	서울출입국 이전과 동시에 진행되는 사업이므로 출입국기획과도 함께 수행 감독	-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25~2029	30,383	41,015	29,320	27,369	27,369	
2026~2030		41,015	83,455	83,455	83,455	83,455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국회(상임위 등)	지적사항
▪ '25년 국회 결산 시정요구 사항(법사위)	▪ 국가정황 DB구축 사업 전반 모니터링 필요

2) 감사원 감사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 해당사항 없음

3) 자체평가·감사

재정사업 자율평가 ('25. 3.)	○ (최종의견 및 점수) 우수, 98.5 ○ (결과 요약) 수행 주체 등 현재의 사업 방식 및 재원분담이 적정하며, 사업 목적이 명확하고 생체 정보 등 민감한 정보를 처리하는 특수성을 감안할 때 국가 재정 투입이 반드시 필요한 사업임

4)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 해당사항 없음

5)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지적사항	후속 조치사항
▪ 국가정황 DB구축 사업 전반 모니터링 필요	▪ '26년 진행 중인 해당 사업에 관하여 사업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및 과제 이행 준수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AI 기술을 도입한 출입국·이민행정 서비스 도입 추진

필요성	■ **민원·행정 목적별로 다수의 사이트·시스템 분산 운영** - 출입국-이민행정 대표 포털인 하이코리아(체류민원 접수 및 처리), 비자포털(비자 접수 및 처리), 사회통합정보망(사회통합교육포털)이 분산되어 운영 중 → 민원인이 필요한 서비스를 찾기 위해 여러 시스템을 확인해야 하는 불편 발생, 민원 제출 후 처리 진행상황 확인 불가로 민원인 불만 가중

<table>
<tr><td></td><td>
<table>
<tr><td>하이코리아
(hikorea.go.kr)</td><td>▷ 방문예약, 전자민원 신청 및 외국인을 위한 각종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하는 대민시스템
▷ 체류기간 연장, 체류지 신고 등을 전자적으로 신청할 수 있음</td></tr>
<tr><td>비자포털
(visa.go.kr)</td><td>▷ 비자정보 안내 및 전자비자 신청, 비자발급 조회/확인서 발급 등 대한민국 입국에 필요한 비자정보 제공 및 민원신청을 위해 운영하는 대민용 시스템
▷ 전문직취업, 의료관광, 중국단체관광 등의 비자를 전자적으로 신청할 수 있음</td></tr>
<tr><td>사회통합정보망
(socinet.go.kr)</td><td>▷ 국내 체류 외국인(산업인력, 결혼이민자 등)이 적응·자립하는 데 필요한 기본소양(한국어와 한국문화, 한국사회이해) 등 사회통합교육을 제공하는 운영 플랫폼
▷ 일부 체류자격은 사회통합교육 이수가 필수, 그 외 체류자격은 사회통합교육 이수 시 사증발급·체류허가, 영주 및 국적 신청 시 우대 혜택을 제공함</td></tr>
</table>
■ 비대면 민원업무 대응에 한계 노출
- 현행 온라인서비스 이용 불편으로 대면 중심 민원처리 선호 경향 심화
→출입국관서 방문예약 적체 심화</td></tr>
<tr><td>시급성</td><td>■ 출입국·외국인 민원시스템의 노후화 심화
- 시스템별 상이한 개발 언어로 유지보수 비용 지속 증가

■ 모바일·비대면 민원 서비스 제공 한계
- 기존 시스템은 모바일 기기 이용 시 민원 신청·처리 사실상 불가</td></tr>
<tr><td>사업 내용</td><td>■ 출입국-이민행정 대표 포털인 하이코리아, 비자포털, 사회통합정보망의 통합 및 AI 도입으로 기능 대폭 개선
- 시스템 통합 운영으로 민원응대 효율성 극대화 및 유지보수비용 절감 도모

■ 단일화된 대민 창구 제공과 전자민원 전면 적용
- 사증·체류·사회통합 등 전자민원 신청·안내창구 일원화, 전자민원 전면 적용
- 제출서류 간소화 및 행정정보공동이용·마이데이터 등 각종 증명서 제출 편의 개선
- 클라우드·빅데이터 기반 통합 인프라 구축

■ AI·디지털 기술을 적용한 민원 안내·상담·신청·심사 지원 기능
- AI 기반 다국어 안내·상담으로 언어 장벽없는 신속·정확한 정보와 신청가이드 제공
- 신청요건 사전검증, 필수서류 확인, 보완요청·민원결과 자동안내, 데이터 분석을 통한 심사보조 등 AI를 활용한 민원 접수·처리 기능 도입
- 입국-체류-영주-국적 등 체류목적 및 자격을 반영한 맞춤형 민원안내 서비스 제공

■ 온/오프라인 사회통합교육 인프라 구축 및 강화
- 사회통합교육 프로그램 확장을 고려한 학습관리시스템(LMS) 전면 재구축
- 교육신청부터 학습·이수까지 맞춤형 안내·학습지원 서비스(AI 튜터) 제공
- 화상수업 개설, 출석확인, 참여시간 관리, 수업운영현황 관리 등 교육운영기관 및 강사 지원 기능 강화</td></tr>
<tr><td>참고사항</td><td>■ 2026년 6월 현재 ISMP 완료(448백만원)
- 기획예산처 및 NIA에 ISMP 산출물 공문 제출 완료
■ 3개의 포털 통합 결과 예상 유지보수비용, 현재보다 절감됨</td></tr>
</table>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1)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상위평가(심층평가) 결과 : 해당사항 없음
2) 보조사업 연장평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등 개별법률 규정된 평가 결과 : 해당사항 없음

12) 동 사업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

1) 2023년도 부처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 우수
- **(예산 집행)** 불필요한 이전용 부재 등 예산의 집행성 준수함
- **(성과 지표)**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비율 상승으로 성과지표를 달성함
- **(성과 우수성)** 전자여행허가제(K-ETA)를 통해 행정안전부 「2021 정부혁신 우수사례 통합 경진대회」에서 동상을 수상하여 성과의 우수성 입증

2) 2024년도 부처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 우수
- **(예산 집행)** 불필요한 이전용 부재 등 예산의 집행성 준수함
- **(성과 지표)**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비율 상승으로 성과지표를 달성함
- **(성과 우수성)** '23년 Skytrax 주관 세계공항서비스 평가 결과, 인천공항 「최고 공항 출입국심사서비스상」 수상으로 성과의 우수성 입증(자동출입국심사대 관련)

3) 2025년도 부처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 우수
- **(예산 집행)** 불필요한 이전용 부재 등 예산의 집행성 준수함
- **(성과 지표)**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자 수 상승으로 성과지표를 달성함
- **(성과 우수성)** '23년 Skytrax 주관 세계공항서비스 평가 결과, 인천공항 「최고 공항 출입국심사서비스상」 수상으로 성과의 우수성 입증(자동출입국심사대 관련)

13) 2026년도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 결과 및 후속 조치 현황

평가결과	성과평가 주요내용	조치결과
사업개선	○ 자동출입국심사 확대 및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도입 등 현장 체감형 성과를 창출한 법무부 핵심 정보화 사업으로서 정책적 필요성과 추진성과는 인정됨. 다만 2026년 정보화센터 이전과 관련한 대규모 예산 편성 및 사업 착수를 앞두고 있어 집행계획의 정밀성 확보가 요구됨 ○ 현장 중심의 행정 혁신 성과는 우수하나, 기술 도입에 따른 비용 절감 효과가 실질적인 재정 효율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예산 환류 체계 강화를 권고함	- 지출구조과정에서 시스템 다이어트를 통해 기본 시스템 유지보수 및 위탁운영 재정 효율화 추진 - 지출구조조정 반영: △320백만원(△2.2%)

14) 부처 건의사항 : 해당사항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3	25,175		25,175	109	-	-	25,284	24,632	97.8	97.4	-	652
2024	24,608		24,608	-	-	-	24,608	24,027	97.6	97.6	-	581
2025	30,410		30,410	-	-	-	30,410	30,383	99.9	99.9	-	27
2026	41,015		41,015	-	-	-	41,015	16,727	40.7	40.7	-	-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 해당사항 없음

2) 주요 결산사항

□ 2023~2026년 결산사항

2023	ㅇ 이월 :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신분세탁, 대포통장 방지) 구축 관련, 근거법령인 출입국관리법 개정('22.11.24) 후 수시배정('22.12.2) 추진 사업, 적정사업소요기간(5개월)을 계약기간에 반영(사업종료 : '23. 4월)함에 따라 사업예산 481백만원 중 109백만원 차년도 이월
2024	해당 없음
2025	해당 없음
2026	ㅇ 전용 : 출입국정보시스템운영(정보화) 자산취득비 907백만원을 연구개발비로 변경

□ 2026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전용 (2026.2..)	출입국정보시스템 운영(정보화) (1232-305)	430-01	907	출입국정보시스템 운영(정보화) (1232-305)	260-01	국정과제(계절근로 관리 개선) 이행

□ 2026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 해당사항 없음

사 업 명
외국인보호관리 (1233-3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		020	022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200	1233	300
명칭	이민정책활동	외국인체류관리	외국인보호관리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6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외국인보호관리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	유성오	김원희	구본민
		출입국기획과	02-2110-4010	02-2110-4026	02-2110-4028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년 결산	2026년 예산		2027년		증감 (B-A)	(B-A)/A
		본예산(A)	추경	요구안	조정안(B)		
외국인보호관리	21,278	24,011	24,011	25,117	25,117	1,106	4.6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25					2026(2026.7월말)							2027 예산안
	예산액(추경)	예산현액	집행액[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현액	집행액[실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예상액	불용예상액	
									예산현액	집행액[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21,372	21,428	21,278	-	150	24,011	23,911	13,714	23,911	13,714	-	-	25,117
· 공무직근로자 운영	12,170	12,157	12,150	-	7	13,540	13,540	8,876	13,540	8,876	-	-	15,578
· 불법체류외국인수용관리	5,341	5,341	5,266	-	75	5,399	5,299	2,032	5,299	2,032	-	-	4,536
· 기타 보호외국인 관리	3,209	3,279	3,244	-	36	3,237	3,237	2,216	3,237	2,216	-	-	3,528
· 외국인보호위원회운영	-	-	-	-	-	1,835	1,835	590	1,835	590	-	-	1,475
· 외국인 보호시설 개선	652	652	618	-	34	-	-	-	-	-	-	-	-
○ 비목별 분류(합계)	21,372	21,428	21,278	-	150	24,011	23,911	13,714	23,911	13,714	-	-	25,117
· 상용임금(110-03)	9,981	9,981	9,980	-	1	11,103	11,103	7,926	11,103	7,926	-	-	12,739
· 일반수용비(210-01)	914	914	903	-	11	1,761	1,661	744	1,661	744	-	-	1,407
· 공공요금및제세(210-02)	-	-	-	-	-	43	43	6	43	6	-	-	19
· 피복비(210-03)	86	72	72	-	-	86	86	57	86	57	-	-	91
· 특근매식비(210-05)	-	-	-	-	-	23	23	11	23	11	-	-	23
· 임차료(210-07)	-	-	-	-	-	444	444	306	444	306	-	-	444
· 유류비(210-08)	-	-	-	-	-	14	14	1	14	1	-	-	7
· 시설장비유지비(210-09)	-	-	-	-	-	120	120	49	120	49	-	-	120
· 복리후생비(210-12)	152	152	151	-	1	152	152	134	152	134	-	-	187
· 기타운영비(210-16)	-	-	-	-	-	9	9	4	9	4	-	-	9
· 국내여비(220-01)	366	510	497	-	13	582	582	272	582	272	-	-	541
· 국외업무여비(220-02)	18	88	87	-	1	18	18	18	18	18	-	-	18
· 사업추진비(240-01)	42	42	42	-	-	82	82	52	82	52	-	-	120
· 직책수행경비(250-02)	-	-	-	-	-	37	37	20	37	20	-	-	37
· 특정업무경비(250-03)	2,683	2,567	2,547	-	20	2,675	2,675	1,827	2,675	1,827	-	-	2,860
· 일반연구비(260-01)	27	-	-	-	-	13	13	-	13	-	-	-	-
· 포상금(310-03)	-	-	-	-	-	50	50	37	50	37	-	-	50
· 기타보전금(310-04)	73	73	71	-	2	73	73	48	73	48	-	-	123
· 구호및교정비(320-06)	4,427	4,427	4,363	-	64	4,527	4,527	1,443	4,527	1,443	-	-	3,761
· 고용부담금(320-09)	1,951	1,951	1,947	-	4	2,198	2,198	759	2,198	759	-	-	2,562
· 실시설계비(420-02)	32	32	31	-	1	-	-	-	-	-	-	-	-
· 공사비(420-03)	539	539	507	-	32	-	-	-	-	-	-	-	-
· 감리비(420-04)	8	8	8	-	-	-	-	-	-	-	-	-	-
· 자산취득비(430-01)	73	73	73	-	-	-	-	-	-	-	-	-	-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21,372	21,428	21,278	-	150	24,011	23,911	13,714	23,911	13,714	-	-	25,117
· 공무직근로자 운영	12,170	12,157	12,150	-	7	13,540	13,540	8,876	13,540	8,876	-	-	15,578
-상용임금(110-03)	9,981	9,981	9,980	-	1	11,103	11,103	7,926	11,103	7,926	-	-	12,738
-피복비(201-03)	86	72	72	-	-	86	86	57	86	57	-	-	91
-복리후생비(210-12)	152	152	151	-	1	152	152	134	152	134	-	-	187
-고용부담금(320-09)	1,951	1,951	1,947	-	4	2,198	2,198	759	2,198	759	-	-	2,562
· 불법체류외국인수용관리	5,341	5,341	5,266	-	75	5,399	5,299	2,032	5,299	2,032	-	-	4,536
-일반수용비(210-01)	914	914	903	-	11	872	772	589	772	589	-	-	775
-구호및교정비(320-06)	4,427	4,427	4,363	-	64	4,527	4,527	1,443	4,527	1,443	-	-	3,761
· 기타 보호외국인 관리	3,209	3,279	3,244	-	36	3,237	3,237	2,216	3,237	2,216	-	-	3,528
-국내여비(220-01)	366	510	497	-	13	366	366	255	366	255	-	-	397

	2025					2026(2026.7월말)							2027 예산안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국외업무여비(220-02)	18	88	87	-	1	18	18	18	18	18	-	-	18
-사업추진비(240-01)	42	42	42	-	-	42	42	31	42	31	-	-	80
-특정업무경비(250-03)	2,683	2,567	2,547	-	20	2,675	2,675	1,827	2,675	1,827	-	-	2,860
-일반연구비(260-01)	27	-	-	-	-	13	13	-	13	-	-	-	-
-포상금(310-03)	-	-	-	-	-	50	50	37	50	37	-	-	50
-기타보전금(310-04)	73	73	71	-	2	73	73	48	73	48	-	-	123
· 외국인보호위원회운영	-	-	-	-	-	1,835	1,835	590	1,835	590	-	-	1,475
-일반수용비(210-01)	-	-	-	-	-	889	889	155	889	155	-	-	632
-공공요금제세(210-02)	-	-	-	-	-	43	43	6	43	6	-	-	19
-특근매식비(210-05)	-	-	-	-	-	23	23	11	23	11	-	-	23
-임차료(210-07)	-	-	-	-	-	444	444	306	444	306	-	-	444
-유류비(210-08)	-	-	-	-	-	14	14	1	14	1	-	-	7
-시설장비유지비(210-09)	-	-	-	-	-	120	120	49	120	49	-	-	120
-기타운영비(210-16)	-	-	-	-	-	9	9	4	9	4	-	-	9
-국내여비(220-01)	-	-	-	-	-	216	216	17	216	17	-	-	144
-사업추진비(240-01)	-	-	-	-	-	40	40	21	40	21	-	-	40
-직책수행경비(250-02)	-	-	-	-	-	37	37	20	37	20	-	-	37
· 외국인 보호시설 개선	652	652	618	-	34	-	-	-	-	-	-	-	-
-실시설계비(420-02)	32	32	31	-	1	-	-	-	-	-	-	-	-
-공사비(420-03)	539	539	507	-	32	-	-	-	-	-	-	-	-
-감리비(420-04)	8	8	8	-	-	-	-	-	-	-	-	-	-
-자산취득비(430-01)	73	73	73	-	-	-	-	-	-	-	-	-	-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세부사업 : 외국인보호관리) 단속 등에 의하여 신병이 확보된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을 외국인 보호 시설에 수용하고, 급식·피복·의료관리 등 적정 처우 후 본국으로 송환함으로써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
- (내역사업 1 : 공무직근로자 운영) 보호경비대원, 운전원, 조리사, 영양사, 심리상담사 등을 고용하여 출입국기관 외국인 보호업무 지원
- (내역사업 2 : 불법체류외국인 수용관리) 단속 등으로 보호된 외국인에 대한 급식·의료 등 수용관리 및 적정처우 후 강제퇴거 집행
- (내역사업 3 : 기타 보호외국인 관리) 보호외국인 강제퇴거를 위한 국내 및 국외호송, 출입국소송 업무 수행, 유관기관 간 업무협의, 회의 등 전국 29개 보호시설운영 출입국기관에서 범법외국인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

- (내역사업 4 : 외국인보호위원회 운영) 외국인보호(인신구금) 처분에 대하여 독립적, 중립적으로 심의, 구제하는 준사법적 행정위원회인 외국인보호위원회('25.6.1. 신설) 운영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출입국관리법 제51조, 제52조, 제63조, 제66조의4 등

제51조(보호) 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외국인이 제4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으면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으로부터 보호명령서를 발급받아 그 외국인을 보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호명령서의 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보호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외국인이 제4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으로부터 보호명령서를 발급받을 여유가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긴급히 보호할 수 있다.
④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3항에 따라 외국인을 긴급히 보호하면 즉시 긴급보호서를 작성하여 그 외국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⑤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3항에 따라 외국인을 보호한 경우에는 48시간 이내에 보호명령서를 발급받아 외국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보호명령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즉시 보호를 해제하여야 한다.
제52조(보호기간 및 보호장소) ① 제51조에 따라 보호된 외국인의 강제퇴거 대상자 여부를 심사·결정하기 위한 보호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의 허가를 받아 1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② 보호할 수 있는 장소는 외국인보호실, 외국인보호소 또는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장소(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로 한다.
제63조(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의 보호 및 보호해제) 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을 여권 미소지 또는 교통편 미확보 등의 사유로 즉시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할 수 없으면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그를 보호시설에 보호할 수 있다.
②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호할 때 그 기간이 3개월을 넘는 경우에는 3개월마다 미리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제2항의 승인을 받지 못하면 지체 없이 보호를 해제하여야 한다.
④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이 다른 국가로부터 입국이 거부되는 등의 사유로 송환될 수 없음이 명백하게 된 경우에는 그의 보호를 해제할 수 있다.
⑤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보호를 해제하는 경우에는 주거의 제한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라 보호하는 경우에는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 제56조의2부터 제56조의9까지 및 제57조를 준용한다.
제66조의4(외국인보호위원회의 설치) ① 외국인 보호·재보호에 대한 이의 심사, 보호기간 연장 승인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외국인보호위원회를 둔다.
② 외국인보호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② 추진경위 : 불법체류자 단속, 강제퇴거 등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과 더불어 외국인 보호처분에 대한 심의·구제 및 보호외국인 적정 처우 등 외국인 인권보호도 강화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67~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 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 포함)

연도	2023	2024	2025	2026	2027(안)
사업비	19,736	22,287	21,372	24,011	25,117

- 기타: 국내 체류외국인 293만 명, 불법체류 외국인 34.5만 명('26.8. 현재)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사업 수혜자 : 내·외국인(체류외국인 293만명, '26.8.)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3) 2027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

① **공무직 근로자 운영 : ('26) 13,540 → ('27) 15,578백만원, 2,038백만원 증액**

ㅇ (요구) 외국인보호관리사업 공무직 근로자의 보수(상용임금), 복리후생비, 고용부담금

※ 외국인보호관리사업 공무직 근로자 총인원 305명('26년 현재) : 보호경비원 214, 조리원 44, 운전원 29, 청사관리원 5, 기계원 3, 사무보조원 3, 심리상담사 4, 영양사 3

ㅇ (산출)

- (신규증원) '27년 평택출입국사무소, 천안출입국사무소 외국인보호실 신규 설치에 따른 보호경비대원 9명 증원 +259백만원 → 총 9명 : 평택출입국 3명(1인×3교대), 천안출입국 6명(2인×3교대)

※ 평택출입국 보호수용인원 18명, 천안출입국 보호수용인원 30명 → 천안출입국의 경우, 천안외국인교도소를 관할하여 출소 후 보호 인계되는 외국인 소요가 많음

- (처우개선) 공무직 처우 개선(공통처우개선율 4.3% 인상 및 통상임금 연동 수당 등) : +1,779백만원

ㅇ 2026년도 예산 및 2027년도 예산안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6년 본예산		2027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3,539,601	○ **상용임금(110-03) : 11,103,090천원** 가. 보수 : 305명×2,671천원×12월=9,774,876천원 나. 명절휴가비 : 305명×1,337천원×2회 =815,814천원 다. 정액급식비 : 305명×140천원×12월 =512,400천원 ○ **피복비(210-12) : 85,600천원** 가. 외국인보호경비대원 피복비 : 214명×400,000원 =85,600천원 ○ **복리후생비(210-12) : 152,500천원** 가. 맞춤형복지비 : 305명×500천원 =152,500천원 ○ **고용부담금(320-06) : 2,198,411천원** 가. 4대보험료 및 퇴직금 : 2,198,411천원	15,578,204	○ **상용임금(110-03) : 12,738,618천원** 가. 보수 : 314명×2,965천원×12월=11,171,130천원 나. 명절휴가비 : 314명×1,536천원×2회 =964,608천원 다. 정액급식비 : 314명×160천원×12월 =602,880천원 ○ **피복비(210-12) : 90,800천원** 가. 외국인보호경비대원 피복비 : 227명×400,000원 =90,800천원 ○ **복리후생비(210-12) : 187,050천원** 가. 맞춤형복지비 : 314명×600천원 =188,400천원 나. 계수조정 : △1,350천원 ○ **고용부담금(320-06) : 2,561,736천원** 가. 4대보험료 및 퇴직금 : 2,561,736천원

② **불법체류외국인 수용관리 : ('26) 5,399 → ('27) 4,536백만원, 863백만원 감액**

- 보호외국인 구호 및 교정비 : ('26) 4,527 → ('27) 3,761백만원 (감 766백)

■ 급식비 : ('26) 4,286 → ('27) 3,520백만원(감 766백)

구분		'26년	'27년
급식비	자체급식	869명×5,988원×365일×0.88(급식이용률)=1,671백만	695명×6,150원×365일×0.88(급식이용률)=1,373백만
	외부매식	399명×6,789원×3식×365일×0.88=2,610백만	319명×6,972원×3식×365일×0.88=2,143백만
	명절급식 추가	1,268명×2천원×2회=5백만	1,014명×2천원×2회=4백만
	합계	**4,286백만원**	**3,520백만원**

■ 피복비 및 침구류 : ('26) 123 → ('27) 1,268명×97천원=123백만원 (전년 동)

■ 이송치료비 : ('26) 118 → ('27) 9,830천원×12월=118백만원 (전년 동)

- 보호외국인 수용경비 : ('26) 304 → ('27) 1,014명×20,000원×12월=243백만원 (감 61백)
- 보호외국인 호송(고속도로 통행료) : ('26) 65 → ('27) 5,306천원×12월=64백만원 (감 1백)
- 출입국사범 특수외국어 통역비 : ('26) 120 → ('27) 1,014명×95천원=96백만원 (감 24백)
- 출입국소송비 : ('26) 155 → ('27) 155백만원 (전년 동)
- 야간근로자 특수건강검진 : ('26) 94 → ('27) 94백만원 (전년 동)
- 보호외국인 의약품 구입 : ('26) 79 → ('27) 1,014명×81천원=82백만원 (+3백)
- 보호실 피복 세탁비 : ('26) 56 → ('27) 1,014명×40천원=40백만원 (감 16백)

○ 2026년도 예산 및 2027년도 예산안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6년 본예산		2027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5,398,794	○ **일반수용비(210-01) : 871,958천원** 가. 보호외국인 수용경비 : 1,268명×20천원×12월=304,320천원 나. 보호외국인 호송(고속도로 통행료) : 5,400천원×12월=64,800천원 다. 출입국사범 통역비 : 1,268명×95천원=120,460천원 라. 출입국소송비 : 12,938천원×12월=155,250천원 마. 야간근로자 특수건강검진 : 1,170명×80천원=93,600천원 바. 보호외국인 의약품 구입 : 1,268명×62천원=78,616천원 사. 보호실 피복 세탁비 : 1,268명×44천원=55,792천원 아. 계수조정 : △880천원 ○ **구호및교정비(320-06) : 4,526,836천원** 가. 급식비(외국인보호소) : 869명×5,988원×365일×0.88=1,671,387천원 나. 매식비(출입국사무소) : 399명×20,367원×365일×0.88=2,610,210천원 다. 명절 급식 추가 : 1,268명×2천원×2회=5,072천원 라. 피복 및 침구비 : 123,000천원 마. 보호외국인 이송치료비 : 118,000천원 사. 계수조정 : △833천원	4,535,132	○ **일반수용비(210-01) : 774,075천원** 가. 보호외국인 수용경비 : 1,014명×20천원×12월=243,360천원 나. 보호외국인 호송(고속도로 통행료) : 5,306천원×12월=63,672천원 다. 출입국사범 통역비 : 1,014명×95천원=96,330천원 라. 출입국소송비 : 12,938천원×12월=155,250천원 마. 야간근로자 특수건강검진 : 1,170명×80천원=93,600천원 바. 보호외국인 의약품 구입 : 1,014명×81천원=81,728천원 사. 보호실 피복 세탁비 : 1,014명×40천원=40,256천원 아. 계수조정 : △121천원 ○ **구호및교정비(320-06) : 3,761,057천원** 가. 급식비(외국인보호소) : 695명×6,150원×365일×0.88=1,372,889천원 나. 매식비(출입국사무소) : 319명×20,916원×365일×0.88=2,143,112천원 다. 명절 급식 추가 : 1,014명×2천원×2회=4,056천원 라. 피복 및 침구비 : 123,000천원 마. 보호외국인 이송치료비 : 118,000천원

③ 기타 보호외국인 관리 : ('26) 3,237 → ('27) 3,528백만원, 291백만원 증액

■ 출입국관리활동비 : ('26) 2,675 → ('27) 2,860백만원 (+185백)

☞ 내·외국인 출입국자 심사, 여권 위변조 및 신분세탁 적발, 대테러,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범 조사 등 공공안녕 및 체류질서 확립을 위한 5급 이하 출입국관리공무원의 활동 실비 지원

- 개인활동비 : ('26) 1,446명×150천원×12월=2,603백만원 → ('27) 1,570명×150천원×12월=2,826백만원(증 223백)

※ '25년~'27년 출입국심사관 등 직제 증원분에 대하여 최소 인원만 반영

- 부서활동비 : ('26) 72백만원 → ('27) 34백만원(감 38백)

■ 범법외국인 강제퇴거 : ('26) 73 → ('27) 123백만원 (증 50백)

- (개요) 강제퇴거 대상자 출국비용(항공료 등)은 '자기부담'(대상자의 약 99%)이 원칙이나, 본인 또는 국내 연고인에 의해서도 출국비용을 전혀 부담할 수 없는 경우, 극히 예외적으로 국비로 신속하게 강제퇴거 집행을 함으로써 장기보호를 방지하고 공공안전·질서를 확립
- (미확보시 문제점) 무자력(無資力) 위험외국인에 대한 신속 퇴거집행 지연으로 불필요한 보호예산(식비·피복·세탁·의료비 등) 추가 소모 → 특히, 「출입국관리법」개정(제63조)으로 외국인보호기간 상한(원칙: 9개월, 예외: 형사범·난민신청자 등 20개월)이 도입되어, 신속한 퇴거집행 지연 시 보호기간 상한을 이유로 위험 외국인을 보호해제하여 사회를 활보할 위험 존재
- (산출내역) ('26) 73백만원 → ('27) 123백만원 [+50백만원, 기타보전금(310-04)]

① 아프리카지역 송환 강제퇴거자 +5명 x 3백만 = +15백만원
② 중동지역 송환 강제퇴거자 +8명× 1.9백만 = +15백만원
③ 러시아·중국·동남아지역 송환 강제퇴거자 +40명× 0.5백만=20백만원

- 보호외국인 이송 국내여비 : ('26) 366 → ('27) 31,988천원×12월=397백만원 (+31백)
- 보호외국인 국외 강제퇴거 호송 국외여비 : ('26) 18 → ('27) 18백만원 (전년 동)
- 보호관리 사업추진비 : ('26) 42 → ('27) 3,509천원×12월=80백만원 (+38백)
- 의무관 임상연구비 : ('26) 13백만원 → ('27) - (순감) ※ 다년간 집행 실적 없음 등 감안
-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 및 인권보호 등 우수직원 등 포상금 : ('26) 50 → ('27) 50백만원 (전년 동)

ㅇ 2026년도 예산 및 2027년도 예산안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6년 본예산		2027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3,237,625	○ **국내여비(220-01) : 365,896천원** 가. 보호외국인 이송여비 : 29개기관×979천원×12월=340,616천원 나. 출입국소송 출장비 : 158건×4회×20천원×2명=25,280천원 ○ **국외업무여비(220-02) : 17,955천원** 가. 강제퇴거외국인 호송 : 3개지역×1,995천원×3명=17,955천원 ○ **사업추진비(240-01) : 42,108천원** 가. 보호외국인 담당자회의 등 : 3,509천원×12월=42,108천원 ○ **특정업무경비(250-03) : 2,675,218천원** 가. 개인활동비 : 1,446명×150천원×12월=2,602,800천원 나. 부서활동비 : 72,418천원 ○ **일반연구비(260-01) : 13,680천원** 가. 의무관 임상연구비 : 3명×380천원×12월=13,680천원 ○ **포상금(310-03) : 50,000천원** 가.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 및 인권보호 등 우수직원 등 포상 : 50,000천원 ○ **기타보전금(310-04) : 72,768천원** 가. 범법외국인 강제퇴거 : 82명×850천원=69,768천원 나. 참고인 여비 등 : 250천원×12월=3,000천원	3,528,157	○ **국내여비(220-01) : 397,276천원** 가. 보호외국인 이송여비 : 30개기관×1,033,322원×12월=371,996천원 나. 출입국소송 출장비 : 158건×4회×20천원×2명=25,280천원 ○ **국외업무여비(220-02) : 17,955천원** 가. 강제퇴거외국인 호송 : 3개지역×1,995천원×3명=17,955천원 ○ **사업추진비(240-01) : 79,908천원** 가. 보호외국인 담당자회의 등 : 6,659천원×12월=79,908천원 ○ **특정업무경비(250-03) : 2,860,218천원** 가. 개인활동비 : 1,570명×150천원×12월=2,826,000천원 나. 부서활동비 : 34,218천원 ○ **포상금(310-03) : 50,000천원** 가.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 및 인권보호 등 우수직원 등 포상 : 50,000천원 ○ **기타보전금(310-04) : 122,800천원** 가. 범법외국인 강제퇴거 : 120명×998천원=119,800천원 나. 참고인 여비 등 : 250천원×12월=3,000천원

④ 외국인보호위원회 운영 : ('26) 1,835백만원 → ('27) 1,475백만원 (감 360백)

- (개요) '외국인 송환 가능 시까지 사실상 무기한 보호' 헌법불합치 결정('23) 후 출입국관리법 개정으로 대법원 등이 추천한 외부전문가가 참여하여 외국인 보호(인신구금)처분 심의·구제 기능을 하는 「외국인보호위원회」(준사법적 행정위원회) 운영('25.6.1.~)

☞ 외국인보호위원회(위원: 9인, 외부위원 과반이상) 및 사무국(정원 32명)의 보호처분 이의신청, 일시해제 등 조사, 심의를 위한 관련 전문 통역비, 위원 참석비, 구제신청 사건 조사비, 운영비 등 지원

*「출입국관리법」 제66조의4(외국인보호위원회의 설치) "① 외국인 보호·재보호에 대한 이의심사, 보호기간 연장 승인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외국인보호위원회를 둔다. ② 외국인보호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25. 3. 18. 공포, 6. 1. 시행)

- 구성 : 외국인보호위원회 총 9명[위원장(비상임) 1, 상임위원(고위나급) 1, 비상임위원 7명] + 사무국(정원 32명)
  ※ 소재지: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신남리 9-2, 헤르메스몰 5층
- 임무 : 법위반 외국인 보호처분에 관한 이의신청, 일시해제 신청, 강제퇴거 집행 가능성 및 계속 보호 필요성 등을 주기적으로 검토·심의·구제 등

- (산출내역) 외국인보호위원회 운영경비 절감 : ('26) 1,835백만원 → ('27) 1,475백만원 (감 360백)

ㅇ 2026년도 예산 및 2027년도 예산안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6년 본예산		2027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834,980	○ **일반수용비(210-01) : 889,400천원** 가. 외국인보호(인신구금)처분 조사 및 대면 구술심리 등 통역비 : 2,215건*50,000원*4시간=443,000천원 나. 외국인보호위원회 참석비 : 8명*350,000원*6회*12개월=201,600천원 다. 위원회 심리기록 속기료 : 6회*2시간*200,000원*12개월=28,800천원 라. 위원회 심의자료, 사무비품 등 운영비 : 18,000천원*12개월=216,000천원 ○ **공공요금및제세(210-02) : 43,000천원**	1,475,101	○ **일반수용비(210-01) : 632,501천원** 가. 외국인보호(인신구금)처분 조사 및 대면 구술심리 등 통역비 : 2,337건*50,000원*2.57시간=300,305천원 나. 외국인보호위원회 참석비 : 8명*400천원*6회*12개월=230,400천원 다. 위원회 심리기록 속기료 : 6회*2시간*200,000원*12개월=28,800천원 라. 위원회 심의자료, 사무비품 등 운영비 : 6,083천원*12개월=72,996천원 ○ **공공요금및제세(210-02) : 19,000천원**

2026년 본예산		2027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외국인보호위원회 공공요금및제세(서류송달등) : 43,000천원 ○ **특근매식비(210-05) : 22,680천원** 외국인보호위원회 특근매식비 : 22,680천원 ○ **임차료(210-07) : 444,000천원** 가. 외국인보호위원회 사무실 임차료 : 33,000천원*12개월=396,000천원 나. 업무용차량 임차료 : 1,000천원*4대*12개월=48,000천원 ○ **유류비(210-08) : 14,000천원** 외국인보호위원회 유류비 : 5대*233,330원*12개월=14,000천원 ○ **시설장비유지비(210-09) : 120,000천원** 가. 외국인보호위원회 임차청사 관리비 : 9,000천원*12개월=108,000천원 나. 업무용시설장비(영상녹화장비등) 유지관리 : 1,000천원*12개월=12,000천원 ○ **기타운영비(210-16) : 9,000천원** 외국인보호위원회 기타운영비(부서운영등) : 9,000천원 ○ **국내여비(220-01) : 216,000천원** 외국인보호위원회 사건조사 여비 : 216,000천원 ○ **업무추진비(240-01) : 40,000천원** 외국인보호위원회 위원, 조사관 및 관계기관(주한공관, 법원 등) 업무협의 : 40,000천원 ○ **직책수행경비(250-02) : 36,900천원** 외국인보호위원회 위원장등 직책수행경비 : 36,900천원		외국인보호위원회 공공요금및제세(서류송달등) : 19,000천원 ○ **특근매식비(210-05) : 22,680천원** 외국인보호위원회 특근매식비 : 22,680천원 ○ **임차료(210-07) : 444,000천원** 가. 외국인보호위원회 사무실 임차료 : 33,000천원*12개월=396,000천원 나. 업무용차량 임차료 : 1,000천원*4대*12개월=48,000천원 ○ **유류비(210-08) : 7,020천원** 외국인보호위원회 유류비 : 5대*117,000원*12개월=7,020천원 ○ **시설장비유지비(210-09) : 120,000천원** 가. 외국인보호위원회 임차청사 관리비 : 9,000천원*12개월=108,000천원 나. 업무용시설장비(영상녹화장비등) 유지관리 : 1,000천원*12개월=12,000천원 ○ **기타운영비(210-16) : 9,000천원** 외국인보호위원회 기타운영비(부서운영등) : 9,000천원 ○ **국내여비(220-01) : 144,000천원** 외국인보호위원회 사건조사 여비 : 144,000천원 ○ **업무추진비(240-01) : 40,000천원** 외국인보호위원회 위원, 조사관 및 관계기관(주한공관, 법원 등) 업무협의 : 40,000천원 ○ **직책수행경비(250-02) : 36,900천원** 외국인보호위원회 위원장등 직책수행경비 : 36,900천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3~2027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3	2024	2025	2026	2027	2027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이민자의 한국사회 적응에 필요한 기본소양 충족도(%)	목표	53.7	53.8	54.6	56.1	-	-	이민자의 한국사회 적응에 필요한 기본소양 충족도(%) =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자(최종합격) 수 /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수료자 수 × 100	사회통합 정보망
	실적	53.6	54.3	55.7		-			
외국인 체류질서 및 사회통합 안정도(점)	목표	신규	신규	신규	신규	120	불법체류자 수 감소 추세와, 영주 및 귀화 수요 증가에 따라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자 수도 증가하여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여 성과지표 신규설정	불법체류자수 감소분 + 사회통합프로그램 4·5단계 이수자 수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 통계월보 및 사회통합 정보망
	실적	-	-	-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3	보호 연인원 : 443,867명, 일평균 보호인원 : 1,216명
2024	보호 연인원 : 481,181명, 일평균 보호인원 : 1,315명
2025	보호 연인원 : 454,115명, 일평균 보호인원 : 1,244명
2026	보호 연인원 : 130,895명, 일평균 보호인원 : 723명 ('26.6. 기준)

③ 향후(2027년도 이후) 기대효과

- 불법체류 주요 유발요인인 불법입국·취업 알선 브로커 등에 대한 기획조사 강화 및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자진출국 유도 등 불법체류 외국인 감소정책 추진을 통한 안전한 사회 구현
- 불법체류자 정부합동단속 기간·참여기관·인원 확대, 서민 일자리 대표업종에 대한 기획단속 및 특별단속지정, 광역단속팀 추가 신설·인원 확대 등 단속시스템 개선 등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활동 강화를 통한 외국인체류질서 확립
- 불법고용 억제를 위한 관계부처 협업 및 주요 불법체류 발생 국가와의 협력 강화, 불법고용주 처벌 수위 상향 등 불법고용 억제 환경 조성으로 내국인 일자리 보호
- 외국인보호(인신구금) 처분에 대한 독립적, 중립적 심의·구제기구인 외국인보호위원회(대법원, 변협 등 추천 외부 전문가 등 다수 참여하는 준사법적 행정위원회) 운영, 적정 수준의 보호외국인 처우 등을 통해 외국인 인권보호 강화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강제퇴거) 불법체류외국인 단속계획 수립(출입국관리법 46조) → 불법고용주 및 외국인 단속(출입국관리법 제18조,21조,47조,81조) → 강제퇴거 대상자 보호실 및 보호소 수용(출입국관리법 제51조,63조) → 강제출국조치(출입국관리법 제46조)

■ (외국인보호위원회) 외국인보호처분(사실상 인신구금)에 대하여 보호외국인 본인 또는 대리인 등이 외국인보호위원회로 보호명령처분 심사청구(이의신청), 보호기간 연장심사, 보호일시해제 청구 → 외국인보호위원회의 조사·심의·의결 → 보호 해제·연장 등 조치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25~2029	21,372	24,011	21,367	20,918	20,243	
2026~2030		24,011	25,117	25,870	26,646	27,445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외국인보호소 의무관의 처우 및 근무여건 개선 등 의료인력 확보 방안 마련 필요(법사위·예결위, '23.결산)
  - 외국인보호관리 사업의 재정사업 자율평가 등급 제고 노력 필요(법사위, '24.결산)
2) 감사원 감사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 해당 없음
3) 자체평가·감사 : 해당 없음
4)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 해당 없음
5)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외국인보호소 의료인력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매주 일정 시간 진료를 할 수 있도록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등 근무여건 개선하여 의료인력 확보('24.11.), 관계기관과 공중보건의 배정 협의 등 조치
  - "위험외국인 국외 호송" 보도자료 배포 등 '외국인보호관리' 사업 실적을 적극 홍보하고, 효율적 집행을 통해 연례적 이·전용 규모를 최소화하는 등 개선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불법체류 외국인 범정부 합동단속 추진 : 불법체류자 증가로 국민과의 일자리 갈등, 외국인 범죄 발생 등 사회적 부작용이 야기됨에 따라 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경찰청·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하여 범정부 차원의 강력 단속을 실시함으로써 국민 일자리 보호 및 외국인체류질서 확립

○ 외국인보호처분에 대한 독립적·중립적 심의·구제, 보호외국인 적정 처우 등 인권보호 강화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통합재정사업 성과평가('26.5.) 결과 : 사업개선
  - "자율평가 미흡 등급 환류를 위해 외국인 송환 등 사업 실적을 적극적으로 홍보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됨"
  - "'25년 신설 지표인 '보호외국인 평균 보호기간'에서 목표(10.8일) 대비 10.0일을 기록하며 107.4%의 달성도를 보였으며, 인터폴 적색 수배자 및 성폭력 사범 등 국내 안전 위협 외국인을 본국으로 직접 강제 송환하는 등 실질적 성과는 확인됨"
  - "외국인 인권 보호 성과에 걸맞도록 예산 구조를 실소요 중심으로 개선 필요"

12) 동 사업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

○ 재정사업 자율평가('25.3.) 결과 : 미흡 (점수 90.2)
  - "수행 주체 등 현재의 사업 방식 및 재원분담이 적정하며, 성과목표 또한 달성했으나, 성과 우수성에 대한 홍보실적이 부족하여 개선이 필요해 보임"

13) 2026년도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 결과 및 후속 조치 현황

평가결과	성과평가 주요내용	조치결과
사업개선	외국인 송환 및 인권 보호 성과 등 확인됨, 실소요 중심 예산 구조 개선 필요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 및 인권 보호에 지속 노력 실소요 중심 예산 편성 노력

14) 부처 건의사항 : 해당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3	19,736	-	19,736	-	1,497	-	21,233	20,976	106.3	98.8	-	257
2024	22,287	-	22,287	-	295	-	22,582	22,226	99.7	98.4	-	356
2025	21,372	-	21,372	-	56	-	21,428	21,278	99.6	99.3	-	150
2026	24,011	-	24,011	-	△100	-	23,911	13,714	57.3	57.3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 해당 없음

2) 주요 결산사항

□ 2023~2026년 결산사항

2023	○ 전용 : 불법체류 등 사유로 보호 수용되는 외국인 증가에 따라 호송여비, 급식·피복비, 보호외국인 수용경비 등 1,690백만원 전용 증, 보호소 의무관 일반연구비 등 193백만원 전용 감 ○ 불용 : 집행잔액 257백만원
2024	○ 전용 : 불법체류외국인 합동단속 등 국외 강제퇴거, 호송여비 소요 증가 등 부족분 충당을 위해 전용 증 295백만원 ○ 불용 : 집행잔액 356백만원
2025	○ 전용 :불법체류외국인 합동단속 등 국외 강제퇴거, 호송여비 소요 증가 등 부족분 충당을 위해 전용 증 214백만원, 보호관리사업 내 특정업무경비 및 일반연구비 전용 감 158백만원 ○ 불용 : 집행잔액 150백만원
2026	○ 전용 : 크루즈 입항 증가에 따른 관광객 신속 하선, 입국으로 지역 관광소비 활성화 등을 위한 출입국심사관 선상심사 확대를 위해 출입국외국인관서시설운영 사업 내 국외여비 100백만원 증, 외국인보호관리사업 내 일반수용비 100백만원 감

□ 2026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전용 (2026.6.23.)	외국인보호관리 (1233-300)	일반수용비 (210-01)	100	출입국외국인 관서시설운영 (1232-300)	국외여비 (220-02)	크루즈 관광객 신속 입국심사로 관광소비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한 크루즈 선상(船上) 입국심사 확대 국외여비 부족분 전용

□ 2026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 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 해당 없음

사 업 명
외국인사회통합지원 (1233-3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		020	022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200	1233	301
명칭	이민정책활동	외국인체류관리	외국인사회통합지원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6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외국인사회통합지원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	유성오	김원희	구본민
		출입국기획과	02-2110-4010	02-2110-4026	02-2110-4028
이민자조기 적응프로그램 내역사업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	강영우	최재원	고영빈
		이민통합과	02-2110-4140	02-2110-4149	02-2110-4152
	사업시행주체	한국이민재단 (중앙거점운영기관)	교육국장	김찬기	02-2643-6576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년 결산	2026년 예산		2027년		증감	
		본예산(A)	추경	요구안	조정안(B)	(B-A)	(B-A)/A
외국인사회통합지원	16,380	21,579	21,579	24,554	24,554	2,975	13.8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25					2026(2026.7월말)							2027 예산안
	예산액(추경)	예산현액	집행액[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현액	집행액[실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예상액	불용예상액	
									예산현액	집행액[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17,639	17,033	16,380	-	653	21,579	22,079	12,520	22,079	12,520	-	-	24,554
· 공무직근로자 운영	1,458	1,458	1,443	-	15	1,629	1,629	932	1,629	932	-	-	1,872
· 외국인사회통합업무지원	14,262	13,656	13,305	-	351	16,389	16,889	9,407 [1,518]	16,889	9,407 [1,518]	-	-	19,827
· 이민자조기적응프로그램	1,919	1,919	1,632 [1,632]	-	287 [287]	3,561	3,561	2,181 [2,181]	3,561	2,181 [2,181]	-	-	2,855
○ 비목별 분류(합계)	17,639	17,033	16,380	-	653	21,579	22,079	12,520	22,079	12,520	-	-	24,554
· 상용임금(110-03)	1,205	1,205	1,204	-	1	1,346	1,346	828	1,346	828	-	-	1,542
· 일반수용비(210-01)	3,382	3,052	2,979	-	73	3,851	3,705	2,293	3,705	2,293	-	-	4,597
· 공공요금및제세(210-02)	149	128	127	-	1	149	149	85	149	85	-	-	149
· 임차료(210-07)	310	236	236	-	-	346	346	148	346	148	-	-	210
· 시설장비유지비(210-09)	119	130	130	-	-	100	100	76	100	76	-	-	14
· 복리후생비(210-12)	17	17	17	-	-	17	17	15	17	15	-	-	20
· 일반용역비(210-14)	2,223	2,223	2,119	-	104	2,223	2,223	893	2,223	893	-	-	2,223
· 기타운영비(210-16)	596	596	587	-	9	596	596	345	596	345	-	-	930
· 국내여비(220-01)	32	32	13	-	19	32	32	7	32	7	-	-	32
· 국외업무여비(220-02)	67	67	64	-	3	67	67	30	67	30	-	-	67
· 사업추진비(240-01)	51	51	51	-	-	51	51	46	51	46	-	-	51
· 특정업무경비(250-03)	266	266	254	-	12	266	266	183	266	183	-	-	266
· 일반연구비(260-01)	162	162	162	-	-	162	162	162	162	162	-	-	162
· 정책연구비(260-02)	782	782	761	-	21	746	746	167	746	167	-	-	1,046
· 포상금(310-03)	-	-	-	-	-	50	50	10	50	10	-	-	50
· 기타보전금(310-04)	917	725	656	-	69	917	917	539	917	539	-	-	917
· 민간경상보조(320-01)	1,919	1,919	1,632 [1,632]	-	287 [287]	5,581	6,227	3,699 [3,699]	6,227	3,699 [3,699]	-	-	6,367
· 민간위탁사업비(320-02)	4,372	4,372	4,364	-	8	4,464	4,464	2,604	4,464	2,604	-	-	5,252
· 구호및교정비(320-06)	216	216	200	-	16	216	216	168	216	168	-	-	216
· 고용부담금(320-09)	236	236	222	-	14	266	266	89	266	89	-	-	310
· 자치단체경상보조(330-01)	133	133	133 [93]	-	- [40]	133	133	133 [93]	133	133 [93]	-	-	133
· 자산취득비(430-01)	485	485	470	-	15	-	-	-	-	-	-	-	-

	2025					2026(2026.7월말)							2027 예산안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17,639	17,033	16,380	-	653	21,579	22,079	12,520	22,079	12,520	-	-	24,554
· 공무직근로자 운영	1,458	1,458	1,443	-	15	1,629	1,629	932	1,629	932	-	-	1,872
-상용임금(110-03)	1,205	1,205	1,204	-	1	1,346	1,346	828	1,346	828	-	-	1,542
-복리후생비(210-12)	17	17	17	-	-	17	17	15	17	15	-	-	20
-고용부담금(320-09)	236	236	222	-	14	266	266	89	266	89	-	-	310
· 외국인사회통합업무지원	14,262	13,656	13,305	-	351	16,389	16,889	9,407	16,889	9,407	-	-	19,827
-일반수용비(210-01)	3,382	3,052	2,979	-	73	3,851	3,705	2,293	3,705	2,293	-	-	4,597
-공공요금및제세(210-02)	149	128	127	-	1	149	149	85	149	85	-	-	149
-임차료(210-07)	310	236	236	-	-	346	346	148	346	148	-	-	210
-시설장비유지비(210-09)	119	130	130	-	-	100	100	76	100	76	-	-	14
-일반용역비(210-14)	2,223	2,223	2,119	-	104	2,223	2,223	893	2,223	893	-	-	2,223
-기타운영비(210-16)	596	596	587	-	9	596	596	345	596	345	-	-	930
-국내여비(220-01)	32	32	13	-	19	32	32	7	32	7	-	-	32
-국외업무여비(220-02)	67	67	64	-	3	67	67	30	67	30	-	-	67
-사업추진비(240-01)	51	51	51	-	-	51	51	46	51	46	-	-	51
-특정업무경비(250-03)	266	266	254	-	12	266	266	183	266	183	-	-	266
-일반연구비(260-01)	162	162	162	-	-	162	162	162	162	162	-	-	162
-정책연구비(260-02)	782	782	761	-	21	746	746	167	746	167	-	-	1,046
-포상금(310-03)	-	-	-	-	-	50	50	10	50	10	-	-	50
-기타보전금(310-04)	917	725	656	-	69	917	917	539	917	539	-	-	917
-민간경상보조(320-01)	-	-	-	-	-	2,020	2,666	1,518 [1,518]	2,666	1,518 [1,518]	-	-	3,512
-민간위탁사업비(320-02)	4,372	4,372	4,364	-	8	4,464	4,464	2,604	4,464	2,604	-	-	5,252
-구호및교정비(320-06)	216	216	200	-	16	216	216	168	216	168	-	-	216
-자치단체경상보조(330-01)	133	133	133 [93]	-	- [40]	133	133	133	133	133	-	-	133
-자산취득비(430-01)	485	485	470	-	15	-	-	-	-	-	-	-	-
· 이민자초기적응프로그램	1,919	1,919	1,632 [1,632]	-	287 [287]	3,561	3,561	2,181 [2,181]	3,561	2,181 [2,181]	-	-	2,855
-민간경상보조(320-01)	1,919	1,919	1,632 [1,632]	-	287 [287]	3,561	3,561	2,181 [2,181]	3,561	2,181 [2,181]	-	-	2,855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세부사업 : 외국인사회통합지원) 국제결혼 이민자와 그 자녀, 외국인근로자, 외국국적동포, 난민 등 체류외국인의 대한민국 사회적응 지원
- (내역사업 1 : 공무직근로자 운영) 사회통합지원 업무보조원 등 고용하여 출입국업무 지원
- (내역사업 2 : 사회통합업무 지원) 외국인종합안내센터, 국민선서 및 국적증서수여제도

운영, 난민신청자 지원, 세계인의날 행사, 기타 우수인재 창업 및 외국인투자자 지원 등 국내체류 외국인의 안정적 국내정착을 위한 제도 운영 지원

- (내역사업 3 :이민자조기적응프로그램) 국내에 장기체류하고자 하는 외국인에게 입국 초기 단계에서 필요한 정보 제공으로 외국인이 우리사회에 성공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

2) 사업개요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11조~제21조(재한외국인 사회적응 지원, 세계인의날, 외국인 종합안내센터 설치·운영 등)

제11조(재한외국인의 사회적응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한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 소양과 지식에 관한 교육 · 정보제공 및 상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의 처우)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에 대한 국어교육, 대한민국의 제도 · 문화에 대한 교육, 결혼이민자의 자녀에 대한 보육 및 교육 지원, 의료 지원 등을 통하여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가 대한민국 사회에 빨리 적응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은 대한민국 국민과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재한외국인 및 그 자녀에 대하여 준용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와 제2항의 재한외국인 및 그 자녀에 대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영주권자의 처우)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한민국에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가진 외국인(이하 "영주권자"라 한다)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 질서유지 · 공공복리, 그 밖에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한민국으로의 입국 · 체류 또는 대한민국 안에서의 경제활동 등을 보장할 수 있다.

② 제12조제1항은 영주권자에 대하여 준용한다.

제14조(난민의 처우) ①「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가 대한민국에서 거주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제12조제1항을 준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는 난민의 인정을 받은 재한외국인이 외국에서 거주할 목적으로 출국하려는 경우에는 출국에 필요한 정보제공 및 상담과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의2(특별기여자의 처우) ① 대한민국에 특별히 기여하였거나 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하였다고 인정되어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및 그 동반가족으로서 국내 정착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이하 "특별기여자등"이라 한다)의 처우에 관하여는 제14조,「난민법」제31조부터 제36조까지 및 제38조를 준용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별기여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초기생활정착자금 및 그 밖에 필요한 생활지원
2. 고용 정보의 제공, 취업알선 등 취업에 필요한 지원

제15조(국적취득 후 사회적응) 재한외국인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는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제12조제1항에 따른 시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제16조(전문외국인력의 처우 개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문적인 지식 · 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외국인력의 유치를 촉진할 수 있도록 그 법적 지위 및 처우의 개선에 필요한 제도와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과거 대한민국국적을 보유하였던 자 등의 처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과거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 또는 그의 직계비속(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한 자를 제외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 질서유지 · 공공복리, 그 밖에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한민국으로의 입국 · 체류 또는 대한민국 안에서의 경제활동 등을 보장할 수 있다.

제18조(다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의 역사·문화 및 제도를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 홍보, 불합리한 제도의 시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세계인의 날) ①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면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5월 20일을 세계인의 날로 하고, 세계인의 날부터 1주간의 기간을 세계인주간으로 한다.

② 세계인의 날 행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0조(외국인에 대한 민원 안내 및 상담) ① 공공기관장은 재한외국인에게 민원처리절차를 안내하는 업무를 전담하는 직원을 지정할 수 있고, 그 직원으로 하여금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전화 또는 전자통신망을 이용하여 재한외국인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외국어로 민원을 안내·상담하기 위하여 외국인종합안내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21조(민간과의 협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정책에 관한 사업 중의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 그 위탁한 사업수행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추진경위

- '07. 7.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시행
- '13. 7. 난민법 시행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07~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 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 포함)

연도	2023	2024	2025	2026	2027(안)
사업비	14,026	15,427	17,639	21,579	24,554

- 기타: 국내 체류외국인 293만 명('26.8. 현재)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및 보조(민간경상보조, 자치단체경상보조)
- 사업시행주체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사업 수혜자 : 내·외국인(체류외국인 293만명, '26.8.)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7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이민자 조기적응 프로그램	보조	이민자 조기적응 프로그램 운영기관	2,855백만원	100.0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11조 (재한외국인의 사회적응 지원)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21조 (민간과의 협력)
동포체류 지원센터	보조	37개 동포체류 지원센터	2,048백만원	100%	-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 제11조(재한외국인의 사회적응 지원)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4조(정부의 책무)
계절근로 전문기관	보조	1개(중앙) 계절근로 전문기관	1,463백만원	100%	- 출입국관리법 제19조의5(계절근로프로그램)

3) 2027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

① **공무직 근로자 운영 : ('26) 1,629 → ('27) 1,872백만원, 243백만원 증액**

ㅇ (요구) 외국인사회통합지원 사업 공무직 근로자(총 34명) 보수(상용임금), 복리후생비, 고용부담금

ㅇ (산출) 기존 공무직 근로자 처우 개선 : +243백만원

- '27년 공무직 근로자 공통처우개선율(4.3% 인상), 통상임금 연동 인상분(야간근무수당 등) 등 반영

ㅇ 2026년도 예산 및 2027년도 예산안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6년 본예산		2027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629,352	○ **상용임금(110-03) : 1,345,870천원** 가. 보수 : 34명×3,147,779원×12월=1,284,294천원 나. 명절휴가비 : 34명×1,337,400원×2회=90,943천원 다. 정액급식비 : 34명×140,000원×12월 =57,120천원 ○ **복리후생비(210-12) : 17,000천원** 가. 맞춤형복지비 : 34명×500,000원 =17,000천원 ○ **고용부담금(320-06) : 266,482천원** 가. 4대보험료 및 퇴직금 : 266,482천원	1,871,935	○ **상용임금(110-03) : 1,541,533천원** 가. 보수 : 34명×3,334,066원×12월=1,360,299천원 나. 명절휴가비 : 34명×1,705,200원×2회=115,954천원 다. 정액급식비 : 34명×160,000원×12월 =65,280천원 ○ **복리후생비(210-12) : 20,400천원** 가. 맞춤형복지비 : 34명×600,000원 =20,400천원 ○ **고용부담금(320-06) : 310,002천원** 가. 4대보험료 및 퇴직금 : 310,002천원

② **외국인 사회통합업무 지원 : ('26) 16,389 → ('27) 19,827백만원, 3,438백만원 증액**

가. (개요) 국민선서 및 국적증서 수여 제도 운영,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콜센터) 운영, 난민신청자 지원, 세계인의날(5.20.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근거 법정기념일) 행사, 우수인재 창업 및 외국인투자자 지원 등 체류외국인 정착 및 사회통합 제도 지원

나. 난민업무 지원 : ('26) 3,781 → ('27) 4,559백만원 (+778백)

■ 난민심사 통번역비 : ('26) 1,305 → ('27) 2,169백만원 (+864백)

- (필요성) 난민심사 필수 절차로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난민면접 통·번역 소요 증가

「**난민법**」 **제14조(통역)** 법무부장관은 난민신청자가 한국어로 충분한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면접 과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통역인으로 하여금 통역하게 하여야 한다.

※ '26. 예산 1,305백만원 대비 6월말 집행액 752백만원으로 '26년말 약 2억원 부족 예상

- (증가 사유) 최근 난민신청 증가('23년 18,837건(역대 최고치) → '24년 18,335건 → '25년 14,622건)에 따른 난민심사 적체* 해소를 위해 집중 노력하여 난민통번역비 집행 증가

* 난민심사결정 법정기한은 6개월 이내(「난민법」 제18조 제4항 :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난민인정 등의 결정은 난민인정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6개월 안에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이나,

☞ '26. 6월 기준 난민심사 소요기간은 21개월(이의신청은 16개월)로 법정기한 6개월을 크게 초과하며, 난민불인정 시에도 난민신청부터 행정소송 종결까지 4~5년 체류 가능하여 반복 난민신청 등 제도 남용 사례 증가
→ 난민신청 신속 심사를 통해 적체 해소 및 난민소송 억제 등 정부와 법원의 부담('25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추정 연 50억원 소모) 경감, 사회적 갈등 해소, 진정한 난민 신속 보호 필요

- (산출내역) : ('26) 8,533건('20~'22년 실시평균)×2.55시간(평균면접시간)×60천원(시간당 통역단가) =1,305백만원
→ ('27) 14,178건('23~'25. 3개년 평균 난민신청 건수×82%, 난민신청 철회 등 고려)×2.55시간(평균면접시간)×60천원(시간당 통역단가) =2,169백만원 (+864백)

※ '27년 직제 개정으로 난민심사 전문인력(출입국관리공무원) 33명 증원, 심사 역량 확충

■ 국가정황정보 번역·감수 : ('26) 192 → ('27) - (순감)
- AI 등 활용한 국가정황정보 데이터베이스(DB) 구축('25~'26)을 통해 연례적 번역사업 지출 폐지

■ 난민신청자 생계비 : ('26) 917백만 → ('27) 479명×583천원×3.28월=917백만원 (전년 동)

■ 난민지원시설 운영 : ('26) 402 → ('27) 402백만원 (전년 동)
‣ 난민지원센터 운영비 : ('26) 59 → ('27) 4,932천원×12월=59백만 (전년 동)
‣ 난민교육비 : ('26) 106 → ('27) 8,800천원×12월=106백만원 (전년 동)
‣ 난민지원센터 등 구료비 : ('26) 216 → ('27) 18,000천원×12월=216백만 (전년 동)
‣ 난민신청자 기초건강검진 : ('26) 21 → ('27) 1,750천원×12월=21백만원 (전년 동)

■ 재정착난민 수용 : ('26) 338 → ('27) 338백만원 (전년 동)

■ 난민위원회 운영 : ('26) 48 → ('27) 60백만원(+12백)
‣ 참석비 : 200천원×9명(위촉직위원)×28회=50백만원
‣ 난민담당자 워크숍 : 6백만원
‣ 기타 위원회 운영비 : 336천원×12월=4백만원

■ 난민조사관 활동비 : ('26) 266 → ('27) 111명×200천원×12월=266백만원 (전년 동)

■ 난민소송업무 수행 : ('26) 66 → ('27) 190백만원(+124백)
‣ 송달료, 패소비용, 소송위임 등 제비용 : ('26) 34 → ('27) 5,246천원×12월=158백만원 (+124백)
난민소송 패소비용(변호사비) 증가 : 난민불회부소송 패소율 : ('22) 0.2% → ('23) 0.4% → ('24) 1.2% → ('25) 1.6% → ('26.2) 3.0%
→ 법원은 난민심사 불회부 결정에 대하여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가 아닌한 최소한 심사기회는 주어야 한다는 판결 경향(그럼에도, 법무부 출입국본부의 공항 난민신청자 검증 등 국경관리는 국가 필수기능인 점 등 감안, 적정 패소비용 반영 필요)
‣ 출장비 : ('26) 32 → ('27) 2,632천원×12월=32백만원 (전년 동)

■ 난민통역인증제 및 보수교육 위탁 : ('26) 158 → ('27) 158백만원 (전년 동)

■ 난민심사 역량 강화 : ('26) 59 → ('27) 59백만원 (전년 동)

다. 국적, 기타 사회통합업무 지원 : ('26) 9,029 → ('27) 10,198백만원 (+1,169백)

■ 국적통지서 우편 발송요금 등 공공요금 : ('26) 62 → ('27) 5,156천원×12월=62백만원 (전년 동)

■ 국민선서 및 국적수여식 운영 : ('26) 420 → ('27) 434백만원 (+14백)
‣ 국적증서, 기념품 수여 등 : ('26) 364 → ('27) 13,816명×27.4천원=378백만원 (+14백)
‣ 기타 국적업무 등 임차료 : ('26) 56 → ('27) 4,700천원×12월=56백만원 (전년 동)

■ 귀화 면접관 운영(면접심사비) : ('26) 3,725회×160천원=596백만원 → ('27) 4,650회×200천원=930백만원 (+334백)
→ 귀화 민간전문 면접관 심사비(기존 1일 16만원)를 인사혁신처 국가시험시행 운영수당 등 집행기준 상 민간전문가 1일 면접수당(30만원)의 2/3 수준인 20만원으로 상향(1일 16→20만원)

※ '20~'25년(6개년 평균) 귀화 면접대상자 25,572명÷회당 면접 인원(11명, 1인당 30분)=2,325회×2명(면접관 2인 1조)=4,650회

■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콜센터) 운영 : ('26) 4,792→ ('27) 5,344백만원 (+552백)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콜센터)는 내·외국인의 출입국, 체류, 국적, 난민 등 출입국·이민행정 상담 안내와 더불어 20개 언어로 정부(질병관리청 등), 공공기관, 지자체 등과 3자통역(전화연결) 등을 통해 행정응원을 제공하는 대표적 정부 콜센터임 → 특히, **체류외국인 300만 시대를 맞아 이민자 인권침해 전용 번호(1345 콜센터 접속 후 1번) 운영 등 "이민자 인권보호"의 중요 역할 수행**
※ 법적근거: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20조 (민간위탁 운영 : 현재 운영사 ㈜KTcs)

‣ 상담원 민간위탁비 : ('26) 108명×3,444천원×12월=4,464백만원 → ('27) 117명×3,741천원×12월=5,252백만원(+788백)

※ 1345콜센터 다국어 상담원 증원 : ('26) 108 → ('27) 117명(+9명) → 365백만원 증액(9명×40,546천원-고용부담금 포함)

- (필요성) 1인당 일평균 상담콜 통화시간: ('22) 6시간24분 → ('23) 6시간51분 → ('24) 7시간10분 → ('25) 7시간6분 → ('26.5.) 7시간18분 (이민자 인권침해상담 증가↑) 등 업무량 증가에도 불구, '20년 이후 인원 동결로 적시 인력 충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콜센터 응대율 저하('25년말 67.8%로 일반 정부콜센터의 95% 이상 응대율 대비 현저히 낮음) 등 곤란

구분	법무부1345	관세청	기상청
1일총통화시간	7시간 6분	2시간 35분	3시간 39분
상담원평균임금	월 2,442천원	월 2,500천원	월 2,480천원
연간 이직율	38.3%	4%	8.4%

  ‣ 임차료 및 관리비 : ('26) 236 → ('27) - (순감) ※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신축청사(국유)로 통합 이전
  ‣ 외국인종합안내센터 전용회선료, 전화요금 : ('26) 87 → ('27) 7,272천원×12월=87백만원 (전년 동)
  ‣ 상담사례집 발간 : ('26) 5 → ('27) 7천원×750부=5백만원 (전년 동)

■ 세계인의 날 행사(안내문, 기념품, 동영상 등 부대비용) : ('26) 200 → ('27) 200백만원 (전년 동)
■ 동감프로그램 운영 : ('26) 67 → ('27) - (순감)
  - 보호외국인 정서 순화 프로그램이나 최근 집행실적 없음, 신속한 강제퇴거에 행정력 집중 필요성 등 감안
■ 이민자네트워크 운영 : ('26) 96→ ('27) 17개소×500천원×12월=120백만원 (+24백)
■ 자원봉사자 운영 : ('26) 346→ ('27) 20명×20천원×5회×12월×16개소=432백만원 (+86백)
■ 각종 자료인쇄 및 발간 ('26) 505 → ('27) 2,541천원×12월=305백만원 (감 200백)
■ 유관기관 간담회 및 회의 : ('26) 51 → ('27) 4,288천원×12월=51백만 (전년 동)
■ 사회통합 행사 및 프로그램 용역 : ('26) 655 → ('27) 655백만원 (전년 동)
  ‣ 세계인의날 행사 용역 : ('26) 207 → ('27) 207백만원 (전년 동)
  ‣ 한마음 걷기축제 및 정부합동 고충상담 : ('26) 90 → ('27) 90백만원 (전년 동)
  ‣ 글로벌 투자비자상담센터 운영 : ('26) 358 → ('27) 358백만원 (전년 동)
■ 사회통합정책 연구용역 : ('26) 908 → ('27) 10개 과제×120.8백만=1,208백만원 (+300)
  - '27년 이민자 사회통합지수(MIPEX) 측정(3년 주기) 등
■ 사회통합정책 실태 점검 (재외공관 국적업무 실태 점검 등 국외업무출장) : ('26) 67 → ('27) 67백만원 (전년 동)
■ 영주 및 귀화자 맞춤형 프로그램 : ('26) 200 → ('27) 17개기관×983천원×12월=200백만 (전년 동)
■ 국적심의위원회 운영(참석비) : ('26) 14 → ('27) 200천원×16명×6회=19백만원 (+5백)
■ 외국인 사회통합, 국적, 난민보호 등 우수직원 등 포상금 : ('26) 50 → ('27) 50백만원(전년 동)

라. 동포체류지원센터 운영 : ('26) 2,020 → ('27) 2,048백만원(+28백)
■ (개요) 현재 법무부가 지정한 전국 37개 동포체류지원센터를 동포 전담 사회통합 기관으로 역할을 강화하고, 동포 정체성 교육 및 체류 지원 등을 통해 한민족의 자산인 차세대 우수 동포가 안정적으로 국내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
■ (산출내역) (물량) 37개(법무부 지정 전국 동포체류지원센터) × (단가) 55.3백만원(동포 정착 지원, 정체성 교육, 상담 사업비 등, '26.대비 '27.최저임금 인상분 반영) = 2,048백만원

마. 계절근로 전문기관 운영 : ('27) 1,463백만원(순증)
■ (개요) 농어촌 필수인력인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도입-입국-체류-출국까지 전주기 통합 지원하여 농어가와 지자체를 돕는 계절근로 전문기관 운영
■ (산출내역) 인건비 591백+사업비 658백+운영비 214백=1,463백만원
  - 중앙 계절근로 전문기관 1개소('26.5. 공공기관인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지정) 운영
  - 직원('26년 7명 → '27년 10명 : 계절근로자 송출 국가·지역 전문관 5, 교육팀 3, 행정원 1, 관리자 1) 인건비, 계절근로자 도입 지자체 해외 MOU 체결 지원(불법브로커 근절 등), 계절근로자 지원 등 사업비, 전문기관 운영비 지원

○ 2026년도 예산 및 2027년도 예산안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6년 본예산		2027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6,388,648	○ **일반수용비(210-01) : 3,850,674천원** 가. 난민심사 통번역비 : 8,533건×2.55시간×60,000원=1,305,549천원 나. 난민지원센터 운영비 : 59,931천원 1) 자원봉사자 활동비 : 30천원×2일×20일×12월=14,400천원 2) 난민여행증명서 발급 : 250건×55천원=13,750천원 3) 난민어울림행사 : 2,500천원×2회=5,000천원 4) 난민인정신청서식 : 1,165천원	19,826,265	○ **일반수용비(210-01) : 4,597,351천원** 가. 난민심사 통번역비 : 14,178건×2.55시간×60,000원=2,169,234천원 나. 난민지원센터 운영비 : 59,931천원 1) 자원봉사자 활동비 : 30천원×2일×20일×12월=14,400천원 2) 난민여행증명서 발급 : 250건×55천원=13,750천원 3) 난민어울림행사 : 2,500천원×2회=5,000천원 4) 난민인정신청서식 : 1,165천원

2026년 본예산		2027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5) 안내물 제작 기타 물품 구입 : 2,135천원×12월=25,616천원 다. 난민신청자 기초건강검진 : 3,500명×6,000원=21,000천원 라. 난민교육 : 105,600천원 1) 생활한국어 및 한국사회의 이해 : 4시간×30천원×2명×240회=57,600천원 2) 법질서 및 전통예절 등 특강 : 2시간×50천원×2명×240회=48,000천원 마. 재정착난민 국내정착교육비 : 247천원×60명×6월×0.67=59,576천원 바. 난민위원회 참석비 : 150천원×9명×28회=37,800천원 사. 난민소송 : 5,246천원×12월=62,950천원 아. 난민심사 역량 강화 : 58,600천원 1) 난민심사관 교육 : 12,000천원 2) 직무교재 발간 : 22,000원×300부=6,600천원 3) 난민통역 평가 : 200건×200,000원=40,000천원 자. 국적업무 관련 자료 인쇄비 : 45,000천원 1) 안내물(한국어, 중국어, 영어) : 5,000천원×3종=15,000천원 2) 상담사례집 : 5천원×1,800부=9,000원 3) 귀화허가자 교육용 책자 발간 : 3천원×7,000부=21,000천원 차. 국적취득자 국민선서 및 국적증서 수여 : 364,418천원 1) 국적증서 제작 : 13,816명×3,000원=41,448천원 2) 행사운영비 : 19개기관×1,650천원=31,350천원 3) 국적취득기념품 : 13,816명×20,000원=276,320천원 4) 독립유공자 후손 대상 국적수여 : 15,300천원 카. 국적심의위원회 참석비 : 150천원×16명×6회=14,400천원 타. 세계인의날(5.20.) 기념 : 200,000천원 1) 행사 안내물 제작 : 20,000부×2,000원×3종=120,000천원 2) 행사 동영상 제작 : 35,000천원×1편=35,000천원 3) 행사 기념품 제작 : 3,000명×15,000원=45,000천원 파. 외국인종합안내센터 상담사례집 : 7,000원×750부=5,250천원 하. 이민자네트워크 운영비 : 16개소×500천원×12월=96,000천원 거. 자원봉사자 운영비 : 18명×20천원×5회×12월×16개소=345,600천원 너. 출입국·이민정책 자료 발간 등 : 460,000천원 1) 정책고객용 책자 : 10,000원×7,000부×4회=280,000천원 2) 리플릿 등 제작 : 1,000원×30,000부×5회=150,000천원 3) 출입국통계자료 : 30,000천원 더. 영주 및 귀화자 맞춤형 프로그램 : 200,440천원 1) 교재비 : 3,000원×5,000부=15,000천원 2) 강사비 : 17개기관×14,000원×50시간×12월=142,800천원 3) 리플릿 등 홍보물 제작 : 1,000원×10,000부=10,000천원 4) 행사준비 등 운영비 : 17개기관×160,000원×12월=32,640천원 러. 사회통합협의회(중앙, 지역) 등 관련 협의회 운영 : 20개관서×625,000원×12월=150,000천원 머. 보호외국인 동감프로그램 운영 : 66,600천원 1) 사물놀이 공연 : 10명×50,000원×12회×3개소=18,000천원 2) 한국어 강습 : 강사 3명×100,000원×12회×3개소=10,800천원 3) 전통예절 강습 : 강사 3명×100,000원×12회×3개소=10,800천원 4) 이·미용사출장 : 미용사 9명×50,000원×12회×3개소=16,200천원 5) 요가 강습 : 강사 3명×100,000원×12회×3개소=10,800천원 버. 국가정황정보 번역·감수 : 192,200천원 1) 번역료 : 100매×360단어×264원×20개국×1회=190,100천원 2) 감수·자문료 : 300천원×7회=2,100천원 서. 계수조정 : △240천원 **○ 공공요금및제세(210-02) : 149,000천원** 가. 국적통지서 등 우편 발송요금 : 57,875천원 1) 귀화시험 통지서 발송 : 17,000명×250원=4,250천원 2) 귀화허가통지서 발송 : 23,000명×1,750원=40,250천원 3) 민원답변서 등기발송 : 2,500건×1,750원=4,375천원 4) 귀화허가통지 우편물 반송료 : 6,000건×1,500원=9,000천원 나. 국적업무 관련 유인물 발송 : 4,000천원 다. 외국인종합안내센터 전용회선료 및 전화요금 등 : 87,260천원 라. 계수조정 : △135천원 **○ 임차료(210-07) : 346,418천원** 가. 재정착난민 주택임차 : 16세대×800천원×12월=153,600천원 나. 국적증서수여식 행사장 임차 : 300천원×6회×12월=21,600천원 다. 기타 국적업무 임차료 : 34,833천원		5) 안내물 제작 기타 물품 구입 : 2,135천원×12월=25,616천원 다. 난민신청자 기초건강검진 : 3,500명×6,000원=21,000천원 라. 난민교육 : 105,600천원 1) 생활한국어 및 한국사회의 이해 : 4시간×30천원×2명×240회=57,600천원 2) 법질서 및 전통예절 등 특강 : 2시간×50천원×2명×240회=48,000천원 마. 재정착난민 국내정착교육비 : 247천원×60명×6월×0.67=59,576천원 바. 난민위원회 참석비 : 200천원×9명×28회=50,400천원 사. 난민소송 : 13,175천원×12월=158,100천원 아. 난민심사 역량 강화 : 58,600천원 1) 난민심사관 교육 : 12,000천원 2) 직무교재 발간 : 22,000원×300부=6,600천원 3) 난민통역 평가 : 200건×200,000원=40,000천원 자. 국적업무 관련 자료 인쇄비 : 45,000천원 1) 안내물(한국어, 중국어, 영어) : 5,000천원×3종=15,000천원 2) 상담사례집 : 5천원×1,800부=9,000원 3) 귀화허가자 교육용 책자 발간 : 3천원×7,000부=21,000천원 차. 국적취득자 국민선서 및 국적증서 수여 : 378,294천원 1) 국적증서 제작 : 13,816명×3,400원=46,974천원 2) 운영비 : 20개기관×1,650천원=33,000천원 3) 국적취득기념품 : 13,816명×20,000원=276,320천원 4) 독립유공자 후손 대상 국적수여 : 22,000천원 카. 국적심의위원회 참석비 : 200천원×16명×6회=19,200천원 타. 세계인의날(5.20.) 기념 : 200,000천원 1) 행사 안내물 제작 : 20,000부×2,000원×3종=120,000천원 2) 행사 동영상 제작 : 35,000천원×1편=35,000천원 3) 행사 기념품 제작 : 3,000명×15,000원=45,000천원 파. 외국인종합안내센터 상담사례집 : 7,000원×750부=5,250천원 하. 이민자네트워크 운영비 : 20개소×500천원×12월=120,000천원 거. 자원봉사자 운영비 : 18명×20천원×5회×12월×20개소=432,000천원 너. 출입국·이민정책 자료 발간 등 : 260,000천원 1) 정책고객용 책자 : 10,000원×4,000부×4회=160,000천원 2) 리플릿 등 제작 : 1,000원×14,000부×5회=70,000천원 3) 출입국통계자료 : 30,000천원 더. 영주 및 귀화자 맞춤형 프로그램 : 231,440천원 1) 교재비 : 3,000원×5,000부=15,000천원 2) 강사비 : 20개기관×14,000원×50시간×12월=168,000천원 3) 리플릿 등 홍보물 제작 : 1,000원×10,000부=10,000천원 4) 행사준비 등 운영비 : 20개기관×160,000원×12월=38,400천원 러. 사회통합협의회(중앙, 지역) 등 관련 협의회 운영 : 20개관서×625,000원×12월=150,000천원 머. 계수조정 : △634천원 **○ 공공요금및제세(210-02) : 149,000천원** 가. 국적통지서 등 우편 발송요금 : 57,875천원 1) 귀화시험 통지서 발송 : 17,000명×250원=4,250천원 2) 귀화허가통지서 발송 : 23,000명×1,750원=40,250천원 3) 민원답변서 등기발송 : 2,500건×1,750원=4,375천원 4) 귀화허가통지 우편물 반송료 : 6,000건×1,500원=9,000천원 나. 국적업무 관련 유인물 발송 : 4,000천원 다. 외국인종합안내센터 전용회선료 및 전화요금 등 : 87,260천원 라. 계수조정 : △135천원 **○ 임차료(210-07) : 210,033천원** 가. 재정착난민 주택임차 : 16세대×800천원×12월=153,600천원 나. 국적증서수여식 행사장 임차 : 300천원×6회×12월=21,600천원 다. 기타 국적업무 임차료 : 34,833천원

2026년 본예산		2027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라. 외국인종합안내센터 임차료 : 1,428㎡*10,612원*9월(서울출입국청 신축 통합이전)=136,385천원		
	○ **시설장비유지비(210-09) : 99,808천원**		○ **시설장비유지비(210-09) : 13,700천원**
	가. 외국인종합안내센터 장비 유지보수 : 13,700천원		가. 외국인종합안내센터 장비 유지보수 : 13,700천원
	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 관리비 : 1,428㎡×6,700원×9월=86,108천원		
	○ **일반용역비(210-14) : 2,222,827천원**		○ **일반용역비(210-14) : 2,223,260천원**
	가. 공익사업투자이민 상담센터 위탁운영 : 357,820천원		가. 공익사업투자이민 상담센터 위탁운영 : 357,820천원
	1) 인건비 : 8명×3,677천원×12월=353,020천원		1) 인건비 : 8명×3,677천원×12월=353,020천원
	2) 운영비 : 400천원×12월=4,800천원		2) 운영비 : 400천원×12월=4,800천원
	나. 창업이민인재양성프로그램 위탁운영 : 1,310,400천원		나. 창업이민인재양성프로그램 위탁운영 : 1,310,400천원
	1) 운영비 : 34,116천원×12월=409,400천원		1) 운영비 : 34,116천원×12월=409,400천원
	2) 지적재산권 출원 및 사업화 지원 : 40,000천원		2) 지적재산권 출원 및 사업화 지원 : 40,000천원
	3) 창업준비지원 : 606,000천원		3) 창업준비지원 : 606,000천원
	4) 외국인 창업발명대전 행사 개최 : 255,000천원		4) 외국인 창업발명대전 행사 개최 : 255,000천원
	다. 세계인의날 행사용역 : 207,000천원		다. 세계인의날 행사용역 : 207,000천원
	라. 한마음걷기축제 및 정부합동고충상담 행사용역 : 90,000천원		라. 한마음걷기축제 및 정부합동고충상담 행사용역 : 90,000천원
	마. 재정착난민수용 IOM위탁 : 100,000천원		마. 재정착난민수용 IOM위탁 : 100,000천원
	바 난민통역인증제 위탁 : 158,040천원		바 난민통역인증제 위탁 : 158,040천원
	1) 난민통역 인증제 : 300명×265천원=79,600천원		1) 난민통역 인증제 : 300명×265천원=79,600천원
	2) 난민통역인 교육 : 100시간×784천원=78,440천원		2) 난민통역인 교육 : 100시간×784천원=78,440천원
	사. 계수조정 : △433천원		
	○ **기타운영비(210-16) : 596,000천원**		○ **기타운영비(210-16) : 930,000천원**
	가. 귀화 면접관 면접심사비 : 3,725명×160천원=596,000천원		가. 귀화 면접관 면접심사비 : 4,650건×200천원=930,000천원
	○ **국내여비(220-01) : 31,588천원**		○ **국내여비(220-01) : 31,588천원**
	가. 난민소송 출장비 : 396건×2회×20천원×2명=31,680천원		가. 난민소송 출장비 : 395건×2회×20천원×2명=31,600천원
	나. 계수조정 : △92천원		나. 계수조정 : △12천원
	○ **국외업무여비(220-02) : 66,681천원**		○ **국외업무여비(220-02) : 66,681천원**
	가. 재외공관 국적업무 설명 및 우수인재 유치(미국) : 12,133천원		가. 재외공관 비자, 국적 지도점검 및 우수인재 유치(미국) : 15,268천원
	나. 재외공관 국적업무 설명 및 우수인재 유치(호주,뉴질랜드) : 10,703천원		나. 재외공관 비자, 국적 지도점검 및 우수인재 유치(독일,폴란드) : 14,641천원
	다. 재외동포 국내 정착지원 설명회(우즈벡, 카자흐스탄) : 7,712천원		다. 재외공관 비자, 국적 지도점검 및 우수인재 유치(브라질,아르헨티나) : 13,057천원
	라. 사회통합정책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독일) : 10,344천원		
	마. 재정착희망난민 선발 : 25,791천원		라. 재정착희망난민 선발 : 26,559천원
	1) 재정착희망난민 수용 협의 CRCP회의(스위스) : 7,522천원		1) 재정착희망난민 수용 협의 CRCP회의(스위스) : 9,763천원
	2) 재정착희망난민 수용 WGR실무회의(스위스) : 9,107천원		2) 재정착희망난민 수용 WGR실무회의(스위스) : 9,763천원
	3) 재정착난민 현지 면접(태국) : 6,391천원		3) 재정착난민 현지 면접(태국) : 4,105천원
	4) 재정착난민 사전교육 및 입국지원(태국, 1회) : 2,771천원		4) 재정착난민 사전교육 및 입국지원(태국, 1회) : 2,928천원
	바. 계수조정 : △2천원		바. 계수조정 : △2,844천원
	○ **사업추진비(240-01) : 51,461천원**		○ **사업추진비(240-01) : 51,461천원**
	가. 사회통합업무담당자 회의 등 : 4,288천원×12월=51,461천원		가. 사회통합업무담당자 회의 등 : 4,288천원×12월=51,461천원
	○ **특정업무경비(250-03) : 266,400천원**		○ **특정업무경비(250-03) : 266,400천원**
	가. 난민전담공무원활동비 : 111천원×200천원×12월=266,400천원		가. 난민전담공무원활동비 : 111천원×200천원×12월=266,400천원
	○ **일반연구비(260-01) : 162,000천원**		○ **일반연구비(260-01) : 162,000천원**
	가.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 162,000천원		가.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 162,000천원
	○ **정책연구비(260-02) : 746,000천원**		○ **정책연구비(260-02) : 1,046,000천원**
	가. 외국인 취업비자 발급규모 사전공표제 : 351,000천원		가. 외국인 고용 실태조사 (비자 발급규모 사전공표제 운영) : 200,000천원
	나. 제5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 : 61,000천원		나. 외국인 적정 유입 규모 산출 (비자 발급규모 사전공표제 운영) : 151,000천원
	다. 국내거주 동포 실태조사 연구 : 100,000천원		다. 이민자 사회통합지수(MIPEX) 측정 : 300,000천원
	라. 고려인 동포 한국어 등 교재 개발 : 50,000천원		라. 동포체류지원센터 등 법무부 동포지원체계 개편 방안 연구 : 30,000천원
	마.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 고시국가 지정 기준 재설정 등 제도개선 방안 연구 : 30,000천원		마. 광역형 비자 사업 성과평가 방안 연구 : 30,000천원
	바. 사회통합프로그램 체계 개편 연구 : 40,000천원		바. 사회통합프로그램 효과성 분석 : 60,000천원
	사. 취업비자 허가요건 적정성 검토 및 조정방안 연구 : 50,000천원		사. 사회통합프로그램 유학생 맞춤형 교재(3단계) 개발 : 30,000천원
	아. 난민인정자 체류 현황 등 실태조사 분석 연구 : 64,000천원		아. 취업비자 허가요건 적정성 검토 및 조정방안 연구 : 50,000천원
			자. 사회통합프로그램 평가체계 연구 : 30,000천원
			차. 지역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수립 및 지역 이민관리체계 구축 방안 연구 : 95,000천원
			카. 난민신청·심사·처우 등 난민제도 통합 안내서 개발 연구 : 30,000천원
			타. 우수인재 체류·정착 실태 패널데이터 조사 연구 : 60,000천원
			파. 귀화 면접 심사체계 개선 및 평가문항 개발 연구 : 30,000천원
	○ **포상금(310-03) : 50,000천원**		○ **포상금(310-03) : 50,000천원**
	가. 외국인 사회통합, 국적, 난민보호 등 우수직원 등 포상: 50,000천원		가. 외국인 사회통합, 국적, 난민보호 등 우수직원 등 포상: 50,000천원
	○ **기타보전금(310-04) : 916,591천원**		○ **기타보전금(310-04) : 916,591천원**
	가. 난민생계비 : 479명×583,400원×3.28월=916,591천원		가. 난민생계비 : 479명×583,400원×3.28월=916,591천원

2026년 본예산		2027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 **민간경상보조(320-01) : 2,020,000천원** 가. 동포체류지원센터 운영 : 23개센터×87,826천원=2,020,000천원 ○ **민간위탁사업비(320-02) : 4,464,000천원** 다국어상담원 등 108명×3,444,444원*12월=4,464,000천원 ○ **구호및교정비(310-04) : 216,000천원** 가. 난민신청자 구료비 : 16,295천원×12월=195,542천원 나. 난민의료비 : 1,733천원×12월=20,800천원 다. 계수조정 : △342천원 ○ **자치단체경상보조(330-01) : 133,200천원** 가. 창업이민인재양성프로그램 : 1개지자체×133,200천원=133,200천원		○ **민간경상보조(320-01) : 3,511,000천원** 가. 동포체류지원센터 운영 : 37개센터×4,614,414원×12월=2,048,000천원 나. 중앙계절근로전문기관 1개×1,463,000천원=1,463,000천원 ○ **민간위탁사업비(320-02) : 5,252,000천원** 다국어상담원 등 117명×3,740,741원*12월=5,252,000천원 ○ **구호및교정비(310-04) : 216,000천원** 가. 난민신청자 구료비 : 16,295천원×12월=195,542천원 나. 난민의료비 : 1,733천원×12월=20,800천원 다. 계수조정 : △342천원 ○ **자치단체경상보조(330-01) : 133,200천원** 가. 창업이민인재양성프로그램 : 1개지자체×133,200천원=133,200천원

③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 : ('26) 3,561 → ('27) 2,855백만원, 706백만원 감액**

- (개요) 외국인의 입국 초기 단계부터 안정적으로 우리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18개 외국어로 기초법·질서·제도, 의료·교통·통신·생활 등 필수 사회적응 정보, 범죄예방 및 산업안전 교육 등을 제공하는 사회통합프로그램
- (산출내역) ('26) 3,561백만원 → ('27) 12만명[입국 초기 일반체류자격 외국인 4만명('23~'25. 최근 3년간 조기적응 실이수자) + 조기적응 이수 의무 계절근로자 8만명('27년 계절근로자 예상 쿼터 11.7만명 대비 68%)] × 23,792원 (강사료, 운영비 등 1인당 교육단가, 온라인 조기적응프로그램 확대로 비용 절감) = 2,855백만원 (감 706백만원)

- 2026년도 예산 및 2027년도 예산안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6년 본예산		2027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3,561,000	○ **민간경상보조(320-01) : 3,561,000천원** 가. 강사료 : 3,500회×126천원×7시간=3,087,000천원 나. 교재비 등 : 242,760천원 다. 운영비 : 4개기관×2,186천원×12월=104,960천원 라. 전담인력인건비 : 4개기관×1명×2,640,650원×12월=126,751천원 마. 계수조정 : △471천원	2,855,000	○ **민간경상보조(320-01) : 2,855,000천원** 가. 강사료 : 2,700회×126천원×5시간=1,701,000천원 나. 교재비, 온라인프로그램운영 등 : 443,000천원 다. 운영비(강사양성 포함) : 187개기관×2,267천원×12월=508,851천원 라. 전담인력인건비 : 6명×2,807,670원×12월=202,152천원 마. 계수조정 : △3천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3~2027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3	2024	2025	2026	2027	2027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이민자의 한국사회 적응에 필요한 기본소양 충족도(%)	목표	53.7	53.8	54.6	56.1	-	-	이민자의 한국사회 적응에 필요한 기본소양 충족도(%) =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자(최종합격) 수 /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수료자 수 × 100	사회통합정보망
	실적	53.6	54.3	55.7		-			
외국인 체류질서 및 사회통합 안정도(점)	목표	신규	신규	신규	신규	120	불법체류자 수 감소 추세와, 영주 및 귀화 수요 증가에 따라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자 수도 증가하여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여 성과지표 신규설정	불법체류자수 감소분 + 사회통합프로그램 4·5단계 이수자 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통계월보 및 사회통합정보망
	실적	-	-	-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3	- 계절근로자의 입국 초기 근무처 무단 이탈 및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한국 사회 조기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와 연계하여 조기적응프로그램 실시 ※ '23년 4월부터 계절근로자 대상 조기적응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하였으며, 총 9개 지자체와 협업하여 489명의 계절근로자를 대상으로 11회 교육 실시 - 교육 품질 제고를 위한 조기적응프로그램 신규 강사 양성 및 보수 교육(9월), 교재 내용 최신화를 위한 조기적응프로그램 5종* 교재 개편 * 결혼이민자, 외국국적동포, 유학생, 외국인연예인, 계절근로자 - 인구 소멸 대책으로 고려인 동포 유치를 추진 중인 제천시와 협업하여 고려인 동포 대상 조기적응프로그램 운영(11월) - '21년 개발된 이민자 사회통합지표를 바탕으로 지역사회에 맞는 지표를 추가 개발하고, 지자체의 사회통합정책 현황 및 성과를 진단하여 미흡한 부분에 대해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사회통합 정책컨설팅 시범사업' 실시(9월) ※ 외국인 밀집 지역 등 희망 지자체(9개 지역)를 선정하여 정책컨설팅 시범사업 진행 - K-point E74(숙련기능인력) 전환에 필요한 한국어 요건 충족 기회 확대 및 평가 접근성 향상을 위해 사회통합프로그램 광명 CBT센터에 이은 대전 CBT 센터 추가 개설(11월) - 지자체의 외국인 정책 관련 업무가 증가하고 다양화 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업무 담당자의 직무전문성 강화 및 업무 보조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위한 외국인업무 지침서'를 제작하여 전국 198개 지자체에 총 1,200권 배포(12월)
2024	- 제3기 사회통합 이민자 멘토단 구성(3월)하여 이민자 사회통합정책 자문 및 이민자 대상 멘토교육, 상호문화 이해 제고를 위한 교육 진행 -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 참여대상에 계절근로자, 외국인력, 재정착난민을 참여대상에 포함, 맞춤형 교육 실시 ※ 계절근로자 18개 지차제 834명, 조선업체 6회 156명, 재정착난민 3회 14명 참여 - 중앙-지방정부 간 외국인 밀집지역 관리, 행정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등 맞춤형 이민정책 추진을 위한 '법무부-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외국인정책협의회' 정례 개최 (5월, 9월) - 문화다양성을 존중하고 내·외국인이 더불어 사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세계인의 날' 기념식 개최, 이민자 미담사례집을 제작하여 유관기관 등에 배포 (5월) - 공무원의 외국인정책 직무전문성 함양 및 다양한 문화에 대한 수용성·이해도 제고를 위한 제23기, 제24기 '이민정책의 이해 과정' 교육 운영 (7월, 11월) - 이민자 사회통합지표를 활용해 지역별 이민자 관련현황을 조사, 이민자의 지역사회 통합정도를 지수 산출 및 지자체 대상 정책컨설팅 실시(12월) * 정기적인 이민자 사회통합지수 측정·공표를 위한「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개정안 발의('24.11.)
2025	- 이민자 조기적응 및 안전의식 제고를 위하여 조기적응프로그램에 산업안전보건 및 범죄예방교육 추가(기존 3시간 → 5시간, 2월) ※ ('25.2.~12.) 35,833명 참여, 1,592회 운영 - 이민자 멘토단이 학교로 찾아가 학교 내 정착 초기의 이주배경 청소년을 대상으로 '멘토링 특강' 제공(5월) ※ '25년 36개학교, 963명 참여 - 내·외국인이 더불어 사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제18회 세계인의 날 기념식 개최(5월) 및 제12회 한마음 걷기 축제·정부합동고충 상담 행사 개최(10월) - 국내 체류 동포의 안정적 한국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동포체류지원센터 확대·지정 (17개→23개, 7월)

	※ 동포체류지원센터 지정 및 예산지원 등의 근거 마련을 위해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25. 3. 장동혁의원/ '25. 8. 박균택의원) - 국내 체류 중인 외국국적동포를 대상으로 입국시기별, 연령대별 취업과 생활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한 '동포 체류 실태조사' 실시('25. 8. ~ 12.) - '26년도 계절근로자 조기적응프로그램 이수 의무제 전면 시행에 대비, 교육 운영 효과 및 문제점 등을 사전 점검하기 위해 시범 실시(10월~12월) ※ 전남·경북·경남 지역(9개 기초지자체) 베트남 계절근로자를 대상으로 시범사업 실시(686명) - 광복절을 기념하여 독립유공자들의 위대한 희생과 헌신을 기리고 그 후손에게 국적증서를 수여하는 '독립유공자 후손 대한민국 국적증서 수여식' 개최(8월) * 독립유공자 17명의 후손 27명 - 국적심의위원회 3회, 분과위원회 6회 개최(연중) - 난민위원회 9회, 분과위원회 32회 개최(연중) -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에서 제11기 재정착난민에 대한 6개월 적응교육 실시 후 주거지·교육·물품 등 지역사회 정착 지원(10월) - 난민에 대한 인식개선 등을 위해 중앙정부·지방정부에 난민정책 소식지 배포(분기별) 난민처우협의회 개최(7월) - 세계 난민의 날 기념 난민전문가 간담회(6월), 인도적체류자 지원단체와의 간담회(9월), 난민정책 간담회(11월) 개최
2026	- 최고 수준의 인재를 유치하는 '톱티어(Top-tier)비자' 신설(24명 유치, '26.6. 기준) 및 5개 과학기술원에 27개 과학기술 우수 일반대학을 추가 확대한 'K-STAR 비자 트랙'을 통해 363명('26.6. 기준)의 우수 인재 확보 - 농어촌 필수인력인 계절근로자 도입, 체류 등 지원 및 불법브로커 근절을 위한 '계절근로 전문기관' 지정 등 개정 출입국관리법 시행('26.1.) - 동포 체류자격을 기존 방문취업(H-2)와 재외동포(F-4) 이원화에서 '재외동포(F-4)'로 일원화('26.2.) - 2026년부터 2030년까지 국가 이민정책의 방향이 되는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 발표('26.3.) - '동포체류지원센터'를 23개에서 37개로 확대('26.5.) - 중앙 계절근로 전문기관으로 공공기관인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지정('26.5.) - 법무부 외국인 인권침해 신고 전담 창구로 '1345콜센터 1번' 신설('26.5.) - 이민자 인권·권익 침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한 법무부 '이민자 인권침해 조사단'(전국 100명) 출범('26.8.)

③ 향후(2027년도 이후) 기대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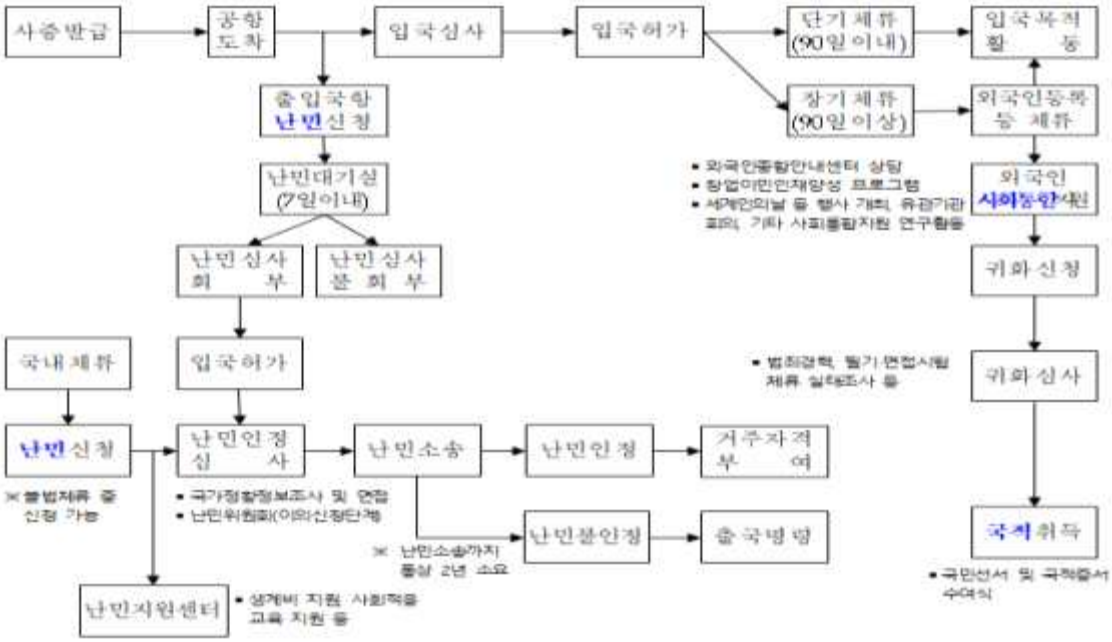
- 외국인의 입국 초기 원활한 사회적응 및 기초생활정보 취득, 사회구성원으로서 헌법가치 및 준법정신 함양
-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공존하며 성장하는 대한민국 사회 조성 및 사회통합 촉진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이민자 사회통합지원사업 일반(법무부 직접 집행)



■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 (민간경상보조)

과정 개설	➡	참여 접수	➡	교육 운영	➡	이수 확인	➡	외국인등록
시행계획 수립 및 공지		교육 신청		지원센터 교육 참여		이수 처리 및 이수증 발급		외국인등록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25~2029	17,639	21,579	18,404	18,017	17,436	
2026~2030		21,579	24,554	25,290	26,049	26,830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난민심사 전문임기제에 대한 객관적 평가 등 적정성 점검 및 정식 직제 내 정원 인력 운영 등 보완 필요(법사위, '24.결산)
2) 감사원 감사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 해당 없음
3) 자체평가·감사 : 해당 없음
4)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 해당 없음

5)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난민심사 전문임기제 연 2회 성과평가, ’27년 정기직제에 난민심사 전담인력(출입국관리 공무원) 증원(요구 +36명, 기획예산처 검토 +33명) 반영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결혼이민자, 유학생, 동포, 외국인노동자 등 이민자가 안정적으로 우리 사회에 적응, 자립 및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국민과 이민자가 더불어 성장하는 사회통합정책 수행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통합재정사업 성과평가(’26.5.) 결과 : 사업개선
- “예산이 목적에 부합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향후 사업 운영 결과의 정기적인 점검 및 성과 분석을 실시하는 등 사업 개선이 필요”
- “2년 연속 96% 이상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어 편성된 예산을 준수하게 집행하고 있는 것은 인정되나, 사회통합의 확대를 위해 집행률 제고에 노력을 더할 필요”

12) 동 사업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

○ 재정사업 자율평가(’25.3.) 결과 : 보통
- “숙련기능인력 전환 활성화 위한 관계부처 협업, UN의 난민사업 긍정 평가 등을 통해 성과 우수성 입증함”

13) 2026년도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 결과 및 후속 조치 현황

평가결과	성과평가 주요내용	조치결과
사업개선	사업 운영 결과의 정기 점검 및 성과 분석 등 사업개선 필요	사회통합지원사업 성과분석, 지속 점검 및 실소요 중심 예산 편성 노력

14) 부처 건의사항 : 해당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3	14,026	-	14,026	-	△414	-	13,612	13,274	94.6	97.5	-	338
2024	15,427	-	15,427	-	△107	-	15,320	14,787	95.9	96.5	-	533
2025	17,639	-	17,639	-	△606	-	17,033	16,380	92.9	96.2	-	653
2026	21,579	-	21,579	-	500	-	22,079	12,520	58.0	56.7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본예산	추경(A)								
2023	1,059	1,059	1,059	1,059	-	1,059	1,059	-	-	100.0
2024	964	964	964	964	-	964	964	-	-	100.0
2025	2,052	2,052	1,725	2,052	-	2,052	1,725	-	327	84.1
2026.7월기준	5,714	5,714	3,832	5,714	-	5,714	3,832	-	-	67.1

2) 주요 결산사항

□ 2023~2026년 결산사항

2023	ㅇ 전용 : 보호외국인 증가에 따른 급식비 등 구호및교정비 부족분 충당 142백만원 전용 감, 전기요금 인상 등 공공요금 부족분 충당을 위해 272백만원 전용 감 ㅇ 불용 : 집행잔액 338백만원
2024	ㅇ 전용 : 공공요금 부족분 충당을 위해 107백만원 전용 감 ㅇ 불용 : 집행잔액 533백만원
2025	ㅇ 전용 : 불법체류외국인 합동단속 등으로 단속된 보호외국인에 대한 수용·호송경비, 출입국관서 공공요금 부족분 등 충당을 위해 606백만원 전용 감 ㅇ 불용 : 집행잔액 653백만원
2026	ㅇ 전용 : 중앙 계절근로전문기관 운영을 위해 500백만원 전용 증

□ 2026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전용 (2026.4.5.)	출입국외국인 관서시설운영 (1232-300)	자산취득비 (430-01)	250	외국인사회통합 지원 (1233-301)	민간경상 보조 (320-01)	중앙 계절근로전문기관('26.1.23. 시행 출입국관리법 제19조의5 근거) 1개 운영비로 전용
전용 (2026.4.5.)	출입국외국인 관서시설운영 (1232-300)	무형자산 (440-00)	250	외국인사회통합 지원 (1233-301)	민간경상 보조 (320-01)	중앙 계절근로전문기관('26.1.23. 시행 출입국관리법 제19조의5 근거) 1개 운영비로 전용

□ 2026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 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 해당 없음

사 업 명
사회통합프로그램이수제운영 (1233-304)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		020	022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200	1233	304
명칭	이민정책활동	외국인체류관리	사회통합프로그램이수제운영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6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사회통합 프로그램 이수제운영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	유성오	김원희	구본민
		출입국기획과	02-2110-4010	02-2110-4026	02-2110-4028
사회통합 프로그램운영 내역사업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	강영우	김민기	박기형
		이민통합과	02-2110-4140	02-2110-4146	02-2110-4150
	사업시행주체	한국이민재단 (중앙거점운영기관)	교육국장	김찬기	02-2643-6576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년 결산	2026년 예산		2027년		증감	
		본예산(A)	추경	요구안	조정안(B)	(B-A)	(B-A)/A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제운영	13,601	13,955	13,955	17,153	17,153	3,198	22.9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25					2026(2026.7월말)							2027 예산안
	예산액(추경)	예산현액	집행액[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현액	집행액[실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예상액	불용예상액	
									예산현액	집행액[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13,909	13,874	13,601	-	273	13,955	13,955	10,949	13,955	10,949	-	-	17,153
·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	13,594	13,594	13,322	-	272	13,640	13,640	10,825	13,640	10,825	-	-	16,838
·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운영등	315	280	279	-	1	315	315	124	315	124	-	-	315
○ 비목별 분류(합계)	13,909	13,874	13,601	-	273	13,955	13,955	10,949	13,955	10,949	-	-	17,153
· 일반수용비(210-01)	315	280	279	-	1	315	315	124	315	124	-	-	315
· 민간위탁사업비(320-02)	13,594	13,594	13,322	-	272	13,640	13,640	10,825	13,640	10,825	-	-	16,838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13,909	13,874	13,601	-	273	13,955	13,955	10,949	13,955	10,949	-	-	17,153
·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	13,594	13,594	13,322	-	272	13,640	13,640	10,825	13,640	10,825	-	-	16,838
-민간위탁사업비(320-02)	13,594	13,594	13,322	-	272	13,640	13,640	10,825	13,640	10,825	-	-	16,838
·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운영	315	280	279	-	1	315	315	124	315	124	-	-	315
-일반수용비(210-01)	315	280	279	-	1	315	315	124	315	124	-	-	315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내역사업 1 : 사회통합프로그램이수제운영) 이민자가 우리사회 구성원으로 적응·자립하는데 필수적인 기본소양(한국어와 한국문화, 한국사회이해) 및 국내정착 관련 정보 취득 지원
- (내역사업 2 :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 국제결혼을 준비하는 한국인에게 국제결혼관련 법령, 현지문화·관습 및 국제결혼 성공·실패 사례를 소개하여 국제결혼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행복한 가정을 형성·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

2) 사업개요

① 법령상 근거

- 출입국관리법 제39조(사회통합 프로그램)

제39조(사회통합 프로그램) ①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 국적, 영주자격 등을 취득하려는 외국인의 사회적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 정보 제공, 상담 등의 사회통합 프로그램(이하 "사회통합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8. 3. 20.>

② 법무부장관은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 및 시설 등을 갖춘 기관, 법인 또는 단체를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법무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시행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운영기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
2. 제3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경비

⑤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내용 및 개발, 운영기관의 지정 · 관리 및 지정 취소, 그 밖에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추진경위

-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이민자가 우리사회 구성원으로 적응·자립하는데 필요한 기본 소양(한국어와 한국문화, 한국사회 이해)을 체계적으로 함양할 수 있도록 제도 마련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08~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 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 포함)

연도	2023	2024	2025	2026	2027(안)
사업비	10,532	10,754	13,909	13,955	17,153

- 기타: 국내 체류외국인 293만 명('26.8. 현재), '25년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자 약 9만 명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 민간위탁(사회통합프로그램)
- 사업시행주체 :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이수제 운영기관
- 사업 수혜자 : 내·외국인(체류외국인 293만명, '26.8.)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3) 2027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

①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 : ('26) 13,640 → ('27) 16,838백만원, 3,198백만원 증액

■ 사회통합프로그램 강사료 : ('26) 10,687 → ('27) 13,822백만원 (+3,135백)

※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자 확대 추세(공급 대비 교육수요 초과) 및 주말반 등 교육 편의 제고를 위해 숙련기능인력반, 조선업반을 폐지(△3,941백만원)하고 일반사회통합프로그램으로 일원화

→ 교육수요가 높은 주말반, 농어촌 인구소멸지역 방문형 등 교육 공급 확대 (재투자)

☞ '25년 실이수자 9만명 대비 '27년 1만명 추가 이수 + '25년 수강신청 조기 마감(수초 이내)된 약 1천여개 강좌(반당 20명) 추가 개설로 사회통합교육 확대 요청 민원 해소 (총 3만명 추가 이수 효과 → 특히 농어촌 등 소멸위기지역 방문, 주말반 등 확대)

※ 향후 AI 기반 출입국·이민행정 지능형 대민플랫폼 개편과 함께 온라인 사회통합프로그램 확대 동시 추진

■ 운영기관 전담인력 인건비 : ('26) 1,685 → ('27) 1,747백만 (+62백) ※ '27.최저임금 연동 처우개선 반영

- ('26) 50개기관×1명×2,808천원×12월=1,685백만 → ('27) 50개기관×1명×2,911천원×12월=1,747백만

■ 운영기관 운영비 : ('26) 1,155 → ('27) 384개기관×250천×12월=1,155백만 (전년 수준)

■ 다문화사회전문가 양성 : ('26) 113 → ('27) 113백만 (전년 수준)

‣ 강사료 : 기본교육[20시간×40회(개설강의 수)]+ 보수교육[15시간×15회(개설강의 수)]× 100천(강사료 단가) = 103백만

‣ 운영비 : 10개 대학×1,000천=10백만

○ 2026년도 예산 및 2027년도 예산안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6년 본예산		2027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3,640,000	○ **민간위탁사업비(320-02) : 13,640,000천원** 가. 강사료 : 259,500시간×26,000원=6,747,000천원 나. 운영비 : (348개 기관+8.5개 기관)×270천원×12월=1,155,094천원 다. 전담인력 인건비 : 50명×2,807,670원×12월=1,684,602천원 라. 한국사회의이해 강사양성위탁비 : (10개 대학×103시간×100천원) +(10개 대학×1,000천원)=113,000천원 마. 산업현장 밀착형 사회통합프로그램 : 270.8개반×26,000원 ×115시간=810,290천원 바. 숙련기능인력 양성 사회통합프로그램 특별반 : 560개반×26,000원 ×215시간=3,130,400천원 사. 계수조정 : △386천원	16,838,000	○ **민간위탁사업비(320-02) : 16,838,000천원** 가. 강사료 : 531,600시간×26,000원=13,821,600천원 나. 운영비 : 384개 기관×251천원×12월=1,156,608천원 다. 전담인력 인건비 : 50명×2,911,330원×12월=1,746,798천원 라. 한국사회의이해 강사양성위탁비 : (10개 대학×103시간×100천원) +(10개 대학×1,000천원)=113,000천원 사. 계수조정 : △6천원

②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 운영 등 : ('26) 315 → ('27) 315백만원, 전년 동

○ (개요) 국제결혼을 준비하는 한국인(모든 국제결혼 예정자가 아니라, 불법체류 등을 고려해 법무부 장관이 고시한 특정 7개 국가 국민을 초청하려는 한국인 배우자)에게 국제결혼관련 법령, 현지문화.관습 및 국제결혼 성공.실패 사례를 소개하여 국제결혼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행복한 가정을 형성.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

※ [프로그램 내용] ① 국제결혼 관련 현지국가의 제도·문화·예절정보 등 소개(1시간), ② 결혼사증 발급절차 및 심사기준 등 정부정책 소개(1시간), ③ 결혼이민자 상담·피해사례 소개, 선배 결혼이민자의 경험담 공유(1시간), ④ 부부간 인권 존중· 갈등 해소 노력, 가정폭력 방지 등 인권 교육(1시간)

[강사 요건] 다문화사회 전문가 자격 소지자, 사회통합 관련 전문교수, 이민관련 업무 종사자 등 전문가, 시민단체 관계자, 인권관련 전문가, 국제결혼 당사자(결혼이민자와 배우자)

☞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은 결혼이민자의 한국인 배우자를 대상으로 국제결혼제도 이해뿐만 아니라 사증(=비자) 발급, 체류허가, 영주, 국적취득, 사회통합프로그램 등 결혼이민자의 안정적 결혼 관계 유지를 위한 법무부 정책을 안내하기 때문에 전문성을 갖춘 법무부가 지속 수행할 필요가 있음

ㅇ 2026년도 예산 및 2027년도 예산안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6년 본예산		2027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315,000	○ **일반수용비(210-01) : 315,000천원** 가. 강사료 : 16개기관*100,000원*4명*2회*12월=153,600천원 나. 운영비 : 16개소*300,000원*12월=57,600천원 다. 교재발간 등 : 4,502천원×12월=54,020천원 라. 사회통합프로그램 평가 문제출제비 : 50,000천원 마. 계수조정 : △220천원	315,000	○ **일반수용비(210-01) : 315,000천원** 가. 강사료 : 16개기관*100,000원*4명*2회*12월=153,600천원 나. 운영비 : 16개소*300,000원*12월=57,600천원 다. 교재발간 등 : 4,502천원×12월=54,020천원 라. 사회통합프로그램 평가 문제출제비 : 50,000천원 마. 계수조정 : △220천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3~2027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3	2024	2025	2026	2027	2027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이민자의 한국사회 적응에 필요한 기본소양 충족도(%)	목표	53.7	53.8	54.6	56.1	-	-	이민자의 한국사회 적응에 필요한 기본소양 충족도(%) =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자(최종합격) 수 /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수료자 수 × 100	사회통합정보망
	실적	53.6	54.3	55.7		-			
외국인 체류질서 및 사회통합 안정도(점)	목표	신규	신규	신규	신규	120	불법체류자 수 감소 추세와, 영주 및 귀화 수요 증가에 따라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자 수도 증가하여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여 성과지표 신규설정	불법체류자수 감소분 + 사회통합프로그램 4·5단계 이수자 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통계월보 및 사회통합정보망
	실적	-	-	-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3	ㅇ 외국인력과 산업현장(조선업)의 요구에 부합하도록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시범 실시함으로써 외국인력의 조기정착 지원과 장기근속 유도 ※ 조선업체에 근무하는 특정활동(E-7), 비전문취업(E-9) 외국 인력 중 총 988명 (상반기 427명 실시, 하반기 561명 예정) 선발, 사회통합프로그램 기초(15시간) 및 초급단계 (100시간) 시범교육 실시 - 전문강사를 현장에 파견하여 외국인이 일터에서 편리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맞춤형 교육 실시, 이들이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숙련된 기술을 조기에 익히고,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 - 일터에서 국민과 서로 협력자적 동료관계를 형성하여 장기근속이 가능함은 물론 조선업 등 기간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 ㅇ 사회통합프로그램 기본소양평가 문항 개발(5~11월) ㅇ 사회통합프로그램 기본소양 평가 참여자의 접근성 제고를 위한 컴퓨터기반 평가(CBT) 센터 광명 외 대전 추가 개소

	ㅇ 인구 소멸 대책으로 고려인 동포 유치를 추진 중인 제천시와 협업하여 고려인 동포 대상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11월) ㅇ 외국인 마약사범이 증가함에 따라 사회통합프로그램 시민교육으로 이민자 대상 '마약예방교육' 시범 실시(11월)
2024	ㅇ 국제결혼을 준비하는 한국인 배우자를 대상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 운영(연중) ※ 전국 17개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386회 실시, 7,244명 참여 ㅇ 조선업종 등 산업체 종사 외국인력 교육 접근성 제고 등을 위해 '산업현장 밀착형'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연중) ㅇ 외국인 근로자의 사회통합프로그램 평가 접근성·편의성을 제고하고, 기업체의 업무공백 방지를 위해 주말시간대를 이용하여 외국인 근로자가 근무하는 기업체를 '찾아가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실시(7월) ㅇ 6월 화성 '아리셀공장 화재' 사고와 관련, 외국인 근로자 의 안전한 경제활동 및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사회통합프로그램 시민교육에 '산업안전보건교육' 신설 (9월) ㅇ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수료자 대상, 한국어 구술능력 함양을 위한 별도 과정(구술능력심화반) 개설 (9월) ㅇ 교육참여자 책임성 강화, 교육수급 불균형 해소, 교육품질 개선 등 교육 내실화를 위한 「사회통합프로그램 일부 유료화」 기반 마련 * 교육수수료 고시('24. 9.), 결제시스템 구축('24. 12.), 유료화 시행('25. 1.) ㅇ '이민자 멘토단'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멘토단이 학교내 한국어 학급을 찾아가서 이주배경 청소년 대상으로 한국생활 적응에 대한 조언 및 동기부여 강화를 위한 멘토링 특강 실시 (11월) ㅇ '사회통합프로그램 서울 CBT센터' 개소(12월)
2025	ㅇ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 수수료 일부 유료화(단계당 약 10만원 외국인 자부담 신설, '25.1.)로 약 40억원 세입 창출(연중) ㅇ 산업현장 인력난 해소와 기업의 안정적인 숙련인력 계속 고용을 지원하기 위한 숙련기능인력(E-7-4) 양성 특별반 운영(연중) ㅇ 조선업종 등 산업체 종사 외국인력 교육 접근성 제고 등을 위해 '산업현장 밀착형'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연중) ㅇ 이민자의 지역 사회참여 확대를 장려하기 위한 이민자 대상 지자체 연계 프로그램 74개 지정(연중) ㅇ 사회통합프로그램 중간평가에 컴퓨터기반(CBT) 방식을 도입하여 응시 기회 확대 등 응시자 편의 제공('25. 6월) ㅇ 국립국어원 협업으로 사회통합프로그램 강사 역량 강화 교육 실시('25. 7월, 총 261명 참여) ㅇ 사회통합프로그램 수강 신청 접속 폭주로 인한 참여자 불편 완화를 위한 사회통합정보망(SOCI-NET) 개선('25. 8월) ㅇ 사망사고 등의 중대재해 대책 및 스리랑카 외국인 노동인권 침해 사건 관련 대통령 지시사항 이행을 위해 외국인 인권 및 안전 관련 사회통합프로그램 시민교육 2개 과정(노동인권, 가스안전) 신설('25. 9월) ㅇ 사회통합프로그램 Bottom-up 공모 제1차 시범사업 실시('25.11.)
2026	ㅇ 사회통합프로그램 개편방향 등 운영기관 대표자 현장의견 수렴('26.7.)

③ 향후(2027년도 이후) 기대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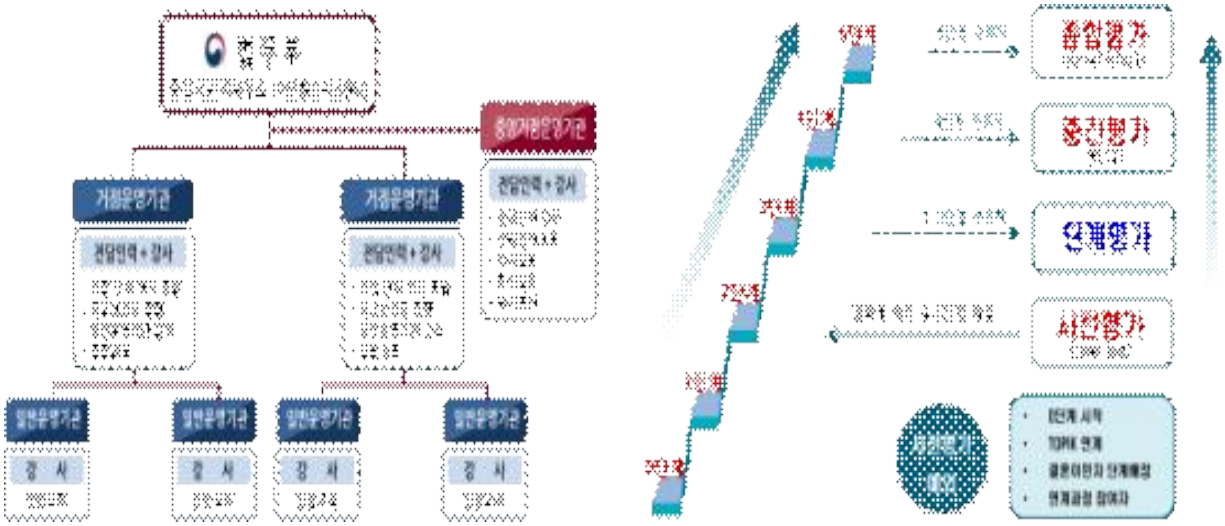
- 이민자의 장기체류단계에서 한국사회 구성원이 되는데 필수적인 헌법가치, 준법정신, 한국어와 한국문화·사회 등 기본소양을 함양하게 하여 국민과의 사회통합에 기여
-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금융, 재난·안전, 소비자권리, 범죄 등에 취약하기 쉬운 이민자 대상 교육을 통해 이민자의 조속한 사회적응 지원
- 국제결혼 전(前) 단계에서 제도, 배우자 현지문화, 국제결혼 사례 등 정보제공을 통해 건전한 국제결혼 문화 조성에 기여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 (민간위탁사업비)



■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 지정 절차

① 모집공고 (법무부)	② 지정신청서 제출	③ 서류심사	④ 실태조사	⑤ 선정심사	⑥ 최종지정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 모집공고	신청기관 명의 공문, 지정신청서, 운영계획서, 신청자격 기타 입증서류 등	신청 접수한 출입국·외국인 관서에서 신청서류에 대한 사실확인	지정기준 적격성 여부 등에 대한 현장방문 실사	보조사업자 선정위원회*를 통해 심사 *사회통합프로그램 지방자문위원회 구성 (시행규칙 제53조의4)	지정결과 발표 (법무부 공고)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25~2029	13,909	13,955	13,257	12,978	12,560	
2026~2030		13,955	17,153	17,667	18,197	18,743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의 이수 및 면제 요건 등을 점검하고, 고시 국가 지정 기준을 합리적으로 재설정 및 사업 효과성 측정을 위한 체계적 수단 마련(예정처, '24.결산)
2) 감사원 감사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 해당 없음
3) 자체평가·감사 : 해당 없음
4)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 해당 없음
5)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외부 정책연구용역* 등을 통해 고시국가 지정기준, 이수 및 면제요건 등 제도 전반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 효과성 제고를 위한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제도 개선 추진 중
 * (연구용역명)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개선방안 연구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사회 변화 및 교육 수요에 부응하는 사회통합프로그램 다양화 및 질적 향상 도모
○ 체류·귀화 시 사회통합교육을 확대·강화하여 이민자의 안정적 한국사회 정착을 유도하고 잠재적 사회갈등비용 예방, 경감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통합재정사업 성과평가('26.5.) 결과 : 사업개선
 - "사회 통합 성과와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른 수수료 수입 창출 등 성과가 있으므로, 적정 수준의 재투자 및 교육원가 절감 등 사업개선 노력이 필요"

12) 동 사업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

○ 재정사업 자율평가('25.3.) 결과 : 보통
 - "전년 대비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율 상승에 따라 성과 지표 달성, '23년 정부혁신 행정제도 개선 우수사례 '장려상' 수상 등을 통해 성과의 우수성 입증"

13) 2026년도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 결과 및 후속 조치 현황

평가결과	성과평가 주요내용	조치결과
사업개선	사회통합 및 수입 창출 등 성과 인정, 적정 수준 재투자 및 교육원가 절감 등 사업개선 필요	사회통합프로그램이수제사업 성과분석, 지속 점검 및 실소요 중심 예산 편성 노력

14) 부처 건의사항 : 해당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3	10,532	-	10,532	-	-	-	10,532	10,511	99.8	99.8	-	21
2024	10,754	-	10,754	-	-	-	10,754	10,720	99.7	99.7	-	34
2025	13,909	-	13,909	-	△35	-	13,874	13,601	97.8	98.0	-	273
2026	13,955	-	13,955	-	-	-	13,955	10,949	78.5	78.5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 해당 없음

2) 주요 결산사항

□ 2023~2026년 결산사항

2023	○ 불용 : 집행잔액 21백만원
2024	○ 불용 : 집행잔액 34백만원
2025	○ 전용 : 입국자 증가에 따른 입국신고서 인쇄비 및 재심통역비 부족 충당 전용 감 35백만원 ○ 불용 : 집행잔액 273백만원
2026	○ 이·전용 내역 없음

□ 2026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 없음

□ 2026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 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 해당 없음

형사사법활동

사 업 명
공소청시설운영 (1333-3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법무부	검찰국		020	022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법무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300	1333	300
명칭	형사사법활동	공소청운영	공소청시설운영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6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공소청시설 운영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검찰국	나하나	검사 구자원	수사관 나민수
		검찰과	02-2110-4190	02-2110-4194	02-2110-4209
	사업시행주체	-	-	-	-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년 결산	2026년 예산		2027년		증감	
		본예산(A)	추경	요구안	조정안(B)	(B-A)	(B-A)/A
공소청시설운영	79,670	83,131	83,131	89,968	78,507	△4,624	△5.6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25					2026(2026.7월말)							2027 예산안
	예산액(추경)	예산현액	집행액[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현액	집행액[실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예상액	불용예상액	
									예산현액	집행액[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82,703	80,546	79,670	-	875	83,131	83,131	35,649	83,131	35,649	-	-	78,507
· 인건비(110)	23,418	23,252	22,937	-	315	25,815	25,815	13,836	25,815	13,836	-	-	30,014
· 운영비(210)	22,222	23,143	23,125	-	18	18,658	18,658	11,913	18,658	11,913	-	-	19,726
· 민간이전(320)	7,765	7,765	7,604	-	161	8,397	8,397	3,129	8,397	3,129	-	-	9,322
· 건설비(420)	16,765	14,365	14,005	-	360	20,144	20,144	2,223	20,144	2,223	-	-	8,982
· 유형자산(430)	5,938	5,426	5,414	-	12	2,001	2,001	431	2,001	431	-	-	2,947
· 무형자산(440)	6,596	6,596	6,586	-	10	8,116	8,116	4,117	8,116	4,117	-	-	7,516
○ 비목별 분류(합계)	82,703	80,546	79,670	-	875	83,131	83,131	35,649	83,131	35,649	-	-	78,507
· 상용임금(110-03)	23,418	23,252	22,937	-	315	25,815	25,815	13,836	25,815	13,836	-	-	30,014
· 일반수용비(210-01)	1,774	1,761	1,757	-	4	1,775	1,775	1,448	1,775	1,448	-	-	1,775
· 공공요금및제세(210-02)	5,884	6,805	6,799	-	6	2,790	2,790	2,192	2,790	2,192	-	-	3,365
· 피복비(210-03)	251	248	248	-	-	251	251	134	251	134	-	-	251
· 임차료(210-07)	1,801	1,801	1,800	-	1	1,891	1,891	950	1,891	950	-	-	1,741
· 시설장비유지비(210-09)	4,802	4,781	4,775	-	6	4,182	4,172	2,410	4,172	2,410	-	-	3,381
· 복리후생비(210-12)	348	348	348	-	-	348	348	348	348	348	-	-	417
· 일반용역비(210-14)	1,558	1,583	1,583	-	-	1,618	1,620	1,089	1,620	1,089	-	-	1,857
· 관리용역비(210-15)	5,804	5,816	5,815	-	1	5,804	5,812	3,343	5,812	3,343	-	-	6,940
· 민간위탁사업비(320-02)	3,187	3,187	3,187	-	-	3,286	3,286	1,924	3,286	1,924	-	-	3,286
· 고용부담금(320-09)	4,578	4,578	4,417	-	161	5,111	5,111	1,204	5,111	1,204	-	-	6,036
· 실시설계비(420-02)	904	853	544	-	309	1,303	1,559	136	1,559	136	-	-	318
· 공사비(420-03)	15,660	13,311	13,307	-	4	18,640	18,384	2,086	18,384	2,086	-	-	8,513
· 감리비(420-04)	201	201	154	-	47	201	201	-	201	-	-	-	151
· 자산취득비(430-01)	5,938	5,426	5,414	-	12	2,001	2,001	431	2,001	431	-	-	2,947
· 무형자산(440-00)	6,596	6,596	6,586	-	10	8,116	8,116	4,117	8,116	4,117	-	-	7,516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82,703	80,546	79,670	-	875	83,131	83,131	35,649	83,131	35,649	-	-	78,507
· 인건비	23,418	23,252	22,937	-	315	25,815	25,815	13,836	25,815	13,836	-	-	30,014
-상용임금(110-03)	23,418	23,252	22,937	-	315	25,815	25,815	13,836	25,815	13,836	-	-	30,014
· 운영비	22,222	23,143	23,125	-	18	18,658	18,658	11,913	18,658	11,913	-	-	19,726
-일반수용비(210-01)	1,774	1,761	1,757	-	4	1,775	1,775	1,448	1,775	1,448	-	-	1,775

	2025					2026(2026.7월말)							2027 예산안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공공요금및제세(2002)	5,884	6,805	6,799	-	6	2,790	2,790	2,192	2,790	2,192	-	-	3,365
-피복비(210-03)	251	248	248	-	-	251	251	134	251	134	-	-	251
-임차료(210-07)	1,801	1,801	1,800	-	1	1,891	1,891	950	1,891	950	-	-	1,741
-시설장비유지비(2009)	4,802	4,781	4,775	-	6	4,182	4,172	2,410	4,172	2,410	-	-	3,381
-복리후생비(210-12)	348	348	348	-	-	348	348	348	348	348	-	-	417
-일반용역비(210-14)	1,558	1,583	1,583	-	-	1,618	1,620	1,089	1,620	1,089	-	-	1,857
-관리용역비(210-15)	5,804	5,816	5,815	-	1	5,804	5,812	3,343	5,812	3,343	-	-	6,940
· 민간이전	7,765	7,765	7,604	-	161	8,397	8,397	3,129	8,397	3,129	-	-	9,322
-민간위탁사업비(3002)	3,187	3,187	3,187	-	-	3,286	3,286	1,924	3,286	1,924	-	-	3,286
-고용부담금(320-09)	4,578	4,578	4,417	-	161	5,111	5,111	1,204	5,111	1,204	-	-	6,036
· 건설비	16,765	14,365	14,005	-	360	20,144	20,144	2,223	20,144	2,223	-	-	8,982
-실시설계비(420-02)	904	853	544	-	309	1,303	1,559	136	1,559	136	-	-	318
-공사비(420-03)	15,660	13,311	13,307	-	4	18,640	18,384	2,086	18,384	2,086	-	-	8,513
-감리비(420-04)	201	201	154	-	47	201	201	-	201	-	-	-	151
· 유형자산	5,938	5,426	5,414	-	12	2,001	2,001	431	2,001	431	-	-	2,947
-자산취득비(430-01)	5,938	5,426	5,414	-	12	2,001	2,001	431	2,001	431	-	-	2,947
· 무형자산	6,596	6,596	6,586	-	10	8,116	8,116	4,117	8,116	4,117	-	-	7,516
-무형자산(440-00)	6,596	6,596	6,586	-	10	8,116	8,116	4,117	8,116	4,117	-	-	7,516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공소청사 공무직 운영)** 전국 67개 공소청에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환경, 시설, 조경)의 채용 및 운영 지원
- **(공소청사 유지 보수 등 관리)** 전국 67개 공소청의 시설 환경 개선, 통신 및 장비 등 시설장비 유지·관리를 통해 청사 기능 유지 지원, 노후 공소청사 보수 및 노후 장비

교체를 통한 근무 환경 개선, 긴급상황 대비 위한 비상대기소 확보, 순환 근무 원칙에 따른 비연고지 근무자 관사 보증금 지급 등

- **(공소청 어린이집 운영위탁)** 공소청사 직장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 유지 보수 등 지원
- **(인천지방공소청 북부지청 개청 지원)** 2028. 3. 개청 예정인 인천지방공소청 북부지청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필수 집기류, 부대시설 공사비 등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구)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법, 동법시행령, 국유재산법 및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등

② 추진경위

- 공소청 시설운영과 관련된 청사유지 및 관리경비
- 2007년 프로그램 예산구조로 개편 시 기본사업에서 세부사업으로 변경
- 2026년 10월 검찰 조직 개편에 따라 세부사업명을 '검찰청시설운영'에서 '공소청 시설운영'으로 변경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3	2024	2025	2026	2027(안)
사업비	81,894	82,041	82,703	83,131	78,507

- 기타: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법무부
- 사업 수혜자 :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7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

① 공소청사 공무직 운영

: (2026 본예산) 31,524 → (2027 예산안) 36,718백만원, 5,193백만원 증액

- 상용임금 4,199백만원, 고용부담금 924백만원, 복리후생비 70백만원 증액

2026년 본예산		2027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31,524	○ **상용임금(110-03) : 25,814,829천원** ・695명×3,095천원×12월=25,814,829천원 ○ **피복비(210-03) : 250,599천원** ・695명×361천원=250,599천원 ○ **복리후생비(210-12) : 347,500천원** ・695명×500천원=347,500천원 ○ **고용부담금(320-09) : 5,111,336천원** ・695명×613천원×12월=5,111,336천원	36,718	○ **상용임금(110-03) : 30,014,072천원** ・695명×3,599천원×12월=25,814,829천원 ○ **피복비(210-03) : 250,599천원** ・695명×361천원=250,599천원 ○ **복리후생비(210-12) : 417,000천원** ・695명×600천원=347,500천원 ○ **고용부담금(320-09) : 6,035,830천원** ・695명×724천원×12월=6,035,830천원

② 공소청사 유지·보수 등 관리

: (2026 본예산) 48,321백만원 → (2027 예산안) 35,800백만원, 12,520백만원 감액

- 연례적·관성적 노후시설 교체 등 지출 구조 조정 18,810백만원 감액
- 관사 임차료·보증금 예산 중대범죄수사청 이관 750백만원 감액
- 공소청사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시설 교체 5,238백만원 증액
- 임차청사(수원광역청, 지방청) 관리비 818백만원 증액
- 정보통신 유지보수 관리자 선임 등 용역비 557백만원 증액
- 행정박물 정리 사업 381백만원 증액

2026년 본예산		2027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48,321	○ **일반수용비(210-01) : 1,775,328천원** ・67개청×26,497천원=1,775,328천원 ○ **공공요금 및 제세(210-03) : 2,789,568천원** ・67개청×41,635천원=2,789,568천원 ○ **임차료(210-07) : 1,891,125천원** ・481채×328천원×12월=1,891,125천원 ○ **시설장비유지비(210-09) : 4,181,639천원** ・67개청×62,413천원=4,181,639천원 ○ **일반용역비(210-14) : 1,617,948천원** ・67개청×24,148천원=1,617,948천원 ○ **관리용역비(210-15) : 5,804,383천원** ・67개청×86,633천원=5,804,383**천원** ○ **실시설계비(420-02) : 1,302,918천원** ・67개청×19,447천원=1,302,918**천원** ○ **공사비(420-03) : 18,640,107천원** ・67개청×278,211천원=18,640,107천원 ○ **감리비(420-04) : 201,096천원** ・67개청×3,001천원=201,096천원 ○ **자산취득비(430-01) : 2,000,709천원** ・67개청×29,861천원=2,000,709천원 ○ **무형자산(440-00) : 8,115,875천원** ・481채×16,873천원=8,115,875천원	35,800	○ **일반수용비(210-01) : 1,775,064천원** ・67개청×26,493천원=1,775,064천원 ○ **공공요금 및 제세(210-03) : 3,028,796천원** ・67개청×45,206천원=3,028,796천원 ○ **임차료(210-07) : 1,741,125천원** ・481채×302천원×12월=1,741,125천원 ○ **시설장비유지비(210-09) : 3,380,579천원** ・67개청×50,456천원=3,380,579천원 ○ **일반용역비(210-14) : 1,857,273천원** ・67개청×27,720천원=1,857,273천원 ○ **관리용역비(210-15) : 6,939,900천원** ・67개청×103,581천원=6,939,900**천원** ○ **실시설계비(420-02) : 317,615천원** ・67개청×4,741천원=317,615**천원** ○ **공사비(420-03) : 7,841,597천원** ・67개청×117,039천원=7,841,597천원 ○ **감리비(420-04) : 150,822천원** ・67개청×2,251천원=150,822천원 ○ **자산취득비(430-01) : 1,251,837천원** ・67개청×18,684천원=1,251,837천원 ○ **무형자산(440-00) : 7,515,875천원** ・481채×15,626천원=7,515,875천원

③ 공소청 어린이집 운영위탁

: (2026 본예산) 3,286백만원 → (2027 예산안) 3,286백만원, 전년동

2026년 본예산		2027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3,286	○ **민간위탁사업비(320-02) : 3,286,040천원** ・ 8개 직장 어린이집×34,230천원×12월=3,286,040천원	3,286	○ **민간위탁사업비(320-02) : 3,286,040천원** ・ 8개 직장 어린이집×34,230천원×12월=3,286,040천원

④ 인천지방공소청 북부지청 개청 지원

: (2026 본예산) 0 → (2027 예산안) 2,703백만원, 2,703백만원 증액

- 2028년 3월 개청 예정인 인천지방공소청 북부지청의 원활한 개청을 위한 필수 집기류 구입 등 2,703백만원 증액

2026년 본예산		2027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	-	2,703	○ **공공요금 및 제세(210-03) : 336,082천원** ・ 16,773m^2×20천원=336,082천원 ○ **공사비(420-03) : 671,878천원** ・ 16,773m^2×40.1천원=671,878천원 ○ **자산취득비(430-01) : 1,695,016천원** ・ 16,773m^2×101.1천원=1,695,016천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3~2027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 노후 청사의 효율적 유지 관리
- 민원인에 대한 편의 증진 및 근무 환경개선
- 청사 내 안정적이며 쾌적한 환경 조성
- 안전하고 독립적인 근무환경 조성을 통한 엄정한 법 집행 기반 조성
- 청사 보안 강화

③ 향후(2027년도 이후) 기대효과

- 노후화된 공소청사의 시설 교체를 통한 자원·에너지 안보 상황 개선
- 개청 예정인 신청사 지원을 통한 원활한 형사사법 서비스 제공
- 조직 개편에 따른 행정박물의 전문적·신속한 관리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특이사항 없음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25~2029	82,703	98,707	98,644	96,289	96,469	
2026~2030		83,131	108,700	85,258	87,579	91,609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① 정부 사업평가 : 해당사항 없음

②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ㅇ 국가형사사법기록관 관리· 운영 예산의 적정 규모 편성 필요('21회계연도 결산 국회 지적사항)
- ㅇ 검찰청사 신축 및 증축 사업의 준공에 따른 사무용품, 집기류 등 제반소요를 예산 절감 노력을 통한 적정 규모 편성 필요('22회계연도 결산 국회 지적사항)
- ㅇ 예산이 추가 지출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검찰청사의 신축·증축 시 사업계획을 철저히 수립할 것('22회계연도 결산 국회 지적사항)
- ㅇ 연초에 지청 단위별 승강기 설치 계획을 확정하고 각 지청마다 상반기에 공사를 착수하도록 관리하는 등 편성된 예산의 연내 집행 완료를 위해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23회계연도 결산 국회 지적사항)
- ㅇ 법무부는 재정당국과 협의하여 노후된 대형관사에 대한 교환 또는 임차전환을 신속히 추진할 것('25회계연도 예산 국회 지적사항, 법사위)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ㅇ 2022년 예산 국회 심사시 검찰청 보안시설 및 출입통제시스템 강화를 위하여 예산 증액(299백만원) 반영
- ㅇ 국가형사사법기록관은 운영된지 4년차('18. 11. 개관, 송파구 문정동 소재)로 매년 일반수용비와 시설장비유지비 집행액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23년도 정부 예산안을 편성하였고, 국회 예산심의 단계에서 확정예산 기준으로 5.3억을 감액 반영
- ㅇ '26년 예산 편성 시 재정당국에 검찰소유 대형관사 반납계획 제출 및 임차 전환 예산 편성 추진

③ 감사원 지적 : 해당사항 없음

④ 기타 언론 및 민원 : 해당사항 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공소청사 중 30년 이상 경과된 노후청사 증가에 따른 시설환경 개선 소요 적극 반영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2) 동 사업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 : 해당없음

13) 2026년도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 결과 및 후속 조치 현황 : 해당없음

14) 부처 건의사항

○ 지원 필요성
- 공소청 시설 환경 개선 및 통신 등 시설장비 유지 및 관리를 통한 쾌적한 청사 기능 유지
- 공소청사 조경, 전기설비, 청소 등 청사관리 기능 유지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3	81,894	-	81,894	-	△572	-	81,322	80,975	98.9	99.6	205	142
2024	82,041	-	82,041	205	△1,796	-	80,450	80,128	97.7	99.6	-	322
2025	82,703	-	82,703	-	△2,157	-	80,546	79,670	96.3	98.9	-	875
2026	83,131	-	83,131	-	-	-	83,131	35,649	42.9	42.9	-	-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 해당없음

2) 주요 결산사항

□ 2023~2026년 결산사항

2023	- (이 · 전용 등 사유) 공공요금 부족으로 1,415백만원 전용 증, 형사보상금 부족으로 1,987백만원 전용 감 - (이월 사유 및 불용 사유) 실시설계비, 일반용역비 등 집행잔액 142백만원 불용, 구치감 승강기 설치공사 일정 지연으로 공사비 205백만원 이월
2024	- (이 · 전용 등 사유) WIPO 국제부담금 부족으로 111백만원 전용 감, 형사보상금 부족으로 1,325백만원 전용 감, 국내여비 부족으로 360백만원 전용 감
2025	- (이 · 전용 등 사유) 형사보상금 부족으로 2,578백만원 전용 감, 공공요금 부족으로 421백만원 전용 증
2026	- 해당없음

□ 2026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

□ 2026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 해당없음

사 업 명
검사국외훈련 및 국제형사협력지원 (1333 - 3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법무부	검찰국		020	022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법무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300	1333	301
명칭	형사사법활동	공소청운영	검사국외훈련 및 국제형사협력지원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6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검사국외훈련 및 국제형사 협력지원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검찰국	나하나	검사 구자원	수사관 나민수
		검찰과	02-2110-4190	02-2110-4194	02-2110-4209
	사업시행주체	-	-	-	-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년 결산	2026년 예산		2027년		증감	
		본예산(A)	추경	요구안	조정안(B)	(B-A)	(B-A)/A
검사국외훈련 및 국제형사협력지원	7,957	7,937	7,937	8,953	8,571	634	8.0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25					2026(2026.7월말)							2027 예산안
	예산액(추경)	예산현액	집행액[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현액	집행액[실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예상액	불용예상액	
									예산현액	집행액[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7,957	7,358	7,351	-	7	7,937	7,937	5,650	7,937	5,650	-	-	8,571
· 운영비(210)	2,977	2,378	2,371	-	6	2,977	2,477	1,310	2,477	1,310	-	-	2,889
· 여비(220)	4,566	4,568	4,568	-	-	4,567	5,067	4,121	5,067	4,121	-	-	4,997
· 업무추진비(240)	79	79	79	-	-	79	79	37	79	37	-	-	64
· 연구용역비(260)	20	20	20	-	-	-	-	-	-	-	-	-	-
· 해외이전(340)	313	313	312	-	1	313	313	182	313	182	-	-	621
○ 비목별 분류(합계)	7,957	7,358	7,351	-	7	7,937	7,937	5,650	7,937	5,650	-	-	8,571
· 일반수용비(210-01)	2,600	2,131	2,124	-	6	2,601	2,101	1,131	2,101	1,131	-	-	2,512
· 공공요금및제세(210-02)	6	6	6	-	-	6	6	-	6	-	-	-	6
· 임차료(210-07)	42	21	21	-	-	42	42	19	42	19	-	-	42
· 일반용역비(210-14)	329	220	220	-	-	329	329	160	329	160	-	-	329
· 국외업무여비(220-02)	1,453	1,207	1,207	-	-	1,454	1,254	808	1,254	808	-	-	1,176
· 국외교육여비(220-03)	3,113	3,361	3,361	-	-	3,113	3,813	3,313	3,813	3,313	-	-	3,821
· 사업추진비(240-01)	79	79	79	-	-	79	79	37	79	37	-	-	64
· 일반연구비(260-01)	20	20	20	-	-	-	-	-	-	-	-	-	-
· 국제부담금(340-02)	313	313	312	-	1	313	313	182	313	182	-	-	621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7,957	7,358	7,351	-	7	7,937	7,937	5,650	7,937	5,650	-	-	8,571
· 운영비(210)	2,977	2,378	2,371	-	6	2,977	2,477	1,310	2,477	1,310	-	-	2,889
-일반수용비(210-01)	2,600	2,131	2,124	-	6	2,601	2,101	1,131	2,101	1,131	-	-	2,512
-공공요금및제세(210-02)	6	6	6	-	-	6	6	-	6	-	-	-	6
-임차료(210-07)	42	21	21	-	-	42	42	19	42	19	-	-	42
-일반용역비(210-14)	329	220	220	-	-	329	329	160	329	160	-	-	329
· 여비(220)	4,566	4,568	4,568	-	-	4,567	5,067	4,121	5,067	4,121	-	-	4,997
-국외업무여비(220-02)	1,453	1,207	1,207	-	-	1,454	1,254	808	1,254	808	-	-	1,176
-국외교육여비(220-03)	3,113	3,361	3,361	-	-	3,113	3,813	3,313	3,813	3,313	-	-	3,821
· 업무추진비(240)	79	79	79	-	-	79	79	37	79	37	-	-	64
-사업추진비(240-01)	79	79	79	-	-	79	79	37	79	37	-	-	64
· 연구용역비(260)	20	20	20	-	-	-	-	-	-	-	-	-	-
-일반연구비(260-01)	20	20	20	-	-	-	-	-	-	-	-	-	-

	2025					2026(2026.7월말)							2027 예산안
	예산액(추경)	예산현액	집행액[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현액	집행액[실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예상액	불용예상액	
									예산현액	집행액[실집행액]			
· 해외이전(340)	313	313	312	-	1	313	313	182	313	182	-	-	621
-국제부담금(340-02)	313	313	312	-	1	313	313	182	313	182	-	-	621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국제형사사법공조 등 국제협력)** 국제형사사법공조를 위한 조약 교섭 및 체결 회담, 국제공조수사, 국제형사사법공조 관련 회의, 자금추적 관련 수사공조 등 업무를 위한 여비 및 경비 지원
- **(국외도피 범죄수익환수)** 해외 은닉 재산 등에 대한 범죄수익환수 국제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경비 지원
- **(국외훈련 지원)** 검사 장·단기 국외훈련 및 선진신문기법 전문 교육팀 연수를 위한 여비 및 정착금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공무원교육훈련법 및 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 검사 국외훈련 운영규정(법무부 훈령 제757호)
- 공무원국외훈련업무처리 및 복무관리에 관한 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299호)
- 범죄인인도법 및 범죄인인도조약, 국제형사사법공조법 및 형사사법공조조약
- 국가수형자이송법 및 유럽수형자이송협약 등

② 추진경위

<검찰국외훈련>

- 최초 사업시작년도 : 1978년

- 추진배경

· 법무 · 검찰의 국제업무 수요 증가

· 검찰공무원이 참석해야 할 국제협상, 국제회의 수요 증가

<국제형사협력지원>

- 1988. 8. 5. 범죄인도법 제정
- 1991. 3. 8. 국제형사사법공조법 제정
- 2003. 12. 3. 국제수형자이송법 제정
- 2005. 12. 14. 범죄인인도법 개정
- 2009. 11. 2. 국제형사사법공조법 개정
- 2010. 3. 31. 범죄인인도법 개정
- 2011. 4. 15. 국제수형자이송법 개정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3	2024	2025	2026	2027(안)
사업비	7,873	7,924	7,957	7,937	8,571

- 기타: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법무부
- 사업 수혜자 :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7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

① 국제형사사법공조 등 국제협력

: (2026 본예산) 2,768 → (2027 요구) 2,694백만원, 74백만원 감액

- WIPO 국제부담금 308백만원 증액
- 중대범죄수사청 예산 이관에 따른 일반수용비 비목조정 382백만원 감액

2026년 본예산		2027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2,768	○ **일반수용비(210-01) : 633,479천원** ・67개청×9,455천원=633,479천원 ○ **공공요금 및 제세(210-03) : 5,864천원**	2,694	○ **일반수용비(210-01) : 544,730천원** ・67개청×8,130천원=544,730천원 ○ **공공요금 및 제세(210-03) : 5,864천원**

2026년 본예산		2027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 **임차료(210-07) : 22,800천원** ○ **일반용역비(210-14) : 329,000천원** ○ **국외업무여비(220-02) : 1,399,242천원** ・67개청×20,884천원=1,399,242천원 ○ **사업추진비(240-01) : 64,253천원** ・67개청×959천원=64,253천원 ○ **국제부담금(340-02) : 313,420천원** ・2개기구×156,710천원=313,420천원		○ **임차료(210-07) : 22,800천원** ○ **일반용역비(210-14) : 329,000천원** ○ **국외업무여비(220-02) : 1,121,596천원** ・67개청×16,740천원=1,121,596천원 ○ **사업추진비(240-01) : 49,133천원** ・67개청×734천원=49,133천원 ○ **국제부담금(340-02) : 621,109천원** ・2개기구×310,555천원=621,109천원

② 국외도피 범죄수익 환수

: (2026 본예산) 108 → (2027 요구) 108백만원, 전년동

2026년 본예산		2027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08	○ **일반수용비(210-01) : 19,280천원** ○ **임차료(210-07) : 19,000천원** ○ **국외업무여비(220-02) : 54,401천원** ○ **사업추진비(240-01) : 14,910천원**	108	○ **일반수용비(210-01) : 19,280천원** ○ **임차료(210-07) : 19,000천원** ○ **국외업무여비(220-02) : 54,401천원** ○ **사업추진비(240-01) : 14,910천원**

③ 국외훈련 지원

: (2026 본예산) 5,061 → (2027 요구) 5,769백만원, 708백만원 증액

- 검사 국외훈련 교육여비 708백만원 증액

2026년 본예산		2027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5,061	○ **일반수용비(210-01) : 1,947,922천원** ○ **국외교육여비(220-03) : 3,113,429천원** ・검사79명×39,410천원=3,113,429천원	5,769	○ **일반수용비(210-01) : 1,947,922천원** ○ **국외교육여비(220-03) : 3,821,255천원** ・검사79명×48,370천원=3,113,429천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사건의 구공판 처리율 (%)	목표	10.5	12.0	13.0	삭제	삭제	해당없음		
	실적	15.0	14.7	15.0					
	달성도	142.9	122.5	115.4					
자유형 및 재산형 집행률 (%)	목표	83.65	80.07	80.12	80.7	삭제	최근 3년간 평균 자유형 및 재산형 집행률 실적치(79.65%) 보다 약 0.55% 상향	{(자유형 집행인원/자유형 접수인원 × 100) + (재산형 집행건수/재산형 처리건수 × 100)} / 2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및 검찰통계시스템
	실적	76.58	79.30	80.25	79.3	-			
	달성도	91.6	99.0	100.2	98.3	-			
범죄수익 보전 결정 건수 (건)	목표	신규	신규	신규	3,381	3,719	최근 3년간 평균 범죄수익 보전 결정 건수 실적치(3,471건) 보다 약 2.5% 하향	최초 목표치 설정 후 직전연도 목표치에서 10% 상향	형사사법 정보시스템(KICS) 중 범죄수익환수정보시스템(ISF)
	실적	신규	신규	신규	4,299	-			
	달성도	2,572	3,364	4,478	127.2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 국외훈련 연도별 실적

2019	장기 해외훈련 57명, 단기 해외훈련 18명
2020	장기 해외훈련 56명, 단기 해외훈련 12명
2021	장기 해외훈련 58명, 단기 해외훈련 17명
2022	장기 해외훈련 57명, 단기 해외훈련 21명
2023	장기 해외훈련 56명, 단기 해외훈련 20명
2024	장기 해외훈련 52명, 단기 해외훈련 14명
2025	장기 해외훈련 55명, 단기 해외훈련 22명

- 국제형사사법공조 연도별 실적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외국에 대한 요청	240건	320건	375건	420건	741건	1,043건	1,065건	1,117건	1,092건
외국의 요청 접수	160건	195건	235건	202건	285건	207건	206건	194건	213건

③ 향후(2027년도 이후) 기대효과

- 국제회의 참석 등을 통하여 외국과의 교류 증진 및 국제역량 강화
- 고도화 · 전문화되는 사이버범죄 및 초국가적 국제범죄에 대한 효율적 대응
- 국제형사협력체계 강화로 재외국민에 대한 보호기능 제고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공소청국외훈련

· 공소청해외연수 계획수립→ 연수희망자 선발→ 파견명령→ 연수보고서 제출

○ 국제형사협력

· 외교통상부로부터 조약체결의뢰 및 국제회의 참가요청 접수→ 조약체결 타당성· 국제회의 참가 타당성 검토→ 예산검토→ 외교통상부에 조약협상회담, 국제회의 참가승인 및 대표단 선정통보 → 사업시행

○ 범죄인 인도

· 해외도주 범죄인 인터폴 수배→ 소재지 확인→ 인도청구서 작성→ 외교부 송부→ 해당국 외교부 경유 법무부 송부→ 검사의 인도심사청구→ 범죄인의 인도구속→ 범죄인 인도심사→ 법원의 결정→ 범죄인 호송

○ 국제수형자 이송

· 수형자가 선고국 또는 집행국에 이송 희망의사 표시→ 이송 희망의사 접수국이 상대국에 이송절차 요청→ 선고국 및 집행국이 각각 이송심사절차 진행→ 선고국 및 집행국 이송승인 완료시 이송 실시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25~2029	7,957	8,287	8,355	8,606	8,864	
2026~2030		7,937	8,141	8,385	8,637	8,896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① 정부 사업평가 : ('25 회계)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 결과 '사업개선'
  ㅇ 정책적 중요성에 부합하는 예산 운용 합리화 및 성과 관리 내실화 필요
② 국회 지적사항
  ㅇ 검사 국외훈련 대상국가 다변화 및 학자금 지원한도 설정 검토 필요('21회계연도 결산 국회 지적사항)
  ㅇ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검사 파견 부담금 예산 편성의 적정성 검토 필요 ('21회계연도 결산 국회 지적사항)
  ㅇ 국제검사협회 아태지부 연수사업의 초청 규모 및 과거 집행실적 등을 토대로 적정규모의 국외업무여비를 절감 편성할 것('23회계연도 결산 국회 지적사항)
  ㅇ 검사의 국외훈련비 지급기준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법관 등과 형평성을 맞출 수 있도록 개선할 것('23회계연도 결산 국회 지적사항)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ㅇ 향후 선발 시 훈련국가 다변화를 위해 노력하여 문제점 보완해 나가겠음
  - 학자금 지원의 경우 비학위 과정은 지원 한도를 정하여 운영하고 있고, 학위 과정은 교재비·기숙사비·건강보험료·주차료 등은 제외한 후 순수 학비만을 지급하는 등 자체적인 기준을 두고 운영하고 있어, 학자금 전액을 지급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나, 법원 등 타 기관의 운영사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임
  ㅇ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에 검사 파견부담금 지급방식 변경을 요청하는 공식 서한을 발송하여 방식 변경을 논의하였으나, WIPO 측의 수용 곤란 입장 확인
③ 감사원 지적 : 해당사항 없음
④ 기타 언론 및 민원 : 해당사항 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국외훈련 대상국 및 파견기관 다변화 지속 추진
- 범죄의 국제화 및 국가간 사법공조 필요성 증대에 따른 형사사법공조 및 범죄인 인도조약체결국가 확대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2) 동 사업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 : 해당없음

13) 2026년도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 결과 및 후속 조치 현황

평가결과	성과평가 주요내용	조치결과
사업개선	- 정책적 중요성에 부합하는 예산 운용 합리화 및 성과 관리 내실화 필요	- 성과평가 결과 참고하여 예산 운용 합리화 및 성과 관리 내실화하기 위한 검토 중임

14) 부처 건의사항

○ 지원 필요성
- 다양한 국가의 형사사법 관련 제도, 과학수사기법, 법제 등에 대한 연구 및 학습을 통해 국내의 형사사법제도 발전 도모
- 형사사법공조·범죄인인도조약 등 체결을 통한 형사사법공조체계 및 국제적 네트워크 구축, 국제형사사법 절차에 있어 국가 위상 제고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3	7,873	-	7,873	-	△290	-	7,583	7,582	96.3	100.0	-	-
2024	7,924	-	7,924	-	△206	-	7,718	7,591	95.8	98.4	-	127
2025	7,957	-	7,957	-	△599	-	7,358	7,351	92.4	99.9	-	7
2026	7,937	-	7,937	-	-	-	7,937	5,650	71.2	71.2	-	-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 해당없음

2) 주요 결산사항

□ 2023~2026년 결산사항

2023	- (이 · 전용 내역 및 사유) 형사보상금 부족으로 290백만원 전용 감
2024	- (이 · 전용 내역 및 사유) WIPO 국제부담금 부족으로 111백만원 전용 증, 2백만원 내역 증, 형사보상금 부족으로 50백만원 전용 감
2025	- (이 · 전용 내역 및 사유) 인권보호 등 검찰업무지원 국내여비 부족으로 109백만원 전용 감, 형사보상금 부족으로 490백만원 전용 감
2026	- 해당없음

□ 2026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

□ 2026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 해당없음

사 업 명
법과학인프라구축 (1333-30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법무부	검찰국		020	022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법무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300	1333	302
명칭	형사사법활동	공소청운영	법과학인프라구축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6예산 시 소관
	O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법과학 인프라구축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검찰국	나하나	검사 구자원	수사관 박성인
		검찰과	02-2110-4190	02-2110-4194	02-2110-4216
	사업시행주체	-	-	-	-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년 결산	2026년 예산		2027년		증감 (B-A)	(B-A)/A
		본예산(A)	추경	요구안	조정안(B)		
법과학인프라구축	11,549	11,410	11,410	10,036	9,449	△1,961	△17.2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25					2026(2026.7월말)							2027 예산안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12,250	11,699	11,549	-	150	11,410	11,410	4,324	11,410	4,324	-	-	9,449
· 인건비(110)	286	215	210	-	5	313	313	133	313	133	-	-	328
· 운영비(210)	4,999	4,777	4,770	-	6	5,051	5,051	2,853	5,051	2,853	-	-	4,451
· 여비(220)	331	423	421	-	3	331	331	229	331	229	-	-	311
· 업무추진비(240)	46	46	46	-	-	46	46	4	46	4	-	-	38
· 직무수행경비(250)	153	153	100	-	53	138	138	36	138	36	-	-	-
· 연구용역비(260)	451	451	437	-	14	451	451	234	451	234	-	-	451
· 민간이전(320)	64	64	64	-	1	71	71	12	71	12	-	-	75
· 건설비(420)	20	20	20	-	-	20	20	-	20	-	-	-	20
· 유형자산(430)	5,900	5,550	5,480	-	70	4,989	4,989	823	4,989	823	-	-	3,776
○ 비목별 분류(합계)	12,250	11,699	11,549	-	150	11,410	11,410	4,324	11,410	4,324	-	-	9,449
· 상용임금(110-03)	286	215	210	-	5	313	313	133	313	133	-	-	328
· 일반수용비(210-01)	1,737	1,646	1,646	-	-	1,695	1,695	682	1,695	682	-	-	1,122
· 피복비(210-03)	9	9	9	-	-	9	9	7	9	7	-	-	8
· 특근매식비(210-05)	1	1	1	-	-	1	1	1	1	1	-	-	1
· 임차료(210-07)	136	103	102	-	1	136	136	22	136	22	-	-	136
· 시설장비유지비(210-09)	895	797	792	-	4	895	895	289	895	289	-	-	869
· 재료비(210-11)	2,030	2,030	2,030	-	-	2,030	2,030	1,722	2,030	1,722	-	-	2,030
· 복리후생비(210-12)	3	3	3	-	-	3	3	3	3	3	-	-	4
· 시험연구비(210-13)	188	188	187	-	1	282	282	126	282	126	-	-	282
· 국내여비(220-01)	188	281	281	-	-	188	188	86	188	86	-	-	152
· 국외업무여비(220-02)	142	142	140	-	3	142	142	142	142	142	-	-	158
· 사업추진비(240-01)	46	46	46	-	-	46	46	4	46	4	-	-	38
· 특정업무경비(250-03)	153	153	100	-	53	138	138	36	138	36	-	-	-
· 일반연구비(260-01)	451	451	437	-	14	451	451	234	451	234	-	-	451
· 고용부담금(320-09)	64	64	64	-	1	71	71	12	71	12	-	-	75
· 공사비(420-03)	20	20	20	-	-	20	20	-	20	-	-	-	20
· 자산취득비(430-01)	5,900	5,550	5,480	-	70	4,989	4,989	823	4,989	823	-	-	3,776

	2025					2026(2026.7월말)							2027 예산안
	예산액(추경)	예산현액	집행액[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현액	집행액[실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예상액	불용예상액	
									예산현액	집행액[실집행액]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12,250	11,699	11,549	-	150	11,410	11,410	4,324	11,410	4,324	-	-	9,449
· 인건비(110)	286	215	210	-	5	313	313	133	313	133	-	-	328
-상용임금(110-03)	286	215	210	-	5	313	313	133	313	133	-	-	328
· 운영비(210)	4,999	4,777	4,770	-	6	5,051	5,051	2,853	5,051	2,853	-	-	4,451
-일반수용비(210-01)	1,737	1,646	1,646	-	-	1,695	1,695	682	1,695	682	-	-	1,122
-피복비(210-03)	9	9	9	-	-	9	9	7	9	7	-	-	8
-특근매식비(210-05)	1	1	1	-	-	1	1	1	1	1	-	-	1
-임차료(210-07)	136	103	102	-	1	136	136	22	136	22	-	-	136
-시설장비유지비(210-09)	895	797	792	-	4	895	895	289	895	289	-	-	869
-재료비(210-11)	2,030	2,030	2,030	-	-	2,030	2,030	1,722	2,030	1,722	-	-	2,030
-복리후생비(210-12)	3	3	3	-	-	3	3	3	3	3	-	-	4
-시험연구비(210-13)	188	188	187	-	1	282	282	126	282	126	-	-	282
· 여비(220)	331	423	421	-	3	331	331	229	331	229	-	-	311
-국내여비(220-01)	188	281	281	-	-	188	188	86	188	86	-	-	152
-국외업무여비(220-02)	142	142	140	-	3	142	142	142	142	142	-	-	158
· 업무추진비(240)	46	46	46	-	-	46	46	4	46	4	-	-	38
-사업추진비(240-01)	46	46	46	-	-	46	46	4	46	4	-	-	38
· 직무수행경비(250)	153	153	100	-	53	138	138	36	138	36	-	-	-
-특정업무경비(250-03)	153	153	100	-	53	138	138	36	138	36	-	-	-
· 연구용역비(260)	451	451	437	-	14	451	451	234	451	234	-	-	451
-일반연구비(260-01)	451	451	437	-	14	451	451	234	451	234	-	-	451
· 민간이전(320)	64	64	64	-	1	71	71	12	71	12	-	-	75
-고용부담금(320-09)	64	64	64	-	1	71	71	12	71	12	-	-	75
· 건설비(420)	20	20	20	-	-	20	20	-	20	-	-	-	20
-공사비(420-03)	20	20	20	-	-	20	20	-	20	-	-	-	20
· 유형자산(430)	5,900	5,550	5,480	-	70	4,989	4,989	823	4,989	823	-	-	3,776
-자산취득비(430-01)	5,900	5,550	5,480	-	70	4,989	4,989	823	4,989	823	-	-	3,776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법과학 관련 활동 지원)** 성범죄자 성호르몬 감정관 운용, DNA 감정·감식, 법생물 및 마약 감정, 법화학 감정, 문서 감정, 심리 분석, 음성 분석, 영상 분석, 진술 분석, 화재 분석, 멀티미디어 복원 등 새로운 법과학 감정·감식 및 분석기법 개발·연구, 연구 역량 강화, 전문인력 양성 등 법과학 관련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제반 경비 지원
- **(법과학 관련 시설 및 장비 운영)** 공판중심주의 강화와 범죄의 지능화·첨단화로 인해 사건 해결에 있어 법과학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증거물 등에 대한 감정·감식업무 수행과 선제적 대응을 위한 첨단 감정장비의 도입·유지보수 및 관련 장비 설치에 필요한 제반 경비 지원
- **(법과학 관련 국제 협력 지원)** 법과학 분야 국제 협력 강화 및 감정관 등의 전문역량 제고를 위한 국제 학회·교육 등 참석 여비 및 경비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형법, 형사소송법, 형사소송규칙, 검찰사건사무규칙,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대한 규칙,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및 시행령

② 추진경위

- 2007. 6.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따라 영상녹화조사팀 구성, 영상녹화조사 관련 증거 방법 다양화 연구 및 검찰사건사무규칙, 사법경찰관 집무규칙 개정 및 영상녹화 지침마련, 영상녹화조사실 전국청 조기 설치 추진
- 2010. 7. DNA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DNA 신원확인정보 DB 구축 시작
- 2011. 4. 부산고검 내 법화학분석팀 설치 후 부산·경남권 법화학감정 지원
- 2015. 2.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출범
- 2015. 12. 성폭력범죄자의성충동약물치료에관한법률에 의해 성범죄약물 검사기관으로 대검찰청 지정
- 2016. 3. 법생물 DNA 바코드 시스템 개발 운영
- 2016. 12. 국무총리 소속 DNA-DB 관리위원회에서 DNA-DB 수록에 사용되는 분석마커의 수를 기존 13개에서 20개로 확대 심의의결
- 2019. 1. 치료감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해 약물치료 집행 복약검사 실시

- 2020. 8. 법무부의 결혼이민(F-6) 자격요건면제 절차개선 관련, 결혼이민 자격 심사시 대검찰청에서 친자관계확인용 DNA검사 개시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3	2024	2025	2026	2027(안)
사업비	9,336	11,021	12,097	11,410	9,449

- 기타: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법무부
- 사업 수혜자 :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7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

□ **법과학인프라구축 : (2026 본예산) 11,410백만원 → (2027 예산안) 9,449백만원, 1,961백만원 감액**

① 법과학 관련 활동 지원

: (2026 본예산) 4,954백만원 → (2027 예산안) 4,212백만원, 741백만원 감액

- 중대범죄수사청 예산 이관 △758백만원
- 공무직 상용임금 처우개선분 12백만원
- 공무직 고용부담금 처우개선분 4백만원
- 공무직 복리후생비 처우개선분 1백만원

2026년 본예산		2027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4,954	○ **상용임금(110-03) : 253,566천원** ・4명×5,283천원×12월=253,566천원 ○ **일반수용비(210-01) : 1,619,218천원** ・67개청×24,167천원=1,619,218천원 ○ **재료비(210-11) : 2,029,920천원** ・67개청×30,297천원=2,029,920천원 ○ **사업추진비(240-01) : 38,491천원** ・67개청×574천원=38,491천원 ○ **특정업무경비(250-03) : 138,013천원** ・67개청×2,060천원=138,013천원 ○ **고용부담금(320-09) : 70,607천원** ・6명×981천원×12월=70,607천원 ○ **피복비(210-03) : 9,210천원** ○ **복리후생비(210-12) : 3,000천원** ○ **시험연구비(210-13) : 188,096천원** ○ **국내여비(220-01) : 188,394천원** ○ **일반연구비(260-01) : 415,000천원**	4,212	○ **상용임금(110-03) : 265,574천원** ・4명×5,533천원×12월=265,574천원 ○ **일반수용비(210-01) : 1,045,628천원** ・67개청×15,606천원=1,045,628천원 ○ **재료비(210-11) : 2,029,920천원** ・67개청×30,297천원=2,029,920천원 ○ **사업추진비(240-01) : 29,611천원** ・67개청×442천원=29,611천원 ○ **특정업무경비(250-03) : 순감** ○ **고용부담금(320-09) : 74,575천원** ・6명×1,036천원×12월=74,575천원 ○ **피복비(210-03) : 8,041천원** ○ **복리후생비(210-12) : 3,600천원** ○ **시험연구비(210-13) : 188,096천원** ○ **국내여비(220-01) : 152,411천원** ○ **일반연구비(260-01) : 415,000천원**

② 법과학 관련 시설 및 장비 운영

: (2026 본예산) 6,134백만원 → (2027 예산안) 4,895백만원, 1,239백만원 감액

- 중대범죄수사청 예산 이관 △1,239백만원

2026년 본예산		2027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6,134	○ 자산취득비(430-01) : 4,989,011천원 ・67개청×74,463천원=4,989,011천원 ○ 시험연구비(210-13) : 94,000천원 ○ 임차료(210-07) : 136,000천원 ○ 시설장비유지비(210-09) : 894,876천원 ○ 공사비(420-03) : 20,000천원	4,895	○ 자산취득비(430-01) : 3,776,433천원 ・67개청×56,365천원=3,776,433천원 ○ 시험연구비(210-13) : 94,000천원 ○ 임차료(210-07) : 136,000천원 ○ 시설장비유지비(210-09) : 868,624천원 ○ 공사비(420-03) : 20,000천원

③ 법과학 관련 국제 협력 지원

: (2026 본예산) 323백만원 → (2027 예산안) 341백만원, 19백만원 증액

- 공무직 상용임금 처우개선분 3백만원

- 중대범죄수사청 예산 이관에 따른 국외업무여비 비목 조정 16백만원

2026년 본예산		2027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323	○ 상용임금(110-03) : 59,532천원 ・2명×2,481천원×12월=59,532천원 ○ 국외업무여비(220-02) : 142,296천원 ・67개청×2,124천원=142,296천원 ○ 일반수용비(210-01) : 76,048천원 ○ 특근매식비(210-05) : 972천원 ○ 사업추진비(240-01) : 8,000천원 ○ 일반연구비(260-01) : 35,750천원	341	○ 상용임금(110-03) : 62,427천원 ・2명×2,601천원×12월=62,427천원 ○ 국외업무여비(220-02) : 158,290천원 ・67개청×2,363천원=158,290천원 ○ 일반수용비(210-01) : 76,048천원 ○ 특근매식비(210-05) : 972천원 ○ 사업추진비(240-01) : 8,000천원 ○ 일반연구비(260-01) : 35,750천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3~2027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사건의 구공판 처리율 (%)	목표	10.5	12.0	13.0	삭제	삭제	해당없음		
	실적	15.0	14.7	15.0					
	달성도	142.9	122.5	115.4					
자유형 및 재산형 집행률 (%)	목표	83.65	80.07	80.12	80.7	삭제	최근 3년간 평균 자유형 및 재산형 집행률 실적치(79.65%) 보다 약 0.55% 상향	{(자유형 집행인원/자유형 접수인원 × 100) + (재산형 집행건수/재산형 처리건수 × 100)} / 2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및 검찰통계시스템
	실적	76.58	79.30	80.25	79.3	-			
	달성도	91.6	99.0	100.2	98.3	-			
범죄수익 보전 결정 건수 (건)	목표	신규	신규	신규	3,381	3,719	최근 3년간 평균 범죄수익 보전 결정 건수 실적치(3,471건) 보다 약 2.5% 하향	최초 목표치 설정 후 직전연도 목표치에서 10% 상향	형사사법 정보시스템(KICS) 중 범죄수익환수정보시스템(ISF)
	실적	신규	신규	신규	4,299	-			
	달성도	2,572	3,364	4,478	127.2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3	- DNA, 법화학, 심리검사, 사이버수사 등 과학수사장비 구축 - DNA, 법화학분야 등 자체시험연구 및 연구용역 수행 - 유전자, 법화학, 문서, 심리 등 감정·감식(누계) 116,830건
2024	- DNA, 법화학, 심리검사, 사이버수사 등 과학수사장비 구축 - DNA, 법화학분야 등 자체시험연구 및 연구용역 수행 - 유전자, 법화학, 문서, 심리 등 감정·감식(누계) 98,568건
2025	- DNA, 법화학, 심리검사, 사이버수사 등 과학수사장비 구축 - DNA, 법화학분야 등 자체시험연구 및 연구용역 수행 - 유전자, 법화학, 문서, 심리 등 감정·감식(누계) 91,341건
2026	- DNA, 법화학, 심리검사, 사이버수사 등 법과학 관련 장비 구축 - DNA, 법화학분야 등 자체시험연구 및 연구용역 수행

③ 향후(2027년도 이후) 기대효과

- DNA 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의 안정적 구축 추진
- 증거분석기법 연구 · 개발에 주력하여 전문성 제고로 연구분석 역량 강화
- 감정 결과 검증 및 차별성 있는 복수 감정 기관으로서의 역할 확립
- 국제공인시험기관 유지관리 및 추가인정 신청
- 영상녹화 시스템 구축 정착 및 내실화 추진
- 최첨단 법과학 장비 확충과 새로운 감정 · 감식 및 분석기법 개발,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전문 역량 강화를 통해 전문화 · 첨단화된 법과학 감정·감식 및 분석 조직으로 변화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사업계획 및 제안요청서 작성	◇ 사업계획 수립 및 제안요청서 등 작성
⇩	----------
심의위원회 개최	◇ 연구용역, 장비 구매 등 심의위원회 구성 및 평가
⇩	----------
조달청 발주의뢰	◇ 검토 결과 반영하여 발주의뢰
⇩	----------
기술/가격 평가 실시	◇ 기술평가 위원회 구성 및 평가
⇩	----------
기술/가격 평가 결과통보	◇ 조달청 사업자 선정
⇩	----------
발 주	◇ 낙찰자와 계약체결
⇩	----------
검 수	◇ 검수 또는 검사
⇩	----------
완 료	◇ 사업 산출물 검사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25~2029	12,097	15,180	15,232	15,565	15,384	
2026~2030		11,410	16,177	16,156	16,156	14,517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ㅇ 영상녹화제도의 활성화 필요('22회계연도 결산 국회 지적사항)
   - ㅇ 영상녹화시설 신규 설치를 지양하고, 변화된 형사사법 환경에 비추어 과잉 설치된 측면이 있는 영상녹화조사실 및 장비에 대해 타용도 전환 모색 등 효율적 활용과 관리방안을 수립할 것('23회계연도 결산 국회 지적사항)
2) 감사원 감사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 해당없음
3) 자체평가·감사 : 해당없음
4)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 해당없음
5)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ㅇ 영상녹화조사를 활성화하기 위해 영상녹화 우수검사 선정·격려, 우수활용 사례 발굴, 영상녹화조사 수사·공판 실무매뉴얼 제작·배포, 일선청 현장 지도점검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ㅇ 영상녹화제도는 수사 과정의 적법성·투명성을 담보하고 인권 친화적 수사환경 구축 및 진술증거 취득의 객관성을 보장하여 공판에 활용하는 등 순기능으로 인해 영상녹화조사 시스템의 노후화 및 고장 등의 사유로 영상녹화조사에 차질이 없도록 장비 등을 상시 최적화 상태로 유지할 필요성이 있음
   - ㅇ 이에, 우수검사 선정 및 격려, 우수 활용사례 발굴 등 영상녹화조사 활성화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으며, 일선 검찰청 현장 지도점검을 통해, 영상녹화조사실의 관리 및 운영 실태 등을 철저히 점검하는 한편, 영상녹화 장비의 고장 및 노후화 상태 등을 점검하여 불요불급한 영상녹화장비 교체를 지양하도록 지도 관리하고 있으며, 향후 신규 영상녹화조사실 설치 및 장비 구매 시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과잉 설치하거나 구매하는 사례가 없도록 엄격히 검토할 방침임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공판과정에서 실체적 진실의 발견과 인권보호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새로운 패러다임에 부합하는 증거물 감정·감식 및 분석 환경 구축
- 영상녹화실 활용실적 제고를 위한 구체적인 활성화 방안 지속적 추진
- 공판중심주의 실시에 따른 감정·감식 및 분석 업무 시스템 개선
- 최고 수준의 감식기술을 토대로 법과학 분야의 리더 위상 확립
- 감정 결과 검증 및 차별성 있는 복수 감정 기관으로서의 역할 정립
- 법과학 분야 역량 강화와 장비 현대화를 위한 최첨단 감정 · 감식 장비 도입, 기법 개발을 위한 연구, 전문요원 확보 추진
- 형집행 및 공소의 실효성을 제고, 범죄 수사지원 및 예방을 위한 수형인 등 유전자 감식정보 DB 구축
- 사이버범죄 관련 범죄수익환수 및 형집행 전담인력 운영 및 체계화 구축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2) 동 사업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 : 해당없음

13) 2026년도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 결과 및 후속 조치 현황

평가결과	성과평가 주요내용	조치결과
사업개선	- 첨단 범죄 대응 성과 및 과학수사의 실질적 전문성은 입증되었으나, 예산 운영의 엄밀성 제고를 위한 구조적 개선이 필요함	- 성과평가 결과를 참고하여 예산 운영의 엄밀성 제고를 위한 구조적 개선 노력

14) 부처 건의사항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3	9,336	-	9,336	-	△280	-	9,056	8,797	94.2	97.1	97	161
2024	11,021	-	11,021	97	△1,210	-	10,005	9,979	90.5	99.7	-	25
2025	12,250	-	12,250	-	△551	-	11,699	11,549	94.3	98.7	-	151
2026	11,410	-	11,410	-	-	-	11,410	4,324	37.9	37.9	-	-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 해당없음

2) 주요 결산사항

□ 2023~2026년 결산사항

2023	- 형사보상금 부족으로 280백만원 전용 감, 국내여비 부족으로 사업내 전용 - 임차 할인, 낙찰차액 등으로 인해 임차료 3백만원, 자산취득비 98백만원, 일반연구비 14백만원 등 불용
2024	- 낙찰차액 등으로 인해 일반연구비 20백만원 등 25백만원 불용
2025	- 낙찰차액 등으로 인한 자산취득비 70백만원, 특정업무경비 12개월분 연중 추경 편성에 따른 4개월분 미집행 등 집행잔액 151백만원 불용
2026	- 해당없음

□ 2026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

□ 2026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 해당없음

사 업 명
국제형사협력지원(ODA) (1333-303)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법무부	검찰국		020	022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법무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300	1333	303
명칭	형사사법활동	공소청운영	국제형사협력지원(ODA)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6예산 시 소관
	O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국제형사 협력지원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검찰국	나하나	검사 구자원	수사관 박성인
		검찰과	02-2110-4190	02-2110-4194	02-2110-4216
	사업시행주체	-	-	-	-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년 결산	2026년 예산		2027년		증감 (B-A)	(B-A)/A
		본예산(A)	추경	요구안	조정안(B)		
국제형사협력지원	2,498	2,128	2,128	2,115	2,100	△28	△1.3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25					2026(2026년 7월말)							2027 예산안
	예산액(추경)	예산현액	집행액[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현액	집행액[실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예상액	불용예상액	
									예산현액	집행액[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2,509	2,509	2,498	-	11	2,128	2,128	-	2,128	-	-	-	2,100
· 운영비(210)	275	275	272	-	3	-	-	-	-	-	-	-	-
· 여비(220)	105	105	96	-	8	-	-	-	-	-	-	-	-
· 업무추진비(240)	2	2	2	-	-	-	-	-	-	-	-	-	-
· 해외이전(340)	2,128	2,128	2,128	-	-	-	2,128	-	2,128	-	-	-	2,100
○ 비목별 분류(합계)	2,509	2,509	2,498	-	11	2,128	2,128	-	2,128	-	-	-	2,100
· 일반수용비(210-01)	259	259	256	-	2	-	-	-	-	-	-	-	-
· 임차료(210-07)	16	16	16	-	-	-	-	-	-	-	-	-	-
· 국외업무여비(220-02)	105	105	96	-	8	-	-	-	-	-	-	-	-
· 사업추진비(240-01)	2	2	2	-	-	-	-	-	-	-	-	-	-
· 국제부담금(340-02)	2,128	2,128	2,128	-	-	2,128	2,128	-	2,128	-	-	-	2,100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2,509	2,509	2,498	-	11	2,128	2,128	-	2,128	-	-	-	2,100
· 운영비(210)	275	275	272	-	3	-	-	-	-	-	-	-	-
- 일반수용비(210-01)	259	259	256	-	2	-	-	-	-	-	-	-	-
-임차료(210-07)	16	16	16	-	-	-	-	-	-	-	-	-	-
· 여비(220)	105	105	96	-	8	-	-	-	-	-	-	-	-
- 국외업무여비(220-02)	105	105	96	-	8	-	-	-	-	-	-	-	-
· 업무추진비(240)	2	2	2	-	-	-	-	-	-	-	-	-	-
- 사업추진비(240-01)	2	2	2	-	-	-	-	-	-	-	-	-	-
· 해외이전(340)	2,128	2,128	2,128	-	-	2,128	2,128	-	2,128	-	-	-	2,100
- 국제부담금(340-02)	2,128	2,128	2,128	-	-	2,128	2,128	-	2,128	-	-	-	2,10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국제부담금 지원)** UNODC(유엔마약범죄사무소) 검사 파견 부담금 및 'ASEAN 수사 및 형사사법공조 등 역량 강화 사업'을 위한 UNODC 특수목적기여금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조항 적시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② 추진경위

- 2009년 대검찰청 마약과에서 아세안협력기금으로 필리핀 마약퇴치지원사업 수행(외교부 아세안협력과와 협의)
  · 검찰수사관 2명 출장 보내 8개월간 지원 사업 성공적으로 수행
- 2012년 아세안 회원국 중 필리핀을 우선 지원대상국으로 선정하고 예산 배정받아 사업 재개(※ 필리핀은 2015년까지 Drug-Free ASEAN을 추진)
- 2013년 서남아시아 중 가장 취약한 방글라데시를 우선 지원대상국으로 선정 사업 수행
  ※ 방글라데시에서 개최된 CPS 정책협의에서 방글라데시 정부(DNC : 마약통제기관)로부터 마약퇴치지원 사업 요청
- 2014년 중앙아시아 지역인 우즈베키스탄까지 지원사업 대상국가를 확대하여 수행
  ※ 중앙아시아 마약정보조정센터(CARICC) 사무국으로부터 한국 검찰 주도의 아태지역마약정보조정센터(APICC)로 회원국가중 하나인 우즈베키스탄에 대한 마약퇴치지원 요청(2013. 2.)
- 2015년 아프가니스탄 국경 인접국인 타지키스탄에 지원사업 대상국가를 확대하여 수행
  ※ CARICC 회원국인 타지키스탄에서 마약퇴치지원사업을 요청하였고, 타지키스탄은 현재 세계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아편, 헤로인의 90%이상이 아프카니스탄에서 생산되면서, 인접국가인 타지키스탄 등을 거쳐 세계 각지로 공급되고 있는 곳임
- 2016년 중앙아시아 국가 중 아프가니스탄산 헤로인의 주요 경유국이자 마약단속 역량이 가장 열악한 키르기스스탄 지원
  ※ 키르기스스탄은 아프가니스탄산 헤로인의 30% 이상의 경유지, 일부 헤로인이 자국 내에서 소비되어 청소년까지 사용층이 확산,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 후 강력한 단속을 펼치고 있으나 예산 및 장비 부족, 대검 마약과에 마약퇴치지원 요청
- 2017년 각종 마약류의 밀수입이 최근 증가 추세에 있는 반면, 전반적인 마약단속 시스템 등 인프라 부족으로 효율적인 통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몽골 지원

- 2018년 동남아 국가중 마약류 밀조 및 밀매가 심각한 골든트라이앵글 지역을 접하고 있으나, 인프라·장비 부족으로 마약류 통제가 효율적이지 못한 라오스 지원
- 2019년 마약류 밀매와 남용이 만연하고 있으나 예산 및 장비 부족으로 마약류가 효율적으로 통제되지 않는 캄보디아 지원
- 2020년 신종 마약류의 유통이 증가하고 있으나 감식장비 부족 등의 문제로 효율적이 대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필리핀을 대상으로 법화학 감정 역량 강화 지원
- 2021년 골든트라이앵글 지역과 접하고 있어 마약류 유통 및 오남용 문제가 심각한 반면 통제역량이 부족하고, 국내로의 마약류 밀반입 및 도피 마약사범이 증가하고 있는 라오스 지원
- 2022년 아시아 마약류 유통의 주요 경유국으로 마약류 사범, 마약류 압수량 증가 등 자국의 마약류 문제에 대해 인프라 부족으로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한편 국내로의 마약류 유입이 증가 추세인 캄보디아 지원
- 2023년 필로폰, LSD 등 마약류 압수량 증가, 국제마약범죄조직과 연관된 마약류 범죄 급증 및 젊은 층의 마약류 투약 등 마약류 문제에도 불구하고 수사장비, 인적 역량 부족으로 마약류 통제 역량이 미흡한 몽골 지원
- 2024년 섬나라라는 지리적 환경으로 외부에서 마약류가 대량 유입되고, 자국에서도 대마가 밀경되는 등 마약류 범죄가 심각한 인도네시아 지원
  ※ 인도네시아는 특별 전략적 동반자로 지정된 국가로, ODA 사업 지원 대상국으로 부합
- 2025년 아프가니스탄發 마약류가 대량으로 유입되고, 유입된 마약류가 타국으로 다시 밀수출되는 상황이나, 마약류 범죄 대처 역량은 부족한 키르기스스탄 지원
  ※ ‘23. 주한키르기스스탄 대사의 한국 검찰총장 예방시 ODA 지원사업을 요청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 사업기간 :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3	2024	2025	2026	2027(안)
사업비	2,509	2,701	2,509	2,128	2,100

- 기타 :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법무부
- 사업 수혜자 :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7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

□ **국제형사협력지원 : (2026 본예산) 2,128백만원 → (2027 요구) 2,100백만원, 28백만원 감액**

① **국제부담금 지원**

: (2026 본예산) 2,128백만원 → (2027 예산안) 2,100백만원, 28백만원 감액

- 유엔범죄예방 및 형사사법위원회 부담금 △28백만원

2026년 본예산		2027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2,128	○ **국제부담금(340-02) : 2,128,000천원** · 4개기구×532,000천원 = 2,128,000천원	2,100	○ **국제부담금(340-02) : 2,100,000천원** · 3개기구×700,000천원 = 2,100,000천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3~2027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사건의 구공판 처리율 (%)	목표	10.5	12.0	13.0	삭제	삭제	해당없음		
	실적	15.0	14.7	15.0					
	달성도	142.9	122.5	115.4					
자유형 및 재산형 집행률 (%)	목표	83.65	80.07	80.12	80.7	삭제	최근 3년간 평균 자유형 및 재산형 집행률 실적치(79.65%) 보다 약 0.55% 상향	{(자유형 집행인원/자유형 접수인원 × 100) + (재산형 집행건수/재산형 처리건수 × 100)} / 2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및 검찰통계시스템
	실적	76.58	79.30	80.25	79.3	-			
	달성도	91.6	99.0	100.2	98.3	-			
범죄수익 보전 결정 건수 (건)	목표	신규	신규	신규	3,381	3,719	최근 3년간 평균 범죄수익 보전 결정 건수 실적치(3,471건) 보다 약 2.5% 하향	최초 목표치 설정 후 직전연도 목표치에서 10% 상향	형사사법 정보시스템(KICS) 중 범죄수익환수정보시스템(ISF)
	실적	신규	신규	신규	4,299	-			
	달성도	2,572	3,364	4,478	127.2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3	- 몽골 마약퇴치 지원사업 수행
2024	- 인도네시아 마약퇴치 지원사업 수행
2025	- 키르키스탄 마약퇴치 지원사업 수행
2026	- ASEAN 수사 및 형사사법공조 등 역량 강화 사업 수행 중

③ 향후(2027년도 이후) 기대효과

- UNODC(유엔마약범죄사무소) 검사 파견 및 'ASEAN 수사 및 형사사법공조 등 역량 강화 사업' 지속 추진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특이사항 없음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25~2029	2,509	3,509	3,509	3,509	3,509	
2026~2030		2,128	2,192	2,258	2,325	2,395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ㅇ 국제마약퇴치지원 사업의 실효성 제고 필요('21회계연도 결산 국회)
   - ㅇ 국제기구 파견방식 변경에 따른 국제부담금 예산 조정 필요('21회계연도 결산 국회)
   - ㅇ ODA 사업의 '국제마약퇴치 지원사업'과 마약수사사업의 '아·태지역 마약조정센터 운영 지원 사업'의 대상국가, 사업내용이 유사하여 각 사업을 차별적으로 운영할 필요('22회계연도 결산)
   - ㅇ 국제마약퇴치지원 사업을 통한 지원물품 중 마약수사 특화 장비의 낮은 비중으로 인한 ODA 사업 효과성 저하('22회계연도 결산)
2) 감사원 감사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 해당없음
3) 자체평가·감사 : 해당없음
4)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 해당없음
5)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ㅇ '22년도에는 국내·외 코로나19 확산이 진정세를 보임에 따라 '22년도 국제마약퇴치지원 사업(수원국 캄보디아)에서는 대면 방식의 현지 마약퇴치 캠페인을 실시하고 각종 수사장비를 구매·지원하였으며 11월 하순경 국내 초청연수 및 종료식 시행 예정으로, '22년부터는 예산 집행이 정상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현지 사무실 운영도 사업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운영 중임(12. 2. 종료) 또한, 수원기관인 캄보디아 마약청과 협의하여 드론, 수갑 등 현장 수사에 필요한 장비뿐만 아니라 마약 순도분석장비, 마약분석실 무정전 전원공급장치 등 전문 기자재를 지원하는 등 수원국의 실질적인 마약통제 역량 제고를 위한 지원 품목을 확대함

ㅇ ’21년도 정부예산안 편성 이후인 ’20. 10.경 UNODC 본부(비엔나)에 검사를 다시 파견하기로 결정하면서 파견방식이 변경되었는데,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파견 방식 변경 사실이 반영되지 않아 국제부담금 3억원이 감액되지 않았는 바, 이에 ’22년도 예산 편성 시 UNODC에 대한 국제부담금 3억원 상당 감액하였음

ㅇ ‘국제마약퇴치’의 개발도상국 수사역량 강화, ‘아·태지역 마약정보조정센터’의 국제수사공조 강화라는 각 목적에 따라 대상국가 선정 등 사업방식을 차별화할 수 있도록 하겠음

ㅇ 마약수사 특화장비 지원 비중을 늘릴 필요가 있다는 지적과 관련, 23년에 진행중인 ‘ODA 몽골 마약퇴치 지원사업’부터 마약수사특화 장비의 비중을 높였고 향후 ODA 사업 진행 시에도, 일반 수사장비 및 사무장비의 비중을 낮추고 마약수사특화 장비의 비중을 높이는 방안을 적극 고려하겠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유엔 마약및범죄사무소(UNODC) 파견 검사 부담금 및 특수목적기여금 납부를 통해 ASEAN 지역과 관련된 초국가적 강력사건에서 범죄인 검거, 범죄조직 감금 피해자 구출 및 지원 등 형사사법공조 지속 추진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2) 동 사업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 : 해당없음

13) 2026년도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 결과 및 후속 조치 현황 : 해당없음

14) 부처 건의사항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3	2,509	-	2,509	-	-	-	2,509	2,492	99.3	99.3	-	17
2024	2,701	-	2,701	-	△2	-	2,699	2,689	99.6	99.6	-	10
2025	2,509	-	2,509	-	-	-	2,509	2,498	99.6	99.6	-	11
2026	2,128	-	2,128	-	-	-	2,128	-	-	-	-	-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 해당없음

2) 주요 결산사항

□ 2023~2026년 결산 사항

2023	- 집행잔액 4백만원 불용
2024	- 형사사법국외훈련 국제지식재산기구(WIPO) 국제부담금 부족으로 2백만원 내역변경 감 - 일반수용비 5백만원, 국제부담금 1백만원 등 집행잔액 10백만원 불용
2025	- 일반수용비 3백만원, 국외업무여비 9백만원 등 집행잔액 11백만원 불용
2026	- 해당없음

□ 2026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

□ 2026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 해당없음

사 업 명
인권보호 등 공소청업무지원 (1333 - 306)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법무부	검찰국		020	022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법무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300	1333	306
명칭	형사사법활동	공소청운영	인권보호 등 공소청업무지원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6예산 시 소관
	O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인권보호 등 공소청업무 지원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검찰국	나하나	검사 구자원	수사관 나민수
		검찰과	02-2110-4190	02-2110-4194	02-2110-4209
	사업시행주체	-	-	-	-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년 결산	2026년 예산		2027년		증감	
		본예산(A)	추경	요구안	조정안(B)	(B-A)	(B-A)/A
인권보호등공소청업무지원	23,445	31,381	31,381	32,474	29,262	△2,119	△6.8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25					2026(2026.7월말)							2027 예산안
	예산액(추경)	예산현액	집행액[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현액	집행액[실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예상액	불용예상액	
									예산현액	집행액[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23,967	24,096	23,445	-	651	31,381	31,301	15,718	31,301	15,718	-	-	29,262
· 인건비(110)	7,949	7,749	7,749	-	-	9,000	9,000	5,382	9,000	5,382	-	-	9,672
· 운영비(210)	6,661	6,818	6,794	-	24	4,696	4,696	2,569	4,696	2,569	-	-	6,045
· 여비(220)	958	1,083	1,081	-	2	961	961	593	961	593	-	-	777
· 특수활동비(230)	241	241	-	-	241	338	338	179	338	179	-	-	-
· 업무추진비(240)	949	949	949	-	-	3,320	3,320	1,626	3,320	1,626	-	-	2,686
· 직무수행경비(250)	4,539	4,539	4,183	-	357	3,989	3,989	1,925	3,989	1,925	-	-	2,876
· 연구용역비(260)	665	714	687	-	27	5,504	5,424	923	5,424	923	-	-	2,812
· 민간이전(320)	1,554	1,554	1,553	-	1	1,782	1,782	1,284	1,782	1,284	-	-	1,945
· 건설비(420)	77	77	77	-	-	20	20	1	20	1	-	-	280
· 유형자산(430)	375	375	373	-	2	1,774	1,774	1,235	1,774	1,235	-	-	2,169
○ 비목별 분류(합계)	23,967	24,096	23,445	-	651	31,381	31,301	15,718	31,301	15,718	-	-	29,262
· 상용임금(110-03)	7,949	7,749	7,749	-	-	9,000	9,000	5,382	9,000	5,382	-	-	9,672
· 일반수용비(210-01)	3,349	2,983	2,970	-	13	2,859	2,859	1,531	2,859	1,531	-	-	4,128
· 공공요금및제세(210-02)	1,117	1,384	1,383	-	1	121	121	116	121	116	-	-	121
· 특근매식비(210-05)	61	406	400	-	6	70	70	14	70	14	-	-	70
· 임차료(210-07)	238	199	199	-	-	238	238	150	238	150	-	-	259
· 유류비(210-08)	101	71	70	-	1	101	101	33	101	33	-	-	101
· 시설장비유지비(210-09)	185	179	179	-	-	185	185	91	185	91	-	-	185
· 복리후생비(210-12)	528	528	526	-	2	528	528	291	528	291	-	-	553
· 일반용역비(210-14)	457	453	453	-	-	457	457	245	457	245	-	-	479
· 기타운영비(210-16)	137	127	126	-	1	137	137	99	137	99	-	-	149
· 국내여비(220-01)	925	1,050	1,050	-	-	928	928	560	928	560	-	-	750
· 국외업무여비(220-02)	33	33	31	-	2	33	33	33	33	33	-	-	27
· 특수활동비(230-00)	241	241	-	-	241	338	338	179	338	179	-	-	-
· 사업추진비(240-01)	949	949	949	-	-	3,320	3,320	1,626	3,320	1,626	-	-	2,686
· 특정업무경비(250-03)	4,539	4,539	4,183	-	357	3,989	3,989	1,925	3,989	1,925	-	-	2,876
· 일반연구비(260-01)	575	624	597	-	27	5,414	5,334	909	5,334	909	-	-	2,722
· 정책연구비(260-02)	90	90	90	-	-	90	90	14	90	14	-	-	90

	2025					2026(2026.7월말)							2027 예산안
	예산액(추경)	예산현액	집행액[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현액	집행액[실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예상액	불용예상액	
									예산현액	집행액[실집행액]			
· 고용부담금(320-09)	1,554	1,554	1,553	-	1	1,782	1,782	1,284	1,782	1,284	-	-	1,945
· 공사비(420-03)	77	77	77	-	-	20	20	1	20	1	-	-	280
· 자산취득비(430-01)	375	375	373	-	2	1,774	1,774	1,235	1,774	1,235	-	-	2,169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23,967	24,096	23,445	-	651	31,381	31,301	15,718	31,301	15,718	-	-	29,262
· 인건비(110)	7,949	7,749	7,749	-	-	9,000	9,000	5,382	9,000	5,382	-	-	9,672
-상용임금(110-03)	7,949	7,749	7,749	-	-	9,000	9,000	5,382	9,000	5,382	-	-	9,672
· 운영비(210)	6,661	6,818	6,794	-	24	4,696	4,696	2,569	4,696	2,569	-	-	6,045
-일반수용비(210-01)	3,349	2,983	2,970	-	13	2,859	2,859	1,531	2,859	1,531	-	-	4,128
-공공요금및제세(210-02)	1,117	1,384	1,383	-	1	121	121	116	121	116	-	-	121
-특근매식비(210-05)	61	406	400	-	6	70	70	14	70	14	-	-	70
-임차료(210-07)	238	199	199	-	-	238	238	150	238	150	-	-	259
-유류비(210-08)	101	71	70	-	1	101	101	33	101	33	-	-	101
-시설장비유지비(210-09)	185	179	179	-	-	185	185	91	185	91	-	-	185
-복리후생비(210-12)	528	528	526	-	2	528	528	291	528	291	-	-	553
-일반용역비(210-14)	945	941	941	-	-	457	457	245	457	245	-	-	479
-기타운영비(210-16)	137	127	126	-	1	137	137	99	137	99	-	-	149
· 여비(220)	958	1,083	1,081	-	2	961	961	593	961	593	-	-	777
-국내여비(220-01)	925	1,050	1,050	-	-	928	928	560	928	560	-	-	750
-국외업무여비(220-02)	33	33	31	-	2	33	33	33	33	33	-	-	27
· 특수활동비(230)	241	241	-	-	241	338	338	179	338	179	-	-	-
-특수활동비(230-00)	241	241	-	-	241	338	338	179	338	179	-	-	-
· 업무추진비(240)	949	949	949	-	-	3,320	3,320	1,626	3,320	1,626	-	-	2,686
-사업추진비(240-01)	949	949	949	-	-	3,320	3,320	1,626	3,320	1,626	-	-	2,686
· 직무수행경비(250)	4,539	4,539	4,183	-	357	3,989	3,989	1,925	3,989	1,925	-	-	2,876
-특정업무경비(250-03)	4,539	4,539	4,183	-	357	3,989	3,989	1,925	3,989	1,925	-	-	2,876
· 연구용역비(260)	665	714	687	-	27	5,504	5,424	923	5,424	923	-	-	2,812
-일반연구비(260-01)	575	624	597	-	27	5,414	5,334	909	5,334	909	-	-	2,722
-정책연구비(260-02)	90	90	90	-	-	90	90	14	90	14	-	-	90
· 민간이전(320)	1,554	1,554	1,553	-	1	1,782	1,782	1,284	1,782	1,284	-	-	1,945
-고용부담금(320-09)	1,554	1,554	1,553	-	1	1,782	1,782	1,284	1,782	1,284	-	-	1,945
· 건설비(420)	77	77	77	-	-	20	20	1	20	1	-	-	280

	2025					2026(2026.7월말)							2027 예산안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공사비(420-03)	77	77	77	-	-	20	20	1	20	1	-	-	280
· 유형자산(430)	375	375	373	-	2	1,774	1,774	1,235	1,774	1,235	-	-	2,169
-자산취득비(430-01)	375	375	373	-	2	1,774	1,774	1,235	1,774	1,235	-	-	2,169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업무지원 인력 운영)** 전국 67개 공소청 사무국 등 수사지원 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사무원, 전화상담원)의 채용 및 운영 지원
- **(공소청업무지원)** 수사 협력,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 등 형사사법업무의 행정업무 지원을 위한 소모품 구입, 공공요금 등 경비 지원
- **(인력 선발 관리 및 전문역량 강화)** 우수인력 선발을 위한 채용 지원 등 인력선발 관련 경비, 범죄 분야별 연구활동, 형사사법활동 관련 역량 강화 경비 지원
- **(감찰활동 강화)** 공소청 감찰본부, 서울광역공소청의 감찰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 지원
- **(인권감독 강화)** 공소청 내 인권업무 지휘체계 일원화하고, 인권보호 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 인권업무 관련 종합계획 수립, 정책·제도 발굴을 위한 연구 활동 등에 소요되는 경비 지원
- **(양성평등 강화)** 성희롱·성폭력 등 고충 사건의 상담·조사, 처리 절차 등 양성평등센터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형법,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 법원조직법, 동법 시행규칙

② 추진경위

- 2012. 2.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검사 선발
- 2013. 11. 공인전문검사 인증을 통한 검사 전문화 추진
- 2018. 3. 전문분야별 중점검찰청 설치 및 운영을 통해 전문검사에 의한 사건처리 시스템 마련 및 검사 전문화 인프라 구축 사업 추진
- 2022. 1. 공인전문수사관 인증을 통한 수사관 전문화 추진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3	2024	2025	2026	2027(안)
사업비	25,743	25,457	23,967	31,381	29,262

- 기타: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법무부
- 사업 수혜자 :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7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

① 업무지원 인력 운영 : (2026 본예산) 10,909 → (2027 예산안) 11,770백만원, 861백만원 증액

- 사무원 및 콜센터 전화상담원 등 공무직 근로자 처우개선분 861백만원 증액

2026년 본예산		2027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0,909	○ **상용임금(110-03) : 8,999,756천원** ・255명×2,941천원×12월=8,999,756천원 ○ **복리후생비(210-12) : 127,500천원** ○ **고용부담금(320-09) : 1,781,951천원** ・255명×582천원×12월=1,781,951천원	11,770	○ **상용임금(110-03) : 9,672,357천원** ・255명×3,161천원×12월=9,672,357천원 ○ **복리후생비(210-12) : 153,000천원** ○ **고용부담금(320-09) : 1,945,111천원** ・255명×363천원×12월=1,945,111천원

② 검찰업무지원 : (2026 본예산) 14,220 → (2027 예산안) 10,474백만원, 3,747백만원 감액

- 중대범죄수사청 예산 이관 4,192백만원(특수활동비 △325백만원, 특정업무경비 △1,113백만원 포함) 감액
- 검사 인사자료 관리체계 개선 104백만원 증액
- 중대범죄수사청 예산 이관에 따른 일반수용비 비목조정 976백만원 증액

2026년 본예산		2027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4,220	○ **일반수용비(210-01) : 475,395천원** ・67개청×7,095천원=475,395천원 ○ **공공요금 및 제세(210-03) : 116,995천원** ○ **시설장비유지비(210-09) : 185,000천원** ○ **일반용역비(210-14) : 345,000천원** ○ **특수활동비(230-00) : 324,789천원** ・67개청×3,493천원=324,789천원 ○ **사업추진비(240-01) : 3,041,921천원** ・67개청×10,010천원=3,041,921천원 ○ **특정업무경비(250-03) : 3,653,762천원** ・67개청×62,194천원=3,653,762천원 ○ **일반연구비(260-01) : 4,559,000천원** ・67개청×68,045천원=4,559,000천원 ○ **정책연구비(260-02) : 50,000천원** ○ **공사비(420-03) : 10,000천원** ○ **자산취득비(430-01) : 1,458,550천원** ・67개청×21,769천원=1,458,550천원	10,474	○ **일반수용비(210-01) : 1,451,717천원** ・67개청×21,667천원=1,451,717천원 ○ **공공요금 및 제세(210-03) : 116,995천원** ○ **시설장비유지비(210-09) : 185,000천원** ○ **일반용역비(210-14) : 345,000천원** ○ **사업추진비(240-01) : 2,407,845천원** ・67개청×35,938천원=2,407,845천원 ○ **특정업무경비(250-03) : 2,541,249천원** ・67개청×37,929천원=2,541,249천원 ○ **일반연구비(260-01) : 1,867,503천원** ・67개청×27,873천원=1,867,503천원 ○ **정책연구비(260-02) : 50,000천원** ○ **자산취득비(430-01) : 1,508,569천원** ・67개청×22,516천원=1,508,569천원

③ 인력 선발 관리 및 전문역량 강화 : (2026 본예산) 4,209 → (2027 예산안) 4,723백만원, 514백만원 증액

- 중대범죄수사청 예산 이관 151백만원 감액
- AI 법률정보 등 WEB DB 서비스 강화 380백만원 증액
- AI 사법지원시스템 구축 310백만원 증액
- 검찰실무 기록평가 CBT 도입 119백만원 증액

2026년 본예산		2027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4,209	○ **일반수용비(210-01) : 1,701,746천원** ・67개청×25,399천원=1,701,746천원 ○ **특근매식비(210-05) : 7,000천원** ○ **임차료(210-07) : 77,300천원** ・67개청×1,154천원=77,300천원 ○ **복리후생비(210-12) : 400,000천원** ○ **일반용역비(210-14) : 111,800천원** ・67개청×1,669천원=111,800천원 ○ **기타운영비(210-16) : 137,260천원** ・67개청×2,049천원=137,260천원	4,723	○ **일반수용비(210-01) : 2,075,557천원** ・67개청×30,978천원=2,075,557천원 ○ **특근매식비(210-05) : 7,000천원** ○ **임차료(210-07) : 118,781천원** ・67개청×1,773천원=118,781천원 ○ **복리후생비(210-12) : 400,000천원** ○ **일반용역비(210-14) : 133,800천원** ・67개청×1,997천원=133,800천원 ○ **기타운영비(210-16) : 149,140천원** ・67개청×2,226천원=149,140천원

2026년 본예산		2027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 **국내여비(220-01) : 549,014천원** ・67개청×8,194천원=549,014천원 ○ **사업추진비(240-01) : 92,550천원** ○ **일반연구비(260-01) : 824,500천원** ○ **자산취득비(430-01) : 308,000천원** ・67개청×4,597천원=308,000천원		○ **국내여비(220-01) : 404,500천원** ・67개청×6,037천원=404,500천원 ○ **사업추진비(240-01) : 92,550천원** ○ **일반연구비(260-01) : 824,500천원** ○ **자산취득비(430-01) : 517,000천원** ・67개청×7,716천원=517,000천원

④ 감찰활동 강화 : (2026 본예산) 882 → (2027 예산안) 869백만원, 13백만원 감액

- 중대범죄수사청 예산 이관(특수활동비) 13백만원 감액

2026년 본예산		2027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882	○ **일반수용비(210-01) : 98,104천원** ○ **공공요금 및 제세(210-03) : 4,310천원** ○ **특근매식비(210-05) : 62,955천원** ○ **임차료(210-07) : 110,000천원** ○ **유류비(210-08) : 101,000천원** ○ **국내여비(220-01) : 70,000천원** ○ **특수활동비(230-00) : 12,808천원** ・67개청×191천원=12,808천원 ○ **특정업무경비(250-03) : 334,751천원** ・67개청×4,996천원=334,751천원 ○ **사업추진비(240-01) : 81,300천원** ○ **자산취득비(430-01) : 7,000천원**	869	○ **일반수용비(210-01) : 98,104천원** ○ **공공요금 및 제세(210-03) : 4,310천원** ○ **특근매식비(210-05) : 62,955천원** ○ **임차료(210-07) : 110,000천원** ○ **유류비(210-08) : 101,000천원** ○ **국내여비(220-01) : 70,000천원** ○ **특정업무경비(250-03) : 334,751천원** ・67개청×4,996천원=334,751천원 ○ **사업추진비(240-01) : 81,300천원** ○ **자산취득비(430-01) : 7,000천원**

⑤ 인권감독 강화 : (2026 본예산) 1,010 → (2027 예산안) 1,275백만원, 265백만원 증액

- 중대범죄수사청 예산 이관 102백만원 감액
- 구속영장 면담 조사실 조성 406백만원 증액

2026년 본예산		2027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010	○ **일반수용비(210-01) : 487,974천원** ・67개청×7,283천원=487,974천원 ○ **임차료(210-07) : 51,000천원** ・67개청×761천원=51,000천원 ○ **국내여비(220-01) : 303,500천원** ・67개청×4,530천원=303,500천원 ○ **국외업무여비(220-02) : 32,998천원** ・67개청×493천원=32,998천원 ○ **사업추진비(240-01) : 85,000천원** ○ **일반연구비(260-01) : 40,000천원** ○ **공사비(420-03) : 10,000천원** ・67개청×149천원=10,000천원	1,275	○ **일반수용비(210-01) : 407,000천원** ・67개청×6,075천원=487,974천원 ○ **임차료(210-07) : 30,000천원** ・67개청×448천원=30,000천원 ○ **국내여비(220-01) : 270,859천원** ・67개청×4,043천원=270,859천원 ○ **국외업무여비(220-02) : 26,695천원** ・67개청×398천원=26,695천원 ○ **사업추진비(240-01) : 85,000천원** ○ **일반연구비(260-01) : 40,000천원** ○ **공사비(420-03) : 279,697천원** ・67개청×4,175천원=279,697천원 ○ **자산취득비(430-01) : 136,155천원** ・67개청×2,032천원=279,697천원

⑥ 양성평등 강화 : (2026 본예산) 150 → (2027 예산안) 150백만원, 전년동

2026년 본예산		2027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50	○ **일반수용비(210-01) : 96,000천원** ○ **국내여비(220-01) : 5,000천원** ○ **사업추진비(240-01) : 19,000천원** ○ **일반연구비(260-01) : 30,000천원**	150	○ **일반수용비(210-01) : 96,000천원** ○ **국내여비(220-01) : 5,000천원** ○ **사업추진비(240-01) : 19,000천원** ○ **일반연구비(260-01) : 30,000천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사건의 구공판 처리율 (%)	목표	10.5	12.0	13.0	삭제	삭제	해당없음		
	실적	15.0	14.7	15.0					
	달성도	142.9	122.5	115.4					
자유형 및 재산형 집행률 (%)	목표	83.65	80.07	80.12	80.7	삭제	최근 3년간 평균 자유형 및 재산형 집행률 실적치(79.65%) 보다 약 0.55% 상향	{(자유형 집행인원/자유형 접수인원 × 100) + (재산형 집행건수/재산형 처리건수 × 100)} / 2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및 검찰통계시스템
	실적	76.58	79.30	80.25	79.3	-			
	달성도	91.6	99.0	100.2	98.3	-			
범죄수익 보전 결정 건수 (건)	목표	신규	신규	신규	3,381	3,719	최근 3년간 평균 범죄수익 보전 결정 건수 실적치(3,471건) 보다 약 2.5% 하향	최초 목표치 설정 후 직전연도 목표치에서 10% 상향	형사사법 정보시스템(KICS) 중 범죄수익환수정보시스템(ISF)
	실적	신규	신규	신규	4,299	-			
	달성도	2,572	3,364	4,478	127.2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3	- 전문검사 커뮤니티(총 15회 세미나 개최) 지원 - 유관 학회·기관 등과의 공동학술대회 3회 지원 -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커뮤니티 지원 - 제10회 공인전문검사 인증심사위원회 회의 개최(12월) (※ 공인전문검사 2급 19개 분야 22명 인증) - 제8회 공인전문수사관 인증심사위원회 회의 개최(1월) (※ 공인전문수사관 1급 3개 분야 3명 인증, 2급 15개 분야 25명 인증) - 심화스터디 전문서적 구입비용 다수 지원 - 분야별 연구회 전문성 강화 위한 도서구입비 등 지원 - 전문분야 학회가입비 지원 - 전국 지검·지청 전문서적 구입 비용 지원 - 초급수사관 역량강화 교육 지원 - 수사관 연구모임 지원 - 강제집행 실무 연구회 지원 - 공인전문검사 전문성 강화 위한 도서구입비 등 지원 - 공인전문수사관 전문서적 및 전문성 관련 수강료 지원(6, 11월)
2024	- 전문검사 커뮤니티(총 17회 세미나 개최) 지원 - 유관 학회·기관 등과의 공동학술대회 6회 지원 - 제11회 공인전문검사 인증심사위원회 회의 개최(12월) (※ 공인전문검사 1급 1개 분야 1명 인증, 2급 20개 분야 23명 인증) - 제10회 공인전문수사관 인증심사위원회 회의 개최(12월) (※ 공인전문수사관 1급 2개 분야 2명 인증, 2급 14개 분야 29명 인증) - 심화스터디 전문서적 구입비용 다수 지원 - 분야별 연구회 전문성 강화 위한 도서구입비 등 지원 - 전문분야 학회가입비 지원 - 전국 지검·지청 전문서적 구입 비용 지원

	- 초급수사관 역량강화 교육 지원 - 검사·수사관 연구모임 지원 - 전문성 강화를 위한 EBS play+ 서비스 지원 - 공인전문검사 전문성 강화 위한 도서구입비 등 지원 - 공인전문수사관 전문서적 및 전문성 관련 수강료 지원(6, 11월)
2025	- 전문검사 커뮤니티(총 9회 세미나 개최) 지원 - 유관 학회·기관 등과의 공동학술대회 6회 지원 - 제12회 공인전문검사 인증심사위원회 회의 개최(12월) (※ 공인전문검사 2급 21개 분야 34명 인증) - 제10회 공인전문수사관 인증심사위원회 회의 개최(1월) (※ 공인전문수사관 1급 2개 분야 2명 인증, 2급 14개 분야 29명 인증) - 심화스터디 전문서적 구입비용 다수 지원 - 분야별 연구회 전문성 강화 위한 도서구입비, 강사료 등 지원 - 전문분야 학회가입비 지원 - 전국 지검·지청 자료집 발간 비용 지원 - 초임검사 역량강화 연구모임 지원 - 검사·수사관 연구모임 지원 - 전문성 강화를 위한 EBS play+ 서비스 지원 - 공인전문검사 전문성 강화 위한 도서구입비 등 지원 - 공인전문수사관 전문서적 및 전문성 관련 수강료 지원(6, 11월)

③ 향후(2027년도 이후) 기대효과

- 공소청 범죄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전담업무별 교육 및 연구활동 지원
- 공소청 발전을 위한 정책연구 지속 수행
- 변화하는 사법 환경에 대응하고, 공소청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공소청의 역할, 조직과 기능, 제도 개혁 등에 관한 장기발전계획의 연구 · 수립 기능 수행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특이사항 없음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25~2029	19,187	24,920	26,380	27,933	29,586	
2026~2030		31,381	33,975	33,554	34,535	35,581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① 정부 사업평가 : ('25 회계)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 결과 '사업개선'

ㅇ 인권 보호 체계 강화 등 정책적 타당성과 정량적 성과는 우수하나, 예산 구조의 투명성 제고와 반복되는 전용 문제 해결을 위한 체계적인 사업 구조 개선이 필요함.

② 국회 지적사항

ㅇ 검사 및 수사인력에 대한 인권교육을 관련 법령에 따라 내실있게 실시 필요('22회계연도 결산 국회 지적사항)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ㅇ 재정소요가 큰 외부시설 임차로 한정된 예산 내에서 교육대상자의 규모가 축소된다는 지적에 따라 재정소요가 적은 교육시설을 적극 발굴하겠음

ㅇ 교육기간을 축소(2박 3일→1박 2일)하는 대신 교육대상자의 규모를 확대(연간 6회 이상, 회당 50여 명)하는 등의 효과적이고 내실 있는 교육 방법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임

③ 감사원 지적 : 해당사항 없음

④ 기타 언론 및 민원 : 해당사항 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자질과 능력을 갖춘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 및 경력검사 검사 선발 시스템 확립
- 전문분야별 연구활동 강화
- 공소청 범죄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연구 개발사업 지속 수행
- 감찰 강화를 통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소청 구현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2) 동 사업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 : 해당없음

13) 2026년도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 결과 및 후속 조치 현황

평가결과	성과평가 주요내용	조치결과
사업개선	- 인권 보호 체계 강화 등 정책적 타당성과 정량적 성과는 우수하나, 예산 구조의 투명성 제고와 반복되는 전용 문제 해결을 위한 체계적인 사업 구조 개선이 필요함	- 성과평가 내용 참고하여 반복되는 전용 문제 해결을 위한 예산 편성 노력하겠음

14) 부처 건의사항

○ 지원 필요성

- 다양화·지능화되는 범죄에 대응 능력 배양을 위해서는 공소청 공무원에 대한 전문 교육 강화, 전담분야별 연구활동지원 필요성 증대
- 자질과 능력을 갖춘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 및 경력 검사 선발 시스템 구축 필요
- 공소청 내 전문지식 연구 활동과 더불어 실질적인 '인권보호' 정책· 제도 마련 및 인권감독 활동 강화를 위한 지원 필요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3	25,743	-	25,743	74	△116	-	25,702	25,645	99.6	99.8	-	57
2024	25,457	-	25,457	-	△183	-	25,274	25,178	98.9	99.6	49	96
2025	19,187	4,780	23,967	49	80	-	24,096	23,445	97.8	97.3	-	651
2026	31,381	-	31,381	-	△80	-	31,301	15,718	50.1	50.2	-	-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 해당없음

2) 주요 결산사항

□ 2023~2026년 결산사항

2023	- (이 · 전용 등 사유) 형사보상금 부족으로 116백만원 전용 감, 국내여비 부족으로 사업내 전용 - (이월 사유 및 불용 사유) 일반연구비 36백만원, 일반용역비 13백만원 등 집행잔액 57백만원 불용
2024	- (이 · 전용 등 사유) 형사보상금 부족으로 183백만원 전용 감, 공공요금 부족으로 사업 내 전용, 국내여비 부족으로 사업 내 전용 - (이월 사유 및 불용 사유) 연구용역 기간 미도래, 신생분야 연구과제인 까닭으로 연구 완료에 상당 시일 소요 등으로 49백만원 이월, 공사비 4백만원, 일반용역비 3백만원 등 집행잔액 47백만원 불용
2025	- (이 · 전용 등 사유) 형사보상금 부족으로 29백만원 전용 감, 국내여비 부족으로 109백만원 전용 증 - (이월 사유 및 불용 사유) 특정업무경비 12개월분 연중 추경 편성에 따른 4개월분 미집행, 특수활동비 연중 추경 편성되었으나 '법무부는 검찰청의 특수활동비를 검찰개혁 입법 완료 후 집행한다.'는 부대의견 및 입법 상황으로 인한 원천적 집행불능 등 집행잔액 651백만원 불용
2026	- (이 · 전용 등 사유) 검찰업무정보화(정보화) 사업의 비정형데이터 비식별화 솔루션 도입을 위해 80백만원 전용 감

□ 2026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자체전용 (2026.3.31.)	인권보호등 검찰업무지원	260-01	80	검찰업무정보화 (정보화)	430-01	비정형데이터 비식별화 솔루션 도입

□ 2026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 해당없음

사 업 명
첨단기술 융합형 차세대 Forensic 기술 연구 개발(R&D) (1333-307)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법무부	검찰국		020	022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법무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300	1333	307
명칭	형사사법활동	공소청운영	첨단기술 융합형 차세대 Forensic 기술 연구개발(R&D)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6예산 시 소관
	O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첨단기술 융합형 차세대 Forensic 기술 연구개발(R&D)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검찰국	나하나	검사 구자원	수사관 박성인
		검찰과	02-2110-4190	02-2110-4194	02-2110-4216
	사업시행주체	-	-	-	-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년 결산	2026년 예산		2027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요구안	조정안(B)		(B-A)/A
첨단기술 융합형 차세대 Forensic 기술 연구개발 (R&D)	2,361	2,200	2,200	2,200	1,980	△200	△10.0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25					2026(2026.7월말)							2027 예산안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2,400	2,400	2,361	-	39	2,200	2,200	1,115	2,200	1,115	-	-	1,980
· 운영비(210)	740	740	739	-	1	740	740	313	740	313	-	-	666
· 연구용역비(260)	1,660	1,660	1,622	-	38	1,460	1,460	802	1,460	802	-	-	1,314
○ 비목별 분류(합계)	2,400	2,400	2,361	-	39	2,200	2,200	1,115	2,200	1,115	-	-	1,980
· 시험연구비(210-13)	740	740	739	-	1	740	740	313	740	313	-	-	666
· 일반연구비(260-01)	1,660	1,660	1,622	-	38	1,460	1,460	802	1,460	802	-	-	1,314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2,400	2,400	2,361	-	39	2,200	2,200	1,115	2,200	1,115	-	-	1,980
· 운영비(210)	740	740	739	-	1	740	740	313	740	313	-	-	666
-시험연구비(210-13)	740	740	739	-	1	740	740	313	740	313	-	-	666
· 연구용역비(260)	1,660	1,660	1,622	-	38	1,460	1,460	802	1,460	802	-	-	1,314
-일반연구비(260-01)	1,660	1,660	1,622	-	38	1,460	1,460	802	1,460	802	-	-	1,314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첨단기술융합형차세대Forensic기술연구개발)** 급격한 경제·사회의 디지털 전환, 범죄의 지능화·대형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공소청 과학분석의 차세대 역량을 확보하여, 국민안전/인권보호 및 형사사법체계의 건전성 제고
- **(첨단분석과학기법/장비융합형포렌식기술개발)** AI 등 디지털 기술 발전 및 첨단분석과학기법/장비 기술 발전 등에 대응하여, 시대 변화에 적합한 공소청 업무 환경 확보하고, NGS, 이동형 디바이스 등 첨단 분석과학기법/장비 기술을 활용한 ①신종 합성법에 의한 필로폰 국내유입 차단을 위한 마약지문감정 고도화 연구 개발, ②정신질환 범죄 등 '묻지마 범죄' 감소를 위한 이동형 신속검사 시스템 구축 연구, ③미제 사건 해결을 위한 1ng 수준 (기존 20ng) DNA 분석 MPS system 구축기술 확보 연구 개발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과학기술기본법」제11조 및 제16조의6 '과학기술을 활용한 사회문제의 해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7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의6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과학기술의 진흥 등'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제9조의2

② 추진경위

-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법과학 분야 연구개발사업 추진 기획(2018. 9.)
- 대검찰청 연구개발사업 기획 연구용역(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9. 4. 12)을 통해 기획보고서 작성연구 수행
- 형사사법 증거 검증체계 고도화 및 프런티어기술 연구개발(R&D)사업 시작(2020. 4.)
- '과학수사 연구개발(R&D) 협의회 구성(안)' 수립 및 운영(2020. 10.)
- 법과학분야 기술수준 분석 및 중장기 기술로드맵 수립(2020. 12.)
- 법과학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성과지표 개발연구(2021. 12.)
- 검찰의 Forensic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국가연구개발사업(R&D) 기획연구(2022. 12.)
- 형사사법 증거 검증체계 고도화 및 프런티어기술 연구개발(R&D) 사업 종료(2023. 12.)
- 첨단기술 융합형 차세대 검찰 Forensic 기술 연구개발(R&D) 사업 시작(2024. 4.)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24 ~ 2027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3	2024	2025	2026	2027(안)
사업비	-	1,800	2,400	2,200	1,980

- 기타: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 사업 수혜자 :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7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

① 첨단디지털기술융합형차세대Forensic기술개발

: (2026 본예산) 880백만원 → (2027 예산안) 792백만원, 88백만원 감액

2026년 본예산		2027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880	○ **시험연구비(210-13) : 440백만원** ・2개×220백만원× 12/12개월 = 440백만원 ○ **일반연구비(260-01) : 440백만원** ・2개×220백만원× 12/12개월 = 440백만원	792	○ **시험연구비(210-13) : 396백만원** ・2개×198백만원× 12/12개월 = 396백만원 ○ **일반연구비(260-01) : 396백만원** ・2개×198백만원× 12/12개월 = 396백만원

② 첨단분석과학기법/장비융합형차세대Forensic기술개발

: 2026 본예산) 1,320백만원 → (2027 예산안) 1,188백만원, 132백만원 감액

2026년 본예산		2027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320	○ **시험연구비(210-13) : 300백만원** ・1개×300백만원× 12/12개월 = 300백만원 ○ **일반연구비(260-01) : 1,020백만원** ・2개×510백만원× 12/12개월 = 1,020백만원	1,188	○ **시험연구비(210-13) : 270백만원** ・1개×270백만원× 12/12개월 = 270백만원 ○ **일반연구비(260-01) : 918백만원** ・2개×459백만원× 12/12개월 = 918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3~2027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사건의 구공판 처리율 (%)	목표	10.5	12.0	13.0	삭제	삭제	해당없음		
	실적	15.0	14.7	15.0					
	달성도	142.9	122.5	115.4					
자유형 및 재산형 집행률 (%)	목표	83.65	80.07	80.12	80.7	삭제	최근 3년간 평균 자유형 및 재산형 집행률 실적치(79.65%) 보다 약 0.55% 상향	{(자유형 집행인원/자유형 접수인원 × 100) + (재산형 집행건수/재산형 처리건수 × 100)} / 2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및 검찰통계시스템
	실적	76.58	79.30	80.25	79.3	-			
	달성도	91.6	99.0	100.2	98.3	-			
범죄수익 보전 결정 건수 (건)	목표	신규	신규	신규	3,381	3,719	최근 3년간 평균 범죄수익 보전 결정 건수 실적치(3,471건) 보다 약 2.5% 하향	최초 목표치 설정 후 직전연도 목표치에서 10% 상향	형사사법 정보시스템(KICS) 중 범죄수익환수정보시스템(ISF)
	실적	신규	신규	신규	4,299	-			
	달성도	2,572	3,364	4,478	127.2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4

□ 첨단 디지털기술 융합형 Forensic 기술개발

○ 메타바코딩 및 AI기술 융합 기반 혼합물 원료물질 식별 및 DNA탐지기술 개발
- 식물/마약식물 혼합물에 대한 판별 및 실무적용을 위한 실험 및 분석 매뉴얼 작성

구분	실적	비고
학술발표	1. Beyond DNA Barcoding: Advancing Forensic Investigations with DNA Metabarcoding Technology, 9th International Barcode Of Life Conference (2024.9.5.)	포스터
	2. Application of DNA Metabarcoding for the Detection of Biological Ingredients in Lactobacillus Products, 2024 한국미생물학회 정기학술대회/ (2024.10.31.)	포스터

○ 클라우드 시스템포렌식을 위한 서비스/크리덴셜 탐지 및 데이터 추출/분석기법 개발
- 자동화된 서비스 식별 도구 개발 및 SaaS 6종, DaaS 1종에 대한 구체적인 서비스 및 데이터 분석, PoC 개발
- 수집, 조사, 분석, 보고의 모든 단계에서 신뢰성 있는 포렌식 절차 제공, 체계적인 수사 설계

구분	실적	비고
학술발표	1. LEX-GNN: Label-Exploring Graph Neural Network for Accurate Fraud Detection, ACM International Conference on Information and Knowledge Management (2024.10.21.)	구두

ㅇ 새로운 음성합성 기술과 화자 인식에 강인한 페이크보이스 탐지 기술 개발
- 딥보이스 50시간 수집
- 딥보이스 탐지 베이스라인 시스템 설계 (동일 오류율 2% 이하)

구분	실적	비고
학술발표	1. 음성 딥페이크 탐지 현황' 특강, 한국음성학회 ('24.10.19.)	구두
	2. M-Conformer: A Conformer-based audio deepfake detection system with hierarchical pooling and multi-level classification token aggregation methods", 한국음향학회 (2024.10.30.~11.1.)	구두

ㅇ IT 서비스 기반 기술유출범죄 조기감지 및 대응기술 연구
- 메신저, 이메일 등 클라우드·웹 기반 기술유출 아티팩트 및 유출패턴 정규화
- 기술유출 사건의 유출 기법 및 파일 유출 경로를 판별할 수 있는 정규화된 패턴 도출

구분	실적	비고
학술발표	1. 디지털포렌식 관점의 기술유출 동향 분석 및 향후 연구 제안, 한국정보보호학회/(2024.11.26.)	구두
	2. 코드 공유 서비스를 활용한 기술 유출 행위 추적 기법 연구, 한국디지털포렌식학회 (2024.12.16.)	구두
	3. 슬랙 협업 서비스를 활용한 기술유출 행위 추적 기법 연구, 한국디지털포렌식학회 (2024.12.16.)	구두

□ 첨단분석과학기법/장비 융합형 차세대 포렌식 기술개발

ㅇ 첨단기술의 활용성 및 현장 적용성 확대를 위한 고도화 연구
- 기존 PCR 시스템 성능비교를 통한 1 ng 미만 DNA 분석용 MPS 시험법 설계

ㅇ GC/LC-MS/MS, 계량분석 연계 기반 마약지문 감정기법 고도화 및 글로벌 프로파일링 기술 개발
- 대기압 GC-HRMS 및 LC-MS/MS 메트암페타민 프로파일링 조건 확보

구분	실적	비고
학술발표	1. 동남아시아 메트암페타민(필로폰) 합성동향 및 메트암페타민 불순물 지문분석 현황, 제16회 아시아 포렌식네트워크, (2024. 8. 26)	구두
	2. 2024년 메트암페타민 합성 및 마약지문 동향, 2024 UNODC 마약포렌식 법과학회의 (2024. 9. 10)	구두

ㅇ 이동형 분석 디바이스 기반 약물치료 명령 준수여부 판별기법 개발
- 약물치료 대상 보호관찰자 관리에 적합한 이동형 분석 디바이스 설계

2025

□ 첨단 디지털기술 융합형 Forensic 기술개발

○ 메타바코딩 및 AI기술 융합 기반 혼합물 원료물질 식별 및 DNA탐지기술 개발
- UMI(고유분자식별자) 활용 정성 및 정량적 DNA 탐지 기술개발

구분	실적	비고
학술발표	1. Beyond DNA Barcoding: Advancing Forensic Investigations with DNA Metabarcoding Technology, 9th International Barcode Of Life Conference (2024.9.5.)	포스터
	2. Application of DNA Metabarcoding for the Detection of Biological Ingredients in Lactobacillus Products, 2024 한국미생물학회 정기학술대회/ (2024.10.31.)	포스터

○ 클라우드 시스템포렌식을 위한 서비스/크리덴셜 탐지 및 데이터 추출/분석기법 개발
- 클라우드 컴퓨팅/서비스 관련 포렌식 식별·획득·분석 기법 적용 절차 검토 및 대응 방안 제시

구분	실적	비고
논문	1. Notion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안티포렌식 실시간 탐지, 디지털포렌식 연구 제19권 제2호, 55-69	KCI

○ 새로운 음성합성 기술과 화자 인식에 강인한 페이크보이스 탐지 기술 개발
- 음성합성 기술 특화 페이크 보이스 탐지 알고리즘 개발

구분	실적	비고
논문	1. 잡음 환경에 강인한 다중 특징 교사 학생 학습 기반 화자인증 시스템, 한국음향학회지 제44권 제5호, 548-555.	KCI

○ IT 서비스 기반 기술유출범죄 조기감지 및 대응기술 연구
- 기술유출 자료 활용 여부 확인용 도면 및 소스 코드 자동 비교 기술개발

구분	실적	비고
학술발표	1. 디지털포렌식 관점의 기술유출 동향 분석 및 향후 연구 제안, 한국정보보호학회/(2024.11.26.)	구두
	2. 코드 공유 서비스를 활용한 기술 유출 행위 추적 기법 연구, 한국디지털포렌식학회 (2024.12.16.)	구두
	3. 슬랙 협업 서비스를 활용한 기술유출 행위 추적 기법 연구, 한국디지털포렌식학회 (2024.12.16.)	구두

□ 첨단분석과학기법/장비 융합형 차세대 포렌식 기술개발

○ 첨단기술의 활용성 및 현장 적용성 확대를 위한 고도화 연구
- MPS 분석 프로토콜 및 DNA 메틸화 방법 최적화 파이프라인 구축

구분	실적	비고
논문	1. Strategic Foundation Setup for Enhancing the Legal Applicability of Forensic Laboratory Results, Korean Journal of Forensic Sciences, Vol. 26, No. 2, 52~60.	KCI

	○ GC/LC-MS/MS, 계량분석 연계 기반 마약지문 감정기법 고도화 및 글로벌 프로파일링 기술 개발 - 고감도 합성마약 불순물 검출시스템 개발 및 메트암페타민 마약지문감정 실무 적용 ○ 이동형 분석 디바이스 기반 약물치료 명령 준수여부 판별기법 개발 - 약물치료 대상 보호관찰자 관리를 위한 이동 가능한 약물 분석시스템 개발 및 공간적 제약 없이 약물 감정을 효과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체계 구축

구분	실적	비고
국제회의 발표	1. 「Atmospheric pressure chemical ionization-high resolution mass spectrometer coupled with gas chromatography in drug profiling」, Asia Forensic Science Network AFSN) annual meeting, 2025.9.11., 2025년 UNODC 글로벌 스마트 프로그램 워크숍 2025.10..29. ~ 10.31.	구두

③ 향후(2027년도 이후) 기대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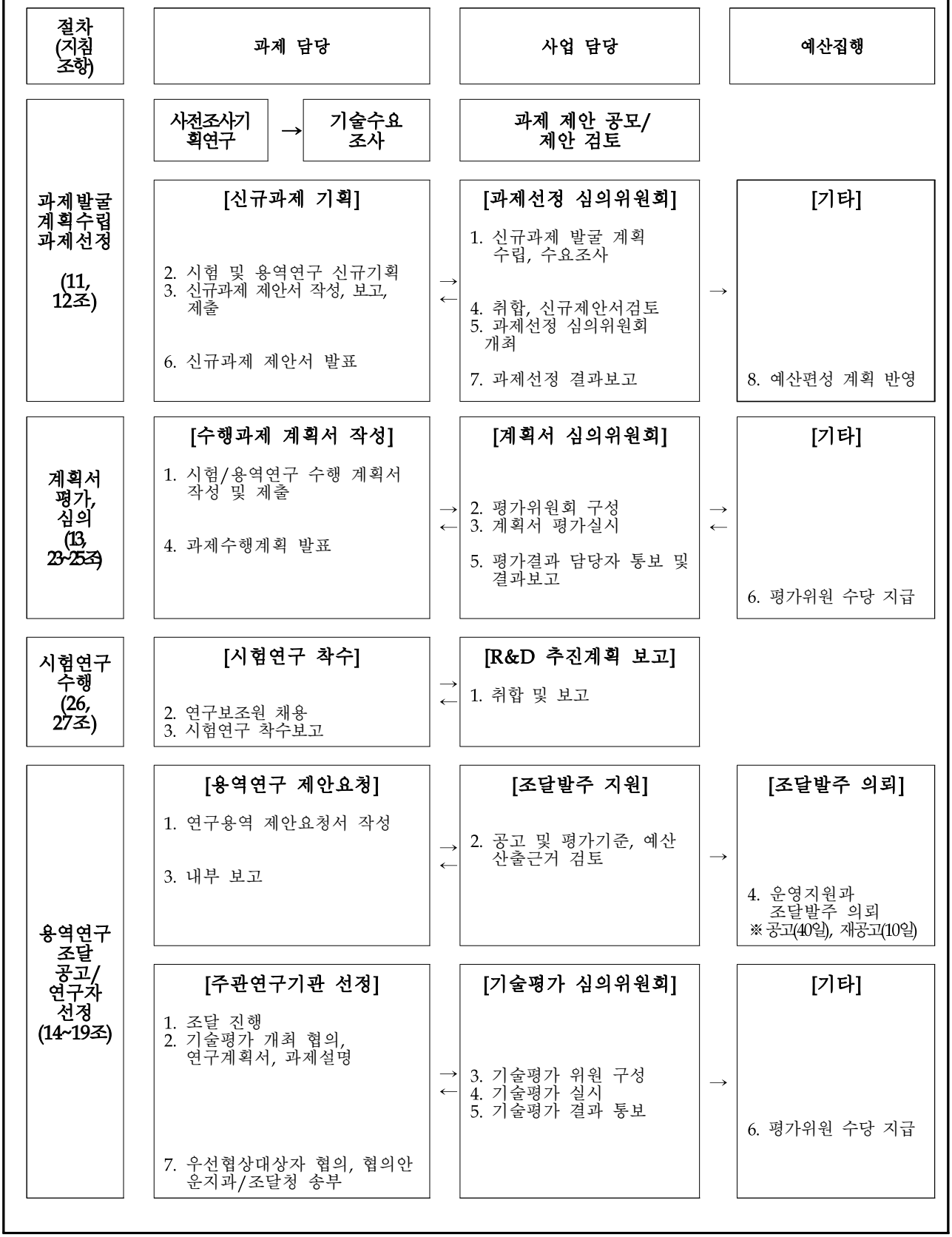
세사업 명	기대 효과
첨단 디지털기술 융합형 Forensic 기술개발	- 클라우드 서비스 데이터 및 크리덴셜 식별·추출·정제 관련 기술 획득 및 모듈 개발 - 메타바코딩, AI를 이용한 혼합물 분석법 개발에 따른 천연물 유래 마약류 혼합 불법식품 차단 - 페이크 보이스 탐지 기술 획득 및 딥러닝 기반 페이크보이스 탐지 시스템 개발에 따른 음성 합성·변조 기술 기반 피싱범죄 차단 - 아티펙트 자동추출 기술 획득 및 개발을 통한 국가핵심기술 등 산업기술 유출 방지에 따른 국가 경제 영속적 성장
첨단 분석과학기법/장비 융합형 포렌식 기술개발	- 1 ng 미만 DNA 분석 가능 MPS system 구축 및 DNA 메틸화와 SNP 분석의 동시분석법 개발을 따른 사건현장 신원 불특정 장기 미제 사건 해결 - P2NP, MAPA, nitrostyrene 유래 필로폰 불순물 정보 획득을 통한 신종 합성법에 의한 필로폰 유입 차단 - 이동형 신속 검사시스템 구축을 통한 정신질환 범죄 등 '묻지마 범죄' 효율적 대처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과학수사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20. 10. 6., 대검찰청)에 따른 대검찰청 국가연구개발사업 절차도



<table>
<tr><td>계약</td><td colspan="3"></td><td>[용역연구 계약의뢰]</td></tr>
<tr><td rowspan="2">과제진행 및 진도관리 (20~22조, 29조)</td><td>[용역연구 착수]
1. 보완된 계획서 및 착수계 수령 (계약 후 10일 이내)
2. 착수보고회의 개최
4. 선금지급 접수, 의뢰
6. 중간보고 등 과제관리
※ 연구비 변경 신청</td><td>→
←</td><td>[진도관리]
3. IRIS SIMS 과제 입력
※ 연구비 변경 검토</td><td>→
←</td><td>[기타]
5. 선급금 지급</td></tr>
<tr><td>[시험연구 수행]
3. 시험연구 중간 보고
※ 과제 내용 변경 신청</td><td></td><td>[진도관리]
1. IRIS SIMS 과제 입력
※ 과제 내용 변경 검토</td><td></td><td>[기타]
2. 재료비 등 지출</td></tr>
<tr><td>결과평가 (23~28조)</td><td>[과제 종료, 결과평가]
1. 결과평가회 개최 협의
3. 연구보고서 초안 수령
6. 평가결과에 따른 보완 요청</td><td>→
←</td><td>[용역연구 및 시험연구 결과평가 심의위원회]
2. 과제평가단 구성
4. 최종평가 실시</td><td></td><td>[기타]
5. 평가위원 수당 지출
7. 정산
- 용역연구:
① 완료계, 최종 결과보고서 등 성과품 및 증빙서류 수령
② 연구비 정산 및 지출 내역 검토
③ 검사조서 작성 및 잔금 지급
- 시험연구:
① 연구결과보고서 및 시험여구 사용실적보고서 제출</td></tr>
<tr><td>성과관리 (40조)</td><td>○ 성과활용계획서 작성
○ 성과 입력</td><td>→</td><td>○ 예산/결산/자료 관리
○ 성과관리 및 성과활용보고서 제출</td><td></td><td>○ 연구과제 예산/결산자료 제공</td></tr>
</table>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25~2029	2,400	2,200	2,200	-	-	
2026~2030		2,200	2,200	-	-	-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해당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해당없음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2) 동 사업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 : 해당없음

13) 2026년도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 결과 및 후속 조치 현황 : 해당없음

14) 부처 건의사항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3	-	-	-	-	-	-	-	-	-	-	-	-
2024	1,800	-	1,800	-	-	-	1,800	1,756	97.5	97.5	-	44
2025	2,400	-	2,400	-	-	-	2,400	2,361	98.4	98.4	-	39
2026	2,200	-	2,200	-	-	-	2,200	1,115	50.7	50.7	-	-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 해당없음

2) 주요 결산사항

□ 2023~2026년 결산사항

2023	- 해당없음
2024	- 외부 전문 연구기관이 보유한 개발자 및 장비 활용을 통한 저비용 고효율의 과제 추진을 위해, 'IT서비스 기반 기술유출범죄 조기감지 및 대응기술 연구' 과제를 시험연구비(210-13)에서 일반연구비(260-01)로 150백만원 전용 - 시험연구원의 초과근무 및 연가보상비 관련 인건비,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44백만원 불용
2025	- 집행잔액 39백만원 불용
2026	- 해당없음

□ 2026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

□ 2026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 해당없음

사 업 명
공소청업무정보화(정보화) (1334-5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법무부	검찰국		020	022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법무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300	1334	500
명칭	형사사법활동	공소청업무정보화	공소청업무정보화(정보화)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6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공소청업무 정보화(정보화)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검찰국	나하나	검사 구자원	수사관 나민수
		검찰과	02-2110-4190	02-2110-4194	02-2110-4209
	사업시행주체	-	-	-	-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년 결산	2026년 예산		2027년		증감 (B-A)	(B-A)/A
		본예산(A)	추경	요구안	조정안(B)		
공소청업무정보화 (정보화)	32,786	29,633	29,633	28,673	27,613	△2,020	△6.8%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25					2026(2026.7월말)							2027 예산안
	예산액(추경)	예산현액	집행액[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현액	집행액[실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예상액	불용예상액	
									예산현액	집행액[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33,339	33,339	32,786	-	553	29,633	30,050	12,294	30,050	12,294	-	-	27,613
· 정보시스템 운영체계 유지	1,158	1,158	1,147	-	11	1,805	1,805	1,008	1,805	1,008	-	-	1,183
· 정보시스템 관리체계 강화	8,180	8,180	8,003	-	177	8,712	8,712	3,416	8,712	3,416	-	-	8,344
· 정보시스템 운영경상경비	15,874	15,874	15,745	-	129	16,417	16,417	7,312	16,417	7,312	-	-	18,038
· 형사사법절차 정보공유체계 강화	-	-	-	-	-	-	-	-	-	-	-	-	48
·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1,564	1,564	1561	-	3	142	559	337	559	337	-	-	-
· 정보시스템 구축 및 개선	6,563	6,563	6330	-	233	2,557	2,557	221	2,557	221	-	-	-
○ 비목별 분류(합계)	33,339	33,339	32,786	-	553	29,633	30,050	12,294	30,050	12,294	-	-	27,613
· 상용임금(110-03)	3,518	3,518	3,518	-	-	4,405	4,405	2,140	4,405	2,140	-	-	4,626
· 일반수용비(210-01)	246	246	243	-	3	225	225	40	225	40	-	-	56
· 공공요금 및 제세(210-02)	5,842	5,842	5,831	-	11	5,442	5,442	2,678	5,442	2,678	-	-	5,191
· 특근매식비(210-05)	12	12	12	-	-	12	12	12	12	12	-	-	10
· 임차료(210-07)	6,078	6,078	5,969	-	109	6,815	6,815	3,002	6,815	3,002	-	-	7,854
· 시설장비유지비(210-09)	6,323	6,323	6,293	-	30	5,127	5,127	2,041	5,127	2,041	-	-	4,981
· 복리후생비(210-12)	65	65	65	-	-	65	65	65	65	65	-	-	78
· 관리용역비(210-15)	1,337	1,337	1,190	-	147	3,585	3,585	1,375	3,585	1,375	-	-	3,363
· 국내여비(220-01)	12	12	12	-	-	9	9	7	9	7	-	-	7
· 일반연구비(260-01)	2,482	2,482	2,426	-	56	1,429	1,509	221	1,509	221	-	-	-
· 고용부담금(320-09)	766	766	765	-	1	872	872	72	872	72	-	-	930
· 공사비(420-03)	890	890	838	-	52	-	-	-	-	-	-	-	-
· 자산취득비(430-01)	5,768	5,768	5,624	-	144	1,647	1,984	641	1,984	641	-	-	517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33,339	33,339	32,786	-	553	29,633	30,050	12,294	30,050	12,294	-	-	27,613
· 정보시스템 운영체계 유지	1,158	1,158	1147	-	11	1,805	1,805	1,008	1,805	1,008	-	-	1,183
-임차료(210-07)	514	514	518	-	-4	1,428	1,428	704	1,428	704	-	-	666
-자산취득비(430-01)	644	644	629	-	15	377	377	304	377	304	-	-	517

	2025					2026(2026.7월말)							2027 예산안
	예산액(추경)	예산현액	집행액[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현액	집행액[실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예상액	불용예상액	
									예산현액	집행액[실집행액]			
·정보시스템 관리체계 강화	8,180	8,180	8,003	-	177	8,712	8,712	3,416	8,712	3,416	-	-	8,344
-시설장비유지비(210-09)	6,323	6,323	6,293	-	30	5,127	5,127	2,041	5,127	2,041	-	-	4,981
-관리용역비(210-15)	1,337	1,337	1190	-	147	3,585	3,585	1,375	3,585	1,375	-	-	3,363
-일반연구비(260-01)	520	520	520	-	-	-	-	-	-	-	-	-	-
·정보시스템 운영경상경비	15,874	15,874	15,745	-	129	16,417	16,417	7,312	16,417	7,312	-	-	18,038
-상용임금(110-03)	3,518	3,518	3,518	-	-	4,405	4,405	2,140	4,405	2,140	-	-	4,626
-일반수용비(210-01)	246	246	243	-	3	225	225	40	225	40	-	-	56
-공공요금 및 제세(210-02)	5,842	5,842	5,831	-	11	5,442	5,442	2,678	5,442	2,678	-	-	5,143
-특근매식비(210-05)	12	12	12	-	-	12	12	12	12	12	-	-	10
-임차료(210-07)	5,413	5,413	5,299	-	114	5,387	5,387	2,298	5,387	2,298	-	-	7,188
-복리후생비(210-12)	65	65	65	-	-	65	65	65	65	65	-	-	930
-국내여비(220-01)	12	12	12	-	-	9	9	7	9	7	-	-	7
-고용부담금(320-09)	766	766	765	-	1	872	872	72	872	72	-	-	78
·형사사법 정보공유체계 강화	-	-	-	-	-	-	-	-	-	-	-	-	48
-공공요금 및 제세(210-02)	-	-	-	-	-	-	-	-	-	-	-	-	48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1,564	1,564	1,561	-	3	142	559	337	559	337	-	-	-
-일반연구비(260-01)	-	-	-	-	-	-	80	-	80	-	-	-	-
-자산취득비(430-01)	1,564	1,564	1,561	-	3	142	479	337	479	337	-	-	-
·정보시스템 구축 및 개선	6,563	6,563	6,330	-	233	2,557	2,557	221	2,557	221	-	-	-
-임차료(210-07)	151	151	152	-	-1	-	-	-	-	-	-	-	-
-일반연구비(260-01)	1,962	1962	1,906	-	56	1,429	1,429	221	1,429	221	-	-	-
-자산취득비(430-01)	3,560	3560	3,434	-	126	1,128	1,128	-	1,128	-	-	-	-
-공사비(420-03)	890	890	838	-	52	-	-	-	-	-	-	-	-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공소청업무정보화(정보화)

- **(정보시스템 운영체계 유지)** 사무용 소프트웨어 연간 구매, 업무용 노후전산장비 구매, 연간 사용권(구독형) 솔루션 구매사업 수행
- **(정보시스템 관리체계 강화)** 검찰 업무 정보시스템 (형사사법기록관 시스템 포함) 유지관리, 검찰 사용자업무 및 사이버안전센터 위탁운영, 전국청 사무용 PC 등 관리 용역 수행
- **(정보시스템 운영 경상경비)** 과년도 도입 전산장비 임차료, 전국 검찰청 정보통신망 회선료 등 경상경비 지원
- **(형사사법절차 정보공유 체계 강화)** 전송형 전자영장 집행 시행('26. 9. 28.)에 따른, 피집행기관 연계회선 비용 및 집행수수료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전자정부법(법률 제21394호)

- 제1조(목적) 이 법은 행정업무의 전자적 처리를 위한 기본원칙, 절차 및 추진방법 등을 규정함으로써 전자정부를 효율적으로 구현하고, 행정의 생산성, 투명성 및 민주성을 높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정보통신기반 보호법(법률 제20068호)

- 제1조(목적) 이 법은 전자적 침해행위에 대비하여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에 관한 대책을 수립·시행함으로써 동 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용하도록 하여 국가의 안전과 국민생활의 안정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지능정보화 기본법(법률 제20672호)

- 제14조(공공지능정보화의 추진) ①국가기관 등은 공공서비스의 지능정보화를 도모하고 국민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보건, 사회복지, 교육, 문화, 환경, 교통, 물류, 과학기술, 재난안전, 치안, 국방, 에너지 등 소관 업무에 대한 지능정보화(이하 "공공지능정보화"라 한다)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국가기관 등은 공공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5조(정보격차 해소 시책의 마련)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권리를 누구나 격차없이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법률 제18653호)

- 제3조(형사사법절차의 전자화 촉진) ①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은 형사사법절차의 전자화에 필요한 제도 개선과 이를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협력 의무) ①형사사법업무처리기관은 판결문, 공소장, 영장, 조서 등 형사사법업무와 관련된 문서를 시스템을 이용하여 저장·보관하여야 한다.

○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8485호)

- 제5조(전자문서에 의한 형사사법절차의 수행)
- 제6조(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 ①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의 장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각각 설치 · 운영한다.

○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 제3214호)

- 제10조(전자문서로 제출할 의무 등)
- 제36조(영장등의 전자적 제시 또는 전송)
- [부칙] 제4조(전자문서로 발부된 영장등의 집행에 관한 특례)
- [부칙] 제6조(일부 조항의 적용 유예에 관한 특례)

○ 개인정보보호법(법률 제19234호, 제20897호)

- 제29조(안전조치의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21066호)

- 제14조(특수기록관) ①통일·외교·안보·수사·정보 분야의 기록물을 생산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소관 기록물을 장기간 관리하려는 경우에는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특수기록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1985. ~ 1999. 사건사무 등 검찰업무 전산화 사업 추진
- 2000. 수사정보, 전자결재, 통계시스템 구축
- 2001. 지식관리, 정보보호, 도서관리, 선거사범, 송무시스템 등 구축
- 2002. 주전산기 교체 및 형사사법정보망, 형 집행시스템 등 구축
- 2003. 행정전자서명 인증시스템, 전자민원시스템 등 구축
- 2004. 마약사범, 조직폭력사범, 출입국사범 등 WEB 방식 재구축
- 2005. 압수물관리, 출국금지 구축 및 지식관리, 홈페이지 재구축
- 2006. 주전산기 교체, 통합사건 웹기반 조회·검색시스템 구축
- 2007. 정부업무관리, 국가기록관리 및 정보시스템 보안 강화
- 2008. 영상물관리시스템, RFID기반 형사사건기록관리시스템 등 구축
- 2009. 사건처리정보시스템, RFID기반 형사사건기록관리시스템 등 구축

- 2010. 지식관리시스템, 전자문서관리 및 전자결재시스템 구축
- 2011.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고도화, 정보시스템 보안 강화
- 2012. 검찰 사이버안전센터 구축,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고도화, EA시스템 개선
- 2013.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고도화, 메신저 재구축사업, 양형시스템 개선사업, RFID 기반 형사사건기록관리시스템 확산 등
- 2014.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고도화, 차세대 검찰지식포털 구축, 정보시스템 보안 강화 등
- 2015.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고도화, RFID 기반 형사사건기록관리시스템 확산, 전화녹취시스템 고도화, 정보보호 기반 강화 등
- 2016.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고도화, RFID 기반 형사사건기록관리시스템 확산, 업무·인터넷망 분리 등
- 2017.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고도화, 검찰 국가형사사법기록관 구축, 업무망·인터넷망 분리 등
- 2018.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고도화, 검찰 홈페이지 및 전자우편시스템 재개발, 검찰 국가형사사법기록관 구축, 업무망·인터넷망 분리 등
- 2019.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고도화, 검찰 업무시스템 윈도우10 호환성 확보, 업무망·인터넷망 분리 등
- 2020. 형사소송법 개정사항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개선, 일선청 정보통신 인프라 고도화 등
- 2021.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고도화, 노후 화상회의시스템 교체, 신청사 인프라 구축, 일선 검찰청 업무망·인터넷망 분리 등
- 2022.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고도화, 원격화상조사시스템 고도화, 기록물관리시스템 개선, 일선 검찰청 업무망·인터넷망 분리, 검찰 정보통신 인프라 고도화 등
- 2023. 검찰 전자결재시스템 재구축, 업무포털시스템 호환성 확보 및 이관, 일선 검찰청 업무망·인터넷망 분리, 검찰 정보통신 인프라 고도화 등
- 2024. 형사절차전자문서법 시행에 따른 종이기록 전자화 추진 및 일선 검찰청 전자화 장비 도입, 차세대 검찰통계시스템 구축, 전국 미설치 검찰청 화상회의시스템 확대, 일선 검찰청 업무망·인터넷망 분리 등
- 2025. 검찰메신저 교체, 청사출입통제시스템 고도화, 내부여론파악시스템(설문조사) 구축, 공공수사관리시스템 ISP 수립, 클린콜 및 청렴인식조사시스템 고도화 등
- 2026. 개인정보접속기록관리시스템 고도화, 검찰공무원 인재개발관리시스템 구축, 형사사법정보시스템 AI모델 개발 ISP사업 추진 등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3	2024	2025	2026	2027(안)
사업비	31,164	36,839	33,339	29,633	27,613

- 기타: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법무부
- 사업 수혜자 :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7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

□ 정보시스템 운영체계 유지 : (2026) 1,805백만원 → (2027요구) 1,183백만원, △622백만원(△34.5%)

'26년 예산		'27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805	○ **자산취득비(430-01) : 377백만원** 가. 홈페이지,전자우편 등 보안솔루션 연간 사용권 구매 · 9식 x 13백만원 =117백만원 나. 전국청 바이러스 백신사용권 구매 · 10,010식 x 2만원 =172백만원 다. 차세대KICS 백신 등 솔루션 연간 사용권 구매 · 4종 x 13백만원 =50백만원 라. 통계시스템 가상화 솔루션 연간 사용권 구매 · 144core x 263천원 = 38백만원 ○ **임차료(430-01) : 1,428백만원** 가. 사무용 소프트웨어 구매 · 1회차 x 69백만원 = 69백만원 나. 업무용 노후 전산장비 교체 2회차 x 680백만원 = 1.359백만원	1,183	○ **자산취득비(430-01) : 517백만원** 가. 홈페이지,전자우편 등 보안솔루션 연간 사용권 구매 · 7식 x 13백만원 =89백만원 나. 전국청 바이러스 백신사용권 구매 · 8,008식 x 2만원 =138백만원 다. 차세대KICS 백신 등 솔루션 연간 사용권 구매 · 7종 x 33백만원 =234백만원 라. 통계시스템 가상화 솔루션 연간 사용권 구매 · 144core x 347천원 = 50백만원 마. 검찰방송중계시스템 백신 사용권 구매 · 6식 x 60만원 = 6백만원 ○ 임차료**(430-01) : 666백만원** 가. 사무용 소프트웨어 구매 · 1회차 x 55백만원 = 55백만원 나. 업무용 노후 전산장비 교체 2회차 x 306백만원 = 611백만원

[사업 내용(요약)]

◦ 정보시스템 운영·유지에 필요한 구독형 소프트웨어 연간사용권(라이선스) 확보 구매, 사무용 소프트웨어 구매, 노후 업무용 전산장비(PC, 프린터, 모니터 등) 교체 추진

◦ 정보시스템 운영·유지에 필수적인 소프트웨어, 전산장비 구매사업으로 '27년 소요량 재산정 결과, 노후 업무용 전산장비 구매 수량 감소* 등 반영

* '26년 예산에는 '22~'25년 PC도입 부족분과 윈도우11 지원불가한 저사양PC 교체 수량이 반영되어 증액 되었으나, '27년도 교체수량 현실화(내용연수 기준) 하면서 예산 감액

① 홈페이지·전자우편 등 보안솔루션 연간사용권 구매 : ('26) 117→ ('27요구) 89백만원, **△28백만원**

- (요구) 검찰 홈페이지·전자우편 서버 및 사용자 보안 강화를 위한 보안솔루션(첨부파일 검사용 백신, 개인 PC 방화벽)의 연간(1년 단위) 사용권 재구매
- (산출) 소요예산 : [자산취득비] 89백만원

→ 검찰메신저 파일저장고(서버2대) 서비스 종료로 '27년 첨부파일검사용 백신 수량 2식 감액 요구

구분	산출근거	금액(천원)
SW	**· 첨부파일 검사용 백신 4식 × 14,300천원 = 57,200천원** **· 개인PC방화벽 3식 × 10,340천원 = 31,020천원** **· 조달수수료 477천원**	88,697
합 계	88,697천원	

② 통계시스템 가상화솔루션 연간 사용권 구매 ('26) 38 → ('27요구) 50, **+12백만원**

- (요구) 서버 가상화 솔루션을 통한 클라우드 환경으로 구성되어 있는 통계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효율적 관리 및 활용을 가상화 솔루션 사용권 구매

* 서버가상화 솔루션은 하나의 물리적 서버로 여러 개의 독립된 가상서버를 생성해 운영할 수 있는 솔루션으로 통계시스템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필수 솔루션임

* 가상화솔루션 연간사용권 구매 단가 인상으로 증액 발생

→ 다른 가상화 솔루션으로 변경 시 기존 구축된 시스템 간 호환성이 확보되지 않고, 오류발생 가능성으로 안정적인 운영이 불가능하므로 기존 도입솔루션의 연간사용권 구매가 반드시 필요하고, 구매 단가 상승으로 인해 예산 증액 불가피

- (산출) 소요예산 : [자산취득비] 50백만원

구분	산출근거	금액(천원)
SW	**· 가상화솔루션(VMware) 144식(Core) × 350천원 = 50,529천원**	50,529
합 계	**50,529천원**	

③ **검찰방송중계시스템 백신 연간사용권 구매** ('26) 0 → ('27요구) 6백만원, **+6백만원**

- (요구) 검찰방송중계시스템을 사이버 보안 위협으로부터 방송 인프라를 보호하고, 보안 사고 예방을 위한 서버용 백신 사용권 구매
- (산출) 소요예산 : [자산취득비] 6백만원

구분	산출근거	금액(천원)
SW	· 리눅스서버용 백신 10식× 592,900원 = 5,929,000원 · 조달수수료 32,010원	59,62
합 계	5,962천원	

④ **전국청 바이러스 백신, 차세대KICS 백신 솔루션 연간사용권 구매** ('26) 222→ ('27요구) 372백만원, **+150백만원**

- (요구) 사용자 PC 및 정보시스템 서버의 바이러스 감염 예방 및 치료를 위한 백신 프로그램 연간(1년 단위) 사용권 구매, 검찰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구축('24. 12. 8.)사업에서 구독형 솔루션으로 도입한 솔루션의 사용권 구매

* '26년 대비 차세대 KICS 운영·보안 강화를 위한 연간 사용권 구매 추가로 증액발생

→ '25년 구매 당시 솔루션(빅데이터시각화 솔루션, 운영체제(리눅스OS)) 별로 사용권 확보기간 상이하여 일부 솔루션에서 '26년 구매 공백기가 발생하였으나 '27년부터 연간(1년단위) 사용권 구매하여 안정적인 예산 확보 예정

- (산출) 소요예산 : [자산취득비] 372백만원

구분	산출근거	금액(천원)
전국청 바이러스 백신	· 사용자 PC 백신 8,000식 × 16,830천원 = 133,294천원 · 개인PC방화벽 10식 × 388.300천원 = 3.883천원 · 조달수수료 741천원	137,918
차세대KICS 백신 솔루션 등	· 빅데이터 시각화솔루션 1식 × 18,764천원 = 18,764천원 · 리눅스OS(데이터센터용) 24식 × 5,390천원 = 129,360천원 · 리눅스OS 28식 × 1,628천원 = 45,584천원 · SSL서버인증서 6식 × 1,232천원 = 7,392천원 · 원도우 백신 12식 × 388천원 = 4,656천원 · 모바일백신 1식 × 13,113천원 = 14,113천원 · 앱위변조탐지 1식 × 12,100천원 = 12,100천원 · 조달수수료 2,005천원	233,974
합 계	371,892천원	

⑤ **사무용 소프트웨어 구매** ('26) 69 → ('27요구) 55백만원, △14백만원

- (요구) 한컴오피스, MS 오피스 등 검찰 업무에 필수적인 소프트웨어로 매년 사용권을 구매하여, 공공기관의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을 차단하고 및 저작권 무결성 확보
- (산출) 소요예산 : [임차료]55백만

구분	산출근거	금액(천원)
사무용 소프트웨어	· 한컴오피스 4,200식 × 100,650원 = 422,730,000원	1,020,108
	· MS오피스GAS 1,800식 × 303,600원 = 546,480,000원	
	· 알툴즈 3,800식 × 10,560원 = 40,128000원	
	· EDE(300User) 3식 × 2,610,000원 = 7,830,000원	
	· EDE(200User) 2식 × 1,470,000원 = 2,940,000원	
취득원가	1,020,108천원	
임차료	1,020,108,000×1.0054×0.018×3개월 = 55,384천원	
합계	55,384천원	

⑥ **업무용 노후 전산장비 교체 구매** ('26) 1359 → ('27요구) 611백만원 **△748백만원**

- (요구) 업무에 필수적인 전산장비(PC, 모니터, 프린터) 중 내용연수가 지난 노후 전산장비를 교체하여 검찰 업무를 지원하고 업무 효율성을 향상
- (산출) 소요예산 : [임차료] 611백만원

→ '26년 예산에는 '22~'25년 PC도입 부족분과 윈도우11 지원불가한 저사양PC 교체 수량이 반영되어 증액 되었으나, '27년도 교체수량 현실화(내용연수 기준) 하면서 예산 감액

* 데스크톱PC, 모니터 : 5년, 일체형PC, 노트북, 프린터 : 6년

구분	산출근거	금액(천원)
업무용 전산장비	· 데스크톱PC 1,800식 × 1,570천원 = 2,826,000천원	5,623,854
	· 모니터(27인치) 1,000식 × 310천원 = 310,000천원 · 모니터(24인치) 1,150식 × 240천원 = 276,000천원	
	· 프린터 3,200식 × 479천원 = 1,532,800천원	
	· 일체형PC 150식 × 1,810천원 = 271,500천원	
	· 노트북 301식 × 1,354천원 = 407,554천원	
취득원가	5,623,854천원	
임차료	5,623,854,000×1.0054×0.018×6개월 = 610,657천원	
합계	610,657천원	

□ 정보시스템 관리체계 강화 : (2026) 8,712백만원 → (2027요구) 8,344백만원, △368백만원(△4.2%)

'26년 예산		'27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8,712	○ **시설장비유지비(210-09) 5,127백만원** 가. 검찰정보시스템 및 통신장비 등 통합유지관리 사업 4,581백만원 · HW : 43,666백만원 x 5% = 2,180백만원 · SW : 14,765백만원 x 10% = 1,447백만원 · 응용 : 9,735백만원 x 10% = 954백만원 나. 국가형사사법기록관 시스템 유지관리 546백만원 · HW : 2,171백만원 x 5% = 109백만원 · SW : 1,264백만원 x 10% = 124백만원 · 응용 :3,205백만원 x 10% = 313백만원 ○ **관리용역비(210-15) 3,585백만원** 가. 검찰업무 사용자지원센터 위탁운영 · 3명 x 3.5백만원 x 12개월 = 126백만원 나. 검찰 사이버안전센터 보안관제 위탁운영 · 156MM x 776만원 = 1,211백만원 다. 전국 검찰청 사무용 PC 등 유지관리 · 44명 x 51백만원 = 2,248백만원	8,344	○ **시설장비유지비(210-09) 4,981백만원** 가. 검찰정보시스템 및 통신장비 등 통합유지관리 사업 4,435백만원 · HW : 44,500백만원 x 5% = 2,225백만원 · SW : 16,606백만원 x 8% = 1,373백만원 · 응용 : 10,617백만원 x 8% = 837백만원 나. 국가형사사법기록관 시스템 유지관리 546백만원 · HW : 2,019백만원 x 6% = 115백만원 · SW : 1,264백만원 x 11% = 139백만원 · 응용 :3,208백만원 x 9% = 292백만원 ○ **관리용역비(210-15) 3,363백만원** 가. 검찰업무 사용자지원센터 위탁운영 · 3명 x 4백만원 x 12개월 = 149백만원 나. 검찰 사이버안전센터 보안관제 위탁운영 · 156MM x 776만원 = 1,211백만원 다. 전국 검찰청 사무용 PC 등 유지관리 · 42명 x 43백만원 = 1,798백만원 라. 검찰 전송형 전자영장 집행시스템 운영 · 4명x 17백만원 x 3MM= 205백만원

[사업 내용(요약)]

◦ 검찰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전국 67개 검찰청에 보급된 전산장비 유지관리, 국가형사사법기록관 유지관리, 사이버안전센터 보안관제 위탁 및 업무지원센터 위탁운영 사업 추진

◦ 검찰정보시스템 내부 사용자를 위한 사용자지원센터 위탁 운영은 2018년 이후 9년째 동결된 예산*으로 정보시스템 신규 구축(특히 차세대KICS 오픈), 업무 환경 변화에 따른 문의량 증가로 상담사 3명에 대한 위탁 운영 사업비 현실화 필요

* 현재 위탁운영 사업비는 9년째 동결된 예산으로 최저임금 및 물가인상률을 반영하지 못하여 안정적인 위탁운영에 어려움이 있음

① 검찰업무 사용자지원센터(IT지원센터) 위탁운영 ('26) 126 → ('27요구) 149백만원, **+23백만원**

- (요구) 검찰정보시스템 사용자(대국민, 대외기관, 내부직원 등)의 요청사항 및 문의에 대하여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고, 점증하고 있는 서비스 요청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전문 지원팀(IT지원센터) 운영

- (산출) 소요예산 : [관리용역비] 149백만원

구분	산출근거	금액(천원)
직접인건비	○ **검찰업무시스템 업무지원센터 위탁운영비 = 115,532천원** - 직접인건비(3명) = 186,120천원 - 제경비 = 268,013천원 - 기술료 = 90,826천원 ※ 할인적용 금액(할인율 78.8%)	135,532
직접경비 (IVR 장비임대 등)	○ **Call Box 장비임대 등 = 20,000천원** - CALL BOX 등 = 20,000천원	
부가가치세	13,553천원	
합계	**149,084천원**	

② 검찰정보시스템 및 통신장비 등 유지관리 ('26) 4,581 → ('27요구) 4,435백만원, **△146백만원**

- (요구) 2006년부터 1년단위로 검찰 정보시스템 및 통신장비 등 유지관리 사업 추진하여 정보시스템 43개, 통신장비 등 업무시스템 13개를 통합 유지관리 수행
- (산출) 소요예산 : [시설장비유지비] 4,535백만원

→ 기획예산처에서 '26년 정보시스템 활용도 조사를 실시하여 메뉴별 사용량 빈도 수에 따라 저활용 메뉴로 선정된 시스템을 선정하여 조사한 결과에 따른 10개 정보시스템의 지출구조 조정 금액을 '27년 예산 산출에 반영하여 146백만원 감액

구분	산출근거	금액(천원)
HW	44,499,761,065원 × 5.00% = 2,224,988,053원	4,435,147
상용SW	16,606,034,510원 × 8.27% = 1,372,879,654원	
응용SW	10,616,914,868원 × 8.10% = 837,279,442원	
합계	**4,435,147천원**	

③ 국가형사사법기록관 유지관리 ('26) 546 → ('27요구) 546백만원, **전년동**

- (요구) 국가 중요기록물의 집중 보존·관리를 위한 국가형사사법기록관 운영시스템(SRMS*)에 대한 유지관리 비용

* SRMS는 전국 검찰청 중요기록물에 대한 수집·보존·열람·대출 등 기록관리 업무 전반을 지원하는 시스템

- (산출) 소요예산 : [시설장비유지비] 546백만원

구분	산출근거	금액(천원)
HW	2,018,918,000원 × 5.7% =115,684,001원	546,659
상용SW	1,263,877,000원 × 11.0% =139,026,469원	
응용SW	3,208,222,000원 × 9.1% =291,948,202원	
합계	546,659천원	

④ 검찰 사이버안전센터 보안관제 위탁운영 ('26) 1,211 → ('27요구) 1,211백만원, **전년동**

- (요구) 검찰사이버안전센터(2013년부터 구축·운영 중)의 안정적인 운영과 지능화·고도화되고 있는 사이버 침해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전문자격 및 관련 경력을 보유한 전문 인력을 통한 보안관제 수행 필요
- (산출) 소요예산 : [관리용역비] 1,211백만원

구분	단계	노임단가	투입공수 (M/M)	한달 일수	금액(원)
직접인건비	IT PM(PM)	492,039	12	20.50	**121,041,648**
	정보보안대응전문가(CERT)	507,887	24	20.50	**249,880,320**
	IT컨설턴트(진단)	523,340	12	20.50	128,495,,520
	정보시스템운용자(보안관제)	519,469	96	20.50	**1,022,315,232**
	데이터분석가 (SOAR 지원)	414,600	12	20.50	**101,991,708**
	소 계				**1,623,724,428**
제경비	직접인건비의 144%				**2,338,163,176**
기술료	직접인건비+제경비의 20%				**792,377,521**
합계(부가세 포함)					**5,091,946,224**
합계(원) (할인율 78.38% 적용)					1,210,966,000

⑤ **전국 검찰청 사무용PC 유지관리 용역** ('26) 2,248 → ('27요구) 1,798백만원, △450

- (요구) 전국 67 일선청에서 도입한 전산장비(PC, 모니터, 프린터, 전화기 및 통신 장비, 네트워크) 장애 발생 시 서비스 요청에 대한 복구 · 조치 등 유지관리 용역
- (산출) 소요예산 : [관리용역비] 1,798백만원

구분	단계	노임단가	투입공수(M/M)	한달 일수	금액(원)
직접인건비	IT지원기술자_고급	289,225	24	20.8	144,381,120
	IT지원기술자_중급	252,196	36	20.8	188,844,365
	IT지원기술자_초급	179,756	444	20.8	1,660,082,611
	소 계				1,993,308,096
제경비	직접인건비의 144%				2,870,363,658
기술료	(직접인건비+제경비)의 20%				972,734,351
직접인건비+제경비+기술료					5,836,406,105
할인율(728%)적용					1,634,193,709
부가세					163,419,371
합계(원)					1,797,613,080

□ **정보시스템 운영 경상경비 : (2026) 16,417백만원 → (2027요구) 18,038백만원, +1,621백만원(+10%)**

'26년 예산		'27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6,417	○ **상용임금(110-03) 4,405백만원** 가. 무기계약직 130명(전산실 입력요원) · 130명 x 34백만원 = 4,405백만원 ○ **일반수용비(210-01) 225백만원** 가. 전문화 교육비 43백만원 나. 일선청 사용 소모품 비용 등 101백만원 다. 정보화 사업 평가수당, 음원사용료, 도메인 비용 등 81백만원 ○ **공공요금 및 제세(210-02) 5,442백만원** 가. 전용회선(업무망, 인터넷망) 등 사용료 5,130백만원 · 67개청 x 77백만원 = 5,130백만원 나. 모바일KICS 단말기 통신요금 312백만원 · 868대 36만원 = 312백만원 ○ **특근매식비(210-05) 12백만원** · 22명 x 9천원 x 60일 = 12백만원 ○ **임차료(210-07) 5,387백만원** 가. 과년도 도입 전산장비 임차료 · 60회차 x 90백만원 = 5,387백만원 ○ **복리후생비(210-12) 65백만원** · 130명 x 50만원 = 65백만원 ○ **국내여비(220-01) 9백만원** · 38명 x 2만원 x 12개월 = 12백만원 ○ **고용부담금(320-09) 872백만원** · 5명 x 174백만원 = 872백만원	18,038	○ **상용임금(110-03) 4,626백만원** 가. 무기계약직 130명(전산실 입력요원) · 130명 x 36백만원 = 4,626백만원 ○ **일반수용비(210-01) 56백만원** 가. 정보화 사업 평가수당, 음원사용료, 도메인 비용 등 56백만원 ○ **공공요금 및 제세(210-02) 5,143백만원** 가. 전용회선(업무망, 인터넷망) 등 사용료 5,130백만원 · 67개청 x 73백만원 = 4,893백만원 나. 모바일KICS 단말기 통신요금 250백만원 · 695대 36만원 = 250백만원 ○ **특근매식비(210-05) 10백만원** · 18명 x 9천원 x 60일 = 10백만원 ○ **임차료(210-07) 7,188백만원** 가. 과년도 도입 전산장비 임차료 · 60회차 x 120백만원 = 7,188백만원 ○ **복리후생비(210-12) 78백만원** · 130명 x 60만원 = 78백만원 ○ **국내여비(220-01) 7백만원** · 30명 x 2만원 x 12개월 = 7백만원 ○ **고용부담금(320-09) 930백만원** · 5명 x 186백만원 = 930백만원

[사업 내용(요약)]

◦ 전국 57개 검찰청 정보통신 전용회선 사용료, 기존 도입 전산장비 과년도 임차료, 전국 검찰청 전산실 입력요원 130명 상용임금 등 경상경비 지출 비용

◦ '27년 기존임차료에서 '21년 도입 전산장비 리스료 지급 기간 종료되고 '26년 도입 전산장비 리스료가 추가되면서 '26년 대비 +1,801백만원 증액

◦ '26. 9. 28. 전송형 전자영장집행 시행으로 검찰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을 전자팩스 비용, 이통3사 통신이용자제공 이용료 등 △299백만원 감액

◦ 전문화교육비 등 소모품 비용 제외 △169백만원 감액

① **과년도 도입 전산장비 임차료** ('26) 5,387 → ('27요구) 7,188백만원, **+1,801백만원**

- (요구) 기존 도입 전산장비, 업무용 SW 임차료

- (산출) 소요예산 : [임차료] 7,188백만원

→ 5년 임차계약으로 도입한 전산장비('22~'26년 노후 업무용 전산장비 교체, '22~'26년 사무용 소프트웨어, '24~25년 노후 보안장비 교체, '24년 형사절차 전자화 고속스캐너 도입) 과년도 임차료 산출

구분	노후장비	사무용SW	보안장비	고속스캐너
2022년도입(5년차)	363,687,940	181,434,060		
2023년도입(4년차)	623,287,800	240,382,960		
2024년도입(3년차)	675,671,760	211,956,080	112,946,240	340,299,100
2025년도입(4년차)	931,413,760	207,972,360	304,486,440	
2026년도입(2년차)	2,718,634,000	276,040,000		
소계	5,312,695,260	1,117,785,460	417,432,680	340,299,100
합계	**7,188,213천원**			

② 전국 검찰청 정보통신망 회선료 ('26) 5,442 → ('27요구) 5,143백만원, **△299백만원**

- (요구) 전국 67개 검찰청 회선 및 인터넷망 회선 등 전용회선 사용료, 모바일KICS 통신요금 등 공공요금 비용 지출
- (산출) 소요예산 : [공공요금 및 제세] 5,143백만원

구분	산출근거	금액(천원)
회선비용	**· 전국67개청 회선비용 407,800천원 × 12개월 = 4,893,600천원**	5,143,600
통신요금	**· 모바일KICS 단말기 817대 26,000천원 × 12개월 = 250,000원**	
합 계	**5,143,600천원**	

③ 일반수용비 ('26) 225 → ('27요구) 56백만원, **△169백만원**

- (요구) 정보화사업 전문가 자문료, 홈페이지 본인확인서비스, 2차 도메인 사용료, 온라인 음원 이용료 등 지출
- (산출) 소요예산 : 일반수용비 56백만원

구분	산출근거	금액(천원)
과업심의 평가수당	· 200천원 X 3명 X 12개월 = 7,200,000원	7,200,000
정보화사업 평가경비	· 1,500천원 X 10회	15,000,000
본인확인, 도메인 비용	· 본인확인 1년 사용금액 = 1,300,000원 · 도메인청구+SSL비용 = 4,108,000원	5,408,000
온라인 음원 이용료	· 165천원 X 12개월	2,000,000
개인정보보호교육, 정보보호 교육	· 350천원 X 4회(상하반기 각2회)	1,400,000
강사료 (소프트웨어 대가산정)	· 350천원 X 2회(연)	700,000
정보화 자문위원회 개최	· 5,000천원	5,000,000
기념품, 조달수수료	· 19,000,000천원	19,000,000
합계	55,708천원	

④ 상용임금(무기계약직 130명), 복리후생비, 고용부담금 ('26) 5,342 → ('27요구) 5,634백만원, +292

- (요구) 전국청 전산실 전산자료 입력요원 130명에 대한 보수 등 인건비 지출
- (산출) [상용임금] 4,626백만원, [복리후생비] 78백만원, [고용부담금] 930백만원

구분 (비목)	산출근거	금액(천원)
인건비 (상용임금)	· 입력요원 보수(130명) : 3.991.172천원 · 정액급식비 : 130명 × 160,000원 × 12월 = 249,600천원 · 명절휴가비 : 375,530천원	5,633,920
맞춤형복지 (복리후생비)	· 맞춤형복지 130명 × 500,000원 = 78,000천원	
연금 및 퇴직금 (고용부담금)	**· 입력요원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퇴직금 : 930,227천원**	
합 계	**5,633,920천원**	

⑤ **국내여비, 특근매식비** ('26) 21→ ('27요구) 17백만원, △4

- (산출) [특근매식비] 10백만원, [국내여비] 7백만원

구분(비목)	산출근거	금액(천원)
특근매식비	· 전산실 특근매식 9,000원× 18명× 5일 ×12개월 = 9,720천원	16,620
국내여비	**· 정보통신 교육 출장여비 70,800원×4명×2일×12개월 = 6,800천원**	
합계	**16,620천원**	

□ 형사사법절차 정보공유체계 강화(신규) : (2026) 0 → (2027요구) 48백만원, +48백만원 (순증)

'26년 예산		'27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	-	48	**○ 공공요금 및 제세(210-02) 48,000천원** 가. 전송형 전자영장 전자적집행을 위한 회선 및 집행 비용 · 회선사용료 6백만원 = 5회선 x 10만원 x 12개월 · 회신수수료 42백만원 = 70,000건 x 50원 x 12회

[사업 내용(요약) 및 '27년 신규 요구 사유]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 제36조에 따라 2026. 9. 28.부터 시행되는 전송형 전자영장집행에 대비, 금융기관, 이동통신사 등 피집행기관 대상 전용회선 구축 및 집행 관련 비용을 확보하여 업무처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제고

① **전송형 전자영장 전자적집행을 위한 회선 및 집행비용** ('26) 0 → ('27요구) 48백만원, **+48백만원**

- (요구) 전송형 전자영장 집행시스템 구축('26. 9.)에 따라 전자영장 집행을 위한 금융기관 수수료 및 피집행기관 간 자료제공 및 자료 회신을 위한 회선비용
- (산출) [공공요금 및 제세] 48백만원

구분	산출근거	금액(천원)
회선비용 (5회선)	**· 월별5회선 비용 506천원 x 12,144천원**	6,072
금융기관 수수료	**· 영장집행 회신건수(예상) x 금융정보 제공 요구건(예산) x 수수료(건당) 69,654건 x 12 x 50원 = 41,792천원**	41,792
합계	47,864천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3~2027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3	2024	2025	2026	2027	2027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수사업무 전자화 활용실적 (단위:건)	목표(건)	62,814,902	66,096,462	70,431,769	77,525,107	80,516,421	전자화 건수1)	업무처리 건수2)	
	실적(건)	68,812,545	73,388,925	83,599,815	-	-			
	달성도(%)	110%	111%	119%	-	-			

1) 검찰 내부시스템을 활용한 업무 처리 전자화 건수 + 형사사법기관 간 연계를 통한 업무 처리 전자화 건수 + 타 기관 연계를 통한 업무 처리 전자화 건수
2) 검찰 내부업무(KICS)시스템을 활용한 업무처리 건수 등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3	○ 검찰 전자결재시스템 재구축 및 검찰업무포탈시스템 호환성 확보 - ActiveX 제거 및 다양한 브라우저의 호환성을 확보 ○ 업무·인터넷망 분리 - 울산지검검 등 5개청의 업무·인터넷망 네트워크를 분리하여 검찰 정보보안체계 강화
2024	○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운용에 필요한 전자화 장비 등을 도입하여 형사절차 완전 전자화에 따른 업무환경 변화 대응, 원활한 업무처리 및 대국민 서비스 제공 ○ 검찰업무 정보시스템 구축·개선을 통한 업무 효율성 향상 및 편의성 제고 - 검찰통계시스템 재구축하여 실효성 있는 검찰 통계 체계 마련,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 화상회의시스템 미설치청 중 5개청에 화상회의시스템 설치하여 원활한 화상회의 진행 지원, 보안 지원이 종료된 노후 검찰방송시스템을 교체하여 보안성을 강화 - ITSM(서비스관리) 노후장비를 교체하여 사용자 요청사항 및 문의에 대하여 통합 서비스 제공
2025	○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운용에 필요한 전자화 장비 등을 도입하여 형사절차 완전 전자화에 따른 업무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원활한 업무처리 및 대국민 서비스 제공 ○ 검찰업무 정보시스템 구축·개선을 통한 업무 효율성 향상 및 편의성 제고 - '25년 10월 MS사의 윈도우10 보안 지원 중단 대비 윈도우11 전환 작업을 통해 노후 시스템 호환성을 확보함으로써 업무 효율성 향상 ○ 전국 검찰청 업무·인터넷 네트워크를 분리, 검찰 개인정보와 정보자산을 위협하는 지능적이고 고도화된 해킹메일을 차단하여 외부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수사 중 요자료 및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고, 내부 정보자원의 안전성을 보장
2026	○ 사무용 소프트웨어 연간 구매, 업무용 노후전산장비 구매, 연간 사용권(구독형) 솔루션 구매사업 수행하여 정보시스템 운영체계 유지 확보 ○ 검찰 업무 정보시스템 (형사사법기록관 시스템 포함) 유지관리, 검찰 사용자업무 및 사이버안전센터 위탁운영, 전국청 사무용 PC 등 관리 용역 수행하여 정보시스템 관리체계 강화 ○ 차세대KICS 서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서버계정솔루션을 도입하여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기여 ○ 노후화된 검찰공무원 인재개발관리시스템 구축, 범죄통계원표 입력체계 개선 등 정보시스템 구축 및 개선하여 원활한 업무수행토록 지원

③ 향후(2027년도 이후) 기대효과

○ 백신 등 보안솔루션 및 필수 운영 소프트웨어 연간사용권 구매를 통해 정보시스템 운영 체계를 유지하고,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및 사이버안전센터 위탁운영 등을 정상적으로 수행, 정보시스템 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공소청 출범('26. 10. 2.) 이후로도 연속적이며 안정적으로 정보시스템 서비스를 제공

○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 제36조에 따라 26. 9. 28.부터 시행되는 전송형 전자영장집행에 대비, 금융기관·이동통신사 등 피집행기관 대상 전용회선 구축 및 집행 및 전송형 전장영장 집행시스템 운영 비용을 확보하여 업무처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제고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추진절차	시행주체	절차내용
① 사업계획서 및 제안요청서 작성	대검찰청	사업계획 수립 및 제안요청서 등 작성
⇩	⇩	⇩
② 사업계획서 및 제안요청서 자체 평가	대검찰청	자체 평가팀 구성 사업타당성 검토
⇩	⇩	⇩
③ 사업계획서 및 제안요청서 외부 평가	대검찰청	외부 자문위원 제안요청서 검토
⇩	⇩	⇩
④ 조달청 계약의뢰	대검찰청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 추진 및 계약의뢰
⇩	⇩	⇩
⑤ 기술평가 실시	대검찰청	조달청 사업자 선정
⇩	⇩	⇩
⑥ 계약체결 및 사업추진	대검찰청	과업에 따른 사업추진
⇩	⇩	⇩
⑦ 사업수행 및 중간평가	대검찰청	단계별 사업추진 및 중간평가 실시
⇩	⇩	⇩
⑧ 검사	대검찰청	사업 산출물 검사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25~2029	33,339	58,251	42,543	41,506	38,595	
2026~2030		29,633	81,487	42,626	42,904	43,821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ㅇ (지적) 2023회계연도 법사위 검토보고서 '방송컨텐츠 제작 기술 용역 검찰업무 정보화 예산 편성 부적절
  ㅇ (조치) 2026회계연도부터 정보화예산에서 분리 타사업 이관 완료

2) 감사원 감사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 해당없음

3) 자체평가·감사 : 해당없음

4)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 해당없음

5)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해당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정보시스템 운영체계 유지 운영유지 필수 소프트웨어(연간사용권, 사무용), 업무용 전산장비 구매 등 운영 유지
- 정보시스템 관리체계 강화 정보시스템 및 통신장비 통합유지관리, 사이버안전센터 및 업무지원센터 위탁 운영 등 관리
- 정보시스템 운영 경상경비 전국 67개 검찰청 간 회선 및 인터넷망 회선 및 과년도 임차료, 무기계약직(130명) 인건비 지출
- 형사사법절차 정보공유체계 강화 전자영장 집행 시행('26. 9) 대비 금융기관, 이동통신사 등 피집행기관 대상 전용회선 구축 및 집행 관련 비용을 확보 등 형사사법절차 전반의 정보공유체계를 강화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2) 동 사업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

회계연도	등급	자체평가 주요내용	조치결과
2023	94.6 우수	- 본 사업은 명확한 목적 아래 계획된 목표를 달성 - 인권 보호에 기여함으로써 사회적 가치 반영된 사업으로 인정 받음	
2024	92.1 보통	- 계획된 목표를 달성 - 사업성과가 우수 - 계획된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	
2025	92.1 보통	- 본 사업은 명확한 목적 아래 계획된 목표를 달성 - 예산 절감 및 집행률 제고에 기여 및 제3자 평가에서도 우수성 인정 받음	

13) 2026년도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 결과 및 후속 조치 현황

평가결과	성과평가 주요내용	조치결과
감액	○ 집행 적정성 - 최근 3년간 집행률은 98% 이상으로 우수하나, 매년 3~5억원 낙찰차액 발생, 예산 편성의 정밀성 제고 필요 ○ 환류 및 개선 노력 - 정보화 예산의 성격과 부합하지 않는 방송콘텐츠 비목지적('23회계연도)을 '25년 편성 유지 지적	○ 불용액을 줄이기 위한 낙찰차액 수요 조사 및 사용 계획 수립 ○ 방송콩텐즈 제작 기술 용역 2026회계연도 이관 완료

14) 부처 건의사항

○ 지원 필요성
- 형사절차전자문서법 시행에 따른 형사절차 전자화 적용, 형사사법기관(검찰, 경찰, 해경, 법원, 공수처 등) 등 법령의 지속적인 제·개정에 따른 시급한 개선사항 반영을 위한 고도화 사업 예산 지원 필요
- ISP수립 완료('26년), 검찰업무에 특화된 생성형 AI 구축하고, 검찰KICS 자료와 연계하여 사건처리업무의 효율성·신속성·정확성 제고, 국민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예산 지원 필요
- 인천지검 북부지청 개청('28. 3.)대비, 정보통신장비 도입, 네트워크 구축공사, 업무용 전산장비 구매 추진사업으로 인천 북부지청 개청 전에 반드시 필요한 필수적인 정보화사업으로 최우선 예산 반영 지원 필요
-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호 관련 기관의 규제 강화 추세에 따라 사전 대응 필요성 지속적 증가에 따른 노후 장비 및 서비스 종료된 솔루션 교체 필요에 따른 예산 지원 필요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3	31,164	-	31,164	-	-	-	31,164	30,811	98.9	98.9	-	353
2024	36,839	-	36,839	-	-	-	36,839	36,312	98.6	98.6	-	527
2025	33,339	-	33,339	-	-	-	33,339	32,786	98.3	98.3	-	553
2026	29,633	-	29,633	-	417	-	30,050	12,294	40.9	40.9	-	-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 해당없음

2) 주요 결산사항

□ 2023~2026년 결산사항

2023	- 불용내역 :일반연구비, 시설장비유지비, 관리용역비 및 공사비 낙찰차액 등 353백만원 불용
2024	- 불용내역 :일반연구비, 시설장비유지비, 관리용역비 및 공사비 낙찰차액 등 527백만원 불용
2025	- 불용내역 :일반연구비, 시설장비유지비, 관리용역비 및 공사비 낙찰차액 등 553백만원 불용
2026	- 이·전용 등 사유 : 형사부등수사지원에서 337백만원 전용 증, 인권보호등검찰업무지원에서 80백만원 전용 증

□ 2026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자체전용 (2026.3.31.)	형사부 등 수사지원 (1335-301)	430-01	337	검찰업무정보화(정보화) (1334-500)	430-01	'25. 12. 업무보고 관련 대통령 지시사항인 「형사기록 열람등사권 실질적·효과적」 행사 이행을 위한 '비정형데이터 비식별화 솔루션 도입 사업 수행'
	인권보호 등 검찰업무지원 (1333-306)	260-01	80	검찰업무정보화(정보화) (1334-500)	260-01	

□ 2026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 해당없음

사 업 명
첨단범죄 및 디지털수사협력(정보화) (1334-5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	16	검찰국		020	022
명칭	일반회계	법무부			공공질서 및 안전	법무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300	1334	501
명칭	형사사법활동	공소청업무정보화	첨단범죄및디지털수사협력(정보화)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6예산 시 소관
	O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첨단범죄 및 디지털수사 협력(정보화)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검찰국	나하나	검사 구자원	수사관 나민수
		검찰과	02-2110-4190	02-2110-4194	02-2110-4209
	사업시행주체	-	-	-	-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년 결산	2026년 예산		2027년		증감	
		본예산(A)	추경	요구안	조정안(B)	(B-A)	(B-A)/A
첨단범죄및디지털 수사협력(정보화)	9,765	12,286	12,286	10,083	8,021	△4,265	△34.7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25					2026(2026.7월말)							2027 예산안
	예산액(추경)	예산현액	집행액[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현액	집행액[실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예상액	불용예상액	
									예산현액	집행액[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10,004	10,004	9,765	-	239	12,286	12,286	4,616	12,286	4,616	-	-	8,021
· 인건비(110)	139	139	81	-	58	152	152	49	152	49	-	-	-
· 운영비(210)	6,671	6,671	6,734	-	-63	6,639	6,639	2,953	6,639	2,953	-	-	6,070
· 여비(220)	54	54	53	-	1	54	54	8	54	8	-	-	20
· 특수활동비(230)	55	55	-	-	55	44	44	31	44	31	-	-	-
· 업무추진비(240)	9	9	9	-	-	13	13	5	13	5	-	-	5
· 직무수행경비(250)	88	88	88	-	-	-	-	-	-	-	-	-	-
· 연구용역비(260)	740	740	726	-	14	966	966	357	966	357	-	-	389
· 민간이전(320)	28	28	28	-	-	30	30	4	30	4	-	-	-
· 유형자산(430)	2,220	2,220	2,046	-	174	4,388	4,388	1,209	4,388	1,209	-	-	1,537
○ 비목별 분류(합계)	10,004	10,004	9,765	-	239	12,286	12,286	4,616	12,286	4,616	-	-	8,021
· 상용임금(110-03)	139	139	81	-	58	152	152	49	152	49	-	-	-
· 일반수용비(210-01)	850	850	832	-	18	841	841	347	841	347	-	-	335
· 공공요금및제세(210-02)	1,467	1,467	1,574	-	-107	1,444	1,444	424	1,444	424	-	-	1,442
· 특근매식비(210-05)	58	58	58	-	-	58	58	58	58	58	-	-	-
· 시설장비유지비(210-09)	309	309	306	-	3	309	309	138	309	138	-	-	309
· 복리후생비(210-12)	3	3	3	-	-	3	3	3	3	3	-	-	-
· 관리용역비(210-15)	3,984	3,984	3,961	-	23	3,984	3,984	1,983	3,984	1,983	-	-	3,984
· 국내여비(220-01)	8	8	8	-	-	8	8	8	8	8	-	-	3
· 국외업무여비(220-02)	46	46	45	-	1	46	46	0	46	0	-	-	17
· 특수활동비(230-00)	55	55	-	-	55	44	44	31	44	31	-	-	-
· 사업추진비(240-01)	9	9	9	-	-	13	13	5	13	5	-	-	5
· 특정업무경비(250-03)	88	88	88	-	-	-	-		-		-	-	-
· 일반연구비(260-01)	740	740	726	-	14	966	966	357	966	357	-	-	389
· 고용부담금(320-09)	28	28	28	-	-	30	30	4	30	4	-	-	-
· 자산취득비(430-01)	2,220	2,220	2,046	-	174	4,388	4,388	1,209	4,388	1,209	-	-	1,537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10,004	10,004	9,765	-	239	12,286	12,286	0	12,286	0	-	-	8,021
· 인건비(110)	139	139	81	-	58	152	152	49	152	49	-	-	-
-상용임금(110-03)	139	139	81	-	58	152	152	49	152	49	-	-	-

	2025					2026(2026.7월말)							2027 예산안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운영비(210)	6,671	6,671	6,734	-	-63	6,639	6,639	2,953	6,639	2,953	-	-	6,070
-일반수용비(210-01)	850	850	832	-	18	841	841	347	841	347	-	-	335
-공공요금및제세(210-02)	1,467	1,467	1,574	-	-107	1,444	1,444	424	1,444	424	-	-	1,442
-특근매식비(210-05)	58	58	58	-	-	58	58	58	58	58	-	-	-
-사설장비유지비(210-09)	309	309	306	-	3	309	309	138	309	138	-	-	309
-복리후생비(210-12)	3	3	3	-	-	3	3	3	3	3	-	-	-
-관리용역비(210-15)	3,984	3,984	3,961	-	23	3,984	3,984	1,983	3,984	1,983	-	-	3,984
· 여비(220)	54	54	53		1	54	54	8	54	8	-	-	20
-국내여비(220-01)	8	8	8		-	8	8	8	8	8	-	-	3
-국외업무여비(220-02)	46	46	45		1	46	46	0	46	0	-	-	17
· 특수활동비(230)	55	55	-		55	44	44	31	44	31	-	-	-
-특수활동비(230-00)	55	55	-		55	44	44	31	44	31	-	-	-
· 업무추진비(240)	9	9	9		-	13	13	5	13	5	-	-	5
-사업추진비(240-01)	9	9	9		-	13	13	5	13	5	-	-	5
· 직무수행경비(250)	88	88	88		-	-	-	-	-	-	-	-	-
-특정업무경비(250-03)	88	88	88		-	-	-	-	-	-	-	-	-
· 연구용역비(260)	740	740	726		14	966	966	357	966	357	-	-	389
-일반연구비(260-01)	740	740	726		14	966	966	357	966	357	-	-	389
· 민간이전(320)	28	28	28		-	30	30	4	30	4	-	-	-
-고용부담금(320-09)	28	28	28		-	30	30	4	30	4	-	-	-
· 유형자산(430)	2,220	2,220	2,046		174	4,388	4,388	1,209	4,388	1,209	-	-	1,537
-자산취득비(430-01)	2,220	2,220	2,046		174	4,388	4,388	1,209	4,388	1,209	-	-	1,537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첨단범죄및디지털수사협력(정보화)**
- **(첨단범죄수사협력 운영 및 지원)** 범죄증거의 디지털화 및 사이버범죄의 증가에 신속·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국내 수사·조사기관을 대상으로 첨단범죄 관련 수사활동을 위해 필요한 제반경비를 지원하는 것임
- **(첨단범죄수사협력 및 분석시스템 유지관리 및 관리용역)** 수사 및 공판에서 디지털증거의 증거능력 확보를 위한 원본성·무결성 등 유지를 도모하고, 아울러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하여 국내 수사·조사기관을 대상으로 수사 및 재판확정 시까지 디지털 수사지원 절차관리, 증거관리, 증거분석을 지원하는 인프라 시스템의 안정적 운용을 지원하는 것임
- **(첨단범죄수사협력 및 분석시스템 구축)** 디지털 증거의 다양화, 대량화 추세에 따라 다종·대량 디지털증거 통합분석의 필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어 이러한 새로운 디지털 매체·기술 발전에 따른 국내 수사·조사기관의 신속·능동적인 대응, 인권보호를 위한 디지털포렌식 도구 및 분석기법 연구개발 등에 필요한 제반경비를 지원하는 것임
- **(국가 디지털포렌식클라우드 서비스 개선)** 급속하게 지능화 되고 있는 신종 범죄 등에 대응하기 위해, 법 집행기관에서 공동 활용이 가능한 AI기반의 디지털증거 통합분석 플랫폼 개발 및 구축에 필요한 제반경비를 지원하는 것임
- **(사이버정보조회 시스템 관리)** 사이버범죄에 사용되는 다양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신속하게 관련 범죄에 대응하는 등 고도화되고 있는 사이버범죄에 대응하고자 이에 따른 장비 증설 및 노후화된 장비의 교체, 솔루션 사용에 대한 라이선스 연장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형법(법률 제17511호)
- 형사소송법(법률 제16850호)
- 검찰청법(법률 제15522호)

② 추진경위

- 1996. 7. 1.자 '개정형법' 시행에 따라 2개청(대검찰청 및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컴퓨터전담수사반 설치
- 1997. 4. 4개청(대전, 대구, 부산, 광주지방검찰청) 컴퓨터전담수사반 설치, 컴퓨터 증거자료 분석시스템 연구개발(1차) 사업완료
- 1998. 5개청(인천,수원,청주,전주,창원지방검찰청) 컴퓨터전담수사반 설치
- 1999. '컴퓨터 데이터 복구 · 분석시스템' 개발
- 2000. 디지털포렌식 수사관 양성 교육 개설·운영
- 2001. '기업회계자료 분석을 위한 수사지원시스템' 개발
- 2002-2003. '디지털 증거분석 시스템' 개발
- 2003-2004. '자금추적 보조프로그램', '음성인식 수사문서 작성프로그램', '수사자료 관리 시스템', '인터넷이용범죄혐의자 추적시스템' 개발
- 2005. '인터넷이용 범죄혐의자 추적시스템', '청정기법을 활용한 손상된 하드디스크 복구 기술', '디지털포렌식분석물 관리시스템' 개발
- 2006. '수사질의어시스템', '손상된 한글 파일의 복구기술', '디지털증거분석시스템(DEAS2) 1차' 개발
- 2007. 서울중앙지검 디지털수사팀 설치, '디지털증거분석시스템(DEAS2) 2차', '디지털포렌식 수사정보지원시스템 1차(DFIS)' 개발
- 2008. 디지털포렌식센터(DFC) 신설, 부산고검 디지털수사팀 설치, '전자금융거래 로그분석', '자금추적 보조프로그램(Tracer) 고도화' 연구
- 2009. 대구고검 디지털수사팀 설치, '상용프로그램 암호해독 기법', 'ERP 데이터베이스 압수분석체계' 연구 등
- 2010. 광주고검 및 대전고검 디지털수사팀 설치, 'CFT10'(국가보안기술연구소 공동), 'DB Log 분석도구'(KIST 공동) 개발
- 2011. 인천지검 디지털수사팀 설치, 전국 검찰 디지털수사망 1단계 구축, 디지털수사지원시스템(D-Net망) 기능 강화
- 2011. 국가안보,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사이버범죄 척결을 위한 사이버범죄수사단 창설
- 2012. 피압수자의 참관권 보장을 위한 참관인실 설치, 수원지검 디지털수사팀 설치
- 2012. 6. 사이버범죄수사단 악성코드분석 시스템 구축
- 2012. 디지털수사지원시스템 2차 2단계 사업, 국가 디지털증거 송치체계 시범 구축

- 2013. 전국디지털수사망시스템 개통,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 디지털포렌식 석사과정 위탁교육 실시, 국가 디지털증거 송치체계 1차 구축
- 2013. 12. 사이버범죄수사단 악성코드분석시스템 2차 고도화사업 완료
- 2014. 국가 디지털증거 송치체계(1차), 안티포렌식대응 고성능병렬처리시스템 구축(1차), 디지털증거데이터팩 국가표준(KSX1220) 제정
- 2014. 12. 사이버범죄수사단 악성코드분석시스템 3차 고도화사업 완료
- 2015. 12. 사이버수사과 악성코드분석시스템 4차 고도화사업 완료
- 2014. 서울고검, 서울남부지검, 창원지검 디지털포렌식팀 설치, 국가 디지털증거 송치체계(2차) 구축
- 2015. 국가 디지털증거 확보체계(2차), ASIC기반 고성능병렬처리시스템(BEYOND A) 구축
- 2016. '상용 응용프로그램의 암호화 방식 연구', 'IoT사용정보 수집방법 및 사건증거 활용방안 연구', 모바일포렌식도구(MFA), 디지털증거분석시스템(IDEAS v3.0) 개발, 국가 디지털증거 확보체계(3차) 구축, 고성능병렬처리시스템 도입 완료
- 2016. 12. 사이버수사과 악성코드분석시스템 5차 고도화사업 완료
- 2017. '응용프로그램 파일시스템 연구', 'Secure Boot Chain연구' 등 연구, 모바일포렌식도구(MFA) 기능개선, 국가 디지털증거 확보체계(4차) 구축, 서울북부지검, 춘천지검 디지털포렌식팀 신설
- 2017. 12. 사이버수사과 악성코드분석시스템 6차 고도화사업 완료
- 2018. 12. 사이버수사과 악성코드분석시스템 7차 고도화사업 완료
- 2019. 12. 사이버수사과 AI기반 불법촬영물 유포탐지 및 피해자 지원 시스템 개발 1차 사업 완료
- 2018. '안드로이드 기기 내부의 취약점 연구' 등 연구, 모바일포렌식도구(MFA4.0) 기능개선 및 통합분석시스템 개발, 국가형사사법기록관 백업센터 구축 및 노후장비 교체, 디지털수사시스템 정보보호 강화
- 2019. '제1기 유관기관 디지털포렌식 조사관 양성과정' 개설, '디지털포렌식 관점에서의 플래싱 도구 활용 방안 등 연구, '모바일포렌식도구(MFA4.5)기능개선 및 고도화, 주요포털 이메일압수도구(eFA) 개발, 고성능병렬처리시스템 확장
- 2020. 사물인터넷과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을 접목한 인공지능(AI)비서 서비스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수행방법 특허 등록, 한국인정기구(KOLAS)로부터 디지털포렌식 분야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 인증 취득
- 2020. 악성코드분석시스템 고도화(동적분석 및 시각화 사업)

- 2021. ‘Vehicle AVN 동기화 데이터 수집 및 EDR 분석기법 연구’, ‘Surface Web 기반 공개정보 수집 및 활용방안 확대 연구’ 등 연구, 모바일포렌식도구(MFA5.1) 기능 개선, 주요 포털 이메일포렌식도구(eFA) 분석기능 개선, 안티포렌식 기술 대응 목적 암호해독용 장비 추가 구축
- 2022. ‘dm-crypt류 기반 암호화 기법 연구’, ‘공개정보 수집 대상 확장 및 방법 다각화 연구’, ‘스마트홈 시스템 모델링 및 획득 데이터 분류 연구’, ‘고성능병렬처리시스템 구조개선 방안 연구’, ‘모바일포렌식 및 일선용 디지털포렌식 도구 기능 개선’
- 2022. 12. 사이버수사과 AI기반 불법촬영물 유포탐지 및 피해자 지원 시스템 고도화 사업 완료
- 2023. ‘PC기반 인스턴트 메신저 데이터 획득 분석 복호화 기법 연구’, ‘PC기반 협업 툴 데이터 구조 분석 및 획득 기법 연구’, ‘macOS 아티팩트 분석을 통한 Live Forensic 기법 연구’, ‘휘발성 데이터 중심의 사용자 행위 연관 데이터 획득 및 분석기법 연구’, ‘압축파일 암호탐지기법 고도화 방안 연구’, ‘모바일포렌식 및 일선용 디지털포렌식 도구 기능 개선’
- 2023. 7. 서울동부지검 디지털포렌식팀 신설
- 2023. 11. 국가디지털포렌식클라우드서비스(NDFaaS) 시스템 구축・운영
- 2023. 12. 사이버기술범죄수사과 불법촬영물 유포 탐지 시스템 불법 영상 수집기능 및 동영상 동일성 비교 기능 고도화 완료
- 2024. ‘Sonoma 기반 macOS 분석기법에 관한 연구’, ‘이종 OS 기반 인스턴트 메신저 및 협업 플랫폼 분석기술 연구’, ‘경량 및 직렬화 DB에 대한 구조분석 및 복원기법 연구’, ‘디지털포렌식 관련 용어 표준화 연구 및 교재 개발’, ‘이미지 식별 및 분류를 위한 AI 적용방안 연구’, ‘자체 개발 모바일포렌식 도구(MFA) 구조개선 및 메신저분석 기능 고도화’
- 2024. 7. 제주지검 디지털포렌식팀 신설
- 2024. 12. 사이버기술범죄수사과 불법촬영물 유포 탐지 시스템 불법 영상 수집기능 강화 및 가상자산 주소조회 시스템 고도화 완료
- 2025. ‘자동차 IVI 시스템 접근 및 데이터 획득 방법에 대한 연구’, ‘데이터베이스 분석을 중점으로 한 인스턴트 메신저 및 협업 플랫폼 분석기술 연구’, ‘macOS 환경에서 통합 로그 데이터(ULD) 분석 기법 연구’, ‘디지털포렌식 교육과정 표준 모델 연구’, ‘다중 출처 데이터 정규화를 위한 AI기반 서식 통합 기술 연구’, ‘다중 AI 모델 방식을 응용한 음성인식의 실무 적용 방안 연구’, ‘디지털증거 유형

분류 개선 및 공개모델 활용 분석기법 연구', '모바일 · 클라우드 포렌식 분석기능 개선 및 검찰 포렌식 서비스 연계 개발'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3	2024	2025	2026	2027(안)
사업비	9,774	10,419	10,004	12,286	8,021

- 기타: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법무부
- 사업 수혜자 :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7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

□ **첨단범죄및디지털수사협력(정보화) : (2026 추경) 12,286백만원 → (2027 예산안) 8,021백만원, 4,265백만원 감액**

① 첨단범죄수사협력 운영 및 지원 : (2026 추경) 2,639백만원 → (2027 예산안) 1,802백만원, 837백만원 감액

- (요구) 지출구조조정을 위해 전용선 임대비용 및 시료용 스마트기기 구매 등 감액 요구
- (산출) 일반수용비 335백만원, 전용선 임대비용 등 공공요금 1,443백만원, 그 외 운영비 25백만원

2026년 본예산		2027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2,639	○ **상용임금(110-03) : 152,035천원** ・ 5명×2,534천원×12월 = 152,035천원 ○ **일반수용비(210-01) : 841,000천원** ・24개청×35,041천원 = 841,000천원 ○ **특수활동비(230-00) : 44,081천원** ・67개청×6,5479천 = 44,081천원 ○ **고용부담금(320-09) : 30,103천원** ・5명×502천원×12월 = 27,277천원 ○ **공공요금 및 제세(210-02) : 1,443,717천원** ・국가디지털포렌식 클라우드센터 회선비 2,904천원*20개 회선×12월 = 697,000천원 ・통신·전기료 등 공공요금 및 제세 746,717천원 ○ **특근매식비(210-05) : 58,320천원** ・5명x7천원x69일x24청 = 58,320천원 ○ **복리후생비(210-12) : 2,500천원** ・5명x500천원 = 2,500천원 ○ **국내여비(220-01) : 7,920천원** ○ **국외업무여비(220-02) : 45,600천원** ○ **업무추진비(240-01) : 13,000천원**	1,802	○ **일반수용비(210-01) : 335,000천원** ・25개청×13,400천원 = 335,000천원 ○ **공공요금 및 제세(210-02) : 1,442,717천원** ・국가디지털포렌식 클라우드센터 회선비 2,904천원*20개 회선×12월 = 697,000천원 ・통신·전기료 등 공공요금 및 제세 746,717천원 ○ **국내여비(220-01) : 3,000천원** ○ **국외업무여비(220-02) : 17,000천원** ○ **업무추진비(240-01) : 5,000천원**

② 첨단범죄수사협력 및 분석시스템 유지보수 및 관리용역

: (2026 추경) 4,035백만원 → (2027 예산안) 4,035백만원, 전년동

- (요구) 디지털증거 분석·관리시스템 통합유지관리 및 NDFC 서버실 UPS, 항온항습기 등 유지보수 비용으로 전년동
- (산출) 디지털증거 분석·관리시스템 통합유지관리 3,984백만원, 서버실 UPS 및 항온항습기 등 유지보수 51백만원

2026년 본예산		2027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4,035	○ **관리용역비(210-15) : 3,984,000천원** ・디지털수사지원시스템 유지관리 2,359,000천원 ・국가디지털포렌식클라우드시스템(NDFaaS) 유지관리 1,112,000천원 ・고성능 병렬처리시스템 유지관리 513,000천원 ○ **시설장비유지비(210-09) : 51,000천원** ・서버실 UPS, 항온항습기 등 유지보수 4,250천원x12월 = 51,000천원	4,035	○ **관리용역비(210-15) : 3,984,000천원** ・디지털증거분석관리시스템 통합유지관리 3,984,000천원 **3,984,000천원x1식 = 3,984,000천원** ○ **시설장비유지비(210-09) : 51,000천원** ・NDFaaS 서버실 UPS, 항온항습기 등 유지보수(H/W) 4,250천원x12월 = 51,000천원

③ 첨단범죄수사협력 및 분석시스템 구축 : (2026 추경) 4,800백만원 → (2027 예산안) 1,821백만원, 2,979백만원 감액

- (요구) 과학수사 기능 이관 관련 일반연구비 25%(128백만원) 감액, 디지털포렌식 장비· 시스템 장비 교체·증설 등 77% (2,851백만원) 감액
- (산출) 전국청 포렌식장비 및 디지털증거 분석·관리시스템 장비 교체/증설 등 자산취득비 1,432 백만원, 일반연구비 389백만원

2026년 본예산		2027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4,800	○ **일반연구비(260-01) : 517,000천원** ・모바일포렌식도구 획득분석 대상 확대개발 250,000천원 ・디지털증거 획득.분석 기법 등 연구개발 300,000천원 ・암호탐지 및 암호해독 기법 연구개발 120,000천원 ・(일선용)디지털포렌식 도구 개발 및 개선사업 70,000천원 ○ **자산취득비(430-01) : 4,283,000천원** ・노후 디지털증거저장소 증설 2,288,000천원 2식×11,440천원 = 2,,288,000천원 ・대검 및 전국청 포렌식장비 교체/증설 1,681,000천원	1,821	○ **일반연구비(260-01) : 389,000천원** ・디지털증거 감정기법 등 연구개발(계속) 200,000천원 ・디지털증거 분석대상 확대개발(계속) 189,000천원 ○ **자산취득비(430-01) : 1,432,000천원** ・디지털포렌식장비 교체/증설 604,000천원 ・디지털증거분석·관리시스템 장비 교체/증설 795,000천원 ・모바일 포렌식 분석도구 고도화 33,000천원

④ 국가 디지털포렌식 클라우드서비스 개선 : (2026 추경) 449백만원 → (2027 예산안) 0백만원, 449백만원 순감

2026년 본예산		2027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449	○ **일반연구비(260-01) : 449,000천원** ・AI기반 국가디지털수사지원시스템 개선을 위한 ISMP 449,000천원		

⑤ 사이버정보조회 시스템 관리 : (2026 추경) 363백만원 → (20276 예산안) 363백만원, 전년동

- (요구) 사이버정보조회 시스템 유지보수 비용 및 노후 분석장비 교체 등 전년동 요구
- (산출) 사이버정보조회 시스템 유지보수 258백만원, 노후 분석장비 교체 및 라이선스 연장 105백만원

2026년 본예산		2027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363	○ **시설관리유지비(210-09) : 258,000천원** ・사이버수사 분석시스템 유지보수 258,000천원 ○ **자산취득비(430-01) : 105,000천원** ・사이버수사 노후 분석장비 교체 및 라이선스 연장 5식 X 21,000천원 = 105,000천원	363	○ **시설관리유지비(210-09) : 258,000천원** ・사이버정보조회 시스템운영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258,000천원 ○ **자산취득비(430-01) : 105,000천원** ・사이버정보조회 시스템 노후 장비 교체 및 라이선스 연장 5식 X 21,000천원 = 105,000천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3~2027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조직분리 및 기능 변동에 따른 성과지표 변경, 개발 예정

성과지표	구분	2023	2024	2025	2026	2027	2027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①수사과정에서의 디지털포렌식 활용실적(건) (가중치 0.5)	목표	9,871	9,928	11,885	9,977	-	-'23~'24년의 경우 금융증권범죄, 마약범죄수사 및 특수사건 등 직접 수사 사건 증가로 급증하였으나 이는 이례적인 수치였음 -'25년 검찰 직접수사 축소 및 특검 지원으로 실적하락 -'26년에는 현 추세를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최근 2년 실적 평균치를 기준으로 설정	대검 및 서울·수원·대전·대구·광주·부산고검, 서울중앙·서울남부·서울북부·서울동부·인천·춘천·창원·제주지검의 디지털 증거 수집·분석 지원 건수 누계	디지털수사 지원시스템 통계자료
	실적	13,559	11,446	8,507	-	-			
	달성도 (%)	137.3	115.2	71.6	-	-			
②수사과정에서의 디지털포렌식 활용 고객 만족도 (%)(가중치 0.5)	목표	98.3	98.0	98.1	98.3	-	-'23~'25년 평균 달성 실적과 '25년 실적치 참고하여 목표치 상향	{(매우만족 선택 수×100)+(만족 선택수×75)+(보통 선택수×50)+(불만족 선택 수×25)+(매우불만족 선택 수×0)} ÷ 만족도 평가항목 총수	디지털수사 지원시스템 만족도 조사자료
	실적	97.8	98.8	98.9	-	-			
	달성도 (%)	99.4	100.8	100.8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3	○ PC기반 협업 툴 데이터 구조 분석 및 획득 기법 연구 ○ macOS 아티팩트 분석을 통한 Live Forensic 기법 연구 ○ 휘발성 데이터 중심의 사용자 행위 연관 데이터 획득 및 분석 기법 연구 ○ 압축파일 암호탐지기법 고도화 방안 연구 ○ PC기반 인스턴트 메신저 데이터 획득, 분석, 복호화 기법 연구 ○가상자산 부정거래 분석 및 추적 플랫폼 구축 ISP 진행 ○불법촬영물 유포 탐지 시스템 고도화(탐지 기능 향상을 위한 시스템 고도화)
2024	○ Sonoma 기반 macOS 분석기법에 관한 연구 ○ 이종 OS 기반 인스턴트 메신저 및 협업 플랫폼 분석기술 연구 ○ 경량 및 직렬화 DB에 대한 구조분석 및 복원기법 연구 ○ 디지털포렌식 관련 용어 표준화 연구 ○ 이미지 식별 및 분류를 위한 AI 적용방안 연구
2025	○ 자동차 IVI 시스템 접근 및 데이터 획득 방법에 대한 연구 ○ 데이터베이스 분석을 중점으로 한 인스턴트 메신저 및 협업 플랫폼 분석기술 연구 ○ macOS 환경에서 통합 로그 데이터(ULD) 분석 기법 연구

	○ 디지털포렌식 교육과정 표준 모델 연구 ○ 다중 출처 데이터 정규화를 위한 AI기반 서식 통합 기술 연구 ○ 다중 AI 모델 방식을 응용한 음성인식의 실무 적용 방안 연구 ○ 디지털증거 유형분류 개선 및 공개모델 활용 분석기법 연구 ○ 모바일·클라우드 포렌식 분석기능 개선 및 검찰 포렌식 서비스 연계 개발
2026	○ 디지털포렌식 분야의 산학연관 협력 생태계 고도화를 위한 종합 연구 ○ 대용량 데이터의 의미적 분류와 구조적 시각화 연구 ○ 모바일·클라우드 포렌식도구 개선 및 병렬처리시스템 연계 개발 ○ AI 기반 국가디지털수사지원시스템 개선 개념검증(PoC) 및 ISMP 수립

③ 향후(2027년도 이후) 기대효과

- 디지털포렌식 역량 강화하여 신속하고 객관적인 공판결과 도출 기대
  · 디지털포렌식 전문 분석관 양성을 위해 전문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신기술 습득, 송치된 디지털증거에 대한 검증·재분석, 공판 단계에서 감정, 법정증언 등 공소유지에 필요한 디지털증거 대응 역량을 확보
- 특별사법경찰관 대상으로 최신 디지털포렌식 기술 및 적법절차 등에 관한 교육·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사법경찰관의 디지털포렌식 전문성 및 역량 제고
- 디지털증거 분석·관리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유지하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의 원활한 수행 및 특별사법경찰 등 연계기관의 디지털포렌식 지원을 통하여 국가 차원의 디지털포렌식 역량 강화
- 지속적인 디지털포렌식 도구 및 분석기법 연구개발, 시스템 개선을 통한 디지털증거 수집 및 분석 역량 강화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정보화 사업 집행절차

사업계획 및 제안서 작성	◇ 사업계획 수립 및 제안서 등 작성
⇩	
사업계획 및 제안서 자체평가	◇ 자체 평가팀 구성 사업성 검토
⇩	
사업계획 및 제안서 외부평가	◇ 외부 자문위원 제안서 검토
⇩	
조달청 계약의뢰	◇ 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추진 계약의뢰
⇩	
기술평가 실시	◇ 기술평가 위원단 구성 실시
⇩	
가격평가 실시	◇ 조달청 사업자 선정
⇩	
계약체결 및 사업추진	◇ 사업추진
⇩	
사업진행 중간평가	◇ 사업추진 과정별 중간평가 실시
⇩	
검 수	◇ 사업 산출물 검사

※ 근거법령 : 전자정부법,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국가계약법 및 동시행령, 소프트웨어 사업 대가 산정 가이드, 대검찰청 정보화사업관리지침 등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25~2029	10,004	12,286	18,743	10,132	10,132	
2026~2030		12,286	36,675	46,814	45,719	39,805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지적사항) 디지털수사지원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사업 추진시 과업심의·타당성 검토 등 준비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는 등 조속한 계약 추진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전년도 계약업체가 당해연도 사업을 수행하게 되는 기간을 최소화하고, 디지털수사지원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사업을 다년 계약 방식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23회계연도 국회 결산심사)
- (조치사항) 2025년 '디지털수사지원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 사업은 과업심의·타당성 검토 등 사업 준비기간을 최대한 단축하는 등 조속한 계약 체결 완료(2025. 4. 21.)하였으며, '디지털수사지원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 사업을 다년 계약 방식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예산확보가 전제되어야 함. 2026년 '디지털수사지원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 사업은 사전 사업 준비, 과업심의·타당성 검토 등 사업 준비기간을 최대한 단축하는 등 조속한 계약 체결 완료(2026. 2. 2.)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향후 추진방향과 세부 추진계획 기술
- 사업의 전체 계획 및 중장기 재정소요와 재원조달계획 등의 예산조치 가능성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2) 동 사업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 : 해당없음

13) 2026년도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 결과 및 후속 조치 현황

14) 부처 건의사항 : 특이사항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3	9,774	-	9,774	81	-	-	9,855	9,524	97.4	96.6	-	249
2024	10,419	-	10,419	-	-	-	10,419	10,070	96.7	96.7	-	349
2025	9,861	143	10,004	-	-	-	10,004	9,765	97.6	97.6	-	239
2026	12,286		12,286	-	-	-	12,286	4,616	37.6	37.6	-	-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 해당없음

2) 주요 결산사항

□ 2023~2026년 결산사항

2023	- 이 · 전용 및 불용 내역 및 사유 · 사이버범죄 증거분석 하드웨어 도구 구매와 관련하여, 조달청 1차 공고시 25개 업체의 순차적 입찰 포기로 인해 재공고 및 계약 체결이 지연되었으며, PC 원자재 수입 및 제조에 시일이 소요됨에 따라 81백만원 이월,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249백만원 불용
2024	- 이 · 전용 및 불용 내역 및 사유 ·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349백만원 불용
2025	- 이 · 전용 및 불용 내역 및 사유 ·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239백만원 불용
2026	해당없음

□ 2026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

□ 2026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 해당없음

사 업 명
형사부 등 수사협력지원 (1335-3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법무부	검찰국		020	022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법무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300	1335	301
명칭	형사사법활동	수사협력 및 역량강화	형사부 등 수사협력지원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6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형사부 등 수사협력지원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검찰국	나하나	검사 구자원	수사관 엄재성
		검찰과	02-2110-4190	02-2110-4194	02-2110-4213
	사업시행주체	-	-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년 결산	2026년 예산		2027년		증감 (B-A)	(B-A)/A
		본예산(A)	추경	요구안	조정안(B)		
형사부 등 수사협력지원	80,983	87,824	87,824	87,054	72,672	△15,152	△17.3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5					2026(2026.7월말)							2027 예산안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85,664**	**85,128**	**80,983**	**65**	**4,082**	**87,824**	**87,552**	**53,968**	**87,487**	**53,903**	**-**	**-**	**72,672**
· 인건비(110)	19,940	18,297	18,201	-	96	22,829	22,829	12,696	22,829	12,696	-	-	26,227
· 운영비(210)	17,538	19,270	19,253	-	17	17,537	17,537	13,193	17,537	13,193	-	-	15,522
· 여비(220)	849	867	867	-	-	849	849	549	849	549	-	-	687
· 특수활동비(230)	2,283	2,283	-	-	2,283	2,067	2,067	1,106	2,067	1,106	-	-	-
· 업무추진비(240)	985	985	985	-	-	3,372	3,372	1,356	3,372	1,356	-	-	2,728
· 직무수행경비(250)	35,543	35,543	33,912	-	1,631	33,321	33,321	23,229	33,321	23,229	-	-	19,219
· 연구용역비(260)	466	611	546	65	-	438	503	65	438	0	-	-	458
· 보전금(310)	1,104	1,059	1,040	-	19	1,434	1,434	892	1,434	892	-	-	1,627
· 민간이전(320)	3,935	4,292	4,266	-	26	4,557	4,557	427	4,557	427	-	-	5,311
· 건설비(420)	494	294	289	-	5	494	494	46	494	46	-	-	294
· 유형자산(430)	2,528	1,628	1,623	-	5	928	591	409	591	409	-	-	601
○ 비목별 분류(합계)	**85,664**	**85,128**	**80,983**	**65**	**4,082**	**87,824**	**87,552**	**53,968**	**87,487**	**53,903**	**-**	**-**	**72,672**
· 상용임금(110-03)	19,940	18,297	18,201	-	96	22,829	22,829	12,696	22,829	12,696	-	-	26,227
· 일반수용비(210-01)	7,956	7,956	7,951	-	5	7,923	7,923	5,150	7,923	5,150	-	-	7,110
· 공공요금및제세(210-02)	6,910	8,660	8,658	-	2	6,910	6,910	6,345	6,910	6,345	-	-	5,972
· 특근매식비(210-05)	223	223	223	-	-	255	255	196	255	196	-	-	100
· 임차료(210-07)	1,358	1,339	1,338	-	1	1,358	1,358	812	1,358	812	-	-	1,214
· 유류비(210-08)	212	212	205	-	7	212	212	69	212	69	-	-	212
· 시설장비유지비(210-09)	-	-	-	-	-	-	-	-	-	-	-	-	15
· 복리후생비(210-12)	305	305	305	-	-	305	305	305	305	305	-	-	377
· 일반용역비(210-14)	-	-	-	-	-	-	-	-	-	-	-	-	138
· 기타운영비(210-16)	575	575	574	-	1	575	575	316	575	316	-	-	384
· 국내여비(220-01)	849	867	867	-	-	849	849	549	849	549	-	-	687
· 특수활동비(230-00)	2,283	2,283	-	-	2,283	2,067	2,067	1,106	2,067	1,106	-	-	-
· 사업추진비(240-01)	985	985	985	-	-	3,372	3,372	1,356	3,372	1,356	-	-	2,728
· 특정업무경비(250-03)	35,543	35,543	33,912	-	1,631	33,321	33,321	23,229	33,321	23,229	-	-	19,219
· 일반연구비(260-01)	466	611	546	65	-	438	503	65	438	0	-	-	448
· 정책연구비(260-02)	-	-	-	-	-	-	-	-	-	-	-	-	10
· 포상금(310-03)	63	63	63	-	-	393	393	211	393	211	-	-	551
· 기타보전금(310-04)	1,040	995	977	-	18	1,040	1,040	681	1,040	681	-	-	1,076
· 구호및교정비(320-06)	36	36	28	-	8	36	36	17	36	17	-	-	36
· 고용부담금(320-09)	3,898	4,255	4,238	-	17	4,520	4,520	411	4,520	411	-	-	5,274
· 공사비(420-03)	494	294	289	-	5	494	494	46	494	46	-	-	294
· 자산취득비(430-01)	2,528	1,628	1,623	-	5	928	591	409	591	409	-	-	601

	2025					2026(2026.7월말)							2027 예산안
	예산액(추경)	예산현액	집행액[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현액	집행액[실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예산현액	집행액[실집행액]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85,664	85,128	80,983	65	4,082	87,824	87,552	53,968	87,487	53,903	-	-	72,672
· 인건비(110)	19,940	18,297	18,201	-	96	22,829	22,829	12,696	22,829	12,696	-	-	26,227
-상용임금(110-03)	19,940	18,297	18,201	-	96	22,829	22,829	12,696	22,829	12,696	-	-	26,227
· 운영비(210)	17,538	19,270	19,253	-	17	17,537	17,537	13,193	17,537	13,193	-	-	15,522
-일반수용비(210-01)	7,956	7,956	7,951	-	5	7,923	7,923	5,150	7,923	5,150	-	-	7,110
-공공요금및제세(210-02)	6,910	8,660	8,658	-	2	6,910	6,910	6,345	6,910	6,345	-	-	5,972
-특근매식비(210-05)	223	223	223	-	-	255	255	196	255	196	-	-	100
-임차료(210-07)	1,358	1,339	1,338	-	1	1,358	1,358	812	1,358	812	-	-	1,214
-유류비(210-08)	212	212	205	-	7	212	212	69	212	69	-	-	212
-시설장비유지비(210-09)	-	-	-	-	-	-	-	-	-	-	-	-	15
-복리후생비(210-12)	305	305	305	-	-	305	305	305	305	305	-	-	377
-일반용역비(210-14)	-	-	-	-	-	-	-	-	-	-	-	-	138
-기타운영비(210-16)	575	575	574	-	1	575	575	316	575	316	-	-	384
· 여비(220)	849	867	867	-	-	849	849	549	849	549	-	-	687
-국내여비(220-01)	849	867	867	-	-	849	849	549	849	549	-	-	687
· 특수활동비(230)	2,283	2,283	-	-	2,283	2,067	2,067	1,106	2,067	1,106	-	-	-
-특수활동비(230-00)	2,283	2,283	-	-	2,283	2,067	2,067	1,106	2,067	1,106	-	-	-
· 업무추진비(240)	985	985	985	-	-	3,372	3,372	1,356	3,372	1,356	-	-	2,728
-사업추진비(240-01)	985	985	985	-	-	3,372	3,372	1,356	3,372	1,356	-	-	2,728
· 직무수행경비(250)	35,543	35,543	33,912	-	1,631	33,321	33,321	23,229	33,321	23,229	-	-	19,219
-특정업무경비(250-03)	35,543	35,543	33,912	-	1,631	33,321	33,321	23,229	33,321	23,229	-	-	19,219
· 연구용역비(260)	466	611	546	65	-	438	503	65	438	0	-	-	458
-일반연구비(260-01)	466	611	546	65	-	438	503	65	438	0	-	-	448
-정책연구비(260-02)	-	-	-	-	-	-	-	-	-	-	-	-	10
· 보전금(310)	1,104	1,059	1,040	-	19	1,434	1,434	892	1,434	892	-	-	1,627
-포상금(310-03)	63	63	63	-	-	393	393	211	393	211	-	-	551
-기타보전금(310-04)	1,040	995	977	-	18	1,040	1,040	681	1,040	681	-	-	1,076
· 민간이전(320)	3,935	4,292	4,266	-	26	4,557	4,557	427	4,557	427	-	-	5,311
-구호및교정비(320-06)	36	36	28	-	8	36	36	17	36	17	-	-	36
-고용부담금(320-09)	3,898	4,255	4,238	-	17	4,520	4,520	411	4,520	411	-	-	5,274
· 건설비(420)	494	294	289	-	5	494	494	46	494	46	-	-	294
-공사비(420-03)	494	294	289	-	5	494	494	46	494	46	-	-	294
· 유형자산(430)	2,528	1,628	1,623	-	5	928	591	409	591	409	-	-	601
-자산취득비(430-01)	2,528	1,628	1,623	-	5	928	591	409	591	409	-	-	601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검사실 보조인력 등 운영)** 전국 공소청 형사부 등 검사실에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사무원 및 속기사)의 채용 및 운영 지원, 사건관계인의 진술의 신빙성 여부를 판단 및 분석하는 진술분석관의 채용 및 운영 지원
- **(수사협력활동 일반)** 검사 및 일반직의 수사협력 활동 경비, 유관기관 협의회 등 개최 경비, 전문가 및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사협력 활동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각종 위원회 운영 지원 등
- **(호송 인치 업무)** 호송 인치 업무 제반경비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형법, 형사소송법, 공소청법

② 추진경위

- 법질서 확립 및 인권보장을 위한 주요범죄 수사협력 수행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3	2024	2025	2026	2027(안)
사업비	85,894	86,475	85,664	87,824	72,672

- 기타: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법무부
- 사업수혜자 :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7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검사실 보조인력 등 운영 : ('26 본예산) 27,653 → ('27 예산안) 31,879백만원, 3,510백만원 증액

- 검찰청 형사부 등 검사실 근무 공무직 근로자 처우개선분 2,807백만원 증액
- 진술분석관(공무직 근로자) 상용임금 등 1,347백만원 및 처우개선 71백만원 증액

2026년 본예산		2027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27,653	○ **상용임금(110-03) : 22,828,563천원** ・609명×3,124천원×12월 = 22,828,563천원 ○ **고용부담금(320-09) : 4,520,056천원** ・609명×619천원×12월 = 4,520,056천원 ○ **복리후생비(210-12) : 304,500천원**	31,879	○ **상용임금(110-03) : 25,056,057천원** ・609명×3,429천원×12월 = 25,056,057천원 ○ **고용부담금(320-09) : 5,038,773천원** ・609명×689천원×12월 = 4,520,056천원 ○ **복리후생비(210-12) : 365,400천원** ○ **상용임금(110-03) : 1,170,875천원** ・20명×4,879천원×12월 = 1,170,875천원 ○ **고용부담금(320-09) : 235,463천원** ・20명×981천원×12월 = 235,463천원 ○ **복리후생비(210-12) : 12,000천원**

② 수사협력활동 일반 : ('26 본예산) 59,490 → ('27 예산안) 40,451백만원, 19,039백만원 감액

- 중대범죄수사청과의 예산 분리에 따른 사업 재구조화로 시설장비유지비 15백만원, 일반용역비 138백만원, 정책연구비 10백만원 비목 신설
- 특수활동비 2,067백만원, 특정업무경비 14,102백만원 감액 등 비목 조정

2026년 본예산		2027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59,490	○ **일반수용비(210-01) : 7,779,768천원** ○ **공공요금 및 제세(210-03) : 6,814,799천원** ○ **특근매식비(210-05) : 251,499천원** ・67개청×3,754천원 = 251,499천원 ○ **임차료(210-07) : 1,214,000천원** ○ **유류비(210-08) : 18,000천원** ○ **기타운영비(210-16) : 563,720천원** ○ **국내여비(220-01) : 818,735천원** ○ **특수활동비(230-00) : 2,066,843천원** ・67개청×30,843천원 = 2,066,843천원 ○ **사업추진비(240-01) : 3,371,702천원** ○ **특정업무경비(250-03) : 33,321,250천원** ・67개청×497,332천원 = 33,321,250천원 ○ **일반연구비(260-01) : 438,000천원** ○ **포상금(310-03) : 393,200천원** ○ **기타보전금(310-04) : 1,040,383천원** ○ **구호 및 교정비(320-06) : 36,486천원** ○ **공사비(420-03) : 493,614천원** ○ **자산취득비(430-01) : 900,788천원** ・67개청×13,445천원 = 900,788천원	40,451	○ **일반수용비(210-01) : 7,061,516천원** ○ **공공요금 및 제세(210-03) : 5,902,667천원** ○ **특근매식비(210-05) : 100,000천원** ・67개청×1,492천원 = 100,000천원 ○ **임차료(210-07) : 1,214,000천원** ○ **유류비(210-08) : 18,000천원** ○ **시설장비유지비(210-09) : 15,000천원** ○ **일반용역비(210-14) : 137,530천원** ○ **기타운영비(210-16) : 383,720천원** ○ **국내여비(220-01) : 656,627천원** ○ **사업추진비(240-01) : 2,727,707천원** ○ **특정업무경비(250-03) : 19,219,000천원** ・67개청×286,850천원 = 19,219,000천원 ○ **일반연구비(260-01) : 448,000천원** ○ **정책연구비(260-02) : 10,000천원** ○ **포상금(310-03) : 550,700천원** ○ **기타보전금(310-04) : 1,076,077천원** ○ **구호 및 교정비(320-06) : 36,486천원** ○ **공사비(420-03) : 293,614천원** ○ **자산취득비(430-01) : 600,788천원** ・67개청×8,966천원 = 600,788천원

③ 호송・인치 업무 지원 : ('26 본예산) 342 → ('27 예산안) 342백만원, 전년 동

2026년 본예산		2027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342	○ **일반수용비(210-01) : 48,840천원** ○ **공공요금 및 제세(210-03) : 69,160천원** ○ **유류비(210-08) : 194,000천원** ○ **국내여비(220-01) : 30,000천원**	342	○ **일반수용비(210-01) : 48,840천원** ○ **공공요금 및 제세(210-03) : 69,160천원** ○ **유류비(210-08) : 194,000천원** ○ **국내여비(220-01) : 30,000천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3~2027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3	2024	2025	2026	2027	2027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사건의 구공판 처리율 (%)	목표	12.0	13.0	삭제	삭제	삭제	해당없음		
	실적	14.7	15.0						
	달성도	122.5	115.4						
자유형 및 재산형 집행률 (%)	목표	80.07	80.12	80.7	삭제	삭제	-	{(자유형 집행인원/자유형 접수인원 × 100) + (재산형 집행건수/재산형 처리건수 × 100)} / 2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및 검찰통계시스템
	실적	79.30	80.25	79.3	-	-			
	달성도	99.0	100.2	98.3	-	-			
범죄수익 보전 결정 건수 (건)	목표	신규	신규	3,381	3,719	-	최근 3년간 평균 범죄수익 보전 결정 건수 실적치(3,471건) 보다 약 2.5% 하향	최초 목표치 설정 후 직전연도 목표치에서 10% 상향	형사사법 정보시스템(KICS) 중 범죄수익환수정보시스템(ISF)
	실적	신규	신규	4,299	-	-			
	달성도	3,364	4,478	127.2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 해당없음

③ 향후(2027년 이후) 기대효과

- 공소청 수사협력활동의 체계적·효율적 지원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특이사항 없음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25~2029	47,838	89,638	92,327	95,097	97,950	
2026~2030		87,824	89,760	92,453	95,226	98,083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ㅇ 검찰시민위원회의 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22회계연도 결산 국회 지적사항)
  ㅇ 자산취득비를 과다편성하여 해당 예산이 목적 외로 집행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22회계연도 결산 국회 지적사항)
  ㅇ 영장심의위원회의 연간 개최 실적과 예산 집행 내역을 점검하여 과도한 미집행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 예산을 편성할 것('23회계연도 결산 국회 지적사항)
2) 감사원 지적 : 해당없음
3) 기타 언론 및 민원 : 해당없음
4)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ㅇ '23년 5월 이후 코로나19 관련 방역상황 안정화를 고려하여 검찰시민위원회 개최 활성화를 아래와 같이 지시하였고, 이후 개최실적이 증가 추세에 있음
  - '23년 5월 검찰시민위원회 우수 활용사례 전파 및 활성화 지시
  - '23년 8월 검찰시민위원회 활성화 지시
  ㅇ 향후 검찰시민위원회 개최의 정례화를 지속 추진하는 등 검찰 시민위원회 제도 활성화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음
  ㅇ '23년도 영장심의위원회 전담팀 자산취득비 전액을 감액하였고, '24년도 예산에도 반영하지 않음
  - '24년도 예산 집행 시 편성된 예산을 목적 외 용도로 집행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하겠음
  ㅇ 영장심의위원회는 법률에 의거하여 경찰의 신청에 의해 개최되는데 신청 건수가 적어 집행실적이 저조한바, 집행실적 등을 고려하여 '22년 780백만원, '23년 200백만원, '24년 133백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였고, 당장 집행 실적이 저조하더라도 경찰 신청 건수 증가에 대비하여 필요최소한의 예산은 유지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적정한 규모의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ㅇ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 비용 및 영장심의위원회 예산은 2024년대비 2026년에 각 19.5%, 24.8% 감액하는 등 실제 수요를 감안하여 편성하였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공소청의 수사협력 활동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
- 형사사건 및 고소·고발사건, 주요 수사 활동 협력 지원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2) 동 사업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 : 해당없음

13) 2026년도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 결과 및 후속 조치 현황

평가결과	성과평가 주요내용	조치결과
사업개선	ㅇ (추진, 전달체계 효율성) - 형사사건 통계 및 인력 진단을 토대로 수요를 예측하고 있으나, 예측의 정밀도 제고가 요구됨	ㅇ (추진, 전달체계 효율성) - 실제 호송 실적 및 디지털 포렌식 지원 수요량 등을 바탕으로 예산 배분의 우선순위를 정밀하게 재검토하고, 형사보상금 증액 및 예비비 편성을 통한 연례적 이전용 최소화를 통해, 형사보상금 부족분 충당을 위한 연례적 감액 전용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

12) 부처 건의사항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3	85,894	-	85,894	5	△628	-	85,270	85,223	99.2	99.9	37	10
2024	86,475	-	86,475	37	△1,381	-	85,131	84,934	98.2	99.8	145	52
2025	47,838	37,826	85,664	145	△681	-	85,128	80,983	94.5	95.1	65	4,078
2026	87,824	-	87,824		-	-	87,552	53,968	61.5	61.6	-	-

2) 주요 결산사항

□ 2023~2026년 결산사항

2023	- 형사보상금 부족으로 628백만원 전용 감, 고용부담금 및 공공요금 부족으로 사업내 전용, 이상동기 중대강력범죄의 유형과 원인 등에 대한 심층 분석 연구용역 기간 미도래로 인한 31백만원 이용, 직접공조(조약외 공조) 관련 주요 외국의 법령 및 실무 연구용역 계약금 지급 연기로 6백만원 이용
2024	- 형사보상금 부족으로 1,740백만원 전용 감, 국내여비 부족으로 360백만원 전용 증, 공공요금 및 국내여비 부족으로 사업 내 전용, 구호및교정비 9백만원, 일반연구비 2백만원 등 집행잔액 52백만원 불용, 연구용역 기간 미도래 등으로 일반연구비 145백만원 이월
2025	- 형사보상금 부족으로 681백만원 전용 감, 공공요금 부족으로 1,750백만원 사업 내 전용, 국내여비 부족으로 19백만원 사업 내 전용, 공무직 퇴직연금 부담금 부족으로 357백만원 사업 내 전용
2026	- 비정형데이터 비식별화 솔루션 도입으로 337백만원 전용 감

□ 2026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자체전용 (2026.3.31.)	형사부등 수사지원 (1335-301)	430-01	337	검찰업무정보화(정보화)	430-01	비정형데이터 비식별화 솔루션 도입

□ 2026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 해당없음

사 업 명
공판활동지원 (1337 - 3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법무부	검찰국		020	022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법무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300	1337	300
명칭	형사사법활동	공판활동 및 형집행	공판활동지원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6예산 시 소관
	O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공판활동 지원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검찰국	나하나	검사 구자원	수사관 나민수
		검찰과	02-2110-4190	02-2110-4194	02-2110-4209
	사업시행주체	-	-	-	-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년 결산	2026년 예산		2027년		증감 (B-A)	(B-A)/A
		본예산(A)	추경	요구안	조정안(B)		
공판활동지원	1,592	1,992	1,992	3,804	3,455	1,463	73.5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25					2026(2026.7월말)							2027 예산안
	예산액(추경)	예산현액	집행액[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현액	집행액[실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예상액	불용예상액	
									예산현액	집행액[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2,037	2,037	1,594	-	443	1,992	1,992	776	1,992	776	-	-	3,455
· 운영비(210)	990	990	982	-	8	989	989	441	989	441	-	-	2,452
· 여비(220)	8	8	7	-	1	8	8	8	8	8	-	-	8
· 업무추진비(240)	129	129	129	-	-	129	129	16	129	16	-	-	129
· 직무수행경비(250)	772	772	343	-	429	694	694	282	694	282	-	-	694
· 연구용역비(260)	50	50	50	-	-	19	19	-	19	-	-	-	19
· 보전금(310)	-	-	-	-	-	64	64	26	64	26	-	-	64
· 유형자산(430)	89	89	83	-	6	89	89	3	89	3	-	-	89
○ 비목별 분류(합계)	2,037	2,037	1,594	-	443	1,992	1,992	776	1,992	776	-	-	3,455
· 일반수용비(210-01)	152	152	147	-	5	151	151	37	151	37	-	-	307
· 공공요금및제세(210-02)	54	54	51	-	3	54	54	14	54	14	-	-	54
· 임차료(210-07)	784	784	784	-	-	784	784	390	784	390	-	-	2,091
· 국내여비(220-01)	4	4	4	-	-	4	4	4	4	4	-	-	4
· 국외업무여비(220-02)	4	4	3	-	1	4	4	4	4	4	-	-	4
· 사업추진비(240-01)	129	129	129	-	-	129	129	16	129	16	-	-	129
· 특정업무경비(250-03)	772	772	343	-	429	694	694	282	694	282	-	-	694
· 정책연구비(260-02)	50	50	50	-	-	19	-	-	-	-	-	-	19
· 포상금(310-03)	-	-	-	-	-	64	64	26	64	26	-	-	64
· 자산취득비(430-01)	89	89	83	-	6	89	89	3	89	3	-	-	89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2,037	2,037	1,594	-	443	1,992	1,992	776	1,992	776	-	-	3,455
· 운영비(210)	990	990	982	-	8	989	989	441	989	441	-	-	2,452
-일반수용비(210-01)	152	152	147	-	5	151					-	-	307
-공공요금및제세(210-02)	54	54	51	-	3	54					-	-	54
-임차료(210-07)	784	784	784	-	-	784					-	-	2,091
· 여비(220)	8	8	7	-	1	8	8	8	8	8	-	-	8
-국내여비(220-01)	4	4	4	-	-	4					-	-	4
-국외업무여비(220-02)	4	4	3	-	1	4					-	-	4
· 업무추진비(240)	129	129	129	-	-	129	129	16	129	16	-	-	129
-사업추진비(240-01)	129	129	129	-	-	129	129	16	129	16	-	-	129

	2025					2026(2026.7월말)							2027 예산안
	예산액(추경)	예산현액	집행액[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현액	집행액[실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예상액	불용예상액	
									예산현액	집행액[실집행액]			
· 직무수행경비(250)	772	772	343	-	429	694	694	282	694	282	-	-	694
-특정업무경비(250-03)	772	772	343	-	429	694	694	282	694	282	-	-	694
· 연구용역비(260)	50	50	50	-	-	19	19	-	19	-	-	-	19
-정책연구비(260-02)	50	50	50	-	-	19	19	-	19	-	-	-	19
· 보전금(310)	-	-	-	-	-	64	64	26	64	26	-	-	64
-포상금(310-03)	-	-	-	-	-	64	64	26	64	26	-	-	64
· 유형자산(430)	89	89	83	-	6	89	89	3	89	3	-	-	89
-자산취득비(430-01)	89	89	83	-	6	89	89	3	89	3	-	-	89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공소유지 지원)** 공소유지 및 공판부 검사실의 역량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활동비, 연구개발비 등 지원
- **(사건처리 및 양형기준 정립)** 새로운 양형기준에 상응·조화되는 공소청 사건처리기준 정립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형법,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 국민의 형사재판에 관한 법률
- 검찰청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② 추진경위

- 2007. 12. 21.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공판중심주의 적극적 대응
- 공판중심주의 실현의 토대 구축
- 2021. 9. 대구지검, 공익대표 전담팀 설치

- 2022. 1.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 제한에 따른 공소유지 활동의 중요성 증대
- 2022. 8. 부산지검, 비송사건 전담팀 설치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3	2024	2025	2026	2027(안)
사업비	2,561	2,037	1,265	1,992	3,455

- 기타: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법무부
- 사업 수혜자 :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7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

① 공소유지 지원 : (2026 본예산) 1,878 → (2027 예산안) 3,341백만원, 1,463백만원 증액

- 열람등사센터 복사기 임차 및 용지 구입비 1,463백만원 증액

2026년 본예산		2027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878	○ **일반수용비(210-01) : 136,354천원** ・67개청×2,035천원=136,354천원 ○ **임차료(210-07) : 783,875천원** ・67개청×11,759천원=787,875천원 ○ **사업추진비(240-01) : 120,243천원** ○ **특정업무경비(250-03) : 694,474천원** ・67개청×10,365천원=694,474천원 ○ **포상금(310-03) : 64,000천원** ○ **자산취득비(430-01) : 78,888천원**	3,341	○ **일반수용비(210-01) : 292,828천원** ・67개청×4,371천원=292,828천원 ○ **임차료(210-07) : 2,090,875천원** ・67개청×31,213천원=2,090,875천원 ○ **사업추진비(240-01) : 120,243천원** ○ **특정업무경비(250-03) : 694,000천원** ・67개청×10,358천원=694,000천원 ○ **포상금(310-03) : 64,000천원** ○ **자산취득비(430-01) : 78,888천원**

② 사건처리 및 양형기준 정립 : (2026 본예산) 114 → (2027 예산안) 114백만원, 전년동

2026년 본예산		2027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14	○ **일반수용비(210-01) : 15,000천원** ○ **공공요금 및 제세(210-02) : 54,000천원** ○ **국내여비(220-01) : 4,056천원** ○ **국외업무여비(220-02) : 3,610천원** ○ **사업추진비(240-01) : 8,500천원** ○ **정책연구비(260-02) : 19,000천원** ○ **자산취득비(430-01) : 10,000천원**	114	○ **일반수용비(210-01) : 15,000천원** ○ **공공요금 및 제세(210-02) : 54,000천원** ○ **국내여비(220-01) : 4,056천원** ○ **국외업무여비(220-02) : 3,610천원** ○ **사업추진비(240-01) : 8,500천원** ○ **정책연구비(260-02) : 19,000천원** ○ **자산취득비(430-01) : 10,000천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사건의 구공판 처리율 (%)	목표	10.5	12.0	13.0	삭제	삭제	해당없음		
	실적	15.0	14.7	15.0					
	달성도	142.9	122.5	115.4					
자유형 및 재산형 집행률 (%)	목표	83.65	80.07	80.12	80.7	삭제	최근 3년간 평균 자유형 및 재산형 집행률 실적치(79.65%) 보다 약 0.55% 상향	{(자유형 집행인원/자유형 접수인원 × 100) + (재산형 집행건수/재산형 처리건수 × 100)} / 2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및 검찰통계시스템
	실적	76.58	79.30	80.25	79.3	-			
	달성도	91.6	99.0	100.2	98.3	-			
범죄수익 보전 결정 건수 (건)	목표	신규	신규	신규	3,381	3,719	최근 3년간 평균 범죄수익 보전 결정 건수 실적치(3,471건) 보다 약 2.5% 하향	최초 목표치 설정 후 직전연도 목표치에서 10% 상향	형사사법 정보시스템(KICS) 중 범죄수익환수정보시스템(ISF)
	실적	신규	신규	신규	4,299	-			
	달성도	2,572	3,364	4,478	127.2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연도	2022	2023	2024	2025
구공판 건수	169,047	180,602	179,019	167,041

③ 향후(2027년도 이후) 기대효과

- 형사사건 공판 수행 능력 강화로 국가형벌권의 엄정한 집행
-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공판중심주의, 국민참여재판 대응 철저
- 검사의 공익대표로서의 역할 강화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특이사항 없음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25~2029	1,265	2,331	2,401	2,473	2,547	
2026~2030		1,992	2,191	2,257	2,324	2,394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① 정부 사업평가 : 해당사항 없음

②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ㅇ 공판역량강화 지원 사업의 개선방안 마련 필요('20회계연도 결산 국회 지적사항)

- 법무부는 향후 공판역량 강화 지원 사업의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증거법에 대한 전문성 강화 등 공판검사의 역량을 강화하고 효율적 공소유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시행할 것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ㅇ 예산집행실적이 부진하다는 지적에 따라 2021년 공판역량 강화 지원 사업 일반수용비를 적극적으로 집행하였고, '21. 예산액 8,900만원 중 81,885,480원을 집행하여, 집행율은 92.0%로서 전년 집행율 56.1% 대비 35.9%p 증가

ㅇ 세부사업내용이 부실하다는 지적에 따라, 당초 공판검사 역량 강화 집합교육, 회의 개최 및 공소유지 전문지원 TF 운영을 계획하였으나,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에 따라 원활하게 진행하지 못하여 향후 정책 변화에 따라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임

ㅇ 그 외에도 각 청 수요에 따라, 공판수행매뉴얼 등 책자 제작, 제도개선 등 공판수행 검사의 역량강화를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시행하겠음

③ 감사원 지적 : 해당사항 없음

④ 기타 언론 및 민원 : 해당사항 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공판중심주의와 국민배심재판 제도 도입으로 인한 직원교육 등 인적·물적 지원으로 효율성 증대
- 속기·녹취를 통한 공판조서 충실화로 공판중심주의 실현의 토대 구축
- 증거서류분리제출 및 공판중심주의로 인한 전산사무기기(복사기 등)를 지원하여 민원인의 편의 및 업무효율성 증대
- 검사의 공익대표 역할 강화를 통해 사회적 약자 권리 보호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2) 동 사업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 : 해당없음

13) 2026년도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 결과 및 후속 조치 현황 : 해당없음

14) 부처 건의사항

○ 지원 필요성 - 국민참여재판 제도 도입으로 인한 인적·물적 시설 지원 - 공판중심주의 강화로 인한 공판업무 지원 및 증인 출석을 위한 활동 지원 - 확정기록 열람·등사 제도 및 증거개시제도 도입으로 인한 기록 열람·등사 업무 지원 - 양형기준에 상응하는 검찰 사건처리 기준 정립 필요 - 공익대표 역할 강화 필요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3	2,561	-	2,561	-	△10	-	2,551	2,551	99.6	100.0	-	-
2024	2,037	-	2,037	-	△2	-	2,035	2,034	99.9	99.9	-	1
2025	1,265	772	2,037	-	-	-	2,037	1,594	78.3	78.3	-	443
2026	1,992	-	1,992	-	-	-	1,992	776	39.0	39.0	-	-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 해당없음

2) 주요 결산사항

□ 2023~2026년 결산사항

2023	- (이·전용 내역 및 사유) 형사보상금 부족으로 10백만원 전용 감
2024	- (이·전용 내역 및 사유) 형사보상금 부족으로 2백만원 전용 감
2025	- (이월/불용) 특정업무경비 12개월분 연중 추경 편성에 따른 4개월분 미집행 등 집행잔액 111백만원 불용
2026	- 해당없음

□ 2026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

□ 2026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 해당없음

사 업 명
형집행 및 범죄수익환수 (1337 - 3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법무부	검찰국		020	022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법무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300	1337	301
명칭	형사사법활동	공판활동 및 형집행	형집행 및 범죄수익환수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6예산 시 소관
	O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형집행 및 범죄수익환수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검찰국	나하나	검사 구자원	수사관 나민수
		검찰과	02-2110-4190	02-2110-4194	02-2110-4209
	사업시행주체	-	-	-	-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년 결산	2026년 예산		2027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요구안	조정안(B)		(B-A)/A
형집행 및 범죄수익환수	7,078	6,620	6,620	8,024	7,233	613	9.3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25					2026(2026.7월말)							2027 예산안
	예산액(추경)	예산현액	집행액[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현액	집행액[실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예상액	불용예상액	
									예산현액	집행액[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7,262	7,190	7,079	-	111	6,620	6,620	2,900	6,620	2,900	-	-	7,233
· 운영비(210)	5,997	5,950	5,946	-	4	5,272	5,272	2,375	5,272	2,375	-	-	5,956
· 여비(220)	437	467	461	-	6	438	438	395	438	395	-	-	438
· 업무추진비(240)	80	80	80	-	-	80	80	21	80	21	-	-	80
· 직무수행경비(250)	614	614	514	-	100	553	553	14	553	14	-	-	482
· 보전금(310)	102	60	60	-	-	246	246	94	246	94	-	-	246
· 유형자산(430)	31	19	18	-	1	31	31	1	31	1	-	-	31
○ 비목별 분류(합계)	7,262	7,190	7,079	-	111	6,620	6,620	2,900	6,620	2,900	-	-	7,233
· 일반수용비(210-01)	3,831	3,813	3,813	-	-	3,769	3,769	1,691	3,769	1,691	-	-	3,841
· 공공요금및제세(210-02)	1,439	1,439	1,439	-	-	790	790	349	790	349	-	-	1,402
· 임차료(210-07)	665	650	646	-	4	665	665	335	665	335	-	-	665
· 일반용역비(210-14)	14			-	-	-	-	-	-	-	-	-	-
· 기타운영비(210-16)	48	48	48	-	-	48	48	-	48	-	-	-	48
· 국내여비(220-01)	237	267	261	-	6	237	237	194	237	194	-	-	237
· 국외업무여비(220-02)	200	200	200	-	-	200	200	200	200	200	-	-	200
· 사업추진비(240-01)	80	80	80	-	-	80	80	21	80	21	-	-	80
· 특정업무경비(250-03)	614	614	514	-	100	553	553	14	553	14	-	-	482
· 포상금(310-03)	102	60	60	-	-	246	246	94	246	94	-	-	246
· 자산취득비(430-01)	31	19	18	-	1	31	31	1	31	1	-	-	31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7,262	7,190	7,079	-	111	6,620	6,620	2,900	6,620	2,900	-	-	7,233
· 운영비(210)	5,997	5,950	5,946	-	4	5,272	5,272	2,375	5,272	2,375	-	-	5,956
-일반수용비(210-01)	3,831	3,813	3,813	-	-	3,769	3,769	1,691	3,769	1,691	-	-	3,841
-공공요금및제세(210-02)	1,439	1,439	1,439	-	-	790	790	349	790	349	-	-	1,402
-임차료(210-07)	665	650	646	-	4	665	665	335	665	335	-	-	665
-일반용역비(210-14)	14			-	-	0	-	-	-	-	-	-	-
-기타운영비(210-16)	48	48	48	-	-	48	48	-	48	-	-	-	48
· 여비(220)	437	467	461	-	6	438	438	395	438	395	-	-	438
-국내여비(220-01)	237	267	261	-	6	237	237	194	237	194	-	-	237
-국외업무여비(220-02)	200	200	200	-	-	200	200	200	200	200	-	-	200

	2025					2026(2026.7월말)							2027 예산안
	예산액(추경)	예산현액	집행액[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현액	집행액[실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예상액	불용예상액	
									예산현액	집행액[실집행액]			
· 업무추진비(240)	80	80	80	-	-	80	80	21	80	21	-	-	80
-사업추진비(240-01)	80	80	80	-	-	80	80	21	80	21	-	-	80
· 직무수행경비(250)	614	614	514	-	100	553	553	14	553	14	-	-	482
-특정업무경비(250-03)	614	614	514	-	100	553	553	14	553	14	-	-	482
· 보전금(310)	102	60	60	-	-	246	246	94	246	94	-	-	246
-포상금(310-03)	102	60	60	-	-	246	246	94	246	94	-	-	246
· 유형자산(430)	31	19	18	-	1	31	31	1	31	1	-	-	31
-자산취득비(430-01)	31	19	18	-	1	31	31	1	31	1	-	-	31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형집행 일반)** 기록물관리시스템 RFID 태그 구입, 형 집행요원 활동비 등 형 집행부서 일반 활동 지원
- **(자유형 집행)** 재판에 의해 징역형 등의 자유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도주한 경우 추적, 검거하여 형을 집행하기 위한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및 구속(형)집행정지자 관찰여비, 보석 석방자 시찰여비 지원
- **(재산형 집행)** 재판에 의해 벌금, 추징 및 몰수금, 과태료 등을 선고받은 대상자가 벌금 등의 납부를 거부하거나 도주한 경우 대상자를 추적 및 검거하여 벌금 등을 납부하게 하거나, 납부하지 않을 경우 노역장 유치 또는 강제집행 조치를 취하는 등 재산형을 집행하기 위한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지원
- **(범죄수익 추적 환수 및 피해자 환부)** 범죄수익 추적, 환수 강화를 위한 범죄수익 환수반 운영비, 유관기관 회의, 활동비 등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형법,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민사집행법, 국세징수법
- 자유형 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법무부령)
-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법무부령)
- 검찰청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
-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 공무원범죄에관한몰수특례법
-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
- 불법정치자금등의몰수에관한특례법
- 부패재산의몰수및회복에관한특례법

② 추진경위

- 2018. 1. 벌과금 신용카드 납부제도 시행
- 2018. 7.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제도 시행
- 2018. 2. 노역장유치집행 중인 자의 재심사건 관련 집행 방안 송부
- 2018. 4. 재산형집행 검찰수사관 위해 방지 방안 마련
- 2018. 4. 유효기간 만료된 형집행장 갱신 및 지명수배입력 철저 지시
- 2018. 5. 환자의 벌과금 분납·납부연기에 관한 업무지침 제정·시행
- 2018. 6. 맞춤형 문자 전송을 활용한 재산형집행 우수사례 전파
- 2018. 7. 벌금형 집행유예 조정, 관리 지시
- 2018. 8. ~ 9. 공판송무부장 주재 수도권 지검 집행과 직원 간담회 개최
- 2018. 11. 정식재판청권회복 인용결정시 지연석방 방지 방안 송부
- 2019. 1. 재산형집행 업무편람(증보 9판) 및 전자북(e-book) 배부 및 활용 지시
- 2019. 3. 노역장유치집행 종결처리 지연 개선 방안 송부
- 2019. 7. 벌금수배자 신병인수 관련 유의사항 재시달
- 2019. 10. 형집행장 발부 및 관리 철저 재지시
- 2019. 10. 벌과금 수탁조정 시기 등 지시사항 송부
- 2020. 1. 벌과금미납자 검거·호송 전용차량 배정 및 지급
- 2020. 2. 재판형집행 평가방법 개선
- 2020. 2. 재산형집행시스템 유치집행 종결처리 누락 점검 지시

- 2020. 2.「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방지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벌금집행 탄력적 운용 지침」시달
- 2020. 3. 재산형집행 질의응답·우수집행 사례집 매부 및 활용 지시
- 2020. 4. 벌금미납자 사회봉사 적극 청구 지시
- 2020. 7. 지명수배 해제누락 일제점검 결과 유의사항 시달
- 2020. 9.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관련 출국금지 업무처리 지시
- 2020. 10. 주요 선진국 재산형집행기구에 대한 정책연구용역 연구결과 책자 배부
- 2020. 11. 형집행장 및 주요 죄명 16개 외국어 번역문 배부
- 2020. 12.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 관련 재산형집행 업무 지시사항 전파
- 2020. 12. 벌금미납 지명수배 입력 연기 지시
- 2020. 12. 코로나19 관련 벌금미납자 지명수배 해제 등 긴급 지시
- 2021. 1.「환자 등의 벌과금 분납·납부연기에 관한 업무지침」개정·시행
- 2021. 1.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상 벌금 분납신청 공동이용정보 적극 활용지시
- 2021. 3.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상 벌금 사회봉사신청 공동이용정보 적극 활용지시
- 2021. 4. 노역수형 무능력 벌금미납자 분납·납부연기 절차 개선사항 알림
- 2021. 5. 고액벌과금 등 집행 촉탁 관련 지시
- 2021. 7. 전자예금압류 긴급해제서비스 변경사항 안내
- 2021. 8. 벌금미납자 사회봉사 신청 시 경제적 능력 판단기준 원칙 변경 통보
- 2021. 8. 벌과금 분납·납부연기 비대면 업무처리 방안 활용 안내
- 2021. 8. 벌금 사회봉사 및 분납 등 홍보 포스터 배부 및 조치 안내
- 2021. 9. 벌과금 납부고지서 안내문 개선 알림
- 2021. 10. 형집행장에 의하여 검거된 벌금미납자에 대한 공제 방식 변경 지시
- 2021. 8. 실형선고 피고인 국외도피 방지를 위한 출국금지(정지) 검토 지시
- 2022. 6. 각급 검찰청 중형 선고 등 '주요 사건' 중심으로 자유형 미집행자 집중 검거기간 지정 및 검거활동 실시
- 2022. 6. 재산형 집행불능 업무처리 관리 철저
- 2022. 7. 추징보전된 제3자 재산 소송 관련 단기제척기간 유의사항 시달
- 2022. 8. 빈곤·취약계층 벌과금 집행방안 개선에 다른 업무 요청사항 전파
- 2022. 12. 자유형 미집행자 발생 억제를 위한 '불출석 피고인 검거 활성화 방안' 시행
- 2023. 2. 고액벌과금이 집중된 서울중앙지검, 인천지검, 수원지검 및 지역별 거점 검찰청인 대구지검, 부산지검, 대전지검, 광주지검 집행과에 고액벌과금 집행팀 신설
- 2023. 3. 자유형 집행 담당 수사관 현장대응력 강화 지원 예산 적극 사용 독려
- 2023. 3. '인권친화적 재산형집행절차 개선안' 시행, 형집행장 발부 전 소환절차 도입
- 2023. 3. 코로나19 상황 완화에 따라 형집행장이 발부된 미납액 100만 원 이상 벌금, 과료 지명수배 입력 지시
- 2023. 3. 벌금미납자 검거 시 유의사항 전파

- 2023. 3. ~ 12. 대검 통합사무감사 시 집행과 감사관 주재 일선청 집행과 직원 간담회 개최
- 2023. 6. 벌과금 환급채권 강제집행 관련 유의사항 전달
- 2023. 6. 「자유형집행 업무 편람」 개정3판 배포
- 2023. 7. 미납자 요청에 따른 노역장유치집행 가능 여부 전파
- 2023. 7. 취소·실효된 벌금형 집행유예 본조정 결과 점검 지시
- 2023. 8. 유치집행 및 사회봉사집행 종결처리 누락 점검 지시
- 2023. 8. 코로나19 방역 상황 안정화에 따른 조치사항 전파(형집행장이 발부된 모든 벌금, 과료 사건 지명수배 입력, 매월 3회 이상 검거활동 위한 현장출장 이행)
- 2023. 9.「가상자산 강제집행 매뉴얼」제작·일선청 배포, 법무연수원 재산형집행 실무 교육과정에 '가상자산 강제집행 실무' 과목 신설

< 범죄수익환수전담반 운영 >

- 2018. 2. 범죄수익환수과 출범
- 2018. 5. 유럽 범죄수익환수 네트워크 연례총회(CARIN) 참석
- 2018. 6. 범죄수익 환수 전담 수사관 교육
- 2018. 6. 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 출범
- 2018. 8. 해외불법재산 환수를 위한 미국 법무부와의 공조회의 참석
- 2018. 1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2018. 10. ~ 2018. 12. 범죄수익 환수 제도 개선 검사 T/F 회의 개최
- 2018. 10. ~ 2018. 12. 범죄수익 환수 제도 개선 수사관 T/F 회의 개최
- 2018. 11. 재산 국외도피 법령 개정 T/F 회의 개최
- 2018. 12. OECD 뇌물방지협약회의 참석
- 2018. 12. 범죄수익환수 신고 포상금 홍보 웹툰 제작
- 2018. 12. ㈜네이버와 범죄수익환수 신고 포상금 공익 배너 홍보 후원 협약 체결
- 2019. 2. 문체부 국가전광판(약 117기)를 통한 '범죄수익신고 포상금' 홍보 실시
- 2019. 3. 일선청 범죄수익환수 전담검사(39명) 및 수사관(27명) 교육 실시
- 2019. 4.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중대범죄 추가 개정안 시행
- 2019. 6. 범죄수익환수 업무 유관기관, 특사경 대상 환수 교육 실시
- 2019. 8. 부패재산몰수특례법 개정안 시행
- 2019. 11. 미국 법무부 범죄수익환수부서와 상호협력 방안 논의
- 2019. 11. 제6회 ARIN-AP 범죄수익환수 연수 참석
- 2020. 1. 제31기 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최종 상호평가 총회 참석
- 2020. 7. 한국형사소송법학회와 공동세미나 개최
- 2020. 9. 사경 추징보전 신청권 신설에 따른 '검찰사건사무규칙' 개정
- 2020. 11. 범죄피해재산 환부 절차에 관한 지침 제정 및 시행
- 2020. 12. 범죄수익환수정보시스템(ISF) 2차 고도화 사업 완료

- 2021. 4. LH 부동산 투기사건 일선청 범죄수익환수 지원
- 2021. 7. 수원·대구지검 범죄수익환수 전담팀 확대 운영
- 2021. 8. 범죄피해재산 환부 시스템 구축 사업 추진
- 2021. 12. 범죄피해재산 환부 시스템 정보자원 설치 완료
- 2022. 2. 서울남부·인천지검 범죄수익환수전담팀 확대 운영
- 2022. 4. 범죄피해재산 환부 시스템 구축 사업 완료 및 권역별 사용자 교육 실시
- 2022. 5. 범죄피해재산 환부 절차에 관한 지침 개정 및 시행
- 2022. 8. 대전·광주지검 범죄수익환수전담팀 확대 운영
- 2022. 9. 범죄피해재산 환부 사건 예시기록 발간·배포
- 2022. 9. 범죄수익환수 업무 일선청 찾아가는 교육 실시(검사·수사관 1,770명 대상)
- 2022. 9. 통합 범죄수익환수 정보 시스템 구축 사업 추진
- 2022. 10. 범죄수익환수 실적평가 개선 방안 시행
- 2022. 10. 아시아-태평양 범죄수익환수 네트워크(ARIN-AP) 총회 참석
- 2022. 10. 유엔 반부패협약(UNCAC) 제2주기 이행점검 수검국 현장실사 참석
- 2022. 11. 가상자산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 관련 검토의견 제출
- 2023. 1. 범죄수익환수 업무 일선청 화상 교육
- 2023. 3. 범죄수익환수 업무 개관 법무연수원 사이버교육(검사·검찰수사관 대상) 제작
- 2023. 3.~4. 서울동부지검, 서울북부지검 범죄수익환수팀 설치
- 2023. 4.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의장 등 대검찰청 방문 및 검찰총장 예방
- 2023. 4. 통합 범죄수익환수 정보 시스템 개통
- 2023. 4. 범죄수익환수 검사 전문화 교육 실시
- 2023. 4. 범죄수익환수 업무매뉴얼 개정판 발간·배포
- 2023. 5. 제7기 범죄수익환수 실무 과정(검찰수사관 집합교육) 실시
- 2023. 6. 범죄피해재산 환부업무 지도방문 실시(서울중앙지검 등 5개청 환부대상 사건 처리 실적 점검 등)
- 2023. 6. 범죄수익환수 정보 시스템(ISF) 실무 동영상 강의 제작
- 2023. 6.~11. 독일 형사소송법상 범죄피해재산 환부 절차 및 실무 사례, 해외 주요국의 가상자산 몰수·추징 집행 제도 및 실무 사례 정책연구 수행
- 2023. 7. 범죄수익환수 전담수사관 고검권역별 집합교육
- 2023. 7. 서울중앙지검 등 10개청 대상 범죄수익환수 주요사건 지정 및 관리 방안 시범 시행
- 2023. 9. 서울서부지검·의정부지검 범죄수익환수팀 설치
- 2023. 9. 범죄수익환수 우수사례 법무연수원 사이버교육(검찰수사관 대상) 제작
- 2023. 9.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국제형사경찰기구(INTERPOL) 합동회의(프랑스 리옹) 참석
- 2023. 10. 범죄수익환수 검사 전문화 교육 실시
- 2023. 10. 서울서부지검 등 2개청 대상 범죄수익환수 주요사건 지정 및 관리 방안 확대 시행

- 2023. 11. 범죄수익환수 TF 회의(춘천지검 및 경기 소재 지청 등 9개청 환수전담검사 대상)
- 2023. 11. 범죄피해재산 환부업무 지도방문 실시(서울남부지검 등 5개청 환부대상사건 절차 개시 지도 및 애로 및 건의사항 수렴, 제도개선 필요사항 발굴 등)
- 2023. 12. 제8기 범죄수익환수 실무 과정(검찰수사관 집합교육) 실시
- 2024. 1. 가상자산 범죄수익환수 실무교육(수도권 소재 검찰청 범죄수익환수 유관업무 담당직원 대상, 가상자산 몰수·추징보전 절차 및 집행 실무사례 교육)
- 2024. 1.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검토의견 제출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3	2024	2025	2026	2027(안)
사업비	7,300	7,262	7,262	6,620	7,233

- 기타: 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법무부
- 사업 수혜자 :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7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

① 형집행일반 : (2026 본예산) 961 → (2027 예산안) 962백만원, 1백만원 증액

- 중대범죄수사청 예산 이관에 따른 일반수용비 비목조정 1백만원 증액

2026년 예산		2027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961	○ **일반수용비(210-01) : 588,632천원** ・67개청×8,786천원=588,632천원 ○ **특정업무경비(250-03) : 228,368천원** ・67개청×3,408천원=228,368천원 ○ **포상금(310-03) : 144,000천원**	962	○ **일반수용비(210-01) : 589,243천원** ・67개청×8,795천원=589,243천원 ○ **특정업무경비(250-03) : 228,368천원** ・67개청×3,408천원=228,368천원 ○ **포상금(310-03) : 144,000천원**

② 자유형집행 : (2026 본예산) 330 → (2027 예산안) 330백만원, 전년동

2026년 예산		2027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338	○ **일반수용비(210-01) : 164,000천원** ○ **국내여비(220-01) : 69,115천원** ○ **특정업무경비(250-03) : 72,039천원** ・67개청×1,075천원=72,039천원 ○ **포상금(310-03) : 24,600천원**	330	○ **일반수용비(210-01) : 164,000천원** ○ **국내여비(220-01) : 69,115천원** ○ **특정업무경비(250-03) : 72,039천원** ・67개청×1,075천원=72,039천원 ○ **포상금(310-03) : 24,600천원**

③ 재산형집행 : (2026 본예산) 4,370 → (2027 예산안) 4,982백만원, 612백만원 증액

- 공공요금 612백만원 증액

2026년 예산		2027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4,370	○ **일반수용비(210-01) : 2,768,393천원** ・67개청×41,319천원=2,768,393천원 ○ **공공요금 및 제세(210-02) : 790,000천원** ・67개청×11,791천원=79,0,000천원 ○ **임차료(210-07) : 665,000천원** ○ **기타운영비(210-16) : 24,000천원** ○ **국내여비(220-01) : 45,240천원** ○ **사업추진비(230-01) : 19,000천원** ○ **포상금(310-03) : 27,400천원** ○ **자산취득비(430-01) : 30,525천원**	5,033	○ **일반수용비(210-01) : 2,768,393천원** ・67개청×41,319천원=2,768,393천원 ○ **공공요금 및 제세(210-02) : 1,402,000천원** ・67개청×20,925천원=1,402,000천원 ○ **임차료(210-07) : 665,000천원** ○ **기타운영비(210-16) : 24,000천원** ○ **국내여비(220-01) : 45,240천원** ○ **사업추진비(230-01) : 19,000천원** ○ **포상금(310-03) : 27,400천원** ○ **자산취득비(430-01) : 30,525천원**

④ 범죄수익 추적 환수 및 피해자 환부 : (2026 본예산) 960 → (2027 예산안) 960백만원, 전년동

- 체계적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유료 자료 발급비 100백만원 증액
- 해외 불법재산환수조사단 물품 구입비 29백만원 감액
- 특정업무경비 이관 71백만원 감액

2026년 예산		2027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960	○ **일반수용비(210-01) : 248,275천원** ・61개청×4,070천원=248,275천원 ○ **기타운영비(210-16) : 24,000천원** ○ **국내여비(220-01) : 123,000천원** ○ **국외업무여비(430-01) : 200,340천원** ・61개청×3,284천원=200,340천원 ○ **사업추진비(240-01) : 61,129천원** ○ **특정업무경비(430-01) : 252,524천원** ・61개청×4,140천원=252,524천원 ○ **포상금(310-03) : 50,420천원**	960	○ **일반수용비(210-01) : 319,595천원** ・61개청×5,239천원=319,595천원 ○ **기타운영비(210-16) : 24,000천원** ○ **국내여비(220-01) : 123,000천원** ○ **국외업무여비(430-01) : 200,340천원** ・61개청×3,284천원=200,340천원 ○ **사업추진비(240-01) : 61,129천원** ○ **특정업무경비(430-01) : 181,593천원** ・61개청×2,710천원=181,593천원 ○ **포상금(310-03) : 50,420천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사건의 구공판 처리율 (%)	목표	10.5	12.0	13.0	삭제	삭제	해당없음		
	실적	15.0	14.7	15.0					
	달성도	142.9	122.5	115.4					
자유형 및 재산형 집행률 (%)	목표	83.65	80.07	80.12	80.7	삭제	최근 3년간 평균 자유형 및 재산형 집행률 실적치(79.65%) 보다 약 0.55% 상향	{(자유형 집행인원/자유형 접수인원 × 100) + (재산형 집행건수/재산형 처리건수 × 100)} / 2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및 검찰통계시스템
	실적	76.58	79.30	80.25	79.3	-			
	달성도	91.6	99.0	100.2	98.3	-			
범죄수익 보전 결정 건수 (건)	목표	신규	신규	신규	3,381	3,719	최근 3년간 평균 범죄수익 보전 결정 건수 실적치(3,471건) 보다 약 2.5% 하향	최초 목표치 설정 후 직전연도 목표치에서 10% 상향	형사사법 정보시스템(KICS) 중 범죄수익환수정보시스템(ISF)
	실적	신규	신규	신규	4,299	-			
	달성도	2,572	3,364	4,478	127.2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17	범죄수익환수실적 2,542건 5,491억원
2018	범죄수익환수실적 3,247건 2조 4,390억원
2019	범죄수익환수실적 3,833건 1조 1,357억원
2020	범죄수익환수실적 3,481건 2조 9,438억원
2021	범죄수익환수실적 3,445건 5조 9,748억원
2022	범죄수익환수실적 4,534건 3조 4,484억원
2023	범죄수익환수실적 6,123건 7조 3,639억원
2024	범죄수익환수실적 6,983건 9조 370억원
2025	범죄수익환수실적 7,955건 3조 3,387억원

③ 향후(2027년도 이후) 기대효과

- 재산형 집행과 관련된 이론 및 실무능력을 갖춘 내부 및 외부 전문강사에 의한 집행담당자 실무교육 실시, 실효성 있는 집행기법 및 우수집행 사례 등을 다수 수록한 재산형집행 업무편람 증보판 발간 등을 통한 벌과금 집행 실무담당자의 업무역량 강화
- 벌과금 미납자 예금 채권에 대한 전자압류 강화, 강제 집행 매뉴얼을 적극 활용한

강제집행 강화, e-pros 재산형집행공유방 활성화 추진 등 벌과금 미납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강화 및 집행기법 공유 활성화로 벌과금 집행실적 제고

- 벌과금미납자 검거 호송 전용차량을 확보하여 집행 환경 개선 및 적극적인 집행 활동을 통한 재산형 집행실적 제고
- 벌과금 분납·납부연기 비대면 처리방안, 벌금 사회봉사 신청 경제적 능력 판단기준 상향, 사회봉사 및 분납 제도 활성화를 위해 홍보 포스터 제작, 벌과금 안내문 개선 등을 통해 사회적 약자 보호 및 노역유치 집행을 최소화하여 가족관계, 생계 활동이 단절되는 사례를 방지하고 신속한 사회복귀 촉진 기대
- 시효완성 전 현장출장 등 적극적인 집행활동을 전개하여 형식적인 시효연장으로 인한 국가행정력 낭비를 막고, 효율적인 인력 운용을 통하여 국가 형벌권 강화
- 주취자 또는 건강이상자에 대하여 직권 분납 허가 규정을 신설하였고, 검거된 미납자의 공제처리 방식을 인권친화적인 방향(검거당일 환형유치액 공제)으로 변경하여 벌금미납자의 인권보호에 기여
- 검거담당 직원 체력단련지원을 통해 검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형집행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여 엄정한 국가 형벌권 실현
- ‘범죄피해재산 환부 시스템 구축’ 및 ‘범죄피해재산 환부 절차 지침 제·개정 및 시행’을 통해 특정사기범죄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범죄피해재산 환부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실질적 범죄피해자 구제 기대
- 일선청 범죄수익환수반을 협업형 범죄수익환수팀으로 확대 개편하여 범죄수익의 국고귀속 증대 및 범죄피해재산의 효율적이고 신속한 환부 기대
- ‘범죄수익환수 업무 일선청 찾아가는 교육(전 구성원 교육)’, ‘범죄수익환수 타겟형 교육(검사 집합교육)’, ‘범죄수익환수 실무 과정(일반직 집합교육)’, ‘범죄수익환수 사이버 교육(검사·일반직 교육)’ 등 관련 교육 강화를 통해 전국 검찰청 구성원들의 범죄수익환수 업무 관련 지식 고양
- ‘통합 범죄수익환수 정보 시스템 구축 사업’을 통해 범죄수익환수 업무 효율성 극대화 및 차명재산 환수를 위한 민사소송 관련자료 활용도 제고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특이사항 없음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25~2029	6,648	7,803	8,059	8,324	8,597	
2026~2030		6,620	7,311	7,530	7,756	7,988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① 정부 사업평가 : ('25 회계)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 결과 '사업개선'

ㅇ 국가 형벌권 적용의 필수경비이며 사법공정성에 대한 국민체감도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해당사업의 타당성과 필요성이 인정되나, 형집행 사업 관련 내역사업의 효율적 편성 및 통합적 관리를 통한 사업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됨

②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ㅇ 소요기간을 고려한 정보시스템 고도화 예산 편성 필요('21회계연도 결산 국회 지적사항)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ㅇ 2022년도에 3차 고도화 및 차명재산 DB 구축을 골자로 하는 '통합 범죄수익환수 정보 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하여 2022년 9월 계약체결 후 개발 작업 진행 중임

ㅇ 2023년도에 사업 완료 상황을 고려하여 고도화 사업 예산은 전액 삭감하였으며, 추후 철저한 사전검토를 통한 예산을 편성할 예정임

③ 감사원 지적 : 해당사항 없음

④ 기타 언론 및 민원 : 해당사항 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공소청의 소재수사, 재산파악, 검거활동 강화 등 형집행 역량 강화를 통한 벌과금 집행실적 향상
- 전자 예금압류 및 추징보전 명령제도의 적극 활용, 재산형 집행 전담반 편성·운용을 통한 재산형 집행실적 향상 및 국가세입 증대
- 범죄수익환수 활동 강화를 통한 범죄수익 환수 철저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2) 동 사업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 : 해당없음

13) 2026년도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 결과 및 후속 조치 현황

평가결과	성과평가 주요내용	조치결과
사업개선	- 국가 형벌권 적용의 필수경비이며 사법공정성에 대한 국민 체감도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해당사업의 타당성과 필요성이 인정되나, 형집행 사업 관련 내역사업의 효율적 편성 및 통합적 관리를 통한 사업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됨	- 성과평가 결과를 참고하여 형집행 사업 관련 내역사업의 효율적 편성을 위한 예산 구조 변경을 고려하겠음

14) 부처 건의사항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3	7,300	-	7,300	111	-	-	7,380	7,379	101.1	100.0	-	-
2024	7,262	-	7,262	-	△10	-	7,252	7,221	99.4	99.6	-	31
2025	6,648	614	7,262	-	△72	-	7,190	7,079	97.5	98.5	-	111
2026	6,620	-	6,620	-	-	-	6,620	2,900	43.8	43.8	-	-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 해당없음

2) 주요 결산사항

□ 2023~2026년 결산사항

2023	- (이·전용 등 사유) 형사보상금 부족으로 31백만원 전용 감, 국내여비 부족으로 사업내 전용
2024	- (이·전용 등 사유) 형사보상금 부족으로 10백만원 전용 감, 국내여비 부족으로 사업 내 전용 - (이월 사유 및 불용 사유) 일반수용비, 자산취득비 등 집행잔액 30백만원 불용
2025	- (이·전용 등 사유) 형사보상금 부족으로 72백만원 전용 감, 국내여부 부족으로 사업 내 전용 - (이월/불용) 특정업무경비 12개월분 연중 추경 편성에 따른 4개월분 미집행 등 집행잔액 111백만원 불용
2026	- 해당없음

□ 2026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

□ 2026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 해당없음

사 업 명
형사보상 (1337-30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법무부	검찰국		020	022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법무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300	1337	302
명칭	형사사법활동	공판활동 및 형집행	형사보상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6예산 시 소관
	O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형사보상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검찰국	나하나	검사 구자원	수사관 박성인
		검찰과	02-2110-4190	02-2110-4194	02-2110-4216
	사업시행주체	-	-	-	-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년 결산	2026년 예산		2027년		증감 (B-A)	(B-A)/A
		본예산(A)	추경	요구안	조정안(B)		
형사보상	127,454	44,000	44,000	46,000	46,000	2,000	4.5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25					2026(2026.7월말)							2027 예산안
	예산액(추경)	예산현액	집행액[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현액	집행액[실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예상액	불용예상액	
									예산현액	집행액[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42,000	127,454	127,454	-	-	44,000	63,283	42,325	63,283	42,325	-	-	46,000
· 보전금(310)	42,000	127,454	127,454	-	-	44,000	63,283	42,325	63,283	42,325	-	-	46,000
○ 비목별 분류(합계)	42,000	127,454	127,454	-	-	44,000	63,283	42,325	63,283	42,325	-	-	46,000
· 손실보상금(310-01)	42,000	127,454	127,454	-	-	44,000	63,283	42,325	63,283	42,325	-	-	46,000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42,000	127,454	127,454	-	-	44,000	63,283	42,325	63,283	42,325	-	-	46,000
· 보전금(310)	42,000	127,454	127,454	-	-	44,000	63,283	42,325	63,283	42,325	-	-	46,000
-손실보상금(310-01)	42,000	127,454	127,454	-	-	44,000	63,283	42,325	63,283	42,325	-	-	46,00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형사보상금 등 지급)** 법원의 무죄판결 또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구속 피고인·피의자에 대한 형사보상금 지급, 무죄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이었던 자 또는 그 변호인이었던 자가 공판준비 및 공판기일에 출석하는데 소요된 경비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조항 적시

- 형사소송법
- 형사보상및명예회복에관한법률, 동법 시행령

② 추진경위

- 1958년 형사보상법 제정으로 보상금 지급 개시
- 2008년 무죄비용 보상제도 도입
- 무죄판결·불기소처분을 받은 구속 피고인·피의자에 대한 형사보상금 적정 지급을 통한 국가 형벌권의 정당성 유지 및 증대

-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이었던 자 또는 그 변호인이었던 자에게 공판준비 및 공판기일에 출석하는데 소요되는 여비 · 일당 · 숙박료와 변호인 선임료 등 보상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3	2024	2025	2026	2027(안)
사업비	40,000	40,000	42,000	44,000	46,000

- 기타: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법무부
- 사업 수혜자 :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7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

□ **형사보상금 등 지급 : (2026 본예산) 44,000백만원 → (2027 요구) 46,000백만원, 2,000백만원 증액**

2026년 본예산		2027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44,000	○ **손실보상금(310-01) : 44,000,000천원**	46,000	○ **손실보상금(310-01) : 46,000,000천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3~2027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사건의 구공판 처리율 (%)	목표	10.5	12.0	13.0	삭제	삭제	해당없음		
	실적	15.0	14.7	15.0					
	달성도	142.9	122.5	115.4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자유형 및 재산형 집행률 (%)	목표	83.65	80.07	80.12	80.7	삭제	최근 3년간 평균 자유형 및 재산형 집행률 실적치(79.65%) 보다 약 0.55% 상향	{(자유형 집행인원/자유형 접수인원 × 100) + (재산형 집행건수/재산형 처리건수 × 100)} / 2	형사사법 정보시스템(KICS) 및 검찰통계시스템
	실적	76.58	79.30	80.25	79.3	-			
	달성도	91.6	99.0	100.2	98.3	-			
범죄수익 보전 결정 건수 (건)	목표	신규	신규	신규	3,381	3,719	최근 3년간 평균 범죄수익 보전 결정 건수 실적치(3,471건) 보다 약 2.5% 하향	최초 목표치 설정 후 직전연도 목표치에서 10% 상향	형사사법 정보시스템(KICS) 중 범죄수익환수정보시스템(ISF)
	실적	신규	신규	신규	4,299	-			
	달성도	2,572	3,364	4,478	127.2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 해당없음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형사보상금 신청자에 대한 신속한 보상금 지급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특이사항 없음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25~2029	42,000	45,000	45,000	42,000	42,000	
2026~2030		46,000	49,000	49,000	44,000	44,000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ㅇ 형사보상금 부족분 충당을 위해 타 세부사업 예산을 과도하게 이·전용하여 집행하는 것을 지양하고, 형사보상금 소요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적정규모의 예산 편성과 함께, 필요시 예비비를 배정 받는 방안을 검토할 것('23회계연도 결산 국회 지적사항)
   - ㅇ 무죄 사건 평정 등 검사의 수사 과정상 과오를 줄이기 위한 제도적 노력을 기울이고, 형사보상금 예산 편성시 실제 예산의 집행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할 것('23회계연도 결산 국회 지적사항)
   - ㅇ 형사보상 기록 송부 지연 사례를 철저히 관리하고, 형사보상 청구인의 권리구제가 지연되지 않도록 관리대책을 마련할 것('23회계연도 결산 국회 지적사항)
2) 감사원 지적 : 해당사항 없음
3) 기타 언론 및 민원 : 해당사항 없음
4)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ㅇ '25년 예산을 전년대비 20억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음
     - '24년 400억원 → '25년 420억원
   - ㅇ 향후에도 형사보상금 부족분을 타 세부사업 예산에서 과도하게 이·전용하여 집행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필요시 예비비를 배정받는 방안을 검토하겠음
   - ㅇ '13. 7.경 국민권익위원회의 「무죄피고인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제도의 실효성 제고 방안」추진 권고와 관련하여, 대검찰청 공판송무과는 일선청에「형사보상 신청기록 신속 송부 이행 여부 점검지시」및 「'형사보상신청'기록 신속 송부 지시」공문을 시행하여 검찰에서의 신속한 기록송부체계를 확립함
   - ㅇ 또한, 형사보상 결정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서 2013년부터 형사보상 신청기록에 대한 법원 송부 지연 여부 등을 반기별로 점검하고 있음
   - ㅇ 향후에도 형사보상 결정의 신속성 제고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음
   - ㅇ 무죄가 선고된 사건은 과오 유형을 세분화하고 사건의 경중, 과오 정도에 따라 엄격하게 평정을 진행하여 무죄 평정 결과를 반기별로 인사부서에 제공함으로써 인사, 승진, 적격심사, 포상 등에 활용하고 있음
   - ㅇ 앞으로도 무죄 사건에 대한 엄정한 평정을 진행하고 평정 결과에 따른 검사의 책임을 더욱 강화하여 사건 처리시 보다 신중하게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ㅇ 2024년 대비 2026년 형사보상 예산을 40억원 증액하고 2025년의 경우 형사보상 예산 부족액을 예비비로 편성하여 집행하였으며,
   - ㅇ 향후에도 형사보상 적정 규모 예산 편성 및 예비비 편성 등의 방법을 통해 이·전용 금액을 최소화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적정수준 예산 편성하여 형사보상금 신청자에 대한 신속한 보상금 지급
- 적법절차 준수, 과학적 수사 등으로 무죄 피고인, 무혐의 피의자 최소화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2) 동 사업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 : 해당없음

13) 2026년도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 결과 및 후속 조치 현황 : 해당없음

14) 부처 건의사항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3	40,000	-	40,000	-	16,852	-	56,852	56,851	142.1	100.0	-	-
2024	40,000	-	40,000	-	37,225	-	77,225	77,219	193.0	100.0	-	6
2025	42,000	-	42,000	-	42,554	42,900	127,454	127,454	100.0	100.0	-	-
2026	44,000	-	44,000	-	-	-	63,283	42,325	96.2	66.9	-	-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 해당없음

2) 주요 결산사항

□ 2023~2026년 결산사항

2023	- 형사보상금 부족으로 2,202백만원 전용 증, 14,650백만원 이용 증
2024	- 형사보상금 부족으로 5,882백만원 전용 증, 31,343백만원 이용 증 - 집행잔액 6백만원 불용
2025	- 형사보상금 부족으로 42백만원 내역변경, 37,737백만원 이용 증, 4,775백만원 전용 증
2026	- 해당없음

□ 2026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자체전용 (2026.8.13.)	검찰청운영인건비(총액) (7002-101)	110-01	19,283	형사보상 (1337-302)	310-01	형사보상금 부족

□ 2026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 해당없음

사 업 명
형사법정비 (1338-3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법무부	검찰국		020	022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법무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300	1338	300
명칭	형사사법활동	형사사법선진화	형사법정비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6예산 시 소관
	O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형사법정비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검찰국	나하나	검사 구자원	수사관 박성인
		검찰과	02-2110-4190	02-2110-4194	02-2110-4216
	사업시행주체	-	-	-	-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년 결산	2026년 예산		2027년		증감 (B-A)	(B-A)/A
		본예산(A)	추경	요구안	조정안(B)		
형사법정비	218	349	349	453	453	104	29.8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25					2026(2026.7월말)							2027 예산안
	예산액(추경)	예산현액	집행액[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현액	집행액[실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예상액	불용예상액	
									예산현액	집행액[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349	227	218	-	9	349	349	258	349	258	-	-	453
· 운영비(210)	187	85	85	-	1	187	187	161	187	161	-	-	291
· 여비(220)	16	16	8	-	8	16	16	16	16	16	-	-	16
· 업무추진비(240)	16	16	16	-	-	16	16	16	16	16	-	-	16
· 연구용역비(260)	130	110	110	-	-	130	130	65	130	65	-	-	130
○ 비목별 분류(합계)	349	227	218	-	9	349	349	258	349	258	-	-	453
· 일반수용비(210-01)	173	82	81	-	1	173	173	159	173	159	-	-	277
· 임차료(210-07)	14	3	3	-	-	14	14	2	14	2	-	-	14
· 국내여비(220-01)	4	4	4	-	-	4	4	4	4	4	-	-	4
· 국외업무여비(220-02)	12	12	4	-	8	12	12	12	12	12	-	-	12
· 사업추진비(240-01)	16	16	16	-	-	16	16	16	16	16	-	-	16
· 일반연구비(260-01)	130	110	110	-	-	130	130	65	130	65	-	-	130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349	227	218	-	9	349	349	258	349	258	-	-	453
· 운영비(210)	187	85	85	-	1	187	187	161	187	161	-	-	291
-일반수용비(210-01)	173	82	81	-	1	173	173	159	173	159	-	-	277
-임차료(210-07)	14	3	3	-	-	14	14	2	14	2	-	-	14
· 여비(220)	16	16	8	-	8	16	16	16	16	16	-	-	16
-국내여비(220-01)	4	4	4	-	-	4	4	4	4	4	-	-	4
-국외업무여비(220-02)	12	12	4	-	8	12	12	12	12	12	-	-	12
· 업무추진비(240)	16	16	16	-	-	16	16	16	16	16	-	-	16
-사업추진비(240-01)	16	16	16	-	-	16	16	16	16	16	-	-	16
· 연구용역비(260)	130	110	110	-	-	130	130	65	130	65	-	-	130
-일반연구비(260-01)	130	110	110	-	-	130	130	65	130	65	-	-	13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형사법 정비 연구 지원)** 형벌 종류 간소화 등 시대 변화에 상응하는 형사실체법 개정을 위한 연구용역 발주, 해외 사법자료 번역 등 각종 연구 지원

- **(공청회 및 세미나 개최)** 다양한 연구자료 활용과 의견 수렴을 위한 형사법 개정 관련 공청회, 각종 회의, 세미나 등 연구 활동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조항 적시

- 2006. 5.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사법개혁위원회가 건의한 형사실체법 정비과제 법무부 위임
- 2006. 8. 30. 대통령 지시시항(50개 핵심과제 등에 대하여 비전 2030추진지시)
- 2007. 법무부 비전 2030 중심과제

② 추진경위

- 2016. 12. 성폭력 범죄 처벌규정 개선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 2017. 8. 스토킹처벌법 제정위원회 구성하여 운영
- 2018. 5. 불법사찰 처벌 관련 법령 제·개정 마련을 위한 TF 구성 및 운영
- 2020. 5. 낙태죄 개정 형법 개정 자문회의 구성 및 운영
- 2021. 7. 형사법(고유법 분야) 자문회의 구성 및 운영
- 2021. 7. 형사법(성범죄 분야) 자문회의 구성 및 운영
- 2021. 12. 형사법(가정폭력 분야) 자문회의 구성 및 운영
- 2021. 12. 형사법(디지털 압수수색 절차 분야) 자문회의 구성 및 운영
- 2021. 12. 형사법(간이공판절차 분야) 자문회의 구성 및 운영
- 2022. 1. 젠더폭력처벌법 개정 특별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
- 2022. 1. 디지털 압수수색절차 개선을 위한 형사법 자문회의 개최
- 2022. 2. 구속·체포영장 집행시 영장 사본 교부 의무화, 압수수색영장 집행시 대상자가 피고인 또는 피의자인 경우 영장 사본 교부 의무화 등「형사소송법」개정·시행
- 2022. 6. 위헌결정된「성폭력처벌법」상 미성년 피해자 증거능력 특례조항 관련, 아동 친화적인 증거보전절차를 신설하는 내용의 개정안 마련하여 국회 제출
- 2022. 12.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자동차에 건설기계 전부를 포함하도록 하는「특정범죄가중법」개정안 마련, 국회 제출('22. 10.), 공포
- 2022. 12.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13세로 하향 및 소년보호절차 개선, 소년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소년법」및「형법」개정안 제출
- 2023. 6. 보호처분 중 감호위탁 장소를 기존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보호시설"에서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한 감호위탁 시설 또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보호시설"로 변경하는 내용의「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시행

- 2023. 6.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감호위탁시설 지정 고시 제정·시행
- 2023. 7. 스토킹범죄의 반의사불벌죄 폐지, 온라인 스토킹에 대한 처벌 확대, 잠정조치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도입, 온라인 스토킹 유형 신설 등「스토킹처벌법」 개정·시행(일부 조항은 '24. 1. 시행)
- 2023. 8. 사형의 집행 시효 30년을 폐지하고, 영아살해·영아유기죄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시행
- 2023. 8.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위협하거나 이를 가할 것을 가장하여 공중을 협박하는 공중협박죄 신설,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를 처벌하는 내용의 「형법」 및「폭력행위처벌법」 개정 추진
- 2023. 10. 진술조력인의 지원 대상을 현행 13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확대, 19세미만피해자등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국선변호사 선정,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공판준비절차 및 증인신문장소 특례 규정 등「성폭력처벌법」 개정·시행
- 2023. 10.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형법」 개정안 입법예고('23. 8. ~ 9.) 및 국회 제출
- 2023. 11. 수사기관의 고소·고발장 접수 의무 명시, 각종 수사기한 정비, 검·경의 보완수사 분담 및 그 기준 정비, 재수사 사건의 처리절차 개선, 검·경 협력 활성화 등「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개정·시행
- 2023. 12.「헌법재판소법」에 따른 재심 절차에서 원판결보다 가벼운 형으로 확정된 피고인이 원판결에 의하여 재심절차에서 선고된 형보다 초과하여 형집행을 받은 경우에도 형사보상청구 규정 신설 등「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개정·시행
- 2024. 1. 특정중대범죄에 대해 수사 및 재판 단계에서 신상정보 공개에 대한 대상과 절차 등을 규정한「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정·시행
- 2024. 1.「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을 '미성년자'로 개정하는 내용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시행
- 2024. 2. 재판 중인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도피기간 동안 재판시효(25년)가 정지되도록「형사소송법」 개정·시행
- 2024. 7. 피해자의 재판기록 열람·등사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하고,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를 일반 살인·강도·조직폭력 등 '특정강력범죄'로 확대 하는 내용의「형사소송법」,「특정강력범죄법」,「성폭력처벌법」,「스토킹처벌법」,「아동학대처벌법」 개정 추진
- 2024. 7. 국민의 행정부담 완화 및 불편 해소를 위해 서식을 정비하는 내용의「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시행규칙」 및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 시행

- 2024. 10. 허위영상물 소지 · 시청 · 저장 · 구입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성폭력처벌법」 개정 · 시행
- 2024. 10.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형사사법업무 처리 기관의 전자 문서를 이용한 형사사법업무 수행 방법 및 절차를 정하는 내용의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 시행
- 2024. 10. 피고인이 판결 선고가 임박한 시점에 형사공탁을 하였을 때 법원이 피해자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 · 시행('25. 1.)
- 2024. 11. 국가안보를 포함한 국익보호를 위하여 간첩죄 적용 범위를 외국 등으로 확대하는 「형법」 개정 추진, 법사위 1소위 통과
- 2024. 11. 이른바 '술타기'로 음주측정을 방해하는 경우 음주운전이나 음주 측정 거부와 같이 처벌불원이나 종합보험 가입을 불문하고 처벌할 수 있도록 내용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개정, 시행 예정('25. 6.)
- 2024년, 형사 관계 법령 제·개정 및 국정과제 수행에 활용하기 위한 연구용역 수행

1	소년사건 피해자 보호 강화 및 형사미성년자 기준 연령 합리화 방안 연구
2	형법상 재산죄의 친족상도례 조항 개선 방안 연구
3	폭력범죄에 대한 잠정조치 도입 등 피해자 보호 강화 및 재범 억제 방안 연구
4	대규모 사기범죄 처벌 합리화를 위한 개선 방안 연구
5	수사기관별 수사절차 및 권한상 차이점에 관한 연구
6	특정경제사범 관리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7	노동분쟁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한 수사사법절차 개선방안

- 2024. 7. 형사사법제도 개선 및 선진 형사사법 서비스제공을 위한 개선방안 모색을 위해 「법무부 형사사법특별위원회」 구성 및 개선방안 논의(총 11회)

회의일시	회의명
2024. 7. 22.	형사사법특위 1차 전체회의
2024. 7. 22.	형사사법특위 수사·재판 지연 개선 소위원회 1차 회의
2024. 8. 12.	형사사법특위 수사·재판 지연 개선 소위원회 2차 회의
2024. 8. 21.	형사사법특위 선진 형사사법제도 소위원회 1차 회의
2024. 9. 6.	형사사법특위 수사·재판 지연 개선 소위원회 3차 회의
2024. 9. 20.	형사사법특위 선진 형사사법제도 소위원회 2차 회의
2024. 10. 16.	형사사법특위 수사·재판 지연 개선 소위원회 4차 회의
2024. 10. 18.	형사사법특위 선진 형사사법제도 소위원회 3차 회의
2024. 10. 31.	형사사법특위 수사·재판 지연 개선 소위원회 화상 회의
2024. 11. 13.	형사사법특위 수사·재판 지연 개선 소위원회 5차 회의
2024. 11. 22.	형사사법특위 선진 형사사법제도 소위원회 4차 회의

- 2025년 형사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 및 개선방안 논의(총 3회)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3	2024	2025	2026	2027(안)
사업비	350	349	349	349	453

- 기타: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법무부
- 사업 수혜자 :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7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

□ 형사법정비 : (2026 본예산) 349백만원 → (2027 요구) 453백만원, 104백만원 증액

① 형사법 정비 연구 지원

: (2026 본예산) 296백만원 → (2027 예산안) 400백만원, 104백만원 증액

-「법무부 형사법개정특별위원회」위원회 참석비 104백만원

2026년 본예산		2027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296	○ **일반수용비(210-01) : 153,855천원** ・1개과×153,855천원 = 153,855천원 **국외업무여비(220-02) : 11,906천원** ・1개과×11,906천원 = 11,906천원 ○ **국내여비(220-01) : 416천원** ○ **일반연구비(260-01) : 130,000천원**	400	○ **일반수용비(210-01) : 257,855천원** ・1개과×257,855천원 = 257,855천원 **국외업무여비(220-02) : 11,906천원** ・1개과×11,906천원 = 11,906천원 ○ **국내여비(220-01) : 416천원** ○ **일반연구비(260-01) : 130,000천원**

② 공청회 및 세미나 개최 지원

: (2026 본예산) 53백만원 → (2027 예산안) 53백만원, 전년동

2026년 본예산		2027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53	○ **사업추진비(240-01) : 15,581천원** ・1개과×15,581천원 = 15,581천원 ○ **일반수용비(210-01) : 19,300천원** ○ **임차료(210-07) : 14,302천원** ○ **국내여비(220-01) : 3,640천원**	53	○ **사업추진비(240-01) : 15,581천원** ・1개과×15,581천원 = 15,581천원 ○ **일반수용비(210-01) : 19,300천원** ○ **임차료(210-07) : 14,302천원** ○ **국내여비(220-01) : 3,640천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3~2027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사건의 구공판 처리율 (%)	목표	10.5	12.0	13.0	삭제	삭제	해당없음		
	실적	15.0	14.7	15.0					
	달성도	142.9	122.5	115.4					
자유형 및 재산형 집행률 (%)	목표	83.65	80.07	80.12	80.7	삭제	최근 3년간 평균 자유형 및 재산형 집행률 실적치(79.65%) 보다 약 0.55% 상향	{(자유형 집행인원/자유형 접수인원 × 100) + (재산형 집행건수/재산형 처분건수 × 100)} / 2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및 검찰통계시스템
	실적	76.58	79.30	80.25	79.3	-			
	달성도	91.6	99.0	100.2	98.3	-			
범죄수익 보전 결정 건수 (건)	목표	신규	신규	신규	3,381	3,719	최근 3년간 평균 범죄수익 보전 결정 건수 실적치(3,471건) 보다 약 2.5% 하향	최초 목표치 설정 후 직전연도 목표치에서 10% 상향	형사사법 정보시스템(KICS) 중 범죄수익환수정보시스템(ISF)
	실적	신규	신규	신규	4,299	-			
	달성도	2,572	3,364	4,478	127.2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3	**-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법령 개정 추진** · 2023. 8. 사형의 집행 시효 30년을 폐지하고, 영아살해·영아유기죄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시행 · 2023. 10.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보장하면서도 미성년 피해자를 2차 피해로부터 보호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시행 · 2023. 10.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형법」 개정안 입법예고('23. 8. ~ 9.) 및 국회 제출
2024	**- 형사사법특별위원회 구성 및 회의 총 11회 개최** **-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법령 개정 추진** · 2024. 1. 특정중대범죄에 대해 수사 및 재판 단계에서 신상정보 공개에 대한 대상과 절차 등을 규정한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정·시행 · 2024. 1. 재판 중인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도피기간 동안 재판시효(25년)를 정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시행 ·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위협하거나 이를 가할 것을 가장하여 공중을 협박하는 공중협박죄 신설,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를 처벌하는 내용의 「형법」 및 「폭력행위처벌법」 개정 추진(의원입법, '23. 8. 박대출의원 대표발의) · 2024. 7. 피해자의 재판기록 열람·등사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하고, 피해자 국선 변호사 제도를 일반 살인·강도·조직폭력 등 '특정강력범죄'로 확대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특정강력범죄법」, 「성폭력처벌법」, 「스토킹처벌법」,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추진 · 2024. 7. 국민의 행정부담 완화 및 불편 해소를 위해 서식을 정비하는 내용의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시행규칙」 및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시행 · 2024. 10. 허위영상물 소지·시청·저장·구입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성폭력처벌법」 개정·시행

	· 2024. 10. 피고인이 판결 선고가 임박한 시점에 형사공탁을 하였을 때 법원이 피해자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 · 시행('25. 1.) · 2024. 11. 국가안보를 포함한 국익보호를 위하여 간첩죄 적용 범위를 외국 등으로 확대하는 「형법」 개정 추진, 법사위 1소위 통과 · 2024. 11. 이른바 '술타기'로 음주측정을 방해하는 경우 음주운전이나 음주 측정거부와 같이 처벌불원이나 종합보험 가입을 불문하고 처벌할 수 있도록 내용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개정, 시행 예정('25. 6.)
2025	**-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법령 개정 추진** · 2025. 3.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하는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상습범은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형법」 공포 · 시행 · 2025. 4. 정당한 이유 없이 도로 · 공원등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거나 통행할 수 있는 공공장소에서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어 공중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내용의 「형법」 공포 · 시행 ·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신분비공개 수사 및 신분위장 수사를 도입하고, 피해자의 신변 보호를 위해 상담시설이나 보호시설로 인도할 수 있도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20535호, '24. 12. 3. 공포, '25. 6. 4. 시행 및 법률 제20575호, '24. 12. 20. 공포, '25. 6. 2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25. 5.) · 2025. 12. 현행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인 사기죄의 법정형을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고,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및 준사기죄의 법정형도 이에 맞추어 동일하게 상향하여 집단적 · 조직적 사기범죄를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사기범죄를 억제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형법」 공포 · 시행 · 살인, 인신매매, 강간, 강도 등 특정강력범죄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이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의견진술권과 소송행위에 대한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지는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가 변호사가 없는 경우에는 검사가 의무적으로 국선변호사를 선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공포('25. 12.) · 시행('26. 6.) **- 선진형 형사사법체제 정비** ·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 등이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하는 경우 재판장은 이를 원칙적으로 허가하되, 예외적으로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사용목적의 제한 또는 조건을 붙여 허가하는 경우에는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한 자에게 그 이유를 통지하도록 하여 범죄 피해자의 알 권리 및 형사절차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공포('25. 3.) · 시행('25. 9.) · 피해자의 신속한 권리구제 및 진술권 보장을 위하여 증거보전 후 관계 서류 및 증거물, 검사가 법원에 증거로 신청예정인 서류 등에 대해서도 피해자가 열람 · 등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피해자의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장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공포('25. 12.) · 시행('26. 6.) · 확정되지 않은 형사사건의 판결서도 열람 · 복사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알권리와 사법정보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공포('25. 12.) · 시행('27. 12.)
2026	· 형사실체법 정비를 통한 국민의 권익 보호 지속 추진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형사실체법 정비를 통한 국민의 권익 보호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특이사항 없음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25~2029	349	359	370	381	393	
2026~2030		349	360	370	381	393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ㅇ 형사법 정책연구용역 수행기간 등('21회계연도 결산 국회 지적사항)

- 2021년에 수행한 7건의 정책연구용역은 2021년 9월에서야 착수함에 따라 연구기간이 모두 3개월 내외의 단기로 설정되어 연구결과의 질적 수준을 담보하기 어렵고, 주로 현안 대응 위주의 단기 소액과제만 수행하고 있어 형사법 분야의 중장기적인 입법 개선을 위한 정책적 대응이 미흡한 측면이 있음
- 7건의 과제 모두 국가계약법령상 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 일반경쟁계약 체결을 위한 입찰 시도 없이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수행되었음

2) 감사원 감사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 해당없음

3) 자체평가·감사 : 해당없음

4)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 해당없음

5)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ㅇ 형사법정비 정책연구 사업과 관련하여 향후 수탁기관에 충분한 연구기간을 부여하며 장기연구과제를 병행하여 수행하는 등 중장기적 입법개선을 위한 정책연구 과제를 수행할 것이며, 수의계약 관련 시정요구사항을 적극 수용하여 이를 개선하는데 노력을 다하겠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형사실체법(형법), 형사절차법(형사소송법), 형사특별법 등 54개 소관법령에 대한 주무부서로서, 동 법령의 제·개정 입안, 제·개정 의견에 대한 검토, 이를 위한 조사·연구 등의 업무 수행

○ 동시에 타 부처 400여개의 행정법규에 포함된 형벌규정 및 관련절차 규정의 제·개정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시·조율하는 등 우리나라 형사법 체계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

○ 형사 관계 법령의 입안 및 제·개정을 위해 해외 입법례 및 운영현황 등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 국내 전문가 및 유관기관 사이의 충분한 협의를 거치고, 공청회를 개최하여 관련기관 및 국민의 여론을 폭넓게 수렴하여 제반 형사 관계 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관계 법령 상호간 모순·충돌되지 않도록 조율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2) 동 사업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 : 해당없음

13) 2026년도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 결과 및 후속 조치 현황 : 해당없음

14) 부처 건의사항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3	350	-	350	-	△108	-	242	237	67.8	98.1	-	5
2024	349	-	349	-	△10	-	339	337	96.6	99.4	-	2
2025	349	-	349	-	△122	-	227	218	62.5	96.0	-	9
2026	349	-	349	-	-	-	349	258	73.9	73.9	-	-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 해당없음

2) 주요 결산사항

□ 2023~2026년 결산사항

2023	- 형사보상금 부족으로 108백만원 전용 감 - 집행잔액 5백만원 불용
2024	- 형사보상금 부족으로 10백만원 전용 감 - 집행잔액 2백만원 불용
2025	- 형사보상금 부족으로 122백만원 전용 감 - 집행잔액 9백만원 불용
2026	- 해당없음

□ 2026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

□ 2026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 해당없음

교정활동

사 업 명
교도소 행정지원 (1531-3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법무부	교정본부	일반회계	020	022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500	1531	300
명칭	교정활동	교도소운영	교도소행정지원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O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교도소행정지원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교정본부	주기남	유 진	김현우
		복지과	02-2110-3420	02-2110-3423	02-2110-3429
	사업시행주체	-	-	-	-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년 결산	2026년 예산		2027년		증감 (B-A)	(B-A)/A
		본예산(A)	추경	요구안	조정안(B)		
교도소행정지원	51,242	52,918	52,918	59,593	59,593	6,675	12.6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5					2026(2026.7월말)							2027 예산안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51,516	51,416	51,242	-	174	52,918	52,918	35,369 (33,375)	52,918	35,369 (33,375)	-	-	59,593
· 교정기관 업무지원	9,620	9,621	9,561	-	60	8,076	8,076	5,098 (3,105)	8,076	5,098 (3,105)	-	-	9,280
· 공무직 처우개선	29,533	29,433	29,318	-	114	32,183	32,183	18,403	32,183	18,403	-	-	37,296
· 민간이전 사업	12,363	12,363	12,363	-	-	12,659	12,659	11,867	12,659	11,867	-	-	13,017
○ 비목별 분류(합계)	51,516	51,416	51,242	-	174	52,918	52,918	35,369 (33,375)	52,918	35,369 (33,375)	-	-	59,593
· 상용임금(110-03)	24,409	25,009	24,992	-	17	26,570	26,570	15,502	26,570	15,502	-	-	30,700
· 일반수용비(210-01)	3,597	3,614	3,609	-	5	1,433	1,433	303 (299)	1,433	303 (299)	-	-	2,021
· 공공요금및제세(210-02)	469	458	451	-	7	469	469	230	469	230	-	-	469
· 피복비(210-03)	48	48	48	-	-	48	48	-	48	-	-	-	48
· 임차료(210-07)	531	525	525	-	-	531	531	387 (386)	531	387 (386)	-	-	531
· 시설장비유지비(210-09)	-	-		-	-	79	79	23	79	23	-	-	79
· 복리후생비(210-12)	352	352	339	-	13	352	352	316	352	316	-	-	422
· 일반용역비(210-14)	298	298	297	-	1	2,540	2,540	2,453 (523)	2,540	2,453 (523)	-	-	3,255
· 국내여비(220-01)	447	447	446	-	1	447	447	316	447	316	-	-	447
· 국외여비(220-02)	100	100	99	-	1	100	100	100	100	100	-	-	100
· 사업추진비(240-01)	496	496	496	-	-	496	496	308 (307)	496	308 (307)	-	-	496
· 정책연구비(260-02)	300	300	290	-	10	100	100	-	100	-	-	-	0
· 포상금(310-03)	-	-		-	-	695	695	112	695	112	-	-	695
· 민간위탁사업(320-02)	2,345	2,345	2,345	-	-	2,419	2,419	1,627	2,419	1,627	-	-	2,490
· 법정민간대행(320-08)	10,018	10,018	10,018	-	-	10,240	10,240	10,240	10,240	10,240	-	-	10,527
· 고용부담금(320-09)	4,772	4,072	3,988	-	84	5,261	5,261	2,585	5,261	2,585	-	-	6,174
· 공사비(420-03)	1,516	1,516	1,485	-	31	572	572	351 (297)	572	351 (297)	-	-	572
· 자산취득비(430-01)	1,818	1,818	1,814	-	4	567	567	515 (512)	567	515 (512)	-	-	567

	2025					2026(2026.7월말)							2027 예산안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51,516	51,416	51,242	-	174	52,918	52,918	35,369 (33,375)	52,918	35,369 (33,375)	-	-	59,593
・교정기관 업무지원	9,620	9,621	9,561	-	60	8,076	8,076	5,098 (3,105)	8,076	5,098 (3,105)	-	-	9,280
-일반수용비(210-01)	3,597	3,614	3,609	-	5	1,433	1,433	303 (299)	1,433	303 (299)	-	-	2,021
-공공요금및제세(210-02)	469	458	451	-	7	469	469	230	469	230	-	-	469
-피복비(210-03)	48	48	48	-	-	48	48	-	48	-	-	-	48
-임차료(210-07)	531	525	525	-	-	531	531	387 (386)	531	387 (386)	-	-	531
-시설장비유지비(210-09)	-	-		-	-	79	79	23	79	23	-	-	79
-일반용역비(210-14)	298	298	297	-	1	2,540	2,540	2,453 (523)	2,540	2,453 (523)	-	-	3,255
-국내여비(220-01)	447	447	446	-	1	447	447	316	447	316	-	-	447
-국외여비(220-02)	100	100	99	-	1	100	100	100	100	100	-	-	100
-사업추진비(240-01)	496	496	496	-	-	496	496	308 (307)	496	308 (307)	-	-	496
-정책연구비(260-02)	300	300	290	-	10	100	100	-	100	-	-	-	0
-포상금(310-03)	-	-		-	-	695	695	112	695	112	-	-	695
-공사비(420-03)	1,516	1,516	1,485	-	31	572	572	351 (297)	572	351 (297)	-	-	572
-자산취득비(430-01)	1,818	1,818	1,814	-	4	567	567	515 (512)	567	515 (512)	-	-	567
・공무직 처우개선	29,533	29,433	29,318	-	114	32,183	32,183	18,403	32,183	18,403	-	-	37,296
-상용임금(110-03)	24,409	25,009	24,992	-	17	26,570	26,570	15,502	26,570	15,502	-	-	30,700
-복리후생비(210-12)	352	352	339	-	13	352	352	316	352	316	-	-	422
-고용부담금(320-09)	4,772	4,072	3,988	-	84	5,261	5,261	2,585	5,261	2,585	-	-	6,174
・민간이전 사업	12,363	12,363	12,363	-	-	12,659	12,659	11,867	12,659	11,867	-	-	13,017
-민간위탁사업(320-02)	2,345	2,345	2,345	-	-	2,419	2,419	1,627	2,419	1,627	-	-	2,490
-법정민간대행(320-08)	10,018	10,018	10,018	-	-	10,240	10,240	10,240	10,240	10,240	-	-	10,527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공무직 운영) 교정시설 운영을 위한 공무직 인건비, 복지비, 고용부담금 등 지원
- (직원근무 지원) 야근자 건강검진, 행사시설 임차, 여비(국내·외), 사업추진비 등 지원
- (민간시설 운영지원) 민영교도소 및 직장보육시설 운영지원
- (시설 지원) 교정기관 신축이전 지원 및 어린이집 시설개선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영유아보육법」제14조, 제37조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제23조, 「국제수형자이송법」

② 추진경위

- '04년 교정공무원 사기 진작 및 교정행정 업무지원을 위하여 사업 신설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3	2024	2025	2026	2027(안)
사업비	46,644	48,515	51,516	52,918	59,593

- 기타: 특이사항 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민간위탁(어린이집) 및 법정민간대행(민영교도소)
- 사업시행주체 : 법무부
- 사업 수혜자 : 교정공무원, 수용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7예산안)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민영교도소	보조	재단법인 아가페	10,527	90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

3) 2027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

① 교정기관 행정지원

: (2026 본예산) 8,076백만원 → (2027 요구) 9,280백만원, 1,204백만원 증액

- (요구) 안정적인 교도소 행정지원을 위해 교정공무원의 사기 진작, 정신건강회복 지원 등 처우개선 예산 요구
- (산출) 기동순찰팀 체력단련비 741백만원 증액
  야간근무자 특수건강검진 251백만원 증액
  교정공무원 정신건강회복 716백만원 증액
  특별사법경찰대 전문교육 지원 등 504백만원 감액

ㅇ 2026년도 예산 및 2027년도 예산안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6년 본예산		2027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8,076	○ **일반수용비(210-01) : 1,433백만원** 가. 사무실, 교육실 등 경비 ・8기관 × 67,500,000원 = 540백만원 나. 야간근무자 특수건강검진 ・6,040명 × 100천원 = 604백만원 다. 특별사법경찰단 전문교육 지원 ・269명 × 250천원 = 67백만원 ○ **공공요금및제세(210-02) : 469백만원** 가. 교정시설 공공요금 납부 = 469백만원 ○ **피복비(210-03) : 48백만원** 가. 특별사법경찰단 피복비 = 48백만원 ○ **임차료(210-07) : 531백만원** 가. 전국 교정기관 사용, 각종 시설 및 장비 임차 경비 ・ 58개 기관 × 9.16백만원 = 531백만원 ○ **시설장비유지비(210-09) : 79백만원** 가. 원주교도소 이전경비 ・1기관 × 79백만원 = 79백만원 ○ **일반용역비(210-14) : 2,540백만원** 가. 교정시설 유지관리 각종 용역 지원 ・6개 기관 × 50백만원 = 298백만원 나. 교정공무원 정신건강회복 프로그램 ・54개 기관 × 41.5백만원 = 2,242백만원 ○ **국내여비(220-01) : 447백만원** 가. 교정공무원 직무교육 여비	9,280	○ **일반수용비(210-01) : 2,021백만원** 가. 야간근무자 특수건강검진 ・6,040명 × 141.5천원 = 855백만원 나. 기동순찰팀 체력단련비 ・421명 × 150천원 × 12월 = 742백만원 다. 사무실, 교육실 등 경비 ・3기관 × 67,500,000원 = 203백만원 ○ **공공요금및제세(210-02) : 469백만원** 가. 교정시설 공공요금 납부 = 469백만원 ○ **피복비(210-03) : 48백만원** 가. 공무직 등 피복비 = 48백만원 ○ **임차료(210-07) : 531백만원** 가. 양곡 운송 등 임차 경비 지원 ・ 58개 기관 × 9.16백만원 = 531백만원 ○ **시설장비유지비(210-09) : 79백만원** 가. 교정기관 냉난방기 등 주요시설물 유지보수 ・1기관 × 79백만원 = 79백만원 ○ **일반용역비(210-14) : 3,255백만원** 가. 교정시설 유지관리 각종 용역 지원 ・6개 기관 × 50백만원 = 298백만원 나. 교정공무원 정신건강회복 프로그램 ・54개 기관 × 54.8백만원 = 2,958백만원 ○ **국내여비(220-01) : 447백만원** 가. 교정공무원 직무교육 여비

2026년 본예산		2027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 법무연수원 : 5,240명 × 75천원 = 393백만원 ・ 국가인재개발원 : 30명 × 1,800천원 = 54백만원 ○ **국외여비(220-02) : 99백만원** 가. 전국 교정기관 ・ 35명 × 2.8백만원 = 99백만원 ○ **사업추진비(240-01) : 496백만원** 가. 전국 교정기관 공식 업무협의 소요 경비 ・ 58개 기관 × 8.6백만원 = 496백만원 ○ **정책연구비(260-02) : 100백만원** 가. 교정 정책개발 연구비 - 1건 × 100백만원 = 100백만원 ○ **포상금(310-03) : 695백만원** 가. 본부, 청 우수직원 포상 - 95명*1,000,000원=95백만원 나. 일선기관 우수직원 포상 - 600명*1,000,000원=600백만원 ○ **공사비(420-03) : 572백만원** 가. 직장어린이집, 공무직 휴게실 등 설치 ・직장어린이집, 공무직 휴게실 등 설치 = 572백만원 ○ **자산취득비(430-01) : 567백만원** 가. 어린이집 교구 구입 ・ 9개 기관 × 10.5백만원 = 95백만원 나. 공무직 휴게실 물품 등 ・ 27개 기관 × 7.6백만원 = 206백만원 다. 교정기관 이전 관련 물품 구입 등 ・ 1개 기관 × 77백만원 = 77백만원		・ 법무연수원 : 5,240명 × 75천원 = 393백만원 ・ 국가인재개발원 : 30명 × 1,800천원 = 54백만원 ○ **국외여비(220-02) : 99백만원** 가. 전국 교정기관 ・ 35명 × 2.8백만원 = 99백만원 ○ **사업추진비(240-01) : 496백만원** 가. 전국 교정기관 공식 업무협의 소요 경비 ・ 58개 기관 × 8.6백만원 = 496백만원 ○ **포상금(310-03) : 695백만원** 가. 본부, 청 우수직원 포상 - 95명*1,000,000원=95백만원 나. 일선기관 우수직원 포상 - 600명*1,000,000원=600백만원 ○ **공사비(420-03) : 572백만원** 가. 직장어린이집, 공무직 휴게실 등 설치 ・직장어린이집, 공무직 휴게실 등 설치 = 572백만원 ○ **자산취득비(430-01) : 567백만원** 가. 어린이집 교구 구입 ・ 9개 기관 × 10.5백만원 = 95백만원 나. 공무직 휴게실 물품 등 ・ 27개 기관 × 7.6백만원 = 206백만원 다. 교정기관 이전 관련 물품 구입 등 ・ 1개 기관 × 77백만원 = 77백만원

② 공무직 처우개선

: (2026 본예산) 32,183백만원 → (2027 요구) 37,296백만원, 5,113백만원 증액

- (요구) 조리원, 청소원, 방호원 등 교정기관에서 근로하는 공무직 처우개선을 위해 예산 증액 요구
- (산출) 처우개선 전년대비 15.9% 반영 및 고용부담금 등 5,113백만원 증액

ㅇ 2026년도 예산 및 2027년도 예산안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6년 본예산		2027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32,183	○ **상용임금(110-03) : 26,570백만원** 가. 703명 × 37,795천원 = 26,570백만원 ○ **복리후생비(210) : 352백만원** 가. 703명 × 500천원 = 352백만원 ○ **고용부담금(320-09) : 5,261백만원** 가. 703명 × 7,482천원 = 5,260백만원	37,296	○ **상용임금(110-03) : 30,700백만원** 가. 703명 × 43,670천원 = 30,700백만원 ○ **복리후생비(210-12) : 422백만원** 가. 703명 × 600천원 = 422백만원 ○ **고용부담금(320-09) : 6,174백만원** 가. 703명 × 8,782천원 = 6,174백만원

③ 민간 이전 사업

: (2026 본예산) 12,659백만원 → (2027 요구) 13,017백만원, 358백만원 증액

- (요구) 민간이전사업 정상적 운영 및 처우개선을 위해 물가상승률 반영 등 예산 증액 요구
- (산출) 직장어린이집 운영경비 71백만원 증액 / 민영교도소 운영경비 287백만원 증액

ㅇ 2026년도 예산 및 2027년도 예산안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6년 본예산		2027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2,659	○ **민간위탁사업(320-02) : 2,419백만원** 가. 9개 어린이집 × 268.8백만원 = 2,419백만원 ○ **법정민간대행사업(320-08) : 10,240백만원** 가. 국영교도소 수용자 1인당 수용경비(28.44백만원) × 민영교도소 수용정원(400명)×보조율(90%) = 10,240백만원	13,017	○ **민간위탁사업(320-02) : 2,490백만원** 가. 9개 어린이집 × 276.7백만원 = 2,490백만원 ○ **법정민간대행사업(320-08) : 10,527백만원** 가. 국영교도소 수용자 1인당 수용경비(29.24백만원) × 민영교도소 수용정원(400명)×보조율(90%) = 10,527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3~2027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3	2024	2025	2026	2027	2027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재범고위험군 출소자 재복역률(%)	목표	35.6	35.3	35.3	33.0	32.9	최근 6년간 실적 평균치인 32.9%를 목표치로 설정함	REPI-4~5등급 판정을 받고 출소한 인원 중 2년 내 재복역 인원 / REPI-4~5등급 판정을 받고 출소한 인원	자체 통계 (교정행정 정보시스템)
	실적	30.4	31.3	31.8	-				
	달성도	114.6	113.3	109.9	-				
일일 평균 교정시설 수용률(%)	목표	4.85	지표 변경	-	-	-	- 지표변경	만족도 설문조사 점수 총계 / 응답자 수	재원원아 부모대상 설문조사
	실적	4.84	-	-	-	-			
	달성도	99.8	-	-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3	▪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을 위한 8개 기관 직장어린이집 운영 ▪ 교정공무원 야간근무자 특수건강검진 총 5,877명 실시 ▪ 수용자 자살 등 교정사고에 노출된 교정공무원의 정신건강 회복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결과 총 7,050명 실시
2024	▪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9개 기관 직장어린이집 지원 ▪ 수용자 자살 등 교정사고에 노출된 교정공무원의 정신건강 회복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결과 총 8,398명 실시
2025	▪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9개 기관 직장어린이집 지원 ▪ 국제교류 확대 및 국제적 위상 제고의 일환으로 아태본부장 회의 개최 ▪ 수용자 자살 등 교정사고에 노출된 교정공무원의 정신건강 회복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결과 총 7,722명 실시
2026	▪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9개 기관 직장어린이집 지원 ▪ 우수직원 포상으로 교정공무원 사기진작 ▪ 원주교도소 이전 지원 ▪ 수용자 자살 등 교정사고에 노출된 교정공무원의 정신건강 회복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상반기 운영 결과 총 6,159명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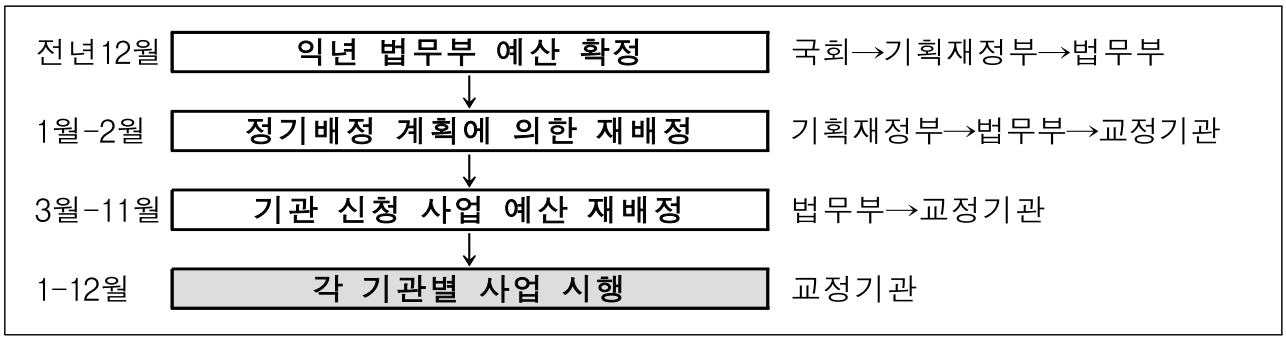
③ 향후(2027년도 이후) 기대효과 :

- ’10. 12. 개청한 민영교도소의 내실있는 운영을 통한 교정교화 효과 제고 및 민간 경영기법·교화프로그램 접목을 통한 교정처우의 선진화 도모
- 직장보육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소속 공무원의 육아부담 해소 및 정부의 출산장려·양성평등 정책 부응
- ’18년부터 교정본부(심리치료과)에서 직무스트레스를 경험하거나 및 수용자 자살 또는 자살기도 현장을 직접 목격하여 심리적 트라우마 등을 겪는 교정공무원을 대상으로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외부 전문기관과 ‘직원 지원 프로그램(EAP)’ 계약을 체결하여 외부 전문상담 등 실시를 통해 교정공무원의 정신건강 유지 및 업무역량 강화
- 교정관련 국제회의, 학술대회 참석 등을 통한 국제교류 확대 및 국제적 위상 제고
- 기동순찰팀 체력단련비 지원, 야간근무자 특수건강검진비 증액을 통한 교정공무원 사기진작 및 업무역량 강화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25~2029	51,516	52,918	46,884	45,897	44,417	
2026~2030		52,918	53,652	55,262	56,919	58,627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법무부는 '교정공무원 정신건강회복사업' 수행을 외부 민간전문기관에 위탁할 경우 일반용역비로 변경하여 예산을 편성·집행할 것
(2023회계연도 결산①)
- 법무부는 예산 사업을 당초 목적에 맞게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집행함으로써, 사업 목적을 벗어난 예산 집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할 것
(2023회계연도 결산②)
- 법무부는 교도소 이전 개청식 등 전문성을 요하는 행사를 용역계약 등을 통해 대행시킬 경우 "일반수용비"가 아닌 "일반용역비" 비목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도록 개선할 것
(2024회계연도 결산①)
- 법무부는 민영교도소 운영 위탁계약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반회계 교도행정예산'의 개념을 명확히 하여 위탁계약서 개정 등 제도개선 안을 마련할 것
(2024회계연도 결산②)

2) 감사원 지적 : 해당 없음

3) 기타 언론 및 민원 : 해당 없음

4)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2026년도 예산편성 시 적극 협의하여 관련 예산의 비목을 변경 완료하였음
(2023회계연도 결산①)

- 기관별 월별 집행 내역을 점검하고 혼용집행에 주의하도록 하였으며, 향후 어린이집 관련 예산을 혼용집행 하는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예산을 집행하겠음 (2023회계연도 결산②)
- 교정기관 개청식 행사에 전문성을 요하는 행사 대행 용역이 필요한 경우 일반용역비로 집행하는 등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겠음 (2024회계연도 결산①)
- '일반회계 교도행정 예산'의 구체적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위탁계약서 개정을 추진하겠음 (2024회계연도 결산②)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교정공무원의 국·내외 직무교육 및 업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 근무역량 향상 도모
- 교정기관 직원식당 조리원 등 상용직 채용 및 어린이집 운영 등 교정공무원 근무환경 개선으로 근무의욕 고취
- 민영교도소 운영으로 민간의 다양한 교화프로그램 도입 및 수용자 재범방지 효과 제고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2) 동 사업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 : 해당없음

13) 2026년도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 결과 및 후속 조치 현황

평가결과	성과평가 주요내용	조치결과
사업개선	- 사업목적의 포괄성으로 인해 체계적 관리 필요 - 타사업 예산 혼용 집행 등 재발 방지 필요 - 세부사업별 성과지표 필요	- 세부사업 구분 방안 검토 - 소속기관 순회점검 등 관리·감독 - '직장어린이집 이용 만족도' 성과지표 관리

14) 부처 건의사항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3	46,644	-	46,644		854	-	47,498	47,406	101.6	99.8		92
2024	48,515	-	48,515		301	-	48,816	48,090	99.1	98.5		727
2025	51,516	-	51,516	-	△100	-	51,416	51,416	99.5	99.7		170
2026	52,918	-	52,918	-	-	-	52,918	35,369	66.8	66.8	-	-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 직장어린이집 지원

(단위: 백만원, %)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본예산	추경(A)								
2023	2,303	2,303	2,303	2,303	-	2,303	2,303	-	-	100.0
2024	2,302	2,302	2,302	2,302	-	2,302	2,302			100.0
2025	2,345	2,345	2,345	2,345	-	2,345	2,345			100.0
2026. 7월기준	2,419	2,419	1,627	1,627	-	1,627	1,627			67.3

2) 주요 결산사항

□ 2023~2026년 결산사항

2023	- 상용직 근무자의 퇴직인원 증가에 따른 고용부담금 부족으로 사업내 400백만원 전용, 외부 의료시설 입원 전 수용자 및 계호직원에 대한 사전 PCR검사 요구에 따른 비용 부족으로 800백만원 전용 증, 불용액 92백만원은 집행잔액
2024	- 상용직 근무자의 퇴직인원 증가에 따른 고용부담금 부족으로 사업내 998백만원 전용 증, 교정공무원 호송여비 부족으로 290백만원 전용 감
2025	- 4대 보험료 및 퇴직금 등 연말 집행예정액 등을 감안 700백만원 이용 감
2026	- 사업 진행 중

□ 2026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

□ 2026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참고 1 야간근무자 특수건강검진비 증액

□ 추진배경

○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에 따라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교정공무원(월평균 128시간 야근)에 대해 특수건강검진 비용 지원

*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 : 월 60시간 이상 야간근무

□ 문제점 및 필요성

○ 특수건강검진 대상 직종 중 가장 낮은 검진비

【 유사기관 특수건강검진 단가 비교 】

구 분	교정공무원	경찰	소방	
			경기	충북
계	**100,000원**	**141,493원**	300,000원	200,000원

○ 낮은 검진단가로 인한 특수건강검진 효과 미흡

- 일반검진과 큰 차별화가 없고, 주요항목 검진이 곤란하여 참여율이 저조한 실정임

【 야간근무자 특수건강검진 항목 】

구분	검진항목(1차)		검진항목(2차)
야간 작업	신경계	수면장애 증상 문진·진찰	수면장애 심층상담, 24시간 혈압, 24시간 심전도, 심장초음파, 경동맥초음파
	심혈관계	혈압, 공복혈당, 총콜레스트롤, HDL콜레스트롤, LDL콜레스트롤, 중성지방, 심전도, 당화혈색소	

※ 경찰청 및 대학병원 자료

□ 개선방안

○ 특수건강검진 예산을 증액하여 소속 직원들이 건강검진을 통해 실질적으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내시경 검사, 초음파 검사, 암 요인 검사 등 건강검진 항목 추가

□ 소요 및 산출 근거

○ (소요금액) ('26) 604 → ('27) 855백 (+251백)

○ (산출근거) 6,040명* × 141,493원** = 855백만원

* 전체 교정공무원 16,812명 중 야간근무 인원 6,040명(36%)

** 특수건강검진비 '26년 경찰 단가 적용

참고 2 직원 정신건강 증진 프로그램 운영 확대

□ 추진배경

○ 교정직공무원은 직무 특수성에 따른 고위험 환경에 노출: 폐쇄된 공간에서 수용자와 24시간 밀착 근무하며 발생하는 극도의 긴장감과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위험 상존

○ 법무부 장관 교정시설(화성직업훈련교도소) 현장진단 시 직원 건의사항 등 현장의견 청취

장관님 지시사항 ('26. 1. 19. 화성직훈교 현장진단 시)

(건의사항) 현장 직원들의 직무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정신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확대 필요

(장관님 답변) 교정공무원 복지보건법 제정 등을 추진 중이며, 최소한 경찰, 소방과 비슷한 수준으로 직원 복지를 끌어올릴 예정임

□ 주요 사업내용

○ 심리상담 프로그램 확대 운영

- 자살, 폭행 등 교정사고 발생 건수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관련 사건처리 직원의 트라우마 극복 프로그램(긴급 심리지원) 확대

○ 직무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 확대 운영

- 직무 스트레스 대응력 강화를 위한 상시 회복 시스템 구축

① 신청에 의한 참여에서 전 직원 의무 참여(5년 주기)로 패러다임 전환

② 직원 참여율 10% → 20%로 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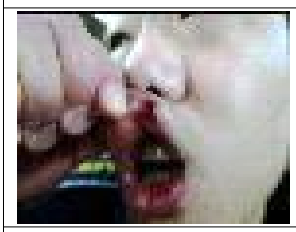
③ 참여주기 9년 → 5년으로 단축

참고 3 기동순찰팀(CRPT) 체력단련비 신설

□ 추진배경

○ 최근 교정시설은 흉악범, 조직폭력배, 마약사범, 정신질환 수용자 증가 등으로 시설 내 안전위험이 지속적 증가로 기동순찰팀(CRPT)의 교정시설 내 중요

○ 기동순찰팀(CRPT)의 주요 임무가 폭력 수용자 강제 제압, 집단 난동 진압, 자살 시도자 구조 등 일반 사무직 수준의 신체능력으로는 수행이 어렵고 지속적인 체력관리와 근력 유지가 필수

			
24. 3. 15. 15:20경 수용자는 출실하는 과정에서 상의에 숨겨나온 볼펜(17cm)으로 근무자의 좌측 후두부 가격함	2023. 11. 17. 20:10경 소란 및 직무방해 등으로 제지 후 팀실로 동행하는 중 수용자의 자해시도를 제지하다 이마부위 상처가 발생함	22. 5. 13. 11:10경 보호실 내 인터컴을 훼손하고 있는 것을 제지하기 위해 직원들이 보호실 문을 열고 들어가던 중, 김○○이 오른손에 들고 있던 인터컴을 휘둘러 직원 머리를 폭행함	23. 8. 10. 수용자가 근무자에게 달려드는 것을 팀원들이 저지하는 과정에서 직원을 밀치며 뿌리치고 머리로 들이받아 우측 눈썹부위가 찢어지는 폭행
			
2025. 1. 15 수용팀사무실에서 상담하던 수용자가 불이익한 처우를 받을 것을 예감하고 갑자기 일어나면서 주먹으로 입술부위를 폭행	2025. 3. 14. 수용자간 욕설 및 난동 등으로 출동해 벽에 머리를 박는 등 자해행위를 하여 머리보호장비를 사용 중 직원을 깨물어 위 진단 다발성 열상 2주 정도의 피해가 발생함	2025. 5. 12. 09:40경 수용자가 극도로 흥분해 소란행위를 하여, 신체 검사 중 위력으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직원의 좌측 중지 골절 6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힘	2025. 6.5. 10:20경 근무자의 지시불이행 및 소란 등으로 보호장비 착용 시 극도로 저항하여 전치 2주의 찰과상 진단

□ 개선방안

○ 수용자 폭력에 초동초치하는 CRPT(기동대)대한 위해(危害) 사건이 빈발하고 있어, 진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사전 예방하고, 효과적인 진압 활동을 위해 무술 및 체력단련 교육비를 지원

참고 4 **민영교도소 운영경비 지원**

1 개요

- 명칭 : 소망교도소
- 주소 : 경기도 여주시 북내면 아가페길140
- 대지 총면적 : 76,433㎡(23,121평)
- 건물 연면적 : 14,670㎡(4,437평)
- 수용 대상 : 2범 이하, 형기 7년 이하 잔형기 1년 이상 수용자로서 만 20세 이상 60세 미만 남자(공안, 조직폭력, 마약류 사범 등 제외)
- 직원정원 : 130명
- 수용정원 : 400명



※ 건축 및 토지 매입 비용 약 300억원 (재)아가페 자체 부담

○ 추진 경과

- '98. 11. 민영교도소 도입관련 공청회 개최 등 여론 수렴
- '00. 1.「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제정
- '03. 1. (재)아가페, 경기도 여주군 북내면 소재 부지 마련(약 60,892평)
- '03. 2. 법무부, (재)아가페와 위탁계약 체결(계약기간 12년)
- '08. 7. (재)아가페, 서희건설과 시설공사계약 및 건축 기공식
- '10. 11. 민영(소망)교도소 시설 등 검사 및 시험운영
- '10. 12. 1. 소망교도소 업무개시, 수용인원 30명
- '14. 1. 수용정원 300명 → 350명으로 증원
- '15. 2. 4. 위탁계약서 갱신 [계약기간 20년(2035. 2. 3.까지)]
- '17. 1. 수용정원 350명 → 400명으로 증원
- '18. 5. 신공장동 (비전센터) 증축
- '21. 9. 원격의료시스템 개통
- '25. 10. 직원 주차장 등에 태양광 패널 설치 및 임대(수익 창출 추진)

2 관련 규정

❒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운영 경비)**

① 법 제23조에 따라 교정법인에 지급할 경비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일반회계에 속하는 **해당 연도 교정행정 예산의 총액과 그 예산에 계상된 수용인원을 기준으로 1인당 수용경비를 산정**하고, 위탁수용 대상자의 인원과 특성 등을 고려하여 위탁계약으로 정한다.

❒ **「민영교도소 설치·운영 등 교정업무 위탁계약서」**

제65조(예산반영 방법) ①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에 반영되는 **일반운영경비는 「일반회계 교도행정예산」에서 당해 예산에 계상된 총 수용인원으로 산출되는 수용자 1인당 수용경비에 민영교도소 수용정원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으로 한다.

제66조(운영경비 지급) ① "갑"은 **제65조의 규정 등에 의하여 확정된 예산의 90%까지 "을"에게 지급할 수 있다**(이하 생략).

사 업 명
교정시설장비운용 및 현대화 (1531-30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법무부	교정본부	일반회계	020	022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500	1531	302
명칭	교정활동	교도소운영	교정시설장비운용및현대화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O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교정시설 장비 운용 및 현대화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교정본부	주기남	유 진	김현우
		복지과	02-2110-3420	02-2110-3423	02-2110-3429
	사업시행주체	-	-	-	-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년 결산	2026년 예산		2027년		증감 (B-A)	(B-A)/A
		본예산(A)	추경	요구	조정(B)		
교정시설 장비 운용 및 현대화	83,720	91,557	91,557	133,225	133,225	41,668	45.5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5					2026(2026.7월말)							2027 예산안
	예산액(추경)	예산현액	집행액[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현액	집행액[실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예상액	불용예상액	
									예산현액	집행액[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85,596	86,616	83,720	-	2,739	91,557	91,557	60,275 (39,956)	91,557	60,275 (39,956)	-	-	133,225
· 교정시설 유지관리	14,338	14,338	14,337	-	1	15,641	15,641	12,250 (10,432)	15,641	12,250 (10,432)	-	-	20,527
· 교정시설 개보수	45,730	50,158	49,292	-	731	53,443	53,443	31,705 (18,559)	53,443	31,705 (18,559)	-	-	72,443
· 교정장비 현대화	25,528	22,120	20,091	-	2,007	22,473	22,473	16,320 (10,965)	22,473	16,320 (10,965)	-	-	40,255
○ 비목별 분류(합계)	85,596	86,616	83,720	-	2,739	91,557	91,557	60,275 (39,956)	91,557	60,275 (39,956)	-	-	133,225
· 일반수용비(210-01)	1,327	1,327	1,326	-	1	2,119	2,119	1,529 (1,422)	2,119	1,529 (1,422)	-	-	2,157
· 시설장비유지비(210-09)	13,011	13,011	13,011	-	-	13,522	13,522	10,721 (9,010)	13,522	10,721 (9,010)	-	-	18,370
· 기본조사설계비(420-01)	126	126	41	-	86	61	61	52 (33)	61	52 (33)	-	-	61
· 실시설계비 (420-02)	3,150	1,150	1,077	-	73	1,866	1,866	619 (553)	1,866	619 (553)	-	-	3,943
· 공사비(420-03)	41,611	48,011	47,750	-	126	50,737	50,737	30,877 (17,898)	50,737	30,877 (17,898)	-	-	67,660
· 감리비(420-04)	680	703	354	-	349	608	608	122 (61)	608	122 (61)	-	-	608
· 시설부대비(420-05)	163	168	70	-	97	171	171	35 (14)	171	35 (14)	-	-	171
· 자산취득비(430-01)	25,528	22,120	20,091	-	2,007	22,473	22,473	16,320 (10,965)	22,473	16,320 (10,965)	-	-	40,255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85,596	86,616	83,720	-	2,739	91,557	91,557	60,275 (39,956)	91,557	60,275 (39,956)	-	-	133,225
· 교정시설 유지관리	14,338	14,338	14,337	-	1	15,641	15,641	12,250 (10,432)	15,641	12,250 (10,432)	-	-	20,527
-일반수용비(210-01)	1,327	1,327	1,326	-	1	2,119	2,119	1,529 (1,422)	2,119	1,529 (1,422)	-	-	2,157
-시설장비유지비(210-09)	13,011	13,011	13,011	-	-	13,522	13,522	10,721 (9,010)	13,522	10,721 (9,010)	-	-	18,370
· 교정시설 개보수	45,730	50,158	49,292	-	731	53,443	53,443	31,705 (18,559)	53,443	31,705 (18,559)	-	-	72,443
-기본조사설계비(420-01)	126	126	41	-	86	61	61	52 (33)	61	52 (33)	-	-	61
-실시설계비 (420-02)	3,150	1,150	1,077	-	73	1,866	1,866	619 (553)	1,866	619 (553)	-	-	3,943
-공사비(420-03)	41,611	48,011	47,750	-	126	50,737	50,737	30,877 (17,898)	50,737	30,877 (17,898)	-	-	67,660

	2025					2026(2026.7월말)							2027 예산안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감리비(420-04)	680	703	354	-	349	608	608	122 (61)	608	122 (61)	-	-	608
-시설부대비(420-05)	163	168	70	-	97	171	171	35 (14)	171	35 (14)	-	-	171
· 교정장비 현대화	25,528	22,120	20,091	-	2,007	22,473	22,473	16,320 (10,965)	22,473	16,320 (10,965)	-	-	40,255
-자산취득비(430-01))	25,528	22,120	20,091	-	2,007	22,473	22,473	16,320 (10,965)	22,473	16,320 (10,965)	-	-	40,255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교정시설 유지 관리) 교정시설 안전진단 검사 수수료, 환경설비 유지관리, 수용시설 유지관리 비용 등 지원
- (교정시설 개선 공사) 교정시설 과밀수용 해소 및 수용시설 현대화 관련 공사비 지원
- (교정시설 장비 개선) 교정시설 호송차량 구입, 방역장비 등 장비 개선을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교정시설 방호 및 교정장비 관리지침」

② 추진경위

- '95년 노후 교정시설의 적정한 유지 보수를 위하여 교정시설 및 장비운용 사업 신설
- '07년 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라 인력 중심의 교정시설 경비체계를 전자시스템을 통한 경비체계로 전환하는 등 장비 현대화를 위하여 교정시설현대화 사업 신설
- '16년 교정시설장비운용 및 현대화 사업으로 통합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3	2024	2025	2026	2027(안)
사업비	107,682	100,834	85,596	91,557	133,225

- 기타: 특이사항 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법무부

- 사업 수혜자 : 교정공무원 및 수용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7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

① 교정기관 시설유지 관리

: (2026 본예산) 15,641백만원 → (2027 요구) 20,527백만원, 4,886백만원 증액

- (요구) 중대재해처벌법 등 법정 안전관리 체계 마련을 위한 각종 시설유지관리 예산 지원 요구

- (산출) 전자경비시스템 유지보수 1,778백만원 증액
내진보강 성능평가 6,445백만원 증액
고속복사기 소모품 32백만원 증액
휴대용 마약탐지 소모품 6백만원 증액
전기, 조명설비 유지관리 등 3,375백만원 감액

ㅇ 2026년도 예산 및 2027년도 예산안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6년 본예산		2027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5,641	○ **일반수용비(210-01) : 2,119백만원** 가. 54개 기관 × 24.42백만원 = 1,319백만원 나. 10개 기관 × 2백만원 = 20백만원**(이온스캐너)** 다. 18개 기관 × 24.7백만원 = 444백만원(자위소방대 물품) ○ **시설장비유지비(210-09) : 13,522 백만원** 가. 전자경비시스템 유지보수 ・54기관 × 48.2백만원 = 2,604백만원 나. 일반시설 유지보수 ・ 54개 기관 × 193백만원 = 10,407백만원 다. 내진보강 성능평가 : 20,278㎡ × 25,200원 = 511백만원	20,527	○ **일반수용비(210-01) : 2,157백만원** 가. 54개 기관 × 24.42백만원 = 1,319백만원 나. 13개 기관 × 2백만원 = 26백만원**(이온스캐너)** 다. 18개 기관 × 24.7백만원 = 444백만원(자위소방대 물품) 라. 145개 × 221천원 = 32백만원(고속복사기 물품) ○ **시설장비유지비(210-09) : 18,370 백만원** 가. 전자경비시스템 유지보수 ・54기관 × 81백만원 = 4,382백만원 나. 일반시설 유지보수 ・54개 기관 × 130백만원 = 7,032백만원 가. 내진보강 성능평가 : 276,072㎡ × 25,200원 = 6,957백만원

② 교정시설 개보수

: (2026 본예산) 53,443백만원 → (2027 요구) 72,443백만원, 19,000백만원 증액

- (요구) 교정시설의 주요 기반시설 및 노후 수용동 등 개보수 예산 요구

- (산출) 공무상접견실 환경개선 2,894백만원 증액
내진보강 설계비 1,114백만원 증액
유휴 수용거실 개보수 12,797백만원 증액
직원 후생시설 개보수 2,875백만원 증액
영상재판실 환경개선 등 680백만원 감액

ㅇ 2026년도 예산 및 2027년도 예산안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6년 본예산		2027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53,443	○ **기본조사설계비(420-01) : 61백만원** ○ **실시설계비(420-01) : 1,866백만원** ・교정시설 소규모 개보수 설계비 = 732백만원 ・내진보강 설계비 13,125㎡× 35,200원 = 462백만원 ・비상대기소 설계비 1,698백만원× 4.24% = 71백만원 ・스프링클러 설치 설계비 6,955백만원×4.22% = 293백만원 ・오수처리 설계비 6,602백만원×3.15% = 208백만원 ・급수시설 설계비 3,147백만원×3.15% = 99백만원 ○ **공사비(420-03) : 50,737백만원** 가. 노후 교정기관 내 주요시설 등 개보수 ・54기관 × 940백만원 = 50,737백만원 ○ **감리비(420-04) : 608백만원** 가. 감리비 ・교정시설 소규모 개보수 감리비 = 234백만원 ・내진보강 감리비 10,311백만원 × 1.02% = 112백만원 ・비상대기소 감리비 1,698백만원 × 1.02% = 17백만원 ・스프링클러 설치 감리비 6,955백만원 ×1.41% = 98백만원 ・오수처리 감리비 6,602백만원 ×1.48% = 98백만원 ・급수시설 감리비 3,147백만원 ×1.48% = 47백만원 ○ **시설부대비(420-05) : 171백만원** 가. 시설부대비 ・교정시설 소규모 개보수 시설부대비 = 75백만원 ・내진보강 시설부대비 10,311백만원 × 0.36% = 37백만원 ・비상대기소 시설부대비 1,698백만원 × 0.36% = 6백만원 ・스프링클러 시설부대비 6,955 × 0.25% = 17백만원 ・오수처리 시설부대비 6,602백만원 × 0.36% = 24백만원 ・급수시설 시설부대비 3,147백만원 × 0.36% = 11백만원	72,443	○ **기본조사설계비(420-01) : 61백만원** ○ **실시설계비(420-01) : 3,943백만원** ・교정시설 소규모 개보수 설계비 = 732백만원 ・내진보강 설계비 44,773㎡ × 35,200원 = 1,576백만원 ・비상대기소 설계비 1,698백만원 × 4.24% = 71백만원 ・스프링클러 설치 설계비 6,955백만원 × 4.22% = 293백만원 ・오수처리 설계비 6,602백만원 × 3.15% = 208백만원 ・급수시설 설계비 3,147백만원 × 3.15% = 99백만원 ・공무상접견실 설계비 2664백만원 × 8.69% = 230백만원 ・유휴 수용거실 설계비 12,294백만원 × 4.1% = 504백만원 ・직원 후생시설 설계비 2,646백만원 × 8.69% = 229백만원 ○ **공사비(420-03) : 67,660백만원** 가. 노후 교정기관 내 주요시설 등 개보수 ・54기관 × 927백만원 = 50,057백만원 나. 공무상접견실 환경개선 ・79호실 × 34백만원 = 2,664백만원 다. 유휴 수용거실 개보수 ・4,773㎡ × 4.3백만원 × 60% = 12,294백만원 라. 직원 후생시설 개보수 ・4,778㎡ × 554천원 = 2,646백만원 ○ **감리비(420-04) : 608백만원** 가. 감리비 ・교정시설 소규모 개보수 감리비 = 234백만원 ・내진보강 감리비 10,311백만원 × 1.02% = 112백만원 ・비상대기소 감리비 1,698백만원 × 1.02% = 17백만원 ・스프링클러 설치 감리비 6,955백만원 ×1.41% = 98백만원 ・오수처리 감리비 6,602백만원 ×1.48% = 98백만원 ・급수시설 감리비 3,147백만원 ×1.48% = 47백만원 ○ **시설부대비(420-05) : 171백만원** 가. 시설부대비 ・교정시설 소규모 개보수 시설부대비 = 75백만원 ・내진보강 시설부대비 10,311백만원 × 0.36% = 37백만원 ・비상대기소 시설부대비 1,698백만원 × 0.36% = 6백만원 ・스프링클러 시설부대비 6,955 × 0.25% = 17백만원 ・오수처리 시설부대비 6,602백만원 × 0.36% = 24백만원 ・급수시설 시설부대비 3,147백만원 × 0.36% = 11백만원

③ 교정장비 현대화

: (2026 본예산) 22,473백만원 → (2027 요구) 40,255백만원, 17,782백만원 증액

- (요구) 수용질서 확립을 위한 AI 영상감지 시스템 등 첨단장비 도입, 비상대기소 모듈러 도입 등 예산 지원
- (산출) AI 영상감지 시스템 8,918백만원 증액
  AI 생체감지 레이더 1,893백만원 증액
  비상대기소 모듈러 설치 4,500백만원 증액
  형사절차전자문서법 관련 고속복사기 198백만원 증액
  휴대용 마약탐지기 159백만원 증액
  직원 후생시설 장비 1,304백만원 증액
  민원, 접견 관련 시설 개보수 664백만원 증액 / 유휴 수용거실 환경개선 147백만원 증액
  수용관련장비(신체계측기) 등 5백만원 감액

ㅇ 2026년도 예산 및 2027년도 예산안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6년 예산		2027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22,473	○ **자산취득비(430-01) : 22,473백만원** 가. 수용처우 관련 각종 장비 ・54개 기관 × 66.2백만원 = 3,577백만원 나. 행정사무 관련 각종 장비 ・54개 기관 × 31백만원 = 1,675백만원 다. 보안장비 현대화 ・54개 기관 × 227백만원 = 12,235백만원 라. 노후 호송차량 교체 등 ・54개 기관 × 82.5백만원 = 4,454백만원 마. 휴대용 마약탐지기 ・10개 기관 × 53.1백만원 = 531백만원	40,255	○ **자산취득비(430-01) : 38,140백만원** 가. 수용처우 관련 각종 장비 54개 기관 × 66.1백만원 = 3,573백만원 나. 행정사무 관련 각종 장비 54개 기관 × 31백만원 = 1,675백만원 다. 보안장비 현대화 54개 기관 × 227백만원 = 12,235백만원 라. 노후 호송차량 교체 등 54개 기관 × 82.5백만원 = 4,454백만원 마. 형사절차전자문서법 관련 고속 복사기 12개 기관 × 16.5백만원 = 198백만원 바. AI 영상감지 시스템 27개 기관 × 330백만원 = 8,918백만원 사. AI 생체감지 레이더 27개 기관 × 70백만원 = 1,893백만원 아. 비상대기소 모듈러 설치 10개 기관 × 10개 × 45백만원 = 4,500백만원 자. 휴대용 마약탐지기 13개 기관 × 53.1백만원 = 690백만원 차. 직원 후생시설 장비 49개 기관 × 27백만원 = 1,304백만원 카. 민원, 접견 관련 시설 개보수 12개 기관 × 55백만원 = 664백만원 타. 유휴 수용거실 환경개선 15개 기관 × 10백만원 = 147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3~2027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3	2024	2025	2026	2027	2027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재범고위험군 출소자 재복역률(%)	목표	35.6	35.3	35.3	33.0	32.9	최근 6년간 실적 평균치인 32.9%를 목표치로 설정함	REPI-4~5등급 판정을 받고 출소한 인원 중 2년 내 재복역 인원 / REPI-4~5등급 판정을 받고 출소한 인원	자체 통계 (교정행정정보시스템)
	실적	30.4	31.3	31.8	-				
	달성도	114.6	113.3	109.9	-				
일일 평균 교정시설 수용률(%)	목표	4.85	지표 변경	-	-	-	- 지표변경	만족도 설문조사 점수 총계 / 응답자 수	재원원아 부모대상 설문조사
	실적	4.84	-	-	-	-			
	달성도	99.8	-	-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3	▪ 전국 교정기관 실외 근무자실 설치(92개소 설치완료) ▪ 여성수용동 수용공간 확충(서울구치소) ▪ 교정시설 내진 보강 설계(강릉교) ▪ 수용거실 난방시설 개선(부산구, 목포교 김천소년교) ▪ 수용동 외단열 공사(안동교, 진주교, 천안개방교) ▪ 수용동 스프링클러 설치(통영구, 강릉교)

2024	▪ 수용동 수용공간 확충(춘천교, 영월교) ▪ 교정시설 내진 보강 공사(강릉교) ▪ 수용거실 난방시설 개선(춘천교, 천안교) ▪ 수용동 외단열 공사(천안교, 김천소년교) ▪ 수용동 스프링클러 설치(포항교, 경북직훈교)
2025	▪ 청송지역 교정시설 진입교량 보수 ▪ 경북북부 교정시설 공동도서관 개보수 ▪ 경북3교 여자수용자 과밀수용 완화 개보수
2026	▪ 수용동 스프링클러 설치(경북1교, 경북3교, 경북직훈교, 천안교, 청주교, 춘천교, 포항교, 홍성교, 정읍교, 강릉교, 울산구,) ▪ 교정시설 내진 보강 공사(강릉교, 청주교, 안동교) ▪ 옥외소화전 설치(의정부교, 안동교, 경북직훈교, 밀양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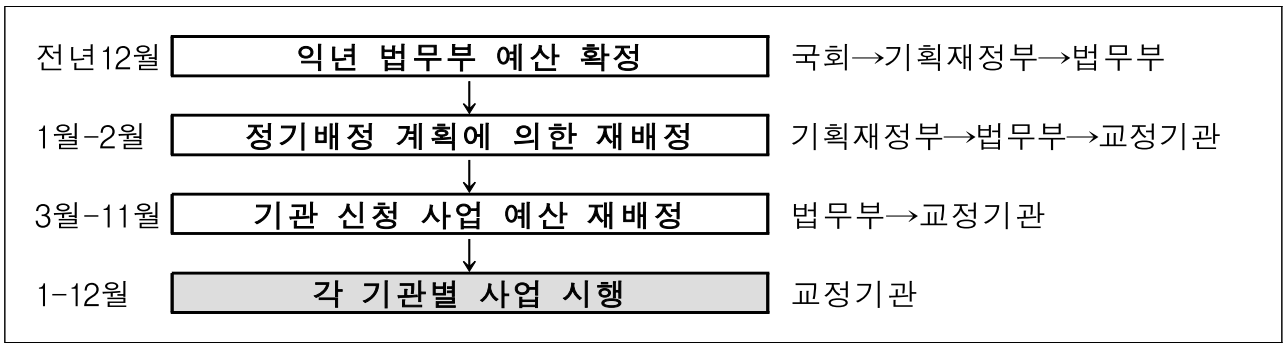
③ 향후(2027년도 이후) 기대효과 :

- 방화복 등 각종 소방장비를 도입하여 화재로부터 안전한 교정시설 구축
- 마약 반입 차단 장비를 도입하여 교정시설 내 마약 반입 완전 차단
- 각종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교정시설 구축으로 교정공무원 및 수용자 건강·안전 제고
- 전국 교정시설 유지관리 및 노후시설 개선을 통하여 수용자의 기본적 인권향상 도모
- 노후화된 의료·취사·세탁 등 수용관리 필수 장비 교체를 통한 수용자 인권 및 처우 향상
- AI 등 첨단 전자장비를 이용한 경비시스템 구축으로 교정시설 보안 취약개소 보강
- 교정시설 현대화로 인한 교정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 및 사기진작 도모
- 수용자용 전화기 설치 확대로 수용자 외부교통권 향상 및 가족관계 회복에 따른 원활한 사회 복귀 지원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25~2029	85,596	91,557	88,518	86,655	83,859	
2026~2030		91,557	102,128	105,192	108,348	111,598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법무부는 과밀수용 완화를 위하여 예산당국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교정시설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단기적 완화방안 모색을 병행할 것
  (2022회계연도 결산)
- 법무부는 향후 기본설계 필요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예산안 편성 지침과 객관적인 편성기준에 따라 기본설계가 필요한 공사의 경우에는 실시설계비 이외 기본조사설계비를 구분하여 비목을 편성하고 적합하게 집행할 것
  (2023회계연도 결산①)
- 법무부는 '교정시설 개선 공사 사업'을 계획에 따라 착공·준공하도록 적정 시점에 예산을 배정하고 공정관리를 철저히 하는 등 이월을 최소화 할 것
  (2023회계연도 결산②)
- 법무부는 교정시설 과밀화 문제 해결을 위하여 8년간 예산을 집행하였으나 해당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였는바, 향후에는 관련 예산 집행을 통하여 교정시설 과밀화 문제를 해결할 것(2024회계연도 결산①)
- 법무부는 교정시설 과밀화 문제 해결을 위한 예산을 해당 사업을 위하여만 집행하여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과다한 예산의 이·전용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할 것(2024회계연도 결산②)

2) 감사원 지적 : 해당 없음

3) 기타 언론 및 민원 : 해당 없음

4)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과밀수용 해소를 위해 단기적으로 기존 시설 내 유휴부지를 활용한 수용정원 확대 사업을 지속하고 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교정시설의 신축 및 이전·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2022회계연도 결산)
- 2025년도 예산 정부안 편성 시 기본조사설계비 비목을 별도로 편성하였으며, 기본조사설계가 필요한 경우를 면밀히 검토하여 해당 비목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음
  (2023회계연도 결산①)
- 공사기간이 긴 사업은 연초에 예산을 배정하고 공사 진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등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여 집행부진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음
  (2023회계연도 결산②)

- 법무부는 교정시설의 신설·이전·증축 등을 통해 수용정원 증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교정시설 유치 공모제, 민간투자사업방식(BTL) 등 새로운 사업방식을 도입하여 과밀수용 해소에 노력하겠음
(2024회계연도 결산①)
- 교정시설장비운용 및 현대화 사업에서 이·전용한 예산은 과밀수용 해소 관련 예산이 아니며, 예산 집행지침상 이·전용이 가능한 범위 안에서 적정하게 이·전용하였음. 향후에도 사업목적에 부합하게 예산을 집행하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겠음
(2024회계연도 결산②)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재난안전 대응체계 구축으로 각종 재해예방 지원
- 수용거실 리모델링을 통한 수용공간 확보 등 과밀수용 해소 지속 추진
- 교정시설 현대화로 인한 교정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 및 사기진작 도모
- 첨단 전자장비를 이용한 경비시스템 구축으로 교정시설 보안 취약 개소 보강
- 절수기, 종량제봉투 압축기 등 설비 구축으로 공공요금 절약 노력 지속
- 교정시설의 각종 기계·기구, 설비 등 안전진단·점검을 통한 재해예방 체계 구축 지원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2) 동 사업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 : 해당없음

13) 2026년도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 결과 및 후속 조치 현황 : 해당없음

14) 부처 건의사항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3	107,682	-	107,682	1,231	△4,700	-	104,213	94,303	87.6	90.5	6,807	3,102
2024	100,834	-	100,834	6,807	△3,238		104,404	93,097	92.3	89.2	6,520	4,786
2025	85,596	-	85,596	6,520	△5,500	-	86,616	83,720	97.8	96.7	-	2,739
2026	91,557	-	91,557	-	-	-	91,557	60,275	65.8	65.8	-	-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 해당없음

2) 주요 결산사항

□ 2023~2026년 결산사항

2023	- 불용액 3,102백만원은 집행잔액, 과밀수용 완화를 위한 시설 내 수용공간 확충사업의 용역기간 부족, ·대규모 계속공사 사업 등에 따른 연내 집행 불가능한 공사비 등 6,807백만원 이월
2024	- 상용직 근로자의 지속적인 퇴직 인원 증가로 인한 고용부담금 부족, 지속적인 수용인원 및 환자의 증가로 인한 의료비 부족으로 각각 592백만원·2,646백만원 전용 감
2025	- 지속적인 수용인원 및 환자의 증가로 인한 의료비 부족으로 실시설계비 1,000백만원, 자산취득비 3,500백만원 전용 감, 출입국 관서 공공요금 부족으로 1,000백만원 이용 감
2026	- 사업 진행 중

□ 2026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

□ 2026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참고 1 교정공무원 직원 후생시설 환경개선

1 추진 배경

법무부장관 신년사 '25. 12. 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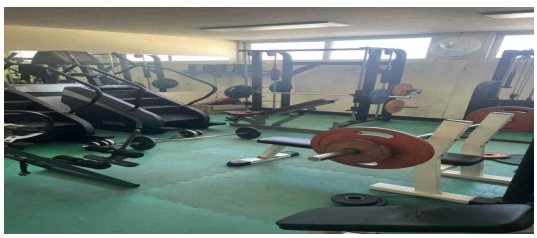
" 교정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해 수용자와 교정공무원의 인권이 함께 존중되는 환경을 조성 "

○ 교정 사고 예방 및 유사시 신속한 제압·대응을 위해 평소 꾸준한 체력 관리 필수

○ 노후화된 시설 개선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운동 환경 조성 필요

2 필요성

○ **(안전/대응)** 수용자에 의한 교도관 폭행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교정사고 위험 노출 증가했으며, 돌발 상황 발생 시 수용자를 신속히 제압하고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강인한 기초 체력이 필수적이나, 현재 교정시설 체력단련실 환경개선 필요

	
노후된 체력단련실	노후된 체력단련실

○ 바닥 및 벽체 방수층 균열로 인해 아래층으로 누수가 발생, 건물 부식 및 천장 마감재 훼손 심각

○ 벽체 타일의 들뜸 및 탈락 현상으로 이용 직원의 열상 등 부상 위험 높음

참고 2 비상대기소 모듈러 설치

1 추진 배경

○ 교정시설은 국가 치안 유지의 핵심 기반시설로서, 폭동·탈주·자해 등 긴급상황 발생 가능성이 상존하는 특수시설이고, 특히 야간·휴일 등 취약시간대에는 즉각 대응 가능한 인력의 상시 대기 필요성 제기

○ 현재 교정공무원 비상대기소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노후화된 시설로 인해 신속 대응체계 구축에 한계가 있음

2 현실태 및 필요성

○ 비상대기 인력 숙소 부족으로 긴급 상황 시 대응 지연 발생

○ 기존 관사의 노후화 및 협소로 근무환경 저하

○ 전통 건축 방식의 장기 공사기간 및 높은 비용 부담

○ 재난·치안 대응을 위한 상시 대기형 시설 미흡

3 개선방안

○ 교정시설의 특성상 도외지 내지 격오지에 위치하여 비상대기소의 필요성이 커 비상대기소 확보 시급

○ 교정공무원 비상대기소를 공장 제작 후 현장 조립 방식인 모듈러 건축 실시하여 공기를 단축하여 단기가 사업 완수

4 기대 효과

○ '25년 경북지역 대형 산불의 경우 교정공무원이 열악한 장비 속에 긴급 대응하여 재난을 극복하였는데, 특이한 점은 청송의 오지에 4개 기관이 밀집하다 보니 비상대기소가 타 교정기관보다 많고, 밀집되어 가능하였는데, 이번 사업으로 비상 대응시간 단축 및 교정사고 예방 기대

○ 일반 건축공법으로 건축할 경우보다 건축비 및 유지관리비 절감

○ 일반 건축공법으로 건축할 경우보다 공사기간 단축을 통한 예산 효율성 제고

○ 교정 전체 기관 비상대기소 준공 후 30년이 지난 곳이 00개소(00%)로 곰팡이가 슬고 낡아 이번 사업으로 근무환경 개선을 통한 교정공무원 사기진작 및 조직 안정성 확보

참고 3 AI 영상 감지시스템

■ 추진 배경

○ **(지능형 교정행정 구현)** 4차 산업혁명(AI, 딥러닝)을 교정 현장에 접목하여 '스마트 교정' 체계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통한 교정행정 선진화 국정과제 이행 필요

○ **(교정사고 예방)** 사후 확인용 녹화 중심에서 실시간 감지 및 선제적 대응 중심으로 계호 시스템의 질적 개선 도모

■ 필요성

○ **(스마트 계호 체계 구축)** 수용자 과밀화 및 교정인력 부족으로 인한 계호 업무 부담을 완화하고 관제 효율성 극대화

○ **(교정사고 사전 예방)** 자살, 자해, 폭행 등 주요 사고의 이상 징후를 사전에 탐지하여 초동 대처를 위한 골든타임 확보

○ **(육안 관제 극복)** 24시간 모니터링에 따른 근무자 피로도 누적 및 집중력 저하 문제를 해결하고 사각지대 최소화

■ 주요 기능

○ **(수용거실 정밀 관제)** 취약 시간대(심야, 휴일) 수용자의 움직임이 없거나 특이자세 유지 시 알람 발생, 혼거실 내 폭행 등 발생 시 관제센터 근무자에게 즉시 팝업 노출

○ **(다중 밀집 구역 관리)** 작업장, 운동장 등 다수 인원 밀집 구역의 집단 소요 및 이상 징후 감지

■ 기대 효과

○ **(인명 피해 최소화)** 사고 발생 즉시 알림을 통한 신속한 현장 출동 및 응급 조치 가능

○ **(인력 운영 효율화)** 단순 모니터링 업무를 AI가 보조함으로써 근무자는 순찰, 상담, 교화 등 핵심 현장 업무에 집중

○ **(객관적 데이터 확보)** 교정사고 발생 시 AI 분석 로그 및 영상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후 원인 규명 및 민원 대응력 강화

참고 4 AI 생체감지 레이더

■ 추진 배경

○ **(교정사고 발생)** 교정시설 내 수용자 자살, 심장마비 등 돌연사 사고가 지속 발생하여 선제적 예방 대책 마련 시급

○ **(관제 시스템 한계)** 현재 운영 중인 CCTV 및 육안 순찰 방식은 사각지대가 존재하며, 수면중인 수용자의 호흡 및 심박 이상 등 미세 징후 파악 곤란

○ **(인력 부족)** 야간 및 취약 시간대 한정된 근무 인력으로 24시간 밀착 감시를 수행하는데 구조적 한계 직면

○ **(스마트 교정)** 첨단 AI 기술을 접목한 과학적 계호 시스템 구축을 통한 교정행정 선진화 국정과제 이행 필요

■ 필요성

○ **(골든타임 확보)** AI 레이더를 통해 수용자의 호흡, 심박수 등 생체신호를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하여 응급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응급구조 조치 가능

○ **(행정령 낭비 방지)** 교정사고 발생 시 수반되는 소송, 의료비 지출 및 국민의 질타 등의 사회적 비용 사전 차단

■ 기대효과

○ **(교정사고 제로화)** 수용자의 호흡 정지, 발작 등 이상 징후의 조기 인지 및 즉각 대처를 통해 교정시설 내 인명사고 획기적 감소

○ **(인권)** 인권 침해 소지를 없앤 첨단 생체인식 기술 적용으로 교정행정 신뢰도 제고

○ **(근무환경 개선)** 야간 순찰 및 육안 관제에 따른 근무자 피로도와 직무 스트레스를 경감하여 업무 효율성 증대

참고 5 공무상 접견실 증설

1 추진 배경

■ **(정책환경 변화)** 수사·기소 기능 분리 및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에 따른 '방문수사' 증가

○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검찰청 기능 재편(수사·기소 분리)이 추진되고, 중대범죄수사청(행정안전부 소속) 및 공소청(법무부 소속)이 설치되는 등 수사기관 체계가 변화하고 있음

○ 정부는 공소청·중수청 설치 법안 마련 및 입법예고 등 후속 입법을 진행 중으로, 제도 시행('26.10월 예정)과 함께 교정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수용자를 조사하는 방식(방문수사·방문조사)이 확대 예정

대통령 공약 ('26. 1. 16. '대한민국 정부브리핑')

" (수사·기소 완전 분리) 검사의 직접 수사개시권을 폐지하고, 수사권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등으로 이관" 검찰청은 공소청(기소공소유지 전담)으로 전환하고, 중수청은 9대 중대범죄(부패·경제·선거 등) 수사 전담 체계로 개편

■ **(대통령 공약·국정방향)** **"국민 권리 구제·인권보호"** 중심의 검찰개혁 기조

○ 정부·여당 브리핑 및 언론 보도에서 "검찰개혁 완성은 대통령의 핵심 공약"임을 명시하고, 수사·기소 분리와 권한 분산을 제도 목표로 제시

○ 대통령 또한 공소청·중수청 관련 논란과 관련해 검찰개혁의 최종 목표를 '국민 권리 구제·인권보호'로 설명한 바 있음

■ **(기존 권고·개선 흐름)** 교정시설 수용자 조사 방식의 '방문조사 원칙' 강화 흐름

○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과거 교정시설 수용자 조사 관행 개선과 관련하여, 수용자 조사를 방문조사 또는 원격화상 조사 중심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권고를 제시

○ 국가인권위원회도 수사기관 조사 관행과 관련하여 인권보호 관점에서 개선 필요 의견을 제시하는 등, 제도 전반이 교정시설 내 조사(방문조사) 확대 방향으로 논의되는 추세

2 현실태 및 필요성

■ **(수요 증가)** 공무상접견(수사기관 방문조사) 수요의 지속 증가

○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기관의 공무상접견 수요가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 중수청 출범 및 조사 방식 변화로 방문수사 수요가 추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

○ 반면 교정시설은 노후화·공간 제약으로 공무상접견실 확충이 구조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며, 그 결과 예약 곤란·대기 증가 등 민원이 반복되고 있음

■ **(공간 부족)** 공무상접견실의 절대량 부족 및 과밀 운영

○ 전국 공무상접견실은 제한된 수준이며, 특히 상위 수요기관은 사용률·예약률이 100%를 상회하는 등 사실상 과밀 운영(초과수요) 상태가 발생하고 있음(제출표 참조)

ex) 상위 10개소 기준(전) 사용률 106%, 예약률 116% 등(기관별 편차 큼)

■ **(운영상 리스크)** 예약 취소(노쇼)·회차 운영 한계로 실수요 대응 저하

○ 제한된 접견실·회차를 운용하는 상황에서 당일 취소분(노쇼)이 발생하면, 대기 중인 조사 수요를 즉시 흡수하기 어려워 수사 지연 및 현장 혼선이 발생함

○ 수사기관이 교정기관을 방문하는 방식이 확대될 경우, 접견실은 단순 공간이 아니라 수용자 인권보호(조사환경, 방음 등)·교정질서(동선 분리)·안전관리(위험 통제)까지 함께 담보해야 하는 기반 시설 조성 필요

< 공무상 접견실 현실태 >



4 주요 내용

■ 공무상접견실 개·보수 및 공간 재배치('27년 중점)

○ **(기본방향)** 단기간 내 "유휴공간 대규모 확보"가 어려우므로, '27년 예산으로 접견실 증설·환경개선을 우선 추진하고, 병행하여 운영 효율화(노쇼 최소화 등)로 즉시 효과를 확보

○ 공무상접견실 증설(리모델링 포함)

- 대상: **30개 기관, 117호실** (기관별 내역은 붙임 제출)

○ 유휴공간 전환, 기존 공무상접견실 분할·재배치, 조사 동선 분리, 최소 규격 표준화 등

■ 공무상접견실 환경개선(노후도 개선)

○ 대상: 10개 기관, 102호실

○ 방음벽·차음 보강, 출입문·차단설비 보강, 조사공간 환경 정비 등 운영 내실화(예산사업과 병행 추진)

○ 공무상접견 노쇼 최소화: 접견 3일 전 수용자 의사 확인, 수사기관 사전 확인 프로세스 등

○ 회차 운영 합리화: 기관 여건에 따라 오후 회차 확대 검토(예: 1회차→2회차) 등 (운영개선은 시설확충의 효과를 즉시 증폭시키는 보완 장치로 기술)

5 기대 효과

■ **수용자 인권·방어권 보장 및 공정한 수사환경 조성**

○ 수사기관이 교정기관을 방문하여 조사하는 방식은 불필요한 이동·호송 부담을 줄이고, 적정한 조사환경에서 수용자의 인권과 방어권을 보장하는 기반이 됨

○ 검찰·경찰·특사경·(향후)중수청 등 수사기관 간 조사 방식의 정합성을 높여 형평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음.

■ **교정행정 효율화 및 현장 혼선·민원 감소**

○ 과밀 예약·대기 문제 완화로 수사기관 민원 및 조사업무 차질을 감소시키고, 접견실 환경개선으로 소음·충돌·불필요한 동선 겹침 등 현장 리스크를 낮춤

○ 운영 측면에서도 노쇼 감소 및 회차 운영 개선을 통해, 같은 자원으로 더 많은 실수요를 처리할 수 있음

참고 6 변호인 스마트 접견 확대

1 추진 배경

■ 변호인 스마트접견 전국 확대 운영 필요

법무부장관 지시 ('25. 9. 18. '연합뉴스' 보도 중)

" 변호인 스마트접견이 도입되면 수용자가 소송 서류 작성이나 재판 준비 과정에서 변호인으로부터 효율적으로 법률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법무부는 변호인이 교정시설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휴대전화·노트북 등 온라인 화상시스템을 통해 수용자와 접견할 수 있는 '변호인 스마트접견'을 도입하고,

○ 서울구치소에서 2025. 10. 13.부터 2026. 4. 12.까지 6개월간 시범 운영 중임

○ 제도 도입 시 수용자의 소송서류 작성·재판 준비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신속히 받을 수 있고, 변호인의 이동·대기 부담이 완화된다는 취지로 보도됨

대통령 업무 보고 ('25. 12. 31. '뉴시스' 보도 중)

" 변호인 스마트접견으로 교정시설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휴대전화·노트북 등 온라인 화상시스템을 통해 수용자를 접견 살 수 있는 제도도 도입된다."

○ 정부 정책 안내자료(기재부 '이렇게 달라집니다')에서도 시범 운영 후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어, 전국 확대를 위한 예산·인프라 선제 확보가 필요

* **변호인 스마트접견**은 변호인이 교정시설을 직접 방문하는 일반·화상 변호인접견과 달리 **집이나 사무실에서 휴대전화·노트북 등 온라인 화상시스템을 통해 수용자**를 **접견**할 수 있는 방식

■ (정책환경) 접견수용 증가에 따른 기존 대면접견만으로의 대응 한계

○ 접견실은 물리적으로 제한적인 반면, 수용인원 증가 및 사건·재판 대응 수요 확대에 따라 변호인 접견 수요가 지속 증가하여 대기시간 증가·예약 가능 시간 축소 등 민원이 상시화되는 추세

■ (보안) 비대면 접견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인증·통제장치 필요

○ 변호인 스마트접견은 수용자의 방어권 보장 취지상 청취 및 녹음·녹화 기능을 제외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시범 운영 과정에서 보안성(공개된 장소에서의 접견 등)을 핵심 점검사항으로 명시하고 있음

○ 따라서 전국 확대 시에는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제3자 개입 방지·사후 검증 가능한 성문 인증 시스템 도입을 위한 부스 구입이 절실함

2 현실태 및 필요성

○ 수용 인원의 지속적 증가에 따라 변호인 접견 건수 지속적 증가하여 접견실 공간은 한정되어 있어 변호인접견 대기 시간 증가 및 예약 가능 시간 축소

○ 접견을 위해 교정기관에 방문하는 변호인 수 증가로 관련 직원들의 업무 부담 가중

○ 변호인 스마트접견은 수용자의 방어권 보장 취지상 녹음·녹화가 불가하여, 제3자의 불법적인 접견 참여가 발생하더라도 대화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운 사각지대 존재

<직원정원 및 1일 평균 수용 인원 대비 변호인 접견 현황>

구분	직원정원	1일 평균 수용 인원	변호인 접견
2021년	16,652명	52,368명	252,177건
2022년	16,808명	51,117명	243,030건
2023년	16,776명	56,577명	310,379건
2024년	16,716명	61,366명	352,796건
2025년	16,762명	63,677명	356,756건

○ 최근 5년간('21~'25) 수용인원은 약 21.6%, 변호인 접견은 1일 평균 약 41.5% 증가한 반면, 직원 정원은 0.7% 증가에 그쳐 현장 부담이 구조적으로 확대

○ 특히 변호인 접견은 보안·동선·인원관리 등 부대업무가 동반되어, 접견량 증가가 곧바로 현장 업무부담

3 주요 추진 내용

○ (27. 상) 전국 54개 교정기관 100개 호실(개보수) 확대 운영

- 빈 공간을 활용한 변호인 접견실 개·보수를 통해 호실을 증설하고, 개·보수가 어려운 기관에 대해서는 공간 재배치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

○ (27. 상) 성문 인증 부스 도입

- 변호인 성문을 사전에 정확하게 등록하여 접견 중 기존 등록 성문과 비교하여 제3자 목소리 참여 감지하여 변호인 스마트접견 보완성 강화

④ 기대 효과

○ 교정행정 효율성 제고(접견 적체 완화)

- 한정된 대면 접견실 회전율 의존도를 낮추고, 유휴공간·부스 활용으로 접견 적체를 완화

○ 수용자 방어권 보장(신속한 법률조력)

- 소송서류 작성, 재판 준비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신속히 받을 수 있어 재판절차의 실효성 제고

○ 사회적 비용 절감 및 변호인 업무 편의성 증대

- 변호인 이동시간·교통비 절감, 대기시간 감소로 법률조력의 효율성 제고
- 원거리 이동 감소에 따른 탄소배출 저감 등 정부 친환경 기조에도 부합

○ 보안성 강화(제도 신뢰 확보)

- 녹음·녹화 제한 구조를 보완하는 인증체계(성문인증)를 위한 표준 환경(부스) 구축으로 제3자 개입 위험을 낮추고, 전국 확대의 정책 신뢰를 확보

참고 7 전자경비시스템 유지보수

1 추진 배경

○ 교정기관 전자경비시스템* 유지보수비

- 수용자 관리를 위한 중요 보안 경비체계 시스템으로 전문 유지보수 업체를 통해 유지보수 관리를 수행

* 교정시설 내 외곽감지시스템, 영상정보처리시스템, 자동출입시스템, 중앙통제시스템, 거실문 자동제어시스템 등 각종 전자시스템을 이용한 중요 보안·경비체계

○ 유지보수비 증가 배경

- '20년 이후 교정기관내 수용자 인권보호를 위한 과밀수용 해소 방안으로 증축 혹은 신축기관*을 확충하여 그에 따른 장비 증가

※ 과밀수용 해소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증축 추진 중

2 현실태 및 필요성

○ 최근 7년이상 전자경비 유지보수비 현황

- ('20년~'26년) 예산액 2,604백만원으로 변동 없음

○ 유지보수 수행할 장비 취득원가(총액) 증가 추세

- ('20년~'26년) 전자경비시스템 대상장비 취득원가 현황: 매년 증가

구 분	금 액 (단위 : 천원)							증 감 (전년대비)	비고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대상장비 취득원가	56,148,801	58,274,858	59,340,701	63,673,433	61,780,433	66,892,691	69,515,764	매년 약 3.97% 증가	

○ 대상장비 증가 현황

- 7년이상 유지보수비 예산은 변동이 없으나 신설 장비 추가 등으로 대상장비 취득원가 약 23%(약 13,367백만원)* 상승됨

* 대장가 증가액: 13,367백만원 = 69,515백만원('26년) - 56,148백만원('20년)

○ 문제점

- 최근 7년이상 고정된 예산으로 낮은 적용율(3.74%)로 유지관리 수행
- 고가의 최신 장비를 도입한 증축 및 신축기관의 운영비 상승 금액이 제때 반영되고 있지 않아 유지보수 관리에 종합적 문제 내포
- 유지관리 수행에 운영·관리 미흡, 내실화 부재 연결

3 주요 내용

○ 원활한 유지관리 수행 및 적정요율 반영

- 유지보수 금액을 증액하여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
- 고가의 최신 장비를 갖춘 증축 및 신축 기관의 장비 도입단가 및 원가 상승액을 반영하여 관리 필요

○ 타기관 적용 사례 ('24년도 기준)

기관명	적용범위	적용율(%)	평균치(8.5%)	용역 사업비
법무부 (정보화담당관실)	하드웨어(H/W)	7	9	35.3억원
	소프트웨어(S/W)	11		
조달청	하드웨어(H/W)	6	8	86억원
	소프트웨어(S/W)	10~12		
방사청	하드웨어(H/W) & 소프트웨어(S/W)	7~10	8.5	70억원
교정기관	하드웨어(H/W) & 소프트웨어(S/W)	**4.16**	-	**26억원('26년)**

※[건설교통부-12410, 1995. 4. 14.「1996년 행정전산망 세부실천 계획수립 지침 시달」과 관련 대상 장비 최초 취득원가의 8%이내 적용] 사항 폐지에 따른 타기관 사례임 **(타기관 평균 8.5%)**

- 유지보수 수행을 위한 최소 적정 요율* 반영

* 대상장비취득원가의 **최소 8%요율** 적용 필요 (타기관 평균 8.5%)

4 기대 효과

○ 전자경비시스템 유지관리의 효율화 및 내실화

- 증가된 금액에 따른 유지관리 용역사업 효율적, 지속적 추진 기대
- 적정한 금액 산정으로 합리적 사업 및 유지관리 내실화 도모

참고 8 형사절차전자문서법 관련 전산장비 도입

□ 추진배경

○ ’24.10.20.「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형사절차전자문서법’이라 함), 동법 시행령·대법원 규칙 시행

○ 형사절차전자문서법 및 동법 시행령·대법원 규칙에 전자적 송달·통지와 그 대상(수용자 포함) 및 방법(전산정보시스템으로 송달·통지) 규정

□ 현실태

○ (현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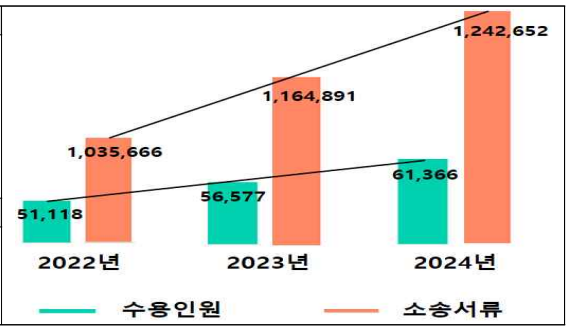
- 지능 범죄, 마약 범죄 등 중범죄 증가 및 엄정한 대처로 교정기관 수용인원 지속적 증가 추세
- 형사소송의 적법절차 준수, 재판 방어권 보장 등으로 송달되는 소송서류 급증

수용인원(일 평균)

구 분	’22년	’23년	’24년
현원	51,118	56,577	61,366
기결	17,737	19,958	21,331
미결	33,381	36,620	40,035
22년 대비 증가율		**10.7%**	**20.0%**

소송서류

구 분	’22년	’23년	’24년
합계	1,035,666	1,164,891	1,242,652
22년 대비 증가율		**12.5%**	**20.0%**



[표] 수용인원 및 소송서류 현황(2022~24년)

- 전자적 송달·통지 시행 시 운용 장비 미비

[교정기관 복사기 도입 현황]

도입시기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프린터(수)	19	8	12	10	8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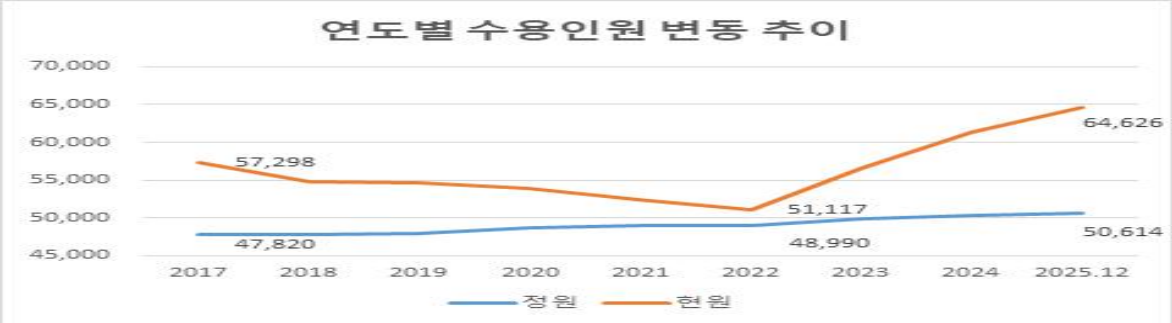
※ 전국 교정기관 복사기 평균 성능 : 출력 속도 분당 약 30매 이하

참고 9 유휴 수용거실 환경개선

1 추진 배경

○ **수용인원 급증**

- 2016. 12. 29. 헌법재판소의 과밀수용 위헌확인 선고 이후 다소 감소하였으나, 코로나 팬데믹 이후 마약·보이스피싱·성폭력 등 범죄 및 노역장 유치집행 증가가 복합 작용하여 수용인원 급증 (정원 증가율 5.2%, 현원 증가율 13.5%)



○ **교정시설 과밀수용 심각**

- 교정시설 수용률이 과밀한 상태로 정신질환·성범죄·마약류 수용자의 지속적 증가로 **정상적 교정·교화 활동 곤란**

< 정신질환, 성범죄자, 마약류사범 수용 현황 >

(단위: 명)

구 분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총 수용자	53,873	52,368	51,117	56,577	62,981	**63,679**
정신질환	4,978	4,869	5,622	6,094	6,274	**6,345**
성범죄자	8,376	8,397	8,370	8,064	8,912	**9,421**
마약류사범	3,111	3,314	3,738	4,924	5,779	**6,460**

2 현실태 및 문제점

○ **교정시설 초과밀 기관 상황**

- 상위 심급 법원이 위치한 **수도권 및 대도시 인근 교정기관에서 미결수용자 입소가 집중**되어 과밀 수용 심각

<초과밀 기관 현황 ('25. 12. 31.기준)>

기 관	수용률	기 관	수용률	기 관	수용률
서울(구)	**144.0**	대구(교)	136.1	청주(교)	141.0
수원(구)	**155.0**	**부산(구)**	**155.7**	청주여(교)	128.4
서울동부(구)	134.2	창원(교)	129.1	**광주(교)**	**146.0**
인천(구)	**151.7**	대구(구)	137.2	▮ 상위 5개 기관	
의정부(교)	131.6	대전(교)	143.2		

○ 님비(NIMBY) 현상에 의한 교정시설 조성 지연

- (신축) 과밀 해소를 위해 경기북부·대전·광주구치소 등 신설을 추진하고 있으나 **예산 및 주민 반대** 등으로 지연
- (이전·현대화) 안양(교)는 '97년부터 이전 추진, 부산(교, 구)는 '07년 이전 추진 양해각서 체결하였으나 **예산, 입지 부적합, 주민 반대** 등으로 지연

○ 과밀수용에 따른 교정사고 급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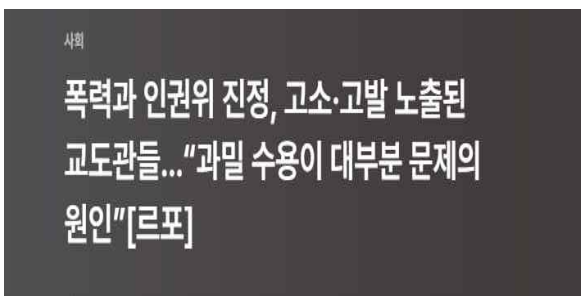
- 정신질환자 증가와 더불어 수용자 간, 수용자에 의한 직원 폭행 등 교정사고 급증

(단위 : 명)

연 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수용자 간 폭행	455	550	506	577	598	789	895	881	**798**
수용자에 의한 직원 폭행	73	89	66	97	111	109	190	152	**112**

- 수용자간 폭행 및 직원폭행 약 1.7배('16년 523건 → '25년 910건)
- 자살시도 및 자살 약 2배('16년 59건 → '25년 119건)

→ 폭행 등 교정사고 약 1.7배 증가





3 개선방안

○ 유휴 수용거실 환경개선 사업 실시

- 수용률은 수용정원 대비 현 수용인원으로 산출하는데 유휴거실을 환경개선하여 수용자가 현실적으로 체감하는 수용률은 낮출 수 있음
- 환경개선 대상 교정기관 : 총 23개 기관

연번	기관명	합계		독거실		혼거실		비고 (미사용 사유)
		총거실수 (A+B)	총면적(㎡)	거실수 (A)	면적 합계 (㎡)	거실수 (B)	면적 합계 (㎡)	
1	서울구	14	71	14	71			누수 및 동파
2	경북1교	270	1,367	270	1,367			노후화 등
3	경북2교	194	1,188	172	1,061	22	127	5인, 노후화 등
4	경북3교	91	303	86	237	5	66	5인, 노후화 등
5	포항교	3	23	2	8	1	15	천정 누수
6	청주교	1	9			1	9	천정 누수
7	안동교	2	10	2	10			천정 누수
8	강릉교	47	145	42	116	5	29	누수 및 동파
9	경주교	48	144	44	121	4	23	누수 및 노후화
10	홍성교	21	111	14	71	7	40	누수 및 노후화
11	춘천교	86	440	80	405	6	35	누수 및 동파
12	의정부교	7	76	2	10	5	66	5인, 천정 누수
13	군산교	92	479	90	456	2	23	5인, 누수 및 노후화
14	목표교	66	407	66	407			누수 및 노후화
15	수원구	46	284	46	284			천정 누수
16	평택지소	2	8	2	8			천정 누수
17	인천구	23	142	23	142			누수 및 동파
18	논산지소	30	152	30	152			누수 및 노후화
19	여주교	70	354	70	354			누수 및 노후화
20	서산지소	3	19	3	19			누수 및 동파
21	충주구	8	49	8	49			천정 누수
22	통영구	7	43	7	43			누수 및 노후화
23	순천교	19	116	19	116			누수 및 노후화
	계	1,150	5,940	1,092	5,508	58	432	

④ 기대 효과

○ 수용자가 현실적으로 체감하는 수용률은 낮출 수 있음

○ 과밀수용으로 인한 각종 진정, 고소, 고발 등을 방지하고, 수용자간 폭행 등 각종 교정사고를 예방하고 나아가 수용자 교정·교화에 집중

참고 10 교정시설 내진보강사업

1 추진 배경

○ 「지진대책법」에 따라 공공청사 내진보강 이행 법적 의무화

○ '교정시설 재난 안전 대응 설비 확충'이 법무부 **대통령 경청과제** ('26. 1. 3., **대통령 훈시**)로 관리되어 체계적인 내진보강 대책 수립 시급

○ 건립 후 30년 이상 경과된 노후 시설 비중이 높아 지진 취약성이 증대됨에 따라, 선제적인 예산 투입을 통한 대형 사고 예방 필요

2 현실태 및 문제점

○ 현재 **법무부 내진율 40%(교정본부 35.6%)로 중앙부처 평균(81.9%) 대비 상당히 저조**한 상황이며, 이에 매년 행안부의 내진보강대책 점검 회의(자연재난실장 주재)에 참석하여 제고 방안을 제출하고 있음

○ 교정기관 **상당수 건물이 내진 설계 미적용 상태(611개소)**이며, 매년 소규모로 내진성능평가가 진행되어 전수 파악에 한계가 있음

○ 전 건물 전수 평가 비용 및 공사비를 고려할 때 2027년도 250억원 수준의 집중 투입이 불가피함

○ **(현황)** 내진보강사업에 따른 **내진율 35.6%**

- 내진설계대상 총 949개소 중 338개소 내진성능 확보

(단위 : 개소, %)

내진설계 대상 (A)	내진설계 적용	내진설계 미적용				내진율 (%) (B/A×100)	비고
		내진성능평가 수행			내진 성능평가 미수행		
		보강 불필요	보강 완료	보강 미수행			
	내진성능 확보(B)			내진성능 미확보(C)			
949	245	42	**51**	**23**	588	**35.6**	

※ 내진율(%) = 내진성능 확보(내진설계 적용+보강 불필요+보강 완료) / 내진설계 대상 × 100

○ **('26년 사업추진 현황)** 총 예산 11,433백만원

- 총 96개소, 8,590백만원 내진보강 사업 추진 중

(단위 : 개소, 백만원)

①내진성능평가		②내진보강설계		③내진보강공사		예산투자 합계(A+B+C)
물량	예산(A)	물량	예산(B)	물량	예산(C)	
83	1,821	**28**	**1,050**	12	**5,719**	8,590

3 주요 사업내용

○ 연차별 예산 집행 계획

- (내진율 조기확보 방안) **내진성능평가 및 설계 우선 시행** 계획 수립

(단위 : 개소, 백만원)

연도	내진성능평가		내진보강설계		내진보강공사		계
	물량	예산	물량	예산	물량	예산	
2026	83	1,821	28	1,050	12	5,719	8,590
2027	403	11,274	127	5,673	19	11,166	28,113
2028			344	13,208	35	20,400	33,608
2029					59	41,401	41,401
2030					50	43,292	43,292
2031					86	35,442	35,442
2032					58	37,596	37,596
2033					65	36,726	36,726
2034					69	31,507	31,507
2035					56	30,220	30,220
계	486	13,095	499	19,931	509	293,469	326,495

○ 교정시설 내진성능 목표 달성 계획

☞ **연간 목표율**

(단위: 개소, %)

연도	내진대상	확보	미확보	내진 목표율(%)		비고
				연도별	누진	
2025	949	338	611	-	35.6	
2026	949	381	568	4.5	40.1	원주(교) 이전
2027	949	400	549	2.0	42.1	
2028	949	435	514	3.7	45.8	
2029	949	511	438	8.0	53.8	창원(교) 이전
2030	949	581	368	7.4	61.2	전주(교) 이전
2031	949	667	282	9.1	70.3	
2032	949	725	224	6.1	76.4	
2033	949	824	125	10.4	86.8	안양(교) 이전
2034	949	893	56	7.3	94.1	
2035	949	949	0	5.9	100.0	

- 연차별로 사업을 진행하여 '35년 내진보강율 100% 목표

※ 이전 예정 7개 기관(234개동) 제외

④ 기대 효과

- ○ 지진 발생 시 시설 붕괴를 예방하여 수용자와 교정 공무원의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고,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수용 환경 조성**
- ○ ‘사후 복구’가 아닌 ‘사전 예방’ 중심 투자를 통해 지진 피해 시 발생할 막대한 복구 비용을 절감하고, 노후 시설의 구조 보강으로 건축물의 사용 수명 연장
- ○ 「지진대책법」에 따른 **내진보강 법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정부 평균 대비 저조했던 내진율을 끌어올려 **정부 신뢰도 제고 및 국정 기조 부응**

사 업 명
대체복무 시설개선 및 운영 (1531-304)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법무부	교정본부	일반회계	020	022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500	1531	304
명칭	교정활동	교도소운영	대체복무 시설개선 및 운영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O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대체복무 시설개선 및 운영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교정본부	주기남	유 진	김현우
		복지과	02-2110-3420	02-2110-3423	02-2110-3429
	사업시행주체	-	-	-	-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년 결산	2026년 예산		2027년		증감	
		본예산(A)	추경	요구	조정(B)	(B-A)	(B-A)/A
대체복무 시설개선 및 운영	16,210	14,926	14,926	14,926	14,801	△125	△0.8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5					2026(2026.7월말)							2027 예산안
	예산액(추경)	예산현액	집행액[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현액	집행액[실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예상액	불용예상액	
									예산현액	집행액[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17,241	16,591	16,210	-	380	14,926	14,926	8,223 (8,198)	14,926	8,223 (8,198)	-	-	14,801
· 대체복무 운영경비	14,772	14,122	13,875	-	245	14,745	14,745	8,047 (8,021)	14,745	8,047 (8,021)	-	-	14,620
· 대체복무 시설개선	2,438	2,438	2,304	-	134	150	150	146	150	146	-	-	150
· 대체복무 물품구입	31	31	31	-	-	31	31	30	31	30	-	-	31
○ 비목별 분류(합계)	17,241	16,591	16,210	-	380	14,926	14,926	8,223 (8,198)	14,926	8,223 (8,198)	-	-	14,801
· 일반수용비(210-01)	2,574	2,081	2,081	-	-	2,574	2,574	877 (876)	2,574	877 (876)	-	-	2,574
· 공공요금및제세(210-02)	840	840	838	-	1	840	840	668	840	668	-	-	840
· 피복비(210-03)	2,222	2,072	2,068	-	4	1,930	1,930	1,330	1,930	1,330	-	-	1,926
· 급식비(210-04)	7,650	7,549	7,457	-	92	7,915	7,915	4,559 (4,536)	7,915	4,559 (4,536)	-	-	7,915
· 유류비(210-08)	239	239	117	-	122	239	239	48 (47)	239	48 (47)	-	-	239
· 시설장비유지비(210-09)	441	535	534	-	-	441	441	132	441	132	-	-	441
· 기타운영비(210-16)	121	121	120	-	1	121	121	97 (96)	121	97 (96)	-	-	-
· 국내여비(220-01)	233	233	227	-	6	233	233	85	233	85	-	-	233
· 손실보상금(310-01)	76	82	68	-	14	76	76	73	76	73	-	-	76
· 기타보전금(310-04)	376	370	365	-	5	376	376	178	376	178	-	-	376
· 설계비(420-02)	103	103	16	-	87	-	-	-	-	-	-	-	-
· 공사비(420-03)	2,316	2,316	2,288	-	28	150	150	146	150	146	-	-	150
· 감리비(420-04)	19	19	0	-	19	-	-	-	-	-	-	-	-
· 자산취득비(430-01)	31	31	31	-	-	31	31	30	31	30	-	-	31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17,241	16,591	16,210	-	-	14,926	14,926	8,223 (8,198)	14,926	8,223 (8,198)	-	-	14,801
· 대체복무 운영경비	14,772	14,122	13,875	-	245	14,745	14,745	8,047 (8,021)	14,745	8,047 (8,021)	-	-	14,620
-일반수용비(210-01)	2,574	2,081	2,081	-	-	2,574	2,574	877 (876)	2,574	877 (876)	-	-	2,574
-공공요금및제세(210-02)	840	840	838	-	1	840	840	668	840	668	-	-	840
-피복비(210-03)	2,222	2,072	2,068	-	4	1,930	1,930	1,330	1,930	1,330	-	-	1,926
-급식비(210-04)	7,650	7,549	7,457	-	92	7,915	7,915	4,559 (4,536)	7,915	4,559 (4,536)	-	-	7,915

	2025					2026(2026.7월말)							2027 예산안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유류비(210-08)	239	239	117	-	122	239	239	48 (47)	239	48 (47)	-	-	239
-시설장비유지비(2009)	441	535	534	-	-	441	441	132	441	132	-	-	441
-기타운영비(210-16)	121	121	120	-	1	121	121	97 (96)	121	97 (96)	-	-	-
-국내여비(220-01)	233	233	227	-	6	233	233	85	233	85	-	-	233
-손실보상금(310-01)	76	82	68	-	14	76	76	73	76	73	-	-	76
-기타보전금(310-04)	376	370	365	-	5	376	376	178	376	178	-	-	376
·대체복무 시설개선	2,438	2,438	2,304	-	134	150	150	146	150	146	-	-	150
-설계비(420-02)	103	103	16	-	87	-	-	-	-	-	-	-	-
-공사비(420-03)	2,316	2,316	2,288	-	28	150	150	146	150	146	-	-	150
-감리비(420-04)	19	19	0	-	19	-	-	-	-	-	-	-	-
·대체복무 물품구입	31	31	31	-	-	31	31	30	31	30	-	-	31
-자산취득비(430-01)	31	31	31	-	-	31	31	30	31	30	-	-	31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대체복무 운영비) 대체복무 인원에 대한 급식비, 피복비, 일반수용비 등 대체복무제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지원
- (대체복무 시설개선 등) 대체복무 운영을 위한 합숙시설 및 업무지 등 개보수 지원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조항 적시 :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② 추진경위 : 대체복무를 위한 시설 개선 및 복무 지원을 위해 '19년 사업 신설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3	2024	2025	2026	2027(안)
사업비	14,575	16,459	17,241	14,926	14,801

- 기타: 특이사항 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법무부
- 사업 수혜자 : 대체복무요원, 수용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7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

① 대체복무 운영경비 지원

: **(2026 본예산) 14,745백만원 → (2027 요구) 14,620백만원, 125백만원 감액**

- (요구) 대체복무 요원 및 운영기관 증가에 따른 운영 경비 지원 확대 요구
- (산출) 기타운영비 등 125백만원 감액

ㅇ 2026년도 예산 및 2027년도 예산안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6년 본예산		2027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4,745	**○ 일반수용비(210-01) : 2,574백만원** 가. 대체복무기관 운영비 - 1,743명×115,000원×12개월= = 2,405백만원 나. 대체복무 교육시설 운영비 - 1개 기관×14,100,000원*12개월 = 169백만원 **○ 공공요금(210-02) : 840백만원** 가. 대체복무 기관 공공요금 - 34개 기관×1,675천원*12개월 = 683백만원 나. 대체복무 책임보험료 - 1,743명×90,000원 = 147백만원 **○ 피복비(210-03) : 1,930백만원** 가. 대체복무 피복비 - 1,612명×73천원×12개월 = 1,421백만원 나. 신규입소자 피복 - 131명×73천원 = 116백만원 다. 침구류 구입 - 1,743명×225천원 = 392백만원 **○ 급식비(210-04) : 7,915백만원** 가. 대체복무 급식비 - 1,815명×14,000원×365일×84.8% = 7,869백만원 **○ 유류비(210-08) : 239백만원** 가. 대체복무 유류비 - 34기관×9,000리터*783원 = 239백만원 **○ 시설장비유지비(210-09) : 441백만원**	14,620	**○ 일반수용비(210-01) : 2,574백만원** 가. 대체복무기관 운영비 - 1,743명×115,000원×12개월= = 2,405백만원 나. 대체복무 교육시설 운영비 - 1개 기관×14,100,000원*12개월 = 169백만원 **○ 공공요금(210-02) : 840백만원** 가. 대체복무 기관 공공요금 - 34개 기관×1,675천원*12개월 = 683백만원 나. 대체복무 책임보험료 - 1,743명×90,000원 = 147백만원 **○ 피복비(210-03) : 1,926백만원** 가. 대체복무 피복비 - 1,612명×73천원×12개월 = 1,417백만원 나. 신규입소자 피복 - 131명×73천원 = 116백만원 다. 침구류 구입 - 1,743명×223천원 = 392백만원 **○ 급식비(210-04) : 7,915백만원** 가. 대체복무 급식비 - 1,815명×14,000원×365일×84.8% = 7,869백만원 **○ 유류비(210-08) : 239백만원** 가. 대체복무 유류비 - 34기관×9,000리터*783원 = 239백만원 **○ 시설장비유지비(210-09) : 441백만원**

2026년 본예산		2027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가. 대체복무 시설장비유지비 - 34기관×1,080천원×12개월 = 441백만원 ○ **기타운영비(210-09) : 121백만원** 가. 대체복무 기타운영비 - 34기관×297천원×12개월 = 121백만원 ○ **대체복무여비(220-01) : 222백만원** 가. 대체복무 여비 - 34기관×6.6백만원= 222백만원 ○ **대체복무 보전금(310-04) : 376백만원** 가. 대체복무 보전금 - 1,743명×18,000원*12개월 = 376백만원 ◇ 대체복무 예비군 훈련 지원 ○ **급식비(210-04) : 46백만원** 가. 대체복무 예비군 급식비 - 1,100명×14,000원×3일 = 46백만원 ○ **대체복무 여비(220-01) : 10백만원** 가. 대체복무 예비군 여비 - 700명×14,900원= 10백만원 ○ **손실보상금(310-01) : 76백만원** 가. 예비군 훈련 손실보상금 - 700명×27,300원×4일 = 76백만원		가. 대체복무 시설장비유지비 - 34기관×1,080천원×12개월 = 441백만원 ○ **대체복무여비(220-01) : 222백만원** 가. 대체복무 여비 - 34기관×6.6백만원= 222백만원 ○ **대체복무 보전금(310-04) : 376백만원** 가. 대체복무 보전금 - 1,743명×18,000원*12개월 = 376백만원 ◇ 대체복무 예비군 훈련 지원 ○ **급식비(210-04) : 46백만원** 가. 대체복무 예비군 급식비 - 1,100명×14,000원×3일 = 46백만원 ○ **대체복무 여비(220-01) : 10백만원** 가. 대체복무 예비군 여비 - 700명×14,900원= 10백만원 ○ **손실보상금(310-01) : 76백만원** 가. 예비군 훈련 손실보상금 - 700명×27,300원×4일 = 76백만원

② 대체복무 시설개선

: **(2026 본예산) 150백만원 → (2027 요구) 150백만원, 전년동**

- (요구) 대체복무 업무지 등 시설 환경개선 필요, 전년 수준의 예산 요구
- (산출) 대체복무 시설개선 경비 전년동

ㅇ 2026년도 예산 및 2027년도 예산안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6년 본예산		2027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50	○ **공사비(420-03) : 150백만원** 가. 대체복무시설 업무지 환경개선 ・ 35개 기관×4.3백만원 = 150백만원	150	○ **공사비(420-03) : 150백만원** 가. 대체복무시설 업무지 환경개선 ・ 35개 기관×4.3백만원 = 150백만원

③ 대체복무 생활관 등 물품구입

: **(2026 본예산) 31백만원 → (2027 요구) 31백만원, 전년동**

- (요구) 대체복무 요원 및 운영기관 증가에 따른 물품구입 경비 지원 확대 요구
- (산출) 물품구입 경비 31백만원 전년 수준으로 요구

ㅇ 2026년도 예산 및 2027년도 예산안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6년 본예산		2027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2026년 본예산		2027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31	○ **자산취득비(430-01) : 31백만원** 가. 대체복무 자산취득 ・3개 기관×10.2백만원 = 31백만원	31	○ **자산취득비(430-01) : 31백만원** 가. 대체복무 자산취득 ・3개 기관×10.2백만원 = 31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3~2027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3	▪ 총 423명 소집 및 5개 기관 신규 배치
2024	▪ 총 760명 소집 및 4개 기관 신규 배치
2025	▪ 총 479명 소집 및 3개 기관 신규 배치
2026	▪ 총 450명 소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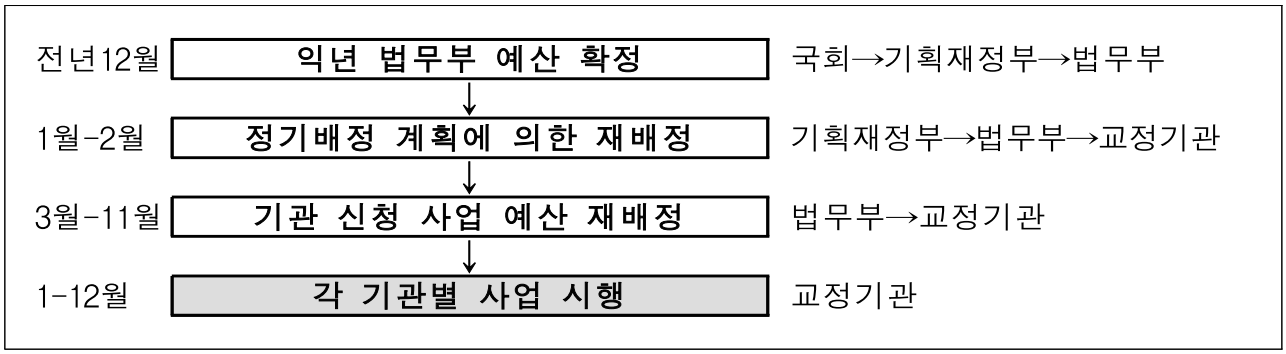
③ 향후(2027년도 이후) 기대효과 :

-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의 복무를 대신하여 병역을 이행하게 하고, 교정시설에서 36개월간 합숙복무를 하면서 공익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인권존중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실현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25~2029	17,241	14,926	13,643	13,356	12,925	
2026~2030		14,926	19,416	19,998	20,598	21,216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 법무부는 대체복무시설 확충 사업의 현실적인 사업기간을 설정하여 대체복무시설 확충이 지연되지 않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것 (2023회계연도 결산)

2) 감사원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 해당없음

3) 자체평가 : 해당없음

4)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 해당없음

5)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 2024년 대체복무시설 4개소 개청 완료하였음. 2025년 제주(교) 등 3개소, 2026년 대구(교) 등 2개소 개청 예정으로, 관계당국과 협의하여 공사진행에 장애가 되는 요소를 제거하고, 진행상황을 철저히 점검하여 확충이 지연되지 않도록 지속 관리하겠음
  (2023회계연도 결산)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2030년까지 35개 교정기관에서 대체복무역 1,903명 복무 예정임
- 대체복무 예비군 운영 : 2024년 160명을 시작으로 2033년까지 최대 3,800여명이 예비군 복무 이행 예정
  ※ 전국 16개 기관 분산 시행, 업무는 기존 대체복무요원 업무와 동일
- 대체복무역을 수용하기 위하여 기존 경비교도대원이 사용하던 막사 공간 리모델링 가능한 기관에 대하여 리모델링 실시 및 증축 신축 예정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2) 동 사업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 : 해당없음

13) 2026년도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 결과 및 후속 조치 현황

평가결과	성과평가 주요내용	조치결과
사업개선	- 급식비 등 불용 지속 발생 - 세부사업별 성과지표 필요	- 급식 품질 개선, 식수인원 사전 예측 등 - '대체복무요원 복무환경 만족도' 성과지표 관리

14) 부처 건의사항

- 해당 사업 예산과 관련한 부처 건의사항 및 희망사항 상술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3	14,575	-	14,575	-	△975	-	13,600	13,287	91.2	97.7	-	313
2024	16,459	-	16,459	-	-	-	15,649	14,777	89.8	94.4		872
2025	17,241	-	17,241	-	△650	-	16,591	16,210	94.0	97.7	-	380
2026	14,926	-	14,926	-	-	-	14,926	8,223	55.1	55.1	-	-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 해당없음

2) 주요 결산사항

□ 2023~2026년 결산사항

2023	▪ 수용인원 증가로 호송 횟수 증가에 따른 국내여비 부족으로 721백만원 전용 감, 수용인원 및 외부 의료시설 진료 등 증가에 따른 수용자 건강보험 예탁금 부족으로 200백만원 전용 감 ▪ 불용액 103백만원은 집행잔액
2024	▪ 지속적인 수용인원 및 환자의 증가 등으로 외부 병원진료 등 출장업무가 증가함에 따라 호송여비 부족으로 810백만원 전용 감
2025	▪ 지속적인 수용인원 및 환자의 증가로 인한 의료비 부족으로 일반수용비 500백만원 전용 감
2026	▪ 사업 진행 중

□ 2026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

□ 2026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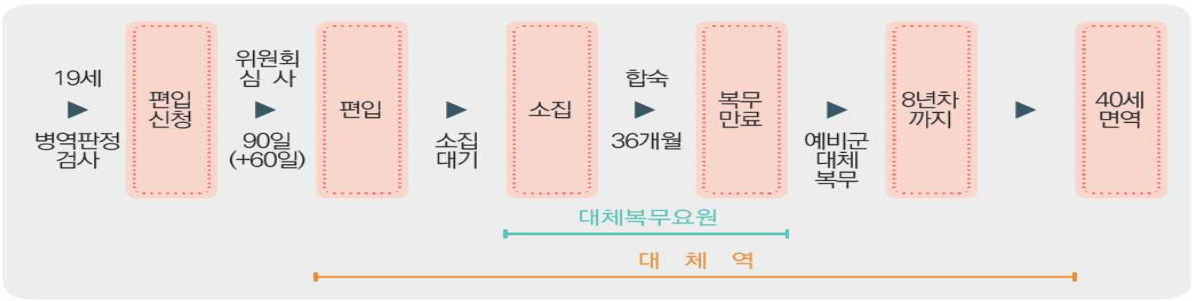
라. 기타 추가자료

참고 1 대체복무 운영경비 지원

□ 개요

○ 「병역법」 제5조(병역의 종류)에 의해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복무, 운영 중인 대체복무요원 운영경비 지원

▲ **(법적근거)**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20. 1. 1. 제정)」
※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의 헌법불합치 결정('18. 6월)
▲ **(복무방법)** 교정기관에서 36개월간 합숙복무
▲ **(주요업무)** 비군사적 성격의 공익적 업무 담당
⇒ 급식 보조, 물품관리 보조, 방역, 환자이동 보조, 도서·서신업무 보조, 구내·외 청소 등



□ 운영경비 지원 필요성

○ **'26년 대체복무 운영기관 1개 증가(대체복무요원 72명 증원)함에도 관련 예산 미반영으로** 안정적인 대체복무제 운영을 위한 필수 소요에 대한 증액 필요

※ 운영 기관 및 인원 증가 내역

2026년 예산안		2027년 소요 예산
▪ 운영기관 : 34기관	⇨	▪ 운영기관 : 35기관 (1기관↑)
▪ 대체복무 인원 : 1,743명		▪ 대체복무 인원 : 1,815명(72명 ↑)
▪ 대체복무 예비군 : 700명		▪ 대체복무 예비군 : 1,800명(1,100명 ↑)

사 업 명
교정시설 수용관리 및 공공요금 (1532-3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법무부	교정본부	일반회계	020	022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500	1532	300
명칭	교정활동	재소자 수용 및 교화	교정시설수용관리 및 공공요금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O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교정시설 수용관리 및 공공요금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교정본부	주기남	유 진	김현우
		복지과	02-2110-3420	02-2110-3423	02-2110-3429
	사업시행주체	-	-	-	-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년 결산	2026년 예산		2027년		증감 (B-A)	(B-A)/A
		본예산(A)	추경	요구	조정(B)		
교정시설 수용관리 및 공공요금	313,204	302,342	302,342	314,834	314,834	12,492	4.1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5					2026(2026.7월말)							2027 예산안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290,348	313,398	313,203	-	195	**302,342**	**302,342**	185,342 (183,997)	**302,342**	185,342 (183,997)	-	-	314,834
· 수용관리 직접경비	146,512	158,208	158,115	-	93	154,447	154,447	89,230 (87,923)	154,447	89,230 (87,923)	-	-	159,698
· 수용관리 간접경비	141,019	152,023	151,924	-	100	145,078	145,078	94,008 (93,971)	145,078	94,008 (93,971)	-	-	152,319
· 수용자 호송경비	2,806	3,156	3,154	-	2	2,806	2,806	2,098	2,806	2,098	-	-	2,806
· 수용자 사회봉사, 참관 등 경비	11	11	11	-	-	11	11	5	11	5	-	-	11
○ 비목별 분류(합계)	290,348	313,398	313,203	-	195	**302,342**	**302,342**	185,342 (183,997)	**302,342**	185,342 (183,997)	-	-	**314,834**
· 일반수용비(210-01)	9,087	8,283	8,283	-	-	9,296	9,296	6,600 (6,561)	9,296	6,600 (6,561	-	-	9,296
· 공공요금및제세(210-02)	137,917	148,062	147,966	-	97	142,363	142,363	91,833 (91,804)	142,363	91,833 (91,804)	-	-	149,108
· 유류비(210-08)	2,203	3,062	3,061	-	1	1,929	1,929	1,811	1,929	1,811	-	-	2,425
· 국내여비(220-01)	2,806	3,156	3,154	-	2	2,806	2,806	2,098	2,806	2,098	-	-	2,806
· 사업추진비(240-01)	11	11	11	-	-	11	11	5	11	5	-	-	11
· 구호및교정비(320-06)	137,425	149,925	149,833	-	93	145,151	145,151	82,630 (81,362)	145,151	82,630 (81,362)	-	-	150,402
· 공사비(420-03)	786	786	785	-	1	786	786	364 (356)	786	364 (356)	-	-	786
· 자산취득비(430-01)	113	113	113	-	-	-	-	-	-	-	-	-	-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290,348	313,398	313,203	-	195	**302,342**	**302,342**	185,342 (183,997)	**302,342**	185,342 (183,997)	-	-	314,834
· 수용관리 직접경비	146,512	158,208	158,115	-	93	154,447	154,447	89,230 (87,923)	154,447	89,230 (87,923)	-	-	159,698
-일반수용비(210-01)	9,087	8,283	8,282	-	-	9,296	9,296	6,600 (6,561)	9,296	6,600 (6,561	-	-	9,296
-구호및교정비(320-06)	137,425	149,925	149,833	-	93	145,151	145,151	82,630 (81,362)	145,151	82,630 (81,362)	-	-	150,402
· 수용관리 간접경비	141,019	152,023	151,925	-	100	145,078	145,078	94,008 (93,971)	145,078	94,008 (93,971)	-	-	152,319
-공공요금및제세(210-02)	137,917	148,062	147,966	-	97	142,363	142,363	91,833 (91,804)	142,363	91,833 (91,804)	-	-	149,108
-유류비(210-08)	2,203	3,062	3,061	-	1	1,929	1,929	1,811	1,929	1,811	-	-	2,425
-공사비(420-03)	786	786	785	-	1	786	786	364 (356)	786	364 (356)	-	-	786
-자산취득비(430-01)	113	113	113	-	-	-	-	-	-	-	-	-	-
· 수용자 호송경비	2,806	3,156	3,154	-	2	2,806	2,806	2,098	2,806	2,098	-	-	2,806

	2025					2026(2026.7월말)							2027 예산안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국내여비(220-01)	2,806	3,156	3,154	-	2	2,806	2,806	2,098	2,806	2,098	-	-	2,806
· 수용자 사회봉사 등 경비	11	11	11	-	-	11	11	5	11	5	-	-	11
-사업추진비(240-01)	11	11	11	-	-	11	11	5	11	5	-	-	11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수용관리비) 수용자 일상물품 지급 및 급식비, 피복비 등 직접비용 지원
- (공공요금 등 지원) 교정시설 공공요금 및 수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수용자 급양관리지침」, 「수용자 의료관리지침」

② 추진경위

- 수용자 급량, 피복, 보건의료 등 수용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재소자수용관리 사업 신설
- '04년 수용환경 개선 등에 따라 급증하는 공공요금 적정 관리를 위해 공공요금 및 제세 사업 신설
- '16년 교정시설 수용관리 및 공공요금 사업으로 통합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3	2024	2025	2026	2027(안)
사업비	252,286	269,102	290,348	302,342	314,834

- 기타: 특이사항 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법무부
- 사업 수혜자 : 수용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7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

① 수용관리 직접경비(급식비, 피복비, 소모성물품 등) 증액

: **(2026 본예산) 154,447백만원 → (2027 요구) 159,698백만원, 5251백만원 증액**

- (요구) 지속적인 수용인원 증가에 따른 경직성 수용경비 증액 요구
- (산출) 수용자 급식비·피복비·의료비 5,251백만원 증액
  수용자 소모성 물품(휴지, 비누, 수건 등) 구입비 전년동

ㅇ 2026년도 예산 및 2027년도 예산안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6년 본예산		2027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54,447	○ **일반수용비(210-01) : 9,296백만원** 가. 수용자 일상물품 지급 - 54개 기관 × 172백만원 = 9,296백만원 ○ **구호 및 교정비(320-06) : 145,151백만원** 가. 급식비 - 공통급식비 : 61,000명 × 5,326원 × 365일 = 118,583백만원 - 특식, 양육유아 등 기타 부대경비 : 1,249백만원 나. 피복비 - 61,000명 × 126천원 = 7,686백만원 다. 의료비 - 54개 기관 × 326백만원 = 17,602백만원	159,698	○ **일반수용비(210-01) : 9,296백만원** 가. 수용자 일상물품 지급 - 54개 기관 × 172백만원 = 9,296백만원 ○ **구호 및 교정비(320-06) : 150,402백만원** 가. 급식비 - 공통급식비 : 61,000명 × 5,377원 × 365일 = 119,719백만원 - 특식, 양육유아 등 기타 부대경비 : 1,279백만원 나. 피복비 - 61,000명 × 141천원 = 8,620백만원 다. 의료비 - 54개 기관 × 385백만원 = 20,784백만원

② 수용관리 간접경비(공공요금, 유류비, 공사비 등) 증액

: **(2026 본예산) 145,078백만원 → (2027 요구) 152,319백만원, 7,241백만원 증액**

- (요구) 수용인원 증가에 따른 건강보험예탁금, 공공요금 지원 확대 요구
- (산출) 교정시설 공공요금 585백만원 증액
  전화, 우편, 수용자 보험료 등 각종 제세 6,160백만원 증액
  유류비 496백만원 증액

ㅇ 2026년도 예산 및 2027년도 예산안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6년 본예산		2027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45,078	○ **공공요금및제세비(210-02) : 142,363백만원** 가. 교정시설 공공요금 ・54기관 × 2,096백만원 = 113,191백만원 나. 전화, 우편, 수용자 보험료 등 각종 제세 ・54기관 × 540백만원 = 29,172백만원 ○ **유류비(210-08) : 1,929백만원** 가. 교정시설 유류비 ・54기관 × 35.7백만원 = 1,929백만원 ○ **공사비(420-03) : 786백만원** 가. 수용동 승압 및 간선공사 ・10개소 × 78.6백만원= 786백만원	152,319	○ **공공요금및제세비(210-02) : 149,108백만원** 가. 교정시설 공공요금 ・54기관 × 2,109백만원 = 113,776백만원 나. 전화, 우편, 수용자 보험료 등 각종 제세 ・54기관 × 654백만원 = 35,332백만원 ○ **유류비(210-08) : 2,425백만원** 가. 교정시설 유류비 ・54기관 × 45백만원 = 2,425백만원 ○ **공사비(420-03) : 786백만원** 가. 수용동 승압 및 간선공사 ・10개소 × 78.6백만원= 786백만원

③ 수용자 호송여비 지원 : **(2026 본예산) 2,806백만원 → (2027 요구) 2,806백만원, 전년동**

- (요구) 수용인원 증가에 따른 검찰·법원 출정 증가 및 외부병원 진료 증가에 부족한 호송여비 증액 요구
- (산출) 전년 수준의 예산 반영

ㅇ 2026년도 예산 및 2027년도 예산안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6년 본예산		2027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2,806	○ **국내여비(220-01) : 2,806백만원** 가. 수용자 호송여비 ・54개 기관× 52백만원= 2,806백만원	2,806	○ **국내여비(220-01) : 2,806백만원** 가. 수용자 호송여비 ・54개 기관× 52백만원= 2,806백만원

④ 수용자 사회봉사, 참관 등 지원 : **(2026 본예산) 11백만원 → (2027 요구) 11백만원**

- (요구) 수용자 외부 사회봉사, 참관 등에 사용하는 경비를 전년 수준의 예산 요구
- (산출) 전년 수준의 예산 반영

ㅇ 2026년도 예산 및 2027년도 예산안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6년 본예산		2027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1	○ **사업추진비(240-01) : 11백만원** 가. 업무추진비 ・54개 기관× 204천원= 11백만원	11	○ **사업추진비(240-01) : 11백만원** 가. 업무추진비 ・54개 기관× 204천원= 11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3~2027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3	2024	2025	2026	2027	2027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재범고위험군 출소자 재복역률(%)	목표	35.6	35.3	35.3	33.0	32.9	최근 6년간 실적 평균치인 32.9%를 목표치로 설정함	REPI-4~5등급 판정을 받고 출소한 인원 중 2년 내 재복역 인원 / REPI-4~5등급 판정을 받고 출소한 인원	자체 통계 (교정행정 정보시스템)
	실적	30.4	31.3	31.8	-				
	달성도	114.6	113.3	109.9	-				
어린이집 이용 만족도(점수)	목표	4.85	지표 변경	-	-	-	- 지표변경	만족도 설문조사 점수 총계 / 응답자 수	재원원아 부모대상 설문조사
	실적	4.84	-	-	-	-			
	달성도	99.8	-	-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3	▪ 외부병원 진료(48,349명), 건강검진(41,730명), 원격 화상진료(49,129명) ▪ 수용자 1일 급식단가(4,994원 전년대비 4.0% 증)
2024	▪ 외부병원 진료(49,175명), 건강검진(44,714명), 원격 화상진료(49,868명) ▪ 수용자 1일 급식단가(5,094원 전년대비 2.0% 증)
2025	▪ 외부병원 진료(46,782명), 건강검진(44,194명), 원격 화상진료(52,289명) ▪ 수용자 1일 급식단가(5,201원 전년대비 2.1% 증)
2026	▪ 외부병원 진료(27,243명), 건강검진(6,331명), 원격 화상진료(30,875명) ▪ 수용자 1일 급식단가(5,326원 전년대비 2.4% 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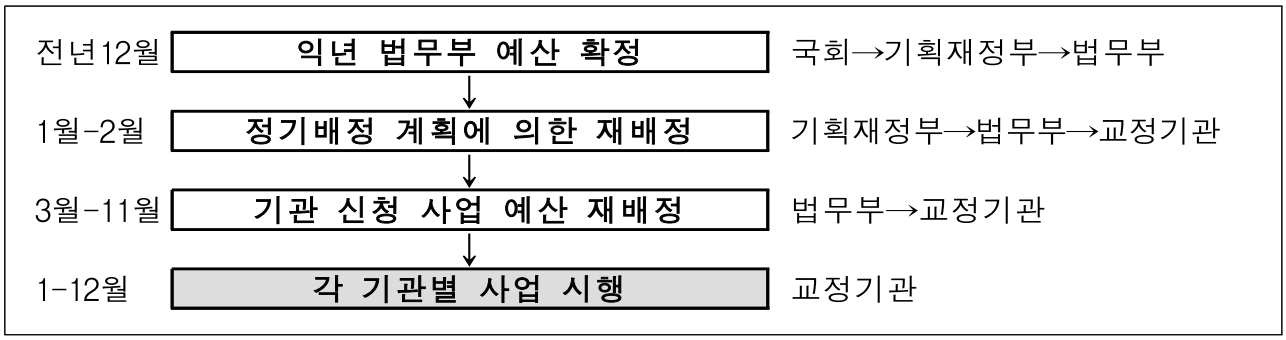
③ 향후(2027년도 이후) 기대효과 :

- 수용자 일상생활용품 지원 및 외부병원을 활용한 건강검진 실시로 수용자 처우 향상
- 만성적인 의무관, 간호사 등 의료인력 부족을 보충하기 위해 원격화상진료 지속 확대를 통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 물가상승률 수준의 급식단가 인상으로 수용자 급식 개선
- 상·하수도, 전기, 가스 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으로 공공요금 소요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재정당국과 적극 협의하여 적정 예산 확보 주력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25~2029	290,348	302,342	278,465	272,603	185,542	
2026~2030		302,342	332,024	341,985	352,244	362,812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해당없음

국회(상임위 등)	지적사항	비고
'23회계연도 결산	① 법무부는 사업 집행 내역을 모니터링하여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이·전용을 방지할 것 ② 법무부는 정신과 의료진 확충 등 국가인권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법무부는 수용자의 외부의료시설 이용 증가 및 외부 병원진료 및 입원 등 관련 비용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수용자 의료관리체계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③ 법무부는 수용자들의 진료 및 처방 건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특히 향정신성의약품의 처방·복용 건수에 대해 교정시설별로 통계를 작성·관리하는 등 대책을 마련할 것	
'24회계연도 결산	① 교정시설 수용인원 및 1일 평균 수용률이 증가하여 의료비, 호송여비, 유류비 예산 등이 초과집행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2) 감사원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 해당없음

3) 자체평가 : 해당없음

4)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 해당없음

5)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지적사항	후속 조치사항
① 법무부는 사업 집행 내역을 모니터링하여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이·전용을 방지할 것 ② 법무부는 정신과 의료진 확충 등 국가인권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법무부는 수용자의 외부의료시설 이용 증가 및 외부 병원진료 및 입원 등 관련 비용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수용자 의료관리체계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③ 법무부는 수용자들의 진료 및 처방 건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특히 향정신성의약품의 처방·복용 건수에 대해 교정시설별로 통계를 작성·관리하는 등 대책을 마련할 것 ('23회계연도 결산 법사위 검토보고) ④ 교정시설 수용인원 및 1일 평균 수용률이 증가하여 의료비, 호송여비, 유류비 예산 등이 초과집행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① 엔데믹 이후 지속 증가하는 수용인원 및 공공요금 단가 인상 등으로 부득이하게 공공요금을 이·전용하였음. 다만, 교정시설 수용관리에 소요되는 공공요금의 연례적 이·전용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2024년 8.1%, 2025년 5.1% 등 관련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음. 향후 수도 절수기 설치 등 공공요금 절감을 위한 자체 절감방안을 시행하고 적정한 예산을 반영하여 이·전용을 개선하기 위해 재정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음 ② 외부 정신과 전문의 교정시설 파견 협의 실시, 원격의료센터 정신과 전문의 정원 확충 추진, 진료정보교류시스템 연계 협의 실시 등 정신질환 수용자 치료 체계 구축 및 교정기관 내 진료 내실화 방안을 마련하였음. 국가지급 의약품 품목 간소화 등 의료비 절감 방안을 마련하였음 ③ 기존 향정신성의약품 통계에 마약성진통제·기타 교정시설 규제약물을 추가하였고,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예방지원단을 통한 향정신성의약품 투약내역 모니터링 및 오남용 사례를 점검하고 있음 ④ 가석방 적극 시행 등 과밀수용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교정시설 수용자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급량비·피복비·의료비 등 수용관리 비용과 건강보험료·상하수도 요금 등 공공요금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으로, 매년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이·전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요금 인상률과 예산편성 기준 수용인원을 현실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음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2) 동 사업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 : 해당없음

13) 2026년도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 결과 및 후속 조치 현황

평가결과	성과평가 주요내용	조치결과
사업개선	- 의료비 등 수용관리 비용 적정성 확보 필요 - 세부사업별 성과지표 필요	- 혈액투석실 증설, 원격진료 확대 등 의료비 절감 노력 - '원격진료 실시 현황' 성과지표 관리

14) 부처 건의사항

- 해당 사업 예산과 관련한 부처 건의사항 및 희망사항 상술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3	252,286	-	252,286	-	30,881	-	283,167	283,066	112.2	100.0	-	101
2024	269,102		269,102	-	30,991	-	300,093	299,909	111.4	99.9	-	184
2025	290,348		290,348	-	23,050	-	313,398	313,204	107.9	99.9	-	66
2026	302,342		302,342	-	-	-	302,342	185,342	61.3	61.3	-	-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 해당없음

2) 주요 결산사항

□ 2023~2026년 결산사항

2023	- 수용인원 증가에 따른 수용자 급식비 부족으로 9,100백만원 이용 증, 수용인원 증가 및 공공요금 단가 상승에 따른 공공요금 부족으로 16,000백만원 이용 증, 수용인원 및 외부 의료시설 진료 등 증가에 따른 수용자 건강보험 예탁금 부족으로 160백만원 이용 증·3,400백만원 전용 증, 수용인원의 증가로 호송 횟수 증가에 따른 국내여비 부족으로 721백만원 전용 증·130백만원 사업 내 전용, 수용인원 및 외부 의료시설 진료 증가 등에 따른 수용자 의료비 부족으로 1,500백만원 전용 증·1,000백만원 사업 내 전용 - 불용액 101백만원은 집행잔액
2024	- 수용인원 증가에 따른 수용자 급식비 부족으로 9,915백만원 이용 증, 수용인원 증가 및 공공요금 단가 상승에 따른 공공요금 부족으로 16,830백만원 이용 증, 수용인원의 증가로 호송 횟수 증가에 따른 국내여비 부족으로 1,100백만원 전용 증, 수용인원 및 외부 의료시설 진료 증가 등에 따른 수용자 의료비 부족으로 2,646백만원 전용 증, 유류비 부족으로 500백만원 사업 내 내역변경 - 불용액 184백만원은 집행잔액
2025	- 수용인원 증가 및 공공요금 단가 상승에 따른 공공요금 부족으로 2,200백만원 이용 증, 수용인원 증가에 따른 수용자 급식비 부족으로 7,530백만원, 의료비 4,976백만원 이용 증
2026	- 사업 진행 중

□ 2026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

□ 2026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참고 1 수용관리 및 공공요금 현황

□ 수용관리 직·간접경비 현실화

❶ 수용자 급식비

- 수용인원 증가 및 식재료비 단가 인상 등에 따른 수용자 급식의 양적·질적 저하 심화로 급식비 현실화 필요

▸ **(요구)** 123,793백만원(+5,210백만원, +4.4%)

- (물량) '25년 연평균 수용인원 63,680임을 감안하여
  ('26) 61,000명 → ('27) 63,680명으로 요구
- (단가) '26년 단가 5,326원 전년과 같은 금액으로 유지

▸ (산출내역)

구분	산출내역		요구
	2026년	2027년	
수용자 급식비	61,000명×5,326원×365일 = 118,583백	63,680명×5,326원×365일 = 123,793백	+5,210백
급식가산금	1,442명×888천 = 1,280백	1,442명×888천 = 1,280백	전년동
계			**5,210백만원**

1) 63,680명 : '27년 예산편성 요구 인원('25년 연평균 수용인원)
2) 5,326원 : 수용자 '26년 1일 급식 단가

❷ 수용자 피복비

- 수용자 평상복, 내의류, 신발, 침구류 등 수용생활에 필요한 각종 피복비 지원 필요, 수용인원 증가에 따른 증액 요구

▸ **(요구)** 8,024백만원(+338백만원, +4.4%)

- (물량) '25년 연평균 수용인원 63,680임을 감안하여
  ('26) 61,000명 → ('27) 63,680명으로 요구
- (단가) '26년 단가 126천원 전년과 같은 금액으로 유지

▸ (산출내역)

구분	산출 내역		요구
	2026년	2027년	
수용자 피복비	61,000명×126천 = 7,686백	63,680명×126천 = 8,024백	+338백

❸ 수용자 생필품 구입비

- 교정시설 수용자의 생필품(치약, 칫솔, 비누, 화장지, 세탁비누, 세제 등) 지원 필요, 수용인원 증가에 따른 증액 필요

▸ **(요구)** 8,864백만원(+373백만원, +4.4%)

- (물량) '25년 연평균 수용인원 63,680임을 감안하여
  ('26) 61,000명 → ('27) 63,680명으로 요구
- (단가) '26년 단가 11,599원 전년과 같은 금액으로 유지

▸ (산출내역)

구분	산출내역		요구
	2026년	2027년	
수용자 생필품지급	61,000명×11,599원×12월 = 8,491백	63,680명×11,599원×12월 = 8,864백	+373백

❹ 수용자 의료비

- 수용인원의 증가와 노인 수용자, 생활 습관병의 유병률* 증가 등 교정시설 내 환자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외부 병원진료 증가 추세, 적정하고 기본적인 의료처우를 위해 의료비 현실화 추진

* 유병률(Prevalence)은 특정 시점이나 기간에 특정 인구 집단에서 특정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의 비율을 나타내는 역학적 지표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의료비 편성액	10,863백	11,288백	11,144백	12,479백	12,663백	13,248백	15,726백
의료비 집행액	12,425백	13,801백	16,381백	14,477백	16,320백	16,086백	20,784백
의료비 부족액	△1,562백	△2,513백	△5,237백	△1,998백	△3,657백	△2,838백	△5,058백

▸ **(요구)** 22,660백만원(+5,058백만원, +28.7%)

- (물량) '25년 연평균 수용인원 63,680임을 감안하여
  ('26) 61,000명 → ('27) 63,680명으로 요구
- (단가) 전년도 부족액을 반영한 ('26) 24천원 → ('27) 29.6천원으로 요구

▸ (산출내역)

구분	산출내역		요구
	2026년	2027년	
수용자 피복비	61,000명×24천원×12월 = 17,602백	63,680명×29.6천원×12월 = 22,660백	+5,058백

□ 수용관리 간접경비

○ 교정기관 공공요금

- 공공요금의 단가 인상 및 수용인원 증가 등으로 예산 부족에 따른 연례적 이·전용 집행 반복, 이에 따라 국회 결산 시 시정요구 반복

※ 공공요금 관련 국회 시정요구 사항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주의	제도개선	제도개선	주의	주의	주의	-	제도개선	-	-

- 절수기 및 쓰레기 압축기 등 공공요금 절감 노력과 더불어 전년도 결산액 및 공공요금 단가 인상을 감안한 현실적인 편성이 필요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예산액	**75,773백**	**82,989백**	**92,096백**	**98,176백**	**110,860백**	**115,428백**
집행액	**92,096백**	**98,176백**	**105,780백**	**114,871백**	**118,873백**	**125,514백**
이·전용액	**16,323백**	**15,187백**	**13,684백**	**16,695백**	**8,013백**	**10,086백**

▸ **(요구)** 129,300백만원(+ 10,986백만원, + 9.3%)

- (물량) 전국 54개 교정기관(교도소 39개, 구치소 12개, 지소 3개)
- (단가) 전국 54개 교정기관 평균단가 2,394백만원

▸ (산출내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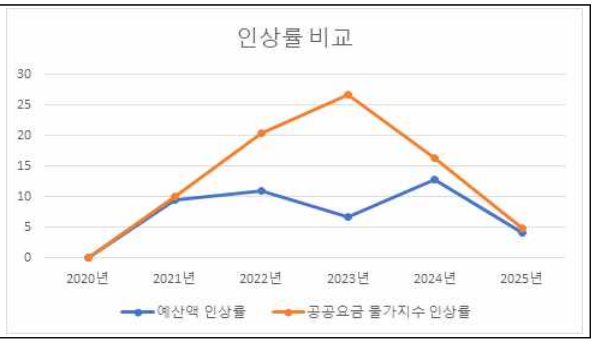
구분	산출내역		요구
	2026년	2027년	
교정기관 공공요금	**54기관×2,191백 = 118,314백**	**54기관 × 2,394백 = 129,300백**	+10,986백

· 부족분 : 125,514백('25년 집행액) - 118,314백('26년 편성액) = 7,200백
· 단가인상 : 118,314백('26년 편성액)×3.2%*= 3,786백
* 최근 5년간(2021년~2025년) 공공요금 연간 평균단가 상승률

< 공공요금 단가 인상률과 교정 공공요금 인상률 비교 >

< 공공요금 단가 인상률과 교정 공공요금 인상률 비교 >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예산액	75,773	82,989	92,096	98,176	110,860	115,428
예산액 인상률		9.5	11.0	6.6	12.9	4.1
공공요금 물가지수	100	100.6	110.2	132.5	137.1	138.0
공공요금 인상률		0.6	9.5	20.2	3.5	0.7



참고 2 **수용관리 직·간접경비 관련 현황**

☐ 추진 배경

○ 방역 완화 및 마약, 불법노조, 벌금 미납 범죄에 대한 정부의 강력 대응 등에 따른 수용인원 증가로 수용자 운영경비 증액 필요

〈연도별 평균 수용인원 및 수용률〉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수용정원	48,980명	48,990명	49,922명	50,250명	50,230명
평균 수용인원	52,368명	51,117명	56,577명	61,366명	63,680명
수용률	106.9%	104.3%	113.3%	122.1%	126.8%
편성인원	53,200명	52,500명	51,700명	55,200명	59,500명
예산 미반영 인원	**832명**	**1,383명**	**△4,877명**	**△6,166명**	**△4,180명**

☐ 현실태

○ 각종 범죄의 다양화, 경제침체에 따른 경제사범 증가 등 사회적 원인으로 수용인원 증가 및 급식 단가 현실화를 통한 수용자 급식비 증액 필요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수용자 급식비(편성)	94,017백	93,764백	95,284백	103,679백	114,202백
수용자 급식비(집행)	95,724백	96,664백	102,887백	113,747백	121,363백
◈ 부족액(차액)	**△1,707백**	**△2,900백**	**△7,603백**	**△10,068백**	**△7,161백**

○ 노인 수용자, 생활 습관병의 유병률* 증가 등 교정시설 내 환자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수용자 의료비, 외부진료비 현실화 필요

* 유병률(Prevalence)은 특정 시점이나 기간에 특정 인구 집단에서 특정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의 비율을 나타내는 역학적 지표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외부병원진료	39,176건	41,243건	48,349건	49,175건	46,782건
원격진료	28,501건	39,957건	49,129건	49,868건	52,289건
환자 수	22,128명	27,388명	30,020명	34,935명	35,559명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수용자 의료비(편성)	11,144백	12,479백	12,663백	13,248백	15,726백
수용자 의료비(집행)	16,381백	14,477백	16,320백	16,086백	20,784백
◈ 부족액(차액)	**△5,237백**	**△1,998백**	**△3,657백**	**△2,838백**	**△5,058백**

* 최근 5년간 수용자 의료비 평균 부족액 : 3,758백만원

○ 공공요금의 단가 인상 및 수용인원의 증가 등으로 공공요금 관련 예산 부족에 따른 연례적 이·전용 집행 반복, 이에 따라 국회 결산 시 시정요구 반복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공공요금(편성)	**82,989백**	**92,096백**	**98,176백**	**110,860백**	**115,428백**
공공요금(집행)	**98,176백**	**105,780백**	**114,871백**	**118,873백**	**125,514백**
◈ 부족액(차액)	**△15,187백**	**△13,684백**	**△16,695백**	**△8,013백**	**△10,086백**

□ 개선 방안

○ 마약, 불법노조, 벌금 미납 범죄에 대한 정부의 강력 대응 등에 따른 수용인원 증가추세에 따라 '25년 평균 수용인원이 63,680명인 점을 감안, 수용인원 63,680명 기준 및 실질적인 집행액을 반영한 예산 편성을 통해 수용자 직접경비 및 의료비 현실화 추진

□ 소요산출 : 293,921백(+21,965, +8.1%)

구 분	2026년	2027년 요구
합 계	**271,956백**	**293,921백**
급식비	61,000명×5,326원×365일=118,583백	63,680명×5,326원×365일=123,793백
급식가산금	1,442명×888천=1,280백	1,442명×888천=1,280백
생필품	61,000명×11,599원×12월=8,491백	63,680명×11,599원×12월=8,864백
피복비	61,000명×126천=7,686백	63,680명×126천=8,024백
의료비	61,000명×24천×12월=17,602백	63,680명×29.6천×12월=22,660백
공공요금	54기관×2,191백=118,314백	54기관×2,394백=129,300백

참고 2 **언론보도**

감옥 부족해 '구속 못 하는 날' 오나...IMF 이후 최악 과밀에 비상

양윤우, 조은영, 이혜수 기자

2025.12.28 09:47

[기획]사고뭉치된 콩나물 감방①범죄인 감옥 못 보내는 상황 현실화하나

[편집자주] 교도소와 구치소 등 교정시설이 '콩나물 감방'을 넘어섰다. 늘고 직전에 몰리면서 교정효과는 떨어지고 있다. 되려 사고가 늘면서 의료비, 손해배상비로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 교정시설 과밀수용의 실태와 근본적인 원인을 살펴보고 지금 당장 가능한 해법을 따져봤다.



2025 법무부 2025 교정통계연보 사진=Gemini

"교정시설에 들어오는 범죄자들이 이 정도 수준으로 늘어난 건 IMF 외환위기 때 이후 처음입니다. 그때는 주로 경제사범들이 들어왔다면 지금은 마약성폭력 범죄자들에 고령 수형자 증가까지 겹치면서 과밀이 심화한 상황입니다."(법무부 교정본부 관계자)

교정시설이 말 그대로 가득 찼다. 법조계에서는 교정시설 과밀문제를 더 방치하면 부작용이 더 커질 것이란 진망이 많다. 최악의 경우 감옥이 모자라 범죄자들을 감옥에 보내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SBS NEWS

'신문지 6장' 자리마저...교도소 미어터지자 가석방?

입력 2026.01.17. 오전 7:41 수정 2026.01.17. 오전 8:02



교정시설 폭행 잇따라... 과밀·인력난에 현장 안전 '경고등'

오인애 기자 | 승인 2025.08.19 15:56 | 호수 99

9년새 폭행건수 3.5배 증가... 교도관 정신건강 악화

법조계 "과밀해소·전담치료체계 구축 등 개선 시급"



국민 세금 402억, 교정시설 의약품비로...과밀수용·고령화 '이중고'

입력 2025.11.06 07:00 / 수정 2025.11.06 07:

전국 교정시설 5년간 의약품비 402억 집행
환자 수 10년새 44.2%↑... 예산 '문제없기도'
입원 수용자 감당할 교정인력 태부족



지난 5년간 전국 교정시설에서 수용자 의약품비로 집행된 예산은 약 402억 원에 달했고,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한 자료 사진이다. 연합뉴스

수감자 고령화에...교정시설도 의료비 급증

입력 2025.09.11. 오후 5:55 수정 2025.09.12. 오전 1: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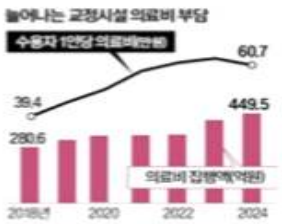
의료비 집행액 6년새 60%↑
작년엔 예산 34% 초과

의료 인력 부족에 외부진료 늘어
수감 중에는 건강보험 자격 정지
법무부 예산금에서 병원비 지급
수용인원 과밀화도 부담 가중

마약사범 증가로 수감자 더 늘듯
"원격진료 가능성 확대 고려해야"

교정시설 수용자의 의료비 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지난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 수용자가 늘어나고 시설 과밀화가 심화하면서 교정시설의 의료비 부담이 크게 증가한 것이다.

◇65세 이상 수감자 6년 새 173% 급증



사 업 명
교정교화 (1532-3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법무부	교정본부	일반회계	020	022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500	1532	301
명칭	교정활동	재소자 수용 및 교화	교정교화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O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교정교화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교정본부	주기남	유 진	김현우
		복지과	02-2110-3420	02-2110-3423	02-2110-3429
	사업시행주체	-	-	-	-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년 결산	2026년 예산		2027년		증감 (B-A)	(B-A)/A
		본예산(A)	추경	요구	조정(B)		
교정교화	11,246	13,260	13,260	13,834	13,834	574	4.3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5					2026(2026.7월말)							2027 예산안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11,457	11,257	11,245	-	11	13,260	13,260	8,191 (8,015)	13,260	8,191 (8,015)	-	-	13,834
· 수용자 교정교화 프로그램 운영	9,712	9,514	9,508	-	6	11,374	11,374	6,804 (6,650)	11,374	6,804 (6,650)	-	-	11,434
· 수용자 교정교화 시설 개선	1,239	1,237	1,235	-	2	1,380	1,380	1,044 (1,023)	1,380	1,044 (1,023)	-	-	1,894
· 무의탁 출소자 지원	506	506	502	-	4	506	506	343	506	343	-	-	506
○ 비목별 분류(합계)	11,457	11,257	11,245	-	11	13,260	13,260	8,191 (8,015)	13,260	8,191 (8,015)	-	-	13,834
· 일반수용비(210-01)	7,338	7,140	7,139	-	-	8,559	8,559	4,117 (4,091)	8,559	4,117 (4,091)	-	-	8,326
· 시설장비유지비(2100-9)	208	206	206	-	-	208	208	49	208	49	-	-	208
· 일반연구비(260-01)	630	630	629	-	1	-	-	-	-	-	-	-	-
· 정보보안비(280-00)	676	676	676	-	-	848	848	848	848	848	-	-	1,156
· 구호및교정비(320-06)	506	506	502	-	4	506	506	343	506	343	-	-	506
· 공사비(420-03)	1,031	1,031	1,029	-	2	1,172	1,172	995 (974)	1,172	995 (974)	-	-	1,686
· 자산취득비(430-01)	1,068	1,068	1,064	-	4	1,967	1,967	1,839 (1,711)	1,967	1,839 (1,711)	-	-	1,952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11,457	11,257	11,245	-	11	13,260	13,260	8,191 (8,015)	13,260	8,191 (8,015)	-	-	13,834
· 수용자 교정교화 프로그램 운영	9,712	9,514	9,508	-	-	11,374	11,374	6,804 (6,650)	11,374	6,804 (6,650)	-	-	11,434
-일반수용비(210-01)	7,338	7,140	7,139	-	-	8,559	8,559	4,117 (4,091)	8,559	4,117 (4,091)	-	-	8,326
-일반연구비(260-01)	630	630	629	-	1	-	-	-	-	-	-	-	-
-정보보안비(280-00)	676	676	676	-	-	848	848	848	848	848	-	-	1,156
-자산취득비(430-01)	1,068	1,068	1,064	-	4	1,967	1,967	1,839 (1,711)	1,967	1,839 (1,711)	-	-	1,952
· 수용자 재범방지 교육시설 개선	1,239	1,237	1,235	-	-	1,380	1,380	1,044 (1,023)	1,380	1,044 (1,023)	-	-	1,894
-시설장비유지비(2100-9)	208	206	206	-	-	208	208	49	208	49	-	-	208
-공사비(420-03)	1,031	1,031	1,029	-	2	1,172	1,172	995 (974)	1,172	995 (974)	-	-	1,686
· 무의탁 출소자 지원	506	506	502	-	-	506	506	343	506	343	-	-	506
-구호및교정비(320-06)	506	506	502	-	4	506	506	343	506	343	-	-	506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수용자 교정교화 활동 지원) 수용자 교정교화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강사비 운영비 구호 및 교정비, 활동비 등 지원
- (교화시설 및 장비 개선) 노후 교화시설 센터 시설 개선 및 장비 교체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조항 적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46조, 제55조, 제58조, 제61조, 제63조, 제64조

② 추진경위

- 수용자 재범방지 및 재사회화 교육을 통한 사회복귀 지원
- 수용자의 범죄성 제거를 통한 사회복귀 지원을 위해 '04년 사업 신설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3	2024	2025	2026	2027(안)
사업비	10,537	11,920	11,457	13,260	13,834

- 기타: 특이사항 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법무부
- 사업 수혜자 : 수용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7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

① 수용자 교정교화 프로그램 운영

: **(2026 본예산) 11,374백만원 → (2027 요구) 11,434백만원, 60백만원 증액**

- (요구) 수형자의 교정교화 프로그램의 계속 운영,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마약류 수용자 전주기 교육 및 치료 등 전주기 관리 강화 예산 지원 요구
- (산출) 마약사범재활 인프라 구축 106백만원 증액
  스토킹 범죄 이수명령 교육 강사료 등 234백만원 감액

ㅇ 2026년도 예산 및 2027년도 예산안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6년 본예산		2027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1,374	○ **일반수용비(210-01) : 8,559백만원** ・ 이수명령 교육 등 : 54기관 × 147백만원 = 7,959백만원 ・ 수용자 위기자녀 지원 : 2,000건 × 30만원 = 600백만원 ○ **자산취득비(430-01) : 1,967백만원** 가. 마약사범 치료재활 기기 도입 (846백만원) ・ 뉴로바이오신호 기기 도입 : 6기관 ×141백만원 = 846백만원 나. 마약사범 전담 교육실 물품 구입 (90백만원) ・ 교육실 물품 구입 : 6기관 ×15백만원 = 90백만원 다. 가상현실(VR) 프로그램 활용 장비 도입 (120백만원) ・ VR 운용장비 도입 : 10기관 × 2백만원 = 120백만원 다. 각종 교정교화용 물품 구입 (911백만원) ・ 학과교육 물품 등 : 54기관 × 16.87천원 = 911백만원	11,434	○ **일반수용비(210-01) : 8,326백만원** ・ 이수명령 교육 등 : 54기관 × 143백만원 = 7,726백만원 ・ 수용자 위기자녀 지원 : 2,000건 × 30만원 = 600백만원 ○ **자산취득비(430-01) : 1,952천원** 가. 마약사범 치료재활 기기 도입 (846백만원) ・ 뉴로바이오신호 기기 도입 : 6기관 ×141백만원 = 846백만원 나. 마약사범 전담 교육실 물품 구입 (196백만원) ・ 교육실 물품 구입 : 13기관 ×15백만원 = 196백만원 다. 각종 교정교화용 물품 구입 (911백만원) ・ 학과교육 물품 등 : 54기관 × 16.87천원 = 911백만원

② 수용자 재범방지 교육시설 개선

: **(2026 본예산) 1,380백만원 → (2027 요구) 1,894백만원, 514백만원 증액**

- (요구) 수형자의 교정교화 등 각종 처우에 필요한 시설개선 유지 필요, 마약사범 전담 교육실 리모델링 예산 지원 요구
- (산출) 마약사범재활 인프라 구축 514백만원 증액

ㅇ 2026년도 예산 및 2027년도 예산안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6년 본예산		2027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380	○ **시설장비유지비(210-09) : 208백만원** 가. 교화시설장비유지 ・54기관×3.9백만원 = 208백만원 ○ **공사비(420-03) : 1,172백만원** 가. 교화시설개선 ・54기관×14백만원 = 731백만원 나. 마약사범 전담 교육실 리모델링 ・6기관 × 72㎡ × 1백만원 = 441백만원	1,894	○ **시설장비유지비(210-09) : 208백만원** 가. 교화시설장비유지 ・54기관×3.9백만원 = 208백만원 ○ **공사비(420-03) : 1,686백만원** 가. 교화시설개선 ・54기관×14백만원 = 731백만원 나. 마약사범재활 인프라 구축 ・13기관 × 72㎡ × 1백만원 = 955백만원

③ 무의탁 출소자 지원

: **(2026 본예산) 506백만원 → (2027 요구) 506백만원 전년동**

- (요구) 무위탁 출소자의 사회복귀 지원을 위해 전년 수준의 예산 요구
- (산출) 전년 수준의 예산 반영

ㅇ 2026년도 예산 및 2027년도 예산안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6년 본예산		2027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506	○ **구호 및 교정비(320-06) : 506백만원** 가. 무의탁 수용자 지원 - 54개 기관 × 5.5백만원 = 297백만원 나. 형·구속집행정지 출소자 지원 - 54개 기관 × 3.9백만원 = 209백만원	506	○ **구호 및 교정비(320-06) : 506백만원** 가. 무의탁 수용자 지원 - 54개 기관 × 5.5백만원 = 297백만원 나. 형·구속집행정지 출소자 지원 - 54개 기관 × 3.9백만원 = 209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3~2027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3	2024	2025	2026	2027	2027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재범고위험군 출소자 재복역률(%)	목표	35.6	35.3	35.3	33.0	32.9	최근 6년간 실적 평균치인 32.9%를 목표치로 설정함	REPI-4~5등급 판정을 받고 출소한 인원 중 2년 내 재복역 인원 / REPI-4~5등급 판정을 받고 출소한 인원	자체 통계 (교정행정 정보시스템)
	실적	30.4	31.3	31.8	-				
	달성도	114.6	113.3	109.9	-				
어린이집 이용 만족도(점수)	목표	4.85	지표 변경	-	-	-	- 지표변경	만족도 설문조사 점수 총계 / 응답자 수	재원원아 부모대상 설문조사
	실적	4.84	-	-	-	-			
	달성도	99.8	-	-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3	▪ 심리치료(성폭력 3,040명, 정신질환자 308명, 아동학대 99명, 우울특화 89명, 스토킹 117명 등 5,934명) 실시 ▪ 중독재활(마약류 936명, 마약류 중독예방 1,286명, 알코올 918명) 실시 ▪ 마약사범재활 전담교정시설 지정·운영(화성직훈교, 부산교) ▪ 집중인성교육 6,955명 실시 ▪ 설치 공간 부족 등 5개 교정기관을 제외한 전국 49개 교정기관 '아동친화형 가족접견실' 리모델링 완료(홍성교, 거창구 신규 설치) ▪ 개별 가족 중심의 가족관계회복 프로그램 추진(귀휴 1,057명, 가족만남의 시간 2,588명, 가족만남의 집 859명) ▪ 엄마인 수형자와 미성년 자녀와의 지속적 유대관계를 위한 '엄마의 목소리'프로그램 47명 141회 녹음 실시
2024	▪ 심리치료(성폭력 3,000명, 정신질환자 273명, 아동학대 96명, 우울특화 104명, 스토킹 369명 등 4,179명) 실시 ▪ 중독재활(마약류 1327명, 마약류 중독예방 1,388명, 알코올 1,000명) 실시 ▪ 마약사범재활 전담교정시설 추가 지정·운영(광주교, 청주여교) ▪ 집중인성교육 7,426명 실시 ▪ 개별 가족 중심의 가족관계회복 프로그램 추진(귀휴 1,397명, 가족만남의 시간 3,199명, 가족만남의 집 1,662명) ▪ 엄마인 수형자와 미성년 자녀와의 지속적 유대관계를 위한 '엄마의 목소리'프로그램 31명 93회 녹음 실시
2025	▪ 심리치료(성폭력 2,788명, 정신질환자 150명, 아동학대 100명, 우울특화 89명, 스토킹 433명 등 3,840명) 실시 ▪ 중독재활(마약류 1,453명, 마약류 중독예방 4,714명, 알코올 921명) 실시 ▪ 마약사범재활 전담교정시설 추가 지정(대구교) ▪ 집중인성교육 6,958명 실시 ▪ 개별 가족 중심의 가족관계회복 프로그램 추진(귀휴 1,442명, 가족만남의 시간 2,701명, 가족만남의 집 1,538명) ▪ 엄마인 수형자와 미성년 자녀와의 지속적 유대관계를 위한 '엄마의 목소리'프로그램 35명 105회 녹음 실시
2026	▪ 심리치료(성폭력 1,694명, 정신질환자 77명, 아동학대 62명, 우울특화 75명, 스토킹 353명 등 2,448명) 실시 ▪ 중독재활(마약류 930명, 마약류 중독예방 2,346명, 알코올 352명) 실시(7.31.기준) ▪ 마약사범재활 전담교정시설 추가 지정(대전·여주·원주·춘천·창원·포항·전주·순천교) ▪ 집중인성교육 4,330명 실시 ▪ 개별 가족 중심의 가족관계회복 프로그램 추진(귀휴 880명, 가족만남의 시간 1,843명, 가족만남의 집 1,012명) ▪ 엄마인 수형자와 미성년 자녀와의 지속적 유대관계를 위한 '엄마의 목소리'프로그램 25명 75회 녹음 실시

③ 향후(2027년도 이후) 기대효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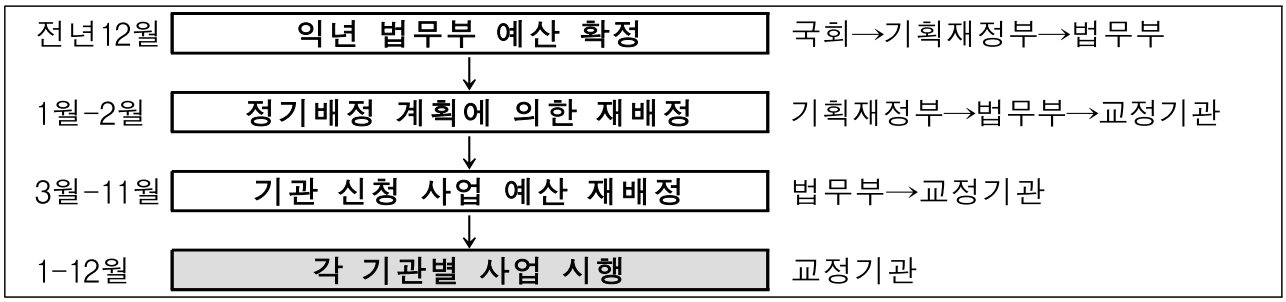
- 아동친화형 가족접견실 완비 등 가족관계회복 프로그램 확대로 가족관계 유지·회복을 통한 출소 후 사회적 지지 기반 마련

- 성폭력 사범·중독사범 등 재범방지 교육 강화 및 분류센터·정신보건센터·심리치료센터 등 전문 치료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개별수형자에 대한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시행으로 범죄성을 순화, 출소 후 재범률 감소
- 마약류 수용자 전주기 관리, 교육 강화 및 회복이음 과정을 신설하여 출소 후 단약 지속을 유도하여 출소 후 재범률 감소 기대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25~2029	11,457	13,260	9,357	9,160	8,864	
2026~2030		13,260	14,918	15,366	15,827	16,301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 법무부는 '가족만남의 날' 행사 등 수형자에 대한 사회적 처우 제도의 긍정적 영향을 고려하여 수형자의 일반 사회생활 접근과 가족과의 유대관계를 지속하는 방안 등 사회적 추세와 교정 방식에 부합하도록 개선 방안을 강구할 것 (2023회계연도 결산)
- 법무부는 심리치료 업무지침상 심리치료팀 구성기준을 충족하도록 상담전담 직

원을 충원·배치하고, 외부전문가 상담을 활성화하는 등 심리치료 업무지침에 부합하는 교정·교화제도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2024회계연도 결산)

2) 감사원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 해당없음

3) 자체평가 : 해당없음

4)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 해당없음

5)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 2024년 귀휴 실적이 2023년 대비 30.9% 증가하였고, '가족만남의 집' 실적이 85.7% 증가하는 등 사회적 처우 확대를 지속 추진하였음. '가족누리통합솔루션'을 시범실시하여 타 가족의 사생활침해 등 우려가 있는 '가족만남의 날' 행사 대신 개별가족 위주의 프로그램을 강화하였음. 향후 2025년에도 가족상담이 포함된 가족관계회복프로그램(귀휴+가족사랑캠프 등)을 확대 운영할 계획임 (2023회계연도 결산)
- 상담전담 직원, 심리치료프로그램 업무 담당자 및 심리관련 자격을 갖춘 전문인력 등 기관별 특성, 심리치료 수요에 따라 구성인력 충원·배치하고, 교정현장 인력이 부족하거나 수용자의 세밀한 진단 및 심리상담이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 상담 적극 실시하고, 향후 「심리치료 업무지침」에 부합하는 교정·교화제도 시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점검·개선 계획임(2024회계연도 결산)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성폭력사범에 대한 실효적 교육을 위해 교정심리치료센터 운영 등 선진 교정교화 프로그램 실시로 수용자의 성공적인 사회복귀 및 재범방지에 기여
- 특히, '13년부터는 전 수형자 대상의 '일률적 공통 학과교육, 취·창업교육' 중심에서 재범우려가 높은 성폭력사범, 사이코패스(정신질환자), 학교폭력범, 마약사범 등 수용자 특성별 맞춤형 '중독·재활 인성교육'으로 전환・확대
- 정부의 마약범죄 근절을 위한 정책(예방, 수사, 재활)에 발맞춰 교정시설 내 마약, 스토킹 등 범죄 수용자의 치료·재활을 위한 교육 강화 추진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2) 동 사업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 : 보통

1) 2023년도 부처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보통

- 개별처우계획에 따른 맞춤형 교정교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므로 사업구성이 적정하고,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상반기 집행이 저조하였으나 하반기에 집행률 제고 노력을 통해 종국에는 98.3%의 집행률을 달성

2) 2024년도 부처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보통
- 사업 목정이 명확하고 개별처우계획에 따른 맞춤형 교정교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므로 사업구성이 적정하고, 코로나19 위기 단계 조정 2단계 시행 발표 이후 감염병 등급 하향조정에 따라 교정교화 사업의 집행률 제고를 위한 노력에 따라 99.0%의 집행률을 달성

3) 2025년도 부처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보통
- 개별처우계획에 따른 맞춤형 교정교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므로 사업구성이 적정하고, 수용인원이 증가함에 따라 호송차량 유류비 부족분이 발생하여 일부 내역변경이 있었으나 예산집행률 제고를 통해 집행률 99.1%를 달성

13) 2026년도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 결과 및 후속 조치 현황

평가결과	성과평가 주요내용	조치결과
사업개선	- 세부사업별 성과지표 필요	- '마약류 중독재활 프로그램 수료 인원', '심리치료 프로그램 수료 인원' 성과지표 관리

14) 부처 건의사항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3	10,537	-	10,537	-	△800	-	9,737	9,638	91.5	99.0	-	99
2024	11,920	-	11,920	-	△500	-	11,421	11,319	95.0	99.1	-	100
2025	11,457	-	11,457	-	△200	-	11,257	11,246	98.2	99.9	-	10
2026	13,260	-	13,260	-	-	-	13,260	8,191	61.8	61.8	-	-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 해당없음

2) 주요 결산사항

□ 2023~2026년 결산사항

2023	- 수용자 및 계호직원 PCR 검사 비용 부족으로 800백만원 전용 감 - 불용액 33백만원은 집행잔액
2024	- 호송차량 운영에 필요한 유류비 부족으로 500백만원 전용 감
2025	- 수용인원 급증으로 인한 국내여비 부족으로 200백만원 전용 감
2026	- 사업 진행 중

□ 2026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

□ 2026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참고 1 **마약사범재활과 신설에 따른 인프라 구축**

▢ 추진 배경

■ 교정시설 내 **마약류사범 급증 추세** 지속 및 **국정과제 지정**

○ 새정부 국정과제 74-4 「마약류 중독 차단·재활 및 예방 강화 등을 통한 대응체계 확립」 선정과 '26년도 **대통령 업무보고 시 지시사항** 시달

「마약류 중독 차단·재활 및 예방 강화 등을 통한 대응체계 확립」 **74-4** ('25. 8.)

- 마약류 맞춤형 재활프로그램 개발·보급
- '회복이음과정' 이후 취업 지원 및 시설과 연계한 재활 지원
- 전담 교정시설 내 맞춤형 재활 실시
- 전담 교정시설 추가 지정 추진(현재 4개소 → 6개소)

대통령 지시 ('25. 12. 19. 법무부 업무보고 중)

" 마약사범이 단순 수감이 아닌 치료와 재활을 통해 교정될 수 있도록 **교정시설 내 인력 확충 등 마약 투약사범 재활 체계를 갖출 것**"

법무부장관 강조 ('25. 12. 31. '경향신문' 보도 중)

" 사회와 완전 격리된 **교정시설 내 마약류사범에 대한 집중적인 치료와 재활**은 **사회적 비용 경감뿐만 아니라 사회 안전 확보에도 기여**할 것이다."

< 마약사범 치료·재활 필요 관련 언론보도('25. 12. 머니투데이, 뉴시스 등)>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법무부(대검찰청·성평등가족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재명 대통령 "마약 사범 치료 필요"...정성호 "전문가 부족"

송민경 (변호사)기자, 김지은 기자, 조준영 기자 · 2025. 12. 19. 17:50

이재명 대통령이 마약을 투약한 사범에 대한 재활 치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하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전체 교정시설에 정신과 전문의가 1명 뿐이라며 관련 전문가가 부족하다고 호소했다.

이 대통령은 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마약사범 중 거래 공급자들 말고 투약자에 대한 재활치료는 실제로는 거의 안 되고 있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마약 공급책이나 이런 쪽이면 몰라도 마약 투약 사범은 본인도 실제로 원할텐데"라며 "마약퇴치운동본부 보니까 부실해 보이면데 체계적으로 마약사범에 대한 재활 체계가 있냐"고 물었다.

정 장관은 "일단은 재소자들은 부산 청주에서 두 군데서 전담 기구가 구성돼 있었는데 치료 인원이 제한돼 있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재활 치료가 반드시 필요하겠죠"라고 하고 정 장관도 그 필요성이 공감하며 "반드시 필요하다"고 답했다.

정 장관은 "현재는 투약자에 대해서 마약류관리법이 교육을 의무화하는데 비투약자가 문제다"라며 "비투약자에 대해서도 입법을 해서 교육을 의무화하도록 해야 하는데 안이 국회 계류 중이다"고 말했다.

< 마약사범 급증의 심각성 관련 언론보도('26. 1. 인천일보)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마약사범 증가와 관련해 단속과 수사를 강화하는 동시에 치료와 재활까지 연계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일보 DB

정성호 법무부장관 "마약 대응 늦으면 대한민국 돌이킬 수 없어"

수용 마약사범 7400명...급증세 경고
청소년 확산 우려, 온라인 유통 차단 강조
검·경·국정원 등 합동 대응 체계 구축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최근 마약사범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지금 대응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이를 수 있다"며 강력한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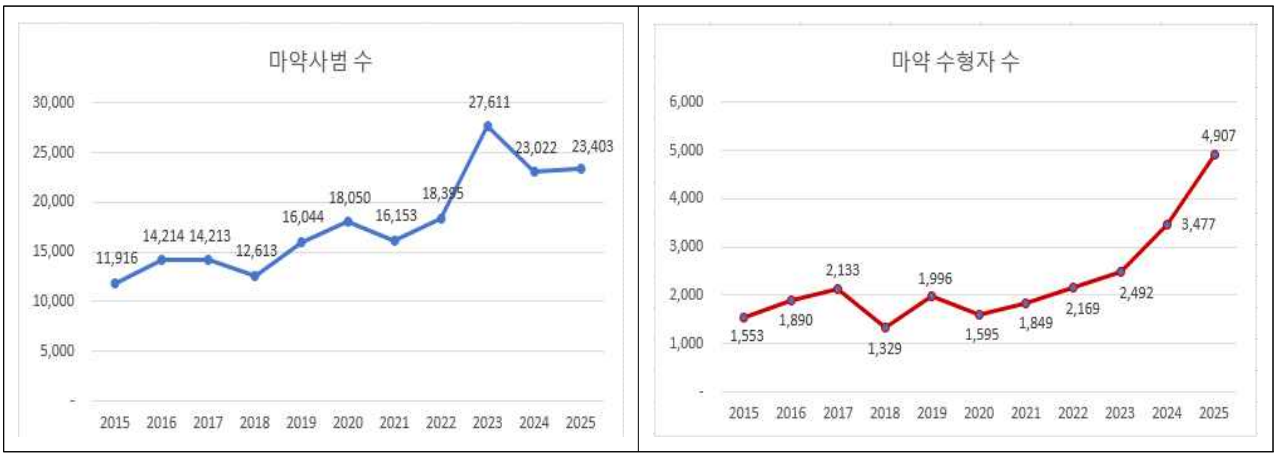
정 장관은 10일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에서 열린 신년 인사회에서 "현재 교정시설과 구치소에 수용된 마약사범이 약 7천400명에 달한다"며 "이는 단속에 적발된 인원만 집계된 것으로, 실제 마약 범죄 규모는 훨씬 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마약 범죄가 특정 계층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장관은 "초등학생과 중학생까지 마약에 노출되고 있다"며 "온라인과 인터넷을 통한 유통을 지금 차단하지 않으면 사회 전체가 심각한 위기에 빠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 국민 일상에 파고든 **마약류 범죄 급증**으로 국민적 위기감 고조

- 신종 마약 유통, 해외 밀반입 등으로 인한 **마약류사범 유통사범 급증**
- **비대면(택배·던지기 수법 등) 방식, 가상자산·보안 SNS를 이용**한 마약류 사범 중 **10~30대 청년층 검거 비율이 전 연령대 중 62.3%를 차지**

《 마약사범 수, 마약 수형자 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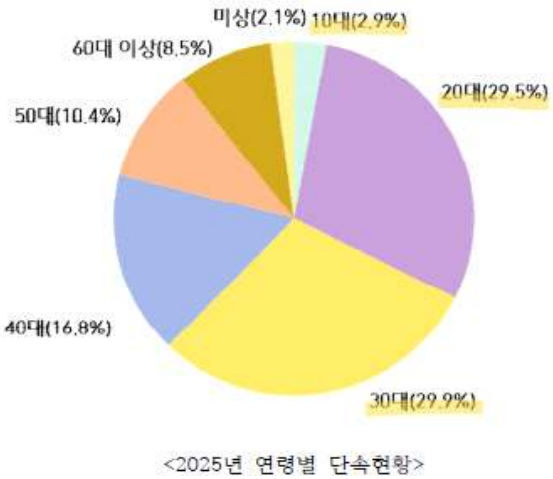


[대검찰청, 교정본부 2025년 통계]

《 2025년 연간 마약류사범 연령별 현황(누계) 》

[단위 : 명, ( )는 구성비]

연령별 / 마약류		15미만	15-19		20-29	30-39	40-49	50-59	60이상	미상	합계
			15-18	19							
사범수		16 (0.1)	444 (1.9)	214 (0.9)	6,913 (29.5)	6,986 (29.9)	3,925 (16.8)	2,428 (10.4)	1,990 (8.5)	487 (2.1)	23,403 (100)
마약류	대마	0 (0.0)	20 (0.8)	29 (1.2)	722 (29.4)	897 (36.5)	335 (13.6)	173 (7.0)	170 (6.9)	113 (4.6)	2,459 (100)
	마약	0 (0.0)	2 (0.1)	12 (0.7)	125 (7.2)	168 (9.7)	127 (7.3)	167 (9.6)	1,000 (57.7)	131 (7.6)	1,732 (100)
	향정	16 (0.1)	422 (2.2)	173 (0.9)	6,066 (31.6)	5,921 (30.8)	3,463 (18.0)	2,088 (10.9)	820 (4.3)	243 (1.3)	19,212 (100)



<2025년 연령별 단속현황>

○ 마약은 습관성·의존성으로 인해 **재범률이 높은 편**이고(최근 5년 재범률 34.4%, 타범죄의 1.5배) **교정시설 마약류사범 수용 비율도 증가** 추세('22. 5.8%→'25. 11.5%)

《 교정시설 내 마약사범 수용 현황 》

구 분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총 수용자 수(명)	53,873	52,368	51,117	56,577	62,981	**64,626**
마약류사범(명)	3,111	3,314	3,738	5,634	6,628	**7,429**
비율(%)	5.8	6.3	7.1	10.0	10.5	**11.5**

※ 마약류사범은 '20년 3,111명에서 **'25년 7,429명**으로 **139% 폭증**

○ 재범 억제를 위해서는 질병인 마약중독의 특성상 치료·재활이 중요, 특히 사회와 완전 격리된 **교정시설 내 집중적인 치료·재활**은 **사회적 비용 경감** 뿐만 아니라, **사회 안전 확보**에도 기여

✔ "치료·재활을 **강제할 제도와 법률이 있어야** 하며, **현재로서는 교정시설이 가장 좋은 치료·재활기관이 될 수** 있다"는 **치료보호기관, 병원 등 전문가 의견** 有 ('26. 4. 1. **'마약류 안전관리 현장토론회'** 중)

✔ "**부산교도소 교정·재활 시스템 확산** 등 잘 되고 있거나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과제를 강화할 것, **교정시설 내 치료 예산·인력 확충 필요**" ('26. 4. 17. **'마약류 대응 관계장관회의'** 중 **국무총리님 말씀**)

○ 마약사범재활팀[총액] 신설 등 추진

< 교정시설 내 '마약사범재활과' 신설 관련 언론보도('25. 12. 연합뉴스 등) >



마약사범 137% 급증…교정시설 내 '마약사범재활과' 조직

(서울=연합뉴스) 전재훈 기자 = 법무부가 급증한 마약류 사범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교정시설에 '마약사범재활과'를 신설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법무부는 교정시설 내 마약류 사범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맞춤형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해 마약류 재범을 방지하고자 광주교도소와 화성직업훈련교도소, 부산교도소, 청주여자교도소에 마약사범재활과를 조직했다.

마약사범재활과는 마약류 사범을 대상으로 중독 수준별 맞춤형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수 명령 집행, 전문 상담, 출소 후 사회 재활 연계 등 치료·재활을 맡는다.

아울러 단약 유지 등 재활 효과를 지속하기 위해 수용자가 출소할 때까지 별도의 수용동에서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원스톱 체계를 갖출 예정이다.

이를 위해 마약사범재활과는 심리학 박사와 임상심리사, 중독심리사 등 관련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이들로 구성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사회와 완전 격리된 교정시설 내 마약류 사범에 대한 집중적인 치료와 재활은 사회적 비용 경감뿐만 아니라 사회 안전 확보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직제 요구」 추진 경과

❖ **'23. 6. 법무부 내 '마약사범재활팀' 신설 (총액인건비제, 한시적 기구)**
❖ '23. 9. (수시직제) 6과, 60명 요구 → 미반영
❖ '24. 3. (정기직제) 4과, 52명 요구 → 미반영
❖ '25. 3. (정기직제) 6과, 66명 요구 → 미반영
❖ **'25. 9. (수시직제) 7과, 68명 요구 → 일부반영 (+4과*, +16명)**
* 대전·대구·광주·화성직훈·부산·청주여자교도소 내 '마약사범재활과' 신설('26)

❑ 현실태 및 문제점

■ 교정시설 초과밀화로 인한 인프라 문제 심각

○ 중독성이 강한 마약류 범죄의 악풍 감염 우려

- 과밀화로 인해 **마약류사범과 일반사범이** 운동, 접견 등을 통해 접촉이 가능한 **같은 건물 내 공동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 실정

- 마약중독은 질병으로서, '단속과 처벌'이 아닌 **'치료와 재활'**을 지원하는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 **교정시설도 혁신적인 변화* 필요**

* (예시) 국립법무병원의 단약 프로그램 과정, 음악·미술치료, 심리극 등을 통한 치료·재활 프로그램을 적극 도입

- 특히, 대통령 지시에 따른 '마약 투약사범에 대한 재활 체계'를 갖추기 위해 관련 부처의 관심과 지원 필요

○ 마약류사범 급증에 따른 치료·재활 **인프라 부족**

< 교정시설 내 전담 조직·인력 부족 심각 언론보도('25. 10. 뉴스1, 동아일보 등)>


뉴스1

[단독]교도소 내 마약사범 6300명인데...재활 전담 인력은 '0명'

남해인 기자 · 2025. 10. 26. 06:01

(서울=뉴스1) 남해인 기자 = 교도소·구치소 등 교정기관 내 수감된 마약 사범이 약 6300명에 달하는데도 재활 전담 인력은 전무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교정기관 내 마약사범 중독 재활 프로그램을 실행할 인력을 편성하는 게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정기관별 마약 수용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교정기관 내 마약사범은 올해 6291명으로 집계됐다.

법무부 교정본부에는 마약사범 재활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정책을 담당하는 '마약사범재활팀'이 있고 심리학 박사와 임상심리사 등 전문가도 배치돼 있다. 그러나 각 교도소·구치소에는 재활 프로그램을 직접 실행할 전담 인력이 없어 일반 교정공무원이 '마약수용자 이수명령 교육'만을 시행하고 있다.

- **(인력)** 각 기관 보안과 심리치료팀 내 **1명*이 타 업무와 겸임**하여 마약류사범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전담하고 있는 실정

* 현재 **담당 인력이 한계**로 전담 교정시설에서 관리 가능한 수용자 수(약 50명) 및 질적·양적 내용에 한계 발생, 각 기관당 **마약 교육 담당자 0.2~1명 수준**

- **(시설)** 교정시설 초과밀 상황에서 **전용 교육실, 상담실 등 확보가 어려워*** 심리치료, 인성교육 교육실 등과 공동 사용

* 재활 프로그램 다양화 및 시행으로 실적이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

< 마약류사범 중독재활 프로그램 실적 >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
기본과정	337	481	724	1,052	**1,246**
집중과정	110	131	158	140	**164**
심화과정	47	40	34	44	**41**
회복이음과정			20	91	**138**
총 계	494	612	916	1,236	**1,453**

※ 중독 수준별 재활프로그램을 모든 투약사범으로 지속 확대('26. 1,700명 목표)

- 맞춤형 치료·재활프로그램 운영, 전문상담 진행, 출소 후 사회재활 연계 등 업무를 수행할 **'마약사범재활과*'에 필요한 추가** 시설 인프라 (사무실, 교육실, 상담실 등) 부족

*** 대전교도소, 대구교도소, 광주교도소, 화성직업훈련교도소, 부산교도소, 청주여자교도소**('26. 신설)

**** '27년 정기 직제 반영** - 본부 1과 포함 10과 반영

▢ 주요 내용

■ 마약사범 재활전담 교정시설 내 시설 인프라 구축

- 신설 부서*의 사무실 및 일반사범과 분리된 마약사범 전용 교육실 3개, 상담실 3개 등에 대한 건축, 전기, 소방 공사 시급

  * '26 부서가 신설된 4개 기관과 '27. 신설 예정인 9개 기관 등 **총 13개 기관에 대한 공사 예산 반영** 필요

▢ 기대 효과

■ 마약사범의 재범 감소 효과

○ 중장기적인 마약사범 재활 정책의 수립 및 시행으로 재범률 감소 등 실효적 국민 안전 확보에 기여

- 교정시설은 형벌 집행을 위한 격리 시설로서 필연적 단약 환경이 조성되어 재활 개입을 위한 가장 안정적이고 집중적인 교육 여건 제공
- 실제 회복이음과정 수료 후 중독재활수용동 참여자 4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효과성 검사를 통해 단약효능감이 62.9 → 80점으로, 우울·불안 정도가 11.5 → 7.3 등으로 개선된 것을 확인

** p(유의수준)< .01, *** p< .001 (단위 : 점)

구분	단약 효능감		회복단계		변화준비		우울·불안·스트레스	
	전	후	전	후	전	후	전	후
실험집단 (40명)	62.90	80.00***	10.84	11.45**	51.10	59.55***	11.50	7.33***
통제집단 (40명)	77.48	70.48	10.10	9.87	53.35	50.70	8.83	11.22

- 마약사범 재복역률은 '20년 45.8%에서 '25년 29.9%로 약 16%p 감소

구 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마약사범 재복역률	45.8%	42.1%	36.3%	31.9%	32.1%	**29.9%**

○ 재활의지가 높은 마약사범 대상의 맞춤형 전문 처우로 시설 외 처우 대비 사회적 비용 경감뿐만 아니라 사회 안전 확보에도 기여

< 마약류 중독으로 인한 1인당 사회적 비용 >

◈ **총 비용** : 1,023,712,323원 (약 10억원)

· 의료·복지적비용 : 진료비(외래진료, 입원비) 등 의료비 총 8,214,000원
· 생산성 손실비용 : 생산저하, 조기사망비용, 실직비용 등 총 606,400,976원
· 형사사법비용 : 경찰, 검찰, 법원, 교정 등 총 54,515,347원
· 주변의 고통 비용 : 사망, 중독유발 등 주변고통 합산 총 354,582,000원

※ 박성수(2016). 마약류 등 유해약물 사회적 비용분석, 치안연구소 연구자료 기준으로 산출

범죄예방활동

사 업 명
범죄예방기관시설운영 (1631-304)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일반회계	020	022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600	1631	304
명칭	범죄예방활동	범죄예방기관운영	범죄예방기관시설운영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6예산 시 소관
	O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범죄예방기관 시설운영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범죄예방정책국	오상섭	원학재	정재희
		범죄예방기획과	02-2110-3570	02-2110-3574	02-2110-3787
	사업시행주체	범죄예방기관	-	-	-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년 결산	2026년 예산		2027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요구안	조정안(B)		(B-A)/A
범죄예방기관시설운영	16,891	19,554	19,554	16,254	13,430	△6,124	△31.3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5					2026(2026.7월말)							2027 예산안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17,373	17,293	16,892	-	401	19,554	19,554	7,591	19,554	7,591	-	-	13,430
· 청사시설 유지관리	8,412	8,306	8,060	-	246	10,368	10,357	2,068	10,357	2,068	-	-	3,814
· 임차청사 지원	3,749	4,118	4,118	-	-	3,749	4,095	2,390	4,095	2,390	-	-	3,749
· 공무직 인력지원	2,333	2,244	2,089	-	155	2,505	2,505	1,449	2,505	1,449	-	-	2,935
· 청사 운영관리	2,879	2,625	2,625	-	-	2,932	2,596	1,685	2,596	1,685	-	-	2,932
○ 비목별 분류(합계)	17,373	17,293	16,892	-	401	19,554	19,554	7,591	19,554	7,591	-	-	13,430
· 상용임금(110-03)	1,915	1,915	1,790	-	125	2,054	2,054	1,184	2,054	1,184	-	-	2,400
· 일반수용비(210-01)	572	484	484	-	-	592	362	225	362	225	-	-	592
· 공공요금(210-02)	1,653	1,393	1,393	-	-	1,653	1,364	878	1,364	878	-	-	1,653
· 임차료(210-07)	2,605	2,974	2,974	-	-	2,605	2,951	1,827	2,951	1,827	-	-	2,605
· 시설장비유지비(210-09)	401	295	295	-	-	969	959	433	959	433	-	-	692
· 복리후생비(210-12)	44	35	32	-	3	44	44	26	44	26	-	-	53
· 관리용역비(210-15)	654	748	748	-	-	687	870	582	870	582	-	-	687
· 고용부담금(320-09)	374	294	267	-	27	407	407	239	407	239	-	-	482
· 실시설계비(420-02)	754	754	724	-	30	281	281	72	281	72	-	-	281
· 공사비(420-03)	5,894	5,875	5,659	-	216	8,134	8,042	1,428	8,042	1,428	-	-	1,498
· 감리비(420-04)	48	67	67	-	-	25	116	0	116	0	-	-	25
· 자산취득비(430-01)	1,315	1,315	1,315	-	-	959	959	135	959	135	-	-	1,318
· 무형자산(440-00)	1,144	1,144	1,144	-	-	1,144	1,144	563	1,144	563	-	-	1,144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17,373	17,293	16,892	-	401	19,554	19,554	7,591	19,554	7,591	-	-	13,430
· 청사시설 유지관리	8,412	8,306	8,060	-	246	10,368	10,357	2,068	10,357	2,068	-	-	3,814
- 시설장비유지비(210-09)	401	295	295	-	-	969	959	433	959	433	-	-	692
- 실시설계비(420-02)	754	754	724	-	30	281	281	72	281	72	-	-	281

	2025					2026(2026.7월말)							2027 예산안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공사비(420-03)	5,894	5,875	5,659	-	216	8,134	8,042	1,428	8,042	1,428	-	-	1,498
- 감리비(420-04)	48	67	67	-	-	25	116	0	116	0	-	-	25
- 자산취득비(430-01)	1,315	1,315	1,315	-	-	959	959	135	959	135	-	-	1,318
· 임차청사 지원	3,749	4,118	4,118	-	-	3,749	4,095	2,390	4,095	2,390	-	-	3,749
- 임차료(210-07)	2,605	2,974	2,974	-	-	2,605	2,951	1,827	2,951	1,827	-	-	2,605
- 무형자산(440-00)	1,144	1,144	1,144	-	-	1,144	1,144	563	1,144	563	-	-	1,144
· 공무직 인력지원	2,333	2,244	2,089	-	155	2,505	2,505	1,449	2,505	1,449	-	-	2,935
- 상용임금(110-03)	1,915	1,915	1,790	-	125	2,054	2,054	1,184	2,054	1,184	-	-	2,400
- 복리후생비(210-12)	44	35	32	-	3	44	44	26	44	26	-	-	53
- 고용부담금(320-09)	374	294	267	-	27	407	407	239	407	239	-	-	482
· 청사 운영관리	2,879	2,625	2,625	-	-	2,932	2,596	1,685	2,596	1,685	-	-	2,932
- 일반수용비(210-01)	572	484	484	-	-	592	362	225	362	225	-	-	592
- 공공요금(210-02)	1,653	1,393	1,393	-	-	1,653	1,364	878	1,364	878	-	-	1,653
- 관리용역비(210-15)	654	748	748	-	-	687	870	582	870	582	-	-	687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범죄예방기관시설운영) 보호관찰소, 소년원 등 범죄예방기관 청사 시설·장비의 유지관리, 환경미화원 인력 운영, 보호관찰소 임차청사 운영 등에 소요되는 경비 지원

- (청사시설 유지관리) 보호관찰소, 소년원 등 범죄예방기관 청사 시설·장비에 대한 유지관리 및 개선비 지원
- (임차청사 지원) 보호관찰소의 임차청사 운영을 위한 임차료 및 보증금 지원
- (공무직 인력지원) 보호관찰소, 소년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청사
- (청사 운영관리) 보호관찰소, 소년원 등 범죄예방기관 청사 운영을 위한 공공요금 지원, 국유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검사비 지원 등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소년법,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 치료감호법 및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및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② 추진경위

- 소년보호기관(30개 기관)

· 1942. 4. 조선교정원 개원(현, 서울소년원)
· 1973.~7. 서울소년원 등 9개 소년원 공공직업훈련소 설치
· 1977. 4. 서울소년감별소 신설(현, 서울소년분류심사원)
· 1981. 1. 보호국 신설
· 2007. 7. 부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 등 6개 센터 설치
· 2026. 4.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안산지원(女) 개청
· 1942~현재, 소년원(10개), 소년분류심사원(2개), 청소년비행예방센터(18개)

- 보호관찰기관(66개 기관)

· 1989. 7. 전국보호관찰소, 보호관찰심사위원회 개청
· 1989~현재 보호관찰소(18개), 보호관찰지소(40개), 위치추적관제센터(2개), 보호관찰심사위원회(6개)

- 국립법무병원(2개 기관)

· 1987. 11. 치료감호소 개청(대통령령 제12232호)
· 1997. 1. 병원명칭사용(국립감호정신병원, 법무부훈령 제385호)
· 2004. 1. 약물중독재활센터 개관(대통령령 제18252호)
· 2006. 7. 병원명칭변경(국립법무병원, 법무부훈령 제560호)
· 2022. 7. 치료감호법 개정(치료감호소→국립법무병원)
· 2023. 10. 중증환자 집중치료병동 개관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단위: 백만원)

연도	2023	2024	2025	2026	2027(안)
사업비	12,313	15,568	17,373	19,554	13,430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범죄예방정책국 소년원, 보호관찰소 등
- 사업 수혜자 : 98개 기관 시설 이용자(보호관찰대상자, 수용자, 직원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7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

① 범죄예방기관 청사시설 유지관리

: **(2026 본예산) 10,368백만원 → (2027 요구) 3,814백만원, △6,554백만원 감액**

- (요구) 3단계 내진보강사업 일정조정을 통한 물량 축소 등 재난대응 시설개선 사업비 감액 요구
- (산출) 신·증축 청사 이전 기반공사 및 집기류 구입 등 1,312백만원 증액
  내진보강 및 재난대응 사업 7,875백만원 감액

ㅇ 2026년도 예산 및 2027년도 예산안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6년 본예산		2027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0,368	○ **시설장비유지비(210-09) : 969백만원** 가. 시설물 유지관리(정화시설, 보일러, 통신장비 등) ・보호기관 72기관×790천원 = 57백만원 나. 내진성능평가 등 912백만원 ○ **건설비(420-00) : 8,440백만원** 가. 화재대비 소방 등 시설물 보강 ・보호기관 18기관×88.667천원 = 1,455백만원 나. 신증축 청사 기반공사 등 ・보호관찰소 2기관×118,500천원 = 237백만원 다. 내진 구조설계 및 보강공사 ・88개소×76,681천원 = 6,748백만원 ○ **자산취득비(430-01) : 959백만원** 가. 사무기기, 보안장비, 재난장비(소방, 화재, 배수펌프) 구입 등 ・ 보호관찰소, 소년원 등 72기관×9,611천원 = 692백만원 나, 신증축 청사 가구 등 구입 267백만원 ・보호관찰소 2기관×118,500천원 = 267백만원	3,814	○ **시설장비유지비(210-09) : 692백만원** 가. 시설물 유지관리(정화시설, 보일러, 통신장비 등) ・보호기관 72기관×5,117천원 = 368백만원 나. 청사 시설 장비 유지비 324백만원 ○ **건설비(420-00) : 1,804백만원** 가. 범죄예방기관 노후시설 개선 ・보호기관 18기관×60,500천원 = 1,089백만원 나. 신증축 청사 기반공사 등 ・보호관찰소 2기관×282,000천원 = 564백만원 다. 내진 구조설계 ・10개소×15,100천원 = 151백만원 ○ **자산취득비(430-01) : 1,318백만원** 가. 소방, 화재, 배수펌프 등 시설유지관리 및 보안장비 구입 등 ・ 보호관찰소, 소년원 등 72기관×9,611천원 = 618백만원 나, 신증축 청사 등 사무용품 및 집기류 구입 700백만원 ・보호관찰소 2기관×350,00,천원 = 700백만원

② 보호관찰소 임차청사 지원

: (2026 본예산) 3,749백만원 → (2027 요구) 3,749백만원, 전년동

- (요구) 보호관찰소의 임차청사 운영을 위한 임차료 및 보증금 지원을 위해 전년 수준의 예산 요구

- (산출) 임차료 2,605백만원, 보증금 1,144백만원

ㅇ 2026년도 예산 및 2027년도 예산안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6년 본예산		2027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3,749	○ **임차료(210-07) : 2,605백만원** 가. 청사 및 비상대기소 임차료 ・ 58개×3,743천원×12월 = 2,605백만원 ○ **무형자산(400-00) : 1,144백만원** 가. 전세보증금 ・ 19개×60,210천원 = 1,144백만원	3,749	○ **임차료(210-07) : 2,605백만원** 가. 청사 및 비상대기소 임차료 ・ 58개×3,743천원×12월 = 2,605백만원 ○ **무형자산(400-00) : 1,144백만원** 가. 전세보증금 ・ 19개×60,210천원 = 1,144백만원

③ 공무직 인력지원

: (2026 본예산) 2,505백만원 → (2027 요구) 2,935백만원, 430백만원 증액

- (요구) 공무직 처우개선분 반영한 인건비 예산 증액 요구
- (산출) 공무직 88명 처우개선분(4.3%) 및 가족수당 등 각종 수당 반영한 상용임금 346백만원, 복리후생비 9백만원, 고용부담금 75백만원

ㅇ 2026년도 예산 및 2027년도 예산안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6년 본예산		2027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2,505	○ **상용임금(110-03) : 2,054백만원** 가. 소년보호기관 환경미화원 ・ 28명×2,500천원×12월 = 840백만원 나. 보호관찰소 환경미화원 ・ 57명×1,550천원×12월 = 1,060백만원 다. 보호관찰소 무도실무관 ・ 3명×2,639천원×12월 = 95백만원 라. 초과근무 및 각종 수당 등 59백만원 ○ **복리후생비(210-12) : 44백만원** 가. 소년보호기관 환경미화원 ・ 28명×500천원 = 14백만원 나. 보호관찰소 환경미화원 등 ・ 60명×500천원 = 30백만원 ○ **고용부담금(320-09) : 406백만원** 가. 소년보호기관 환경미화원 28명 ・ 보험료 및 퇴직금 164백만원 나. 보호관찰소 환경미화원 등 60명 ・ 보험료 및 퇴직금 242백만원	2,935	○ **상용임금(110-03) : 2,400백만원** 가. 소년보호기관 환경미화원 ・ 28명×2,601천원×12월 = 874백만원 나. 보호관찰소 환경미화원 ・ 57명×1,610천원×12월 = 1,101백만원 다. 보호관찰소 무도실무관 ・ 3명×2,752천원×12월 = 99백만원 라. 초과근무 및 각종 수당 등 326백만원 ○ **복리후생비(210-12) : 53백만원** 가. 소년보호기관 환경미화원 ・ 28명×600천원 = 17백만원 나. 보호관찰소 환경미화원 등 ・ 60명×600천원 = 36백만원 ○ **고용부담금(320-09) : 482백만원** 가. 보험료 및 퇴직금 482백만원

④ 청사 운영관리

: (2026 본예산) 2,932백만원 → (2027 요구) 2,932백만원, 전년동

- (요구) 국유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검사비 지원, 관리용역비 전년 수준의 예산 요구
- (산출) 일반수용비 592백만원, 공공요금 1,653백만원, 관리용역비 687백만원

ㅇ 2026년도 예산 및 2027년도 예산안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6년 본예산		2027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2,932	○ **일반수용비(210-01) : 592백만원** 가. 전기 안전검사 ・ 54기관×201천원×12월 = 130백만원	2,932	○ **일반수용비(210-01) : 592백만원** 가. 전기 안전검사 ・ 54기관×201천원×12월 = 130백만원

	나. 소방 안전검사 ・ 54기관×551천원×1회 = 32백만원 다. 2.3종 시설물 정기 및 정밀 안전진단 ・ 36기관×3,750천원×2회 = 270백만원 라. 가스 등 기타 시설 검사 등 140백만원 마. 청사 이전비 등 20백만원 ○ **공공요금및제세(210-02) : 1,653백만원** 가. 전기요금 등 ・ 88기관×1,541천원×12월 = 1,627백만원 나. 신증축 청사 공공요금 26백만원 ○ **관리용역비(210-15) : 687백만원** 가. 소년원 등 ・전자경비시스템유지비 252백만원 나. 보호관찰소 등 ・시설관리비 등 435만원		나. 소방 안전검사 ・ 54기관×551천원×1회 = 32백만원 다. 2.3종 시설물 정기 및 정밀 안전진단 ・ 36기관×3,750천원×2회 = 270백만원 라. 가스 등 기타 시설 검사 등 140백만원 마. 청사 이전비 등 20백만원 ○ **공공요금및제세(210-02) : 1,653백만원** 가. 전기요금 등 ・ 88기관×1,541천원×12월 = 1,627백만원 나. 신증축 청사 공공요금 26백만원 ○ **관리용역비(210-15) : 687백만원** 가. 소년원 등 ・전자경비시스템유지비 252백만원 나. 보호관찰소 등 ・시설관리비 등 435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3~2027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3	○ 소년원, 보호관찰소 등 보호기관 시설 환경 개선 - 국립법무병원 스프링클러 공사 등 개선공사(계속) - 보호기관 노후 배관교체, 석면제거 공사 등(계속)
2024	○ 소년원, 보호관찰소 등 보호기관 시설 환경 개선 - 보호기관 노후 시설 개선 공사(계속) - 보호기관 노후 배관교체, 석면제거 공사 등(계속)
2025	○ 소년원, 보호관찰소 등 보호기관 시설 환경 개선 - 내진보강 공사(계속) - 보호기관 노후 배관교체, 석면제거 공사 등(계속)
2026	○ 소년원, 보호관찰소 등 보호기관 시설 환경 개선 - 2단계 내진보강구조설계(계속) - 보호기관 노후 배관교체, 석면제거 공사 등(계속)

③ 향후(2027년도 이후) 기대효과

- 내진보강 사업의 단계적 시행, 신·증축청사 통신, 전기 설비 공사 등을 통한 범죄예방기관의 시설 안전성 확보
- 임차청사 운영 및 공무직 인력 지원 등으로 원활한 기관 운영 도모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해당없음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25~2029	17,373	19,554	17,877	17,501	16,936	
2026~2030		19,554	22,821	23,506	24,211	24,937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해당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보호기관의 원활한 업무수행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자체 청사 확보, 시설·장비의 현대화 추진 등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2) 동 사업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 : 해당없음

13) 2026년도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 결과 및 후속 조치 현황 : 해당없음

14) 부처 건의사항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3	12,313	-	12,313	639	180	-	13,132	12,592	102.3	95.9	-	540
2024	15,568	-	15,568	-	-	-	15,568	15,028	96.5	96.5	-	540
2025	17,373	-	17,373	-	△80	-	17,293	16,892	97.2	97.7	-	401
2026	19,554	-	19,554	-	-	-	19,554	7,591	38.8	38.8	-	-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 해당없음

2) 주요 결산사항

□ 2023~2026년 결산사항

2023	- 전용 : 공공요금 부족 등으로 180백만원 증액 - 불용 : 상용임금 등 공무직 인건비 336백만원, 낙찰차액 203백만원 등 540백만원
2024	- 불용 : 상용임금 등 공무직 인건비 218백만원, 낙찰차액 115백만원 등 540백만원
2025	- 이용 : 교정기관 공공요금 부족 등으로 80백만원 감액 - 불용 : 상용임금 등 공무직 인건비 155백만원, 낙찰차액 216백만원 등 401백만원
2026	- 해당없음

□ 2026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

□ 2026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 해당없음

사 업 명
재범징후의 선제적 감지 및 대응력 강화(R&D) (1631-305)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일반회계	020	022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600	1631	305
명칭	범죄예방활동	범죄예방기관운영	재범징후의 선제적 감지 및 대응력 강화(R&D)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6예산 시 소관
	O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재범징후의 선제적 감지 및 대응력 강화(R&D)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범죄예방정책국	이동준	서상목	김재인
		범죄예방 디지털정책팀	02-2110-3144	02-2110-3335	02-2110-3781
	사업시행주체	한국연구재단	공공기술단	최효석 선임연구원	042-869-7795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년 결산	2026년 예산		2027년		증감	
		본예산(A)	추경	요구안	조정안(B)	(B-A)	(B-A)/A
재범징후의 선제적 감지 및 대응력 강화(R&D)	2,000	3,000	3,000	3,000	2,600	△400	△13.3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25					2026(2026.7월말)							2027 예산안
	예산액(추경)	예산현액	집행액[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현액	집행액[실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예상액	불용예상액	
									예산현액	집행액[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2,000	2,000	2,000 (2,000)	-	-	3,000	3,000	3,000 (3,000)	3,000	3,000 (3,000)	-	-	2,600
- 강력범죄 재범예측 대응 신기술 개발	1,600	1,600	1,600 (1,600)	-	-	2,600	2,600	2,600 (2,600)	2,600	2,600 (2,600)	-	-	2,600
- AI 기반 전자감독 통합시스템 개발	400	400	400 (400)	-	-	400	400	400 (400)	400	400 (400)	-	-	-
○ 비목별 분류(합계)	2,000	2,000	2,000 (2,000)	-	-	3,000	3,000	3,000 (3,000)	3,000	3,000 (3,000)	-	-	2,600
・연구개발활동비등 (360-05)	2,000	2,000	2,000 (2,000)	-	-	3,000	3,000	3,000 (3,000)	3,000	3,000 (3,000)	-	-	2,600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2,000	2,000	2,000 (2,000)	-	-	3,000	3,000	3,000 (3,000)	3,000	3,000 (3,000)	-	-	2,600
- 강력범죄 재범예측 대응 신기술 개발	1,600	1,600	1,600 (1,600)	-	-	2,600	2,600	2,600 (2,600)	2,600	2,600 (2,600)	-	-	2,600
・연구개발활동비등 (360-05)	400	400	1,600 (1,600)	-	-	2,600	2,600	2,600 (2,600)	2,600	2,600 (2,600)	-	-	2,600
- AI 기반 전자감독 통합시스템 개발	1,600	1,600	400 (400)	-	-	400	400	400 (400)	400	400 (400)	-	-	-
・연구개발활동비등 (360-05)	400	400	400 (400)	-	-	400	400	400 (400)	400	400 (400)	-	-	-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재범징후의 선제적 감지 및 대응력 강화사업(R&D)**

- **(목적)** 전자감독 대상자의 재범위험으로부터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사회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AI를 활용한 재범 예측 시스템 개발
- **(내용)** 2개 내역사업으로 구성, 4년간(2024~2027년) 개발 계획
  - **(강력범죄 재범 예측·대응 신기술 개발)** 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한 각종 데이터의 융합·분석을 통해 대상자의 재범 위험도를 실시간 예측하여 보호관찰관의 신속한 대응을 돕는 AI 기술을 개발
  - **(AI 기반 전자감독 통합시스템 개발)** 재범 예측 AI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도록 여러 전자감독 시스템에 분산되어있는 전자감독 대상자의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연계·관리하여 AI의 학습을 돕는 통합시스템(DB)을 구축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맡은 분야의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그 시책을 세워 추진하여야 한다.
- **「과학기술기본법」 제16조의6(과학기술활용 사회문제해결)** ① 정부는 과학기술을 활용한 삶의 질 향상, 경제적 · 사회적 현안 및 범지구적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2(연구개발사업의 추진)** ① 법무부장관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 · 실험 · 조사 · 기술개발(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 및 전문인력 양성 등 소관 분야의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은 단계별 · 분야별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3호의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맺어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협약을 맺은 기관 또는 단체에 연구개발사업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출연금 및 보조금의 지급 · 사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추진 경위

-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전자감독제 운영을 위해 R&D 주무 부처인 과기정통부와의 협업을 통해 AI 등 혁신 ICT 기술을 활용한 지능형 전자감독 시스템 구축 추진

· **(새정부 공약)** B-1-3-2 범죄로부터 모두가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 **(국정과제)** 정행-12 국민안전을 위한 법질서 확립 및 민생치안 역량 강화
· **(법무부 주요 핵심 추진과제)**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한 법·제도 개선(재범 방지 체계구축)

- 주요 추진 내역

· 범죄예방정책 분야 국가R&D사업 추진기획 및 중장기 추진전략 수립('22. 4. ~ 9.)
· 과기정통부(거대공공연구정책과)와 1:1 매칭 사업추진('22. 11. ~)
· 사업 공동 기획 및 예산 확보('22. 11. ~ '23. 12.)
· '24년 신규 연구과제 협약체결 및 1단계 연구개발 개시('24. 4.~)
· 1단계('24.~'25.) 평가 실시('25. 12.)
· 2단계('26.~'27.) 연구개발 개시('26. 1.)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사업기간 : 2024년~2027년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3	2024	2025	2026	2027(안)
사업비	-	877	2,000	3,000	2,600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주관) 법무부·과기정통부 공동 추진 → (관리) 한국연구재단 → (참여)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등 4개 기관
- 사업 수혜자 :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7예산안)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강력범죄 재범 예측/대응 신기술 개발	출연	-	2,600	100	「국가재정법」 제12조(출연금),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연구개발사업의 추진)
AI 기반 전자감독 통합시스템 개발	출연	-	-	100	

3) 2027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

① 강력범죄 재범 예측 대응 신기술 개발 : (2026 본예산) 2,600 → (2027 요구) 2,600백만원, 전년동

- (요구) AI 재범예측 시스템의 안정적 성능 구현을 위해 핵심 과업 개발비 2,600백만원 편성
- (산출) 1개 과제 × 2,600백만원 × 12/12월 = 2,600백만원

ㅇ 2026년도 예산 및 2027년도 예산안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6년 본예산		2027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2,600	○ **연구개발활동비등(360-05): 2,600백만원** 가. '개인 일상모델' 기반 일탈탐지 AI 전자감독 기술 개발 (2,600백만원) - 2,600백만원 = 1과제×2,600백만원×12/12개월	2,600	○ **연구개발활동비등(360-05): 2,600백만원** 가. '개인 일상모델' 기반 일탈탐지 AI 전자감독 기술 개발 (2,600백만원) - 2,600백만원 = 1과제×2,600백만원×12/12개월

② AI 기반 전자감독 통합시스템 개발(종료) : (2026) 400 → (2027) 0, 순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3~2027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3	2024	2025	2026	2027	2027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전자감독 대상자 수 (명)	목표	-	신규	10	50	100	▪ 재범위험도 분석을 위해 3개년 이내 재범자 기준 고위험군 선정 ▪ 재범시나리오에 근거하여(유형별) 연차별 목표치 설정	▪ 측정산식 : 고위험군 대상자 수의 합 ▪ 측정방법 : 평가위원 적정성 검토	연차 보고서, 제3자 전문가평가
	실적	-	-	10	-	-			
	달성도	-	-	100.0	-	-			
일탈탐지 및 재범위험 인식률 (%)	목표	-	신규	80	85	90	▪ 전자감독 데이터의 특수성 및 실증 DB를 고려하여 성능 목표 순차 상향 ※ 교정 재범 예측지표의 재범 위험성 예측력 : 75.4%	▪ 측정산식 : 성능평가지표(F1-score) 활용 ▪ 측정방법 : 자체 DB ('24년)·실증 DB('25년) 활용하여 시험	연차 보고서 시험 결과서
	실적	-	-	88.5	-	-			
	달성도	-	-	100.0	-	-			
전자감독 정형화 DB 규모 (%)	목표	-	신규	50	100	-	▪ 전체 감독대상자 수를 기준으로, AI 모델 개발단계에 따라서 정형화 DB 구축 목표 순차 설정 ▪ '26년이 정형화 최종연도이므로 100%로 목표치 설정	▪ 측정산식 : 정형화 목표 건수 대 완료 건수의 비율	연차 보고서, 수집 DB
	실적	-	-	50	-	-			
	달성도	-	-	100.0	-	-			
현장 만족도 (점)	목표	-	신규	-	85	90	▪ 실증 단계('26년)에서 실제 서비스 수요자인 실무자 대상으로 만족도 평가 ▪ 실증 적용 시기 및 활용성을 고려, 연차별 목표 설정	▪ 측정산식 : =∑(응답자 항목별 100점 만점 환산값/응답자 수)/조사항목 수 ▪ 측정 방법 : 실무자 대상 만족도 조사 실시(20명 이상)	만족도 조사 결과보고서
	실적	-	-	-	-	-			
	달성도	-	-	-	-	-			
현장 적용도 (%)	목표	-	신규	-	80	90	▪ 기존의 시스템(전자감독)과 연동 및 현장 적용 점검 ▪ 실 환경 적용 수준을 고려하여, 연차별 목표 설정	▪ 측정산식 : =∑(U-Guard 시스템 적용 기술 건수)/기술 개발 건수)*100 ▪ 측정방법 : U-Guard와 연동하여 실제 적용되는 기술 수준 측정	연차 보고서, 시험 결과서
	실적	-	-	-	-	-			
	달성도	-	-	-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4	· '24년 신규 연구과제 공모 및 선정평가(2.~4.) · '24년 신규 연구과제 협약체결 및 연구 개시(4.~12.)
2025	· 연구개발 1단계(2024~2025년) 평가 실시(12.) : '보통' 등급, 연구개발 정상 추진 의견
2026	· 연구개발 2단계(2025~2026년) 진행(1.~)

③ 향후(2027년도 이후) 기대효과

□ **전자감독지능화가 전면적으로 적용되는 2029년 이후부터, 30%의 재범감소를 통해 연간 545억원의 사회적 비용 저감효과 기대**

ㅇ 2019년 전자감독대상자의 특정범죄 재범건수는 90건(성폭력 80건, 유괴 1건, 살인 3건, 강도 7건)으로 총 1,818억원의 사회적 비용 발생 추정

* 특정범죄별 사회적 비용은 성폭력(5.7억원), 미성년자 유괴(848.6억원), 살인(170억원), 강도(0.5억원)으로, 범죄별 사회적 비용을 실제 발생한 재범건수와 곱하여 총계 산출

* 미국 HunchLab(시카고) 범죄예측시스템의 강력범죄(총기, 살인) 감소 효과인 30% 기준

ㅇ AI 예측을 통해 재범을 억제하고 인명·재산 피해를 감소시킴으로써 국민이 일상속에서 직접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사회안전체계 확립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추진절차	시행주체	절차 내용
① 사업기획	법무부·과기정통부	○사업 추진전략 및 사전 기획 보고서 작성
② 사업 시행계획 수립 및 공고	법무부·과기정통부 한국연구재단	○사업 세부 추진계획 확정공고 : 사업안내서, 과제제안 요구서(RFP) 포함
③ 과제신청 · 접수	법무부·과기정통부 연구기관/한국연구재단	○연구기관 : 신규 과제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신청 ○한국연구재단 : 접수
④ 과제선정 · 평가	법무부·과기정통부 한국연구재단	○사전검토 → 전문가 평가(발표심사) → 선정 결과 확정(과기정통부)
⑤ 협약체결	법무부·과기정통부 연구기관/한국연구재단	○연구개발과제 협약 체결
⑥ 진도관리	법무부·과기정통부 한국연구재단	○진도관리(단계평가, 현장 점검 등)
⑦ 최종 검토	법무부·과기정통부 한국연구재단	○연구 결과 최종 검토(최종 평가 등)
⑧ 사업결과 활용	정부·민간 기타	○정부 및 민간의 성과 활용(기술이전 등)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25~2029	3,000	3,165	3,339	3,523	-	
2026~2030		3,000	3,000	3,000	3,000	-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해당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국가연구개발사업 단계평가(2025. 12.)
▪ 재범징후의 선제적 감지 및 대응력 강화 사업의 1단계(2024~2025년) 연구개발 결과에 대한 평가 진행
※ 근거「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14조
- 과기정통부 외부 평가위원의 참여로 연구 목표 달성 정도, 수행 과정의 적절성, 연구 성과의 질적 수준을 평가
▪ 평가 결과 : '보통' 등급으로 연구개발 정상 추진 의견

12) 동 사업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 : 해당없음

13) 2026년도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 결과 및 후속 조치 현황 : 해당없음

14) 부처 건의사항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3	-	-	-	-	-	-	-	-	-	-	-	-
2024	877	-	877	-	-	-	877	877	100.0	100.0	-	-
2025	2,000	-	2,000	-	-	-	2,000	2,000	100.0	100.0	-	-
2026	3,000	-	3,000	-	-	-	3,000	3,000	100.0	100.0	-	-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본예산	추경(A)								
2023	-	-	-	-	-	-	-	-	-	-
2024	877	877	877	877	-	877	877	-	-	100.0
2025	2,000	2,000	2,000	2,000	-	2,000	2,000	-	-	100.0
2026. 7월기준	3,000	3,000	3,000	3,000	-	3,000	3,000	-	-	100.0

2) 주요 결산사항 : 해당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1) 기재부에 제출한 사업 계획서 및 설명자료 첨부(필수 제출)

(2) 부처 내 사업 계획 첨부(필수 제출)

참고1 **재범징후 알림 사업 설명자료**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o **(목 적)** 전자감독 대상자의 재범위험으로부터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사회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재범 예측 시스템 개발

o **(필요성)** ①**전자감독 대상자의 지속적인 증가**와, ②**재범사건의 고도·지능화**로 발생하는 전자감독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기존의 인력 중심 전자감독 관리 체계에서 지능형 전자감독으로의 패러다임 전환 필요

- 전자감독 제도 시행(2008년) 이후 **대상 사범의 지속적인 확대***로 **사건 규모 및 인적·물적 관리비용이 꾸준히 증가**

  * 성폭력('08년), 유괴('09년), 살인('10년), 강도('14년), 전자장치 부착 조건부 보석·가석방('20년), 스토킹('24년)



- **위치정보 및 준수사항 위반경보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기존 시스템**은 주거지 인근, 출퇴근길 등 **일상 경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재범상황 감지에 한계**

  ※ 성폭력 재범의 55.3%가 주거지 1km 이내에서 발생



2. 사업내용

o **(개요)** 전자감독 대상자의 일상 상황, 위치 패턴의 변화와 재범 발생 간의 연관성을 확률적으로 계산하여 재범 위험도를 예측하는 기술개발

내역사업	내용
강력범죄 재범 예측·대응 신기술 개발	전자감독 대상자 데이터[1]의 융합·분석을 통해 대상자의 재범 위험도를 실시간 예측하여 보호관찰관의 신속한 대응을 돕는 AI 기술을 개발
AI 기반 전자감독 통합시스템 개발	재범 예측 AI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도록 여러 시스템에 분산되어 있는 전자감독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연계·관리하여 AI의 학습을 돕는 통합시스템(DB)을 구축

[1] 위치, 범죄정보, 일상변화를 알 수 있는 면담 기록 등 보호관찰관을 통해 수집된 다양한 정보

o **(규모)** 2024~2027년, 총 153억 예상(법무부·과기정통부 예산 공동 분담)

구분	2024	2025	2026	2027안
법무부	8.77억 원	20억 원	30억 원	26억 원
과기정통부	8억 원	20억 원	20억 원	20억 원

o **(개발 계획)** 연구개발 4개년 계획에 따라 AI 핵심기술 순차 개발

구분	연도	내용
기반 마련	2024	재범요인 선정, 이상 상황 탐지 초기모델 개발
고도화	2025	이상 상황 및 이상 위치 복합추론 기술 개발
	2026	재범 예측 AI 모델 개발, 기존 시스템과 연동
검증	2027	실제 현장에서의 시범 운용, 성능 보완 및 평가

o **(수행주체)** 공동주관 법무부·과기정통부 → 사업관리 한국연구재단 → 연구개발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등 4개 기관

연구기관	내용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연구개발 총괄, 재범 예측 AI 모델 개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전자감독 대상자의 재범요인 선정, 데이터 분석
㈜엔텔스	AI 모델을 기존 전자감독 시스템과 연계·통합
㈜YM-나을텍	AI의 학습을 위한 전자감독 데이터 관리 시스템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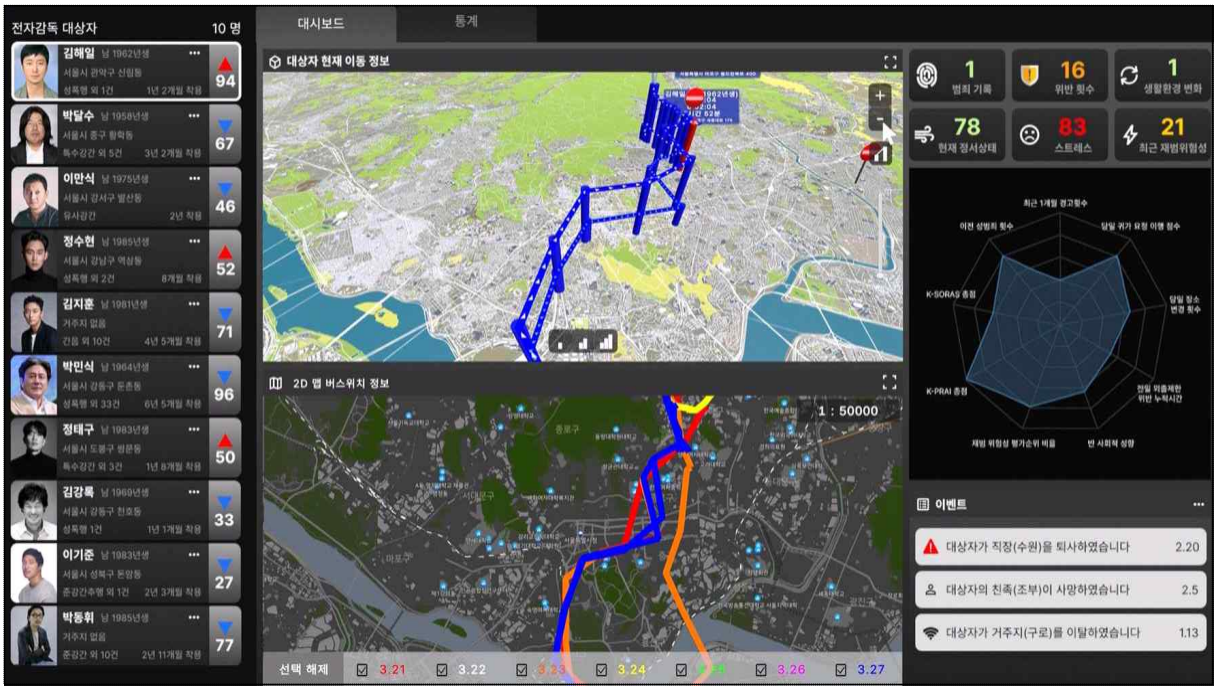
3. 활용방안

o **(실무 운용 방안)** 위치추적시스템과 연동, 재범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예측된 대상자에 대해 AI가 실시간 경보 알림 → 보호관찰관 조기 대응(연락, 출동)

〈기술 적용 예시〉

- 공장 근로자였던 전자감독 대상자가 평소 집과 공장을 오가는 생활을 반복하다가, 실직 후 며칠간 야간에 유흥가를 거쳐 다세대주택 밀집 지역을 배회함
- 재범 예측 AI가 대상자의 위치 패턴, 범죄정보, 일상 변화를 알 수 있는 면담 기록 등 각종 정보를 실시간 분석하여 재범 위험성 증가를 알림 → 조기 개입으로 범죄 예방

※ 시스템 운영 화면 개발 예시



참고2 **재범징후 알림 사업 2026년 시행 계획안**

Ⅰ. 추진 배경

□ 필요성

○ 전자감독 대상자 급증으로 인력 중심 감시·대응체계의 한계 도달

○ 지능·다양화된 재범상황의 예방 및 국민의 범죄 불안 해소를 위한 획기적 범죄예방 기술 필요

➜ **24시간 고정밀 분석이 가능한 선제적 예방 중심의 AI 전자감독 시스템으로 전환 추진**

□ 추진 근거

○ 「과학기술기본법」 제16조

▸ 과학기술기본법 제16조의6(과학기술을 활용한 사회문제 해결)

○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제3조의2

▸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제3조의2(연구개발사업의추진)

□ 추진 경과

○ 과학기술 기반 범죄예방정책 분야 R&D 추진기획(2022.4.)

○ 범죄예방정책 분야 R&D 중장기 추진전략 수립(2022.9.)

○ 과기정통부(거대공공연구정책과)와 1:1 매칭 사업추진(2022.11.~)

○ ‘재범징후의 선제적 감지 및 대응력 강화사업’ 기획추진(법무부·과기정통부 공동, 2022.11.~2023.4.)

○ 2024년 신규과제 선정(2과제) 및 연구개시(2024.4.~)

○ 2025년 단계평가 실시, 계속과제(2과제) 연구수행 추진(2026.1.~)

Ⅱ.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 AI, 빅데이터 등 첨단과학기술을 활용하여 전자감독 대상자의 재범 시도를 사전에 차단·대응하고 사회안전망을 두텁게 구축

□ 사업 규모 및 추진 방식

○ **(총 사업 개요)** 총 4년('24년~'27년), 사업비 157억원(예상)

내역사업	단위과제
재범 예측·대응 신기술	▸(개인화) "개인 일상 모델" 기반 일탈탐지 AI 전자감독 기술 개발
AI 기반 전자감독 통합시스템	▸(데이터 정형화) 전자감독 데이터 자동정형화 AI기술 개발 및 통합 DB구축

※ 과기정통부, 법무부가 공동 투자 및 공동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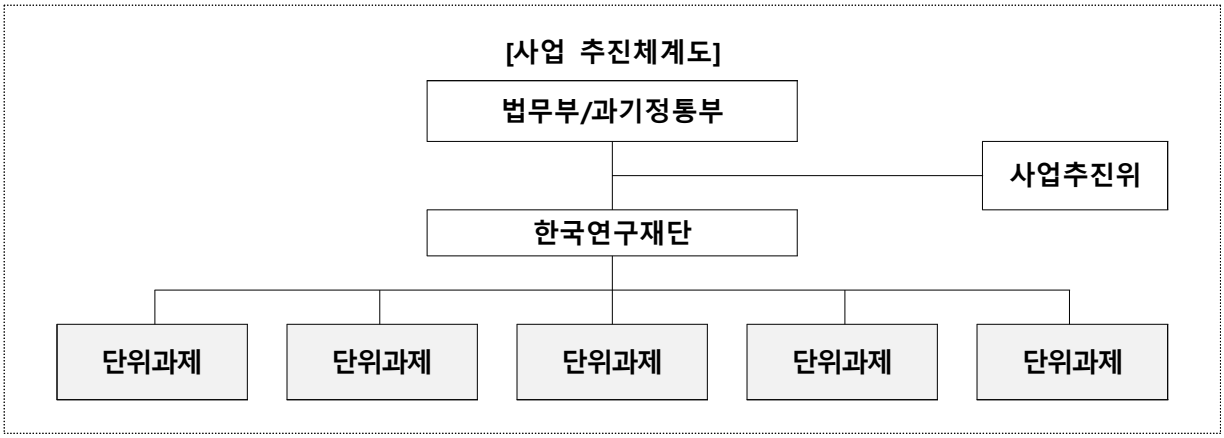
○ **(추진 방식)** '26년 2개 과제, 총 50억원 ※ 과기부 20억, 법무부 30억

- 강력범죄 재범 예측·대응 신기술을 개발하고, 전자감독 데이터의 분석과 그에 따른 통합 DB 구축을 위한 2개 연구과제 지원

구 분		총	1단계		2단계	
			2024	2025	2026	2027
개인일상모델 기반 일탈탐지 AI 전자감독 기술 개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연구비 (백만원)	13,825	1,425	3,200	4,200	5,000
	연구 기간	45개월 ('24.4.1.~ '27.12.31.)	9개월 ('24.4.1.~ '24.12.31.)	12개월 ('25.1.1.~ '25.12.31.)	12개월 ('26.1.1.~ '26.12.31.)	12개월 ('27.1.1.~ '27.12.31.)
전자감독 데이터의 과학적 분석을 위한 자동정형화 AI 기술 개발 및 통합 DB 구축 <와이엠나을텍>	연구비 (백만원)	1,852	252	800	800	-
	연구 기간	33개월 ('24.4.1.~ '26.12.31.)	9개월 ('24.4.1.~ '24.12.31.)	12개월 ('25.1.1.~ '25.12.31.)	12개월 ('26.1.1.~ '26.12.31.)	-

※ 사업 기간 및 연구비는 예산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사업추진 주체별 주요 역할



○ **(법무부/과기정통부)** 사업 총괄 : 계획 수립, 예산 확보·지원 등

○ **(사업추진위원회)** 주관부처, 산·학·연 전문가, 통합 전문기관 등 8명으로 구성

※ 연도별 시행계획, 사업단 선정 및 평가 등 사업 중요 사항 논의 및 심의

※ 운영방식 : 실제 연구성과 활용 부처인 법무부에서 주관하여 운영

○ **(전문기관/한국연구재단)** 사업기획·공고, 연구기관 선정, 협약 및 연구비 지급, 사업 및 성과 관리 등

○ **(주관 연구기관)** 세부 연구내용 중 외부 전문 연구 분야의 공동 연구가 필요한 경우 산·학·연과 공동으로 연구추진

추진 주체	주요 기능 및 역할
법무부· 과기정통부	• 사업 총괄(추진계획 수립, 예산확보·지원) • 아이디어 발굴 및 기술 수요조사 • 연구기관 선정, 관리 및 평가(진도관리, 단계평가, 최종평가) • 사업추진위원회 구성·운영 • 전문가 인력풀 구축 및 사업기술자문단 구성
연구재단(전문기관)	• 사업 총괄관리(부처↔연구수행기관, 총괄협약 체결)
연구기관	• R&D 수행(현장 실증 포함) • 연구결과물 현장 적용 지원

Ⅲ. 사업 추진 전략

□ 목표 및 비전

○ 선제적 예방 중심의 예측적 전자감독 시스템 개발(Preemptive Electronic Monitoring) 및 실증을 통한 사회안전망 구축

- 기존 재범 관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AI 기반 지능형 전자감독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으로 선제적·즉각적 대처가 가능한 개인화·실시간 통합모델 개발

	1 세대 물리적 감독 (과거)	2 세대 디지털 전자감독 (현재)	3 세대 AI 전자감독 (미래)
개요	물리적 구금	측위 기반 감독	지능형 감독
특징	격리, 사회복귀 곤란	수동 · 기계적 대응, 사후 대처	사전예측적 선제/즉각 대처
데이터	감금 환경 정보	위치정보, 장치 정보, 집단자료 ⇨ 집단/규칙 기반 모델	위치정보, 장치 정보, 집단자료, 개인화 정보 등 ⇨ 개인화/실시간 통합모델

- 지능형 전자감독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그 간의 전자감독 사각지대로 인한 국민 불안 완화, 재범억제 및 사회안전망 강화

대상	As-Is	To-Be
보호관찰관	• 경보 미발생 시 위험 상황 확인 불가 • 위험 상황 발생에 대한 사후적 대응 • 대상자 진술에 의존 및 상황 확인 곤란 • 위험 상황 발생(경보)에 대한 사후적 대응	• **전자감독 대상자 실시간 행동 패턴 및 위험 상황 인식** • **위험 상황에 대한 신속 대응**
전자감독 대상자	• 경보 미발생 상태에서 재범 가능 • 일상 경보 등 대응으로 인한 사회적응 지장 • 보호관찰관에게 허위 보고	• **위험 상황 사전 감독으로 재범 방지** • **생업 활동 등 사회적응 보장** • **대상자 행동 분석 기술을 통한 객관적 증거 확보로 대상자 지도감독 강화**
	전자감독의 사각지대 발생에 따른 국민 불안 야기	국민체감의 '재범억제' 및 '사회안전망' 강화

□ 2026년 추진전략 및 내용

○ **(재범 예측·대응 신기술)** 위치 정보, 개인 특성, 생활상 범죄 유발 요인 변화, 이전 범죄 수법의 특성 등의 융합분석을 통해 개인별 재범위험도를 평가하는 AI 기반 개인 일상모델 개발

> ■ U-Guard 연동형 AI 전자감독시스템 개발 및 AI 전자감독 실증서비스 설계를 통한 전자감독 대상자 일탈행동 예측평가 모델 개발
> ㅇ 전자감독 대상자 맞춤형 일탈탐지 및 재범위험도 AI 모델 개발 고도화
> ㅇ 전자감독 AI 모델 U-Guard 연동 프레임워크 개발
> ㅇ 성범죄 유형별(경계선 위험군) 재범 시나리오 분석 고도화

○ **(AI 기반 전자감독 통합시스템)** 전자감독 비정형 데이터를 자동 정형화하는 AI 기술을 개발하고, 측위 데이터를 연계하여 개인별 전자감독 데이터로 관리하는 통합 정형 DB를 구축

> ■ U-Guard 연동형 AI기반 개인별 맞춤형 재범위험도 분석용 통합 정형화 DB 생성 실증 플랫폼 개발
> ㅇ 대규모 비정형 전자감독 데이터의 자동 정형화 AI 시스템 안정화
> ㅇ 대규모 개인별 전자감독 데이터 수집 및 학습 데이터 구축
> ㅇ 개인별 전자감독 데이터 정보 체계 및 통합 정형 DB 플랫폼 개발

□ 기대효과

○ **(기술)** 수동 감시 한계 극복으로 보호관찰관이 미처 인지하지 못하는 재범징후 감지 예측 및 판단 근거 확보

○ **(사회)** AI 예측을 통해 재범을 억제하고 인명·재산 피해를 감소시킴으로써 국민이 일상에서 직접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사회 안전 체계 확립

○ **(경제)** 재범 억제 강화로 인한 피해 감소, 전자감독 대상자 확대에 따른 수감 비용 감소 등 사회적 비용 저감효과 기대

Ⅳ. 1단계 주요 실적 (2024~2025)

□ 재범 선제적 대응을 위한 AI 기반 예측 시스템 개발

○ (재범 예측·대응 신기술)

- 개인일상모델 기반 전자감독 대상자별 개인특화형 일탈탐지 AI 모델 개발
- 성범죄 유형별 재범 시나리오 분석 및 재범 전 주요 일탈 징후 도출
- 전자감독 DB 실시간 연계 AI 모델 관리 통합 프레임워크 개발

○ (AI 기반 전자감독 통합시스템)

- 재범 예측을 위한 파라미터 연구를 바탕으로 AI 학습을 위한 정형 데이터 기반(판결문, 청구전조사서, 면담기록 등) DB 구축
- Local LLM 기반 재범예측용 파라미터 자동 추출 시스템 및 도메인 정보 결합형 재범예측 키워드 추출 핵심기술 개발

□ 범죄예측 · 분석 기술개발 현황 점검 및 고도화 체계 강화

○ 재범 방지 전자감독 플랫폼 기술개발 현황에 대한 단계평가 실시

- 관련 분야 전문가 검토를 통해 연구개발 성과, 차년도 연구계획 등 과제 간 추진 내용 연계·협업, 협력 시너지 등 종합 평가

과제명	주관기관(연구책임자)	주요 의견
개인 일상모델 기반 일탈탐지 AI 전자감독 기술개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박소희)	개발 성과의 신뢰성·객관성 확보를 통해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 필요
전자감독 데이터의 과학적 분석을 위한 자동정형화 AI 기술 개발 및 통합 DB 구축	와이엠나을텍 (정영규)	비정형 데이터의 정형화를 통한 개발 성과가 효과적으로 활용되고 타 과제와 시너지 극대화를 위해 노력 필요

⇒ 과제 간 시너지, 성과 고도화를 통한 활용성 제고 강화 요구

Ⅴ. 2026년 추진 계획

□ 계속 과제 지원 및 성과 관리 추진

○ **(계속 과제 지원)** 선정 과제 1단계(2024~2025년) 종료 및 단계 평가 결과에 따른 2단계(2026년) 연구비 지급

- 2026년 예산 심의, 단계평가 과정에서 인정된 연구비 증액분 반영

○ **(성과 관리)** 목표 달성과 현장 실증 제고를 위한 연구개발기관-수요처 간 지속적 소통 강화 및 연구성과 확산

- **(소통 강화)** 연구개발기관과 수요 부처(법무부) 간 정기·수시회의* 실시를 통해 연구성과 현장 실증·적용성 및 활용도 제고

※ 연구개발기관의 수요 부처(법무부)의 의견 및 현황 반영을 위한 협력 강화

- **(성과 확산)** 각 수행기관 간 시너지 확대, 창출 성과 고도화 및 우수성과 공유, 사업화 컨설팅 등을 위한 성과교류 및 확산 추진

□ 종료평가 실시

○ 2024년 선정 1개 과제 종료(2026.12.31.)에 따른 최종평가 실시

<종료평가 관련 주요 일정 안>

구분	주요 내용	일정	비고
보고서 제출	최종보고서 작성 및 제출	2026.12.	연구기관 → 연구재단
평가	평가계획 수립	2026.12.	연구재단
	평가(발표)	2027.01.	연구재단
	평가 결과 확정	2027.01.	사업추진위원회

※ 향후 최종평가 계획 수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평가대상

구 분		총	1단계		2단계	
			2024	2025	2026	2027
전자감독 데이터의 과학적 분석을 위한 자동정형화 AI 기술 개발 및 통합 DB 구축 <와이엠나을텍>	연구비 (백만원)	1,852	252	800	800	-
	연구 기간	33개월 ('24.4.1.~ '26.12.31.)	9개월 ('24.4.1.~ '24.12.31.)	12개월 ('25.1.1.~ '25.12.31.)	12개월 ('26.1.1.~ '26.12.31.)	-

□ 2026년 주요 추진일정

구분	절차	내용	일정	수행주체
업무 수행	① 사업계획 수립	• 2026년 사업 시행계획 수립	2026.1.	부처/재단
	② 연구착수	• 2026년 연구개시 및 사업비 지급	2026.1.	재단/ 연구기관
	③ 연구과제 수행	• 연구 계획에 따른 3차년도 과제 수행	2026.1. ~12.	연구기관
성과 관리	④ 정기회의	• 수요 부처-연구기관 간 진도 점검 회의	상시	부처/ 연구기관
	⑤ 성과공유회 개최	• 1단계(2024.~2025.) 연구 결과 공유	2026.7.	부처/재단 /연구기관
최종 평가	⑥ 최종보고서 제출	• 종료평가 대상과제 최종보고서 제출	2026.12.	재단/ 연구기관
	⑦ 최종평가 실시	• 연구 목표, 성과, 활용계획 등 평가 지표에 근거한 연구과제 평가	2027.01.	재단/ 연구기관
	⑧ 평가 결과 확정	• 최종평가 결과 사업추진위원회 심의	2027.01.	부처/재단

사 업 명
소년원생수용 (1632-3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일반회계	020	022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600	1632	300
명칭	범죄예방활동	소년보호	소년원생수용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6예산 시 소관
	O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O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소년원생 수용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범죄예방정책국	오상섭	원학재	정재희
		범죄예방기획과	02-2110-3570	02-2110-3574	02-2110-3787
	사업시행주체	소년원	-	-	-
(출원생 자립지원)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범죄예방정책국	소년범죄예방팀	배근철 주무관	02-2110-3919
	사업시행주체	한국소년보호협회	사무국	장철승 팀장	070-7455-6106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년 결산	2026년 예산		2027년		증감	
		본예산(A)	추경	요구안	조정안(B)	(B-A)	(B-A)/A
소년원생수용	26,733	29,183	29,183	31,641	31,641	2,458	8.4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5					2026(2026.7월말)							2027 예산안
	예산액(추경)	예산현액	집행액[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현액	집행액[실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예산현액	집행액[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26,971	26,971	26,733	-	238	29,183	29,183	17,241	29,183	17,241	-	-	31,641
· 교육과정 운영 등	9,058	9,071	8,967	-	105	9,383	9,353	5,283	9,353	5,283	-	-	9,794
· 구호및교정비 지원	5,758	6,053	6,053	-	-	6,097	6,097	3,438	6,097	3,438	-	-	6,695
· 공무직 등 인력지원	9,275	8,966	8,833	-	133	10,739	10,739	5,556	10,739	5,556	-	-	12,051
· 출원생 자립지원	2,880	2,880	2,880 [2,880]	-	-	2,964	2,964	2,964 [1,699]	2,964	2,964 [1,699]	-	-	3,101
○ 비목별 분류(합계)	26,971	26,971	26,733	-	238	29,183	29,183	17,241	29,183	17,241	-	-	31,641
· 상용임금(110-03)	7,014	7,014	6,952	-	62	8,055	8,055	4,431	8,055	4,431	-	-	9,106
· 일용임금(110-04)	803	803	794	-	9	999	999	444	999	444	-	-	999
· 일반수용비(210-01)	1,409	1,461	1,461	-	-	1,815	1,815	1,161	1,815	1,161	-	-	1,815
· 공공요금(210-02)	1,196	1,226	1,226	-	-	1,196	1,196	996	1,196	996	-	-	1,196
· 피복비(210-03)	52	30	30	-	-	52	52	-	52	-	-	-	52
· 유류비(210-08)	201	201	201	-	-	201	201	133	201	133	-	-	201
· 시설장비유지비(210-09)	460	415	415	-	-	460	460	252	460	252	-	-	460
· 재료비(210-11)	338	336	336	-	-	588	588	233	588	233	-	-	438
· 복리후생비(210-12)	87	73	73	-	-	90	90	59	90	59	-	-	115
· 관리용역비(210-15)	-	-	-	-	-	-	-	-	-	-	-	-	47
· 국내여비(220-01)	158	158	158	-	-	158	158	129	158	129	-	-	158
· 사업추진비(240-01)	57	57	57	-	-	57	57	39	57	39	-	-	60
· 특정업무경비(250-03)	586	586	527	-	60	582	582	288	582	288	-	-	581
· 일반연구비(260-01)	119	119	115	-	4	119	119	39	119	39	-	-	79
· 정책연구비(260-02)	20	20	20	-	-	20	20	-	20	-	-	-	20
· 포상금(310-03)	-	-	-	-	-	52	52	27	52	27	-	-	52
· 기타보전금(310-04)	5	5	5	-	-	5	5	2	5	2	-	-	5
· 민간경상보조(320-01)	2,880	2,880	2,880 [2,880]	-	-	2,964	2,964	2,964 [1,699]	2,964	2,964 [1,699]	-	-	3,101

	2025					2026(2026.7월말)							2027 예산안
	예산액(추경)	예산현액	집행액[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현액	집행액[실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예산현액	집행액[실집행액]			
· 구호및교정비(320-06)	5,758	6,053	6,053	-	-	6,097	6,097	3,438	6,097	3,438	-	-	6,695
· 고용부담금(320-09)	1,371	1,076	1,014	-	62	1,595	1,595	622	1,595	622	-	-	1,831
· 실시설계비(420-02)	70	70	69	-	1	70	70	8	70	8	-	-	214
· 공사비(420-03)	3,004	3,004	2,970	-	34	3,093	3,093	1,351	3,093	1,351	-	-	2,643
· 감리비(420-04)	20	20	17	-	3	20	20	-	20	-	-	-	20
· 자산취득비(430-01)	1,363	1,363	1,360	-	3	895	895	625	895	625	-	-	1,753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26,971	26,971	26,733	-	238	29,183	29,183	17,241	29,183	17,241	-	-	31,641
· 교육과정 운영 등	9,058	9,071	8,967	-	105	9,383	9,353	5,283	9,353	5,283	-	-	9,794
-일반수용비(210-01)	1,409	1,461	1,461	-	-	1,815	1,815	1,161	1,815	1,161	-	-	1,815
-공공요금(210-02)	1,196	1,226	1,226	-	-	1,196	1,196	996	1,196	996	-	-	1,196
-피복비(210-03)	52	30	30	-	-	52	52	-	52	-	-	-	52
-유류비(210-08)	201	201	201	-	-	201	201	133	201	133	-	-	201
- 시설장비유지비(210-09)	460	415	415	-	-	460	460	252	460	252	-	-	460
-재료비(210-11)	338	336	336	-	-	588	588	233	588	233	-	-	438
- 관리용역비(210-15)	-	-	-	-	-	-	-	-	-	-	-	-	47
-국내여비(220-01)	158	158	158	-	-	158	158	129	158	129	-	-	158
-사업추진비(240-01)	57	57	57	-	-	57	57	39	57	39	-	-	60
-특정업무경비(250-03)	586	586	527	-	60	582	582	288	582	288	-	-	581
-일반연구비(260-01)	119	119	115	-	4	119	119	39	119	39	-	-	79
-정책연구비(260-02)	20	20	20	-	-	20	20	-	20	-	-	-	20
-포상금(310-03)	-	-	-	-	-	52	52	27	52	27	-	-	52
-기타보전금(310-04)	5	5	5	-	-	5	5	2	5	2	-	-	5
-실시설계비(420-02)	70	70	69	-	1	70	70	8	70	8	-	-	214
-공사비(420-03)	3,004	3,004	2,970	-	34	3,093	3,093	1,351	3,093	1,351	-	-	2,643
-감리비(420-04)	20	20	17	-	3	20	20	-	20	-	-	-	20
-자산취득비(430-01)	1,363	1,363	1,360	-	3	895	895	625	895	625	-	-	1,753
· 구호및교정비 지원	5,758	6,053	6,053	-	-	6,097	6,097	3,438	6,097	3,438	-	-	6,695
-구호및교정비(320-06)	5,758	6,053	6,053	-	-	6,097	6,097	3,438	6,097	3,438	-	-	6,695
· 공무직 등 인력지원	9,275	8,966	8,833	-	133	10,739	10,739	5,556	10,739	5,556	-	-	12,051
-상용임금(110-03)	7,014	7,014	6,952	-	62	8,055	8,055	4,431	8,055	4,431	-	-	9,106
-일용임금(110-04)	803	803	794	-	9	999	999	444	999	444	-	-	999
-복리후생비(210-12)	87	73	73	-	-	90	90	59	90	59	-	-	115
-고용부담금(320-09)	1,371	1,076	1,014	-	62	1,595	1,595	622	1,595	622	-	-	1,831
· 출원생 자립지원	2,880	2,880	2,880	-	-	2,964	2,964	2,964	2,964	2,964	-	-	3,101
-민간경상보조(320-01)	2,880	2,880	2,880 [2,880]	-	-	2,964	2,964	2,964 [1,699]	2,964	2,964 [1,699]	-	-	3,101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o (소년원생수용) 법원소년부로부터 위탁, 송치된 보호소년등을 수용, 이들에게 교과교육과 직업능력개발훈련, 인성교육, 의료재활교육 등으로 안정된 사회복귀 지원

- (교육과정 운영 등) 초중등교육과정, 직업훈련과정, 의료재활교육과정, 인성교육과정 등 보호소년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제경비 지원
- (구호 및 교정비 지원) 소년원생의 수용생활에 필요한 의료비, 급량비, 피복비 및 귀주여비 등 경상적 경비 지원
- (공무직 등 인력지원) 소년원생에 대한 감호업무 지원 등 공무직 근로자(감호실무관, 정신건강임상심리사, 특수교사, 전문상담사, 운전원) 및 검정고시·직업훈련 등 유급강사 인건비 지원
- (출원생 자립지원) 무의탁 소년원 출원생의 성공적인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청소년자립생활관 및 청소년창업비전센터 운영 경비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소년법(법률 제17505호), 보호소년등의처우에관한법률(법률 제21214호)
- 보호소년등의처우에관한법률시행령(대통령령 제32790호), 시행규칙(법무부령 제1039호)

② 추진경위

- 1942. 4. 조선교정원 개원(현 서울소년원)
- 1958. 8. 소년원법 제정
- 1977. 4. 서울소년감별소 신설(현, 서울소년분류심사원)
- 1988.12. 소년원법 전문 개정(학교설치 근거 마련)
- 1989. 7. 소년원, 학교교육과정 설치
- 1990. 3. 소년원, 초·중·고등학교 개교
- 1997. 1. 소년원 복수명칭 사용(소년원, 중・고등학교 또는 직업전문학교)
- 2004. 1. 소년원법 개정(소년원 학교의 정규화)

- 2007.12.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구 소년원법에서 법률 제명 변경)
- 2008. 6. 1개월 이내의 소년원 교육과정 신설(안양, 대전소년원)
- 2009. 7. 청주소년원 개청(소년원 10개, 소년분류심사원 1개)
- 2026. 4.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안산지원(女) 개청
- 현재, 10개 소년원 및 2개 소년분류심사원 운영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단위: 백만원)

연도	2023	2024	2025	2026	2027(안)
사업비	25,217	26,887	26,971	29,183	31,641

- 기타: 소년보호기관 12개(소년원 10개, 소년분류심사원 2개), 보조사업기관 10개(청소년자립생활관 8개, 창업비전센터 2개)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자립생활관 등
- 사업 수혜자 : 소년원생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단위: 백만원)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2027예산안)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출원생 자립지원	보조	한국소년보호협회	3,101	100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1조3항

3) 2027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교육과정 운영 지원

: (2026 본예산) 9,383백만원 → (2027 요구) 9,794백만원, 411백만원 증액

- (요구) 재난대응 시설 개선 및 노후 생활실 개보수 등 우선순위 조정하여, 소년범 교정교육 내실화 예산 및 위생보건 환경 개선 예산 요구
- (산출) 원격의료 도입 1,215백만원 증액, 노후 강당 개보수 1,722백만원 증액
  디지털 교육 기자재 210백만원 증액, 급식실 환경개선 622백만원 증액
  정신질환 소년원생 피복류 세탁용역 30백만원 증액, 업무추진비 3백만원 증액 등 총 3,802백만원 증액
  재난대응 및 노후생활관 환경개선 3,200백만원 감액, 의무관 임상연구비 40백만원 감액, 직업훈련 재료비 150백만원 등 총 3,391백만원 감액

ㅇ 2026년도 예산 및 2027년도 예산안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6년 본예산		2027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9,383	○ **일반수용비(210-01) : 1,815백만원** 가. 소년원생 수용경비 · 12기관×34,666천원 = 416백만원 나. 교과 및 직업훈련, 치료재활교육과정 운영 등 · 12기관×99,833천원 = 1,198백만원 다. 급식관리위원회 등 위원회 운영 · 12기관×4,666천원 = 56백만원 라. 야간근무자 특수건강검진비 · 680명×100천원 = 68백만원 마. 통행료, 감염병 예방 등 · 12기관×6,416천원 = 77백만원 ○ **공공요금및제세(210-02) : 1,196백만원** 가. 전기료, 도시가스 등 12기관×8,305천원×12월 = 1,196백만원 ○ **피복비(210-03) : 52백만원** 가. 감호실무관 등 피복비 163명×277천원 = 45백만원 나. 직훈교사 피복비 35명×200천원 = 7백만원 ○ **유류비(210-08) : 201백만원** 가. 난방비(등유) 12기관×16,750천원 = 201백만원 ○ **시설장비유지비(210-09) : 460백만원** 가. 생활관, 교육관 등 시설유지보수 12기관×38,333천원 = 460백만원 ○ **재료비(210-11) : 588백만원** 가. 직업훈련 실습재료비 10기관×4,900천원×12월 = 588백만원 ○ **관리용역비(210-15) : -백만원** ○ **여비(220-01) : 158백만원** 가. 호송, 소환 출장비 84백만원 나. 병원진료, 체험활동 출장비 등 74백만원 ○ **사업추진비(220-01) : 57백만원** 가. 소년보호위원 간담회 23백만원 나. 교육활동 행사 지원 26백만원 다. 법원 등 유관기관 업무협의 8백만원 ○ **특정업무경비(250-03) : 582백만원** 가. 소년보호활동비 762명×60천원×12월 = 549백만원 나. 부서활동비 33백만원 ○ **연구비(260-00) : 139백만원** 가. 임상연구비 13과제×9,120천원 = 119백만원 나. 프로그램 개발 정책연구비 20백만원 ○ **포상금(310-03) : 52백만원** 가. 우수직원 포상금 52백만원 ○ **기타보전금(310-04) : 5백만원** 가. 11기관×455천원 = 5백만원 ○ **건설비(420-00) : 3,183백만원** 가. 소년원 재난대비 시설 보강 등 2,,443백만원	9,794	○ **일반수용비(210-01) : 1,815백만원** 가. 소년원생 수용경비 · 12기관×34,666천원 = 416백만원 나. 교과 및 직업훈련, 치료재활교육과정 운영 등 · 12기관×99,833천원 = 1,198백만원 다. 급식관리위원회 등 위원회 운영 · 12기관×4,666천원 = 56백만원 라. 야간근무자 특수건강검진비 · 680명×100천원 = 68백만원 마. 통행료, 감염병 예방 등 · 12기관×6,416천원 = 77백만원 ○ **공공요금및제세(210-02) : 1,196백만원** 가. 전기료, 도시가스 등 12기관×8,305천원×12월 = 1,196백만원 ○ **피복비(210-03) : 52백만원** 가. 감호실무관 등 피복비 163명×277천원 = 45백만원 나. 직훈교사 피복비 35명×200천원 = 7백만원 ○ **유류비(210-08) : 201백만원** 가. 난방비(등유) 12기관×16,750천원 = 201백만원 ○ **시설장비유지비(210-09) : 460백만원** 가. 생활관, 교육관 등 시설유지보수 12기관×38,333천원 = 460백만원 ○ **재료비(210-11) : 438백만원** 가. 직업훈련 실습재료비 10기관×3,650천원×12월 = 438백만원 ○ **관리용역비(210-15) : 47백만원** 가. 원격의료 시범기관 유지관리 용역 17백만원 나. 정신질환 소년원생 피복류 세탁용역 30백만원 ○ **여비(220-01) : 158백만원** 가. 호송, 소환 출장비 84백만원 나. 병원진료, 체험활동 출장비 등 74백만원 ○ **사업추진비(220-01) : 60백만원** 가. 소년보호위원 간담회 23백만원 나. 교육활동 행사 지원 26백만원 다. 법원 등 유관기관 업무협의 11백만원 ○ **특정업무경비(250-03) : 581백만원** 가. 소년보호활동비 765명×60천원×12월 = 551백만원 나. 부서활동비 30백만원 ○ **연구비(260-00) : 99백만원** 가. 임상연구비 8과제×9,875천원 = 79백만원 나. 프로그램 개발 정책연구비 20백만원 ○ **포상금(310-03) : 52백만원** 가. 우수직원 포상금 52백만원 ○ **기타보전금(310-04) : 5백만원** 가. 11기관×455천원 = 5백만원 ○ **건설비(420-00) : 2,877백만원** 가. 소년원 학생식당 급식실 환경개선 등 574백만원

2026년 본예산		2027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나. 소년원 교육관 등 소규모 시설 개보수 등 500백만원 다. 고가수조 및 수전 설비 등 150백 라. 설계 및 감리비 90백만원 ○ **자산취득비(430-01) : 895백만원** 가. 취사, 직훈, 보안장비, 사무기기 등 교체 676백만원 나. 재난 대비 장비 구입 등 169백만원 다, 면회장, 생활실 등 집기류 50백만원		나. 소년원 강당 등 노후 시설 개보수 1,628백만원 다. 교육, 생활시설 개보수 441백 라. 설계 및 감리비 234백만원 ○ **자산취득비(430-01) : 1,753백만원** 가. 취사, 직훈, 보안장비, 사무기기 등 교체 255백만원 나. 원격의료 등 의료환경 개선 장비 1,198백만원 다, 생활실 등 가구류 90백만원 라. 디지털 교육기자재 210백

② 소년원생 구호 및 교정비 지원

: (2026 본예산) 6,097백만원 → (2027 요구) 6,695백만원, 598백만원 증액

- (요구) 소년원생 수용정원 1,395명에 대한 급식비, 의료비, 피복비 등 경상적 경비로, 편성인원을 2025년 1일 평균 수용인원인 1,543명으로 확대 요구
- (산출) 구호 및 교정비 598백만원 증액

ㅇ 2026년도 예산 및 2027년도 예산안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6년 본예산		2027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6,097	○ **구호및교정비(320-06) : 6,097백만원** 가. **소년원생 급량비 4,911백만원** ・소년원생 급식비 1,405명×8,679원×365일 = 4,451백만원 ・경축일, 수험생 등 특식가산 379백만원 ・이호송, 체험활동 간식비 등 81백만원 나. **소년원생 의료비 747백만원** ・건강관리공단예탁금 294백만원 ・일반의료비 등 438백만원 ・출원생 진료비 15백만원 다. **소년원생 피복비 등 438백만원** ・피복비 414백만원 ・귀주여비 24백만원	6,695	○ **구호및교정비(320-06) : 6,097백만원** 가. **소년원생 급량비 5,388백만원** ・소년원생 급식비 1,543명×8,679원×365일 = 4,888백만원 ・경축일, 수험생 등 특식가산 407백만원 ・이호송, 체험활동 간식비 등 93백만원 나. **소년원생 의료비 826백만원** ・건강관리공단예탁금 320백만원 ・일반의료비 등 491백만원 ・출원생 진료비 15백만원 다. **소년원생 피복비 등 481백만원** ・피복비 456백만원 ・귀주여비 25백만원

③ 공무직 등 인력지원

: (2026 본예산) 10,739백만원 → (2027 요구) 12,051백만원, 1,312백만원 증액

- (요구) 공무직 인건비 처우개선 및 전문상담사 공무직 12명 증원 요구
- (산출) 전문상담사 공무직 12명 충원 및 공무직 192명에 대한 4.3% 처우개선, 가족수당 등 각종 수당 반영 상용임금 1,051백만원 증액, 복리후생비 25백만원 증액, 고용부담금 236백만원 증액

ㅇ 2026년도 예산 및 2027년도 예산안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6년 본예산		2027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0,739	○ **상용임금(110-02) : 8,055백만원** 가. 정신건강임상심리사 ・ 19명×4,192천원×12월 = 956백만원 나. 감호실무관 ・ 149명×2,540천원×12월 = 4,542백만원 다. 특수교사 ・ 10명×3,016천원×12월 = 362백만원 라. 운전원 ・ 2명×3,250천원×12월 = 78백만원 마. 초과근무 등 각종 수당 2,117백만원	12,051	○ **상용임금(110-02) : 9,106백만원** 가. 정신건강임상심리사 ・ 19명×4,368천원×12월 = 996백만원 나. 감호실무관 ・ 149명×2,640천원×12월 = 4,722백만원 다. 특수교사 ・ 10명×3,125천원×12월 = 375백만원 라. 운전원 ・ 2명×3,375천원×12월 = 81백만원 마. 전문상담사 ・ 12명×2,826천원×12월 = 407백만원 바. 초과근무 등 각종 수당 2,525백만원

	○ **일용임금(110-04) : 999백만원** 가. 직업훈련과정 강사료 ・ 33명×41천원×40시간×12월 = 649백만원 나. 교과교육 강사료 등 ・ 18명×41천원×39.5시간×12월 = 350백만원 ○ **복리후생비(210-12) : 90백만원** 가. 맞춤형복지비 ・ 180명×500천원 = 90백만원 ○ **고용부담금(320-09) : 1,595백만원** 가. 보험료 및 퇴직금 1,595백만원		○ **일용임금(110-04) : 999백만원** 가. 직업훈련과정 강사료 ・ 33명×41천원×40시간×12월 = 649백만원 나. 교과교육 강사료 등 ・ 18명×41천원×39.5시간×12월 = 350백만원 ○ **복리후생비(210-12) : 115백만원** 가. 맞춤형복지비 ・ 192명×600천원 = 115백만원 ○ **고용부담금(320-09) : 1,831백만원** 가. 보험료 및 퇴직금 1,831백만원

④ 출원생 자립지원

: (2026 본예산) 2,964백만원 → (2027 요구) 3,101백만원, 137백만원 증액

- (요구) 무의탁 소년원 출원생의 성공적인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청소년 자립생활관 및 청소년창업비전센터 운영 경비 내 입주생 급식비 단가(6,712원→8,679원), 생활지도사 등 근로자 인건비 처우개선분 요구
- (산출) 자립생활관 입주생 급식비 93백만원 증액, 근로자 인건비 처우개선분 44백만원 증액

ㅇ 2026년도 예산 및 2027년도 예산안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6년 본예산		2027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2,964	○ **민간경상보조(320-01) : 2,964백만원** **가. 자립생활관 운영비 1,753백만원** ・인건비 32명×3,531천원×12월 = 1,356백만원 ・사업비 8기관×4,135천원×12월 = 397백만원 **나. 화성청소년창업비전센터 운영비 1,009백만원** ・인건비 16명×3,760천원×12월 = 722백만원 ・사업비 5과정×4,777천원×12월 = 287백만원 **다. 안산청소년창업비전센터 운영비 202백만원** ・인건비 3명×3,500천원×12월 = 126백만원 ・사업비 2과정×3,171천원×12월 = 76백만원	2,964	○ **민간경상보조(320-01) : 3,101백만원** **가. 자립생활관 운영비 1,871백만원** ・인건비 32명×3,611천원×12월 = 1,387백만원 ・사업비 8기관×5,041천원×12월 = 484백만원 **나. 화성청소년창업비전센터 운영비 1,027백만원** ・인건비 16명×3,833천원×12월 = 736백만원 ・사업비 5과정×4,850천원×12월 = 291백만원 **다. 안산청소년창업비전센터 운영비 203백만원** ・인건비 3명×3,500천원×12월 = 126백만원 ・사업비 2과정×3,208천원×12월 = 77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3~2027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3	2024	2025	2026	2027	2027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지표명 (단위)	목표	88.37	-	-	-	-	-	[안정적 사회정착 인원/ 소년원 출원(9·10호)인원] × 100	소년보호교육종합관리시스템(TEAMS) 실적 입력 결과
	실적	88.54	-	-	-	-			
	달성도	100.2	-	-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3	○ 비행원인 진단 및 교과 · 인성교육 - 분류심사 4,210명, 외부경시대회입상 96명, 상급학교진학 114명, 검정고시 285명, 편입학 410명, 졸업장취득 98명, 자격취득 2,500명 ○ 직업능력개발훈련 - 현장훈련 55명, 기능자격취득 852명, 기능경기대회입상 63명 ○ 체험학습 168명, 봉사활동 176명 ○ 가족관계회복 : 보호자교육 724명, 가족사랑캠프 · 가족참여 체험활동 등 14명 ○ 사회복귀 지원 - 취업알선 69명, 구인업체방문 1명, 산업체현장실습 56명, 멘토링결연 218명, 자립생활관 연계 45명, 장학금지급 366명(13,909만원)
2024	○ 비행원인 진단 및 교과 · 인성교육 - 분류심사 4,744명, 외부경시대회입상 67명, 상급학교진학 151명, 검정고시 310명, 편입학 721명, 졸업장취득 129명, 자격취득 3,842명 ○ 직업능력개발훈련 - 현장훈련 90명, 기능자격취득 1,108명, 기능경기대회입상 97명 ○ 체험학습 666명, 봉사활동 226명 ○ 가족관계회복 : 보호자교육 1,533명, 가족사랑캠프 · 가족참여 체험활동 등 73명 ○ 사회복귀 지원 - 취업알선 76명, 구인업체방문 0명, 산업체현장실습 90명, 멘토링결연 367명, 자립생활관 연계 55명, 장학금지급 207명(9,449만원)
2025	○ 비행원인 진단 및 교과 · 인성교육 - 분류심사 4,810명, 외부경시대회입상 144명, 상급학교진학 165명, 검정고시 285명, 편입학 638명, 졸업장취득 149명, 자격취득 4,179명 ○ 직업능력개발훈련 - 현장훈련 87명, 기능자격취득 1,364명, 기능경기대회입상 82명 ○ 체험학습 564명, 봉사활동 464명 ○ 가족관계회복 : 보호자교육 1,702명, 가족사랑캠프 · 가족참여 체험활동 등 151명 ○ 사회복귀 지원 - 취업알선 96명, 구인업체방문 3명, 산업체현장실습 83명, 멘토링결연 492명, 자립생활관 연계 62명, 장학금지급 309명(13,424만원)
2026	○ 비행원인 진단 및 교과 · 인성교육 - 분류심사 2,999명, 외부경시대회입상 32명, 상급학교진학 195명, 검정고시 187명, 편입학 424명, 졸업장취득 145명, 자격취득 2,533명 ○ 직업능력개발훈련 - 현장훈련 63명, 기능자격취득 681명, 기능경기대회입상 20명 ○ 체험학습 287명, 봉사활동 305명 ○ 가족관계회복 : 보호자교육 911명, 가족사랑캠프 · 가족참여 체험활동 등 853명 ○ 사회복귀 지원 - 취업알선 44명, 구인업체방문 1명, 산업체현장실습 63명, 멘토링결연 293명, 자립생활관 연계 68명, 장학금지급 122명(5,904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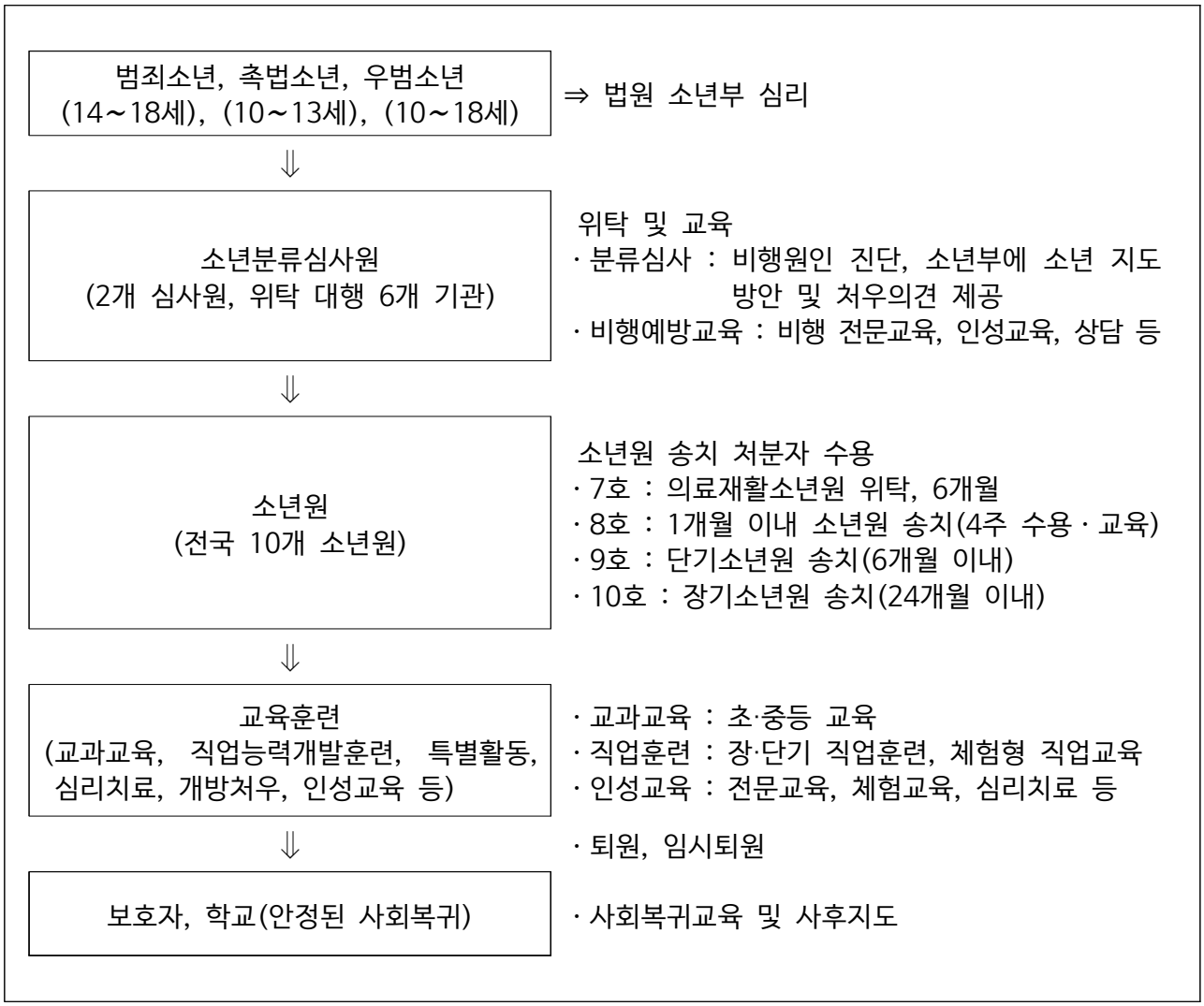
③ 향후(2027년도 이후) 기대효과

- 전문상담사에 의한 실효성 있는 상담 및 원격의료 도입으로 정신질환 소년원생 상담·치료강화
- 인권친화적 수용환경 구축을 통해 소년원 교정교육 효과 제고
- 디지털 교육기자재 도입으로 보호소년의 학습결손 회복 및 학습격차 완화
- 보호소년의 결손유형을 분석, 가정기능 회복 및 자립지원 등 맞춤형처우를 제공하여 출원 후 재비행 방지 및 안정적 사회정착 실현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25~2029	26,971	29,183	26,101	25,552	24,728	
2026~2030		29,183	35,041	36,092	37,175	38,290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국회(상임위 등)	지적사항	비고
- '25년 국회 법사위 예결위 등	여자 위탁소년 전담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24시간 주·야 교대로 수용소년을 전담 관리·감독하는 공무직 근로자 7명 충원을 위한 공무직 인건비 증액 필요	
	최근 수용인원 급증에 따른 급식비 지출 증가로 피복비, 의료비 등 구호 및 교정비 내 타 내역집행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어 소년원생의 인권보호 및 안정적이고 건강한 수용환경 유지를 위한 구호 및 교정비 편성 인원 160명 확대(1,350명 → 1,510명)에 따른 예산 증액 필요	

2) 감사원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 해당없음

3) 자체평가 : 해당없음

4)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연번	일자	매체	내 용
1	'26.2.25.	뉴시스 등 13개 인터넷매체	ㅇ (제기) 소년원 찾은 정부, '위기 청소년'의 일상회복 위한 간담회 - 전문가들은 소년원 내 정신과 전문의 부족 문제 언급, 정신질환 및 약물중독 청소년을 위한 상담과 치료 환경 구축, 소년원 교육 내실화를 위한 지역 교육기관과의 협력 강화 필요성 등을 제언 - 기획처와 법무부는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후속 조치를 검토하고 관련 사항을 내년도 예산안 등에 반영할 계획임
2	'26.5.12.	연합뉴스 등 5개 인터넷 매체	ㅇ (제기) 정신질환 소년원 학생 앞으로 '원격진료'…법무부 시범 운영 - 소년원 학생 의료 처우 강화 및 정신과 전문의 공백 해소를 위해 법무부는 원격의료 제도를 도입, 2026. 5.부터 안양·대전소년원에서 시범 운영을 실시하였으며, 향후 성과를 분석하여 전국 소년원으로 확대 실시 예정

5)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지적사항	후속 조치사항
- 여위탁소년 전담시설 공무직 인력 충원	- '26년 예산 반영('25년 국회증액- 공무직 7명 인건비, 337백만원)
- 수용인원 급증에 따른 구호및교정비 증액	- '26년 예산 반영('25년 국회증액- 55명분 확대, 238백만원)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미래 산업구조 변화와 선호도를 반영한 소년원 교육과정 운영 및 전인적 성장을 위한 인성교육 및 통합비행예방프로그램 강화 등 교정교육 효과 제고
- 정신질환 소년원생의 체계적인 처우(치료)제공 및 무의탁 소년원생의 자립지원 강화를 통한 성공적 사회복귀 지원
- 노후 소년원 시설 현대화 및 시설개선 사업 지속적 추진으로 인권친화적 수용환경 조성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1) 「국가재정법」 제85조의8제1항에 따른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상위평가(심층평가) 결과 : 해당없음**
2) R&D사업의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에 따른 부처의 R&D사업 자체성과평가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상위평가 결과 : 해당없음**
3) **그 외 보조사업 연장평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등 개별 법률에 규정된 평가 시행 결과**
   - **24회계연도 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 : 사업방식변경(사업추진체계 개선 필요)**

12) 동 사업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

회계연도	등급	자체평가 주요내용	조치결과
2023	보통	- 해당없음	- 해당없음
2024	보통	- 해당없음	- 해당없음
2025	보통	- 해당없음	- 해당없음

13) 2026년도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 결과 및 후속 조치 현황

평가결과	성과평가 주요내용	조치결과
사업개선	- (유사중복)타 자립지원 사업과 연계방안 모색 필요 - (지원규모 적적성)구호 및 교정비 지원에 비해 인건비 등 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편으로 파악됨 - (성과 달성도)수용·보호와 직접적인 성과 측정 필요	- (사업 연계)유관기관과 유기적인 연계 체계 구축 추진 - (구호 및 교정비 증액 노력) 구료비 예산 증액 추진 - (성과평가 방식 개선 검토)기존 지표 외 소년원 수용·보호 관련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핵심지표 도입 추진

14) 부처 건의사항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3	25,217	-	25,217	-	-	-	25,217	24,565	97.4	97.4	-	652
2024	26,887	-	26,887	-	△120	-	26,767	26,152	97.3	97.7	-	615
2025	26,971	-	26,971	-	-	-	26,971	26,733	99.1	99.1	-	238
2026	29,183	-	29,183	-	-	-	29,183	17,241	59.1	59.1	-	-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본예산	추경(A)								
2023	3,051	3,051	3,051	3,051	-	3,051	3,051	-	-	100
2024	2,812	2,812	2,812	2,812	-	2,812	2,812	-	-	100
2025	2,880	2,880	2,880	2,880	-	2,880	2,880	-	-	100
2026. 7월기준	2,964	2,964	2,964	2,964	-	2,964	1,699	-	-	57.3

2) 주요 결산사항

□ 2023~2026년 결산사항

2023	- 불용 : 공무직 인건비 379백만원, 특경비 86백만원, 연구용역비 56백만원 등 652백만원
2024	- 전용 : 공공요금 120백만원 전용 - 불용 : 공무직 인건비 등 309백만원, 유급강사 인건비 15백만원, 소년보호활동비 114백만원, 일반연구비 62백만원 등 615백만원
2025	- 불용 : 공무직 인건비 등 124백만원, 유급강사 인건비 9백만원, 소년보호활동비 60백만원, 일반연구비 4백만원 등 238백만원
2026	- 해당없음

□ 2026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

□ 2026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 해당없음

사 업 명
청소년비행예방 (1632-3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일반회계	020	022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600	1632	301
명칭	범죄예방활동	소년보호	청소년비행예방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6예산 시 소관
		O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청소년 비행예방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범죄예방정책국	오상섭	원학재	정재희
		범죄예방기획과	02-2110-3570	02-2110-3574	02-2110-3787
	사업시행주체	청소년비행예방센터	-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년 결산	2026년 예산		2027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요구안	조정안(B)		(B-A)/A
청소년비행예방	5,408	5,656	5,656	7,845	-	△5,656	순감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5					2026(2026.7월말)							2027 예산안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5,577	5,527	5,408	-	119	5,656	5,656	2,966	5,656	2,966	-	-	-
· 교육과정 운영	2,183	2,141	2,125	-	16	2,183	2,183	1,029	2,183	1029	-	-	-
· 공무직 등 인력지원	1,716	1,716	1,614	-	102	1,795	1,795	968	1,795	968	-	-	-
· 임차청사 지원	1,678	1,670	1,670	-	-	1,678	1,678	969	1,678	969	-	-	-
○ 비목별 분류(합계)	5,577	5,527	5,408	-	119	5,656	5,656	2,966	5,656	2,966	-	-	-
· 상용임금(110-03)	608	608	581	-	27	673	673	405	673	405	-	-	-
· 일용임금(110-04)	980	980	946	-	34	980	980	516	980	516	-	-	-
· 일반수용비(210-01)	802	812	812	-	-	802	802	366	802	366	-	-	-
· 공공요금(210-02)	357	361	358	-	3	357	357	187	357	187	-	-	-
· 임차료(210-07)	1,578	1,570	1,570	-	-	1,578	1,578	969	1,578	969	-	-	-
· 시설장비유지비(210-09)	458	452	452	-	-	458	458	233	458	233	-	-	-
· 복리후생비(210-12)	9	8	6	-	2	9	9	5	9	5	-	-	-
· 국내여비(220-01)	206	156	151	-	5	206	206	105	206	105	-	-	-
· 사업추진비(240-01)	34	34	34	-	-	34	34	23	34	23	-	-	-
· 정책연구비(260-02)	20	20	20	-	-	20	20	-	20	-	-	-	-
· 기타보전금(310-04)	17	17	17	-	-	17	17	13	17	13	-	-	-
· 구호및교정비(320-06)	199	199	191	-	8	199	199	98	199	98	-	-	-
· 고용부담금(320-09)	119	119	80	-	39	133	133	42	133	42	-	-	-
· 공사비(420-03)	60	60	60	-	-	60	60	-	60	-	-	-	-
· 자산취득비(430-01)	30	30	30	-	-	30	30	4	30	4	-	-	-
· 무형자산(440-00)	100	100	100	-	-	100	100	-	100	-	-	-	-

	2025					2026(2026.7월말)							2027 예산안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5,577	5,527	5,408	-	119	5,656	5,656	2,966	5,656	2,966	-	-	-
· 교육과정 운영	2,183	2,141	2,125	-	16	2,183	2,183	1,029	2,183	1,029	-	-	-
- 일반수용비(210-01)	802	812	812	-	-	802	802	366	802	366	-	-	-
- 공공요금(210-02)	357	361	358	-	3	357	357	187	357	187	-	-	-
- 시설장비유지비(210-09)	458	452	452	-	-	458	458	233	458	233	-	-	-
- 국내여비(220-01)	206	156	151	-	5	206	206	105	206	105	-	-	-
- 사업추진비(240-01)	34	34	34	-	-	34	34	23	34	23	-	-	-
- 정책연구비(260-02)	20	20	20	-	-	20	20	-	20	-	-	-	-
- 기타보전금(310-04)	17	17	17	-	-	17	17	13	17	13	-	-	-
- 구호및교정비(320-06)	199	199	191	-	8	199	199	98	199	98	-	-	-
- 공사비(420-03)	60	60	60	-	-	60	60	-	60	-	-	-	-
- 자산취득비(430-01)	30	30	30	-	-	30	30	4	30	4	-	-	-
· 공무직 등 인력지원	1,716	1,716	1,614	-	102	1,795	1,795	968	1,795	968	-	-	-
- 상용임금(110-03)	608	608	581	-	27	673	673	405	673	405	-	-	-
- 일용임금(110-04)	980	980	946	-	34	980	980	516	980	516	-	-	-
- 복리후생비(210-12)	9	9	7	-	2	9	9	5	9	5	-	-	-
- 고용부담금(320-09)	119	119	80	-	39	133	133	42	133	42	-	-	-
· 임차청사 지원	1,678	1,670	1,670	-	-	1,678	1,678	969	1,678	969	-	-	-
- 임차료(210-07)	1,578	1,570	1,570	-	-	1,578	1,578	969	1,578	969	-	-	-
- 무형자산(440-00)	100	100	100	-	-	100	100	-	100	-	-	-	-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o (청소년비행예방) 학교폭력 가해학생,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자, 촉법소년, 보호처분 대상자 등 비행 초기단계 청소년에 대한 비행진단 및 비행유형별 비행예방전문교육 등을 통해 비행성향을 개선하고 건전한 성장·발달 도모

- (교육과정 운영) 비행예방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구호 및 교정비 등 제경비 지원
- (공무직 등 인력지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교육생의 외부 체험교육 등 비행예방교육 과정 운영을 위한 공무직 운전인력 및 유급강사 인건비 지원
- (임차청사 지원) 국유청사가 없는 지역의 임차청사 운영을 위한 임차료 및 보증금 예산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소년법(법률 제15757호) 제67조2 (비행예방정책)
- 보호소년등의처우에관한법률(법률 제15754호) 제42조2(대안교육 및 비행예방 등)

② 추진경위

- 2003. 7. 상담조사제도 도입
  ※ 상담조사제도 : 청소년비행예방의 조기진단을 위하여 법원이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 교육 및 조사를 의뢰하는 제도
- 2007. 7. 부산, 창원, 광주, 안산, 청주, 대전 등 6개 청소년비행예방센터 개청
- 2007.12. 청소년비행예방센터 관할 교육청으로부터 학교폭력 등 부적응학생 대안교육 위탁기관 지정
- 2012. 6. 서울남부, 서울북부, 인천, 대구 등 4개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증설
- 2013.11. 순천, 전주, 춘천 등 3개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증설
- 2014.12. 부산동부, 울산, 수원 등 3개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증설
- 2016. 5. 제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 업무개시(제주소년원 병설, 비직제)
- 2017. 4. 대전청소년비행예방센터 개청(대전솔로몬로파크와 분리·개청)
- 2020. 9. 천안, 의정부 등 2개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증설
- 2026. 3. 광주, 안산 등 3개 소년사법 통합기관 시범운영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07 ~ 2026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단위: 백만원)

연도	2023	2024	2025	2026	2027(안)
사업비	5,820	5,447	5,577	5,656	-

- 기타: 전국 18개 청소년비행예방센터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범죄예방정책국 청소년비행예방센터
- 사업 수혜자 : 위기청소년, 학교부적응 학생, 보호처분(2호) 대상자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7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비행예방 교육과정 운영 등

: (2026 본예산) 2,183백만원 → (2027 요구) 0, 순감

- (요구) 2027년부터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 소년보호관찰 기능을 결합한 '소년보호전문기관' 신설·운영에 따라 '소년범죄예방' 세부사업으로 사업비 이관
- (산출) -

ㅇ 2026년도 예산 및 2027년도 예산안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6년 본예산		2027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2,183	○ **일반수용비(210-01) : 802백만원** 가. 성폭력예방과정 등 프로그램 운영비 ・18기관×22,111천원 = 398백만원 나. 교재, 전산, 사무용품 구입비 등 ・18기관×13,833천원 = 249백만원 다. 초기비행청소년 상담강화 멘토링 운영비 50백만원 라. 대안교육 및 상담조사 교육생 정신진단 검사비 ・18기관×5,833천원 = 105백만원 ○ **공공요금및제세(210-02) : 357백만원** 가. 전기료, 전화요금 등 18기관×1,653천원 ×12월 = 357백만원 ○ **시설장비유지비(210-09) : 458백만원** 가. 시설 및 장비 개보수비 18기관×3,780천원 = 68백만원 나. 임차청사 관리비 13기관×2,500천원×12월 = 390백만원 ○ **여비(220-01) : 206백만원** 가. 비행예방교육 및 상담조사 출장비 ・18기관×495천원×12월 = 107백만원 나. 직원전문교육 출장비 등 99백만원 ○ **사업추진비(240-01) : 34백만원** 가. 법원, 학교 등 유관기관 업무협의 ・18기관×1,887천원 = 34백만원 ○ **정책연구비(260-02) : 20백만원** 가. 비행예방교육프로그램 개발 등 20백만원 ○ **기타보전금(310-04) : 17백만원** 가. 프로그램 우수이수자 시상 ・18기관×948천원 = 17백만원 ○ **구호및교정비(320-06) : 199백만원** 가. 교육대상자 급식비 ・1,228명×9천원×18기관 = 199백만원 ○ **공사비(420-03) : 60백만원** 가. 청사 및 교육장 시설 개보수비 60백만원 ○ **자산취득비(430-01) : 30백만원** 가. 교육장 집기류 구입비 등 ・18기관×1,666천원 = 30백만원		

② **공무직 등 인력지원**

: (2026 본예산) 1,795백만원 → (2027 요구) 0, 순감

- (요구) 2027년부터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 소년보호관찰 기능을 결합한 '소년보호전문기관' 신설·운영에 따라 '소년범죄예방' 세부사업으로 사업비 이관
- (산출) -

ㅇ 2026년도 예산 및 2027년도 예산안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6년 본예산		2027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795	○ **상용임금(110-02) : 673백만원** 가. 운전원 ・ 17명×3,299천원×12월 = 673백만원 ○ **일용임금(110-04) : 980백만원** 가. 인성교육 등 유급강사료 ・ 18기관×4,537천원×12월 = 980백만원 ○ **복리후생비(210-12) : 9백만원** 가. 맞춤형복지비 ・ 17명×500천원 = 9백만원 ○ **고용부담금(320-09) : 133백만원** 가. 보험료 및 퇴직금 ・17명×652천원×12월=133백만원		

③ **임차청사 지원**

: (2026 본예산) 1,678백만원 → (2027 요구) 0, 순감

- (요구) 2027년부터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 소년보호관찰 기능을 결합한 '소년보호전문기관' 신설·운영에 따라 '소년범죄예방' 세부사업으로 사업비 이관
- (산출) -

ㅇ 2026년도 예산 및 2027년도 예산안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6년 본예산		2027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678	○ **임차료(210-07) : 1,578백만원** 가. 월 임차료 ・13기관×10,115천원×12월 = 1,578백만원 ○ **보증금(210-07) : 100백만원** 가. 보증금 인상분 ・4기관×25,000천원 = 100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3~2027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3	- 청소년 심리검사 및 상담 5,893명, 대안교육 22,386명 - 상담조사 3,761명, 학교폭력예방교육 111,051명 -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의 보호자 등 보호자교육 4,73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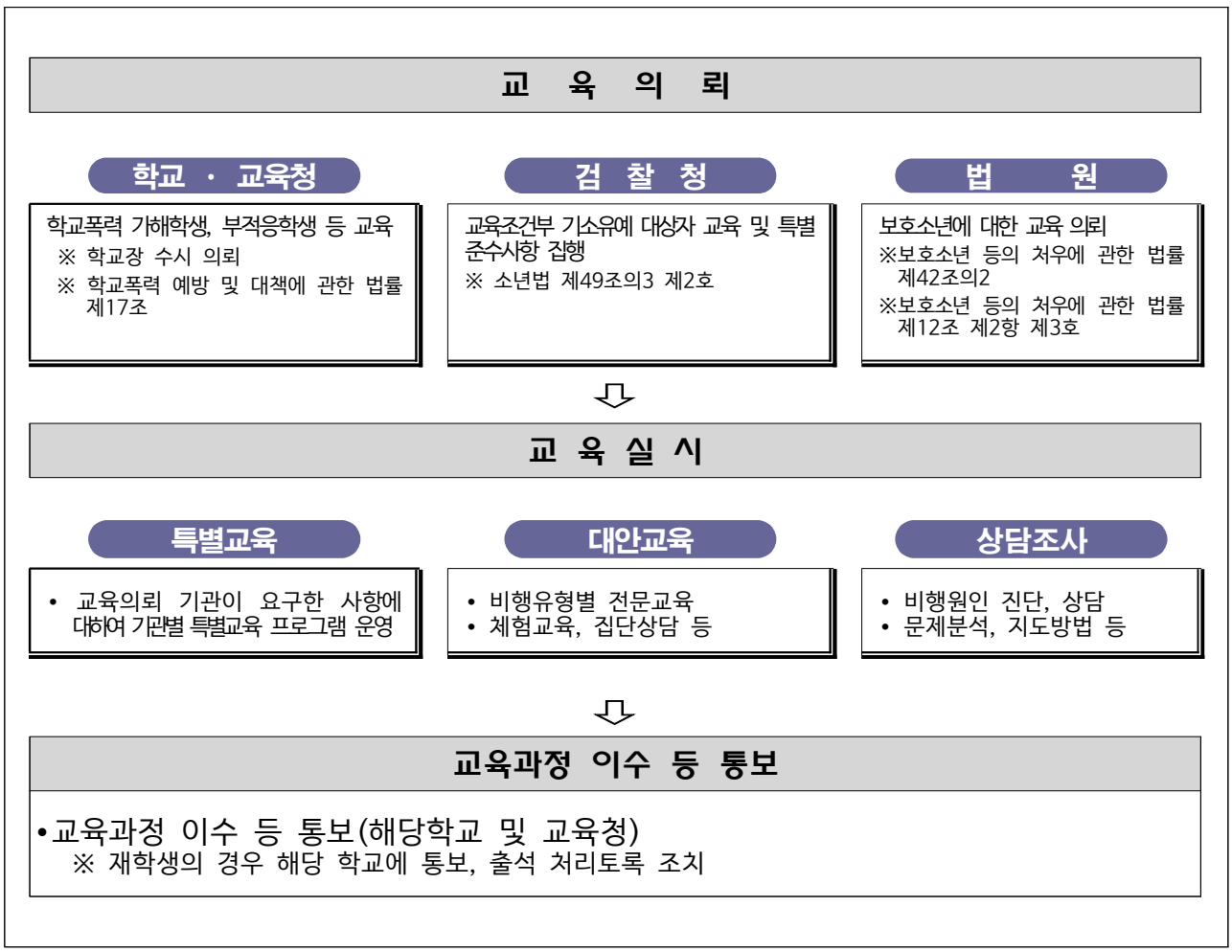
2024	- 청소년 심리검사 및 상담 2,503명, 대안교육 12,449명 - 상담조사 3,192명, 학교폭력예방교육 94,177명 -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의 보호자 등 보호자교육 3,864명
2025	- 청소년 심리검사 및 상담 5,813명, 대안교육 14,767명 - 상담조사 3,502명, 학교폭력예방교육 124,433명 -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의 보호자 등 보호자교육 4,151명
2026	- 청소년 심리검사 및 상담 4,207명, 대안교육 5,087명 - 상담조사 1,868명, 학교폭력예방교육 65,485명 -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의 보호자 등 보호자교육 2,164명

③ 향후(2027년도 이후) 기대효과 : 해당없음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25~2029	5,577	5,656	5,298	5,187	5,019	
2026~2030		5,656	17,890	18,427	18,980	19,549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해당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국정과제 74』 '청소년비행예방센터 개편' 의 신속한 이행을 위해, 보호관찰소에서 성인과 소년을 분리하여, 초기비행예방의 청소년비행예방센터와 결합한 '소년보호전문기관' 신설·운영 예정
- 2026년 3개 기관 시범운영을 거쳐 2027년부터 전면 확대 운영 계획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2) 동 사업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

회계연도	등급	자체평가 주요내용	조치결과
2023	보통	- 해당없음	- 해당없음
2024	보통	- 해당없음	- 해당없음
2025	보통	- 해당없음	- 해당없음

13) 2026년도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 결과 및 후속 조치 현황

평가결과	성과평가 주요내용	조치결과
사업개선	- (유사중복)학교폭력예방교육 관련 교육부 등 관계기관과 연계협력 제고 필요 - (지원규모 적정성)프로그램 개발 예산 규모가 적음 - (집행 적정성)예산집행 잔액 발생 - (성과 달성도)비행예방 효과성 관련 객관적 평가 필요	- (효과성 제고)교육부 등 업무 협의를 통한 업무 추진 - (자체 프로그램 개발 등)예산 외 자체 T/F 추진 등 프로그램 개발 및 사내강사 양성 - (실적 제고)교육 의뢰기관과 협의를 통한 교육 확대 - (성과평가 방식 개선)교육 만족도 외 효과성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 개발 추진

14) 부처 건의사항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3	5,820	-	5,820	-	-	-	5,820	5,373	92.3	92.3	-	447
2024	5,447	-	5,447	-	△50	-	5,397	5,056	92.8	93.7	-	341
2025	5,577	-	5,577	-	△50	-	5,527	5,415	97.1	97.8	-	112
2026	5,656	-	5,656	-	-	-	5,656	2,966	52.0	52.0	-	-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 해당없음

2) 주요 결산사항

□ 2023~2026년 결산사항

2023	- 불용 : 유급강사료 111백만원, 구호및교정비 31백만원, 무형자산 57백만원 등 447백만원
2024	- 전용 : 보호관찰소 여비 부족으로 50백만원 전용 - 불용 : 유급강사료 177백만원, 구호및교정비 69백만원, 임차료 71백만원 등 341백만원
2025	- 전용 : 보호관찰소 여비 부족으로 50백만원 전용 - 불용 : 공무직 인건비 68백만원, 유급강사료 34백만원, 구호및교정비 8백만원 등 112백만원
2026	- 해당없음

□ 2026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2026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 해당없음

사 업 명
소년범죄예방 (1632-30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일반회계	020	022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600	1632	302
명칭	범죄예방활동	소년보호	소년범죄예방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6예산 시 소관
O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소년범죄예방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범죄예방정책국	오상섭	원학재	정재희
		범죄예방기획과	02-2110-3570	02-2110-3574	02-2110-3787
	사업시행주체	소년보호전문기관	-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년 결산	2026년 예산		2027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요구안	조정안(B)		(B-A)/A
소년범죄예방	-	-	-	26,043	26,043	26,043	순증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5					2026(2026.7월말)							2027 예산안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	-	-	-	-	-	-	-	-	-	-	-	26,043
· 시설 및 장비	-	-	-	-	-	-	-	-	-	-	-	-	17,523
·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	-	-	-	-	-	-	-	-	-	-	-	7,109
· 공무직 인력지원	-	-	-	-	-	-	-	-	-	-	-	-	1,411
○ 비목별 분류(합계)	-	-	-	-	-	-	-	-	-	-	-	-	26,043
· 상용임금(110-03)	-	-	-	-	-	-	-	-	-	-	-	-	1,162
· 일반수용비(210-01)	-	-	-	-	-	-	-	-	-	-	-	-	5,414
· 공공요금(210-02)	-	-	-	-	-	-	-	-	-	-	-	-	586
· 특근매식비(210-05)	-	-	-	-	-	-	-	-	-	-	-	-	10
· 임차료(210-07)	-	-	-	-	-	-	-	-	-	-	-	-	3,980
· 유류비(210-08)	-	-	-	-	-	-	-	-	-	-	-	-	24
· 시설장비유지비(210-09)	-	-	-	-	-	-	-	-	-	-	-	-	50
· 복리후생비(210-12)	-	-	-	-	-	-	-	-	-	-	-	-	15
· 관리용역비(210-15)	-	-	-	-	-	-	-	-	-	-	-	-	1,407
· 국내여비(220-01)	-	-	-	-	-	-	-	-	-	-	-	-	641
· 사업추진비(240-01)	-	-	-	-	-	-	-	-	-	-	-	-	49
· 정책연구비(260-02)	-	-	-	-	-	-	-	-	-	-	-	-	20
· 기타보전금(310-04)	-	-	-	-	-	-	-	-	-	-	-	-	17
· 구호및교정비(320-06)	-	-	-	-	-	-	-	-	-	-	-	-	348
· 고용부담금(320-09)	-	-	-	-	-	-	-	-	-	-	-	-	234
· 공사비(420-03)	-	-	-	-	-	-	-	-	-	-	-	-	6,272
· 자산취득비(430-01)	-	-	-	-	-	-	-	-	-	-	-	-	3,136
· 무형자산(440-00)	-	-	-	-	-	-	-	-	-	-	-	-	2,678

	2025					2026(2026.7월말)							2027 예산안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	-	-	-	-	-	-	-	-	-	-	-	26,043
· 시설 및 장비	-	-	-	-	-	-	-	-	-	-	-	-	17,523
- 임차료(210-07)	-	-	-	-	-	-	-	-	-	-	-	-	3,980
- 시설장비유지비(210-09)	-	-	-	-	-	-	-	-	-	-	-	-	50
- 관리용역비(210-15)	-	-	-	-	-	-	-	-	-	-	-	-	1,407
- 공사비(420-03)	-	-	-	-	-	-	-	-	-	-	-	-	6,272
- 자산취득비(430-01)	-	-	-	-	-	-	-	-	-	-	-	-	3,136
- 무형자산(440-00)	-	-	-	-	-	-	-	-	-	-	-	-	2,678
·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	-	-	-	-	-	-	-	-	-	-	-	7,109
- 일반수용비(210-01)	-	-	-	-	-	-	-	-	-	-	-	-	5,414
- 공공요금(210-02)	-	-	-	-	-	-	-	-	-	-	-	-	586
- 특근매식비(210-05)	-	-	-	-	-	-	-	-	-	-	-	-	10
- 유류비(210-08)	-	-	-	-	-	-	-	-	-	-	-	-	24
- 국내여비(220-01)	-	-	-	-	-	-	-	-	-	-	-	-	641
- 사업추진비(240-01)	-	-	-	-	-	-	-	-	-	-	-	-	49
- 정책연구비(260-02)	-	-	-	-	-	-	-	-	-	-	-	-	20
- 기타보전금(310-04)	-	-	-	-	-	-	-	-	-	-	-	-	17
- 구호및교정비(320-06)	-	-	-	-	-	-	-	-	-	-	-	-	348
· 공무직 인력지원	-	-	-	-	-	-	-	-	-	-	-	-	1,411
- 상용임금(110-03)	-	-	-	-	-	-	-	-	-	-	-	-	1,162
- 복리후생비(210-12)	-	-	-	-	-	-	-	-	-	-	-	-	15
- 고용부담금(320-09)	-	-	-	-	-	-	-	-	-	-	-	-	234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o (소년범죄예방) 검찰·법원 등 의뢰 학교폭력 가해자 등 초기단계의 비행청소년과 소년법상 2~5호 처분을 받은 소년을 대상으로 유형별 비행예방교육 및 소년의 특성을 반영한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 집행으로 소년의 환경개선과 사회정착 지원

- (시설 및 장비) 소년보호전문기관 시설장비의 유지관리 및 임차청사 지원 등
-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초기비행예방교육, 소년보호관찰·수강명령·사회봉사 등 운영을 위한 제경비 지원
- (공무직 등 인력지원) 비행예방교육 등 교육 지원, 전문상담 및 심리검사 평가 보고서 작성을 위한을 위한 공무직 인력 운영

2) 사업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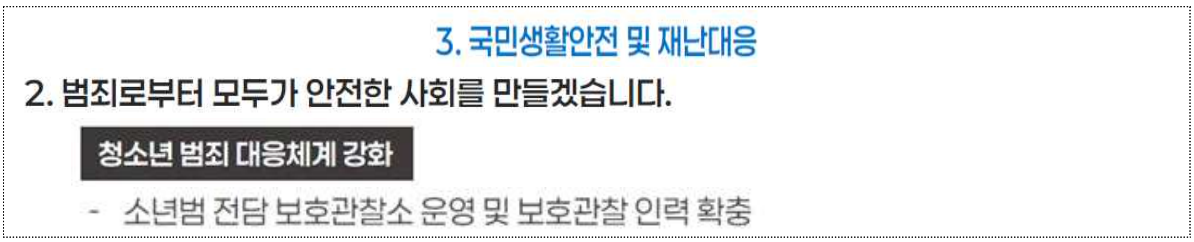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소년법
-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

② 추진경위

- 2025. 5. 이재명정부 대선공약 '소년범 전담보호관찰소 설치 운영' 발표



- 2025. 9. '청소년비행예방센터 개편, 소년사법 통합기관 운영' 국정과제 확정

※ 보호관찰소에 대응하는 58개의 소속기관 추가 설치는 사실상 불가능한 현실을 감안, 예산절감 및 실현가능성 제고를 위해 기존 청소년비행예방센터를 활용, 초기비행 예방교육 기능에 소년보호관찰 기능을 결합한 모델로 추진하도록 수정

- 2025. 9. 소년사법 통합기관 개편·운영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 2025. 10. 시범운영 준비단 TF 출범
- 2026. 3. 시범운영 실시(서울·광주·안산)
- 2026. 4.통합기관 전담 인력 증원을 위한 행안부 대상 설명회 개최
- 2026. 4.「보호관찰법」일부법률개정안 발의(서영교의원)
- 2026. 7. 법률개정안 법사위 전체회의 의결
- 2026. 8. 법률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27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단위: 백만원)

연도	2023	2024	2025	2026	2027(안)
사업비	-	-	-	-	26,043

- 기타: 전국 18개 소년보호전문기관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범죄예방정책국 소년보호전문기관
- 사업 수혜자 : 위기청소년, 학교부적응 학생, 보호처분(2호~5호) 대상자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7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시설 및 장비

: (2026 예산) 0 → (2027 예산안) 17,523백만원, 순증

- (요구) 전국 18개 소년보호전문기관 설치·운영을 위한 임차보증금, 임차료, 공사비 등 시설조성비 요구
- (산출) 18개 기관 보증금 2,678백만원, 임차료 3,980백만원, 관리비 1,457백만원, 공사비 6,272백만원, 자산취득비 3,136백만원

ㅇ 2026년도 예산 및 2027년도 예산안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6년 본예산		2027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		17,523	**○ 임차료(210-07) : 3,980백만원** 가. 월 임차료 ・14기관×23,690천원×12월 = 3,980백만원 **○ 시설장비유지비(210-09) : 50백만원** 가. 교육시설 및 장비 유지관리 ・18기관×2,777천원 = 50백만원 **○ 관리용역비(210-15) : 1,407백만원** 가. 임차청사 관리비 등 ・14기관×8,375천원×12월 = 100백만원 **○ 공사비(420-03) : 6,272백만원** 가. 청사 및 교육장 시설 조성 및 개보수비 ・18기관×348,444천원 = 6,272백만원 **○ 자산취득비(430-01) : 3,136백만원** 가. 교육장 집기류 등 구입 ・18기관×64,222천원 = 1,156백만원 나. 소년사법제도 지원 등 ・18기관×110,000천원 = 1,980백만원 **○ 무형자산(440-00) : 2,678백만원** 가. 임차청사 보증금 ・12기관×223,166천원 = 2,678백만원

② 비행예방 교육과정 운영 등

: (2026 예산) 0 → (2027 예산안) 7,109백만원, 순증

- (요구) 초기비행예방교육, 소년보호관찰 등 집행을 위한 예산 요구

- (산출) 초기비행에방교육 2,117백만원, 교육 강사비 980백만원, 소년보호관찰 집행 821백만원
수강·사회봉사·조사 집행 1,949백만원, 심리검사 및 치료 등 전문처우 집행 1,242백만원

ㅇ 2026년도 예산 및 2027년도 예산안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6년 본예산		2027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7,109	**○ 일반수용비(210-01) : 5,414백만원** 가. 심리검사, 연계상담 등 지원 ・58기관×1,933천원×12월 = 1,346백만원 나. 초기비행예방교육 운영 ・18기관×6,884천원×12월 = 1,487백만원 다. 수강명령·사회봉사명령·조사 등 집행 ・58기관×3,120천원×12월 = 2,172백만원 라. 교육 소모품 및 교재 제작 등 ・58기관×7,051천원 = 409백만원 **○ 공공요금및제세(210-02) : 586백만원** 가. 전기료, 전화요금 등 ・18기관×2,712천원 ×12월 = 586백만원 **○ 특근매식비(210-05) : 10백만원** 가. 야근자 특근매식비 ・18기관×4명×9,000원×1.28일×12월 = 10백만원 **○ 유류비(210-08) : 24백만원** 가. 차량 유류비 ・18기관×1,333천원 = 24백만원 **○ 국내여비(220-01) : 641백만원** 가. 비행예방교육 및 상담조사 출장비 ・18기관×578천원×12월 = 125백만원 나. 보호관찰 지도감독 출장비 등 ・58기관×741천원×12월 = 516백만원 **○ 사업추진비(240-01) : 49백만원** 가. 법원, 학교 등 유관기관 업무협의 ・18기관×1,778천원 = 32백만원 나. 보호관찰 다기관 연계 간담회 등 ・18기관×944천원 = 17백만원 **○ 정책연구비(260-02) : 20백만원** 가. 소년범죄예방을 위한 정책연구비 20백만원 **○ 기타보전금(310-04) : 17백만원** 가. 프로그램 우수이수자 시상 ・18기관×948천원 = 17백만원 **○ 구호및교정비(320-06) : 348백만원** 가. 교육대상자 급식비 ・2,000명×9천원×18기관 = 324백만원 나. 소년보호관찰 프로그램 운영 식비 ・2,178명×9천원 = 20백만원 다. 구인, 유치 및 동행영장 대상자 식비 ・494명×9천원 = 4백만원

③ 공무직 등 인력지원

: (2026 예산) 0 → (2027 예산안) 1,411백만원, 순증

- (요구) 임상심리사 8명 충원 요구 및 청소년비행예방센터 교육생의 외부 체험교육 등 비행예방교육 과정 운영을 위한 운전원 등 공무직 25명에 대한 처우개선분 요구
- (산출) 임상심리사 8명 충원 및 운전 공무직 17명의 처우개선(4.3%)과 가족수당 등 각종 수당 반영 상용임금 1,162백만원, 복리후생비 15백만원, 고용부담금 234백만원

ㅇ 2026년도 예산 및 2027년도 예산안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6년 본예산		2027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411	○ **상용임금(110-03) : 1,162백만원** 가. 운전원 ・ 17명×3,392천원×12월 = 692백만원 나. 임상심리사 ・ 8명×4,364천원×12월 = 419백만원 다. 초과근무 및 각종 수당 등 51백만원 ○ **복리후생비(210-12) : 15백만원** 가. 맞춤형복지비 ・ 25명×600천원 = 15백만원 ○ **고용부담금(320-09) : 234백만원** 가. 보험료 및 퇴직금 234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3~2027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 해당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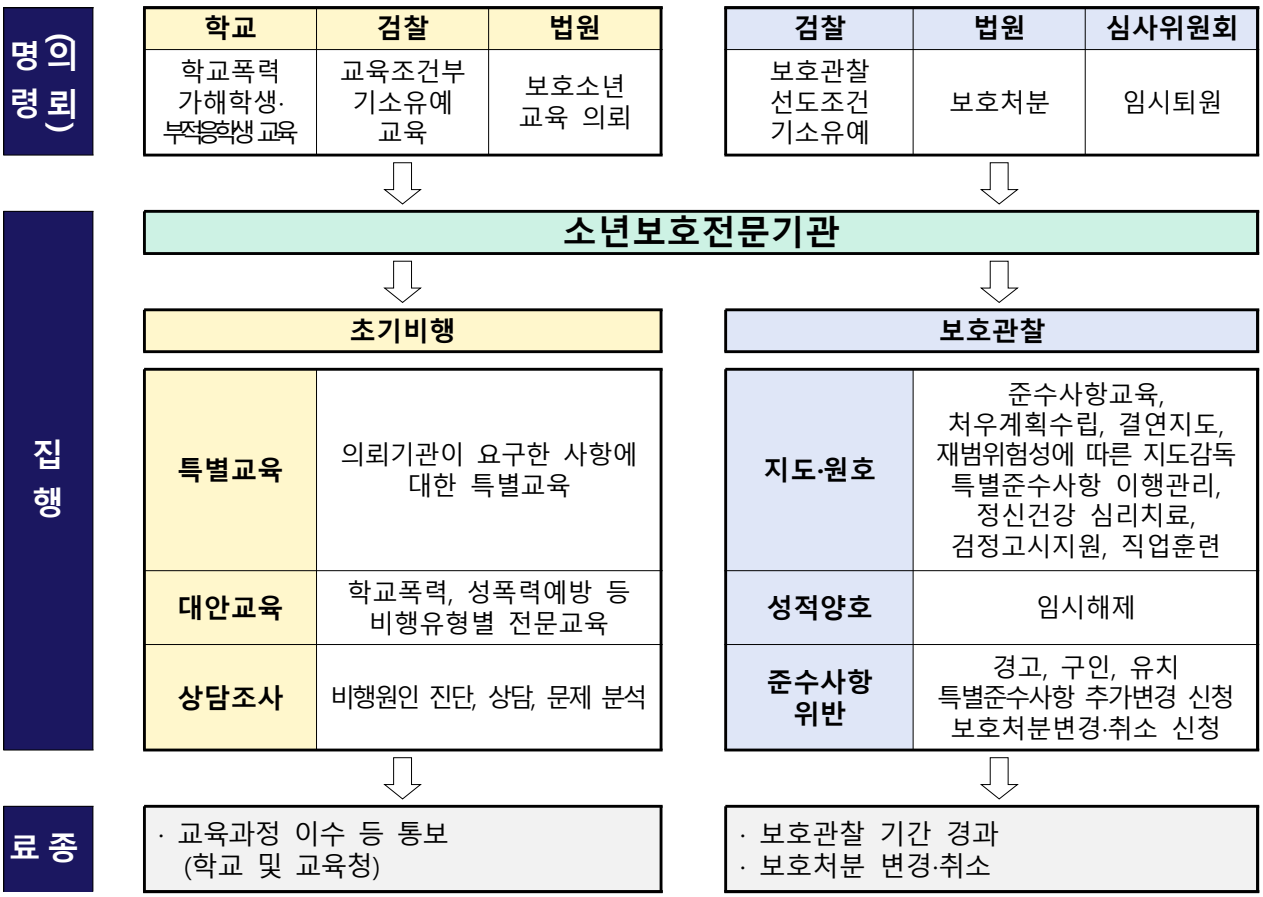
③ 향후(2027년도 이후) 기대효과

- 비행초기단계 청소년 대상 맞춤형 교육·선도 프로그램을 통한 비행 심화 및 상습 비행자로의 전이 차단
- 학교·검찰·법원 의뢰 대상자의 선제적 비행요인 진단 및 체계적 사후관리
- 위기·취약 가정 보호자 특별교육 활성화를 통한 올바른 양육관 확립 및 부모 역할 강화
- 초기비행단계 대상자 및 소년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경찰·검찰·법원 등 유관기관 간 협업 확대를 통한 통합적 지원 체계 마련
- 정신질환, 도박·마약 등 위기 청소년에 대한 진단검사 상시화를 통한 치료적 개입 실시
- 소년의 특성을 반영한 멘토링·상담·치료 중심의 소년 전문 처우 방식 적용을 통해 성인범으로의 전이 차단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25~2029	-	-	-	-	-	
2026~2030		-	-	-	-	-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해당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비행초기 단계 소년에 대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과 정신질환 등 고위험군 대상 치료·전문기관 연계를 강화하여 소년의 비행 심화를 차단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2) 동 사업에 대한 부처 자체평가 결과 : 해당없음

13) 2026년도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 결과 및 후속 조치 현황 : 해당없음

14) 부처 건의사항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 해당없음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 해당없음

2) 주요 결산사항

□ 2023~2026년 결산사항 : 해당없음

□ 2026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

□ 2026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참고 **소년보호전문기관 추진 방안**

1 소년 전담 기관 개요

□ 국정과제

○ 초기 비행 교육 기관인 청소년비행예방센터(전국 18개)를 개편하여 비행초기 개입과 소년보호관찰을 결합한 '소년 전담 기관'으로 개편·운영

[국정74] 국민안전을 위한 법질서 확립 및 민생치안 역량 강화

초기예방 기능의 18개 청소년비행예방센터를 소년보호관찰 기능이 결합된 3과 체계의 소년사법 통합기관으로 개편·운영하고 전담인력 확충

□ 추진경과

○ 2025. 5. 이재명정부 대선공약 '**소년범 전담보호관찰소 설치 운영**' 발표

3. 국민생활안전 및 재난대응

2. 범죄로부터 모두가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청소년 범죄 대응체계 강화

- 소년범 전담 보호관찰소 운영 및 보호관찰 인력 확충

○ 2025. 9. '**청소년비행예방센터 개편, 소년사법 통합기관 운영**' 국정과제 확정

- 보호관찰소에 대응하는 58개의 소속기관 **추가 설치는 사실상 불가능**한 현실을 감안, **예산절감 및 실현가능성 제고**를 위해 **기존 청소년비행예방센터를 활용**, 초기비행 예방교육 기능에 **소년보호관찰 기능을 결합한 모델로 추진**하도록 수정

○ 2025. 9. 9. 소년사법 통합기관 개편·운영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 2025. 10. 1. 시범운영 준비단 TF 출범

○ 2026. 3. 30. **시범운영 실시**(서울·광주·안산)

※ 광주·안산 통합을 위한 시설공사 완료(예산 464백만원)

○ 2026. 4. 10. 통합기관 전담 인력 증원을 위한 행안부 대상 설명회 개최

○ 2026. 4. 17.「보호관찰법」일부법률개정안 발의(서영교의원)

○ 2026. 6. 9. 국정과제 추진계획에 대한 법조기자간담회 실시

○ 2026. 7. 15. 법률개정안 법사위 의결

○ 2026. 8. 26. 법률개정안 본회의 의결

2 추진배경

□ 소년의 범죄학습우려·낙인효과 해소

○ 보호관찰소에서 성인과의 범죄연루·학습사례들이 있고,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소년들이 '형사처벌'을 받은 성인들과 노출되면서 받는 낙인효과의 해소가 필요

※ 2025년 실시사건 기준 보호관찰소 총 241,754건 중 소년 51,391건, 성인 190,363건으로 약 2:8의 비율임

■ **범죄학습·악영향에 대한 관련 사례**
- ▲ 보호관찰소에서 만난 소년·성인 대상자 식사 중 상호 폭행 사례
- ▲ 미성년 여자 대상자에 접근 후 동반 음주 사례
- ▲ 소년 대상자의 지인(성인 대상자)을 통해 소년의 보호관찰 사실이 주변에 알려진 사례 등 다수

■ **낙인효과에 관한 우려**
- 보호관찰소는 '형사사법기관'으로, 보호관찰소 출석으로 소년은 외부인에게 '범죄자'낙인을, 스스로는 '범죄자'로 인식하게 되어 오히려 보호관찰이 소년의 사회복귀에 심리적으로 악영향

□ 성인중심의 기관운영에서 벗어나 소년의 특성을 반영한 처우 가능

○ 보호관찰소는 **인력·예산이 성인에 집중**되어 있고, **성인 중심의 감독·통제위주로 업무평가**가 이루어져 복지·질적평가가 필요한 **소년 특성을 반영하기 힘든 구조**임

➜ 소년의 재범률이 성인보다 3배 높은 12~13%수준에서 고착화되고 있음

※ 소년과 성인 매뉴얼을 같이 운영하고 있고, 재범률이나 제재조치 실적 등으로 업무를 평가하는 구조임

○ **소년만을 전담하는 기관을 운영할 때** 기관의 인력·예산·정책이 소년에 집중되고, 평가체계도 소년에 적합한 방식으로 운영함으로써 **소년전문처우가 가능해짐**

※ 향후 소년전담기관에서는 소년의 환경개선을 통한 근본적 위험요인 해소를 위해 다기관연계 강화, 중간제재, 치료적 처우 도입 등 다양한 소년처우를 실시할 예정임(시범운영기관에서는 이미 적용 중)

※ 다기관 연계 처우를 기본으로 하는 영국의 경우 제도 도입 이후 최근 10년간 소년사법진입 청소년 수 78% 감소

□ 기형적 구조(혼재 처우)를 소년사법운영의 정상적 구조로 복원

○ 소년법상 소년과 성인은 분리처우가 기본원칙이고, 외국에서도 소년과 성인을 분리해서 처우하나, 우리나라는 소년과 성인이 혼재된 기형적인 구조로 운영되어 각종 문제가 발생, 정상적 구조로 복원 필요

우리나라		미국형		유럽형	
법무부		법무부		복지부·지자체	법무부
(소년)	(성인)	(소년)	(성인)	(소년)	(성인)
↓	↓	↓	↓	↓	↓
보호관찰소		소년보호관찰소	성인보호관찰소	소년전담기관	보호관찰소

○ 특히 소년법 제55조·제57조·제63조에서 수사·심리·형확정단계에서 성인과 분리하도록 하고 있는 취지를 고려할 때, 보호처분단계에서도 성인과 소년이 혼재된 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3 기대효과

○ **초기비행단계부터 소년보호기능 강화**

- 초기 비행청소년에 대한 교육 전문기관인 청소년비행예방센터와 소년 보호관찰 기능 결합을 통해 단절 없는 **연속적인 처우 가능**

  ※ 초기비행부터 소년원 송치 후(임시퇴원) 단계까지 모든 소년사법단계에 대한 소년 전담 기관의 맞춤형 처우 개발을 통해 비행 악화 예방

- 통합을 통해 단순 교육기능을 수행하는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도 보호관찰기능을 추가해 초기비행소년부터 국가의 조기 개입 역할 강화 예정임

  ※ 2024년 기준 범죄소년의 초범비율이 72%까지 상승하여 초기비행소년의 범죄 유입 방지 중요

○ **시설 인프라 공유를 통한 효율성 제고**

- 기관의 물리적 통합을 바탕으로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교육시설(모의법정, 예절교육 체험장 등)을 소년 보호관찰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시설 운영의 효율성과 프로그램의 효과성, 예산 절감 등 실현

○ **초기 비행단계부터 개입을 강화하는 국제적 추세 반영**

- 영국, 미국, 독일 등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소년과 성인을 엄격히 분리하여 처우하고, 보호관찰 이전의 다이버전(Diversion)[1]이 확대되고 있는 국제적 추세 반영

  [1] 처벌(보호관찰)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상담, 교육 등 선도 프로그램을 통해 소년이 사법체계에 진입하지 않도록 낙인 등 부정적 영향을 방지
  (영국의 소년사법기관인 YJS는 경찰 단계부터 소년원 출원 후까지 소년사법 모든 단계에서 전담 개입하여 10년간 소년사법체계 진입 청소년 수를 약 78% 감소)

4 향후 추진계획

○ **(추진 방향)** 계획수립과 행안부 협의를 통해 향후 완전히 성인과 소년을 분리하여 처우할 예정임

❶ 기존 18개 지역의 기관 간 통합만으로도 전체 **소년대상자의 58%**를 전담기관에서 처우할 수 있음

※ 소년보호전문기관 본소 8[2], 지소 10[3] (전체 소년 대상자의 58% 분리)

[2] 가정법원 설치 지역(8) : 서울, 인천, 수원, 대전, 대구, 부산, 울산, 광주

[3] 서울북부, 서울남부, 안산, 의정부, 춘천, 천안, 청주, 전주, 순천, 부산동부

❷ 2028년도 추진예정인 소년보호전문기관 미설치 지역 13개 보호관찰소 내 '소년관찰과' 신설 시 전체 **소년 대상자의 84%**를 성인과 분리하여 처우 가능

※ 보호관찰소의 관찰과 → '소년관찰과'와 '성인관찰과' 분리 (전체 소년 대상자의 84% 분리)

❸ 2029. 인력증원을 통해 부서가 없는 18개 보호관찰지소 내 성인/소년 분리

※ 9개 소규모 지소(소년보호관찰 대상자 30건 미만)는 현지 출장 중심 지도감독 실시

별첨1 관련 언론보도 사항

○ SBS 8 NEWS 보도('26. 5. 8.)



○ YTN NEWS 보도('26. 6. 13.)



○ KTV Like 정책 K 인터뷰('26. 6. 16.)



○ 소년 전담 기관 언론보도(총 50건)

연합뉴스

"촉법소년 재범률 성인 3배"…법무부, 소년비행 전담 기구 추진

송고 2026-06-09 15:44

소년범죄정책 조직 개편·지역사회 연계 확대…"촉법소년 조기 개입"



법무부 청사 사진
[법무부 청사 사진 제공]

(안산=연합뉴스) 최윤선 기자 = 법무부가 최근 급증하는 촉법소년 범죄 대응을 위해 소년비행정책 전담 기구를 설치하고 재범 방지 체계를 구축한다.

연합뉴스(`26.6.9.)

재범률 성인의 3배…법무부, 촉법소년 조기개입 나선다

박혜연 기자

업데이트 2026.06.09. 16:51

법무부가 재범률이 성인의 3배에 달하는 '촉법소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조기 개입과 맞춤형 관리를 강화하는 종합 대책을 9일 발표했다. 소년범을 성인과 분리해 관리하는 전담 기관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위험도 분석 시스템도 도입할 계획이다.



법무부 과천 청사/뉴시스

법무부는 이날 경기 안산보호관찰소에서 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촉법소년 등 소년 재범률 감소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촉법소년은 만 10살 이상 14세 미만의 청소년으로, 범죄를 저지르면 형사 처벌 대신 보호 처분을 받는다.

조선일보(`26.6.9.)

경향신문

2026년 06월 10일 수요일 008면 종합

소년범 전담 기관 추진… 인력 늘리고 AI 예방시스템 구축

보호관찰 개편, 성인과 나뉘 관리
'야간외출 제한' 땐 전자장치 적용

정부가 소년범죄 저연령화와 재범 분제에 대응하기 위해 보호관찰 체계를 개편키로 했다. 성인 범죄자와 소년범을 분리해 전담 관리하는 기관 신설을 추진하고,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받은 소년범에게는 스마트워치를 착용시키기로 했다.

법무부는 9일 이런 내용의 '촉법소년 등 소년 재범률 감소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법무부 산하에 소년 보호관찰을 받는 촉법소년은 최근 5년 새 약 2.2배 증가했다.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률은 12~13%로 성인의 3배에 달한다.

정부는 소년범만 전담 관리하는 현장 기관(소년전담기관·신설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청소년비행 예방센터 가설치된 전국 18개 지역에 소년전담기관을 두고 관리해기로 했다. 현장 근무 인력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에 맞춰 총 120명 증원도 추진한다.

부처 내 조직 개편도 함께한다. 정부는 법무부 내에 소년범죄 대응정책 전반을 총괄할 '소년보호정책단'을 신설하고, 현 범죄예방정책국을 본부 단위로 승격시켜 성인과 소년을 분리해 전문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야간 시간대 빈발하는 소년범죄를 막기 위한 감시망도 도입한다. 법무부는 법원으로부터 '야간외출 제한' 처분을 받은 소년범들에게 스마트워치 등 전자장치를 착용하도록 해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첨단 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사전 예방 시스템도 구축한다. 정부는 인공지능(AI)이 소년범 조사서와 심리검사 등 각종 데이터를 분석한 뒤 위험요인에 대한 맞춤형 개입 방안을 제시하는 '소년범죄 종합분석 시스템'을 정기적으로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년전담기관과 지역사회 관계기관끼리 협력 체계를 구축해 소년범죄에 공동 대응한다. 또 재범 방지를 위해 진단·처방·개입·재활·사후관리 등 범죄 예방 프로세스도 도입한다. 법무부는 "현재 통제·제재 중심에서 소년의 치료·재활을 강조하는 일관되고 체계적인 프로세스를 통해 소년이 위험요인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성인범으로의 진입을 차단하는 것"이라고 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그동안 소년범죄에 대한 관심에 비해 정책 추진을 위한 인프라가 부족했다"며 "소년범죄를 제대로 예방할 수 있는 전문적인 체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철준 기자 jchang@kyunghyang.com

경향신문(`26.6.10.)

세계일보

2026년 06월 10일 수요일 009면 사회

'소년사법 통합기관' 내년 전국 확대

촉법소년 최근 5년 새 2.2배
재범률은 성인의 3배 달해
"AI 데이터로 소년 위험 평가"

"보호관찰제도가 성인 중심으로 이뤄져 있어 소년에 맞는 처우가 필요합니다. 시설은 변해지 않는다고 하지만 소년은 변합니다"

김동하 법무부 소년범죄예방팀장은 9일 경기 안산시 단원구 '소년전담 시범운영기관'에서 열린 '촉법소년 등 소년재범률 감소 추진전략' 정책설명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소년 중심 보호관찰제도가 새롭게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령가능성이 높아 지금의 교육이 방향대해야 하는 소년범들에 '통제의 제재' 중심의 보호관찰제도가 적용되고 있어 재범 방지를 위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최근 소년 보호관찰을 받는 촉법소년이 증가하고, 재범률이 성인의 3배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자 법무부가 소년범에 대한 맞춤형 관리를 강화하고 비행 초기부터 대응하기 위한 정책 추진에 나섰다. 법무부는 1년부터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가칭 '소년사법 통합기관'을 현재 서울과 광주, 안산 등에서 시범운영 중이다.

이날 법무부 소년전담 시범운영기관은 시범대상을 받지 않은 위험소년 등을 관리하는 '청소년 공기업센터'와 소년 대상 보호관찰소가 함 건물에서 운영되고 있었다.

특히 성인 보호관찰 대상자와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를 한 건물에서 관리하던 기존 보호관찰제도는 '소년범들이 성인범과 접촉해 범죄를 학습하거나 모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만큼, 소년과 성인을 분리해 관리하는 것이 핵심이다. 소년범에 대해선 진단과 처분, 개입, 재활, 사후관리로 이어지는 재범 방지 프로세스(일명 '도소년범죄예방')를 구축한다.

다만 최근 소년 보호관찰을 받는 촉법소년이 5년간 2.2배 증가해고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률이 성인(4.1배)의 3배 수준인 12~13%로 나타나는 등 소년의 범죄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장기적인 대책 마련의 필요성도 있다.

김 팀장은 "소년사건 수 대비 보호관찰관이 부족하고 소년범죄를 전담하는 조직과 정책 본부가 소규모라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이에 인공지능(AI) 기반의 데이터 분석을 통해 소년의 위험도를 평가하고 개입 방안을 제시하는 '소년범죄 종합분석 시스템' 개발과 소년정책 결정기구 신설, 담당 실무를 맡은 국의 본부 승격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안경훈 기자 eyewhom@segye.com

세계일보(`26.6.10.)

별첨2 새로운 소년 시스템

분야	새로운 소년 시스템 마련을 위한 12대 역점 과제(안)
다기관 연계	**❶ 지역사회 다기관 연계 프로세스 구축**
	- **(개요)** 소년대상자의 위험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지역사회 다기관 연계체계 구축 - **(업무)** 지역사회 연계 세부 협력 대상, 절차, 지속 방식 등 구체화
	❷ 담당자 1인 관리 ➜ 팀별 사례관리 체제 전환
	- **(기존)** 담당자 1인 관리로 업무소극관행·개인역량에 의존·편차발생 등 문제 - **(개선)** 팀체제로 변경하여 소년 처우 결정에 팀별 '사례관리회의' 활성화
보호관찰	**❸ 횟수 충족 중심의 일률적 출장면담 혁신**
	- **(기존)** 지침에 정해진 횟수 충족을 위한 대상자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기계적 면담 - **(개선)** 팀 사례회의를 통해 필요성, 시급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면담횟수 조정
	❹ 성인과 차별화된 제재조치(구인, 동행영장)
	- **(기존)** 구인·유치 중심으로 제재조치 위주의 소년보호관찰 진행 - **(개선)** 구인보다는 소년법 중심의 제재 및 중간제재 등 제재조치 다변화 검토
	❺ 기관별 지역특화 프로그램 개발, 적용
	- 지역별 소년 비행 추세, 환경 요인 특성을 반영한 전문 프로그램 개발
	❻ K-소년범죄예방 프로세스 완성
	- 현재 절차 및 기본 개념 수준 → 정교한 세부 프로세스 완성(현장 적용 대비)
	❼ '자기주도형 행동개선' 프로그램 및 앱개발
	- 명령방식의 준수사항 지도를 탈피, 소년 스스로 '행동개선 미션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자발적 변화를 유도하는 프로그램 개발, 적용
청비센터	**❽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서 초기비행청소년 보호관찰 기능 도입(선도유예)**
	- **(기존)** 초기단계 청소년에 대해 단기 교육위주로 처우하여 비행예방 효과성 저하 - (개선)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활용, 초기단계 교육+보호관찰기능 수행
	❾ 조사기능 전문화(상담조사·결정전조사 일원화)
	- **(기존)** 기능이 유사한 상담조사(청비센터)와 결정전조사(보호관찰소) 혼재 - **(개선)** 교육은 '처분전 교육'을 강화하고, 대안교육과 수강명령을 일원화
집행	**❿ 소년에 특화된 교육형, 체험형 사회봉사 개발**
	- 노동력 제공 중심의 성인 사회봉사 집행 방식에서 '재비행 예방 교육과 긍정적인 체험'을 통한 성장 중심의 소년 사회봉사로 전환 ※ (예시) 유기묘 돌봄, 노숙자 배식지원, 법교육, 진로체험과 결합한 봉사
체계 개선	**⓫ (본부 차원 협력) 다이버전 강화를 통한 재범감소 전략 추진**
	- **(기존)** 소년사건이 법원에서 불개시·불처분 비율이 높아 장기화·비효율 문제 해결을 위해 경·검찰 단계 기소유예(다이버전) 강화 추진 - **(효과)** ▲조기에 적기 개입 ▲법원처리 사건 감소 ▲소년보호관찰 재범률 감소
	⓬ 스마트워치 적용 확대 등 야간외출제한 감독 고도화
	- 재범률 감소 효과가 높은 스마트워치 방식을 시범실기 기관(연내) 및 18개 소년보호전문기관(2027년)에 전면 적용

별첨3 전문기관 신설 및 새로운 소년 시스템 혁신 전·후 비교



사 업 명
갱생보호활동 (1633-3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일반회계	020	022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600	1633	300
명칭	범죄예방활동	갱생보호	갱생보호활동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6예산 시 소관
	O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89.9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갱생보호 활동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범죄예방정책국	오상섭	원학재	주영광
		범죄예방기획과	02-2110-3572	02-2110-3574	02-2110-3577
	사업시행주체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재정기획부	김두현 팀장	054-421-0526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년 결산	2026년 예산		2027년		증감	
		본예산(A)	추경	요구안	조정안(B)	(B-A)	(B-A)/A
갱생보호활동	44,651	48,468	48,468	48,065	48,065	△403	△0.8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25					2026(2026.7월말)							2027 예산안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46,856	46,856	46,856 [44,651]	2,205	-	48,468	50,673	50,673 [25,073]	48,468	48,468 [25,073]	-	-	48,065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인건비	23,518	23,518	23,518 [23,518]	-	-	24,660	24,660	24,660 [13,919]	24,660	24,660 [13,919]	-	-	25,986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상비	341	341	341 [341]	-	-	538	538	538 [256]	538	538 [256]	-	-	543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사업비	26,694	26,694	26,694 [22,412]	2,205	-	26,895	29,100	29,100 [12,010]	26,895	26,895 [12,010]	-	-	25,110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자체수입	△5,452	△5,452	△5,452 [△3,375]	-	-	△5,452	△5,452	△5,452 [△2,166]	△5,452	△5,452 [△2,166]	-	-	△5,452
· 민간갱생보호법인	1,755	1,755	1,755 [1,755]	-	-	1,827	1,827	1,827 [1,054]	1,827	1,827 [1,054]	-	-	1,878
○ 비목별 분류(합계)	46,856	46,856	46,856 [44,651]	2,205	-	48,468	50,673	50,673 [25,073]	48,468	48,468 [25,073]	-	-	48,065
· 민간경상보조 (320-01)	46,856	46,856	46,856 [44,651]	2,205	-	48,468	50,673	50,673 [25,073]	48,468	48,468 [25,073]	-	-	48,065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46,856	46,856	46,856 [44,651]	2,205	-	48,468	50,673	50,673 [25,073]	48,468	48,468 [25,073]	-	-	48,065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인건비	23,518	23,518	23,518 [23,518]	-	-	24,660	24,660	24,660 [13,919]	24,660	24,660 [13,919]	-	-	25,986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상비	341	341	341 [341]	-	-	538	538	538 [256]	538	538 [256]	-	-	543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사업비	26,694	26,694	26,694 [22,412]	2,205	-	26,895	29,100	29,100 [12,010]	26,895	26,895 [12,010]	-	-	25,110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자체수입	△5,452	△5,452	△5,452 [△3,375]	-	-	△5,452	△5,452	△5,452 [△2,166]	△5,452	△5,452 [△2,166]	-	-	△5,452
· 민간갱생보호법인	1,755	1,755	1,755 [1,755]	-	-	1,827	1,827	1,827 [1,054]	1,827	1,827 [1,054]	-	-	1,878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갱생보호활동) 사회적 취약계층인 무의탁 · 무연고 갱생보호대상자*에 대한 숙식제공,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 창업지원, 주거지원, 긴급지원, 가족희망사업, 심리상담 및 치료, 사회성 향상교육, 멘토링 및 사후관리 등을 실시함으로써 성공적 사회복귀 촉진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기여

  * 갱생보호대상자는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자립갱생을 위한 지원 등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람을 뜻함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죄를 지은 사람으로서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 수강 및 갱생보호 등 체계적인 사회내처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지도하고 보살피며 도움으로써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효율적인 범죄예방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개인 및 공공의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사회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제2항(국민의 협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죄를 지은 사람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보호선도 사업을 육성할 책임을 진다.
- **제65조 제1항(갱생보호의 방법)** 갱생보호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1. 숙식 제공, 2. 주거 지원, 3. 창업 지원, 4.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 5. 출소예정자 사전상담, 6. 갱생보호 대상자의 가족에 대한 지원, 7.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8. 사후관리, 9. 그 밖에 갱생보호 대상자에 대한 자립 지원
- **제94조(보조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자 및 공단에 대하여 보조할 수 있다.

② 추진경위

- 1953. 3. 사)중앙사법보호협회 설립(법무부 공고 제25호)
- 1961. 9. 갱생보호회 설립(갱생보호법)
- 1995. 1. 한국갱생보호공단 설립(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 2009. 3.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명칭 변경
- 2016. 3.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본부 경북 김천혁신도시 이전
- 2022. 1.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및 8개 민간 갱생보호법인 출소자 등에 대한 자립지원 업무수행

  ※ 민간갱보 허가 : 한국교화('85. 6.), 세계교화('96. 4.), 담안선교회('97. 3.), 빠스카('97. 11.), 양지뜸('04. 12.), 뷰티플라이프('07. 4.). 열린낙원('07. 4.), 굿라이프('20. 4.)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953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3	2024	2025	2026	2027(안)
사업비	44,519	48,124	46,856	48,468	48,065

- 기타: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민간경상보조
- 사업시행주체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및 8개 민간갱생보호법인
- 사업 수혜자 : 갱생보호대상자(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갱생보호활동	보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및 민간갱생보호법인	48,468	89.9 수지차보전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및 제94조

3) 2027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

1 예산 총괄표

< 일반회계 > (백만원)

구 분		2026 예산 (A)	2727 예산 (B)	증감 (B-A)	%
ㅇ갱생보호활동 (국고보조금)		48,468	48,065	△403	△0.83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52,093	51,639	△454	△0.87
수입	보조금	46,641	46,187	△454	△0.97
	자체자금	5,452	5,452	-	-
지출	인건비	24,660	25,986	1,326	5.37
	경상비	538	543	5	0.93
	사업비	26,895	25,110	△1,785	△6.63
■ 민간갱생보호법인		1,827	1,878	51	2.79
수입	보조금	1,827	1,878	51	2.79
지출	사업비	1,827	1,878	51	2.79

2 수입 증감내역

① 국고보조금

: (2026 본예산) 48,468백만원 → (2027 요구) 48,065백만원, 403백만원 감액

ㅇ 2026년도 예산 및 2027년도 예산안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6년 본예산		2027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48,468	○ **국고보조금 : 48,468백만원** 가. 갱생보호활동 : 48,468백만원 ・ 1개 공단 × 46,641,000천원 = 46,641백만원 ・ 8개 민간갱생보호법인 × 228,375천원 = 1,827백만원	48,065	○ **국고보조금 : 48,065백만원** 가. 갱생보호활동 : 48,065백만원 ・ 1개 공단 × 46,187,000천원 = 46,187백만원 ・ 8개 민간갱생보호법인 × 234,750천원 = 1,878백만원

② 자체자금

: (2026 본예산) 5,452백만원 → (2027 요구) 5,452백만원, 전년동

ㅇ 2026년도 예산 및 2027년도 예산안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6년 본예산		2027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5,452	○ **자체자금 : 5,452백만원** 가. 전입금 : 835백만원 ・ 1개 공단 × 835,000천원 = 835백만원 나. 지원금 : 702백만원 ・ 1개 공단 × 702,000천원 = 702백만원 다. 차입금 : 562백만원 ・ 1개 공단 × 562,000천원 = 562백만원 라. 후원금 : 2,100백만원 ・ 1개 공단 × 2,100,000천원 = 2,100백만원 마. 기타수입 : 1,253백만원 ・ 1개 공단 × 1,253,000천원 = 1,253백만원	5,452	○ **자체자금 : 5,452백만원** 가. 전입금 : 835백만원 ・ 1개 공단 × 835,000천원 = 835백만원 나. 지원금 : 1,054백만원 ・ 1개 공단 × 1,054,000천원 = 1,054백만원 다. 후원금 : 2,310백만원 ・ 1개 공단 × 2,310,000천원 = 2,310백만원 라. 기타수입 : 1,253백만원 ・ 1개 공단 × 1,253,000천원 = 1,253백만원

3 지출 증감내역

① 법무보호복지공단 인건비

: (2026 본예산) 24,660백만원 → (2027 요구) 25,986백만원, 1,326백만원 증액

- (요구) '27년 정기 인력 증원 인건비(6개월) 증액 33백만원
  '27년 공통처우 개선분 3.95% 증액 975백만원
  '26년 정기 인력 증원 잔여 318백만원

- (산출) 25,986백만원
  • 399명 × 5,427.3천원 × 12월 = 25,986백만원

○ 2026년도 예산 및 2027년도 예산안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6년 본예산		2027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24,660	○ **공단 인건비 : 24,660백만원** 가. 공단 인건비 : 24,660백만원 • 398명 × 5,163.4천원 × 12월 = 24,660백만원	25,986	○ **공단 인건비 : 25,986백만원** 가. 공단 인건비 : 25,986백만원 • 399명 × 5,427.3천원 × 12월 = 25,986백만원

② 법무보호복지공단 경상비

: (2026 본예산) 538백만원 → (2027 요구) 543백만원, 5백만원 증액

- (요구) 경상비 절감 16백, 신규시설 증액 5백, 증원인력 수반경비 증액 2백, 경상비 추가지원 14백
- (산출) 543백만원
  • 29개소 × 1,560천원 × 12월 = 543백만원

○ 2026년도 예산 및 2027년도 예산안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6년 본예산		2027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538	○ **공단 경상비 : 538백만원** 나. 공단 경상비 : 538백만원 • 29개소 × 1,546천원 × 12월 = 538백만원	554	○ **공단 경상비 : 543백만원** 나. 공단 경상비 : 543백만원 • 29개소 × 1,560천원 × 12월 = 543백만원

③ 법무보호복지공단 사업비

: (2026 본예산) 26,895백만원 → (2027 요구) 25,110백만원, 1,785백만원 감액

■ 보호수용시설 확충

: (2026 본예산) 4,068백만원 → (2027 요구) 5,678백만원, 1,610백만원 증액

- (요구) 보호수용 시설(인천, 대구) 리모델링(2년차) 및 경북동부지부 토지매입비 1,610백만원 증액
- (산출) 5,678백만원
  • 2개소 × 2,119,000천원 = 4,238백만원
  • 1개소 × 1,440,000천원 = 1,440백만원

○ 2026년도 예산 및 2027년도 예산안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6년 본예산		2027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4,068	○ **보호수용시설 확충 : 4,068백만원** - 2개소 × 2,034,000천원 = 4,068백만원	5,678	○ **보호수용시설 확충 : 5,678백만원** - 2개소 × 2,119,000천원 = 4,238백만원 - 1개소 × 1,440,000천원 = 1,440백만원

■ **취업지원비**

: (2026 본예산) 6,908백만원 → (2027 요구) 8,500백만원, 1,592백만원 증액

- (요구) 취업지원사업 참여 인원 확대에 따른 취업지원비 1,592백만원 증액
- (산출) 8,500백만원
  - 8,500명 × 1,000천원 = 8,500백만원

○ 2026년도 예산 및 2027년도 예산안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6년 본예산		2027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6,908	○ **취업지원비 : 6,908백만원** - 6,700명 × 1,031천원 = 6,908백만원	8,500	○ **취업지원비 : 8,500백만원** - 8,500명 × 1,000천원 = 8,500백만원

■ **전남지부 운영비**

: (2026 본예산) 0백만원 → (2027 요구) 538백만원, 순증

- (요구) 공단 전남지부 신설에 따른 기관운영비 538백만원 증액
- (산출) 538백만원
  - 1개소 × 44,833천원 x 12월 = 538백만원

○ 2026년도 예산 및 2027년도 예산안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6년 본예산		2027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	- -	845	○ **전남지부 운영비 : 538백만원** - 1개소 × 44,833천원 × 12월 = 538백만원

■ **내진보강 공사비**

: (2026 본예산) 0백만원 → (2027 요구) 422백만원, 순증

- (요구) 공단 노후 시설(2개소)에 대한 내진보강 공사비 422백만원 증액
- (산출) 422백만원
  - 1개소 × 409,213천원 = 409백만원
  - 1개소 × 13,571천원 = 13백만원

○ 2026년도 예산 및 2027년도 예산안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6년 본예산		2027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	- -	422	○ **내진보강 공사비 : 422백만원** - 강원동부지부 1개소(1,038.2㎡) x 409,213천원 = 409백만원 - 서울서부지부 1개소(254.1㎡) x 13,571천원 = 13백만원

■ **전산구축비**

: (2026 본예산) 0백만원 → (2027 요구) 385백만원, 순증

- (요구) 공단 차세대 ERP시스템 도입 등을 위한 전산구축비 385백만원 증액
- (산출) 385백만원
  - 1식 × 384,650천원 = 385백만원

○ 2026년도 예산 및 2027년도 예산인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6년 본예산		2027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	- -	385	○ **전산구축비 : 385백만원** - 소프트웨어 라이센스비 1식 x 384,650천원 = 385백만원

■ **생활지원 등 계속 사업비**

: (2026 본예산) 15,919백만원 → (2027 요구) 9,587백만원, 6,332백만원 감액

- (요구) 생활지원, 취·창업지원, 가족지원, 상담지원 등 갱생보호대상자들의 자립을 위해 지원하는 예산으로 지출구조조정에 따른 감액 6,393백만원, '27년 최저임금 연동소요 증액 43백만원, '27년 급량비 상승에 따른 증액 18백만원
- (산출) 9,587백만원
  - 29개소 × 330,586천원 = 9,587백만원

○ 2026년도 예산 및 2027년도 예산안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6년 본예산		2027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8,518	○ **생활지원 등 계속 사업비 : 18,518백만원** · 28개소 × 661,357천원 = 18,518백만원	9,587	○ **생활지원 등 계속 사업비 : 9,587백만원** · 29개소 × 330,586천원 = 9,587백만원

■ **민간갱생보호법인 사업비**

: (2026 본예산) 1,827백만원 → (2027 요구) 1,878백만원, 51백만원 증액

- (요구) 8개 민간갱생보호법인 사업비, 운영비 예산으로 증액 51백만원
- (산출) 1,878백만원
  - 8개소 × 234,750천원 = 1,878백만원

○ 2026년도 예산 및 2027년도 예산안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6년 본예산		2027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827	○ **민간갱생보호법인 사업비 : 1,827백만원** · 8개 민간법인 × 228,375천원 = 1,827백만원	1,878	○ **민간갱생보호법인 사업비 : 1,878백만원** · 8개 민간법인 × 234,750천원 = 1,878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3~2027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3	2024	2025	2026	2027	2027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사회복귀율* (단위: %) *'26년 신규지표	목표	63.0	63.4	63.6	83.08	83.15	최근 3년 평균 실적 및 추세 고려, 전년도 대비 상향된 목표 설정 ('23) 81.7 ('24) 83.4 ('25) 82.9	사회복귀 인원 / 사회복귀자원 종료인원 × 100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월별 보호사업 실적 통계 취합
	실적	63.3	63.6	63.7	-	-			
	달성도	100.5	100.3	100.1	-	-			
고객만족도 조사 (단위: 점)	목표	90.9	90.9	91.2	91.2	91.2	사업별 최근 3년 평균 점수 및 조정계수를 적용하여 산출	갱생보호서비스 수혜자 만족도 결과 점수(PCSI 2.0 모델 적용)	자체 고객만족도 조사(외부 전문기관 활용)
	실적	91.4	92.8	93.7	-	-			
	달성도	100.6	102.1	102.7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분야별 사업실적】

(단위: 명,건)

연도	계	생활지원			가족지원			취업지원				상담지원				교육지원	
		숙식제공	긴급지원	기타지원	주거지원	결혼지원	가족복원	직업훈련	취업알선	취업지원	창업지원	사전상담	적응력예측	심리상담	사후관리	사회성향상	학업지원
'25	168,199	1,120	13,917	18,308	563	120	1,817	4,953	5,718	8,468	1	33,248	24,576	16,126	32,110	3,682	3,472
'24	159,182	1,150	10,227	19,624	682	126	1,921	4,547	5,167	8,044	2	33,143	20,423	18,047	28,383	4,780	2,916
'23	141,508	1,301	10,201	20,668	147	121	1,646	4,389	5,179	7,762	4	38,124	-	16,088	28,008	4,661	3,209
'22	128,072	1,419	9,402	19,163	173	121	1,313	3,995	5,374	7,729	2	31,847	-	14,923	25,310	4,421	2,880
'21	119,589	1,494	8,457	19,609	169	112	974	4,044	5,122	7,019	5	29,467	-	13,816	22,812	4,202	2,287

【민간갱생보호법인 분야별 사업실적】

(단위: 명,건)

연도	계	숙식제공	심리치료	재사회화	직업훈련	취업알선	긴급원호	사전상담	사후관리	주거지원	창업지원	기타
'25	9,274	400	753	2,714	166	111	205	2,994	492	3	6	1,430
'24	8,948	431	831	2,725	120	104	204	2,916	471	2	3	1,141
'23	8,710	425	916	2,950	145	141	185	2,176	523	1	9	1,239
'22	7,235	406	707	2,656	160	104	239	1,030	427	0	0	1,506
'21	10,223	383	1,908	5,507	107	112	245	360	272	0	0	1,3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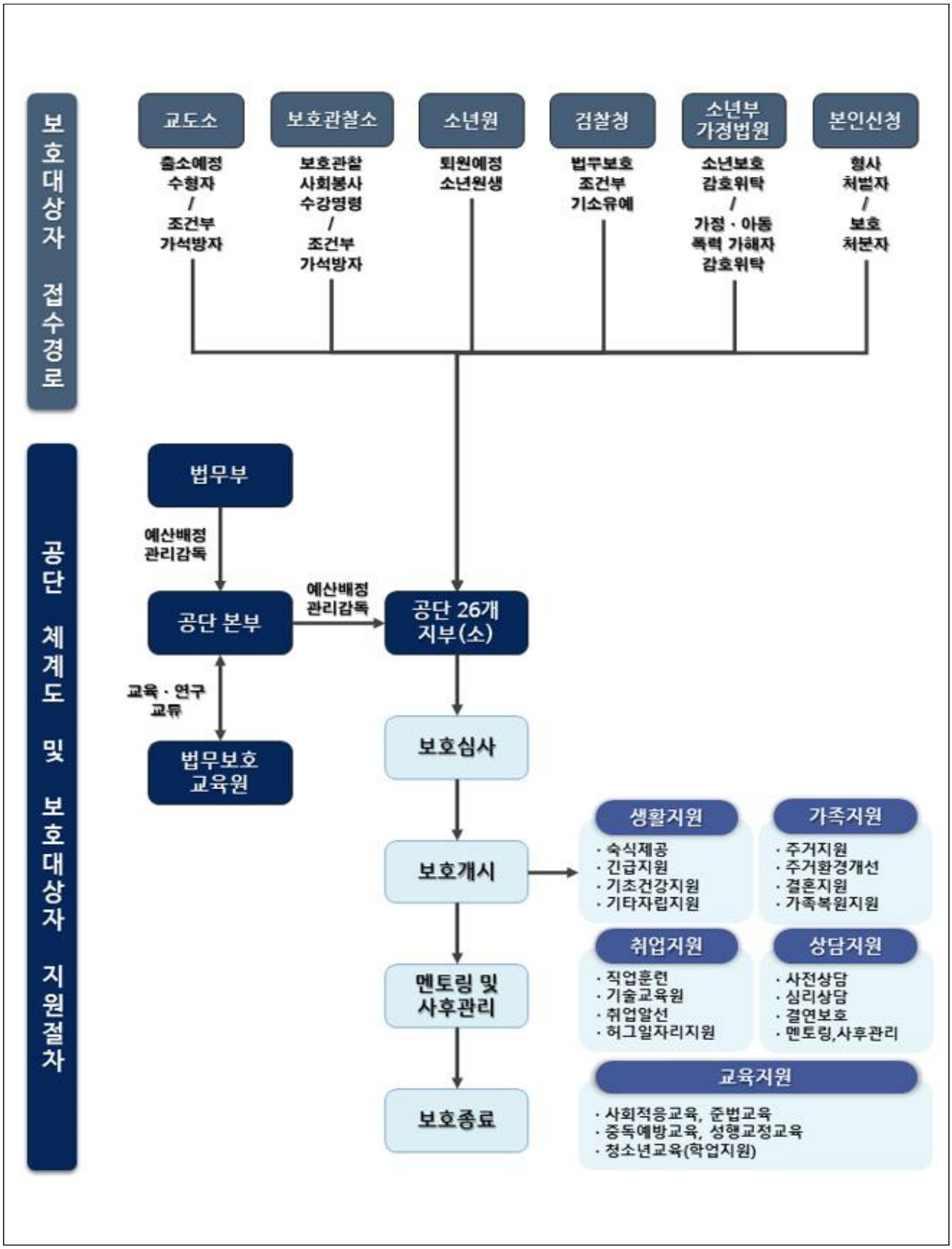
③ 향후(2027년도 이후) 기대효과

- 취업·주거 등 자립 기반을 마련하지 못하는 갱생보호대상자의 재범으로 이어지는 사회적 문제를 해소하고 사회복귀 지원 및 선도적 범죄예방을 통해 지역사회의 불안 요소를 감소시키는 등 국민의 안전과 범죄의 사회적 비용 절감에 기여
- 특수 취약계층인 갱생보호대상자에 대한 성공적 자립 정착을 지원하고 국정과제 중 재범고위험 출소자에 대한 보호수용 시설 확충 및 사회정착 지원 강화를 위한 전담생활관을 확대하는 등 국가의 형사정책 추진으로 사회안전망 구축에 기여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보호대상자 접수경로
교도소
출소예정 수형자 / 조건부 가석방자
보호관찰소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 조건부 가석방자
소년원
퇴원예정 소년원생
검찰청
법무보호 조건부 기소유예
소년부 가정법원
소년보호 감호위탁 / 가정 · 아동 폭력 가해자 감호위탁
본인신청
형사 처벌자 / 보호 처분자
공단 체계도 및 보호대상자 지원절차
법무부
예산배정 관리감독
공단 본부
예산배정 관리감독
공단 26개 지부(소)
교육 · 연구 교류
법무보호 교육원
보호심사
보호개시
멘토링 및 사후관리
보호종료
생활지원
· 숙식제공
· 긴급지원
· 기초건강지원
· 기타자립지원
가족지원
· 주거지원
· 주거환경개선
· 결혼지원
· 가족복원지원
취업지원
· 직업훈련
· 기술교육원
· 취업알선
· 허그일자리지원
상담지원
· 사전상담
· 심리상담
· 결연보호
· 멘토링,사후관리
교육지원
· 사회적응교육, 준법교육
· 중독예방교육, 성행교정교육
· 청소년교육(학업지원)

사업명		사업내용
생활지원	숙 식 제 공	무연고 보호대상자의 자립 여건 마련을 위해 최대 2년간 숙식, 교육 등을 지원
	긴 급 지 원	질병과 사고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보호 대상자에게 생활비, 통신비, 기타금품 등을 지원
	기초건강지원	신체·정신적 기초건강을 위한 치료비 등을 지원하여 안정적 자립 유도
	기타자립지원	의탁알선, 주민등록 재등록, 생계보조금 지급, 가정환경 조정 등 자립을 위해 필요한 사항 지원
가족지원	주 거 지 원	부양가족이 있는 생계곤란 무주택 보호대상자에게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매입임대주택 지원
	주거환경개선	열악한 주거환경에 대한 개보수로 주거복지 개선, 미성년 자녀의 공부방 조성 지원
	결 혼 지 원	사실혼 관계이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부부의 결혼식 지원
	가 족 친 화	보호대상자와 그 가족의 심리적 어려움 해소를 위한 가족교육, 가족캠프, 문화체험 등 지원
	접 견 지 원	수형자와 가족의 접견권 보장을 위해 일정 금액의 접견 교통비 또는 동행 서비스 지원
취업지원	직 업 훈 련	취업에 필요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공단 직영훈련 또는 외부 전문 위탁교육 지원
	취 업 알 선	지역사회 기업가 및 고용센터, 보호위원 등을 통해 출소자의 취업알선 및 근속취업 지도
	허그일자리	취업설계, 직업능력개발, 취업성공, 취업 후 적응까지 종합적 취업지원 및 수당지원
	창 업 지 원	소자본 창업을 희망하는 출소자에게 사업장 임차보증금 대출 지원
상담지원	사 전 상 담	교도소 등 교정기관을 방문하여 개인별 상담을 통한 출소 후 자립계획 지원
	적응력예측검사	빅데이터 기반의 사회적응 수준과 요인 파악을 통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
	심 리 상 담	갱생보호대상자와 가족의 심리적 문제들에 대해 전문가의 맞춤형 상담 지원
	결 연 보 호	가정방문, 정기상담을 통한 보호대상자 및 그 가족의 심리·사회적 지원과 기초생활물품 지원
	멘토링및사후관리	사회적응 모니터링 및 추가 지원 여부를 위해 면접·통신·방문 등으로 진행되는 상담 지원
교육지원	사회적응교육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보호대상자를 위해 기초소양, 문화체험 등의 교육프로그램 지원
	준 법 교 육	생애주기별 생활 속 기초 법률 상식이 포함된 법의식 향상 교육프로그램 지원
	중독예방교육	마약, 알콜, 인터넷·스마트폰 등의 중독 예방을 위한 지속적 예방 교육 지원
	성행교정교육	성행교정이 필요한 대상자(보호수용, 감호위탁 등)의 안정적 사회적응을 위한 전문 교육 지원
	청 소 년 교 육	청소년 대상자 및 미성년 자녀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대안교육, 학습지도 등 교육 지원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25~2029	46,856	48,468	44,703	43,762	42,350	
2026~2030		48,468	58,819	60,583	62,400	64,272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예결위 결산('23. 6.) : 민간갱생보호법인 지원 효과성 점검 방안 마련 필요
- 법사위 결산('24. 6.) : 공단 정산보고서 작성 시 보조비목 · 세목 세분화 개선 필요
- 법사위 결산('25. 6.) : 갱생보호사업에 대한 직접지출 금액 규모 확대 필요
- 예결위 결산('26. 8.) : 전남지부 기술교육원 공사일정 지연 방지 필요
- 법사위 결산('26. 8.) : 전남기술교육원 건립사업 이월 예산의 철저한 집행관리 필요

2) 감사원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 감사원 정기감사('20. 5.) : 자체수입 예 · 결산 업무 철저

3) 자체평가 : 최근 3년간 경영평가

평가년도	평균	2023	2024	2025	비고
평가점수	76.7	89.0	71.0	70.1	-

4)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연 번	일 자	매 체	내 용
1	'23. 7. 3.	서울신문	ㅇ 서울신문 [공기업 다시 뛴다] 기획기사 - "출소자 돌봐야 사회도 안전해져" 보도자료
2	'23. 7. 3.	서울신문	ㅇ 서울신문 [공기업 다시 뛴다] 기획기사 - "최대 2년간 숙소 주고 상담...추가 범죄 막는 초석" 보도자료
3	'23. 8. 14.	법률신문	ㅇ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소년 범죄자 관련 기획기사 - "재범의 악순환에서 회복의 선순환으로" 보도자료
4	'23. 8. 16.	한경매거진	ㅇ 심리상담직원 인터뷰(공단 및 보호사업 소개 등) 기획보도 - 흉악범들과 기 싸움 즐기는 직업 보도자료
5	'23. 12. 8.	조선일보	ㅇ 조선일보 박은주 LIVE 기획보도 - "범죄가 지병"인 사람을 위한 치료법 보도자료
6	'24. 10. 10.	이데일리	ㅇ 범죄자 갱생 부정적 이미지 개선 관련 기사 - 법무보호 용어변경 법안 발의를 통한 부정적 이미지 개선 보도자료
7	'25. 10. 05.	서울신문	ㅇ 공단 감호위탁 관련 기사 - 감호시설 위탁 제도, 가족폭력 및 감호위탁 시설 입소자 현황
8	'26. 02. 09.	광주MBC	ㅇ 전남기술교육원 건립 관련 민원 등 언론보도 - 갱생보호시설 입지에 대한 지역사회의 우려 민원
9	'26. 08. 09. ~ 08. 11.	세계일보	ㅇ 고령 출소자 등 지원에 관한 기획기사 - 고령 출소자의 생계 기반 마련 및 지원의 필요성 관련 기사

5)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지적사항	조치
▪ 민간갱생보호법인의 실적 부진 원인 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 ▪ 공단 정산보고서 작성 시 보조비목·세목 세분화 개선 필요 ▪ 갱생보호사업에 대한 직접지출 금액 규모 확대 필요	▪ '23. 민간법인 평가지표 개발 완료('23. 11.), '24. 민간법인 평가 실시('24. 4.) ▪ '25년 예산편성부터 보조비목·세목 세분화 반영 완료 ▪ '26년 예산편성부터 직접지출 사업비 확대 편성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출소자 등 갱생보호대상자를 위한 각종 법무보호복지사업 프로그램 지원을 통하여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재범을 방지함으로써 공공의 복지증진 및 범죄의 사회적 비용 절감에 노력
- 국정과제 관련 재범고위험군 보호수용 시설 및 사회정착 지원 확대를 통해 재범을 방지하고 국민의 안전 및 민생치안 역량 강화 노력
- 출소자의 안정적인 사회정착과 재범방지를 위해 취업지원사업을 지원하여 취업역량을 강화하고 일자리 창출을 통한 자립 지원 확대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1)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2024년도 국고보조금 연장평가 결과 : 사업방식변경**
▪ 평가수행기관 : 기획재정부(평가시기 : '24. 1월~6월)
2)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2025년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결과 : 양호**
▪ 평가수행기관 : 고용노동부(평가시기 : '26. 3월~5월)
3)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2025년도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 : 사업개선**
▪ 평가수행기관 : 기획예산처(평가시기 : '26. 1월~5월)
4)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2025년도 경영평가 결과 : 70.14점(보통)**
- 평가수행기관 : (사)한국행정학회(평가시기 : '26. 4월~6월)
5) 민간갱생보호법인의 **2025년도 민간법인(8개)평가 결과 : 탁월(2개), 우수(3개), 보통(3개)**
▪ 평가수행기관 : 숭실대학교 산학협력단(평가시기 : '26. 1월~4월)

12) 동 사업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

1) 2023년도 부처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94.0(보통)
-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보통' 등급으로 지출구조조정 대상에서 제외, 집행의 효율성 및 성과 달성 등을 위해 지속 노력

2) 2024년도 부처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미실시
- 고용노동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결과로 대체
※ 최근 3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결과 : ('23) 양호, ('24) 양호, ('25) 양호

3) 2025년 부처 주요정책 자체평가 결과: 다소우수
※ 최근 3년 법무부 주요정책 자체평가 결과 : ('23) 다소우수, ('24) 우수, ('25) 다소우수

13) 2026년도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 결과 및 후속 조치 현황

평가결과	성과평가 주요내용	조치결과
사업개선	(사업내용 적정성) 인건비·경상비와 사업비를 별도 내역사업으로 구분하여 검토할 필요 (지원규모 적정성) 갱생보호대상자에 대한 합리적 추정방식으로 개선하여 지원규모 관리 필요 (성과달성도) 추가적인 성과지표 개선 및 성과관리 노력 필요	(내역사업 구조 세분화) 내부적으로는 별도 내부사업으로 관리되고 있어 대외적인 관리 투명성을 제고 추진 (관계기관 협업 강화) 일률적인 대상자 산출이 아닌 최근 5년 평균을 분석해 현실성 반영 제고 (지표 체계 개편) 기존의 단순 수량적, 단기적 지표에서 벗어난 평가지표 개편 추진

14) 부처 건의사항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3	44,519	-	44,519	-	-	-	44,519	44,503	99.9	99.9	-	16
2024	48,124	-	48,124	-	-	-	48,124	47,789	99.3	99.3	-	335
2025	46,856	-	46,856	-	-	-	46,856	44,651	95.3	95.3	2,205	-
2026	48,468	-	48,468	2,205	-	-	50,673	50,673	100.0	100.0	-	-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본예산	추경(A)								
2023	44,519	44,519	44,519	44,519	-	44,519	44,503	-	16	99.9
2024	48,124	48,124	48,124	48,124	-	48,124	47,789	-	335	99.3
2025	46,856	46,856	46,856	46,856	-	46,856	44,651	2,205	-	95.3
2026. 7월기준	48,468	48,468	48,468	48,468	2,205	50,673	25,073	-	-	49.5

2) 주요 결산사항

□ 2023~2026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3	- 불용 : 경상경비 절감 16백만원
2024	- 불용 : 신설기관 건립 토지매입비 절감 335백만원
2025	- 이월 : 신설기관 공사비 등 이월 2,205백만원
2026	-

□ 2026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신설기관 공사비 등 이월 2,205백만원

□ 2026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 해당없음

사 업 명
치료감호자수용관리 (1634-3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일반회계	020	022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600	1634	300
명칭	범죄예방활동	치료감호	치료감호자수용관리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6예산 시 소관
	O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치료감호자 수용관리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범죄예방정책국	오상섭	원학재	정재희
		범죄예방기획과	02-2110-3570	02-2110-3574	02-2110-3787
	사업시행주체	국립법무병원	-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년 결산	2026년 예산		2027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요구안	조정안(B)		(B-A)/A
치료감호자수용관리	12,357	14,776	14,776	12,676	11,834	△2,942	△19.9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5					2026(2026.7월말)							2027 예산안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12,581	12,581	12,357	-	224	14,776	14,776	6,342	14,776	6,342	-	-	11,834
・병동시설 유지관리	3,203	3,233	3,165	-	68	5,193	5,253	1,510	5,253	1,510	-	-	2,470
・구호및교정비 지원	4,686	4,686	4,686	-	-	4,734	4,734	2,368	4,734	2,368	-	-	4,464
・공무직 인력지원	1,594	1,594	1,478	-	116	1,744	1,744	885	1,744	885	-	-	1,868
・병동 운영 관리	3,099	3,069	3,028	-	41	3,105	3,045	1,579	3,045	1,579	-	-	3,032
○ 비목별 분류(합계)	12,581	12,581	12,357	-	224	14,776	14,776	6,341	14,776	6,342	-	-	11,834
· 상용임금(110-03)	1,318	1,318	1,207	-	111	1,441	1,441	799	1,441	799	-	-	1,538
· 일반수용비(210-01)	640	701	701	-	-	998	998	508	998	508	-	-	925
· 공공요금(210-02)	752	752	752	-	-	652	652	568	652	568	-	-	652
· 피복비(210-03)	6	6	6	-	-	6	6	-	6	-	-	-	6
· 임차료(210-07)	578	521	521	-	-	185	125	20	125	20	-	-	185
· 유류비(210-08)	595	595	595	-	-	595	595	236	595	236	-	-	595
· 시설장비유지비(210-09)	404	434	434	-	-	404	464	375	464	375	-	-	404
· 재료비(210-11)	14	14	14	-	-	34	34	10	34	10	-	-	34
· 복리후생비(210-12)	18	18	13	-	5	18	18	9	18	9	-	-	21
· 관리용역비(210-15)	131	97	97	-	-	246	246	64	246	64	-	-	246
· 국내여비(220-01)	4	4	4	-	-	4	4	4	4	4	-	-	4
· 국외여비(220-02)	22	22	22	-	-	22	22	22	22	22	-	-	22
· 사업추진비(240-01)	5	5	5	-	-	5	5	2	5	2	-	-	5
· 일반연구비(260-01)	137	137	96	-	41	137	137	57	137	57	-	-	137
· 정책연구비(260-02)	72	72	72	-	-	72	72	10	72	10	-	-	72
· 포상금(310-03)	-	-	-	-	-	6	6	1	6	1	-	-	6
· 기타보전금(310-04)	143	143	143	-	-	143	143	77	143	77	-	-	143
· 구호및교정비(320-06)	4,686	4,686	4,686	-	-	4,734	4,734	2,368	4,734	2,368	-	-	4,464
· 고용부담금(320-09)	258	258	258	-	-	285	285	77	285	77	-	-	309
· 실시설계비(420-02)	72	72	72	-	-	72	72	15	72	15	-	-	72
· 공사비(420-03)	1,560	1,560	1,492	-	68	1,560	1,560	689	1,560	689	-	-	937
· 감리비(420-04)	8	8	8	-	-	8	8	-	8	-	-	-	8
· 자산취득비(430-01)	1,159	1,159	1,159	-	-	3,149	3,149	431	3,149	431	-	-	1,049

	2025					2026(2026.7월말)							2027 예산안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12,581	12,581	12,357	-	224	14,776	14,776	6,341	14,776	6,341	-	-	11,834
· 병동시설 유지관리	3,203	3,233	3,165	-	68	5,193	5,253	1,510	5,253	1,510	-	-	2,470
- 시설장비유지비(210-09)	404	434	434	-	-	404	464	375	464	375	-	-	404
- 실시설계비(420-02)	72	72	72	-	-	72	72	15	72	15	-	-	72
- 공사비(420-03)	1,560	1,560	1,492	-	68	1,560	1,560	689	1,560	689	-	-	937
- 감리비(420-04)	8	8	8	-	-	8	8	0	8	0	-	-	8
- 자산취득비(430-01)	1,159	1,159	1,159	-	-	3,149	3,149	431	3,149	431	-	-	1,049
· 구호및교정비 지원	4,686	4,686	4,686	-	-	4,734	4,734	2,368	4,734	2,368	-	-	4,464
- 구호및교정비(320-06)	4,686	4,686	4,686	-	-	4,734	4,734	2,368	4,734	2,368	-	-	4,464
· 공무직 인력지원	1,594	1,594	1,478	-	116	1,744	1,744	885	1,744	885	-	-	1,868
- 상용임금(110-03)	1,318	1,318	1,207	-	111	1,441	1,441	799	1,441	799	-	-	1,538
- 복리후생비(210-12)	18	18	13	-	5	18	18	9	18	9	-	-	21
- 고용부담금(320-09)	258	258	258	-	-	285	285	77	285	77	-	-	309
· 병동 운영관리	3,099	3,069	3,028	-	41	3,105	3,045	1,579	3,045	1,579	-	-	3,032
- 일반수용비(210-01)	640	701	701	-	-	998	998	508	998	508	-	-	925
- 공공요금(210-02)	752	752	752	-	-	652	652	568	652	568	-	-	652
- 피복비(210-03)	6	6	6	-	-	6	6	0	6	0	-	-	6
- 임차료(210-07)	578	521	521	-	-	185	125	20	125	20	-	-	185
- 유류비(210-08)	595	595	595	-	-	595	595	236	595	236	-	-	595
- 재료비(210-11)	14	14	14	-	-	34	34	10	34	10	-	-	34
- 관리용역비(210-15)	131	97	97	-	-	246	246	64	246	64	-	-	246
- 국내여비(220-01)	4	4	4	-	-	4	4	4	4	4	-	-	4
- 국외여비(220-02)	22	22	22	-	-	22	22	22	22	22	-	-	22
- 사업추진비(240-01)	5	5	5	-	-	5	5	2	5	2	-	-	5
- 일반연구비(260-01)	137	137	96	-	41	137	137	57	137	57	-	-	137
- 정책연구비(260-02)	72	72	72	-	-	72	72	10	72	10	-	-	72
- 포상금(310-03)	-	-	-	-	-	6	6	1	6	1	-	-	6
- 기타보전금(310-04)	143	143	143	-	-	143	143	77	143	77	-	-	143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치료감호자수용관리) 치료감호처분을 받은 심신장애, 마약 · 알코올이나 그 밖의 약물중독 및 정신성적 장애 범죄자에 대해 특수한 치료·재활교육으로 재범 방지 및 건전한 사회복귀 촉진

- (병동시설 유지관리) 국립법무병원 병동 시설·장비에 대한 유지관리 및 개선
- (구호 및 교정비 지원) 피치료감호자의 수용 생활에 필요한 의료비, 급량비, 피복비 등 경상적 경비 지원
- (공무직 인력지원) 국립법무병원 공무직 근로자(감호실무관, 임상심리사 및 사회복지사, 청소원, 운전원,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생, 조리사 등) 운영을 위한 인건비 지원
- (병동 운영관리) 국립법무병원 피치료감호자 수용 및 의료재활교육을 위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유류비, 여비, 사업추진비 등 기타 제경비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② 추진경위

- 1987. 11. 치료감호소 개청(대통령령 제12232호)
- 1993. 11. 전공의 수련병원 지정
- 1997. 1. 병원명칭사용(국립감호정신병원, 법무부훈령 제385호)
- 2004. 1. 약물중독재활센터 개관(대통령령 제18252호)
- 2005. 8. 치료감호법 제정
- 2006. 7. 병원명칭변경(국립법무병원, 법무부훈령 제560호)
- 2022. 7. 치료감호법 개정(치료감호소→국립법무병원)
- 2023. 10. 중증환자 집중치료병동 완공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단위: 백만원)

연도	2023	2024	2025	2026	2027(안)
사업비	11,721	12,680	12,581	14,776	11,834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범죄예방정책국 국립법무병원
- 사업 수혜자 : 치료감호처분 대상자, 정신감정 의뢰 대상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7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병동시설 유지관리

: (2026 본예산) 5,193백만원 → (2027 요구) 2,470백만원, 2,723백만원 감액

- (요구) 노후 병동시설 개보수 등 우선순위 조정하여 응급환자 이송 동 안전한 병동 운영을 위한 승강기 2대 교체 예산 요구
- (산출) 승강기 교체 177백만원 증액
  재난대응 및 노후 병동시설·장비 개선 2,900백만원 감액

ㅇ 2026년도 예산 및 2027년도 예산안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6년 본예산		2027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5,193	○ **시설장비유지비(210-09) : 404백만원** 가. 통신·전기·CCTV·전자경비시스템·보일러·가스히트펌트 등 유지보수비 404백만원 ○ **건설비(420-00) : 1,640백만원** 가. 병동 시설 개보수 800백만원 나. 재난대비 시설 보강 공사 840백만원 ○ **자산취득비(430-01) : 3,149백만원** 가. 조리장비, 사무가구 구입비 등 182백만원 나. 재난대비, 보안장비, 직업훈련 장비 등 구입 864백만원 다. AI기반 행동분석시스템 구축 등 2,103백만원	2,470	○ **시설장비유지비(210-09) : 404백만원** 가. 통신·전기·CCTV·전자경비시스템·보일러·가스히트펌트 등 유지보수비 404백만원 ○ **건설비(420-00) : 1,017백만원** 가. 병동 시설 개보수 464백만원 나. 치료재활 시설 개보수 376백만원 다. 승강기 교체 177백만원 ○ **자산취득비(430-01) : 1,049백만원** 가. 조리장비, 사무가구 구입비 등 50백만원 나. 병동 침상, 사물함 등 구입 192백만원 다. 치료재활 장비 및 보안장비 구입 807백만원

② 구호 및 교정비 지원

: (2026 본예산) 4,734백만원 → (2027 요구) 4,464백만원, 270백만원 감액

- (요구) 수용인원 감소에 따른 급량비, 의료비, 피복비 등 구호및교정비 편성인원 축소(1,022명→900명), 급식비 단가(5,441원→5,588원) 인상 요구
- (산출) 급식비 단가 인상(5,441원→5,588원)에 따른 급량비 48백만원 증액
  편성인원 축소 조정(1,022명→900명)에 따른 구호및교정비 318백만원 감액

ㅇ 2026년도 예산 및 2027년도 예산안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6년 본예산		2027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4,734	○ **구호및교정비(320-06) : 4,734백만원** **가. 수용자 급량비 2,229백만원** ・수용자 급식비 1,022명×5,441원×365일 = 2,030백만원 ・중증환자 치료식 등 199백만원 **나. 수용자 의료비 2,383백만원** ・건강관리공단예탁금 383백만원 ・일반의료비 등 2,000백만원 **다. 수용자 피복비 122백만원**	4,464	○ **구호및교정비(320-06) : 4,464백만원** **가. 수용자 급량비 2,039백만원** ・수용자 급식비 900명×5,588원×365일 = 1,836백만원 ・중증환자 치료식 등 203백만원 **나. 수용자 의료비 2,317백만원** ・건강관리공단예탁금 383백만원 ・일반의료비 등 1,934백만원 **다. 수용자 피복비 108백만원**

③ 공무직 인력지원

: (2026 본예산) 1,744백만원 → (2027 요구) 1,868백만원, 124백만원 증액

- (요구) 상용임금 불용에 따라, 기간제 의사 상용임금 등 감액 요구, 공무직 근로자 35명에 대한 처우개선 요구
- (산출) 기간제 의사 1명 인건비 감액 조정 및 공무직 35명에 대한 처우개선분(4.3%), 가족수당 등을 반영하여 상용임금 97백만원 증액, 복리후생비 3백만원 증액, 고용부담금 24백만원 증액

ㅇ 2026년도 예산 및 2027년도 예산안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6년 본예산		2027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744	○ **상용임금(110-02) : 1,441백만원** **가. 감호실무관** ・ 10명×2,541천원×12월 = 305백만원 **나.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생, 조리사, 청소원** ・ 16명×2,502천원×12월 = 480백만원 **다. 정신건강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 ・ 7명×4,750천원×12월 = 347백만원 **라. 운전원, 사서** ・ 2명×3,333천원×12월 = 78백만원 **마. 기간제 의사** ・ 1명×3,333천원×12월 = 86백만원. **바. 초과근무 등 145백만원** ○ **복리후생비(210-12) : 18백만원** **가. 맞춤형복지비** ・ 36명×500천원 = 18백만원 ○ **고용부담금(320-09) : 285백만원** **가. 보험료 및 퇴직금 285백만원**	1,868	○ **상용임금(110-02) : 1,538백만원** **가. 감호실무관** ・ 10명×2,541천원×12월 = 417백만원 **나.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생, 조리사, 청소원** ・ 16명×2,502천원×12월 = 500백만원 **다. 정신건강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 ・ 7명×4,750천원×12월 = 361백만원 **라. 운전원, 사서** ・ 2명×3,333천원×12월 = 81백만원 **마. 초과근무 등 각종 수당 179백만원** ○ **복리후생비(210-12) : 21백만원** **가. 맞춤형복지비** ・ 35명×600천원 = 21백만원 ○ **고용부담금(320-09) : 309백만원** **가. 보험료 및 퇴직금 309백만원**

④ 병동 운영관리

: (2026 본예산) 3,105백만원 → (2027 요구) 3,032백만원, 73백만원 감액

- (요구) 수용경비 편성 인원 조정(1,022명→900명)에 따른 일반수용비 감액 요구
- (산출) 피치료감호자 수용경비 인원 조정(1,022명→900명)에 따른 일반수용비 73백만원 감액

ㅇ 2026년도 예산 및 2027년도 예산안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6년 본예산		2027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3,105	○ **일반수용비(210-01) : 998백만원** 가. 피치료감호자 수용경비 628백만원 나. 직업훈련, 심리검사 등 기타경비 174백만원 다. 야간근무자 특수건강검진비 46백만원 라. 치료재활 프로그램 등 운영 150백만원 ○ **공공요금및제세(210-02) : 652백만원** 가. 전기요금 590백만원 나. 상하수도 요금 등 62백만원 ○ **피복비(210-03) : 6백만원** 가. 공무직 근무복 36명×156천원 = 6백만원 ○ **임차료(210-07) : 185백만원** 가. 영상의학장비 임차료 등 185백만원 ○ **유류비(210-08) : 595백만원** 가. 병동 난방비 등 595백만원 ○ **재료비(210-11) : 34백만원** 가. 직업훈련실습재료비 7과정 34백만원	3,032	○ **일반수용비(210-01) : 925백만원** 가. 피치료감호자 수용경비 555백만원 나. 직업훈련, 심리검사 등 기타경비 174백만원 다. 야간근무자 특수건강검진비 46백만원 라. 치료재활 프로그램 등 운영 150백만원 ○ **공공요금및제세(210-02) : 652백만원** 가. 전기요금 590백만원 나. 상하수도 요금 등 62백만원 ○ **피복비(210-03) : 6백만원** 가. 공무직 근무복 36명×156천원 = 6백만원 ○ **임차료(210-07) : 185백만원** 가. 영상의학장비 임차료 등 185백만원 ○ **유류비(210-08) : 595백만원** 가. 병동 난방비 등 595백만원 ○ **재료비(210-11) : 34백만원** 가. 직업훈련실습재료비 7과정 34백만원

	○ **관리용역비(210-15) : 246백만원** 가. 의료세탁물 위탁처리 194백만원 나. 기계설비 성능점검 위탁처리 52백만원 ○ **여비(220-00) : 26백만원** 가. 국내여비 4백만원 나. 국제학술대회 참가 등 국외출장비 22백만원 ○ **사업추진비(240-01) : 5백만원** 가. 유관기관 업무협의 5백만원 ○ **연구비(260-00) : 209백만원** 가. 임상연구비 137백만원 나. 프로그램개발 정책연구비 72백만원 ○ **포상금(310-03) : 6백만원** 가. 우수직원 포상금 6백만원 ○ **기타보전금(310-03) : 6백만원** 가. 우수직원 포상금 6백만원		○ **관리용역비(210-15) : 246백만원** 가. 의료세탁물 위탁처리 194백만원 나. 기계설비 성능점검 위탁처리 52백만원 ○ **여비(220-00) : 26백만원** 가. 국내여비 4백만원 나. 국제학술대회 참가 등 국외출장비 22백만원 ○ **사업추진비(240-01) : 5백만원** 가. 유관기관 업무협의 5백만원 ○ **연구비(260-00) : 209백만원** 가. 임상연구비 137백만원 나. 프로그램개발 정책연구비 72백만원 ○ **포상금(310-03) : 6백만원** 가. 우수직원 포상금 6백만원 ○ **기타보전금(310-04) : 143백만원** 가. 일반근로작업 등 143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3~2027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3	○ 평균수용인원 814명 ○ 중증 정신질환자 및 마약 · 약물중독자에 대한 신약투여 등 치료 ○ 정신감정 252명, 무상외래진료 1,300명, 의료재활치료 2,303명, 정신재활치료(특수치료) 5,921명 ○ 제과제빵 등 5개 직종 직업훈련 참여인원 1,620명(자격취득 0명)
2024	○ 평균수용인원 804명 ○ 중증 정신질환자 및 마약 · 약물중독자에 대한 신약투여 등 치료 ○ 정신감정 185명, 무상외래진료 1,163건, 의료재활치료 2,154건, 정신재활치료(특수치료) 6,932명 ○ 제과제빵 등 7개 직종 직업훈련 참여인원 1,310명, 수료 214명(자격취득 36명)
2025	○ 평균수용인원 810명 ○ 중증 정신질환자 및 마약 · 약물중독자에 대한 치료·재활 및 교육 ○ 정신감정 209명, 무상외래진료 1,070건, 의료재활치료 2,728건, 정신재활치료(특수치료) 6,020명 ○ 제과제빵 등 7개 직종 직업훈련 참여인원 1,436명, 수료 227명(자격취득 70명)
2026	○ 평균수용인원 837명 ○ 중증 정신질환자 및 마약 · 약물중독자에 대한 치료·재활 및 교육 ○ 정신감정 122명, 무상외래진료 494건, 의료재활치료 1,792건, 정신재활치료(특수치료) 5,121명 ○ 제과제빵 등 7개 직종 직업훈련 참여인원 983명, 수료 124명(자격취득 61명)

③ 향후(2027년도 이후) 기대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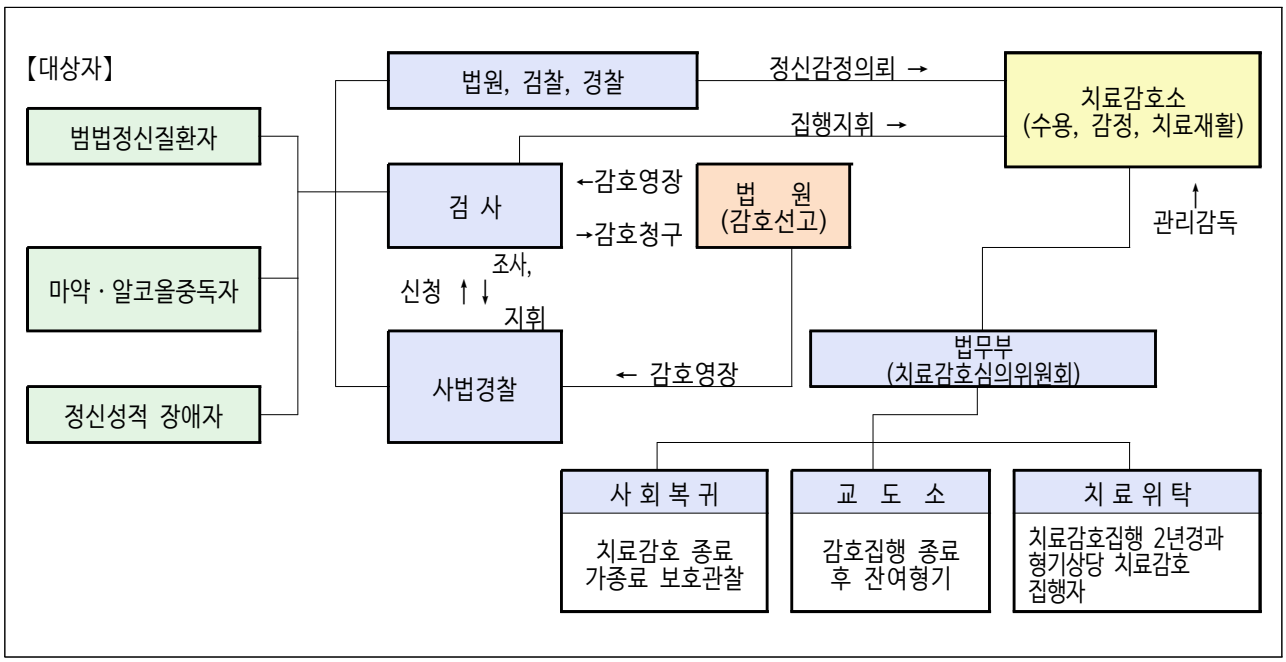
- 시간선택제 채용 및 보수 인상 등 처우 개선을 통한 의사 확보, 약사 및 간호사, 임상심리사, 작업치료사 등 의료인력 결원 발생 시 수시 채용, 관계부처 협의를 통한 의료인력 확보로 치료감호 효율성 향상 기대
-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치료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치료·재활·교육프로그램의 내실화로 재범 방지(2026년 재입원율 목표 5.0%)

- 직업훈련과목 신설 등 재활 프로그램 운영 강화로 피치료감호자 퇴원 후 안정적 사회복귀 지원
- MRI·CT 등 특수의료장비 운용을 통한 피치료감호자에 대한 정확한 진단, 법정신의학 연구 및 뇌과학 연구 등 치료기법 개발에 활용하여 치료효과 제고(촬영 건수 : MRI 1,334건, CT 1,099건)
- AI 행동분석시스템 등 최신기술을 활용한 선진 치료환경 구축을 통해 이상·공격행동이 지속되는 발달장애 및 고위험 피치료감호자에 대한 전문적 치료 실시
- 피치료감호자 출원 후에도 국립법무병원 및 전국 5대 국립정신병원에서 무상 외래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25~2029	12,581	14,776	13,842	13,551	13,114	
2026~2030		14,776	16,865	17,371	17,892	18,429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국회(상임위 등)	지적사항	비고
- '22년 국회 법사위 검토보고서	ㅇ 정신과 의사 인력의 확보방안 마련, 병동운영 인력 확충 필요	
- '22년 국회 예결위	ㅇ 발달장애인에 대한 차별 철폐 및 관리체계 전환 필요	
- '22년 국회 국정감사	ㅇ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시스템 실시간 연계 미구축	
- '24년 국회 법사위 검토보고서	ㅇ 정신과 의사 인력의 확보방안 마련	

2) 감사원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 해당없음

3) 자체평가 : 해당없음

4)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 해당없음

5)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지적사항	후속 조치사항
■ 정신과 의사 인력의 확보방안 마련 및 병동 운영 인력 확충 필요	■ 2022년 소요정원에서 간호사 등 13명 인력 확보 ■ 2023년 소요정원에서 간호사 등 13명 인력 확보 ■ 정신과 의사 확충(2024. 12. 6.8명 → 2025. 12. 9.9명)
■ 발달장애인에 대한 차별 철폐 및 관리체계 전환 필요	■ 2024. 8. 발달장애 전문병동 개설·운영 ※ 연구용역 수행 : '발달장애인에 대한 형사사법적 치료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실시간 연계 미구축	■ 2023년 관련 예산 확보하여 2023. 12. 구축 완료, 실시간 연계 중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정신과 의사 등 인력 확보 및 AI 행동분석시스템 등 신기술 활용을 통한 치료환경 개선
- 치료·재활·교육 프로그램 운영 강화 및 내실화로 피치료감호자의 안정적 사회복귀 지원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2) 동 사업에 대한 부처 자체평가 결과

회계연도	등급	자체평가 주요내용	조치결과
2023	우수	- 해당없음	- 해당없음
2024	보통	- 해당없음	- 해당없음
2025	보통	- 해당없음	- 해당없음

13) 2026년도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 결과 및 후속 조치 현황

평가결과	성과평가 주요내용	조치결과
사업개선	- (사업계획 적정성)수용인원 규모의 감소 경향에 비해 최근 3년간 예산이 증액, 효율적인 예산편성 필요	- (구조조정)사업수요 인원 조정을 통해 관련 예산 적정 편성 예정

14) 부처 건의사항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3	11,721	-	11,721	-	-	-	11,721	11,521	98.3	98.3	-	200
2024	12,680	-	12,680	-	-	-	12,680	12,146	95.8	95.8	-	534
2025	12,581	-	12,581	-	-	-	12,581	12,357	98.2	98.2	-	224
2026	14,776	-	14,776	-	-	-	14,776	6,341	42.9	42.9	-	-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 해당없음

2) 주요 결산사항

□ 2023~2026년 결산사항

2023	- 불용 : 공무직 인건비 116백만원, 낙찰차액 등 건설비 46백만원 등 200백만원
2024	- 불용 : 공무직 인건비 286백만원, 낙찰차액 등 건설비 132백만원 등 534백만원
2025	- 불용 : 공무직 인건비 116백만원, 낙찰차액 등 건설비 68백만원 등 224백만원
2026	- 해당없음

□ 2026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

□ 2026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 해당없음

사 업 명
보호관찰활동 (1635-3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일반회계	020	022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600	1635	300
명칭	범죄예방활동	보호관찰	보호관찰활동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6예산 시 소관
	O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보호관찰 활동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범죄예방정책국	오상섭	원학재	주영광
		범죄예방기획과	02-2110-3570	02-2110-3574	02-2110-3577
	사업시행주체	법무부	-	-	-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년 결산	2026년 예산		2027년		증감 (B-A)	(B-A)/A
		본예산(A)	추경	요구안	조정안(B)		
보호관찰활동	16,905	17,682	17,682	16,024	16,024	△1,658	△9.4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25					2026(2026.7월말)							2027 예산안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기능별 분류(합계)	17,102	17,164	16,905	-	259	17,682	17,682	9,514	17,682	9,514	-	-	16,024
· 보호관찰·수강명령·사회봉사명령 집행	11,951	11,916	11,683	0	233	12,132	12,132	6,558	12,132	6,558	-	-	11,179
· 보호관찰 장비 및 시설	1,777	1,777	1,750	0	27	2,157	2,157	579	2,157	579	-	-	1,800
· 사업 지원 경비	3,374	3,471	3,471	0	0	3,393	3,393	2,376	3,393	2,376	-	-	3,046
○비목별 분류(합계)	17,102	17,164	16,905	-	259	17,682	17,682	9,514	17,682	9,514	-	-	16,024
· 일반수용비(210-01)	7,720	7,637	7,631	-	6	7,775	7,665	3,838	7,665	3,838	-	-	6,175
· 공공요금 및 제세(210-02)	625	647	603	-	44	645	755	535	755	535	-	-	545
· 특근매식비(210-05)	78	113	113	-	-	97	97	46	97	46	-	-	87
· 임차료(210-07)	-	-	-	-	-	60	60	10	60	10	-	-	-
· 유류비(210-08)	150	154	154	-	-	150	150	117	150	117	-	-	134
· 재료비(210-11)	175	197	197	-	-	175	175	138	175	138	-	-	512
· 관리용역비(210-15)	-	-	-	-	-	60	60	11	60	11	-	-	60
· 국내여비(220-01)	3,199	3,261	3,261	-	-	3,199	3,199	2,258	3,199	2,258	-	-	2,875
· 국외업무여비(220-02)	30	30	30	-	-	30	30	30	30	30	-	-	30
· 사업추진비(240-01)	67	67	67	-	-	67	67	42	67	42	-	-	54
· 특정업무경비(250-03)	2,979	2,979	2,796	-	183	2,977	2,977	1,686	2,977	1,686	-	-	3,080
· 정책연구비(260-01)	40	40	40	-	-	40	40	-	40	-	-	-	40
· 포상금(310-03)	-	-	-	-	-	87	87	60	87	60	-	-	87
· 기타보전금(310-04)	205	205	205	-	-	206	206	161	206	161	-	-	582
· 구호 및 교정비(320-06)	57	57	57	-	-	77	77	23	77	23	-	-	24
· 공사비(420-03)	531	531	531	-	-	581	581	341	581	341	-	-	494
· 자산취득비(430-01)	1,246	1,246	1,219	-	27	1,256	1,256	137	1,256	137	-	-	1,246
· 무형자산(440-00)	-	-	-	-	-	200	200	80	200	80	-	-	-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17,102	17,164	16,905	-	259	17,682	17,682	9,514	17,682	9,514	-	-	16,024
· 보호관찰·수강명령·	23,883	23,848	23,382	0	466	12,132	12,132	6,558	12,132	6,558	-	-	11,179

	2025					2026(2026.7월말)							2027 예산안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사회봉사명령 집행													
-일반수용비(210-01)	7,720	7,637	7,631	-	6	7,775	7,665	3,838	7,665	3,838	-	-	6,175
-공공요금및제세(210-02)	625	647	603	-	44	645	755	535	755	535	-	-	545
-유류비(210-08)	150	154	154	-	-	150	150	117	150	117	-	-	134
-재료비(210-11)	175	197	197	-	-	175	175	138	175	138	-	-	512
-특정업무경비(250-03)	2,979	2,979	2,796	-	183	2,977	2,977	1,686	2,977	1,686	-	-	3,080
-정책연구비(260-02)	40	40	40	-	-	40	40	-	40	-	-	-	40
-포상금(310-03)	-	-	-	-	-	87	87	60	87	60	-	-	87
-기타보전금(310-04)	205	205	205	-	-	206	206	161	206	161	-	-	582
-구호및교정비(320-06)	57	57	57	-	-	77	77	23	77	23	-	-	24
· 보호관찰 장비 및 시설	1,777	1,777	1,750	0	27	2,157	2,157	579	2,157	579	-	-	1,800
-임차료(210-07)	-	-	-	-	-	60	60	10	60	10	-	-	-
-관리용역비(210-15)	-	-	-	-	-	60	60	11	60	11	-	-	60
-공사비(420-03)	531	531	531	-	-	581	581	341	581	341	-	-	494
-자산취득비(430-01)	1,246	1,246	1,219	-	27	1,256	1,256	137	1,256	137	-	-	1,246
-무형자산(440-00)	-	-	-	-	-	200	200	80	200	80	-	-	-
· 사업지원경비	3,374	3,471	3,471	0	0	3,393	3,393	2,376	3,393	2,376	-	-	3,046
-특근매식비(210-05)	78	113	113	-	-	97	97	46	97	46	-	-	87
-국내여비(220-01)	3,199	3,261	3,261	-	-	3,199	3,199	2,258	3,199	2,258	-	-	2,875
-국외여비(220-02)	30	30	30	-	-	30	30	30	30	30	-	-	30
-사업추진비(240-01)	67	67	67	-	-	67	67	42	67	42	-	-	54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보호관찰·수강명령·사회봉사명령 집행)** 전국 보호관찰소에서 수행하고 있는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집행의 강사료, 프로그램 운영비, 보호관찰 위원 활동 사례금, 직원 매식비 등 경비 지원
- **(보호관찰 장비 및 시설)** 보호관찰기관 시설 운영 및 장비 취득·보수 등 지원
- **(사업지원경비)** 여비, 사업추진비 등 보호관찰·수강·사회봉사명령 등 업무 지원 소요 경비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 소년법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 및 방지에 관한 법률
-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② 추진경위

- ‘88. 12. 31. 보호관찰법 제정
- ‘89. 7. 1. 전국 보호관찰소・심사위원회 설치
- ‘95. 1. 5.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정
- ‘97. 1. 1. 성인범 보호관찰 확대실시
- ‘01. 1. 1. 보호관찰 기피자 지명수배제도 실시
- ‘04. 9. 22. 성매매사범에 대한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실시
- ’09. 9. 25. 벌금미납 사회봉사 집행 실시
- ‘10. 5. 11. 사회봉사 농촌지원 실시(대통령 지시사항)
- ’10. 4. 15.「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개정 시 이수명령 도입
- ‘13. 6. 19. 형기종료 후 보호관찰(살인・성폭력・미성년자유괴・강도죄)실시
- ‘13. 6. 19. 성폭력사범 판결전 조사 확대 실시
- ’13. 6. 19. 성폭력 사범 수강(이수)명령 의무적 부과 및 부과시간 확대
- ’14. 1. 28. 아동학대 이수명령 도입
- ’14. 9. 29.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결정전조사 실시

- ‘16. 12. 2. 주취·정신질환 상태에서 죄를 범한 자에 대한 치료명령제도 실시
- ‘18. 1. 7. 벌금형 집행유예자에 대한 보호관찰·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 실시
- ‘18. 6. 13. 치료감호 만기 종료자 보호관찰 실시
- ‘20. 1. 7. 벌금미납 사회봉사명령 상한액 상향(300만원 →500만원)
- ‘21. 10. 21. 스토킹사범에 대한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실시
- ‘22. 1. 21.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 종료사실 통보제도 실시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단위: 백만원)

연도	2023	2024	2025	2026	2027(안)
사업비	14,002	16,114	17,102	17,682	16,024

- 기타 :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58개 보호관찰 기관, 6개 보호관찰심사위원회
- 사업 수혜자 : 보호관찰대상자 및 일반 국민
-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7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

① 보호관찰·수강명령·사회봉사명령 집행

: (2026 본예산) 12,132백만원 → (2027 요구) 11,179백만원, 953백만원 감액

- (요구) 소년보호전문기관 운영을 위한 보호관찰활동 사업예산 제도개선 반영 및 보호관찰·사회봉사 등 집행을 위해 전년 수준의 예산 요구
- (산출) 치료명령대상자 심리치료 지원 및 마약사범 수시 약물검사 확대 등에 따른 816백만원 증액
  소년보호전문기관 운영 제도개선 1,229백만원 감액

ㅇ 2026년도 예산 및 2027년도 예산안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6년 본예산		2027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2,132	○ **일반수용비(210-01) : 7,775백만원** 가. 자원봉사자 보호관찰활동 지원비 401백만원 나. 수강명령 집행 3,854백만원 · 58기관×5,524천원×12월	11,179	○ **일반수용비(210-01) : 6,715백만원** 가. 자원봉사자 보호관찰활동 지원비 276백만원 나. 수강명령 집행 3,430백만원 · 58기관×5,524천원×12월

2026년 본예산		2027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다. 기타 교육 및 용품비 등 1,084백만원 ・ 58기관×1,557천원×12월 라. 각종 심리치료비 등 2,436백만원 ・ 58기관×3,500천원×12월 ○ **공공요금및제세(210-02) : 645백만원** ○ **유류비(210-08) : 150백만원** ○ **재료비(210-11) : 175백만원** 가. 마약류 감정시약 구입비 175백만원 ・ 58기관×3,017천원 ○ **특정업무경비(250-03) : 2,977백만원** 가. 보호관찰활동비 2,959백만원 ・ 1,897명×130천원×12월 나. 부서활동비 : 18백만원 ○ **정책연구비(260-02) : 40백만원** 가. 보호관찰 주요 정책 추진을 위한 연구용역비 40백만원 ・ 2과제×20,000천원 ○ **포상금(260-02) : 87백만원** 가. 보호관찰 업무 우수직원 등 포상 87백만원 ・ 58기관×1,500천원 ○ **기타보전금(310-04) : 206백만원** 가. 기초생활수급자(심리치료비) 108백만원 나. 차상위계층 및 위기상황자 등 (심리치료비, 약제진료비) 98백만원 ○ **구호및교정비(320-06) : 77백만원** 가. 구인 대상자 및 소년 프로그램 참가자 중식비 77백만원		다. 기타 교육 및 용품비 등 1,031백만원 ・ 58기관×1,557천원×12월 라. 각종 심리치료비 등 1,978백만원 ・ 58기관×3,500천원×12월 ○ **공공요금및제세(210-02) : 545백만원** ○ **유류비(210-08) : 134백만원** ○ **재료비(210-11) : 512백만원** 가. 마약류 감정시약 구입비 512백만원 ・ 58기관×8,827천원 ○ **특정업무경비(250-03) : 3,080백만원** 가. 보호관찰활동비 3,064백만원 ・ 1,964명×130천원×12월 나. 부서활동비 : 16백만원 ○ **정책연구비(260-02) : 40백만원** 가. 보호관찰 주요 정책 추진을 위한 연구용역비 40백만원 ・ 2과제×20,000천원 ○ **포상금(260-02) : 87백만원** 가. 보호관찰 업무 우수직원 등 포상 87백만원 ・ 58기관×1,500천원 ○ **기타보전금(310-04) : 582백만원** 가. 기초생활수급자 및 위기상황자 등 심리치료비 539백만원 나. 약제진료비 43백만원 ○ **구호및교정비(320-06) : 24백만원** 가. 구인 대상자 등 중식비 24백만원

② 보호관찰 장비 및 시설

: (2026 본예산) 2,157백만원 → (2027 요구) 1,800백만원, 357백만원 감액

- (요구) 소년보호전문기관 운영을 위한 보호관찰활동 사업예산 제도개선 반영 및 보호관찰소 청사 보수, 노후 장비 교체 예산 등 요구
- (산출) 소년보호전문기관 청사 임차 등 공간조성 357백만원 감액

ㅇ 2026년도 예산 및 2027년도 예산안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6년 본예산		2027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2,157	○ **임차료(210-07) : 60백만원** 가. 소년보호전문기관 청사 임차료 60백만원 ○ **관리용역비(210-15) : 60백만원** 가. 소년보호전문기관 청사 관리비 60백만원 ○ **공사비(320-06) : 581백만원** 가. 약물검사실 등 조성 및 청사 보수 581백만원 ・ 58기관×10,017천원 ○ **자산취득비(430-01) : 1,256백만원** 가. 교육 비품 및 사무용품 구입 등 1,256백만원 ・ 58기관×1,804천원×12월 ○ **무형자산(440-00) : 200백만원** 가. 소년보호전문기관 청사 보증금 200백만원	1,800	- ○ **관리용역비(210-15) : 60백만원** 가. 보호관찰 장비 운영 유지보수 60백만원 ○ **공사비(320-06) : 494백만원** 가. 약물검사실 등 조성 및 청사 보수 494백만원 ・ 58기관×8,517천원 ○ **자산취득비(430-01) : 1,246백만원** 가. 교육 비품 및 사무용품 구입 등 1,246백만원 ・ 58기관×1,790천원×12월 -

③ 사업지원경비

: (2026 본예산) 3,393백만원 → (2027 요구) 3,046백만원, 347백만원 감액

- (요구) 소년보호전문기관 운영을 위한 보호관찰활동 사업지원경비 제도개선 반영
- (산출) 사업지원경비 347백만원 감액

ㅇ 2026년도 예산 및 2027년도 예산안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6년 본예산		2027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3,393	○ **특근매식비(210-05) : 97백만원** 가. 직원 특근매식비 97백만원 ・ 58기관×15.5회×9천원×12월 ○ **국내여비(220-01) : 3,199백만원** 가. 보호관찰대상자 현장감독 등 3,199백만원 ・ 58기관×4,596천원×12월 ○ **국외여비(220-02) : 30백만원** 가. 항공료, 숙박비, 식비 등 30백만원 ・ 2회×15,075천원 ○ **사업추진비(240-01) : 67백만원** 가. 유관기관 간담회 경비 등 67백만원 ・ 58기관×1,157천원	3,046	○ **특근매식비(210-05) : 87백만원** 가. 직원 특근매식비 87백만원 ・ 58기관×13.9회×9천원×12월 ○ **국내여비(220-01) : 2,875백만원** 가. 보호관찰대상자 현장감독 등 2,875백만원 ・ 58기관×4,130천원×12월 ○ **국외여비(220-02) : 30백만원** 가. 항공료, 숙박비, 식비 등 30백만원 ・ 2회×15,075천원 ○ **사업추진비(240-01) : 54백만원** 가. 유관기관 간담회 경비 등 54백만원 ・ 58기관×931천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3~2027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3	2024	2025	2026	2027	2027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21~'23) 보호관찰 강력범죄 처우프로그램 실시자 재범률(%)	목표	5.21					'23년도 재범률 추세치를 '22년도 재범률 실적치(5.22%) 보다 0.01% 낮은 5.21%로 설정	강력범죄 처우프로그램 실시자 중 재범인원/강력사범 처우프로그램 실시자)X100	전국 58개 보호관찰기관 작성한 처우프로그램 결과 보고서
	실적	5.20							
	달성도	100.1							
('24년 신규 지표) 고위험 보호관찰 대상자 재범률(%)	목표	신규	5.22	5.15	5.15		최근 3년간('23년~'25년) 평균 실적인 5.10% 보다 0.1% 감소(하향지표)한 5.00%로 설정	(당해연도 고위험 보호관찰 대상자 실시자 중 재범인원/당해연도 고위험 보호관찰 대상자 실시자)×100	보호관찰기관 통계정보 시스템
	실적	5.2	5.0	-	-				
	달성도	-	104.0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 보호관찰 실시 현황

(단위 : 명)

구분 \ 연도	2021	2022	2023	2024	2025
계(실시인원)	266,531	271,523	251,264	244,349	241,754
보호관찰	93,654	94,375	93,366	96,668	98,220
사회봉사명령	76,784	69,906	61,919	56,272	52,894
수강명령	77,622	84,323	74,457	72,350	70,471
기소유예 교육 등	18,471	22,919	21,522	19,059	20,169

○ 조사업무 현황

(단위 : 명)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
합 계	23,175	22,977	23,688	21,703	21,511
판결전조사	1,618	1,273	1,431	1,373	1,373
법원결정전조사	18,096	18,570	18,039	16,608	16,275
검사결정전조사	932	527	1,194	682	594
청구전조사	1,344	1,490	1,513	1,182	1,114
환경조사	1,185	1,117	1,511	1,858	2,155

○ 치료명령 현황

(단위 : 명)

구분 \ 연도	2021	2022	2023	2024	2025
계(실시인원)	1,614	1,307	1,149	1,131	1,145
집행유예	1,426	1,164	1,022	1,017	1,033
선고유예	8	9	4	3	3
기소유예	180	134	123	111	109

③ 향후(2027년도 이후) 기대효과

- 기소단계인 선도위탁, 재판단계인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이수)명령, 형 집행 단계인 가석방, 보안처분 성격의 가출소·가종료, 형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 등 형사사법 체계의 전 단계에 걸쳐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보호관찰뿐만 아니라, 위치추적 전자감독, 사회봉사명령(벌금미납 대체 사회봉사 포함), 수강명령, 조사, 신상정보 공개 및 성충동 약물치료, 성구매자·음란물사범 교육·기소유예 선도교육 등 그 영역도 매우 광범위하고, 성폭력·살인·미성년자 유괴·강도사범 등 특정 범죄자에 대해 형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 및 아동학대사범에 대해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명령을 실시하고 있음
- 보호관찰 대상 영역이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획일적인 보호관찰 처우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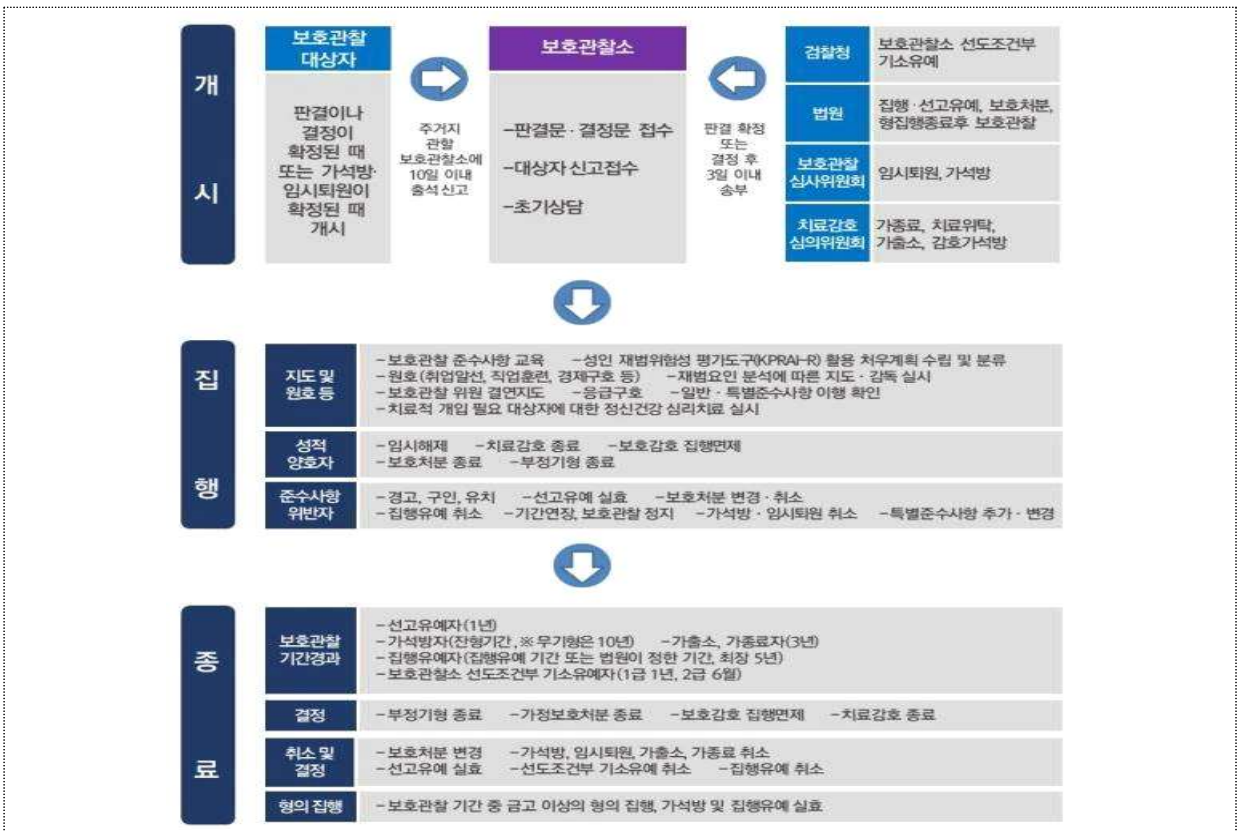
벗어나 각각의 범죄에 대응한 개별적 처우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으며 이상동기범죄 위험군 관리, 경찰과 정보공유 확대를 통한 보호관찰 대상자 강력범죄 재발 방지 등 재범고위험군에 대한 밀착 지도감독 강화, 범죄 유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맞춤형 원호를 실시하는 등 대상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로 정상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사업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운영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있음

- 생활밀착형 범죄인 스토킹·아동학대·가정폭력·마약·성폭력 사범에 대해서는 사범별 전담제를 실시, 매뉴얼을 기반으로 범죄 특성에 따른 전문화된 지도감독 기법을 적용하는 등 보호관찰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음
- 특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심각한 마약류사범에 대해 재범 가능성이 높은 대상자일수록 수시·불시 약물검사를 증대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중독 증세가 심한 대상자는 전문가 심리상담을 확대하는 등 단계별 마약류 치료·재활 강화를 통한 재범 억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
- 치료명령제도를 통해, 주취 · 마약중독 · 정신질환자가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보호관찰관의 관리로 통원치료를 받을 기회 제공 가능, 강력범죄로 이어질 가능성 높은 주취 · 마약중독 · 정신질환 범죄자에 대하여 근원적인 치료를 통해 재범을 방지함으로써 강력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안전사회를 구축해 나가겠음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25~2029	17,102	17,682	16,175	16,363	15,836	
2026~2030		17,682	21,749	22,401	23,073	23,765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

- (지적사항) 치료명령 대상자 중 심리치료비 지원 대상이 되는 위기상황자 수의 합리적 추계를 바탕으로 적정규모의 예산을 사전에 편성하고 안정적 추진·집행 필요
- (조치사항) 심리치료비 지원 대상인 위기상황자를 합리적으로 추계하여 2027회계연도 예산안 반영 예정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마약류사범에 대한 치료재활 강화 및 약물검사의 실효성 확보, 정신질환 대상자에 대한 치료적 개입, 스토킹·아동학대·가정폭력·성폭력 등 국민생활안전과 밀접한 사범에 대한 전담 보호관찰관의 밀착 관리 등을 통해 획기적인 재범 감소 도모
  ※ ('16년) 7.9%, ('18년) 7.2%, ('20년) 7.3%, ('22년) 6.0%, ('23년) 6.7%, ('24년) 6.4%, ('25년) 6.2%
- 치료명령 대상자에 대한 심리치료비 예산을 적극 활용하여 경제적 어려움으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 약물치료·심리치료비 적극 지원
- 농촌일손돕기, 재난복구 활동, 주거환경개선, 복지기관 지원, 국민이 필요한 분야를 신청하는 국민공모제 집행 등 국민에 실질적 도움을 주는 사회봉사명령 집행 강화
- 수강명령 대상자들의 특성, 범죄유형 및 재범요인을 반영한 맞춤형 전문 수강명령 집행으로 범죄성 개선 및 재범 예방
- 법무부 표준 매뉴얼에 근거한 콘텐츠와 워크북 제공을 통해 대상자 프로그램 참여도 및 개입 효과 증진
- 전문적, 과학적 조사업무(판결전조사, 청구전조사, 결정전조사, 환경조사 등)로 범죄원인 파악 및 개별처우에 대한 의견 제시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2) 동 사업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

1) 2024년도 부처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우수

2) 2025년도 부처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보통

13) 2026년도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 결과 및 후속 조치 현황

평가결과	성과평가 주요내용	조치결과
사업개선	(사업내용의 적정성) 청사 임차 등 예산 편성되어 있어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음 (지원규모 적정성) 대상자 감소 경향에 비해 예산 규모가 증가, 적정한 예산 산정 필요	(합리적 예산 편성) 일시적 편성된 소년보호전문기관 관련 예산을 신규사업 예산에 편성 추진 (지원규모 적정성 제고) 일부 예산 우선순위 조정을 통한 감액 편성 및 지도감독 다각화, 신규지표 도입을 통한 예산 적정성 확보

14) 부처 건의사항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3	14,002	-	14,002	-	-	-	14,002	13,986	99.9	99.9	-	16
2024	16,114	-	16,114	-	50	-	16,164	15,999	99.3	99.0	-	165
2025	17,102	-	17,102	-	62	-	17,164	16,905	98.8	98.5	-	259
2026	17,682	-	17,682	-	-	-	17,682	9,514	53.8	53.8	-	-

2) 주요 결산사항

□ 2023~2026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3	- 불용 : 구호 및 교정비 등 16백만원
2024	- 전용 : 보호관찰소 출장 여비 부족으로 50백만원 전용 - 불용 : 특정업무경비 등 165백만원
2025	- 전용 : 보호관찰소 출장 여비 부족으로 62백만원 전용 - 불용 : 공공요금, 자산취득비, 특정업무경비 등 259백만원 등
2026	-

□ 2026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

□ 2026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 해당없음

사 업 명
전자감독 (1635-3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일반회계	020	022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600	1635	301
명칭	범죄예방활동	보호관찰	전자감독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6예산 시 소관
	O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전자감독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범죄예방정책국	오상섭	원학재	주영광
		범죄예방기획과	02-2110-3570	02-2110-3574	02-2110-3577
	사업시행주체	법무부	-	-	-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년 결산	2026년 예산		2027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요구안	조정안(B)		(B-A)/A
전자감독	35,878	37,266	37,266	33,308	33,308	△3,958	△10.6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25					2026(2026.7월말)							2027 예산안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36,847	36,547	35,878	-	669	37,266	37,266	20,244	37,266	20,244	-	-	33,308
· 전자감독·신상정보 등록 전담인력 운영	10,082	9,778	9,248	-	530	11,212	11,212	5,788	11,212	5,788	-	-	11,906
· 전자감독·신상정보 등록 운영	6,886	7,507	7,497	-	10	7,510	7,510	4,003	7,510	4,003	-	-	7,919
· 장치 및 장비 관리	19,201	18,584	18,456	-	127	17,865	17,865	10,157	17,865	10,157	-	-	12,804
· 사업 지원 경비	679	679	678	-	1	679	679	294	679	294	-	-	679
○ 비목별 분류(합계)	36,847	36,547	35,878	-	669	37,266	37,266	20,244	37,266	20,244	-	-	33,308
· 상용임금(110-03)	8,353	8,353	7,989	-	364	9,279	9,279	5,073	9,279	5,073	-	-	9,817
· 일반수용비(210-01)	1,716	2,013	2,012	-	1	1,716	1,716	928	1,716	928	-	-	1,716
· 공공요금 및 제세(210-02)	3,953	4,142	4,142	-	-	4,015	4,015	2,444	4,015	2,444	-	-	4,267
· 피복비(210-03)	275	275	275	-	-	661	661	55	661	55	-	-	661
· 임차료(210-07)	90	91	91	-	-	90	90	53	90	53	-	-	396
· 유류비(210-08)	143	231	231	-	-	143	143	103	143	103	-	-	143
· 시설장비유지비(210-09)	279	325	325	-	-	315	315	123	315	123	-	-	115
· 복리후생비(210-12)	96	92	75	-	17	96	96	57	96	57	-	-	115
· 관리용역비(210-15)	6,945	6,328	6,243	-	85	6,851	6,851	4,028	6,851	4,028	-	-	4,365
· 국내여비(220-01)	613	613	612	-	1	613	613	246	613	246	-	-	613
· 국외업무여비(220-02)	27	27	27	-	-	27	27	27	27	27	-	-	27
· 사업추진비(240-01)	39	39	39	-	-	39	39	21	39	21	-	-	39
· 특정업무경비(250-03)	351	351	342	-	9	491	491	288	491	288	-	-	542
· 일반연구비(260-01)	430	430	389	-	41	763	763	-	763	-	-	-	1,063
· 정책연구비(260-01)	40	40	40	-	-	40	40	-	40	-	-	-	40
· 구호 및 교정비(320-06)	39	39	39	-	-	39	39	9	39	9	-	-	39
· 고용부담금(320-09)	1,633	1,333	1,184	-	149	1,837	1,837	658	1,837	658	-	-	1,974
· 자산취득비(430-01)	11,826	11,826	11,824	-	1	10,251	10,251	6,129	10,251	6,129	-	-	7,376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36,847	36,547	35,878	-	669	37,266	37,266	20,244	37,266	20,244	-	-	33,308
· 전자감독·신상정보 등록 전담인력 운영	10,082	9,778	9,248	-	530	11,212	11,212	5,788	11,212	5,788	-	-	11,906
-상용임금(110-03)	8,353	8,353	7,989	-	364	9,279	9,279	5,073	9,279	5,073	-	-	9,817
-복리후생비(210-12)	96	92	75	-	17	96	96	57	96	57	-	-	115
-고용부담금(320-09)	1,633	1,333	1,184	-	149	1,837	1,837	658	1,837	658	-	-	1,974
· 전자감독·신상정보 등록 운영	6,886	7,507	7,497	-	10	7,510	7,510	4,003	7,510	4,003	-	-	7,919

	2025					2026(2026.7월말)							2027 예산안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일반수용비(210-01)	1,716	2,013	2,012	-	1	1,716	1,716	928	1,716	928	-	-	1,716
-공공요금 및 제세(210-02)	3,953	4,142	4,142	-	-	4,015	4,015	2,444	4,015	2,444	-	-	4,267
-피복비(210-03)	275	275	275	-	-	661	661	55	661	55	-	-	661
-임차료(210-07)	90	91	91	-	-	90	90	53	90	53	-	-	396
-유류비(210-08)	143	231	231	-	-	143	143	103	143	103	-	-	143
-시설장비유지비(210-09)	279	325	325	-	-	315	315	123	315	123	-	-	115
-특정업무경비(250-03)	351	351	342	-	9	491	491	288	491	288	-	-	542
-정책연구비(260-02)	40	40	40	-	-	40	40	-	40	-	-	-	40
-구호 및 교정비(320-06)	39	39	39	-	-	39	39	9	39	9	-	-	39
·장치 및 장비 관리	19,201	18,584	18,456	-	127	17,865	17,865	10,157	17,865	10,157	-	-	12,804
-관리용역비(210-15)	6,945	6,328	6,243	-	85	6,851	6,851	4,028	6,851	4,028	-	-	4,365
-일반연구비(260-01)	430	430	389	-	41	763	763	-	763	-	-	-	1,063
-자산취득비(430-01)	11,826	11,826	11,824	-	1	10,251	10,251	6,129	10,251	6,129	-	-	7,376
·사업지원경비	679	679	678	-	1	679	679	294	679	294	-	-	679
-국내여비(220-01)	613	613	612	-	1	613	613	246	613	246	-	-	613
-국외업무여비(220-02)	27	27	27	-	-	27	27	27	27	27	-	-	27
-사업추진비(240-01)	39	39	39	-	-	39	39	21	39	21	-	-	39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전자감독·신상정보등록 전담인력 운영)** 전자감독 범죄예방팀 운영을 위한 신속대응 요원과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을 위한 전담인력(공무직)의 보수, 고용부담금 등 인건비성 경비 지원

- **(전자감독·신상정보등록 운영)** 전자감독대상자의 재범방지를 위한 심리치료, 약물치료, 프로그램 운영 및 공공요금, 유류비 등 기관 운영경비 지원

- **(장치 및 장비 개선)** 전자감독대상자의 24시간 위치추적에 필요한 장치 및 장비 운영 소요경비 지원

- **(사업지원경비)** 여비, 사업추진비 등 전자감독·신상정보등록 업무 지원 소요경비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② 추진경위

- ’07. 4.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및 공포
- ’08. 5.「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개정안 국회 통과(’08. 9. 1. 시행)
- ’08. 9. 박민식 의원 등 31명의 의원이「상습적 아동 성폭력범의 예방 및 치료에 관한 법률안」발의
- ’10. 3.「특정 범죄자 위치추적법」개정안 국회 통과(’10. 7. 16. 시행)
  ※ 법률개정으로 살인범 확대, 최근 3년간 소급적용, 부착기간 10년 → 30년 확대 실시
- ’10. 7.「성폭력 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공포(’11. 7. 24 시행)
- ’11. 4. 성인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제도 도입
- ’12. 11. 법명을「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여 개정안 국회 통과
- ’13. 6. 신상정보 등록 업무 법무부로 일원화(공개・고지 업무는 여가부로 일원화) 및 3년 이내(’08. 4. 16. ~ ’11. 4. 15.) 성폭력범죄자 소급 적용
- ’13. 6. 특정 범죄자에 대한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제도’ 시행
- ’14. 6. 전자감독 부착 대상 강도죄 추가
- ’18. 1. 개정「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시행
  ※ 성충동 약물치료 집행 재심사 절차 마련, 약물치료 대상범죄에 아동·청소년 살인·치사죄 등 추가
- ’18. 10. ‘일체형 전자발찌’ 본격 운영
- ’19. 4. 19세 미만 대상 성폭력 전자감독 대상자 ‘1:1 전담 보호관찰’ 시행
- ’20. 8. 일반 가석방 및 보석 허가자에 대한 전자감독 제도 시행
- ’21. 6. 피부착자의「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위반 범죄에 대한 특별 사법경찰제도 도입
- ’23. 10. 스토킹범죄자에 대한 전자감독 제도 시행
- ’24. 01.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 실시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단위: 백만원)

연도	2023	2024	2025	2026	2027(안)
사업비	30,677	32,427	36,847	37,226	33,308

- 기타 :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58개 보호관찰 기관, 2개 위치추적관제센터
- 사업 수혜자 : 전자장치 피부착자 및 일반 국민
-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7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

① 전자감독·신상정보 등록 전담인력 운영

: (2026 본예산) 11,212백만원 → (2027 요구) 11,906백만원, 694백만원 증액

- (요구) 공무직 수당 신설 및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한 처우개선분 증액 요구
- (산출) 공무직 처우개선에 따라 상용임금 및 복리후생비 557백만원 증액
  상용임금 상승분을 반영한 고용부담금 137백만원 증액

ㅇ 2026년도 예산 및 2027년도 예산안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6년 본예산		2027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1,212	○ **상용임금(110-03) : 9,279백만원** 가. 전자감독 공무직 ・ 167명×4,205천원×12월 = 8,427백만원 나. 신상정보등록 공무직 ・ 24명×2,959천원×12월 = 852백만원	11,906	○ **상용임금(110-03) : 9,817백만원** 가. 전자감독 공무직 ・ 167명×4,434천원×12월 = 8,887백만원 나. 신상정보등록 공무직 ・ 24명×3,229천원×12월 = 930백만원
	○ **복리후생비(210-12) : 96백만원** 가. 전자감독 및 신상정보등록 공무직 96백만원 ・ 191명×500천원 = 96백만원		○ **복리후생비(210-12) : 115백만원** 가. 전자감독 및 신상정보등록 공무직 115백만원 ・ 191명×600천원 = 115백만원
	○ **고용부담금(320-09) : 1,837백만원** 가. 보험료 및 퇴직금 등 1,837백만원		○ **고용부담금(320-09) : 1,974백만원** 가. 보험료 및 퇴직금 등 1,974백만원

② 전자감독·신상정보 등록 운영

: (2026 본예산) 7,510백만원 → (2027 요구) 7,919백만원, 409백만원 증액

- (요구) 가석방 전자감독 확대 등 전자감독 업무 확대 운영을 위한 증액 요구
- (산출) 가석방 전자감독 및 1:1 전자감독 확대 운영에 따른 공공요금 등 558백만원 증액
  전자감독 현장인력 직제정원 증원에 따른 전자감독활동비 51백만원 증액
  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 시설 및 장비 등 보수 200백만원 감액

ㅇ 2026년도 예산 및 2027년도 예산안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6년 본예산		2027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7,510	○ **일반수용비(210-01) : 1,716백만원** 가. 직원 교육비 등 577백만원	7,919	○ **일반수용비(210-01) : 1,716백만원** 가. 직원 교육비 등 577백만원

2026년 본예산		2027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나. 전자감독 대상자 심리치료비 ・1,312명×70천원×12월 = 1,102백만원 ・149명×82,774원×3월 = 37백만원		나. 전자감독 대상자 심리치료비 ・1,312명×70천원×12월 = 1,102백만원 ・149명×82,774원×3월 = 37백만원
	○ **공공요금 및 제세(210-02) : 4,015백만원** 가. 전자장치 등 통신료 ・5,729대×33,451원×12월 = 2,300백만원 나. 각종 전기료 및 통신료, 우편료 등 ・60기관×2,381천원×12월 = 1,715백만원		○ **공공요금 및 제세(210-02) : 4,267백만원** 가. 전자장치 등 통신료 ・6,357대×33,451원×12월 = 2,552백만원 나. 각종 전기료 및 통신료, 우편료 등 ・60기관×2,381천원×12월 = 1,715백만원
	○ **피복비(210-03) : 661백만원** 가. 보호관찰소 및 위치추적관제센터 ・694명×476천원×2회 = 691백만원		○ **피복비(210-03) : 661백만원** 가. 보호관찰소 및 위치추적관제센터 ・694명×476천원×2회 = 691백만원
	○ **임차료(210-07) : 90백만원** 가. 전자발찌 대상자 현장감독 차량 ・9대×10,000천원= 90백만원		○ **임차료(210-07) : 396백만원** 가. 전자발찌 대상자 현장감독 차량 ・30대×13,200천원= 396백만원
	○ **유류비(210-08) : 143백만원**		○ **유류비(210-08) : 143백만원**
	○ **시설장비유지비(210-09) : 315백만원**		○ **시설장비유지비(210-09) : 115백만원**
	가. 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 시설 및 장비 등 보수 315백만원		가. 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 시설 및 장비 등 보수 115백만원
	○ **특정업무경비(250-03) : 491백만원** 가. 보호관찰소 및 위치추적관제센터 직원 ・585명×70천원×12월 = 491백만원		○ **특정업무경비(250-03) : 542백만원** 가. 보호관찰소 및 위치추적관제센터 직원 ・645명×70천원×12월 = 542백만원
	○ **정책연구비(260-02) : 40백만원** 가. 전자감독 대상자 재범 억제 방안 등 ・2과제×20,000천원 = 40백만원		○ **정책연구비(260-02) : 40백만원** 가. 전자감독 대상자 재범 억제 방안 등 ・2과제×20,000천원 = 40백만원
	○ **구호 및 교정비(320-06) : 39백만원**		○ **구호 및 교정비(320-06) : 39백만원**

③ 장치 및 장비 관리

: (2026 본예산) 17,865백만원 → (2027 요구) 12,804백만원, 5,061백만원 감액

- (요구) 전자감독시스템운영 사업 분리·개편 및 전자장치 제작·관리 예산 전년 수준 요구
- (산출) 성범죄 디지털분석센터 유지보수 및 전자장치 개선 등 349백만원 증액
  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 운영을 위한 물품 및 장비 구입 등 1,873백만원 감액
  전자감독시스템운영 유지보수 및 노후장비 교체 등 3,537백만원 감액

ㅇ 2026년도 예산 및 2027년도 예산안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6년 본예산		2027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7,865	○ **관리용역비(210-15) : 6,851백만원** 가. 관제센터 유지보수 39백만원 나. 전자감독시스템 유지보수 2,535백만원 다. 전자감독장치 등 유지보수 4,241백만원 라. 성범죄 디지털분석센터 유지보수 36백만원	12,804	○ **관리용역비(210-15) : 4,365백만원** 가. 관제센터 유지보수 39백만원 나. 전자감독장치 등 유지보수 4,241백만원 다. 성범죄 디지털분석센터 유지보수 85백만원
	○ **일반연구비(260-01) : 763백만원** 가. 위치추적시스템 프로그램 보완 등 763백만원		○ **일반연구비(260-01) : 1,063백만원** 가. 전자장치 등 개선 및 보완 1,063백만원
	○ **자산취득비(430-01) : 10,251백만원** 가. 전자감독 장치 구입		○ **자산취득비(430-01) : 7,376백만원** 가. 전자감독 장치 구입

2026년 본예산		2027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 2,420세트×1,972천원 = 4,774백만원 나. 전자감독 관련 장비 및 기기 제작 및 교체 = 2,932백만원 다. 1:1 전자감독 및 특별사법경찰관제도 지원 등= 1,543백만원 라. 위치추적 시스템 하드웨어 교체 등 = 1,002백만원		・ 2,150세트×1,972천원 = 4,239백만원 나. 전자감독 관련 장비 및 기기 제작 및 교체 = 2,932백만원 다. 1:1 전자감독 및 특별사법경찰관제도 지원 등= 205백만원

④ 사업지원경비

: (2026 본예산) 679백만원 → (2027 요구) 679백만원, 전년동

- (요구) 전자감독 업무지원 경비 전년 수준 요구

ㅇ 2026년도 예산 및 2027년도 예산안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6년 본예산		2027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679	○ **국내여비(220-01) : 613백만원** 가. 보호관찰소 및 위치추적관제센터 ・ 60기관×851천원×12월 = 613백만원	679	○ **국내여비(220-01) : 613백만원** 가. 보호관찰소 및 위치추적관제센터 ・ 60기관×851천원×12월 = 613백만원
	○ **국외여비(220-02) : 27백만원** 가. 국제 보호관찰 학회 등 참석 ・ 2회×13,703천원 = 27백만원		○ **국외여비(220-02) : 27백만원** 가. 주요국가 전자감독제도 정보수집 및 기관 방문 등 ・ 2회×13,703천원 = 27백만원
	○ **사업추진비(240-01) : 39백만원** 가. 보호관찰소 및 위치추적관제센터 ・60기관×655천원 = 39백만원		○ **사업추진비(240-01) : 39백만원** 가. 보호관찰소 및 위치추적관제센터 ・60기관×655천원 = 39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3~2027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 전자감독 실시인원

2022	전자감독 실시인원 7,893명(특정범죄 재범자 45명, 0.99%)
2023	전자감독 실시인원 6,820명(특정범죄 재범자 49명, 1.09%)
2024	전자감독 실시인원 6,574명(특정범죄 재범자 43명, 1.00%)
2025	전자감독 실시인원 7,454명(특정범죄 재범자 41명, 0.94%)

- 성폭력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2022	판결문 접수 15,435명(등록 : 116,434명, 공개 : 6,288명, 고지 : 6,050명) ※ 연간 총 222,465건 신상정보 여성가족부·경찰에 전송, 직권등록통보 3,636건
2023	판결문 접수 16,431건(등록 : 126,789건, 공개 : 6,147건, 고지 : 5,931건) ※ 연간 총 251,783건 신상정보 여성가족부·경찰에 전송, 직권등록통보 3,467건
2024	판결문 접수 16,659건(등록 : 128,116건, 공개 : 6,035건, 고지 : 5,856건) ※ 연간 총 296,924건 신상정보 여성가족부·경찰에 전송, 직권등록통보 3,172건
2025	판결문 접수 건(등록 : 139,346건, 공개 : 5,856건, 고지 : 5,708건) ※ 연간 총 271,583건 신상정보 성평등가족부·경찰에 전송, 직권등록통보 2,686건

- 성폭력범죄자 약물 치료

2022	· 약물치료 실시인원 42명
2023	· 약물치료 실시인원 35명
2024	· 약물치료 실시인원 44명
2025	· 약물치료 실시인원 42명

③ 향후(2027년도 이후) 기대효과

- 1:1 전자감독 대상자 관리감독 강화 등 실효성 있는 재범방지 대책을 지속 실시하여 특정범죄 재범 억제 등으로 국민 안전 보호

  ※ 특정범죄 재범률 : 2022년 0.99% → 2023년 1.09% → 2024년 1.0% → 2025년 0.94%

- 정기적 심리치료 전문가 사례회의 실시, 치료기법 공유, 매뉴얼 개발 등을 통해 전자감독 심리치료 효과성 향상으로 전자감독 대상자의 근원적인 성행 개선 및 사회 적응력 제고

  ※ 2025. 8. 심리치료 유형별 사례집 발간, 2026. 7. 스토킹 전문 심리치료 프로그램 개발

- 디지털분석 전문가를 양성하고 자체 디지털분석센터를 운영하여 늘어나는 디지털분석 준수사항 점검 수요에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채팅앱 등 SNS를 이용한 미성년자 유인형 성범죄를 효과적으로 차단

- '훼손 고위험군' 지정 및 관리감독 강화, 훼손 방지 성능이 대폭 향상된 강화형 전자장치 보급 확대를 통해 전자장치 훼손 사건 감소 추세 유지

  ※ 훼손 사건 : 2022년 11건 → 2023년 9건 → 2024년 3건 → 2025년 5건

- 보호관찰소·경찰 모의훈련 강화, 수사실무 교육 등 수사역량 강화를 통해 전자장치 훼손 등 긴급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

  ※ 훼손 사건 평균 검거 시간 단축(2023년 약 27시간 → 2025년 약 9시간)

- 전자장치 부착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할 경우 피해자가 스마트폰 지도 화면에서 가해자의 위치와 동선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 확보

  ※「전자장치부착법」을 개정하여 법적 근거 마련(2025. 12.) → 개정 법률 시행(2026. 6. 24.)

  ※ 피해자가 모바일 앱 지도를 통해 가해자의 실제 위치를 확인 가능한 전용 모바일앱 보급(2026. 6.)

- 전자감독 대상자가 스토킹으로 전자장치 부착(3호의2) 없이 접근금지(2호) 잠정조치만 부과받은 경우에도 피해자 정보 등을 법무부-경찰청 간 자동 공유하고 대상자 접근 시 합동 대응하는 공동보호체계를 구축하여 적극적인 피해자 보호조치 실행(2026. 7.)

- 법무부·경찰청 간 정기적인 업무협의 및 모의훈련 실시를 통한 협력체계 강화 및 시스템 개선으로 전자장치 부착 스토킹 잠정조치의 효과성 제고

  ※ 제도 시행 후 총 1,044건 접수 2026. 7. 31. 기준 현재 352건 집행 중, 피해사례 0건

- 현장 출동 경찰이 잠정조치 부착 대상자와 피해자의 실시간 위치이동을 지도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위치추적시스템과 112시스템을 연계하여 보다 신속한 대응이 가능한 협업 체계 마련

  ※ 법무부-경찰청 연계 시스템 구축(2026. 12. 예정)

- 신상 공개·고지 전자감독* 및 보호관찰** 대상자 등 고위험군의 **등록정보**를 매월 **점검**하여 불일치 정보의 **직권정정** 및 **현행화**를 통해 오(誤) 정보 공개 가능성에 적극 대응 → 수사기관이나 일반인(지역주민)에게 제공하여 범인 검거나 국민 불안 감소 → 범죄예방의 효율성 제고 효과

* **(전자감독 대상자)** 주거지 정보가 오정보(오기, 착오, 누락, 허위 등)로 판단될 경우, 법무부 직권으로 정정 : 2021.~2026. 7. → 1,652건 **직권정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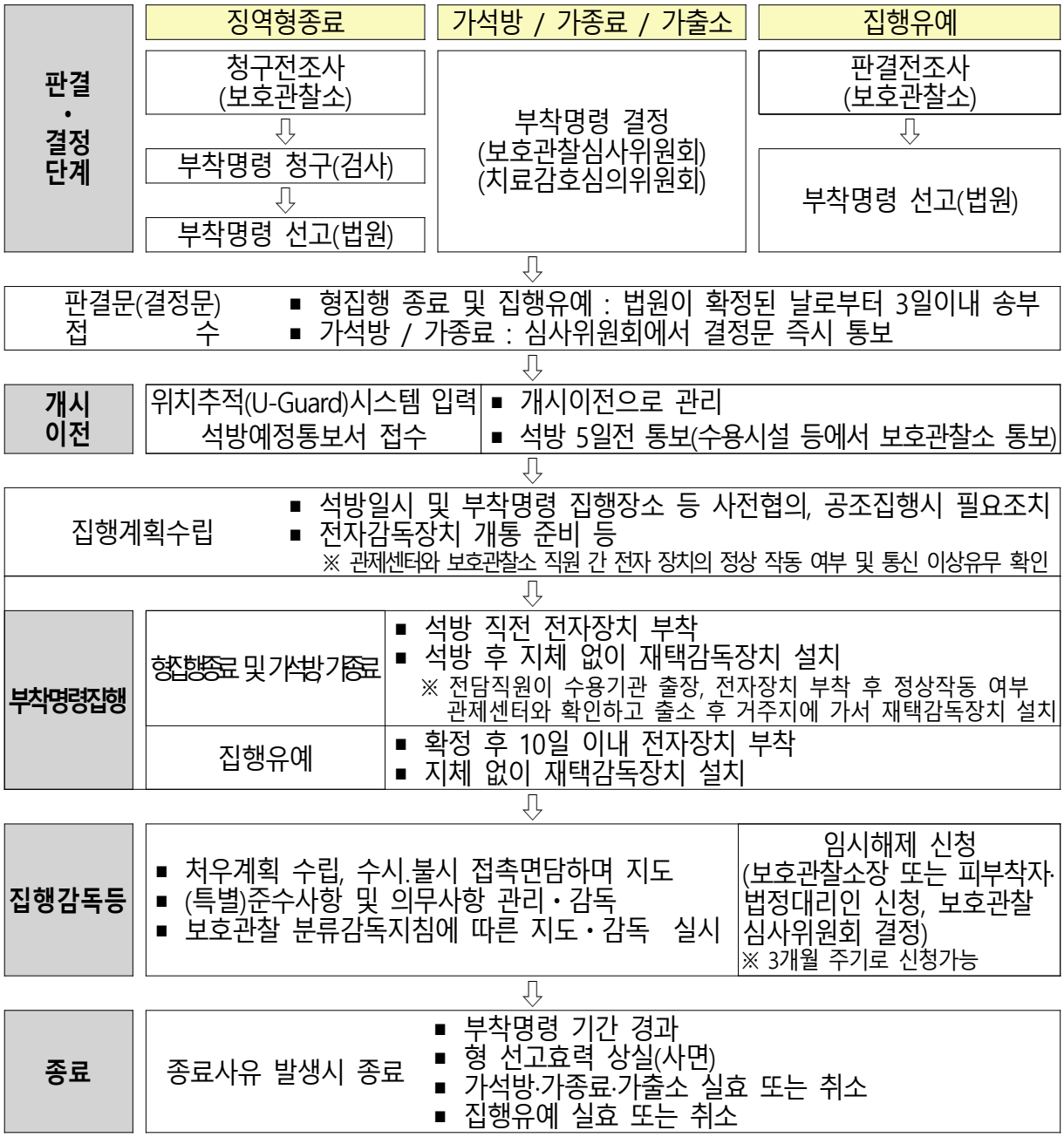
** **(보호관찰 대상자)** 관할 경찰서에 제출한 거주지 정보와 보호관찰소에 보고한 거주지 정보 불일치 경우, 경찰·보호관찰소에 진위확인 및 현행화 협조 요청 : 2026. 5. 시행 → 38건 **현행화**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전자감독



-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

❶ 법원의 성범죄 유죄 판결	→	❷ 법무부장관에게 판결문 송달	→	❸ 등록대상자의 신상정보 제출
성범죄로 유죄판결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됨 (별도의 판결 불요)		법원은 판결 확정 후 14일 이내에 고지사항과 판결문 등본을 법무부 장관에게 송달		등록기간 경과 후 30일 이내에 경찰관서장에게 제출 (변경정보는 20일 이내 제출, 사진은 1년마다 촬영)

❹ 법무부장관에게 신상정보 송달	→	❺ 법무부장관의 신상정보 등록	→	❻ 법무부장관의 신상정보 관리 및 활용
경찰관서장은 제출받은 신상정보를 지체없이 법무부장관에게 송달		신상정보 등록 후 등록대상자에게 등록정보 및 등록일자 통지		수사활용을 위해 경찰서·검사 등에 배포가능, 공개·고지 대상자의 신상정보는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송부 각 등록기간(10~30년)에 따라 보존 후 종료되면 즉시 폐기

- 성범죄자 성충동 약물치료

【징역형 또는 치료감호 병과자에 대한 약물치료 명령 절차】

❶ 검사의 치료명령 청구	→	❷ 법원의 치료명령 판결	→	❸ 보호관찰관의 치료명령 집행
청구 전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 또는 감정 필요 재범위험성에 대한 청구전조사 요청 가능		15년 범위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치료명령 ※ 대상자의 동의 불요 ※ 치료기간 동안 의무적 보호관찰 실시		석방 2개월 전부터 집행개시 (치료개시 6개월 후 가해제 신청 가능)

【수형자에 대한 약물치료 명령 절차】

❶ 검사의 치료명령 청구	→	❷ 법원의 치료명령 결정	→	❸ 보호관찰관의 치료명령 집행
법 시행 전 형이 확정되었거나 법 시행 후 치료명령이 선고되지 않은 사람 ※ 형법상 가석방 요건을 갖추고 동의한 자에 한정 검사는 필요적 감정 또는 진단을 거쳐 법원에 치료명령 청구		15년 범위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치료명령 결정		석방 2개월 전부터 집행개시 (치료개시 6개월 후 가해제 신청 가능)

【가종료자·가출소자에 대한 약물치료 명령 절차】

❶ 감정과 진단	→	❷ 치료명령 결정	→	❸ 치료명령 집행
치료감호 집행 중 가종료되거나, 보호감호 집행 중 가출소되는 사람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 또는 감정 결과를 반드시 참작		치료감호심의위원회에서 보호관찰기간(3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치료명령을 결정 ※ 대상자 동의 불요		석방 2개월 전부터 집행개시 (치료개시 6개월 후 가해제 신청 가능)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25~2029	37,266	33,379	29,647	28,941	27,882	
2026~2030		33,379	42,390	43,661	44,971	46,320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25회계연도 예산 국회 시정요구 사항>

▪ (지적사항) 위치추적 전자장치 보유수량이 과다한 경우 제작 관리 비용 및 폐기 비용 확대 등 예산 비효율적 집행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적정 수량 산정을 위한 체계적인 기준 마련 필요

▪ (후속조치) 부착인원, 재처리 수량, 기관 예비 보유 수량 등을 고려하여 '24. 12. 전자장치 수량 관리 구체적 기준 마련하여 운영 중임, 향후 전자장치 수량 관리 기준에 따라 적정 수량이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전자감독

· 출소 전부터 사전접견을 통해 범죄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반영한 준수사항을 추가하는 등 선제적으로 관리, 출소 후 고위험군 전담제, 1:1 전자감독 등 높은 수준의 밀착 관리·감독 등 실효성 높은 재범방지 대책을 지속 실시

· 전자감독 심리치료 표준 매뉴얼, 사례집 제작·활용 및 정기적 사례회의를 통한 전자감독 심리치료 전담직원 전문성 향상을 통한 전자감독 심리치료 강화

· 디지털분석 전문가 양성 등 디지털분석 역량 강화를 통해 채팅앱, SNS 등을 이용한 유인형 성범죄를 효과적으로 차단

· 기존 장치보다 크기와 무게는 증가하지 않으면서도 훼손이 어렵도록 성능이 개선된 전자장치 제작 및 보급

· 관제센터와 지자체, 보호관찰소 CCTV 연계 지속 추진 등 전자장치 훼손과 같은 긴급상황 대응력 강화

· 전자감독 수사팀의 지속적인 수사역량 제고 등 수사 대응체계 강화, 경찰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 강화, 훼손 고위험자에 대해서는 '강화형 전자장치' 부착을 확대하여 전자감독대상자의 강력범죄 사전 차단

· 전자장치 부착 스토킹 잠정조치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경찰과 지속적으로 협력체계 강화, 시스템 보완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해 노력

※ 정기적 협의회·합동 모의훈련 실시('26. 4.), 법무부·경찰청 시스템 연계('26. 12. 예정)

· 스토킹 범죄로 인한 살인 등 강력범죄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수사기관 등에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 적극 활용할 것을 요청하는 등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 확대를 통해 스토킹 피해자 실효적 보호

· '가해자 위치정보 피해자 알림 제도' 시행 및 법무부·경찰 접근금지(2호) 공동보호 체계 구축을 통해 스토킹 등 강력범죄에 대응하여 사각지대는 없애고 지원은 넓히는 범죄 피해자 보호 체계 구축

-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등록·관리하여 성범죄자의 재범 방지 및 국민 불안 해소

· 등록정보에 대한 정기점검, 직권정정 등을 통해 오(誤)정보 공개 가능성에 적극 대응 관리하여 사회 안전망 강화

- 성충동 약물치료

· 전담보호관찰관 지정을 통한 집중적인 지도·감독 및 피치료자에 대한 심리치료 확대 등 체계적 관리로 지역사회 범죄 예방 및 피치료자의 성공적인 사회 내 정착 도모

· 약물치료 집행 관련 전문가(보호관찰관, 의료진, 심리치료사, 심리생리분석관 등) 간 주기적인 정보공유를 통한 각종 부작용 방지 등 효과적인 성충동 약물치료 방안 모색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24년도 재난안전사업 평가 결과 : 보통
- '25년도 재난안전사업 평가 결과 : 우수
  ※ 2024년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사업 평가 결과 '전자감독' 사업 모범사업(23개 부처, 293개 사업 중 6개 사업) 으로 선정
- '26년도 재난안전사업 평가 결과 : 면제

12) 동 사업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 : 해당없음

13) 2026년도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 결과 및 후속 조치 현황

평가결과	성과평가 주요내용	조치결과
사업개선	(사업내용 적정성) 내역사업 구분에 대한 체계적 검토를 통한 사업 내용 적정성 확보 필요 (지원규모 적정성) 대상자 범위 확대는 확인되나 예산 증가 수준이 높은 편으로 지원규모 적정화 노력 필요 (집행 적정성) 지속적인 인건비 불용에 대한 관리 필요	(예산 구조 개편 등) 사업 내 정보화사업체계 개편 및 내역사업에 대한 재검토 추진 (지원규모 적정성 제고) 우선순위를 검토한 예산 구조조정 및 지도감독 강화로 지원규모 적정성 확보 (집행 적정성 확보) 처우개선 노력을 통한 공무직 퇴직 비율 감소 노력

14) 부처 건의사항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3	30,677	-	30,677	-	-	-	30,677	28,783	93.8	93.8	955	939
2024	32,427	-	32,427	955	-	-	33,382	32,545	100.3	97.5	-	957
2025	36,847	-	36,847	-	△300	-	36,547	35,878	97.3	98.2	-	669
2026	37,266	-	37,266	-	-	-	37,266	20,244	54.3	54.3	-	-

2) 주요 결산사항

□ 2023~2026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3	- 전용 : 전자발찌 잠금장치 강화 개발 연구비로 185백만원 전용 - 이월 : 고위험자용 전자발찌 시험 운영 및 오류 수정 등으로 제작 예산 955백만원 이월 - 불용 : 상용임금 및 고용부담금 등 546, 일반연구비 및 관리용역비 낙찰차액 378 등 집행 잔액 938백만원
2024	- 전용 : 전자장치 기능 개선 연구로 250백만원 전용,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 인식조사 관련 20백만원 전용, 공공요금 부족에 따른 120백만원 전용 - 불용 : 상용임금 및 고용부담금 등 759, 일반연구비 및 관리용역비 낙찰차액 189 등 집행 잔액 957백만원
2025	- 전용 : 교정기관 공공요금 및 제세 부족으로 인한 300백만원 전용 - 불용 : 상용임금 및 고용부담금 등 530, 일반연구비 및 관리용역비 낙찰차액 126 등 집행 잔액 669백만원
2026	-

□ 2026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

□ 2026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 해당없음

사 업 명
전자감독시스템운영(정보화) (1635-303)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일반회계	020	022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600	1635	303
명칭	범죄예방활동	보호관찰	전자감독시스템운영(정보화)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6예산 시 소관
	O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전자감독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범죄예방정책국	오상섭	원학재	주영광
		범죄예방기획과	02-2110-3570	02-2110-3574	02-2110-3577
	사업시행주체	법무부	-	-	-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년 결산	2026년 예산		2027년		증감	
		본예산(A)	추경	요구안	조정안(B)	(B-A)	(B-A)/A
전자감독시스템운영(정보화)	-	-	-	3,887	3,887	-	-

※ 2027년 예산안부터 정보화 내역사업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해 전자감독(1635-301) 사업에서 전자감독시스템운영(정보화) 세부사업으로 분리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25					2026(2026.7월말)							2027 예산안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	-	-	-	-	-	-	-	-	-	-	-	3,887
· 시스템 유지관리	-	-	-	-	-	-	-	-	-	-	-	-	2,535
· 공공요금	-	-	-	-	-	-	-	-	-	-	-	-	350
· 장비 구입	-	-	-	-	-	-	-	-	-	-	-	-	1,002
○ 비목별 분류(합계)	-	-	-	-	-	-	-	-	-	-	-	-	3,887
· 공공요금 및 제세(210-02)	-	-	-	-	-	-	-	-	-	-	-	-	350
· 관리용역비(210-15)	-	-	-	-	-	-	-	-	-	-	-	-	2,535
· 자산취득비(430-01)	-	-	-	-	-	-	-	-	-	-	-	-	1,002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	-	-	-	-	-	-	-	-	-	-	-	3,887
· 시스템 유지관리	-	-	-	-	-	-	-	-	-	-	-	-	2,535
· 관리용역비(210-15)	-	-	-	-	-	-	-	-	-	-	-	-	2,535
· 공공요금	-	-	-	-	-	-	-	-	-	-	-	-	350
-공공요금 및 제세(210-02)	-	-	-	-	-	-	-	-	-	-	-	-	350
· 장비 구입	-	-	-	-	-	-	-	-	-	-	-	-	1,002
-자산취득비(430-01)	-	-	-	-	-	-	-	-	-	-	-	-	1,002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시스템 유지관리)** 위치추적시스템 운영 및 장애 대응 등을 위한 유지보수 사업 지원
- **(공공요금)** 전용회선(CCTV 및 온라인 백업용 등), MMS(경찰청연계) 등 공공요금 지원
- **(장비 구입)** 강력범죄지도 등 위치추적시스템에 필요한 정기적 라이선스 구입, 지자체 CCTV 연계 확장을 위한 장비 구입 등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국가정보화기본법 제14조(공공지능정보화의 추진) 제1항
- 전자정부법 제16조(전자정부서비스 개발·제공) 제1항
- 전자장치부착법 제16조의3(위치추적 관제센터의 설치·운영 등) 제1항
-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5조(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의 수립 등) 제1항
-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8조(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 등) 제1항

② 추진경위

- '07. 4.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및 공포
- '08. 5.「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개정안 국회 통과('08. 9. 1. 시행)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단위: 백만원)

연도	2023	2024	2025	2026	2027(안)
사업비	-	-	-	-	3,887

- 기타 :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위치추적관제센터
- 사업 수혜자 : 전자장치 피부착자 및 일반 국민
-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7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

① 시스템 유지관리

: (2026 본예산) - → (2027 요구) 2,535백만원

- (요구) 위치추적시스템 유지관리 예산 분리 요구

○ 2026년도 예산 및 2027년도 예산안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6년 본예산		2027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	-	2,535	○ **관리용역비(210-15) : 2,535백만원** 가. 상용 S/W 유지보수 627백만원 나. H/W 유지보수 340백만원 다. 개발 S/W 유지보수 1,568백만원

② **공공요금**

: (2026 본예산) - → (2027 요구) 350백만원

- (요구) 시스템 운영을 위한 공공요금 예산 분리 요구

ㅇ 2026년도 예산 및 2027년도 예산안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6년 본예산		2027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	-	350	○ **공공요금 및 제세(210-02) : 350백만원**
	-		가. CCTV 및 온라인 백업용, MMS(경찰청 연계) 등 350백만원

③ **장비 구입**

: (2026 본예산) - → (2027 요구) 1,002백만원

- (요구) 강력범죄지도 라이선스 구입, CCTV 연계 장비 구입, 노후장비 교체 예산 분리 요구

ㅇ 2026년도 예산 및 2027년도 예산안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6년 본예산		2027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	-	1,002	○ **자산취득비(430-01) : 1,002백만원**
	-		가. 강력범죄지도 라이선스 구입 275백만원
	-		나. CCTV 연계 장비 구입 198백만원
	-		다. 노후장비 교체 529백만원

4) 사업효과 : 해당없음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25~2029	-	-	3,887	3,887	3,887	
2026~2030		-	4,003	4,123	4,236	4,373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해당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해당없음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2) 동 사업에 대한 부처 자체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3) 2026년도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 결과 및 후속 조치 현황 : 해당없음

14) 부처 건의사항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 해당없음

2) 주요 결산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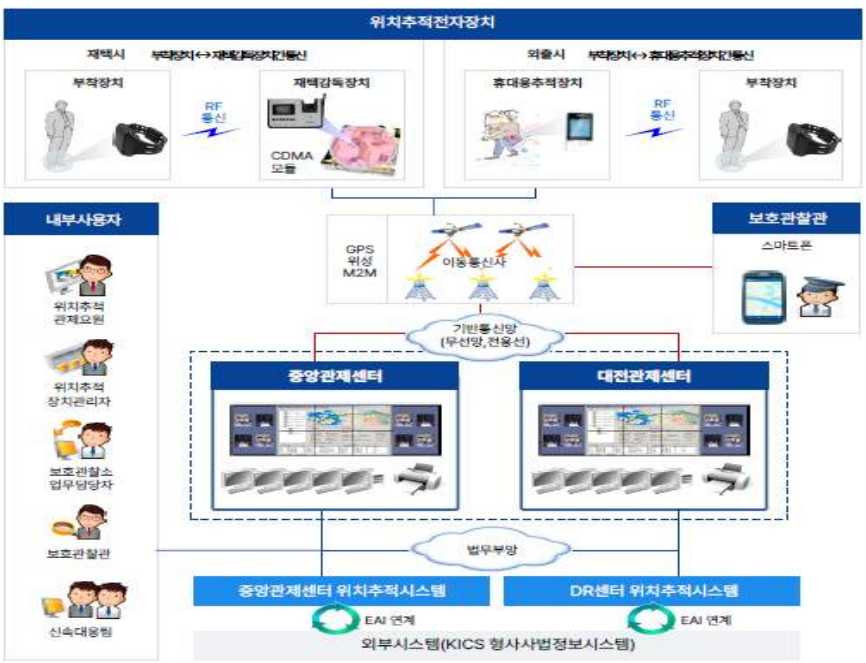
□ 2023~2026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 해당없음

□ 2026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

□ 2026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전자감독시스템 구성도



사 업 명
법질서 준수 및 법교육 활동 (1636-304)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일반회계	020	022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600	1636	304
명칭	범죄예방활동	법질서 준수 및 법교육	법질서 준수 및 법교육 활동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6예산 시 소관
	O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법질서 준수 및 법교육 활동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범죄예방정책국	오상섭	원학재	주영광
		범죄예방기획과	02-2110-3570	02-2110-3574	02-2110-3577
	사업시행주체	법무부	-	-	-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년 결산	2026년 예산		2027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요구안	조정안(B)		(B-A)/A
법질서 준수 및 법교육활동	6,149	5,678	5,678	5,670	5,670	△8	△0.1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25					2026(2026.7월말)							2027 예산안
	예산액(추경)	예산현액	집행액[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현액	집행액[실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예상액	불용예상액	
									예산현액	집행액[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6,277	6,265	6,149	-	116	5,678	5,678	2,976	5,678	2,976	-	-	5,670
· 법질서 실천 운동 및 법교육 활동	4,783	4,753	4,669	-	85	4,782	4,773	2,452	4,773	2,452	-	-	4,744
· 솔로몬로파크 운영	1,369	1,399	1,368	-	31	768	777	435	777	435	-	-	798
· 사업 지원 경비	123	111	111	-	-	127	127	89	127	89	-	-	127
○ 비목별 분류(합계)	6,277	6,265	6,149	-	116	5,678	5,678	2,976	5,678	2,976	-	-	5,670
· 상용임금(110-03)	143	143	139	-	4	164	164	89	164	89	-	-	188
· 일반수용비(210-01)	2,761	2,691	2,687	-	5	2,760	2,666	1,174	2,666	1,174	-	-	2,740
· 공공요금 및 제세(210-02)	336	246	246	-	-	205	214	137	214	137	-	-	205
· 특근매식비(210-05)	27	27	27	-	-	31	31	31	31	31	-	-	31
· 임차료(210-07)	86	86	86	-	-	86	86	27	86	27	-	-	86
· 시설장비유지비(210-09)	201	321	321	-	-	201	201	153	201	153	-	-	201
· 복리후생비(210-12)	3	3	2	-	1	3	3	2	3	2	-	-	3
· 일반용역비(210-14)	1,642	1,682	1,612	-	70	1,642	1,142	758	1,142	758	-	-	1,077
· 관리용역비(210-15)	224	224	214	-	10	224	224	110	224	110	-	-	186
· 국내여비(220-01)	39	27	27	-	-	39	39	9	39	9	-	-	39
· 국외업무여비(220-02)	20	20	20	-	-	20	20	20	20	20	-	-	20
· 사업추진비(240-01)	37	37	37	-	-	37	37	29	37	29	-	-	37
· 일반연구비(260-01)	-	-	-	-	-	-	585	383	585	383	-	-	585
· 정책연구비(260-02)	70	70	70	-	-	70	70	-	70	-	-	-	70
· 구호 및 교정비(320-06)	38	38	25	-	13	30	30	23	30	23	-	-	30
· 고용부담금(320-09)	28	28	15	-	13	32	32	8	32	8	-	-	38
· 공사비(420-03)	447	447	447	-	-	60	60	22	60	22	-	-	60
· 자산취득비(430-01)	173	173	173	-	-	73	73	1	73	1	-	-	73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6,277	6,265	6,149	-	116	5,678	5,678	2,976	5,678	2,976	-	-	5,670
- 법질서 실천 운동 및 법교육 활동	4,783	4,753	4,669	-	85	4,782	4,773	2,452	4,773	2,452	-	-	4,744
· 일반수용비(210-01)	2,761	2,691	2,687	-	5	2,760	2,666	1,174	2,666	1,174	-	-	2,740
· 임차료(210-07)	86	86	86	-	-	86	86	27	86	27	-	-	86
· 일반용역비(210-14)	1,642	1,682	1,612	-	70	1,642	1,142	758	1,142	758	-	-	1,077
· 관리용역비(210-15)	224	224	214	-	10	224	224	110	224	110	-	-	186

	2025					2026(2026.7월말)							2027 예산안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일반연구비(260-01)	-	-	-	-	-	-	585	383	585	383	-	-	585
・정책연구비(260-02)	70	70	70	-	-	70	70	-	70	-	-	-	70
- 솔로몬로파크 운영	1,369	1,399	1,368	-	31	768	777	435	777	435	-	-	798
・상용임금(110-03)	143	143	139	-	4	164	164	89	164	89	-	-	188
・공공요금 및 제세(210-02)	336	246	246	-	-	205	214	137	214	137	-	-	205
・시설장비유지비(210-09)	201	321	321	-	-	201	201	153	201	153	-	-	201
・복리후생비(210-12)	3	3	2	-	1	3	3	2	3	2	-	-	3
・구호 및 교장비(320-06)	38	38	25	-	13	30	30	23	30	23	-	-	30
・고용부담금(320-09)	28	28	15	-	13	32	32	8	32	8	-	-	38
・공사비(420-03)	447	447	447	-	-	60	60	22	60	22	-	-	60
・자산취득비(430-01)	173	173	173	-	-	73	73	1	73	1	-	-	73
- 사업지원경비	123	111	111	-	-	127	127	89	127	89	-	-	127
・특근매식비(210-05)	27	27	27	-	-	31	31	31	31	31	-	-	31
・국내여비(220-01)	39	27	27	-	-	39	39	9	39	9	-	-	39
・국외업무여비(220-02)	20	20	20	-	-	20	20	20	20	20	-	-	20
・사업추진비(240-01)	37	37	37	-	-	37	37	29	37	29	-	-	37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법질서 실천운동 및 법교육 활동)** 법질서가 존중되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한 대국민 캠페인 사업비 및 법교육 출장 강연 등 법교육 운영 경비 지원
- **(솔로몬로파크 운영)** 체험형 법교육 시설인 솔로몬로파크의 전시물 교체, 시설 유지보수, 프로그램 운영 경비 등 지원
- **(사업지원경비)** 직원 매식비, 여비, 업무추진비로 구성된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상적 경비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법교육지원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 법교육지원법 제4조(법교육위원회의 설치 등)
- 법교육지원법 제5조(법문화진흥센터의 지정 등)
- 법교육지원법 제6조(법교육 연구 개발)
- 법교육지원법 제7조(학교 법교육의 지원)
- 법교육지원법 제8조(교원의 연수기회 제공 등)
- 법교육지원법 제9조(사회 법교육의 지원)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② 추진경위

- '07. 7. 법교육 활성화를 위해 '법문화진흥팀' 신설 및 대전청소년비행예방센터(솔로몬로파크)를 법교육 특화기관으로 지정·운영
- '08. 2. '법질서・규제개혁 담당관실' 직제 신설

  ※ 범정부 차원의 법질서 운동에 대한 강력한 추진동력을 확보하고, 역량집중을 위해 6명으로 구성
- '08. 3. 법교육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법교육지원법' 제정·시행
- '11. 9. 범죄예방정책국 법질서선진화과 통합 발족
- '11. 12. 법사랑 사이버랜드 오픈
- '12. 4.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학생자치법정 전국적 확대
- '13. 9. 어린이 로스쿨 실시
- '14. 11. 제1회 중・고생 헌법토론대회 개최
- '14. 11. 제1회 초·중·고 학생자치법정 우수사례 경연대회 개최
- '15. 3. 학생자치법정 1,720개 학교 대상 운영지원 워크숍 개최
- '16. 2. 법무부·국토부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 공동 추진 MOU 체결
- '16. 7. 부산 솔로몬로파크 개관
- '17. 10.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 준공식(전남 광양)
- '20. 3. 꿈꾸는 디케 프로젝트(청소년 법·인권 동아리) 실시
- '20. 9. 법교육 전문강사 인력풀 구성
- '21. 6. 로-티즌 아카데미(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대상) 실시
- '21. 6. 청소년 지도자 대상 법교육 직무연수 실시
- '23. 2. 마약예방교육 실시 및 관련 콘텐츠 제작·배포
- '23. 3. 광주솔로몬로파크 개관
- '23. 12. CPTED 사업 추진 단계별 표준 매뉴얼 개발
- '24. 4. CPTED 사업 온라인 교육 콘텐츠 개발 및 제공
- '25. 10. ~ 12. 학교 헌법교육 확대
- '26. 1. 학교 현장의 헌법교육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교육부-법제처-헌법재판연구원)
- '26. 5. ~ 12. 사회초년생 대상 종합생활법률 출장강연 확대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07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단위: 백만원)

연도	2023	2024	2025	2026	2027(안)
사업비	7,449	6,271	6,277	5,678	5,670

- 기타 :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법무부
- 사업 수혜자 : 유아, 청소년, 성인 등 전 국민
-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7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

① 법질서 실천운동 및 법교육 활동

: (2026 본예산) 4,782백만원 → (2027 요구) 4,744백만원, 38백만원 감액

- (요구) 국회 시정 요구사항을 반영한 비목전환 및 법교육 운영 사업 지원을 위한 전년 수준의 예산 요구
- (산출) 학생자치법교육 비목전환(일반수용비→일반용역비) 20백만원
  범죄예방환경개선 사업 비목전환(일반용역비→일반연구비) 585백만원
  법교육시스템 운영 유지보수비 절감 38백만원 감액

ㅇ 2026년도 예산 및 2027년도 예산안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6년 본예산		2027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4,782	○ **일반수용비(210-01) 2,760백만원** ○ **임차료(210-07) 86백만원** 가. 법교육 대관료 및 행사 차량 임차 등 86백만원 ○ **일반용역비(210-14) 1,642백만원** 가. 강의안 개발 법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829백만원 나. 민간 참여 프로그램 및 시민법률콘서트 개최 등 228백만원 다. 범정부 협업, 범죄예방 맞춤형 컨설팅 585백만원 ○ **관리용역비(210-15) 224백만원** - ○ **정책연구비(260-01) 70백만원**	4,744	○ **일반수용비(210-01) 2,740백만원** ○ **임차료(210-07) 86백만원** 가. 법교육 대관료 및 행사 차량 임차 등 86백만원 ○ **일반용역비(210-14) 1,077백만원** 가. 강의안 개발 법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849백만원 나. 민간 참여 프로그램 및 시민법률콘서트 개최 등 228백만원 ○ **관리용역비(210-15) 186백만원** ○ **일반연구비(260-01) 585백만원** **가**. 범정부 협업, 범죄예방 맞춤형 컨설팅 585백만원 ○ **정책연구비(260-01) 70백만원**

② 솔로몬로파크 운영

: (2026 본예산) 768백만원 → (2027 요구) 798백만원, 30백만원 증액

- (요구) 공무직 임금 처우개선분 증액 요구 및 솔로몬로파크 체험관 운영 전년 수준 요구
- (산출) 청소원 처우개선에 따른 상용임금 등 30백만원 증액

ㅇ 2026년도 예산 및 2027년도 예산안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6년 본예산		2027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768	○ **상용임금(110-03) 164백만원** 가. 공무직 보수 ・ 5명×2,733천원×12월=164백만원 ○ **공공요금 및 제세(210-02) 205백만원** 가. 전기, 통신 가스 등 ・ 3기관×5,694천원× 12월=205백만원 ○ **시설장비유지비(210-09) 201백만원** 가. 체험관 및 연수관 보수 등 109백만원 나. 솔로몬로파크 각종 안전 점검 계약, 경비 수수료, 시설물 유지관리비 92백만원 ○ **복리후생비(210-12) 3백만원** 가. 공무직 맞춤형 복지비 3백만원 ○ **구호 및 교정비(320-06) 30백만원** 가. 연수생 식대 등 30백만원 ○ **고용부담금(320-09) 32백만원** 가. 공무직 보험료 등 32백만원 ○ **공사비(420-03) 60백만원** 가. 솔로몬로파크 개보수 및 전시체험물 교체 60백만원 ○ **자산취득비(430-01) 73백만원** 가. 법교육 필요 기자재 구입 등 40백만원 나. 기획전시물 등 구입 등 33백만원	798	○ **상용임금(110-03) 188백만원** 가. 공무직 보수 ・ 5명×3,133천원×12월=188백만원 ○ **공공요금 및 제세(210-02) 205백만원** 가. 전기, 통신 가스 등 ・ 3기관×5,694천원× 12월=205백만원 ○ **시설장비유지비(210-09) 201백만원** 가. 체험관 및 연수관 보수 등 109백만원 나. 솔로몬로파크 각종 안전 점검 계약, 경비 수수료, 시설물 유지관리비 92백만원 ○ **복리후생비(210-12) 3백만원** 가. 공무직 맞춤형 복지비 3백만원 ○ **구호 및 교정비(320-06) 30백만원** 가. 연수생 식대 등 30백만원 ○ **고용부담금(320-09) 38백만원** 가. 공무직 보험료 등 38백만원 ○ **공사비(420-03) 60백만원** 가. 솔로몬로파크 개보수 및 전시체험물 교체 60백만원 ○ **자산취득비(430-01) 73백만원** 가. 법교육 필요 기자재 구입 등 40백만원 나. 기획전시물 등 구입 등 33백만원

③ 사업지원경비

: (2026 본예산) 127백만원 → (2027 요구) 127백만원, 전년동

- (요구) 법교육·법질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상적 경비 전년 수준 요구

ㅇ 2026년도 예산 및 2027년도 예산안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6년 본예산		2027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27	○ **특근매식비(210-05) 31백만원** ○ **국내여비(220-01) 39백만원** 가. 법질서 유관기관 업무협의 및 출장 강연 등 39백만원 ○ **국외여비(220-02) 20백만원** 가. 법교육 및 범죄예방정책 관련 자료 수집 등 20백만원 ○ **사업추진비(240-01) 37백만원** 가. 법질서 준수 캠페인 및 법교육 업무협의 37백만원	127	○ **특근매식비(210-05) 31백만원** ○ **국내여비(220-01) 39백만원** 가. 법질서 유관기관 업무협의 및 출장 강연 등 39백만원 ○ **국외여비(220-02) 20백만원** 가. 범죄예방 AI 기술 적용 사례 조사 및 소년사법 학술대회 참석 등 20백만원 ○ **사업추진비(240-01) 37백만원** 가. 법질서 준수 캠페인 및 법교육 업무협의 37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3~2027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3	- 법질서 실천운동 캠페인 : 법질서 준수 사회분위기 확산을 위해 대학생 중심 저스티스 서포터스와 사이버 콘텐츠를 업로드한 법교육 홈페이지를 통해 다채로운 법질서 실천운동 적극 추진 · 법질서 홍보팀(저스티스 서포터스) : 35개 팀, 165명 등록 · 사이버콘텐츠 제작 및 배포 : 법교육 포털 플랫폼 '이로운법' 1,428,229명 방문 (법교육 영상 247개, 게임형 법교육 40개, 문서형 법교육 1,051개 등재 중) · 숏츠형 콘텐츠 110편(마약예방 등) 개발 완료 - 청소년이 직접 기획하고 실행하는 법과 인권 체험동아리를 육성하고, 폭력 없는 행복한 학교, 질서와 배려가 있는 교실만들기 등의 사업을 통해 인간 존중의 가치를 중시하는 민주시민 성장 기반 마련 · 꿈꾸는 디케 90팀(1,357명), 학생자치법교육 129개교(1,032명) · 모두가 행복한 교실 242개교 2,077학급(4,840명) · 어린이 로스쿨(80개 센터) 483회(1,115명), 유아법교육 351회(5,156명) - 전국 초·중·고등학교 및 청소년 시설 등 대상 법교육 출장강연 · 마약예방교육 1,495회(74,673명), 아동인권 보장교육 293회(13,405명),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130회(6,629명), 학교폭력 예방교육 675회(26,782명), 사이버 폭력 예방교육 502회(22,529명) - 알기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생활법률 강연을 통해 교육 수요에 대응하고, 생활 속 법치주의 실현 및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법교육 기회를 제공함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및 노동법 및 생활범죄 등 다양한 법률교육 실시 71회(6,221명) - 안정적인 한국사회 정착 지원을 위하여 탈북청소년, 지역아동센터 아동 및 학교밖 청소년 대상 교육 등을 통해 긍정적 법의식 형성을 위한 법교육 실시 · 북한이탈청소년 법교육 155회(818명) · 지역아동센터 법 현장체험 견학 실시(20개 센터)

	- 이민자를 대상으로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기초생활법률 및 법질서 교육 실시 · 이민자 생활법률특강(247회, 6,856명) - '법과 인권' 주제의 체험관 적극 활용하여 대상자별 맞춤형 법교육 기획·운영하고 지자체 및 교육청 등과 협약을 통해 체험객 적극 유치하는 등 신규 개관 광주솔로몬로파크 안정적 운영 · 법체험관 방문객 60,710명, 법연수프로그램 참여 인원 13,320명 - 도심 속 문화 콘서트 개최 등 신규 개관 로파크 홍보 및 주민 친화 사업 추진, 법무 시설 이미지 제고하고 법교육 기회 마련 · 광주솔로몬로파크 문화로(culture-law) 3회 개최, 총 6,407명 참여 - 법교육 기회가 부족한 취약계층 청소년 대상으로 연속성 있는 장기 법연수 실시하고 지역아동센터 및 소외계층 대상 법체험 프로그램 운영하여 취약계층 청소년의 비행 진입 예방, 건강한 성장 지원 · 대전 소재 보육원 초등생 10명(총 32회기), 중·고등학생 10명(총 4회기), 부산지역아동센터 등 190명 실시
2024	- 알기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생활법률 강연을 통해 교육 수요에 대응하고, 생활 속 법치주의 실현 및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법교육 기회를 제공함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및 생활법률 등 다양한 법교육 실시 152회(4,984명) - 전국 초·중·고등학교 및 청소년 시설 등 대상 법교육 출장강연 · 마약예방교육 3,089회(170,779명), 도박예방교육 749회(63,756명) 아동인권 보장 교육 263회(33,263명),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140회(15,317명), 학교폭력 예방 교육 883회(61,452명), 교육활동 침해예방교육 625회(35,240명), 사이버폭력 예방 교육 552회(34,138명), 인권, 기초노동법 및 셉테드 등 115회(4,009명) - 법의날·제헌절 기념 '법페스티벌' 개최하여 지역 체험객 발굴 및 주민 접근성 증진 도모 등 지역사회 법교육 기관 역할 충실 · 3개 로파크 체험객수 212,214명, 법연수 참여자 26,889명, 법페스티벌 4회 실시, 총 14,443명 참여 - 대전 소재 보육원 초등학생 대상 법교육 실시, 취약계층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총 11회기, 연인원 143명) - 청소년이 직접 기획하고 실행하는 법과 인권 체험동아리를 육성하고, 폭력 없는 행복한 학교, 질서와 배려가 있는 교실 만들기 등의 사업을 통해 인간 존중의 가치를 중시하는 민주시민 성장 기반 마련 · 꿈꾸는 디케 90팀 (1,365명), 학생자치법교육 148개교 (1,184명) · 모두가 행복한 교실 235개교 2045학급(4,700명) · 유아법교육 265회(4,386명) - 이민자를 대상으로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기초생활법률 및 법질서 교육 실시 · 이민자 생활법률특강(242회, 7,690명) · 법질서 홍보팀(저스티스 서포터스) : 34개 팀, 151명 등록 · 북한이탈청소년 법교육 203회 1,193명 ('24. 11. 기준) - 2024년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 대상지역 9개 사업지 선정, 주민 의견수렴을 통한 범죄예방 환경개선 설계 및 제공 -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에 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국가 단위의 정책추진을 위한 범죄예방환경개선협의회 운영

2025	-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헌법교육 영상 콘텐츠 제작 및 교육부, 전국 시·도 교육청과 협업하여 초·중학교 헌법교육 출장 강연 실시 · 전국 초·중등학교 270개교(913학급) / 20,377명 - 청소년 및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확산되는 마약·도박 등 범죄예방 콘텐츠 제작 및 법교육 제공 · 마약예방교육 3,075건 / 12,097명 · 도박예방교육 928건 / 49,223명 · 콘텐츠 제작 60건 - 모두에게 평등한 법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도서·벽지 지역 학생 대상 '찾아가는 법교육'을 실시하고 북한이탈청소년, 이민자, 지역아동센터, 아동양육시설, 유아 등 사회적 배려 계층 대상 법교육 제공 · 강원 태백, 전남 신안 등 23개교 / 1,660명 대상 마약·학교폭력예방교육 실시 · 이민자 생활법률특강 259회 / 9,337명 · 북한이탈청소년 법교육 230회 / 1,383명 · 지역아동센터 법교육 505회 / 1,457명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법교육 211회 / 3,498명 · 유아법교육 314회 / 5,519명 - 청소년이 직접 기획하고 실행하는 법과 인권 체험동아리를 육성하고, 폭력 없는 행복한 학교, 질서와 배려가 있는 교실만들기 등의 사업을 통해 인간 존중의 가치를 중시하는 민주시민 성장 기반 마련 · 꿈꾸는 디케 70팀 / 1,125명 · 학생자치법교육 168개교 / 12,446명 · 모두가 행복한 교실 261개교 / 22,485명 - 딥페이크, 스토킹 등 사회적 관심이 높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콘텐츠 제작 및 SNS, 미디어보드 등 다양한 매체로 적극 홍보 · 법교육 영상 60종 제작(영어·중국어·베트남어 번역 포함) 및 전국 옥외 전광판, IP TV, 유튜브, 지하철, 빌딩 내 미디어보드 등을 통해 범죄예방영상 송출 - (솔로몬로파크) 관할 구청 및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법의날·제헌절 기념 '법페스티벌' 개최, 지역 체험객 발굴 및 주민 접근성 증진 도모 · 3개 로파크 체험객수 290,171명 · 법페스티벌 5회 / 19,641명 - (솔로몬로파크) 아동양육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청소년 대상으로 연속성 있는 장기 법교육을 실시하고 맞춤형 성폭력 예방 프로그램 개발·운영하여 취약계층 청소년의 비행 진입 예방, 건강한 성장 지원 · (대전) 보육원 초등생 11명 대상 총 11회기 진행 · (광주) 맞춤형 성폭력 예방 프로그램 6회 / 112명 - 지역아동센터, 장애인시설, 이민결혼여성 등 대상 법교육 프로그램 운영 · (대전·부산·광주) 지역아동센터 및 장애인시설 43개 / 807명 · (대전·부산·광주) 가족센터 4개 / 1,250명 · (광주) 다문화가정 1박2일 캠프 17가정 / 59명 - 직원 직무연수, 법체험 강사 보수교육, 자원봉사자 현장 교육 등 실시하여 법교육 프로그램 운영 인력의 역량 강화 및 교육 효과·관람객 만족도 제고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을 홍보하는 대학생 자원봉사단 '저스티스 서포터스' 운영(35개 팀 / 161명) - 2025년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 대상지역 10개 사업지 선정, 주민 의견수렴을 통한 범죄예방 환경개선 설계 및 제공

2026	- 청소년 대상으로 확산되는 마약·도박 등 범죄예방 콘텐츠 제작 및 법교육 제공 · 마약예방교육 1,678회 / 73,765명 · 도박예방교육 702회 / 49,591명 · 콘텐츠 제작 35건 - 사회초년생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근로·임대차·사기·교제폭력 등을 주제로 종합생활법률 출장강연 제공 · 사회초년생 종합생활법률 교육 27회 / 677명 실시 - 모두에게 평등한 법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도서·벽지 지역 학생 대상 '찾아가는 법교육'을 실시하고 북한이탈청소년, 이민자, 지역아동센터, 아동양육시설, 유아 등 사회적 배려 계층 대상 법교육 제공 · 인천 백령도, 강원 횡성 등 37개교 / 1,036명 대상 마약·도박·학교폭력 등 예방교육 실시 · 이민자 생활법률특강 173회 / 6,515명 · 북한이탈청소년 법교육 113회 / 684명 · 유아법교육 192회 / 2,672명 - 청소년 대상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학생 주도의 체험형 법교육 및 동아리 지원 사업을 운영하여 학생들의 준법의식 함양 및 민주시민으로서의 성장을 지속 지원 · 모두가 행복한 교실 251개교 1,709학급 / 5,020명 · 꿈꾸는 디케 프로젝트 70팀 / 1,171명 · 학생자치법교육 172개교 / 1,376명 -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솔로몬로파크 · (지자체 등 협력 강화) 법의날을 맞아 지자체 등 유관기관 적극 발굴·협력하여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운영, 생활 속 유익한 법률 정보 전달(도박문제치유센터 등 총 43개 기관 참여) · (제헌절 기념 프로그램 운영) 일주일간 헌법 체험 행사 진행하고 17일부터 18일 양일간 '법페스티벌' 확대 운영, 전 헌법재판관·금융전문가 등 초청 강연 기획 등 프로그램 다변화(대전MBC·부산KBS 뉴스 방영) · 3개 로파크 체험객수 175,193명, 법연수 참여자 14,316명, 법페스티벌 48,449명 참여(총 6회 실시) -「로티즌 아카데미」 법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역을 전라·제주권역까지 확대하여 전 지역의 방과후아카데미 이용 청소년들에게 교육 기회 제공 ※ 수도권(2021) → 수도·충청권(2022, 2023) → 경상권(2024) → 강원권(2025) -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에 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국가 단위의 정책추진을 위한 범죄예방 환경개선 협의회 운영 - 2026년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 대상지역 10개 사업지 선정, 주민 의견수렴을 통한 범죄예방 환경개선 설계 및 제공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을 홍보하는 대학생 자원봉사단 '저스티스 서포터스' 운영(35개 팀 / 160명) · 활동실적 : 2,186건

③ 향후(2027년도 이후) 기대효과

- 시·도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각 지역의 대안학교, 사회복지시설 등 다양한 기관의 법교육 참여를 확대하고, 도서·벽지지역, 위기청소년·아동양육시설 등 법교육이 필요한 분야 발굴 및 교육 제공

- 사회초년생 대상 종합생활법률 출장강연을 통해 임금체불,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교제폭력 등 사회초년생이 겪을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법적 대응능력을 향상시켜 범죄피해예방 및 사후 피해구제에 소요되는 행정·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 기대
- 법교육을 제공하는 전문강사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교육현장 모니터링 실시
- 솔로몬로파크 직원 대상 직무연수 실시 및 법체험 강사 보수교육 내실화를 통한 법교육 프로그램 운영 능력 및 체험객 만족도 향상
- 범부처간 협업(국토부, 해수부, 농식품부, 교육부, 산업부) 및 민·관이 함께하는 지역 맞춤형 법질서 실천운동(법질서 실천운동 +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의 지속 추진을 통해 사업지역 주민 안전 체감도 향상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사업 구상	법교육 프로그램 구상 및 기획
↓	
검토	내부적 검토, 연구 (추진방향 및 참여 대상자 등에 대한 논의)
↓	
협의	관계 기관과 업무 협의(일정, 장소 및 대상자 선정 등) - 법교육지원법 제10조
↓	
계획	법교육 및 법질서 프로그램 진행 계획 수립
↓	
실시	법교육 및 법질서 프로그램 운영 (홍보, 신청자 모집, 선발, 진행)
↓	
평가	결과 분석 및 만족도 조사 등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25~2029	6,277	5,678	5,370	5,257	5,088	
2026~2030		5,678	6,866	7,071	7,283	7,283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24회계연도 결산 국회 시정요구 사항>
▪ (지적사항) 학생자치법 교육 운영사업 관련, 외부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하는 사업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학생자치법 교육 운영 예산을 일반용역비로 편성·집행 필요
▪ (지적사항) 2026년에는 학생자치법 교육 운영 사업을 일반수용비가 아닌 일반용역비로 집행하고, 2027년 예산안에 비목을 전환하여 적정 편성 예정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사업 진단·평가 및 신규 정책 개발 등 일반범죄예방 기능 강화
- 민간 영역 참여 확대를 통한 공공과 민간의 균형 있는 역할 정립
- 인적·물적 연구 인프라 구축을 통한 법교육 전문성 제고
- 법체험 시설(솔로몬로파크) 운영 효율화 탐색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24년도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 보통
- '25년도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 보통

12) 동사업에 대한 부처 자체평가 결과 : 해당없음

13) 2026년도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 결과 및 후속 조치 현황

평가결과	성과평가 주요내용	조치결과
사업개선	(재정사업 필요성) 법교육을 통한 민주시민 육성을 위해 지자체 등 다양한 주체와 연계 필요 (사업계획 적정성) CPTED 사업은 환경개선 위주로 일반적인 법교육 활동과 거리가 있음 (성과달성도) 프로그램 참가자의 준법의식 점수 측정만으로 거시적인 준법의식 개선이라 볼 수 없음	(지자체 등 연계협력 강화) 교육청 등과 협력하여 헌법 교육을 및 법교육 프로그램 운영 강화 (사업계획 적성성 고도화) CPTED 컨설팅 제공과 더불어 주민 및 지자체 공무원 대상 법교육 등 범죄예방 역량 강화 활동 확대 (거시적 성과관리 노력) 법교육 및 법질서 활동 성과지표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14) 부처 건의사항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3	7,449	-	7,449	-	-	-	7,449	7,229	97.0	97.0	-	220
2024	6,271	-	6,271	-	-	-	6,271	6,134	97.8	97.8	-	137
2025	6,277	-	6,277	-	△12	-	6,265	6,149	97.9	98.1	-	116
2026	5,678	-	5,678	-	-	-	5,678	2,976	52.4	52.4	-	-

2) 주요 결산사항

□ 2023~2026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3	- 불용 : 연구용역 및 위탁사업 낙찰차액 등 220백만원
2024	- 전용 : 범죄예방분야 연구 관련 20백만원 전용 - 불용 : 공무직 보수 및 고용부담금 16백만원, 연구용역 및 위탁사업 낙찰차액 98백만원 등 집행잔액 총 137백만원
2025	- 전용 : 보호관찰소 국내여비 부족으로 12백만원 전용 - 불용 : 공무직 보수 및 고용부담금 18백만원, 연구용역 및 위탁사업 낙찰차액 80백만원 등 집행잔액 총 116백만원
2026	- 전용 : 2024회계연도 국회 결산심사 지적사항에 따른 올바른 비목으로 예산 변경

□ 2026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자체 전용 ('26.01.27.)	법질서준수 및 법교육 활동 (1636-304)	210-14	585	법질서준수 및 법교육 활동 (1636-304)	260-01	국회 결산심사 지적사항(예산 집행 비목의 부적절성 지적)에 따른 올바른 비목으로 예산 변경

□ 2026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 해당없음

특별감찰관활동

사 업 명
특별감찰관인건비 (1802-15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	14	특별감찰관		020	022
명칭	일반회계	법무부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800	1802	150
명칭	특별감찰관활동	특별감찰관인건비	특별감찰관인건비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6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특별감찰관 인건비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특별감찰과	김선아 팀장	-	유병현
		운영지원팀	02-728-7231	-	02-728-7233
	사업시행주체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년 결산	2026년 예산		2027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요구안	조정안(B)		(B-A)/A
특별감찰관인건비	-	259	259	738	738	479	184.9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25					2026(2026.7월말)							2027 예산안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232	43	-	-	43	259	189	-	189	-	-	-	738
· 특별감찰관인건비	232	43	-	-	43	259	189	-	189	-	-	-	738
○ 비목별 분류(합계)	232	43	-	-	43	259	189	-	189	-	-	-	738
· 보수(110-01)	230	41	-	-	41	257	187	-	187	-	-	-	733
· 연가보상비 (110-05)	2	2	-	-	2	2	2	-	2	-	-	-	5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232	43	-	-	43	259	189	-	189	-	-	-	738
· 특별감찰관인건비	232	43	-	-	43	259	189	-	189	-	-	-	738
-보수(110-01)	230	41	-	-	41	257	187	-	187	-	-	-	733
- 연가보상비 (110-05)	2	2	-	-	2	2	2	-	2	-	-	-	5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특별감찰관인건비) 특별감찰관 소속 직원 급여 및 수당 등 지급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특별감찰관법·시행령

② 추진경위

- 국회 등 정치권의 논의를 거쳐 대통령 측근의 비리에 대한 상시적 감찰 기구를 설치하는 내용의 「특별감찰관법」이 '14년 3월 18일 제정되었고, 동년 6월 19일에 시행됨으로써 특별감찰관제도가 도입되었음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5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3	2024	2025	2026	2027(안)
사업비	265	272	232	259	738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특별감찰관
- 사업 수혜자 :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7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

① 특별감찰관인건비 : **('26) 259백만원 → (2027 예산안) 738백만원, 479백만원 증액**
- (요구) 특별감찰관 소속 공무원의 급여, 수당 등
- (산출) 특별감찰관 소속 공무원 보수 733백만원
  특별감찰관 소속 공무원 연가보상비 5백만원

ㅇ 2026년도 예산 및 2027년도 예산안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6년 본예산		2027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259,746	**○ 보수(110-01) : 232천원** 가. 봉급 212,243천원 1) 정무직(차관급) 보수 48,648천원 ・ 1명×11,762,000원×4개월×1.034 = 48,648천원 2) 별정직 보수 162,411천원 ・ 1명×8,049,750원×4개월×1.034 = 33,294천원 ・ 1명×8,830,577원×4개월×1.034 = 36,523천원 ・ 5명×4,477,476원×4개월×1.034 = 92,594천원 3) 조정재원 1,184천원 나. 정액급식비 4,480천원 1) 정무직(차관급) 560천원 ・ 1명×140,0000원×4개월 = 560천원 2) 별정직 3,920천원 ・ 1명×140,000원×4개월 = 560천원 ・ 1명×140,000원×4개월 = 560천원 ・ 5명×140,000원×4개월 = 2,800천원 다. 직급보조비 13,400천원 1) 정무직(차관급) 3,800천원 ・ 1명×950,000원×4개월 = 3,800천원 2) 별정직 9,600천원 ・ 1명×650,000원×4개월 = 2,600천원 ・ 1명×500,000원×4개월 = 2,000천원 ・ 5명×250,000원×4개월 = 5,000천원 라. 인건비 증감분 ・ 232,123,000×12%=27,615천원 **○ 연가보상비(110-05) : 1,877천원** 가. 고위공무원 ・ 1명×8,049,750원×2×0.86×0.033×0.78×1.034 = 369천원 나. 3급 ・ 1명×8,830,577원×2×0.86×0.033×0.78×1.034 = 404천원 다. 5급 ・ 5명×4,477,476원×2×0.86×0.033×0.84×1.034 = 1,104천원 ・ 식비 50,000원×10명×5일=2,500천원	738,000	**○ 보수(110-01) : 732,544천원** 가. 봉급 724,740천원 1) 정무직(차관급) 보수 157,117천원 ・ 1명×12,538,900원×12개월×1.044 = 157,117천원 2) 별정직 보수 567,623천원 ・ 1명×11,353,012원×12개월×1.044 = 142,258천원 ・ 1명×9,118,696원×12개월×1.044 = 114,261천원 ・ 5명×4,965,595원×12개월×1.044 = 311,104천원 나. 정액급식비 15,360천원 1) 정무직(차관급) 1,920천원 ・ 1명×160,0000원×12개월 = 1,920천원 2) 별정직 13,440천원 ・ 1명×160,0000원×12개월 = 1,920천원 ・ 1명×160,0000원×12개월 = 1,920천원 ・ 5명×160,0000원×12개월 = 9,600천원 다. 직급보조비 40,200천원 1) 정무직(차관급) 11,400천원 ・ 1명×950,000원×12개월 = 11,400천원 2) 별정직 28,800천원 ・ 1명×650,000원×12개월 = 7,800천원 ・ 1명×500,000원×12개월 = 6,000천원 ・ 5명×250,000원×12개월 = 15,000천원 라. 조정재원 ・ (-47,756천원) **○ 연가보상비(110-05) : 5,456천원** 가. 고위공무원 ・ 1명×11,353,012원×5×0.86×0.033×0.78×1.044 = 1,312천원 나. 3급 ・ 1명×9,118,696원×5×0.86×0.033×0.78×1.044 = 1,054천원 다. 5급 ・ 5명×4,965,595원×5×0.86×0.033×0.84×1.044 = 3,090천원 ・ 식비 50,000원×10명×5일=2,500천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3~2027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 해당없음

③ 향후(2027년도 이후) 기대효과

: 대통령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 비위를 감찰하는 감찰인의 인건비를 지급함으로써 공직사회의 투명성 제고에 기여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해당없음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 해당없음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해당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해당없음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2) 동 사업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

회계연도	등급	자체평가 주요내용	조치결과
2023	미흡	특별감찰관 및 특별감찰관보 퇴사 후 조직운영 축소로 인한 인건비 집행부진	기관장 임명 시 빠른 조직 정상화를 준비
2024	미흡	특별감찰관 및 특별감찰관보 퇴사 후 조직운영 축소로 인한 인건비 집행부진	기관장 임명 시 빠른 조직 정상화를 준비
2025	미흡	특별감찰관 및 특별감찰관보 퇴사 후 조직운영 축소로 인한 인건비 집행부진	기관장 임명 시 빠른 조직 정상화를 준비
2026	미흡	특별감찰관 및 특별감찰관보 퇴사 후 조직운영 축소로 인한 인건비 집행부진	기관장 임명 시 빠른 조직 정상화를 준비

13) 2026년도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 결과 및 후속 조치 현황 : 해당없음

14) 부처 건의사항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3	265	-	265	-	△68	-	197	-	-	-	-	197
2024	272	-	272	-	△63	-	209	-	-	-	-	209
2025	232	-	232	-	△189	-	43	-	-	-	-	43
2026	259	-	259	-	△70	-	189	-	-	-	-	-

2) 주요 결산사항

□ 2023~2026년 결산사항

2023	○ 전용 사유 - 사무실 임차료 및 관리비 부족으로 인해 인건비에서 관리비로 전용 ○ 불용 사유 - 특별감찰관 및 특별감찰관보 퇴사 후 조직운영 축소로 인한 인건비 집행부진
2024	○ 전용 사유 - 사무실 관리비 부족으로 인해 인건비에서 관리비로 전용 ○ 불용 사유 - 특별감찰관 및 특별감찰관보 퇴사 후 조직운영 축소로 인한 인건비 집행부진
2025	○ 전용 사유 - 사무실 임차료 및 관리비 부족으로 인해 인건비에서 관리비로 전용 ○ 불용 사유 - 특별감찰관 및 특별감찰관보 퇴사 후 조직운영 축소로 인한 인건비 집행부진
2026	○ 전용 사유 - 사무실 임차료 부족으로 인해 인건비에서 임차료로 전용 ○ 집행부진 사유 - 특별감찰관 및 특별감찰관보 퇴사 후 조직운영 축소로 인한 인건비 집행부진

□ 2026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전용 (2026.7.29.)	특별감찰관 인건비 (1802-150)	110-01	1,000	특별감찰활동 기본경비 (1818-250)	430-01	한글 라이선스 구매
	특별감찰관 인건비 (1802-150)	110-01	69,000	특별감찰활동 (1831-300)	210-07	사무실 임차료 납부

□ 2026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 해당없음

사 업 명
특별감찰관기본경비 (1818-25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	14	특별감찰관		020	022
명칭	일반회계	법무부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800	1818	250
명칭	특별감찰관활동	특별감찰관기본경비	특별감찰관기본경비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6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특별감찰관 기본경비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특별감찰과	김선아 팀장	-	유병현
		운영지원팀	02-728-7231	-	02-728-7233
	사업시행주체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년 결산	2026년 예산		2027년		증감	
		본예산(A)	추경	요구안	조정안(B)	(B-A)	(B-A)/A
특별감찰관기본경비	55	252	252	376	376	124	49.2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25					2026(2026.7월말)							2027 예산안
	예산액(추경)	예산현액	집행액[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현액	집행액[실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예상액	불용예상액	
									예산현액	집행액[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238	124	55	-	69	252	182	47	182	47	-	-	376
・특별감찰관기본경비	238	124	55	-	69	252	182	47	182	47	-	-	376
○ 비목별 분류(합계)	238	124	55	-	69	252	182	47	182	47	-	-	376
・상용임금(110-03)	90	54	12	-	42	95	55	17	55	17	-	-	211
・일반수용비(210-01)	32	5	5	-	0	31	26	3	26	3	-	-	30
・공공요금제세(210-02)	44	36	33	-	3	45	40	20	40	20	-	-	46
・특근매식비(210-05)	5	1	-	-	1	5	1	-	1	-	-	-	5
・임차료(210-07)	10	1	-	-	1	10	7	3	7	3	-	-	10
・유류비(210-08)	3	3	-	-	3	3	3	-	3	-	-	-	1
・복리후생비(210-12)	6	2	0	-	1	6	6	-	6	-	-	-	3
・기타운영비(210-16)	8	2	1	-	0	8	4	1	4	1	-	-	8
・관서업무추진비(240-02)	8	1	-	-	1	8	3	1	3	1	-	-	7
・직책수행경비(250-02)	15	2	2	-	0	15	10	1	10	1	-	-	15
・포상금(310-03)	-	-	-	-	-	5	5	-	5	-	-	-	1
・고용부담금(320-09)	18	18	1	-	16	22	22	1	22	1	-	-	39
・자산취득비(430-01)	-	-	-	-	-	-	1	-	1	-	-	-	-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238	124	55	-	69	252	182	47	182	47	-	-	376
・특별감찰관기본경비	238	124	55	-	69	252	182	47	182	47	-	-	376
-상용임금(110-03)	90	54	12	-	42	95	55	17	55	17	-	-	211
-일반수용비(210-01)	32	5	5	-	0	31	26	3	26	3	-	-	30

	2025					2026(2026.7월말)							2027 예산안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공공요금제세(210-02)	44	36	33	-	3	45	40	20	40	20	-	-	46
-특근매식비(210-05)	5	1	-	-	1	5	1	-	1	-	-	-	5
-임차료(210-07)	10	1	-	-	1	10	7	3	7	3	-	-	10
-유류비(210-08)	3	3	-	-	3	3	3	-	3	-	-	-	1
-복리후생비(210-12)	6	2	0	-	1	6	6	-	6	-	-	-	3
-기타운영비(210-16)	8	2	1	-	0	8	4	1	4	1	-	-	8
-관서업무추진비 (240-02)	8	1	-	-	1	8	3	1	3	1	-	-	7
-직책수행경비 (250-02)	15	2	2	-	0	15	10	1	10	1	-	-	15
-포상금(310-03)	-	-	-	-	-	5	5	-	5	-	-	-	1
-고용부담금(320-09)	18	18	1	-	16	22	22	1	22	1	-	-	39
-자산취득비(430-01)	-	-	-	-	-	-	1	-	1	-	-	-	-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특별감찰관 기관 운영을 위한 경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특별감찰관법·시행령

② 추진경위

- 국회 등 정치권의 논의를 거쳐 대통령 측근의 비리에 대한 상시적 감찰 기구를 설치하는 내용의 「특별감찰관법」이 '14년 3월 18일 제정되었고, 동년 6월 19일에 시행됨으로써 특별감찰관제도가 도입되었음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5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3	2024	2025	2026	2027(안)
사업비	333	238	238	252	376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특별감찰관
- 사업 수혜자 :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7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

① 특별감찰관기본경비 : **('26) 252백만원 → (2027 예산안) 376백만원, 124백만원 증액**

ㅇ 2026년도 예산 및 2027년도 예산안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6년 본예산		2027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94,736	○ 상용임금(110-03) : 94,736천원	210,762	○ 상용임금(110-03) : 210,762천원
30,685	○ 일반수용비(210-01) : 30,685천원	29,520	○ 일반수용비(210-01) : 29,520천원
44,790	○ 공공요금및제세(210-02) : 44,790천원	46,059	○ 공공요금및제세(210-02) : 46,059천원
5,000	○ 특근매식비(210-05) : 5,000천원	5,000	○ 특근매식비(210-05) : 5,000천원
10,200	○ 임차료(210-07) : 10,200천원	10,200	○ 임차료(210-07) : 10,200천원
3,000	○ 유류비(210-08) : 3,000천원	1,000	○ 유류비(210-08) : 1,000천원
6,000	○ 복리후생비(210-12) : 6,000천원	3,100	○ 복리후생비(210-12) : 3,100천원
8,000	○ 기타운영비(210-16) : 8,000천원	8,000	○ 기타운영비(210-16) : 8,000천원
7,687	○ 관서업무추진비(240-02) : 7,687천원	7,303	○ 관서업무추진비(240-02) : 7,303천원
14,761	○ 직무수행경비(250-02) : 14,761천원	14,761	○ 직무수행경비(250-02) : 14,761천원
5,000	○ 포상금(310-03) : 5,000천원	1,000	○ 포상금(310-03) : 1,000천원
22,141	○ 고용부담금(320-09) : 22,141천원	39,295	○ 고용부담금(320-09) : 39,295천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3~2027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 해당없음

③ 향후(2027년도 이후) 기대효과

: 대통령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 비위 감찰활동의 기본경비를 보조함으로써 공직사회의 투명성 제고에 기여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해당없음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 해당없음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해당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해당없음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2) 동 사업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

회계연도	등급	자체평가 주요내용	조치결과
2023	미흡	특별감찰관 및 특별감찰관보 퇴사 후 조직운영 축소로 인한 기본경비 집행부진	기관장 임명 시 빠른 조직 정상화를 준비
2024	미흡	특별감찰관 및 특별감찰관보 퇴사 후 조직운영 축소로 인한 기본경비 집행부진	기관장 임명 시 빠른 조직 정상화를 준비
2025	미흡	특별감찰관 및 특별감찰관보 퇴사 후 조직운영 축소로 인한 기본경비 집행부진	기관장 임명 시 빠른 조직 정상화를 준비
2026	미흡	특별감찰관 및 특별감찰관보 퇴사 후 조직운영 축소로 인한 기본경비 집행부진	기관장 임명 시 빠른 조직 정상화를 준비

13) 2026년도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 결과 및 후속 조치 현황 : 해당없음

14) 부처 건의사항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3	333	-	333	-	△70	-	263	98	29.5	37.3	-	165
2024	238	-	238	-	△80	-	158	96	40.3	60.7	-	62
2025	238	-	238	-	△114	-	124	55	23.1	44.4	-	69
2026	252	-	252	-	-	-	252	47	18.7	18.7	-	-

2) 주요 결산사항

□ 2023~2026년 결산사항

2023	○ 전용 사유 - 사무실 임차료 및 관리비 부족으로 인해 기본경비에서 임차료 및 관리비로 전용 ○ 불용 사유 - 특별감찰관 및 특별감찰관보 퇴사 후 18.4. 26 특별감찰과장 및 감찰담당관 퇴직으로 파견공무원만 남게된 상황에서 기관의 유지에 주력함에 따라 기본경비의 집행 잔액 발생
2024	○ 전용 사유 - 사무실 관리비 부족으로 인해 기본경비에서 임차료 및 관리비로 전용 ○ 불용 사유 - 특별감찰관 및 특별감찰관보 퇴사 후 18.4. 26 특별감찰과장 및 감찰담당관 퇴직으로 파견공무원만 남게된 상황에서 기관의 유지에 주력함에 따라 기본경비의 집행 잔액 발생
2025	○ 전용 사유 - 사무실 임차료 및 관리비 부족으로 인해 기본경비에서 임차료 및 관리비로 전용 ○ 불용 사유 - 특별감찰관 및 특별감찰관보 퇴사 후 18.4. 26 특별감찰과장 및 감찰담당관 퇴직으로 파견공무원만 남게된 상황에서 기관의 유지에 주력함에 따라 기본경비의 집행 잔액 발생
2026	○ 집행부진 사유 - 특별감찰관 및 특별감찰관보 퇴사 후 18.4. 26 특별감찰과장 및 감찰담당관 퇴직으로 파견공무원만 남게된 상황에서 기관 운영 축소에 따른 집행 부진

□ 2026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전용 (2026.7.29.)	특별감찰관 인건비 (1802-150)	110-01	1,000	특별감찰활동 기본경비 (1818-250)	430-01	한글 라이선스 구매
	특별감찰관 기본경비 (1818-250)	110-03	40,000	특별감찰활동 (1831-300)	210-07	사무실 임차료 납부

□ 2026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 해당없음

사 업 명
특별감찰활동 (1831-3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	14	특별감찰관		020	022
명칭	일반회계	법무부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800	1831	300
명칭	특별감찰관활동	특별감찰활동	특별감찰활동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6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특별감찰활동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특별감찰과	김선아 팀장	-	유병현
		운영지원팀	02-728-7231	-	02-728-7233
	사업시행주체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년 결산	2026년 예산		2027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요구안	조정안(B)		(B-A)/A
특별감찰활동	706	404	404	1,294	1,294	890	220.3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25					2026(2026.7월말)							2027 예산안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404	707	706	-	1	404	513	419	513	419	-	-	1,294
· 사무환경구축및유지	404	707	706	-	1	404	513	419	513	419	-	-	1,294
○ 비목별 분류(합계)	404	707	706	-	1	404	513	419	513	419	-	-	1,294
· 공공요금제세(210-02)	116	189	189	-	0	116	116	114	116	114	-	-	237
· 임차료(210-07)	288	517	517	-	0	288	397	305	397	305	-	-	603
· 국내여비(220-01)	0	1	0	-	0	0	0	0	0	0	-	-	122
· 사업추진비(240-01)	-	-	-	-	-	-	-	-	-	-	-	-	31
· 특근매식비(210-05)	-	-	-	-	-	-	-	-	-	-	-	-	37
· 유류비(210-07)	-	-	-	-	-	-	-	-	-	-	-	-	22
· 손실보상금(310-01)	-	-	-	-	-	-	-	-	-	-	-	-	12
· 자산취득비(430-01)	-	-	-	-	-	-	-	-	-	-	-	-	230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404	707	706	-	1	404	513	419	513	419	-	-	1,294
· 특별감찰활동	404	707	706	-	1	404	513	419	513	419	-	-	1,294
-공공요금제세(210-02)	116	189	189	-	0	116	116	114	116	114	-	-	237
-임차료(210-07)	288	517	517	-	0	288	397	305	397	305	-	-	603
-국내여비(220-01)	0	1	0	-	0	0	0	0	0	0	-	-	122
-사업추진비(240-01)	-	-	-	-	-	-	-	-	-	-	-	-	31
-특근매식비(210-05)	-	-	-	-	-	-	-	-	-	-	-	-	37
-유류비(210-07)	-	-	-	-	-	-	-	-	-	-	-	-	22
-손실보상금(310-01)	-	-	-	-	-	-	-	-	-	-	-	-	12
-자산취득비(430-01)	-	-	-	-	-	-	-	-	-	-	-	-	23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특별감찰활동) 특별감찰관 활동을 위한 경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특별감찰관법·시행령

② 추진경위

- 국회 등 정치권의 논의를 거쳐 대통령 측근의 비리에 대한 상시적 감찰 기구를 설치하는 내용의 「특별감찰관법」이 '14년 3월 18일 제정되었고, 동년 6월 19일에 시행됨으로써 특별감찰관제도가 도입되었음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5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3	2024	2025	2026	2027(안)
사업비	399	404	404	404	1,294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특별감찰관
- 사업 수혜자 :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7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

①특별감찰활동
: ('26) 404백만원 → ('27요구) 1,294백만원, 890백만원 증액
- (요구) 특별감찰관 사무실 임차료 및 관리비, 국내여비 등
- (산출) 특별감찰관 사무실 임차료 및 관리비 12개월분
국회출장 국내여비 등 특별감찰활동 소요예산

ㅇ 2026년도 예산 및 2027년도 예산안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6년 본예산		2027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404,000	○ **공공요금 및 제세(210-02) : 115,574천원** 가. 사무실관리비 등 115,574천원 ・ 15,643,400원×7개월+6,070,000원 = 115,574천원 ○ **임차료(210-07) : 288,000천원** 가. 사무실 임차료 288,000천원 ・ 41,142,800원×7개월 = 288,000천원 ○ **국내여비(220-01) : 426천원** 가. 출장비 426천원 ・ 426,000원×1회 = 426,000천원	1,294,000	○ **공공요금 및 제세(210-02) : 237,257천원** 가. 사무실관리비 등 237,257천원 ・ 사무실 관리비 16,856,400원×12개월 = 202,2774천원 ・ 전화료 80,000원×34대×12개월 = 32,640천원 ・ 우편료 2,000원×100통×12개월 = 2,400천원 ・ 단수조정 = (-60천원) ○ **임차료(210-07) : 603,423천원** 가. 임차료 등 603,423천원 ・ 사무실 임차료 47,759,800원×12개월 = 573,118천원 ・ 워크숍 회의장 임차료 1,000,000원×4회 = 4,000천원 ・ 감찰활동 차량 임차료 700,000원×3대×12개월 = 25,200천원 ・ 단수조정 = (-1,105천원) ○ **국내여비(220-01) : 122,000천원** 가. 출장비 120,000천원 ・ 감찰활동 출장 20,000원×10명×10일×12개월 = 24,000천원 ・ 감찰정보 수집 80,000원×20명×5일×12개월 = 96,000천원 나. 직무교육 여비 2,000천원 ・ 직무교육 여비 1,000,000원×2회 = 2,000천원 ○ **특근매식비(210-05) : 36,720천원** 가. 특근매식비 36,720천원 ・ 특근매식비 9,000원×34명×10일×12개월 = 36,720천원 ○ **유류비(210-08) : 21,600천원** 가. 유류비 21,600천원 ・ 감찰활동 차량 유류비 600,000원×3대×12개월 = 21,600천원 ○ **사업추진비(240-01) : 31,000천원** 가. 사업추진비 : 31,000천원 ・ 유관기관 업무회의 30,000원×10명×8회×12개월 = 28,800천원 ・ 워크숍 30,000원×34명×2회 = 2,040천원 ・ 단수조정 = (160천원) ○ **손실보상금(310-01) : 12,000천원** 가. 보상금 : 12,000천원 ・ 보상금 25,000원×2명×20회×12개월 = 12,000천원 ○ **자산취득비(430-01) : 230,000천원** 가. 자산취득비 : 230,000천원 ・ 자산취득비 230,000,000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3~2027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 해당없음

③ 향후(2027년도 이후) 기대효과

: 대통령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의 비위를 감찰함으로써 공직사회의 투명성 제고에 기여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해당없음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 해당없음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1) 2023회계연도 예결위 지적

○ 특별감찰관 공석을 감안하여 사무실 이전 등 방법으로 지출 규모 개선할 것

⇒ 특별감찰관 임명 동향을 주시하며 정부청사 등의 유휴공간 지속적으로 확인 및 최소임차기간 조율하여 임차 재계약 진행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해당없음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2) 동 사업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

회계연도	등급	자체평가 주요내용	조치결과
2023	보통	사무실 임차료, 관리비 축소 필요	기관장 임명 시 빠른 조직 정상화를 준비를 위해 사무실 유지 필요성 동시 검토
2024	보통	사무실 임차료, 관리비 축소 필요	기관장 임명 시 빠른 조직 정상화를 준비를 위해 사무실 유지 필요성 동시 검토
2025	보통	사무실 임차료, 관리비 축소 필요	기관장 임명 시 빠른 조직 정상화를 준비를 위해 사무실 유지 필요성 동시 검토
2026	보통	사무실 임차료, 관리비 축소 필요	기관장 임명 시 빠른 조직 정상화를 준비를 위해 사무실 유지 필요성 동시 검토

13) 2026년도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 결과 및 후속 조치 현황 : 해당없음

14) 부처 건의사항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3	399	-	399	-	138	-	537	530	132.9	98.8	-	7
2024	404	-	404	-	143	-	547	546	135.1	99.8	-	1
2025	404	-	404	-	303	-	707	706	99.9	99.9	-	1
2026	404	-	404	-	109	-	513	419	103.7	81.7	-	-

2) 주요 결산사항

□ 2023~2026년 결산사항

2023	○ 전용 사유 - 사무실 임차료 및 관리비 부족으로 인해 인건비, 기본경비에서 전용
2024	○ 전용 사유 - 사무실 임차료 및 관리비 부족으로 인해 인건비, 기본경비에서 전용
2025	○ 전용 사유 - 사무실 임차료 및 관리비 부족으로 인해 인건비, 기본경비에서 전용
2026	○ 전용 사유 - 사무실 임차료부족으로 인해 인건비, 기본경비에서 전용

□ 2026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전용 (2026.7.29.)	특별감찰관 인건비 (1802-150)	110-01	69,000	특별감찰활동 (1831-300)	210-07	26년 사무실 임차료 집행
	특별감찰관 기본경비 (1818-250)	110-03	40,000			

□ 2026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 해당없음

법무교육훈련

사 업 명
연수원 시설관리 및 운영 (5131-3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법무부	법무연수원	일반회계	020	022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5100	5131	300
명칭	법무교육훈련	연수원운영	연수원 시설관리 및 운영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6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연수원 시설관리 및 운영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법무연수원	서혜주	이자희	조예덕
		총무과	043-531-1540	043-531-1541	043-531-1554
	사업시행주체	꿈나래어린이집	-	-	-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년 결산	2026년 예산		2027년		증감	
		본예산(A)	추경	요구안	조정안(B)	(B-A)	(B-A)/A
연수원 시설관리 및 운영	5,187	5,611	5,611	5,268	5,268	△343	△6.1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25					2026(2026.7월말)							2027 예산안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5,437	5,437	5,187	-	250	5,611	5,611	3,132	5,611	3,132	-	-	5,268
・공무직 운영	3,392	3,392	3,270	-	122	3,707	3,707	1,978	3,707	1,978	-	-	4,024
・연수원 시설운영	1,264	1,264	1,261	-	3	1,264	1,264	720	1,264	720	-	-	534
・교육생 숙식 지원	741	741	618	-	123	600	600	415	600	415	-	-	450
・공동직장어린이집 지원	40	40	38 [38]	-	2	40	40	19 [19]	40	19 [19]	-	-	40
・재난재해 예방 시설보수	-	-	-	-	-	-	-	-	-	-	-	-	220
○ 비목별 분류(합계)	5,437	5,437	5,187	-	250	5,611	5,611	3,132	5,611	3,132	-	-	5,268
・상용임금(110-03)	2,803	2,803	2,771	-	32	3,060	3,060	1,694	3,060	1,694	-	-	3,310
・일반수용비(210-01)	142	142	142	-	-	142	142	90	142	90	-	-	142
・공공요금및제세 (210-02)	34	34	34	-	-	34	34	-	34	-	-	-	34
・피복비(210-03)	11	11	9	-	2	11	11	4	11	4	-	-	-
・급식비(210-04)	461	461	378	-	83	461	461	376	461	376	-	-	398
・임차료(210-08)	80	80	79	-	1	80	80	41	80	41	-	-	80
・유류비(210-08)	228	228	188	-	40	87	87	28	87	28	-	-	-
・시설장비유지비 (210-09)	355	355	355	-	-	355	355	159	355	159	-	-	260
・복리후생비(210-12)	41	41	41	-	-	41	41	40	41	40	-	-	49
・일반용역비(210-14)	-	-	-	-	-	-	-	-	-	-	-	-	200
・민간경상보조 (320-01)	40	40	38 [38]	-	2	40	40	19 [19]	40	19 [19]	-	-	40
・고용부담금(320-09)	548	548	458	-	90	606	606	244	606	244	-	-	666
・공사비(420-03)	350	350	350	-	-	350	350	200	350	200	-	-	90
・자산취득비(430-01)	344	344	344	-	-	344	344	238	344	238	-	-	-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5,437	5,437	5,187	-	250	5,611	5,611	3,132	5,611	3,132	-	-	5,268
・공무직 운영	3,392	3,392	3,270	-	122	3,707	3,707	1,978	3,707	1,978	-	-	4,024
-상용임금(110-03)	2,803	2,803	2,771	-	32	3,060	3,060	1,694	3,060	1,694	-	-	3,310
-복리후생비(210-12)	41	41	41	-	-	41	41	40	41	40	-	-	49
-고용부담금(320-09)	548	548	458	-	90	606	606	244	606	244	-	-	666
・연수원 시설운영	1,264	1,264	1,261	-	3	1,264	1,264	720	1,264	720	-	-	534

	2025					2026(2026.7월말)							2027 예산안
	예산액(추경)	예산현액	집행액[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현액	집행액[실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예상액	불용예상액	
									예산현액	집행액[실집행액]			
-일반수용비(210-01)	124	124	124	-	-	124	124	78	124	78	-	-	124
-피복비(210-03)	11	11	9	-	2	11	11	4	11	4	-	-	-
-임차료(210-07)	80	80	79	-	1	80	80	41	80	41	-	-	80
-시설장비유지비(210-09)	355	355	355	-	-	355	355	159	355	159	-	-	130
-일반용역비(210-14)	-	-	-	-	-	-	-	-	-	-	-	-	200
-공사비(420-03)	350	350	350	-	-	350	350	200	350	200	-	-	-
-자산취득비(430-01)	344	344	344	-	-	344	344	238	344	238	-	-	-
○ 교육생 숙식 지원	741	741	618	-	123	600	600	415	600	415	-	-	450
-일반수용비(210-01)	18	18	18	-	-	18	18	11	18	11	-	-	18
-공공요금및제세(210-02)	34	34	34	-	-	34	34	-	34	-	-	-	34
-급식비(210-04)	461	461	378	-	83	461	461	376	461	376	-	-	398
-유류비(210-08)	228	228	188	-	40	87	87	28	87	28	-	-	-
○ 공동직장어린이집 지원	40	40	38 [38]	-	2	40	40	19 [19]	40	19 [19]	-	-	40
-민간경상보조(320-01)	40	40	38 [38]	-	2	40	40	19 [19]	40	19 [19]	-	-	40
○ 재난재해 예방 시설관리	-	-	-	-	-	-	-	-	-	-	-	-	220
-시설장비유지비(210-09)	-	-	-	-	-	-	-	-	-	-	-	-	130
-공사비(420-03)	-	-	-	-	-	-	-	-	-	-	-	-	9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연수원 시설관리 및 운영) 법무연수원 시설 유지관리 및 교육생 식당 직영 운영 등을 통해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교육생 만족도 및 교육효과 극대화
- (공무직 운영) 동 내역사업은 교육생 식당 및 법무연수원 시설 운영을 위한 조리원, 미화원, 기계원 등 공무직 82명의 경직성 인건비임
- (연수원 시설운영) 동 내역사업은 법무연수원 시설 운영을 위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임
- (교육생 숙식 지원) 동 내역사업은 법무부 소속 직원에 대한 집합교육 숙식 비용을 지원하는 것임
- (공동직장어린이집 지원) 동 내역사업은 충북혁신도시 이전기관 공동직장어린이집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임
- (재난재해 예방 시설관리) 동 내역사업은 법무연수원 시설 내 화재, 지진, 태풍, 폭우, 산사태 등 중·대형 재난재해 예방을 위한 유지보수 및 공사 등을 지원하는 것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5조제1항 : 법무연수원은 법무부 소속공무원의 자질을 높이고 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훈련과 법무행정의 발전을 위한 연구·조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② 추진경위

- ’99. 7. : 정부 구조 조정 시 시설관리 및 급식 등 민간위탁
- ’01. : 급식관리 직영 전환
- ’15. 3. : 충북 혁신도시 기관 이전, 용인·진천 이원화 운영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999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3	2024	2025	2026	2027(안)
사업비	4,705	5,032	5,437	5,611	5,268

- 기타: 공무직 근로자 총 82명, 부지 총 847,997㎡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민간보조
- 사업시행주체 : 법무부 법무연수원
- 사업 수혜자 : 법무부 및 유관기관 공무원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7예산안)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공동직장 어린이집 지원	보조	꿈나래 어린이집	40	정액보조	영유아보육법 제14조 및 제37조

3) 2027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

① 공무직 운영
: ('26) 3,707백만원 → ('27요구) 4,024백만원, 317백만원 증액
- (요구) 교육생 식당 및 교육시설 운영을 위한 조리, 청소, 경비, 시설관리 등 기존 공무직 82명 처우개선 등을 위해 317백만원 증액
- (산출) 82명×3,767천원×12월(2026년) → 82명×4,090천원×12월(2027년)

ㅇ 2026년도 예산 및 2027년도 예산안 산출 세부내역 비교

'26년 예산		'27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3,706,865	○ **상용임금(110-03) : 3,060,027천원** 가. 공무직 82명 보수 ・ 82명×3,110천원×12월=3,060,027천원 ○ **복리후생비(210-12) : 41,000천원** 가. 공무직 82명 맞춤형 복지 ・ 82명×500천원=41,000천원 ○ **고용부담금(320-09) : 605,838천원** 가. 공무직 82명 고용부담금 ・ 82명×616천원×12월=605,838천원	4,024,284	○ **상용임금(110-03) : 3,309,536천원** 가. 공무직 82명 보수 ・ 82명×3,363천원×12월=3,309,536천원 ○ **복리후생비(210-12) : 49,200천원** 가. 공무직 82명 맞춤형 복지 ・ 82명×600천원=49,200천원 ○ **고용부담금(320-09) : 665,548천원** 가. 공무직 82명 고용부담금 ・ 82명×676천원×12월=665,548천원

② 연수원 시설운영
: ('26) 1,264백만원 → ('27요구) 534백만원, 730백만원 감액
- (요구) 법무연수원 시설 운영을 위한 시설 및 전산장비 유지보수 등 지원비로, 운영경비 절감 730백만원 감액
- (산출) 105.3백만원×12월(2026년) → 44.5백만원×12월(2027년)

ㅇ 2026년도 예산 및 2027년도 예산안 산출 세부내역 비교

'26년 예산		'27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264,400	○ **일반수용비(210-01) : 124,000천원** 가. 식당, 청소, 경비, 시설관리 등 비품 구입 등 ・ 10,333천원×12월=124,000천원 ○ **피복비(210-03) : 11,000천원** 가. 공무직 근로자 피복비 ・ 82명×134천원=11,000천원 ○ **임차료(210-07) : 80,000천원** 가. 교육생 등 차량 수송 임차료 ・ 6,667천원×12월=80,000천원 ○ **시설장비유지비(210-09) : 355,000천원** 가. 시설 및 전산장비 수리 등 유지보수비 ・ 29,583천원×12월=355,000천원 ○ **공사비(420-03) : 350,000천원** 가. 시설개선 공사비 ・ 29,167천원×12월=350,000천원 ○ **자산취득비(430-01) : 344,400천원** 가. 교육·방송장비 및 집기 구입비 ・ 28,700천원×12월=344,400천원	534,000	○ **일반수용비(210-01) : 124,000천원** 가. 식당, 청소, 경비, 시설관리 등 비품 구입 등 ・ 10,333천원×12월=124,000천원 ○ **임차료(210-07) : 80,000천원** 가. 교육생 등 차량 수송 임차료 ・ 6,667천원×12월=80,000천원 ○ **시설장비유지비(210-09) : 130,000천원** 가. 시설 및 전산장비 수리 등 유지보수비 ・ 10,833천원×12월=130,000천원 ○ **일반용역비(210-14) : 200,000천원** 가. 교정역사관 및 수장고 정비 등 용역비 ・ 16,667천원×12월=200,000천원

③ 교육생 숙식 지원

: ('26) 600백만원 → ('27요구) 450백만원, 150백만원 감액

- (요구) 법무부 소속 직원에 대한 집합교육 숙식 지원비로, 생활관 유류비 및 급식비 절감 150백만원 감액
- (산출) 세탁비 18백만원, 공공요금 34백만원, 급식비 398백만원

ㅇ 2026년도 예산 및 2027년도 예산안 산출 세부내역 비교

'26년 예산		'27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599,735	○ **일반수용비(210-01) : 18,000천원** 가. 생활관 침구류 세탁비 등 ・ 1,500천원×12월=18,000천원 ○ **공공요금및제세(210-02) : 34,000천원** 가. 생활관 공공요금 ・ 2,833천원×12월=30,000천원 ○ **급식비(210-04) : 461,000천원** 가. 교육생 식비 ・ 109,762식×4.2천원=461,000천원 ○ **유류비(210-08) : 86,735천원** 가. 생활관 바닥난방 운영 ・14,456천원×6월=227,735천원	449,716	○ **일반수용비(210-01) : 18,000천원** 가. 생활관 침구류 세탁비 등 ・ 1,500천원×12월=18,000천원 ○ **공공요금및제세(210-02) : 34,000천원** 가. 생활관 공공요금 ・ 2,833천원×12월=30,000천원 ○ **급식비(210-04) : 397,716천원** 가. 교육생 식비 ・ 94,694식×4.2천원=397,716천원

④ 공동직장어린이집 지원

: ('26) 40백만원 → ('27요구) 40백만원, 전년동

- (요구) 충북혁신도시 이전기관 공동직장어린이집 운영비 지원비로, 전년 수준 요구
- (산출) 3,333천원×12월(2026년) → 3,333천원×12월(2027년)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안 산출 세부내역 비교

'26년 예산		'27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40,000	○ **민간경상보조(320-01) : 40,000천원** 가. 공동직장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 3,333천원×12월=40,000천원	40,000	○ **민간경상보조(320-01) : 40,000천원** 가. 공동직장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 3,333천원×12월=40,000천원

⑤ 재난재해 예방 시설관리
: ('26) 0백만원 → ('27요구) 220백만원, 순증
- (요구) 법무연수원 내 화재, 지진, 태풍, 폭우, 산사태 등 중·대형 재난재해 예방을 위한 시설장비 유지보수 및 개선 공사 등 지원비로, 220백만원 순증
- (산출) 시설장비유지비 130백만원, 공사비 90백만원

ㅇ 2026년도 예산 및 2027년도 예산안 산출 세부내역 비교

'26년 예산		'27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	-	220,000	○ **시설장비유지비(210-09) : 130,000천원** 가. 재난재해 대비 시설장비 유지보수비 ・ 10,833천원×12월=130,000천원 ○ **공사비(420-03) : 90,000천원** 가. 재난재해 대비 시설개선 공사비 ・ 7,500천원×12월=90,000천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3~2027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3	○ 시설, 청소 및 경비 등(58명) - 부지 834,425㎡(252,414평), 건물 93,753㎡(28,360평) ○ 교육생 급식관리(24명)
2024	○ 시설, 청소 및 경비 등(58명) - 부지 834,425㎡(252,414평), 건물 93,753㎡(28,360평) ○ 교육생 급식관리(24명)
2025	○ 시설, 청소 및 경비 등(58명) - 부지 834,425㎡(252,414평), 건물 93,753㎡(28,360평) ○ 교육생 급식관리(24명)
2026	○ 시설, 청소 및 경비 등(58명) - 부지 834,425㎡(252,414평), 건물 93,753㎡(28,360평) ○ 교육생 급식관리(24명)

③ 향후(2027년도 이후) 기대효과
- 연수원 시설 운영·관리를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및 개선
- 양질의 급식 제공 및 위생관리 등 급식 관리의 효율성 제고
- 직장어린이집 운영을 통해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계획수립 → 발주/계약 → 설계/공사 등 → 완료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25~2029	5,437	5,496	5,661	5,831	6,006	
2026~2030		5,611	5,678	5,848	6,024	6,205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공무직 중도퇴사 및 공무원 초과현원 점검을 통한 조직의 안정적 운영 방안 마련 필요(법사위 결산 검토보고서, 24결산)
2) 감사원 지적 : 해당없음
3) 기타 언론 및 민원 : 해당없음
4)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공무직 장기 근속 유도를 위한 근무환경 개선 및 배려, 사법연수원 정원 이체를 통한 인력 증원 현실화 등 조직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해당없음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2) 동 사업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 : 해당없음

13) 2026년도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 결과 및 후속 조치 현황 : 해당없음

14) 부처 건의사항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3	4,705	-	4,705	-	△14	-	4,691	4,583	97.4	97.7	-	108
2024	5,032	-	5,032	-	-	-	5,032	4,776	94.9	94.9	-	256
2025	5,437	-	5,437	-	-	-	5,437	5,187	95.4	95.4	-	250
2026	5,611	-	5,611	-	-	-	5,611	3,132	55.8	55.8	-	-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본예산	추경(A)								
2023	20	20	20	20	-	20	20	-	-	100.0
2024	40	40	36	36	-	36	36	-	-	90.0
2025	40	40	38	38	-	38	38	-	-	95.0
2026. 7월기준	40	40	19	19	-	19	19	-	-	47.5

2) 주요 결산사항

□ 2023~2026년 결산사항

2023	- 내역변경 사유 : 국외훈련 논문심사에 필요한 기관전용 표절검사서비스 구입을 위해 '법무, 검찰공무원 등 교육운영 및 개선' 사업으로 14백만원 내역변경 - 불용 사유 : 집행잔액 108백만원
2024	- 불용 사유 : 집행잔액 256백만원
2025	- 불용 사유 : 집행잔액 250백만원
2026	- 해당없음

□ 2026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

□ 2026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 해당없음

사 업 명
법무·공소청 공무원 등 교육운영 및 개선(5131-3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법무부	법무연수원	일반회계	020	022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5100	5131	301
명칭	법무교육훈련	연수원운영	법무·공소청 공무원 등 교육운영 및 개선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6예산 시 소관
	O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법무·공소청 공무원 등 교육운영 및 개선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법무연수원	(代)김태호	박창현	설영웅
		기획과	043-531-1570	043-531-1571	043-531-1573
	사업시행주체	-	-	-	-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년 결산	2026년 예산		2027년		증감 (B-A)	(B-A)/A
		본예산(A)	추경	요구안	조정안(B)		
법무·공소청 공무원 등 교육운영 및 개선	1,432	1,579	1,579	2,046	2,046	467	29.6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25					2026(2026.7월말)							2027 예산안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1,577	1,577	1,432	-	145	1,579	1,579	905	1,579	905	-	-	2,046
・교육운영	888	888	886	-	2	1,226	1,226	700	1,226	700	-	-	1,114
・교육운영 지원	689	689	546	-	143	353	353	205	353	205	-	-	932
○ 비목별 분류(합계)	1,577	1,577	1,432	-	145	1,579	1,579	905	1,579	905	-	-	2,046
· 일용임금(110-04)	60	60	-	-	60	-	-	-	-	-	-	-	-
· 일반수용비(210-01)	747	747	747	-	-	947	947	623	947	623	-	-	920
· 공공요금(210-02)	102	102	102	-	-	102	102	62	102	62	-	-	162
· 특근매식비(210-05)	17	17	16	-	1	19	19	4	19	4	-	-	-
· 임차료(210-08)	7	7	-	-	7	-	-	-	-	-	-	-	15
· 일반용역비(210-14)	22	22	21	-	1	32	32	11	32	11	-	-	32
· 관리용역비(210-15)	101	101	93	-	8	-	-	-	-	-	-	-	167
· 국내여비(220-01)	2	2	2	-	-	2	2	2	2	2	-	-	2
· 국외업무여비(220-02)	7	7	-	-	7	-	-	-	-	-	-	-	-
· 사업추진비(240-01)	147	147	147	-	-	147	147	105	147	105	-	-	147
· 일반연구비(260-01)	300	300	244	-	56	144	144	58	144	58	-	-	144
· 정책연구비(260-02)	20	20	20	-	-	20	20	-	20	-	-	-	-
· 고용부담금(320-09)	5	5	-	-	5	-	-	-	-	-	-	-	-
· 자산취득비(430-01)	40	40	40	-	-	166	166	40	166	40	-	-	457

	2025					2026(2026.7월말)							2027 예산안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1,577	1,577	1,432	-	145	1,579	1,579	905	1,579	905	-	-	2,046
・교육운영	888	888	886	-	2	1,226	1,226	700	1,226	700	-	-	1,114
- 일 반 수 용 비 (210-01)	747	747	747	-	-	947	947	623	947	623	-	-	920
- 공 공 요 금 (210-02)	102	102	102	-	-	102	102	62	102	62	-	-	162
- 특 근 매 식 비 (210-05)	17	17	16	-	1	19	19	4	19	4	-	-	-
- 일 반 용 역 비 (210-14)	22	22	21	-	1	32	32	11	32	11	-	-	32
- 자 산 취 득 비 (430-01)	-	-	-	-	-	126	126	-	126	-	-	-	-
・교육운영 지원	689	689	546	-	143	353	353	205	353	205	-	-	932
- 일 용 임 금 (110-04)	60	60	-	-	60	-	-	-	-	-	-	-	-
-임차료(210-08)	7	7	-	-	7	-	-	-	-	-	-	-	15
- 관 리 용 역 비 (210-15)	101	101	93	-	8	-	-	-	-	-	-	-	167
- 국 내 여 비 (220-01)	2	2	2	-	-	2	2	2	2	2	-	-	2
-국외업무여비 (220-02)	7	7	-	-	7	-	-	-	-	-	-	-	-
- 사 업 추 진 비 (240-01)	147	147	147	-	-	147	147	105	147	105	-	-	147
- 일 반 연 구 비 (260-01)	300	300	244	-	56	144	144	58	144	58	-	-	144
- 정 책 연 구 비 (260-02)	20	20	20	-	-	20	20	-	20	-	-	-	-
-고용부담금(320-09)	5	5	-	-	5	-	-	-	-	-	-	-	-
- 자 산 취 득 비 (430-01)	40	40	40	-	-	40	40	40	40	40	-	-	457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법무·공소청 공무원 등 교육운영 및 개선)
- (교육운영) 동 내역사업은 법무·공소청 공무원 및 타기관 소속 공무원의 집합·사이버 교육을 위해 강사료, 교재인쇄비 등을 지원하는 것임
- (교육운영 지원) 동 내역사업은 법무· 공소청 공무원 및 타기관 소속 공무원의 집합·사이버 교육을 위해 간담회, 교육 관련 출장여비 등을 지원하는 것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10조(공무원의 자기개발 등) "행정기관의 장은 인재개발계획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자기개발계획 수립·실천과 직무역량 향상을 위한 연구모임 활동 및 경력개발 등을 위한 교육훈련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추진경위

- 2007년 상시학습제도 도입, 2008년 「형사소송법」의 전면적인 개정으로 인한 교육과정 신설 및 교육 인프라 구축
- 2009년 식품·환경·소방 등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사건을 다수 처리하는 특별사법경찰 교육 과정 및 2011년 국가송무 수행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신설·운영
- 2013년 행정안전부의 9급 신규자 공채 시험방식 변경, 하위직 신규자 기본교육 확대 방침에 따라 교육과정 확대 개편 추진
- 2018년 직무교육 체계를 개편, 신규임용자, 승진자 등 단계별 역량을 강화하고 전문분야 교육은 목표중심 단기교육(타겟형교육)으로 전환하여 교육 효과 제고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08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3	2024	2025	2026	2027(안)
사업비	1,745	1,605	1,577	1,579	2,046

- 기타: 2025년 집합교육 인원 11,023명, 사이버교육 인원 475,323명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법무부 법무연수원
- 사업 수혜자 : 법무·공소청 공무원 및 유관기관 공무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7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

□ **법무·공소청 공무원 등 교육운영 및 개선 : (2026 본예산) 1,579백만원 → (2027 예산안) 2,046백만원, 467백만원 증액**

① **교육운영 : (2026 본예산) 1,226백만원 → (2027 예산안) 1,114백만원, 112백만원 감액**

- (요구) 법무·공소청 공무원 및 타기관 소속 공무원 대상 집합·사이버교육을 위한 강사료, 교재인쇄비 등
- (산출) 강사료, 인쇄비 등 집합교육 운영비 850백만원
  수업목적 저작물 보상금 70백만원
  사이버교육 인터넷 회선료 등 162백만원
  리더십 교육과정 등 현장체험 위탁교육 32백만원

ㅇ 2026년도 예산 및 2027년도 예산안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2027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226,107	○ **일반수용비(210-01) : 947,000천원** 가. 교육교재 등 인쇄비 (103,800천원) ・법무검찰과정 : 44,000천원 ・국가송무, 특별사법경찰 과정 : 26,400천원 ・법무핵심리더과정 등 : 33,400천원 나. 교육기자재, 수료증 제작, 사무용품, 홍보물 등 (29,761천원) ・2,480천원×12월=29,761천원 다. 교육운영경비(법무핵심리더양성) (18,400천원) ・2기관×9,200천원=18,400천원 라. 교육훈련기관 초빙강사료 (695,060천원) ・ 사이버교육 강사수당 : 62,050천원 ・ 법무검찰공무원 교육과정 강사료 : 336,100천원 ・ 국가송무,특별사법경찰과정 강사료 : 103,470천원 ・ 검사 고위관리자 역량강화 과정 강사료 : 38,520천원 ・ 검사 중견관리자 과정 강사료 : 76,040천원 ・ 일반직 관리자 과정 강사료 : 78,880천원 ・ 조정 (△21천원) 마.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100,000천원 ・ (대면)7백만 + (원격)93백만 ○ **공공요금및제세(210-02) : 102,000천원** 가. 사이버교육용 인터넷 전용회선 사용료 등 (79,116천원)	교육운영 1,114	○ **일반수용비(210-01) : 920,107천원** 가. 교육교재 등 인쇄비 (103,800천원) ・법무·공소청공무원과정 : 44,000천원 ・국가송무, 특별사법경찰 과정 : 26,400천원 ・법무핵심리더과정 등 : 33,400천원 나. 교육기자재, 수료증 제작, 사무용품, 홍보물 등 (29,761천원) ・2,480천원×12월=29,761천원 다. 교육운영경비(법무핵심리더양성) (18,400천원) ・2기관×9,200천원=18,400천원 라. 교육훈련기관 초빙강사료 (698,146천원) ・ 사이버교육 강사수당 : 62,050천원 ・ 법무·공소청 공무원 등 교육과정 강사료 : 339,100천원 ・ 국가송무,특별사법경찰과정 강사료 : 103,470천원 ・ 검사 고위관리자 역량강화 과정 강사료 : 38,520천원 ・ 검사 중견관리자 과정 강사료 : 76,040천원 ・ 일반직 관리자 과정 강사료 : 78,880천원 ・ 조정 (86천원) 마.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70,000천원 ・ (대면)5백만 + (원격)65백만 ○ **공공요금및제세(210-02) : 162,000천원**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2027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 6,593천원×12월=79,116천원 나. 메세지 서비스(SMS) 이용료 등 (22,992천원) ・ 1,916천원×12월=22,992천원 다. 조정 (△108천원) ○ **특근매식비(210-05) : 19,000천원** 가. 특근매식비 (18,900천원) ・ 35명×9,,000원×5일×12월=18,900천원 나. 조정 (△100천원) ○ **일반용역비(210-14) : 32,000천원** 가. 핵심리더양성과정 등 교육생 역량강화 (32,000천원) ・ 검사 고위관리자 역량강화 과정 : 10,000천원 ・ 검사 중견관리자 역량강화 과정 : 10,000천원 ・ 일반직 관리자 등 역량강화 과정 : 12000천원 ○ **자산취득비(430-01) : 126,107천원** 가. 사이버교육 스튜디오 및 자동 녹화시스템 구축(126,107천원) ・ 스튜디오실 구축(86백만원), 자동 녹화시스템 구축(40백만원)		가. 사이버교육용 인터넷 전용회선 사용료 등 (139,008천원) ・ 11,584천원×12월=139,008천원 나. 메세지 서비스(SMS) 이용료 등 (22,992천원) ・ 1,916천원×12월=22,992천원 ○ **일반용역비(210-14) : 32,000천원** 가. 핵심리더양성과정 등 교육생 역량강화 (32,000천원) ・ 검사 고위관리자 역량강화 과정 : 10,000천원 ・ 검사 중견관리자 역량강화 과정 : 10,000천원 ・ 일반직 관리자 등 역량강화 과정 : 12000천원

② 교육운영 지원

: (2026 본예산) 353백만원 → (2027 요구) 932백만원, 579백만원 증액

- (요구) 법무·공소청 공무원 및 타 기관 소속 공무원 대상 집합·사이버교육 질적 제고를 위한 증액 요구
- (산출) 표절검사 프로그램 15백만원
  전산장비 유지보수 167백만원
  교육 관련 출장여비 2백만원
  교육과정 관련 감담회 147백만원
  사이버교육(이러닝) 콘텐츠 개편 144백만원
  노후 교육 장비 교체 457백만원

ㅇ 2026년도 예산 및 2027년도 예산안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6년 본예산		2027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220,740	○ **국내여비(220-01) : 1,783천원** 가. 교육생 현장학습 등 교육관련 국내여비 (1,783천원) ○ **사업추진비(240-01) : 147,110천원** 가. 법무검찰 신규 및 경력자과정 (39,150천원) ・ 과정별 교육생 및 교수 간담회 : 25천원×30명×49회=36,750천원 ・ 유관기관 간담회 : 200천원×12회=2,400천원 나. 법무핵심리더 (15,375천원) ・ 교육생 및 교수 간담회 : 25천원×23명×25회=14,375천원 ・ 유관기관 간담회 : 200천원×5회=1,000천원 다. 신임.저년차 등 검사교육 관련 간담회 (92,400천원) ・ 30천원×154명×20회=92,400천원 라. 조정 (185천원) ○ **일반연구비(260-01) : 144,000천원** 가. 검사교육용 콘텐츠 개발 (29,760천원) 나. 일반직렬(보호, 검찰, 출입국관리) 콘텐츠 개발 (49,829천원)	195,662	○ **임차료(210-15) : 15,000천원** 가. 표절검사 프로그램 사용료 (15,000천원) ○ **관리용역비(210-15) : 167,000천원** 가. 전산장비 유지보수 (166,449천원) 나. 조정 (551천원) ○ **국내여비(220-01) : 1,783천원** 가. 교육생 현장학습 등 교육관련 국내여비 (1,783천원) ○ **사업추진비(240-01) : 147,110천원** 가. 신규자 및 일반재직자 교육 (39,150천원) ・ 과정별 교육생 및 교수 간담회 : 25천원×30명×49회=36,750천원 ・ 유관기관 간담회 : 200천원×12회=2,400천원 나. 법무핵심리더 (15,375천원) ・ 교육생 및 교수 간담회 : 25천원×23명×25회=14,375천원 ・ 유관기관 간담회 : 200천원×5회=1,000천원

2026년 본예산		2027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다. 교정직렬 콘텐츠 개발 (34,497천원) 라. 사이버교육 콘텐츠 품질개선 및 노후 콘텐츠 개발 (30,664천원) 마. 조정 (△696천원) ○ **정책연구비(260-02) : 20,000천원** 가. 법무행정발전을위한 연구조사 (20,000천원) ○ **자산취득비(430-01) : 40,000천원** 가. 교육훈련 관련 전산장비, 프로그램 등 구입(40,000천원)		다. 신임.저년차 등 검사교육 관련 간담회 (92,400천원) ・ 30천원×154명×20회=92,400천원 라. 조정 (185천원) ○ **일반연구비(260-01) : 144,000천원** 가. 검사교육용 콘텐츠 개발 (29,760천원) 나. 법무(보호, 출입국관리)·공소청 일반직렬 콘텐츠 개발 (49,829천원) 다. 교정직렬 콘텐츠 개발 (34,497천원) 라. 사이버교육 콘텐츠 품질개선 및 노후 콘텐츠 개발 (30,664천원) 마. 조정 (△696천원) ○ **자산취득비(430-01) : 457,000천원** 가. 교육훈련 관련 전산장비, 프로그램 등 구입(40,000천원) 나. 노후 교육 장비 교체(417,000천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3~2027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3	2024	2025	2026	2027	2027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교육프로그램 만족도 (단위: %)	목표	89.9	90.0	92.5	92.6	93.0	최근 3년간 실적치 평균 및 직전년도 실적치 고려	5점척도 문항별 평균값 × 20 (백분율 환산)	교육과정 종료시 설문조사
	실적	91.6	92.4	92.9	-	-			
	달성도	101.9	102.7	100.4	-	-			
교육 참가자 수 (단위: 명)	목표	-	11,000 (신규)	-	-	-	-	집합교육 실적인원	교육운영시스템 자료 활용
	실적	-	11,385	-	-	-			
	달성도	-	103.5	-	-	-			
교육계획인원 대비 교육실적 달성률 (단위: %)	목표	80.2	-	-			-	집합교육 실적인원 / 교육운영 계획인원	교육운영시스템 자료 활용
	실적	94.5	-	-	-	-			
	달성도	117.8	-	-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3	○ 집합교육 실적 - 검사 교육 : 경력검사 단계별 및 타겟형 교육 총 23회, 456명 - 일반직 교육 : 검찰·보호·출입국관리·교정 총 217회, 8,590명 - 특별사법경찰 교육 : 총 18회, 900명 - 공익법무관 등 기타 교육 : 총 2회, 75명 ○ 사이버교육 실적 - 사이버교육 운영 : 761과정, 499,411명
2024	○ 집합교육 실적 - 검사 교육 : 경력검사 단계별 및 전문화 교육 총 25회, 543명 - 일반직 교육 : 검찰·보호·출입국관리·교정 총 231회, 9,270명 - 특별사법경찰 교육 : 총 17회, 744명 - 공익법무관 교육 : 총 1회, 68명 ○ 사이버교육 실적 - 사이버교육 운영 : 586과정, 487,963명
2025	○ 집합교육 실적 - 검사 교육 : 경력검사 단계별 및 전문화 교육 총 27회, 630명 - 일반직 교육 : 검찰·보호·출입국관리·교정 총 229회, 8,525명 - 특별사법경찰 교육 : 총 17회, 752명 - 공익법무관 교육 : 총 1회, 64명 ○ 사이버교육 실적 - 사이버교육 운영 : 546과정, 475,323명
2026(7월)	○ 집합교육 실적 - 검사 교육 : 경력검사 단계별 및 전문화 교육 총 19회, 490명 - 일반직 교육 : 검찰·보호·출입국관리·교정 총 122회, 4,928명 - 특별사법경찰 교육 : 총 11회, 469명 - 공익법무관 교육 : 총 1회, 32명 ○ 사이버교육 실적 - 사이버교육 운영 : 550과정, 345,916명

③ 향후(2027년도 이후) 기대효과

- 국민 권익을 증진하고, 환경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고도의 직무 전문성을 갖춘 인재 양성
- 사이버교육 H/W, S/W 시스템 구축으로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시대에 적합한 교육 환경을 제공
- 인권의식, 성인지감수성 향상을 통해 수평적 조직문화 조성에 기여하고, 인권과 민생을 중시하는 법무·공소청 공무원 양성
- ’26년 집합교육 목표 12,755명, 사이버 교육 목표 인원 433,090명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교육훈련계획 수립 ⇒ 교육실시 ⇒ 평가 및 결과 환류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25~2029	1,577	2,272	1,830	1,885	1,942	
2026~2030		1,579	2,168	1,726	1,775	1,828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국회(상임위 등)	지적사항
- 법사위, 23결산	'사이버교육시스템 및 전산장비 유지관리용역비'는 예산집행지침 상 관리용역비이므로 시설장비유지비로 집행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법무행정정보화(정보화)(7034-500) 사업"의 세사업인 '법무정보 사이버보안 시스템운영'의 관리용역비로 혼용 집행되고 있음
- 법사위 예산 검토보고서, 24 예산	강사료 및 교재인쇄비를 "법무연수원 기본경비(7018-254) 사업"과 "법무·검찰공무원 등 교육운영 및 개선(5131-301) 사업"에 구분하여 편성하고 있어, 이를 동 사업 내에 이관하고 관리·감독 상 효율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 법사위 결산 검토보고서, 24 결산	법무연수원은 교육훈련의 업무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교육프로그램 만족도'를 대표지표로 선정하고 실적을 관리하고 있는데, 매년 초과달성은 목표치를 소극적으로 설정함에 기인하고 있으므로 지표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법사위 예산 검토보고서, 25 예산	2021, 2023년에 비상임위원의 위촉 기간이 3개월로 종료되거나 2024년 비상임위원이 위촉되지 않는 등 사업이 원활하지 못하여 불용액 발생 등 집행 실적이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위촉대상 확대방안을 검토하거나 사업 예산 편성이 필요한지 등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예정처 결산 검토보고서, 25 결산	2025년 회계연도에서 비상임연구위원 관련 예산 전액 불용되었고 2026년 예산은 미편성된 상태. 비상임연구위원제도의 존속 여부를 검토하고 존속할 경우 전액 불용되는 집행부진이 발생하지 않도록 채용상 보완책을 마련하고, 채용 후에는 연구결과물의 체계적 평가 및 활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방안 마련할 필요 있음
- 법사위, 26예산	현재 표절관리 시스템 구독을 '임차료(210-07)에서 집행하고 있는데, 국외훈련 검사 논문의 철저한 관리를 위해 표절관리 시스템 구독을 위한 별도 예산 편성 필요

2) 감사원 감사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3) 자체평가·감사

4)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5)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지적사항	후속 조치사항
'사이버교육시스템 및 전산장비 유지관리용역비'는 예산집행지침 상 관리용역비이므로 시설장비유지비로 집행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법무행정정보화(정보화)(7034-500) 사업"의 세사업인 '법무정보 사이버보안시스템운영'의 관리용역비로 혼용 집행되고 있음	'법무·검찰공무원 등 교육운영 및 개선'사업의 시설장비 유지비를 관리용역비로 비목 변경 편성하고, 혼용 집행되지 않도록 집행 방안 개선
강사료 및 교재인쇄비를 "법무연수원 기본경비(7018-254) 사업"과 "법무·검찰공무원 등 교육운영 및 개선(5131-301) 사업"에 구분하여 편성하고 있어, 이를 동 사업 내에 이관하고 관리·감독 상 효율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교육 기능의 안정적 수행을 위해 기본경비 유지
법무연수원은 교육훈련의 업무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교육프로그램 만족도'를 대표지표로 선정하고 실적을 관리하고 있는데, 매년 초과달성은 목표치를 소극적으로 설정함에 기인하고 있으므로 지표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25년 목표치를 최근 3년 실적 평균(91.8) 및 직전년도 목표 실적을 고려하여 92.5점으로 상향 조정하였고, '26년 목표치를 92.6점으로 상향함

2021, 2023년에 비상임위원의 위촉 기간이 3개월로 종료되거나 2024년 비상임위원이 위촉되지 않는 등 사업이 원활하지 못하여 불용액 발생 등 집행 실적이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위촉대상 확대방안을 검토하거나 사업 예산 편성이 필요한지 등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음	신규 위촉을 위해 프랑스 국립사법관학교 및 파리 제1대학과 논의를 진행하였으나 구체적 성과 부재, '26년 예산 지출구조조정을 통한 예산 편성 제외
2025년 회계연도에서 비상임연구위원 관련 예산 전액 불용되었고 2026년 예산은 미편성된 상태. 비상임연구위원제도의 존속 여부를 검토하고 존속할 경우 전액 불용되는 집행부진이 발생하지 않도록 채용상 보완책을 마련하고, 채용 후에는 연구결과물의 체계적 평가 및 활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방안 마련할 필요 있음	보수 등 처우를 현실에 맞게 반영한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 중이며, 국제검사협회 직접 방문 협의 등을 통해 비상임연구위원을 위촉하기 위해 노력
현재 표절관리 시스템 구독을 '임차료(210-07)에서 집행하고 있는데, 국외훈련검사 논문의 철저한 관리를 위해 표절관리 시스템 구독을 위한 별도 예산 편성 필요	'27회계연도부터 표절관리 시스템 구독을 위한 별도 예산 15백만원 편성 노력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해당없음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2) 동 사업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 : 해당없음

13) 2026년도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 결과 및 후속 조치 현황 : 해당없음

14) 부처 건의사항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3	1,745	-	1,745	-	14	-	1,759	1,642	94.1	93.3	-	117
2024	1,605	-	1,605	-	-	-	1,605	1,427	88.9	88.9	-	178
2025	1,577	-	1,577	-	-	-	1,577	1,432	90.8	90.8	-	145
2026	1,579	-	1,579	-	-	-	1,579	905	57.3	57.3	-	-

2) 주요 결산사항

□ 2023~2026년 결산사항

2023	- 조달 계약 낙찰차액, 교육 취소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 117백만원, 국외훈련 논문심사에 필요한 기관전용 표절검사서비스 구입을 위한 내역변경 14백만원
2024	- 조달 계약 낙찰차액, 교육 취소, 비상임연구위원 위촉 공백, '23 회계연도 결산 지적에 따른 집행 개선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 178백만원
2025	- 조달 계약 낙찰차액, 교육 취소, 비상임연구위원 위촉 공백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 145백만원
2026	-

□ 2026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

□ 2026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 해당없음

사 업 명
법무연수원 수입대체경비 (5131-31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법무부	법무연수원	일반회계	020	022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5100	5131	311
명칭	법무교육훈련	연수원운영	법무연수원 수입대체경비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6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법무연수원 수입대체경비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법무연수원	서혜주	이자희	조예덕
		총무과	043-531-1540	043-531-1541	043-531-1554
	사업시행주체	-	-	-	-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년 결산	2026년 예산		2027년		증감 (B-A)	(B-A)/A
		본예산(A)	추경	요구안	조정안(B)		
법무연수원 수입대체경비	135	137	137	137	137	-	-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25					2026(2026.7월말)							2027 예산안
	예산액(추경)	예산현액	집행액[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현액	집행액[실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예상액	불용예상액	
									예산현액	집행액[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137	137	135	-	2	137	137	70	137	70	-	-	137
· 교육 운영	137	137	135	-	2	137	137	70	137	70	-	-	137
○ 비목별 분류(합계)	137	137	135	-	2	137	137	70	137	70	-	-	137
· 일반수용비(210-01)	5	5	5	-	-	5	5	3	5	3	-	-	5
· 공공요금및제세(210-02)	9	9	9	-	-	9	9	5	9	5	-	-	9
· 급식비(210-04)	123	123	121	-	2	123	123	62	123	62	-	-	123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137	137	135	-	2	137	137	70	137	70	-	-	137
· 교육 운영	137	137	135	-	2	137	137	70	137	70	-	-	137
- 일반수용비(210-01)	5	5	5	-	-	5	5	3	5	3	-	-	5
-공공요금및제세(210-02)	9	9	9	-	-	9	9	5	9	5	-	-	9
-급식비(210-04)	123	123	121	-	2	123	123	62	123	62	-	-	123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교육 운영) 법무부 외 타 기관 교육생을 대상으로 양질의 급식 제공 및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통한 교육생 만족도 제고 및 교육효과 극대화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국가재정법 제53조

② 추진경위 : 법무연수원에서 교육대상자로부터 징수하는 교육료로 2011회계연도부터 수입대체경비로 지정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11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3	2024	2025	2026	2027(안)
사업비	151	137	137	137	137

- 기타: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법무부 법무연수원
- 사업 수혜자 : 유관기관 공무원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7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

① 교육 운영
: ('26) 137백만원 → ('27요구) 137백만원, 전년동
- (요구) 타 기관 교육생 교육비로 전년 수준 요구
- (산출) 11.4백만원×12월(2026년) → 11.4백만원×12월(2027년)

○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안 산출 세부내역 비교

'26년 예산		'27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37,000	○ 일반수용비(210-01) : 5,000천원 ○ 공공요금및제세(210-02) : 9,000천원 ○ 급식비(210-05) : 123,000천원	137,000	○ 일반수용비(210-01) : 5,000천원 ○ 공공요금및제세(210-02) : 9,000천원 ○ 급식비(210-05) : 123,000천원

4) 사업효과 : 해당없음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해당없음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25~2029	137	137	137	137	137	
2026~2030		137	137	137	137	137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사업비 집행률(85.8%) 제고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 필요(법사위 결산 검토보고서, 24결산)

2) 감사원 지적 : 해당없음

3) 기타 언론 및 민원 : 해당없음

4)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코로나19 상황 이후 집합교육이 정상화됨에 따라 '25년 집행률 98.5%를 달성하였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해당없음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2) 동 사업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 : 해당없음

13) 2026년도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 결과 및 후속 조치 현황 : 해당없음

14) 부처 건의사항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3	151	-	151	-	-	-	151	111	73.5	73.5	-	40
2024	137	-	137	-	-	-	137	118	86.1	86.1	-	19
2025	137	-	137	-	-	-	137	135	98.5	98.5	-	2
2026	137	-	137	-	-	-	137	70	51.9	51.9	-	-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 해당없음

2) 주요 결산사항

□ 2023~2026년 결산사항

2023	- 불용 사유 : 집행잔액 40백만원
2024	- 불용 사유 : 집행잔액 19백만원
2025	- 불용 사유 : 집행잔액 2백만원
2026	- 해당없음

□ 2026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

□ 2026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 해당없음

사 업 명
신임검사 양성 및 교육 지원 (5131-31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법무부	법무연수원	일반회계	020	022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5100	5131	312
명칭	법무교육훈련	연수원운영	신임검사 양성 및 교육 지원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6예산 시 소관
	O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신임검사 양성 및 교육 지원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법무연수원	김지영	김춘	김도엽
		법무교육과	031-288-2250	031-288-2251	031-288-2252
	사업시행주체	-	-	-	-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년 결산	2026년 예산		2027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요구안	조정안(B)		(B-A)/A
신임검사 양성 및 교육 지원	999	1,008	1,008	1,008	1,008	-	-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25					2026(2026년 7월말)							2027 예산안
	예산액(추경)	예산현액	집행액[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현액	집행액[실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예상액	불용예상액	
									예산현액	집행액[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1,008	1,008	999	0	9	1,008	1,008	583	1,008	583	0	0	1,008
· 교육운영	604	604	604	0	0	604	604	384	604	384	0	0	604
· 교육운영 지원	404	404	395	0	9	404	404	199	404	199	0	0	404
○ 비목별 분류(합계)	1,008	1,008	999	0	9	1,008	1,008	583	1,008	583	0	0	1,008
· 일반수용비 (210-01)	490	490	490	0	0	490	490	289	490	289	0	0	490
· 급식비 (210-04)	45	45	45	0	0	45	45	33	45	33	0	0	45
· 임차료 (210-07)	69	69	69	0	0	69	69	62	69	62	0	0	69
· 국외업무여비 (220-02)	26	26	17	0	9	26	26	26	26	26	0	0	26
· 사업추진비 (240-01)	20	20	20	0	0	20	20	14	20	14	0	0	20
· 정책연구비 (260-02)	20	20	20	0	0	20	20	0	20	0	0	0	20
· 공사비 (420-03)	323	323	323	0	0	323	323	151	323	151	0	0	323
· 자산취득비 (430-01)	15	15	15	0	0	15	15	8	15	8	0	0	15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1,008	1,008	999	0	9	1,008	1,008	583	1,008	583	0	0	1,008
· 교육운영	604	604	604	0	0	604	604	384	604	384	0	0	604
- 일반수용비 (210-01)	490	490	490	0	0	490	490	289	490	289	0	0	490
-급식비 (210-04)	45	45	45	0	0	45	45	33	45	33	0	0	45
-임차료 (210-07)	69	69	69	0	0	69	69	62	69	62	0	0	69

	2025					2026(2026년 7월말)							2027 예산안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교육운영지원	404	404	395	0	9	404	404	199	404	199	0	0	404
-국외업무여비 (220-02)	26	26	17	0	9	26	26	26	26	26	0	0	26
-사업추진비 (240-01)	20	20	20	0	0	20	20	14	20	14	0	0	20
-정책연구비 (260-02)	20	20	20	0	0	20	20	0	20	0	0	0	20
-공사비 (420-03)	323	323	323	0	0	323	323	151	323	151	0	0	323
-자산취득비 (430-01)	15	15	15	0	0	15	15	8	15	8	0	0	15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신임검사 양성 및 교육 지원)** 사법연수원 및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수료 후 임관된 신임검사에 대한 교육 및 법학전문대학원 공소청 실무 강의 등 지원을 통해 실무능력을 갖춘 법조인력 양성
- **(교육운영)** 신임검사교육 및 법학전문대학원생 공소청 실무실습을 위한 강사수당, 교재 인쇄비 등
- **(교육운영지원)** 신임검사교육 및 법학전문대학원생 공소청 실무실습을 위한 교육운영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등의 책무) “국가는 법조인의 양성을 위하여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2010. 8.부터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요원 선발하여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공소청실무 강의 및 강의교재 발간 등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에 따른 전문적인 경험과

지식을 갖춘 교수요원을 양성하고 법학전문대학원에 필요한 교재를 개발하여 전문성과 실무능력을 갖춘 법조인력 양성에 필요한 지원

- 2010년부터 여름방학 기간 동안 법학전문대학원 2학년 400~500명을 1, 2차로 나누어 2주간의 일반실무실습 교육프로그램 진행
- 2011년부터 법학전문대학원 3학년 진학예정자 중 성적우수자원 180~240명을 선발, 3주간의 심화실무실습 교육프로그램 진행
- 2012. 4.부터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변호사시험 합격자 중에서 신임검사 42명 임용 후 법무연수원에서 매년 1년 미만 과정으로 교육 실시
  (2013년 37명, 2014년 35명, 2015년 45명, 2016년 49명, 2017년 50명, 2018년 112명, 2019년 118명, 2020년 132명, 2021년 101명, 2022년 89명, 2023년 95명, 2024년 145명, 2025년 139명 등 전년까지 1,147명 교육 수료)
- 2026. 5. 6.부터 2026. 6. 26.까지 법학전문대학원 출신(경력) 신임검사 48명 교육 후 수료, 2026. 8. 4.부터 2026. 10. 8.까지 법학전문대학원 출신(법무관) 신임검사 19명, 2026. 5. 6.부터 2026. 10. 8.까지 법학전문대학원 출신(당해) 신임검사 86명 등 105명 교육 진행 중

※ 2018년부터 사법연수원 및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신임검사 통합교육실시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사업기간 : 2009 ~ 계속(로스쿨 지원 및 국제협력)
  2012 ~ 계속(로스쿨 출신 신임검사 교육)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164	1,188	1,008	1,008	1,008

- 기타 :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법무연수원
- 사업수혜자 : 신임검사 및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7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

① 교육운영

: ('26) 604백만원→ ('27요구) 604백만원 (전년동)

- (요구) 신임검사교육 및 법학전문대학원 공소청 실무교육의 강사료, 교재인쇄, 교육물품, 구입, 급식비, 차량 임차 등 교육운영경비
- (산출) 604백만원

* 교육인쇄 등 운영경비 : ('26) 472백만원 → ('27요구) 556백만원 (+84백만원)

・신임검사 교재인쇄 등 교육운영비 : 433백만원 (+44백만원)

・법학전문대학원 교재발간 등 교육운영비 : 123백만원 (+40백만원)

* 강사수당 : ('26) 132백만원 → ('27요구) 48백만원 (△84백만원)

・신임검사 교육 강사료 : 40백만원 (△80백만원)

・법학전문대학원생 공소청 실무실습과정 강사료 : 5백만원 (△4백만원)

・교수 양성과정 강사료 : 3백만원 (전년동)

ㅇ 2026년도 예산 및 2027년도 예산안 산출 세부내역 비교

'26년 예산		'27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603,303	○ **일반수용비(210-01) : 489,678천원** 가. 교육운영 경비 1> 교재 집필 원고료 : 3백만원×5권=15,000천원 2> 교재 인쇄비 : 194,400천원 ・기본교재인쇄 18천원×80권×100부=144,000천원 ・교육자료등인쇄 18천원×80명×35주=50,400천원 3> 도서구입비 : 9,600천원 ・국내법률교양서적 4만원×100권=4,000천원 ・국외법률서적 8만원×70권=5,600천원 4> 교육운영경비 : 1,200천원×35주=42,000천원 5> 각종 물품구입(사무용품 등) : 27,374천원 6> 법학전문대학원 교재 발간비용 : 55,000천원 ・실무교재인쇄 35,000천원 ・법학전문대학원생 검찰실무실습관련교재발간비용 20,000천원 7> 법학전문대학원 실무교육 및 검찰실무실습 운영경비 ・ 법학전문대학원생 실무교육 운영경비 : 6,000천원 ・ 검찰실무실습 교육물품구입(현수막, 문구류 등 사무용품) : 7,731천원 8> 교육훈련기관 초빙강사료 : 132,800천원 - 신임검사 교육과정 강사료 : 122,800천원 - 법학전문대학원생 검찰심화실무실습과정 강사료 : 7,400천원 - 법학전문대학원생 검찰일반실무실습과정 강사료 : 3,960천원 - 교수요원 양성과정 초빙강사료 : 2,600천원 나. 조정재원 (-227천원) ○ **급식비(210-04) : 44,500천원** 가. 신임검사 교육생 급식비 ○ **임차료(210-07) : 69,125천원** 가. 차량 임차 : 57,100천원 ・견학및봉사활동 400천원×4대×7일=11,200천원 ・통원차량 4,400천원×1대×8월=35,200천원 ・검찰실무실습통원차량 220천원×3대×15일=9,900천원 나. 전산장비 등 임차 : 12,825천원	603,303	○ **일반수용비(210-01) : 489,678천원** 가. 교육운영 경비 1> 교재 편집비 : 2백만원×40권=80,000천원 2> 교재 인쇄비 : 108,000천원 ・기본교재인쇄 18천원×20권×200부=72,000천원 ・교육자료등인쇄 18천원×10권×200부=36,000천원 3> 도서구입비 : 16,000천원 ・국내법률교양서적 8만원×100권=8,000천원 ・국외법률교양서적 8만원×100권=8,000천원 4> 교육운영경비 : 2,480천원×35주=86,800천원 5> 각종 물품구입(사무용품 등) : 27,374천원 6> 법학전문대학원 교재 발간비용 : 110,000천원 ・실무교재인쇄 90,000천원 ・법학전문대학원생 공소청실무실습관련교재발간비용 20,000천원 7> 법학전문대학원 실무교육 및 공소청실무실습 운영경비 ・ 법학전문대학원생 실무교육 운영경비 : 6,000천원 ・ 공소청실무실습 교육물품구입(현수막, 문구류 등 사무용품) : 7,731천원 8> 교육훈련기관 초빙강사료 : 48,000천원 - 신임검사 교육과정 강사료 : 40,000천원 - 법학전문대학원생 공소청심화실무실습과정 강사료 : 2,500천원 - 법학전문대학원생 공소청일반실무실습과정 강사료 : 2,500천원 - 교수요원 양성과정 초빙강사료 : 3,000천원 나. 조정재원 (-227천원) ○ **급식비(210-04) : 44,500천원** 가. 신임검사 교육생 급식비 ○ **임차료(210-07) : 69,125천원** 가. 차량 임차 : 59,400천원 ・통원차량 8,800천원×1대×6월=52,800천원 ・공소청실무실습통원차량 4,400천원×1대×15일=6,600천원 나. 전산장비 등 임차 : 9,725천원

② 교육운영 지원

: ('26) 404백만원 → ('27요구) 404백만원 (전년동)

- (요구) 신임검사 교육 및 법학전문대학원생 공소청 실무실습에 필요한 교재개발, 교육장 시설개선, 교육 필요 물품 구입 등
- (산출) 404백만원

* 교육장 시설개선 : ('26) 323백만원 → ('27요구) 323백만원 (전년동)

・노후배관, 기계설비 교체, 옥상 방수, 화장실 보수 등 노후시설 개선 공사비

* 교육과정 개선 연구용역 : ('26) 20백만원 → ('27요구) 20백만원 (전년동)

・신임검사 교재개발 연구용역 : 20백만원 (전년동)

* 교육 관련 소요물품 : ('26) 15백만원 → ('27요구) 15백만원 (전년동)

・신임검사 교육 기자재 물품 구입비 : 15백만원 (전년동)

* 국외 검사교육기관 견학 : ('26) 26백만원 → ('27요구) 26백만원 (전년동)

* 교육과정 관련 간담회 : ('26) 20백만원 → ('27요구) 20백만원 (전년동)

・교육생 및 교수진 간담회 : 15백만원 (전년동)

・법학전문대학원생 공소청 일반·심화실습 간담회, 국제연수과정 외빈초청 : 5백만원 (전년동)

ㅇ 2026년도 예산 및 2027년도 예산안 산출 세부내역 비교

'26년 예산		'27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404,697	○ **국외업무여비(210-01) : 25,740천원** 가. 미국 검사교육기관 등 견학 ・항공료 : 7,085천원(검사장)+7,154천원(검사2명)=14,239천원 ・일비 : $48×8일×1명(검사장)=530천원($400) $38×8일×2명(검사)=839천원($640) ・숙박비 : $371×6박×1명(검사장)=3,072천원($2,226) $225×6박×2명(검사)=3,726천원($2,700) ・식비 : $112×8일×1명(검사장)=1,236천원($895) $95×8일×2명(검사)=2,098천원($1,520) 다. 조정재원 (0천원) ○ **사업추진비(210-01) : 20,698천원** 가. 교육생 간담회 : 30,000원×100명×4회=1,200천원 나. 교수진 간담회 : 50,000원×10명×5회=2,500천원 다. 법학전문대학원 관련 간담회 : 50,000원×8명×2회=800천원 라. 검찰실무실습 간담회 : 15,000원×250명×1회=3,750천원 마. 국제연수과정 관련 경비 : 1,648천원 ○ **정책연구비(260-02) : 20,000천원** 가. 교재개발비 : 1건× 20,000천원 ○ **공사비(420-03) : 322,769천원** 가. 노후 배관, 기계설비 교체, 옥상 방수 등 노후시설 개선 공사비 ○ **자산취득비(430-01) : 15,490천원** 가. 교육장 집기류 및 사무기기 구입비 1> 전자교탁, 전자칠판 : 2조×5,500천원 = 11,000천원 2> 강의실 보조모니터 : 2조×2,245천원 = 4,490천원	404,697	○ **국외업무여비(210-01) : 25,740천원** 가. 미국 검사교육기관 등 견학 ・항공료 : 7,085천원(검사장)+7,152천원(검사2명)=14,239천원 ・일비 : $44×8일×1명(검사장)=524천원($352) $35×8일×2명(검사)=834천원($560) ・숙박비 : $343×6박×1명(검사장)=3,066천원($2,058) $208×6박×2명(검사)=3,719천원($2,496) ・식비 : $103×8일×1명(검사장)=1,228천원($824) $88×8일×2명(검사)=2,098천원($1,408) 다. 조정재원 : 34천원(($23) ○ **사업추진비(210-01) : 20,698천원** 가. 교육생 간담회 : 30,000원×100명×4회=12,000천원 나. 교수진 간담회 : 50,000원×10명×5회=2,500천원 다. 법학전문대학원 관련 간담회 : 50,000원×8명×2회=800천원 라. 공소청실무실습 간담회 : 15,000원×250명×1회=3,750천원 마. 국제연수과정 관련 경비 : 1,648천원 ○ **정책연구비(260-02) : 20,000천원** 가. 교재개발비 : 1건× 20,000천원 ○ **공사비(420-03) : 322,769천원** 가. 강의실, 화장실, 생활관 등 노후 교육시설 개선 공사비 ○ **자산취득비(430-01) : 15,490천원** 가. 교육장 집기류 및 사무기기 구입비 1> 교육생 실습용 노트북 : 5대×2,000천원 = 10,000천원 2> 강의실 전자교탁 : 1대×5,490천원 = 5,490천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3~2027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3	2024	2025	2026	2027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교육프로그램 만족도 (단위: %)	목표	89.9	90.0	92.5	92.6	93.0	최근 3년간 실적치 평균 및 직전년도 실적치 고려	5점척도 문항별 평균값 × 20 (백분율 환산)	교육과정 종료시 설문조사
	실적	91.6	92.4	92.9	-	-			
	달성도	101.9	102.7	100.4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3	○ 법무연수원 제12기 신임검사 : 95명 교육 수료 - 2023. 5. 1.~2023. 9. 27. 사법연수원 출신(법조 경력) 신임검사 1명 - 2023. 5. 1.~2023. 9. 27. 법학전문대학원 출신(법조 경력) 신임검사 2명 - 2023. 5. 1.~2024. 1. 5. 법학전문대학원 출신(당해) 신임검사 76명 - 2023. 8. 1.~2024. 1. 5.법학전문대학원 출신(법무관 출신) 신임검사 16명 ○ 법학전문대학원생 검찰실무실습 교육 : 594명 교육 수료 - 2023. 1. 16.~2023. 1. 31. 검찰심화실무실습 257명 - 2023. 7. 10.~2023. 7. 20./ 2023. 7. 17.~ 2023. 7. 27. 검찰일반실무실습 337명 ○ 법학전문대학원 검찰실무교재 발간 - 검찰실무Ⅰ1,600질(10권 1세트) / 검찰실무Ⅱ 360질(6권 1세트)
2024	법무연수원 제13기 신임검사 : 145명 교육 수료 - 2024. 5. 1.~2024. 9. 30. 법학전문대학원 출신(법조 경력) 신임검사 5명 - 2024. 5. 1.~2024. 10. 18. 법학전문대학원 출신(당해) 신임검사 93명 - 2024. 8. 2.~2024. 10. 18. 법학전문대학원 출신(법조 경력) 신임검사 27명 - 2024. 8. 2.~2024. 10. 18. 법학전문대학원 출신(법무관 출신) 신임검사 20명 ○ 법학전문대학원생 검찰실무실습 교육 : 620명 교육 수료 - 2024. 1. 15.~2024. 1. 25. 검찰심화실무실습 276명 - 2024. 7. 8.~2024. 7. 18./ 2024. 7. 15.~ 2024. 7. 25. 검찰일반실무실습 344명 ○ 법학전문대학원 검찰실무교재 발간 - 검찰실무Ⅰ1,600질(10권 1세트) / 검찰실무Ⅱ 390질(6권 1세트)
2025	○ 법무연수원 제14기 신임검사 : 139명 교육 수료 - 2025. 5. 8.~2025. 10. 31. 법학전문대학원 출신(당해) 신임검사 90명 - 2025. 8. 4.~2025. 10. 31. 법학전문대학원 출신(법조 경력) 신임검사 25명 - 2025. 8. 4.~2025. 10. 31. 법학전문대학원 출신(법무관 출신) 신임검사 24명 ○ 법학전문대학원생 검찰실무실습 교육 : 620명 교육 수료 - 2025. 1. 20.~2025. 2. 7. 검찰심화실무실습 278명 - 2025. 7. 7.~2025. 7. 18./ 2025. 7. 14.~ 2025. 7. 24. 검찰일반실무실습 343명 ○ 법학전문대학원 검찰실무교재 발간 - 검찰실무Ⅰ1,600질(10권 1세트) / 검찰실무Ⅱ 390질(6권 1세트)
2026	○ 법무연수원 제15기 신임검사 : 48명(법조 경력) 교육 수료, 105명(당해, 법무관) 교육 중 - 2026. 5. 6.~2026. 6. 26. 법학전문대학원 출신(법조 경력) 신임검사 48명 - 2026. 5. 6.~2026. 10. 8. 법학전문대학원 출신(당해) 신임검사 86명 - 2026. 8. 4.~2026. 10. 8. 법학전문대학원 출신(법무관 출신) 신임검사 19명 ○ 법학전문대학원생 검찰실무실습 교육 : 620명 교육 수료 - 2026. 1. 19.~2026. 1. 29. 검찰심화실무실습 379명 - 2026. 6. 29.~2026. 7. 9./ 2026. 7. 6.~ 2026. 7. 16. 검찰일반실무실습 369명 ○ 법학전문대학원 검찰실무교재 발간 - 검찰실무Ⅰ1,380질(8권 1세트) / 검찰실무Ⅱ 372질(6권 1세트)

③ 향후(2027년도 이후) 기대효과 :

-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와 관련하여 능력 있는 법조 인력을 배출하고, 특히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신임검사 임용이 시작된 2012년부터 신임검사에 대한 교육과정 신설로 실무능력 배양 및 업무의 전문성 제고
- 연구용역 1건 수행, 실습기록 등 교재 10,000부 발간
-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수요원 양성 및 공소청 업무 관련 표준교재를 개발하여 능력 있는 법조 인력을 배출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교육훈련계획 수립 ⇒ 교육실시 ⇒ 평가 및 결과 환류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25~2029	999	1,008	1,008	1,008	1,008	
2026~2030		1,008	1,056	1,088	1,121	1,155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해당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해당없음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2) 동 사업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 : 해당없음

13) 2026년도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 결과 및 후속 조치 현황 : 해당없음

14) 부처 건의사항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3	1,188	-	1,188	-	-	-	1,188	1,180	99.3	99.3	0	8
2024	1,008	-	1,008	-	-	-	1,008	1,002	99.4	99.4	0	6
2025	1,008	-	1,008	-	-	-	1,008	999	99.1	99.1	0	9
2026	1,008	-	1,008	-	-	-	1,008	583	57.8	57.8	0	0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 해당없음

2) 주요 결산사항

□ 2023~2026년 결산 사항

2023	- 해당없음
2024	- 위와 동일하게 기술
2025	- 세목조정액 : 총 6백만원 / 일반수용비(210-01) → 임차료(210-07) - 세목조정 사유 : 신임검사 교육생 통원버스 임차료 부족
2026	- 해당없음

□ 2026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

□ 2026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 해당없음

법무 및 형사사법
행정지원

사 업 명
본부 인건비(총액) (7001-1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법무부	기획조정실	일반회계	020	022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01	100
명칭	법무및형사사법행정지원	본부인건비	본부인건비(총액)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6예산 시 소관
	O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본부인건비 (총액)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기획조정실	강의곤	유재륜 서기관	나승엽
		기획재정담당관실	02-2110-3099	02-2110-3098	02-2110-3470
	사업시행주체	-	-	-	-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년 결산	2026년 예산		2027년		증감 (B-A)	(B-A)/A
		본예산(A)	추경	요구안	조정안(B)		
본부인건비(총액)	193,707	203,006	-	217,216	208,632	5,626	2.77%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25					2026(2026.7월말)							2027 예산안
	예산액(추경)	예산현액	집행액[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현액	집행액[실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예상액	불용예상액	
									예산현액	집행액[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195,020	194,991	193,707		1,284	203,006	203,006	159,491	203,006	159,491	-	-	208,632
・인건비	195,020	194,991	193,707		1,284	203,006	203,006	159,491	203,006	159,491	-	-	208,632
○ 비목별 분류(합계)	195,020	194,991	193,707		1,284	203,006	203,006	159,491	203,006	159,491	-	-	208,632
・보수(110-01)	186,054	186,054	185,064		990	193,496	193,496	153,816	193,496	153,816	-	-	199,415
・기타직보수(110-02)	8,402	8,373	8,095		278	8,908	8,908	5,322	8,908	5,322	-	-	8,606
・연가보상비(110-05)	564	564	548		16	602	602	353	602	353	-	-	611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법무부 본부 직원 인건비 지급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국가공무원법 제46조 및 제49조

② 추진경위 - 특이사항 없음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사업
- 기타 :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법무부
- 사업 수혜자 : 법무부 본부 소속 공무원
-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7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

○ 본부인건비 : (‘26) 203,006백만원 → (‘27안) 208,632백만원, 5,626백만원 증액
- 보수 : (‘26) 193,496백만원 → (‘27안) 199,415백만원, 5,919백만원 증액
- 기타직보수 : (‘26) 8,908백만원 → (‘27안) 8,606백만원, 302백만원 감액
- 연가보상비 : (‘26) 602만원 → (‘27안) 611백만원, 9백만원 증액

4) 사업효과 : 해당없음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해당없음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 해당없음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해당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해당없음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2) 동 사업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 : 해당없음

13) 2026년도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 결과 및 후속 조치 현황 : 해당없음

14) 부처 건의사항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3	187,269	-	187,269	-	-	-	187,269	181,787	97.1	97.1	-	5,482
2024	187,915	-	187,915	-	423	-	188,388	188,244	99.9	99.9	-	94
2025	195,020	-	195,020	-	△29	-	194,991	193,707	99.3	99.3	-	1,284
2026	203,006	-	203,006	-	-	-	203,006	159,491	78.6	78.6	-	-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 해당없음

2) 주요 결산사항

□ 2023~2026년 결산사항

2023	- 이월 사유 및 불용 사유(집행부진사유) · 공무원 및 기타직 인원 결원 등 집행잔액
2024	- 이·전용 등 사유 · 공무원 및 기타직 인건비 부족으로 423백만원 증
2025	- 이·전용 등 사유 · 실무수습직원 및 공무직 고용부담금 부족으로 29백만원 전용 감
2026	- 해당없음

□ 2026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

□ 2026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 해당없음

사 업 명
출입국외국인관서운영 인건비(총액) (7002-1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		020	022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02	100
명칭	법무및검찰행정지원	소속기관인건비	출입국외국인관서운영인건비(총액)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6 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출입국외국인 관서운영 인건비 (총액)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	유성오	김원희	이윤주
		출입국기획과	02-2110-4010	02-2110-4026	02-2110-4367
	사업시행주체	법무부	-	-	-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년 결산	2026년 예산		2027년		증감	
		본예산(A)	추경	요구안	조정안(B)	(B-A)	(B-A)/A
출입국외국인관서 운영인건비(총액)	176,279	185,120	185,120	217,842	217,842	32,722	17.7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25					2026(2026.7월말)							2027 예산안
	예산액(추경)	예산현액	집행액[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현액	집행액[실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예상액	불용예상액	
									예산현액	집행액[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172,906	176,306	176,279	-	27	185,120	185,120	123,852	185,120	123,852	-	-	217,842
· 봉급 및 연봉	167,459	171,740	171,722	-	18	179,260	179,260	120,882	179,260	120,882	-	-	211,639
· 전문임기제 등 보수	4,178	3,915	3,909	-	6	4,502	4,502	2,718	4,502	2,718	-	-	4,578
· 연가보상비	1,268	651	648	-	3	1,358	1,358	252	1,358	252	-	-	1,625
○ 비목별 분류(합계)	172,906	176,306	176,279	-	27	185,120	185,120	123,852	185,120	123,852	-	-	217,842
· 보수(110-01)	167,459	171,740	171,722	-	18	179,260	179,260	120,882	179,260	120,882	-	-	211,639
· 기타직보수(110-02)	4,178	3,915	3,909	-	6	4,502	4,502	2,718	4,502	2,718	-	-	4,578
· 연가보상비(110-05)	1,268	651	648	-	3	1,358	1,358	252	1,358	252	-	-	1,625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소속기관(출입국·외국인청 7, 출입국·외국인사무소 16, 출장소 15, 외국인보호소 2, 출입국외국인센터 1, 외국인보호위원회 1 등 42개 기관) 공무원의 봉급 및 제수당 지급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국가공무원법 제46조 내지 제49조

② 추진경위 :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외국인보호소,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출장소 및 외국인보호위원회 공무원 인건비 지급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계속사업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3	2024	2025	2026	2027(안)
사업비	157,706	166,631	172,906	185,120	217,842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사업 수혜자 : 공무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7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

① 인건비(총액)
: (2026 본예산) 185,120백만원 → (2027) 217,842백만원, 32,722백만원 증액
- (요구) 26년 대비 수시 및 정기직제(+321명) 증가에 따라 인건비 32,722백만원 증액
- (산출) 보수(110-01) 211,639백만원
기타직보수(110-02) 4,578백만원
연가보상비(110-05) 1,625백만원

ㅇ 2026년도 예산 및 2027년도 예산안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6년 본예산		2027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85,120백만원	○ 보수(110-01) : 179,259,813천원 ○ 기타직보수(110-02) : 4,501,978천원 ○ 연가보상비(110-05) : 1,358,209천원	217,842백만원	○ 보수(110-01) : 211,639,205천원 ○ 기타직보수(110-02) : 4,577,634천원 ○ 연가보상비(110-05) : 1,625,161천원

4) 사업효과 : 해당사항 없음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사항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기획예산처 인건비 편성기준 시달 → 부처 인건비 편성 → 기획예산처 심의 → 정부(안)확정 → 국회심의의결 → 예산확정 → 인건비 집행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 해당사항 없음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해당사항 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해당사항 없음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사항 없음

12) 동 사업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 : 해당사항 없음

13) 2026년도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 결과 및 후속 조치 현황 : 해당없음

14) 부처 건의사항 : 해당사항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3	157,706	-	157,706	-	△478	-	157,228	155,234	98.4	98.7	-	1,994
2024	166,631	-	166,631	-	△1,785	-	164,846	164,060	98.5	99.5	-	786
2025	172,906	-	172,906	-	3,400	-	176,306	176,279	102.0	100	-	27
2026	185,120	-	185,120	-	-		185,120	123,852	66.9	66.9	-	-

2) 주요 결산사항

□ 2023~2026년 결산사항

2023	○ 이·전용 - "청년인턴 활성화방안"(국무조정실)에 따라 채용이 필요한 청년인턴(1차 16명, 2차 13명)에 대한 인건비 및 고용부담금 478백만원 전용 감
2024	○ 이·전용 - 국제법무국 부족 예산 충당을 위한 전용 재원 활용 위해 500백만원 전용 감, 체류 외국인 증가로 인해 발생한 우편, 전화요금 등 공공요금에 대한 부족분 충당 위해 185백만원 전용 감, 전기사용량 증가, 단가인상 등 사유로 부족분이 발생한 전기·수도 요금 등 공공요금 부족분 충당 위해 600백만원 이용 감, 국가소송법 등 법률상 지급의무에 따라 국가가 배상할 배상금 지급 소요 충당 500백만원 이용 감
2025	○ 이·전용 - 법무연수원 인건비(총액) 등으로부터 공무원 인건비 부족분 3,400백만원 내역변경 증
2026	- 해당없음

□ 2026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

□ 2026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 해당사항 없음

사 업 명
공소청운영인건비(총액) (7002-1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법무부	검찰국		020	022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검찰국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02	101
명칭	법무 및 형사사법행정지원	소속기관인건비	공소청운영인건비(총액)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6예산 시 소관
	O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공소청운영 인건비(총액)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검찰국	나하나	검사 구자원	수사관 박성인
		검찰과	02-2110-4190	02-2110-4194	02-2110-4216
	사업시행주체	-	-	-	-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년 결산	2026년 예산		2027년		증감 (B-A)	(B-A)/A
		본예산(A)	추경	요구안	조정안(B)		
공소청운영 인건비(총액)	820,474	883,665	883,665	945,522	751,659	△132,006	14.9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25					2026(2026.7월말)							2027 예산안
	예산액(추경)	예산현액	집행액[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현액	집행액[실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예상액	불용예상액	
									예산현액	집행액[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856,312	821,924	820,474	-	1,450	883,665	864,094	502,323	864,094	502,323	-	-	751,659
· 인건비(110)	856,312	821,924	820,474	-	1,450	883,665	864,094	502,323	864,094	502,323	-	-	751,659
○ 비목별 분류(합계)	856,312	821,924	820,474	-	1,450	883,665	864,094	502,323	864,094	502,323	-	-	751,659
· 보수(110-01)	832,808	794,250	793,116	-	1,134	853,161	833,590	484,580	833,590	484,580	-	-	720,697
· 기타직보수(110-02)	16,763	21,850	21,721	-	129	23,551	23,551	14,625	23,551	14,625	-	-	23,752
· 연가보상비(110-04)	6,741	5,825	5,637	-	188	6,952	6,952	3,117	6,952	3,117	-	-	7,210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856,312	821,924	820,474	-	1,450	883,665	864,094	502,323	864,094	502,323	-	-	751,659
· 인건비(110)	856,312	821,924	820,474	-	1,450	883,665	864,094	502,323	864,094	502,323	-	-	751,659
-보수(110-01)	832,808	794,250	793,116	-	1,134	853,161	833,590	484,580	833,590	484,580	-	-	720,697
-기타직보수(110-02)	16,763	21,850	21,721	-	129	23,551	23,551	14,625	23,551	14,625	-	-	23,752
-연가보상비(110-04)	6,741	5,825	5,637	-	188	6,952	6,952	3,117	6,952	3,117	-	-	7,21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해당없음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해당없음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3	2024	2025	2026	2027(안)
사업비	803,946	829,262	856,312	883,665	751,659

- 기타: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법무부
- 사업 수혜자 :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7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

□ 인건비
: (2026 본예산) 883,665백만원 → (2027 요구) 751,659백만원, 132,006백만원 감액

4) 사업효과 : 해당없음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특이사항 없음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 해당없음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ㅇ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국회 결산심사 시정요구 취지에 맞추어 대검찰청의 정원 대비 초과 인력운영을 감축·해소하기 위한 인력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대검찰청 파견 인력 등에 대한 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국회에 제출할 것('23회계연도 결산 국회 지적사항)
   - ㅇ 법무부와 검찰청은 인건비 예산편성의 정확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24 회계연도 결산 국회 지적사항)
2) 감사원 감사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 해당없음
3) 자체평가·감사 : 해당없음
4)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 해당없음
5)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ㅇ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마약, 스토킹, 전세사기 범죄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관련 형사법 개정 등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시급하게 대응해야 할 업무가 증가하고 있어 필요 최소한의 인력으로 업무지원을 하고 있음
   - ㅇ 정원 증원이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는 동시에 업무지원 인력을 적정한 수준으로 관리하여 정원과 현원 격차 해소에 노력해 나가겠음
   - ㅇ 대검찰청 파견자는 175명(24.12.기준)이나, 그 중 59명은 반부패 수사, 포렌직 수사 업무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목적 파견으로 실제 직무파견은 116명임
   - ㅇ 현재 대검찰청은 일선 청의 수사력 강화 및 수사인력 확충을 위해 대검 내 직무파견인력 감축 시행 중
   - ㅇ 정기인사 기준 3회, 1년 6개월 기간 내 점진적으로 감축 추진(25년 상반기 정기인사 시 11명 감축 예정)
   - ㅇ 인건비는 예산이 모자란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정원 기준으로 편성하고 있으며, 재정당국에서 각 부처의 정원 등을 취합하여 일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 ㅇ 공무원 급여 상승 등의 요인으로 매년 인건비 예산이 증액되는 추세이고 특히 2026년 공무원 급여 인상률은 2017년 이후 최대치인 3.5%를 기록하였으나, 2026년 검찰 인건비 예산 증감률은 3.2%로 오히려 전년도 증감률 대비 0.1% 감소한 금액을 편성함으로써 인건비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고 적정 수준의 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하였음
   - ㅇ 향후에도 인건비 집행액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과다편성 및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해당없음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2) 동 사업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 : 해당없음

13) 2026년도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 결과 및 후속 조치 현황 : 해당없음

14) 부처 건의사항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3	803,946	-	803,946	-	△14,926	-	789,020	781,485	96.3	100.0	-	7,535
2024	829,262	-	829,262	-	△32,538	-	796,724	790,870	95.4	99.3	-	5,855
2025	856,312	-	856,312	-	△34,388	-	821,924	820,474	95.8	99.8	-	1,450
2026	883,665	-	886,665	-	△19,571	-	864,094	502,323	56.8	58.1	-	-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 해당없음

2) 주요 결산사항

□ 2023~2026년 결산사항

2023	- 형사보상금 부족으로 14,102백만원 이용 감, 일용임금 부족으로 605백만원 전용 감, 고용부담금 부족으로 219백만원 전용 감, 집행잔액 7,535백만원 불용
2024	- 형사보상금 부족으로 30,370백만원 이용 감, 고용부담금 부족으로 167백만원 전용 감, 집행잔액 5,855백만원 불용
2025	- 형사보상금 부족으로 34,151백만원 이용 감, 공무직 퇴직금 부족으로 29백만원 전용 감, 고용부담금 부족으로 208백만원 전용 감, 집행잔액 1,450백만원 불용
2026	- 해당없음

□ 2026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자체이용 (2026.8.13.)	공소청운영인건비(총액) (7002-101)	110-01	19,283	형사보상 (1337-302)	310-01	형사보상금 부족
자체이용 (2026.8.18.)	공소청운영인건비(총액) (7002-101)	110-01	288	공소청운영기본경비(총액) (7018-202)	320-09	고용부담금 부족

□ 2026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 해당없음

사 업 명
법무연수원 인건비(총액) (7002-10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법무부	법무연수원	일반회계	020	022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02	102
명칭	법무및검찰행정지원	소속기관인건비	법무연수원 인건비(총액)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6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법무연수원 인건비(총액)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법무연수원	서혜주	이자희	서미희
		총무과	043-531-1540	043-531-1541	043-531-1555
	사업시행주체	-	-	-	-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년 결산	2026년 예산		2027년		증감	
		본예산(A)	추경	요구안	조정안(B)	(B-A)	(B-A)/A
법무연수원 인건비(총액)	12,829	16,007	16,007	17,127	16,374	367	2.3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25					2026(2026.7월말)							2027 예산안
	예산액(추경)	예산현액	집행액[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현액	집행액[실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예상액	불용예상액	
									예산현액	집행액[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15,026	13,926	12,829	-	1,097	16,007	16,007	8,507	16,007	8,507	-	-	16,374
・인건비(총액)	15,026	13,926	12,829	-	1,097	16,007	16,007	8,507	16,007	8,507	-	-	16,374
○ 비목별 분류(합계)	15,026	13,926	12,829	-	1,097	16,007	16,007	8,507	16,007	8,507	-	-	16,374
・보수(110-01)	11,744	11,544	10,922	-	622	11,431	11,431	7,404	11,431	7,404	-	-	12,396
・기타직보수(110-2)	3,189	2,289	1,843	-	446	4,479	4,479	1,059	4,479	1,059	-	-	3,873
・연가보상비(110-05)	93	93	64	-	29	97	97	44	97	44	-	-	105
○ 기능별 분류(합계)	15,026	13,926	12,829	-	1,097	16,007	16,007	8,507	16,007	8,507	-	-	16,374
・인건비(총액)	15,026	13,926	12,829	-	1,097	16,007	16,007	8,507	16,007	8,507	-	-	16,374
・보수(110-01)	11,744	11,544	10,922	-	622	11,431	11,431	7,404	11,431	7,404	-	-	12,396
・기타직보수(110-2)	3,189	2,289	1,843	-	446	4,479	4,479	1,059	4,479	1,059	-	-	3,873
・연가보상비(110-05)	93	93	64	-	29	97	97	44	97	44	-	-	105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법무연수원 인건비 총액) 법무연수원 직원 및 임용 전 교육훈련자에 대한 보수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공무원 보수 및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등

② 추진경위 : 해당없음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3	2024	2025	2026	2027(안)
사업비	14,647	15,471	15,026	16,007	16,374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법무연수원
- 사업 수혜자 : 법무연수원 직원 및 임용 전 교육훈련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7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

① 인건비(총액)

: (2026 본예산) 16,007백만원 → (2027 요구) 16,374, 367백만원 증액

- (요구) 26년 대비 27년 연구위원 11명 증가, 임용 전 교육훈련자 예상인원 감소(7급 5명, 9급 247명) 등에 따라 367백만원 증액
- (산출) 보수(110-01) 12,397백만원
  기타직보수(110-02) 3,873백만원
  연가보상비(110-05) 104백만원

ㅇ 2026년도 예산 및 2027년도 예산안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6년 본예산		2027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6,007	○ 보수(110-01) : 11,431,436천원 ○ 기타직보수(110-02) : 4,478,777천원 ○ 연가보상비(110-05) : 96,787천원	16,374	○ 보수(110-01) : 12,396,501천원 ○ 기타직보수(110-02) : 3,872,645천원 ○ 연가보상비(110-05) : 104,854천원

4) 사업효과 : 해당없음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해당없음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 해당없음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해당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해당없음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2) 해당사업에 대한 부처 자체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3) 부처 건의사항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3	14,647	-	14,647	-	△720	-	13,927	13,037	89.0	93.6	-	890
2024	15,471	-	15,471	-	△2,500	-	12,971	12,484	80.7	96.2	-	487
2025	15,026	-	15,026	-	△1,100	-	13,926	12,829	85.4	92.1	-	1,097
2026	16,007	-	16,007	-	-	-	16,007	8,507	53.1	53.1	-	-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 해당없음

2) 주요 결산사항

□ 2023~2026년 결산사항

2023	- 전용 사유 : 청년인턴 인건비, 사회복무요원 상용임금
2024	- 불용사유 : 집행잔액 487백만원
2025	- 불용사유 : 집행잔액 1,097백만원
2026	- 해당없음

□ 2026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

□ 2026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 해당없음

사 업 명
교도소운영 인건비(총액) (7002-103)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법무부	교정본부		020	022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02	103
명칭	법무및검찰행정지원	소속기관인건비	교도소운영인건비(총액)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O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교도소운영 인건비 (총액)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교정본부	주기남	유 진	최재성
		복지과	02-2110-3420	02-2110-3423	02-2110-3499
	사업시행주체	-	-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년 결산	2026년 예산		2027년		증감 (B-A)	(B-A)/A
		본예산(A)	추경	요구안	조정안(B)		
교도소운영인건비 (총액)	1,163,188	1,232,837	1,232,837	1,319,136	1,299,631	66,794	5.4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5					2026(2026.7월말)							2027 예산안
	예산액(추경)	예산현액	집행액[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현액	집행액[실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예상액	불용예상액	
									예산현액	집행액[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1,186,920	1,165,220	1,163,188	-	2,032	1,232,837	1,232,837	711,208	711,208	711,208	-	-	1,299,631
· 직원보수	1,155,986	1,136,986	1,136,132	-	854	1,197,423	1,197,423	695,507	695,507	695,507	-	-	1,263,588
· 기타직 보수	22,542	22,542	22,201	-	342	26,749	26,749	13,744	13,744	13,744	-	-	26,749
· 연가보상비	8,391	5,691	4,855	-	836	8,665	8,665	1,956	1,956	1,956	-	-	9,294
○ 비목별 분류(합계)	1,186,920	1,165,220	1,163,188	-	2,032	1,232,837	1,232,837	711,208	711,208	711,208	-	-	1,299,631
· 보수(110-01)	1,155,986	1,136,986	1,136,132	-	854	1,197,423	1,197,423	695,507	695,507	695,507	-	-	1,263,588
· 기타직보수(110-02)	22,542	22,542	22,201	-	342	26,749	26,749	13,744	13,744	13,744	-	-	26,749
· 연가보상비(110-05)	8,391	5,691	4,855	-	836	8,665	8,665	1,956	1,956	1,956	-	-	9,294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1,186,920	1,165,220	1,163,188	-	2,032	1,232,837	1,232,837	711,208	711,208	711,208	-	-	1,299,631
· 직원 보수(110-01)	1,155,986	1,136,986	1,136,132	-	854	1,197,423	1,197,423	695,507	695,507	695,507	-	-	1,263,588
· 기타직 보수(110-02)	22,542	22,542	22,201	-	342	26,749	26,749	13,744	13,744	13,744	-	-	26,749
· 연가보상비(110-05)	8,391	5,691	4,855	-	836	8,665	8,665	1,956	1,956	1,956	-	-	9,294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공무원 인건비) 교정기관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건비 지급 등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국가공무원법」 제46조 내지 49조

② 추진경위 : 교정기관 소속 공무원에 대한 보수 등 지급 필요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3	2024	2025	2026	2027
사업비	1,152,612	1,190,157	1,186,920	1,232,837	1,299,631

- 기타: 전국 58개 기관(지방교정청 4, 교도소 39, 구치소 12, 지소 3)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법무부
- 사업 수혜자 : 교정공무원 등

3) 2027년도 예산 산출 근거

□ **교도소운영인건비(총액) : (2026 예산) 1,232,837백만원 → (2027 예산)1,299,631백만원, +66,974백만원**

① 직원 보수 **: (2026 예산) 1,197,423백만원 → (2026 예산) 1,263,588백만원, +66,165백**
- (산출) ① 보수 66,164백 증액

② 기타직 보수 **: (2026 예산) 26,749백만원 → (2027 예산) 26,749백만원**
- (산출) ① 기타직 보수 전년동

③ 연가보상비 **: (2026 예산) 8,665백만원 → (2027 예산) 9,294백만원, +629백**
- (산출) ① 연가보상비 629백 증액

ㅇ 2026년도 예산 및 2027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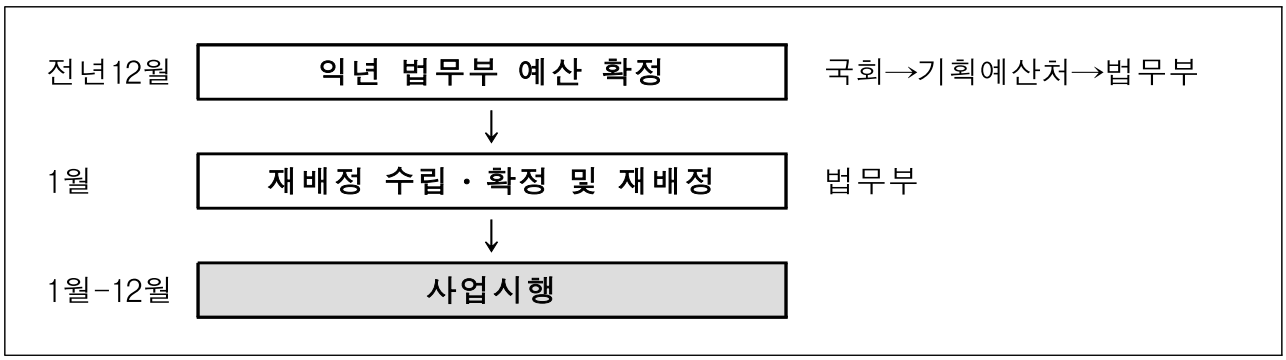
2026년 본예산		2027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186,920 백만원	○ 보수(110-01) : 1,197,423백만원 ○ 기타직보수(110-02) : 26,749백만원 ○ 연가보상비(110-05) : 8,665백만원	1,232,836 백만원	○ 보수(110-01) : 1,263,588백만원 ○ 기타직보수(110-02) : 26,749백만원 ○ 연가보상비(110-05) : 9,294백만원

4) 사업효과 : 해당없음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 해당없음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해당없음

2) 감사원 감사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 해당없음

3) 자체평가·감사 : 해당없음

4)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 해당없음

5)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해당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해당없음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2) 해당사업에 대한 부처 자체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3) 부처 건의사항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3	1,152,612	-	1,152,612	-	△26,483	-	1,126,129	1,126,021	97.7	100.0	-	108
2024	1,190,157	-	1,190,157	-	△34,765	-	1,155,392	1,149,076	96.5	99.5	-	6,316
2025	1,186,920	-	1,186,920	-	△21,700	-	1,165,220	1,163,196	98.0	99.8	-	2,024
2026.07	1,232,837	-	1,232,837	-	-	-	1,232,837	711,208	57.7	57.7	-	-

2) 주요 결산사항

□ 2023~2026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4	- (법사위) 법무부는 교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 예산편성 시 인사 현황을 면밀히 반영함으로써, 미집행액의 과도한 이·전용을 지양하는 한편, 부족한 교정직 공무원 충원을 위한 면밀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2026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 없음

□ 2026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 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 해당없음

사 업 명
소년원운영 인건비(총액) (7002-105)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일반회계	020	022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02	105
명칭	법무및검찰행정지원	소속기관인건비	소년원운영인건비(총액)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6예산 시 소관
	O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소년원운영 인건비(총액)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범죄예방정책국	오상섭	원학재	정재희
		범죄예방기획과	02-2110-3570	02-2110-3574	02-2110-3787
	사업시행주체	소년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년 결산	2026년 예산		2027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요구안	조정안(B)		(B-A)/A
소년원운영인건비(총액)	65,294	67,915	67,915	72,669	71,620	3,705	5.5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5					2026(2026.7월말)							2027 예산안
	예산액(추경)	예산현액	집행액[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현액	집행액[실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예산현액	집행액[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65,770	67,170	67,127	-	43	67,915	67,915	41,366	67,915	41,366	-	-	71,620
· 인건비	65,770	67,170	67,127	-	43	67,915	67,915	41,366	67,915	41,366	-	-	71,620
○ 비목별 분류(합계)	65,770	67,170	67,127	-	43	67,915	67,915	41,366	67,915	41,366	-	-	71,620
· 보수(110-01)	65,293	66,854	66,848	-	6	67,414	67,414	41,308	67,414	41,308	-	-	71,078
· 연가보상비(110-05)	477	316	279	-	37	501	501	58	501	58	-	-	542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65,770	67,170	67,127	-	43	67,915	67,915	41,366	67,915	41,366	-	-	71,620
· 인건비	65,770	67,170	67,127	-	43	67,915	67,915	41,366	67,915	41,366	-	-	71,620
- 보수(110-01)	65,293	66,854	66,848	-	6	67,414	67,414	41,308	67,414	41,308	-	-	71,078
- 연가보상비(110-05)	477	316	279	-	37	501	501	58	501	58	-	-	542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o 소년원 및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서 교육 및 수용관리를 위한 직원 인건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소년법(법률제8722호), 보호소년등의처우에관한법률(법률제8723호)
- 보호소년등의처우에관한법률시행령(대통령령제20830호), 시행규칙(훈령제641호)
- 법무부와그소속직제 및 동시행규칙

② 추진경위

- 1942. 4. 조선교정원 개원(현, 서울소년원)
- 1958. 7. 소년법 제정
- 1958. 8. 소년원법 제정(현, 보호소년등의처우에관한법률)
- 2004. 1. 소년원법 개정(소년원 학교의 정규화)
- 2007. 7. 부산, 광주 등 6개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설치
- 2026. 3.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안산지원 개청
- ~ 현재 10개 소년원 및 2개 소년분류심사원, 18개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운영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단위: 백만원)

연도	2023	2024	2025	2026	2027(안)
사업비	63,878	65,600	65,770	67,915	71,620

- 기타: 소년보호기관 30개(소년원 12개, 청소년비행예방센터 18개), 직원 정원 976명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범죄예방정책국 소년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 사업 수혜자 : 소년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소속 공무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7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소년보호기관 공무원 인건비

: (2026 본예산) 67,915백만원 → (2027 요구) 71,620백만원, 3,705백만원 증액

- (요구) 공무원 처우개선분 증액 요구
- (산출) 공무원 보수 3,664백만원 증액, 연가보상비 41백만원 증액

○ 2026년도 예산 및 2027년도 예산안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6년 본예산		2027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67,915	○ **보수(110-01) : 67,414백만원** 가. 공무원 보수 · 992명×5,663천원×12월 = 67,414백만원 ○ **연가보상(110-05) : 501백만원** 가. 공무원 연가보상비 · 992명×505천원 = 501백만원	71,620	○ **보수(110-01) : 71,078백만원** 가. 공무원 보수 · 976명×6,069천원×12월 = 71,078백만원 ○ **연가보상(110-05) : 542백만원** 가. 공무원 연가보상비 · 976명×555천원 = 542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3~2027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 해당없음

③ 향후(2027년도 이후) 기대효과 : 30개 소년보호기관 공무원 보수 등 집행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해당없음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 해당없음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해당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해당없음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2) 동 사업에 대한 부처 자체평가 결과 : 해당없음

13) 2026년도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 결과 및 후속 조치 현황 : 해당없음

14) 부처 건의사항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3	63,878	-	63,878	-	△2,157	-	61,721	61,071	95.6	98.9	-	650
2024	65,600	-	65,600	-	-	-	65,600	65,294	99.5	99.5	-	306
2025	65,770	-	65,770	-	1,400	-	67,170	67,127	102.1	99.9	-	43
2026	67,915	-	67,915	-	-	-	67,915	41,366	102.1	60.9	-	-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 해당없음

2) 주요 결산사항

□ 2023~2026년 결산사항

2023	- 전용 : 청년인턴 인건비 157백만원, 보호관찰소 직원 인건비 부족으로 2,000백만원 전용 감액 - 불용 : 결원 및 휴직 등으로 650백만원
2024	- 불용 : 결원 및 휴직 등으로 306백만원
2025	- 전용 : 소년보호기관 직원 인건비 부족으로 교정에서 1,400백만원 전용 증액 - 불용 : 43백만원
2026	- 해당없음

□ 2026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

□ 2026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 해당없음

사 업 명
치료감호소운영 인건비(총액) (7002-106)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일반회계	020	022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02	106
명칭	법무및검찰행정지원	소속기관인건비	치료감호소운영인건비(총액)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6예산 시 소관
	O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치료감호소 운영인건비 (총액)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범죄예방정책국	오상섭	원학재	정재희
		범죄예방기획과	02-2110-3570	02-2110-3574	02-2110-3787
	사업시행주체	국립법무병원	-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년 결산	2026년 예산		2027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요구안	조정안(B)		(B-A)/A
치료감호소운영 인건비(총액)	32,377	34,724	34,724	37,155	34,175	△549	△1.6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5					2026(2026.7월말)							2027 예산안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33,036	32,536	32,377	-	159	34,724	34,724	20,167	34,724	20,167	-	-	34,175
· 인건비	33,036	32,536	32,377	-	159	34,724	34,724	20,167	34,724	20,167	-	-	34,175
○ 비목별 분류(합계)	33,036	32,536	32,377	-	159	34,724	34,724	20,167	34,724	20,167	-	-	34,175
· 보수(110-01)	32,344	31,851	31,851	-	-	33,931	33,931	19,814	33,931	19,814	-	-	33,183
· 기타직보수(110-02)	450	454	454		-	525	525	335	525	335	-	-	735
· 연가보상비(110-05)	242	231	72	-	159	268	268	18	268	18	-	-	257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33,036	32,536	32,377	-	159	34,724	34,724	20,167	34,724	20,167	-	-	34,175
· 인건비	33,036	32,536	32,377	-	159	34,724	34,724	20,167	34,724	20,167	-	-	34,175
- 보수(110-01)	32,344	31,851	31,851	-	-	33,931	33,931	19,814	33,931	19,814	-	-	33,183
· 기타직보수(110-02)	450	454	454		-	525	525	335	525	335	-	-	735
- 연가보상비(110-05)	242	231	72	-	159	268	268	18	268	18	-	-	257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o 국립법무병원에서 피치료감호자 수용관리를 위한 공무원 인건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치료감호법 및 동법시행령, 시행규칙, 법무부와그소속직제 및 동시행규칙

② 추진경위

- 1987.11. 치료감호소 개청(대통령령 제12232호)
- 1997. 1. 병원명칭사용(국립감호정신병원, 법무부훈령 제385호)
- 2004. 1. 약물중독재활센터 개관(대통령령 제18252호)
- 2006. 7. 병원명칭변경(국립법무병원, 법무부훈령 제560호)
- 2009. 1. 성폭력치료재활센터 개청
- 2022. 7. 치료감호법 개정(치료감호소→국립법무병원)
- 2023. 10. 중증환자 집중치료병동 완공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단위: 백만원)

연도	2023	2024	2025	2026	2027(안)
사업비	30,708	32,507	33,036	34,724	34,175

- 기타: 국립법무병원 직원 정원 461명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범죄예방정책국 국립법무병원
- 사업 수혜자 : 국립법무병원 소속 공무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7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국립법무병원 공무원 인건비

: (2026 본예산) 34,724백만원 → (2027 요구) 34,175백만원, 549백만원 감액

- (요구) 인건비 처우개선분 반영 요구
- (산출) 공무원 보수 748백만원 감액, 기타직 보수 210백만원 증액, 연가보상비 11백만원 감액

ㅇ 2026년도 예산 및 2027년도 예산안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6년 본예산		2027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34,724	**○ 보수(110-01) : 33,931백만원** 가. 공무원 보수 · 461명×6,134천원×12월 = 33,931백만원 **○ 기타직보수(110-02) : 525백만원** 가. 기타직 보수 · 12명×3,646천원×12월 = 525백만원 **○ 연가보상(110-05) : 268백만원** 가. 공무원 연가보상비 · 461명×581천원 = 268백만원	34,175	**○ 보수(110-01) : 33,183백만원** 가. 공무원 보수 · 461명×5,998천원×12월 = 33,183백만원 **○ 기타직보수(110-02) : 735백만원** 가. 기타직 보수 · 12명×5,104천원×12월 = 735백만원 **○ 연가보상(110-05) : 257백만원** 가. 공무원 연가보상비 · 461명×557천원 = 257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3~2027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 해당없음

③ 향후(2027년도 이후) 기대효과 : 국립법무병원 공무원 보수 및 전공의 보수 집행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해당없음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 해당없음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해당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해당없음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2) 동 사업에 대한 부처 자체평가 결과 : 해당없음

13) 2026년도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 결과 및 후속 조치 현황 : 해당없음

14) 부처 건의사항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3	30,708	-	30,708	-	△700	-	30,008	29,710	96.8	99.0	-	298
2024	32,507	-	32,507	-	△1,000	-	31,507	30,537	93.9	96.9	-	969
2025	33,036	-	33,036	-	△500	-	32,536	32,377	98.0	99.5	-	159
2026	34,724	-	34,724	-	-	-	34,724	20,167	58.1	58.1	-	-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 해당없음

2) 주요 결산사항

□ 2023~2026년 결산사항

2023	- 전용 : 보호관찰소 직원 인건비 부족으로 700백만원 전용 감액 - 불용 : 결원 및 휴직 등으로 298백만원
2024	- 전용 : 국제투자분쟁 중재 수행 및 대응사업비 예산 부족으로 300만원, 본부인건비 내 각종 수당 부족으로 200백만원 등 총 500만원 - 이용 : 국가배상금 지급 예산 부족으로 500백만원 - 불용 : 결원 및 휴직 등으로 969백만원
2025	- 전용 : 소년보호기관 직원 인건비 부족으로 500백만원 전용 감액 - 불용 : 연가보상비 159백만원
2026	- 해당없음

□ 2026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

□ 2026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 해당없음

사 업 명
보호관찰소운영 인건비(총액) (7002-107)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일반회계	020	022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02	107
명칭	법무및검찰행정지원	소속기관인건비	보호관찰소운영인건비(총액)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6예산 시 소관
	O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보호관찰소운영 인건비(총액)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범죄예방정책국	오상섭	원학재	주영광
		범죄예방기획과	02-2110-3570	02-2110-3574	02-2110-3577
	사업시행주체	법무부	-	-	-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년 결산	2026년 예산		2027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요구안	조정안(B)		(B-A)/A
보호관찰소운영 인건비(총액)	135,166	141,825	141,825	159,848	159,848	18,023	12.7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25					2026(2026.7월말)							2027 예산안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135,858	135,358	135,166	-	192	141,825	141,825	84,847	141,825	84,847	-	-	159,848
· 공무원 보수	133,716	133,489	133,488	-	1	139,464	139,464	83,887	139,464	83,887	-	-	157,523
· 기타직 보수	1,112	1,112	1,057	-	55	1,272	1,272	709	1,272	709	-	-	1,076
· 연가보상비	1,030	757	621	-	136	1,089	1,089	252	1,089	252	-	-	1,249
○ 비목별 분류(합계)	135,858	135,358	135,166	-	192	141,825	141,825	84,847	141,825	84,847	-	-	159,848
· 보수(110-01)	133,716	133,489	133,488	-	1	139,464	139,464	83,887	139,464	83,887	-	-	157,523
· 기타직(110-02)	1,112	1,112	1,057	-	55	1,272	1,272	709	1,272	709	-	-	1,076
· 연가보상비(110-05)	1,030	757	621	-	136	1,089	1,089	252	1,089	252	-	-	1,249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135,858	135,358	135,166	-	192	141,825	141,825	84,847	141,825	84,847	-	-	159,848
· 공무원 보수	133,716	133,489	133,488	-	1	139,464	139,464	83,887	139,464	83,887	-	-	157,523
-보수(110-01)	133,716	133,489	133,488	-	1	139,464	139,464	83,887	139,464	83,887	-	-	157,523
· 기타직 보수	1,112	1,112	1,057	-	55	1,272	1,272	709	1,272	709	-	-	1,076
-기타직(110-02)	1,112	1,112	1,057	-	55	1,272	1,272	709	1,272	709	-	-	1,076
· 연가보상비	1,030	757	621	-	136	1,089	1,089	252	1,089	252	-	-	1,249
-연가보상비(110-05)	1,030	757	621	-	136	1,089	1,089	252	1,089	252	-	-	1,249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공무원 보수)** 보호관찰소, 심사위원회, 관제센터 근무 직원 인건비 지원
- **(기타직 보수)** 보호관찰소 청원경찰 인건비 지원
- **(연가보상비)** 보호관찰소, 심사위원회, 관제센터 근무 직원의 연가보상비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② 추진경위

- ‘88.12.31. 보호관찰법 제정
- ‘89. 7. 1. 전국 보호관찰소・심사위원회 설치
- ‘95. 1. 5.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정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단위: 백만원)

연도	2023	2024	2025	2026	2027(안)
사업비	124,211	133,225	135,858	141,825	159,848

- 기타 :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58개 보호관찰소, 6개 보호관찰심사위원회, 2개 위치추적관제센터
- 사업 수혜자 : 보호관찰소 소속 공무원 및 청원경찰
-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7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

① 공무원 보수

: (2026 본예산) 139,464백만원 → (2027 요구) 157,523백만원, 18,059백만원 증액

- (요구) 공무원 직제정원 증원 반영 및 처우 개선분 증액 요구
- (산출) 공무원 보수 18,059백만원 증액

ㅇ 2026년도 예산 및 2027년도 예산안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6년 본예산		2027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39,464	○ **보수(110-01) : 139,464백만원** 가. 공무원 보수 ・ 2,079명×5,590천원×12월 = 139,464백만원	157,523	○ **보수(110-01) : 157,523백만원** 가. 공무원 보수 ・ 2,213명×5,931천원×12월 = 157,523백만원

② 기타직 보수

: (2026 본예산) 1,272백만원 → (2027 요구) 1,076백만원, 196백만원 감액

- (요구) 청원경찰 보수 요구

ㅇ 2026년도 예산 및 2027년도 예산안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6년 본예산		2027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272	○ **기타직(110-02) : 1,272백만원** 가. 기타직 보수 ・ 26명×4,077천원×12월 = 1,272백만원	1,076	○ **기타직(110-02) : 1,076백만원** 가. 기타직 보수 ・ 26명×3,448천원×12월 = 1,076백만원

③ 연가보상비

: (2026) 1,089백만원 → (2027) 1,249백만원, 160백만원 증액

- (요구) 연가보상비 증액 요구
- (산출) 연가보상비 160백만원 증액

ㅇ 2026년도 예산 및 2027년도 예산안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6년 본예산		2027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089	○ **연가보상비(110-05) : 1,089백만원** 가. 미사용 연가 보상 : 1,089백만원	1,249	○ **연가보상비(110-05) : 1,249백만원** 가. 미사용 연가 보상 : 1,249백만원

4) 사업효과 : 해당없음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해당없음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 해당없음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해당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해당없음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2) 동 사업에 대한 부처 자체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3) 2026년도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 결과 및 후속 조치 현황 : 해당없음

14) 부처 건의사항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3	124,211	-	124,211	-	2,700	-	126,911	126,546	101.9	99.7	-	365
2024	133,225	-	133,225	-	-	-	133,225	132,303	99.3	99.3	-	922
2025	138,858	-	135,858	-	△500	-	135,358	135,166	99.5	99.9	-	192
2026	141,825	-	141,825	-	-	-	141,825	84,847	59.8	59.8	-	-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3	- 전용 : 공무원 보수 부족으로 전용 증액 2,700백만원 - 불용 : 보수 집행 잔액 365백만원
2024	- 불용 : 보수 집행 잔액 922백만원
2025	- 전용 : 소년원 공무원 보수 부족으로 전용 감액 500백만원 - 불용 : 보수 집행 잔액 192백만원
2026	-

□ 2026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

□ 2026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 해당없음

사 업 명
기관운영 기본경비(총액) (7011-2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법무부	기획조정실		020	022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11	200
명칭	법무및검찰행정지원	본부기본경비(일반)	기관운영기본경비(총액)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6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기관운영 기본경비 (총액)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기획조정실	강의곤	유재륜(서기관)	최진훈
		기획재정담당관실	02-2110-3099	02-2110-3098	02-2110-3766
	사업시행주체	-	-	-	-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년 결산	2026년 예산		2027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요구안	조정안(B)		(B-A)/A
기관운영 기본경비(총액)	3,345	3,543	3,543	4,093	4,093	550	15.5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25					2026(2026.7월말)							2027 예산안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3,387	3,416	3,345	-	71	3,543	3,543	2,635	3,543	2,635	-	-	4,093
· 기본경비(총액)	3,387	3,416	3,345	-	71	3,543	3,543	2,635	3,543	2,635	-	-	4,093
○ 비목별 분류(합계)	3,387	3,416	3,345	-	71	3,543	3,543	2,635	3,543	2,635	-	-	4,093
· 상용임금(110-03)	464	464	455	-	9	503	503	314	503	314	-	-	511
· 특근매식비(210-05)	376	332	292	-	40	485	485	194	485	194	-	-	485
· 일숙직비(210-06)	39	39	39	-	-	39	39	24	39	24	-	-	20
· 복리후생비(210-12)	817	815	801	-	14	817	817	693	817	693	-	-	956
· 기타운영비(210-16)	391	391	389	-	2	402	402	295	402	295	-	-	697
· 직책수행경비(250-02)	979	1,025	1,021	-	4	979	979	881	979	881	-	-	1,026
· 특정업무경비(250-03)	230	230	229	-	1	219	219	169	219	169	-	-	208
· 고용부담금(320-09)	91	119	119	-	-	100	100	66	100	66	-	-	150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3,387	3,416	3,345	-	71	3,543	3,543	2,635	3,543	2,635	-	-	4,093
· 기본경비(총액)	3,387	3,416	3,345	-	9	3,543	3,543	2,635	3,543	2,635	-	-	4,093
- 상용임금(110-03)	464	464	455	-	40	503	503	314	503	314	-	-	511
- 특근매식비(210-05)	376	332	292	-	-	485	485	194	485	194	-	-	485
- 일숙직비(210-06)	39	39	39	-	14	39	39	24	39	24	-	-	20
- 복리후생비(210-12)	817	815	801	-	2	817	817	693	817	693	-	-	956
- 기타운영비(210-16)	391	391	389	-	4	402	402	295	402	295	-	-	697
- 직책수행경비(250-02)	979	1,025	1,021	-	1	979	979	881	979	881	-	-	1,026
- 특정업무경비(250-03)	230	230	229	-	-	219	219	169	219	169	-	-	208
- 고용부담금(320-09)	91	119	119	-	-	100	100	66	100	66	-	-	15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기관운영기본경비(총액)) 기관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총액)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해당없음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3	2024	2025	2026	2027(안)
사업비	3,247	3,386	3,387	3,543	4,093

- 기타 :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법무부
- 사업 수혜자 : 기획조정실 등 직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7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

① 기관운영 기본경비(총액)
: ('26) 3,543백만원 → ('27안) 4,093백만원, 550백만원 증액

ㅇ 2026년도 예산 및 2027년도 예산안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6년 본예산		2027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3,543	○ 상용임금(110-03) : 503백만원 ○ 특근매식비(210-05) : 485백만원 ○ 일숙직비(210-06): 39백만원 ○ 복리후생비(210-12) : 817백만원 ○ 기타운영비(210-16) : 402백만원 ○ 직책수행경비(250-02) : 979백만원 ○ 특정업무경비(250-03) : 219백만원 ○ 고용부담금(320-09) : 100백만원	4,093	○ 상용임금(110-03) : 511백만원 ○ 특근매식비(210-05) : 485백만원 ○ 일숙직비(210-06): 20백만원 ○ 복리후생비(210-12) : 956백만원 ○ 기타운영비(210-16) : 697백만원 ○ 직책수행경비(250-02) : 1,026백만원 ○ 특정업무경비(250-03) : 208백만원 ○ 고용부담금(320-09) : 150백만원

4) 사업효과 : 해당없음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해당없음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 해당없음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해당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해당없음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2) 동 사업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 : 해당없음

13) 2026년도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 결과 및 후속 조치 현황 : 해당없음

14) 부처 건의사항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3	3,247	-	3,247	-	31	-	3,278	3,159	97.3	96.4	-	119
2024	3,386	-	3,386	-	39	-	3,425	3,270	96.6	95.5	-	155
2025	3,387	-	3,387	-	29	-	3,416	3,345	98.7	97.9	-	71
2026	3,543	-	3,543	-	-	-	3,543	2,635	74.4	74.4	-	-

2) 주요 결산사항

□ 2023~2026년 결산사항

2023	- 직제 신설(국제법무국) 등에 따른 직책수행경비 부족으로 기관운용기본경비에서 31백만원 전용
2024	- 직제 신설(범죄피해자원스톱지원팀, 빅데이터팀) 등에 따른 직책수행경비 부족으로 기관운영기본경비에서 12백만원 전용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등 4대 보험료 및 퇴직급여 지급을 위한 고용부담금 부족으로 본부인건비(총액)에서 27백만원 전용
2025	- 해당없음
2026	- 해당없음

□ 2026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

□ 2026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 해당없음

사 업 명
법무실 기본경비(총액) (7011-2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법무부	법무실	-	020	022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법무 및 검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11	201
명칭	법무및검찰행정지원	본부 기본경비	법무실 기본경비(총액)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6예산 시 소관
	O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법무실 기본경비 (총액)	법무부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법무실	이윤구	김승재 서기관	김동원
		과·팀명	02-2110-375	02-2110-3173	02-2110-3179
	사업시행주체	직접수행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년 결산	2026년 예산		2027년		증감	
		본예산(A)	추경	요구안	조정안(B)	(B-A)	(B-A)/A
법무실 기본경비 (총액)	558	807	807	831	807	-	-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25					2026(2026.7월말)							2027 예산안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767	767	558	-	209	807	807	283	807	283	-	-	807
・법무실 기본경비(총액)	767	767	558	-	209	807	807	283	807	283	-	-	807
○ 비목별 분류(합계)	767	767	558	-	209	807	807	283	807	283	-	-	807
・상용임금(110-03)	68	68	68	-	-	75	75	42	75	42	-	-	81
・일용임금(110-04)	456	456	275	-	181	456	456	109	456	109	-	-	456
・특근매식비(210-05)	112	112	103	-	9	144	144	52	144	52	-	-	137
・복리후생비(210-12)	5	5	5	-	-	5	5	3	5	3	-	-	5
・기타운영비(210-16)	62	62	62	-	-	62	62	61	62	61	-	-	62
・고용부담금(320-09)	64	64	45	-	19	66	66	16	66	16	-	-	67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법무실 기본경비 총액)
- 법무실 기관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총액)
- 법무실 상용임금, 일용임금, 특근매식비 및 과 운영비 지원 등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법무부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지침(법무부훈령 제945호, 2014. 5. 19)

② 추진경위 : 해당없음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사업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3	2024	2025	2026	2027(안)
사업비	711	754	767	767	807

- 기타: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법무부 법무실
- 사업 수혜자 : 법무부 법무실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7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

① 법무실 기본경비(총액) : ('26) 807백만원 → ('27) 807백만원(전년동)
- 공무직(2명) 처우개선(4.3%) 반영

ㅇ 2026년도 예산 및 2027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6년 예산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75,002	○ **공무직 근로자 보수(110-03) : 75,002천원** 1. 급여 등 65,880천원 2. 명절상여금 5,762천원 ・ 1,440,380.7원*2회*2명=5,762천원 3. 급식보조비 3,360천원 ・ 140,000원×12월×2명=3,360천원	80,627	○ **공무직 근로자 보수(110-03) : 80,627천원** 1. 급여 등 70,778천원 2. 명절상여금 6,009천원 ・ 1,502,317원*2회*2명=6,009천원 3. 급식보조비 3,840천원 ・ 160,000원×12월×2명=3,840천원
456,588	○ **실무수습변호사(6개월) 보수(110-04) : 456,588천원** 1. 인건비 456,035천원	456,035	○ **실무수습변호사(6개월) 보수(110-04) : 456,035천원** 1. 인건비 456,035천원
144,000	○ **특근매식비 지원(210-05) : 144,000천원** 1. 특근매식비(공통) 10,000천원 2. 통일 관련 업무지원 특근매식비 10,000천원 3. 공증, 변호사 업무지원 특근매식비 10,000천원 4. 기획, 예산업무 지원 특근매식비 28,000천원 5. 결산, 집행업무 지원 특근매식비 28,000천원 6. 법제정비 관련 업무지원 특근매식비 10,000천원 7. 상사 관련 업무지원 특근매식비 10,000천원 8. 국회 업무지원 특근매식비 25,000천원 9. 북한인권기록보존소 특근자 매식비 13,000천원	137,082	○ **특근매식비 지원(210-05) : 137,082천원** 1. 특근매식비(공통) 10,000천원 2. 통일 관련 업무지원 특근매식비 10,000천원 3. 공증, 변호사 업무지원 특근매식비 10,000천원 4. 기획, 예산업무 지원 특근매식비 25,000천원 5. 결산, 집행업무 지원 특근매식비 24,000천원 6. 법제정비 관련 업무지원 특근매식비 10,000천원 7. 상사 관련 업무지원 특근매식비 10,000천원 8. 국회 업무지원 특근매식비 25,000천원 9. 북한인권기록보존소 특근자 매식비 13,000천원
4,600	○ **공무직 근로자 맞춤형 복지비(210-12) : 4,600천원** 1. 공무직 맞춤형복지비 1,000천원 ・ 2명*500,000원=1,000천원 2. 법무자문위원회 위원 및 간사 맞춤형복지비 3,600천원 ・ 9명*400,000원=3,600천원	4,800	○ **공무직 근로자 맞춤형 복지비(210-12) : 4,800천원** 1. 공무직 맞춤형복지비 1,100천원 ・ 2명*600,000원=1,100천원 2. 법무자문위원회 위원 및 간사 맞춤형복지비 3,600천원 ・ 9명*400,000원=3,600천원
52,680	○ **각종 운영비(210-16) : 52,680천원** 1. 과 운영비 26,520천원 가. 과 운영비(20인이상) ・ 5과*12월*270,000원=16,200천원 나. 과 운영비(6인 이상) ・ 3과*12월*180,000원=6,480천원 다. 재외동포청 아포스티유 업무팀 운영비 2,160천원 ・ 1팀*12월*180,000원=2,160천원 라. 북한인권기록보존소 부서운영비 2,160천원 ・ 180,000원*12월 2. 법무실장실 운영비 34,660천원 가. 소모품 및 다과 등 구입비 ・ 12월*1,200,000원=14,400천원 나. 축·조의금, 격무 및 우수부서 직원 격려비 14,400천원 다. 기타 운영비 5,860천원	52,680	○ **각종 운영비(210-16) : 61,400천원** 1. 과 운영비 27,000천원 가. 과 운영비(20인이상) ・ 5과*12월*270,000원=16,200천원 나. 과 운영비(6인 이상) ・ 3과*12월*180,000원=6,480천원 다. 재외동포청 아포스티유 업무팀 운영비 2,160천원 ・ 1팀*12월*180,000원=2,160천원 라. 북한인권기록보존소 부서운영비 2,160천원 ・ 180,000원*12월 2. 법무실장실 운영비 34,400천원 가. 소모품 및 다과 등 구입비 ・ 12월*1,200,000원=14,400천원 나. 축·조의금, 격무 및 우수부서 직원 격려비 20,000천원
65,692	○ **공무직 근로자 보험료 및 퇴직금(320-09) : 65,692천원** 1. 공무직 사회보장보험, 퇴직연금 등 14,850천원 2. 실무수습 변호사 4대보험, 고용부담금 등 50,842천원	67,056	○ **공무직 근로자 보험료 및 퇴직금(320-09) : 67,056천원** 1. 공무직 사회보장보험, 퇴직연금 등 16,214천원 2. 실무수습 변호사 4대보험, 고용부담금 등 50,842천원

4) 사업효과 : 해당없음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직접수행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25~2029	767	807	820	850	880	
2026~2030		807	831	856	882	908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실무수습 변호사의 고용부담금(320-09)이 일용임금(110-4)비목으로 편성되었는데, 고용부담금으로 편성하는 것이 적정함(예결위, 23결산)

2) 감사원 감사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 해당없음

3) 자체평가·감사 : 해당없음

4)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 해당없음

5)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24. 예산부터 법률사무종사 변호사의 고용부담금 항목을 올바르게 편성하여 올바르게 편성 조치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법무활동 사업추진의 원활한 지원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2) 동 사업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 : 해당없음

13) 2026년도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 결과 및 후속 조치 현황 : 해당없음

14) 부처 건의사항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3	711	-	711	-	-	-	657	588	82.5	89.3	-	70
2024	754	-	754	△16	-	-	738	551	73.1	74.7	-	188
2025	767	-	767	-	-	-	767	558	72.7	72.7	-	209
2026	807	-	807	-	-	-	807	283	35.1	35.1	-	-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 해당없음

2) 주요 결산사항

□ 2023~2026년 결산사항

2023	- (전용) 일용임금으로 편성된 고용부담금 48백만원 - (불용) 법률사무종사 변호사 조기퇴직에 따른 일용임금 등 69백만원 - (내역변경) 교정, 출입국 법률사무종사 변호사 일용임금 및 고용부담금 54백만원
2024	- (불용) 법률사무종사자 중도퇴직으로 인한 일용임금 162백만원, 고용부담금 25백만원, 공무직 상용임금 2백만원 불용 - (내역변경) 교정본부 법률사무종사 변호사 일용임금 및 고용부담금 등 16백만원
2025	- (불용) 법률사무종사자 퇴직으로 인한 일용임금 181백만원 및 고용부담금 19백만원, 특근매식비 집행잔액 9백만원
2026	- 해당없음

□ 2026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

□ 2026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 해당없음

사 업 명
외국인본부 기본경비(총액) (7011-203)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		020	022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11	203
명칭	법무및검찰행정지원	본부기본경비(일반)	외국인본부기본경비(총액)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6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외국인본부 기본경비 (총액)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	유성오	김원희	이윤주
		출입국기획과	02-2110-4010	02-2110-4026	02-2110-4367
	사업시행주체	법무부	-	-	-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년 결산	2026년 예산		2027년		증감 (B-A)	(B-A)/A
		본예산(A)	추경	요구안	조정안(B)		
외국인본부기본경비(총액)	630	775	775	820	820	45	5.8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25					2026(2026.7월말)							2027 예산안
	예산액(추경)	예산현액	집행액[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현액	집행액[실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예상액	불용예상액	
									예산현액	집행액[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687	687	630	-	57	775	775	474	775	474	-	-	820
· 외국인본부 운영비(총액인건비대상)	687	687	630	-	57	775	775	474	775	474	-	-	820
○ 비목별 분류(합계)	687	687	630	-	57	775	775	474	775	474	-	-	820
· 상용임금(110-03)	391	391	343	-	48	441	441	239	441	239	-	-	470
· 일용임금(110-04)	29	29	29	-	-	29	29	14	29	14	-	-	29
· 특근매식비(210-05)	93	93	91	-	2	120	120	80	120	80	-	-	119
· 복리후생비(210-12)	5	5	4	-	-	5	5	3	5	3	-	-	5
· 기타운영비(210-16)	90	90	84	-	6	90	90	78	90	78	-	-	99
· 고용부담금(320-09)	80	80	79	-	1	91	91	60	91	60	-	-	98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687	687	630	-	57	775	775	474	775	474	-	-	820
· 외국인본부 운영비(총액인건비대상)	687	687	630	-	57	775	775	474	775	474	-	-	820
-상용임금(110-03)	391	391	343	-	48	441	441	239	441	239	-	-	470
-일용임금(110-04)	29	29	29	-	-	29	29	14	29	14	-	-	29
-특근매식비(210-05)	93	93	91	-	2	120	120	80	120	80	-	-	119
-복리후생비(210-12)	5	5	4	-	-	5	5	3	5	3	-	-	5
-기타운영비(210-16)	90	90	84	-	6	90	90	78	90	78	-	-	99
-고용부담금(320-09)	80	80	79	-	1	91	91	60	91	60	-	-	98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외국인본부 운영비 : 총액인건비 대상)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각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기본적 업무 수행

② 추진경위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지원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계속사업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3	2024	2025	2026	2027(안)
사업비	663	703	687	775	820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 수행
- 사업시행주체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사업 수혜자 : 내·외국인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사항 없음

3) 2027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

① 외국인본부 운영비(총액인건비 대상) : ('26) 775백만원 → ('27안) 820백만원, 45백만원 증액

-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복리후생비 및 고용부담금 포함) : ('26) 565 → ('27안) 602백만원 (+37)
  - ■상용임금 : 총 9명(영문에디터 5, 법률전문가 2, 사무보조원 2)
  - ■일용임금 : 변호사 실무수습 ('26) 2명, 6개월 → ('27안) 2명, 6개월 (전년동)
- 특근매식비 : ('26) 120 → ('27안) 119백만원 (△1)
- 기타운영비 : ('26) 90 → ('27안) 99백만원 (+9)

ㅇ 2026년도 예산 및 2027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6년 예산		'27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775백만원	○ **상용임금(110-03) : 441,112천원** 가. 보수 : 9명×3,485천원×12월=376,339천원 나. 명절휴가비 : 9명*2,026,820원*2회=36,483천원 다. 정액급식비 : 9명×140,000원×12월=15,120천원 라. 기타 수당 : 13,170천원 ○ **일용임금(110-04) : 28,500천원** 가. 변호사 실무수습 : 2명×2,375,000원×6월=28,500천원 ○ **특근매식비(210-05) : 120,016천원** 가. 특근매식비 : 120,016,000원 ○ **복리후생비(210-12) : 4,500천원** 가. 맞춤형복지비 : 9명×500,000원=4,500천원 ○ **기타운영비(210-16) : 90,320천원** 가. 과운영비 : (3과×270,000원+7과×180,000원+2팀×180,000원+2팀×90,000원) ×12월=31,320천원 나. 부속실 운영비 등 : 14,000,000원 다. 5급 승진시험 출제 및 시험관리비 : 20,000,000원 라. 정책발표회 등 우수직원 및 우수부서 격려 : 25,000,000원 ○ **고용부담금(320-09) : 90,552천원** 가. 4대 보험료 및 퇴직금 : 87,340,000원 나. 변호사 실무수습 4대 보험료 : 3,198,000원	820백만원	○ **상용임금(110-03) : 469,893천원** 가. 보수 : 9명×3,635천원×12월=392,580천원 나. 명절휴가비 : 9명*2,114,000원*2회=38,052천원 다. 정액급식비 : 9명×160,000원×12월=17,280천원 라. 기타 수당 : 22,041,987천원 ○ **일용임금(110-04) : 28,500천원** 가. 변호사 실무수습 : 2명×2,375,000원×6월=28,500천원 ○ **특근매식비(210-05) : 119,219천원** 가. 특근매식비 : 119,219,000원 ○ **복리후생비(210-12) : 5,400천원** 가. 맞춤형복지비 : 9명×600,000원=5,400천원 ○ **기타운영비(210-16) : 99,281천원** 가. 과운영비 : (3과×270,000원+7과×180,000원+3팀×180,000원+2팀×90,000원) ×12월=33,480천원 나. 부속실 운영비 등 : 15,801,000원 다. 5급 승진시험 출제 및 시험관리비 : 20,000,000원 라. 정책발표회 등 우수직원 및 우수부서 격려 : 30,000,000원 ○ **고용부담금(320-09) : 97,707천원** 가. 4대 보험료 및 퇴직금 : 94,495,000원 나. 변호사 실무수습 4대 보험료 : 3,212,000원

4) 사업효과 : 해당사항 없음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사항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기획예산처 편성기준 시달 → 부처 편성 → 기획예산처 심의 → 정부(안)확정 → 국회심의의결 → 예산확정 → 집행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 해당사항 없음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해당사항 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해당사항 없음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사항 없음

12) 동 사업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 : 해당사항 없음

13) 2026년도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 결과 및 후속 조치 현황 : 해당없음

14) 부처 건의사항 : 해당사항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3	663	-	663	-	42	-	705	653	98.5	92.6	-	52
2024	703	-	703	-	△16	-	687	644	91.6	93.7	-	43
2025	687	-	687	-	-	-	687	630	91.7	91.7	-	57
2026	775	-	775	-	-	-	775	474	61.2	61.2	-	-

2) 주요 결산사항

□ 2023~2026년 결산사항

2023	○ 전용 : 외국인본부 실무수습변호사 추가 채용에 따른 일용임금 및 외국인본부 청년인턴 채용(1명)에 따른 일용임금 및 고용부담금 부족분 충당 증 42백만원 ○ 불용 : 집행잔액 52백만원
2024	○ 전용 : 수시직제 반영된 전문임기제 채용 등 시험관리비 소요 충당을 위해 44백만원 전용 증, 체류외국인 증가로 인해 발생한 우편, 전화요금 등 공공요금 부족분 충당을 위해 60백만원 전용 감 ○ 불용 : 집행잔액 43백만원
2025	○ 전용 : 해당없음 ○ 불용 : 집행잔액 57백만원
2026	- 해당없음

□ 2026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

□ 2026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 해당사항 없음

사 업 명
형사사법국기본경비(총액) (7011-204)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법무부	검찰국		020	022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법무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11	204
명칭	법무 및 행정지원	본부기본경비(일반)	형사사법국기본경비(총액)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6예산 시 소관
	O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형사사법국 기본경비(총액)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검찰국	나하나	검사 구자원	수사관 박성인
		검찰과	02-2110-4190	02-2110-4194	02-2110-4216
	사업시행주체	-	-	-	-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년 결산	2026년 예산		2027년		증감 (B-A)	(B-A)/A
		본예산(A)	추경	요구안	조정안(B)		
형사사법국 기본경비(총액)	409	461	461	475	470	9	1.9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25					2026(2026.7월말)							2027 예산안
	예산액(추경)	예산현액	집행액[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현액	집행액[실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예상액	불용예상액	
									예산현액	집행액[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407	426	409	-	17	461	461	249	461	249	-	-	470
· 인건비(110)	173	163	160	-	3	191	191	95	191	95	-	-	198
· 운영비(210)	203	203	203	-	-	235	235	144	235	144	-	-	236
· 민간이전(320)	31	59	46	-	14	34	34	10	34	10	-	-	36
○ 비목별 분류(합계)	407	426	409	-	17	461	461	249	461	249	-	-	470
· 상용임금(110-03)	130	130	128	-	3	148	148	81	148	81	-	-	155
· 일용임금(110-04)	43	33	33	-	-	43	43	14	43	14	-	-	43
· 특근매식비(210-05)	101	101	101	-	-	130	130	60	130	60	-	-	130
· 복리후생비(210-12)	2	2	1	-	-	2	2	2	2	2	-	-	2
· 기타운영비(210-16)	100	100	100	-	-	104	104	83	104	83	-	-	104
· 고용부담금(320-09)	31	59	46	-	14	34	34	10	34	10	-	-	36
○ 가능비목별 분류(합계)	407	426	409	-	17	461	461	249	461	249	-	-	470
· 인건비(110)	173	163	160	-	3	191	191	95	191	95	-	-	198
-상용임금(110-03)	130	130	128	-	3	148	148	81	148	81	-	-	155
-일용임금(110-04)	43	33	33	-	-	43	43	14	43	14	-	-	43
· 운영비(210)	203	203	203	-	-	235	235	144	235	144	-	-	236
-특근매식비(210-05)	101	101	101	-	-	130	130	60	130	60	-	-	130
-복리후생비(210-12)	2	2	1	-	-	2	2	2	2	2	-	-	2
-기타운영비(210-16)	100	100	100	-	-	104	104	83	104	83	-	-	104
· 민간이전(320)	31	59	46	-	14	34	34	10	34	10	-	-	36
-고용부담금(320-09)	31	59	46	-	14	34	34	10	34	10	-	-	36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해당없음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해당없음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해당없음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3	2024	2025	2026	2027(안)
사업비	319	334	407	461	470

- 기타: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법무부
- 사업 수혜자 :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7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

① 인건비 : (2026 본예산) 191백만원 → (2027 요구) 198백만원, 7백만원 증액
- 공무직 상용임금 처우개선분 7백만원

② 운영비 : (2026 본예산) 235백만원 → (2026 요구) 235백만원, 전년동
- 공무직 복리후생비 처우개선분 0.3백만원
- 비목조정 △0.3백만원

③ 민간이전 : (2026 본예산) 34백만원 → (2026 요구) 36백만원, 2백만원 증액
- 공무직 고용부담금 처우개선분 2백만원

4) 사업효과 : 해당없음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기획재정부 편성기준 시달 → 부처 편성 → 기획재정부 심의 → 정부(안) 확정 → 국회심의의결 → 예산확정 → 집행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 해당없음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해당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해당없음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2) 동 사업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 : 해당없음

13) 2026년도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 결과 및 후속 조치 현황 : 해당없음

14) 부처 건의사항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3	319	-	319	-	-	-	319	302	94.7	94.7	-	17
2024	334	-	334	-	△10	-	324	312	93.4	96.3	-	12
2025	407	-	407	-	19	-	426	409	100.5	96.0	-	17
2026	461	-	461	-	-	-	461	249	54.0	54.0	-	-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 해당없음

2) 주요 결산사항

□ 2023~2026년 결산사항

2023	- 집행잔액 17백만원 불용
2024	- 형사보상금 부족으로 10백만원 이용 감 - 집행잔액 12백만원 불용
2025	- 공무직근로자 퇴직금 부족으로 29백만원 전용 증, 형사보상금 부족으로 10백만원 이용 감 - 집행잔액 17백만원 불용
2026	- 해당없음

□ 2026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

□ 2026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 해당없음

사 업 명
교정본부 기본경비(총액) (7011-205)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법무부	교정본부		020	022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11	205
명칭	법무및검찰행정지원	본부기본경비(일반)	교정본부기본경비(총액)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O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교정본부 기본경비 (총액)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교정본부	주기남	유 진	최재성
		복지과	02-2110-3420	02-2110-3423	02-2110-3499
	사업시행주체	-	-	-	-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년 결산	2026년 예산		2027년		증감	
		본예산(A)	추경	요구안	조정안(B)	(B-A)	(B-A)/A
교정본부기본경비 (총액)	698	744	744	766	731	△13	△1.7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5					2026(2026.7월말)							2027 예산안
	예산액(추경)	예산현액	집행액[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현액	집행액[실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예상액	불용예상액	
									예산현액	집행액[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698	698	638	-	60	744	744	423	744	423	-	-	731
· 교정본부 운영비	698	698	638		60	744	744	423	744	423	-	-	731
○ 비목별 분류(합계)	698	698	638	-	60	744	744	423	744	423	-	-	731
· 특근매식비(210-05)	155	155	137		19	199	199	120	199	120	-	-	199
· 일 · 숙직비(210-06)	27	30	30		-	27	27	8	27	8	-	-	15
· 기타운영비(210-16)	515	512	471		41	517	517	295	517	295	-	-	517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698	698	638	-	60	744	744	423	744	423	-	-	731
· 교정본부 운영비	698	698	638		60	744	744	423	744	423	-	-	731
-특근매식비(210-05)	155	155	137		19	199	199	120	199	120	-	-	199
-일 · 숙직비(210-06)	27	30	30		-	27	27	8	27	8	-	-	15
-기타운영비(210-16)	515	512	471		41	517	517	295	517	295	-	-	517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교정본부 운영비) 법무부 교정본부 운영에 필요한 각종 경비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세출예산집행지침」

② 추진경위 : 교정본부 근무 직원에 대한 운영비 등 지원 필요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3	2024	2025	2026	2027
사업비	450	521	698	744	731

- 기타: 법무부 교정본부 11개 과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법무부
- 사업 수혜자 : 교정공무원 등

3) 2027년도 예산 산출 근거

□교정본부 기본경비(총액) : (2026 예산) 744백만원 → (2027 요구) 731백만원, △13백만원

① 교정본부 운영비 **: (2026 예산) 744백만원 → (2027 요구) 731백만원, △13백만원**
- (요구) 휴일 숙직이 재택근무 전환에 따른 감액 요구
- (산출) 일숙직비 13백만원 감액

ㅇ 2026년도 예산 및 2027년도 예산안 산출 세부내역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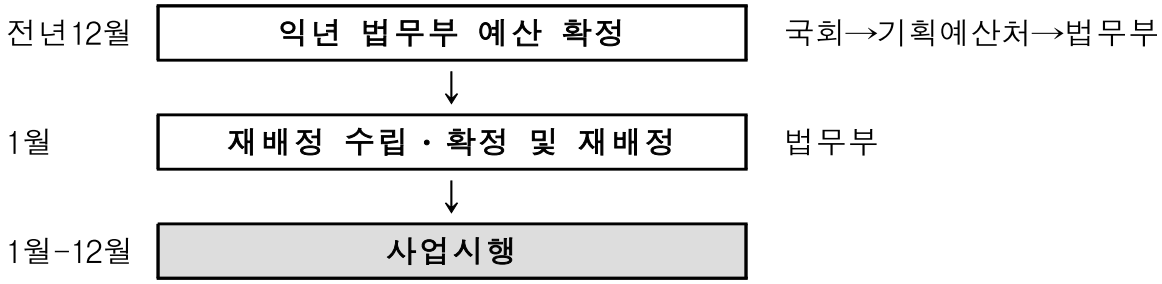
2026년 본예산		2027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744 백만원	○ **특근매식비(210-05) : 199백만원** ・ 123명×15일×9,000원×12월 ○ **일숙직비(210-06) : 27백만원** ・ (일숙직 수당 평일) 2명×30,000원×245일 = 14,700천원 ・ (일숙직 수당 휴일) 2명×50,000원×120일 = 12,000천원 ・ 단수조정 = 650,000원 ○ **기타운영비(210-16) : 517백만원**	744 백만원	○ **특근매식비(210-05) : 199백만원** ○ **일숙직비(210-06) : 15백만원** ・ (일숙직 수당 평일) 2명×30,000원×245일 = 14,700천원 ○ **기타운영비(210-16) : 517백만원**

4) 사업효과 : 해당없음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 해당없음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해당없음

2) 감사원 감사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 해당없음

3) 자체평가·감사 : 해당없음

4)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 해당없음

5)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해당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해당없음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2) 해당사업에 대한 부처 자체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3) 부처 건의사항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3	450	-	450	-	100	-	550	502	111.6	91.3	-	48
2024	521	-	521	-	Δ35	-	487	447	85.8	91.8	-	40
2025	698	-	698	-	-	-	698	689	98.7	98.7	-	9
2026.7	744	-	744	-	-	-	744	423	56.9	56.9	-	-

2) 주요 결산사항

□ 2023~2026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 해당 없음

□ 2026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 없음

□ 2026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 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 해당없음

사 업 명
범죄예방정책국 기본경비(총액) (7011-207)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일반회계	020	022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11	207
명칭	법무및검찰행정지원	본부기본경비(일반)	범죄예방정책국기본경비(총액)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6예산 시 소관
	O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범죄예방 정책국 기본경비 (총액)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범죄예방정책국	오상섭	원학재	주영광
		범죄예방기획과	02-2110-3570	02-2110-3574	02-2110-3577
	사업시행주체	법무부	-	-	-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년 결산	2026년 예산		2027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요구안	조정안(B)		(B-A)/A
범죄예방정책국 기본경비(총액)	209	261	261	269	261	-	전년동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25					2026(2026.7월말)							2027 예산안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225	225	209	-	16	261	261	245	261	245	-	-	261
· 수습 변호사 보수	14	14	-	-	14	14	14	-	14	-	-	-	14
· 특근매식비	128	129	129	-	-	164	164	164	164	164	-	-	164
· 과운영비, 시험수당 등	81	80	80	-	-	81	81	81	81	81	-	-	81
· 수습변호사 보험료 등	2	2	-	-	2	2	2	-	2	-	-	-	2
○ 비목별 분류(합계)	225	225	209	-	16	261	261	245	261	245	-	-	261
· 일용임금(110-04)	14	14	-	-	14	14	14	-	14	-	-	-	14
· 특근매식비(210-05)	128	129	129	-	-	164	164	164	164	164	-	-	164
· 기타운영비(210-16)	81	80	80	-	-	81	81	81	81	81	-	-	81
· 고용부담금(320-09)	2	2	-	-	2	2	2	-	2	-	-	-	2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225	225	209	-	16	261	261	245	261	245	-	-	261
· 수습 변호사 보수	14	14	-	-	14	14	14	-	14	-	-	-	14
-일용임금(110-04)	14	14	-	-	14	14	14	-	14	-	-	-	14
· 특근매식비	128	129	129	-	-	164	164	164	164	164	-	-	164
-특근매식비(210-05)	128	129	129	-	-	164	164	164	164	164	-	-	164
· 과운영비, 시험수당 등	81	80	80	-	-	81	81	81	81	81	-	-	81
-기타운영비(210-16)	81	80	80	-	-	81	81	81	81	81	-	-	81
· 수습변호사 보험료 등	2	2	-	-	2	2	2	-	2	-	-	-	2
-고용부담금(320-09)	2	2	-	-	2	2	2	-	2	-	-	-	2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수습 변호사 보수)** 실무 수습 변호사 보수 지원
- **(특근매식비)** 초과근무 직원 대상 식비 지원
- **(과운영비, 시험수당 등)** 범죄예방정책국 경비 및 실무수행평가 출제위원 수당 등 지급 지원
- **(수습변호사 보험료 등)** 실무 수습 변호사 보험료 등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령 및 동 시행 규칙

② 추진경위

- 1980년 사회보호법 시행
- 1981년 보호국 신설
- 2008년 범죄예방정책국으로 명칭 변경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단위: 백만원)

연도	2023	2024	2025	2026	2027(안)
사업비	220	221	225	261	261

- 기타 : 해당 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본부 6과 2팀
- 사업 수혜자 : 범죄예방정책국
-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3) 2027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

① 수습 변호사 보수

: (2026 본예산) 14백만원 → (2027 요구) 14백만원, 전년동

ㅇ 2026년도 예산 및 2027년도 예산안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6년 본예산		2027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4	○ **일용임금(110-04) : 14백만원** 가. 실무수습변호사 임금 · 1명×2,306천원×6월 =14백만원	14	○ **일용임금(110-04) : 14백만원** 가. 실무수습변호사 임금 · 1명×2,306천원×6월 =14백만원

② 특근매식비

: (2026 본예산) 164백만원 → (2027 요구) 164백만원, 전년동

ㅇ 2026년도 예산 및 2027년도 예산안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6년 본예산		2027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64	○ **특근매식비(210-05) : 164백만원**	164	○ **특근매식비(210-05) : 164백만원**

③ 과 운영비, 시험수당 등

: (2026 본예산) 81백만원 → (2027 요구) 81백만원, 전년동

ㅇ 2026년도 예산 및 2027년도 예산안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6년 본예산		2027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81	○ **기타운영비(210-16) : 81백만원** 가. 과운영비 : 24백만원 나. 격려금 및 실무수행능력평가위원 수당 등 : 57백만원	81	○ **기타운영비(210-16) : 81백만원** 가. 과운영비 : 24백만원 나. 격려금 및 실무수행능력평가위원 수당 등 : 57백만원

④ 수습 변호사 보험료 등

: (2026 본예산) 2백만원 → (2027 요구) 2백만원, 전년동

ㅇ 2026년도 예산 및 2027년도 예산안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6년 본예산		2027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2	○ **일용임금(320-09) : 2백만원** 가. 실무수습변호사 보험료 등 · 1명×333천원×6월 =2백만원	2	○ **일용임금(320-09) : 2백만원** 가. 실무수습변호사 보험료 등 · 1명×333천원×6월 =2백만원

4) 사업효과 : 해당없음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해당없음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 해당없음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해당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해당없음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2) 동 사업에 대한 부처 자체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3) 2026년도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 결과 및 후속 조치 현황 : 해당없음

14) 부처 건의사항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3	220	-	220	-	-	-	220	205	93.2	93.2	-	15
2024	221	-	221	-	-	-	221	205	92.8	92.8	-	16
2025	225	-	225	-	-	-	225	209	92.9	92.9	-	16
2026	261	-	261	-	-	-	261	245	93.9	93.9	-	-

2) 주요 결산사항

□ 2023~2026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3	- 불용 : 수습 변호사 미배정에 따른 일용임금 및 고용부담금 15백만원
2024	- 불용 : 수습 변호사 미배정에 따른 일용임금 및 고용부담금 16백만원
2025	- 불용 : 수습 변호사 미배정에 따른 일용임금 및 고용부담금 16백만원
2026	-

□ 2026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

□ 2027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 해당없음

사 업 명
인권국기본경비(총액) (7011-208)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법무부	인권국	일반회계	020	022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11	208
명칭	법무및검찰행정지원	본부기본경비(일반)	인권국기본경비(총액)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6예산 시 소관
	O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인권국	노일석	이진환	강형아
		인권정책과	2110-3673	2110-3675	2110-3678
	사업시행주체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년 결산	2026년 예산		2027년		증감 (B-A)	(B-A)/A
		본예산(A)	추경	요구안	조정안(B)		
인권국기본경비 (총액)	262	292	292	292	292	-	-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25					2026(2026.7월말)							2027 예산안
	예산액(추경)	예산현액	집행액[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현액	집행액[실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예상액	불용예상액	
									예산현액	집행액[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262	262	180	-	82	292	292	118	292	118	-	-	292
· 사무보조원 등 인건비	141	141	80	-	61	148	148	42	148	42	-	-	139
· 인권국 운영비	121	121	100	-	21	144	144	76	144	76	-	-	153
○ 비목별 분류(합계)	262	262	180	-	82	292	292	118	292	118	-	-	292
· 상용임금(110-03)	64	64	65	-	-	70	70	38	70	38	-	-	75
· 일용임금(110-04)	57	57	2	-	55	57	57	0	57	0	-	-	43
· 특근매식비(210-05)	80	80	59	-	21	103	103	35	103	35	-	-	103
· 복리후생비(210-12)	1	1	1	-	-	1	1	0	1	0	-	-	1
· 기타운영비(210-16)	41	41	41	-	-	41	41	41	41	41	-	-	51
· 고용부담금(320-09)	19	19	12	-	7	20	20	4	20	4	-	-	20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262	262	180	-	82	292	292	118	292	118	-	-	292
· 사무보조원 등 인건비	141	141	80	-	61	148	148	42	148	42	-	-	148
- 상용임금(110-03))	64	64	65	-	-	70	70	38	70	38	-	-	75
- 일용임금(110-04)	57	57	2	-	55	57	57	0	57	0	-	-	43
- 복리후생비(210-12)	1	1	1	-	-	1	1	0	1	0	-	-	1
- 고용부담금(320-09)	19	19	12	-	7	20	20	4	20	4	-	-	20
· 인권국 운영비	121	121	100	-	21	144	144	76	144	76	-	-	153
- 특근매식비(210-05)	80	80	59	-	21	103	103	35	103	35	-	-	103
- 기타운영비(210-16)	41	41	41	-	-	41	41	41	41	41	-	-	51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사무보조원 등 인건비) 인권국 운영을 위한 사무보조원 및 실수수습 변호사 인건비 지원
- (인권국 운영비) 직원 특근매식비 및 기타 운영비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법무부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법무부 훈령 제1219호)

② 추진경위 : 해당없음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사업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3	2024	2025	2026	2027(안)
사업비	233	225	262	292	292

- 기타: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인권정책과
- 사업 수혜자 : 인권국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7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

① 사무보조원 등 인건비

: (2026 본예산) 148백만원 → (2027 요구) 139백만원, 9백만원 감액

- (요구) 실무수습변호사 축소(1명) 반영 9백만원 감액
- (산출) 상용임금(사무보조원) 공통처우개선분 반영 5백만원 증액
  일용임금 14백만원 감액

ㅇ 2026년도 예산 및 2027년도 예산안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6년 본예산		2027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48,350	○ **사무보조원 등 인건비 : 147백만원** 가. 사무보조원 2명 상용임금(110-03) = 70백만원 나. 실무수습 변호사 4명 일용임금(110-04) = 57백만원 다. 사무보조원 2명 복리후생비(210-12) = 1백만원 라. 사무보조원 2명 및 실무수습 변호사 4명 고용부담금 (320-09) = 20백만원	138,847	○ **사무보조원 등 인건비 : 139백만원** 가. 사무보조원 2명 상용임금(110-03) = 75백만원 나. 실무수습 변호사 3명 일용임금(110-04) = 43백만원 다. 사무보조원 2명 복리후생비(210-12) = 1백만원 라. 사무보조원 2명 및 실무수습 변호사 4명 고용부담금 (320-09) = 20백만원

② 인권국 운영비

: (2026 본예산) 144백만원 → (2027 요구) 153백만원, 9백만원 증액

- (요구) 인권 우수기관 표창 등 반영 9백만원 증액
- (산출) 인권 우수기관 표창 5백만원 증액, 우수부서 등 격려 4백만원 증액

ㅇ 2026년도 예산 및 2027년도 예산안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6년 본예산		2027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43,650	○ **인권국 운영비 : 144백만원** 가. 특근매식비(210-05) = 103백만원 나. 기타운영비(210-16)= 41백만원	153,153	○ **인권국 운영비 : 144백만원** 가. 특근매식비(210-05) = 103백만원 나. 기타운영비(210-16)= 50백만원

4) 사업효과 : 해당없음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해당없음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 해당없음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해당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해당없음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2) 해당사업에 대한 부처 자체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3) 부처 건의사항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3	233	-	233	-	-	-	233	197	84.4	84.4	-	36
2024	225	-	225	-	-	-	225	175	78.0	78.0	-	50
2025	262	-	262	-	-	-	262	180	68.7	68.7	-	82
2026	292	-	292	-	-	-	292	118	40.4	40.4	-	-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 해당없음

2) 주요 결산사항

□ 2023~2026년 결산사항

2023	- 집행 잔액 불용
2024	- 인건비 등 집행잔액 불용
2025	- 해당없음
2026	- 해당없음(예산 집행 중)

□ 2026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

□ 2026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 해당없음

사 업 명
국제법무국 기본경비(총액) (7011-21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법무부	국제법무국		020	022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11	210
명칭	법무및검찰행정지원	본부기본경비(일반)	국제법무국기본경비(총액)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6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국제법무국 기본경비(총액)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국제법무국	최성겸	박노화	박상아
		국제법무정책과	02-2110-4533	02-2110-4534	02-2110-4536
	사업시행주체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년 결산	2026년 예산		2027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요구	조정(B)		(B-A)/A
국제법무국 기본경비(총액)	110	136	136	142	142	6	4.4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5					2026.7월말							2027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125	125	110	-	6	136	136	58	136	58	-	-	142
· 국제법무국 기본경비(총액)	125	125	110	-	6	136	136	58	136	58	-	-	142
○ 비목별 분류(합계)	125	125	110	-	6	136	136	58	136	58	-	-	142
· 상용임금(110-03)	29	29	29	-	-	32	32	15	32	15	-	-	37
· 일용임금(110-04)	43	43	41	-	2	43	43	21	43	21	-	-	43
· 특근매식비(210-05)	26	26	17	-	-	34	34	5	34	5	-	-	34
· 복리후생비(210-12)	1	1	1	-	-	1	1	-	1	-	-	-	1
· 기타운영비(210-16)	15	15	15	-	-	15	15	9	15	9	-	-	15
· 고용부담금(320-09)	11	11	7	-	4	11	11	8	11	8	-	-	12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국제법무국 기관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총액)
- 국제법무국 공무직 및 실무수습변호사 인건비, 직원 특근매식비 및 과 운영비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정부조직법 제32조(법무부)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의3(국제법무국)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조의3(국제법무국)
- 법무부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지침

② 추진경위

- ’23. 8. 8. 법무부 직제 개편으로 국제법무국 신설에 따른 기본경비 편성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24.~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3	2024	2025	2026	2027
사업비	-	118	125	136	142

- 기타: 해당 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법무부 국제법무국
- 사업 수혜자 : 국민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3) 2027년도 예산 산출 근거

□ **국제법무국 기본경비(총액) : (2026 본예산) 136 → (2027 요구) 142백만원, 6백만원 증액**

① 국제법무국 기본경비(총액)
: (2026 본예산) 136 → (2027 요구) 142백만원, 6백만원 증액

- (요구) 특근매식비 단가 상승 및 공무직 처우개선 반영
- (산출) 상용임금 37백만원(+5백만원)
  일용임금 43백만원
  특근매식비 34백만원
  복리후생비 1백만원
  기타운영비 15백만원
  고용부담금 12백만원(+1백만원)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6년 예산		2027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36,000	○ **상용임금(110-03) : 31,984천원** 가. 사무보조원 보수 등 (31,984천원) ・ 보수 : 1명*2,156,880원*12월=26,835천원 ・ 명절휴가비 : 1명*550,000원*0.6*2회=2,588천원 ・ 연가보상비 : 1명*96,174원*3일=289천원 ・ 초과근무수당 : 1명*18,032원*7시간*12월=1,515천원 나. 조정재원 (29천원) ○ **일용임금(110-04) : 42,750천원** 가. 실무수습변호사 보수 (42,750천원) ・ 2,375,000원*3명*6월=42,750천원 ○ **특근매식비(210-05) : 34,166천원** 가. 특근자 매식비 (26,600천원) ・ 9,000원*41명*93회=34,317천원 나. 조정재원 (△151천원) ○ **복리후생비(210-12) : 500천원** 가. 사무보조원 맞춤형복지비 (500천원) ・ 1명*500,000원=500천원 ○ **기타운영비(210-16) : 15,480천원** 가. 과 운영비 (6,480천원) ・ 180,000원*3과*12월=6,480천원 나. 국장실 운영비 (9,000천원) ・ 소모품 및 다과 등 구입비 : 500,000원*12월=6,000천원 ・ 격무 및 우수부서 격려비 : 500,000원*6회=3,000천원 ○ **고용부담금(320-09) : 11,120천원** 가. 사무보조원 4대보험 및 퇴직연금 (6,,332천원) ・ 31,984,000원*19.80%=6,332천원 나. 실무수습변호사 4대보험 (4,788천원) ・ 266,000원*3명*6월=4,788천원	142,000	○ **상용임금(110-03) : 36,710천원** 가. 사무보조원 보수 등 (36,710천원) ・ 보수 : 1명*2,638,834원*12월=31,666천원 ・ 명절휴가비 : 1명*2,638,834원*0.6*2회=3,167천원 ・ 정액급식비 : 1명*160,000원*12월=1,920천원 나. 조정재원 (△43천원) ○ **일용임금(110-04) : 42,750천원** 가. 실무수습변호사 보수 (42,750천원) ・ 2,375,000원*3명*6월=42,750천원 ○ **특근매식비(210-05) : 34,166천원** 가. 특근자 매식비 (26,600천원) ・ 9,000원*41명*93회=34,317천원 나. 조정재원 (△151천원) ○ **복리후생비(210-12) : 600천원** 가. 사무보조원 맞춤형복지비 (600천원) ・ 1명*600,000원=600천원 ○ **기타운영비(210-16) : 15,480천원** 가. 과 운영비 (6,480천원) ・ 180,000원*3과*12월=6,480천원 나. 국장실 운영비 (9,000천원) ・ 소모품 및 다과 등 구입비 : 500,000원*12월=6,000천원 ・ 격무 및 우수부서 격려비 : 500,000원*6회=3,000천원 ○ **고용부담금(320-09) : 12,170천원** 가. 사무보조원 4대보험 및 퇴직연금 (7,382천원) ・ 36,710,000원*20.11%=6,332천원 나. 실무수습변호사 4대보험 (4,788천원) ・ 266,000원*3명*6월=4,788천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 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 해당 없음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국제법무국의 안정적 운영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해당 없음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 해당 없음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해당없음
2) 감사원 감사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 해당없음
3) 자체평가·감사 : 해당없음
4)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 해당없음
5)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해당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국제법무국 운영의 원활한 지원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 없음

12) 해당사업에 대한 부처 자체평가의 결과 : 해당 없음

13) 부처 건의사항 : 해당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3	-	-	-	-	-	-	-	-	-	-	-	-
2024	118	-	118	-	-	-	118	105	89.0	89.0	-	13
2025	125	-	125	-	-	-	125	119	95.2	95.2	-	6
2026	136	-	136	-	-	-	136	58	42.6	42.6	-	-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 해당 없음

2) 주요 결산사항

□ 2023~2026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 해당 없음

□ 2026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 없음

□ 2026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 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 해당 없음

사 업 명
기관운영 기본경비 (7011-25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법무부	기획조정실		020	022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11	250
명칭	법무및검찰행정지원	본부기본경비(일반)	기관운영기본경비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6예산 시 소관
	ㅇ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ㅇ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기관운영 기본경비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기획조정실	강의곤	유재륜(서기관)	최진훈
		기획재정담당관실	02-2110-3099	02-2110-3098	02-2110-3766
	사업시행주체	-	-	-	-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년 결산	2026년 예산		2027년		증감	
		본예산(A)	추경	요구안	조정안(B)	(B-A)	(B-A)/A
기관운영 기본경비	3,409	4,160	4,160	4,047	4,037	△123	△2.9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25					2026(2026.7월말)							2027 예산안
	예산액(추경)	예산현액	집행액[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현액	집행액[실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예상액	불용예상액	
									예산현액	집행액[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4,055	4,055	3,409	-	646	4,160	4,171	2,454	4,160	2,454	-	-	4,037
・기본경비	4,055	4,055	3,409	-	646	4,160	4,171	2,454	4,160	2,454	-	-	4,037
○ 비목별 분류(합계)	4,055	4,055	3,409	-	646	4,160	4,171	2,454	4,160	2,454	-	-	4,037
・일반수용비(210-01)	1,693	1,693	1,450	-	243	1,642	1,647	1,036	1,642	1,036	-	-	1,527
・공공요금(210-02)	128	128	98	-	30	133	133	94	133	94	-	-	133
・임차료(210-07)	334	343	332	-	11	387	387	200	387	200	-	-	387
・유류비(210-08)	82	73	19	-	54	82	75	41	82	41	-	-	71
・시설장비유지비(210-09)	10	10	9	-	1	13	20	7	13	7	-	-	13
・일반용역비(210-14)	194	174	98	-	76	174	174	15	174	15	-	-	174
・관리용역비(210-15)	44	44	34	-	10	44	44	19	44	19	-	-	44
・국내여비(220-01)	671	690	579	-	111	681	681	476	681	476	-	-	671
・국외업무여비(220-02)	130	111	70	-	41	130	130	32	130	32	-	-	124
・관서업무추진비(240-02)	496	496	485	-	11	517	517	388	517	388	-	-	501
・정책연구비(260-02)	40	40	40	-	-	40	40	-	40	-	-	-	40
・포상금(310-03)	15	15	8	-	7	88	88	65	88	65	-	-	88
・기타보전금(310-04)	1	1	-	-	1	1	1	-	1	-	-	-	1
・자산취득비(430-01)	239	239	188	-	51	229	235	82	229	82	-	-	265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4,055	4,055	3,409	-	646	4,160	4,171	2,454	4,160	2,454	-	-	4,037
・기본경비	4,055	4,055	3,409	-	646	4,160	4,171	2,454	4,160	2,454	-	-	4,037
- 일반수용비(210-01)	1,693	1,693	1,450	-	243	1,642	1,647	1,036	1,642	1,036	-	-	1,527
- 공공요금(210-02)	128	128	98	-	30	133	133	94	133	94	-	-	133
- 임차료(210-07)	334	343	332	-	11	387	387	200	387	200	-	-	387
- 유류비(210-08)	82	73	19	-	54	82	75	41	82	41	-	-	71
- 시설장비유지비(210-09)	10	10	9	-	1	13	20	7	13	7	-	-	13
- 일반용역비(210-14)	194	174	98	-	76	174	174	15	174	15	-	-	174

	2025					2026(2026.7월말)							2027 예산안
	예산액(추경)	예산현액	집행액[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현액	집행액[실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예상액	불용예상액	
									예산현액	집행액[실집행액]			
- 관리용역비(210-15)	44	44	34	-	10	44	44	19	44	19	-	-	44
- 국내여비(220-01)	671	690	579	-	111	681	681	476	681	476	-	-	671
- 국외업무여비(220-02)	130	111	70	-	41	130	130	32	130	32	-	-	124
- 관서업무추진비(240-02)	496	496	485	-	11	517	517	388	517	388	-	-	501
- 정책연구비(260-02)	40	40	40	-	-	40	40	-	40	-	-	-	40
- 포상금(310-03)	15	15	8	-	7	88	88	65	88	65	-	-	88
- 기타보전금(310-04)	1	1	-	-	1	1	1	-	1	-	-	-	1
- 자산취득비(430-01)	239	239	188	-	51	229	235	82	229	82	-	-	265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기관운영기본경비) 기관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해당없음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3	2024	2025	2026	2027(안)
사업비	3,662	4,034	4,055	4,160	4,037

- 기타 :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법무부
- 사업 수혜자 : 기획조정실 등 직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7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

① 기관운영 기본경비
: ('26) 4,160백만원 → ('27안) 4,037백만원, △123백만원 감액

ㅇ 2026년도 예산 및 2027년도 예산안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6년 본예산		2027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4,160	○ 일반수용비(210-01) : 1,642백만원 ○ 공공요금및제세(210-02) : 133백만원 ○ 임차료(210-07) : 387백만원 ○ 유류비(210-08) : 82백만원 ○ 시설장비유지비(210-09) : 13백만원 ○ 일반용역비(210-14) : 174백만원 ○ 관리용역비(210-15) : 44백만원 ○ 국내여비(220-01) : 681백만원 ○ 국외업무여비(220-02) : 130백만원 ○ 관서업무추진비(240-02) : 517백만원 ○ 정책연구비(260-02) : 40백만원 ○ 포상금(310-03) : 88백만원 ○ 기타보전금(310-04) : 1백만원 ○ 자산취득비(430-01) : 229백만원	4,037	○ 일반수용비(210-01) : 1,527백만원 ○ 공공요금및제세(210-02) : 133백만원 ○ 임차료(210-07) : 387백만원 ○ 유류비(210-08) : 71백만원 ○ 시설장비유지비(210-09) : 13백만원 ○ 일반용역비(210-14) : 174백만원 ○ 관리용역비(210-15) : 44백만원 ○ 국내여비(220-01) : 671백만원 ○ 국외업무여비(220-02) : 124백만원 ○ 관서업무추진비(240-02) : 501백만원 ○ 정책연구비(260-02) : 40백만원 ○ 포상금(310-03) : 88백만원 ○ 기타보전금(310-04) : 1백만원 ○ 자산취득비(430-01) : 265백만원

4) 사업효과 : 해당없음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해당없음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 해당없음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해당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해당없음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2) 동 사업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 : 해당없음

13) 2026년도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 결과 및 후속 조치 현황 : 해당없음

14) 부처 건의사항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3	3,662	-	3,662	47	151	-	3,558	2,791	78.4	76.2	47	719
2024	4,034	-	4,034	47	△60	-	4,021	3,575	88.6	88.9	45	447
2025	4,055	-	4,055	-	-	-	4,055	3,409	84.1	84.1	-	646
2026	4,160	-	4,160	-	-	-	4,171	2,454	58.9	58.8	-	-

2) 주요 결산사항

□ 2023~2026년 결산사항

2023	- '2022회계연도 재무결산' 용역 계약액 47백만원 이월 - 법무부-국제형사재판소(ICC) 간 협력관계 강화 등을 위한 공동 세미나 개최 관련, 행사 경비 부족분을 검찰국기본경비로 25백만원 전용 - 국제법무국 신설 등에 따른 경비 부족으로 기관운용기본경비(총액)으로 31백만원, 법무실 기본경비로 18백만원 전용 -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정부과천청사 재이전('23.8.18.)에 따라, 인권국 기본경비로 이전 비용 77백만원 전용
2024	- '2023회계연도 재무결산' 용역 계약액 47백만원 이월 - 직제 신설(범죄피해자원스톱지원팀, 빅데이터팀) 등에 따른 직책수행경비 부족으로 기관운영 기본경비(총액)으로 12백만원 전용 - 아포스티유 인증서 발급량 증가에 따른 일반수용비(인증서 스티커 추가 인쇄 소요) 부족으로 법무실 기본경비로 48백만원 전용
2025	- '2024회계연도 재무결산' 용역 계약액 45백만원 이월
2026	- 해당없음

□ 2026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

□ 2026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 해당없음

사 업 명
법무실 기본경비 (7011-253)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법무부	법무실	-	020	022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법무 및 검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11	253
명칭	법무및검찰행정지원	본부 기본경비	법무실 기본경비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6예산 시 소관
	O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법무실 기본경비	법무부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법무실	이윤구	김승재 서기관	김동원
		과·팀명	02-2110-375	02-2110-3173	02-2110-3179
	사업시행주체	직접수행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년 결산	2026년 예산		2027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요구안	조정안(B)		(B-A)/A
법무실 기본경비	663	723	723	745	723	-	-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25					2026(2026.7월말)							2027 예산안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707	707	663	-	44	723	723	510	723	510	-	-	723
・법무실 기본경비	707	707	663	-	44	723	723	510	723	510	-	-	723
○ 비목별 분류(합계)	707	707	663	-	44	723	723	510	723	510	-	-	723
・일반수용비(210-01)	399	417	404	-	14	387	387	325	387	325	-	-	396
・공공요금및제세(210-02)	44	36	30	-	6	44	44	39	44	39	-	-	44
・임차료(210-07)	8	-	-	-	-	8	8	3	8	3	-	-	8
・유류비(210-08)	3	-	-	-	-	3	3	-	3	-	-	-	3
・시설장비유지비(210-09)	3	3	3	-	-	3	3	2	3	2	-	-	3
・국내여비(220-01)	85	85	70	-	15	85	85	64	85	64	-	-	81
・국외여비(220-02)	40	40	35	-	5	50	50	25	50	25	-	-	48
・관서업무비(240-02)	50	50	50	-	-	57	57	43	57	43	-	-	54
・정책연구비(260-02)	21	21	21	-	-	21	21	-	21	-	-	-	21
・자산취득비(430-01)	55	55	51	-	4	65	65	9	65	9	-	-	65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법무실 기본경비)
- 법무실 기관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
-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임차료 등 경상적 경비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예산 편성지침 및 기금 운용 계획안 작성 지침

② 추진경위 : 해당없음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사업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3	2024	2025	2026	2027(안)
사업비	531	590	707	723	723

- 기타: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법무부 법무실
- 사업 수혜자 : 법무부 법무실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7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

① 법무실 기본경비 : ('25) 707백만원 → ('26) 723백만원

- (산출)

: 일반수용비 △11백만원, 자산취득비 11백만원, 국외여비 +12백만원, 관서업추비 +7백만원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5년 예산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398,530	○ **일반수용비(210-01) : 398,530천원** 1. 복사용지 구입비 13,824천원 ・ 12박스*6과*12월*16,000원=13,824천원 2. 전산 소모품 구입비 18,720천원 ・6과*12월*260,000원=18,720천원 3. 사무용품 구입비 18,720천원 ・6과*12월*260,000원=18,720천원 4. 법무자료실 운영 5,553천원 가. 도서용품 구입 1,000천원 1) 카드, 북포켓, 대출카드, 북앤드, 라벨, 등록대장 등 1,000,000원 나. 정기간행물 구입 2,487천원 1) 국내 잡지 ・ 4종*12월*7,200원=346천원 2) 국외 학술잡지 ・ 4종*12월*20,600원=989천원 3) 국내 신문 ・ 8종*12월*12,000원=1,152천원 다. 법령 및 판례추록 가제료 2,066천원 1) 국내 법령 ・ 3회*62,000원=186천원 2) 국외 법령 ・ 4종*1회*145,000원=580천원 3) 국내 판례 ・ 1회*100,000원=100천원 4) 일본 판례 ・ 2종*2회*300,000원=1,200천원 5. 위원회 참석위원 회의 수당 2,800천원 가. 본부배상심의회 ・7명*4회*100,000원=2,800천원 6. 아포스티유 관련 업무지원 212,400천원 가. 아포스티유 인증서 스티커 인쇄비 ・180,000매*1,180원=212,400천원 7. 법무실 간행물 구입비 4,320천원 가. 신문구독 ・6과*12월*50,000원=3,600천원 나. 법전구입 ・6권*120,000원=720천원 8.. 법무실 소모품 공동 구입비용 10,080천원 ・6과*12월*140,000원=10,080천원 9. 사무용 비품 수선비 7,200천원 ・6과*12월*100,000원=7,200천원 10. 케이블 TV 수신료 960천원 ・12월*80,000원=960천원 11. 공기청정기 관리비 1,260천원 ・12월*105,000원=1,260천원 12. 업무용택시 이용료 75,473천원 13.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사무용품 구입비, 수수료 등 27,220천원	386,530	○ **일반수용비(210-01) : 386,530천원** 1. 복사용지 구입비 13,824천원 ・ 12박스*6과*12월*16,000원=13,824천원 2. 전산 소모품 구입비 18,720천원 ・6과*12월*260,000원=18,720천원 3. 사무용품 구입비 18,720천원 ・6과*12월*260,000원=18,720천원 4. 법무자료실 운영 5,553천원 가. 도서용품 구입 1,000천원 1) 카드, 북포켓, 대출카드, 북앤드, 라벨, 등록대장 등 1,000,000원 나. 정기간행물 구입 2,487천원 1) 국내 잡지 ・ 4종*12월*7,200원=346천원 2) 국외 학술잡지 ・ 4종*12월*20,600원=989천원 3) 국내 신문 ・ 8종*12월*12,000원=1,152천원 다. 법령 및 판례추록 가제료 2,066천원 1) 국내 법령 ・ 3회*62,000원=186천원 2) 국외 법령 ・ 4종*1회*145,000원=580천원 3) 국내 판례 ・ 1회*100,000원=100천원 4) 일본 판례 ・ 2종*2회*300,000원=1,200천원 5. 위원회 참석위원 회의 수당 2,800천원 가. 본부배상심의회 ・7명*4회*100,000원=2,800천원 6. 아포스티유 관련 업무지원 212,400천원 가. 아포스티유 인증서 스티커 인쇄비 = 201,620천원 7. 법무실 간행물 구입비 4,320천원 가. 신문구독 ・6과*12월*50,000원=3,600천원 나. 법전구입 ・6권*120,000원=720천원 8.. 법무실 소모품 공동 구입비용 10,080천원 ・6과*12월*140,000원=10,080천원 9. 사무용 비품 수선비 7,200천원 ・6과*12월*100,000원=7,200천원 10. 케이블 TV 수신료 960천원 ・12월*80,000원=960천원 11. 공기청정기 관리비 1,260천원 ・12월*105,000원=1,260천원 12. 업무용택시 이용료 75,473천원 13.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사무용품 구입비, 수수료 등 26,000천원
43,650	○ **공공요금및제세(210-02) : 43,650천원** 1. 우편요금 12,000천원 ・12월*1,000,000원=12,000천원 2. 전화 등 통신요금 24,000천원 ・12월*2,000,000원=24,000천원 3. 도서관협회비 500천원 ・1회*500,000원=500천원 4. 국회도서관 원문 이용료 150천원 ・1회*150,000원=150천원 5.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전화료, 우편료 등 공공요금 7,000천원	43,650	○ **공공요금및제세(210-02) : 43,650천원** 1. 우편요금 12,000천원 ・12월*1,000,000원=12,000천원 2. 전화 등 통신요금 24,000천원 ・12월*2,000,000원=24,000천원 3. 도서관협회비 500천원 ・1회*500,000원=500천원 4. 국회도서관 원문 이용료 150천원 ・1회*150,000원=150천원 5.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전화료, 우편료 등 공공요금 7,000천원

'25년 예산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7,800	○ **임차료(210-07) : 7,800천원** 1. 실무수습변호사 컴퓨터 등 장비 대여료 7,800천원	7,800	○ **임차료(210-07) : 7,800천원** 1. 실무수습변호사 컴퓨터 등 장비 대여료 7,800천원
3,000	○ **유류비(210-08) : 3,000천원** 1. 법무실 공용차량 유류비 3,000천원	3,000	○ **유류비(210-08) : 3,000천원** 1. 법무실 공용차량 유류비 3,000천원
3,000	○ **시설장비유지비(210-09) : 3,000천원** 1. 법무실 시설 장비 유지비 등 3,000천원	3,000	○ **시설장비유지비(210-09) : 3,000천원** 1. 법무실 시설 장비 유지비 등 3,000천원
85,450	○ **국내여비(220-01) : 85,450천원** 1. 업무관련 시내출장 여비 34,380천원 2. 이전비 7,200천원 ・8명*900,000원=7,200천원 3. 공익법무관 지도점검 4,540천원 4. 민사관계법 연구 2,610천원 5. 상사관계법 제·개정 연구 1,230천원 6. 통일법령 및 각종 학술회의 발표 사례 연구 530천원 7. 통일업무 유관기관 업무협의회 참석 1,340천원 8. 아포스티유 업무연락 1,920천원 9. 송무 지도점검 3,500천원 10. 국가배상신청사건 증거조사 2,180천원 11. 직원 교육여비 8,600천원 12. 공증사무 지도점검 14,000천원 13. 북한인권 기록보존 및 관리 3,420천원	85,450	○ **국내여비(220-01) : 85,450천원** 1. 업무관련 시내출장 여비 34,380천원 2. 이전비 7,200천원 ・8명*900,000원=7,200천원 3. 공익법무관 지도점검 4,540천원 4. 민사관계법 연구 2,610천원 5. 상사관계법 제·개정 연구 1,230천원 6. 통일법령 및 각종 학술회의 발표 사례 연구 530천원 7. 통일업무 유관기관 업무협의회 참석 1,340천원 8. 아포스티유 업무연락 1,920천원 9. 송무 지도점검 3,500천원 10. 국가배상신청사건 증거조사 2,180천원 11. 직원 교육여비 8,600천원 12. 공증사무 지도점검 14,000천원 13. 북한인권 기록보존 및 관리 3,420천원
40,111	○ **국외업무여비(220-02) : 40,111천원** 1. UN국제상거래법위원회 본회의 참석(4급이하 1명, 비엔나, 5일) 3,342천원 가. 항공료 1,900천원 ・1,900,000원*1명=1,900천원 나. 일비 235천원 ・$34*5일=235천원 다. 숙박비 762천원 ・$138*4박=762천원 라. 식비 445천원 ・$64.5*5일=445천원 2. 세계 한인변호사 총회 참석(4급이하 1명, 뉴욕, 6일) 4,042천원 가. 항공료 1,800천원 ・1,800,000원*1명=2,050천원 나. 일비 302천원 ・$36.5*6일=302천원 다. 숙박비 1,228천원 ・$178*5박=1,228천원 라. 식비 712천원 ・$86*6일=712천원 3. 세계법률가대회 참석(4급이하 1명, 파리, 5일) 3,632천원 가. 항공료 1,800천원 ・1,800,000원*1명=1,800천원 나. 일비 245천원 ・$35.5*5일=245천원 다. 숙박비 994천원 ・$180*4박=994천원 라. 식비 593천원 ・$86*5일=593천원 4. 국제지적재산권 회의 참석(4급이하 1명, 제네바, 5일) 3,273천원 가. 항공료 1,800천원 ・1,800,000원*1명=1,800천원 나. 일비 248천원 ・$36*5일=248천원 다. 숙박비 773천원 ・$140*4박=773천원 라. 식비 452천원 ・$65.5*5일=452천원 5. 재외공관 공증사무 지도점검(4급이하 3명, 6일) 13,428천원 가. 항공료 5,700천원 ・1,900,000원*3명=5,700천원	50,111	○ **국외업무여비(220-02) : 40,111천원** 1. UN국제상거래법위원회 본회의 참석(4급이하 1명, 비엔나, 5일) 3,342천원 가. 항공료 1,900천원 ・1,900,000원*1명=1,900천원 나. 일비 235천원 ・$34*5일=235천원 다. 숙박비 762천원 ・$138*4박=762천원 라. 식비 445천원 ・$64.5*5일=445천원 2. 세계 한인변호사 총회 참석(4급이하 1명, 뉴욕, 6일) 4,042천원 가. 항공료 1,800천원 ・1,800,000원*1명=2,050천원 나. 일비 302천원 ・$36.5*6일=302천원 다. 숙박비 1,228천원 ・$178*5박=1,228천원 라. 식비 712천원 ・$86*6일=712천원 3. 독일 리걸테크 세미나 참석(4급이하 3명, 파리, 5일) 13,296천원 가. 항공료 7,800천원 ・2,600,000원*3명=7,800천원 나. 일비 735천원 ・$35.5*5일*3명=735천원 다. 숙박비 2,9681천원 ・$180*4박*3명=2,9814천원 라. 식비 1,780천원 ・$86*5일*3명=1,780천원 4. 국제지적재산권 회의 참석(4급이하 1명, 제네바, 5일) 3,273천원 가. 항공료 1,800천원 ・1,800,000원*1명=1,800천원 나. 일비 248천원 ・$36*5일=248천원 다. 숙박비 773천원 ・$140*4박=773천원 라. 식비 452천원 ・$65.5*5일=452천원 5. 재외공관 공증사무 지도점검(4급이하 3명, 6일) 13,428천원 가. 항공료 5,700천원 ・1,900,000원*3명=5,700천원

'25년 예산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나. 일비 927천원 ・($45*6일)+($35*6일)+($32*6일)=927천원 다. 숙박비 1,242천원 ・($280*5박)+($190*5박)+($170*5박)=4,416천원 라. 식비 4,416천원 ・($115*6일)+($93*6일)+($80*6일)=4,416천원 6. 중앙 법제업무담당자 해외단기시찰(뉴욕, 사무관 1명, 11일) 4,106천원 가. 항공료 1,800천원 ・1,800,000원*1명=1,800천원 나. 일비 277천원 ・$33.5*6일=277천원 다. 숙박비 1,242천원 ・$180*5박=1,242천원 라. 식비 787천원 ・$95*6일=787천원 7. 통일법제 사례 연구(베를린, 뮌헨 4급이하 2명, 6일) 8,348천원 가. 항공료 3,800천원 ・1,900,000원*2명=3,800천원 나. 일비 629천원 ・$38*6일*2명=629천원 다. 숙박비 2,346천원 ・$170*5박*2명=2,346천원 라. 식비 1,573천원 ・$95*6일*2명=1,573천원		나. 일비 927천원 ・($45*6일)+($35*6일)+($32*6일)=927천원 다. 숙박비 1,242천원 ・($280*5박)+($190*5박)+($170*5박)=4,416천원 라. 식비 4,416천원 ・($115*6일)+($93*6일)+($80*6일)=4,416천원 6. 중앙 법제업무담당자 해외단기시찰(뉴욕, 사무관 1명, 11일) 4,106천원 가. 항공료 1,800천원 ・1,800,000원*1명=1,800천원 나. 일비 277천원 ・$33.5*6일=277천원 다. 숙박비 1,242천원 ・$180*5박=1,242천원 라. 식비 787천원 ・$95*6일=787천원 7. 통일법제 사례 연구(베를린, 뮌헨 4급이하 2명, 6일) 8,348천원 가. 항공료 3,800천원 ・1,900,000원*2명=3,800천원 나. 일비 629천원 ・$38*6일*2명=629천원 다. 숙박비 2,346천원 ・$170*5박*2명=2,346천원 라. 식비 1,573천원 ・$95*6일*2명=1,573천원
49,894	○ **관서업무추진비(240-02) : 49,894천원** 1. 법무실 행사추진 경비 6,000천원 2. 법무실 직원 간담회 6,500천원 3. 법령정비 사업추진비 1,800천원 4. 유관부서간 간담회 및 대책회의 5,000천원 5. 세미나, 회의 및 간담회 4,894천원 6. 유관기관 업무협의 활동 10,000천원 7. 공증지도점검 지원 등 1,600천원 8. 통일법무관련 업무협의 10,000천원 9. 북한인권 관련기관 업무협의 등 4,100천원	57,097	○ **관서업무추진비(240-02) : 57,097천원** 1. 법무실 행사추진 경비 6,000천원 2. 법무실 직원 간담회 6,500천원 3. 법령정비 사업추진비 1,800천원 4. 유관부서간 간담회 및 대책회의 5,000천원 5. 세미나, 회의 및 간담회 4,894천원 6. 유관기관 업무협의 활동 10,000천원 7. 공증지도점검 지원 등 1,700천원 8. 통일법무관련 업무협의 10,000천원 9. 북한인권 관련기관 업무협의 등 4,100천원 10. 법조인접직역 관련기관 업무협의 등 7,103천원
21,000	○ **정책연구비(260-02) : 21,000천원** 1. 법무실 법령 관련 제도연구 21,000천원	21,000	○ **정책연구비(260-02) : 21,000천원** 1. 법무실 법령 관련 제도연구 21,000천원
56,565	○ **자산취득비(430-01) : 56,565천원** 1. 사무용 집기류 구입비 43,555천원 2. 법무자료실 도서구입 5,700천원 가. 국내도서 2,400천원 ・100권*24,000원=2,400천원 나. 외국도서 3,000천원 ・100권*30,000원=3,000천원 다. 계수조정 300천원 3. 통일 및 남북교류협력 활성화 대비 법제연구자료 구입 2,350천원 가. 국내도서 450천원 ・15권*30,000원=450천원 나. 북한도서 1,000천원 ・1질*1,000,000원=1,000천원 다. 국외도서 900천원 ・1질*900,000원=900천원 4. 국가·행정소송 및 국가배상 관련 도서 구입 960천원 가. 국내도서 560천원 ・16권*35,000원=560천원 나. 국외도서 400천원 ・10권*40,000원=400천원 5.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사무기구 구입비 4,000천원	65,362	○ **자산취득비(430-01) : 65,362천원** 1. 사무용 집기류 구입비 51,568천원 2. 법무자료실 도서구입 5,700천원 가. 국내도서 2,400천원 ・100권*24,000원=2,400천원 나. 외국도서 3,000천원 ・100권*30,000원=3,000천원 다. 계수조정 300천원 3. 통일 및 남북교류협력 활성화 대비 법제연구자료 구입 2,350천원 가. 국내도서 450천원 ・15권*30,000원=450천원 나. 북한도서 1,000천원 ・1질*1,000,000원=1,000천원 다. 국외도서 900천원 ・1질*900,000원=900천원 4. 국가·행정소송 및 국가배상 관련 도서 구입 960천원 가. 국내도서 560천원 ・16권*35,000원=560천원 나. 국외도서 400천원 ・10권*40,000원=400천원 5.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사무기구 구입비 4,784천원

4) 사업효과 : 해당없음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직접수행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25~2029	707	807	820	850	880	
2026~2030		723	745	767	790	814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해당없음

2) 감사원 감사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 해당없음

3) 자체평가·감사 : 해당없음

4)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 해당없음

5)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해당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법무활동 사업추진의 원활한 지원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2) 동 사업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 : 해당없음

13) 2026년도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 결과 및 후속 조치 현황 : 해당없음

14) 부처 건의사항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3	531	-	531	4	13	-	548	546	99.6	99.6	-	2
2024	590	-	590	-	48	-	638	631	106.6	98.5	-	9
2025	707	-	707	-	-	-	707	663	93.8	93.8	-	44
2026	723	-	723	-	-	-	723	467	64.6	64.6	-	-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 해당없음

2) 주요 결산사항

□ 2023~2026년 결산사항

2023	- (전용) 일반수용비 부족에 따른 국내여비 3백만원, 국외여비 12백만원 - (이월) 연구용역 계약 완료 후 잔금 지급 4백만원 이월
2024	- (전용) 일반수용비 부족에 따른 국외여비 11백만원 - (불용) 국외여비, 연구용역비 집행잔액 각 1백만원
2025	- (내역변경) 아포스티유 스티커 제작 부족분에 따른 기관운영 기본경비 48백만원 - (불용) 집행잔액 44백만원
2026	- 해당없음

□ 2026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

□ 2026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 해당없음

사 업 명
외국인본부 기본경비 (7011-255)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		020	022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11	255
명칭	법무및검찰행정지원	본부기본경비	외국인본부기본경비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6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외국인본부 기본경비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	유성오	김원희	이윤주
		출입국기획과	02-2110-4010	02-2110-4026	02-2110-4367
	사업시행주체	법무부	-	-	-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년 결산	2026년 예산		2027년		증감 (B-A)	(B-A)/A
		본예산(A)	추경	요구안	조정안(B)		
외국인본부기본경비	1,595	1,668	1,668	1,776	1,776	108	6.5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25					2026(2026.7월말)							2027 예산안
	예산액(추경)	예산현액	집행액[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현액	집행액[실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예상액	불용예상액	
									예산현액	집행액[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1,620	1,627	1,595	-	32	1,668	1,674	1,128	1,674	1,128	-	-	1,776
・외국인본부기본경비	1,620	1,627	1,595	-	32	1,668	1,674	1,128	1,674	1,128	-	-	1,776
○ 비목별 분류(합계)	1,620	1,627	1,595	-	32	1,668	1,674	1,128	1,674	1,128	-	-	1,776
・일반수용비(210-01)	452	452	451	-	-	438	438	231	438	231	-	-	474
・공공요금및제세(210-02)	269	226	220	-	6	271	271	271	271	271	-	-	250
・임차료(210-07)	51	44	24	-	20	60	60	34	60	34	-	-	60
・유류비(210-08)	2	2	1	-	1	2	2	1	2	1	-	-	1
・시설장비유지비(210-09)	18	18	17	-	1	24	24	24	24	24	-	-	24
・일반용역비(210-14)	64	71	69	-	2	64	64	12	64	12	-	-	64
・국내여비(220-01)	108	158	158	-	-	108	108	108	108	108	-	-	212
・국외업무여비(220-02)	291	291	291	-	-	291	291	262	291	262	-	-	277
・관서업무추진비(240-02)	165	165	165	-	-	176	176	110	176	110	-	-	184
・특정업무경비(250-03)	30	30	30	-	-	27	27	22	27	22	-	-	24
・일반연구비(260-02)	-	-	-	-	-	90	90	-	90	-	-	-	90
・정책연구비(260-02)	90	90	89	-	1	-	-	-	-	-	-	-	-
・포상금(310-03)	-	-	-	-	-	37	43	28	43	28	-	-	37
・자산취득비(430-01)	80	80	79	-	1	80	80	25	80	25	-	-	80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1,620	1,627	1,595	-	32	1,668	1,674	1,128	1,674	1,128	-	-	1,776
・외국인본부기본경비	1,620	1,627	1,595	-	32	1,668	1,674	1,128	1,674	1,128	-	-	1,776
-일반수용비(210-01)	452	452	451	-	-	438	438	231	438	231	-	-	474
-공공요금및제세(210-02)	269	226	220	-	6	271	271	271	271	271	-	-	250
-임차료(210-07)	51	44	24	-	20	60	60	34	60	34	-	-	60
-유류비(210-08)	2	2	1	-	1	2	2	1	2	1	-	-	1
-시설장비유지비(210-09)	18	18	17	-	1	24	24	24	24	24	-	-	24
-일반용역비(210-14)	64	71	69	-	2	64	64	12	64	12	-	-	64
-국내여비(220-01)	108	158	158	-	-	108	108	108	108	108	-	-	212
-국외업무여비(220-02)	291	291	291	-	-	291	291	262	291	262	-	-	277
-관서업무추진비(240-02)	165	165	165	-	-	176	176	110	176	110	-	-	184
-특정업무경비(250-03)	30	30	30	-	-	27	27	22	27	22	-	-	24
-일반연구비(260-02)	-	-	-	-	-	90	90	-	90	-	-	-	90
-정책연구비(260-02)	90	90	89	-	1	-	-	-	-	-	-	-	-
- 포상금(310-03)	-	-	-	-	-	37	43	28	43	28	-	-	37
-자산취득비(430-01)	80	80	79	-	1	80	80	25	80	25	-	-	8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운영경비 및 노후 집기 교체비 등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운영을 위한 운영비

② 추진경위 : 2007년 직제 승격에 따른 본부 운영 기본경비 지원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계속사업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3	2024	2025	2026	2027(안)
사업비	1,535	1,573	1,620	1,668	1,776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사업 수혜자 : 내·외국인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3) 2027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

① 외국인본부 기본경비 : ('26) 1,668 → ('27안) 1,776백만원, 108백만원 증액
- 소모품 구입 등 본부 기본운영비 : ('26) 939 → ('27) 953백만원 (+14)
- 출장 및 주재관 귀부임 지원 : ('26) 399 → ('27) 489백만원 (+90)
- 대외기관 업무협의 : ('26) 176 → ('27) 184백만원 (+8)
- 이민행정 연구용역 : ('26) 90 → ('27) 90백만원 (전년동)
- 특정업무활동 지원 : ('26) 27 → ('27) 24백만원 (△3)
- 출입국·이민행정 유공 직원 포상 : ('26) 37 → ('27) 37백만원 (전년동)

ㅇ 2026년도 예산 및 2027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6년 예산		'27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668백만원	○ **일반수용비(210-01) : 437,816천원** 가. 사무용품, 소모품, 각종 수수료 등 : 200,000천원 나. 각종 자료인쇄비 : 150,000천원 다. 타 교육기관 위탁교육비 : 9,000천원 라. 각종 위원회 참석비 : 5명*150,000원*3회*12월=27,000천원 마. 수요포럼 강사료 등 : 36,600,000원 바. 온라인미디어 다국어 번역·감수 : 153건*3개 언어*0.75페이지 *45,900원=15,801천원 ○ **공공요금및제세(210-02) : 270,884천원** 가. 우편·전화 등 공공요금 : 269,884천원 나. 공무원 책임보험료 : 1,000천원 ○ **임차료(210-07) : 60,042천원** 가. 정책발표회, 공청회 회의장 등 임차료 : 20,000천원 나. 5급 승진시험 출제장, 시험장 및 승합차량 임차료 : 18,000천원 다. 직무파견자 주거지원비 등 : 22,042천원 ○ **유류비(210-08) : 2,000천원** 가. 공용차량 유류비 : 2,000천원 ○ **시설장비유지비(210-09) : 23,918천원** 가. 각종 사무용 장비 수리 등 : 23,918천원 ○ **일반용역비(210-14) : 64,000천원** 가. 이민정책소식지 "공존" 발간 : 13,000천×4회=52,000천원 나. 출입국관리공무원 다면평가 : 12,000천 ○ **국내여비(220-01) : 108,008천원** 가. 국내출장 여비 : 102,008천 나. 직무교육 여비 : 6,000천 ○ **국외업무여비(220-01) : 291,173천원** 가. 재외공관 지도점검 : 5개권역×3명×4,058천원=60,869천원 나. 해외주재관 귀부임여비 : 12개공관×2명×5,048천원=121,148천원 다. 해외주재관 회의 참석여비 : 12개공관×726천원=8,715천원 라. 국제회의 참석 : 15개국×3명×2,232천원=100,441천원 ○ **관서업무추진비(240-02) : 175,890천원** 가. 대외기관 업무협의 및 간담회 경비 등 : 175,890천 ○ **특정업무경비(250-03) : 27,269천원** 가. 특정업무 활동비 : 27,269천 ○ **일반연구비(260-01) : 90,000천원** 가. 2개 과제×45,000천원=90,000천원 ○ **포상금(310-03) : 37,000천원** 가. 출입국·이민행정 유공 직원 등 포상 : 37,000천원 ○ **자산취득비(430-01) : 80,000천원** 가. 사무기기 및 집기류 등 구입 : 80,000천원	1,776백만원	○ **일반수용비(210-01) : 474,044천원** 가. 사무용품, 소모품, 각종 수수료 등 : 250,000천원 나. 각종 자료인쇄비 : 100,000천원 다. 타 교육기관 위탁교육비 : 9,600천원 라. 각종 위원회 참석비 : 6명*200,000원*4회*12월=57,600천원 마. 수요포럼 강사료 등 : 46,000천원 바. 온라인미디어 다국어 번역·감수 : 105건*3개 언어*0.75페이지 *45,900원=10,844천원 ○ **공공요금및제세(210-02) : 249,459천원** 가. 우편·전화 등 공공요금 : 248,459천원 나. 공무원 책임보험료 : 1,000천원 ○ **임차료(210-07) : 60,042천원** 가. 정책발표회, 공청회 회의장 등 임차료 : 20,000천원 나. 5급 승진시험 출제장, 시험장 및 승합차량 임차료 : 18,000천원 다. 직무파견자 주거지원비 등 : 22,042천원 ○ **유류비(210-08) : 1,000천원** 가. 공용차량 유류비 : 1,000천원 ○ **시설장비유지비(210-09) : 23,918천원** 가. 각종 사무용 장비 수리 등 : 23,918천원 ○ **일반용역비(210-14) : 64,000천원** 가. 이민정책소식지 제작 : 13,000,000원×4회=52,000천원 나. 출입국관리공무원 다면평가 : 12,000천원 ○ **국내여비(220-01) : 212,108천원** 가. 국내출장 여비 : 206,108천원 나. 직무교육 여비 : 6,000천원 ○ **국외업무여비(220-01) : 276,614천원** 가. 재외공관 지도점검 : 4개권역×3명×2,727천원=32,724천원 나. 해외주재관 귀부임여비 등 : 11개공관×2명×6,296천원 = 138,512천원 다. 해외주재관 회의 참석여비 : 12개공관×557천원=6,688천원 라. 국제회의 참석 : 12개국×3명×2,307천원=83,052천원 마. 외국인계절근로자 송출국 현지 실태점검 : 5개국×2명×1,567천원=15,670천원 ○ **관서업무추진비(240-02) : 183,546천원** 가. 대외기관 업무협의 및 간담회 경비 등 : 183,546천원 ○ **특정업무경비(250-03) : 24,269천원** 가. 특정업무 활동비 : 24,269천원 ○ **일반연구비(260-01) : 90,000천원** 가. 2027년 국내거주 동포 실태조사 : 90,000천원 ○ **포상금(310-03) : 37,000천원** 가. 출입국·이민행정 유공 직원 등 포상 : 37,000천원 ○ **자산취득비(430-01) : 80,000천원** 가. 사무기기 및 집기류 등 구입 : 80,000천원

4) 사업효과 : 해당사항 없음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사항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기획예산처 편성기준 시달 → 부처 편성 → 기획예산처 심의 → 정부(안)확정 → 국회심의의결 → 예산확정 → 집행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 해당사항 없음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해당사항 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해당사항 없음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사항 없음

12) 동 사업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 : 해당사항 없음

13) 2026년도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 결과 및 후속 조치 현황 : 해당없음

14) 부처 건의사항 : 해당사항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3	1,535	-	1,535	-	20	-	1,555	1,527	99.5	98.2	-	28
2024	1,573	-	1,573	-	△45	-	1,528	1,422	90.4	93.1	-	106
2025	1,620	-	1,620	-	7	-	1,627	1,595	98.5	98.0	-	32
2026	1,668	-	1,668	-	6	-	1,674	1,128	67.6	67.4	-	-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 해당사항 없음

2) 주요 결산사항

□ 2023~2026년 결산사항

2023	○ 전용 : 조선업 비자 특별 심사지원단 구성 및 외국인본부 직원의 지원근무에 따른 근무지외 출장 증가로 국내여비 부족분 충당을 위해 출입국외국인관서기본경비(총액) 복리후생비에서 140백만원 전용 증 - 청사 운영에 필요한 우편전화 요금 등 부족분 충당을 위해 120백만원 전용 감 ○ 불용 : 집행잔액 28백만원
2024	○ 전용 : 체류외국인 증가로 인해 발생한 우편, 전화요금 등 공공요금에 대한 부족분 충당을 위해 전용 감 45백만원 ○ 불용 : 106백만원
2025	○ 전용 :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등 국회 법률 협의 소요 증가, 계절근로자·요양보호사 등 사회적 관심사업 증가에 따른 외부회의 증가 등 여비 부족 충당 등 전용 증 50백만원, 본부기본경비 내 운영비 감 43백만원 ○ 불용 : 32백만원
2026	○ 전용 - '26년 상반기 예산성과금 지급에 대한 포상금 재원 마련을 위해 출입국외국인관서기본경비 급식비에서 6백만원 전용 증

□ 2026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자체전용 (2026.07.28.)	출입국외국인관서 기본경비 (7018-250)	210-04	6	외국인본부 기본경비 (7011-255)	310-03	예산성과금 지급 (국가재정법 제49조 및 예산성과금규정 제18조 근거)

□ 2026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 해당사항 없음

사 업 명
형사사법국기본경비 (7011-256)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법무부	형사사법국		020	022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공소청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11	256
명칭	법무 및 형사사법행정지원	본부기본경비(일반)	형사사법국기본경비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6예산 시 소관
	O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형사사법국 기본경비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형사사법국	나하나	검사 구자원	수사관 박성인
		형사사법과	02-2110-4190	02-2110-4194	02-2110-4216
	사업시행주체	-	-	-	-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년 결산	2026년 예산		2027년		증감 (B-A)	(B-A)/A
		본예산(A)	추경	요구안	조정안(B)		
형사사법국 기본경비	735	852	852	878	852	-	-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25					2026(2026.7월말)							2027 예산안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744	744	735	-	9	852	852	544	852	544	-	-	852
· 운영비(210)	501	501	501	-	-	509	509	325	509	325	-	-	519
· 여비(220)	102	102	94	-	8	102	102	94	102	94	-	-	97
· 업무추진비(240)	97	97	97	-	-	97	97	97	97	97	-	-	92
· 연구용역비(260)	-	-	-	-	-	51	51	-	51	-	-	-	51
· 보전금(310)	2	2	2	-	-	32	32	23	32	23	-	-	32
· 유형자산(430)	42	42	42	-	-	61	61	7	61	7	-	-	61
○ 비목별 분류(합계)	744	744	735	-	9	852	852	544	852	544	-	-	852
· 일반수용비(210-01)	462	461	461	-	-	448	448	264	448	264	-	-	458
· 공공요금및제세(210-02)	39	39	39	-	-	55	55	55	55	55	-	-	55
· 임차료(210-07)				-	-	5	5	5	5	5	-	-	5
· 유류비(210-08)				-	-	1	1	1	1	1	-	-	1
· 국내여비(220-01)	94	94	94	-	-	94	94	94	94	94	-	-	89
· 국외업무여비(220-02)	8	8	8	-	8	8	8	-	8	-	-	-	8
· 관서업무추진비(240-02)	97	97	97	-	-	97	97	97	97	97	-	-	92
· 일반연구비(260-01)	-	-	-	-	-	51	51	-	51	-	-	-	51
· 포상금(310-03)	2	2	2	-	-	32	32	23	32	23	-	-	32
· 자산취득비(430-01)	42	42	42	-	-	61	61	7	61	7	-	-	61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744	744	735	-	9	852	852	544	852	544	-	-	852
· 운영비(210)	501	501	501	-	-	509	509	325	509	325	-	-	519
-일반수용비(210-01)	462	461	461	-	-	448	448	264	448	264	-	-	458
-공공요금및제세(210-02)	39	39	39	-	-	55	55	55	55	55	-	-	55
-임차료(210-07)	-	-	-	-	-	5	5	5	5	5	-	-	5
-유류비(210-08)	-	-	-	-	-	1	1	1	1	1	-	-	1
· 여비(220)	102	102	94	-	8	102	102	94	102	94	-	-	97
-국내여비(220-01)	94	94	94	-	-	94	94	94	94	94	-	-	89
-국외업무여비(220-02)	8	8	-	-	8	8	8	0	8	0	-	-	8
· 업무추진비(240)	97	97	97	-	-	97	97	97	97	97	-	-	92
-관서업무추진비(240-02)	97	97	97	-	-	97	97	97	97	97	-	-	92

	2025					2026(2026.7월말)							2027 예산안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연구용역비(260)	-	-	-	-	-	51	51	0	51	0	-	-	51
-일반연구비(260-01)	-	-	-	-	-	51	51	0	51	0	-	-	51
· 보전금(310)	2	2	2	-	-	32	32	23	32	23	-	-	32
-포상금(310-03)	2	2	2	-	-	32	32	23	32	23	-	-	32
· 유형자산(430)	42	42	42	-	-	61	61	7	61	7	-	-	61
-자산취득비(430-01)	42	42	42	-	-	61	61	7	61	7	-	-	61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해당없음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해당없음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3	2024	2025	2026	2027(안)
사업비	515	563	744	852	852

- 기타: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민

- 사업 수혜자 :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7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

① 운영비 : (2026 본예산) 501백만원 → (2027 요구) 519백만원, 10백만원 증액
- 중수청 예산 이관을 위한 비목조정 10백만원

② 여비 : (2026 본예산) 102백만원 → (2027 요구) 97백만원, 5백만원 감액
- 중수청 예산 이관 △5백만원

③ 업무추진비 : (2026 본예산) 97백만원 → (2027 요구) 92백만원, 5백만원 감액
- 중수청 예산 이관 △5백만원

④ 연구용역비 : (2026 본예산) 51백만원 → (2026 요구) 51백만원, 전년동

4) 사업효과 : 해당없음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특이사항 없음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 해당없음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해당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해당없음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2) 동 사업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 : 해당없음

13) 2026년도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 결과 및 후속 조치 현황 : 해당없음

14) 부처 건의사항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3	319	-	319	-	-	-	319	302	94.7	94.7	-	17
2024	334	-	334	-	△10	-	324	312	93.4	96.3	-	12
2025	744	-	744	-	-	-	744	735	98.8	98.8	-	9
2026	852	-	852	-	-	-	852	544	63.8	63.8	-	-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 해당없음

2) 주요 결산사항

□ 2023~2026년 결산사항

2023	- 집행잔액 17백만원 불용
2024	- 형사보상금 부족으로 10백만원 이용 감 - 집행잔액 12백만원 불용
2025	- 집행잔액 9백만원 불용
2026	- 해당없음

□ 2026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

□ 2026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 해당없음

사 업 명
교정본부 기본경비(7011-257)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법무부	교정본부		020	022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11	257
명칭	법무및검찰행정지원	본부기본경비(일반)	교정본부기본경비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O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교정본부 기본경비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교정본부	주기남	유 진	최재성
		복지과	02-2110-3420	02-2110-3423	02-2110-3499
	사업시행주체	-	-	-	-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년 결산	2026년 예산		2027년		증감	
		본예산(A)	추경	요구안	조정안(B)	(B-A)	(B-A)/A
교정본부기본경비	4,367	4,397	4,397	4,529	4,359	△38	△0.9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5					2026(2026.7월말)							2027 예산안
	예산액(추경)	예산현액	집행액[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현액	집행액[실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예상액	불용예상액	
									예산현액	집행액[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4,367	4,367	4,052	-	315	4,397	4,397	2,692 (2,542)	4,397	2,692 (2,542)	-	-	4,359
· 운영비 및 공공요금	3,023	3,023	2,734	-	289	3,048	3,048	1,659 (1,516)	3,048	1,659 (1,516)	-	-	3,049
· 국내외 여비	607	607	582	-	26	607	607	460	607	460	-	-	577
· 사업지원 경비	736	736	735	-	-	741	741	573 (565)	741	573 (565)	-	-	733
○ 비목별 분류(합계)	4,367	4,367	4,052	-	315	4,397	4,397	2,692 (2,542)	4,397	2,692 (2,542)	-	-	4,359
· 일반수용비(210-01)	813	796	723	-	72	790	785	324	785	324	-	-	790
· 공공요금및제세(210-02)	36	40	37	-	3	36	36	28	36	28	-	-	36
· 임차료(210-07)	1,599	1,613	1,400	-	213	1,648	1,653	836 (805)	1,653	836 (805)	-	-	1,648
· 시설장비유지비(210-09)	75	75	74	-	1	75	75	70	75	70	-	-	75
· 일반용역비(210-14)	500	500	500	-	-	500	500	400 (289)	500	400 (289)	-	-	500
· 국내여비(220-01)	351	351	332	-	19	351	351	230	351	230	-	-	334
· 국외여비(220-02)	256	256	249	-	7	256	256	230	256	230	-	-	243
· 관서업무추진비(240-02)	169	169	169	-	-	176	176	176	176	176	-	-	169
· 특정업무경비(250-03)	174	174	174	-	-	172	172	172	172	172	-	-	171
· 포상금(310-03)	243	243	243	-	-	243	243	132	243	132	-	-	243
· 자산취득비(430-01)	150	150	150	-	-	150	150	93 (85)	150	93 (85)	-	-	150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4,367	4,367	4,052	-	315	4,397	4,397	2,692 (2,542)	4,397	2,692 (2,542)	-	-	4,359
· 운영비 및 공공요금	3,023	3,023	2,734	-	289	3,048	3,048	1,659 (1,516)	3,048	1,659 (1,516)	-	-	3,049
-일반수용비(210-01)	813	796	723	-	72	790	785	324	785	324	-	-	790
-공공요금제세(210-02)	36	40	37	-	3	36	36	28	36	28	-	-	36
-임차료(210-07)	1,599	1,613	1,400	-	213	1,648	1,653	836 (805)	1,653	836 (805)	-	-	1,648
-시설장비유지비(210-09)	75	75	74	-	1	75	75	70	75	70	-	-	75
-일반용역비(210-14)	500	500	500	-	-	500	500	400 (289)	500	400 (289)	-	-	500
· 국내외 여비	607	607	582	-	26	607	607	460	607	460	-	-	577
-국내여비(220-01)	351	351	332	-	19	351	351	230	351	230	-	-	334
-국외여비(220-02)	256	256	249	-	7	256	256	230	256	230	-	-	243

	2025					2026(2026.7월말)							2027 예산안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사업지원 경비	736	736	735	-	-	741	741	573 (565)	741	573 (565)	-	-	733
-관서업무비(240-02)	169	169	169	-	-	176	176	176	176	176	-	-	169
-특정업무경비(250-03)	174	174	174	-	-	172	172	172	172	172	-	-	171
-포상금(310-03)	243	243	243	-	-	243	243	132	243	132	-	-	243
-자산취득비(430-01)	150	150	150	-	-	150	150	93 (85)	150	93 (85)	-	-	15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교정본부 운영비) 법무부 교정본부 운영에 필요한 각종 경비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세출예산집행지침」

② 추진경위 : 교정본부 근무 직원에 대한 운영비 등 지원 필요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3	2024	2025	2026	2027
사업비	2,831	2,932	4,367	4,397	4,359

- 기타: 법무부 교정본부 11개 과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법무부

- 사업 수혜자 : 교정공무원 등

3) 2027년도 예산 산출 근거

□교정본부 기본경비 : (2026 예산) 4,397백만원 → (2027 요구)4,359백만원, △38백만원

① 운영 및 공공요금 **: (2026 예산) 3,048백만원 → (2027 요구) 3,049백만원, +1백**
- (산출) ① 일반수용비 1백 증액

② 국내외 여비 **: (2026 예산) 607백만원 → (2027 요구) 577백만원, △30백만원**
- (산출) ① 국내여비 17백 감액. ② 국외여비 13백 감액

③ 사업지원 경비 **: (2026 예산) 741백만원 → (2027 요구) 733백만원, △8백만원**
- (산출) ① 부서 특정업무경비 1백 감액 ②업무추진비 7백 감액

ㅇ 2026년도 예산 및 2027년도 예산안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6년 본예산		2027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4,397 백만원	○ **일반수용비(210-01) : 790백만원** ○ **공공요금비(210-02) : 36백만원** ○ **임차료(210-07) : 1,653백만원** ○ **시설장비유지비(210-09) : 75백만원** ○ **일반용역비(210-14) : 500백만원** ○ **국내여비(220-01) : 351백만원** 7. 단수조정 : 21백 ○ **국외여비(220-02) : 256백만원** ○ **업무추진비(240-02) : 176백만원** 6. 승진 채용 관련 업무 추진 : 12백 ○ **특정업무경비(250-03) : 172백만원** 2. 부서활동비 : 12백 ○ **포상금(229-03) : 243백만원** ○ **자산취득비(430-01) : 150백만원**	4,359 백만원	○ **일반수용비(210-01) : 790백만원** ○ **공공요금비(210-02) : 36백만원** ○ **임차료(210-07) : 1,653백만원** ○ **시설장비유지비(210-09) : 75백만원** ○ **일반용역비(210-14) : 500백만원** ○ **국내여비(220-01) : 334백만원** 7. 단수조정 : 3백 ○ **국외여비(220-02) : 243백만원** 2. 단수조정 : △13백 ○ **업무추진비(240-02) : 169백만원** 6. 승진 채용 관련 업무 추진 : 6백 ○ **특정업무경비(250-03) : 171백만원** 2. 부서활동비 : 11백 ○ **포상금(229-03) : 243백만원** ○ **자산취득비(430-01) : 150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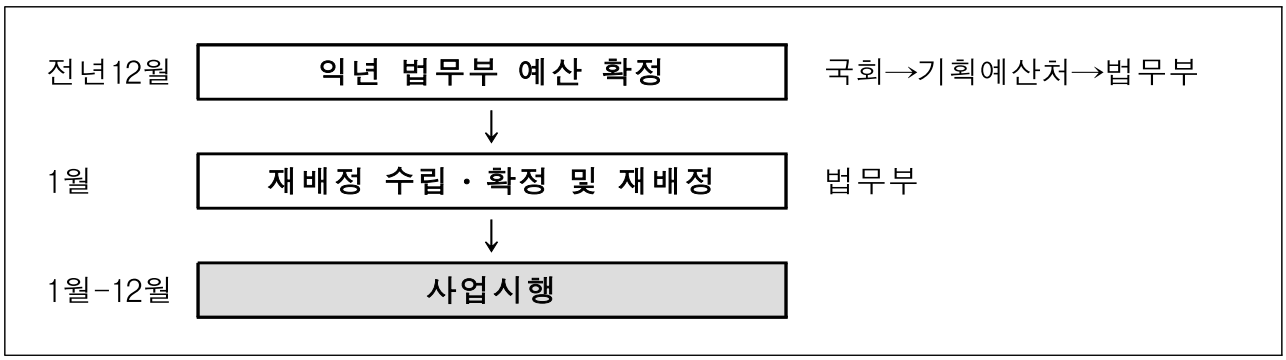
4) 사업효과 : 해당없음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 해당없음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해당없음

2) 감사원 감사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 해당없음

3) 자체평가·감사 : 해당없음

4)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 해당없음

5)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해당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해당없음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2) 해당사업에 대한 부처 자체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3) 부처 건의사항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3	2,831	-	2,831	-	△55	-	2,776	2,698	95.3	97.2	-	78
2024	2,932	-	2,932	-	177	-	3,108	3,081	105.1	99.1	-	27
2025	4,367	-	4,367	-	-	-	4,367	4,124	94.4	94.4	-	243
2026.7	4,397	-	4,397	-	-	-	4,397	2,692	61.2	61.2	-	-

2) 주요 결산사항

□ 2023~2026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 해당 없음

□ 2026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 없음

□ 2026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 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 해당없음

사 업 명
범죄예방정책국 기본경비 (7011-26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일반회계	020	022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600	7011	261
명칭	범죄예방활동	본부기본경비(일반)	범죄예방정책국기본경비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6예산 시 소관
	O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범죄예방 정책국 기본경비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범죄예방정책국	오상섭	원학재	주영광
		범죄예방기획과	02-2110-3570	02-2110-3574	02-2110-3577
	사업시행주체	법무부	-	-	-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년 결산	2026년 예산		2027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요구안	조정안(B)		(B-A)/A
범죄예방정책국 기본경비	740	778	778	801	788	10	1.3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25					2026(2026.7월말)							2027 예산안
	예산액(추경)	예산현액	집행액[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현액	집행액[실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예상액	불용예상액	
									예산현액	집행액[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742	742	740	-	2	778	778	573	778	573	-	-	788
・공공요금 등 운영비	495	495	493	-	2	445	445	283	445	283	-	-	456
・소속기관 감독여비	143	143	143	-	-	183	183	183	183	183	-	-	174
・사업지원경비	104	104	104	-	-	150	150	107	150	107	-	-	159
○ 비목별 분류(합계)	742	742	740	-	2	778	778	573	778	573	-	-	788
・일반수용비(210-01)	361	369	369	-	-	314	305	174	305	174	-	-	318
・공공요금및제세(210-02)	26	26	26	-	-	26	26	18	26	18	-	-	29
・임차료(210-07)	22	22	22	-	-	22	22	22	22	22	-	-	24
・유류비(210-08)	9	1	1	-	-	6	3	2	3	2	-	-	6
・시설장비유지비(210-09)	5	5	5	-	-	5	17	17	17	17	-	-	7
・일반용역비(210-14)	22	22	20	-	2	22	22	-	22	-	-	-	22
・국내여비(220-01)	132	132	132	-	-	142	142	142	142	142	-	-	135
・국외여비(220-02)	11	11	11	-	-	41	41	41	41	41	-	-	39
・관서업무추진비(240-02)	69	69	69	-	-	87	87	87	87	87	-	-	85
・특정업무경비(250-03)	20	20	20	-	-	18	18	18	18	18	-	-	16
・일반연구비(260-01)	50	50	50	-	-	50	50	50	50	50	-	-	50
・포상금(310-03)	-	-	-	-	-	30	30	-	30	-	-	-	40
・자산취득비(430-01)	15	15	15	-	-	15	15	2	15	2	-	-	18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742	742	740	-	2	778	778	573	778	573	-	-	788
・공공요금 등 운영비	495	495	493	-	2	445	445	283	445	283	-	-	456
-일반수용비(210-01)	361	369	369	-	-	314	305	174	305	174	-	-	318
-공공요금및제세(210-02)	26	26	26	-	-	26	26	18	26	18	-	-	29
-임차료(210-07)	22	22	22	-	-	22	22	22	22	22	-	-	24
-유류비(210-08)	9	1	1	-	-	6	3	2	3	2	-	-	6
-시설장비유지비(210-09)	5	5	5	-	-	5	17	17	17	17	-	-	7
-일반용역비(210-14)	22	22	20	-	2	22	22	-	22	-	-	-	22

	2025					2026(2026.7월말)							2027 예산안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일반연구비(260-01)	50	50	50	-	-	50	50	50	50	50	-	-	50
· 소속기관 감독여비	143	143	143	-	-	183	183	183	183	183	-	-	174
-국내여비(220-01)	132	132	132	-	-	142	142	142	142	142	-	-	135
-국외여비(220-02)	11	11	11	-	-	41	41	41	41	41	-	-	39
· 사업지원경비	104	104	104	-	-	150	150	107	150	107	-	-	159
-관서업무비(240-02)	69	69	69	-	-	87	87	87	87	87	-	-	85
-특정업무경비(250-03)	20	20	20	-	-	18	18	18	18	18	-	-	16
-포상금(310-03)	-	-	-	-	-	30	30	-	30	-	-	-	40
-자산취득비(430-01)	15	15	15	-	-	15	15	2	15	2	-	-	18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공공요금 등 운영비)** 범죄예방정책국 운영에 필요한 수용비, 공공요금 등 경비 지원
- **(소속기관 지도방문 등 여비)** 소속기관지도 점검 및 업무협의 등 필요 경비 지원
- **(사업지원경비)** 복무, 예산 집행, 물품 취득, 정책 연구용역 등 경비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령 및 동 시행 규칙

② 추진경위

- 1980년 사회보호법 시행
- 1981년 보호국 신설
- 2008년 범죄예방정책국으로 명칭 변경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단위: 백만원)

연도	2023	2024	2025	2026	2027
사업비	687	705	742	748	

- 기타 :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본부 6과, 보호관찰소, 소년원, 치료감호소 등 산하기관·단체
- 사업 수혜자 : 보호관찰기관 직원 등
-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3) 2027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

① 공공요금 등 운영비

: (2026 본예산) 445백만원 → (2027 요구) 456백만원, 11백만원 증액

- (요구)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한 경상경비 증액 및 그 외에 운영 경비 전년 수준 요구
- (산출) 교육경비, 공공요금, 임차료 등 11백만원 증액

ㅇ 2026년도 예산 및 2027년도 예산안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6년 본예산		2027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445	○ **일반수용비(210-01) : 314백만원** 가. 사무용품 구입 및 각종 교육 경비 등 ·8과×3,270천원×12월 = 314백만원	456	○ **일반수용비(210-01) : 318백만원** 가. 사무용품 구입 및 각종 교육 경비 등 ·8과×3,312천원×12월 = 318백만원
	○ **공공요금및제세(210-02) : 26백만원**		○ **공공요금및제세(210-02) : 29백만원**
	○ **임차료(210-07) : 22백만원**		○ **임차료(210-07) : 24백만원**
	○ **유류비(210-08) : 6백만원**		○ **유류비(210-08) : 6백만원**
	○ **시설장비유지비(210-09) : 5백만원** 가. 8과 시설 보수 등 : 5백만원		○ **시설장비유지비(210-09) : 7백만원** 가. 8과 시설 보수 등 : 7백만원
	○ **일반용역비(210-14) : 22백만원** 가. 역량평가실시 등 22백만원		○ **일반용역비(210-14) : 22백만원** 가. 역량평가실시 등 22백만원
	○ **일반연구비(260-01) : 50백만원** 가. 갱생보호법인 경영평가 등 50백만원		○ **일반연구비(260-01) : 50백만원** 가. 갱생보호법인 경영평가 등 50백만원

② 소속기관 지도 방문 등 여비

: (2026 본예산) 183백만원 → (2027 요구) 174백만원, 9백만원 감액

- (요구) 공공지출 절감을 위한 국내·외 여비 감액
- (산출) 소속지원 국내여비 및 국외여비 9백만원 감액

ㅇ 2026년도 예산 및 2027년도 예산안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6년 본예산		2027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83	○ **국내여비(220-01) : 142백만원** 가. 국내출장 및 교육 여비 등	174	○ **국내여비(220-01) : 135백만원** 가. 국내출장 및 교육 여비 등

2026년 본예산		2027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 8과×1,479천원×12월 = 142백만원		・ 8과×1,406천원×12월 = 135백만원
	○ **국외여비(220-02) : 41백만원** 가. 세계 보호관찰학회 참석, 일본 법무성 정책교류, 유럽 보호관찰연합 정기 회의 참석 등 : 41백만원		○ **국외여비(220-02) : 39백만원** 가. 한일 정책회의, 국제 소년사법 학술대회, 미국성범죄자 치료협회 연례회의 참석 등 : 39백만원

③ 사업지원경비

: (2026 본예산) 150백만원 → (2027 요구) 159백만원, 9백만원 증액

- (요구) 공공지출 절감을 위한 업무추진비 및 특정업무경비 감액 및 우수직원 포상금 등 증액 요구
- (산출) 범죄예방정책국 우수직원 포상금 및 물품구입 13백만원 증액
  업무추진비 및 특정업무경비 절감 4백만원 감액

ㅇ 2026년도 예산 및 2027년도 예산안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6년 본예산		2027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50	○ **관서업무추진비(240-02) : 87백만원** ○ **특정업무경비(250-03) : 18백만원** 가. 복무 및 예산 집행 등 점검 ・ 8과×187천원×12월 = 18백만원 ○ **포상금(310-03) : 30백만원** ○ **자산취득비(430-01) : 15백만원** 가. 전산 및 사무용품 등 취득 : 15백만원	159	○ **관서업무추진비(240-02) : 85백만원** ○ **특정업무경비(250-03) : 16백만원** 가. 복무 및 예산 집행 등 점검 ・ 8과×167천원×12월 = 16백만원 ○ **포상금(310-03) : 40백만원** ○ **자산취득비(430-01) : 18백만원** 가. 전산 및 사무용품 등 취득 : 15백만원

4) 사업효과 : 해당없음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해당없음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 해당없음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해당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해당없음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2) 동 사업에 대한 부처 자체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3) 2026년도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 결과 및 후속 조치 현황 : 해당없음

14) 부처 건의사항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3	687	-	687	-	-	-	687	674	98.1	98.1	-	13
2024	705	-	705	-	-	-	705	645	91.5	91.5	-	-
2025	742	-	742	-	-	-	742	740	99.7	99.7	-	2
2026	778	-	778	-	-	-	778	573	73.7	73.7	-	-

2) 주요 결산사항

□ 2023~2026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3	- 전용 : 조직 혁신 방안 연구를 위해 일반연구비 전용 증액 48백만원 - 불용 : 일반연구비 7백만원, 일반용역비 2백만원 등 13백만원
2024	- 불용 : 일반연구비 5백만원
2025	- 불용 : 일반용역비 2백만원
2026	

□ 2026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

□ 2026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 해당없음

사 업 명
인권국기본경비 (7011-263)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법무부	인권국	일반회계	020	022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11	263
명칭	법무및검찰행정지원	본부기본경비(일반)	인권국기본경비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O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인권국 기본경비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인권국	노일석	이진환	강형아
		인권정책과	2110-3673	2110-3675	2110-3678
	사업시행주체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년 결산	2026년 예산		2027년		증감	
		본예산(A)	추경	요구안	조정안(B)	(B-A)	(B-A)/A
인권국기본경비 (총액)	1,099	1,099	1,099	1,099	1,099	-	-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25					2026(2026.7월말)							2027 예산안
	예산액(추경)	예산현액	집행액[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현액	집행액[실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예상액	불용예상액	
									예산현액	집행액[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1,099	1,099	998	-	101	1.099	1.099	567	1.099	567	-	-	1.099
·운영비	539	539	530	-	9	581	581	295	581	295	-	-	580
·여비	193	193	161	-	32	199	199	113	199	113	-	-	189
·사업지원 경비	367	367	307	-	60	320	320	159	320	159	-	-	330
○ 비목별 분류(합계)	1,099	1,099	998	-	101	1,099	1,099	567	1,099	567	-	-	1,099
·일반수용비(210-01)	401	401	393	-	8	389	389	180	389	180	-	-	389
·공공요금(210-02)	31	31	31	-	-	31	31	31	31	31	-	-	31
·임차료(210-07)	50	50	50	-	-	92	92	38	92	38	-	-	92
·유류비(210-08)	2	2	1	-	1	2	2	1	2	1	-	-	2
·시설장비유지비(210-09)	2	2	2	-	-	2	2	0	2	0	-	-	2
·일반용역비(210-14)	40	40	40	-	-	52	52	40	52	40	-	-	52
·관리용역비(210-15)	13	13	12	-	-	13	13	5	13	5	-	-	13
·국내여비(220-01)	77	77	65	-	12	83	83	55	83	55	-	-	79
·국외업무여비(220-02)	116	116	96	-	20	116	116	58	116	58	-	-	110
·관서업무비(240-02)	147	147	147	-	-	148	148	87	148	87	-	-	140
·특정업무경비(250-03)	39	39	39	-	-	39	39	25	39	25	-	-	39
·정책연구비(260-02)	108	108	58	-	50	60	60	9	60	9	-	-	60
·포상금(310-03)	-	-	-	-	-	-	-		-		-	-	-
·자산취득비(430-01)	73	73	63	-	10	73	73	38	73	38	-	-	90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1,099	1,099	998	-	101	1,099	1,099	567	1,099	567	-	-	1,099
· 운영비	539	539	530	-	9	581	581	295	581	295	-	-	581
-일반수용비(210-01)	401	401	390	-	8	389	389	180	389	180	-	-	389
-공공요금(210-02)	31	31	31	-	-	31	31	31	31	31	-	-	31
- 임차료(210-07)	50	50	50	-	-	92	92	38	92	38	-	-	92
- 유류비(210-08)	2	2	1	-	1	2	2	1	2	1	-	-	2
- 시설장비유지비(210-09)	2	2	2	-	-	2	2	0	2	0	-	-	2
-일반용역비(210-14)	40	40	40	-	-	52	52	40	52	40	-	-	52

	2025					2026(2026.7월말)							2027 예산안
	예산액(추경)	예산현액	집행액[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현액	집행액[실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예상액	불용예상액	
									예산현액	집행액[실집행액]			
-관리용역비(210-15)	13	13	12	-	-	13	13	5	13	5	-	-	13
· 여비	193	193	171	-	32	199	199	113	199	113	-	-	190
-국내여비(220-01)	77	77	65	-	12	83	83	55	83	55	-	-	79
-국외업무여비(220-02)	116	116	96	-	20	116	116	58	116	58	-	-	110
· 사업지원 경비	367	367	305	-	60	320	320	159	320	159	-	-	330
-관서업무비(240-02)	147	147	147	-	-	148	148	87	148	87	-	-	140
-특정업무경비(250-03)	39	39	39	-	-	39	39	25	39	25	-	-	39
-정책연구비(260-02)	108	108	58	-	50	60	60	9	60	9	-	-	60
-자산취득비(430-01)	73	73	63	-	10	73	73	38	73	38	-	-	90
- 포상금(310-03)	-	-	-	-	-	-	-	-	-	-	-	-	-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인권국의 기본적 기능 수행을 위한 필요한 경비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세출예산집행지침

② 추진경위 : 해당없음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사업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3	2024	2025	2026	2027(안)
사업비	926	953	1,099	1,099	1,099

- 기타 :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인권정책과
- 사업 수혜자 : 인권국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7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

① 인권국 운영비

: (2026 본예산) 581백만원 → (2027 요구) 581백만원, 증감 없음

- (요구) 전년동
- (산출) 전년동

ㅇ 2026년도 예산 및 2027년도 예산안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6년 본예산		2027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580,119	○ 일반 수용비: 388,968천원 ○ 공공요금 및 제세 : 30,682천원 ○ 임차료 : 91,556천원 ○ 유류비 : 2,000천원 ○ 시설장비유지비 : 2,000천원 ○ 일반 용역비 : 52,000천원 ○ 관리용역비 : 12,913천원	580,119	○ 일반 수용비: 388,968천원 ○ 공공요금 및 제세 : 30,682천원 ○ 임차료 : 91,556천원 ○ 유류비 : 2,000천원 ○ 시설장비유지비 : 2,000천원 ○ 일반 용역비 : 52,000천원 ○ 관리용역비 : 12,913천원

② 여비

: (2026 본예산) 199백만원 → (2027 요구) 189백만원, 10백만원 감액

- (요구) 여비 불용 등에 따른 감액 반영 10백만원 감액
- (산출) 국내여비 4백만원 감액
  국외여비 6백만원 감액

ㅇ 2026년도 예산 및 2027년도 예산안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6년 본예산		2027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98,682	○ 국내여비 : 82,815천원 ○ 국외여비 : 115,867천원	188,748	○ 국내여비 : 78,674천원 ○ 국외여비 : 110,074천원

③ 사업지원 경비

: (2026 본예산) 320백만원 → (2027 요구) 330백만원, 10백만원 증액

- (요구) 화상조사 전산시스템 교체 비용 반영 등 10백만원 증액
- (산출) 관서업무추진비 7백만원 감액
  자산취득비, 화상조사 전산시스템 교체 비용 1,700만원 증액

ㅇ 2026년도 예산 및 2027년도 예산안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6년 본예산		2027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320,199	○ 관서업무추진비 : 147,684천원 ○ 특정업무경비 : 39,267천원 ○ 연구용역비 : 60,031천원 ○ 자산취득비 : 73,217천원	330,133	○ 관서업무추진비 : 140,300천원 ○ 특정업무경비 : 39,267천원 ○ 연구용역비 : 60,031천원 ○ 자산취득비 : 90,535천원

4) 사업효과 : 해당없음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해당없음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 해당없음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해당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해당없음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2) 해당사업에 대한 부처 자체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3) 부처 건의사항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3	926	-	926	13	82	-	1,020	967	104.4	94.8	-	53
2024	953	-	953	-	-	-	953	891	93.5	93.5	-	62
2025	1,099	-	1,099	-	-	-	1,099	998	90.8	90.8	-	101
2026	1,099	-	1,099	-	-	-	1,099	567	51.6	51.6	-	-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 해당없음

2) 주요 결산사항

□ 2023~2026년 결산사항

2023	-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정부과천청사로의 이전에 따른 이전비용 부족 발생하여 전용 - 집행 잔액 불용
2024	- 집행 잔액 불용
2025	- 해당없음
2026	- 정책연구용역 불용

□ 2026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

□ 2026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 해당없음

사 업 명
국제법무국 기본경비 (7011-266)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법무부	국제법무국		020	022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11	266
명칭	법무및검찰행정지원	본부기본경비(일반)	국제법무국기본경비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6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국제법무국 기본경비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국제법무국	최성겸	박노화	박상아
		국제법무정책과	02-2110-4533	02-2110-4534	02-2110-4536
	사업시행주체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년 결산	2026년 예산		2027년 예산		증감	
		본예산(A)	추경	요구	조정(B)	(B-A)	(B-A)/A
국제법무국 기본경비	326	362	362	356	356	△6	△1.7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5					2026.7월말							2027 예산안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362	362	339	10	13	362	372	127	362	117	-	-	356
・국제법무국 기본경비	362	362	339	10	13	362	372	127	362	117	-	-	356
○ 비목별 분류(합계)	362	362	339	10	13	362	372	127	362	117	-	-	356
・일반수용비(210-01)	125	125	120	-	5	121	121	60	121	60	-	-	111
・공공요금및제세(210-02)	7	7	7	-	-	7	7	3	7	3	-	-	7
・임차료(210-07)	5	5	5	-	-	5	5	4	5	4	-	-	5
・국내여비(220-01)	42	42	42	-	-	42	42	12	42	12	-	-	40
・국외여비(220-02)	40	40	40	-	-	50	50	9	50	9	-	-	48
・관서업무비(240-02)	44	44	44	-	-	45	45	19	45	19	-	-	42
・일반연구비(260-01)	20	20	10	10	-	20	30	10	20	-	-	-	20
・자산취득비(430-01)	79	79	71	-	8	72	72	10	72	10	-	-	4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국제법무국 기관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
-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임차료 등 경상적 경비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정부조직법 제32조(법무부)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의3(국제법무국)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조의3(국제법무국)
- 2025년도 예산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

② 추진경위

- ’23. 8. 8. 법무부 직제 개편으로 국제법무국 신설에 따른 기본경비 편성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24.~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3	2024	2025	2026	2027
사업비	-	272	362	362	356

- 기타: 해당 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법무부 국제법무국
- 사업 수혜자 : 국민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3) 2027년도 예산 산출 근거

□ **국제법무국 기본경비 (2026 본예산) 362 → (2027 요구) 356백만원, 6백만원 감액**

① 국제법무국 기본경비

: ('25) 362백만원 → ('26) 356백만원, 6백만원 감액

- (요구) 국제법무국 운영을 위한 경상적 경비로 여비, 업무추진비 등 일괄 감액하고, 국 회의실 환경개선공사를 위한 공사비를 요구
- (산출) 일반수용비 111백만원(△10백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7백만원
  임차료 5백만원
  국내여비 40백만원(△2백만원)
  국외여비 48백만원(△2백만원)
  업무추진비 42백만원(△3백만원)
  일반용역비 20백만원
  공사비 40백만원(순증)
  자산취득비 44백만원(△28백만원)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362,000	○ **일반수용비(210-01) : 121,431천원** 가. 사무용품 구입비 (39,750천원) ・ 복사용지 구입비 : 30,000원*10박스*3과*12월=10,800천원 ・ 전산소모품 구입비 : 1,350,000원*3회*3과=12,150천원 ・ 문구류 등 구입비 : 350,000원*4실*12월=16,800천원 나. 업무용 택시비 (20,100천원) ・ 550,000원*3과*12월+300,000원=20,100천원 다. 정수기 등 관리비 (5,400천원) ・ 60,000원*4실*12월+70,000원*3실*12월=5,400천원 라. 예결산 설명자료 등 인쇄비 (2,400천원) ・ 20,000원*12부*10회=2,400천원 마. 각종 해외구독료 (24,000천원) ・ 8,000,000원*3종=24,000천원 바. 비대면회의서비스 사용료 (3,000천원) ・ 1,000,000원*3과=3,000천원 사. 채용 등 심사위원 수당 (5,200천원) ・ 1,300,000원*4회=5,200천원 아. 직원교육비 (2,250천원) ・ 150,000원*15회=2,250천원 자. 사무기기 수선 등 (3,200천원) ・ 800,000원*4실=3,200천원 차. 국 현안 대응 등 (16,000천원) ・ TF 운영수당 : 150,000원*10명*2회+150,000원*5명*8회=9,000천원 ・ 번역비 : 20,000원*10매*5종=1,000천원 ・ 자문료 : 3,000,000원*2회=6,000천원 카. 조정재원 (131천원)	356,000	○ **일반수용비(210-01) : 110,600천원** 가. 사무용품 구입비 (37,350천원) ・ 복사용지 구입비 : 30,000원*10박스*3과*12월=10,800천원 ・ 전산소모품 구입비 : 1,350,000원*3회*3과=12,150천원 ・ 문구류 등 구입비 : 300,000원*4실*12월=14,400천원 나. 업무용 택시비 (19,800천원) ・ 550,000원*3과*12월=19,800천원 다. 정수기 등 관리비 (5,400천원) ・ 60,000원*4실*12월+70,000원*3실*12월=5,400천원 라. 예결산 설명자료 등 인쇄비 (2,400천원) ・ 20,000원*12부*10회=2,400천원 마. 각종 해외구독료 (18,000천원) ・ 6,000,000원*3종=18,000천원 바. 비대면회의서비스 사용료 (3,000천원) ・ 1,000,000원*3과=3,000천원 사. 채용 등 심사위원 수당 (5,200천원) ・ 1,300,000원*4회=5,200천원 아. 직원교육비 (2,250천원) ・ 150,000원*15회=2,250천원 자. 사무기기 수선 등 (3,200천원) ・ 800,000원*4실=3,200천원 차. 국 현안 대응 등 (14,000천원) ・ TF 운영수당 : 150,000원*10명*2회+150,000원*5명*8회=9,000천원 ・ 번역비 : 20,000원*10매*5종=1,000천원 ・ 자문료 : 2,000,000원*2회=4,000천원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 **공공요금 및 제세(210-02) : 7,200천원** ○ **임차료(210-07) : 5,000천원** ○ **국내여비(220-01) : 41,704천원** 가. 근무지내출장 여비 (1,200천원) ・ 5명*20,000원*12월=1,200천원 나. 근무지외출장 여비 (37,440천원) ・ 3명*15회*50,000원*12월=27,000천원 ・ 5명*2회*87,000원*12월=10,440천원 다. 이전비 (3,000천원) ・ 3명*1,000천원=3,000천원 라. 조정재원 (64천원) ○ **국외업무여비(220-02) : 50,000천원** 가. 초청 행사 대응 (8,050천원) ・ 2,683천원*3명*1회=8,050천원 나. 국재중재 활성화를 위한 컨퍼런스 참석 (6,351천원) ・ 3,176원*2명*1회=6,351천원 다. 국제법무 선진사례 수집 (25,717천원) ・ 8,572천원*3명*1회=25,717천원 라. 소관 국제규범 관련 참석 (9,882천원) ・ 4,941천원*2명*1회=9,882천원 ○ **관서업무추진비(240-02) : 44,691천원** 가. 예·결산, 국회 업무추진 (14,400천원) ・ 30,000원*5명*32회*3분야=14,400천원 나. 국제법무 관련 유관기관 업무협의 (10,800천원) ・ 30,000원*10명*12회*3과=10,800천원 다. 국제중재·조정 활성화 관련 업무협의 (5,520천원) ・ 230,000원*2회*12월=5,520천원 라. 해외진출 협력 관련 업무협의 (4,000천원) ・ 500,000원*8회=4,000천원 마. 국제소송 대응 등 부처 법률지원 활성화 관련 업무협의 (3,000천원) ・ 500,000원*6회=3,000천원 바. ISDS 제도개선 업무 추진 (2,000천원) ・ 1,000,000원*2회=2,000천원 사. 중재의향서 접수 등 현안 관련 업무 추진 (5,000천원) ・ 500,000원*10회=2,000천원 아. 조정재원 (△29천원) ○ **일반연구비(260-01) : 20,000천원** ○ **자산취득비(430-01) : 71,974천원** 가. 사무용 집기류 구입 (37,250천원) 나. 사무용 가구 등 구입 (34,724천원)		○ **공공요금 및 제세(210-02) : 7,200천원** ○ **임차료(210-07) : 5,000천원** ○ **국내여비(220-01) : 39,619천원** 가. 근무지내출장 여비 (1,200천원) ・ 5명*20,000원*12월=1,200천원 나. 근무지외출장 여비 (35,640천원) ・ 3명*14회*50,000원*12월=25,200천원 ・ 5명*2회*87,000원*12월=10,440천원 다. 이전비 (3,000천원) ・ 3명*1,000천원=3,000천원 라. 조정재원 (△221천원) ○ **국외업무여비(220-02) : 47,500천원** 가. 초청 행사 대응 (8,347천원) ・ 2,782천원*3명*1회=8,347천원 나. 국재중재 활성화를 위한 컨퍼런스 참석 (6,680천원) ・ 3,340원*2명*1회=6,680천원 다. 국제법무 선진사례 수집 (24,035천원) ・ 8,012천원*3명*1회=24,035천원 라. 소관 국제규범 관련 참석 (9,602천원) ・ 4,801천원*2명*1회=9,602천원 마. 조정재원(△1,164천원) ○ **관서업무추진비(240-02) : 42,456천원** 가. 예·결산, 국회 업무추진 (12,600천원) ・ 30,000원*5명*28회*3분야=12,600천원 나. 국제법무 관련 유관기관 업무협의 (9,000천원) ・ 30,000원*10명*10회*3과=9,000천원 다. 국제중재·조정 활성화 관련 업무협의 (7,200천원) ・ 200,000원*3회*12월=7,200천원 라. 해외진출 협력 관련 업무협의 (2,000천원) ・ 500,000원*4회=2,000천원 마. 국제소송 대응 등 부처 법률지원 활성화 관련 업무협의 (5,000천원) ・ 500,000원*10회=5,000천원 바. ISDS 제도개선 업무 추진 (2,000천원) ・ 1,000,000원*2회=2,000천원 사. 중재의향서 접수 등 현안 관련 업무 추진 (5,000천원) ・ 500,000원*10회=5,000천원 아. 조정재원 (△344천원) ○ **일반연구비(260-01) : 20,000천원** ○ **건설비(420-03) : 40,000천원** 가. 국 회의실 환경개선 공사 (40,000천원) ○ **자산취득비(430-01) : 43,625천원** 가. 사무용 집기류 구입 (27,125천원) 나. 사무용 가구 등 구입 (16,500천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 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 해당 없음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국제법무국의 안정적 운영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해당 없음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 해당 없음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법무부는 예산편성지침상 기본경비 성격의 예산인 '기본행정경비, 소규모 전산운영 경비'와는 무관한 주요사업비 성격의 예산이 기본경비 안에 편성되거나 집행되고 있으므로, 해당 예산을 적절한 주요사업비로 변경하거나 필요한 경우 새로운 프로그램이나 세부 사업을 신설할 필요 ('24년 결산, 상임위 검토보고서)
- 법무부는 국제중재비용 및 법률자문비용 68억 원을 집행함에 있어 국가재정법이 정한 이용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집행한 문제가 있으므로 향후 이와 같이 관련 법규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24년 결산, 상임위 검토보고서)

2) 감사원 감사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 해당 없음

3) 자체평가·감사 : 해당 없음

4)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 해당 없음

5)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지적사항	후속 조치사항
▪ 법무부는 예산편성지침상 기본경비 성격의 예산인 '기본행정경비, 소규모 전산운영 경비'와는 무관한 주요사업비 성격의 예산이 기본경비 안에 편성되거나 집행되고 있으므로, 해당 예산을 적절한 주요사업비로 변경하거나 필요한 경우 새로운 프로그램이나 세부 사업을 신설할 필요	▪ 주요사업비와 기본경비를 구분하는 기획재정부 예산안 편성지침의 취지를 유념하여, 추후 연구용역 예산 편성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음
▪ 법무부는 국제중재비용 및 법률자문비용 68억 원을 집행함에 있어 국가재정법이 정한 이용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집행한 문제가 있으므로 향후 이와 같이 관련 법규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	▪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 정교하게 예산을 편성하고, 이·전용 절차를 준수하도록 하겠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국제법무국 운영의 원활한 지원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 없음

12) 해당사업에 대한 부처 자체평가의 결과 : 해당 없음

13) 부처 건의사항 : 해당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3	-	-	-	-	-	-	-	-	-	-	-	-
2024	272	-	272	-	6,800	-	7,072	7,055	2,594	99.8	-	17
2025	362	-	362	-	-	-	362	339	93.6	93.6	10	13
2026	362	-	362	10	-	-	372	127	34.1	34.1	-	-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 해당 없음

2) 주요 결산사항

□ 2023~2026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3	- 해당 없음
2024	- 법무부는 예산편성지침상 기본경비 성격의 예산인 '기본행정경비, 소규모 전산운영 경비'와는 무관한 주요사업비 성격의 예산이 기본경비 안에 편성되거나 집행되고 있으므로, 해당 예산을 적절한 주요사업비로 변경하거나 필요한 경우 새로운 프로그램이나 세부 사업을 신설할 필요 ('24년 결산, 상임위 검토보고서) - 국제중재비용 및 법률자문비용 68억 원을 집행함에 있어 국가재정법이 정한 이용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집행한 문제가 있으므로 향후 이와 같이 관련 법규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24년 결산, 상임위 검토보고서)
2025	- 이월 : 연구용역 미완료로 인한 잔금 10백만원 이월
2026	- 해당 없음

□ 2026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 없음

□ 2026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 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 해당 없음

사 업 명
출입국외국인관서운영 기본경비(총액) (7018-2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		020	022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18	200
명칭	법무및검찰행정지원	소속기관기본경비(일반)	출입국외국인관서운영기본경비(총액)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6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출입국외국인관서 운영기본경비 (총액)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	유성오	김원희	이윤주
		출입국기획과	02-2110-4010	02-2110-4026	02-2110-4367
	사업시행주체	법무부	-	-	-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년 결산	2026년 예산		2027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요구안	조정안(B)		(B-A)/A
출입국외국인관서 운영기본경비(총액)	3,427	3,890	3,890	3,967	3,967	77	2.0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25					2026(2026.7월말)							2027 예산안
	예산액(추경)	예산현액	집행액[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현액	집행액[실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예상액	불용예상액	
									예산현액	집행액[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3,693	3,693	3,427	-	262	3,890	3,890	2,838	3,890	2,838	-	-	3,967
· 출입국외국인관서운영비(총액인건비대상)	3,693	3,693	3,427	-	262	3,890	3,890	2,838	3,890	2,838	-	-	3,967
○ 비목별 분류(합계)	3,693	3,693	3,427	-	262	3,890	3,890	2,838	3,890	2,838	-	-	3,967
· 일용임금(110-04)	67	67	48	-	19	69	69	23	69	23	-	-	72
· 특근매식비(210-05)	476	472	428	-	39	612	612	410	612	410	-	-	653
· 일숙직비(210-06)	187	187	161	-	26	187	187	58	187	58	-	-	41
· 복리후생비(210-12)	2,075	2,075	1,907	-	168	2,075	2,075	1,740	2,075	1,740	-	-	2,236
· 기타운영비(210-16)	460	460	454	-	5	519	519	350	519	350	-	-	501
· 직책수행경비(250-02)	322	327	326	-	1	322	322	225	322	225	-	-	359
· 고용부담금(320-09)	105	105	101	-	4	105	105	31	105	31	-	-	105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3,693	3,693	3,427	-	262	3,890	3,890	2,838	3,890	2,838	-	-	3,967
· 출입국외국인관서운영비(총액인건비대상)	3,693	3,693	3,427	-	262	3,890	3,890	2,838	3,890	2,838	-	-	3,967
-일용임금(110-04)	67	67	48	-	19	69	69	23	69	23	-	-	72
-특근매식비(210-05)	476	472	428	-	39	612	612	410	612	410	-	-	653
-일숙직비(210-06)	187	187	161	-	26	187	187	58	187	58	-	-	41
-복리후생비(210-12)	2,075	2,075	1,907	-	168	2,075	2,075	1,740	2,075	1,740	-	-	2,236
-기타운영비(210-16)	460	460	454	-	5	519	519	350	519	350	-	-	501
-직책수행경비(250-02)	322	327	326	-	1	322	322	225	322	225	-	-	359
-고용부담금(320-09)	105	105	101	-	4	105	105	31	105	31	-	-	105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출입국외국인관서 등 소속기관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지원으로 원활한 출입국 행정 수행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출입국외국인관서 기본 기능 운영

② 추진경위 : 출입국외국인관서 운영에 필요한 기본 경비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계속사업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3	2024	2025	2026	2027(안)
사업비	3,628	3,638	3,693	3,890	3,967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법무부
- 사업 수혜자 : 내·외국인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3) 2027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

① 출입국외국인관서 운영비(총액인건비 대상) : ('26) 3,890 → ('27안) 3,967백만원, 77백만원 증액

- 계약직근로자 운영 : ('26) 174 → ('27안) 177백만원 (+3)
- 야근자 매식비, 당직비 : ('26) 799 → ('27안) 695백만원 (△104)
- 직원 복리후생비 : ('26) 2,075 → ('27안) 2,236백만원 (+161)
- 과운영비 등 : ('26) 519 → ('27안) 501백만원 (△18)
- 기관장·부서장 직책급 : ('26) 322 → ('27안) 359백만원 (+37)

ㅇ 2026년도 예산 및 2027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6년 예산		'27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3,890백만원	○ **일용임금(110-04) : 68,906천원** 가. 일용임금 : 5명×2,157천원×6월=64,706천원 나. 정액급식비 : 5명×140,000원×6월=4,200천원 ○ **특근매식비(210-05) : 612,120천원** 가. 특근매식비 : 549명×9,000원×10일×12월=592,920천원 **나.** 을지훈련 매식비 등 : 20,000,000원 ○ **일숙직비(210-06) : 187,200천원** 가. 당직비 : 187,200,000원 ○ **복리후생비(210-12) : 2,075,346천원** 가. 공무원 맞춤형복지비 : 1,950,053천원	3,967백만원	○ **일용임금(110-04) : 71,889천원** 가. 일용임금 : 5명×10,700원×209시간×6월=67,089천원 나. 정액급식비 : 5명×160,000원×6월=4,800천원 ○ **특근매식비(210-05) : 653,360천원** 가. 특근매식비 : 586명×9,000원×10일×12월=632,880천원 **나.** 을지훈련 매식비 등 : 20,480,000원 ○ **일숙직비(210-06) : 41,400천원** 가. 당직비 : 41,400,000원 ○ **복리후생비(210-12) : 2,235,983천원** 가. 공무원 맞춤형복지비 : 2,108,053천원

'26년 예산		'27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나. 청원경찰 맞춤형복지비 : 24명×500,000원=12,000천원 다. 동호회 활동 지원 : 10,000,000원 라. 소속직원 생일기념 소액경비 : 3,451명×30,000원=103,530천원 마. 계수 조정 : △237,000원 ○ **기타운영비(210-16) : 519,022천원** 가. 과운영비 : (30과x360천원+48과x270천원+48과x280천원+28과x90천원)×12월=375,840천원 나. 경조사, 직원격려비 등 : 100,182,000원 ○ **직책수행경비(250-02) : 322,440천원** 가. 기관장 : (6명×975,000원+17명×400,000원+24명×150,000원)×12월=195,000천원 나. 보조기관 : (10명×350,000원+89명×80,000원)×12월=127,440천원 ○ **고용부담금(320-09) : 104,966천원** 가. 일용직 4대 보험료 : 7,527,000원 나. 청원경찰 고용 및 산재보험 : 28,188,000원 다. 임기제공무원 고용 및 산재보험 : 69,251,000원		나. 청원경찰 맞춤형복지비 : 24명×600,000원=14,400천원 다. 동호회 활동 지원 : 10,000,000원 라. 소속직원 생일기념 소액경비 : 3,451명×30,000원=103,530천원 ○ **기타운영비(210-16) : 500,542천원** 가. 과운영비 : (30과x360천원+48과x270천원+48과x280천원+28과x90천원)×12월=375,840천원 나. 경조사, 직원격려비 등 : 81,502,000원 ○ **직책수행경비(250-02) : 358,860천원** 가. 기관장 : (7명×975,000원+20명×400,000원+24명×150,000원)×12월=221,100천원 나. 보조기관 : (12명×350,000원+91명×80,000원)×12월=137,760천원 ○ **고용부담금(320-09) : 104,966천원** 가. 일용직 4대 보험료 : 7,527,000원 나. 청원경찰 고용 및 산재보험 : 28,188,000원 다. 임기제공무원 고용 및 산재보험 : 69,251,000원

4) 사업효과 : 해당사항 없음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사항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기획예산처 편성기준 시달 → 부처 편성 → 기획예산처 심의 → 정부(안)확정 → 국회심의의결 → 예산확정 → 집행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 해당사항 없음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해당사항 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해당사항 없음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사항 없음

12) 동 사업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 : 해당사항 없음

13) 2026년도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 결과 및 후속 조치 현황 : 해당없음

14) 부처 건의사항 : 해당사항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3	3,628	-	3,628	-	179	-	3,807	3,644	100.4	95.7	-	163
2024	3,638	-	3,638	-	△154	-	3,484	3,187	87.6	91.5	-	297
2025	3,693	-	3,693	-	-	-	3,693	3,427	92.8	92.8	-	266
2026	3,890	-	3,890	-	-	-	3,890	2,838	73.0	73.0	-	-

2) 주요 결산사항

□ 2023~2026년 결산사항

2023	○ 전용 - 조선업 비자 특별 심사지원단 구성 및 외국인본부 직원의 지원근무에 따른 근무지외 출장 증가로 인한 국내여비 부족분 충당을 위해 출입국외국인관서기본경비(총액) 복리후생비 140백만원 전용 감 - 청년인턴 채용 등에 따라 일용임금 및 고용부담금 부족분 충당 등 303백만원 전용 증 - 보호외국인 이송 차량 운행 증가에 따른 유류비 충당 16백만원 전용 증 ○ 불용 : 집행잔액 163백만원
2024	○ 전용 - 수시직제 반영으로 발생한 전문임기제 채용 등 시험관리비 충당 및 체류외국인 증가로 인해 발생한 우편, 전화요금 등 공공요금에 대한 부족분 충당을 위해 전용 감 154백만원 ○ 불용 : 집행잔액 297백만원
2025	○ 불용 : 집행잔액 266백만원
2026	- 해당없음

□ 2026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

□ 2026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 해당사항 없음

사 업 명
공소청운영기본경비(총액) (7018-20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법무부	검찰국		020	022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법무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18	202
명칭	법무 및 형사사법행정지원	소속기관기본경비(일반)	공소청운영기본경비(총액)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6예산 시 소관
	O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공소청운영 기본경비(총액)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검찰국	나하나	검사 구자원	수사관 박성인
		검찰과	02-2110-4190	02-2110-4194	02-2110-4216
	사업시행주체	-	-	-	-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년 결산	2026년 예산		2027년		증감 (B-A)	(B-A)/A
		본예산(A)	추경	요구안	조정안(B)		
공소청운영 기본경비(총액)	30,298	31,524	31,524	32,470	28,171	△3,353	△10.6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25					2026(2026.7월말)							2027 예산안
	예산액(추경)	예산현액	집행액[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현액	집행액[실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예상액	불용예상액	
									예산현액	집행액[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31,498	30,379	30,298	-	81	31,524	31,812	20,939	31,812	20,939	-	-	28,171
· 인건비(110)	510	246	244	-	2	510	510	114	510	114	-	-	510
· 운영비(210)	14,932	14,269	14,208	-	60	14,960	14,960	10,975	14,960	10,975	-	-	11,832
· 직무수행경비(250)	15,584	15,184	15,179	-	5	15,583	15,583	9,420	15,583	9,420	-	-	15,358
· 민간이전(320)	471	679	667	-	13	471	759	429	759	429	-	-	471
○ 비목별 분류(합계)	31,498	30,379	30,298	-	81	31,524	31,812	20,939	31,812	20,939	-	-	28,171
· 일용임금(110-04)	510	246	244	-	2	510	510	114	510	114	-	-	510
· 특근매식비(210-05)	92	292	290	-	2	118	118	28	118	28	-	-	88
· 일·숙직비(210-06)	3,043	2,756	2,743	-	13	3,043	3,043	1,442	3,043	1,442	-	-	2,269
· 복리후생비(210-12)	8,361	7,827	7,789	-	38	8,361	8,361	7,339	8,361	7,339	-	-	6,912
· 기타운영비(210-16)	3,437	3,394	3,386	-	8	3,438	3,438	2,166	3,438	2,166	-	-	2,564
· 직책수행경비(250-02)	15,572	15,172	15,166	-	5	15,572	15,572	9,415	15,572	9,415	-	-	15,346
· 특정업무경비(250-03)	13	13	13	-	-0	12	12	6	12	6	-	-	12
· 고용부담금(320-09)	471	679	667	-	13	471	759	429	759	429	-	-	471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31,498	30,379	30,298	-	81	31,524	31,812	20,939	31,812	20,939	-	-	28,171
· 인건비(110)	510	246	244	-	2	510	510	114	510	114	-	-	510
-일용임금(110-04)	510	246	244	-	2	510	510	114	510	114	-	-	510
· 운영비(210)	14,932	14,269	14,208	-	60	14,960	14,960	10,975	14,960	10,975	-	-	11,832
-특근매식비(210-05)	92	292	290	-	2	118	118	28	118	28	-	-	88
-일·숙직비(210-06)	3,043	2,756	2,743	-	13	3,043	3,043	1,442	3,043	1,442	-	-	2,269
-복리후생비(210-12)	8,361	7,827	7,789	-	38	8,361	8,361	7,339	8,361	7,339	-	-	6,912
-기타운영비(210-16)	3,437	3,394	3,386	-	8	3,438	3,438	2,166	3,438	2,166	-	-	2,564
· 직무수행경비(250)	15,584	15,184	15,179	-	5	15,583	15,583	9,420	15,583	9,420	-	-	15,358
-직책수행경비(250-02)	15,572	15,172	15,166	-	5	15,572	15,572	9,415	15,572	9,415	-	-	15,346
-특정업무경비(250-03)	13	13	13	-	0	12	12	6	12	6	-	-	12
· 민간이전(320)	471	679	667	-	13	471	759	429	759	429	-	-	471
-고용부담금(320-09)	471	679	667	-	13	471	759	429	759	429	-	-	471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해당없음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해당없음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3	2024	2025	2026	2027(안)
사업비	30,865	31,365	31,498	31,524	28,171

- 기타: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법무부
- 사업 수혜자 :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7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

① 인건비 : (2026 본예산) 510백만원 → (2027 요구) 510백만원, 전년동
② 운영비 : (2026 본예산) 14,960백만원 → (2027 요구) 11,832백만원, 3,128백만원 감액
③ 직무수행경비 : (2026 본예산) 15,583백만원 → (2027 요구) 15,358백만원, 225백만원 감액
④ 민간이전 : (2026 본예산) 471백만원 → (2027 요구) 471백만원, 전년동

4) 사업효과 : 해당없음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특이사항 없음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 해당없음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해당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해당없음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2) 동 사업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 : 해당없음

13) 2026년도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 결과 및 후속 조치 현황 : 해당없음

14) 부처 건의사항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3	30,865	-	30,865	-	299	-	31,164	31,002	100.4	99.5	-	162
2024	31,365	-	31,365	-	△788	-	30,577	29,885	95.3	97.7	-	692
2025	31,498	-	31,498	-	△1,119		30,379	30,298	96.2	99.7	-	81
2026	31,524	-	51,524	-	288	-	31,812	20,939	66.4	65.8	-	-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 해당없음

2) 주요 결산사항

□ 2023~2026년 결산사항

2023	- 형사보상금 부족으로 525백만원 이용 감, 일용임금, 고용부담금 및 직책수행경비 부족으로 사업내 전용 - 집행잔액 162백만원 불용
2024	- 고용부담금 부족으로 167백만원 전용 증, 형사보상금 부족으로 765백만원 이용 감, 국내여비 부족으로 190백만원 전용 감 - 집행잔액 692백만원 불용
2025	- 고용부담금 부족으로 208백만원 전용 증, 형사보상금 부족으로 568백만원 이용 감, 국내여비 부족으로 561백만원 전용 감, 공공요금 부족으로 199백만원 전용 감 - 집행잔액 81백만원 불용
2026	- 해당없음

□ 2026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자체이용 (2026.8.18.)	공소청운영인건비(총액) (7002-101)	110-01	288	공소청운영기본경비(총액) (7018-202)	320-09	고용부담금 부족

□ 2026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 해당없음

사 업 명
법무연수원 기본경비(총액) (7018-204)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법무부	법무연수원	일반회계	020	022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18	204
명칭	법무및검찰행정지원	소속기관기본경비(일반)	법무연수원기본경비(총액)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6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법무연수원 기본경비 (총액)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법무연수원	서혜주	이자희	조예덕
		총무과	043-531-1540	043-531-1541	043-531-1554
	사업시행주체	-	-	-	-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년 결산	2026년 예산		2027년		증감 (B-A)	(B-A)/A
		본예산(A)	추경	요구안	조정안(B)		
법무연수원 기본경비(총액)	554	636	636	708	708	72	11.3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25					2026(2026.7월말)							2027 예산안
	예산액(추경)	예산현액	집행액[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현액	집행액[실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예상액	불용예상액	
									예산현액	집행액[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616	616	554	-	62	636	636	433	636	433	-	-	708
·기본경비(총액)	616	616	554	-	62	636	636	433	636	433	-	-	708
○ 비목별 분류(합계)	616	616	554	-	62	636	636	433	636	433	-	-	708
·특근매식비(210-05)	69	69	56	-	13	89	89	28	89	28	-	-	73
·일숙직비(210-06)	40	40	39	-	1	40	40	28	40	28	-	-	40
·복리후생비(210-12)	132	132	117	-	15	132	132	113	132	113	-	-	148
·기타운영비(210-16)	90	90	80	-	10	90	90	48	90	48	-	-	49
·직책수행경비(250-02)	285	285	263	-	22	285	285	216	285	216	-	-	398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616	616	554	-	62	636	636	433	636	433	-	-	708
·기본경비(총액)	616	616	554	-	62	636	636	433	636	433	-	-	708
-특근매식비(210-05)	69	69	56	-	13	89	89	28	89	28	-	-	73
-일숙직비(210-06)	40	40	39	-	1	40	40	28	40	28	-	-	40
-복리후생비(210-12)	132	132	117	-	15	132	132	113	132	113	-	-	148
-기타운영비(210-16)	90	90	80	-	10	90	90	48	90	48	-	-	49
-직책수행경비(250-02)	285	285	263	-	22	285	285	216	285	216	-	-	398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기본경비(총액)) 법무연수원 운영에 따른 인건비성 경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해당없음

② 추진경위 : 해당없음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3	2024	2025	2026	2027(안)
사업비	540	616	616	636	708

- 기타: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법무부 법무연수원
- 사업 수혜자 : 법무연수원 직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7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

① 기본경비 총액
: ('26) 636백만원 → ('27요구) 708백만원, 72백만원 증액
- (요구) 기본경비(총액) 72백만원 증액 요구
- (산출) 특근매식비 73백만원, 일숙직비 40백만원, 복리후생비 148백만원, 기타운영비 49백만원, 직책수행경비 398백만원

ㅇ 2026년도 예산 및 2027년도 예산안 산출 세부내역 비교

'26년 예산		'27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636,000	○ 특근매식비(210-05) : 89,000천원 ○ 일숙직비(210-06): 40,000천원 ○ 복리후생비(210-12) : 132,150천원 ○ 기타운영비(210-16) : 89,450천원 ○ 직책수행경비(250-02) : 285,400천원	708,000	○ 특근매식비(210-05) : 72,900천원 ○ 일숙직비(210-06): 40,000천원 ○ 복리후생비(210-12) : 147,850천원 ○ 기타운영비(210-16) : 48,810천원 ○ 직책수행경비(250-02) : 398,440천원

4) 사업효과 : 해당없음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해당없음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 해당없음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해당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해당없음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2) 동 사업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 : 해당없음

13) 2026년도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 결과 및 후속 조치 현황 : 해당없음

14) 부처 건의사항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3	540	-	540	-	15	-	555	552	102.2	99.5	-	3
2024	616	-	616	-	-	-	616	543	88.1	88.1	-	73
2025	616	-	616	-	-	-	616	554	89.9	89.9	-	62
2026	636	-	636	-	-	-	636	433	68.1	68.1	-	-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 해당없음

2) 주요 결산사항

□ 2023~2026년 결산사항

2023	- 전용 사유 : 15백만원, 청년인턴 인건비 - 자체 전용 사유 : 17백만원, 연구위원 증원(전입)에 따른 직책수행경비 - 세목 조정 사유 : 0.4백만원,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인한 일숙직비 부족 - 불용 사유 : 집행잔액 3백만원
2024	- 불용 사유 : 집행잔액 73백만원
2025	- 불용 사유 : 집행잔액 62백만원
2026	- 해당없음

□ 2026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

□ 2026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 해당없음

사 업 명
교도소 운영 기본경비(총액) (7018-206)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법무부	교정본부		020	022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18	206
명칭	법무및검찰행정지원	소속기관기본경비(일반)	교도소운영기본경비(총액)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O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교도소운영 기본경비 (총액)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교정본부	주기남	유 진	최재성
		복지과	02-2110-3420	02-2110-3423	02-2110-3499
	사업시행주체	-	-	-	-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년 결산	2026년 예산		2027년		증감	
		본예산(A)	추경	요구안	조정안(B)	(B-A)	(B-A)/A
교도소운영 기본경비(총액)	19,855	20,190	20,190	20,796	20,048	△142	△0.7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5					2026(2026.7월말)							2027 예산안
	예산액(추경)	예산현액	집행액[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현액	집행액[실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예상액	불용예상액	
									예산현액	집행액[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19,855	17,641	17,446	-	195	20,190	20,190	14,969 (14,832)	20,190	14,969 (14,832)	-	-	20,048
・공무원 복리후생비	19,855	17,641	17,446	-	195	20,190	20,190	14,969 (14,832)	20,190	14,969 (14,832)	-	-	20,048
○ 비목별 분류(합계)	19,855	17,641	17,446	-	195	20,190	20,190	14,969 (14,832)	20,190	14,969 (14,832)	-	-	20,048
-특근매식비(210-05)	601	601	542	-	59	773	773	283 (282)	773	283 (282)	-	-	797
-일・숙직비(210-06)	107	108	91	-	17	169	169	16	169	16	-	-	62
-복리후생비(210-12)	14,007	12,332	12,292	-	41	14,007	14,007	11,690 (11,688)	14,007	11,690 (11,688)	-	-	14,243
-기타운영비(210-16)	2,745	2,206	2,183	-	55	2,828	2,828	1,482 (1,388)	2,828	1,482 (1,388)	-	-	2,528
-직책수행비(250-02)	1,193	1,193	1,164	-	29	1,194	1,194	749 (729)	1,194	749 (729)	-	-	1,199
-특정업무비(250-03)	1,201	1,201	1,175	-	26	1,218	1,218	749 (730)	1,218	749 (730)	-	-	1,218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19,855	17,641	17,446	-	195	20,190	20,190	14,969 (14,832)	20,190	14,969 (14,832)	-	-	20,048
・공무원 복리후생비	19,855	17,641	17,446	-	195	20,190	20,190	14,969 (14,832)	20,190	14,969 (14,832)	-	-	20,048
-특근매식비(210-05)	601	601	542	-	59	773	773	283 (282)	773	283 (282)	-	-	797
-일・숙직비(210-06)	107	108	91	-	17	169	169	16	169	16	-	-	62
-복리후생비(210-12)	14,007	12,332	12,292	-	41	14,007	14,007	11,690 (11,688)	14,007	11,690 (11,688)	-	-	14,243
-기타운영비(210-16)	2,745	2,206	2,183	-	55	2,828	2,828	1,482 (1,388)	2,828	1,482 (1,388)	-	-	2,528
-직책수행비(250-02)	1,193	1,193	1,164	-	29	1,194	1,194	749 (729)	1,194	749 (729)	-	-	1,199
-특정업무비(250-03)	1,201	1,201	1,175	-	26	1,218	1,218	749 (730)	1,218	749 (730)	-	-	1,218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공무원 복리후생비) 교정기관(지방교정청, 구치소, 교도소)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세출예산집행지침」

② 추진경위 : 교정기관 근무 직원에 대한 운영비 등 지원 필요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3	2024	2025	2026	2027
사업비	19,160	19,280	19,855	20,190	20,048

- 기타: 전국 58개 기관(지방교정청 4, 교도소 39, 구치소 12, 지소 3)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법무부
- 사업 수혜자 : 교정공무원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7년도 예산 산출 근거

□교도소 운영 기본경비(총액) : (2026 예산) 20,190백만원 → (2027 요구) 20,048백만원, △142백만원

① 공무원 복리후생비 **: (2026 예산) 20,190백만원 → (2027 요구) 20,048백만원, △142백만원**

- (요구) 휴일 숙직 재택근무 전환에 따른 감액 및 교정공무원 정원 증가에 따른 증액 요구
- (산출) ① 복리후생비 236백 증액 ① 특근매식비 24백 증액 ③ 직책수행경비 5백 증액
  ④ 기타운영비 300백 감액 ⑤ 일·숙직비 107백 감액

ㅇ 2026년도 예산 및 2027년도 예산안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6년 본예산		2027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9,855 백만원	○ **특근매식비(210-05) : 773백만원** 1 .특근매식비(각 기관) ・ 58기관 × 1,481명 × 9,000원 ○ **일숙직비(210-06) : 169백만원** 1. 지방교정청 일·숙직 수당(평일) ・ 4기관 × 30,000원 × 260일 × 2명 2. 지방교정청 일·숙직 수당(휴일) ・ 4기관 × 50,000원 × 124일 × 4명 ○ **복리후생비(210-12) : 14,007백만원** 1. 선택적맞춤형복지비 ・ 16,600명 × 730,000원 ○ **기타운영비(210-16) : 2,828백만원** 5. 교정공무원 시험사무 관련 경비	20,190 백만원	○ **특근매식비(210-05) : 797백만원** 1 .특근매식비(각 기관) ・ 58기관 × 1,527명 × 9,000원 ○ **일숙직비(210-06) : 62백만원** 1. 지방교정청 일·숙직 수당(평일) ・ 4기관 × 30,000원 × 260일 × 2명 ○ **복리후생비(210-12) : 14,243백만원** 1. 선택적맞춤형복지비 ・ 16,924명 × 730,000원 ○ **기타운영비(210-16) : 2,528백만원** 5. 교정공무원 시험사무 관련 경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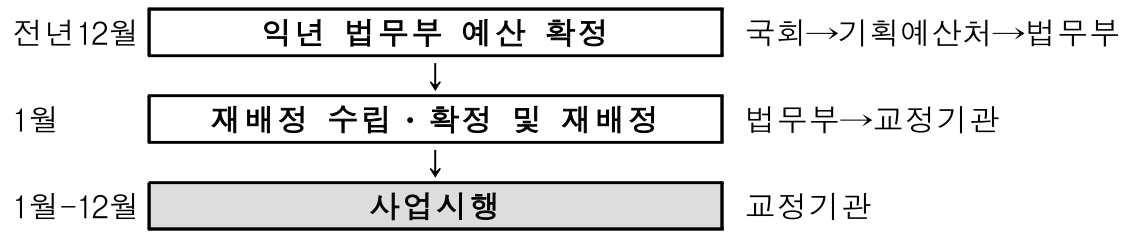
2026년 본예산		2027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가. 교정공무원 승진시험 관리수당(5~8급) 4회 × 93,000,000원 나. 시험사무 관련 관리수당(경채) 2회 × 50,,000,000원 ○ **직책수행경비(250-02) : 1,194백만원** 1. 월정직책급 가. 보조기관 1. 5급 : 301명 × 80,000원 × 12월		가. 교정공무원 승진시험 관리수당(5~8급) 3회 × 63,481,333원 나. 시험사무 관련 관리수당(경채) 1회 × 50,,000,000원 ○ **직책수행경비(250-02) : 1,199백만원** 1. 월정직책급 가. 보조기관 1. 5급 : 306명 × 80,000원 × 12월

4) 사업효과 : 해당없음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 해당없음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해당없음

2) 감사원 감사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 해당없음

3) 자체평가·감사 : 해당없음

4)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 해당없음

5)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해당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해당없음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2) 해당사업에 대한 부처 자체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3) 부처 건의사항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3	19,160	-	19,160	-	△499	-	18,661	18,574	96.9	99.5	-	87
2024	19,280	-	19,280	-	△1,867	-	17,413	17,341	89.9	99.6	-	72
2025	19,855	-	19,855	-	△2,214	-	17,641	17,449	87.9	98.9	-	192
2026.7	20,190	-	20,190	-	-	-	20,190	14,969	74.1	74.1	-	-

2) 주요 결산사항

□ 2023~2026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 해당 없음

□ 2026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2023	- 청년인턴 채용에 필요한 일용임금 및 고용부담금 재원 확보를 위한 1380백만원 전용 증 - 인사이동 등에 따른 이전여비 부족 및 현안관련 업무 증가에 따른 국내여비 부족 등으로 962백만원 전용 감, 유가 상승에 따른 유류비 부족으로 800백만원 내역변경 감, 외부 의료시설 입원 증가에 따른 계호근무 직원의 급식비 부족으로 117백만원 내역변경 감
2024	- 인사이동 확대 및 소속기관 방문 조사 등 출장 증가로 인한 국내여비 부족분 900백만원 전용 감, 노후차량 교체 임차료 부족에 따른 127백만원 전용 감 - 수용인원 증가로 인한 호송 및 외부진료 유류비 부족으로 840백만원 내역변경 감
2025	- 지속적인 수용인원 증가로 인한 급식비 부족으로 900백만원 내역변경 감, 유류비 부족으로 914백만원 내역변경 감 - 수용자 계호인원 및 출장 증가로 인한 국내여비 부족으로 400백만원 전용 감
2026	- 사업 진행 중

□ 2026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 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 해당없음

사 업 명
소년원운영기본경비(총액) (7018-207)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일반회계	020	022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18	207
명칭	법무및검찰행정지원	소속기관기본경비	소년원운영기본경비(총액)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6예산 시 소관
	O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소년원운영 기본경비 (총액)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범죄예방정책국	오상섭	원학재	정재희
		범죄예방기획과	02-2110-3570	02-2110-3574	02-2110-3787
	사업시행주체	소년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년 결산	2026년 예산		2027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요구안	조정안(B)		(B-A)/A
소년원운영기본경비 (총액)	2,613	2,995	2,995	3,287	3,287	292	9.7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5					2026(2026.7월말)							2027 예산안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2,843	2,773	2,613	-	160	2,995	2,995	1,873	2,995	1,873	-	-	3,287
· 공무직 인건비	2,306	2,235	2,105	-	130	2,444	2,444	1,578	2,444	1,578	-	-	2,729
· 기관운영관리	537	538	508	-	30	551	551	295	551	295	-	-	558
○ 비목별 분류(합계)	2,843	2,773	2,613	-	160	2,995	2,995	1,873	2,995	1,873	-	-	3,287
· 상용임금(110-03)	1,223	1,223	1,140	-	83	1,335	1,335	737	1,335	737	-	-	1,558
· 특근매식비(210-05)	51	56	53	-	3	65	65	27	65	27	-	-	72
· 일숙직비(210-06)	8	5	-	-	5	8	8	-	8	-	-	-	-
· 복리후생비(210-12)	845	843	827	-	16	845	845	770	845	770	-	-	858
· 기타운영비(210-16)	258	257	254	-	3	258	258	151	258	151	-	-	261
· 직무수행경비(250-02)	220	220	201	-	19	220	220	117	220	117	-	-	225
· 고용부담금(320-09)	239	169	138	-	31	264	264	71	264	71	-	-	313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2,843	2,773	2,613	-	160	2,995	2,995	1,873	2,995	1,873	-	-	3,287
· 공무직 인건비	2,306	2,235	2,105	-	130	2,444	2,444	1,578	2,444	1,578	-	-	2,729
- 상용임금(110-03)	1,223	1,223	1,140	-	83	1,335	1,335	737	1,335	737	-	-	1,558
- 복리후생비(210-12)	845	843	827	-	16	845	845	770	845	770	-	-	858
- 고용부담금(320-09)	239	169	138	-	31	264	264	71	264	71	-	-	313
· 기관운영관리	537	538	508	-	30	551	551	295	551	295	-	-	558
- 특근매식비(210-05)	51	56	53	-	3	65	65	27	65	27	-	-	72
- 일숙직비(210-06)	8	5	-	-	5	8	8	-	8	-	-	-	-
- 기타운영비(210-16)	258	257	254	-	3	258	258	151	258	151	-	-	261
- 직무수행경비(250-02)	220	220	201	-	19	220	220	117	220	117	-	-	225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o 소년원 및 청소년비행예방센터 기관 운영을 위한 공무직 인건비 등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소년법(법률제8722호), 보호소년등의처우에관한법률(법률제8723호)
- 법무부와그소속직제 및 동시행규칙

② 추진경위

- 1942. 4. 조선교정원 개원(현, 서울소년원)
- 1958. 7. 소년법 제정
- 1958. 8. 소년원법 제정(현, 보호소년등의처우에관한법률)
- 2004. 1. 소년원법 개정(소년원 학교의 정규화)
- 2007. 7. 부산, 광주 등 6개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설치
- 2026. 3.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안산지원 개청
- ~ 현재 10개 소년원 및 2개 소년분류심사원, 18개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운영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단위: 백만원)

연도	2023	2024	2025	2026	2027(안)
사업비	2,710	2,745	2,843	2,995	3,287

- 기타: 소년보호기관 29개(소년원 11개, 청소년비행예방센터 18개), 직원 정원 976명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범죄예방정책국 소년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 사업 수혜자 : 소년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소속 공무원 및 계약직 근로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7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소년보호기관 공무직 인건비

: (2026 본예산) 2,444백만원 → (2027 요구) 2,729백만원, 285백만원 증액

- (요구) 공무직 처우개선분을 반영한 상용임금, 고용부담금, 복리후생비 증액 요구
- (산출) 상용임금 223백만원 증액, 고용부담금 49백만원 증액, 복리후생비 13백만원 증액

ㅇ 2026년도 예산 및 2027년도 예산안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6년 본예산		2027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2,444	○ **상용임금(110-03) : 1,335백만원** 가. 사무보조원 인건비 ・ 43명×2,587천원×12월 = 1,335백만원 ○ **복리후생비(210-12) : 845백만원** 가. 공무원, 공무직 맞춤형 복지비 766백만원 나. 동호회활동 및 출산장려 79백만원 ○ **고용부담금(320-09) : 264백만원** 가. 보험료 및 퇴직금 264백만원	2,729	○ **상용임금(110-03) : 1,558백만원** 가. 사무보조원 인건비 ・ 43명×3,019천원×12월 = 1,558백만원 ○ **복리후생비(210-12) : 858백만원** 가. 공무원, 공무직 맞춤형 복지비 777백만원 나. 동호회활동 및 출산장려 81백만원 ○ **고용부담금(320-09) : 313백만원** 가. 보험료 및 퇴직금 313백만원

② 소년보호기관 운영관리

: (2026 본예산) 551백만원 → (2027 요구) 558백만원, 7백만원 증액

- (요구) 직제 소요(+9명)에 따른 경비 증액 및 당직제도 개편에 따른 일숙직비 감액 요구
- (산출) 특근매식비 7백만원 증액, 기타운영비 3백만원 증액, 직책수행경비 5백만원 증액
  일숙직비 8백만원 감액

ㅇ 2026년도 예산 및 2027년도 예산안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6년 본예산		2027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551	○ **특근매식비(210-05) : 66백만원** 가. 수용사고방지 비상훈련 매식비 19백만원 나. 야근자 특근매식비 등 47백만원 ○ **일숙직비(210-06) : 8백만원** 가. 비행예방센터 숙직비 ・ 1기관×30천원×255일 = 8백만원 ○ **기타운영비(210-16) : 258백만원** 가. 과운영비 및 비서실운영비 158백만원 나. 축조의 및 격려금 등 100백만원 ○ **직책수행경비(250-02) : 220백만원** 가. 기관장, 과장 월정직책급 220백만원	558	○ **특근매식비(210-05) : 72백만원** 가. 수용사고방지 비상훈련 매식비 19백만원 나. 야근자 특근매식비 등 53백만원 ○ **일숙직비(210-06) : -** ○ **기타운영비(210-16) : 261백만원** 가. 과운영비 및 비서실운영비 158백만원 나. 축조의 및 격려금 등 103백만원 ○ **직책수행경비(250-02) : 225백만원** 가. 기관장, 과장 월정직책급 225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3~2027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 해당없음

③ 향후(2027년도 이후) 기대효과 : 30개 소년보호기관 운영경비 지원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해당없음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 해당없음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해당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해당없음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2) 동 사업에 대한 부처 자체평가 결과 : 해당없음

13) 2026년도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 결과 및 후속 조치 현황 : 해당없음

14) 부처 건의사항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3	2,710	-	2,710	-	-	-	2,710	2,685	99.1	99.1	-	25
2024	2,745	-	2,745	-	-	-	2,745	2,694	98.1	98.1	-	51
2025	2,843	-	2,843	-	△70	-	2,773	2,616	92.0	94.3	-	157
2026	2,995	-	2,995	-	-	-	2,995	1,873	62.5	62.5	-	-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 해당없음

2) 주요 결산사항

□ 2023~2026년 결산사항

2023	- 불용 : 상용임금 등 25백만원
2024	- 불용 : 상용임금 등 51백만원
2025	- 이용 : 교정기관 공공요금 부족으로 70백만원 감액 - 불용 : 공무직 인건비 130백만원, 직무수행경비 19백만원 등 157백만원
2026	- 해당없음

□ 2026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

□ 2026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 해당없음

사 업 명
치료감호소운영기본경비(총액) (7018-208)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일반회계	020	022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18	208
명칭	법무및검찰행정지원	소속기관기본경비	치료감호소운영기본경비(총액)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6예산 시 소관
	O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치료감호소 운영기본경비 (총액)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범죄예방정책국	오상섭	원학재	정재희
		범죄예방기획과	02-2110-3570	02-2110-3574	02-2110-3787
	사업시행주체	국립법무병원	-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년 결산	2026년 예산		2027년		증감	
		본예산(A)	추경	요구안	조정안(B)	(B-A)	(B-A)/A
치료감호소운영 기본경비(총액)	643	670	670	690	664	△6	△0.9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5					2026(2026.7월말)							2027 예산안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661	661	643	-	18	670	670	490	670	490	-	-	664
· 공무직 인건비	495	495	492	-	3	502	502	406	502	406	-	-	516
· 기관운영관리	166	166	151	-	15	168	168	83	168	83	-	-	148
○ 비목별 분류(합계)	661	661	643	-	18	670	670	490	670	490	-	-	664
· 상용임금(110-03)	59	59	59	-	-	65	65	41	65	41	-	-	76
· 특근매식비(210-05)	9	6	4	-	2	11	11	4	11	4	-	-	11
· 일숙직비(210-06)	20	20	17	-	3	20	20	-	20	-	-	-	-
· 복리후생비(210-12)	359	359	356	-	3	359	359	330	359	330	-	-	359
· 기타운영비(210-16)	60	63	63	-	-	60	60	34	60	34	-	-	60
· 직무수행경비(250-02)	77	77	67	-	10	77	77	45	77	45	-	-	77
· 고용부담금(320-09)	77	77	77	-	-	78	78	35	78	35	-	-	81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661	661	643	-	18	670	670	490	670	490	-	-	664
· 공무직 인건비	495	495	492	-	3	502	502	406	502	406	-	-	516
- 상용임금(110-03)	59	59	59	-	-	65	65	41	65	41	-	-	76
- 복리후생비(210-12)	359	359	356	-	3	359	359	330	359	330	-	-	359
- 고용부담금(320-09)	77	77	77	-	-	78	78	35	78	35	-	-	81
· 기관운영관리	166	166	151	-	15	168	168	83	168	83	-	-	148
- 특근매식비(210-05)	9	6	4	-	2	11	11	4	11	4	-	-	11
- 일숙직비(210-06)	20	20	17	-	3	20	20	-	20	-	-	-	-
- 기타운영비(210-16)	60	63	63	-	-	60	60	34	60	34	-	-	60
- 직무수행경비(250-02)	77	77	67	-	10	77	77	45	77	45	-	-	77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o 국립법무병원 기관 운영을 위한 공무직 인건비, 기타운영비 등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치료감호법 및 동법시행령, 시행규칙, 법무부와그소속직제 및 동시행규칙

② 추진경위

- 1987.11. 치료감호소 개청(대통령령 제12232호)
- 1997. 1. 병원명칭사용(국립감호정신병원, 법무부훈령 제385호)
- 2004. 1. 약물중독재활센터 개관(대통령령 제18252호)
- 2006. 7. 병원명칭변경(국립법무병원, 법무부훈령 제560호)
- 2022. 7. 치료감호법 개정(치료감호소→국립법무병원)
- 2023. 10. 중증환자 집중치료병동 완공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단위: 백만원)

연도	2023	2024	2025	2026	2027(안)
사업비	656	658	661	670	664

- 기타: 국립법무병원 직원 정원 461명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범죄예방정책국 국립법무병원
- 사업 수혜자 : 국립법무병원 소속 공무원 및 공무직 근로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7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국립법무병원 공무직 인건비

: (2026 본예산) 502백만원 → (2027 요구) 516백만원, 14백만원 증액

- (요구) 공무직 처우개선분을 반영한 상용임금, 고용부담금 등 증액 요구
- (산출) 상용임금 11백만원 증액, 고용부담금 3백만원 증액

ㅇ 2026년도 예산 및 2027년도 예산안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6년 본예산		2027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502	○ **상용임금(110-02) : 65백만원** 가. 사무보조원 인건비 ・ 2명×2,708천원×12월 = 65백만원 ○ **복리후생비(210-12) : 359백만원** 가. 직원 맞춤형 복지비 343백만원 나. 동호회활동 및 출산장려 16백만원 ○ **고용부담금(320-09) : 78백만원** 가. 전공의 보험료 및 퇴직금 65백만원 나. 공무직 보험료 및 퇴직금 13백만원	516	○ **상용임금(110-02) : 76백만원** 가. 사무보조원 인건비 ・ 2명×2,708천원×12월 = 76백만원 ○ **복리후생비(210-12) : 359백만원** 가. 직원 맞춤형 복지비 343백만원 나. 동호회활동 및 출산장려 16백만원 ○ **고용부담금(320-09) : 81백만원** 가. 전공의 보험료 및 퇴직금 65백만원 나. 공무직 보험료 및 퇴직금 16백만원

② 국립법무병원 운영관리

: (2026 본예산) 168백만원 → (2027 요구) 148백만원, 20백만원 감액

- (요구) 국립법무병원 당직체계 개편에 따른 일숙직비 감액 요구
- (산출) 일숙직비 20백만원 감액

ㅇ 2026년도 예산 및 2027년도 예산안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6년 본예산		2027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68	○ **특근매식비(110-02) : 11백만원** 가. 비상소집 및 야근자 매식비 11백만원 ○ **일숙직비(210-06) : 20백만원** 가. 청사 숙직비 20백만원 ○ **기타운영비(110-02) : 60백만원** 가. 과운영비 및 비서실운영비 29백만원 나. 시험관리비 등 31백만원 ○ **직책수행경비(250-02) : 77백만원** 가. 기관장, 과장 월정직책급 77백만원	148	○ **특근매식비(110-02) : 11백만원** 가. 비상소집 및 야근자 매식비 11백만원 ○ **일숙직비(210-06) : -** ○ **기타운영비(110-02) : 60백만원** 가. 과운영비 및 비서실운영비 29백만원 나. 시험관리비 등 31백만원 ○ **직책수행경비(250-02) : 77백만원** 가. 기관장, 과장 월정직책급 77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3~2027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 해당없음

③ 향후(2027년도 이후) 기대효과 : 국립법무병원 운영경비 지원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해당없음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 해당없음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해당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해당없음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2) 동 사업에 대한 부처 자체평가 결과 : 해당없음

13) 2026년도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 결과 및 후속 조치 현황 : 해당없음

14) 부처 건의사항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3	656	-	656	-	-	-	656	648	98.8	98.8	-	8
2024	658		658	-	-	-	658	637	96.8	96.8	-	21
2025	661	-	661	-	-	-	661	643	97.3	97.3	-	18
2026	670	-	670	-	-	-	670	490	73.1	73.1	-	-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 해당없음

2) 주요 결산사항

□ 2023~2026년 결산사항

2023	- 불용 : 8백만원 불용
2024	- 불용 : 일숙직비 10백만원, 직무수행경비 11백만원 등 21백만원
2025	- 불용 : 일숙직비 3백만원, 직무수행경비 10백만원 등 18백만원
2026	- 해당없음

□ 2026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

□ 2026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 해당없음

사 업 명
보호관찰소운영 기본경비(총액) (7018-209)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일반회계	020	022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18	209
명칭	법무및검찰행정지원	소속기관기본경비(일반)	보호관찰소운영기본경비(총액)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6예산 시 소관
	O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보호관찰소운영 기본경비(총액)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범죄예방정책국	오상섭	원학재	주영광
		범죄예방기획과	02-2110-3570	02-2110-3574	02-2110-3577
	사업시행주체	법무부	-	-	-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년 결산	2026년 예산		2027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요구안	조정안(B)		(B-A)/A
보호관찰소운영 기본경비(총액)	5,488	5,915	5,915	6,458	6,458	543	9.2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25					2026(2026.7월말)							2027 예산안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5,598	5,548	5,488	-	60	5,915	5,915	3,918	5,915	3,918	-	-	6,458
· 사무원 보수	1,954	1,954	1,952	-	3	2,131	2,131	1,241	2,131	1,241	-	-	2,494
· 맞춤형복지 등 운영비	2,878	2,877	2,856	-	21	2,979	2,979	2,119	2,979	2,119	-	-	3,078
· 직무수행경비	374	374	351	-	24	374	374	208	374	208	-	-	374
· 고용부담금 등	391	341	330	-	11	431	431	350	431	350	-	-	511
○ 비목별 분류(합계)	5,598	5,548	5,488	-	60	5,915	5,915	3,918	5,915	3,918	-	-	6,458
· 상용임금(110-03)	1,954	1,954	1,952	-	3	2,131	2,131	1,241	2,131	1,241	-	-	2,494
· 특근매식비(210-05)	242	301	301	-	-	311	311	153	311	153	-	-	389
· 일숙직비(210-06)	245	217	209	-	8	240	240	18	240	18	-	-	15
· 복리후생비(210-12)	1,912	1,852	1,839	-	13	1,912	1,912	1,655	1,912	1,655	-	-	2,125
· 기타운영비(210-16)	479	507	507	-	-	516	516	293	516	293	-	-	549
· 직책수행경비(250-02)	374	374	351	-	24	374	374	208	374	208	-	-	374
· 고용부담금(320-09)	391	341	330	-	11	431	431	350	431	350	-	-	511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5,598	5,548	5,488	-	60	5,915	5,915	3,918	5,915	3,918	-	-	6,458
· 사무원 보수	1,954	1,954	1,952	-	3	2,131	2,131	1,241	2,131	1,241	-	-	2,494
-상용임금(110-03)	1,954	1,954	1,952	-	3	2,131	2,131	1,241	2,131	1,241	-	-	2,494
· 맞춤형복지 등 운영비	2,878	2,877	2,856	-	21	2,979	2,979	2,119	2,979	2,119	-	-	3,078
-특근매식비(210-05)	242	301	301	-	-	311	311	153	311	153	-	-	389
-일숙직비(210-06)	245	217	209	-	8	240	240	18	240	18	-	-	15
-복리후생비(210-12)	1,912	1,852	1,839	-	13	1,912	1,912	1,655	1,912	1,655	-	-	2,125
-기타운영비(210-16)	479	507	507	-	-	516	516	293	516	293	-	-	549
· 직무수행경비	374	374	351	-	24	374	374	208	374	208	-	-	374
-직책수행경비(250-02)	374	374	351	-	24	374	374	208	374	208	-	-	374
· 고용부담금 등	391	341	330	-	11	431	431	350	431	350	-	-	511
-고용부담금(320-09)	391	341	330	-	11	431	431	350	431	350	-	-	511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사무원 보수)** 보호관찰소 행정 보조업무 수행 공무직 근로자 상용임금 지원
- **(맞춤형복지 등 운영비)** 보호관찰소 당직자 및 초과근무자 지원, 복리후생비, 과운영비 등 지원
- **(직무수행경비)** 보호관찰소 직원 중 직책을 지닌 직원 대상 직무상 소요경비를 지원
- **(고용부담금)** 보호관찰소에서 행정 보조업무를 수행 공무직 근로자 보험료 등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② 추진경위

- '88.12.31. 보호관찰법 제정
- '89. 7. 1. 전국 보호관찰소·심사위원회 설치
- '95. 1. 5.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정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단위: 백만원)

연도	2023	2024	2025	2026	2027(안)
사업비	5,398	5,484	5,598	5,915	6,458

- 기타 :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58개 보호관찰소, 6개 보호관찰심사위원회, 2개 위치추적관제센터
- 사업 수혜자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7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

① 사무원 보수

: (2026 본예산) 2,131백만원 → (2027 요구) 2,494백만원, 363백만원 증액

- (요구) 공무직 처우개선분을 반영한 상용임금 증액 요구
- (산출) 기본급 등 처우개선분 363백만원 증액

ㅇ 2026년도 예산 및 2027년도 예산안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6년 본예산		2027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2,131	○ **상용임금(110-03) : 2,131백만원** 가. 사무보조원 보수 ・ 69명×2,573천원×12월 = 2,131백만원	2,494	○ **상용임금(110-03) : 2,494백만원** 가. 사무보조원 보수 ・ 69명×3,012천원×12월 = 2,494백만원

② 맞춤형복지 등 운영비

: (2026 본예산) 2,979백만원 → (2027 요구) 3,078백만원, 99백만원 증액

- (요구) 특근매식비, 복리후생비 등 증액 외에 보호관찰기관 운영을 위한 경비 전년 수준 요구
- (산출) 직제 정원 증가에 따른 특근매식비, 복리후생비 등 324백만원 증액
  공무원 당직제도 개편 따른 일숙직비 225백만원 감액

ㅇ 2026년도 예산 및 2027년도 예산안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6년 본예산		2027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2,979	○ **특근매식비(210-05) : 311백만원** 가. 초과근무 직원 매식비 : 311백만원 ・ 60기관×6명×9천원×8일×12월 = 311백만원	3,078	○ **특근매식비(210-05) : 389백만원** 가. 초과근무 직원 매식비 : 389백만원 ・ 60기관×6명×9천원×10일×12월 = 389백만원
	○ **일숙직비(210-06) : 240백만원**		○ **일숙직비(210-06) : 15백만원**
	○ **복리후생비(210-12) : 1,912백만원** 가. 직원 및 공무직 맞춤형복지비 등 : 1,912백만원		○ **복리후생비(210-12) : 2,125백만원** 가. 직원 및 공무직 맞춤형복지비 등 : 2,125백만원
	○ **기타운영비(210-16) : 516백만원** 가. 과운영비 ・ 129과×208천원×12월 = 322백만원 나. 직원 격려 및 채용 관련 수당 등 ・ 60기관×269천원×12월 = 194백만원		○ **기타운영비(210-16) : 549백만원** 가. 과운영비 ・ 129과×208천원×12월 = 322백만원 나. 직원 격려 및 채용 관련 수당 등 ・ 60기관×315천원×12월 = 227백만원

③ 직무수행경비

: (2026 본예산) 374백만원 → (2027 요구) 374백만원, 전년동

ㅇ 2026년도 예산 및 2027년도 예산안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6년 본예산		2027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374	○ **직책수행경비(250-02) : 374백만원** 가. 기관장 ・ 60명×300천원×12월 = 216백만원 나. 보조기관 ・ 97명×136천원×12월 = 158백만원	374	○ **직책수행경비(250-02) : 374백만원** 가. 기관장 ・ 60명월×300천원×12 = 216백만원 나. 보조기관 ・ 97명×136천원×12월 = 158백만원

④ 고용부담금

: (2026 본예산) 431백만원 → (2027 요구) 511백만원, 80백만원 증액

- (요구) 상용임금 증액에 따른 고용부담금 증액 요구
- (산출) 공무직 처우개선에 따른 고용부담금 증액 80백만원 증액

ㅇ 2026년도 예산 및 2027년도 예산안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6년 본예산		2027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431	○ **고용부담금(320-09) : 431백만원** 가. 국민연금 등 보험료 : 431백만원	511	○ **고용부담금(320-09) : 511백만원** 가. 국민연금 등 보험료 : 511백만원

4) 사업효과 : 해당없음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해당없음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 해당없음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해당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해당없음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2) 동 사업에 대한 부처 자체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3) 2026년도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 결과 및 후속 조치 현황 : 해당없음

14) 부처 건의사항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3	5,398	-	5,398	-	157	-	5,555	5,373	99.5	96.7	-	182
2024	5,484	-	5,484	-	-	-	5,484	5,357	97.7	97.7	-	127
2025	5,598	-	5,598	-	△50	-	5,548	5,489	98.1	98.9	-	59
2026	5,915	-	5,915	-	-	-	5,915	3,918	66.2	66.2	-	-

2) 주요 결산사항

□ 2023~2026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3	- 전용 : 청년 인턴 고용에 따른 일용임금 전용 증액 157백만원 - 불용 : 고용부담금 133, 공무직 보수 12, 직책수행경비 11, 일용임금 9 등 182백만원
2024	- 불용 : 고용부담금 51, 공무직 보수 22, 복리후생비 30, 직책수행경비 12 등 127백만원
2025	- 전용 : 교도소 공공요금 부족으로 전용 감액 50백만원 - 불용 : 고용부담금 및 공무직 보수 등 59백만원
2026	-

□ 2026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

□ 2026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 해당없음

사 업 명
출입국외국인관서운영 기본경비 (7018-25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		020	022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18	250
명칭	법무및검찰행정지원	소속기관기본경비(일반)	출입국외국인관서운영기본경비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6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출입국외국인 관서운영 기본경비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	유성오	김원희	이윤주
		출입국기획과	02-2110-4010	02-2110-4026	02-2110-4367
	사업시행주체	법무부	-	-	-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년 결산	2026년 예산		2027년		증감 (B-A)	(B-A)/A
		본예산(A)	추경	요구안	조정안(B)		
출입국외국인관서 운영기본경비	11,040	11,013	11,013	11,357	11,357	344	3.1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25					2026(2026.7월말)							2027 예산안
	예산액(추경)	예산현액	집행액[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현액	집행액[실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예상액	불용예상액	
									예산현액	집행액[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11,003	11,108	11,040	-	68	11,013	11,007	6,486	11,007	6,486	-	-	11,357
・출입국외국인관서운영기본경비	11,003	11,108	11,040	-	68	11,013	11,007	6,486	11,007	6,486	-	-	11,357
○ 비목별 분류(합계)	11,003	11,108	11,040	-	68	11,013	11,007	6,486	11,007	6,486	-	-	11,357
・일반수용비(210-01)	2,917	3,031	3,030	-	1	2,829	2,829	1,953	2,829	1,953	-	-	3,041
・공공요금및제세(210-02)	2,290	2,405	2,400	-	5	2,290	2,290	1,741	2,290	1,741	-	-	2,296
・피복비(210-03)	1,086	925	921	-	4	1,086	1,086	395	1,086	395	-	-	1,211
・급식비(210-04)	212	133	126	-	7	212	206	67	206	67	-	-	138
・임차료(210-07)	92	122	122	-	-	92	92	78	92	78	-	-	142
・유류비(210-08)	1,069	1,105	1,099	-	6	1,069	1,069	636	1,069	636	-	-	1,069
・시설장비유지비(210-09)	750	805	800	-	5	869	869	564	869	564	-	-	770
・국내여비(220-01)	761	754	718	-	36	761	761	455	761	455	-	-	723
・관서업무추진비(240-02)	437	437	436	-	1	416	416	297	416	297	-	-	415
・자산취득비(430-01)	1,390	1,390	1,388	-	2	1,390	1,390	300	1,390	300	-	-	1,553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11,003	11,108	11,040	-	68	11,013	11,007	6,486	11,007	6,486	-	-	11,357
・출입국외국인관서운영기본경비	11,003	11,108	11,040	-	68	11,013	11,007	6,486	11,007	6,486	-	-	11,357
-일반수용비(210-01)	2,917	3,031	3,030	-	1	2,829	2,829	1,953	2,829	1,953	-	-	3,041
-공공요금및제세(210-02)	2,290	2,405	2,400	-	5	2,290	2,290	1,741	2,290	1,741	-	-	2,296
-피복비(210-03)	1,086	925	921	-	4	1,086	1,086	395	1,086	395	-	-	1,211
-급식비(210-04)	212	133	126	-	7	212	206	67	206	67	-	-	138
-임차료(210-07)	92	122	122	-	-	92	92	78	92	78	-	-	142
-유류비(210-08)	1,069	1,105	1,099	-	6	1,069	1,069	636	1,069	636	-	-	1,069
-시설장비유지비(210-09)	750	805	800	-	5	869	869	564	869	564	-	-	770
-국내여비(220-01)	761	754	718	-	36	761	761	455	761	455	-	-	723
-관서업무추진비(240-02)	437	437	436	-	1	416	416	297	416	297	-	-	415
-자산취득비(430-01)	1,390	1,390	1,388	-	2	1,390	1,390	300	1,390	300	-	-	1,553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출입국 소속기관 운영에 소요되는 기본적 경비 수행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출입국외국인관서 기관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지원

② 추진경위 : 출입국기관 운영을 위한 기본적 경비 지원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계속사업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3	2024	2025	2026	2027(안)
사업비	9,892	10,319	11,003	11,013	11,357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법무부
- 사업 수혜자 : 내·외국인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3) 2027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

① 출입국외국인관서운영 기본경비 : ('26) 11,013 → ('27안) 11,357백만원, 344백만원 증액

- 소모품구입 등 기관운영경비 : ('26) 8,446 → ('27안) 8,667백만원 (+221)
- 국내출장 및 이전비 등 : ('26) 761 → ('27안) 723백만원 (△38)
- 대외접촉 및 업무추진비 : ('26) 415 → ('27안) 415백만원 (전년동)
- 공용차량 및 사무용 집기류 구입 : ('26) 1,390 → ('27안) 1,553백만원 (+163)

ㅇ 2026년도 예산 및 2027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6년 예산		'27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1,013백만원	○ **일반수용비(210-01) : 2,828,702천원** 가. 사무용품, 소모품, 각종 수수료 등 : 2,400,600천원 나. 각종 자료인쇄비 : 80,000천원 다. 관복 세탁비 : 150,000천원 라. 타 교육기관 등 위탁교육비 : 111,000천원 마. 각종 위원회 참석비 : 5명*200,000원*4회*22개기관=88,000천원 ○ **공공요금및제세(210-02) : 2,289,565천원** 가. 우편·전화 등 공공요금 : 1,263,000,천원 나. 외국인 체류기간만료 안내 등 문자메시지(SMS) 발송 : 801,600천원 다. 환경개선부담금 : 35,000천원 라. 자동차세 등 제세공과금 : 172,272천원	11,357백만원	○ **일반수용비(210-01) : 3,040,652천원** 가. 사무용품, 소모품, 각종 수수료 등 : 2,573,102천원 나. 각종 자료인쇄비 : 62,434천원 다. 관복 세탁비 : 153,641천원 라. 타 교육기관 등 위탁교육비 : 72,445천원 마. 각종 위원회 참석비 : 144,000천원 바. 승무원등록증 발급 비용 : 3,500매*10,000원=35,000천원 ○ **공공요금및제세(210-02) : 2,295,768천원** 가. 우편·전화 등 공공요금 : 1,267,633천원 나. 외국인 체류기간만료 안내 등 문자메시지(SMS) 발송 : 801,600천원 다. 환경개선부담금 : 35,000천원 라. 자동차세 등 제세공과금 : 172,272천원

'26년 예산		'27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마. 공무원 책임보험료 : 17,693천원 ○ **피복비(210-03) : 1,085,766천원** 가. 출입국공무원 관복 등 : 2,861명×379.5천원=1,085,766천원 ○ **급식비(210-04) : 211,554천원** 가. 급량비 : 92명×7,000원×365일×90%=211,554천원 ○ **임차료(210-07) : 92,400천원** 가. 주재관 임차료 등 : 92,400,000원 ○ **유류비(210-08) : 1,068,826천원** 가. 공용차량 등 유류비 : 46개기관×1,936천원×12월=1,068,826천원 ○ **시설장비유지비(210-09) : 869,470천원** 가. 공용차량 수리비 : 220,900,000원 나. 기타 시설장비 수리 등 유지비 : 46개기관×958천원×12월=528,700천원 ○ **국내여비(220-01) : 761,174천원** 가. 국내출장 여비 : 46개기관×1,023천원×12월=564,674천원 나. 직무교육 여비 : 60,000,000원 다. 인사이동 이전비 등 : 136,500,000원 ○ **관서업무추진비(240-02) : 415,543천원** 가. 대외기관 업무협의 및 간담회 경비 등 : 46개기관×9,509천원=437,413천원 ○ **자산취득비(430-01) : 1,390,000천원** 가. 공용차량 구입 : 10대(중형승합 1, 대형승합 2, 소형승합 5, 중형승용 2)×81,500천원=815,000천원 나. 사무용 집기류 및 비상대기소 공용비품 등 구입 : 46개기관×12,500천원=575,000천원		마. 공무원 책임보험료 : 19,263천원 ○ **피복비(210-03) : 1,210,936천원** 가. 출입국공무원 관복 등 : 1,210,963천원 ○ **급식비(210-04) : 137,970천원** 가. 급량비 : 54명×7,000원×365일=137,970천원 ○ **임차료(210-07) : 142,130천원** 가. 주재관 임차료 등 : 142,130천원 ○ **유류비(210-08) : 1,068,826천원** 가. 공용차량 등 유류비 : 42개기관×2,120천원×12월=1,068,826천원 ○ **시설장비유지비(210-09) : 769,800천원** 가. 공용차량 수리비 : 369,700천원 나. 기타 시설장비 수리 등 유지비 : 42개기관×9,526천원×12월=400,100천원 ○ **국내여비(220-01) : 723,115천원** 가. 국내출장 여비 : 42개기관×1,075천원×12월=541,617천원 나. 직무교육 여비 : 60,000천원 다. 인사이동 이전비 등 : 121,498천원 ○ **관서업무추진비(240-02) : 414,766천원** 가. 대외기관 업무협의 및 간담회 경비 등 : 42개기관×9875천원=414,766천원 ○ **자산취득비(430-01) : 1,553,037천원** 가. 공용차량 구입 : 13대(중형승합 1, 대형승합 2, 소형승합 6, 중형승용 4)×119,464천원=1,553,037천원 나. 사무용 집기류 및 비상대기소 공용비품 등 구입 : 42개기관×12,500천원=578,037천원

4) 사업효과 : 해당사항 없음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사항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기획예산처 편성기준 시달 → 부처 편성 → 기획예산처 심의 → 정부(안)확정 → 국회심의의결 → 예산확정 → 집행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 해당사항 없음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해당사항 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해당사항 없음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사항 없음

12) 동 사업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 : 해당사항 없음

13) 2026년도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 결과 및 후속 조치 현황 : 해당없음

14) 부처 건의사항 : 해당사항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3	9,892	-	9,892	-	264	-	10,156	10,061	101.7	99.1	-	95
2024	10,319	-	10,319	-	400	-	10,719	10,421	101.0	97.2	-	298
2025	11,003	-	11,003	-	105	-	11,108	11,040	100.3	99.4	-	68
2026	11,013	-	11,013	-	△6	-	11,007	6,486	58.8	58.9	-	-

2) 주요 결산사항

□ 2023~2026년 결산사항

2023	○ 전용 : 청사운영에 필요한 공공요금 등 증가에 따른 부담금 소요 부족분 264백만원 전용 증 ○ 불용 : 집행잔액 95백만원
2024	○ 전용 : 체류외국인 증가로 인해 발생한 우편, 전화요금 등 공공요금에 대한 부족분 충당을 위한 전용 증 340백만원, 내역변경 60백만원 ○ 불용 : 집행잔액 298백만원
2025	○ 청사운영에 필요한 공공요금 등 부족분 105백만원 전용 증 ○ 불용 : 집행잔액 68백만원
2026	○ 전용 - '26년 상반기 예산성과금 지급에 대한 포상금 재원 마련을 위해 출입국외국인관서 기본경비 급식비에서 6백만원 전용 감

□ 2026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자체전용 (2026.07.28.)	출입국외국인관서 기본경비 (7018-250)	210-04	6	외국인본부 기본경비 (7011-255)	310-03	예산성과금 지급 (국가재정법 제49조 및 예산성과금규정 제18조 근거)

□ 2026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 해당사항 없음

사 업 명
공소청운영기본경비 (7018-25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법무부	검찰국		020	022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법무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18	252
명칭	법무 및 형사사법행정지원	소속기관기본경비(일반)	공소청운영기본경비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6예산 시 소관
	O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공소청운영 기본경비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검찰국	나하나	검사 구자원	주무관 박성인
		검찰과	02-2110-4190	02-2110-4194	02-2110-4216
	사업시행주체	-	-	-	-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년 결산	2026년 예산		2027년		증감 (B-A)	(B-A)/A
		본예산(A)	추경	요구안	조정안(B)		
공소청운영 기본경비	16,293	16,297	16,297	16,786	10,227	△6,070	△37.2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25					2026(2026.7월말)							2027 예산안
	예산액(추경)	예산현액	집행액[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현액	집행액[실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예상액	불용예상액	
									예산현액	집행액[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16,079	16,393	16,293	-	100	16,297	16,297	9,614	16,297	9,614	-	-	10,227
・운영비(110)	12,422	12,465	12,369	-	97	12,491	12,491	7,102	12,491	7,102	-	-	8,193
・여비(220)	2,383	3,003	3,000	-	3	2,393	2,393	1,886	2,393	1,886	-	-	1,168
・업무추진비(240)	394	394	394	-	0	396	396	175	396	175	-	-	321
・보전금(310)	-	-	-	-	-	137	137	48	137	48	-	-	137
・유형자산(430)	879	531	530	-	1	879	879	402	879	402	-	-	408
○ 비목별 분류(합계)	16,079	16,393	16,293	-	100	16,297	16,297	9,614	16,297	9,614	-	-	10,227
・일반수용비(210-01)	2,125	2,223	2,198	-	25	2,057	2,057	911	2,057	911	-	-	953
・공공요금및제세(210-02)	2,308	2,640	2,635	-	5	2,308	2,308	2,082	2,308	2,082	-	-	1,139
・피복비(210-03)	386	327	319	-	8	414	414	202	414	202	-	-	414
・임차료(210-07)	2,753	2,659	2,655	-	4	2,834	2,834	1,543	2,834	1,543	-	-	1,958
・유류비(210-08)	1,782	1,755	1,716	-	39	1,782	1,782	1,201	1,782	1,201	-	-	1,782
・시설장비유지비(210-09)	818	855	849	-	5	818	818	127	818	127	-	-	698
・복리후생비(210-12)	2,032	1,734	1,725	-	10	2,043	2,043	970	2,043	970	-	-	1,013
・일반용역비(210-14)	170	224	224	-	-	170	170	32	170	32	-	-	170
・기타운영비(210-16)	48	48	47	-	1	65	65	35	65	35	-	-	65
・국내여비(220-01)	2,295	2,915	2,913	-	3	2,295	2,278	1,823	2,278	1,823	-	-	1,089
・국외업무여비(220-02)	88	87	87	-	-	98	115	62	115	62	-	-	79
・관서업무추진비(240-02)	394	394	394	-	-	396	396	175	396	175	-	-	321
・포상금(310-03)	-	-	-	-	-	137	137	48	137	48	-	-	137
・자산취득비(430-01)	879	531	530	-	1	879	879	402	879	402	-	-	408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16,079	16,393	16,293	-	100	16,297	16,297	9,614	16,297	9,614	-	-	10,227
・운영비(110)	12,422	12,465	12,369	-	97	12,491	12,491	7,102	12,491	7,102	-	-	8,193
-일반수용비(210-01)	2,125	2,223	2,198	-	25	2,057	2,057	911	2,057	911	-	-	953
-공공요금및제세(210-02)	2,308	2,640	2,635	-	5	2,308	2,308	2,082	2,308	2,082	-	-	1,139
-피복비(210-03)	386	327	319	-	8	414	414	202	414	202	-	-	414
-임차료(210-07)	2,753	2,659	2,655	-	4	2,834	2,834	1,543	2,834	1,543	-	-	1,958
-유류비(210-08)	1,782	1,755	1,716	-	39	1,782	1,782	1,201	1,782	1,201	-	-	1,782
-시설장비유지비(210-09)	818	855	849	-	5	818	818	127	818	127	-	-	698

	2025					2026(2026.7월말)							2027 예산안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복리후생비(210-12)	2,032	1,734	1,725	-	10	2,043	2,043	970	2,043	970	-	-	1,013
-일반용역비(210-14)	170	224	224	-	-	170	170	32	170	32	-	-	170
-기타운영비(210-16)	48	48	47	-	1	65	65	35	65	35	-	-	65
· 여비(220)	2,383	3,003	3,000	-	3	2,393	2,393	1,886	2,393	1,886	-	-	1,168
-국내여비(220-01)	2,295	2,915	2,913	-	3	2,295	2,278	1,823	2,278	1,823	-	-	1,089
-국외업무여비(220-02)	88	87	87	-	-	98	115	62	115	62	-	-	79
· 업무추진비(240)	394	394	394	-	-	396	396	175	396	175	-	-	321
-관서업무추진비(240-02)	394	394	394	-	-	396	396	175	396	175	-	-	321
· 보전금비(310)	-	-	-	-	-	137	137	48	137	48	-	-	137
-포상금(310-03)	-	-	-	-	-	137	137	48	137	48	-	-	137
· 유형자산(430)	879	531	530	-	1	879	879	402	879	402	-	-	408
-자산취득비(430-01)	879	531	530	-	1	879	879	402	879	402	-	-	408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해당없음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해당없음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3	2024	2025	2026	2027(안)
사업비	14,352	14,711	16,079	16,297	10,227

- 기타: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법무부
- 사업 수혜자 :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7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

① 운영비 : (2026 본예산) 12,491백만원 → (2027 요구) 8,193백만원, 4,298백만원 감액
② 여비 : (2026 본예산) 2,393백만원 → (2027 요구) 1,168백만원, 1,225백만원 감액
③ 업무추진비 : (2026 본예산) 396백만원 → (2027 요구) 321백만원, 75백만원 감액
④ 보전금 : (2026 본예산) 137백만원 → (2027 요구) 137백만원, 전년동
⑤ 유형자산 : (2026 본예산) 879백만원 → (2027 요구) 408백만원, 472백만원 감액

4) 사업효과 : 해당없음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특이사항 없음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 해당없음

사 업 명
법무연수원 기본경비 (7018-254)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법무부	법무연수원	일반회계	020	022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18	254
명칭	법무및검찰행정지원	소속기관기본경비(일반)	법무연수원 기본경비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6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법무연수원 기본경비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법무연수원	서혜주	이자희	조예덕
		총무과	043-531-1540	043-531-1541	043-531-1554
	사업시행주체	-	-	-	-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년 결산	2026년 예산		2027년		증감 (B-A)	(B-A)/A
		본예산(A)	추경	요구안	조정안(B)		
법무연수원 기본경비	4,844	5,309	5,309	4,836	4,836	△473	△8.9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25					2026(2026.7월말)							2027 예산안
	예산액(추경)	예산현액	집행액[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현액	집행액[실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예상액	불용예상액	
									예산현액	집행액[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5,309	5,309	4,844	-	465	5,309	5,309	2,306	5,309	2,306	-	-	4,836
・기본경비	5,309	5,309	4,844	-	465	5,309	5,309	2,306	5,309	2,306	-	-	4,836
○ 비목별 분류(합계)	5,309	5,309	4,844	-	465	5,309	5,309	2,306	5,309	2,306	-	-	4,836
・일반수용비(210-01)	1,444	1,444	1,443	-	1	1,401	1,401	729	1,401	729	-	-	1,401
・공공요금및제세(210-02)	1,169	1,197	1,197	-	-	1,212	1,212	694	1,212	694	-	-	1,291
・피복비(210-03)	171	127	126	-	1	171	171	19	171	19	-	-	30
・급식비(210-04)	406	378	323	-	55	406	406	3	406	3	-	-	406
・임차료(210-07)	341	341	304	-	37	341	341	125	341	125	-	-	113
・유류비(210-08)	761	761	427	-	334	761	761	396	761	396	-	-	645
・시설장비유지비(210-09)	300	300	299	-	1	300	300	186	300	186	-	-	300
・일반용역비(210-14)	-	44	44	-	-	-	-	-	-	-	-	-	-
・국내여비(220-01)	109	109	76	-	33	109	109	35	109	35	-	-	103
・국외업무여비(220-02)	22	22	20	-	2	22	22	-	22	-	-	-	21
・관서업무추진비(240-02)	92	92	92	-	-	92	92	64	92	64	-	-	88
・포상금(310-03)	4	4	4	-	-	4	4	-	4	-	-	-	4
・공사비(420-03)	306	306	305	-	1	306	306	-	306	-	-	-	250
・자산취득비(430-01)	184	184	184	-	-	184	184	55	184	55	-	-	184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5,309	5,309	4,844	-	465	5,309	5,309	2,306	5,309	2,306	-	-	4,836
・기본경비	5,309	5,309	4,844	-	465	5,309	5,309	2,306	5,309	2,306	-	-	4,836
-일반수용비(210-01)	1,444	1,444	1,443	-	1	1,401	1,401	729	1,401	729	-	-	1,401
-공공요금및제세(210-02)	1,169	1,197	1,197	-	-	1,212	1,212	694	1,212	694	-	-	1,291
-피복비(210-03)	171	127	126	-	1	171	171	19	171	19	-	-	30
-급식비(210-04)	406	378	323	-	55	406	406	3	406	3	-	-	406
-임차료(210-07)	341	341	304	-	37	341	341	125	341	125	-	-	113
-유류비(210-08)	761	761	427	-	334	761	761	396	761	396	-	-	645
-시설장비유지비(210-09)	300	300	299	-	1	300	300	186	300	186	-	-	300

	2025					2026(2026.7월말)							2027 예산안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일반용역비(210-14)	-	44	44	-	-	-	-	-	-	-	-	-	-
-국내여비(220-01)	109	109	76	-	33	109	109	35	109	35	-	-	103
-국외업무여비 (220-02)	22	22	20	-	2	22	22	-	22	-	-	-	21
-관서업무추진비 (240-02)	92	92	92	-	-	92	92	64	92	64	-	-	88
-포상금(310-03)	4	4	4	-	-	4	4	-	4	-	-	-	4
-공사비(420-03)	306	306	305	-	1	306	306	-	306	-	-	-	250
-자산취득비(430-01)	184	184	184	-	-	184	184	55	184	55	-	-	184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기본경비) 법무연수원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해당없음

② 추진경위 : 해당없음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3	2024	2025	2026	2027(안)
사업비	4,693	4,951	5,309	5,309	4,836

- 기타: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법무부 법무연수원
- 사업 수혜자 : 법무연수원 공무원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7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

① 기본경비

: ('26) 5,309백만원 → ('27요구) 4,836백만원, 473백만원 감액

- (요구) 기본경비 473백만원 감액 요구
- (산출) 일반수용비 1,401백만원, 공공요금및제세 1,292백만원, 피복비 30백만원, 급식비 406백만원, 임차료 113백만원, 유류비 645백만원, 시설장비유지비 300백만원, 국내여비 103백만원, 국외업무여비 21백만원, 관서업무추진비 88백만원, 포상금 4백만원, 공사비 250백만원, 자산취득비 184백만원

ㅇ 2026년도 예산 및 2027년도 예산안 산출 세부내역 비교

'26년 예산		'27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5,309,000	○ 일반수용비(210-01) : 1,400,611천원 ○ 공공요금및제세(210-02) : 1,212,000천원 ○ 피복비(210-03) : 171,000천원 ○ 급식비(210-03) : 405,700천원 ○ 임차료(210-07) : 341,000천원 ○ 유류비(210-08) : 761,303천원 ○ 시설장비유지비(210-09) : 300,000천원 ○ 국내여비(220-01) : 108,866천원 ○ 국외업무여비(220-02) : 22,237천원 ○ 관서업무추진비(240-02) : 92,383천원 ○ 포상금(310-03) : 3,500천원 ○ 공사비(420-03) : 306,000천원 ○ 자산취득비(430-01) : 184,400천원	4,836,000	○ 일반수용비(210-01) : 1,400,611천원 ○ 공공요금및제세(210-02) : 1,291,686천원 ○ 피복비(210-03) : 30,000천원 ○ 급식비(210-03) : 405,700천원 ○ 임차료(210-07) : 113,000천원 ○ 유류비(210-08) : 644,791천원 ○ 시설장비유지비(210-09) : 300,000천원 ○ 국내여비(220-01) : 103,423천원 ○ 국외업무여비(220-02) : 21,125천원 ○ 관서업무추진비(240-02) : 87,764천원 ○ 포상금(310-03) : 3,500천원 ○ 공사비(420-03) : 250,000천원 ○ 자산취득비(430-01) : 184,400천원

4) 사업효과 : 해당없음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해당없음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 해당없음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2024년 법무연수원의 기타운영비 집행내역에는 업무관련성이 불명확한 격려 목적에 집행하거나, 분기별로 지속적·정기적으로 격려금을 지급하는 등 지침에 맞지 않게 예산을 집행하고 있음(법사위, 24결산)

2) 감사원 지적 : 해당없음

3) 기타 언론 및 민원 : 해당없음

4)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집행 내역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도록 지출자료 관리 방식을 개선하고 격려대상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지급절차 등을 마련하였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해당없음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2) 동 사업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 : 해당없음

13) 2026년도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 결과 및 후속 조치 현황 : 해당없음

14) 부처 건의사항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3	4,693	-	4,693	-	-	-	4,693	4,493	95.7	95.7	-	200
2024	4,951	-	4,951	-	-	-	4,951	4,490	90.7	90.7	-	461
2025	5,309	-	5,309	-	-	-	5,309	4,844	91.2	91.2	-	465
2026	5,309	-	5,309	-	-	-	5,309	2,306	43.4	43.4	-	-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 해당없음

2) 주요 결산사항

□ 2023~2026년 결산사항

2023	- 세목 조정 사유 : 도시가스비 부족 - 불용 사유 : 집행잔액 200백만원
2024	- 세목 조정 사유 : 강사료 및 교재인쇄비 부족 - 불용 사유 : 집행잔액 461백만원
2025	- 세목 조정 사유 : 일반용역비 소요(영상자료 제작) 발생, 공공요금 소요 발생 - 불용 사유 : 집행잔액 465백만원
2026	- 해당없음

□ 2026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

□ 2026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 해당없음

사 업 명
교도소 운영 기본경비 (7018-256)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법무부	교정본부		020	022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18	256
명칭	법무및검찰행정지원	소속기관기본경비(일반)	교도소운영기본경비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O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교도소운영 기본경비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교정본부	주기남	유 진	최재성
		복지과	02-2110-3420	02-2110-3423	02-2110-3499
	사업시행주체	-	-	-	-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년 결산	2026년 예산		2027년		증감	
		본예산(A)	추경	요구안	조정안(B)	(B-A)	(B-A)/A
교도소운영 기본경비	33,016	36,435	36,435	38,275	38,275	1,840	5.1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5					2026(2026.7월말)							2027 예산안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36,257	38,513	38,293 (38,291)	-	222	36,435	36,435	19,771 (19,214)	36,435	19,771 (19,214)	-	-	38,275
・시설유지관리	4,314	4,320	4,320	-	1	4,314	4,156	1,177 (1,172)	4,156	1,177 (1,172)	-	-	4,385
・기관운영경비	31,942	34,192	33,973 (33,971)	-	221	32,120	32,279	18,594 (18,041)	32,279	18,594 (18,041)	-	-	33,890
○ 비목별 분류(합계)	36,257	38,513	38,293 (38,291)	-	222	36,435	36,435	19,771 (19,214)	36,434	19,771 (19,214)	-	-	38,275
・일반수용비(210-01)	6,416	6,774	6,772	-	2	6,223	6,224	3,857 (3,839)	6,224	3,857 (3,839)	-	-	6,939
・공공요금및제세(210-02)	3,849	3,501	3,501 (3,499)	-	2	3,849	3,344	2,808 (2,758)	3,344	2,808 (2,758)	-	-	3,066
・피복비(210-03)	6,563	6,544	6,536	-	8	6,563	6,563	1,845 (1,576)	6,563	1,845 (1,576)	-	-	6,614
・급식비(210-04)	7,347	8,245	8,225	-	19	7,586	7,586	4,569 (4,537)	7,586	4,569 (4,537)	-	-	8,586
・임차료(210-07)	406	405	405	-	-	406	248	38	248	38	-	-	477
・유류비(210-08)	2,752	3,671	3,665	-	6	2,752	3,415	2,532 (2,527)	3,415	2,532 (2,527)	-	-	3,391
・시설장비유지비(210-09)	3,908	3,915	3,915	-	1	3,908	3,908	1,139 (1,134)	3,908	1,139 (1,134)	-	-	3,908
・국내여비(220-01)	2,808	3,208	3,201	-	7	2,808	2,808	1,849	2,808	1,849	-	-	3,082
・관서업무비(240-02)	528	528	528	-	-	528	528	183	528	183	-	-	501
・연구용역비(260-01)	1,152	1,194	1,018	-	176	1,152	1,152	586 (412)	1,152	586 (412)	-	-	1,052
・포상금(310-03)	527	527	527	-	-	659	659	365 (360)	659	365 (360)	-	-	659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36,257	38,513	38,293 (38,291)	-	222	36,435	36,435	19,771 (19,214)	36,434	19,771 (19,214)	-	-	38,275
・시설유지관리	4,314	4,320	4,320	-	1	4,314	4,156	1,177 (1,172)	4,156	1,177 (1,172)	-	-	4,385
- 임차료(210-07)	406	405	405	-	-	406	248	38	248	38	-	-	477
-시설장비유지비(210-09)	3,908	3,915	3,915	-	1	3,908	3,908	1,139 (1,134)	3,908	1,139 (1,134)	-	-	3,908
・기관운영경비	31,942	34,192	33,973 (33,971)	-	221	32,120	32,279	18,594 (18,041)	32,279	18,594 (18,041)	-	-	33,890
-일반수용비(210-01)	6,416	6,774	6,772	-	2	6,223	6,224	3,857 (3,839)	6,224	3,857 (3,839)	-	-	6,939
-공공요금및제세(210-02)	3,849	3,501	3,501 (3,499)	-	2	3,849	3,344	2,808 (2,758)	3,344	2,808 (2,758)	-	-	3,066

	2025					2026(2026.7월말)							2027 예산안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피복비(210-03)	6,563	6,544	6,536	-	8	6,563	6,563	1,845 (1,576)	6,563	1,845 (1,576)	-	-	6,614
-급식비(210-04)	7,347	8,245	8,225	-	19	7,586	7,586	4,569 (4,537)	7,586	4,569 (4,537)	-	-	8,586
-유류비(210-08)	2,752	3,671	3,665	-	6	2,752	3,415	2,532 (2,527)	3,415	2,532 (2,527)	-	-	3,391
-국내여비(220-01)	2,808	3,208	3,201	-	7	2,808	2,808	1,849	2,808	1,849	-	-	3,082
-관서업무비(240-02)	528	528	528	-	-	528	528	183	528	183	-	-	501
-연구용역비(260-01)	1,152	1,194	1,018		176	1,152	1,152	586 (412)	1,152	586 (412)	-	-	1,052
-포상금(310-03)	527	527	527		-	659	659	365 (360)	659	365 (360)	-	-	659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시설 유지관리) 교정기관(지방교정청, 구치소, 교도소) 시설 유지 및 관리 비용 지원
- (기관 운영경비) 교정기관(지방교정청, 구치소, 교도소) 운영에 필요한 기본 경비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세출예산집행지침」

② 추진경위 : 교정기관 및 근무 직원에 대한 운영비 등 지원 필요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3	2024	2025	2026	2027
사업비	34,042	35,353	36,257	36,435	38,275

- 기타: 전국 58개 기관(지방교정청 4, 교도소 39, 구치소 12, 지소 3)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법무부
- 사업 수혜자 : 교정공무원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7년도 예산 산출 근거

□교도소 운영 기본경비 : (2026 예산) 36,435백만원 → (2027 요구) 38,275백만원, +1,840백만원

① 시설 유지관리 **: (2026 예산) 4,314백만원 → (2027 요구) 4,385백만원, +70백만원**
- (요구) 교정기관 시설장비 등 임차료 증액 요구
- (산출) 임차료 70백 증액

② 기관 운영경비 **: (2026 예산) 32,120백만원 → (2027 요구) 33,890백만원, +1,770백만원**
- (요구) 안정적인 교도소 행정지원을 위해 교정공무원의 사기 진작 등 처우개선 예산 요구
- (산출) ① 급식비 1,000백 증액 ② 일반수용비 716백 증액 ③ 유류비 639백 증액 ④ 국내여비 275백 증액 ⑤ 피복비 50백 증액 ⑥ 공공요금및제세 783백 감액 ⑦ 일반연구비 100백 감액 ⑧ 관서업무추진비 27백 감액

ㅇ 2026년도 예산 및 2027년도 예산안 산출 세부내역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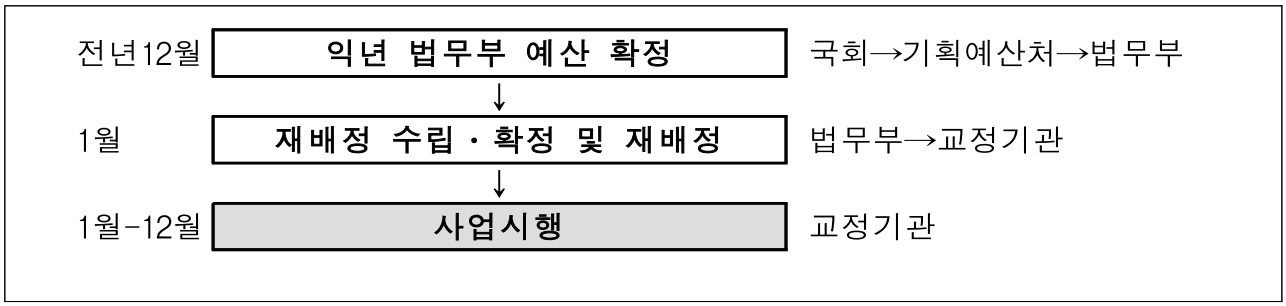
2026년 본예산		2027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36,435 백만원	○ **일반수용비(210-01) : 6,223백만원** 1. 사무용품 및 소모품 구입 : 58기관×2,930천원×12월 2. 교정공무원 교육관련 경비 : 5,800명×60,000원 3. 교정의날 기념품 등 : 17,679명×30,000원 ○ **공공요금비(210-02) : 3,849백만원** 1. 전화 및 우편 요금 : 58기관×1,500천원×12월 2. 계호보안용무선망운용 요금 : 4,990대×30,000원×12월 ○ **피복비(210-03) : 6,563백만원** 1. 교정공무원 일반 제복류 가. 근무복 15,510명×580천원 2. 사복교도관 피복비 1,129명×100천원 3. 상용직 피복비 474명×60천원×2회 ○ **급식비(210-04) : 7,586백만원** 가. 야간근무자 급식 1,543명×13,000×365일 나. 경축일특식 1,543명×5,000×3회×9회 ○ **임차료(210-07) : 406백만원** - **58개 기관**×7,000천원 ○ **유류비(210-08) : 2,752백만원** 1. 난방용 유류 가. 실내 등유 54개 기관×150리터×908원×135일 2. 차량용 유류 가. 휘발유 57개 기관×6리터×1,280원×250일 나. 차량용 경유 54개 기관×100리터×1,150원×250일 ○ **시설장비유지비(210-09) : 3,908백만원** ○ **국내여비(220-01) : 2,808백만원** 1. 사무여비 가. 지방교정청 근무지내외 4기관×2,100천원×12월 2. 교도소, 구치소 가. 근무지 내 출장 54기관×10과×3명×20천원×12월 ○ **업무추진비(240-02) : 528백만원** ○ **일반연구비(260-01) : 1,152백만원** 1. 교정업무관련 실태 조사 등 가. 교정정책(기획, 정책 등) 24,000천원×6회 나. 보안정책(보안, 의료, 분류) 24,000천원×6회 ○ **포상금(310-03) : 659백만원**	38,275 백만원	○ **일반수용비(210-01) : 6,939백만원** 1. 사무용품 및 소모품 구입 : 58기관×3,000천원×12월 2. 교정공무원 교육관련 경비 : 6,000명×60,000원 3. 교정의날 기념품 등 : 17,700명×40,000원 ○ **공공요금비(210-02) : 3,066백만원** 1. 전화 및 우편 요금 : 58기관×1,069천원×12월 2. 계호보안용무선망운용 요금 : 3,648대×30,000원×12월 ○ **피복비(210-03) : 6,563백만원** 1. 교정공무원 일반 제복류 가. 근무복 15,510명×580천원 2. 사복교도관 피복비 1,557명×100천원 3. 상용직 피복비 500명×60천원×2회 ○ **급식비(210-04) : 8,586백만원** 가. 야간근무자 급식 1,626명×14,000×365일 나. 경축일특식 1,626명×5,000×3회×9회 ○ **임차료(210-07) : 476백만원** - **58개 기관**×8,200천원 ○ **유류비(210-08) : 3,391백만원** 2. 난방용 유류 가. 실내 등유 54개 기관×145리터×1,383원×125일 2. 차량용 유류 가. 휘발유 57개 기관×6리터×1,819원×230일 나. 차량용 경유 54개 기관×86리터×1,685원×230일 ○ **시설장비유지비(210-09) : 3,908백만원** ○ **국내여비(220-01) : 3,083백만원** 1. 사무여비 가. 지방교정청 근무지내외 4기관×2,495천원×12월 2. 교도소, 구치소 가. 근무지 내 출장 54기관×10과×5명×20천원×12월 ○ **업무추진비(240-02) : 501백만원** ○ **일반연구비(260-01) : 1,052백만원** 2. 교정업무관련 실태 조사 등 가. 교정정책(기획, 정책 등) 23,500천원×4회 나. 보안정책(보안, 의료, 분류) 23,500천원×4회 ○ **포상금(310-03) : 659백만원**

4) 사업효과 : 해당없음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 해당없음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해당없음

2) 감사원 감사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 해당없음

3) 자체평가·감사 : 해당없음

4)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 해당없음

5)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해당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해당없음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2) 해당사업에 대한 부처 자체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3) 부처 건의사항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3	34,042	-	34,042	25	1,704	-	35,771	35,660	104.8	99.7	209	111
2024	35,353	-	35,353	209	1,610	-	37,172	37,026	104.7	99.6	42	146
2025	36,257	-	36,257	42	2,214	-	38,513	38,305	105.6	99.5	-	206
2026.7	36,435	-	36,435	-	-	-	36,435	19,771	54.2	54.2	-	-

2) 주요 결산사항

□ 2023~2026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 해당없음

□ 2026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2023	- 수용인원 증가에 따른 건강보험 예탁금 부족으로 160백만원 이용 감 - 공무원 신규임용 등 인사이동에 따른 이전여비 등 부족으로 947백만원 전용 증, 유가 상승에 따른 유류비 부족으로 800백만원 내역변경 증, 수용인원 증가에 따른 수용자 계호근무 직원의 급식비 부족으로 117백만원 내역변경 증
2024	- 인사이동 확대 및 소속기관 방문 조사 등 출장 증가로 900백만원 전용 증 - 수용인원 증가에 따른 호송 및 외부진료 유류비 부족으로 840백만원 내역변경 증 - 수용인원 증가에 따른 공공요금 및 건강보험료 부족으로 130백만원 이용 감
2025	- 외부진료 및 야간근무 증가로 직원 급식비 900백만원 내역변경 증, 유류비 914백만원 내역변경 증 - 수용인원 증가로 인한 출장 횟수 증가로 국내여비 400백만원 전용 증
2026	- 사업 진행 중

□ 2026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 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 해당없음

사 업 명
소년원운영 기본경비 (7018-258)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일반회계	020	022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18	258
명칭	법무및검찰행정지원	소속기관기본경비	소년원운영기본경비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6예산 시 소관
	O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소년원운영 기본경비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범죄예방정책국	오상섭	원학재	정재희
		범죄예방기획과	02-2110-3570	02-2110-3574	02-2110-3787
	사업시행주체	소년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년 결산	2026년 예산		2027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요구안	조정안(B)		(B-A)/A
소년원운영기본경비	4,507	4,581	4,581	4,718	4,581	-	전년동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5					2026(2026.7월말)							2027 예산안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4,571	4,521	4,507	-	14	4,581	4,581	1,788	4,581	1,788	-	-	4,581
· 청사시설 유지관리	1,304	1,348	1,347	-	1	1,328	1,328	328	1,328	328	-	-	1,247
· 기관운영관리	3,267	3,173	3,160	-	13	3,253	3,253	1,460	3,253	1,460	-	-	3,334
○ 비목별 분류(합계)	4,571	4,521	4,508	-	14	4,581	4,581	1,788	4,581	1,788	-	-	4,581
· 일반수용비(210-01)	479	627	626	-	1	465	484	311	484	311	-	-	488
· 공공요금(210-02)	673	726	726	-	-	673	684	344	684	344	-	-	673
· 피복비(210-03)	339	219	219	-	-	339	339	-	339	-	-	-	342
· 급식비(210-04)	360	289	289	-	-	360	340	156	340	156	-	-	360
· 임차료(210-07)	97	81	81	-	-	97	97	46	97	46	-	-	97
· 유류비(210-08)	198	206	206	-	-	198	198	99	198	99	-	-	206
· 시설장비유지비(210-09)	494	538	538	-	-	518	518	261	518	261	-	-	519
· 일반용역비(210-14)	547	501	501	-	-	547	537	295	537	295	-	-	576
· 국내여비(220-01)	497	447	435	-	12	497	497	153	497	153	-	-	519
· 국외업무여비(220-02)	38	38	38	-	-	38	38	38	38	38	-	-	36
· 업무추진비(240-02)	39	39	39	-	-	39	39	18	39	18	-	-	37
· 공사비(430-03)	82	82	81	-	1	82	82	21	82	21	-	-	82
· 자산취득비(430-01)	728	728	728	-	-	728	728	46	728	46	-	-	646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4,571	4,521	4,508	-	14	4,581	4,581	1,786	4,581	1,786	-	-	4,581
· 청사시설유지관리	1,304	1,348	1,347	-	1	1,328	1,328	328	1,328	328	-	-	1,247
- 시설장비유지비(210-09)	494	538	538	-	-	518	518	261	518	261	-	-	519
- 공사비(430-03)	82	82	81	-	1	82	82	21	82	21	-	-	82
- 자산취득비(430-01)	728	728	728	-	-	728	728	46	728	46	-	-	646

	2025					2026(2026.7월말)							2027 예산안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관운영관리	3,267	3,173	3,160	-	13	3,253	3,253	1,460	3,253	1,460	-	-	3,334
- 일반수용비(210-01)	479	627	626	-	1	465	484	311	484	311	-	-	488
- 공공요금(210-02)	673	726	726	-	-	673	684	344	684	344	-	-	673
- 피복비(210-03)	339	219	219	-	-	339	339	-	339	-	-	-	342
- 급식비(210-04)	360	289	289	-	-	360	340	156	340	156	-	-	360
- 임차료(210-07)	97	81	81	-	-	97	97	46	97	46	-	-	97
- 유류비(210-08)	198	206	206	-	-	198	198	99	198	99	-	-	206
- 일반용역비(210-14)	547	501	501	-	-	547	537	295	537	295	-	-	576
- 국내여비(220-01)	497	447	435	-	12	497	497	153	497	153	-	-	519
- 국외업무여비 (220-02)	38	38	38	-	-	38	38	38	38	38	-	-	36
- 업무추진비(240-02)	39	39	39	-	-	39	39	18	39	18	-	-	37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o 소년원 및 청소년비행예방센터 기관 운영을 위한 수용비, 여비 등 기본경비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소년법(법률제8722호), 보호소년등의처우에관한법률(법률제8723호)
- 법무부와그소속직제 및 동시행규칙

② 추진경위

- 1942. 4. 조선교정원 개원(현, 서울소년원)
- 1958. 7. 소년법 제정
- 1958. 8. 소년원법 제정(현, 보호소년등의처우에관한법률)
- 2004. 1. 소년원법 개정(소년원 학교의 정규화)
- 2007. 7. 부산, 광주 등 6개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설치
- 2026. 3.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안산지원 개청
- ~ 현재 10개 소년원 및 2개 소년분류심사원, 18개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운영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단위: 백만원)

연도	2023	2024	2025	2026	2027(안)
사업비	4,098	4,284	4,571	4,581	4,581

- 기타: 소년보호기관 30개(소년원 12개, 청소년비행예방센터 18개), 직원 정원 976명, 공무직 288명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범죄예방정책국 소년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 사업 수혜자 : 보호소년, 직원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7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청사시설 유지관리

: (2026 본예산) 1,328백만원 → (2027 요구) 1,247백만원, 81백만원 감액

- (요구) 자산취득비 우선순위 조정을 통한 감액 요구
- (산출) 전기, 통신설비 증가 등에 따른 유지보수비 1백만원 증액
  자산취득비 82백만원 감액

ㅇ 2026년도 예산 및 2027년도 예산안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6년 본예산		2027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328	○ **시설장비유지비(210-09) : 518백만원** 가. 전기, 통신설비 등 유지보수 365백만원 나. 차량 유지보수 등 153백만원 ○ **공사비(420-03) : 82백만원** 가. 사무실 인테리어 등 82백만원 ○ **자산취득비(430-01) : 728백만원** 가. 노후차량 교체비 423백만원 나. 사무기기, 냉난방기 등 구입 305백만원	1,247	○ **시설장비유지비(210-09) : 519백만원** 가. 전기, 통신설비 등 유지보수 366백만원 나. 차량 유지보수 등 153백만원 ○ **공사비(420-03) : 82백만원** 가. 사무실 인테리어 등 82백만원 ○ **자산취득비(430-01) : 646백만원** 가. 노후차량 교체비 458백만원 나. 사무기기, 냉난방기 등 구입 188백만원

② 소년보호기관 운영관리

: (2026 본예산) 3,253백만원 → (2027 요구) 3,334백만원, 81백만원 증액

- (요구) 공통경비 절감 등을 통해 직원식당 위탁사업비, 유류비 및 사무용품, 전산소모품 등 경상경비 증액 요구
- (산출) 일반수용비 23백만원 증액, 피복비 3백만원 증액, 유류비 8백만원 증액, 일반용역비 29백만원 증액
  국내여비 22백만원 증액, 국외여비 2백만원 감액, 관서업무추진비 2백만원 감액

ㅇ 2026년도 예산 및 2027년도 예산안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6년 본예산		2027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3,253	○ **일반수용비(210-01) : 465백만원** 가. 전산소모품, 사무용품 구입비 등 465백만원 ○ **공공요금및제세(210-02) : 673백만원** 가. 자동차세, 화재보험료 등 673백만원 ○ **피복비(210-03) : 339백만원** 가. 소년원 공무원 정복 및 침구류 구입 339백만원 ○ **급식비(210-04) : 360백만원** 가. 야간근무자 급식비 360백만원 ○ **임차료(210-07) : 97백만원** 가. 차량 임차료 97백만원 ○ **유류비(210-08) : 198백만원** 가. 차량 유류비 198백만원 ○ **일반용역비(210-14) : 547백만원** 가. 소년원 교대근무자 식당 위탁사업비 547백만원 ○ **여비(220-00) : 535백만원** 가. 직원교육 출장비 등 국내여비 497백만원 나. 정책과제 자료수집을 위한 국외출장여비 38백만원 ※ 여위탁 전담시설 증설에 따른 증액 편성 ○ **관서업무추진비(240-02) : 39백만원** 가. 관서업무추진비 39백만원	3,334	○ **일반수용비(210-01) : 488백만원** 가. 전산소모품, 사무용품 구입비 등 488백만원 ○ **공공요금및제세(210-02) : 673백만원** 가. 자동차세, 화재보험료 등 673백만원 ○ **피복비(210-03) : 342백만원** 가. 소년원 공무원 정복 및 침구류 구입 342백만원 ○ **급식비(210-04) : 360백만원** 가. 야간근무자 급식비 360백만원 ○ **임차료(210-07) : 97백만원** 가. 차량 임차료 97백만원 ○ **유류비(210-08) : 206백만원** 가. 차량 유류비 206백만원 ○ **일반용역비(210-14) : 576백만원** 가. 소년원 교대근무자 식당 위탁사업비 576백만원 ○ **여비(220-00) : 555백만원** 가. 직원교육 출장비 등 국내여비 519백만원 나. 정책과제 자료수집을 위한 국외출장여비 36백만원 ○ **관서업무추진비(240-02) : 37백만원** 가. 관서업무추진비 37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3~2027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 해당없음

③ 향후(2027년도 이후) 기대효과 : 30개 소년보호기관 운영경비 지원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해당없음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 해당없음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해당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해당없음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2) 동 사업에 대한 부처 자체평가 결과 : 해당없음

13) 2026년도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 결과 및 후속 조치 현황 : 해당없음

13) 부처 건의사항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3	4,098	-	4,098	-	-	-	4,098	4,090	99.8	99.8	-	8
2024	4,284	-	4,284	-	△30	-	4,254	4,218	98.5	99.2	-	36
2025	4,571	-	4,571	-	△50	-	4,521	4,508	98.6	99.7	-	13
2026	4,581	-	4,581	-	-	-	4,581	1,788	39.0	39.0	-	-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 해당없음

2) 주요 결산사항

□ 2023~2026년 결산사항

2023	- 불용 : 급식비 집행잔액 등 8백만원
2024	- 전용 : 보호관찰소 국내여비 부족으로 30백만원 감액 - 불용 : 여비 35백만원, 시설장비유지비 1백만원, 총 36백만원
2025	- 전용 : 보호관찰소 국내여비 부족으로 50백만원 감액 - 불용 : 여비 12백만원, 공사비 1백만원, 총 13백만원
2026	- 해당없음

□ 2026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

□ 2026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 해당없음

사 업 명
치료감호소운영기본경비 (7018-259)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일반회계	020	022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18	259
명칭	법무및검찰행정지원	소속기관기본경비	치료감호소운영기본경비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6예산 시 소관
	O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치료감호소 운영기본경비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범죄예방정책국	오상섭	원학재	정재희
		범죄예방기획과	02-2110-3570	02-2110-3574	02-2110-3787
	사업시행주체	국립법무병원	-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년 결산	2026년 예산		2027년		증감	
		본예산(A)	추경	요구안	조정안(B)	(B-A)	(B-A)/A
치료감호소운영 기본경비	1,278	1,388	1,388	1,430	1,111	△277	△19.9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5					2026(2026.7월말)							2027 예산안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1,388	1,388	1,278	-	110	1,388	1,388	468	1,388	468	-	-	1,111
· 청사시설 유지관리	296	3,56	356	-	-	299	299	161	299	161	-	-	224
· 기관운영관리	1,092	1,032	922	-	110	1,089	1,089	307	1,089	307	-	-	887
○ 비목별 분류(합계)	1,388	1,388	1,278	-	110	1,388	1,388	468	1,388	468	-	-	1,111
· 일반수용비(210-01)	113	168	168	-	-	110	110	45	110	45	-	-	114
· 공공요금(210-02)	323	315	205	-	110	323	323	85	323	85	-	-	210
· 피복비(210-03)	124	124	124	-	-	124	124	7	124	7	-	-	124
· 급식비(210-04)	197	156	156	-	-	197	197	94	197	94	-	-	197
· 유류비(210-08)	177	113	113	-	-	177	177	9	177	9	-	-	83
· 시설장비유지비(210-09)	136	195	195	-	-	139	139	94	139	94	-	-	139
· 일반용역비(210-14)	46	44	44	-	-	46	46	27	46	27	-	-	48
· 국내여비(220-01)	98	98	98	-	-	98	98	34	98	34	-	-	98
· 관서업무추진비(240-02)	14	14	14	-	-	14	14	6	14	6	-	-	13
· 자산취득비(430-01)	160	161	161	-	-	160	160	67	160	67	-	-	85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1,388	1,388	1,278	-	110	1,388	1,388	468	1,388	468	-	-	1,111
· 청사시설 유지관리	296	3,56	356	-	-	299	299	161	299	161	-	-	224
- 시설장비유지비(210-09)	136	195	195	-	-	139	139	94	139	94	-	-	139
- 자산취득비(430-01)	160	161	161	-	-	160	160	67	160	67	-	-	85
· 기관운영관리	1,092	1,032	922	-	110	1,089	1,089	307	1,089	307	-	-	887
- 일반수용비(210-01)	113	168	168	-	-	110	110	45	110	45	-	-	114
- 공공요금(210-02)	323	315	205	-	110	323	323	85	323	85	-	-	210
- 피복비(210-03)	124	124	124	-	-	124	124	7	124	7	-	-	124
- 급식비(210-04)	197	156	156	-	-	197	197	94	197	94	-	-	197
- 유류비(210-08)	177	113	113	-	-	177	177	9	177	9	-	-	83
- 일반용역비(210-14)	46	44	44	-	-	46	46	27	46	27	-	-	48
- 국내여비(220-01)	98	98	98	-	-	98	98	34	98	34	-	-	98
- 관서업무추진비(240-02)	14	14	14	-	-	14	14	6	14	6	-	-	13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o 국립법무병원 기관 운영을 위한 수용비, 여비 등 기본경비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치료감호법 및 동법시행령, 시행규칙, 법무부와그소속직제 및 동시행규칙

② 추진경위

- 1987.11. 치료감호소 개청(대통령령 제12232호)
- 1997. 1. 병원명칭사용(국립감호정신병원, 법무부훈령 제385호)
- 2004. 1. 약물중독재활센터 개관(대통령령 제18252호)
- 2006. 7. 병원명칭변경(국립법무병원, 법무부훈령 제560호)
- 2022. 7. 치료감호법 개정(치료감호소→국립법무병원)
- 2023. 10. 중증환자 집중치료병동 완공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단위: 백만원)

연도	2023	2024	2025	2026	2027(안)
사업비	1,249	1,310	1,388	1,388	1,111

- 기타: 국립법무병원 직원 정원 461명, 공무직 35명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범죄예방정책국 국립법무병원
- 사업 수혜자 : 국립법무병원 소속 공무원 및 공무직 근로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7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청사시설 유지관리

: (2026 본예산) 299백만원 → (2027 요구) 224백만원, 75백만원 감액

- (요구) 사무용 기기 등 우선순위 조정을 통한 자산취득비 감액 요구
- (산출) 자산취득비 75백만원 감액

ㅇ 2026년도 예산 및 2027년도 예산안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6년 본예산		2027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299	○ **시설장비유지비(210-09) : 139백만원** 가. 소방,보일러, 차량 등 유지보수비 139백만원 ○ **자산취득비(430-01) : 160백만원** 가. 노후차량 교체비 90백만원 나. 사무기기, 냉난방기 등 구입 70백만원	224	○ **시설장비유지비(210-09) : 139백만원** 가. 소방,보일러, 차량 등 유지보수비 139백만원 ○ **자산취득비(430-01) : 85백만원** 가. 노후차량 교체비 50백만원 나. 사무기기, 냉난방기 등 구입 35백만원

② 기관운영관리

: (2026 본예산) 1,089백만원 → (2027 요구) 887백만원, 202백만원 감액

- (요구) 직원교육비, 교대근무자 식당 위탁용역비 증액 요구 및 공공요금, 유류비, 관서업추비 감액 요구
- (산출) 일반수용비 4백만원 증액, 일반용역비 2백만원 증액
  공공요금 113백만원 감액, 유류비 94백만원 감액, 관서업추비 1백만원 감액

ㅇ 2026년도 예산 및 2027년도 예산안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6년 본예산		2027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089	○ **일반수용비(210-01) : 110백만원** 가. 전산소모품, 사무용품 구입비 등 110백만원 ○ **공공요금및제세(210-02) : 323백만원** 가. 자동차세, 보험료 등 323백만원 ○ **피복비(210-03) : 124백만원** 가. 근무자 정복 등 124백만원 ○ **급식비(210-04) : 197백만원** 가. 야근자급식비 197백만원 ○ **유류비(210-08) : 177백만원** 가. 청사 난방, 차량유류비 177백만원 ○ **일반용역비(210-14) : 46백만원** 가. 야근근무자 식당위탁사업비 46백만원 ○ **국내여비(220-01) : 98백만원** 가. 직원교육 출장비 등 국내여비 98백만원 ○ **관서업무추진비(240-02) : 14백만원** 가. 관서업무추진비 14백만원	887	○ **일반수용비(210-01) : 114백만원** 가. 전산소모품, 사무용품 구입비 등 114백만원 ○ **공공요금및제세(210-02) : 210백만원** 가. 자동차세, 보험료 등 210백만원 ○ **피복비(210-03) : 124백만원** 가. 근무자 정복 등 124백만원 ○ **급식비(210-04) : 197백만원** 가. 야근자급식비 197백만원 ○ **유류비(210-08) : 83백만원** 가. 청사 난방, 차량유류비 83백만원 ○ **일반용역비(210-14) : 48백만원** 가. 야근근무자 식당위탁사업비 48백만원 ○ **국내여비(220-01) : 98백만원** 가. 직원교육 출장비 등 국내여비 98백만원 ○ **관서업무추진비(240-02) : 13백만원** 가. 관서업무추진비 13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3~2027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 해당없음

③ 향후(2027년도 이후) 기대효과 : 국립법무병원 운영경비 지원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해당없음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 해당없음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해당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해당없음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2) 동 사업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 : 해당없음

13) 2026년도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 결과 및 후속 조치 현황 : 해당없음

13) 부처 건의사항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3	1249	-	1249	-	-	-	1,249	1247	99.8	99.8	-	2
2024	1,310	-	1,310	-	-	-	1,310	1,269	96.9	96.9	-	41
2025	1,388	-	1,388	-	-	-	1,388	1,278	92.1	92.1	-	110
2026	1,388	-	1,388	-	-	-	1,388	468	33.7	33.7	-	-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 해당없음

2) 주요 결산사항

□ 2023~2026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3	- 불용 : 집행잔액 2백만원
2024	- 불용 : 집행잔액 41백만원
2025	- 불용 : 공공요금 110백만원
2026	- 해당없음

□ 2026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

□ 2026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 해당없음

사 업 명
보호관찰소운영 기본경비 (7018-26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일반회계	020	022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600	7011	260
명칭	범죄예방활동	소속기관운영경비(일반)	보호관찰소운영기본경비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6예산 시 소관
	O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보호관찰소 운영 기본경비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범죄예방정책국	오상섭	원학재	주영광
		범죄예방기획과	02-2110-3570	02-2110-3574	02-2110-3577
	사업시행주체	법무부	-	-	-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년 결산	2026년 예산		2027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요구안	조정안(B)		(B-A)/A
보호관찰소운영 기본경비	7,498	7,448	7,448	7,751	7,751	303	4.1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25					2026(2026.7월말)							2027 예산안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7,448	7,498	7,498	-	-	7,448	7,448	4,404	7,448	4,404	-	-	7,751
· 공공요금 등 운영비	5,363	5,363	5,363	-	-	5,382	5,383	3,167	5,383	3,167	-	-	5,407
· 업무상 출장	523	573	573	-	-	523	523	105	523	105	-	-	809
· 관서업무추진경비 등	176	176	176	-	-	176	176	83	176	83	-	-	169
· 사무기기 및 공용차량 등	1,386	1,386	1,386	-	-	1,365	1,365	1,049	1,365	1,049	-	-	1,365
○ 비목별 분류(합계)	7,448	7,498	7,498	-	-	7,448	7,448	4,404	7,448	4,404	-	-	7,751
· 일반수용비(210-01)	762	959	959	-	-	739	739	561	739	561	-	-	744
· 공공요금및제세(210-02)	1,267	1,160	1,160	-	-	1,267	1,267	744	1,267	744	-	-	1,268
· 피복비(210-03)	22	19	19	-	-	26	26	6	26	6	-	-	26
· 급식비(210-04)	276	299	299	-	-	304	304	137	304	137	-	-	314
· 임차료(210-07)	49	49	49	-	-	42	50	27	50	27	-	-	47
· 유류비(210-08)	837	649	649	-	-	823	782	438	782	438	-	-	823
· 시설장비유지비(210-09)	1,049	1,156	1,156	-	-	1,069	1,029	594	1,029	594	-	-	1,071
· 관리용역비(210-15)	1,101	1,072	1,072	-	-	1,112	1,186	660	1,186	660	-	-	1,114
· 국내여비(220-01)	510	560	560	-	-	510	510	92	510	92	-	-	797
· 국외여비(220-02)	13	13	13	-	-	13	13	13	13	13	-	-	12
· 관서업무추진비(240-02)	176	176	176	-	-	176	176	83	176	83	-	-	169
· 자산취득비(430-01)	1,386	1,386	1,386	-	-	1,365	1,365	1,049	1,365	1,049	-	-	1,365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7,448	7,498	7,498	-	-	7,448	7,448	4,404	7,448	4,404	-	-	7,751
· 공공요금 등 운영비	5,363	5,363	5,363	-	-	5,382	5,383	3,167	5,383	3,167	-	-	5,407
-일반수용비(210-01)	762	959	959	-	-	739	739	561	739	561	-	-	744
-공공요금및제세(210-02)	1,267	1,160	1,160	-	-	1,267	1,267	744	1,267	744	-	-	1,268
-피복비(210-03)	22	19	19	-	-	26	26	6	26	6	-	-	26
-급식비(210-04)	276	299	299	-	-	304	304	137	304	137	-	-	314
-임차료(210-07)	49	49	49	-	-	42	50	27	50	27	-	-	47
-유류비(210-08)	837	649	649	-	-	823	782	438	782	438	-	-	823
-시설장비유지비(210-09)	1,049	1,156	1,156	-	-	1,069	1,029	594	1,029	594	-	-	1,071

	2025					2026(2026.7월말)							2027 예산안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관리용역비(210-15)	1,101	1,072	1,072	-	-	1,112	1,186	660	1,186	660	-	-	1,114
· 업무상 출장	523	573	573	-	-	523	523	105	523	105	-	-	809
-국내여비(220-01)	510	560	560	-	-	510	510	92	510	92	-	-	797
-국외여비(220-02)	13	13	13	-	-	13	13	13	13	13	-	-	12
· 관서업무추진경비 등	176	176	176	-	-	176	176	83	176	83	-	-	169
-관서업무추진비(240-02)	176	176	176	-	-	176	176	83	176	83	-	-	169
· 사무기기 및 공용차량 등	1,386	1,386	1,386	-	-	1,365	1,365	1,049	1,365	1,049	-	-	1,365
-자산취득비(430-01)	1,386	1,386	1,386	-	-	1,365	1,365	1,049	1,365	1,049	-	-	1,365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공공요금 등 운영비)** 58개 보호관찰기관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 등 경상비 지원
- **(업무상 출장)** 보호관찰소 직원 교육 등의 여비 지원
- **(관서업무 추진경비)** 보호관찰기관에서 실시하는 각종 협의회 비용 등을 지원
- **(사무기기 및 공용차량 등)** 보호관찰기관 사무용품 및 기기, 공용차량 등을 구매·교체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② 추진경위

- ‘88.12.31. 보호관찰법 제정
- ‘89. 7. 1. 전국 보호관찰소·심사위원회 설치
- ‘95. 1. 5.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정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단위: 백만원)

연도	2023	2024	2025	2026	2027
사업비	6,876	7,118	7,448	7,448	7,751

- 기타 :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58개 보호관찰소, 6개 보호관찰심사위원회, 2개 위치추적관제센터
- 사업 수혜자 : 보호관찰기관 직원 등
-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3) 2027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

① 공공요금 등 운영비

: (2026 본예산) 5,383백만원 → (2027 요구) 5,407백만원, 24백만원 증액

- (요구) 직제정원 증원에 따른 급식비 및 시설장비유비지 외에 경상비 예산 전년 수준의 예산 요구
- (산출) 일반수용비, 공공교금, 급식비, 임차료, 관리용역비 등 24백만원 증액

ㅇ 2026년도 예산 및 2027년도 예산안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6년 본예산		2027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5,383	**○ 일반수용비(210-01) : 739백만원**	5,407	**○ 일반수용비(210-01) : 744백만원**
	○ 공공요금및제세(210-02) : 1,267백만원		**○ 공공요금및제세(210-02) : 1,268백만원**
	○ 피복비(210-03) : 26백만원		**○ 피복비(210-03) : 26백만원**
	○ 급식비(210-04) : 304백만원 가. 야근자 급식비 ・ 119명×7천원×365일 = 304백만원		**○ 급식비(210-04) : 314백만원** 가. 야근자 급식비 ・ 123명×7천원×365일 = 314백만원
	○ 임차료(210-07) : 42백만원		**○ 임차료(210-07) : 47백만원**
	○ 유류비(210-08) : 823백만원		**○ 유류비(210-08) : 823백만원**
	○ 시설장비유지비(210-09) : 1,069백만원 가. 청사 보수 : 639백만원 나. 차량 수리 : 430백만원		**○ 시설장비유지비(210-09) : 1,071백만원** 가. 청사 보수 : 654백만원 나. 차량 수리 : 417백만원
	○ 관리용역비(210-15) : 1,112백만원		**○ 관리용역비(210-15) : 1,114백만원**
	가. 임차청사 관리비 : 856백만원 나. 무인경보시스템 등 운영 : 256백만원		가. 임차청사 관리비 : 850백만원 나. 무인경보시스템 등 운영 : 264백만원

② 업무상 출장비

: (2026 본예산) 523백만원 → (2027 요구) 809백만원, 286백만원 증액

- (요구) 직제정원 증원 및 국내여비 부족분 등을 반영한 증액 요구
- (산출) 국내여비 287백만원 증액, 국외여비 1백만원 감액

ㅇ 2026년도 예산 및 2027년도 예산안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6년 본예산		2027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523	**○ 국내여비(220-01) : 510백만원** 가. 직무 교육 및 유관기관 업무협의 등	809	**○ 국내여비(220-01) : 797백만원** 가. 직무 교육 및 유관기관 업무협의 등

2026년 본예산		2027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 58기관×733천원×12월 = 510백만원		・ 58기관×1,145천원×12월 = 797백만원
	○ **국외여비(220-02) : 13백만원** 가. 미국 보호관찰학회 주최 직무연수 참석 : 13백만원		○ **국외여비(220-02) : 12백만원** 가. 제2회 아시아·태평양 보호관찰 국제회의 참석 : 12백만원

③ 관서업무추진경비

: (2026 본예산) 176백만원 → (2027 요구) 169백만원, 7백만원 감액

- (요구) 공공부문 지출 절감을 위한 업무추진경비 감액 요구

ㅇ 2026년도 예산 및 2027년도 예산안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6년 본예산		2027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76	○ **관서업무추진비(240-02) : 176백만원** 가. 각종 업무추진 및 간담회 경비 등 ・ 60기관×244천원×12월 = 176백만원	169	○ **관서업무추진비(240-02) : 169백만원** 가. 각종 업무추진 및 간담회 경비 등 ・ 60기관×234천원×12월 = 169백만원

④ 사무기기 및 공용차량 등

: (2026 본예산) 1,365백만원 → (2027 요구) 1,365백만원, 전년동

- (요구) 보호관찰기관 사무기기 및 공용차량 등 구입 경비 전년 수준 요구

ㅇ 2026년도 예산 및 2027년도 예산안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6년 본예산		2027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365	○ **자산취득비(430-01) : 1,365백만원** 가. 사무기기 등 구입 : 615백만원 나. 차량 구입비 : 750백만원	1,365	○ **자산취득비(430-01) : 1,365백만원** 가. 사무기기 등 구입 : 615백만원 나. 차량 구입비 : 750백만원

4) 사업효과 : 해당없음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해당없음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 해당없음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해당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해당없음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2) 동 사업에 대한 부처 자체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3) 2026년도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 결과 및 후속 조치 현황 : 해당없음

14) 부처 건의사항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3	6,876	-	6,876	-	-	-	6,876	6,874	100.0	100.0	-	2
2024	7,118	-	7,118	-	-	-	7,118	7,148	100.4	100.4	-	-
2025	7,448	-	7,448	-	50	-	7,498	7,498	100.7	100.0	-	-
2026	7,448	-	7,448	-	-	-	7,448	4,404	59.1	59.1	-	-

2) 주요 결산사항

□ 2023~2026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3	- 불용 : 자산취득비 집행 잔액 2백만원
2024	- 전용 : 보호관찰관 직무 역량 강화 관련 직무교육 활성화로 국내여비 부족에 따른 20백만원 전용
2025	- 전용 : 보호관찰소 국내여비 부족에 따른 50백만원 전용
2026	-

□ 2026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

□ 2026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 해당없음

사 업 명
행정효율성 증진 및 능력개발 (7032-3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법무부	기획조정실	일반회계	020	022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32	300
명칭	법무및검찰행정지원	법무행정개선	행정효율성증진 및 능력개발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6예산 시 소관
	O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행정효율성 증진 및 능력개발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기획조정실	심경보	손장혁	박채원
		혁신행정담당관실	02-2110-3111	02-2110-3110	02-2110-3107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년 결산	2026년 예산		2027년		증감	
		본예산(A)	추경	요구안	조정안(B)	(B-A)	(B-A)/A
행정효율성증진 및 능력개발	542	608	608	608	608	-	-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25					2026(2026.7월말)							2027 예산안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608	608	542	-	66	608	608	127	608	127	-	-	608
· 변화관리교육	495	495	455	-	40	495	495	94	495	94	-	-	495
· 제도개선추진	46	46	26	-	20	46	46	28	46	28	-	-	46
· 자문단 운영	67	67	61	-	6	67	67	5	67	5	-	-	67
○ 비목별 분류(합계)	608	608	542	-	66	608	608	127	608	127	-	-	608
· 일반수용비(210-01)	161	161	150	-	11	161	161	77	161	77	-	-	161
· 임차료(210-07)	2	2	1	-	1	2	2	-	2	-	-	-	2
· 복리후생비(210-12)	6	6	6	-	-	6	6	-	6	-	-	-	6
· 일반용역비(210-14)	393	393	359	-	34	393	393	22	393	22	-	-	393
· 국내여비(220-01)	2	2	1	-	1	2	2	-	2	-	-	-	2
· 국외업무여비(220-02)	8	8	8	-	-	8	8	-	8	-	-	-	8
· 사업추진비(240-01)	13	13	5	-	8	13	13	9	13	9	-	-	13
· 포상금(310-03)	23	23	12	-	11	23	23	19	23	19	-	-	23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608	608	542	-	66	608	608	127	608	127	-	-	608
· 변화관리교육	495	495	455	-	40	495	495	94	495	94	-	-	495
-일반수용비(210-01)	104	104	98	-	6	104	104	72	104	72	-	-	104
-복리후생비(210-12)	6	6	6	-	-	6	6	-	6	-	-	-	6
-일반용역비(210-14)	385	385	351	-	34	385	385	22	385	22	-	-	385
· 제도개선추진	46	46	26	-	20	46	46	28	46	28	-	-	46
-국내여비(220-01)	2	2	1	-	1	2	2	-	2	-	-	-	2
-국외업무여비(220-02)	8	8	8	-	-	8	8	-	8	-	-	-	8
-사업추진비(240-01)	13	13	5	-	8	13	13	9	13	9	-	-	13
-포상금(310-03)	23	23	12	-	11	23	23	19	23	19	-	-	23
· 자문단 운영	67	67	61	-	6	67	67	5	67	5	-	-	67
-일반수용비(210-01)	57	57	52	-	5	57	57	5	57	5	-	-	57
-임차료(210-07)	2	2	1	-	1	2	2	-	2	-	-	-	2
-일반용역비(210-14)	8	8	8	-	-	8	8	-	8	-	-	-	8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변화관리교육)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법무부, 공소청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창의능력 개발 및 변화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운영
- (제도개선추진)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제도 및 절차를 개선하고 그 성과를 공유·확산하여 창의적인 행정문화 조성
- (자문단 운영) 청년세대의 인식 및 요구를 정책 수립 및 시행에 반영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05년 ~ 계속, 정부부처 공통 사업(주관 : 행정안전부)

② 추진경위

- '04년 정부 공통조직인 혁신(인사)기획관실 신설, 운영
- 교육훈련을 통한 공무원 역량강화방안(인사위원회, '04. 10. 22.)
- 「2023년 행정제도 개선 추진계획」 시행 및 행정제도 개선과제 제안 요청(행정안전부, '23. 4. 5.)
- 2023년 제안 활성화 계획 통보 및 설명회 개최 안내(행정안전부, '23. 4. 6.)
- 「청년기본법 시행령」 제21조의2('23. 6. 20.)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05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3	2024	2025	2026	2027(안)
사업비	613	608	608	608	608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법무부 및 공소청
- 사업 수혜자 : 법무직원 및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3) 2027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

① 변화관리교육

: (2026 본예산) 495백만원 → (2027 요구) 495백만원, 전년동

ㅇ 2026년도 및 2027년도 예산안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6년 본예산		2027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495,000	○ **일반수용비(210-01) : 103,844천원** 1. 직원교육관련 운영 경비 80,000천원 2. 각종 사례집 인쇄비 등 15,000천원 3. 사무용품구입 등 8,844천원	495,000	○ **일반수용비(210-01) : 103,844천원** 1. 직원교육관련 운영 경비 80,000천원 2. 각종 사례집 인쇄비 등 15,000천원 3. 사무용품구입 등 8,844천원
	○ **복리후생비(210-12) : 6,000천원** 1. 우수 학습동아리 운영경비 6,000천원		○ **복리후생비(210-12) : 6,000천원** 1. 우수 학습동아리 운영경비 6,000천원
	○ **일반용역비(210-14) : 384,873천원** 1. 변화관리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337,000천원 2. 행사 운영경비 47,873천원		○ **일반용역비(210-14) : 384,873천** 1. 변화관리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337,000천원 2. 행사 운영경비 47,873천원

② 제도개선추진

: (2026 본예산) 46백만원 → (2027 요구) 46백만원, 전년동

ㅇ 2026년도 및 2027년도 예산안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6년 본예산		2027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46,000	○ **국내여비(220-01) : 2,000천원** 가. 업무추진 관련 자료 수집 등 2,000천원	46,000	○ **국내여비(220-01) : 2,000천원** 가. 업무추진 관련 자료 수집 등 2,000천원
	○ **국외업무여비(220-02) : 8,000천원** 1. 선진 행정업무 개선 시스템 현지 조사 8,000천원 가. 항공료 1,500,000 * 2회 나. 숙박비 $240*8일 다. 식비 $150*8일 라. 일비 $84*9일 ※ 단수조정 -349,427원 (환율 1,380원)		○ **국외업무여비(220-02) : 8,000천원** 1. 선진 행정업무 개선 시스템 현지 조사 8,000천원 가. 항공료 1,500,000 * 2회 나. 숙박비 $240*8일 다. 식비 $150*8일 라. 일비 $84*9일 ※ 단수조정 -775,280원 (환율 1,490원)
	○ **사업추진비(240-01) : 12,919천원** 1 행정개선업무 등 추진경비 12,919천원		○ **사업추진비(240-01) : 12,919천원** 1 행정개선업무 등 추진경비 12,919천원
	○ **포상금(310-03) : 23,364천원** 1. 업무유공자 포상금 23,364천원		○ **포상금(310-03) : 23,364천원** 1. 업무유공자 포상금 23,364천원

③ 자문단운영

: (2026 본예산) 67백만원 → (2027 요구) 67백만원, 전년동

ㅇ 2026년도 및 2027년도 예산안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6년 본예산		2027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67,000	○ **일반수용비(210-01) : 57,000천원** 1. 정책모니터링 24,000천원 2. 자문단 회의 22,000천원 3. 세미나 개최 11,000천원	67,000	○ **일반수용비(210-01) : 57,000천원** 1. 정책모니터링 24,000천원 2. 자문단 회의 22,000천원 3. 세미나 개최 11,000천원
	○ **복리후생비(210-12) : 2,000천원** 1. 세미나 개최 2,000천원		○ **복리후생비(210-12) : 2,000천원** 1. 세미나 개최 2,000천원
	○ **일반용역비(210-14) : 8,000천원** 1. 정책토론워크숍 8,000천원		○ **일반용역비(210-14) : 8,000천원** 1. 정책토론워크숍 8,000천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3~2027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3	○ 우수사례 경진대회·표어공모전 실시 - '전자소송에서 공문서 제출을 간편화하는 민소전자문서법 개정' 등 정부혁신 우수사례 9건 선정·포상 - '해외유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형사사법공조를 통해 국내 최초로 환수하다' 등 적극행정 우수사례 7건 선정·포상 - '배려하는 적극행정 배가되는 국민행복', '실천하는 적극행정 실현되는 국민행복' 등 정부혁신·적극행정 우수표어 5건 선정·포상 ○ 창의역량강화 등 변화관리 교육과정 운영 - 총 8개 교육과정 개설·운영, 9,821명 교육 실시
2024	○ 우수사례 경진대회 실시 - '스토커 접근정보 피해자 알림시스템 개발로 피해자 보호 강화' 등 정부혁신 우수사례 17건 선정·포상 - '불필요한 서류는 Down! 편리함은 Up!' 등 적극행정 우수사례 10건 선정·포상 ○ 창의역량강화 등 변화관리 교육과정 운영 - 총 7개 교육과정 개설·운영, 8,605명 교육 실시
2025	○ 우수사례 경진대회·표어공모전 실시 - '과학기술 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탑티어(Top-Tier) 비자 신설' 등 정부혁신 우수사례 8건 선정·포상 - '살인피해 유가족, 다시 삶으로' 등 적극행정 우수사례 6건 선정·포상 - '공감하는 정부, 함께 가는 혁신', '실천하는 적극행정 행동하는 공직사회' 등 정부혁신·적극행정 우수표어 12건 선정·포상 ○ 창의역량강화 등 변화관리 교육과정 운영 - 총 7개 교육과정 개설·운영, 7,507명 교육 실시
2026	○ 우수사례 경진대회·표어공모전 실시 - '스토킹 가해자 위치, 이제 피해자가 직접 본다' 등 정부혁신 우수사례 12건 선정·포상 - '국민 안전과 금융 신뢰를 높인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서비스 확대' 등 적극행정 우수사례 10건 선정·포상 - '법은 바르게, 행정은 빠르게, 국민은 편하게' 등 정부혁신·적극행정 우수표어 4건 선정·포상 ○ 창의역량강화 등 변화관리 교육과정 운영 - 총 7개 교육과정 개설·운영, 6,500명 교육 실시 예정

③ 향후(2027년도 이후) 기대효과

- 변화관리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고 우수인재들의 행정개선 활동으로 법무행정발전과 생산적 공직문화 조성
-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제도 및 절차를 개선하여 선진 법무행정 창출
- 주요 정책에 대해 청년세대의 인식을 전하는 핵심 창구 역할을 수행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창의역량강화 등 변화관리 교육과정 운영**

- ① 교육수요조사 실시 → ② 연간 교육과정운영 계획안 수립 → ③ 교육과정별 세부 추진계획 수립 → ④ 위탁교육과정 계약 체결 → ⑤ 자체 교육 실시

○ **기타 제도개선 등 사업 추진**

- ①(본부) 기본계획 및 과제별 세부추진계획 수립 → ②(소속기관) 계획 이행 및 자율적 개선업무 추진 → ③(소속기관)실적 보고 → ④(본부)실적점검 및 평가 · 보상

○ **자문단 운영**

- ① 운영계획 수립 → ② 자문단 구성 → ③ 자문단 운영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25~2029	608	608	608	608	608	
2026~2030		608	608	608	608	608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해당 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변화관리) 조직구성원의 창의역량 강화 및 자기개발 등 변화관리 교육과정 운영
- (제도개선)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제도 및 절차 개선 추진
- (자문단) 주요 정책에 대해 청년세대의 인식을 전하는 핵심 창구역할을 수행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 없음

12) 동 사업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 : 해당 없음

13) 2026년도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 결과 및 후속 조치 현황 : 해당 없음

14) 부처 건의사항 : 해당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3	613	-	613	-	-	-	613	462	75.4	75.4	-	151
2024	608	-	608	-	-	-	608	532	87.5	87.5	-	76
2025	608	-	608	-	-	-	608	542	89.1	89.1	-	66
2026	608	-	608	-	-	-	608	127	20.9	20.9	-	-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 해당 없음

2) 주요 결산사항

□ 2023~2026년 결산사항

2023	- 불용 사유(집행부진 사유) : 집행잔액(코로나19 상황으로 직원교육 일부 미실시) 및 낙찰차액 151백만원 불용
2024	- 불용 사유(집행부진 사유) : 일반용역비 37백만원(낙찰차액), 국외여비 8백만원(코로나19 우려), 포상금 11백만원(집행잔액) 등 불용
2025	- 불용 사유(집행부진 사유) : 일반용역비 34백만원(낙찰차액), 포상금 11백만원(집행잔액) 등 불용
2026	- 해당 없음

□ 2026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 없음

□ 2026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 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 해당 없음

사 업 명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민원·정책 피드백 (7032-3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법무부	기획조정실	일반회계	020	022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32	300
명칭	법무및검찰행정지원	법무행정개선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민원·정책 피드백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민원·정책 피드백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기획조정실	차유진 센터장	-	신지혜
		행복민원센터	02-2110-4268	-	02-2110-4269
	사업시행주체	-	-	-	-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년 결산	2026년 예산		2027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요구안	조정안(B)		(B-A)/A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민원·정책 피드백	104	120	120	120	120	-	-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25					2026(2026.7월말)								2027 예산안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본예산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120	120	104	-	16	120	120	120	45	120	45	-	6	120
○ 비목별 분류(합계)	120	120	104	-	16	120	120	120	45	120	45	-	6	120
· 일반수용비(210-01)	41	8	6	-	2	41	41	32	8	32	8	-	2	6
· 임차료(210-07)	3	-	-	-	-	3	3	1	-	1	-	-	-	-
· 일반용역비(210-14)	14	40	40	-	-	14	14	25	22	25	22	-	-	38
· 기타운영비(210-16)	6	6	6	-	-	6	6	6	4	6	4	-	-	6
· 국내여비(220-01)	8	8	8	-	-	8	8	8	3	8	3	-	-	8
· 국외업무여비(220-02)	14	14	-	-	14	14	14	14	-	14	-	-	4	14
· 사업추진비(240-01)	21	21	21	-	-	21	21	21	8	21	8	-	-	21
· 일반연구비(260-01)	13	23	23	-	-	13	13	13	-	13	-	-	-	27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민원담당 공무원 교육 등) 민원 담당자의 전문성 강화 등을 통한 양질의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실무 교육 등 진행
- (각종 연구용역 등) 법무행정 서비스 역량강화 및 행정제도 개선사항을 발굴하기 위해 민원만족도 조사 등 민원정책 피드백 추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② 추진경위

- 2013. 4.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추진지침 시행(국무총리 승인, 안행부 시행)
- 2013. 6.~10. '법무부 국민행복 민원 피드백 강화 추진단' 구성·운영
- 2013. 6.~10. '국민을 위한 법무행정 피드백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용역 추진
- 2013. 12. '법무부 행복민원센터' 출범
- 2024. 4.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추진지침 시행(행안부 시행)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3.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3	2024	2025	2026	2027(안)
사업비	120	120	120	120	120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법무부
- 사업 수혜자 : 일반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없음

3) 2027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

① 민원담당 공무원 교육 등
: ('26) 93백만원 → ('27 요구) 93백만원, 전년동

< 2026년도 및 2027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

'26년 예산		'27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93,000	○ **일반수용비(210-01) : 41,100천원** 가. 민원담당 공무원 등 교육 및 워크숍(26,000천원) ・ 200천원×130명=26,000천원 나. 기타 인쇄비 등(15,100천원) ○ **국외업무여비(220-02) : 13,522천원** 가. 민원 정책 피드백 선진사례 자료수집 13,522천원 ○ **임차료(210-07) 등 : 38,378천원**	93,000	○ **일반수용비(210-01) : 기타인쇄비 등(6,000천원)** ○ **일반용역비(210-14) : 38,000천원** 가. 민원담당 공무원 등 교육 및 워크숍(38,000천원) ・ 190천원×200명=38,000천원 ○ **국외업무여비(220-02) : 13,522천원, 전년동** 가. 민원 정책 피드백 선진사례 자료수집 13,522천원 ○ **국내여비(220-01) 등 : 35,478천원**

② 각종 연구용역
: ('26) 27백만원 → ('27 요구) 27백만원, 전년동

< 2026년도 및 2027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

'26년 예산		'27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27,000	○ **일반용역비(260-01) 등 : 전화친절도 점검(14,000천원)** ○ **일반연구비(260-01) 등 : 민원만족도 조사(13,000천원)**	27,000	○ 일반연구**비(260-01) 등 : 27,000천원** **가. 전화친절도 점검(14,000천원)** **나. 민원만족도 조사(13,000천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3~2027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3	○ 국민불편 민원환경 개선 및 민원만족도 향상을 위한 모니터링 활동 ○ 국민신문고 운영(민원, 국민제안, 정책참여) 및 오프라인 민원처리 등 - 민원담당공무원 힐링 워크숍 개최(2회) - 민원담당공무원 전문성 강화 교육(1회) - 민원서비스 포상(부서 20개, 개인 29명) - 국민신문고 전자민원, 우편민원 등 36,021건 ※ '23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 '다' 등급
2024	○ 국민불편 민원환경 개선 및 민원만족 향상을 위한 모니터링 활동 - '24년 민원·정책 현장방문 상반기 4개 기관 현장방문 - '24년 민원환경 개선 필요한 기관 대상 상반기 민원지도 점검 ○ 국민신문고 운영(민원, 국민제안, 정책참여) 및 오프라인 민원처리 등 - 민원담당공무원 힐링 워크숍 개최(2회) - 민원담당공무원 전문성 강화 교육(1회) - 민원서비스 포상(부서 19개, 개인 33명) - 국민신문고 전자민원, 우편민원 34,200건 ※ '24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 '다' 등급

2025	○ 국민불편 민원환경 개선 및 민원만족 향상을 위한 모니터링 활동 - '25년 민원·정책 현장방문 상·하반기 4개 기관 현장방문 - '25년 민원환경 개선 필요한 기관 대상 상·하반기 민원지도 점검 ○ 국민신문고 운영(민원, 국민제안, 정책참여) 및 오프라인 민원처리 등 - 민원담당공무원 힐링 워크숍 개최(2회) - 민원담당공무원 전문성 강화 교육(1회) - 민원서비스 분기별 포상(25년 부서 16개, 개인 26명 대상 580만원 포상) - 국민신문고 전자민원, 우편민원 등 36,401건 ※ '25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 '다' 등급
2026	○ 국민불편 민원환경 개선 및 민원만족 향상을 위한 모니터링 활동 중 (하반기 추가 예정) - '26년 민원·정책 현장방문 상반기 4개 기관 현장방문 - '26년 민원환경 개선 필요한 기관 대상 상반기 민원지도 점검 ○ 국민신문고 운영(민원, 국민제안, 정책참여) 및 오프라인 민원처리 등 - 민원담당공무원 힐링 워크숍 개최(상반기 1회, 하반기 개최 예정) - 민원담당공무원 전문성 강화 교육(상반기 개최) - 민원서비스 분기별 포상, 국민신문고 전자민원, 우편민원 등

③ 향후(2027년도 이후) 기대효과

- 민원담당자 교육 등을 통한 민원업무 전문성 제고, 국민·정책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여 국민불편 사항을 발굴·개선
- 민원서비스 역량 제고를 통한 민원 만족도 향상
- 민원을 유발하는 불합리한 법령, 제도 발굴 및 개선을 통해 국민불편 해소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민원담당 공무원 교육]

- ①사업계획 수립 → ②사업교육 실시 → ③결과보고 및 분석

[각종 연구용역]

- ①사업계획 수립 → ②계약 체결 → ③사업추진 → ④검사 및 검수 → ⑤사업완료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 해당없음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국회(상임위 등)	지적사항	비고
- '24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규정의 취지에 반하여 일반용역비(210-14목)를 컨설팅이나 조사·연구목적의 용역에 사용한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집행이므로 해당 예산을 적정 비목으로 집행할 필요 있음	
	민원 담당자 교육 등을 위하여 매년 1억 2,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고 있으나, 실제 집행액은 1억원에도 미치지 못해 최근 4년간 평균 집행률이 73.3%에 불과한바 연례적 집행 부진 주의 필요	
- 26년도 법무부 소관 예산안 관련 자료 요구	'힐링 워크숍'을 외부 위탁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바 사업의 실제 추진 방식에 부합하도록 일반용역비(210-14)로 편성할 필요 있음	

5)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지적사항	후속 조치사항
· 일반용역비로 집행한 「2024년 전화민원응대 친절도 점검」 용역을 일반연구비에서 집행할 필요	▪ 「2025년 전화민원응대 친절도 점검 」 용역 집행 시 일반용역비(210-14)에서 일반연구비(260-01)로 전용하여 집행 ▪ 27년도 예산 편성 시 '전화민원응대 친절도 점검 용역'을 일반연구비(260-01)로 편성 예정
· 연례적 사업 집행 부진 주의 필요	▪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방문하고자 하는 외국 기관과의 협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여 국외여비 집행이 연례적으로 부진하였던 바 향후에는 집행 부진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음
· '힐링 워크숍' 비용을 일반용역비(210-14)로 편성하여 집행할 필요 있음	▪ 27년 예산안 편성 시 지침에 맞는 비목(일반용역비, 210-14)으로 편성하여 집행하도록 하겠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민원담당자 교육 등을 통한 민원업무 전문성 제고, 국민·정책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여 국민불편 사항을 발굴·개선
- 민원서비스 역량 제고를 통한 민원 만족도 향상
- 민원을 유발하는 불합리한 법령, 제도 발굴 및 개선을 통해 국민불편 해소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2) 동 사업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 : 해당없음

13) 2026년도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 결과 및 후속 조치 현황 : 해당없음

14) 부처 건의사항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3	120	-	120	-	-	-	120	95	79.2	79.2	-	25
2024	120	-	120	-	-	-	120	94	78.3	78.3	-	26
2025	120	-	120	-		-	120	104	86.7	86.7	-	16
2026	120	-	120	-	-	-	120	45	37.5	37.5	-	75

2) 주요 결산사항

□ 2023~2026년 결산사항

2023	- 세목조정 내역 : 일반수용비(14백만 원) → 일반용역비(14백만 원) - 세목조정 사유 : '민원담당 공무원 힐링워크숍'을 민원담당 공무원 스트레스 완화 및 전문성 강화라는 목적에 맞는 전문 외부업체 용역 활용에 따라 일부 세목 금액을 조정 - 불용사유 : 코로나-19로 인해 민원담당자 집합교육 및 국내·외 출장 축소에 따른 미집행 잔액(25백만 원)
2024	- 해당없음
2025	- 세목조정 내역 : 일반수용비(33백만 원) 및 임차료(3백만원) → 일반용역비(36백만 원) - 세목조정 사유 : '민원담당 공무원 힐링워크숍'을 민원담당 공무원 스트레스 완화 및 전문성 강화라는 목적에 맞는 전문 외부업체 용역 활용에 따라 일부 세목 금액을 조정 - 전용 내역 : 일반용역비(10.1백만원) → 일반연구비(10.1백만원) - 전용 사유 : 24회계연도 국회 결산심사 시에 **법무부 전화친절도 점검비용**을 조사·연구 관련 용역임에도 일반연구비(260-01)가 아닌 일반용역비(210-14)로 집행한 부분에 대하여 '주의'를 받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해 일반연구비(260-01)로 전용하여 집행 **※ 지적된 사항을 유념하여 2027년 예산 편성 시 지침에 맞는 비목(일반연구비, 260-01)으로 편성** - 불용사유 : 코로나-19로 인해 민원담당자 집합교육 및 국내·외 출장 축소에 따른 미집행 잔액(16백만 원)
2026	- 세목조정 내역 : 일반수용비(9백만 원) 및 임차료(2백만원) → 일반용역비(11백만 원) - 세목조정 사유 : '민원담당 공무원 힐링워크숍'을 민원담당 공무원 스트레스 완화 및 전문성 강화라는 목적에 맞는 전문 외부업체 용역 활용에 따라 일부 세목 금액을 조정

□ 2026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목조정 (2026.4.17.)	국민불편해소를 위한민원정책 피드백 (7032-301)	210-01,07	11	국민불편해소를 위한민원정책 피드백 (7032-301)	210-14	◦ 힐링워크숍 전문 외부업체 용역 활용에 따라 동 사업 내의 일반수용비에서 일반용역비로 세목조정(11)

사 업 명
행정서비스지원인력경비 (7032-303)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법무부	기획조정실		020	022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32	303
명칭	법무및검찰행정지원	법무행정개선	행정서비스지원인력경비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6예산 시 소관
	O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행정서비스 지원인력경비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기획조정실	강의곤	유재륜(서기관)	최진훈
		기획재정담당관실	02-2110-3099	02-2110-3098	02-2110-3766
	사업시행주체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년 결산	2026년 예산		2027년		증감 (B-A)	(B-A)/A
		본예산(A)	추경	요구안	조정안(B)		
행정서비스 지원인력경비	18,030	20,436	20,436	17,276	17,276	△3,160	△15.4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25					2026(2026.7월말)							2027 예산안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20,107	20,107	18,030	-	2,077	20,436	20,436	11,566	-	-	-		17,276
· 사회복무요원	15,983	15,983	14,049	-	1,934	16,419	16,419	8,891	-	-	-		13,994
· 청년인턴	4,124	4,124	3,981	-	143	4,017	4,017	2,684	-	-	-		3,281
○ 비목별 분류(합계)	20,107	20,107	18,030	-	2,077	20,436	20,436	11,566	-	-	-		17,276
· 상용임금(110-03)	13,478	13,478	12,066	-	1,327	13,478	13,478	7,503	-	-	-		12,066
· 일용임금(110-04)	3,396	3,396	3,465	-	14	3,494	3,494	2,418	-	-	-		2,805
· 일반수용비(210-01)	195	195	122	-	73	97	97	53	-	-	-		134
· 공공요금(210-02)	34	34	20	-	14	34	34	12	-	-	-		20
· 피복비(210-03)	290	290	160	-	130	290	290	73	-	-	-		160
· 급식비(210-04)	1,527	1,527	1,219	-	308	1,963	1,963	965	-	-	-		1,219
· 국내여비(220-01)	806	806	599	-	208	679	679	358	-	-	-		550
· 고용부담금(320-09)	381	381	379	-	5	401	401	183	-	-	-		321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20,107	20,107	18,030	-	2,077	20,436	20,436	11,566	-	-	-		17,276
· 사회복무요원	15,983	15,983	14,049	-	1934	16,419	16,419	8,891	-	-	-		13,994
- 상용임금(110-03)	13,478	13,478	12,066	-	1,413	13,478	13,478	7,503	-	-	-		12,066
- 공공요금(210-02)	34	34	20	-	14	34	34	12	-	-	-		20
- 피복비(210-03)	290	290	160	-	130	290	290	73	-	-	-		160
- 급식비(210-04)	1,527	1,527	1,219	-	308	1,963	1,963	965	-	-	-		1,219
- 국내여비(220-01)	654	654	584	-		654	654	338	-	-	-		529
· 청년인턴	4,124	4,124	3,981	-	143	4,017	4,017	2,674	-	-	-		3,281
- 일용임금(110-04)	3,396	3,396	3,465	-	-69	3,494	3,494	2,418	-	-	-		2,805
- 일반수용비(210-01)	195	195	122	-	73	97	97	53	-	-	-		134
- 국내여비(220-01)	152	152	15	-		25	25	20	-	-	-		21
- 고용부담금(320-09)	381	381	379	-	2	401	401	183	-	-	-		321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행정서비스지원인력경비) 법무부 본부 및 각 소속기관에 배치된 사회복무요원 및 청년인턴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는 것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해당되는 모든 조항의 전체 조문을 기재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17~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3	2024	2025	2026	2027(안)
사업비	10,086	17,993	20,107	20,436	17,276

- 기타 :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법무부
- 사업 수혜자 : 사회복무요원, 청년인턴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7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

① 행정서비스지원인력경비(계속)

: ('26) 20,436백만원 → ('27안) 17,276백만원, 감3,160백만원

- (요구) 원활한 병역의무 수행 및 청년인턴 운영을 위한 소요경비 지원
- (산출) ① 상용임금 : ('26) 13,478 → ('27안) 12,066백만원, 감1,412백만원
  ② 일용임금 : ('26) 3,494 → ('27안) 2,805백만원, 감689백만원
  ③ 일반수용비 : ('26) 97 → ('27안) 134백만원, 증37백만원
  ④ 공공요금및제세 : ('26) 34 → ('27안) 20백만원, 감14백만원
  ⑤ 피복비 : ('26) 290 → ('27안) 160백만원, 감130백만원
  ⑥ 급식비 : ('26) 1,963 → ('27안) 1,219백만원, 감256백만원
  ⑦ 국내여비 : ('26) 679 → ('27안) 550백만원, 감129백만원
  ⑧ 고용부담금 : ('26) 401 → ('27안) 321백만원, 감80백만원

ㅇ 2026년도 예산 및 2027년도 예산안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6년 본예산		2027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20,436	○ **상용임금(110-03) : 13,478백만원** ・ 보수 : 936명×1,200천원×12월 ○ **일용임금(110-04) : 3,494백만원** ・ 보수 : A+B - (A) 240명(6월 근무)×10,320원×209시간 - (B) 60명(3월 근무)×10,320원×209시간 ○ **일반수용비(210-01) : 97백만원** ・ 활동지원비 : 97백만원 ○ **공공요금및제세(210-02) : 34백만원** ・ 단체보험료 : 936명×36천원 ○ **피복비(210-03) : 290백만원** ・ 피복비 : 936명×309,840원 ○ **급식비(210-04) : 1,963백만원** ・ 식대 : 936명×9천원×233일 ○ **국내여비(220-01) : 679백만원** ・ 교통비 : 936명×3천원×233일 ・ 교육 등 출장비 : 25백만원 ○ **고용부담금(320-09) : 401백만원** ・ 4대보험료 : 일용임금×11.22%	17,276	○ **상용임금(110-03) : 12,066백만원** ・ 보수 : 905명×1,111천원×12월 ○ **일용임금(110-04) : 2,805백만원** ・ 보수 : A+B - (A) 185명 x 6개월 x 2,236,300원('27년 최저임금) - (B) 45명 x 3개월 x 2,236,300원('27년 최저임금) ○ **일반수용비(210-01) : 134백만원** ・ 활동지원비 : 134백만원 ○ **공공요금및제세(210-02) : 20백만원** ・ 단체보험료 : 905명×22천원 ○ **피복비(210-03) : 160백만원** ・ 피복비 : 516명×309,840원 ○ **급식비(210-04) : 1,219백만원** ・ 식대 : 905명×9천원×150일 ○ **국내여비(220-01) : 550백만원** ・ 교통비 : 905명×3천원×195일 ・ 교육 등 출장비 : 21백만원 ○ **고용부담금(320-09) : 321백만원** ・ 4대보험료 : 일용임금×11.22%

4) 사업효과 : 해당없음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해당없음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 해당없음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해당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해당없음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2) 동 사업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 : 해당없음

13) 2026년도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 결과 및 후속 조치 현황 : 해당없음

14) 부처 건의사항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3	10,086	-	10,086	-	705	-	10,791	10,487	104.0	97.2	-	304
2024	17,993	-	17,993	-	-	-	17,993	16,205	90.1	90.1	-	1,788
2025	20,107	-	20,107	-	-	-	20,107	18,030	89.7	89.7	-	2,077
2026	20,436	-	20,436	-	-	-	20,436	11,563	56.6	56.6	-	8,873

2) 주요 결산사항

□ 2023~2026년 결산사항

2023	- 軍 처우 개선 기대(보수 인상)에 따라 '23년도 사회복무요원이 대폭 증가(821→897명)하여 법무연수원인건비로부터 705백만원 전용
2024	특이사항 없음
2025	특이사항 없음
2026	특이사항 없음

□ 2026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

□ 2026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 해당없음

사 업 명
양성평등정책 지원 (7032-305)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법무부	기획조정실	일반회계	020	022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32	305
명칭	법무및검찰행정지원	법무행정개선	양성평등정책 지원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6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양성평등 정책 지원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기획조정실	장인자	신한헌	성윤신
		양성평등정책 담당관실	02-2110-3993	02-2110-3994	02-2110-3995
	사업시행주체	-	-	-	-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년 결산	2026년 예산		2027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요구안	조정안(B)		(B-A)/A
양성평등정책 지원	212	213	213	213	213	-	-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25					2026(2026.7월말)							2027 예산안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233	233	212	-	21	213	213	109	213	109	-	-	213
· 양성평등교육비	161	161	141	-	20	161	161	104	161	104	-	-	161
· 연구용역	50	50	49	-	1	30	30	-	30	-	-	-	30
· 운영경비 등	22	22	22	-	-	22	22	5	22	5	-	-	22
○ 비목별 분류(합계)	233	233	212	-	21	213	213	109	213	109	-	-	213
· 일반수용비(210-01)	96	96	93	-	3	96	96	49	96	49	-	-	96
· 일반용역비(210-14)	78	78	61	-	17	78	78	55	78	55	-	-	78
· 국내여비(220-01)	6	6	6	-	-	6	6	3	6	3	-	-	6
· 사업추진비(240-01)	3	3	3	-	-	3	3	2	3	2	-	-	3
· 일반연구비(260-01)	50	50	49	-	1	30	30	-	30	-	-	-	30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233	233	212	-	21	213	213	109	213	109	-	-	213
· 양성평등교육비	161	161	141	-	20	161	161	101	161	101	-	-	161
-일반수용비(210-01)	83	83	80	-	3	83	83	46	83	46	-	-	83
-일반용역비(210-14)	78	78	61	-	17	78	78	55	78	55	-	-	78
· 연구용역	50	50	49	-	1	30	30	-	30	-	-	-	30
-일반연구비(260-01)	50	50	49	-	1	30	30	-	30	-	-	-	30
· 운영경비 등	22	22	22	-	-	22	22	8	22	8	-	-	22
-일반수용비(210-01)	13	13	13	-	-	13	13	3	13	3	-	-	13
-국내여비(220-01)	6	6	6	-	-	6	6	3	6	3	-	-	6
-사업추진비(240-01)	3	3	3	-	-	3	3	2	3	2	-	-	3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양성평등정책 지원) 법무행정의 실질적 양성평등 실현
- (양성평등교육비) 법무부의 특성(법무·검찰 업무 수행)을 고려하여 지속적인 양성평등 교육 실시를 통해 양성평등 문화 정립 및 조직문화 개선
- (연구용역) 성인지적 관점의 법무 정책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 실증적 근거에 기반한 제도 개선
- (운영경비 등) 법무부 양성평등 정책 확산 및 사업 추진을 위한 각종 행사, 위원회 운영, 출장 여비 및 기타 운영 지원 등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양성평등기본법 제2조(양성평등 기본이념), 제18조(성인지 교육), 제19조(성인지교육의 시행), 제37조(양성평등 문화조성),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13조(성인지교육대상, 내용 및 방법 등), 제19조(성희롱 예방교육)

② 추진경위

- '12년부터 '양성평등교육' 예산 확보하여 교육 실시

※ 법무·검찰의 성인지 교육 필요성 지적 등('09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

※ 경직된 조직문화와 소통 부재가 법무·검찰 조직의 큰 문제점으로 지적(법률신문 '12. 4. 3.)

※ '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 위원회' 제5차 권고 사항('18. 7. 16.)

- 법무행정 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및 양성평등 정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19. 5. 7. 양성평등정책담당관실 신설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2.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3	2024	2025	2026	2027(안)
사업비	253	233	233	213	213

- 기타: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법무부
- 사업 수혜자 : 법무·검찰공무원 및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7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

□ **양성평등정책 지원 : (2026 본예산) 213백만원 → (2027 예산안) 213백만원, 전년동**

① 양성평등 교육비

: (2026 본예산) 161백만원 → (2027 예산안) 161백만원, 전년동

- (요구) 법무부 본부 및 소속기관 직원 대상의 지속적인 양성평등교육을 위해 전년 수준의 예산 요구
- (산출) 찾아가는 맞춤형교육(법무연수원 연계교육, 성인지 의무교육 포함) 83백만원
  양성평등 집합교육 78백만원

ㅇ 2026년도 추가경정예산 및 2027년도 예산안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6년 본예산		2027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61	**< 일반수용비(210-01) 83백만원 >** 가. 찾아가는 맞춤형교육(법무연수원 연계교육, 성인지 의무교육 포함) 83백만원 + 400천원 × 207회 = 83백만원 **< 일반용역비(210-14) 78백만원 >** 가. 양성평등 집합교육(관리자 및 실무자 교육) 78백만원 + 330천원 × 26명 ×9회 = 78백만원	161	**< 일반수용비(210-01) 83백만원 >** 가. 찾아가는 맞춤형교육(법무연수원 연계교육, 성인지 의무교육 포함) 83백만원 + 400천원 × 207회 = 83백만원 **< 일반용역비(210-14) 78백만원 >** 가. 양성평등 집합교육(관리자 및 실무자 교육) 78백만원

② 연구용역 등

: (2026 본예산) 30백만원 → (2027 예산안) 30백만원, 전년동

- (요구) 정책지원 사업 내 우선순위 및 양성평등 정책의 조직 확산 효과성을 위한 정책 추진 지속성 고려를 위하여 전년 수준의 예산 요구
- (산출) 양성평등 정책 추진을 위한 연구용역 30백만원

ㅇ 2026년도 예산 및 2027년도 예산안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6년 본예산		2027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30	**○ 일반연구비(260-01) : 30백만원** **가. 법무부 양성평등 정책 추진을 위한 연구용역(30백만원)** **• 30백만원 × 1회 = 30백만원**	30	**○ 일반연구비(260-01) : 30백만원** **가. 법무부 양성평등 정책 추진을 위한 연구용역(30백만원)** **• 30백만원 × 1회 = 30백만원**

③ 운영경비 등

: (2026 본예산) 22백만원 → (2027 예산안) 22백만원, 전년동

- (요구) 법무부 양성평등 의식 및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각종 행사, 위원회, 운영 지원 및 사건조사 등을 위하여 전년 수준의 예산 요구
- (산출) 정책 추진을 위한 운영경비 등 22백만원

ㅇ 2026년도 예산 및 2027년도 예산안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6년 본예산		2027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22	○ 운영경비 등 : 22백만원 가. 양성평등 행사, 위원회 등 운영(210-01) : 13백만원 나. 국내여비(220-01 : 6백만원 다. 정책 추진을 위한 사업추진비(240-01) : 3백만원	22	○ 운영경비 등 : 22백만원 가. 양성평등 행사, 위원회 등 운영(210-01) : 13백만원 나. 국내여비(220-01 : 6백만원 다. 정책 추진을 위한 사업추진비(240-01) : 3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3~2027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3	ㅇ 양성평등교육 250회(6,769명) 교육실시 - 집합교육 : 9회(250명) -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 : 235회(6,090명) - 법무연수원 연계교육 : 6회(429명)
2024	ㅇ 양성평등교육 225회(5,407명) 교육실시 - 집합교육 : 9회(250명) -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 : 202회(4,372명) - 법무연수원 연계교육 : 14회(785명)
2025	ㅇ 양성평등교육 239회(6,009명) 교육실시 - 집합교육 : 9회(251명) -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 : 214회(4,780명) - 법무연수원 연계교육 : 16회(978명)
2026. 7.	ㅇ 양성평등교육 71회(1,898명) 교육실시 - 집합교육 : 7회(186명) -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 : 53회(1,108명) - 법무연수원 연계교육 : 11회(604명)

③ 향후(2027년도 이후) 기대효과

- 지속적인 성인지 교육 및 예방 교육을 통한 양성평등 조직문화 조성 및 개선
- 성별영향평가, 성인지 예·결산 등을 통한 법무행정 정책의 양성평등 관점 반영
-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교육을 통한 성범죄 근절 정책 추진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양성평등교육 시행 - 집합교육(한국양성평등교육원에 위탁운영) : 각 직렬별 주무부서 교육대상자 선발 → 확정 → 교육실시 → 사후설문 조사 → 향후 교육계획에 반영 -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서비스 : 교육신청 소속기관에 강사 지원 - 법무연수원 연계교육 : 법무연수원 직무교육과정에 연계하여 교육, 강사 지원 ○ 법무부 본부 및 소속기관 양성평등 수준 진단 등을 통한 개선사항 발굴 및 양성평등정책 중장기 계획 수립·시행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25~2029	233	213	213	213	213	
2026~2030		213	213	219	225	231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해당없음

2) 감사원 감사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 해당없음

3) 자체평가·감사 : 해당없음

4)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 해당없음

5)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해당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양성평등정책 지원' 사업은 대내·외적으로 지적되어 온 법무·검찰 조직의 소통부재, 권위적·경직적 조직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
- 그동안 법무·검찰공무원에 대한 체계적인 양성평등의식 교육은 전무하였는데, '12년 신규사업으로 예산을 배정받아 교육을 실시하였고, 양성평등정책담당관실이 신설된 '19년부터 교육인원 확대를 추진하고 있음
- 교육생 설문조사 결과, 본 교육이 법무부의 양성평등 의식 제고와 소통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답변하고 있으며, 상당수는 교육기간 연장 및 교육 기회 확대를 희망하고 있음
- 조직 내 여성공무원 증가 및 위계질서를 강조하는 공안조직의 특수성(수사·감호·행형·국적 등)으로 양성평등한 의식 제고가 필수적이므로 향후에도 지속적이고 다양한 방법의 교육이 필요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2) 동 사업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 : 해당없음

13) 2026년도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 결과 및 후속 조치 현황 : 해당없음

14) 부처 건의사항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3	253	-	253	-	-	-	253	251	99.2	99.2	-	2
2024	233	-	233	-	-	-	233	226	97	97	-	7
2025	233	-	233	-	-	-	233	212	91	91	-	21
2026	213	-	213	-	-	-	213	109	51.2	51.2	-	-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 해당없음

2) 주요 결산사항

□ 2023~2026년 결산사항

2023	- 불용 : 2백만원
2024	- 불용 : 7백만원
2025	- 불용 : 21백만원
2026	-

□ 2026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

□ 2026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 해당없음

사 업 명
법무행정정보화(정보화) (7034-5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법무부	기획조정실	일반회계	020	022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34	500
명칭	법무및검찰행정지원	법무행정정보화	법무행정정보화(정보화)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6예산 시 소관
	O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법무행정 정보화 (정보화)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기획조정실	김시은	이수천 서기관	권두현
		정보화데이터 담당관실	02-2110-3150	02-2110-3151	02-2110-3482
	사업시행주체	-	-	-	-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년 결산	2026년 예산		2027년		증감	
		본예산(A)	추경	요구안	조정안(B)	(B-A)	(B-A)/A
법무행정정보화(정보화)	41,337	44,554	44,554	36,712	35,983	△8,571	△19.2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25					2026(2026.7월말)							2027 예산안
	예산액(추경)	예산현액	집행액[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현액	집행액[실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예상액	불용예상액	
									예산현액	집행액[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41,485	41,485	41,337	-	148	44,554	44,554	25,636	44,554	25,636	-	332	35,983
· 법무·정보·사이버보안시스템운영	6,370	6,243	6,243	-	-	5,947	5,947	3,149	5,947	3,149	-	13	5,806
· 범죄예방정보시스템운영	1,931	1,872	1,868	-	4	2,032	2,032	1,138	2,032	1,138	-	8	4,382
· 교정정보시스템운영	6,026	5,952	5,936	-	16	4,489	4,489	2,744	4,489	2,744	-	85	3,937
· 법무정보화기반운영	16,784	16,587	16,483	-	104	16,711	16,711	12,178	16,711	12,178	-	58	17,044
· 차세대 범죄예방정보시스템 구축	8,578	8,578	8,562	-	16	10,462	10,462	5,889	10,462	5,889	-	120	1,767
· 정보화사업(ISP포함)	1,796	2,253	2,245	-	8	4,913	4,913	538	4,913	538	-	48	3,047
○ 비목별 분류(합계)	41,485	41,485	41,337	-	148	44,554	44,554	25,636	44,554	25,636	-	332	35,983
· 상용임금(110-03)	432	432	431	-	1	473	473	306	473	306	-	-	515
· 일반수용비(210-01)	525	525	524	-	1	525	525	226	525	226	-	1	525
· 공공요금및제세(210-02)	5,829	5,657	5,637	-	20	6,031	6,031	5,638	6,031	5,638	-	36	6,041
· 특근매식비(210-05)	23	23	23	-	-	29	29	18	29	18	-	-	29
· 임차료(210-07)	8,322	8,286	8,260	-	26	6,583	6,583	3,690	6,583	3,690	-	-	7,214
· 복리후생비(210-12)	7	7	7	-	-	7	7	4	7	4	-	-	9
· 관리용역비(210-15)	13,074	12,825	12,805	-	20	13,609	13,609	7,419	13,609	7,419	-	106	13,652
· 기타운영비(210-16)	13	13	13	-	-	13	13	5	13	5	-	-	13
· 국내여비(220-01)	29	29	27	-	2	29	29	23	29	23	-	-	29
· 국외업무여비(220-02)	17	17	-	-	17	17	17	-	17	-	-	-	17
· 사업추진비(240-01)	40	40	40	-	-	40	40	20	40	20	-	-	40
· 일반연구비(260-01)	4,419	4,876	4,857	-	19	9,129	9,129	5,168	9,129	5,168	-	48	4,017
· 고용부담금(320-09)	85	85	68	-	17	94	94	28	94	28	-	-	104
· 공사비(420-03)	590	590	582	-	8	590	590	232	590	232	-	-	590
· 자산취득비(430-01)	8,080	8,080	8,063	-	17	7,385	7,385	2,859	7,385	2,859	-	141	3,188

	2025					2026(2026.7월말)							2027 예산안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41,485	41,485	41,337	-	148	44,554	44,554	25,636	44,554	25,636	-	332	35,983
· 법무정보·사이버 보안시스템 운영	6,370	6,243	6,243	-	-	5,947	5,947	3,149	5,947	3,149	-	13	5,806
-임차료(210-07)	684	679	679	-	-	340	340	340	340	340	-	-	-
-관리용역비(210-15)	5,686	5,564	5,564	-	-	5,607	5,607	2,809	5,607	2,809	-	13	5,806
· 범죄예방정보시스템 운영	1,931	1,872	1,868	-	4	2,032	2,032	1,138	2,032	1,138	-	8	4,382
-임차료(210-07)	-	-	-	-	-	-	-	-	-	-	-	-	2,180
-관리용역비(210-15)	1,931	1,872	1,868	-	4	2,032	2,032	1,138	2,032	1,138	-	8	2,202
· 교정정보시스템 운영	6,026	5,952	5,936	-	16	4,489	4,489	2,744	4,489	2,744	-	85	3,937
-임차료(210-07)	2,249	2,243	2,243	-	-	338	338	338	338	338	-	-	-
-관리용역비(210-15)	3,777	3,709	3,693	-	16	4,151	4,151	2,409	4,151	2,409	-	85	3,937
· 법무정보화 기반 운영	16,784	16,587	16,483		104	16,711	16,711	12,178	16,711	12,178	-	58	17,044
-상용임금(110-03)	432	432	431		1	473	473	306	473	306	-	-	515
-일반수용비(210-01)	525	525	524		1	525	525	226	525	226	-	1	525
-공공요금및제세(210-02)	5,829	5,657	5,637		20	6,031	6,031	5,638	6,031	5,638	-	36	6,041
-특근매식비(210-05)	23	23	23		-	29	29	18	29	18	-	-	29
-임차료(210-07)	5,389	5,364	5,338		26	4,847	4,847	3,012	4,847	3,012	-	-	5,034
-복리후생비(210-12)	7	7	7		-	7	7	4	7	4	-	-	9
-관리용역비(210-15)	1,680	1,680	1,680		-	1,680	1,680	1,066	1,680	1,066	-	-	1,707
-기타운영비(210-16)	13	13	13		-	13	13	5	13	5	-	-	13
-국내여비(220-01)	29	29	27		2	29	29	23	29	23	-	-	29
-국외업무여비(220-02)	17	17	-		17	17	17	-	17	-	-	-	17
-사업추진비(240-01)	40	40	40		-	40	40	20	40	20	-	-	40
-고용부담금(320-09)	85	85	68		17	94	94	28	94	28	-	-	104
-공사비(420-03)	590	590	582		8	590	590	232	590	232	-	-	590
-자산취득비(430-01)	2,125	2,125	2,113		12	2,197	2,197	1,600	2,197	1,600	-	21	2,391
· 차세대 범죄예방 정보시스템 구축	8,578	8,578	8,562		16	10,462	10,462	5,889	10,462	5,889	-	120	1,767
-일반연구비(260-01)	3,441	3,441	3,429		12	7,064	7,064	4,630	7,064	4,630	-	-	997
-자산취득비(430-01)	5,137	5,137	5,133		4	3,398	3,398	1,259	3,398	1,259	-	120	770
· 정보화사업(ISP포함)	1,796	2,253	2,245		8	4,913	4,913	538	4,913	538	-	48	3,047
-임차료(210-07)	-	-	-	-	-	1,058	1,058	-		-	-	-	-
-일반연구비(260-01)	978	1,435	1,428		7	2,065	2,065	538	2,065	538	-	48	3,020
-자산취득비(430-01)	818	818	817		1	1,790	1,790	-	1,790	-	-	-	27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법무행정정보화(정보화)) 법무부 주요 정보시스템(내부포털, 보호관찰, 소년보호, 교정정보, 법무연수원 등) 구축·운영관리 및 소속기관(205개) 전산장비·정보통신망·정보보안 운영·유지관리
- (법무정보·사이버보안시스템 운영) 법무정보시스템은 내부포털시스템, 대표홈페이지, e-Learning시스템 등으로 구성되어 법무부 직원들이 사용하는 업무시스템으로 공통업무 및 대국민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사이버보안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법무사이버안전센터는 본부 및 205개 소속기관의 정보시스템, PC 및 네트워크의 사이버공격에 대한 분석·탐지(보안관제) 등을 위한 시스템 구축·운영을 지원
- (범죄예방정보시스템 운영) 범죄예방정보시스템은 보호관찰기관, 소년보호기관, 국립법무병원에서 사용하는 업무시스템으로 보호관찰대상자, 소년보호대상자 및 관련 내부업무, 민원서비스 등에 대한 포괄적인 업무를 지원
- (교정정보시스템 운영) 교정정보시스템은 교정기관에 수용된 수용자의 입소에서 출소까지 전반적인 교정행정업무 관리를 위해 교정직원, 수용자 및 대국민을 대상으로 관련 내부업무 및 민원서비스 등에 대한 업무를 지원
- (법무정보화 기반운영) 법무정보화 기반 운영 사업은 법무부 본부 및 205개 소속기관의 정보통신망, 정보보안 및 전산장비 운영·유지관리를 통해 고객 중심의 법무행정 지원 기반 강화를 지원
- (차세대 범죄예방정보시스템 구축) 노후화된 범죄예방정보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클라우드 전환, 서비스 통폐합, 업무 기능 고도화 및 대민 서비스 확대 중이며 인공지능(AI)를 활용한 업무 효율화 등 추진
- (정보화사업(ISP포함))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IoT 등 지능정보기술을 적용한 법무서비스 제공을 통해 체계적인 법무행정 업무수행 및 사회 안전망 구축 마련을 위한 정보화전략 계획 수립 및 정보화 사업 수행을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지능정보화기본법」,「전자정부법」,「개인정보보호법」
- 「보호관찰법」,「보호소년법」,「형집행법」 등

② 추진경위

- 1981. ~ : 각 실·국별로 독자적인 전산화 추진<출입국('81), 교정('88), 보호('91), 본부('95)>
- 2000. 3월 : 정보화추진체계 통합을 위한 정보화담당관 신설
- 2000. 12월 : 법무정보화 종합발전계획 수립
  - 1단계 : 정보시스템 기반 확충(2001년)
  - 2단계 : 지식정보화 토대 구축(2002년)
  - 3단계 : 지식기반 활용 정착(2003년)
- 2001. 12월 : 법무정보화 5개년 계획 수립
- 2003. 8월 : 법무정보화 로드맵 2007 수립
  - 정부의 정보화촉진기본계획(IT-KOREA)에 따라 자체계획 수립
  - 법무정보화 종합발전계획을 로드맵 2007로 확대
- 2008. 5월 : 차세대 법무정보화 5개년(2008～2012) 계획 수립
  - 정보인프라확충, 대국민서비스개선, 정보보호체계 확립 등 2008년부터 적용할 새로운 정보화 중·장기 계획 수립
- 2013. 12월 : 법무정보화 중장기 발전 전략(5개년 계획, 2014～2018) 수립
  - 법무정보화 비전 수립(디지털 법무 3.0), 법무정보개방, 빅데이터·신기술 등 5대 전략분야, 68개 정보화 과제 마련
- 2020. 9월 : 법무부 전자정부 기본계획(2021~2025) 수립
  - 법무정보화 비전 수립(법무행정 디지털 혁신으로 국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사회 구현), 3대 추진전략 등 24개 과제 발굴·추진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사업(2000년 ～)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3	2024	2025	2026	2027(안)
사업비	41,011	39,117	41,485	44,554	35,983

- 기타: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법무부
- 사업 수혜자 : 국민, 외국인, 법무부 및 205개 소속기관 직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없음

3) 2027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

□ **법무행정정보화(정보화) : (2026 본예산) 44,554백만원 → (2027 예산안) 35,983백만원, 8,571백만원 감액**

① 법무정보·사이버보안시스템 운영

: (2026 본예산) 5,947백만원 → (2027 요구) 5,806백만원, 141백만원 감액

- (요구) 법무행정 공통업무 및 대국민서비스 지원, 정보시스템 및 PC·네트워크의 사이버공격에 대한 분석·탐지 등을 위해 전년대비 141백만원 감액 예산 요구
- (산출) 법무포털, 홈페이지, 보안시스템 등 정보시스템 유지보수·위탁운영 5,806백만원

ㅇ 2026년도 예산 및 2027년도 예산안 산출 세부내역 비교

<table>
<tr><th colspan="2">2026년 본예산</th><th colspan="2">2027년 예산안</th></tr>
<tr><th>예산</th><th>산출내역</th><th>예산</th><th>산출내역</th></tr>
<tr><td rowspan="2">5,946,381</td><td>○ 임차료(210-07): 339,446천원
가. 사이버보안관제 보안장비 등 노후장비 교체 임차료 (339,446천원)</td><td rowspan="2">5,805,497</td><td>○ 임차료(210-07): 0천원</td></tr>
<tr><td>○ 관리용역비(210-15): 5,606,935천원
가. 법무정보시스템 유지보수 (2,239,170천원)
・ 업무포털, 홈페이지, 보안시스템 유지보수: 2,239,170천원
- 법무정보 상용SW 7,924백만원 × 11% = 871,640천원
- 법무정보 HW 13,444백만원 × 7% = 941,080천원
- 특정경제사범관리시스템 상용SW 288백만원 × 12% = 34,560천원
- 사이버교육시스템 상용SW 674백만원 × 11% = 74,140천원
- 사이버교육시스템 HW 1,969백만원 × 7% = 137,830천원
- 법무행정기록정보시스템 상용SW 825백만원 × 12% = 99,000천원
- 법무행정기록정보시스템 HW 1,156백만원 × 7% = 80,920천원
나. 법무정보시스템 개발SW 유지보수 (988,866천원)
<table>
<tr><th rowspan="2">기능점수</th><th rowspan="2">단가(원)</th><th colspan="5">보정 계수</th><th rowspan="2">금 액(원)</th></tr>
<tr><th>규모</th><th>연계 복잡성</th><th>성능</th><th>운영 환경</th><th>보안성</th></tr>
<tr><td>23,573</td><td>605,784</td><td>1.153</td><td>1.06</td><td>1.05</td><td>1.00</td><td>1.06</td><td>19,425,087,853</td></tr>
<tr><td colspan="7">신규 개발원가 합계</td><td>19,425,087,853</td></tr>
<tr><td colspan="7">개발비 = (개발원가+직접경비(0)+이윤(25%))×1.1(부가세10%)</td><td>26,709,495,798</td></tr>
<tr><td colspan="7">유지보수요율 (14.35%)</td><td>0.1435</td></tr>
<tr><td colspan="7">합 계(부가세포함)</td><td>3,832,812,647</td></tr>
<tr><td colspan="7">개발SW 유지관리대가의 25.8%인 988백만원 요구</td><td>988,000,000</td></tr>
</table>
다. 보안관제 위탁운영 (1,752,894천원)
・20명×7,304천원×12개월 = 1,752,894천원</td><td>○ 관리용역비(210-15): 5,805,497천원
가. 법무정보시스템 유지보수 (2,321,290천원)
・ 업무포털, 홈페이지, 보안시스템 유지보수: 2,321,290천원
- 법무정보 상용SW 8,076백만원 × 12% = 956,400천원
- 법무정보 HW 13,227백만원 × 7% = 925,890천원
- 특정경제사범관리시스템 상용SW 288백만원 × 12% = 34,560천원
- 사이버교육시스템 상용SW 740백만원 × 12% = 88,800천원
- 사이버교육시스템 HW 1,970백만원 × 7% = 137,900천원
- 법무행정기록정보시스템 상용SW 806백만원 × 12% = 96,720천원
- 법무행정기록정보시스템 HW 1,132백만원 × 7% = 80,920천원
나. 법무정보시스템 개발SW 유지보수 (938,141천원)
<table>
<tr><th rowspan="2">기능점수</th><th rowspan="2">단가(원)</th><th colspan="5">보정 계수</th><th rowspan="2">금 액(원)</th></tr>
<tr><th>규모</th><th>연계 복잡성</th><th>성능</th><th>운영 환경</th><th>보안성</th></tr>
<tr><td>23,816</td><td>605,784</td><td>1.153</td><td>1.06</td><td>1.05</td><td>1.00</td><td>1.06</td><td>19,625,329,500</td></tr>
<tr><td colspan="7">신규 개발원가 합계</td><td>19,625,329,500</td></tr>
<tr><td colspan="7">개발비 = (개발원가+직접경비(0)+이윤(25%))×1.1(부가세10%)</td><td>26,984,828,063</td></tr>
<tr><td colspan="7">유지보수요율 (12.90%)</td><td>0.1290</td></tr>
<tr><td colspan="7">합 계(부가세포함)</td><td>3,481,042,820</td></tr>
<tr><td colspan="7">개발SW 유지관리대가의 26.9%인 938백만원 요구</td><td>938,000,000</td></tr>
</table>
다. 보안관제 위탁운영 (1,935,500천원)
・20명×8,065천원×12개월 = 1,935,500천원</td></tr>
</table>

<table>
<tr><th colspan="2">2026년 본예산</th><th colspan="2">2027년 예산안</th></tr>
<tr><th>예산</th><th>산출내역</th><th>예산</th><th>산출내역</th></tr>
<tr><td></td><td>
라. 특정경제사범관리시스템 개발SW 유지보수 (111,938천원)
<table>
<tr><th rowspan="2">기능점수</th><th rowspan="2">단가(원)</th><th colspan="5">보정 계수</th><th rowspan="2">금 액(원)</th></tr>
<tr><th>규모</th><th>연계 복잡성</th><th>성능</th><th>운영 환경</th><th>보안성</th></tr>
<tr><td>1,550</td><td>605,784</td><td>0.8967</td><td>1.00</td><td>1.00</td><td>1.06</td><td>1.08</td><td>963,887,365</td></tr>
<tr><td colspan="7">신규 개발원가 합계</td><td>963,887,365</td></tr>
<tr><td colspan="7">개발비 = (개발원가+직접경비(0)+이윤(25%))×1.1(부가세10%)</td><td>1,325,345,127</td></tr>
<tr><td colspan="7">유지보수요율 (14.10%)</td><td>0.1410</td></tr>
<tr><td colspan="7">합 계(부가세포함)</td><td>186,873,663</td></tr>
<tr><td colspan="7">개발SW 유지관리대가의 59.9% 인 112백만원 요구</td><td>112,000,000</td></tr>
</table>
마. 법무연수원 사이버교육시스템 개발SW 유지보수(386,000천원)
<table>
<tr><th rowspan="2">기능점수</th><th rowspan="2">단가(원)</th><th colspan="5">보정 계수</th><th rowspan="2">금 액(원)</th></tr>
<tr><th>규모</th><th>연계 복잡성</th><th>성능</th><th>운영 환경</th><th>보안성</th></tr>
<tr><td>4,562</td><td>605,784</td><td>1.153</td><td>0.94</td><td>0.95</td><td>1.06</td><td>1.00</td><td>3,016,197,051</td></tr>
<tr><td colspan="7">신규 개발원가 합계</td><td>3,016,197,051</td></tr>
<tr><td colspan="7">개발비 = (개발원가+직접경비(0)+이윤(25%))×1.1(부가세10%)</td><td>4,147,270,945</td></tr>
<tr><td colspan="7">유지보수요율 (13.70%)</td><td>0.1370</td></tr>
<tr><td colspan="7">합 계(부가세포함)</td><td>568,176,119</td></tr>
<tr><td colspan="7">개발SW 유지관리대가의 67.9% 인 386백만원 요구</td><td>386,000,000</td></tr>
</table>
바. 법무행정기록정보시스템 개발SW 유지보수 (127,984천원)
<table>
<tr><th rowspan="2">기능점수</th><th rowspan="2">단가(원)</th><th colspan="5">보정 계수</th><th rowspan="2">금 액(원)</th></tr>
<tr><th>규모</th><th>연계 복잡성</th><th>성능</th><th>운영 환경</th><th>보안성</th></tr>
<tr><td>4,543</td><td>605,784</td><td>0.9733</td><td>0.88</td><td>0.95</td><td>1.06</td><td>1.06</td><td>2,516,084,757</td></tr>
<tr><td colspan="7">신규 개발원가 합계</td><td>2,516,084,757</td></tr>
<tr><td colspan="7">개발비 = (개발원가+직접경비(0)+이윤(25%))×1.1(부가세10%)</td><td>3,459,616,541</td></tr>
<tr><td colspan="7">유지보수요율 (14.05%)</td><td>0.1405</td></tr>
<tr><td colspan="7">합 계(부가세포함)</td><td>486,076,124</td></tr>
<tr><td colspan="7">개발SW 유지관리대가의 26.3%</td><td>127,984,000</td></tr>
</table>
</td><td></td><td>
라. 특정경제사범관리시스템 개발SW 유지보수 (97,000천원)
<table>
<tr><th rowspan="2">기능점수</th><th rowspan="2">단가(원)</th><th colspan="5">보정 계수</th><th rowspan="2">금 액(원)</th></tr>
<tr><th>규모</th><th>연계 복잡성</th><th>성능</th><th>운영 환경</th><th>보안성</th></tr>
<tr><td>1,550</td><td>605,784</td><td>0.8967</td><td>1.00</td><td>1.00</td><td>1.06</td><td>1.08</td><td>963,887,365</td></tr>
<tr><td colspan="7">신규 개발원가 합계</td><td>963,887,365</td></tr>
<tr><td colspan="7">개발비 = (개발원가+직접경비(0)+이윤(25%))×1.1(부가세10%)</td><td>1,325,345,127</td></tr>
<tr><td colspan="7">유지보수요율 (14.10%)</td><td>0.1410</td></tr>
<tr><td colspan="7">합 계(부가세포함)</td><td>186,873,663</td></tr>
<tr><td colspan="7">개발SW 유지관리대가의 51.9%인 97백만원 요구</td><td>97,000,000</td></tr>
</table>
마. 법무연수원 사이버교육시스템 개발SW 유지보수(385,920천원)
<table>
<tr><th rowspan="2">기능점수</th><th rowspan="2">단가(원)</th><th colspan="5">보정 계수</th><th rowspan="2">금 액(원)</th></tr>
<tr><th>규모</th><th>연계 복잡성</th><th>성능</th><th>운영 환경</th><th>보안성</th></tr>
<tr><td>5,465</td><td>605,784</td><td>1.153</td><td>0.88</td><td>0.91</td><td>0.94</td><td>1.00</td><td>2,873,354,367</td></tr>
<tr><td colspan="7">신규 개발원가 합계</td><td>2,873,354,367</td></tr>
<tr><td colspan="7">개발비 = (개발원가+직접경비(0)+이윤(25%))×1.1(부가세10%)</td><td>3,950,862,255</td></tr>
<tr><td colspan="7">유지보수요율 (13.20%)</td><td>0.1320</td></tr>
<tr><td colspan="7">합 계(부가세포함)</td><td>521,513,818</td></tr>
<tr><td colspan="7">개발SW 유지관리대가의 74.0%인 386백만원 요구</td><td>386,000,000</td></tr>
</table>
바. 법무행정기록정보시스템 개발SW 유지보수 (127,758천원)
<table>
<tr><th rowspan="2">기능점수</th><th rowspan="2">단가(원)</th><th colspan="5">보정 계수</th><th rowspan="2">금 액(원)</th></tr>
<tr><th>규모</th><th>연계 복잡성</th><th>성능</th><th>운영 환경</th><th>보안성</th></tr>
<tr><td>5,257</td><td>605,784</td><td>1.1530</td><td>0.88</td><td>0.95</td><td>0.94</td><td>1.06</td><td>3,058,616,867</td></tr>
<tr><td colspan="7">신규 개발원가 합계</td><td>3,058,616,867</td></tr>
<tr><td colspan="7">개발비 = (개발원가+직접경비(0)+이윤(25%))×1.1(부가세10%)</td><td>4,205,598,192</td></tr>
<tr><td colspan="7">유지보수요율 (12.20%)</td><td>0.1220</td></tr>
<tr><td colspan="7">합 계(부가세포함)</td><td>513,082,979</td></tr>
<tr><td colspan="7">개발SW 유지관리대가의 24.9%인 128백만원 요구</td><td>128,000,000</td></tr>
</table>
</td></tr>
</table>

② 범죄예방정보시스템 운영

: (2026 본예산) 2,032백만원 → (2027 요구) 4,382백만원, 2,350백만원 증액

- (요구) 신규 정보화 사업에 대한 임차료와 보호관찰대상자, 소년보호대상자 및 내부업무, 민원서비스 등에 대한 포괄적인 업무 지원 등을 위해 전년대비 2,350백만원 증액 예산 요구
- (산출) 차세대 통합의료정보시스템 1차 임차료 2,180백만원
  범죄예방정보시스템 유지보수 1,903백만원
  통합의료정보시스템 유지보수 299백만원

ㅇ 2026년도 예산 및 2027년도 예산안 산출 세부내역 비교

<table>
<tr><th colspan="2">2026년 본예산</th><th colspan="2">2027년 예산안</th></tr>
<tr><th>예산</th><th>산출내역</th><th>예산</th><th>산출내역</th></tr>
<tr><td>2,031,815</td><td>
○ 관리용역비(210-15): 2,031,815천원
가.범죄예방정보시스템 유지보수 (1,217,158천원)
・범죄예방정보시스템 유지보수: 1,045,048천원
- 범죄예방정보시스템 상용SW 5,255백만원 × 11% = 578,050천원
- 범죄예방정보시스템 HW 6,671백만원 × 7% = 466,998천원
・통합의료정보시스템 유지보수: 172,110천원
- 통합의료정보시스템 상용SW 696백만원 × 11% = 76,560천원
- 통합의료정보시스템 HW 1,365백만원 × 7% = 95,550천원
나. 범죄예방정보시스템 개발SW 유지보수 (814,657천원)
・범죄예방정보시스템 개발SW 유지보수 (587,218천원)
<table>
<tr><th rowspan="2">기능점수</th><th rowspan="2">단가(원)</th><th colspan="5">보정 계수</th><th rowspan="2">금 액(원)</th></tr>
<tr><th>규모</th><th>연계 복잡성</th><th>성능</th><th>운영 환경</th><th>보안성</th></tr>
<tr><td>15,204</td><td>605,784</td><td>1.1530</td><td>1.06</td><td>1.00</td><td>1.06</td><td>1.06</td><td>12,648,020,550</td></tr>
<tr><td colspan="7">신규 개발원가 합계</td><td>12,648,020,550</td></tr>
<tr><td colspan="7">개발비 = (개발원가+직접경비(0)+이윤(25%))×1.1(부가세10%)</td><td>17,391,028,256</td></tr>
<tr><td colspan="7">유지보수요율 (14.35%)</td><td>0.1435</td></tr>
<tr><td colspan="7">합 계(부가세포함)</td><td>2,495,612,555</td></tr>
<tr><td colspan="7">개발SW 유지관리대가의 23.5% 인 587백만원 요구</td><td>587,000,000</td></tr>
</table>
</td><td>4,382,124</td><td>
○ 임차료(210-07): 2,180,000천원
가. 2026년 차세대 통합의료정보시스템 1차 사업 임차료(2회분)
○ 관리용역비(210-15): 2,202,124천원
가.범죄예방정보시스템 유지보수 (1,394,780천원)
・범죄예방정보시스템 유지보수: 1,322,520천원
- 범죄예방정보시스템 상용SW 7,038백만원 × 12% = 844,560천원
- 범죄예방정보시스템 HW 6,828백만원 × 7% = 477,960천원
・통합의료정보시스템 유지보수: 72,260천원
- 통합의료정보시스템 상용SW 209백만원 × 12% = 25,080천원
- 통합의료정보시스템 HW 674백만원 × 7% = 47,180천원
나. 범죄예방정보시스템 개발SW 유지보수 (807,344천원)
・범죄예방정보시스템 개발SW 유지보수 (580,177천원)
<table>
<tr><th rowspan="2">기능점수</th><th rowspan="2">단가(원)</th><th colspan="5">보정 계수</th><th rowspan="2">금 액(원)</th></tr>
<tr><th>규모</th><th>연계 복잡성</th><th>성능</th><th>운영 환경</th><th>보안성</th></tr>
<tr><td>39,235.4</td><td>605,784</td><td>1.1530</td><td>1.06</td><td>1.00</td><td>1.06</td><td>1.06</td><td>32,639,446,560</td></tr>
<tr><td colspan="7">신규 개발원가 합계</td><td>32,639,446,560</td></tr>
<tr><td colspan="7">개발비 = (개발원가+직접경비(0)+이윤(20%))×1.1(부가세10%)</td><td>43,084,069,459</td></tr>
<tr><td colspan="7">유지보수요율 (12.55%)</td><td>0.1255</td></tr>
<tr><td colspan="7">합 계(부가세포함)</td><td>5,407,050,717</td></tr>
<tr><td colspan="7">개발SW 유지관리대가의 10.7%인 580백만원 요구</td><td>580,000,000</td></tr>
</table>
</td></tr>
</table>

<table>
<tr><th colspan="2">2026년 본예산</th><th colspan="2">2027년 예산안</th></tr>
<tr><th>예산</th><th>산출내역</th><th>예산</th><th>산출내역</th></tr>
<tr><td></td><td>・통합의료정보시스템 개발SW 유지보수 (227,439천원)
<table>
<tr><th rowspan="2">기능점수</th><th rowspan="2">단가(원)</th><th colspan="5">보정 계수</th><th rowspan="2">금 액(원)</th></tr>
<tr><th>규모</th><th>연계 복잡성</th><th>성능</th><th>운영 환경</th><th>보안성</th></tr>
<tr><td>6,802</td><td>605,784</td><td>1.1530</td><td>0.94</td><td>0.95</td><td>1.00</td><td>1.08</td><td>4,582,040,756</td></tr>
<tr><td colspan="7">신규 개발원가 합계</td><td>4,582,040,756</td></tr>
<tr><td colspan="7">개발비 = (개발원가+직접경비(0)+이윤(25%))×1.1(부가세10%)</td><td>6,300,306,040</td></tr>
<tr><td colspan="7">유지보수요율 (13.40%)</td><td>0.1340</td></tr>
<tr><td colspan="7">합 계(부가세포함)</td><td>844,241,009</td></tr>
<tr><td colspan="7">개발SW 유지관리대가의 26.9%인 227백만원 요구</td><td>227,000,000</td></tr>
</table></td><td></td><td>・통합의료정보시스템 개발SW 유지보수 (227,167천원)
'26년 차세대 국립법무병원 통합의료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으로 기능점수(FP) 방식 대신 투입공수 방식 SW 운영비 신청(전산실 운용을 위한 최소한 인력(2명) 요청)</td></tr>
</table>

③ 교정정보시스템 운영

: (2026 본예산) 4,489백만원 → (2027 요구) 3,937백만원, 552백만원 감액

- (요구) 교정직원, 수용자 및 대국민을 대상으로 수용자의 입소에서 출소까지 전반적인 교정행정업무 지원 등을 위해 전년대비 552백만원 감액 예산 요구
- (산출) 교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 3,937백만원

ㅇ 2026년도 예산 및 2027년도 예산안 산출 세부내역 비교

<table>
<tr><th colspan="2">2026년 본예산</th><th colspan="2">2027년 예산안</th></tr>
<tr><th>예산</th><th>산출내역</th><th>예산</th><th>산출내역</th></tr>
<tr><td>4,489,638</td><td>○ 임차료(210-07): 337,984천원
가. 차세대 교정정보시스템 구축(2단계) 사업 임차료 (337,984천원)
○ 관리용역비(210-15): 4,151,654천원
가. 교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 (2,274,558천원)
・상용SW 유지보수 11,170백만원 × 11% = 1,228,712천원
・HW 유지보수 14,941백만원 × 7% = 1,045,846천원
나. 교정정보시스템 개발SW 유지보수 (1,565,739천원)
<table>
<tr><th rowspan="2">기능점수</th><th rowspan="2">단가(원)</th><th colspan="5">보정 계수</th><th rowspan="2">금 액(원)</th></tr>
<tr><th>규모</th><th>연계 복잡성</th><th>성능</th><th>운영 환경</th><th>보안성</th></tr>
<tr><td>30,538</td><td>605,784</td><td>1.1530</td><td>1.12</td><td>0.95</td><td>1.00</td><td>1.00</td><td>22,694,954,927</td></tr>
<tr><td colspan="7">신규 개발원가 합계</td><td>22,694,954,927</td></tr>
<tr><td colspan="7">개발비 = (개발원가+직접경비(0)+이윤(25%))×1.1(부가세10%)</td><td>31,205,563,025</td></tr>
<tr><td colspan="7">유지보수요율 (15.00%)</td><td>0.15</td></tr>
<tr><td colspan="7">합 계(부가세포함)</td><td>4,680,834,454</td></tr>
<tr><td colspan="7">개발SW 유지관리대가의 33.4%인 1,565백만원 요구</td><td>1,565,000,000</td></tr>
</table>
다. 교정정보시스템 유지관리사업 집행방식 개선 (311,357천원)
・'26년 12월 대금(13회차) = 311,357천원</td><td>3,937,415</td><td>○ 임차료(210-07): 0천원
○ 관리용역비(210-15): 3,937,415천원
가. 교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 (2,485,250천원)
・상용SW 유지보수 11,695백만원 × 12% = 1,403,400천원
・HW 유지보수 15,455백만원 × 7% = 1,081,850천원
나. 교정정보시스템 개발SW 유지보수 (1,452,165천원)
<table>
<tr><th rowspan="2">기능점수</th><th rowspan="2">단가(원)</th><th colspan="5">보정 계수</th><th rowspan="2">금 액(원)</th></tr>
<tr><th>규모</th><th>연계 복잡성</th><th>성능</th><th>운영 환경</th><th>보안성</th></tr>
<tr><td>31,099</td><td>605,784</td><td>1.1530</td><td>1.12</td><td>0.95</td><td>1.00</td><td>1.00</td><td>23,111,873,838</td></tr>
<tr><td colspan="7">신규 개발원가 합계</td><td>23,111,873,838</td></tr>
<tr><td colspan="7">개발비 = (개발원가+직접경비(0)+이윤(20%))×1.1(부가세10%)</td><td>30,507,673,466</td></tr>
<tr><td colspan="7">유지보수요율 (14.00%)</td><td>0.14</td></tr>
<tr><td colspan="7">합 계(부가세포함)</td><td>4,271,074,285</td></tr>
<tr><td colspan="7">개발SW 유지관리대가의 34.0%인 1,452백만원 요구</td><td>1,452,000,000</td></tr>
</table></td></tr>
</table>

④ 법무정보화기반운영

: (2026 본예산) 16,711백만원 → (2027 요구) 17,044백만원, 333백만원 증액

- (요구) 법무부 본부 및 205개 소속기관의 정보통신망, 정보보안 및 전산장비 운영·유지를 통해 고객 중심의 법무행정 지원 기반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전년대비 333백만원 증액 예산 요구
- (산출) PC 등 전산장비 구입 및 유지관리 9,132백만원
  본부 및 204개 소속기관 법무정보화 기반운영 7,912백만원

ㅇ 2026년도 예산 및 2027년도 예산안 산출 세부내역 비교

<table>
<tr><th colspan="2">2026년 본예산</th><th colspan="2">2027년 예산안</th></tr>
<tr><th>예산</th><th>산출내역</th><th>예산</th><th>산출내역</th></tr>
<tr><td>16,709,334</td><td>○ 상용임금(110-03): 472,399천원
가. 정보화 지원인력(공무직) 14명 상용임금 (472,399천원)
・ 급여: 14명×2,267,330원×12월=380,911천원
・ 급식비: 14명×140,000원×12월=23,520천원
・ 명절상여금: 14명×1,360,350원×2회=38,090천원
・ 초과근무 수당 등: 29,878천원</td><td>17,043,964</td><td>○ 상용임금(110-03): 514,745천원
가. 정보화 지원인력(공무직) 14명 상용임금 (514,745천원)
・ 급여: 14명×2,361,490원×12월=396,730천원
・ 급식비: 14명×160,000원×12월=26,880천원
・ 명절상여금: 14명×1,416,900원×2회=39,673천원
・ 초과근무, 정근, 가족수당 등: 51,462천원</td></tr>
</table>

2026년 본예산		2027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 **일반수용비(210-01): 525,400천원** 가. 수용자(보호소년,치료감호) 정보화교육 지원 (336,800천원) ・강사료: 50,000원 × 24시간 × 12개월 × 17명 = 244,800천원 ・자격증수수료: 27,500원 × 2,000명 = 55,000천원 ・교육용소모품: 500천원 × 12개기관 = 6,000천원 ・교재비: 10천원 × 1,500권 = 15,000천원 ・교육방송 소모품: 16,000천원 나. 본부 및 204개 소속기관 전산소모품 구입 등 (120,200천원) 다. 지식관리운영경비 및 정보화간담회 (33,400천원) 라. 정보화사업 외부 평가위원 수당 (15,000천원) ・60명 × 250천원 = 15,000천원 마. 홈페이지 웹접근성 품질 인증 심사비 (20,000천원) ・(홈페이지(7개) + 모바일 웹(7개) + 모바일 앱(2개)) X 1,250천원 = 20,000천원		○ **일반수용비(210-01): 525,400천원** 가. 수용자(보호소년,치료감호) 정보화교육 지원 (336,800천원) ・강사료: 50,000원 × 24시간 × 12개월 × 18명 = 259,200천원 ・자격증수수료: 27,500원 × 2,050명 = 56,375천원 ・정보화교육 교제비 및 소모품: 5,225천원 ・보호소년 교육 푸르미방송 소모품비 등: 16,000천원 나. 본부 및 205개 소속기관 전산소모품 구입 등 (120,200천원) 다. 지식관리운영경비 및 정보화간담회 (33,400천원) 라. 정보화사업 외부 평가위원 수당 (15,000천원) ・60명 × 250천원 = 15,000천원 마. 홈페이지 웹접근성 품질 인증 심사비 (20,000천원) ・(홈페이지(7개) + 모바일 웹(7개) + 모바일 앱(2개)) X 1,250천원 = 20,000천원
	○ **공공요금 및 제세(210-02): 6,031,425천원** 가. 본부 및 소속기관 회선사용료 (5,583,257천원) ・기존 사용료(5,395,677천원, 25년 증속분 포함) 나. 전산기계실 전기요금 (88,000천원) ・3개기관×2,440천원×12개월=88,000천원 다. 모바일보호관찰, 이동정보시스템 등 사용료 (157,800천원) ・13,150천원×12개월=157,800천원 라. 휴대폰 본인인증 (201,600천원) ・ 42만건×40원×12개월=201,600천원 마. 제주크루즈 회선 증속(187,580천원)		○ **공공요금 및 제세(210-02): 6,040,486천원** 가. 본부 및 소속기관 회선사용료 (5,533,086천원) ・기존 사용료에 재계약 할인율 적용(5,395,677천원 나. 전산기계실 전기요금 (88,000천원) ・3개기관×2,440천원×12개월=88,000천원 다. 모바일보호관찰, 이동정보시스템 등 사용료 (157,800천원) ・13,150천원×12개월=157,800천원 라. 휴대폰 본인인증 (201,600천원) ・ 42만건×40원×12개월=201,600천원 마. 범정부 AI 공통기반 이용료(60,000천원)
	○ **특근매식비(210-05): 29,160천원** 가. 소속기관 전산인력 특근매식비: 45명 × 9,000원 × 6일 × 12월 = 29,160천원		○ **특근매식비(210-05): 29,160천원** 가. 소속기관 전산인력 특근매식비: 45명 × 9,000원 × 6일 × 12월 = 29,160천원
	○ **임차료(210-07): 5,388,156천원** 가. PC 등 전산장비 구매 년간 임차료 (4,253,026천원) ・ '21년 전산장비 구매 = 1,160,400천원 ・ '22년 전산장비 구매 = 1,194,512천원 ・ '23년 전산장비 구매 = 567,373원 ・ '24년 전산장비 구매 = 754,644원 ・ '25년 전산장비 구매 = 1,209,112원 나. '26년도 PC 등 전산장비 구매 (594,239천원) ・PC(모니터포함): 3,805대×1,100,000원×1.8%×6개월×1.0054 = 454,475천원 ・프린터 등 기타: 139,764천원		○ **임차료(210-07): 5,033,475천원** 가. PC 등 전산장비 구매 년간 임차료 (4,278,399천원) ・ '22년 전산장비 구매 = 1,194,512천원 ・ '23년 전산장비 구매 = 567,373원 ・ '24년 전산장비 구매 = 754,644원 ・ '25년 전산장비 구매 = 1,209,112원 ・ '26년 전산장비 구매 = 552,758원 나. '27년도 PC 등 전산장비 구매 (755,076천원) ・PC(모니터포함): 3,805대×1,100,000원×1.8%×6개월×1.0054 = 454,475천원 ・프린터 등 기타: 139,764천원 ・메모리 가격 증가에 따른 PC 임차료 보전: 163,000천원
	○ **복리후생비(210-12): 7,000천원** 가. 정보화 지원인력(공무직) 14명 복리후생비 (7,000천원) ・ 14명×500,000원 = 7,000천원		○ **복리후생비(210-12): 8,400천원** 가. 정보화 지원인력(공무직) 14명 복리후생비 (8,400천원) ・ 14명×600,000원 = 8,400천원
	○ **관리용역비(210-15): 1,818,726천원** 가. PC 등 전산장비 유지관리 (1,679,570천원) 나. PC 등 전산장비 유지관리 집행방식 개선 (139,156천원) ・'26년 12월 대금(13회차) = 139,156천원		○ **관리용역비(210-15): 1,706,959천원** 가. PC 등 전산장비 유지관리 (1,706,959천원)
	○ **기타운영비(210-16): 13,000천원** 가. 지식행정, 공공데이터 등 우수 직원 포상 (13,000천원) ・ 100천원 × 4분기 × 32명 = 13,000천원		○ **기타운영비(210-16): 13,000천원** 가. 지식행정, 공공데이터 등 우수 직원 포상 (13,000천원) ・ 100천원 × 4분기 × 32명 = 13,000천원
	○ **국내여비(220-01): 28,580천원** 가. 정보화 보안감사, 개인정보실태점검 및 정보화사업 관련 출장 ・ 근무지외: 50천원 × 26명 × 18일 = 23,400천원 ・ 근무지내: 20천원 × 18명 × 14일 = 5,040천원		○ **국내여비(220-01): 28,580천원** 가. 정보화 보안감사, 개인정보실태점검 및 정보화사업 관련 출장 ・ 근무지외: 50천원 × 26명 × 18일 = 23,400천원 ・ 근무지내: 20천원 × 18명 × 14일 = 5,040천원
	○ **국외업무여비(220-02): 16,997천원** 가. 미주,유럽지격 정보화 선진 우수사례 연구 (16,997천원) ・ 항공료, 식비 등 : 3명×5,666천원		○ **국외업무여비(220-02): 16,997천원** 가. 미주,유럽지격 정보화 선진 우수사례 연구 (16,997천원) ・ 항공료, 식비 등 : 3명×5,666천원
	○ **사업추진비(240-01): 39,600천원** 가. 정보보호활동 및 정보화사업 정보시스템 연계 등을 위한 간담회 및 업무협의		○ **사업추진비(240-01): 39,600천원** 가. 정보보호활동 및 정보화사업 정보시스템 연계 등을 위한 간담회 및 업무협의
	○ **고용부담금(320-09): 93,555천원** 가. 정보화 지원인력(공무직) 14명 고용부담금		○ **고용부담금(320-09): 103,515천원** 가. 정보화 지원인력(공무직) 14명 고용부담금
	○ **공사비(420-03): 590,000천원** 가. 법무부 소속기관(205개) 노후 네트워크 인프라 개선 (590,000천원)		○ **공사비(420-03): 590,000천원** 가. 법무부 소속기관(205개) 노후 네트워크 인프라 개선 (590,000천원)
	○ **자산취득비(430-01): 2,196,995천원** 가. 정보격차해소 등 전산장비 구매 (292,656천원)		○ **자산취득비(430-01): 2,390,792천원** 가. 정보격차해소 등 전산장비 구매 (370,792천원)

2026년 본예산		2027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 PC: 197대×1,100,000원×1.0054 = 217,870천원 • 프린터 등 기타: 74,786천원 나. 사무용SW 및 정보보안SW 구매 (1,904,339천원) • 사무용SW(MS 오피스, 한글 연간사용료 등): 1,136,000천원 • 차세대형사사법시스템(법무부) 구독료: 48,000천원 • 업무자동화(RPA)SW 구독료: 40식×4,500천원 = 180,000천원 • 백신, 악성코드 등 보안SW: 357,339천원 • KICS패스워드 관리 솔루션: 115,000천원 • 홈페이지 접속대기열 솔루션: 38,000천원		• PC: 197대×1,100,000원×1.0054 = 217,870천원 • 프린터 등 기타: 74,786천원 • 메모리 가격 상승에 따른 PC 구매비 보전: 78,000천원 나. 사무용SW 및 정보보안SW 구매 (2,020,000천원) • 사무용SW(MS 오피스, 한글 연간사용료 등): 1,236,000천원 • 차세대형사사법시스템(법무부) 구독료: 214,000천원 • 업무자동화(RPA)SW 구독료: 40식×4,500천원 = 180,000천원 • 백신, 악성코드 등 보안SW: 390,000천원

⑤ 차세대 범죄예방정보시스템 구축

: (2026 본예산) 10,462백만원 → (2027 요구) 1,767백만원, 8,695백만원 감액

- (요구) 클라우드 전환, 서비스 통폐합, 업무 기능 고도화 및 대민 서비스 확대 중이며 인공지능(AI)를 활용한 업무 효율화 등 추진을 위해 전년대비 8,695백만원 감액 예산 요구
- (산출) 차세대 범죄예방정보시스템 구축 3단계 개발 797백만원
  차세대 범죄예방정보시스템 구축 3단계 장비도입 770백만원
  차세대 범죄예방정보시스템 구축 3단계 감리 등 기술지원 200백만원

ㅇ 2026년도 예산 및 2027년도 예산안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6년 본예산		2027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0,462,000	○ **일반연구비(260-01): 7,064,000천원** 가. 차세대 범죄예방정보시스템 구축 2단계 (7,064,000천원) • PMO, 감리, 개인정보영향평가 등 기술지원 개발: 350,000천원 • 전면 통합 재구축·스마트 집행관리·스마트 보호관찰 대민 온라인 시스템, 전자적 외출제한명령 시스템, 지능형 조사지원 서비스 등(개발): 6,714,000천원	1,767,000	○ **일반연구비(260-01): 997,000천원** 가. 차세대 범죄예방정보시스템 구축 3단계 (997,000천원) • PMO, 감리, 개인정보영향평가 등 기술지원 개발: 200,000천원 • 스마트 보호관찰 온라인시스템, 범죄예방 디지털 교육 플랫폼, 지능형 범죄예방 분석과제 도출 등(개발): 797,000천원
	○ **자산취득비(430-01) : 3,398,000천원** 가. 차세대 범죄예방정보시스템 구축 2단계 (3,398,000천원) • 전면 통합 재구축·스마트 집행관리·스마트 보호관찰 대민 온라인 시스템, 전자적 외출제한명령 시스템, 지능형 조사지원 서비스 등(장비도입)		○ **자산취득비(430-01) : 770,000천원** 가. 차세대 범죄예방정보시스템 구축 3단계 (770,000원) • 스마트 보호관찰 온라인시스템, 범죄예방 디지털 교육 플랫폼, 지능형 범죄예방 분석과제 도출 등(장비도입)

⑥ 정보화사업(ISP포함)

: (2026 본예산) 4,913백만원 → (2027 요구) 3,047백만원, 1,866백만원 감액

- (요구) 최신 지능정보기술을 적용한 법무서비스 제공을 통해 체계적인 법무행정 업무수행 및 사회 안전망 구축 마련을 위한 정보화전략 계획 수립 및 정보화 사업 수행을 지원 등을 위해 전년대비 1,866백만원 감액 예산 요구
- (산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 364백만원
  차세대 국립법무병원 통합의료정보시스템 구축 2차 2,073백만원
  법무행정혁신을 위한 AI전환 ISP 수립 431백만원
  법무부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심사 대비 컨설팅 179백만원

ㅇ 2026년도 예산 및 2027년도 예산안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6년 본예산		2027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4,913,000	○ **일반연구비(260-01): 2,065,000천원** 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 (284,000천원) • 6개기관×47,330천원 = 284,000천원 나. 차세대 국립법무병원 통합의료정보시스템 구축 1단계 (1,328,000천원) • PMO, 감리, 개인정보영향평가 등 기술지원 개발: 400,000천원 • 의료정보시스템 솔루션 구입 및 기능개발, 연계 기반 마련, AI 의사결정지원시스템 등(개발): 928,000천원	3,047,000	○ **일반연구비(260-01): 3,020,000천원** 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 (364,000천원) • 6개기관×60,667천원 = 364,0000천원 나. 차세대 국립법무병원 통합의료정보시스템 구축 2단계 (2,046,000천원) • 감리, 개인정보영향평가 등 기술지원: 150,000천원 • 통합의료정보시스템 기능 추가, AI 의사결정지원시스템 등(개발): 1,896,000천원

2026년 본예산		2027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다. 감찰정보시스템 고도화 (268,000천원) ・ JDK, 최신 출력솔루션, UI/UX 전체 교체, 프레임워크 전환 등 라. 전자적 송달을 위한 KICS 교정시스템(소송서류) 기능 개선 (185,000천원) ・ KICS 교정시스템 주요 기능 개선 및 항목 연계, 관련 통합 보안체계 마련		다. 법무행정 혁신을 위한 AI전환 ISP 수립 (431,000천원) ・ 법무행정 효율화 및 일하는 방식 개선을 위한 법무행정 AI전환(AX) 정보화 전략 계획 수립 라. 법무부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심사 대비 컨설팅 (179,000천원) ・ 주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위험을 사전에 점검·개선하고, 법무부 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를 정비(개인정보보호법 의무화)
	○ **임차료(210-07) : 1,058,000천원** 가. 차세대 국립법무병원 통합의료정보시스템 구축 1단계 ・ 의료정보시스템 솔루션 구입 및 기능개발, 연계 기반 마련, AI 의사결정지원시스템 등(장비 도입): 1,058,000천원		○ **임차료(210-07) : 0천원**
	○ **자산취득비(430-01) : 1,790,000천원** 가. 행정전산망 장애 대비 법무통신망 고도화 (818,000천원) ・ 본부 및 주요 정보시스템 운영기관의 노후화된 통신, 보안장비 교체 및 이중화 추진 나. 보안USB관리시스템 교체 (536,000천원) ・ 국가정보원 보안 인증효력 상실 시스템 교체 다. 감찰정보시스템 고도화 (436,000천원) ・ 시스템 고도화에 따른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교체		○ **자산취득비(430-01) : 27,000천원** 가. 차세대 국립법무병원 통합의료정보시스템 구축 2단계 ・ AI 의사결정지원시스템 등(장비 도입)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3~2027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3	2024	2025	2026	2027	2027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정보화 추진 역량 수준(성과관리) (단위: 점)	목표	98.9	98.2	95.9	98.2	96.9	최근 3년 실적 평균값 94.1('23년~'25년) 보다 3% 상향 반영하여 '27년 목표치를 96.9점으로 설정	(정보자원 관리수준+정보시스템 운영 성과관리 이행수준+공공앱 운영 성과 이행수준+중복투자 예방수준) / 4	행정안전부 "전자정부 성과관리 수준진단" 결과 점수
	실적	84.9	99.5	97.9	-	-			
	달성도	85.8	101.3	102.1	-	-			
정보화 추진 역량 수준(서비스만족도) (단위: 점)	목표	신규	신규	80.5	81.1	81.4	최근 3년 실적 평균값 79.1('23년~'25년) 보다 3% 상향 반영하여 '27년 목표치를 81.4점으로 설정	(측정척도 해당점수 × 인원) / (총 응답 인원)	행정안전부 "전자정부 성과관리 수준진단" 결과 점수
	실적	76.4	80.3	80.5	-	-			
	달성도	-	-	100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3	○ 법무부 기록관 시스템 구축(1단계)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 ○ 노후 보안장비 교체 ○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도입
2024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 ○ 법무부 기록관 시스템 구축(2단계) ○ 대체복무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 교정시설 의료정보시스템 개선 ○ 범죄예방정보시스템 고도화 ISP
2025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 ○ 법무부 기록관 시스템 구축(3단계) ○ 차세대 범죄예방정보시스템 구축 1단계 ○ 차세대 국립법무병원 통합의료정보시스템 ISP ○ 행정전산망 장애 대비 법무통신망 고도화 사업
2026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 ○ 차세대 범죄예방정보시스템 구축 2단계 ○ 차세대 국립법무병원 통합의료정보시스템 1단계 ○ 행정전산망 장애 대비 법무통신망 고도화 사업 ○ 보안USB관리시스템 교체 사업 ○ 감찰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 ○ 전자적 송달을 위한 KICS 교정시스템(소송서류) 기능 개선

③ 향후(2027년도 이후) 기대효과

- 법무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보호대책 이행에 따른 시스템 안전성 확보와 보안 강화를 통한 정보보호 및 사이버침해 대응력 강화 및 사회적으로 민감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 예방
- 차세대 범죄예방정보시스템 구축 3단계 사업을 통해 데이터 기반 지능형 서비스와 표준화된 IT 관리 체계(ITSM)로 업무 프로세스 과학화·효율화를 통해 행정 업무 정확도·효율성 향상, 디지털 접점 확대로 편의 증대, 교육 사각지대 해소 및 범죄 예방 효과 확산, 시스템 안정성·보안 강화로 지속 가능한 디지털 서비스 운영 기반 마련
- 차세대 국립법무병원 통합의료정보시스템 구축 2단계 사업은 국내 유일 수용기관이자 범법 정신질환자 치료기관인 국립법무병원 의료시스템의 노후화로 인해 법·제도, 최신 IT기술 등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빅데이터로 비정형 의료데이터 분석, 정신질환자 치료·재활 효율화 및 재범률 감소 지원. 마약류 이력 관리 및 개인정보 강화로 오남용·유출 사전 차단, 첨단 기술로 직원 업무 경감 기대
- 법무행정 혁신을 위한 AI전환 ISP 수립을 통해 법무행정 업무 특성을 반영하고 효

용성이 높은 AI 서비스를 구축할 수 있으며, LLM 선정을 위한 자체 기준 수립으로 성공적 법무행정 AI전환의 지표, 서비스 품질 제고 가능

- 법무부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심사 대비 컨설팅을 통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관리체계, 보호조치,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이행 현황을 사전에 진단하고 미흡사항을 보완함으로써 법령 준수 수준을 높이고 인증심사 대응 기반 마련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사업계획수립 → 조달계약 의뢰 → 조달공고 및 입찰 → 기술평가 및 협상 → 조달계약체결(조달청) → 사업추진 → 감리 → 검사 및 검수 → 사업완료

※ 근거법령
- 지능정보화기본법
- 전자정부법
- 개인정보보호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 소프트웨어 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등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25~2029	41,485	81,867	59,964	58,178	54,609	
2026~2030		44,554	58,741	58,302	60,254	50,879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국회(상임위 등)	후속 조치사항
▪ '24년 법사위 '23회계년도 결산검토보고서	▪ (지적) 전산장비 도입을 위한 신규 리스계약 및 계약갱신 시점을 정부의 예산안 제출 이전 시점으로 앞당길 수 있는 방안 강구

2) 감사원 감사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해당없음

3) 자체평가·감사

재정사업 자율평가	ㅇ '23회계년도 : 95.6점, 우수 ㅇ '24회계년도 : 97.5점, 보통 ㅇ 고객중심의 법무행정 지원기반 강화를 목표로 하여 '법무행정 발전을 위한 정보화 노력도' 성과지표를 만족하며 우수한 성과를 나타냄

4)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해당없음

5)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지적사항	후속 조치사항
▪ 전산장비 도입을 위한 신규 리스계약 및 계약갱신 시점을 정부의 예산안 제출 이전 시점으로 앞당길 수 있는 방안 강구	▪ '25년부터는 사업 일정을 상반기로 조정하여 추진하였으며, 상반기 중에 사업을 완료 하여 확정된 리스 계약금액을 정부 예산안 편성 시 반영하였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혁신적인 서비스 창출 및 법무행정 서비스에 인공지능(AI) 도입을 위한 활용 가능 업무 발굴·적용
- 무중단 법무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보시스템 및 네트워크 안정화
- 법무정보・교정・범죄예방 공동 활용 기반 구축 및 운영 활성화
- 대국민 중심의 민원 서비스 체계 확충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1)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26. 5.)

ㅇ (최종의견 및 점수) 사업 개선

ㅇ (결과 요약)

- 성과는 형식적 달성에도 불구하고 지표의 시계열 비교 가능성과 성과 입증력 측면에서 보완 과제 존재

12) 동 사업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

※ 재정사업자율평가 대상 사업의 경우 2025년까지의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기재, R&D 사업의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자체평가 결과를 기재

회계연도	등급	자체평가 주요내용	조치결과
2023	우수(96.5 점)	- 법무부 기록관 시스템 구축사업, 빅데이터 분석 및 AI 활용 등 IT 신기술도입 타당검 검토, 예산 집행률(98.3%), 성과지표 달성도(100%), 국가안전보장 기여 유공 국가정보원장 표창 수상 등	- 해당 사항 없음
2024	보통(97.5 점)	- 범죄예방정보시스템 고도화 ISP, 법무부 홈페이지 간편인증 서비스 및 모바일 신분증 인증 등 IT 신기술도입 타당검 검토, 예산 집행률(97.8%), 성과지표 달성도(100% 초과), 디지털정부 발전 및 혁신 유공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 수상 등	- 해당 사항 없음
2025	해당없음		
2026	해당없음		

13) 2026년도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 결과 및 후속 조치 현황

평가결과	성과평가 주요내용	조치결과
사업개선	- 법무행정 특수성에 따른 별도 정보시스템과 업무망 운영의 불가피성이 인정됨 - 2025년 예산 증액은 노후 범죄예방정보시스템 재구축에 따른 것으로 정합성 확인 - 성과는 목표 달성에도 불구하고 지표의 비교 가능성과 설명력에 한계 존재	- 단일 지표 구조를 탈피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서비스 수준을 측정하는 '대표 홈페이지 만족도 조사 결과'를 2026년도 성과지표에 추가하여 성과지표 보강 - 목표치 설정 시, 과거 추세치 및 예측 가능한 외부 환경을 고려하고 사업방식 개선 등 성과제고 노력을 반영하여 구체적·합리적으로 설정

14) 부처 건의사항: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3	41,011	-	41,011	555	-	-	41,566	40,858	99.6	98.3	-	708
2024	39,117	-	39,117	-	-	-	39,117	38,272	97.8	97.8	-	845
2025	41,485	-	41,485	-	-	-	41,485	41,337	99.6	99.6	-	148
2026	44,554	-	44,554	-	-	-	44,554	25,636	57.5	57.5	-	332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해당없음

2) 주요 결산사항

□ 2023~2026년 결산사항

2023	- 불용 : 정보화사업 낙찰차액 336백만원 및 집행잔액 372백만원
2024	- 불용 : 정보화사업 낙찰차액 214백만원 및 집행잔액 631백만원
2025	- 불용 : 정보화사업 낙찰차액 36백만원 및 집행잔액 112백만원
2026	- 해당없음

□ 2026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전용 (2025.7.11.)	법무행정정보화 (정보화)(7034-500)	210-02	172	법무행정정보화 (정보화)(7034-500)	260-01	윈도우11 전환 사업 추진
		210-07	36			
		210-15	249			

□ 2026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해당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해당없음

사 업 명
법무정책 대국민 소통 강화 (7037-3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법무부	대변인실	일반회계	020	022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37	300
명칭	법무및검찰행정지원	법무정책 대국민 소통 강화	법무정책 대국민 소통 강화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6예산 시 소관
	O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법무정책 대국민 소통 강화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대변인실	한정진	이동훈	김소윤
		대변인실	02-2110-3038	02-2110-4342	02-2110-3359
	사업시행주체	법무부	대변인실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년 결산	2026년 예산		2027년		증감 (B-A)	(B-A)/A
		본예산(A)	추경	요구안	조정안(B)		
법무정책 대국민 소통 강화	775	848	848	969	969	121	14.3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25					2026(2026.7월말)							2027 예산안
	예산액(추경)	예산현액	집행액[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현액	집행액[실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예상액	불용예상액	
									예산현액	집행액[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811	811	775	-	36	848	848	299	848	299	-	-	969
· 홍보사업비	383	383	383	-	-	383	383	61	383	61	-	-	474
· 근로자 인건비	379	379	343	-	36	413	413	186	413	186	-	-	443
· 홍보업무 운영비	49	49	49	-	-	52	52	52	52	52	-	-	52
○ 비목별 분류(합계)	811	811	775	-	36	848	848	299	848	299	-	-	969
· 상용임금(110-03)	314	314	291	-	23	341	341	166	341	166	-	-	365
· 일반수용비(210-01)	365	365	374	-	-	365	365	61	365	61	-	-	365
· 특근매식비(210-05)	21	21	21	-	-	24	24	24	24	24	-	-	24
· 복리후생비(210-12)	4	4	3	-	1	4	4	3	4	3	-	-	4
· 일반용역비(210-14)	9	9	-	-	-	9	9	-	9	-	-	-	100
· 국내여비(220-01)	8	8	8	-	-	8	8	8	8	8	-	-	8
· 관서업무비(240-02)	20	20	20	-	-	20	20	20	20	20	-	-	20
· 포상금(310-03)	9	9	9	-	-	9	9	-	9	-	-	-	9
· 고용부담금(320-09)	61	61	49	-	12	68	68	17	68	17	-	-	73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811	811	775	-	36	848	848	299	848	299	-	-	969
· 홍보사업비	383	383	383	-	-	383	383	61	383	61	-	-	474
-일반수용비(210-01)	365	365	374	-	-	365	365	61	365	61	-	-	365
-일반용역비(210-14)	9	9	-	-	-	9	9	-	9	-	-	-	100
-포상금(310-03)	9	9	9	-	-	9	9	-	9	-	-	-	9
· 근로자 인건비	379	379	343	-	36	413	413	186	413	186	-	-	443
- 상용임금(110-03)	314	314	291	-	23	341	341	166	341	166	-	-	365
-복리후생비(210-12)	4	4	3	-	1	4	4	3	4	3	-	-	4
-고용부담금(320-09)	61	61	49	-	12	68	68	17	68	17	-	-	73
· 홍보업무 운영비	49	49	49	-	-	52	52	52	52	52	-	-	52
-특근매식비(210-05)	21	21	21	-	-	24	24	24	24	24	-	-	24
- 여비(220-01)	8	8	8	-	-	8	8	8	8	8	-	-	8
-관서업무비(240-02)	20	20	20	-	-	20	20	20	20	20	-	-	2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법무정책 대국민 소통 강화)**
- **(홍보사업비)** 동 내역사업은 법무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정책에 대해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홍보를 실시함으로써 많은 국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임
- **(근로자 인건비)** 법무정책 모니터링 및 홍보 콘텐츠 제작을 위한 공무직에 대한 인건비
- **(홍보업무 운영비)** 법무정책 홍보업무를 위한 지원경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조의 2**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검사로 보한다.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1. 주요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 · 조정 및 협의 · 지원
2. 브리핑, 보도자료 등 부내 업무의 대외 발표에 관한 사항
3. 온라인대변인 지정 · 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 · 점검 및 평가
4. 그 밖에 법무정책과 관련된 각종 상황관리 및 홍보사무에 관한 사항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의 2**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검사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대변인 밑에 홍보담당관을 두되 서기관 또는 검찰수사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홍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1. 주요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 · 조정 및 협의 · 지원
2. 브리핑, 보도자료 등 부내 업무의 대외 발표에 관한 사항
3. 온라인대변인 지정 · 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 · 점검 및 평가
4. 삭제
5. 그 밖에 법무정책과 관련된 각종 상황관리 및 홍보사무에 관한 사항

② 추진경위

- 법무부에서는 범죄피해자 지원, 성폭력 범죄 예방, 체류외국인 지원 등 다양한 법무정책을 적극 시행함으로써 일반 국민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
- 그러나, 제도 시행을 알리기 위한 홍보예산이 부족하여 일반 국민들께 정책시행을 알리지 못하여 법무부 각종 시행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등 문제 발생
- 이에 법무부에서는 2010년부터 '서민·사회적 약자 지원 법무정책 홍보' 사업 예산을 편성하여 법무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정책에 대해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함으로써 많은 국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여건 등을 조성하고 있음

* 사업명칭 변경 : '10년 '서민지원·따뜻한 법치 확산' → '13년 '서민·사회적 약자 지원 법무정책 홍보' → '20년 '법무정책 대국민 소통 강화'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0~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3	2024	2025	2026	2027(안)
사업비	807	800	811	848	969

- 기타: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법무부
- 사업 수혜자 : 범죄피해자, 체류 외국인 등 법무정책 고객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없음

3) 2027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

□ **법무정책 대국민 소통 강화 : (2026 본예산) 848백만원 → (2027 예산안) 969백만원, 121백만원 증액**

① **홍보사업비 : (2026 본예산) 383백만원 → (2027 예산안) 474백만원, 91백만원 증액**

- (요구) 주요 법무정책 콘텐츠 개발 및 홍보를 위한 예산으로 인플루언서 콘텐츠 제작 용역비 추가 요구
- (산출) 온·오프라인 홍보 등 365백만원
  콘텐츠 제작 용역 등 100백만원
  SNS 우수기관 및 직원 포상 9백만원

ㅇ 2026년도 예산 및 2027년도 예산안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6년 본예산		2027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383	○ **일반수용비(210-01) : 365,275천원** 가. 법무정책 옥외 광고 (75,000천원) 나. 법무정책 브로슈어 제작 (22,000천원) 다. 법무정책 관련 신문·방송 홍보 (67,000천원) 라. 국민기자단 운영 (40,000천원) 마. 법무 정책 관련 SNS 홍보 (133,000천원) 바. 소모품 구입 및 홍보콘텐츠 제작비 (27,933천원) ○ **일반용역비(210-14) : 9,000천원** 가. 법무정책 홍보영상물 성우더빙, 자막제작 용역 등 (9,000천원) ○ **포상금(310-03) : 9,000천원** 가. SNS 우수기관 및 직원 등 포상 등 (9,000천원) ・ 우수기관 및 직원 등 포상 : 1,500천원 ×6개기관	474	○ **일반수용비(210-01) : 365,275천원** 가. 법무정책 옥외 광고 (75,000천원) 나. 법무정책 브로슈어 제작 (22,000천원) 다. 법무정책 관련 신문·방송 홍보 (67,000천원) 라. 국민기자단 운영 (40,000천원) 마. 법무 정책 관련 SNS 홍보 (133,000천원) 바. 소모품 구입 및 홍보콘텐츠 제작비 (27,933천원) ○ **일반용역비(210-14) : 100,000천원** 가. 콘텐츠 제작 용역 등 (100,000천원) ・ 인플루언서 콘텐츠 제작 용역 : 롱폼 4건×5백만원+숏폼10건 ×3백만원×2회=100,000천원 ○ **포상금(310-03) : 9,000천원** 가. SNS 우수기관 및 직원 등 포상 등 (9,000천원) ・ 우수기관 및 직원 등 포상 : 1,500천원 ×6개기관

② **근로자 인건비 : (2026 본예산) 413백만원 → (2027 예산안) 443백만원, 30백만원 증액**

- (요구) 홍보콘텐츠 제작 및 모니터링 직원 인건비로 처우개선분 반영 증액
- (산출) 근로자 인건비 365백만원
  근로자 맞춤형 복지비 4백만원
  근로자 국민연금 등 법정부담금 73백만원

ㅇ 2026년도 예산 및 2027년도 예산안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413	○ **상용임금(110-03) : 341,572천원** 가. 7명×4,066천원×12월 = 341,572천원 ○ **복리후생비(210-12) : 3,500천원** 가. 근로자 맞춤형 복지비 ・ 7명×500천원 = 3,500천원 ○ **고용부담금(320-09) : 67,632천원** 가. 근로자 국민연금 등 법정부담금 = 67,632천원	443	○ **상용임금(110-03) : 365,020천원** 가. 7명×4,066천원×12월 = 365,020천원 ○ **복리후생비(210-12) : 4,200천원** 가. 근로자 맞춤형 복지비 ・ 7명×600천원 = 4,200천원 ○ **고용부담금(320-09) : 73,406천원** 가. 근로자 국민연금 등 법정부담금 = 73,406천원

③ **홍보업무 운영 : (2026 본예산) 52백만원 → (2027 예산안) 52백만원, 전년동**

- (요구) 홍보업무 운영경비로 전년 수준의 예산 요구
- (산출) 야근자 특근매식비 24백만원
  장관 소속기관 방문취재, 영상취재 등 8백만원
  기자간담회, 부서간 업무협의 등 20백만원

ㅇ 2026년도 예산 및 2027년도 예산안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52	○ **특근매식비(210-05) : 24,000천원** 가. 특근자매식비 : 24,000천원 ○ **국내여비(220-01) : 8,113천원** 가. 장관 소속기관 방문 취재, 유관기관 업무협의 등 : 8,113천원 ○ **업무추진비(240-02) : 20,291천원** 가. 기자간담회, 부서간 업무협의 등 : 20,291천원	52	○ **특근매식비(210-05) : 24,000천원** 가. 특근자매식비 : 24,000천원 ○ **국내여비(220-01) : 8,113천원** 가. 장관 소속기관 방문 취재, 유관기관 업무협의 등 : 8,113천원 ○ **업무추진비(240-02) : 20,291천원** 가. 기자간담회, 부서간 업무협의 등 : 20,291천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3~2027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해당없음

성과지표	구분	2023	2024	2025	2026	2027	2027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지표명 (단위:)	목표	-	-	-	-	-			
	실적	-	-	-	-	-			
	달성도	-	-	-	-	-			
지표명 (단위:)	목표	-	-	-	-	-			
	실적	-	-	-	-	-			
	달성도	-	-	-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3	· '마약 근절'을 위해 홍보대사를 활용, 라디오 광고, 포스터 제작, SNS 등 홍보 · '마약 근절' 기차역·지하철역 전광판 광고 · 연두 업무 보고 등 주요 정책을 카드 뉴스, 웹툰, 영상 등으로 제작하여 홍보 · 정책블로그 기자단 운영 등
2024	· '대마 합법 국가 방문 마약류 이용 방지 캠페인' 대국민 캠페인 전개 · 캠페인 포스터·배너 제작 후 외교부 협업을 통해 20개국 39개 공관 포스터 및 배너 설치 · 캠페인 관련 콘텐츠 공항철도 및 공항 리무진 內 전광판 광고 · 든든한 안전지킴이 '전자감독제도' 우수사례 모션툰 제작하여 홍보 · 정책블로그 국민기자단 운영 등
2025	· 인플루언서 활용하여 범죄피해자 지원 등 국민 실생활 밀접정책 SNS 홍보 · 법무부 주요정책 양방향 소통 활성화 추진 홍보 · 법무부 전자입국신고 영상, 카드뉴스 제작하여 홍보 · 국민기자단 운영 등
2026	· 소속 직원 참여형 콘텐츠 활용, 유튜브 등 SNS 홍보 · 범죄피해자 지원 등 국정성과 소통 이벤트 홍보 · AI 활용 정책홍보영상 제작 시도 및 활성화를 통한 홍보 · 국민기자단 운영 등

③ 향후(2027년도 이후) 기대효과

-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법무정책을 정책 수혜자와 국민 일반에게 홍보함으로써 국민 인식도를 높이고 보다 많은 국민들이 법무정책을 통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 실효성 제고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① 법무정책 중 중점 홍보분야 검토 및 결정
② 홍보매체 선정
③ 문화체육관광부(대행기관:한국언론진흥재단)에 광고 의뢰(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제5조)
④ 법무정책 정보 제공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25~2029	811	835	860	885	911	
2026~2030		848	873	899	926	954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및 후속조치

국회(상임위 등)	후속 조치사항
▪ '24년 법사위 '23회계년도 결산검토보고서	▪ (지적) 매체별 적정한 광고 배분 및 집행을 통한 정책 홍보효과 제고 필요 (조치) 광고효과 제고를 위하여 변화된 뉴미디어 환경에 맞춰 2024년에는 SNS 광고 비중을 높이는 등 변화된 홍보 환경에 맞추어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광고의 경우도 홍보대상에 따라 적합한 매체 선정을 하였음.
▪ '25년 법사위 '24회계년도 결산검토보고서	▪ (지적) 법무부 유튜브 홍보업무 성과 제고 등 운영 활성화 필요 (조치) 법무정책 키워드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 토대로 영상을 제작하고 설문 이벤트 진행 등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있으며, 구독자수 제고방안을 강구하는 등 유튜브 활성화 추진함.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범죄피해자 지원, 성폭력 범죄예방 등 법무부 시행 다양한 법무 정책을 적극적으로 홍보 추진
- 효과적인 홍보매체를 선정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정책 전달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2) 동 사업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 : 해당없음

13) 2026년도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 결과 및 후속 조치 현황 : 해당없음

14) 부처 건의사항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3	807		807	-	-	-	807	750	92.9	92.9	-	57
2024	800		800	-	-	-	800	754	92.9	92.9	-	46
2025	811		811	-	9	-	811	775	95.6	95.6	-	36
2026	848		848	-	-	-	848	299	35.2	35.2	-	36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 해당없음

2) 주요 결산사항

□ 2023~2026년 결산사항

2023	- 세목조정 : 법무정책 홍보에 필요한 홍보비(일반수용비) 부족으로 임차료에서 세목 조정
2024	- 해당사항 없음
2025	- 세목조정 : 법무정책 홍보에 필요한 홍보비(일반수용비) 부족으로 일반용역비에서 세목 조정
2026	- 해당사항 없음

□ 2026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조정 (2023.11.29.)	법무정책 대국민 소통 강화 (7037-300)	210-07	17	법무정책 대국민 소통 강화 (7037-300)	210-01	법무 주요정책 홍보에 필요한 홍보비 부족으로 조정
조정 (2025.12.1.)	법무정책 대국민 소통 강화 (7037-300)	210-14	9	법무정책 대국민 소통 강화 (7037-300)	210-01	법무 주요정책 홍보에 필요한 홍보비 부족으로 조정

□ 2026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 해당없음

사 업 명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정보화) (7038-3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법무부	기획조정실	일반회계	020	022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38	300
명칭	법무및검찰행정지원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정보화)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6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형사사법 공통시스템 운영(정보화)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기획조정실	박은혜 단장	윤정희	원대로
		형사사법공통 시스템운영단	02-2110-3930	02-2110-3934	02-2110-4591
	사업시행주체	법무부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년 결산	2026년 예산		2027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요구안	조정안(B)		(B-A)/A
형사사법공통시스템 운영(정보화)	2,691	2,442	2,442	2,046	2,046	△396	△16.2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25					2026(2026.7월말)							2027 예산안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2,803	2,803	2,691	-	112	2,442	2,442	919	2,442	919	-	-	2,046
· 형사사법통계분석비고정화	424	424	416	-	8	124	124	-	124	-	-	-	-
· 유지및위탁운영	1,425	1,425	1,404	-	21	1,385	1,385	682	1,385	682	-	-	1,385
· 소프트웨어(업무용)구입	507	507	479	-	28	474	474	-	474	-	-	-	189
· 기타운영비	447	447	392	-	55	459	459	237	459	237	-	-	472
○ 비목별 분류(합계)	2,803	2,803	2,691	-	112	2,442	2,442	919	2,442	919	-	-	2,046
· 상용임금(110-03)	117	117	110	-	7	126	126	58	126	58	-	-	136
· 일반수용비(210-01)	160	157	155	-	2	160	160	76	160	76	-	-	160
· 공공요금및제세(210-02)	58	58	16	-	42	58	58	44	58	44	-	-	58
· 특근매식비(210-05)	10	13	13	-		10	10	9	10	9	-	-	10
· 임차료(210-07)	13	13	12	-	1	13	13	10	13	10	-	-	13
· 유류비(210-08)	1	1	0	-	1	1	1	0	1	0	-	-	1
· 복리후생비(210-12)	2	2	2	-		2	2	1	2	1	-	-	3
· 관리용역비(210-15)	1,385	1,385	1,364	-	21	1,385	1,385	682	1,385	682	-	-	1,385
· 기타운영비(210-16)	8	8	8	-		8	8	6	8	6	-	-	8
· 국내여비(220-01)	9	10	10	-		9	9	8	9	8	-	-	9
· 국외업무여비(220-02)	25	24	24	-		25	25	0	25	0	-	-	25
· 사업추진비(240-01)	20	20	20	-		20	20	15	20	15	-	-	20
· 직책수행경비(250-02)	2	2	0	-	2	2	2	1	2	1	-	-	2
· 고용부담금(320-09)	22	22	22	-		25	25	9	25	9	-	-	27
· 자산취득비(430-01)	971	971	935	-	36	598	598	0	598	0	-	-	189

	2025					2026(2026.7월말)							2027 예산안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2,803	2,803	2,691	-	112	2,442	2,442	919	2,442	919	-	-	2,046
· 행사시설대관사용료강화	424	424	416	-	8	124	124	0	124	0	-	-	-
-자산취득비(430-01)	424	424	416	-	8	124	124	0	124	0	-	-	-
· 유지및위탁운영	1,425	1,425	1,404	-	21	1,385	1,385	682	1,385	682	-	-	1,385
-관리용역비(210-15)	1,385	1,385	1,364	-	21	1,385	1,385	682	1,385	682	-	-	1,385
-자산취득비(430-01)	40	40	40	-	-	-	-	-	-	-	-	-	-
· 소프트웨어(S/W)사용권구입	507	507	479	-	28	474	474	0	474	0	-	-	189
-자산취득비(430-01)	507	507	479	-	28	474	474	0	474	0	-	-	189
· 기타운영비	447	447	392	-	55	459	459	237	459	237	-	-	472
-상용임금(110-03)	117	117	110	-	7	126	126	58	126	58	-	-	136
-복리후생비(210-12)	2	2	2	-	-	2	2	1	2	1	-	-	3
-고용부담금(320-09)	22	22	22	-	-	25	25	9	25	9	-	-	27
-일반수용비(210-01)	160	157	155	-	2	160	160	76	160	76	-	-	160
-공공요금(210-02)	58	58	16	-	42	58	58	44	58	44	-	-	58
-특근매식비(210-05)	10	13	13	-	-	10	10	9	10	9	-	-	10
-임차료(210-07)	13	13	12	-	1	13	13	10	13	10	-	-	13
-유류비(210-08)	1	1	0	-	1	1	1	0	1	0	-	-	1
-기타운영비(210-16)	8	8	8	-	-	8	8	6	8	6	-	-	8
-국내여비(220-01)	9	10	10	-	-	9	9	8	9	8	-	-	9
-국외여비(220-02)	25	24	24	-	-	25	25	0	25	0	-	-	25
-사업추진비(240-01)	20	20	20	-	-	20	20	15	20	15	-	-	20
-직책수행경비(250-02)	2	2	0	-	2	2	2	1	2	1	-	-	2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형사사법공통시스템 운영)
  - ○ 법무부, 검찰, 경찰, 해경, 공수처, 법원 등 형사사법기관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형사사법공통시스템의 운영·관리
  - ○ 사건관계인 및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형사사법절차 안내, 사건진행정보 제공, 민원서류 발급, 통지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형사사법포털 서비스의 운영·관리
  - ○ 운영환경
    - 서비스 환경 : 24시간 365일 무중단 서비스
    - 서비스 대상 기관 및 사용자
      - ◦ 형사사법기관 : 법무부, 검찰, 경찰, 해경, 공수처, 법원 등 전국 2,900여개 기관, 약 18만 명의 사용자
      - ◦ 일반 국민 : 형사사법포털 이용자 약 530만 명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ㅇ「전자정부법」(법률 제20654호)

- 제1조(목적) 이 법은 행정업무의 전자적 처리를 위한 기본원칙, 절차 및 추진방법 등을 규정함으로써 전자정부를 효율적으로 구현하고, 행정의 생산성, 투명성 및 민주성을 높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ㅇ「정보통신기반 보호법」(법률 제20068호)

- 제1조(목적) 이 법은 전자적 침해행위에 대비하여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에 관한 대책을 수립·시행함으로써 동 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용하도록 하여 국가의 안전과 국민생활의 안정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ㅇ「지능정보화기본법」(법률 제20672호)

- 제14조(공공지능정보화의 추진) ① 국가기관등은 공공서비스의 지능정보화를 도모

하고 국민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보건, 사회복지, 교육, 문화, 환경, 교통, 물류, 과학기술, 재난안전, 치안, 국방, 에너지 등 소관 업무에 대한 지능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ㅇ「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법률 제18653호)

- 제8조(시스템의 운영 주체) ① 시스템의 운영·관리는 이를 사용하는 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이 한다. 다만, 형사사법포털 및 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이 운영·관리하는 시스템을 연계·지원하는 공통시스템은 법무부에 운영기구를 두어 운영·관리한다.

ㅇ「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8485호)

- 제5조(전자문서에 의한 형사사법절차의 수행) ① 피의자, 피고인, 피해자, 고소인, 고발인, 변호인 및 그 밖에 대통령령 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자는 제7조에 따른 사용자등록을 한 경우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에 제출할 서류 또는 도면 · 사진 · 음성 · 영상자료 등(이하 이 조에서 “서류등”이라 한다)을 대통령령 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ㅇ ‘03.08. : 형사사법정보체계구축 사업 추진 확정(국정과제 회의)
ㅇ ’05.01. : 기획단 발족(대통령훈령 제135호)
ㅇ ‘05.12. :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ㅇ ’06.～‘10. : 시스템 구축
ㅇ ‘10.05. : 시범운영 시행(전국 경찰관서, 남부지검·남부지법)
ㅇ ’10.07. : 형사사법정보시스템 및 대국민포탈 서비스 시작
ㅇ ‘10.08. : 형사사법 공통시스템 운영단 조직 신설
ㅇ ’11.01. : 모바일 형사사법 안내 서비스 실시
ㅇ ‘11.09. : 형사사법포털 외국어 서비스 실시
ㅇ ’12.12. : 범죄피해자 지원기관 검색 서비스 실시
ㅇ ‘13.06. : 모바일 형사사법 서비스 오픈
ㅇ ’13.12. : 범죄피해자 사건조회 서비스 오픈

ㅇ ‘14.06.~12. : 형사사법 통계시스템 BPR/ISP 사업 실시
ㅇ ’15.～‘17. : 형사사법 통계시스템 구축
ㅇ ’18.05.～12. :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구축 BPR/ISP 실시
ㅇ ‘19.06. :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진행
ㅇ ‘20.07. :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ㅇ ‘20.08. : 법무부 산하 ’차세대 KICS 구축 준비 TF‘ 설립
ㅇ ’21.10. :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 2024.10.20.)
ㅇ ‘21.12. :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개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포함)
ㅇ ’22.05. : 고위공직자수사처 KICS 구축에 따른 형사사법기관 간 연계 구축
ㅇ ‘22.07. : 형사사법포털 디자인 전면 개편 및 전자서명 공통기반(간편인증) 적용
ㅇ ’23.08. : 형사사법포털 간편인증 서비스 확대
ㅇ ‘24.12 :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구축
ㅇ ’25.10 : 형사사법절차 완전 전자화 시행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3	2024	2025	2026	2027(안)
사업비	6,641	7,096	2,803	2,442	2,046

- 기타 :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법무부 기획조정실 형사사법공통시스템 운영단
- 사업 수혜자 : 형사사법업무 관련 기관, 전체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3) 2027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

① 공통시스템 등 유지 및 위탁운영

: (2026 본예산) 1,385백만원 → (2027 요구) 1,385백만원, 전년 동

- (요구) 형사사법통계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 도입한 장비에 대한 유지관리비 및 위탁운영비
- (산출) 형사사법 통계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SW 및 HW 유지관리비 665백만원, 형사사법 통계시스템의 위탁운영비 720백만원

ㅇ 2026년도 예산 및 2027년도 예산안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6년 본예산		2027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385,000 천원	○ **관리용역비(210-15) : 1,385,000천원** ・ 통계시스템 도입장비 유지관리 665,000천원 - HW(97종) 3,571,000,000원×0.065=232,000천원 - SW(205종) 5,128,000,000원×0.0848=433,000천원 ・ 통계시스템 위탁운영 720,000,000원=720,000천원	1,385,000 천원	○ **관리용역비(210-15) : 1,385,000천원** ・ 통계시스템 도입장비 유지관리 665,000천원 - HW(97종) 3,571,000,000원×0.065=232,000천원 - SW(205종) 5,128,000,000원×0.0848=433,000천원 ・ 통계시스템 위탁운영 720,000,000원=720,000천원

② 소프트웨어 연간사용권 구입

: (2026 본예산) 474백만원 → (2027 요구) 189백만원, 285백만원 감액

- (요구) 형사사법공통시스템 서버OS, GPU, 서버용 백신 등 구독형 소프트웨어의 사용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보안패치, 기술지원, 지속적 사용을 위한 소프트웨어 연간사용권(subscription) 갱신 필요
- (산출) 서버백신(윈도우) 6,601천원, 서버백신(리눅스) 7,708천원, 모바일 백신 56,452천원, 온라인 백신 81,620천원, 앱위변조방지 12,100천원, 앱위변조탐지(iOS) 24,200천원

ㅇ 2026년도 예산 및 2027년도 예산안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6년 본예산		2027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473,320 천원	○ **자산취득비(430-01) : 473,320천원** ・ 백신서버(Window) 5,231천원 : 348,700×15=5,230,500 ・ 백신서버(Linux) 7,708천원 : 592,900×13=7,707,700 ・ 모바일백신 56,452천원 : 14,113,000×4=56,452,000 ・ 온라인백신 89,782천원 : 12,826,000×7=89,782,000 ・ Linux OS 213,536천원 : 8,541,445×25=213,536,125 ・ Linux OS(Data Center) 47,811천원 : 3,677,795×13=47,811,335 ・ 서버인증서 16,500천원 : 1,100,000×15=16,500,000 ・ 앱위변조방지 12,100천원 : 12,100,000×1=12,100,000 ・ 앱위변조탐지 24,200천원 : 12,100,000×2=24,200,000	188,681 천원	○ **자산취득비(430-01) : 188,681천원** ・ 백신서버(Window) 6,601천원 : 388,300×17=6,601,100 ・ 백신서버(Linux) 7,708천원 : 592,900×13=7,707,700 ・ 모바일백신 56,452천원 : 14,113,000×4=56,452,000 ・ 온라인백신 81,620천원 : 11,660,000×7=81,620,000 ・ 앱위변조방지 12,100천원 : 12,100,000×1=12,100,000 ・ 앱위변조탐지 24,200천원 : 12,100,000×2=24,200,000

③ 기타 운영비

: (2026 본예산) 459백만원 → (2027 요구) 472백만원, 13백만원 증액

- (요구) 형사사법공통시스템 운영을 위한 경직성 경비로, 무기계약직 임금,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특근매식비, 임차료, 유류비, 기타운영비, 여비, 사업추진비, 직무수행경비 등
- (산출) 사무보조원 운영 166백만원

일반수용비 160백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59백만원
특근매식비 10백만원
임차료 13백만원
유류비 1백만원
사무실운영비 8백만원
여비 33백만원(국내 8백만원, 국외 25백만원)
사업추진비 20백만원
직책수행경비 2백만원

ㅇ 2026년도 예산 및 2027년도 예산안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6년 본예산		2027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53,474천원	○ **상용임금(110-03) 126,440천원** 1.비정규직 보수4명*2,060,000원*12월=98,880천원 2.명절휴가비4명*2,250,000원=9,000천원 3.급식비4명*140,000원*12월=6,720천원 4.처우개선 11,840천원 ○ **복리후생비(210-12) 2,000**천원 1.기타직 맞춤형복지비 4명*500,000원=2,000천원 ○ **고용부담금(320-09) 25,034**천원 1.국민연금 및 고용보험료 등 14,492천원 2.퇴직연금 10,500천원 3.계수조정 42천원	165,046천원	○ **상용임금(110-03) 135,414천원** 1.비정규직 보수4명*2,310,998원*12월=110,928천원 2.명절휴가비4명*2,773,198원=11,093천원 3.급식비4명*160,000원*12월=7,680천원 4.처우개선 5,713천원 ○ **복리후생비(210-12) 2,400**천원 1.기타직 맞춤형복지비 4명*600,000원=2,400천원 ○ **고용부담금(320-09) 27,232**천원 1.국민연금 및 고용보험료 등 14,955천원 2.퇴직연금 10,809천원 3.계수조정 1,468천원
159,500천원	○ **일반수용비(210-01) 159,500천원** 1.회의자료 및 유인물비 5,000,000원*5회=25,000천원 2.소모품 구입 및 수리비 1,900,000원*12개월=22,800천원 3.사무용품 및 비품 구입비 2,200,000원*12개월=26,400천원 4.수수료 및 사용료 1,900,000원*12개월=22,800천원 5.업무용택시 5,000,000원=5,000천원 6.자문단회의 등 위원수당 4,000천원 가.자문위원수당 200,000원*11명*1회=2,200천원 나.사업평가위원수당 300,000원*5명*1회=1,500천원 다.교육강사수당 280,000원*1명*1회=280천원 라.단수조정 20,000원= 20천원 7.형사사법정보시스템 안내자료 53,500천원 가.탁상달력 등 제작 30,000,000원=30,000천원 나.안내책자,L홀더 등 제작 23,000,000원=22,500천원 다.번역, 통역, 리서치 등 500,000원*2회=1,000천원	159,500천원	○ **일반수용비(210-01) 159,500천원** 1.회의자료 및 유인물비 5,000,000원*5회=25,000천원 2.소모품 구입 및 수리비 1,900,000원*12개월=22,800천원 3.사무용품 및 비품 구입비 2,200,000원*12개월=26,400천원 4.수수료 및 사용료 1,900,000원*12개월=22,800천원 5.업무용택시 5,000,000원=5,000천원 6.자문단회의 등 위원수당 4,000천원 가.자문위원수당 200,000원*11명*1회=2,200천원 나.사업평가위원수당 300,000원*5명*1회=1,500천원 다.교육강사수당 280,000원*1명*1회=280천원 라.단수조정 20,000원= 20천원 7.형사사법정보시스템 안내자료 53,500천원 가.탁상달력 등 제작 30,000,000원=30,000천원 나.안내책자,L홀더 등 제작 23,000,000원=22,500천원 다.번역, 통역, 리서치 등 500,000원*2회=1,000천원
58,500천원	○ **공공요금및제세(210-02) 58,500**천원 1.우편요금 41,700원*12월=500천원 2.휴대폰이용 본인인증 이용료 1,166,666원*12월=14,000천원 3.전화 및 전용선 사용료 10,000천원 가.KT망 회선 사용료 200,000원*1라인*12월=2,400천원 나.정부망 회선 사용료 316,666원*12월=3,800천원 다.콜센터 전화요금 316,666원*12월=3,800천원 4.형사사법대민서비스강화 인터넷회선료=34,000천원	58,500천원	○ **공공요금및제세(210-02) 58,500**천원 1.우편요금 41,700원*12월=500천원 2.휴대폰이용 본인인증 이용료 1,166,666원*12월=14,000천원 3.전화 및 전용선 사용료 10,000천원 가.KT망 회선 사용료 200,000원*1라인*12월=2,400천원 나.정부망 회선 사용료 316,666원*12월=3,800천원 다.콜센터 전화요금 316,666원*12월=3,800천원 4.형사사법대민서비스강화 인터넷회선료=34,000천원
10,000천원	○ **특근매식비(210-05) 10,000**천원 1.특근매식비 10,000,000원	10,000천원	○ **특근매식비(210-05) 10,000**천원 1.특근매식비 10,000,000원
12,948천원	○ **임차료(210-07) 12,948**천원 1.차량 995,700원*1대*12월=11,948천원 2.행사장 임차 1,000,000원*1회=1,000천원	12,948천원	○ **임차료(210-07) 12,948**천원 1.차량 995,700원*1대*12월=11,948천원 2.행사장 임차 1,000,000원*1회=1,000천원
1,000천원	○ **유류비(210-08) 1,000**천원 1.업무용차량 유류대 83,300원*12월 =1,000천원	1,000천원	○ **유류비(210-08) 1,000**천원 1.업무용차량 유류대 83,300원*12월 =1,000천원
7,500천원	○ **기타운영비(210-16) 7,500**천원 1.과운영비 156,200원*4팀*12월=7,498천원 2.계수조정 2,000원	7,500천원	○ **기타운영비(210-16) 7,500**천원 1.과운영비 156,200원*4팀*12월=7,498천원 2.계수조정 2,000원

2026년 본예산		2027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34,200천원	○ **여비(220) 34,200**천원 ○ **국내여비(220-01) 9,000천원** 1.관내 출장 3명*20,000원*3.5회*12개월=2,520천원 2.관외 출장 3명*50,000원*3.6회*12개월=6,480천원 ○ **국외업무여비(220-02) 25,200**천원 1. 형사사법 최신기술동향 파악을 위한 견학(단장1, 검사1, 일반직원2,) - 1회*16,200천원=16,200천원 2. 형사사법정보시스템 홍보 및 해외 사례연구 경비(단장 1, 검사 1) - 1*9,000천원=9,000천원	34,200천원	○ **여비(220) 34,200**천원 ○ **국내여비(220-01) 9,000천원** 1.관내 출장 3명*20,000원*3.5회*12개월=2,520천원 2.관외 출장 3명*50,000원*3.6회*12개월=6,480천원 ○ **국외업무여비(220-02) 25,200**천원 1. 형사사법 최신기술동향 파악을 위한 견학(단장1, 검사1, 일반직원2,) - 1회*16,200천원=16,200천원 2. 형사사법정보시스템 홍보 및 해외 사례연구 경비(단장 1, 검사 1) - 1*9,000천원=9,000천원
20,000천원	○ **사업추진비(240-01) 20,000**천원 1.유관기관 업무협의 30,000원*10명*12회 =3,600천원 2.회의 운영비 16,400천원 가.자문 회의 30,000원*20명*5회=3,000천원 나.실무협의회 30,000원*20명*5회=3,000천원 다.실무자회의 15,000원*20명*14회=4,200천원 라.워크숍 3,100,000원*2회=6,200천원	20,000천원	○ **사업추진비(240-01) 20,000**천원 1.유관기관 업무협의 30,000원*10명*12회 =3,600천원 2.회의 운영비 16,400천원 가.자문 회의 30,000원*20명*5회=3,000천원 나.실무협의회 30,000원*20명*5회=3,000천원 다.실무자회의 15,000원*20명*14회=4,200천원 라.워크숍 3,100,000원*2회=6,200천원
2,000천원	○ **직책수행경비(250-02) 2,000**천원 1.월정직책급(시스템 관리 및 서비스 지원팀장) 150,000원*1명*12월 = 1,800천원 2.계수조정 200천원	2,000천원	○ **직책수행경비(250-02) 2,000**천원 1.월정직책급(시스템 관리 및 서비스 지원팀장) 150,000원*1명*12월 = 1,800천원 2.계수조정 200천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3~2027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3	2024	2025	2026	2027	2027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형사사법포털 온라인 서비스 이용량 (횟수)	목표	7.0	7.7	-	-	-	-	-	-
	실적	7.8	7.9	-	-	-			
	달성도	111.4	102.6	-	-	-			
형사사법정보 시스템 연계* (백만건)	목표	-	-	590.0	684.9	-	※ '26년 산출근거 - 3년간('23~'25) 연계시스템을 통해 처리된 평균값(665,015,575건)을 기준으로, 차세대 KICS 안정화 및 연계 활성화를 고려하여 3% 상향 설정	- 측정방법 : 연계시스템 로그를 기반으로 송신된 데이터의 인터페이스ID 별 발생 건수 산출 - 측정산식 : '26.년 연계시스템을 통해 처리된 트래픽 건수의 합계	형사사법공통시스템 운영단 연계시스템 로그 자료
	실적	-	-	788.1	-	-			
	달성도	-	-	133.6	-	-			

*(**전자정부 성과관리 고유지표 활용**) 2025년 차세대 KICS 시스템의 형사절차 완전 전자화 전면 시행에 맞춰 2025년부터 신규 성과지표 산출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3	- 형사사법통계시스템 개인정보 강화위한 보안 솔루션 도입 - 형사사법포털 개선을 위한 장비 도입
2024	- 형사사법통계시스템 차세대 대응개발 - 형사사법포털 간편인증 서비스 확대
2025	- 보이는ARS 인터넷 환경 구성 - 형사사법 운영관리 솔루션 도입
2026	- 형사사법포털 진본확인 솔루션 도입

③ 향후(2027년도 이후) 기대효과

<경제적 효과>

- 전자적 업무 처리에 따른 단위 업무시간 단축, 종이절감·우편송달 및 벌과금 진행 관련 사회비용 절감으로 년간 290억원의 비용절감 효과 발생

<정성적 효과>

- 사건접수부터 종결까지 업무 단계별 프로세스가 전자적으로 관리되어 사건 진행 상황의 실시간 확인 및 효율적인 사건 관리 가능
- 타기관, 타부서와 연계되어 있는 모든 업무에 대한 결과값이 피드백됨으로써 평가·피드백을 통한 업무 품질 향상
- 형사사법기관 간 공동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신속한 업무처리 가능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25~2029	2,693	2,442	2,467	2,467	2,467	
2026~2030		2,442	7,625	21,763	2,205	2,205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국회(상임위 등)	지적사항	비고
법사위 결산 시정요구 ('24.09.)	①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홍보물품 구매 지양 필요(제도개선) ② 내용연수 고려없는 개인 전산소모품 일괄 신규 구매 지양 필요(제도개선)	

2) 감사원 감사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 해당없음

3) 자체평가·감사 :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

평가사업명	대상년도	예산 (백만원)	평가점수(평가등급)	비 고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 (정보화)	2023	6,641	94.6(보통)	
	2024	7,096	94.8(보통)	

4)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 해당없음

5)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지적사항	후속 조치사항
①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홍보물품 구매 지양 필요 (제도개선)	▪ 예산 범위내 홍보물품 구매
② 내용연수 고려없는 개인 전산소모품 일괄 신규 구매 지양 필요(제도개선)	▪ 내용연수 등을 철저 관리하여 소모품 구매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형사사법공통시스템의 안정적인 유지관리 - 형사사법기관 공동으로 사용하는 형사사법 통계시스템 고도화 - 지속적인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확대 추진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2) 동 사업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

회계연도	등급	자체평가 주요내용	조치결과
2023	보통	- 지적사항 없음	-
2024	보통	- 지적사항 없음	-
2025	미실시	-	-
2026	미실시	-	-

13) 2026년도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 결과 및 후속 조치 현황

평가결과	성과평가 주요내용	조치결과
사업개선	- 정책적 필요성, 재정지원의 필요성, 지속 운용 타당성, 지원 규모 적정성 등 인정 - 국정과제와 연계성 및 성과관리 체계는 보완 필요	- 성과지표 및 목표치 재설정 * 기관 간 형사사법정보 연계 건수 · 운영단 연계시스템 로그 기반으로 송신된 데이터의 인터페이스 ID 별 발생 건수 · 목표치 : 684,900,000건 (※ 직전 3년간 평균값 기준 3% 상향 설정)

14) 부처 건의사항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3	6,641	-	6,641	-	-	-	6,641	6,508	98.0	98.0	-	133
2024	7,096	-	7,096	-	-	-	7,096	7,038	99.2	99.2	-	58
2025	2,803	-	2,803	-	-	-	2,803	2,691	96.0	96.0	-	112
2026	2,442	-	2,442	-	-	-	2,442	919	37.6	37.6	-	-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 해당없음

2) 주요 결산사항

□ 2023~2026년 결산사항

2023	- 불용 : 정보화사업 낙찰차액 88백만원 및 집행잔액 45백만원
2024	- 불용 : 정보화사업 낙찰차액 20백만원 및 집행잔액 38백만원
2025	- 불용 : 정보화사업 낙찰차액 57백만원 및 집행잔액 55백만원
2026	- 해당없음

□ 2026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

□ 2026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 해당없음

사 업 명
차세대형사사법공통시스템구축(정보화) (7038-3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법무부	기획조정실	일반회계	020	022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38	301
명칭	법무및검찰행정지원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	차세대형사사법정보시스템구축(정보화)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6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차세대형사사법정보시스템구축(정보화)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기획조정실	박은혜 단장	윤정희	원대로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	02-2110-3930	02-2110-3934	02-2110-4591
	사업시행주체	법무부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년 결산	2026년 예산		2027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요구안	조정안(B)		(B-A)/A
차세대형사사법정보 시스템구축(정보화)	20,662	47,917	47,917	27,680	27,680	△20,237	△42.2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25					2026(2026.7월말)							2027 예산안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20,751	20,751	20,662	-	89	47,917	47,917	14,302	47,917	14,302	-	-	27,680
· 조달수수료	171	171	90	-	81	241	241	10	241	10	-	-	-
· 유지및위탁운영	20,580	20,280	20,273	-	7	27,480	27,480	13,535	27,480	13,535	-	-	27,206
· 전자영장구축ISMP	-	300	299	-	1	-	-	-	-	-	-	-	-
· 전자영장구축	-	-	-	-	-	19,046	19,046	50	19,046	50	-	-	-
· 전자영장구축감리	-	-	-	-	-	687	687	385	687	385	-	-	-
· 전자영장구축PMO	-	-	-	-	-	463	463	322	463	322	-	-	-
· 보안및인프라강화	-	-	-	-	-	-	-	-	-	-	-	-	474
○ 비목별 분류(합계)	20,751	20,751	20,662	-	89	47,917	47,917	14,302	47,917	14,302	-	-	27,680
· 일반수용비(210-01)	171	171	90	-	81	241	241	10	241	10	-	-	-
· 관리용역비(210-15)	20,580	20,280	20,273	-	7	27,480	27,480	13,535	27,480	13,535	-	-	27,206
· 일반연구비(260-01)	-	300	299	-	1	5,761	5,761	707	5,761	707	-	-	-
· 자산취득비(430-01)	-	-	-	-	-	14,435	14,435	50	14,435	50	-	-	474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20,751	20,751	20,662	-	89	47,917	47,917	14,302	47,917	14,302	-	-	27,680
· 조달수수료	171	171	90	-	81	241	241	10	241	10	-	-	-
-일반수용비(210-01)	171	171	90	-	81	241	241	10	241	10	-	-	-
· 유지및위탁운영	20,580	20,280	20,273	-	7	27,480	27,480	13,535	27,480	13,535	-	-	27,206
-관리용역비(210-15)	20,580	20,280	20,273	-	7	27,480	27,480	13,535	27,480	13,535	-	-	27,206
· 전자영장구축ISMP	-	300	299	-	1	-	-	-	-	-	-	-	-
-일반연구비(260-01)	-	300	299	-	1	-	-	-	-	-	-	-	-
· 전자영장구축	-	-	-	-	-	19,046	19,046	50	19,046	50	-	-	-
-일반연구비(260-01)	-	-	-	-	-	4,611	4,611	0	4,611	0	-	-	-

	2025					2026(2026.7월말)							2027 예산안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자산취득비(430-01)	-	-	-	-	-	14,435	14,435	50	14,435	50	-	-	-
· 전자영장구축감리	-	-	-	-	-	687	687	385	687	385	-	-	-
-일반연구비(260-01)	-	-	-	-	-	687	687	385	687	385	-	-	-
· 전자영장구축PMO	-	-	-	-	-	463	463	322	463	322	-	-	-
-일반연구비(260-01)	-	-	-	-	-	463	463	322	463	322	-	-	
· 보안및인프라강화	-	-	-	-	-	-	-	-	-	-	-	-	474
-자산취득비(430-01)	-	-	-	-	-	-	-	-	-	-	-	-	474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구축) 형사사법절차 완전 전자화 추진에 따라 기존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전자문서 기반의 사건처리 시스템으로 전면 재구축
- (전송형 전자영장집행시스템 구축) 대법원규칙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로 발부된 영장의 전자적 집행을 위한 시스템 구축
- (시스템 구축 감리) 전자정부법 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른 시스템 구축 감리 사업
- (시스템 구축 PMO) 전자정부법 제64조의2에 따른 시스템 구축 사업의 관리·감독 위탁 사업
- (조달수수료)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및 시스템 유지 및 위탁운영 사업에 따른 조달계약 수수료
- (시스템 유지 및 위탁운영) 형사사법절차 완전 전자화 실현을 위해 법무부, 검찰, 경찰, 해경이 함께 구축한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구축 완료에 따른 시스템의 운영·유지관리
- (보안 및 인프라 강화)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지속적인 시스템 개선 및 보안성 강화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ㅇ「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법률 제18653호)

- 제3조(형사사법절차의 전자화 촉진) ①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은 형사사법절차의 전자화에 필요한 제도 개선과 이를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은 형사사법절차의 전자화를 위하여 시스템의 유통표준을 준수하고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 제7조(대국민 포털서비스)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은 형사사법정보에 국민이 쉽고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형사사법포털을 통하여 형사사법 관련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한다.

ㅇ「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8485호)

- 제5조(전자문서에 의한 형사사법절차의 수행) ① 피의자, 피고인, 피해자, 고소인, 고발인, 변호인 및 그 밖에 대통령령 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자는 제7조에 따른 사용자등록을 한 경우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에 제출할 서류 또는 도면·사진·음성·영상자료 등(이하 이 조에서 “서류등”이라 한다)을 대통령령 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
- 제10조(전자문서의 작성) ①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소속 공무원은 재판서, 공판조서, 공소장, 불기소결정서, 송치결정서, 피의자신문조서 등 형사사법업무와 관련된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 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장애가 있는 경우
  2. 전자문서로 작성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 제11조(전자화문서의 작성) ①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소속 공무원은 전자화대상문서를 전자적인 형태로 변환하여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화대상문서를 전자적인 형태로 변환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 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변환·등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13조(전자문서의 유통) ①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은 형사사법절차와 관련하여 작성한 전자문서를 다른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에 송부할 때에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송부하여야 한다.
- 제14조(전자적 송달 또는 통지) ①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은 송달 또는 통지를 받을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송달 또는 통지를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할 수 있다.
  1.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인 경우
  2.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소속 공무원인 경우
  3. 전자적 송달 및 통지에 동의한 등록사용자로서 대통령령 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시스템 구축 단계(~2010년)]

ㅇ 2004년 '전자정부 사업' 주요 국정과제 선정
ㅇ 2005년 형사사법통합체계추진단 설립
ㅇ 2005년 형사사법통합정보체계 구축 BPR/ISP 수행
ㅇ 2005년~2009년 경찰, 검찰, 법원, 법무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구축
ㅇ 2010년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약식절차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
ㅇ 2010년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개통 및 형사사법포털서비스 오픈
ㅇ 2010년 형사사법 공통시스템 운영단 조직 신설

[시스템 고도화 단계(2010년~2020년)]

ㅇ 2013년 형사사법포털 모바일 서비스 일부 오픈(안드로이드폰)
ㅇ 2013년 범죄피해자 사건조회 서비스 오픈
ㅇ 2016년 형사사법포털 모바일 서비스 전면 오픈(아이폰 앱 추가)
ㅇ 2020년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형사소송법 등 개정에 따른 검찰 및 경찰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기능 고도화

[차세대 시스템 구축(2017년~현재)]

ㅇ 2017년 법무부, 검찰, 경찰, 해양경찰 4개 기관 공동추진 실무 합의

ㅇ 2018년 형사사법정보체계협의회에서 4개 기관 공동추진 및 법원 협조 의결

ㅇ 2018년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구축 BPR/ISP 수행

ㅇ 2019년 4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선정

ㅇ 2020년 7월 예비타당성조사 최종 통과(B/C 1.39)

ㅇ 2020년 8월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구축 준비 TF 설립

ㅇ 2021년 7월 조달 발주 전 기획재정부와 총사업비 협의

ㅇ 2021년 10월 형사사법절차 전자화를 위한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2024년 10월 시행 예정)

ㅇ 2021년 12월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계약 체결

ㅇ 2021년 12월 ~ 2024년 12월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구축

ㅇ 2025년 1월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운영·유지관리사업 계약 체결

ㅇ 2025년 10월 '형사사법절차 완전 전자화' 시행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25. 11. 28. 「총사업비 관리지침」의 개정에 따라, '구축 후 5년간 운영·유지관리비'와 '추가구축비'가 정보화사업의 총사업비에서 제외됨에 따라, 시스템 구축을 완료한 해당 사업은 '26년부터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에서 제외

- 사업기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3	2024	2025	2026	2027(안)
사업비	48,509	29,722	20,751	47,917	20,680

- 기타 :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법무부 기획조정실 형사사법공통시스템 운영단

- 사업 수혜자 : 형사사법업무 관련 기관, 전체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3) 2027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

①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유지 및 위탁운영

: (2026 본예산) 27,480백만원 → (2027 요구) 27,206백만원, 274백만원 감액

- (요구) 형사사법절차 완전 전자화의 실현을 위해 법무부, 검찰, 경찰, 해경이 함께 구축한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구축 완료에 따른 시스템의 운영·유지관리
- (산출) 27,206백만원
  * HW 유지관리 : 1,873백만원
    - 26,749백만원×7%=1,873백만원
  * 상용SW 유지관리 : 8,998백만원
    - {55,836백만원×13%}+{7,906백만원(오라클)×22%}=8,998백만원
  * 응용SW 유지관리 : 5,722백만원
    - 59,964백만원×9.54%=5,722백만원

    ※ 미사용 메뉴 삭제 등 구조조정으로 전년(5,996백만원) 대비 274백만원 감액 편성
  * 운영비 : 10,613백만원
    - 78MM×11,338백만원×12월=10,613백만원

ㅇ 2026년도 예산 및 2027년도 예산안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6년 본예산		2027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27,480	○ **관리용역비(210-15) : 27,480백만원** 가. 시스템 유지관리 ・ HW 유지관리 : 26,749백만원×7.0%=1,873백만원 ・ 상용 SW 유지관리 : 63,742백만원×13%=8,998백만원 ・ 응용 SW 유지관리 : 59,964백만원×10%=5,996백만원 나. 시스템 운영 ・ 83MM×127,867천원=10,613백만원	27,206	○ **관리용역비(210-15) : 27,206백만원** 가. 시스템 유지관리 ・ HW 유지관리 : 26,749백만원×7%=1,873백만원 ・ 상용 SW 유지관리 : 8,998백만원* * {55,836×0.13}+{7,906(오라클)×0.22}=8,998 ・ 응용 SW 유지관리 : 59,964백만원×9.54%=5,722백만원 나. 시스템 운영 ・ 78MM×11,338백만원×12월=10,613백만원

②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보안 및 인프라 강화

: (2026 본예산) 0백만원 → (2027 요구) 474백만원, 순증

- (요구)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지속적인 시스템 개선 및 보안성 강화
- (산출) 총 소요예산 : 474백만원

◦ 멀티미디어 자료전송시스템 증설을 위한 SW 도입 : 182백만원

· 제머나이(6식) 124백만원, 관제(Polestar)(6식) 15백만원, 서버보안(Redcastle)(6식) 23백만원, 취약점진단(SecuguardSSE)(6식) 16백만원, PW관리(Secuguard P.M)(6식) 4백만원

◦ 백본 확장 및 네트워크 품질관리 솔루션 도입 : 292백만원

· 네트워크스위치(백본) 108백만원, 네트워크 서비스 품질관리 솔루션 184백만원

ㅇ 2026년도 예산 및 2027년도 예산안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6년 본예산		2027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82	○ **자산취득비(430-01) : 182,028천원** ・ 제머나이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123,420천원 : 20,570×6=123,420 ・ 관제(Polestar) 14,850천원 : 2,475×6=14,850

2026년 본예산		2027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 서버보안(Redcastle) 23,100천원 : 3,850×6=23,100 ・ 취약점진단(SecureguardSSE) 16,302천원 : 2,717×6=16,302 ・ PW관리(Secureguard P.M) 4,356천원 : 726×6=4,356
		292	○ **자산취득비(430-01) : 291,580천원** ・ Juniper networks, (TW)EX9200-40XS, Line card 52,380천원 : 26,190×2=52,380 ・ Juniper networks, (US)SFPP-10G-SR-C, 모듈 55,200천원 : 690×80=55,200 ・ NET-Insider V1.1, Q20K(20Gps) 184,000천원 : 92,000×2=184,000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3~2027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3	2024	2025	2026	2027	2027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형사사법포털 온라인 서비스 이용량 (횟수)	목표	7.0	7.7	-	-	-			
	실적	7.8	7.9	-	-	-			
	달성도	111.4	102.6	-	-	-			
형사사법정보 시스템 연계* (백만건)	목표	-	-	590.0	684.9	-	※ '26년 산출근거 - 3년간('23~'25) 연계시스템을 통해 처리된 평균값(665,015,575건)을 기준으로, 차세대 KICS 안정화 및 연계 활성화를 고려하여 3% 상향 설정	- 측정방법 : 연계시스템 로그를 기반으로 송신된 데이터의 인터페이스ID 별 발생 건수 산출 - 측정산식 : '26.년 연계시스템을 통해 처리된 트래픽 건수의 합계	형사사법공통시스템 운영단 연계시스템 로그 자료
	실적	-	-	788.1	-	-			
	달성도	-	-	133.6	-	-			

*(**전자정부 성과관리 고유지표 활용**) 2025년 차세대 KICS 시스템의 형사절차 완전 전자화 전면 시행에 맞춰 2025년부터 신규 성과지표 산출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3	-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구축 2차년도 종료 및 3차년도 사업 수행
2024	-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구축 완료
2025	-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운영 유지·관리 - 전송형 전자영장 집행시스템 ISMP 수립 - 형사사법절차 완전 전자화
2026	-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운영 유지·관리 - 전송형 전자영장 집행시스템 구축 중

③ 향후(2027년도 이후) 기대효과

- (정성적 기대효과)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실현으로 형사사법업무 전반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형사사법절차의 투명성과 사건 관계인의 방어권 보장에 기여, ▲첨단 IT 기술 활용으로 비대면 수사여건 조성 및 사건 관계인의 온라인 업무 처리를 확대하여 국민 편익 증진

- (정량적 기대효과) 형사사법절차 완전 전자화 및 첨단 IT 기술을 활용한 대국민 형사사법서비스 혁신을 통해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구축 후 10년간 총 3조 3천억 원의 사회적 비용 절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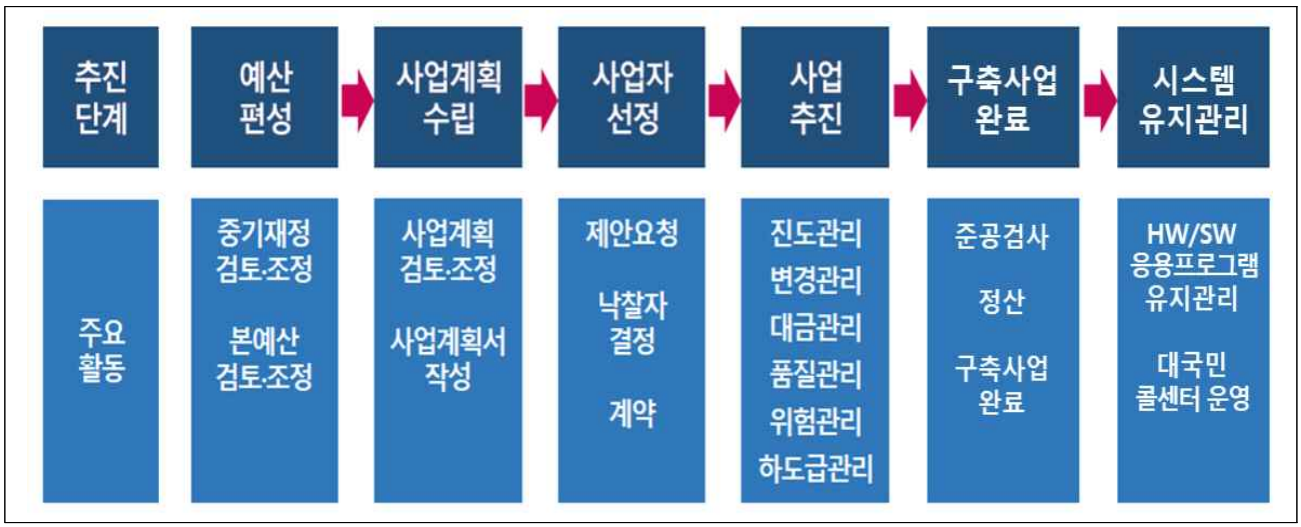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예비타당성조사 정보

구분	조사기관	조사기간	조사결과 및 진행상황
예비타당성조사	KDI (한국조세재정연구원)	'19. 4. ~ '20. 7.	(결과) B/C 1.39, AHP 0.654 (특이사항)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25~2029	20,662	47,917	27,680	27,680	27,680	
2026~2030		47,917	27,680	32,195	32,195	32,195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국회(상임위 등)	지적사항	비고
'25회계연도 결산 법사위 예비심사검토보고서 ('26.08.)	① 국회 미심사 신규사업 실시를 위한 예산전용 주의 필요	

2) 감사원 감사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 해당없음

3) 자체평가·감사 : 해당없음

4)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 해당없음

5)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해당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형사사법업무 혁신) 수사부터 재판, 집행에 이르는 형사사법절차 전반을 전자화하여 사건처리 절차의 신속성·투명성 증대
- (대국민 서비스 혁신) 원격화상조사, 전자적 기록 열람·출력 등 온라인 민원 서비스 확대를 위한 국민 중심의 형사사법포털 구축
- (미래지향 IT구조 개편) 최신 기술(클라우드, 빅데이터, 음성인식, 모바일 등) 기반의 시스템 구축으로 효율성 및 보안성 확보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2) 동 사업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 : 해당없음

13) 2026년도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 결과 및 후속 조치 현황

평가결과	성과평가 주요내용	조치결과
사업개선	- 사업추진 필요성, 재정투입 필요성, 사업 고유성, 안정적 집행 등은 인정 - 국정과제와 연계성 및 지원 규모 적정성에 대한 계량적 자료 부족	- 성과지표 및 목표치 재설정 * 기관 간 형사사법정보 연계 건수 · 운영단 연계시스템 로그 기반으로 송신된 데이터의 인터페이스 ID 별 발생 건수 · 목표치 : 684,900,000건 (※ 직전 3년간 평균값 기준 3% 상향 설정)

14) 부처 건의사항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3	48,509	-	48,509	-	-	-	48,509	48,384	99.7	99.7	-	125
2024	29,722	-	29,722	-	-	-	29,722	29,697	99.9	99.9	-	25
2025	20,751	-	20,751	-	-	-	20,751	20,662	99.6	99.6	-	89
2026	47,917	-	47,917	-	-	-	47,917	14,302	29.8	29.8	-	-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 해당없음

2) 주요 결산사항

□ 2023~2026년 결산사항

2023	- 불용 : 정보화사업 낙찰차액 29백만원 및 집행잔액 96백만원
2024	- 불용 : 정보화사업 낙찰차액 1백만원 및 집행잔액 24백만원
2025	- 전용 :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의 관리용역비 300백만원을 전송형 전자영장 집행시스템 구축 ISMP 사업을 위한 일반연구비로 전용 - 불용 : 정보화사업 낙찰차액 8백만원 및 집행잔액 81백만원
2026	- 해당없음

□ 2026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

□ 2026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 해당없음

사 업 명
기타 법무시설 개보수 및 확충 (7039-3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	16	기획조정실	0	020	022
명칭	일반회계	법무부	시설담당관실		공공질서 및 안전	법무 및 검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39	300
명칭	법무및검찰행정지원	기타법무시설조성	기타법무시설개보수및확충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6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기타 법무시설 개보수 및 확충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기획조정실	강동헌	오현우	김태연
		시설담당관실	02-2110-3120	02-2110-3116	02-2110-3126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년 결산	2026년 예산		2027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요구안	조정안(B)		(B-A)/A
기타 법무시설 개보수 및 확충	7,114	5,101	5,101	5,923	5,923	822	16.1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25					2026(2026.7월말)							2027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4,141	4,141	4,021	-	120	5,101	5,101	2,055	5,101	2,055	-	100	5,923
· 검찰 노후관사 개보수	200	200	199	-	1	160	160	149	160	149	-	-	157
· 수용동 리모델링	733	733	715	-	18	733	733	439	733	439	-	10	733
· 수용거실 스프링클러 설치	1,385	1,385	1,340	-	45	1,385	1,385	128	1,385	128	-	40	1,385
· 기타 법무시설 소규모 개보수	1,823	1,823	1,767	-	56	1,823	1,823	725	1,823	725	-	50	1,913
· 인권친화 환경조성	-	-	-	-	-	1,000	1,000	614	1,000	614	-	-	1,000
· 민간투자사업 적격성 검토	-	-	-	-	-	-	-	-	-	-	-	-	635
· 법무시설 기준 관련 연구	-	-	-	-	-	-	-	-	-	-	-	-	100
○ 비목별 분류(합계)	4,141	4,141	4,021	-	120	5,101	5,101	2,055	5,101	2,055	-	100	5,923
· 일반연구비 (260-01)	-	-	-	-	-	-	-	-	-	-	-	-	420
· 민간위탁사업비 (320-02)	-	-	-	-	-	-	-	-	-	-	-	-	315
· 기본조사설계비 (420-01)	-	-	-	-	-	-	-	-	-	-	-	-	-
· 실시설계비 (420-02)	138	138	92	-	46	138	138	31	138	31	-	-	138
· 공사비(420-03)	3,972	3,972	3,913	-	59	4,932	4,932	2,024	4,932	2,024	-	100	5,019
· 감리비(420-04)	26	26	16	-	10	26	26	-	26	-	-	-	26
· 시설부대비(420-05)	5	5	-	-	5	5	5	-	5	-	-	-	5

	2025					2026(2026.7월말)							2027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4,141	4,141	4,021	-	120	5,101	5,101	149	5,101	149	-	100	5,923
· 검찰노후관사 개보수	200	200	199	-	1	160	160	149	160	149	-	-	157
- 기본조사설계비 (420-01)	-	-	-	-	-	-	-	-	-	-	-	-	-
- 실시설계비(420-02)	-	-	-	-	-	-	-	-	-	-	-	-	-
- 공사비(420-03)	200	200	199	-	1	160	160	149	160	149	-	-	157
- 감리비(420-04)	-	-	-	-	-	-	-	-	-	-	-	-	-
- 시설부대비 (420-05)	-	-	-	-	-	-	-	-	-	-	-	-	-
· 수용동 리모델링	733	733	715	-	18	733	733	439	733	439	-	10	733
- 기본조사설계비 (420-01)	-	-	-	-	-	-	-	-	-	-	-	-	-
- 실시설계비(420-02)	46	46	40	-	6	46	46	23	46	23	-	-	46
- 공사비(420-03)	687	687	675	-	12	687	687	416	687	416	-	10	687
- 감리비(420-04)	-	-	-	-	-	-	-	-	-	-	-	-	-
- 시설부대비 (420-05)	-	-	-	-	-	-	-	-	-	-	-	-	-
· 수용거실 스프링클러 설치	1,385	1,385	1,340	-	45	1,385	1,385	128	1,385	128	-	40	1,385
- 기본조사설계비 (420-01)	-	-	-	-	-	-	-	-	-	-	-	-	-
- 실시설계비(420-02)	52	52	52	-	-	52	52	8	52	8	-	-	52
- 공사비(420-03)	1,307	1,307	1,272	-	35	1,307	1,307	120	1,307	120	-	40	1,307
- 감리비(420-04)	26	26	16	-	10	26	26	-	26	-	-	-	26
- 시설부대비 (420-05)	-	-	-	-	-	-	-	-	-	-	-	-	-
· 기타 법무시설 소규모 개보수	1,823	1,823	1,767	-	56	1,823	1,823	725	1,823	725	-	50	1,913
- 기본조사설계비 (420-01)	-	-	-	-	-	-	-	-	-	-	-	-	-
- 실시설계비(420-02)	40	40	-	-	40	40	40	-	40	-	-	-	40
- 공사비(420-03)	1,778	1,778	1,767	-	11	1,778	1,778	725	1,778	725	-	50	1,868
- 감리비(420-04)	-	-	-	-	-	-	-	-	-	-	-	-	-
- 시설부대비 (420-05)	5	5	-	-	5	5	5	-	5	-	-	-	5
· 인권친화 환경조성	-	-	-	-	-	1,000	1,000	614	1,000	614	-	-	1,000
- 기본조사설계비 (420-01)	-	-	-	-	-	-	-	-	-	-	-	-	-
- 실시설계비(420-02)	-	-	-	-	-	-	-	-	-	-	-	-	-
- 공사비(420-03)	-	-	-	-	-	1,000	1,000	614	1,000	614	-	-	1,000
- 감리비(420-04)	-	-	-	-	-	-	-	-	-	-	-	-	-
- 시설부대비 (420-05)	-	-	-	-	-	-	-	-	-	-	-	-	-
· 민간투자사업 적격성 검토	-	-	-	-	-	-	-	-	-	-	-	-	635

	2025					2026(2026.7월말)							2027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일 반 연 구 비 (260-01)	-	-	-	-	-	-	-	-	-	-	-	-	320
-민간위탁사업비 (320-02)	-	-	-	-	-	-	-	-	-	-	-	-	315
· 법무시설 기준 관련 연구	-	-	-	-	-	-	-	-	-	-	-	-	100
- 일 반 연 구 비 (260-01)	-	-	-	-	-	-	-	-	-	-	-	-	10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기타법무시설개보수및확충) 노후하고 협소한 법무시설 개보수 및 확충을 통해 법무시설 안전 관리 강화, 부족한 사무공간 확보 및 수용시설 환경개선으로 대국민 법무행정서비스 만족도 제고
- (검찰 노후관사 개보수) 열악한 관사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직원 복지 향상
- (수용동 리모델링) 노후 교정시설 수용거실 난방비 과다발생 해소 및 수용자 생활여건 향상
- (수용거실 스프링클러 설치) 교정시설 내 화재발생 등 유사 시 대형사고 예방
- (기타 법무시설 소규모 개보수) 태풍·홍수·폭설 등 각종 재해 복구 및 노후시설 보완
- (인권친화 환경개선) 여성 수유실 설치 및 성별 휴게실, 화장실 등 분리 설치를 통한 근무환경 개선 및 방문인 만족도 제고
- (민간투자사업 적격성 검토) 교정시설 과밀수용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전문기관(PIMAC, EDUMAC 등) 지급 용역비 및 수수료
- (법무시설 기준 관련 연구) 교정시설 과밀수용 해소 등 국가 정책 추진을 뒷받침하는 시설 기준 규칙 정비, 설계 표준화 등 연구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국가재정법 제7조(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

② 추진경위

- 2012년 일반회계의 법무시설조성사업(1700) 예산이 '신·증축사업'은 국유재산관리기금으로, '개보수 및 확충 사업'은 일반회계로 분리되어 편성됨

- 2017년부터 '본부 대회의실 및 세미나실 등 환경개선을 위한 예산'을 본 사업에 통합 편성(2019년부터 사업코드 7039-300 변경)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2013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3	2024	2025	2026	2027(안)
사업비	22,360	10,843	4,141	5,101	5,923

- 기타: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법무부
- 사업 수혜자 : 직원 및 법무시설 이용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7년도 예산 산출 근거

□ **기타 법무시설 개보수 및 확충**

: (2026 본예산) 5,101백만원 → (2027 예산안) 5,923백만원, 822백만원 증액

ㅇ 2026년도 예산 및 2027년도 예산안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6년 본예산		2027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5,101	○ **검찰노후관사 개보수 160백만원** 가. 공사비(420-03) - 노후관사 개보수 10채 X 16백만원 ○ **수용동 리모델링 733백만원** 가. 실시설계비(420-02) 46백만원 - 1,464㎡×31천원/㎡ (공사비 적용한 직선보간법에 의한 산출) 나. 공사비(420-03) 687백만원 - 연면적 1,464㎡×470천원/㎡ ○ **수용거실 스프링클러 설치 1,385백만원** 가. 실시설계비(420-02) 52백만원 - (5,228㎡×9,946원=52백만원) 공사비 적용한 직선보간법에 의한 산출 나. 공사비(420-03) 1,307백만원 - 수용거실 면적 5,228㎡×250천원/㎡ 다. 감리비(420-04) 26백만원 - 공사비를 적용한 직선보간법에 의한 산출 ○ **기타 법무시설 소규모 개보수 1,823백만원** 가. 실시설계비(420-02) 40백만원 - 공사비 적용한 직선보간법에 의한 산출 나. 공사비(420-03) 1,778백만원 - 50개 기관 X 35.56백만원(최근 3년 평균) 다. 시설부대비(420-05) 5백만원 - 5개 기관 X 1백만원 ○ **인권친화 환경조성 : 1,000백만원** 가. 공사비(420-03) 1,000백만원 - 여성 수유실 설치 20개소 X 20백만원 = 400백만원 - 성별 휴게실 및 화장실 분리 12개소 X 50백만원 = 600백만원	5,923	○ **검찰노후관사 개보수 157백만원 (△3백만원)** 가. 공사비(420-03) - 노후관사 개보수 10채 X 15.7백만원 ○ **수용동 리모델링 733백만원 (전년동)** 가. 실시설계비(420-02) 46백만원 - 1,464㎡×31천원/㎡ (공사비 적용한 직선보간법에 의한 산출) 나. 공사비(420-03) 687백만원 - 연면적 1,464㎡×470천원/㎡ ○ **수용거실 스프링클러 설치 1,385백만원 (전년동)** 가. 실시설계비(420-02) 52백만원 - (5,228㎡×9,946원=52백만원) 공사비 적용한 직선보간법에 의한 산출 나. 공사비(420-03) 1,307백만원 - 수용거실 면적 5,228㎡×250천원/㎡ 다. 감리비(420-04) 26백만원 - 공사비를 적용한 직선보간법에 의한 산출 ○ **기타 법무시설 소규모 개보수 1,913백만원 (+90백만원)** 가. 실시설계비(420-02) 40백만원 - 공사비 적용한 직선보간법에 의한 산출 나. 공사비(420-03) 1,868백만원 - 50개 기관 X 37.36백만원(최근 3년 평균) 다. 시설부대비(420-05) 5백만원 - 5개 기관 X 1백만원 ○ **인권친화 환경조성 +1,000백만원 (전년동)** 가. 공사비(420-03) 1,000백만원 - 여성 수유실 설치 20개소 X 20백만원 = 400백만원 - 성별 휴게실 및 화장실 분리 12개소 X 50백만원 = 600백만원 ○ **민간투자사업 적격성 검토 635백만원 (+635백만원)** 가. 일반연구비(260-01) 320백만원 - 4개 사업 × 80백만원 = 320백만원(전문기관 용역비) 나. 민간위탁사업비(320-02) 315백만원(전문기관 수수료) - 3개 사업 × 105백만원 = 315백만원 ※ PIMAC, EDUMAC 용역, 수수료 단가표 기준 산출 ○ **법무시설 기준 관련 연구 100백만원 (+100백만원)** 가. 일반연구비(260-01) 100백만원 -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내 학술연구용역비인건비 기준단가 사용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3~2027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없음

※ '18년부터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에서 제외됨(성과관리 대상사업 간소화 및 내실화)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3	○ 검찰 노후관사 개·보수 등 9개 사업 추진
2024	○ 검찰 노후관사 개·보수 등 9개 사업 추진
2025	○ 검찰 노후관사 개·보수 등 6개 사업 추진
2026	○ 검찰 노후관사 개·보수 등 5개 사업 추진

③ 향후(2027년도 이후) 기대효과

- 청사 노후시설 개보수를 통한 법무시설 안전 관리
- 민원인, 법무시설 이용자 등의 이용 만족도 제도를 통한 대국민 서비스 향상
- 열악한 관사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직원 복지 향상
- 노후 교정시설 수용거실 난방비 과다발생 해소 및 수용자 생활여건 향상
- 교정시설 내 화재발생 등 유사시 대형사고 예방
- 태풍·홍수·폭설 등 각종 재해 복구 및 노후시설 응급 대비
- 노후시설 개선을 통한 인권보호 및 처우 향상
- 외부훼손 심한 노후시설 개선으로 지역주민 민원 발생 해소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계획수립 → 발주/계약 → 설계/공사 → 완료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25~2029	4,100	5,100	3,900	3,800	3,700	
2026~2030		5,100	5,100	7,200	10,000	12,600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서울소년원 리모델링 관련 사업기간 및 연도별 예산 편성을 합리적으로 조정 필요('24. 상임위)
2) 감사원 지적 : 해당없음

3) 기타 언론 및 민원 : 해당없음

4)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23결산 당시 지적사항에 대해 향후 예산 편성 및 사업기간 산정시, 「국가재정법」상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과 예산 편성지침을 준수하겠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국정과제 및 정부 방침에 맞게 노후 시설이 다수 존재하는 법무 및 교정시설 개보수를 통한 안전관리 강화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 없음

12) 동 사업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 해당 없음

13) 2026년도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 결과 및 후속 조치 현황 : 해당 없음

14) 부처 건의사항 : 해당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3	22,360	-	22,360	2,869	-	-	25,229	21,179	94.7	83.9	2,997	1,052
2024	10,843	-	10,843	2,997	-	-	13,840	8,874	81.8	64.1	3,175	1,791
2025	4,141	-	4,141	3,175	-	-	7,316	7,114	171.8	97.2	-	202
2026	5,101	-	5,101	-	-	-	5,101	2,055	40.2	40.2	-	100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 해당 없음

2) 주요 결산사항

□ 2023~2026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3	-
2024	- 서울소년원 리모델링 관련 사업기간 및 연도별 예산 편성을 합리적으로 조정 필요
2025	-
2026	-

□ 2026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 없음

□ 2026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 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 해당사항 없음

사 업 명
법무부 기록관 운영 (7039-30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법무부	운영지원과	-	020	022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39	302
명칭	법무및검찰행정지원	기타법무시설조성	법무부 기록관 운영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6예산 시 소관
	O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법무부 기록관 운영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운영지원과	조상민	임진수 기록연구관	김지현
		운영지원과	02-2110-3011	02-2113-9602	02-2113-9607
	사업시행주체	-	-	-	-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년 결산	2026년 예산		2027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요구안	조정안(B)		(B-A)/A
법무부 기록관 운영	5,348	4,797	4,797	5,956	5,219	422	8.8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25					2026(2026.7월말)							2027 예산안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5,566	5,566	5,348	-	218	4,797	4,797	2,862	2,862	2,862	-	-	5,219
· 법무부 기록관 운영	5,566	5,566	5,348	-	218	4,797	4,797	2,862	2,862	2,862	-	-	5,219
○ 비목별 분류(합계)	5,566	5,566	5,348	-	218	4,797	4,797	2,862	2,862	2,862	-	-	5,219
· 상용임금(110-03)	309	309	288	-	21	351	351	193	193	193	-	-	425
· 일반수용비(210-01)	684	684	584	-	100	724	724	224	224	224	-	-	724
· 공공요금및제세(210-02)	834	834	775	-	59	834	834	472	472	472	-	-	1,029
· 피복비(210-03)	2	2	2	-	-	2	2	1	1	1	-	-	2
· 시설장비유지비(210-09)	149	149	149	-	-	149	149	113	113	113	-	-	149
· 복리후생비(210-12)	4	4	4	-	1	5	5	5	5	5	-	-	6
· 일반용역비(210-14)	2,640	2,640	2,614	-	26	2,640	2,640	1,820	1,820	1,820	-	-	2,640
· 관리용역비(210-15)	22	22	19	-	3	22	22	12	12	12	-	-	90
· 고용부담금(320-09)	61	61	53	-	8	70	70	22	22	22	-	-	86
· 자산취득비(430-01)	860	860	860	-	-	-	-	-	-	-	-	-	68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기록관 운영) 기록관 내 시설 유지·관리, 기록물 보존처리를 위한 물품·용역비
- (공무직 운영) 법무부 기록관 시설관리, 방호, 청소 등을 위한 공무직 인건비
- (보존관리장비 도입) 기록관 시설물 및 기록물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장비 증설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② 추진경위

- 2015. 3. 법무부 기록물 일체 이관 보류 통보(국가기록원)
- 2015. 5. 법무부 기록관 설립 기본계획 수립
- 2017. 3. 행정안전부 청사수급계획(18,031㎡) 반영
- 2017. 3. 보호 및 출입국 등 주요 기록물 자체 보관 지정(국가기록원)
- 2018. 7. 비축부동산(신축부지) 관리전환(기획재정부→법무부)
- 2018. 8. 기록관 신축 설계용역(기본 및 실시) 사업 추진
- 2020. 12. 신축공사 착공
- 2024. 1. 법무부 기록관 준공
- 2024. 3. 운영팀 입주
- 2024. 11. 법무부 기록관 개관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23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3	2024	2025	2026	2027(안)
사업비	4,730	7,626	5,566	4,797	5,219

- 기타: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법무부
- 사업 수혜자 : 법무부 본부 및 소속기관, 일반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3) 2027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

① 법무부 기록관 운영

: (2026 본예산) 4,797백만원 → (2027 요구) 5,219백만원, 422백만원 증액

- (요구) 법무부 기록관 운영에 필요한 비용, 공무직 인건비, 보존장비 도입비 등
- (산출) 기록관 운영 4,632백만원
  공무직 운영 519백만원
  보존관리장비 도입 68백만원

ㅇ 2026년도 예산 및 2027년도 예산안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6년 본예산		2027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4,797	○ **상용임금(110-03) : 350,861천원** ・ 공무직 기본급 등 : 2,924천원 × 10명 × 12개월= 350,861천원 ○ **운영비(210) : 4,376,668천원** 가. 일반수용비(210-01) : 724,000천원 ・ 보존용품 구입비 : 44,000천원 × 12개월 = 528,000천원 ・ 기타운영비 등 : 16,333,천원 × 12개월 = 196,000천원 나. 공공요금및제세(210-02) : 834,000천원 ・ 전기, 가스, 난방, 통신, 화재보험 등 : 69,500천원 × 12월 = 834,000천원 다. 피복비(210-03) : 2,240천원 ・ 시설관리 등 공무직 피복비 : 8명 × 14만원 × 2회 = 2,240천원 라. 시설장비유지비(210-09) : 149,000천원 ・ 보존시설 및 장비 등 유지비 : 18,031㎡ × 8,300원 = 149,000천원 마. 복리후생비(210-12) : 5,000천원 ・ 공무직 맞춤형 복지 : 500천원 × 10명 = 5,000천원 바. 일반용역비(210-14) : 2,640,000천원 ・ 이관, DB화 등 외주용역 : 6,600원 × 400,000권 = 2,640,000천원 사. 관리용역비(210-15) : 22,000천원 ・ 청사 유지관리 및 보안 관리 등 : 1,833천원 × 12월 = 22,000천원 ○ **고용부담금(320-09) : 69,471천원** ・ 공무직 고용부담금 : 6,947천원 × 10명 = 69,471천원	5,219	○ **상용임금(110-03) : 425,269천원** ・ 공무직 기본급 등 : (3,271천원 × 10명 × 12개월) + (3,271천원 × 1명 × 10개월)= 425,269천원 ○ **운영비(210) : 4,641,020천원** 가. 일반수용비(210-01) : 724,000천원 ・ 보존용품 구입비 : 400,000권× 1,185원 = 474,000천원 ・ 기타운영비 등 : 20,833천원 × 12개월 = 250,000천원 나. 공공요금및제세(210-02) : 1,029,000천원 ・ 전기, 가스, 난방, 통신, 화재보험 및 민간클라우드서비스 등 : 85,833천원 × 12월 = 1,029,000천원 다. 피복비(210-03) : 2,520천원 ・ 시설관리 등 공무직 피복비 : 9명 × 14만원 × 2회 = 2,520천원 라. 시설장비유지비(210-09) : 149,000천원 ・ 보존시설 및 장비 등 유지비 : 18,031㎡ × 8,300원 = 149,000천원 마. 복리후생비(210-12) : 6,500천원 ・ 공무직 맞춤형 복지 : (600천원 × 10명) + (600천원 × 1명 × 10/12개월) = 6,500천원 바. 일반용역비(210-14) : 2,640,000천원 ・ 이관, DB화 등 외주용역 : 6,600원 × 400,000권 = 2,640,000천원 사. 관리용역비(210-15) : 90,000천원 ・ 청사 유지관리 및 보안 관리 등 : 7,500천원 × 12월 = 90,000천원 ○ **고용부담금(320-09) : 85,522천원** ・ 공무직 고용부담금 : 425,269천원 × 20.11%명 = 85,522천원 ○ **자산취득비(430-01) : 68,000천원** ・CCTV : 50개 × 1,300천원 = 64,000천원 ・백업테이프 : 20개 × 220천원 = 4,000천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3~2027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3	○ 기록물 정리 및 이관 사업 수행 - 비전자기록물 보유현황 전수조사 : 163기관, 6,229,850권(현장조사 총 40회) - 행정박물 전수조사 및 이관대상 선별 : 조사수량 6,810점, 이관선별 150점 - 기록물 정리(목록화) : 8,052박스, 112,769권 - 기록물 보존서고 기록물 기록관 이송 결과 : 35,876박스, 960,335권 ○ 기록관 보존장비 도입(1~3차) - 기록물 등록·분류 기자재, 시청각 보존 및 변환작업 기자재, 기록물 디지털 변환 기자재 등 기록물 보존처리를 위한 기기 도입 ○ 법무부 기록관 내 전시실 조성 등
2024	○ 기록물 정리 및 이관 사업 수행 - 정리 및 이관 : 20개 기관, 종이기록물 496,703권, M/F 30,000건 - 분류 및 정리 : 1,019,576권(기록관 609,780권, 소속기관 409,796권) - 전자화 변환 : 종이 314,552면, 시청각 5,242건, 행정박물 67점, 도면류 227면 - 현장조사 : 현장방문 5개 기관, 자체 조사 35개 기관 ○ 기록관 보존장비 도입 - 이동식서가, 기록물 디지털 변환 기자재 등 보존처리를 위한 장비 도입
2025	○ 기록물 정리 및 이관 사업 수행 - 사전조사 및 기록물 이관 : 77개 기관, 종이기록물 864,815권 - 분류 및 정리 : 49,866권 - 전자화 변환 : 종이 250,000면 ○ 기록관 보존장비 도입 - 이동식서가, 특수공기살균기자재 등 보존처리를 위한 장비 도입
2026	○ 기록물 정리 및 수집 사업 수행 - 분류 및 정리 : 362,006권 - 전자화 변환 : 종이 101,873면, 마이크로필름 96,142면 - 정수점검 : 348,863면 - 마이크로필름 촬영 : 44,034면 - 기록물 수집 : 9개 기관, 행정박물 등 1,190건

③ 향후(2027년도 이후) 기대효과

- 전문화된 장기 보존관리 체계 구축 및 비전자기록물의 전자화 기반 마련으로 지속 가능한 기록관 운영 및 주요 법무 기록물의 안정성 확보
- 국가적·사회적 활용가치가 높은 주요 법무 기록의 적극적 활용 및 선제적 서비스를 통해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소통하는 투명한 법무부' 구현

- 법무 및 국가 소송, 국가 인권정책, 인권침해 예방, 사회적 약자의 권익 증진 등 국민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무 정책에 관한 기록물의 체계적 관리 및 적극적 제공으로 '국민 중심의 서비스' 구현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추진절차	시행주체	절차내용
① 사업 계획 수립	법무부	보존장비, 보존용품 및 이관 용역 등 규격서 작성
⇩		
② 조달요청 접수	조달청	조달요청 접수
⇩		
③ 규격검토 및 예가산정	조달청	사전규격 공개 및 의견수렴
⇩		
④ 입찰공고	조달청	나라장터에 사업입찰공고 등록
⇩		
④ 입찰	조달청	사업자 대상 입찰 진행
⇩		
⑤ 낙찰자선정 및 계약체결	조달청	기술·규격평가 등을 통하여 낙찰자 선정 및 전자계약 체결
⇩		
⑥ 계약이행	조달청	보존장비, 보존용품 납품·시공·설치, 이관 용역 완수
⇩		
⑦ 검사/검수 및 인수	법무부	보존장비 납품내역, 이관용역 완수내역 검사/검수
⇩		
⑧ 계약종결	조달청	대금지불 및 대금납입고지, 수납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25~2029	5,566	4,797	4,471	4,377	4,235	
2026~2030		4,797	5,735	4,824	4,968	5,117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국회(상임위 등)	지적사항
▪ '25년 국회 법사위 예산 검토보고서	▪ 타 예산을 여유재원으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예산을 통합·관리 필요

2) 감사원 감사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 해당없음

3) 자체평가·감사 : 해당없음

4)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 해당없음

5)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지적사항	후속 조치사항
▪ 타 예산을 여유재원으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예산을 통합·관리 필요('25년 법사위 예산 검토보고서)	▪ '27년 예산안에 법무부 기록관 운영비 목적으로 집행되는 '기관운영 기본경비' 일부를 법무부 기록관 사업비로 편성 요구(일반수용비, 관리용역비)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장기 보존대상 기록물의 체계적 관리 및 보존, 활용 등을 통해 법무행정 및 법 집행 주요 기록물의 안전성 확보에 노력 등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2) 동 사업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 : 해당없음

13) 2026년도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 결과 및 후속 조치 현황 : 해당없음

14) 부처 건의사항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3	4,730	-	4,730	-	-	-	4,730	4,459	94.3	94.3	234	37
2024	7,626	-	7,626	234	-	-	7,860	7,151	93.8	91.0	-	709
2025	5,566	-	5,566	-	-	-	5,566	5,348	96.1	96.1	-	218
2026	4,797	-	4,797	-	-	-	4,797	2,862	59.7	59.7	-	-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 해당없음

2) 주요 결산사항

□ 2023~2026년 결산사항

2023	- 이월 사유 및 불용 사유(집행부진사유) · 계약완료('24. 1.) 이후 잔금 및 수수료 집행 예정에 따라 234백만원 이월 · 낙찰차액 발생 등에 따라 37백만원 불용
2024	- 불용 사유(집행부진사유) · 법무부 기록관 개관 초기로 인한 공공요금 등 집행잔액 709백만원 불용
2025	- 불용 사유(집행부진사유) · 일반용역비 낙찰차액 및 공공요금 등 집행잔액 218백만원 불용
2026	- 해당없음

□ 2026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

□ 2026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 해당없음

Ⅲ. 교도작업특별회계

1. 총 괄

2. 세 입

3. 세 출

Ⅲ. 교도작업특별회계

1. 총 괄

가. 2027년도 교도작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결산	2026예산		2027예산안		증 감	
		본예산(A)	추경예산	요구	조정(B)	(B-A)	%
총 계	**123,680**	**130,284**	**130,284**	**131,048**	**131,031**	**747**	**0.6**
총수입	**123,680**	**130,284**	**130,284**	**131,048**	**131,031**	**747**	**0.6**
54 재산수입	**2**	**-**	**-**	**-**	**-**	**-**	**-**
기타재산이자수입 (54-546)	2	-	-	-	-	-	-
59 경상이전수입	**103**	**103**	**103**	**103**	**103**	**-**	**-**
설비부담금 (59-595)	17	-	-	-	-	-	-
기타경상이전수입 (59-596)	103	103	103	103	103	-	-
63 교도소수입	**64,343**	**67,118**	**67,118**	**67,135**	**67,118**	**-**	**-**
교도소수입 (63-631)	64,343	67,118	67,118	67,135	67,118	-	-
69 잡수입	**100**	**100**	**100**	**100**	**100**	**-**	**-**
기타 잡수입 (69-691)	100	100	100	100	100	-	-
89 세계잉여금	**9,388**	**11,168**	**11,168**	**10,828**	**10,828**	**△340**	**△3.0**
전년도세계잉여금 (89-893)	9,388	11,168	11,168	**10,828**	**10,828**	**△340**	△3.0
92 예탁원금회수	**47,000**	**49,500**	**49,500**	**50,000**	**50,000**	**500**	**1.0**
기금예탁원금회수 (92-923)	47,000	49,500	49,500	50,000	50,000	500	1.0
95 예탁이자수입	**2,746**	**2,295**	**2,295**	**2,882**	**2,882**	**587**	**25.6**
기금예탁이자수입 (95-953)	2,746	2,295	2,295	2,882	2,882	587	25.6

나. 2027년도 교도작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총괄표

구분	2025결산	2026예산		2027예산안		증 감	
		본예산(A)	추경예산	요구	조정(B)	(B-A)	%
총 계	**123,680**	**130,284**	**130,284**	**131,048**	**131,031**	**747**	**0.6**
총지출	**123,680**	**130,284**	**130,284**	**131,048**	**131,031**	**747**	**0.6**
교정활동	**70,401**	**77,723**	**77,723**	**81,996**	**81,996**	**4,273**	**5.5**
1535 교도작업운영 및 직업훈련	**70,401**	**77,723**	**77,723**	**81,996**	**81,996**	**4,273**	**5.5**
교도작업 (1535-300)	62,105	65,004	65,004	68,685	68,685	3,681	5.7
직업훈련 (1535-301)	4,399	5,149	5,149	4,938	4,938	△211	△4.1
시설보완 (1535-302)	3,897	7,570	7,570	8,373	8,373	803	10.6
법무및검찰행정지원	**652**	**652**	**652**	**678**	**661**	9	1.4
7012 본부기본경비	**444**	**444**	**444**	**462**	**445**	**1**	**0.2**
교특회계관리 기본경비 (7012-250)	444	444	444	462	445	1	0.2
7019 교도작업운영 기본경비	**208**	**208**	**208**	**216**	**216**	**8**	**3.8**
교도작업운영 기본경비 (7019-250)	208	208	208	216	216	8	3.8
회계기금간거래	**52,627**	**51,909**	**51,909**	**48,374**	**48,374**	**△3,535**	**△6.8**
8910 공공자금예탁	**52,627**	**51,909**	**51,909**	**48,374**	**48,374**	**△3,535**	**△6.8**
공공자금 관리기금예탁 (8910-890)	52,627	51,909	51,909	48,374	48,374	**△3,535**	**△6.8**

2. 세 입

기타재산이자수입
54 - 546

(단위: 백만원, %)

목명	2025년 결산액	2026년		2027년		증감	
		본예산(A)	추경	요구안	조정안(B)	(B-A)	(B-A)/A
기타재산이자수입	2	1	1	-	-	-	-

가. 법적 근거

○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제9조(특별회계의 세입·세출) 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도작업으로 생산된 제품 및 서비스의 판매, 그 밖에 교도작업에 부수되는 수입금
2. 제10조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제11조에 따른 차입금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73조(작업수입 등) ① 작업수입은 국고수입으로 한다.

나. 세입 개요

○ 기타 정부의 재산, 금융자산, 무형자산의 소유로 인한 수입

다. 2027년 세입예산안 내역 : 해당 없음

라.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수납률 (C/A)	수납률 (C/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본예산	추경(A)							
2023	-	-	-	2	2	-	100.0	-	-
2024	-	-	-	2	2	-	100.0	-	-
2025	-	-	-	2	2	-	100.0	-	-
2026	-	-	-	1	1	-	100.0	-	-
2027(안)	-	-	-	-	-	-	-	-	-

마. 최근 3개년 간 동 세입에 대한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 해당 없음

바. 담당자 정보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교정본부	직업훈련과	허만혁	김정원	전필주
		02-2110-3403	02-2110-3406	02-2110-3408

설비부담금
59 - 595

(단위: 백만원, %)

목명	2025년 결산액	2026년		2027년		증감	
		본예산(A)	추경	요구안	조정안(B)	(B-A)	(B-A)/A
설비부담금	17	17	17	-	-	-	-

가. 법적 근거

○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제9조(특별회계의 세입·세출) 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도작업으로 생산된 제품 및 서비스의 판매, 그 밖에 교도작업에 부수되는 수입금
2. 제10조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제11조에 따른 차입금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73조(작업수입 등) ① 작업수입은 국고수입으로 한다.

나. 세입 개요

○ 위탁작업장 화재보험료

다. 2027년 세입예산안 내역 : 해당 없음

라.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수납률 (C/A)	수납률 (C/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본예산	추경(A)							
2023	-	-	-	17	17	-	100.0	-	-
2024	-	-	-	17	17	-	100.0	-	-
2025	-	-	-	17	17	-	100.0	-	-
2026	-	-	-	18	17	-	94.4	-	-
2027(안)	-	-	-	-	-	-	-	-	-

마. 최근 3개년 간 동 세입에 대한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 해당 없음

바. 담당자 정보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교정본부	직업훈련과	허만혁	김정원	전필주
		02-2110-3403	02-2110-3406	02-2110-3408

기타경상이전수입
59 - 596

(단위: 백만원, %)

목명	2025년 결산액	2026년		2027년		증감	
		본예산(A)	추경	요구안	조정안(B)	(B-A)	(B-A)/A
기타경상이전수입	159	103	103	103	103	-	-

가. 법적 근거

○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제9조(특별회계의 세입·세출)

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도작업으로 생산된 제품 및 서비스의 판매, 그 밖에 교도작업에 부수되는 수입금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73조(작업수입 등)

① 작업수입은 국고수입으로 한다.

나. 세입 개요

○ 민영교도소 반환금 등 국고금 반환금

다. 2027년 세입예산안 내역

○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단위: 천원)

연 도		금 액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2026	본예산	103,000	· 최근 3년 평균 세입실적 반영
	추경		
2027예산안		103,000	· 전년 수준 반영

라.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수납률 (C/A)	수납률 (C/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본예산	추경(A)							
2023	103	103	103	131	106	102.9	80.9	26	-
2024	103	103	103	179	153	148.5	85.4	26	-
2025	103	103	103	184	159	154.4	86.4	26	-
2026	103	103	103	187	161	156.3	86.6	26	-
2027(안)	103	103	-	-	-	-	-	-	-

마. 최근 3개년 간 동 세입에 대한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1) 국회 지적

○ 법무부는 매년 세입이 예측되는 항목들에 대하여 예산총계주의에 부합하도록 교도작업특별회계 세입에 기타경상이전수입 등의 비목을 계상할 것(법사위, 22결산)

2)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지속적인 발생 가능성이 있고 상대적으로 규모가 있는 기타경상이전수입에 대해 세입항목을 예산에 신규 반영하였음('23년)

바. 담당자 정보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교정본부	직업훈련과	허만혁	김정원	전필주
		02-2110-3403	02-2110-3406	02-2110-3408

교도소수입
63 - 631

(단위: 백만원, %)

목명	2025년 결산액	2026년		2027년		증감	
		본예산(A)	추경	요구안	조정안(B)	(B-A)	(B-A)/A
교도소수입	64,343	67,118	67,118	67,135	67,118	-	-

가. 법적 근거

○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제9조(특별회계의 세입·세출)

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도작업으로 생산된 제품 및 서비스의 판매, 그 밖에 교도작업에 부수되는 수입금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73조(작업수입 등)

① 작업수입은 국고수입으로 한다.

나. 세입 개요

○ 교도작업을 통해 생산한 제품 판매 및 위탁작업 등 용역 제공 수입

다. 2027년 세입예산안 내역

○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단위: 천원)

연 도		금 액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2026	본예산	67,118,000	· 전년 수준 반영
	추경		
2027예산안		67,118,000	· 최근 5년 수입 평균 반영

라.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수납률 (C/A)	수납률 (C/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본예산	추경(A)							
2023	64,343	64,343	64,343	68,199	67,902	105.5	105.5	297	-
2024	64,343	64,343	64,343	71,663	71,304	110.8	99.5	359	-
2025	64.343	64,343	64,343	71,625	71,464	111.1	99.8	161	-
2026	67,118	67,118	67,118	33,893	31,687	47.2	93.5	2,206	-
2027(안)	67,118	67,118	-	-	-	-	-	-	-

마. 최근 3개년 간 동 세입에 대한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 해당 없음

바. 담당자 정보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교정본부	직업훈련과	허만혁	김정원	전필주
		02-2110-3403	02-2110-3406	02-2110-3408

기타잡수입
69 - 691

(단위: 백만원, %)

목명	2025년 결산액	2026년		2027년		증감	
		본예산(A)	추경	요구안	조정안(B)	(B-A)	(B-A)/A
기타잡수입	154	100	100	100	100	-	-

가. 법적 근거

○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제9조(특별회계의 세입·세출)

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도작업으로 생산된 제품 및 서비스의 판매, 그 밖에 교도작업에 부수되는 수입금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73조(작업수입 등)

① 작업수입은 국고수입으로 한다.

나. 세입 개요

○ 작업 부산물 등 기타 재화 및 용역의 비기업적 판매에 따른 수입

다. 2027년 세입예산안 내역

○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단위: 천원)

연 도		금 액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2026	본예산	100,000	· 최근 4년간 평균 수납액 반영
	추경		
2027예산안		100,000	· 최근 4년간 평균 수납액 반영

라.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수납률 (C/A)	수납률 (C/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본예산	추경(A)							
2023	369	369	369	79	79	21.4	100.0	-	-
2024	369	369	369	154	154	41.7	100.0	-	-
2025	100	100	100	114	114	114.1	100.0	-	-
2026	100	100	100	68	68	68.0	100.0	-	-
2027(안)	100	-	-	-	-	-	-	-	-

마. 최근 3개년 간 동 세입에 대한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 해당 없음

바. 담당자 정보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교정본부	직업훈련과	허만혁	김정원	전필주
		02-2110-3403	02-2110-3406	02-2110-3408

전년도세계잉여금
89 - 893

(단위: 백만원, %)

목명	2025년 결산액	2026년		2027년		증감	
		본예산(A)	추경	요구안	조정안(B)	(B-A)	(B-A)/A
전년도세계잉여금	12,945	11,168	11,168	10,828	10,828	△340	3.0

가. 법적 근거

○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잉여금의처리) 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나. 세입 개요

○ 전년도 세계잉여금(전년도 총세입액 - 전년도 총세출액 - 이월액)

다. 2027년 세입예산안 내역

○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단위: 천원)

연 도		금 액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2026	본예산	11,168,000	· 매년 1월, 2월 사업 자금으로, 전년도 수납액 감안 반영
	추경		
2027예산안		10,828,000	· 전년도 수납액 감안 반영

예탁원금회수
92 - 923

(단위: 백만원, %)

목명	2025년 결산액	2026년		2027년		증감	
		본예산(A)	추경	요구안	조정안(B)	(B-A)	(B-A)/A
예탁원금회수	47,000	49,500	49,500	50,000	50,000	500	1.0

가. 법적 근거

○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6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정·예금·회계 또는 기금(이하 "기금등"이라 한다)의 관리자는 해당 기금 등의 설치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여유자금을 관리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1.「국고금 관리법」제34조제6항에 따른 국고금운용계정

2.「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체국예금

3. 특별회계

4.「국가재정법」제5조에 따른 기금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기금 등의 관리자에게 그 기금 등의 여유자금을 관리기금에 예탁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나. 세입 개요

○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한 원금회수 수입

다. 2027년 세입예산안 내역

○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단위: 천원)

연 도		금 액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2026	본예산	49,500,000	· 2026년 예탁금 회수액
	추경		
2027예산안		50,000,000	· 2027년 예탁금 회수액

라.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수납률 (C/A)	수납률 (C/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본예산	추경(A)							
2023	45,000	45,000	45,000	44,000	44,000	97.8	100.0	-	-
2024	46,500	46,500	46,500	46,500	46,500	100.0	100.0	-	-
2025	47,000	47,000	47,000	47,000	47,000	100.0	100.0	-	-
2026	49,500	49,500	49,500	35,000	35,000	70.7	100.0	-	-
2027(안)	50,000	-	-	-	-	-	-	-	-

마. 최근 3개년 간 동 세입에 대한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 해당 없음

바. 담당자 정보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교정본부	직업훈련과	허만혁	김정원	전필주
		02-2110-3403	02-2110-3406	02-2110-3408

예탁이자수입
95 - 953

(단위: 백만원, %)

목명	2025년 결산액	2026년		2027년		증감	
		본예산(A)	추경	요구안	조정안(B)	(B-A)	(B-A)/A
기금예탁이자수입	2,746	2,295	2,295	2,882	2,882	△587	△25.6

가. 법적 근거

○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7조(예수기간 및 이자율 등)

① 예수금의 예수기간은 1개월 이상으로 한다.

② 예수금에 대하여는 공개시장에서 시장금리로 발행되는 국·공채의 이자율 수준과 기금 등의 금융자산 운용 수익률 등을 기준으로 제10조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위원회가 정하는 이자율의 이자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금 등의 특성과 관리기금의 건전성을 고려하여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위원회에서 예수금의 이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나. 세입 개요

○ 여유자금의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에 따른 이자수입

다. 2027년 세입예산안 내역

○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단위: 천원)

연 도		금 액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2026	본예산	2,295,000	· 2025년 기준이자율, 최근 이자율 등 고려 편성
	추경		
2027예산안		2,882,000	· 국채금리 인상으로 인한 상승 편성

라.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수납률 (C/A)	수납률 (C/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본예산	추경(A)							
2023	1,824	1,824	1,824	1,593	1,593	87.3	100.0	-	-
2024	2,654	2,654	2,654	1,966	1,966	74.1	100.0	-	-
2025	2,746	2,746	2,746	1,849	1,849	67.3	100.0	-	-
2026	2,295	2,295	2,295	778	778	33.9	100.0	-	-
2027(안)	2,882	-	-	-	-	-	-	-	-

마. 최근 3개년 간 동 세입에 대한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 해당 없음

바. 담당자 정보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교정본부	직업훈련과	허만혁	김정원	전필주
		02-2110-3403	02-2110-3406	02-2110-3408

3. 세 출

사 업 명
교도작업 (1535-3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교도작업 특별회계	법무부	교정본부	0	020	022
명칭					공공질서및안정	법무및검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500	1535	300
명칭	교정활동	교도작업운영및직업훈련	교도작업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6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교도작업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교정본부	장귀남	김정원	전필주
		직업훈련과	02-2110-3403	02-2110-3406	02-2110-3408
	사업시행주체	-	-	-	-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년 결산	2026년 예산		2027년		증감 (B-A)	(B-A)/A
		본예산(A)	추경	요구	조정(B)		
교도작업	62,105	65,004	65,004	68,685	68,685	3,681	5.7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25					2026(2026년 7월말)							2027 예산안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62,105	62,447	61,834	-	613	65,004	65,004	36,218	65,004	36,218	-	-	68,685
・교도작업	62,105	62,447	61,834	-	613	65,004	65,004	36,218	65,004	36,218	-	-	68,685
○ 비목별 분류(합계)	62,105	62,447	61,834	-	613	65,004	65,004	36,218	65,004	36,218	-	-	68,685
・상용임금(110-03)	1,284	1,284	839	-	445	1,392	1,392	547	1,392	547	-	-	1,408
・일반수용비(210-01)	3,779	3,039	3,039	-	-	3,779	3,779	1,456	3,779	1,456	-	-	3,779
・공공요금및제세(210-02)	1,890	2,137	2,120	-	19	1,890	1,890	1,044	1,890	1,044	-	-	2,154
・피복비(210-03)	5	4	4	-	-	5	5	2	5	2	-	-	5
・임차료(210-07)	328	141	141	-	-	271	271	54	271	54	-	-	271
・유류비(210-08)	81	83	83	-	-	81	81	34	81	34	-	-	81
・시설장비유지비(210-09)	682	537	537	-	-	682	682	610	682	610	-	-	691
・재료비(210-11)	26,154	27,324	27,324	-	-	28,796	28,796	15,176	28,796	15,176	-	-	29,754
・복리후생비(210-12)	16	11	11	-	-	16	16	9	16	9	-	-	18
・국내여비(220-01)	153	153	152	-	1	153	153	74	153	74	-	-	153
・사업추진비(240-01)	56	56	56	-	-	56	56	15	56	15	-	-	56
・포상금(310-03)	180	180	180	-	-	180	180	90	180	90	-	-	180
・기타보전금(310-04)	26,809	20,809	26,792	-	17	26,989	26,989	16,717	26,989	16,717	-	-	29,413
・법정부담금및상납금(320-08)	438	438	438	-	-	438	438	329	438	329	-	-	438
・고용부담금(320-09)	251	251	120	-	131	276	276	61	276	61	-	-	283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62,105	62,447	61,834	-	613	65,004	65,004	36,218	65,004	36,218	-	-	68,685
・교도작업	62,105	62,447	61,834	-	613	65,004	65,004	36,218	65,004	36,218	-	-	68,685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정부기관 및 기업 등으로부터 주문을 받아 재료를 구입하여 제품을 생산·납품, 작업장려금 지급 등 일련의 작업운영 지원
- 수형자에게 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근로정신을 함양시키고 기술습득을 통한 사회적응능력 배양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5조(작업의 부과)① 수형자에게 부과하는 작업은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기술을 습득하고 근로의욕을 고취하는 데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② 소장은 수형자에게 작업을 부과하려면 나이·형기·건강상태·기술·성격·취미·경력·장래생계, 그 밖의 수형자의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66조(작업의무) 수형자는 자신에게 부과된 작업과 그 밖의 노역을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제73조(작업수입 등)① 작업수입은 국고수입으로 한다.

② 소장은 수형자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의 종류, 작업성적, 교정성적,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수형자에게 작업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작업장려금은 석방할 때에 본인에게 지급한다. 다만, 본인의 가족생활 부조,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면 석방 전이라도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제9조(특별회계의 세입·세출) 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도작업의 관리, 교도작업 관련 시설의 마련 및 유지·보수, 그 밖에 교도작업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2.「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73조제2항의 작업장려금

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74조의 위로금 및 조위금

4. 수용자의 교도작업 관련 직업훈련을 위한 경비

② 추진경위

- 교도작업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4,000만원의 국가보조금으로 1961년 교도작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1962년 교도작업제품을 공공기관에 우선적으로 공급하게 하는 교도작업관용법을 제정 시행함
- 전국 교정시설내 수형자에게 일거리를 제공하고 그 수익금으로 작업재료 구입, 작업직종 개발, 경제적 자립기반 자금인 작업장려금 지급 등을 실시함으로써 수형자의 노역의무 집행 및 사회적응능력 배양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3	2024	2025	2026	2027(안)
사업비	55,455	58,651	62,105	65,004	68,685

- 기타 : 전국 54개 교정시설에서 약 2만여 명의 수형자가 교도작업 참여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법무부
- 사업 수혜자 : 수형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3) 2027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

① 교도작업
: ('26) 65,004백만원 → ('27) 68,685백만원, 3,681백만원 증액
- 공무직근로자 상용임금 등 처우개선분 129백만원 증액
- 교도작업 재료비 958백만원 증액
- 수형자 작업장려금 2,424백만원 증액
- 공무직 근로자 정원 2명 감축(32명→30명)

ㅇ 2026년도 추가경정예산 및 2027년도 예산안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6년		2027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65,004	○ **상용임금 등(110-03 등) : 1,689백만원** ・32명 × 16.9만원 × 312일 = 1,689백만원 ○ **교도작업 운영비(210-01 등) : 6,201백만원**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임차료, 유류비, 포상금)** ・54개 기관 × 9.6백만원 × 12월 = 6,201백만원 ○ **시설장비유지비(210-09) : 682백만원** ・54개 기관 × 105.2만원 × 12월 = 682백만원 ○ **교도작업 재료비(210-11) : 28,796백만원** ・76개 직영작업장(25개 기관) × 379백만 = 28,796백만원 ○ **기타 여비 등 제경비(220-01 등) : 209백만원** ・54개기관 × 32.3만원 × 12월 = 209백만원 ○ **기타보전금(310-04) : 26,989백만원** ・2.1만명 × 10.7만원 × 12월 =26,989백만원 ○ **법정민간대행사업비(320-08) : 438백만원** ・민영교도소 교도작업 운영 경비 438백만원	68,685	○ **상용임금 등(110-03 등) : 1,714백만원** ・30명 × 18.3만원 × 312일 = 1,714백만원 ○ **교도작업 운영비(210-01 등) : 6,465백만원**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임차료, 유류비, 포상금)** ・54개 기관 × 10백만원 × 12월 = 6,465백만원 ○ **시설장비유지비(210-09) : 691백만원** ・54개 기관 × 106.6만원 × 12월 = 691백만원 ○ **교도작업 재료비(210-11) : 29,754백만원** ・76개 직영작업장(27개 기관) × 392백만 = 29,754백만원 ○ **기타 여비 등 제경비(220-01 등) : 209백만원** ・54개기관 × 32.3만원 × 12월 = 209백만원 ○ **기타보전금(310-04) : 29,413백만원** ・2.1만명 × 11.6만원 × 12월 =29,413백만원 ○ **법정민간대행사업비(320-08) : 438백만원** ・민영교도소 교도작업 운영 경비 438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3~2027년도 성과계획서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 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3	(12월 기준) ○ 외부통근작업 : 8개 기관, 13개 기업체, 수형자 124명 참여 ○ 개방지역작업 : 24개 기관, 40개 구외작업장, 수용자 819명 참여 ○ 위탁근로작업 : 45개 기관, 267개 작업장, 수용자 8,127명 참여 ○ 교도작업 홍보 : 교정작품전시회 10월 개최(제52회)
2024	(12월 기준) ○ 외부통근작업 : 13개 기관, 13개 기업체, 수형자 155명 참여 ○ 개방지역작업 : 25개 기관, 41개 구외작업장, 수용자 860명 참여 ○ 위탁근로작업 : 45개 기관, 267개 작업장, 수용자 8,276명 참여 ○ 교도작업 홍보 : 교정작품전시회 10월 개최(제53회)
2025	○ 외부통근작업 : 12개 기관, 16개 기업체, 수형자 171명 참여 ○ 개방지역작업 : 25개 기관, 44개 구외작업장, 수용자 862명 참여 ○ 위탁근로작업 : 45개 기관, 268개 작업장, 수용자 8,356명 참여 ○ 교도작업 홍보 : 교정작품전시회 10월 개최(제54회)
2026	(7월 기준) ○ 외부통근작업 : 11개 기관, 15개 기업체, 수형자 174명 참여 ○ 개방지역작업 : 26개 기관, 45개 구외작업장, 수용자 867명 참여 ○ 위탁근로작업 : 45개 기관, 270개 작업장, 수용자 8,421명 참여

③ 향후(2027년도 이후) 기대효과

- 작업참여 수형자에 대한 기술교육 및 근로정신 함양으로 출소 후 건전한 사회복귀 도모
- 신제품 개발, 수주 및 홍보활동 강화로 교도작업 수입증대
- 교도작업 수입금을 통한 수형자 직업훈련 교육과 출소 후 경제적 자립 기반 지원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예산배정 → 수주활동 → 정부기관, 기업 등으로부터 주문접수 → 원가계산 → 작업명령 → 소요재료 불출 → 제품생산 → 제품운송 → 납품/작업장려금 계산고 관리 → 고지서 발부 → 징수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24~2028	62,105	62,105	68,685	69,750	70,250	
2025~2029		65,004	66,954	68,963	71,032	72,653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해당 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교도작업의 생산성 증대 및 유망직종 발굴
- 품질향상 및 신제품을 개발하여 교도작업의 질적 향상 제고
- 교도작업 수주 및 홍보활동 강화로 교도작업 세입 실적 제고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 없음

12) 해당사업에 대한 부처 자체평가의 결과

1) 2024년도 부처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우수(2023회계년도)**

2) 2025년도 부처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우수(2024회계년도)**

3) 2026년도 부처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사업개선(2025회계년도)**

13) 부처 건의사항 : 해당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3	55,455	-	55,455	-	894	-	56,349	55,899	100.8	99.2	-	450
2024	58,651	-	58,651	-	896	-	59,547	59,062	100.7	99.2	-	485
2025	62,105	-	62,105	-	-	-	62,105	61,834	99.6	99.6	-	613
2026	65,004	-	65,004	-	-	-	65,004	36,218	55.7	55.7	-	-

2) 주요 결산사항

□ 2023~2026년 결산 사항

2023	- 특이사항 없음
2024	- 특이사항 없음
2025	- 특이사항 없음
2026	- 특이사항 없음

□ 2026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 해당 없음

사 업 명
직업훈련 (1535-3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교도작업 특별회계	법무부	교정본부	0	020	022
명칭					공공질서및안정	법무및검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500	1535	301
명칭	교정활동	교도작업운영및직업훈련	직업훈련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6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직업훈련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교정본부	장귀남	김정원	전필주
		직업훈련과	02-2110-3403	02-2110-3406	02-2110-3408
	사업시행주체	-	-	-	-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년 결산	2026년 예산		2027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요구안	조정안(B)		(B-A)/A
직업훈련	4,501	5,149	5,149	4,938	4,938	△211	△4.1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25					2026(2026년 7월말)							2027 예산안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4,399	4,531	4,502	-	30	5,149	5,149	2,922	5,149	2,922	-	-	4,938
・직업훈련	4,399	4,531	4,502	-	30	5,149	5,149	2,922	5,149	2,922	-	-	4,938
○ 비목별 분류(합계)	4,399	4,531	4,502	-	30	5,149	5,149	2,922	5,149	2,922	-	-	4,938
・일반수용비(210-01)	1,367	1,207	1,203	-	5	1,433	1,433	737	1,433	737	-	-	1,626
・유류비(210-08)	50	48	25	-	23	20	20	7	20	7	-	-	20
・시설장비유지비(210-09)	300	275	275	-	-	300	300	201	300	201	-	-	645
・재료비(210-11)	1,531	1,715	1,715	-	-	1,717	1,717	935	1,717	935	-	-	1,717
・국내여비(220-01)	33	33	33	-	-	33	33	10	33	10	-	-	33
・사업추진비(240-01)	4	4	4	-	-	4	4	0	4	0	-	-	4
・포상금(310-03)	9	9	9	-	-	9	9	0	9	0	-	-	9
・자산취득비(430-01)	1,105	1,240	1,238	-	2	1,633	1,633	1,029	1,633	1,029	-	-	884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4,399	4,531	4,502	-	30	5,149	5,149	2,922	5,149	2,922	-	-	4,938
・직업훈련	4,399	4,531	4,502	-	30	5,149	5,149	2,922	5,149	2,922	-	-	4,938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수형자에게 취업에 유용한 기술을 습득시켜 출소 후 경제적 자립기반을 돕기 위한 기술교육 사업으로서 출소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지원
- 수형자 출소 후 재취업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 사회복귀와 재범방지에 기여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9조(직업능력개발훈련)① 소장은 수형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기술습득 및 향상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이하 "직업훈련"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소장은 수형자의 직업훈련을 위하여 필요하면 외부의 기관 또는 단체에서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③ 직업훈련 대상자의 선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7조(공공직업훈련시설의 설치 등) ①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는 공공직업훈련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직업훈련시설을 설치하려는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공공단체가 공공직업훈련시설을 설치하려는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추진경위

- 1969년부터 전국 교도소에 노동부 인가 공공직업훈련교도소를 설치하여 수형자에게 직업훈련을 실시함
- 수형자에게 취업에 유용한 기술을 습득시켜 출소 후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한 기술교육 사업으로서 수형자의 건전한 사회복귀 및 재범 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3	2024	2025	2026	2027(안)
사업비	3,964	4,164	4,399	5,149	4,938

- 기타 : 전국 36개 교정시설에서 15개 분야 약 217개 과정 직업훈련 실시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법무부
- 사업 수혜자 : 수형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3) 2027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

① 직업훈련

: ('26) 5,149백만원 → ('27) 4,938백만원, 211백만원 감액

- 일반수용비 193백만원 증액
- 시설장비유지비 345백만원 증액
- 자산취득비 749백만원 감액
- 기타 소요경비 전년수준 편성

ㅇ 2026년도 예산 및 2027년도 예산안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6년 예산		2027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5,149	○ **실습재료비(210-11) : 1,717백만원** ・258과정 × 55.5만원 × 12월 = 1,717백만원 ○ **훈련장비 구입비(430-01) : 1,633백만원** ・36개 기관 × 3.78백만원 × 12월 = 1,633백만원 ○ 시설장비유지비**(210-09) : 300백만원 순증** ・10개 노후훈련장 × 30백만원 = 300백만원 ○ **기타 소요경비(210-01 등) : 1,499백만원** ・36개 기관 × 3.47백만원 × 12월 = 1,499백만원	4938	○ **실습재료비(210-11) : 1,717백만원** ・260과정 × 55.0만원 × 12월 = 1,717백만원 ○ **훈련장비 구입비(430-01) : 884백만원** ・37개 기관 × 1.99백만원 × 12월 = 884백만원 ○ 시설장비유지비**(210-09) : 645백만원** ・15개 노후훈련장 × 43백만원 = 645백만원 ○ **기타 소요경비(210-01 등) : 1,692백만원** ・36개 기관 × 3.92백만원 × 12월 = 1,692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 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3	○ 36개 기관, 자동차 정비 등 210개 과정, 5,943명 실시
2024	○ 36개 기관, 자동차 정비 등 248개 과정, 5,849명 실시
2025	○ 36개 기관, 자동차 정비 등 256개 과정, 6,079명 실시
2026	○ 37개 기관, 자동차 정비 등 260개 과정, 6,090명 실시

③ 향후(2027년도 이후) 기대효과

- 신규 직업훈련 과정 개발 및 취업연계형 직업훈련 확대 시행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교정기관별 직업훈련 직종, 인원 등 계획수립→ 법무부장관 승인→ 직업훈련 시설·장비확보→ 교정기관별 직업훈련 실시 → 기술자격 검정응시 → 직업훈련 수료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5	2026	2027	2028	2029	2029
2024~2028	4,399	3,539	3,539	3,539	3,631	
2025~2029		5,149	5,303	5,462	5,626	5,713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해당 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직업훈련의 취업역량 강화
- 최근 산업 동향에 적합한 취업 유망직종 신설
- 단일자격증 취득 과정에서 복수 자격증 취득 과정으로 점차 전환하여 다기능인 양성
- 고급과정 확대를 통한 전문기술인 양성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 없음

12) 해당사업에 대한 부처 자체평가의 결과

1) 2024년도 부처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보통(2023회계년도)**

2) 2025년도 부처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우수(2024회계년도)**

3) 2026년도 부처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감액(2025회계년도)**

13) 부처 건의사항 : 해당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3	3,964	-	3,964	-	-	-	3,964	3,920	98.9	98.9	-	44
2024	4,164	-	4,164	-	△5	-	4,159	4,116	98.8	99.0	-	43
2025	4,399	-	4,399	-	-	-	4,399	4,502	102.3	102.3	-	30
2026	5,149	-	5,149				5,149	2,922	56.7	56.7	-	-

2) 주요 결산사항

□ 2023~2026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3	- 특이사항 없음
2024	- 특이사항 없음
2025	- 특이사항 없음
2026	- 특이사항 없음

□ 2026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 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 해당 없음

사 업 명
시설보완 (1535-30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교도작업 특별회계	법무부	교정본부	0	020	022
명칭					공공질서및안정	법무및검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500	1535	302
명칭	교정활동	교도작업운영및직업훈련	시설보완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6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시설보완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교정본부	장귀남	김정원	전필주
		직업훈련과	02-2110-3403	02-2110-3406	02-2110-3408
	사업시행주체	-	-	-	-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년 결산	2026년 예산		2027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요구안	조정안(B)		(B-A)/A
시설보완	3,897	7,570	7,570	8,373	8,373	803	10.6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25					2026(2026년 7월말)							2027 예산안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3,897	3,784	3,421		363	7,570	7,570	2,450	7,570	2,450			8,373
· 시설보완	3,897	3,784	3,421		363	7,570	7,570	2,450	7,570	2,450			8,373
○ 비목별 분류(합계)	3,897	3,784	3,421		363	7,570	7,570	2,450	7,570	2,450			8,373
· 실시설계비(420-02)	170	170	86		84	315	315	134	315	134			473
· 공사비(420-03)	2,222	2,243	1,965		279	6,154	6,154	1,876	6,154	1,876			6,786
· 감리비(420-04)	52	52	52		-	59	59	2	59	2			72
· 자산취득비(430-01)	1,453	1,318	1,318		-	1,042	1,042	439	1,042	439			1,042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3,897	3,784	3,421		363	7,570	7,570	2,450	7,570	2,450			8,373
· 시설보완	3,897	3,784	3,421		363	7,570	7,570	2,450	7,570	2,450			8,373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작업장 등 신·증축, 작업장 환경개선, 노후장비 교체 등으로 생산성 제고능력 배양
- 교도작업 운영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신설, 개량, 확충과 지속적인 유지관리로 교도작업의 효율성 제고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제9조(특별회계의 세입·세출) 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도작업의 관리, 교도작업 관련 시설의 마련 및 유지·보수, 그 밖에 교도작업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73조제2항의 작업장려금
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74조의 위로금 및 조위금
4. 수용자의 교도작업 관련 직업훈련을 위한 경비

② 추진경위

- 1962년 교도작업특별회계법 시행과 함께 교도작업 수익금으로 작업시설 신·증축, 작업환경 개선, 최신 장비 설치 등 교도작업 발전기반 조성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3	2024	2025	2026	2027(안)
사업비	6,564	4,475	3,897	7,570	8,373

- 기타 : 전국 54개 교정시설에서 약 2만여 명의 수형자가 교도작업 참여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계속
- 사업 수혜자 : 수형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3) 2027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

① 시설보완
: ('26) 7,570백만원 → ('26) 8,373백만원, 803백만원 증액
- 실시설계비 158백만원 증액
- 공사비 632백만원 증액
- 감리비 13백만원 증액
- 자산취득비 동결

ㅇ 2026년도 예산 및 2027년도 예산안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6년 예산		2027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7,570	○ **공사비 등(420-03 등) : 6,528백만원** ・ 95명 × 12.4㎡ × 554.2백만원 = 6,528백만원 ○ **자산취득비(430-01) : 1,042백만원** ・ 54개 기관 × 19.3백만원 = 1,042백만원	8,373	○ **공사비 등(420-03 등) : 7,331백만원** ・ =199명 × 12.4㎡ × 297백만원 = 7,331백만원 ○ **자산취득비(430-01) : 1,042백만원** ・ 54개 기관 × 19.3백만원 = 1,042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3~2027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 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3	○ 강원북부교도소 등 2개 기관 4개 작업장 신축 및 증·개축
2024	○ 강릉교도소 등 2개 기관 4개 작업장 신축
2025	○ 대구교도소 등 1개 기관 1개 작업장 신축
2026	○ 경북북부제3교도소 등 1개 기관 1개 작업장 신축

③ 향후(2027년도 이후) 기대효과
- 교도작업장 신·증축을 통한 작업환경 조성, 정역집행률 제고 및 수형자 출소 후 안정적인 사회복귀 지원 도모
- 수형자 작업을 통한 경제적 자립기반을 마련하여 재범을 방지하고 안전한 국가, 행복한 사회 실현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교도작업 실시기관 시설보완 청구 → 예산재배정 → 집행 → 노후장비 교체, 신규 설비 투자 등의 순환과정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24~2028	3,897	4,475	3,897	3,897	3,897	
2025~2029		7,570	7,570	7,570	7,570	7,570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해당 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신설 교도소·구치소에 우선적으로 작업장을 신축하고, 기존 시설 증·개축을 통하여 작업공간을 추가적으로 확보하여 교도작업 활성화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 없음

12) 해당사업에 대한 부처 자체평가의 결과 : 해당 없음

13) 부처 건의사항 : 해당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3	6,564	-	6,564	-	-	-	6,564	5,693	86.7	86.7	689	182
2024	4,475	-	4,475	689	22	-	5,164	5,055	113.0	97.9	-	109
2025	3,897	-	3,897	22	-	-	3,784	3,421	87.8	90.4	-	363
2026	7,570	-	7,570	-	-	-	7,570	2,450	32.4	32.4	-	

2) 주요 결산사항

□ 2023~2026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3	- 해당 없음
2024	- 해당 없음
2025	- 해당 없음
2026	- 해당 없음

□ 2026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 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 해당 없음

사 업 명
교특회계관리기본경비 (7012-25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교도작업 특별회계	법무부	교정본부	0	020	022
명칭					공공질서및안정	법무및검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12	250
명칭	법무 및 검찰 행정지원	본부기본경비	교특회계관리기본경비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6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교특회계관리 기본경비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교정본부	허만혁	김정원	전필주
		직업훈련과	02-2110-3403	02-2110-3406	02-2110-3408
	사업시행주체	-	-	-	-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년 결산	2026년 예산		2027년		증감 (B-A)	(B-A)/A
		본예산(A)	추경	요구안	조정안(B)		
교특회계관리기본경비	444	444	444	462	445	1	0.2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25					2026(2026년 7월말)							2027 예산안
	예산액(추경)	예산현액	집행액[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현액	집행액[실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예상액	불용예상액	
									예산현액	집행액[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444	444	434 (434)	-	10	444	444	177	444	177	-	-	445
· 교특회계관리기본경비	444	444	434 (434)	-	10	444	444	177	444	177	-	-	445
○ 비목별 분류(합계)	444	444	434 (434)	-	10	444	444	177	444	177	-	-	445
· 일반수용비(210-01)	166	169	169 (169)	-	-	166	166	54	166	54	-	-	170
· 공공요금및제세(210-02)	31	29	29 (29)	-	-	31	31	29	31	29	-	-	36
· 임차료(210-07)	30	29	29 (29)	-	-	30	30	0	30	0	-	-	30
· 국내여비(220-01)	74	65	55 (55)	-	10	74	68	26	68	26	-	-	70
· 국외업무여비(220-02)	27	30	30 (30)	-	-	27	27	0	27	0	-	-	26
· 관서업무추진비(240-02)	64	64	64 (64)	-	-	64	64	37	64	37	-	-	61
· 포상금(310-03)	52	58	58 (58)	-	-	52	58	31	58	31	-	-	52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444	444	434 (434)	-	10	444	444	177	444	177	-	-	445
· 교특회계관리기본경비	444	444	434 (434)	-	10	444	444	177	444	177	-	-	445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교도작업운영 및 직업훈련의 정책수립, 정책집행, 정책평가, 재원배분 등 주요 사업의 원활한 정책운영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제9조(특별회계의 세입·세출) 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도작업의 관리, 교도작업 관련 시설의 마련 및 유지·보수, 그 밖에 교도작업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② 추진경위

- 교도작업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4,000만원의 국가보조금으로 1961년 교도작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1962년 교도작업제품을 공공기관에 우선적으로 공급하게 하는 교도작업관용법을 제정 시행함
- 1962년 교도작업특별회계법 시행과 함께 교도작업 및 직업훈련 지원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3	2024	2025	2026	2027(안)
사업비	384	404	444	444	445

- 기타 : 전국 54개 교정시설에서 2만여 명의 수형자가 참여하는 교도작업운영 및 직업훈련을 지원하기 위한 본부 기본경비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법무부
- 사업 수혜자 : 수형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3) 2027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

① 교특회계관리기본경비

: ('26) 444백만원 → ('27) 445백만원, 1백만원 증액

- 일반수용비 9백만원 증액
- 국내여비 4백만원 감액
- 국외여비 1백만원 감액
- 관서업무비 3백만원 감액

ㅇ 2026년도 예산 및 2027년도 예산안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6년 예산		2027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444	○ **교도작업운영 등 세부사업의 정책수립, 정책집행, 정책평가, 재원분배 등 주요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기본사업비** ・일반수용비 : 166→ 161백만원 (△5백만원) ・공공요금및제세 : 31 → 36백만원 (증 5백만원) ・임차료 : 30 → 30백만원 (전년동) ・국내여비 : 74 → 74백만원 (전년동) ・국외업무여비 : 27 → 27백만원 (전년동) ・관서업무비 : 64 → 64백만원 (전년동) ・포상금 : 52 → 52백만원 (전년동)	445	○ **교도작업운영 등 세부사업의 정책수립, 정책집행, 정책평가, 재원분배 등 주요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기본사업비** ・일반수용비 : 161→ 170백만원 (+9백만원) ・공공요금및제세 : 36 → 36백만원 (전년동) ・임차료 : 30 → 30백만원 (전년동) ・국내여비 : 74 → 70백만원 (△4백만원) ・국외업무여비 : 27 → 26백만원 (△1백만원) ・관서업무비 : 64 → 61백만원 (△3백만원) ・포상금 : 52 → 52백만원 (전년동)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3~2027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 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3	○ 교도작업 및 직업훈련 담당자를 대상으로 각종 회의 및 워크숍 개최로 경영마인드 및 실무능력 제고 ○ 교도작업 홍보를 위한 팜플렛, 안내장 등 제작 ○ 관련업무 담당자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한 규정집 제작
2024	○ 교도작업 및 직업훈련 담당자를 대상으로 각종 회의 및 워크숍 개최 ○ 전 소속기관 직업훈련과장 워크숍 개최 ○ 교도작업제품 안내책자 제작·배부
2025	○ 교도작업 및 직업훈련 담당자를 대상으로 각종 회의 및 워크숍 개최
2026	○ 교도작업 및 직업훈련 담당자를 대상으로 각종 회의 및 워크숍 개최

③ 향후(2027년도 이후) 기대효과

- 교도작업, 직업훈련, 취업·창업 연계 활성화를 위한 세입증대 및 안정적인 사회복귀 프로그램 지원
- 교정작품 전시회 각 청별로 개최하여 교도작업 제품 홍보 및 판매 활성화 지원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본부 및 4개 지방교정청 기본 운영에 필요한 제경비 지원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5	2026	2027	2028	2029	2029
2024~2028	444	444	445	445	445	
2025~2029		444	445	445	445	445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해당 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교정활동의 일환인 교도작업, 직업훈련, 취업·창업 연계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 없음

12) 해당사업에 대한 부처 자체평가의 결과 : 해당 없음

13) 부처 건의사항 : 해당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3	384	-	384	-	-	-	384	382	99.4	99.4	-	2
2024	404	-	404	-	-	-	404	404	100.0	100.0	-	-
2025	444	-	444	-	-	-	444	434	97.7	97.7	-	10
2026	444	-	444	-	-	-	444	177	39.7	39.7	-	-

2) 주요 결산사항

□ 2023~2026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3	- 해당 없음
2024	- 해당 없음
2025	- 해당 없음
2026	- 해당 없음

□ 2026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 없음

□ 2026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 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 해당 없음

사 업 명
교도작업운영기본경비 (7019-25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교도작업 특별회계	법무부	교정본부	0	020	022
명칭					공공질서및안정	법무및검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19	250
명칭	법무 및 검찰 행정지원	소속기관기본	교도작업운영기본경비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6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교도작업운영 기본경비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교정본부	허만혁	김정원	전필주
		직업훈련과	02-2110-3403	02-2110-3406	02-2110-3408
	사업시행주체	-	-	-	-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년 결산	2026년 예산		2027년		증감 (B-A)	(B-A)/A
		본예산(A)	추경	요구안	조정안(B)		
교도작업운영기본경비	208	208	208	216	216	8	3.8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25					2026(2026년 7월말)							2027 예산안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208	208	177	-	31	208	208	94	208	94	-	-	216
· 교도작업운영기본경비	208	208	177	-	31	208	208	94	208	94	-	-	216
○ 비목별 분류(합계)	208	208	177	-	31	208	208	94	208	94	-	-	216
◦ 일반수용비(210-01)	12	14	14	-	-	12	12	0	12	0	-	-	12
◦ 공공요금및제세(210-02)	26	24	23	-	1	56	56	11	56	11	-	-	39
◦ 유류비(210-08)	170	170	139	-	30	140	140	83	140	83	-	-	165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208	208	177	-	31	208	208	94	208	94	-	-	216
· 교도작업운영기본경비	208	208	177	-	31	208	208	94	208	94	-	-	216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교도작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교도작업제품 납품용 화물차량 유지관리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제9조(특별회계의 세입·세출) 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도작업의 관리, 교도작업 관련 시설의 마련 및 유지·보수, 그 밖에 교도작업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② 추진경위

- 교도작업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4,000만원의 국가보조금으로 1961년 교도작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1962년 교도작업제품을 공공기관에 우선적으로 공급하게 하는 교도작업관용법을 제정 시행함
- 1962년 교도작업특별회계법 시행과 함께 교도작업 및 직업훈련 지원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3	2024	2025	2026	2027(안)
사업비	195	195	208	208	216

- 기타 : 전국 54개 교정시설에서 수형자가 생산한 제품의 납품용 화물차량 등 유지관리를 위한 자동차세·보험료 등 공공요금 및 차량 연료비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법무부
- 사업 수혜자 : 수형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3) 2027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

① 교도작업운영기본경비
: ('26) 208백만원 → ('27) 216백만원, 8백만원 증액
- 유류비 25백만원 증액
- 공공요금및제세 17백만원 감액

ㅇ 2026년도 예산 및 2027년도 예산안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6년 예산		2027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208	○ **교도작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교도작업제품 납품용 화물 자량 유지관리 지원을 위한 기본사업비** ・일반수용비 : 12 → 12백만원 (전년동) ・공공요금 및 제세 : 26 → 56백만원 (증 30백만원) ・유류비 : 170 → 140백만원(△30백만원)	216	○ **교도작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교도작업제품 납품용 화물 자량 유지관리 지원을 위한 기본사업비** ・일반수용비 : 12 → 12백만원 (전년동) ・공공요금 및 제세 : 56 → 39백만원 (△ 17백만원) ・유류비 : 140 → 165백만원(증 25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3~2027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 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3	○ 교도작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교도작업제품 납품용 화물차량 유지관리 지원
2024	○ 교도작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교도작업제품 납품용 화물차량 유지관리 지원
2025	○ 교도작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교도작업제품 납품용 화물차량 유지관리 지원
2026	○ 교도작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교도작업제품 납품용 화물차량 유지관리 지원

③ 향후(2027년도 이후) 기대효과
- 교도작업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여 작업의 연속성을 유지하여 세입을 증대하고 교도작업의 원 목적인 수형자의 안정적인 사회복귀 효과를 발생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교도작업제품의 원활하고 신속한 납품 지원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24~2028	201	207	216	219	219	
2025~2029	208	208	208	208	208	208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해당 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교정활동의 일환인 교도작업 제품 판매 및 배송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 없음

12) 해당사업에 대한 부처 자체평가의 결과 : 해당 없음

13) 부처 건의사항 : 해당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3	195	-	195	-	-	-	195	152	78.0	78.0	-	43
2024	195	-	195	-	-	-	195	160	82.6	82.6	-	35
2025	208	-	208	-	-	-	208	177	85.1	85.1	-	31
2026	208	-	208	-	-	-	208	94	45.2	45.2	-	-

2) 주요 결산사항

□ 2023~2026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3	- 해당 없음
2024	- 해당 없음
2025	- 해당 없음
2026	- 해당 없음

□ 2026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 없음

□ 2026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 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 해당 없음

사 업 명
공공자금관리기금예탁 (8910-89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교도작업 특별회계	법무부	교정본부	0	020	022
명칭					공공질서및안정	법무및검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8900	8910	890
명칭	회계기금간거래(예탁금)	회계기금간거래	공공자금관리기금예탁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6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공공자금관리 기금예탁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교정본부	허만혁	김정원	전필주
		직업훈련과	02-2110-3403	02-2110-3406	02-2110-3408
	사업시행주체	-	-	-	-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년 결산	2026년 예산		2027년		증감 (B-A)	(B-A)/A
		본예산(A)	추경	요구안	조정안(B)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52,627	51,909	51,909	48,374	48,374	△3535	△6.8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25					2026(2026년 7월말)							2027 예산안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52,627	52,287	50,000	-	2,287	51,909	51,909	35,000	51,909	35,000	-	-	48,374
· 공공자금관리기금예탁	52,627	52,287	50,000	-	2,287	51,909	51,909	35,000	51,909	35,000	-	-	48,374
○ 비목별 분류(합계)	52,627	52,287	50,000	-	2,287	51,909	51,909	35,000	51,909	35,000	-	-	48,374
· 공공자금관리기금예탁(480-03)	52,627	52,287	50,000	-	2,287	51,909	51,909	35,000	51,909	35,000	-	-	48,374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52,627	52,287	50,000	-	2,287	51,909	51,909	35,000	51,909	35,000	-	-	48,374
· 공공자금관리기금예탁	52,627	52,287	50,000	-	2,287	51,909	51,909	35,000	51,909	35,000	-	-	48,374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교도작업특별회계 세계잉여금의 교도작업 운영자금 기간별 소요일정에 따른 여유자금을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으로 교도작업특별회계의 효율적 운영 도모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6조(관리기금에의 예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정·예금·회계 또는 기금(이하 "기금등"이라 한다)의 관리자는 해당 기금 등의 설치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여유자금을 관리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1.「국고금 관리법」제34조제6항에 따른 국고금운용계정
  2.「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체국예금
  3. 특별회계
  4.「국가재정법」제5조에 따른 기금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기금등의 관리자에게 그 기금등의 여유자금을 관리기금에 예탁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금등의 관리자에게 예탁을 요청할 수 있는 사유와 기금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추진경위

- 교도작업특별회계 여유 운영자금 활용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3	2024	2025	2026	2027(안)
사업비	54,917	52,640	52,627	51,909	48,374

- 기타 : 세계잉여금 규모를 감안하여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으로 교특회계 효율적 운영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법무부
- 사업 수혜자 : 수형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3) 2027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

① 공공자금관리기금예탁
: ('26) 51,909백만원 → ('27) 48,374백만원, 3535백만원 감액

ㅇ 2026년도 예산 및 2027년도 예산안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6년 예산		2027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51,909	○ **교도작업특별회계 세계잉여금의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공자기금예탁금 51,909백만원	48,374	○ **교도작업특별회계 세계잉여금의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공자기금예탁금 48,374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 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3	○ 여유자금의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으로 운영 효율화 도모
2024	○ 여유자금의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으로 운영 효율화 도모
2025	○ 여유자금의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으로 운영 효율화 도모
2026	○ 여유자금의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으로 운영 효율화 도모

③ 향후(2027년도 이후) 기대효과
- 여유자금의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으로 운영 효율화 도모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기획재정부 국고과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예수계획 제출요청 → 법무부 직업훈련과
교도작업특별회계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예수계획 수립 제출 → 한국은행에
교특회계 여유자금 공자기금으로 예탁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24~2028	52,627	52,627	52,627	52,627	52,627	
2025~2029		51,909	51,909	51,909	51,909	51,909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해당 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여유자금의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으로 교특회계 운영 효율화 도모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 없음

12) 해당사업에 대한 부처 자체평가의 결과 : 해당 없음

13) 부처 건의사항 : 해당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3	54,917	-	54,917	-	△894	-	54,023	47,000	85.6	87.0	-	7,023
2024	52,640	-	52,640	-	-	-	52,640	49,500	94.0	94.0	-	2,249
2025	52,627	-	52,627	-	-	-	52,627	50,000	95.0	95.0	-	-
2026	51,909	-	51,909	-	-	-	51,909	35,000	67.4	67.4	-	-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3	- 해당 없음
2024	- 해당 없음
2025	- 해당 없음
2026	- 해당 없음

□ 2026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 없음

□ 2026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 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 해당 없음

Ⅳ. 범죄피해자보호기금

1. 총 괄
2. 수 입
3. 지 출

Ⅳ. 범죄피해자보호기금

1. 총 괄

가. 2027년도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수입계획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결산	2026계획액		2027년도		증 감	
		당초(A)	수정	요구	조정안(B)	B-A	%
총 계	**149,813**	**145,142**	**145,142**	**133,796**	**133,796**	**△11,346**	**△7.8**
54 기타이자수입 및 재산수입	**1,960**	**1,023**	**1,023**	**1,023**	**1,023**	**-**	**-**
기타재산 이자수입 (54-546)	1,960	1,023	1,023	1,023	1,023	-	-
57 변상금 및 위약금	**1,924**	**1,818**	**1,818**	**1,818**	**1,818**	**-**	**-**
과징금 (56-565)	91	-	-	-	-	-	-
변상금 (57-571)	1,833	1,818	1,818	1,818	1,818	-	-
59 기타경상 이전수입	**3,062**	**3,109**	**3,109**	**3,109**	**3,109**	**-**	**-**
기타경상 이전수입 (59-596)	3,062	3,109	3,109	3,109	3,109	-	-
85 정부예금회수	**54,106**	**48,046**	**48,046**	**42,386**	**42,386**	**△5,660**	**△11.8**
한국은행 예치금회수 (85-851)	2,106	-	-	-	-	-	-
통화금융기관 예치금회수 (85-852)	52,000	48,046	48,046	42,386	42,386	△5,660	△11.8
91 전입금	**88,762**	**91,146**	**91,146**	**85,460**	**85,460**	**△5,686**	**△6.2**
일반회계 전입금 (91-911)	88,762	91,146	91,146	85,460	85,460	△5,686	△6.2

나. 2027년도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지출계획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결산	2026계획액		2027년도		증 감	
		당초(A)	수정	요구	조정안(B)	B-A	%
총 계	**149,813**	**145,142**	**145,142**	**138,808**	**133,796**	**△11,346**	**△7.8**
1135 강력범죄 등 피해자 보호 및 지원	**37,079**	**48,446**	**48,666**	**56,982**	**55,670**	**7,224**	**14.9**
범죄피해자 치료 및 자립지원 (1135-300)	20,271	24,633	24,633	31,523	30,609	5,976	24.3
형사조정을 통한 피해회복 지원 (1135-301)	3,357	3,277	3,277	3,277	3,277	-	전년동
범죄피해구조금 (1135-302)	7,683	11,781	11,781	14,191	14,191	2,410	20.5
범죄피해자통합지원 시스템(정보화) (1135-303)	-	3,355	3,475	1,962	1,847	△1,508	△44.9
범죄피해자 등의 신변보호 강화 (1135-306)	5,768	5,400	5,500	6,029	5,746	346	6.4
1136 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지원	**53,110**	**54,250**	**54,030**	**57,765**	**54,065**	**△185**	**△0.3**
전담조사인력 양성 및 배치 (1136-300)	1,629	1,711	1,711	2,117	1,744	33	1.9
성폭력 피해자 지원 (1136-303)	39,367	40,394	40,394	41,418	39,066	△1,328	△3.3
피해자국선변호사 지원 (1135-305)	12,113	12,145	11,925	14,230	13,255	1,110	9.1
7110 기금운영비	**34**	**60**	**60**	**64**	**64**	4	6.7
기금관리비 (7110-300)	34	60	60	64	64	4	6.7
9110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원금상환	**2,230**	**-**	**-**	**-**	**-**	**-**	**-**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의 예수원금상환 (9110-910)	2,230	-	-	-	-	-	-
9220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이자상환	**14**	**-**	**-**	**-**	**-**	-	-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의 예수이자상환 (9220-920)	14	-	-	-	-	-	-
9710 여유자금 운용	**57,345**	**42,386**	**42,386**	**23,997**	**23,997**	**△18,389**	**△43.4**
한국은행예치 (9710-300)	-	-	-	-	-		
통화금융기관예치 (9710-300)	57,345	42,386	42,386	23,997	23,997	△18,389	△43.4

다. 최근 3년 내 기획예산처의 기금운용평가결과 및 개선사항

지적 및 권고사항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비고
-	-	-

라. 기획예산처의 기금존치평가결과 및 개선사항(가장 최근)

종합평가결과	기타권고사항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비고
존치 (2026)	기금 목적성 사업의 지출 비중을 확대하고, 피해자 보호에 대한 지원 업무의 전문성과 사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26년 긴급생활안정비 신설 및 범죄피해구조금 지급액 인상 등 기금 목적성 사업의 지출을 확대하였으며, 향후에도 피해자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음	-

마.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여유자금 운용현황

(단위: 백만원, %)

연 도	구 분	구 분	계 획	실 적	수익률
2024	직접투자	현금 등	-	-	-
		주식/채권 등	-	-	-
	간접투자	확정금리형	-	-	-
		실적배당형	45,851	40,470	4.0
	계		45,851	40,470	4.0
2025	직접투자	현금 등	-	-	-
		주식/채권 등	-	-	-
	간접투자	확정금리형	-	-	-
		실적배당형	48,039	41,513	3.7
	계		48,039	41,513	3.7
2026. 7.	직접투자	현금 등	-	-	-
		주식/채권 등	-	-	-
	간접투자	확정금리형	-	-	-
		실적배당형	42,386	44,002	1.7
	계		42,386	44,002	1.7

바.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재정상태표(대차대조표)

구 분	2025년말 실적	2026년말 계획		2027년말 계획(B)	증감(B-A)
		당초	수정(A)		
1. 유동자산	62,461	48,039	48,039	37,085	△10,954
2. 일반유형자산	18,801	19,185	19,185	19,185	-
3. 기타비유동자산	96	-	-	-	-
자산총계(가)	81,359	67,224	67,224	56,270	△10,954
1. 유동부채	-	-	-	-	-
부채합계(나)	-	-	-	-	-
1. 순자산	81,359	67,224	67,224	56,270	△10,954
자본합계(다)	81,359	67,224	67,224	56,270	△10,954
자본 및 부채 총계	81,359	67,224	67,224	56,270	△10,954

사.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재정운용표(손익계산서)

	2025년말 실적	2026년말 계획		2027년말 계획(B)	증감(B-A)
		당초	수정(A)		
Ⅰ.프로그램순원가	94,545	102,696	102,696	115,052	12,356
Ⅱ.관리운영비	48	60	60	60	-
Ⅲ.비배분비용	15	-	-	-	-
Ⅳ.비배분수익	2,449	2,841	2,841	3,127	286
Ⅴ.재정운영순원가 (Ⅰ+Ⅱ+Ⅲ-Ⅳ)	92,159	99,915	99,915	111,985	12,070
Ⅵ.비교환수익 등	88,762	91,146	91,146	95,544	4,398
Ⅶ.재정운영결과(Ⅴ-Ⅵ)	3,397	8,769	8,769	16,441	7,672

아.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순자산변동표(자본변동표)

구 분	2025년말 잔액	2026년 계획		2027년 계획		증감 (B-A)	비고
		당초	수정(A)	당초	수정(B)		
Ⅰ.기초순자산	73,187	81,359	81,359	67,224	67,224	△14,135	
Ⅱ.재정운영결과	3,397	8,769	8,769	16,441	16,441	7,672	
Ⅲ.조정항목	-	-	-	-	-	-	-
Ⅳ.기말순자산 (Ⅰ-Ⅱ+Ⅲ)	69,790	72,590	72,590	50,783	50,783	△21,807	

2. 수 입

기타 재산 이자 수입
54-546

(단위: 백만원, %)

목명	2025년 결산	2026년 계획		2027년		증감	
		당초(A)	수정	요구안	조정안(B)	(B-A)	(B-A)/A
기타재산이자수입	1,960	1,023	1,023	1,023	1,023	-	전년동

가. 법적 근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보조금의 반환) ②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의 금액을 제28조에 따라 확정한 경우에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나. 수입 개요

○ 기금 여유자금 회수에 따른 평가수익금과 지자체 및 민간단체의 국고보조금 이자 수입

다. 2027년 수입계획안 내역

○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단위: 천원)

연 도	금 액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2026계획(수정)	1,023,000	- 최근 3년(2021~2023) 수납액 평균 수준 요구
2027계획안	1,023,000	- 전년도 계획액 수준 요구

라.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계획현액	장수결장액 (B)	수납액(C)	수납률 (C/A)	수납률 (C/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당초	수정(A)							
'23	417	417	417	1,570	1,540	369.3	98.1	30	-
'24	417	417	417	1,002	979	234.8	97.7	23	
'25	730	730	730	1,984	1,960	268.5	98.8	24	-
'26	1,023	1,023	1,023	972	806	78.8	82.9	166	-
'27(안)	1,023	1,023	1,023	-	-	-	-	-	-

마. 최근 3개년 간 동 수입에 대한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 해당없음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여유자금 회수 규모를 고려한 세입 증액 편성 필요 ('25회계 예산 법사위)

2)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26년도 '기타재산수입' 계획안은, 일반적인 수입 예산 편성 방법인 "최근 3년 평균 수납액"을 기준으로 증액한 10억 2,300만원을 편성함

바. 담당자 정보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인권국	인권구조과	반 지	김현우 서기관	김도후
		02-2110-3641	02-2110-3644	02-2110-3746

변상금
57-571

(단위: 백만원, %)

목명	2025년 결산	2026년 계획		2027년		증감	
		당초(A)	수정	요구안	조정안(B)	(B-A)	(B-A)/A
변상금	1,833	1,818	1,818	1,818	1,818	-	전년동

가. 법적 근거

○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 「범죄피해자보호법」 제21조

○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제14조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제3조(기금의 설치) 정부는 범죄피해자 보호 · 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 · 공급하기 위하여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2.「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대위하여 취득한 구상금

3. 정부 외의 자가 출연 또는 기부하는 현금, 물품, 그 밖의 재산

제14조(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및 반환) ① 제6조에 따라 지원받은 기금은 지원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시행령」

제2조(기금의 조성) ② 국가는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취득한 구상금 전액을 범죄피해자보호기금에 납부하여야 한다.

「범죄피해자보호법」

제21조 ② 국가는 지급한 구조금의 범위에서 해당 구조금을 받은 사람이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하여 가지고 있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

③ 국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해자인 수형자나 보호감호대상자의 작업장려금 또는 근로보상금에서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

나. 수입 개요

○ 범죄피해자보호법에 의하여 구조금을 선지급하고 구상권 행사를 통하여 가해자에게 재산 등 강제환수 추진

다. 2027년 수입계획안 내역

○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단위: 천원)

연 도	금 액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2026계획(수정)	1,818,000	- 최근 3년(2022~2024) 평균 수납액 등 요구
2027계획안	1,818,000	- 전년도 계획액 수준 요구

라.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계획현액	징수결정액 (B)	수납액(C)	수납률 (C/A)	수납률 (C/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당초	수정(A)							
'23	1,552	1,552	1,552	1,604	1,604	103.4	100.0	-	-
'24	1,797	1,797	1,797	1,617	1,617	90.0	100.0	-	-
'25	1,719	1,719	1,719	5,337	1,833	106.6	34.3	3,504	-
'26	1,818	1,818	1,818	10,114	1,107	60.9	10.9	9,007	-
'27(안)	1,818	1,818	1,818	-	-	-	-	-	-

마. 최근 3개년 간 동 수입에 대한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예외없는 변상금 징수결정 및 수납액 제고 노력 필요 ('25회계 예산 예정처)

2)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25년부터 구상권 행사가 결정되는 경우 수납 여부와 관련없이 원칙적으로 징수결정 하도록 개선하였고, 구상권 행사를 위하여 국가가 가해자의 보유재산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한 「범죄피해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25. 3. 21. 시행)에 따라 하위 법령(시행령 및 시행규칙)도 개정 작업을 완료하여 같은 날 시행되었음.

바. 담당자 정보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인권국	인권구조과	반 지	김현우 서기관	김도후
		02-2110-3641	02-2110-3644	02-2110-3746

기타 경상이전 수입
59 - 596

(단위: 백만원, %)

목명	2025년 결산	2026년 계획		2027년		증감	
		당초(A)	수정	요구안	조정안(B)	(B-A)	(B-A)/A
기타경상 이전수입	3,062	3,109	3,109	3,109	3,109	-	전년동

가. 법적 근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보조금의 반환) ②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의 금액을 제28조에 따라 확정한 경우에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나. 수입 개요

○ 지자체 및 민간단체의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한 반환금을 세입조치

다. 2027년 수입계획안 내역

○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단위: 천원)

연 도	금 액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2026계획(수정)	3,109,000	- 최근 3년(2021~2023) 수납액 평균 수준 요구
2027계획안	3,109,000	- 전년도 계획액 수준 요구

라.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계획현액	장수결정액 (B)	수납액(C)	수납률 (C/A)	수납률 (C/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당초	수정(A)							
'23	2,373	2,373	2,373	5,031	3,494	147.2	69.4	1,536	-
'24	2,717	2,717	2,717	3,820	3,002	110.5	78.6	818	-
'25	3,164	3,164	3,164	3,626	3062	84.4	96.8	564	-
'26	3,109	3,109	3,109	3,179	1,345	43.3	42.3	1,834	-
'27	3,109	3,109	3,109						

마. 최근 3개년 간 동 수입에 대한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 해당없음

바. 담당자 정보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인권국	인권구조과	반 지	김현우 서기관	김도후
		02-2110-3641	02-2110-3644	02-2110-3746

통화금융기관 예치금 회수
85 - 852

(단위: 백만원, %)

목명	2025년 결산	2026년 계획		2027년		증감	
		당초(A)	수정	요구안	조정안(B)	(B-A)	(B-A)/A
기타경상 이전수입	52,000	48,046	48,046	42,386	42,386	△5,660	△11.8

가. 법적 근거

① 법령상 근거

-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여유자금의 운용)
- 「국가재정법」 제81조(여유자금의 통합운용)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여유자금의 통합운용을 위한 금융기관의 선정 등)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법무부장관이 관리·운용한다. ②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시행령」 제4조(여유자금의 운용) ① 법무부장관은 기금에 여유자금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국채·공채 및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에 따라 발행되는 통화안정증권의 매매
2. 「은행법」에 따른 은행 및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에 예치(預置) 또는 단기 대여
3.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에의 예탁

「국가재정법」 제81조(여유자금의 통합운용) 기획재정부장관은 기금 여유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각 기금관리주체가 예탁하는 여유자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선정된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통합하여 운용하게 할 수 있다.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37조(여유자금의 통합운용을 위한 금융기관의 선정 등) ①법 제81조에 따라 각 기금관리주체가 예탁하는 여유자금을 통합운용하는 금융기관은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이 선정하되, 다음 각 호의 선정기준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재무상태 및 경영지표의 건전성
2. 수익률 등 자산운용의 성과
3. 자산운용 전략 및 계획의 적정성

나. 수입 개요

○ 기금 사업비 충당을 위하여 여유자금으로 투자한 원금 중 일부를 기금 집행 추이를 고려하여 회수

다. 2027년 수입계획안 내역

○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단위: 천원)

연 도	금 액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2026계획(수정)	48,046,000	- '26년도 여유자금 운용액 48,046백만원
2027계획안	42,386,000	- '27년도 여유자금 운용액 42,386백만원

라.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계획현액	장수결장액 (B)	수납액(C)	수납률 (C/A)	수납률 (C/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당초	수정(A)							
'23	14,805	14,805	14,805	31,500	31,500	212.8	100.0		-
'24	46,002	46,002	46,002	47,000	47,000	102.2	100.0	-	
'25	50,502	50,502	50,502	52,000	52,000	103.0	100.0	-	-
'26	48,046	48,046	48,046	56,000	56,000	116.6	100.0	-	-
'27(안)	42,386	42,386	42,386	-	-	-	-	-	-

마. 최근 3개년 간 동 수입에 대한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 해당없음

바. 담당자 정보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인권국	인권구조과	반 지	김현우 서기관	김도후
		02-2110-3641	02-2110-3644	02-2110-3746

일반회계전입금
91 - 911

(단위: 백만원, %)

목명	2025년 결산	2026년 계획		2027년		증감	
		당초(A)	수정	요구안	조정안(B)	(B-A)	(B-A)/A
일반회계 전입금	88,762	91,146	91,146	85,460	85,460	△5,686	△6.2

가. 법적 근거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제4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2항에 따른 벌금 수납액
2.「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대위하여 취득한 구상금
3. 정부 외의 자가 출연 또는 기부하는 현금, 물품, 그 밖의 재산
4. 기금의 운용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익금
② 정부는 「형사소송법」 제477조 제1항에 따라 집행된 벌금에 100분의 6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3호에 따라 정부 외의 자가 출연 또는 기부하는 경우 그 용도를 지정하여 출연 또는 기부할 수 있다.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시행령」 제4조제1항
제2조(기금의 조성)
①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이란 100분의 8을 말한다.

나. 수입 개요

○ 해당 연도 예상 벌금수납액의 8%를 바탕으로 일반회계전입금을 산출

다. 2027년 수입계획안 내역

○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단위: 천원)

연 도	금 액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2026계획(수정)	91,146,000	▪ 〔전년도 벌금수납액×8% 등]
2027계획안	85,460,000	▪ 〔최근 3년 평균 벌금수납액×8%] + 직전년도('25) 정산 + '17~'24년도 정산

라.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계획현액	장수결정액 (B)	수납액(C)	수납률 (C/A)	수납률 (C/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당초	수정(A)							
'23	94,200	94,200	94,200	94,200	94,200	100.0	100.0		-
'24	86,121	86,121	86,121	86,121	86,121	100.0	100.0	-	-
'25	88,762	88,762	88,762	88,762	88,762	100.0	100.0	-	-
'26	91,146	91,146	91,146	69,500	69,500	76.3	100.0	-	-
'27(안)	85,460	85,460	85,460	-	-	-	-	-	-

마. 최근 3개년 간 동 수입에 대한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 해당없음

바. 담당자 정보

실・국	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인권국	인권구조과	반 지	김현우 서기관	김도후
		02-2110-3641	02-2110-3644	02-2110-3746

3. 지 출

사 업 명
범죄피해자 치료 및 자립지원(1135－3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범죄피해자 보호기금	법무부	인권국		020	022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35	300
명칭	인권활동	강력범죄 등 피해자 보호·지원	범죄피해자 치료 및 자립지원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6예산 시 소관
	ㅇ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ㅇ			ㅇ		15~100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범죄피해자 치료 및 자립지원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법무부 인권국	반 지	김현우 서기관	김도후
		법무부 인권구조과	02-2110-3641	02-2110-3644	02-2110-3746

가. 지출계획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년 결산	2026년 계획		2027년		증감	
		당초(A)	수정	요구안	조정안(B)	(B-A)	(B-A)/A
범죄피해자 치료 및 자립지원	20,271	24,633	24,633	31,523	30,609	5,976	24.3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계획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25					2026('26.7월말)								2027 계획안
	계획액 (수정)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당초	수정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21,442	21,442	20,271	-	1,171	24,633	24,633	24,633	17,459 [13,347]	24,633	17,459 [13,347]	-	-	30,609
· 원스톱솔루션센터 설치·운영	1,343	1,343	1,157	-	186	1,085	1,085	1,085	572	1,085	572	-	-	1,110
· 범죄피해자지원 센터운영	5,267	5,267	5,267	-	-	5,488	5,488	5,488	4,053 [3,065]	5,488	4,053 [3,065]	-	-	6,449
· 스마일센터 운영	8,571	8,571	8,571	-	-	11,410	11,410	11,410	8,700 [5,843]	11,410	8,700 [5,843]	-	-	12,305
· 범죄피해자 치료비, 생계비 등	4,413	4,413	3,472	-	941	4,804	4,804	4,804	3,041	4,804	3,041	-	-	8,344
· 범죄피해자 간병비 등	708	708	708	-	-	708	708	708	531 [339]	708	531 [339]	-	-	708
· 범죄피해 현장정리	409	409	387	-	22	409	409	409	167	409	167	-	-	409
· 범죄피해 법률구조	412	412	412	-	-	412	412	412	309 [234]	412	309 [234]	-	-	412
· 범죄피해자지원 사업	319	319	297	-	22	317	317	317	86	317	86	-	-	317
· 범죄피해자 통합 지원시스템 홍보비	-	-	-	-	-	-	-	-	-	-	-	-	-	555
○ 비목별 분류(합계)	21,442	21,442	20,271	-	1,171	24,633	24,633	24,633	17,459 [13,347]	24,633	17,459 [13,347]	-	-	30,609
· 상용임금(110-03)	211	211	210	-	1	232	232	232	133	232	133	-	-	252
· 일반수용비(210-01)	779	779	711	-	68	752	752	752	326	752	326	-	-	1,361
· 공공요금및제세(210-02)	228	228	125	-	103	178	178	178	80	178	80	-	-	148
· 특근매식비(210-05)	2	2	2	-	-	2	2	2	2	2	2	-	-	-
· 임차료(210-07)	291	291	290	-	1	241	241	241	164	241	164	-	-	241
· 유류비(210-08)	5	5	0	-	5	3	3	3	1	3	1	-	-	1
· 시설장비유지비(210-09)	174	174	135	-	39	160	160	160	67	160	67	-	-	160

	2025					2026('26.7월말)								2027 계획안
	계획액 (수정)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당초	수정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복리후생비(210-12)	3	3	3	-	-	3	3	3	3	3	3	-	-	4
· 일반용역비(210-14)	200	200	196	-	4	200	200	200	69	200	69	-	-	200
· 관리용역비(210-15)	41	41	32	-	9	41	41	41	15	41	15	-	-	41
· 국내여비(220-01)	36	36	26	-	10	36	36	36	27	36	27	-	-	36
· 사업추진비(240-01)	61	61	61	-	-	61	61	61	46	61	46	-	-	61
· 일반연구비(260-01)	200	200	165	-	35	97	97	97	-	97	-	-	-	97
· 기타보전금(310-04)	4,297	4,297	3,403	-	894	4,688	4,688	4,688	2,989	4,688	2,989	-	-	4,688
· 민간경상보조(320-01)	14,673	14,673	14,672	-	1	17,833	17,833	17,833	13,524 [9,412]	17,833	13,524 [9,412]	-	-	19,689
· 민간자본보조(320-07)	135	135	135	-	-	35	35	35	-	35	-	-	-	35
· 고용부담금(320-09)	41	41	41	-	-	46	46	46	13	46	13	-	-	51
· 자치단체경상보조(330-01)	-	-	-	-	-	-	-	-	-	-	-	-	-	3,540
· 자산취득비(430-01)	66	66	65	-	-	25	25	25	-	25	-	-	-	5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21,442**	**21,442**	**20,271**	**-**	**1,171**	**24,633**	**24,633**	**24,633**	**17,459 [13,347]**	**24,633**	**17,459 [13,347]**	**-**	**-**	**30,609**
· 원스톱솔루션센터 설치·운영	**1,343**	**1,343**	**1,157**	**-**	**186**	**1,085**	**1,085**	**1,085**	**572**	**1,085**	**572**	**-**	**-**	**1,110**
-상용임금(110-03)	211	211	210	-	1	232	232	232	133	232	133	-	-	252
-일반수용비(210-01)	134	134	131	-	3	107	107	107	60	107	60	-	-	161
-공공요금및제세(210-02)	228	228	125	-	103	178	178	178	80	178	80	-	-	148
-특근매식비(210-05)	2	2	2	-	0	2	2	2	2	2	2	-	-	-
-임차료(210-07)	291	291	290	-	1	241	241	241	164	241	164	-	-	241
-유류비(210-08)	5	5	0	-	5	3	3	3	1	3	1	-	-	1
-시설장비유지비(210-09)	174	174	135	-	39	160	160	160	67	160	67	-	-	160
-복리후생비(210-12)	3	3	3	-	-	3	3	3	3	3	3	-	-	4
-일반용역비(210-14)	-	-	-	-	-	-	-	-	-	-	-	-	-	-
-관리용역비(210-15)	41	41	32	-	9	41	41	41	15	41	15	-	-	41
-국내여비(220-01)	15	15	6	-	9	15	15	15	11	15	11	-	-	15
-사업추진비(240-01)	32	32	32	-	-	32	32	32	23	32	23	-	-	32
-일반연구비(260-01)	100	100	85	-	15	-	-	-	-	-	-	-	-	-
-고용부담금(320-09)	41	41	41	-	-	46	46	46	13	46	13	-	-	51
-자산취득비(430-01)	66	66	66	-	-	25	25	25	-	25	-	-	-	5
· 범죄피해자지원 센터 운영	**5,267**	**5,267**	**5,263**	**-**	**4**	**5,488**	**5,488**	**5,488**	**4,053 [3,065]**	**5,488**	**4,053 [3,065]**	**-**	**-**	**6,449**
-민간경상보조(320-01)	5,117	5,117	5,117	-	-	5,338	5,338	5,338	3,984 [2,996]	5,338	3,984 [2,996]	-	-	6,299
-일반수용비(210-01)	-	-	-	-	-	-	-	-	-	-	-	-	-	-
-일반용역비(210-14)	150	150	146	-	4	150	150	150	69	150	69	-	-	150

	2025					2026('26.7월말)								2027 계획안
	계획액 (수정)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당초	수정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스마일센터 운영	**8,571**	**8,571**	**8,571**	**-**	**-**	**11,410**	**11,410**	**11,410**	**8,700 [5,843]**	**11,410**	**8,700 [5,843]**	**-**	**-**	**12,305**
-민간경상보조(320-01)	8,436	8,436	8,436	-	-	11,375	11,375	11,375	8,700 [5,843]	11,375	8,700 [5,843]	-	-	12,270
-민간자본보조(320-07)	135	135	135	-	-	35	35	35	-	35	-	-	-	35
· 범죄피해자 치료비, 생계비 등	**4,413**	**4,413**	**3,474**	**-**	**939**	**4,804**	**4,804**	**4,804**	**3,041**	**4,804**	**3,041**	**-**	**-**	**8,344**
-일반수용비(210-01)	116	116	71	-	45	116	116	116	52	116	52	-	-	116
-기타보전금(310-04)	4,297	4,297	3,403	-	894	4,688	4,688	4,688	2,989	4,688	2,989	-	-	4,688
-자치단체경상보조(330-01)	-	-	-	-	-	-	-	-	-	-	-	-	-	3,540
· 범죄피해자 간병비	**708**	**708**	**708**	**-**	**-**	**708**	**708**	**708**	**531 [339]**	**708**	**531 [339]**	**-**	**-**	**708**
-민간경상보조(320-01)	708	708	708	-	-	708	708	708	531 [339]	708	531 [339]	-	-	708
· 범죄피해 현장정리	**409**	**409**	**387**	**-**	**22**	**409**	**409**	**409**	**167**	**409**	**167**	**-**	**-**	**409**
-일반수용비(210-01)	409	409	387	-	22	409	409	409	167	409	167	-	-	409
· 범죄피해 법률구조	**412**	**412**	**412**	**-**	**-**	**412**	**412**	**412**	**309 [234]**	**412**	**309 [234]**	**-**	**-**	**412**
-민간경상보조(320-01)	412	412	412	-	-	412	412	412	309 [234]	412	309 [234]	-	-	412
· 범죄피해자지원 사업	**320**	**320**	**300**	**-**	**20**	**317**	**317**	**317**	**86**	**317**	**86**	**-**	**-**	**317**
-일반수용비(210-01)	120	120	120	-	-	120	120	120	47	120	47	-	-	120
-일반용역비(210-14)	50	50	50	-	-	50	50	50	-	50	-	-	-	50
-국내여비(220-01)	21	21	21	-	-	21	21	21	16	21	16	-	-	21
-사업추진비(240-01)	29	29	29	-	-	29	29	29	23	29	23	-	-	29
-일반연구비(260-01)	100	100	80	-	20	97	97	97	-	97	-	-	-	97
· 범죄피해자 통합지원 시스템 홍보비	**-**	**-**	**-**	**-**	**-**	**-**	**-**	**-**	**-**	**-**	**-**	**-**	**-**	**555**
-일반수용비(210-01)	-	-	-	-	-	-	-	-	-	-	-	-	-	555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범죄피해자를 상대로 상담, 경제·의료지원, 신변보호, 법정동행과 재판모니터링, 기타 지원(현장정리, 홍보·교육 등)을 제공하는 민간 범죄피해자지원단체(60개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및 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범죄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범죄피해자가 범죄 피해로부터 신속하게 벗어나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실질적 도움을 제공

○ 강력범죄 피해자 심리치유 지원 시설인 '스마일센터'를 위탁운영하여 범죄피해자에 대한 심리상담과 심리치유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고 임시거처를 제공함으로써 범죄피해자의 신속한 피해회복과 일상생활로의 복귀를 도움

○ 피해자가 다양한 경제·심리·법률적 지원을 한 공간에서 종합적으로 받을 수 있는 ‘원스톱 솔루션 센터’를 설치하여 범죄발생 초기부터 일상회복까지 피해자 지원의 체계적 설계 및 안내·연계를 통해 범죄피해자에게 원스톱 지원을 제공

○ 범죄피해자에 대한 치료비와 긴급생계비, 간병비 등 치료 부대비용 지원, 취업지원, 법률지원 등을 통해 범죄피해자가 범죄피해에서 신속히 벗어나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

- 성폭력 피해자, 가족, 친지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원활히 회복되도록 의료비, 돌봄비, 치료동행 서비스, 치료회복 프로그램 등 제공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헌법」 제30조 ‘범죄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구조의무’
- 「범죄피해자보호법」 제7조(손실복구지원 등), 제34조(보조금의 교부) 및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44조(보조금의 교부결정 등),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범죄피해자보호법」

제7조(손실 복구 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의 피해정도 및 보호·지원의 필요성 등에 따라 상담, 의료 제공, 구조금 지급, 법률구조, 취업 관련 지원, 주거지원, 그 밖에 범죄피해자의 보호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신체적·정신적 안정을 제공하고 사회복귀를 돕기 위하여 일시적 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는 보호시설의 운영을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국가는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의 정신적 회복을 위한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④ 보호시설의 설치·운영 기준, 입소·퇴소의 기준 및 절차, 위탁운영의 절차, 감독의 기준 및 절차와 제3항에 따른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등록 등)

①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면 자산 및 인적 구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설립 ·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과 「공익법인의 설립 ·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제34조(보조금의 교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하 "등록법인"이라 한다)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등록법인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으려는 등록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등 필요한 사항을 적은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령」

제44조(보조금의 교부결정 등)

① 법무부장관은 제43조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신청서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자산
2. 1년 이상의 사업운영 실적
3. 사업수행 능력
4. 보조금 신청사업의 타당성
5. 범죄피해자 보호·지원과 관련하여 최근 3년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의 내역

②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한 범죄피해자지원법인이 다른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고 있는 경우 동일한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중복하여 교부하지 아니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보조금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법무부장관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 때에는 그 교부 결정의 내용을 신속히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한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에 통지하여야 한다.

⑤ 법무부장관은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민간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료비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7조제2항에 따른 치료 등 의료지원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추진경위

<범죄피해자지원센터>

- 2003. 12. 김천·구미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시작으로 현재 61개 범죄피해자 지원센터가 법무부에 등록하여 활동 중임

  ※ 2008. 9. 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연계 및 관련기관과의 업무협약, 범죄피해자 지원 관련 전국적인 홍보 및 지원 등의 수행을 위해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를 설립, 전국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대한 지도 및 총괄 업무를 담당

<스마일센터>

- 2009년 연구용역 결과, 강력범죄 피해자의 경우 스트레스장애환자보다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이 심하고 정신질환자집단보다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는 등*의 어려움으로 인해 전문적인 심리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 확인

  * 강력범죄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의 피해실태 사례연구(김지영,박형민)

- 이에 따라, '10. 7. 국가가 강력범죄 피해자에게 전문 심리치료 및 임시 주거시설을 제공하기 위해 서울스마일센터를 설립하기 시작하여 전국에 총 16개소 운영 중

<원스톱솔루션센터>

- 법률·경제·심리·고용·복지·금융 등 단계별로 일상회복까지 범죄피해자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추진
- '24. 7. 서울에 원스톱 솔루션 센터를 설치하여 피해자가 경제적·심리적·법률적 지원 등 범죄피해자 지원과 그 밖에 필요한 고용·복지 등 지원을 한 공간에서 종합적으로 상담 받을 수 있는 시설 마련
- '25. 6. 범죄피해자 통합지원시스템 구축 ISP 수립
- '25. 8.~9. 범죄피해자 지원 유관기관과 시스템 연계 논의
- '26. 3. 범죄피해자 통합지원시스템 구축 TF 구성, 유관기관 시스템 연계 협의 추진
- '26. 4. 범죄피해자 통합지원시스템 구축 1차 사업 착수
- '26. 6. 범죄피해자 통합지원시스템 포털 및 내부시스템 개발 착수('27. 1. 대국민 서비스 예정)

<강력범죄 피해현장 정리>

- 주요 강력범죄 피해현장에 대한 정리를 지원하여 신체적 피해 및 정신적 충격에 빠져 있는 피해자와 유족의 심적 안정과 신속한 일상생활로의 조기 복귀 도모

  ※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위탁사업으로 시작('13.)하여 경찰청 직접수행('16.)으로 변경

<범죄피해 법률구조>

- 공탁금관리위원회 지원 사업에서 법무부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사업으로 이관('16. 1.)하여 무료법률구조 지원 실시(대한법률구조공단)

<범죄피해자 치료비 및 생계비, 간병비 등>

- 「범죄피해자보호법」은 국가가 범죄피해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을 포함한 의료 제공의 대책을 세워야 할 필요성과 당위성을 인정
- '14년부터 범죄피해자에게 생계비, 치료비, 간병비 지원

※ 생계비·치료비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검찰청 사업으로 이관('15)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06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3	2024	2025	2026	2027(안)
사업비	17,270	21,099	21,442	24,633	30,609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보조
- 사업시행주체 : 법무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스마일센터, 대한법률구조공단 / 경찰청 / 성평등가족부,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등
- 사업 수혜자 : 범죄피해자 및 그 가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7계획안)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범피센터	보조	범피센터	6,299	15~20%	범죄피해자보호법 제34조
스마일센터	보조	스마일센터	12,305	100%	범죄피해자보호법 제7조 및 제34조
간병비 등	보조	범피연합회	708	100%	범죄피해자보호법 제34조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등 지원	보조	지자체보조	3,540	50~7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법률구조	보조	구조공단	412	100%	법률구조법 제4조

3) '27년도 계획안 산출 근거

①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 등

: ('26) 5,488백만원 → ('27) 6,449백만원, 961백만원 증액

- (산출)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 5,221백만원, 범죄피해자 지원 전담인력 및 사례회의 운영비 1,078백만원, 범죄피해자 지원 유관기관 종사자 통합 교육비 150백만원

ㅇ 2026년도 예산 및 2027년도 예산안 산출 세부내역 비교

'26년 예산		'27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5,488	○ 민간경상보조(320-01) : 5,338,000천원 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지원 ・인건비 : 61개소*55,420,000원=3,380,620천원 ・운영비 : 61개소*14,941,475원=911,430천원 나. 범죄피해자 원스톱 지원 전담인력 배치 ・인건비 : 19개소*43,830,000원=832,770천원 ・운영비 : 19개소*335,000원*12개월=213,180천원 ○ 일반용역비(210-15) : 150백만원 가. 범죄피해자 지원 유관기관 종사자 통합 교육 ・300명*500,000원=150,000천원	6,449	○ 민간경상보조(320-01) : 6,299,000천원 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지원 ・인건비 : 61개소*70,641,672원=4,309,142천원 ・운영비 : 61개소*14,941,475원=911,430천원 나. 범죄피해자 원스톱 지원 전담인력 배치 ・인건비 : 19개소*45,539,368원=865,248천원 ・운영비 : 19개소*335,000원*12개월=213,180천원 ○ 일반용역비(210-15) : 150백만원 가. 범죄피해자 지원 유관기관 종사자 통합 교육 ・300명*500,000원=150,000천원

② 스마일센터 운영

: ('26) 11,410백만원 → ('27) 12,305백만원, 895백만원 증액

- (산출) 인건비 7,664백만원, 운영비 4,606백만원, 시설보강비 35백만원

ㅇ 2026년도 예산 및 2027년도 예산안 산출 세부내역 비교

'26년 예산		'27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1,410	○ 민간경상보조(320-01) : 11,375,000천원 가. 인건비 ・ 16개소*446,000,000원=7,136,000천원 ・ 1개소(총괄)*195,000,000원=195,000천원 나. 운영비 ・ 16개소*214,000,000원=3,424,000천원 ・ 1개소(총괄)*620,000,000원=620,000천원 ○ 민간자본보조(320-07) : 35,000천원 가. 보강비 ・ 5개소*7,000,000원=35,000천원	12,305	○ 민간경상보조(320-01) : 12,270,000천원 가. 인건비 ・ 16개소*465,587,500원=7,449,400천원 ・ 1개소(총괄)*214,600,000원=214,600천원 나. 운영비 ・ 16개소*249,125,000원=3,986,000천원 ・ 1개소(총괄)*620,000,000원=620,000천원 ○ 민간자본보조(320-07) : 35,000천원 가. 보강비 ・ 5개소*7,000,000원=35,000천원

③ 원스톱솔루션센터 설치·운영

: ('26) 1,085백만원 → ('27) 1,110백만원, 25백만원 증액

- (산출) 원스톱솔루션센터 운영비 804백만원, 인건비 306백만원

ㅇ 2026년도 예산 및 2027년도 예산안 산출 세부내역 비교

'26년 예산		'27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085	○ 상용임금(110-03) : 232,284천원 가. 원스톱솔루션센터 전문상담원 166,141천원 ・ 기본급 등 4명*39,855,200원=159,421천원 ・ 정액급식비 4명*140,000원*12월=6,720천원 나. 원스톱솔루션센터 보안요원 64,545천원 ・ 기본급 등 2명*30,592,500원=61,185천원 ・ 정액급식비 2명*140,000원*12월=3,360천원 다. 초과근무 수당 등 1,598천원 ○ 일반수용비(210-01) : 107,000천원 가. 원스톱통합솔루션센터 운영 등 ・ 원스톱솔루션센터 소모성 물품 구입비, 비품 수선비, 인쇄비 등 107,000천원 ○ 공공요금및제세(210-02) : 178,000천원 가. 원스톱솔루션센터 공공요금 ・ 178,000천원 ○ 특근매식비(210-05) : 2,000천원 가. 원스톱솔루션센터 특근매식비	1,110	○ 상용임금(110-03) : 251,852천원 가. 원스톱솔루션센터 전문상담원 179,712천원 ・ 기본급 등 4명*43,008,000원=172,032천원 ・ 정액급식비 4명*160,000원*12월=7,680천원 나. 원스톱솔루션센터 보안요원 70,209천원 ・ 기본급 등 2명*33,184,680원=66,369천원 ・ 정액급식비 2명*160,000원*12월=3,840천원 다. 초과근무 수당 등 1,930천원 ○ 일반수용비(210-01) : 161,000천원 가. 원스톱솔루션센터 운영 등 ・ 원스톱솔루션센터 소모성 물품 구입비, 비품 수선비, 인쇄비, **홍보비** 등 161,000천원 ○ 공공요금및제세(210-02) : 148,000천원 가. 원스톱솔루션센터 공공요금 ・ 148,000천원 ○ 임차료(210-07) : 241,000천원 가. 원스톱솔루션센터 운영(청사, 차량, 사무기기 등) 임차료 ・ 20,083,333원*12개월=241,000천원

'26년 예산		'27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 166,667원*12월=2,000천원 ○ 임차료(210-07) : 241,000천원 가. 원스톱솔루션센터 운영(청사, 차량, 사무기기 등) 임차료 ・ 20,083,333원*12개월=241,000천원 ○ 유류비(210-08) : 3,000천원 가. 원스톱솔루션센터 차량 유류비 ・ 1대*250,000원*12개월원=3,000천원 ○ 시설장비유지비(210-09) : 160,000천원 가. 시설관리비, 수선유지비 ・ 13,333,333원*12개월=160,000천원 ○ 복리후생비(210-12) : 3,000천원 가. 원스톱솔루션센터 전문상담원 ・ 4명*500,000원=2,000천원 나. 원스톱솔루션센터 보안요원 ・ 2명*500,000월=1,000천원 ○ 관리용역비(210-15) : 41,000천원 가. 원스톱 솔루션 센터 청소, 보안 용역 ・ 3,416,667원*12월=41,000천원 ○ 국내여비(220-01) : 14,925천원 가. 원스톱 지원 유관기관 업무 협의 ・ 4회*310,940원*12월=14,925천원 ○ 사업추진비(240-01) : 31,200천원 가. 원스톱 피해자 지원 협의 등 ・ 8회*325,000원*12월=31,200천원 ○ 고용부담금(320-09) : 45,993천원 가. 원스톱솔루션센터 전문상담원 32,896천원 ・ 사용자부담금 4명*41,535,200원*11.47%=19,056천원 ・ 퇴직금적립 4명*41,535,200원*8.33%=13,840천원 나. 원스톱솔루션센터 보안요원 12,780천원 ・ 사용자부담금 2명*32,272,400원*11.47%=7,403천원 ・ 2명*32,272,400원*8.33%=5,377천원 ○ 자산취득비(430-01) : 25,000천원 가. 회의실 장비 구입, 사무용 가구 등 구입 ・ 25,000,000원		○ 유류비(210-08) : 1,000천원 가. 원스톱솔루션센터 차량 유류비 ・ 1대*83,333원*12개월원=1,000천원 ○ 시설장비유지비(210-09) : 160,000천원 가. 시설관리비, 수선유지비 ・ 13,333,333원*12개월=160,000천원 ○ 복리후생비(210-12) : 3,600천원 가. 원스톱솔루션센터 전문상담원 ・ 4명*600,000원=2,400천원 나. 원스톱솔루션센터 보안요원 ・ 2명*600,000월=1,200천원 ○ 관리용역비(210-15) : 41,000천원 가. 원스톱 솔루션 센터 청소, 보안 용역 ・ 3,416,667원*12월=41,000천원 ○ 국내여비(220-01) : 14,925천원 가. 원스톱 지원 유관기관 업무 협의 ・ 4회*310,940원*12월=14,925천원 ○ 사업추진비(240-01) : 31,200천원 가. 원스톱 피해자 지원 협의 등 ・ 8회*325,000원*12월=31,200천원 ○ 고용부담금(320-09) : 50,647천원 가. 원스톱솔루션센터 전문상담원 36,145천원 ・ 사용자부담금 4명*44,928,000원*11.783%=21,175천원 ・ 퇴직금적립 4명*44,928,000원*8.33%=14,970천원 나. 원스톱솔루션센터 보안요원 14,121천원 ・ 사용자부담금 2명*35,104,680원*11.783%=8,273천원 ・ 퇴직금적립 2명*35,104,680원*8.33%=5,848천원 다. 단수조정 381,000원=381천원 ○ 자산취득비(430-01) : 5,000천원 가. 회의실 장비 구입, 사무용 가구 등 구입 ・ 5,000,000원

④ 범죄피해자 치료비 및 생계비

: ('26) 4,804백만원 → ('27) 8,344백만원, 3,540백만원 증액

- (산출) 치료비(신체·정신) 2,100백만원, 생계비 2,588백만원, 심의회 운영 116백만원,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등 지원 3,540백만원

ㅇ 2026년도 예산 및 2027년도 예산안 산출 세부내역 비교

'26년 예산		'27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4,804	○ 기타보전금(310-04) : 4,688,000천원 가. 생계비 ・467명*5,541,756원=2,588,000천원 나. 치료비(신체·정신) ・900건*2,333,333원=2,100,000천원 ○ 일반수용비(210-01) : 116,000천원 가. 경제적지원 심의위원회 운영 ・ 60개소*193,330원*10회=116,000천원	8,344	○ 기타보전금(310-04) : 4,688,000천원 가. 생계비 ・467명*5,541,756원=2,588,000천원 나. 치료비(신체·정신) ・900건*2,333,333원=2,100,000천원 ○ 일반수용비(210-01) : 116,000천원 가. 경제적지원 심의위원회 운영 ・ 60개소*193,330원*10회=116,000천원 ○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등 지원 : 3,540백만원 가. 의료비·간병비 지원 : 2,134백만원

'26년 예산		'27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의료비) 170천원 × 19천명 × 50~70% = 2,108백만원 ·(간병비) 2,502천원 × 16명 × 50~70% = 26백만원 나. 성폭력 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 운영 지원 : 474백만원 ·(치료회복프로그램)) 984명×718천원×50~70% = 474백만원 다. 피해자 치료동행 서비스, 기타 부대비용 등 지원 932백만원 ·(치료동행 서비스) 49백만원×24개소×50~70% = 778백만원 ·(부대비용) 6백만원×41개소×50~70% = 154백만원

⑤ 범죄피해자 간병비 등

: ('26) 708백만원 → ('27) 708백만원, 전년동

- (산출) 간병비·부대비 650백만원, 자립비 58백만원

ㅇ 2026년도 예산 및 2027년도 예산안 산출 세부내역 비교

'26년 예산		'27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708	○ 민간경상보조**(320-01) : 708,000천원** 가. 간병비·부대비 · 260건*2,500,000원=650,000천원 나. 자립비(취업지원) · 50명*1,160,000원=58,000천원	708	○ 민간경상보조**(320-01) : 708,000천원** 가. 간병비·부대비 · 276건*2,355,072원=650,000천원 나. 자립비(취업지원) · 29명*2,000,000원=58,000천원

⑥ 강력범죄 피해현장 정리

: ('26) 409백만원 → ('27) 409백만원, 전년동

- (산출) 범죄피해 현장정리 409백만원

ㅇ 2026년도 예산 및 2027년도 예산안 산출 세부내역 비교

'26년 예산		'27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409	○ 일반수용비(210-01) : 409,000천원 가. 강력범죄 피해현장 정리 · 138건*2,963,768원=409,000천원	409	○ 일반수용비(210-01) : 409,000천원 가. 강력범죄 피해현장 정리 · 138건*2,963,768원=409,000천원

⑦ 범죄피해 법률구조

: ('26) 412백만원 → ('27) 412백만원, 전년동

- (산출) 범죄피해 법률구조 412백만원

ㅇ 2026년도 예산 및 2027년도 예산안 산출 세부내역 비교

'26년 예산		'27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412	○ 일반수용비(210-01) : 412,000천원 가. 범죄피해 법률구조 · 1,526건*270,000원=412,000천원	412	○ 일반수용비(210-01) : 412,000천원 가. 범죄피해 법률구조 · 1,526건*270,000원=412,000천원

⑧ 범죄피해자지원 사업

: ('26) 317백만원 → ('27) 317백만원, 전년동

- (산출) 홍보·협의·지도·점검 등 317백만원

ㅇ 2026년도 예산 및 2027년도 예산안 산출 세부내역 비교

'26년 예산		'27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317	○ 일반수용비**(210-01) : 120,000천원** 가. 범죄피해자지원 행사·홍보비 등 120,000천원 · 범죄피해자 지원제도 안내, 홍보 행사, 동영상, 리플릿 책자 등 ○ 일반용역비**(210-14) : 50,000천원**	317	○ 일반수용비**(210-01) : 120,000천원** 가. 범죄피해자지원 행사·홍보비 등 120,000천원 · 범죄피해자 지원제도 안내, 홍보 행사, 동영상, 리플릿 책자 등 ○ 일반용역비**(210-14) : 50,000천원**

'26년 예산		'27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가. 범죄피해자지원 전문가 양성 교육 ・ 70명*714,286원=50,000천원 ○ 국내여비**(220-01) : 20,551천원** 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도점검 등 ・ 33회*312,500원=10,313천원 나. 스마일센터 지도점검 등 ・ 33회*312,500원=10,313천원 다. 단수조정 -75천원 ○ 사업추진비**(240-01) : 30,218천원** 가. 범죄피해자보호지원 유관기관 간담회 ・ 32회*461,000원=14,752천원 나. 범피센터·스마일센터 종사자 간담회 ・ 33회*470,000원=15,510천원 다. 단수조정 –44천원 ○ 일반연구비**(260-01) : 97,000천원** 가.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연구 용역 97,000천원		가. 범죄피해자지원 전문가 양성 교육 ・ 70명*714,286원=50,000천원 ○ 국내여비**(220-01) : 20,551천원** 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도점검 등 ・ 33회*312,500원=10,313천원 나. 스마일센터 지도점검 등 ・ 33회*312,500원=10,313천원 다. 단수조정 -75천원 ○ 사업추진비**(240-01) : 30,218천원** 가. 범죄피해자보호지원 유관기관 간담회 ・ 32회*461,000원=14,752천원 나. 범피센터·스마일센터 종사자 간담회 ・ 33회*470,000원=15,510천원 다. 단수조정 –44천원 ○ 일반연구비**(260-01) : 97,000천원** 가.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연구 용역 97,000천원

⑨ 범죄피해자 통합지원시스템 홍보비

: ('26) - → ('27) 555백만원, 순증

- (산출) 홍보비 555백만원

'26년 예산		'27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		555	○ 일반수용비**(210-01) : 555,000천원** 가. 범죄피해자 통합지원시스템 홍보비 555,000천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3~'27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3	'24	'25	'26	'27	'26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사회적 취약계층 법률지원 실적(건)	목표	신규	16,195	17,550	18,076	19,890	'25년 목표치 대비 3% 상향	주요 사회적 취약계층 (장애인, 한부모가족, 범죄피해자, 소액임차인, 북한이탈주민 등) 법률구조 건수	대한법률구조공단 전산통계 프로그램
	실적	17,239	신규	20,066	-	-			
	달성도	신규	신규	114.3	-	-			
범죄피해자지원 만족도(점)	목표	90.8	91.0	91.1	91.2	91.3	'25년 목표치 대비 0.1점 상향	점수총계/ 응답자수	만족도 설문조사자료
	실적	91.1	91.5	91.3	-				
	달성도	99.7	100.5	100.2	-				
스마일센터 종합지원(건)	목표	신규	신규	84,569	82,677	83,504	'24·'25년 실적 평균치	스마일센터의 심리지원 + 사회지원 + 법률지원 + 임시주거 실적	스마일센터 분기별 실적 보고
	실적	82,974	80,269	85,078	-	-			
	달성도	신규	신규	100.6%	-	-			
간병비·치료부대비용 등 범죄피해자 자립지원(건)	목표	신규	신규	485	509	524	'24년 실적치 대비 3% 상향	간병비+치료부대비용 실적합	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 통계시스템
	실적	514	494	622	-	-			
	달성도	신규	신규	128.2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범죄피해자 지원 체크리스트 배포(3월) · 법무부에서 마련한 「범죄피해자 지원 체크리스트」를 범죄피해자 지원 센터 내에 비치하여 범죄피해자가 한 번의 신청으로 범죄피해구조금·치료비·생계비 등 경제적 지원, 피해자 국선변호사·진술 조력인의 법률적 지원, 심리적 지원 등을 한번에 신청 가능 -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제도' 전국 1,600개 병·의원 키오스크 홍보(3~4월) · 국민생활 밀착형 홍보매체를 통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홍보' 공익영상(4편, 각 30초) 광고 - 범죄피해자의 회복을 함께 응원하는 공익캠페인인 '다링안심캠페인' 개최(6월) · (온라인 캠페인) 5. 27. ~ 6. 19.(3주)'워크온APP 걷기챌린지'를 통한 생활 밀착형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제도' 홍보 · (오프라인 행사) 6. 10.(금) 청계천 걷기 행사, 범피센터·스마일센터 등 종사자 300명 및 일반시민 참석 -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옥외 광고(9월) · 추석 명절을 맞아 인구 이동량이 많은 기간(9. 8.~22, 2주), 주요 기차역 및 터미널 전광판을 통한 공익영상 광고 - '범죄피해자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추진(10월~) · 범죄피해자 원스톱 지원 체계 구축을 통해 범죄피해자가 편리하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 범죄피해자 권익 보장 강화 · 법무부·교육부·여성가족부·경찰청·서울시 등이 참여한 '범죄피해자 원스톱 지원 협의체'를 구성·운영 ※ 2022. 10.부터 정례회의 개최, '22년은 총 두차례 회의 개최(①'22. 10. 20. / ②'22. 11. 22.) - 제15회 범죄피해자 인권대회 개최(11월) ·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대한 사회적 관심 촉구와 범죄피해자 위로 및 범죄피해자 지원 기관 종사자 격려를 위해 인권대회 개최 · 정부포상 및 장관표창 등 수여자 50여명 격려 - 이태원 사고 관련 심리지원 협조(11월) · 10. 29. 이태원에서 발생한 참사와 관련, 부상자·유가족·목격자·소방·경찰 등의 심리지원을 위해 중앙·지방 및 유관기관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역할 조정·협조 · 법무부는 스마일센터를 통해 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단과 협업을 통해 부상자와 유족 등의 심리적 피해 회복에 기여 - 스마일센터 학술심포지엄 개최(11월) · '범죄피해 트라우마와 외상 후 성장'을 주제로 16개 스마일센터 및 유관기관 참여하에 학술심포지엄 개최

	-「2023년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위원회 개최(12월) · 범죄피해자 보호 실무위원회 개최(법무부 차관) · 범죄피해자 보호위원회 개최(법무부 장관)
2023	-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시스템 개선 · '22. 10. 20.부터 관계부처 간 '범죄피해자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협의체'를 구성하여 회의 진행 · 서울특별시와 '원스톱 솔루션 센터'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23. 11. 15.)에 따라 '24년 하반기 '원스톱 솔루션 센터' 설치 및 운영 추진 ·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유관기관 간 필요 정보 등을 문서 24를 통해 편리하게 공유할 수 있는 정보교류 체계 마련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및 자료 교환 체계 운영 · 범죄피해자보호·지원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이행실적 점검 및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방안 결의를 위해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 개최('23. 12.) - 범죄피해자를 위한 경제적·심리적 지원 강화 · 구조금 지급대상이 아니거나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범죄피해자 및 그 가족에게 생계비, 학자금 등을 지원하는 제16·17회 스마일공익신탁* 위원회 개최('23. 7./ 12.) * 국민들의 기부 참여를 통해 재원을 마련하며, 범죄피해자지원센터로부터 대상자를 추천받아 스마일공익신탁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 선정 * 범죄피해자와 그 유가족 등 20명 대상, 6,500만원 지원 실시 · 신분노출을 꺼리거나 시간·장소적 제약으로 인해 대면 진료가 어려운 강력범죄 피해자를 위해 비대면 심리치유 프로그램 콘텐츠 제작('23. 12.) -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역량 강화 및 대국민 홍보 전개 ·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제도에 대한 대국민적 이해도 증진을 위해 온라인, KTX·SRT 역사, 버스 정류장·전광판·옥외광고물 등을 활용하여 다양한 홍보 활동 실시 ·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대한 사회적 관심 촉구를 위해 범죄피해자 지원 종사자 및 일반시민과 함께하는 공익캠페인 개최 ※ (다링안심캠페인) 범죄피해자지원 관련 종사자, 일반시민 등 1,000여명 참여하여 걷기대회 및 문화공연 등 실시(6. 10. / 서울대공원) · 제16회 범죄피해자 인권대회 개최 및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유공자 포상 실시를 통한 범죄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촉구, 범죄피해자 지원 업무 관계자 격려 및 사기 진작 (11. 29./국립과천과학관) · 검찰청 내 범죄피해자 지원을 전담하는 검찰수사관을 대상으로 연수원 집합 교육* 실시를 통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실무 전문성 제고 * '23. 8. 28.~ 9. 1, 3일간 진천 법무연수원 집합교육 실시 감독 및 강의 출강 · 상담사 전문성 강화 등을 위한 채용 범위 확대, 직원복지 개선(센터 종사자의 유급병가, 장기근속수당 등)의 내용을 반영한 스마일센터 운영 규정 및 매뉴얼 개정 및 시행('23. 3.)

	· 범죄피해자지원제도 및 범죄피해자 지원기관을 안내하는「범죄피해자 지원 길잡이」책자 발간 및 피해자 지원 유관기관* 등 배포('23. 1.)
2024	- 범죄피해자를 위한 경제적·심리적 지원 강화 · 구조금 지급대상이 아니거나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범죄피해자 및 그 가족에게 생계비, 학자금 등을 지원하는 제18회 범죄피해자지원 스마일공익신탁* 위원회 개최('24. 6.) * 국민 기부 참여를 통해 재원을 마련, 범죄피해자지원센터로부터 대상자를 추천받아 스마일공익신탁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 선정 * 범죄피해자와 그 유가족 등 5명 대상, 1,700만원 지원 실시 -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역량 강화 및 대국민 홍보 전개 · 범죄피해자의 치유와 회복을 함께 응원하는 공익캠페인인 '다링안심캠페인' 개최(6월) · (온라인 캠페인) 5. 28. ~ 6. 15.(3주)'워크온APP 걷기챌린지'를 통한 생활 밀착형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제도' 홍보 · (오프라인 행사) 6. 15.(토) 장관, 시민, 피해자지원 종사자 등 500여명 참석 · 제17회 범죄피해자 인권대회 개최 및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유공자 포상 실시를 통한 범죄피해자 및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제도 대한 사회적 관심 촉구, 범죄피해자 지원 종사자 격려 및 사기 진작 (11. 27. 대구 IM뱅크 제2본점 대강당) - 대면 진료가 어려운 강력범죄피해자를 위한 '자가치유 콘텐츠' 제작 및 배포 · 신분노출을 꺼리거나 시간·장소적 제약으로 인해 대면 진료가 어려운 강력범죄 피해자를 위해 비대면 심리치유 프로그램 콘텐츠 제작 배포 ('24. 7.) - 원스톱 솔루션 센터 설치·운영 · '24. 7. 원스톱 솔루션 센터를 설치하여 피해자가 법률적·경제적·심리적 지원 등 범죄피해자 지원과 그 밖에 필요한 고용·복지 등 지원을 한 공간에서 종합적으로 상담 받을 수 있는 시설을 마련, 피해자 지원 기관 간 유기적·체계적 협업·연계 업무로 피해자의 방문 편의성 증진 및 시간·비용 소모 감소 -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역량 강화 및 대국민 홍보 전개 ·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제도에 대한 대국민적 이해도 증진을 위해 온라인, KTX·SRT 역사, 버스 정류장·전광판·옥외광고물 등을 활용하여 다양한 홍보 활동 실시 · 제17회 범죄피해자 인권대회 개최 및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유공자 포상 실시를 통한 범죄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촉구, 범죄피해자 지원 업무 관계자 격려 및 사기 진작 (11. 27./대구)
2025	- 범죄피해자에 대한 직접 지원 강화 · 범죄피해자에 대한 생계비 및 장례비를 인상하였고, 지원기간을 2배로 연장 - 범죄피해자 지원범위 확대 등을 위한 「범죄피해자보호법」 등 개정 · 체류자격이 있는 결혼이민자 및 장해·중상해구조금 신청 후 지급 전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에 대한 구조금 지급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안 국회 통과('24. 9. 공포, '25. 3. 시행) · 구조금 분할지급제도 신설, 구상권 행사의 실질화를 위한 가해자 보유재산 조회 근거규정 도입 - 범죄피해자를 위한 경제적·심리적 지원 강화 · 구조금 지급대상이 아니거나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범죄피해자 및 그 가족에게 생계비, 학자금 등을 지원하는 제20회 범죄피해자지원 스마일공익신탁* 위원회 개최('25. 6.) * 국민 기부 참여를 통해 재원을 마련, 범죄피해자지원센터로부터 대상자를 추천받아 스마일공익신탁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 선정 * 범죄피해자와 그 유가족 등 4명 대상, 2,000만원 지원 실시 -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역량 강화 및 대국민 홍보 전개 · 범죄피해자의 치유와 회복을 함께 응원하는 공익캠페인인 '다링안심캠페인' 개최(6월) ·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유공자 포상 실시를 통한 범죄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촉구, 범죄피해자 지원 업무 관계자 격려 및 사기 진작의 場인 '제17회 범죄피해자인권대회' 개최(11월)
2026	- 범죄피해자를 위한 경제적·심리적 지원 강화 · 5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생계위기 범죄피해자를 신속 지원하기 위해 '긴급생활안정비' 신설* * 도시일용근로자 월 평균임금 상당액인 350만 원을 1회 지급 (2026년 1월 1일 시행) - 스마일센터 평일 야간·주말 운영 확대('365스마일') 및 '살인 피해 유가족 치료 회복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범죄피해로 인한 심리적 충격과 트라우마 치유 - 범죄피해자를 위한 경제적·심리적 지원 강화 · 구조금 지급대상이 아니거나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범죄피해자 및 그 가족에게 생계비, 학자금 등을 지원하는 제22회 범죄피해자지원 스마일공익신탁* 위원회 개최('26. 6.) * 국민 기부 참여를 통해 재원을 마련, 범죄피해자지원센터로부터 대상자를 추천받아 스마일공익신탁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 선정 * 범죄피해자와 그 유가족 등 6명 대상, 3,000만원 지원 실시 -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역량 강화 및 대국민 홍보 전개 · 범죄피해자의 치유와 회복을 함께 응원하는 공익캠페인인 '제13회 다링안심캠페인' 개최(5월)

③ 향후('27년도 이후) 기대효과

○ 범죄피해자지원센터(61개소) 운영지원 등

- 범죄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담, 경제·의료지원, 기타(신변보호, 법정동행과 재판모

니터링) 등을 제공하는 민간 범죄피해자지원단체(전국 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 및 60개 범죄피해자지원센터)로써 범죄피해자를 보호 · 지원하고, 범죄피해자가 범죄피해로부터 신속하게 벗어나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실질적 도움을 제공

○ 스마일센터(16개소) 및 총괄지원단 운영 지원

- 강력범죄 피해자 심리치유 지원 시설인 '스마일센터'를 위탁운영하여 범죄피해자에 대한 심리상담과 심리치유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고 임시거처를 제공함으로써 범죄피해자의 신속한 피해회복과 일상생활로의 복귀를 도움
- 365스마일 정규 운영 스마일센터 외 전국 스마일센터에서 주말·야간상담 운영을 확대하여 범죄피해자 수요 중심 서비스 제공

○ 원스톱 솔루션 센터 설치·운영

- '24년에 원스톱솔루션 센터를 설치·개소하여 피해자가 법률적·경제적·심리적 지원 등 범죄피해자 지원과 그 밖에 필요한 고용·복지 등 지원을 한 공간에서 종합적으로 상담 받을 수 있는 시설을 마련, 피해자 지원 기관간 유기적·체계적 협업·연계 업무로 피해자의 방문 편의성 증진 및 시간·비용 소모 감소

○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치료비, 생계비)

- 범죄피해로 인해 피해자가 지출하는 치료비를 직접 지원함으로써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정신적 상해에 대한 신속·적절한 치료를 돕고, 범죄피해 발생 초기에 응급 구조가 필요한 범죄피해자들에게 생계비를 지원하여 정상적인 생활로의 복귀를 지원

○ 범죄피해자 간병비 등(간병비, 치료 부대비용, 취업지원 등)

- 신체적·정신적 상해에 대하여 직접 지출되는 치료비 이외에 간병비와 치료 부대비용도 함께 지원하여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도모하고, 범죄로 인한 후유증으로 정상적인 직장생활과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들을 위해 직업훈련기관 연계 등 취업활동을 지원하여 범죄피해자의 자립을 도움

○ 강력범죄 피해현장 정리 지원

- 주거지 등에서 살인·강도·방화 등 강력범죄가 발생한 경우, 사건 현장은 피해자와 그 가족이 일상생활의 영위하는 장소인 동시에 범죄로 인한 끔찍한 기억을 반복적으로 떠올리게 하는 장소가 될 수 있으므로, 피해자 등을 대신하여 신속히 범죄흔적을 정리하여 피해자와 가족이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

○ 범죄피해 법률구조

- 범죄피해자와 그 유족이 사법 절차에 따라 범죄로 인한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소송비용 등 법률지원(법률구조 등) 실시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가. 범죄피해자지원법인 운영비 지원

보조금 교부신청	• 별지 양식의 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 교부신청 - 사업계획서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함
⇩	
사업계획 심의·검토	• 중복지원 여부 등 사업검토·심의 • 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 보완 요구 및 반려
⇩	
교부결정 및 통지	• 사업승인, 보조금 결정 및 교부, 통지 • 보조금 집행기준 및 절차 등 안내
⇩	
보조사업 수행	• 법령, 지침, 내부규칙에 따라 보조사업을 수행
⇩	
정산	• 당해 연도 사업실적보고서 및 수지결산서 제출 • 위 서류 및 증빙서류 등 통하여 검토·확인
⇩	
확정 및 결과 통지	• 정산(보조금 금액 확정) 및 결과 통지 •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 차기 사업에 반영
⇩	
반납조치	• 정산잔액, 교부잔액, 이자 부분 반납 조치

나. 스마일센터 운영비 지원

다음연도 인건비 소요 제출(12.1.)	⇨ 다음연도 사업계획서 제출(12.10.)	⇨ 사업계획서 검토(예산조정) (12월 하순)	⇨ 연간 예산 배정계획 수립 (12월~1월초)	⇨
센터별 확정예산 통보 (1월초)	⇨ 예산집행계획 보완 제출	⇨ 분기별 보조금 배정 및 정산보고	⇨ 연간 보조사업 집행결과 보고	

다. 범죄피해자 치료비, 심리치료비, 긴급생계비 지원(검찰청)

범죄피해자의 치료비 신청, 혹은 범죄피해자지원 연합회의 추천서 접수

⇩

피해자지원 담당자의 자료 확인·보완 / 심의위원회 개최(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

피해자지원 담당자가 피해자에 결과 통보 /
치료비 지급 결정 시 재무계 담당자에게 관련 서류 인계(인용 시)

⇩

치료비 지급(서류 인계일로부터 7일 이내) /
피해자지원 담당자에게 지급 사실 통보

⇩

피해자지원 담당자는 범죄피해자지원 센터 및
범죄피해자 주소지의 지방자치단체에 지원 사실 통보

라.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등 서비스 지원(성평등가족부)

부처		피출연·피보조 기관		간접보조사업자·사업수행자
성평등가족부	=> (3,540백만원)	17개 시도	=> (3,540백만원)	성폭력피해자 전담의료기관 등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경비의 보조), 제28조(의료비 지원)

마. 범죄피해자 간병비 및 치료부대비용 지원

보조금 교부(법무부 →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

⇩

지원 대상 추천(전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 연합회)

⇩

간병비 및 부대비용 지원 심의 및 결정 절차

▣ 피해자 본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간병비 300만원 미만 신청시>

▶ 각 센터 자체심의 ⇨ 연합회 사무처 검토·지급 ⇨ 심의회 사후심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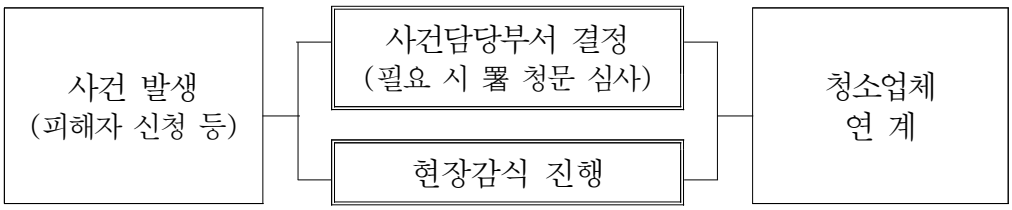
<간병비 지원 누계 300만원, 1,500만원, 3,000만원 초과 신청시>

▶ 각 센터 자체심의 ⇨ 연합회 심의회 특별결의 ⇨ 연합회 지급

간병비 및 치료부대비용 지원

보조금 집행결과 보고(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 → 법무부)

바. 강력범죄 피해현장 정리 지원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5	'26	'27	'28	'29	'30
'25~'29	21,442	24,633	24,620	24,383	24,013	
'26~'30		24,633	26,907	28,065	29,718	31,008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원스톱 솔루션 센터 추가 개소 예산 미반영으로 인한 사업 차질 우려 해소 필요(법사위, '26예산)
- 원스톱 솔루션 센터 설치·운영의 성과관리 시스템 마련 필요(법사위, '26예산)
-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실적 관리 강화 및 청별 관리기준의 통일 등 개선방안 마련 필요(예정처, '26예산)
- 직접지원 및 경제적 지원 사업 규모·비중 확대 노력 필요(법사위, '23결산)
-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검찰청사 무상사용 법적근거 조속히 마련 필요(법사위, '23결산)

2) 감사원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 해당 없음

3) 자체평가

	평가 정책	결 과
2022년 법무부 자체평가	범죄피해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 강화	2등급(우수)
2023년 법무부 자체평가	범죄피해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 강화	1등급(매우 우수)
2024년 법무부 자체평가	범죄피해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 강화	2등급(우수)

4)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연 번	일 자	매 체	내 용
1	‘23. 3. 27.	한겨레	범죄피해자 돕는 기금 1133억, 직접 지원된 건 고작 283억
2	’23. 8. 11.	조선일보	뇌사 상태 빠진 최원종의 20살 피해자... “6일 입원비만 1300만원”
3	‘23. 9. 15.	KBS	병원비만 2천만원인데... 범죄피해자 지원은 한계
4	‘24. 2. 9.	한국일보	범죄피해자 돕기는 ‘손해배상’ 아닌 ‘사회보장’ 개념에서 접근해야

5)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지적사항	후속 조치사항
▪ 현재 검찰청 청사 내에 소재한 55개 범죄피해자 지원센터는 「국유재산법」 및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 따른 무상사용 허용 대상이 아님에도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음	▪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른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을 국유재산특례 대상으로 추가하기 위해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안 입법추진 검토 중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범죄피해자의 완전한 피해회복을 위한 지원 내실화 및 대상 확대
- 범죄피해자 지원의 협력적 정책추진체계 구축 및 정책기반 강화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구 분	평가 정책	결 과
2022년 법무부 자체평가	범죄피해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 강화	2등급(우수)
2023년 법무부 자체평가	범죄피해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 강화	1등급(매우 우수)
2024년 법무부 자체평가	범죄피해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 강화	2등급(우수)

12) 동 사업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

회계연도	등급 (재정사업자율평가)	자체평가 주요내용	조치결과
2023	보통	-	-
2024	보통	-	-
2025	보통	-	-
2026	-	-	-

13) 2026년도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 결과 및 후속 조치 현황

평가결과	성과평가 주요내용	조치결과
사업개선	· 스마일센터 종사자 처우 개선을 통한 인력 수급 안정화 필요 · 인건비 불용의 근본 원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종사자 처우 개선 추진이 필요	· 스마일센터 종사자의 안정적인 인력 수급을 위해 종사자 인건비 인상 등 처우개선을 지속 추진 중

14) 부처 건의사항 : 해당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증감액	수정(A)							
2023	17,270	11	17,281	-	17,281	17,115	99.0	99.0	-	166
2024	21,099	△140	20,959	-	20,959	20,518	97.9	97.9	-	441
2025	21,442	-	21,442	-	21,442	20,276	94.6	94.6	-	1,166
'26. 7.	24,633		24,633		24,633	17,459	70.9	70.9	-	-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계획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당초	수정(A)								
2023	13,038	13,038	12,924	12,924	-	12,924	12,597	-	-	96.6
2024	13,820	13,820	13,819	13,819	-	13,819	13,215	-	604	95.6
2025	14,807	14,807	14,807	14,807	-	14,807	14,807	-	-	100.0
'26. 7.	17,868	17,868	11,266	13,524	-	13,524	9,412	-	-	52.7

2) 주요 결산사항

□ 2023년~2026년 결산사항

2023	- 집행부진사유 : 해당 사항 없음
2024	- 집행부진사유 : 해당 사항 없음
2025	- 집행부진사유 : 해당 사항 없음
2026	- 집행부진사유 : 해당 사항 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 해당없음

사 업 명
형사조정을 통한 피해회복 지원 (1135-3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범죄피해자 보호기금	법무부	인권국		020	022
명칭					분야명	법무및검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35	301
명칭	인권활동	강력범죄 등 피해자 보호·지원	형사조정을 통한 피해회복 지원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6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형사조정을 통한 피해회복 지원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대검찰청	남수연	임종훈	김은아
		인권기획담당관실	02-3480-2329	02-3480-2966	02-3480-2958

가. 지출계획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25년 결산	2026년 계획		2027년		증감	
		당초(A)	수정	요구안	조정안(B)	(B-A)	(B-A)/A
형사조정을 통한 피해회복지원	3,357	3,277	3,277	3,277	3,277	-	전년동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계획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25					2026('25.7월말)								2027 계획안
	계획액 (수정)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당초	수정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3,450	3,450	3,357	-	93	3,277	3,277	3,277	2,066	3,277	2,066	-	-	3,277
· 형사조정위원 수당	3,363	3,363	3,280	-	83	3,200	3,200	3,200	2,057	3,200	2,057	-	-	3,200
· 형사조정위원 교육	24	24	24	-	-	24	24	24	-	24	-	-	-	24
· 공증수수료	21	21	11	-	10	11	11	11	5	11	5	-	-	11
· 형사조정 지도감독	42	42	42	-	-	42	42	42	4	42	4	-	-	42
○ 비목별 분류(합계)	3,450	3,450	3,357	-	95	3,277	3,277	3,277	2,066	3,277	2,066	-	-	3,277
· 일반수용비(210-01)	3,480	3,480	3,315	-	95	3,235	3,235	3,235	2,062	3,235	2,062	-	-	3,235
· 사업추진비(240-01)	42	42	42	-	-	42	42	42	4	42	4	-	-	42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3,450	3,450	3,357	-	93	3,277	3,277	3,277	2,066	3,277	2,066	-	-	3,277
· 형사조정위원 수당	3,363	3,363	3,280	-	83	3,200	3,200	3,200	2,057	3,200	2,057	-	-	3,200
-일반수용비(210-01)	3,363	3,363	3,280	-	83	3,200	3,200	3,200	2,057	3,200	2,057	-	-	3,200
· 형사조정위원 교육	24	24	24	-	-	24	24	24	-	24	-	-	-	24
-일반수용비(210-01)	24	24	24	-	-	24	24	24	-	24	-	-	-	24
· 공증수수료	21	21	11	-	10	11	11	11	5	11	5	-	-	11
-일반수용비(210-01)	21	21	11	-	10	11	11	11	5	11	5	-	-	11
· 형사조정 지도감독	42	42	42	-	-	42	42	42	4	42	4	-	-	42
-사업추진비(240-01)	42	42	42	-	-	42	42	42	4	42	4	-	-	42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ㅇ 동 사업 내역은 당사자 신청 또는 검사 직권에 의해 수사중인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고, 피해자의 손실을 조기에 복구함으로써 실질적 피해회복 도모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범죄피해자보호법」 제6장 형사조정 제41조~제46조

제41조(형사조정 회부) ① 검사는 피의자와 범죄피해자(이하 “당사자”라 한다) 사이에 형사분쟁을 공정하고 원만하게 해결하여 범죄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수사 중인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다.

②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는 형사사건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사조정에 회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의자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
2. 공소시효의 완성이 임박한 경우
3. 불기소처분의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한 경우(다만, 기소유예처분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42조(형사조정위원회) ① 제41조에 따른 형사조정을 담당하기 위하여 각급 지방검찰청 및 지청에 형사조정위원회를 둔다.

② 형사조정위원회는 2명 이상의 형사조정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형사조정위원은 형사조정에 필요한 법적 지식 등 전문성과 덕망을 갖춘 사람 중에서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이 미리 위촉한다.

④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사조정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

⑤ 형사조정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⑥ 형사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이 형사조정위원 중에서 위촉한다.

⑦ 형사조정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여비, 일당 및 숙박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형사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및 형사

조정위원의 임면(任免)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형사조정의 절차) ① 형사조정위원회는 당사자 사이의 공정하고 원만한 화해와 범죄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실질적인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형사조정위원회는 형사조정이 회부되면 지체 없이 형사조정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③ 형사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형사조정의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이해관계인을 형사조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형사조정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관련 자료의 송부 등) ① 형사조정위원회는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한 검사에게 해당 형사사건에 관하여 당사자가 제출한 서류, 수사서류 및 증거물 등 관련 자료의 사본을 보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검사는 그 관련 자료가 형사조정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형사조정위원회에 보낼 수 있다. 다만, 당사자 또는 제3자의 사생활의 비밀이나 명예를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수사상 비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부분은 제외할 수 있다.

③ 당사자는 해당 형사사건에 관한 사실의 주장과 관련된 자료를 형사조정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④ 형사조정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료의 제출자 또는 진술자의 동의를 받아 그 자료를 상대방 당사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을 교부 또는 송부할 수 있다.

⑤ 관련 자료의 송부나 제출 절차 및 열람 등에 대한 동의의 확인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형사조정절차의 종료) ① 형사조정위원회는 조정기일마다 형사조정의 과정을 서면으로 작성하고, 형사조정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형사조정위원회는 조정 과정에서 증거위조나 거짓 진술 등의 사유로 명백히 혐의가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을 중단하고 담당 검사에게 회송하여야 한다.

③ 형사조정위원회는 형사조정 절차가 끝나면 제1항의 서면을 붙여 해당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한 검사에게 보내야 한다.

④ 검사는 형사사건을 수사하고 처리할 때 형사조정 결과를 고려할 수 있다. 다만, 형사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을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고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형사조정의 과정 및 그 결과를 적은 서면의 서식 등에 관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46조(준용규정) 형사조정위원이나 형사조정위원이었던 사람에 관하여는 제38조부터 제4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2004. 8. 26. 법무부 정책위원회의 '범죄피해자 보호 종합대책안' 의결
  ※ 종합대책안은 공익 민간법인 '피해자지원센터' 설립을 적극 지원하여 피해자에 대한 상담 및 지원, 형사 화해·중재, 경제적 지원 등의 기능을 수행토록 방안 추진
- 2006. 4. 20. 대검찰청 '고소사건 형사조정 실무운용 지침'을 마련하여 서울남부, 대전지검, 부천지청에서 형사조정제도 시범실시
- 2007. 1. 1. 형사조정제도 전국청 자율적 확대 지시, 같은 해 8. 전국청 시행
- 2008. 9 ~ 10. 고려대학교 한국사회연구소와 공동으로 형사조정위원 450명 교육
- 2008. 11. 형사조정제도를 명문화한 『범죄피해자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국회 제출
- 2009. 4. 및 11. 이화여대 등 대학과 연계하여 형사조정위원 553명 교육
- 2009. 11. 10.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검찰 형사조정위원회로 조정 주체 이관
- 2010. 4. 21. 범죄피해자보호법에 형사조정 근거규정 신설
- 2010. 4. 28 ~ 29. 형사조정위원에 대한 기본 소양교육 실시
- 2010. 8. 15. 『형사조정 실무운용 지침』개정 : 형사조정위원 제척·기피·회피제도 및 이의제도 신설 등
- 2011. 2. 18. 형사조정위원 교육 교재 및 우수사례집 발간 배포
- 2011. 6. ~ 2013. 6. 형사조정위원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집합교육 실시(6회, 515명)
- 2014. 1. 형사조정 활성화 종합대책 전국적 시행
- 2014. 1. 형사조정 매뉴얼 제작, 배포
- 2014. 6. '형사조정의 이론과 실무' 책자 발간
- 2014. 6. 형사조정위원 집합교육 및 세미나 실시
- 2014. 10. 형사조정 조서 및 결정문 표준화 서식 마련(전국 청 시행)
- 2014. 12. 조정위원회 운영 효율화를 위한 상임조정위원 제도 도입
- 2015. 1. 민·형사의 통합적 해결 도모를 위한 공증제도 연계
- 2015. 10. ~ 11. 형사조정위원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집합교육 실시(5회, 492명)
- 2016. 6. ~ 7. 고검 권역별 형사조정위원 집합교육 실시(465명)
- 2016. 9. 26. 대검찰청·형사정책연구원 공동으로'형사조정제도의 법제정비와 발전방안' 공동학술심포지엄 개최
- 2016. 12. 12. ~ 13. 형사조정기법 중심의 심화교육 실시(36명)
- 2016. 12. ~ 2017. 4. 형사조정 우수사례집 발간 및 배포
- 2017. 4. '형사조정 조기 활용 확대 방안'시행 : 검찰 직수 고소사건 및 경찰 접수 고소사건, 노동청 접수 임금체불사건에 대한 신속한 형사조정 활용 등
- 2017. 4. '제10회 IAP 아시아·태평양 지역회의'에서 대한민국의 형사조정 제도 소개하며 롤모델로 전파

- 2017. 6. 1. 형사조정제도의 활성화·전문화를 위한 「형사조정 실무운용 지침」개정, 유럽범죄피해자지원협회(VSE) 연례회의('17. 5.) 등에서 대한민국의 형사조정 제도 소개하며 국제적 롤모델로 전파
- 2017. 11. 고검 권역별로 기초 교육 실시, 2개 지검(서울중앙, 부산)에서 폭력 등 5개 전문분야 교육 실시(528명)
- 2017. 12. 관련 법률·지침 개정사항 반영 및 조정위원 전문화 교육을 위한 실무 사례 등을 추가한「형사조정의 이론과 실무」개정판 발간 및 2018. 11. 증보판 발간
- 2018. 11. 고검 권역별로 형사조정제도 전반에 관한 이론과 실무 및 전문분야 교육 실시 (543명)
- 2019. 02. '한국 형사조정 표준안' 검찰협력기구인 '국제검사협회(IAP)'의 표준모델로 채택
- 2019. 10. ~ 12. 고검 권역별로 찾아가는 전문화 교육 실시
- 2020. 03. KICS 피해자지원시스템 상 형사조정 관련 정보의 전산화(형사조정위원, 조정 횟수 등 관련 자료 입력, 수당 자동 계산 등 기능 개선)
- 2020. 8. ~ 12. 형사조정위원 대상 양성평등 온라인 교육 및 기초 교육 실시(805명)
- 2021. 11. ~ 12. 형사조정위원 대상 형사조정 온라인 심화 교육 실시(660명)
- 2022. 5. 형사조정 가이드북 책자 발간 및 배포, 형사조정 활성화 지시
- 2022. 11. 형사조정위원 대상 형사조정 온라인 기초 교육 실시(549명)
- 2023. 10. ~ 11. 고검 권역별로 찾아가는 형사조정위원 전문화 집합 교육 실시(548명)
- 2023. 12. 형사조정위원 전문화 교육 개발 교재(형사조정을 위한 핸드북) 발간 및 배포
- 2024. 4. 춘계공동학술대회 개최
- 2024. 11. ~ 12. 고검 권역별로 찾아가는 형사조정위원 전문화 집합 교육 실시(611명)
- 2025. 4. 형사조정을 위한 핸드북 배포
- 2025. 11. ~ 12. 고검 권역별로 찾아가는 형사조정위원 전문화 집합 교육 실시(572명)
- 2025. 12. 형사조정의뢰기간 완화하는 내용으로 형사조정지침 개정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사업기간 : 2007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3	2024	2025	2026	2027(안)
사업비	3,540	2,500	3,450	3,277	3,277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검찰청(형사조정위원회)
- 사업 수혜자 : 고소사건 분쟁당사자, 범죄피해를 입은 사회적 약자

3) ’27년도 계획안 산출 근거

① 형사조정위원 수당 : (’26) 3,200백만원, → (’27) 3,200백만원, 전년동
- (산출) 형사조정 위원수당 3,200백만원

ㅇ 2026년도 및 2027년도 예산안 산출 세부내역 비교

’26년 예산		’27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3,200	○일반수용비 (210-01) : 3,200,000천원 가. 형사조정위원수당 64,000건 × 50,000원 = 3,200,000천원	3,200	○일반수용비 (210-01) : 3,200,000천원 가. 형사조정위원수당 64,000건 × 50,000원 = 3,200,000천원

② 형사조정위원 교육 : (’26) 24백만원 → (’27) 24백만원, 전년동
- (산출) 형사조정위원 교육 24백만원

ㅇ 2026년도 및 2027년도 예산안 산출 세부내역 비교

’26년 예산		’27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24	○ 일반수용비(210-01) : 24,000천원 가. 형사조정위원 교육 480명 × 50천원 = 24,000천원	24	○일반수용비 (210-01) : 24,000천원 가. 형사조정위원 교육 480명 × 50천원 = 24,000천원

③ 공증 수수료 : (’26) 11백만원 → (’27) 11백만원, 전년동
- (산출) 공증 수수료 11백만원

ㅇ 2026년도 및 2027년도 예산안 산출 세부내역 비교

’26년 예산		’27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1	○ 일반수용비 (210-01) : 10,989원 가. 공증수수료 333건 × 33,000원 = 11백만원	11	○ 일반수용비 (210-01) : 10,989원 가. 공증수수료 333건 × 33,000원 = 11백만원

④ 형사조정 지도감독 : (’26) 42백만원 → (’27) 42백만원, 전년동
- (산출) 형사조정 지도감독 42백만원

ㅇ 2026년도 및 2027년도 예산안 산출 세부내역 비교

’26년 예산		’27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42	○사업추진비 (240-01) : 42,000천원 가. 간담회 4회 × 650천원 = 2,600천원 나. 대검찰청 2개기관 × 1회 × 950천원 = 1,900천원 다. 지검 및 차치지청 26개기관 × 1회 × 950천원 = 24,700천원 라. 지청 32개기관 × 1회 × 400천원 = 12,800천원	42	○사업추진비 (240-01) : 42,000천원 가. 간담회 4회 × 650천원 = 2,600천원 나. 대검찰청 2개기관 × 1회 × 950천원 = 1,900천원 다. 지검 및 차치지청 26개기관 × 1회 × 950천원 = 24,700천원 라. 지청 32개기관 × 1회 × 400천원 = 12,800천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3~'27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3	'24	'25	'26	'27	'26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사회적 취약계층 법률지원 실적(건)	목표	신규	16,195	17,550	18,076	19,890	'25년 목표치 대비 3% 상향	주요 사회적 취약계층 (장애인, 한부모가족, 범죄피해자, 소액임차인, 북한이탈주민 등) 법률구조 건수	대한법률구조공단 전산통계 프로그램
	실적	17,239	신규	20,066	-	-			
	달성도	신규	신규	114.3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3	의뢰건수 : 69,528건 / 성립건수 : 36,935건 / 불성립건수 : 21,078건
2024.	의뢰건수 : 68,220건 / 성립건수 : 36,860건 / 불성립건수 : 20,278건
2025.	의뢰건수 : 62,500건 / 성립건수 : 34,626건 / 불성립건수 : 19,256건
2026. 7.	의뢰건수 : 41,672건 / 성립건수 : 19,807건 / 불성립건수 : 11,277건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양성평등 관련 온라인 교육 수강 의무화 실시('20. 8.)
- 형사조정위원 전문화 교육 과정에 양성평등 강좌 추가(' 25. 12.)

○ 형사조정위원 대상으로 교육프로그램 신설
- 2020. 형사조정위원 대상 형사조정 온라인 기초 교육 실시(805명)
- 2021. 형사조정위원 대상 형사조정 온라인 심화 교육 실시(660명)
- 2022. 형사조정위원 대상 형사조정 온라인 기초 교육 실시(549명)
- 2023. 형사조정위원 대상 형사조정 집합 심화 교육 실시(548명)
- 2024. 형사조정위원 대상 형사조정 집합 기초 교육 실시(611명)
- 2025. 형사조정위원 대상 형사조정 집합 교육 실시(572명)

○ 형사조정의 질적 성장 유도
- 우수청 선정 시 교육 이수율, 우수사례, 등 정성평가 요소 반영

- 체계적·효율적 관리 위해 형사조정 관련 정보 전산화 구축
- 실질적 피해회복을 위한 형사조정 개선 방안 일선 청 담당자 송부
- 형사조정 가이드북 책자 발간 및 일선 청 배포 및 형사조정 활성화 지시

③ 향후('26년도 이후) 기대효과

ㅇ 국민 편의 및 만족을 고려한 다양한 형사조정제도 지속 추진
- 야간·즉일·찾아가는 조정 및 형사조정 기간 완화, 조기 활용 등 제도 개선으로 형사조정 의뢰건수 증가
- 의료, 노동, 건축, 여성 등 전문분야별 형사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ㅇ 형사조정위원 전문화 교육 강화
- 형사조정위원의 자격·경력, 조정능력·실적 등을 고려하여 고검 권역별 기본·심화교육 분리진행
- 형사조정위원 전문화 교육 과정을 개편하여 교육 프로그램 다양화 추진

ㅇ 형사조정의 질적 성장 지속 유도
- 우수청 선정 시 교육 이수율, 우수사례 등 정성평가 요소 반영
- 분기별 형사조정 우수사례 선정·격려 계속

ㅇ 형사조정 성립률 제고
- 합의 사항 이행, 집행력 확보를 위하여 형사조정과 공증을 연계
- 지속적인 일선 청 실적 모니터링을 통한 관리 시행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검찰청 형사조정위원회
- 범죄피해자보호법 제6장 형사조정 제41조 ~ 46조

※ 형사조정실무운용지침(대검예규 제493호, 2009. 10. 29.) 제정하여, 그동안 전국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시행해 온 형사조정위원회의 조정업무를 2009. 11. 10.부터 검찰청으로 이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지청장)이 위원장 및 위원 등 위촉

○ 집행절차

① 사건 회부	→	② 조정	→	③ 결정문 등 자료 송부	→	④ 처분
검사는 신청 또는 직권으로 당사자 동의를 얻어 형사조정위원회에 사건 회부		형사조정위원회에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참여하에 조정 진행		조정이 종료되면 검사에게 형사조정결정문 등 자료 일체 송부		검사는 조정결과를 고려하여 처분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5	'26	'27	'28	'29	'30
'25~'29	3,450	3,277	3,113	3,048	2,949	
'26~'30		3,277	3,277	3,277	3,277	3,277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① 형사조정 성립률 제고를 위한 관련 예산 검토 필요 / ②형사조정 공증수수료 예산 증액 검토 및 집행률 개선방안 마련 필요(법사위, '26예산)
- 형사조정위원의 자격요건 규정 개선 필요(예결위, '24결산)

2) 감사원 감사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 해당사항 없음

3) 자체평가·감사 : 해당사항 없음

4)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 해당사항 없음

5)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지적사항	후속 조치사항
▪ **형사조정위원의 자격요건 규정 개선 필요** 범죄피해사건의 조정이라는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형사조정위원의 법률적 전문성 제고 등을 위한 자격요건 규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전국 각 검찰청에서는 조정위원 신규 위촉 시, 홈페이지 공고 또는 지역 법조계, 교육계 등의 추천을 받는 등 조정위원 선발의 객관성, 공정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향후, 조정위원의 구체적 위촉기준 및 절차를 검토하고, 조정위원 대상 교육을 강화하는 등 조정위원 위촉의 공정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관련 규정을 개선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형사조정 의뢰건수, 성립건수 향상을 도모하고, 야간·즉일·찾아가는 조정 등 형사조정 활성화 방안 지속 추진

○ 형사조정제도를 통한 종국적이고 신속한 분쟁해결로 범죄피해자의 실질적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

○ 형사사법절차에서 소외되어 온 피해자의 형사절차 참여권 보장과 이를 통한 회복적 사법 이념 실현

○ 형사조정위원의 전문성 함양 및 조정 노하우 공유를 위하여 전문교육 내실화 추진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 없음

12) 동 사업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

회계연도	등급 (재정사업자율평가)	자체평가 주요내용	조치결과
2023	미흡	- 형사조정성립건수 달성률 저조(62.8%)	- '26년 예산 10% 감축 편성
2024	보통	-	-
2025	보통	-	-
2026	-	-	-

13) 2026년도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 결과 및 후속 조치 현황

평가결과	성과평가 주요내용	조치결과
사업개선	- 형사조정 성립률의 향상에 비례하는 예산 운용 체계의 고도화 필요.	- 형사조정 성과 및 최근 집행 실적을 고려하여 전년 수준으로 예산 편성

14) 부처 건의사항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증감액	수정(A)							
2023	3,220	320	3,540	-	3,540	3,511	99.2	99.2	-	29
2024	2,500	940	3,440	-	3,440	3,424	99.5	99.5	-	16
2025	3,450	-	3,450	-	3,440	3,357	97.3	97.3	-	93
'26. 7.	3,277	-	3,277		3,277	2,066	63.0	63.0	-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 해당없음

2) 주요 결산사항

□ 2023년~2026년 결산사항

2023	- 형사조정위원 수당 부족으로 320백만원 계획변경 * 코로나19 상황 중 대면조정 대폭 감소로 인한 실적 부진으로 '23년 예산이 감액되어 수당 부족 상황 발생
2024	- 형사조정위원 수당 부족으로 940백만원 계획변경 * 코로나19 상황 중 대면조정 대폭 감소로 인한 실적 부진으로 '24년 예산이 감액되어 수당 부족 상황 발생
2025	- 집행부진사유 : 해당 사항 없음
2026	- 집행부진사유 : 해당 사항 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 해당없음

사 업 명
범죄피해구조금 (1135-30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범죄피해자 보호기금	법무부	인권국	기금	020	022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35	302
명칭	인권활동	강력범죄 등 피해자 보호·지원	범죄피해구조금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6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범죄피해 구조금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인권국	반 지	이진선 서기관	정수현
		인권구조과	02-2110-3641	02-2110-3743	02-2110-3645

가. 지출계획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년 결산	2026년 계획		2027년		증감	
		당초(A)	수정	요구안	조정안(B)	(B-A)	(B-A)/A
범죄피해구조금	7,683	11,781	11,781	14,191	14,191	2,410	20.5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계획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25					2026('26.7월말)								2027 계획안
	계획액 (수정)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당초	수정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9,573**	**9,573**	**7,683**	**-**	**1,890**	**11,781**	**11,781**	**11,781**	**7,754**	**11,781**	**7,754**		**-**	**14,191**
・범죄피해구조금	9,428	9,428	7,552	-	1,876	11,636	11,636	11,636	7,737	11,636	7,737		-	14,046
・홍보비	129	129	120	-	9	129	129	129	7	129	7		-	129
・지도점검비	16	16	12	-	4	16	16	16	10	16	10		-	16
○ 비목별 분류(합계)	**9,573**	**9,573**	**7,683**	**-**	**1,890**	**11,781**	**11,781**	**11,781**	**7,754**	**11,781**	**7,754**		**-**	**14,191**
・일반수용비(210-01)	129	129	120	-	9	129	129	129	7	129	7		-	129
・국내여비(220-01)	8	8	5	-	3	8	8	8	5	8	5		-	8
・사업추진비(240-01)	8	8	8	-	0	8	8	8	5	8	5		-	8
・기타보전금(310-04)	9,428	9,428	7,552	-	1,876	11,636	11,636	11,636	7,737	11,636	7,737		-	14,046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9,573**	**9,573**	**7,683**	**-**	**1,890**	**11,781**	**11,781**	**11,781**	**7,754**	**11,781**	**7,754**		**-**	**14,191**
・범죄피해구조금	**9,428**	**9,428**	**7,552**	**-**	**1,876**	**11,636**	**11,636**	**11,636**	**7,737**	**11,636**	**7,737**		**-**	**14,046**
-기타보전금(310-04)	9,428	9,428	7,552	-	1,876	11,636	11,636	11,636	7,737	11,636	7,737		-	14,046
・홍보비	**129**	**129**	**120**	**-**	**9**	**129**	**129**	**129**	**7**	**129**	**7**		**-**	**129**
-일반수용비(210-01)	129	129	120	-	9	129	129	129	7	129	7		-	129
・지도점검비	**16**	**16**	**12**	**-**	**4**	**16**	**16**	**16**	**10**	**16**	**10**		**-**	**16**
-국내여비(220-01)	8	8	5	-	3	8	8	8	5	8	5		-	8
-사업추진비(240-01)	8	8	8	-	0	8	8	8	5	8	5		-	8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범죄로 인해 사망하거나 장해·중상해를 입고도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받지 못한 범죄피해자나 그 유족에게 국가가 구조금을 지급하여 피해 회복 및 생활안정을 도모

※ 범죄피해구조금은 헌법 제30조의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에 근거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헌법」 제30조 '범죄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구조의무'

-「범죄피해자보호법」 제3조, 제7조, 제16조 ~제32조

-「동법 시행령」 제2조, 제3조, 제16조~제40조

② 추진경위

-「범죄피해자구조법」 제정으로 구조금 지급 개시('87.)

-「범죄피해자구조법」 개정('05. 12. 29.)

· 구조요건 완화→범죄피해자의 「생계유지곤란사유」 삭제

-「범죄피해자구조법」·「범죄피해자보호법」 통합 법률안 국회제출('08. 11. 28.)

· 국민들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제도에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양 법률을 「범죄피해자보호법」 하나의 법률로 통합

- 범죄피해자구조금 업무 검찰국 → 인권국 이관('09. 1.)

-「범죄피해자구조법 시행령」 개정('09. 4. 20.)

· 유족구조금 : 1,000만원 ⇒ 최대 3,000만원 상향

· 장해구조금 : 300~600만원 ⇒ 600~3,000만원 상향

· 장해구조대상 확대 1~3급 ⇒ 1~6급

-「범죄피해자보호법」 전부 개정('10. 5. 14.)

· 유족구조금 : 최대 3,000만원 ⇒ 5,400만원

· 장해구조금 : 최대 3,000만원 ⇒ 4,500만원

· 장해구조 대상 확대 1~6급 ⇒ 1~10급

· 가해자불명, 무자력 요건 삭제, 중상해구조금 신설, 신청기간 연장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개정('12. 6. 29.)

· 범죄피해로 인해 사망한 자의 유족 중 피해자와 그 배우자의 수입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지 않던 사람의 경우 일률적으로 배수 1/6을 곱하여 구조금 산정
⇒ 위 사람들 중 피해자의 보모, 자녀의 경우에는 3/6으로 배수 상향조정

- 「범죄피해자보호법」 일부 개정('14. 10. 15.)
  · 친족간 범죄에도 구조금 '전부' 지급 가능
- 「범죄피해자보호법」 일부 개정('14. 12. 15.)
  · 구조금 지급액 상향 조정(평균노임 36개월 ⇒ 48개월, 33% 증가)
- 범죄피해자 권리 의무고지제도 시행('15. 4. 14.)
-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 시행('17. 12. 19.)
  · 장해등급을 '1~10급 → 1~14급'으로 확대
  · 중상해 구조금 중 중증의 정신질환의 기준을 '일주일 이상 입원치료
  → 3일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치료 필요기간 2개월 이상 요건)로 변경
- 「범죄피해자 보호법」·「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 시행('25. 3. 21.)
  · 구조금 지급 시 외국인의 경우 상호보증 요건 외에 결혼이민자※의 경우도 구조금을 지급
  ※ 단, 국민의 배우자 또는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장기체류자격이 있는 경우
  · 구조금 산정시 곱하는 개월수 및 상한을 일괄적으로 상향하여 구조금 지급액 20% 상향
  · 연령, 장애, 질병 등 사유로 관리능력이 부족한 경우 구조금 분할 지급 가능
-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 시행('26. 3. 10.)
  · 유족 유형·인원에 따라 유족구조금을 감액하는 규정 삭제
  ⇒ 유족구조금 지급 하한을 약 1,600만 원 → 약 8,200만 원(월 평균임금 344만 원의 24개월분('26. 上 기준)으로 상향
  · 생계의존 유족의 순위 결정시 연령기준을 삭제하여 생계의존 유족을 연령과 무관하게 선순위로 보호
  · 범죄피해자 구조금이 가산되는 연령기준을 기존 18세 → 24세로 확대
  · 공제 → 감액 → 상한 순서에 따라 구조금액 산정이 이루어지도록 기준 명문화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87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3	2024	2025	2026	2027(안)
사업비	10,015	10,015	9,573	11,781	14,191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법무부 → 지방검찰청
- 사업 수혜자 : 범죄피해자 및 그 유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3) '27년도 계획안 산출 근거

① 범죄피해구조금

: ('26) 11,636백만원 → ('27) 14,046백만원, 2,410백만원 증액

- (산출) 구조금 14,046백만원

ㅇ 2026년도 및 2027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6년 예산		'27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1,636	○ 기타보전금(310-04) : 11,636,000천원 가. 범죄피해구조금 : 11,636백만원	14,046	○ 기타보전금(310-04) : 14,046,000천원 가. 범죄피해구조금 : 14,046백만원

② 홍보 및 구상권 행사비

: ('26) 129백만원 → ('27) 129백만원, 전년동

- (산출) 홍보비 115백만원, 구상권 행사비 14백만원

ㅇ 2026년도 및 2027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6년 예산		'27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29	○ 일반수용비(210-01) : 128,821천원 가. 홍보 115,000천원 ・ 제작 1회*25,000,000=25,000천원 ・ 송출 3회*25,000,000=75,000천원 ・ 인쇄 3회* 5,000,000=15,000천원 나. 구상권 행사 ・ 271건*51,000원=13,821천원	129	○ 일반수용비(210-01) : 128,821천원 가. 홍보 115,000천원 ・ 제작 1회*25,000,000=25,000천원 ・ 송출 3회*25,000,000=75,000천원 ・ 인쇄 3회* 5,000,000=15,000천원 나. 구상권 행사 ・ 271건*51,000원=13,821천원

③ 지도점검 및 간담회

: ('26) 16백만원 → ('27) 16백만원, 전년동

- (산출) 지도점검 8백만원, 간담회 8백만원

ㅇ 2026년도 및 2027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6년 예산		'27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6	○ 국내여비(220-01) : 7,800천원 가. 지도점검 ・ 26개청*2명*150,000원=7,800천원 ○ 사업추진비(240-01) : 8,379천원 가. 간담회 ・ 18개 지검*465,500원=8,379천원	16	○ 국내여비(220-01) : 7,800천원 가. 지도점검 ・ 26개청*2명*150,000원=7,800천원 ○ 사업추진비(240-01) : 8,379천원 가. 간담회 ・ 18개 지검*465,500원=8,379천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3~'27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3	'24	'25	'26	'27	'26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사회적 취약계층 법률지원 실적(건)	목표	신규	16,195	17,550	18,076	19,890	'25년 목표치 대비 3% 상향	주요 사회적 취약계층 (장애인, 한부모가족, 범죄피해자, 소액임차인, 북한이탈주민 등) 법률구조 건수	대한법률구조공단 전산통계 프로그램
	실적	17,239	신규	20,066	-	-			
	달성도	신규	신규	114.3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연도	지급액	구조금 종류별 지급 내역
2023	8,990	유족구조금 111건 지급, 장해구조금 14건 지급, 중상해구조금 24건 지급
2024	7,910	유족구조금 113건 지급, 장해구조금 16건 지급, 중상해구조금 26건 지급
2025	7,552	유족구조금 91건 지급, 장해구조금 17건 지급, 중상해구조금 35건 지급
'26. 7.	7,737	유족구조금 59건 지급, 장해구조금 14건 지급, 중상해구조금 13건 지급

③ 향후('27년도 이후) 기대효과

ㅇ 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24. 8. 28. 국회 본회의 의결, '25. 3. 시행 예정)으로 체류자격이 있는 결혼이민자 등 구조금 지급대상 확대, 구조금 분할지급 제도 신설, 구조금 지급 후 구상권 행사 시 가해자 재산조회 근거 규정 마련

ㅇ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개정('25. 3. 21. 시행)으로 구조금 산정시 기준금액(월급액 등)에 곱하는 개월수 및 그 상한을 일괄적으로 상향하여 피해자에게 제공되는 구조금 지급액 약 20% 증액

ㅇ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개정('26. 3. 10. 시행)으로 감액 배수 삭제, 기준 개월 수 조정, (손)자녀 연령 기준 확대, 유족 순위 개선, 구조금 제한 적용 순서 정비 근거 규정 마련하여 범죄피해구조금 액수 실질화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범죄피해자 또는 그 유족, 지방검찰청 범죄피해구조심의회에 구조금 신청→ → 심의회 심의 → 구조금 지급
→ 기각
→ 기각 → 재심신청 → 법무부 범죄피해구조본부심의회 구조금 심의 후, 지급·기각 결정

※ 범죄피해자보호법 제18조, 제24조~제27조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5	'26	'27	'28	'29	'30
'25~'29	9,573	11,781	11,192	10,956	10,603	
'26~'30		11,781	12,217	12,670	13,140	13,627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범죄피해구조금 지급 실적 관리를 강화할 필요(예정처, '26예산안)
- 범죄피해구조금 지급 및 구상실적 제고 필요(법사위, '23결산)

2) 감사원 감사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 해당 없음

3) 자체평가·감사 : 해당 없음

4)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 가난한 범죄피해자에겐... 국가의 지원금도 가난하다('24. 2. 한국일보)
- '패륜 아빠'도 유족구조금 받을 수 있다... '김레아 사건'의 또 다른 비극('24. 10. 한국일보)

5)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지적사항	후속 조치사항
▪ 범죄피해구조금 지급 및 구상실적 제고 필요(법사위, '23결산)	▪ 구조금 지급액을 현실화하는 내용의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령을 2차례에 걸쳐 개정하여 구조금의 평균 지급액을 대폭 상향하였음('25. 3. / '26. 3.) ▪ 구상권 행사를 위하여 국가가 가해자의 보유재산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구상권 행사 실적을 개선하였음('25. 3.)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구조금의 단계적 향상을 통한 실질적인 피해자 지원 확대
- 피해자 권리 의무고지를 통한 범죄피해자의 기본적 인권 보장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 없음

12) 동 사업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 : 해당 없음

13) 2026년도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 결과 및 후속 조치 현황 : 해당 없음

14) 부처 건의사항 : 해당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증감액	수정(A)							
2023	10,015	-	10,015	-	10,015	9,125	91.1	91.1	-	890
2024	10,015	-	10,015	-	10,015	8,046	80.3	80.3	-	1,969
2025	9,573	-	9,573	-	9,573	7,688	80.3	80.3	-	1,885
'26. 7.	11,781	-	11,781	-	11,781	7,754	65.8	65.8	-	4,027

2) 주요 결산사항

□ 2023년~2026년 결산사항

2023	- 집행부진(불용사유) : 강력사건 발생 건수 소폭 감소('22년 285,954건→'23년 282,102건)로 인한 구조금 지급 건수 및 지급액 감소에 따른 불용
2024	- 집행부진(불용사유) : '23년 대비 구조금 지급건수는 증가하였으나, 건별로 피해자의 월 소득액, 부양가족 등에 따라 달라지는 구조금의 특성상 비교적 소액으로 산정되는 경우가 많아 불용 발생
2025	- 집행부진(불용사유) :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바와 같이 구조금이 지급되거나 사후에 가해자가 구조금 상당을 국가에 변제하는 경우 재판에서 가해자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되는 상황을 회피하기 위해 재판 확정시까지 신청을 미루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5대 강력범죄 사건 수가 점진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구조금 집행 대상 사건도 감소한 것으로 분석됨
2026	-

라. 기타 추가자료 : 해당 없음

사 업 명
범죄피해자통합지원시스템(정보화)(1135 - 303)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범죄피해자 보호기금	법무부	인권국		020	022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35	303
명칭	인권활동	강력범죄 등 피해자 보호·지원	범죄피해자통합지원시스템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6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범죄피해자 통합지원시스템 (정보화)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인권국	하용준	여유진	이화연
		범죄피해자 통합지원센터	02-811-5200	02-811-5202	02-811-5205

가. 지출계획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년 결산	2026년 계획		2027년		증감	
		당초(A)	수정	요구안	조정안(B)	(B-A)	(B-A)/A
범죄피해자 통합지원 시스템(정보화)	-	3,355	3,475	1,962	1,847	△1,508	△44.9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계획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25					2026('26.7월말)								2027 계획안
	계획액 (수정)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당초	수정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	-	-	-	-	3,355	3,475	3,475	868	3,475	868	-	-	1,847
· 범죄피해자 통합지원시스템	-	-	-	-	-	3,355	3,475	3,475	868	3,475	868	-	-	1,547
· 범죄피해자 통지 시스템 ISP	-	-	-	-	-	-	-	-	-	-	-	-	-	300
○ 비목별 분류(합계)	-	-	-	-	-	3,355	3,475	3,475	868	3,475	3,475	-	-	1,847
· 일반연구비(260-01)	-	-	-	-	-	2,090	2,210	2,210	868	2,210	2,210	-	-	1,313
· 자산취득비(430-01)	-	-	-	-	-	1,265	1,265	1,265	-	1,265	1,265	-	-	534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	-	-	-	-	3,355	3,475	3,475	868	3,475	3,475	-	-	1,847
· 범죄피해자 통합지원 시스템	-	-	-	-	-	3,355	3,475	3,475	868	-	-	-	-	1,547
-일반연구비(260-01)	-	-	-	-	-	2,090	2,210	2,210	868	-	-	-	-	1,013
-자산취득비(430-01)	-	-	-	-	-	1,265	1,265	1,265	-	-	-	-	-	534
· 범죄피해자 통지시스템 ISP	-	-	-	-	-	-	-	-	-	-	-	-	-	300
-일반연구비(260-01)	-	-	-	-	-	-	-	-	-	-	-	-	-	30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피해자가 다양한 경제·심리·법률적 지원을 한 공간에서 종합적으로 받을 수 있는 '원스톱 솔루션 센터'를 설치하여 범죄발생 초기부터 일상회복까지 피해자 지원의 체계적 설계 및 안내·연계를 통해 범죄피해자에게 원스톱 지원을 제공하고 '범죄피해자 통합지원시스템' 구축을 통해 지원기관 연계 협력 강화 및 피해자 맞춤형 지원체계 실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ㅇ 국가정보화기본법 제14조(공공지능정보화의 추진) 제1항

- 국가기관 등은 공공서비스의 지능정보화를 도모하고 국민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보건, 사회복지, 교육, 문화, 환경, 교통, 물류, 과학기술, 재난안전, 치안, 국방, 에너지 등 소관 업무에 대한 지능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ㅇ 전자정부법 제16조(전자정부서비스 개발·제공) 제1항

- 행정기관 등의 장은 국민의 복지향상 및 편익증진, 국민생활의 안전보장, 창업 및 공장설립 등 기업활동의 촉진 등을 위한 전자정부서비스를 개발하여 제공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키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ㅇ 헌법 제30조

-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

ㅇ 범죄피해자보호법 제7조(손실 복구 지원 등)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의 피해정도 및 보호·지원의 필요성 등에 따라 상담, 의료 제공, 구조금 지급, 법률구조, 취업 관련 지원, 주거지원, 그 밖에 범죄피해자의 보호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범죄피해자보호법」

제7조(손실 복구 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의 피해정도 및 보호·지원의 필요성 등에 따라 상담, 의료 제공, 구조금 지급, 법률구조, 취업 관련 지원, 주거지원, 그 밖에 범죄피해자의 보호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신체적·정신적 안정을 제공하고 사회복귀를 돕기 위하여 일시적 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는 보호시설의 운영을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국가는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의 정신적 회복을 위한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④ 보호시설의 설치·운영 기준, 입소·퇴소의 기준 및 절차, 위탁운영의 절차, 감독의 기준 및 절차와 제3항에 따른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추진경위

- ‘25. 6. 범죄피해자 원스톱솔루션센터 통합시스템 구축 ISP 수립
- ’26. 4. 범죄피해자 통합지원시스템 구축(1차) 사업 착수
- ’27년 예산안부터 정보화 내역사업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해 범죄피해자 치료 및 자립지원 세부사업에서 범죄피해자통합지원시스템(정보화) 세부사업으로 분리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26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3	2024	2025	2026	2027(안)
사업비	-	-	-	3,355	1,847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법무부 인권국 범죄피해자통합지원센터
- 사업 수혜자 : 범죄피해자

3) ’27년도 계획안 산출 근거

① 범죄피해자 통합지원시스템 구축
: (’26) 3,355백만원 → (’27) 1,547백만원, △1,808백만원
- (산출) 시스템 개발비 등 1,013백만원, SW/HW 도입비: 534백만원

’26년 예산		’27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3,355	○ 일반연구비**(260-01) : 2,090,000천원** 가. 범죄피해자 통합지원시스템 구축 2,090,000천원 ○ 자산취득비**(430-01) : 1,265,000천원** 가. 범죄피해자 통합지원시스템 구축 1,265,000천원	1,547	○ 일반연구비**(260-01) : 1,013,000천원** 가. 범죄피해자 통합지원시스템 구축 1,013,000천원 ○ 자산취득비**(430-01) : 534,000천원** 가. 범죄피해자 통합지원시스템 구축 534,000천원

② 범죄피해자 통지시스템 ISP
: (’26) - 백만원 → (’27) 300백만원, +300백만원
- (산출) 범죄피해자 통지시스템 ISP 수립비

’26년 예산		’27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	-	300	○ 일반연구비**(260-01) : 300,000천원** 가. 범죄피해자 통지시스템 ISP 수립 300,000천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3~'27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3	'24	'25	'26	'27	'26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사회적 취약계층 법률지원 실적(건)	목표	신규	16,195	17,550	18,076	19,890	'25년 목표치 대비 3% 상향	주요 사회적 취약계층 (장애인, 한부모가족, 범죄피해자, 소액임차인, 북한이탈주민 등) 법률구조 건수	대한법률구조공단 전산통계 프로그램
	실적	17,239	신규	20,066	-	-			
	달성도	신규	신규	114.3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5	- 원스톱 솔루션 센터 통합시스템 구축 ISP 사업 진행 · 원스톱 솔루션 센터 개소 이후 통합지원 체계 및 온라인상담 기능부재로 대국민 서비스 접근성 부족에 따라, 업무 표준화·효율화를 위한 범죄피해자 통합지원플랫폼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 사업 진행('25. 3. ~ 6.)

③ 향후('27년도 이후) 기대효과

ㅇ 범죄피해자 통합지원시스템 구축

- 통합지원시스템 구축으로 범죄피해자 상담 및 지원 업무 효율화, 중복·누락 없는 통합지원 실현 및 민감정보 보안성 확보, 온라인 접근성 강화를 통해 기술적 측면의 원스톱 지원체계 확립
- 대국민 포털을 통한 신속하고 편리한 온라인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서비스 제공으로 대국민 서비스 접근성·만족도 제고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5	'26	'27	'28	'29	'30
'25~'29	-	3,355	1,081	777	336	
'26~'30		3,355	1,081	777	336	336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범죄피해자 통합지원시스템 구축사업 일정 지연 예상에 따른 예산액 조정 필요(법사위, '26예산안)
- 범죄피해자 통합지원시스템 사업의 참여기관 확대 필요(예정처, '26예산안)

2) 감사원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 해당 없음

3) 자체평가 : 해당 없음

4)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자체평가 : 해당 없음

5)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지적사항	후속 조치사항
▪ 범죄피해자 통합지원시스템 구축사업 일정 지연 예상에 따른 예산액 조정 필요(법사위, '26예산안)	▪ 국정과제(74-2)로 통합지원 전산시스템 구축을 통한 원스톱 지원을 준비하고 있으며, 당초 계획한 일정에 따라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 이행에 만전을 기하겠음
▪ 범죄피해자 통합지원시스템 사업의 참여기관 확대 필요(예정처, '26예산안)	▪ 범죄피해자 통합지원시스템 구축을 위해 복지부, 성평등부 등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진행 중이고, 추가 협의로 중복·누락 없는 범죄피해자 통합지원시스템을 구축하겠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범죄피해자 통합지원시스템의 차질 없는 구축을 위해 유관기관과의 연계·협의를 지속 진행 중이고, 2차년도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재원을 충분히 확보하여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계획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 없음

12) 동 사업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 : 해당 없음

13) 2026년도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 결과 및 후속 조치 현황 : 해당 없음

14) 부처 건의사항 : 해당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증감액	수정(A)							
2023	-	-	-	-	-	-	-	-	-	-
2024	-	-	-	-	-	-	-	-	-	-
2025	-	-	-	-	-	-	-	-	-	-
'26. 7.	3,355	120	3,475	-	3,475	868	25.0	25.0	-	-

2) 주요 결산사항

□ 2023년~2026년 결산사항

2023	-
2024	-
2025	-
2026	-

라. 기타 추가자료 : 해당없음

사 업 명
실질적인 범죄피해자 등의 신변보호 강화 (1135-306)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범죄피해자 보호기금	법무부	인권국		020	022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35	306
명칭	인권활동	강력범죄 등 피해자 보호·지원	실질적인 범죄피해자 등의 신변보호 강화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6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신변보호장치 임시안전숙소 민간경호지원	경찰청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생활안전교통국	총경 정혜심	경정 지 환	경감 김남희
		범죄피해자보호과	02-3150-1710	02-3150-0214	02-3150-0215
이전비지원	대검찰청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인권기획담당관실	남수연	임종훈	김은아
			02-3840-2329	02-3840-2966	02-3480-2958
임시안전숙소	해양경찰청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수사국	총경 이우수	경정 김정우	경위 임두환
		수사심사과	032-835-2054	032-835-2131	032-835-2331

가. 계획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년 결산	2026년 계획		2027년		증감 (B-A)	
		당초(A)	수정	요구안	조정안(B)		(B-A)/A
실질적인 범죄피해자 등의 신변보호 강화	5,768	5,400	5,500	6,029	5,746	346	6.4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계획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25					2026('26.7월말)							2027 계획안
	계획 (추경)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5,810	5,810	5,768	-	42	5,400	5,500	3,102	5,500	3,102	-	-	5,746
· 신변보호장치	1,943	1,943	1,908	-	35	1,808	1,808	1,044	1,808	1,044	-	-	1,808
· 이전비	313	313	313	-	-	200	300	191	300	191	-	-	252
· 임시안전숙소	1,104	1,104	1,098	-	6	942	942	542	942	542	-	-	1,236
· 민간경호지원	2,450	2,450	2,449	-	1	2,450	2,450	1,324	2,450	1,324	-	-	2,450
○ 비목별 분류(합계)	5,810	5,810	5,768	-	42	5,400	5,500	3,102	5,500	3,102	-	-	5,746
· 일반수용비(210-01)	3,360	3,360	3,319	-	41	2,950	3,050	1,749	3,050	1,749	-	-	3,296
· 일반용역비(210-14)	2,450	2,450	2,449	-	1	2,450	2,450	1,324	2,450	1,324	-	-	2,450
· 관리용역비(210-15)	-	-	-	-	-	-	-	-	-	-	-	-	-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5,810	5,810	5,768	-	42	5,400	5,500	3,102	5,500	3,102	-	-	5,746
· 신변보호장치	1,943	1,943	1,908	-	41	1,808	1,808	1,044	1,808	1,044	-	-	1,808
-일반수용비(210-01)	1,903	1,903	1,869	-	41	1,808	1,808	1,015	1,808	1,015	-	-	1,808
-관리용역비(210-15)	40	40	39	-	-	-	-	29	-	29	-	-	-
· 이전비	313	313	313	-	-	200	300	191	300	191	-	-	252
-일반수용비(210-01)	313	313	313	-	-	200	300	191	300	191	-	-	252
· 임시안전숙소	1,104	1,104	1,098	-	-	942	942	542	942	542	-	-	1,236
-일반수용비(210-01)	1,104	1,104	1,098	-	-	942	942	542	942	542	-	-	1,236
· 민간경호지원	2,450	2,450	2,450	-	-	2,450	2,450	1,324	2,450	1,324	-	-	2,450
-일반용역비(210-14)	2,450	2,450	2,449	-	1	2,450	2,450	1,324	2,450	1,324	-	-	2,45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보복범죄 등 추가피해 위험이 있는 범죄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신변보호장치 제공 ▵주거이전 지원 ▵임시숙소 지원 ▵민간경호 지원 등 보호조치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라는 국가 본연의 책무 수행
- **(신변보호장치)** 추가피해 위험이 있는 범죄피해자에게 긴급신고·위치전송 기능이 있는 스마트워치 형태의 보호장치 제공, 위험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출동으로 피해자 보호
- **(이전비)** 보복범죄를 피해고자 거주지를 변경한 범죄피해자에게 이전비 지원
- **(임시안전숙소)** 가해자에게 주거지가 노출되어 추가피해 위험이 크지만 당장 거주할 장소가 마땅치 않거나 이사가 어려운 경우 사전 지정한 숙박업소에 임시거주 지원
- **(민간경호)** ▵가해자 체포·구속영장 기각 ▵흉기사용 ▵스토킹·가정폭력 접근금지 지속 위반 등 특히 추가피해 위험이 현저한 피해자에게 가해자 검거 등 조치 시까지 단기간(기본 7일 이내 + 2회 연장 가능) 민간경비업체 밀착 경호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범죄피해자보호법」 제7조(손실 복구 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의 피해정도 및 보호·지원의 필요성 등에 따라 상담, 의료제공(치료비 지원을 포함한다), 구조금 지급, 법률구조, 취업 관련 지원, 주거지원, 그 밖에 범죄피해자의 보호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신체적·정신적 안정을 제공하고 사회복귀를 돕기 위하여 일시적 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는 보호시설의 운영을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설립·운영하는 학교법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국가는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의 정신적 회복을 위한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④ 보호시설의 설치·운영 기준, 입소·퇴소의 기준 및 절차, 위탁운영의 절차, 감독의 기준 및 절차와 제3항에 따른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사생활의 평온과 신변의 보호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의 평온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가 형사소송절차에서 한 진술이나 증언과 관련하여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등 범죄피해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제13조(신변안전조치)** ① 검사 또는 경찰서장은 범죄신고자등이나 그 친족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 동안 해당 검찰청 또는 경찰서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변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하 "신변안전조치"라 한다)를 하게 하거나 대상자의 주거지 또는 현재지(現在地)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변안전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경찰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신변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재판장 또는 판사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진행 과정에서 검사에게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범죄신고자등, 그 법정대리인 또는 친족등은 재판장·검사 또는 주거지나 현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④ 경찰서장이 신변안전조치를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신변안전조치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추진경위

○ 신변보호장치·이전비 지원

- 2011. 5. 30. '2012년 범죄피해자보호기금 기금운용계획안' 제출 및 확정
- 2012. 4. 16. 범죄피해자에 대한 신변보호장치 및 이전비 지원지침 제정·시행

○ 임시안전숙소

- 2015. 강력범죄 피해자 등에 대한 임시숙소 지원(경찰청)
- 2024. 해양범죄피해자까지 임시숙소 지원 확대(해양경찰청)

○ 민간경호지원

- 2023. 6. '고위험 범죄피해자 민간경호 지원사업' 서울·인천·경기지역 시범운영 (경찰청 일반회계 7억원)
- 2025. 3. '고위험 범죄피해자 민간경호 지원사업' 전국 운영 확대(기금 24.5억원)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2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3	2024	2025	2026	2027(안)
사업비	3,564	3,446	5,540	5,400	5,746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법무부 → 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 사업 수혜자 : 보복범죄 위험에 노출된 강력범죄 피해자, 신고자 및 증인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7년도 계획안 산출 근거

① 신변보호 장치 : (’26) 1,808백만원 → (’27) 1,808백만원, 전년동
- (산출) 신변보호장치 사용료 1,808백만원

ㅇ 2026년도 및 2027년도 예산안 산출 세부내역 비교

’26년 예산		’27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808	○ 일반용역비(210-01) : 1,808,000천원 가. 신변보호장치 구입 및 유지비 ・ 5,650대 × 320,000원 = 1,808,000천원	1,808	○ 일반용역비(210-01) : 1,808,000천원 가. 신변보호장치 구입 및 유지비 ・ 5,650대 × 320,000원 = 1,808,000천원

② 이전비 : (’26) 200백만원 → (’27) 252백만원, 52백만원 증액
- (산출) 이전비 252백만원

ㅇ 2026년도 및 2027년도 예산안 산출 세부내역 비교

’26년 예산		’27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200	○ 일반수용비 (210-01) : 200,000천원 가. 이전비 ・ 200건 x 1백만원 = 200,000천원	200	○ 일반수용비 (210-01) : 252,000천원 가. 이전비 ・ 252건 x 1백만원 = 252,000천원

③ 피해자 임시숙소 지원 : (’26) 942백만원 → (’27) 1,236백만원, 294백만원 증액
- (산출) 임시안전숙소 1,236백만원

ㅇ 2026년도 및 2027년도 예산안 산출 세부내역 비교

’26년 예산		’27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942	○일반수용비 (210-01) : 942,000천원 가. 피해자 임시숙소 지원 ・ 12,886박 × 73,100원 = 942,000천원	942	○일반수용비 (210-01) : 1,236,000천원 가. 피해자 임시숙소 지원 ・ 13,850박 × 89,200원 = 1,236,000천원

④ 민간경호 지원 : (’26) 2,450백만원 → (’27) 2,450백만원, 전년동
- (산출) 경호비 2,450백만원

ㅇ 2026년도 및 2027년도 예산안 산출 세부내역 비교

’26년 예산		’27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2,450	○일반용역비 (210-14) : 2,450,000천원 가. 경호비 ・ 350명 × 500,000원 × 14일 = 2,450,000천원	2,450	○일반용역비 (210-14) : 2,450,000천원 가. 경호비 ・ 350명 × 500,000원 × 14일 = 2,450,000천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3~'26년도 성과계획서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3	○ 신변보호장치 지급 16,690건, 이전비 지원 170건, 임시숙소 지원 7,038명(10,971박)
2024	○ 신변보호장치 지급 17,508건, 이전비 지원 174건, 임시숙소 지원 7,155명(12,621박)
2025	○ 신변보호장치 지급 35,408건, 이전비 지원 227건, 임시숙소 지원 7,600명(13,729박)
2026. 7월	○ 신변보호장치 지급 25,208건, 이전비 지원 156건, 임시숙소 지원 4,849명(8,811박)

③ 향후('27년도 이후) 기대효과

○ 사회적 약자 보호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보복범죄 우려가 큰 스토킹·교제폭력·가정폭력 및 기타 강력범죄 피해자에게 실효적인 보호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추가피해 방지 및 대국민 신뢰 제고 도모

○ **(신변보호장치)** 범죄 발생 직후 신속한 신변보호조치 결정 및 긴급신고용 스마트워치 제공으로 보복범죄 등 추가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

- '21년 경찰 112상황실 관제시스템과 위치정보 연계시스템 구축, '26년 △고도정보 제공 △정밀위치 탐색 가능 등 위치확인 성능이 향상된 신형 스마트워치 추가도입으로 위험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출동을 통해 피해자 안전 확보

- 신변보호 조치에 ICT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범죄피해자들의 신변안전을 확보하고, 신변보호 인력의 한계를 일정 부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이전비)** 보복범죄를 피하고자 거주지를 변경한 범죄피해자 등에 대해 이전비 지원으로 신변보호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

○ **(임시안전숙소)** 피해자 임시숙소 지원으로 주거지에서 범죄 발생 시 신속하게 가·피해자를 분리하여 보복범죄 감소 기대, 보호시설 원거리 위치 등으로 도움을 받지 못하는 강력범죄,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자 등에게 실질적 도움 제공

○ **(민간경호 지원)** 가해자 체포·구속영장 기각, 흉기사용 등 추가피해 위험이 특히 큰 범죄피해자에게 민간경비업체 밀착 경호를 지원하여 가해자 검거 등 위험 해소 시까지 보호 공백을 해소하고 신변조치 실효성을 제고

5) 타당성 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 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 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신변보호장치
- (경찰) 기기 지급 → 112시스템 신변보호대상자 등록 → 긴급상황 시 보호 요청(기기 작동) → 상황실 접수 → 지령 및 실시간 위치확인 → 경찰 출동 → 안전 확보
- (검찰) 피해자에게 보복 우려 및 희망의사 확인 ⇨ 희망시 피해자지원담당관실로 안내(관련서류 인계) ⇨ 피해자지원담당관은 피해자에게 신청서 접수 및 담당검사 결재(전결) 받아 비상호출기 지급, 사용방법 설명

○ 이전비
- 범죄피해자가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어 다른 곳으로 거주를 이전한 경우 이사비 실비 지원

신청단계	ㅇ 당해 사건을 수사중 또는 기소한 각 청 피해자지원담당자 - 피해자 등으로부터 부동산매매(임대) 계약서, 이전비 관련 영수증, 전학 이유서 등 증빙서류가 첨부된 신청서 접수
지원단계	ㅇ 담당자는 신청서를 접수한 즉시 담당 검사에게 신청서 인계 - 검사는 신청서를 인계받은 후 소속 부장검사의 결재를 받아 신속히 지원 여부에 대해 결정

○ 임시숙소 지원
- 범죄피해 발생 → 임시숙소 연계 → 지방청·경찰청 보고 → 숙박비·긴급부대비 지급

○ 민간경호 지원
- 신변보호 신청 → 위험도 판단(담당 수사관, 체크리스트 활용) → 지원 결정(경찰서 심사위원회) → 시도경찰청 승인 → 민간경호원 배치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5	'26	'27	'28	'29	'30
'25~'29	5,540	5,400	5,130	5,022	4,860	
'26~'30		5,400	5,556	5,556	5,556	5,556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민간경호 지원사업 추진 방식 등 종합적인 검토 필요(예결위, '26예산)
- 위치확인장치 지급추세 및 보유수량을 고려한 신규 구입계획 검토 필요(경찰청)(예결위, '25예산)
- 신변보호장치 예산 감액 및 임시안전숙소 예산 증액 조정 필요(법사위, '25예산)
- 민간경호지원사업의 예산규모 및 사업구조 등에 대한 재검토 필요(법사위, '25예산)
- 경찰청(일반회계)으로부터 사업 이관에 대한 종합검토 필요(예결위, '23결산)
- 위치확인장치 관리 강화 및 활용실적 제고 필요(예결위·법사위, '23결산)

2) 감사원 감사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 해당없음

3) 자체평가·감사 : 해당없음

4)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 해당없음

5)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민간경호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기준 강화, 연장 승인 절차 강화 등 연구용역 결과 반영 및 그간 문제점 등을 검토(예결위, '26예산)
- '26년도 민간경호 지원사업 운영계획 시행 시 수정·반영(예결위, '26예산)
- 신변보호장치 관서 간 탄력적인 보유 대수 조정 등 운영 현황을 고려하여 신규도입 여부 · 수량 검토 예정(예결위 · 법사위, '25예산)
- 민간경호 지원사업 성과분석 · 개선방안 연구용역 추진 중(예결위 · 법사위, '25예산)
- 신변보호장치 구형기기는 재활용이 곤란하고 노후화가 심하여 판매나 부품 활용도 불가능한 관계로 '24. 8월 폐기함(예결위·법사위, '23결산)
- 신변보호장치 경찰서별 고장 · 분실 기기는 신속히 수리 · 교체하고 긴급한 경우 인접 경찰서와 조절하는 등 세심하게 관리 중(예결위·법사위, '23결산)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신변보호 신청에 대응하기 위해 위치확인장치 운용 대수를 확대하고, 첨단 ICT 기술을 적용하여 성능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함으로써 가해자의 추가 범행 시도 등 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능력을 제고
- 관계기관 간 신변보호 신청 연계를 강화,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피해자 편의 제고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 없음

12) 동 사업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 : 해당없음

13) 2026년도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 결과 및 후속 조치 현황

평가결과	성과평가 주요내용	조치결과
제도개선	- 임시숙소비를 삭감하고 장비 예산을 증액 후 다시 임시숙소 예산으로 전용하는 방식은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저해	- 시도청별 보유·지급 수량 관리 강화 및 내부 시스템 활용 스마트워치 현황을 데이터를 기반으로 통합관리

14) 부처 건의사항 : 해당사항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계획	증감액	수정(A)							
2023	3,564	△641	2,923	-	2,923	2,521	70.7	86.2	-	402
2024	3,446	-	3,446	-	3,446	3,431	99.6	99.6	-	15
2025	5,540	270	5,810	-	5,810	5,768	99.2	99.2	-	42
'26. 7.	5,400	100	5,500	-	5,500	3,102	57.4	57.4	-	-

2) 주요 결산사항

□ 2022년~2025년 결산사항

2023	- 진술조력인수당 및 치료및자립지원사업 연구용역비 부족으로 신변보호사업 예산에서 계획변경(△316) - 형사조정위원수당 및 치료및자립지원사업 여비 부족으로 신변보호사업 예산에서 계획변경(△325)
2024	- 해당없음
2025	- 임시안전숙소 예산 부족으로 신변보호장지 등 일부 예산에서 계획변경 (617 추가배정)
2026	-

라. 기타 추가자료 : 해당없음

사 업 명
진술조력인 양성 및 배치 (1136-3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범죄피해자 보호기금	법무부	인권국	기금	020	022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36	300
명칭	인권활동	성폭력피해자 보호 및 지원	진술조력인 양성 및 배치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6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100.0%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진술조력인 양성 및 배치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인권국	차경자	이우람	김겸
		여성아동인권과	02-2110-3139	02-2110-3852	02-2110-3783

가. 지출계획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년 결산	2026년 계획		2027년		증감	
		당초(A)	수정	요구안	조정안(B)	(B-A)	(B-A)/A
진술조력인 양성 및 배치	1,629	1,711	1,711	2,117	1,744	33	1.9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계획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25					2026('26.7월말)							2027 계획안
	계획액 (수정)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당초	수정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1,632**	**1,632**	**1,629 [1,567]**	**-**	**3**	**1,711**	**1,711**	**1,711**	**1,064 [832]**	**1,711**	**1,064 [832]**	**-**	**-**	**1,744**
・진술조력인 수당	758	758	758	-	-	758	758	758	386	758	386	-	-	758
・진술조력인 배치	773	773	773 [710]	-	-	852	852	852	639 [368]	852	639 [368]	-	-	885
・진술조력인 양성	101	101	99	-	3	101	101	101	39	101	39	-	-	101
○ 비목별 분류(합계)	**1,632**	**1,632**	**1,629 [1,567]**	**-**	**3**	**1,711**	**1,711**	**1,711**	**1,064 [832]**	**1,711**	**1,064 [832]**	**-**	**-**	**1,744**
・일반수용비(210-01)	847	847	847	-	-	847	847	847	418	847	418	-	-	847
・국내여비(220-01)	6	6	3	-	3	6	6	6	4	6	4	-	-	6
・사업추진비(240-01)	6	6	6	-	-	6	6	6	3	6	3	-	-	6
・민간경상보조(320-01)	773	773	773 [710]	-	-	852	852	852	639 [368]	852	639 [368]	-	-	885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1,632**	**1,632**	**1,629 [1,567]**	**-**	**3**	**1,711**	**1,711**	**1,711**	**1,064 [832]**	**1,711**	**1,064 [832]**	**-**	**-**	**1,744**
・진술조력인 양성	**101**	**101**	**99**	**-**	**3**	**101**	**101**	**101**	**39**	**101**	**39**	**-**	**-**	**101**
-일반수용비(210-01)	89	89	89	-	-	89	89	89	32	89	32	-	-	89
-국내여비(220-01)	6	6	3	-	3	6	6	6	4	6	4	-	-	6
-사업추진비(240-01)	6	6	6	-	-	6	6	6	3	6	3	-	-	6
・진술조력인 수당	**758**	**758**	**758**	**-**	**-**	**758**	**758**	**758**	**386**	**758**	**386**	**-**	**-**	**758**
-일반수용비(210-01)	758	758	758	-	-	758	758	758	386	758	386	-	-	758
・진술조력인 배치	**773**	**773**	**773 [710]**	**-**	**-**	**852**	**852**	**852**	**639 [368]**	**852**	**639 [368]**	**-**	**-**	**885**
-민간경상보조(320-01)	773	773	773 [710]	-	-	852	852	852	639 [368]	852	639 [368]	-	-	885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진술조력인 수당)** 사회적 약자인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피해자가 수사·재판절차에서 의사를 원활히 표현할 수 있도록 조력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되는 피해자의 진술권을 보호하고 2차 피해 예방 → 비상근 진술조력인 활동에 대한 수당 지급
- **(진술조력인 배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피해자에게 진술조력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전국 피해자지원기관(해바라기센터 등)에 상근 진술조력인을 배치
- **(진술조력인 양성)** 진술조력인 신규 양성, 기존 진술조력인에 대한 보수교육 실시와 권역별 사례관리회의 등으로 안정적인 제도 운영 및 지속적인 피해자 지원 도모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헌법」 제30조 '범죄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구조의무'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5조(진술조력인 양성 등), 제36조(진술조력인의 수사과정 참여), 제37조(진술조력인의 재판과정 참여)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7조(준용)
- 「장애인복지법」 제59조16(준용)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여성가족부에서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진술조사전문가 제도를 운용
- 2012년 국회 성폭력대책특위에서 국가 예산과 인력의 효율적 활용 위해 여성가족부의 진술조사전문가 사업은 2013년까지 유지 후 폐지, 법무부 진술조력인 사업으로 일원화하기로 여·야 합의
- 2013. 6.「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법무부장관의 진술조력인 양성교육 실시
- 2013. 12. 진술조력인 48명 자격부여
- 2014. 9.「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으로 진술조력인 제도 지원범위를 아동학대범죄까지 확대
- 2015. 법무부에서 통합하여 진술조력인 양성 및 배치사업 추진
- 2020. 10.「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시행으로 아동학대범죄의 참고인, 증인까지 진술조력 지원대상 확대

- 2022. 1.「장애인복지법」 개정 시행으로 기존 지원대상인 성폭력, 아동학대 범죄 피해자 장애인에서 모든 범죄(가정폭력 등) 피해자인 장애인으로 진술조력 대상 확대
- 2023. 1. 1.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13세 미만의 인신매매등 범죄 피해자까지 진술조력 대상 확대
- 2023. 10. 12.「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시행으로 진술조력인의 지원 범위가 '19세 미만'으로 확대
- 2026. 8. 기준 진술조력인 총 181명 양성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1년~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3	2024	2025	2026	2027(안)
사업비	1,360	1,632	1,632	1,711	1,744

- 기타: '22년 3,822건 → '23년 4,231건 → '24년 4,517건 → '25년 4,715건 → '26년 6월 2,378건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양성, 수당), 민간보조(배치)
- 사업시행주체 : 법무부(양성, 수당),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배치)
- 사업 수혜자 : 성폭력·아동학대범죄 피해를 당한 아동·청소년(19세 미만) 및 범죄피해자인 장애인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7계획안)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진술조력인 배치	보조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	885	100.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3) ’27년도 계획안 산출 근거

① 진술조력인 수당

: (’26) 758백만원 → (’27) 758백만원, 전년동

- (산출) 진술조력인 수당 758백만원

ㅇ 2026년도 예산 및 2027년도 예산안 산출 세부내역 비교

’26년 예산		’27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758	○ **진술조력인 수당(210-01) : 758백만원** ・지원예상건수 3,033건 X 단가 250천원 = 758백만원	758	○ **진술조력인 수당(210-01) : 758백만원** ・지원예상건수 3,033건 X 단가 250천원 = 758백만원

② 진술조력인 배치

: (’26) 852백만원 → (’27) 885백만원, +33백만원

- (산출) 상근 진술조력인 배치 885백만원

ㅇ 2026년도 예산 및 2027년도 예산안 산출 세부내역 비교

’26년 예산		’27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852	○ **진술조력인 배치(320-01) : 852백만원** 가. 인건비 : 756백만원 ・ 급여 : 3,000천원 X 12개월 X 16명 = 576백만원 ・ 명절수당 550천원 X 2회 X 16명 = 18백만원 ・ 국민연금 등 사용자부담금 37,100천원 X 11.47% X 16명 =68백만원 ・ 퇴직금 적립 37,100천원/12개월 X 16명 =50백만원 ・ 성과급 230천원 X 12개월 X 16명 = 44백만원 나. 운영비 : 96백만원 ・ 관리운영비 : 1,800천원 X 16명 = 28백만원 ・ 사업관리비: 26백만원 X 1명 = 26백만원 ・ 사례관리회의비 : 1,500천원 X 12회 = 18백만원 ・ 출장비, 우편비 등 : 15백만원 X 16명 = 24백만원	885	○ **진술조력인 배치(320-01) : 885백만원** 가. 인건비 : 788백만원 ・ 급여 : 3,135천원 X 12개월 X 16명 = 602백만원 ・ 명절수당 550천원 X 2회 X 16명 = 18백만원 ・ 국민연금 등 사용자부담금 38,720천원 X 11.78% X 16명 =73백만원 ・ 퇴직금 적립 38,720천원/12개월 X 16명 =51백만원 ・ 성과급 230천원 X 12개월 X 16명 = 44백만원 나. 운영비 : 96백만원 ・ 관리운영비 : 1,800천원 X 16명 = 28백만원 ・ 사업관리비: 26백만원 X 1명 = 26백만원 ・ 사례관리회의비 : 1,500천원 X 12회 = 18백만원 ・ 출장비, 우편비 등 : 15백만원 X 16명 = 24백만원

③ 진술조력인 양성

: (’26) 101백만원 → (’27) 101백만원, 전년동

- (산출) 신규 양성 63백만원, 보수교육 26백만원, 간담회·점검 12백만원

ㅇ 2026년도 예산 및 2027년도 예산안 산출 세부내역 비교

’26년 예산		’27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01	○ **진술조력인 선발, 교육(210-01) : 89백만원** 가. 신규 교육생 선발 : 3백만원 ・ 공고문 검수 : 3명 X 200천원 = 600천원 ・ 서류평가 위원 : 3명 X 300천원 = 900천원 ・ 면접위원 : 3명 X 500천원 = 1,500천원 나. 진술조력인 신규양성 교육 : 60백만원 ・ 기본교육(이론, 4박5일 합숙) : 12명 X 400천원 X 5일= 24백만원 ・ 기본실무교육(실무, 주1회 교육) : 12명 X 100천원 = 12백만원 ・ 심층실무교육(이론, 4박5일 합숙) : 12명 X 400천원 X 5일 = 24백만원 다. 진술조력인 보수교육 : 26백만원 ・ 90명 X 288천원 = 26백만원 ○ **진술조력인 자문단 운영 및 간담회(240-01) : 6백만원** ・ 500천원 X 12회 = 6백만원 ○ **진술조력인 활동 관련 의견 수렴 및 지도 점검 여비(220-01) : 6백만원** ・ 400천원 X 16회(현장점검 12회, 간담회 4회) = 6백만원	101	○ **진술조력인 선발, 교육(210-01) : 89백만원** 가. 신규 교육생 선발 : 3백만원 ・ 공고문 검수 : 3명 X 200천원 = 600천원 ・ 서류평가 위원 : 3명 X 300천원 = 900천원 ・ 면접위원 : 3명 X 500천원 = 1,500천원 나. 진술조력인 신규양성 교육 : 60백만원 ・ 기본교육(이론, 4박5일 합숙) : 12명 X 400천원 X 5일= 24백만원 ・ 기본실무교육(실무, 주1회 교육) : 12명 X 100천원 = 12백만원 ・ 심층실무교육(이론, 4박5일 합숙) : 12명 X 400천원 X 5일 = 24백만원 다. 진술조력인 보수교육 : 26백만원 ・ 90명 X 288천원 = 26백만원 ○ **진술조력인 자문단 운영 및 간담회(240-01) : 6백만원** ・ 500천원 X 12회 = 6백만원 ○ **진술조력인 활동 관련 의견 수렴 및 지도 점검 여비(220-01) : 6백만원** ・ 400천원 X 16회(현장점검 12회, 간담회 4회) = 6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3~'27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3	'24	'25	'26	'27	'26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사회적 취약계층 법률지원 실적(건)	목표	신규	16,195	17,550	18,076	19,890	'25년 목표치 대비 3% 상향	주요 사회적 취약계층 (장애인, 한부모가족, 범죄피해자, 소액임차인, 북한이탈주민 등) 법률구조 건수	대한법률구조공단 전산통계 프로그램
	실적	17,239	신규	20,066	-	-			
	달성도	신규	신규	114.3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3	○ 1월 진술조력인 추가 배치(서울북부해바라기센터), 7월~11월 신규 양성(15명) ○ 총 4,231건 지원 (전년 대비 10.7% 증가)
2024	○ 상근 진술조력인 추가 배치(원스톱솔루션센터, 7월), '24년도 진술조력인 신규 양성(14명, 8월) ○ 총 4,517건 지원 (전년 대비 6.8% 증가)
2025	○ 상근 진술조력인 추가 배치(충주해바라기센터 3월, 경기서부해바라기센터 11월), '25년도 진술조력인 신규 양성(12명, 9월) ○ 총 4,715건 지원 (전년 대비 4.4% 증가)
2026	○ '26년도 진술조력인 신규 양성(12명, 9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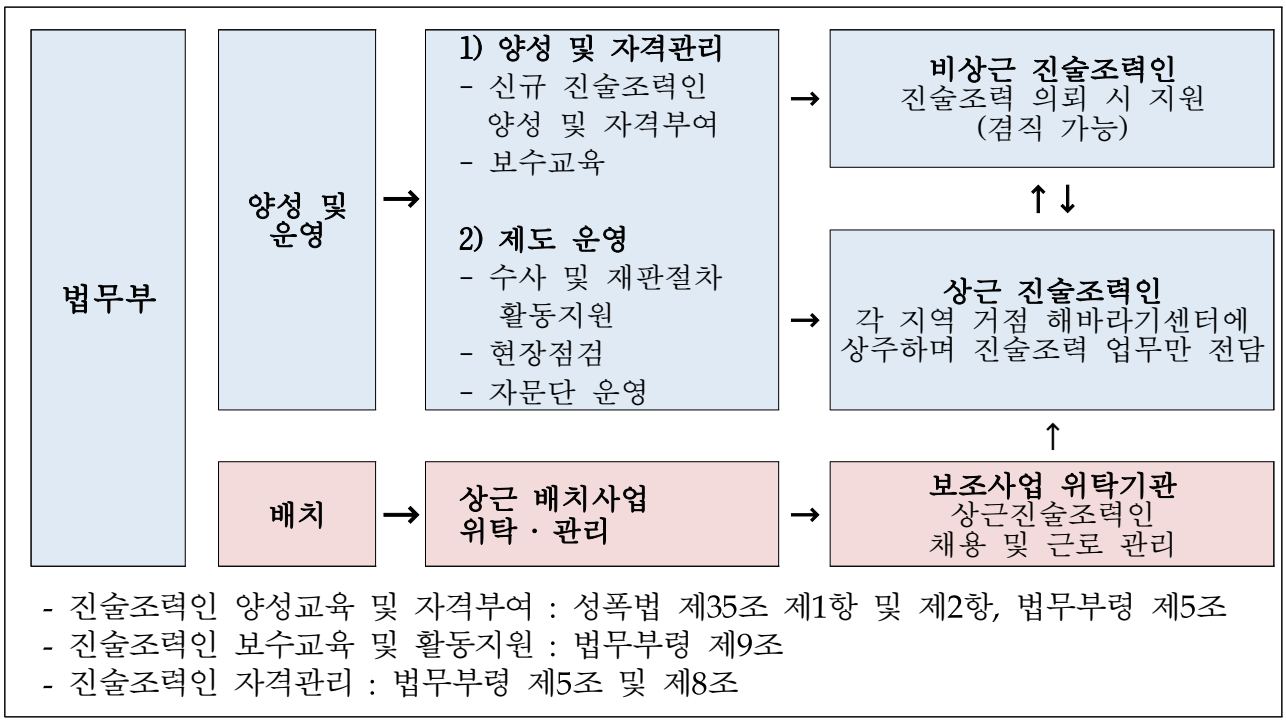
③ 향후('27년도 이후) 기대효과

- '23. 10. 1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시행으로 진술조력인의 지원 범위가 기존 '13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확대됨에 따라 기존에 조력을 받지 못하던 아동·청소년 범죄피해자가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자신의 의사를 원활히 표현하도록 지원 가능
- 전문성을 갖춘 진술조력인을 지속적으로 양성하여(연 10명 이상) 심리, 수화, 언어치료, 특수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인력을 풍부하게 확보하여 피해자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조력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
- 진술조력 전담 인력의 처우개선을 통한 채용 활성화로 여러 지역에 전담 인력을 충실히 배치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인 범죄피해자의 헌법상 진술권을 보장하는 공공 진술조력 서비스를 여러 지역에서 공평하게 제공받을 수 있음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진술조력인 양성교육 및 자격부여 : 성폭법 제35조 제1항 및 제2항, 법무부령 제5조
- 진술조력인 보수교육 및 활동지원 : 법무부령 제9조
- 진술조력인 자격관리 : 법무부령 제5조 및 제8조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5	'26	'27	'28	'29	'30
'25~'29	1,632	1,711	1,550	1,518	1,469	
'26~'30		1,711	2,249	2,293	2,338	2,385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국회(상임위 등)	지적사항	비고
- '23. 10. 국정감사	진술조력인 명부의 진술조력인 전문 분야가 '장애인 및 아동'으로만 기재되고 세분화되어 있지 않음	
- '24. 10. 국정감사	상근 진술조력인을 중심으로 전문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상근 진술조력인을 신속하게 채용하기 위한 홍보 강화, 처우 개선 등 확충방안을 강구할 것	
- '25. 10. 국정감사	진술조력인에 대한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2) 감사원 감사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 해당사항 없음

3) 자체평가·감사

	평가 정책	결 과
2023년 법무부 자체평가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피해 지원 및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대응체계 강화	다소미흡
2024년 법무부 자체평가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피해 지원 및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대응체계 강화	우수
2025년 법무부 자체평가	여성·아동 등 범죄피해자의 권리 및 인권 보호	다소미흡

4)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 해당사항 없음

5)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지적사항	후속 조치사항
▪ 진술조력인 명부에 '장애인 및 아동'으로만 기재되어 있는 진술조력인 전문 분야를 세분화하여 피해자 특성에 따라 적절한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세부 전문분야를 기재하도록 개선할 것	▪ 진술조력인 명부에 진술조력인의 관심분야 항목을 추가하여 '장애인'은 '신체적 장애, 지적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장애'로 세분화하고, 아동은 '학력 전 아동, 학령기 아동'으로 세분화하도록 개선하였음
▪ 상근 진술조력인을 중심으로 전문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상근 진술조력인을 신속하게 채용하기 위한 홍보 강화, 처우 개선 등 확충방안을 강구할 것	▪ 상근 진술조력인의 채용을 활성화하고자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한 결과, '26년 상근 진술조력인의 급여를 인상하는 처우개선을 실시하고 있음
▪ 진술조력인에 대한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성폭력·아동학대 범죄 발생 건수 및 진술조력 수요 증가에 따라 신속하고 전문적인 피해자 지원을 위해 진술조력 전담 인력을 전국적으로 확대 배치 - 지원 대상 확대(장애인 범죄피해자)에 따라 장애인 대상 범죄의 특수성 등 전문교육을 통하여 진술조력인 역량 강화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 없음

12) 동 사업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 : 해당없음

13) 2026년도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 결과 및 후속 조치 현황

평가결과	성과평가 주요내용	조치결과
사업개선	・성과지표인 '상근 진술조력인 지원실적(건수)'는 본 사업의 지표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2024년에는 목표 대비 80.7%로 부진했으나 2025년 실적이 반등한 점이 인정됨. ・최근 2년간 실적이 성과 목표치를 충족하지 못했던 점을 고려하여 목표를 하향 조정한 것은 성과 관리의 기본적인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성과 목표치를 객관적 기준에 의해 설정할 필요가 있음	・법무부는 실적의 증가를 감안하여 목표치를 적정 수준으로 설정하는 한편, 상근 진술조력인의 더욱 활발한 활동을 위하여 실적을 꾸준히 모니터링 하고 처우개선 등 상근 진술조력인의 더 나은 근무여건 조성을 위하여 노력할 계획임

14) 부처 건의사항

- 진술조력 전담인력(상근 진술조력인)의 전국적 확대 배치를 통해, 헌법상 피해자의 진술권을 강화하는 공공 진술조력 서비스의 지역별 균형이 필요함. 진술조력 전담 인력 증원을 위한 예산 증액 필요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증감액	수정(A)							
2023	1,360	-	1,360	-	1,670	1,635	97.9	97.9	-	35
2024	1,632	20	1,652	-	1,652	1,651	99.9	99.9	-	1
2025	1,632	-	1,632	-	1,632	1,629	99.8	99.8	-	3
'26. 7.	1,711	-	1,711	-	1,711	1,064	62.2	62.2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계획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당초	수정(A)								
2023	849	-	849	849	-	849	675	-	173	79.5
2024	773	-	773	773		773	615	-	158	79.6
2025	773	-	773	773		773	710	-	62	91.8
'26. 7.	852	-	639	639	-	639	368			

2) 주요 결산사항

□ 2023년~2026년 결산사항

2023	- 진술조력 수요 증가 등으로 진술조력인 수당 등 310백만원 전용 - 상근 진술조력인 퇴사 및 채용 지연으로 인건비 불용액 발생
2024	- 물가상승 등으로 인해 진술조력인 양성을 위한 교육 예산 부족으로 20백만원 전용 - 상근 진술조력인 공석 및 채용 지연으로 인건비 불용액 발생
2025	- 상근 진술조력인 채용 지연으로 인건비 불용액 발생
2026	- 특이사항 없음

□ 2026년 계획변경 세부내역 : 해당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 해당없음

사 업 명
성폭력 피해자 지원 (1136-303)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범죄피해자 보호기금	법무부	안전인권정책관 (성평등가족부)		020	022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36	303
명칭	인권활동	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성폭력피해자 지원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6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50~100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성폭력 피해자 지원	소관부처	안전인권정책관	송지은	김수미	이윤혁
		성폭력방지과	02-2100-6391	02-2100-6396	02-2100-6397
				조의성	박정희
				02-2100-6395	02-2100-6393

가. 지출계획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25년 결산	2026년 계획		2027년		증감	
		당초(A)	수정	요구안	조정안(B)	(B-A)	(B-A)/A
성폭력 피해자 지원	39,367	40,394	40,394	41,418	39,066	△1,328	△3.3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계획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25					2026(2026.7월말)								2027 계획안
	계획액 (수정)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당초	수정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39,413	39,413	39,367 [38,407]	-	46	40,394	40,394	40,394	36,268 [25,894]	40,394	36,268 [25,894]	-	-	39,066
·성폭력 피해상담소 및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	14,980	14,980	14,980 [14,606]	-	-	16,060	16,060	16,060	14,180 [11,776]	16,060	14,180 [11,776]	-	-	17,003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운영 지원	20,035	20,035	20,035 [19,634]	-	-	20,622	20,622	20,622	18,569 [11,290]	20,622	18,569 [11,290]	-	-	21,891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등 서비스 지원	3,540	3,540	3,540 [3,355]	-	-	3,540	3,540	3,540	3,447 [2,757]	3,540	3,442 [2,757]	-	-	-
·성폭력 증거채취 응급키트	172	172	140	-	32	172	172	172	71	172	71	-	-	172
·성폭력 안전 실태조사	686	686	672	-	14	-	-	-	-	-	-	-	-	-
○ 비목별 분류(합계)	39,413	39,413	39,367 [38,407]	-	46	40,394	40,394	40,394	36,268 [25,894]	40,394	36,268 [25,894]	-	-	39,066
·일반수용비(210-01)	172	172	140	-	32	172	172	172	71	172	71	-	-	172
·일반연구비(260-01)	686	686	672	-	14	-	-	-	-	-	-	-	-	-
·자치단체경상보조 (330-01)	38,170	38,170	38,170 [37,367]	-	-	40,037	40,037	40,037	36,033 [25,715]	40,037	36,033 [25,715]	-	-	38,709
·자치단체자본보조 (330-03)	385	385	385 [228]	-	-	185	185	185	163 [108]	185	163 [108]	-	-	185

	2025					2026(2026.7월말)								2027 계획안
	계획액 (수정)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당초	수정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39,413	39,413	39,367 [38,407]	-	46	40,394	40,394	40,394	36,268 [25,894]	40,394	36,268 [25,894]	-	-	39,066
·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지원	**14,980**	**14,980**	**14,980 [14,606]**	-	-	16,060	16,060	16,060	14,180 [11,776]	16,060	14,180 [11,776]	-	-	17,003
-자치단체경상보조 (330-01)	14,891	14,891	14,891 [14,524]	-	-	15,971	15,971	15,971	14,113 [11,726]	15,971	14,113 [11,726]	-	-	16,914
-자치단체자본보조 (330-03)	89	89	89 [82]	-	-	89	89	89	67 [50]	89	67 [50]	-	-	89
·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운영지원	**20,035**	**20,035**	**20,035 [19,634]**	-	-	20,622	20,622	20,622	18,569 [11,290]	20,622	18,569 [11,290]	-	-	21,891
-자치단체경상보조 (330-01)	19,739	19,739	19,739 [19,488]	-	-	20,526	20,526	20,526	18,473 [11,232]	20,526	18,473 [11,232]	-	-	21,795
-자치단체자본보조 (330-03)	296	296	296 [146]	-	-	96	96	96	96 [58]	96	96 [58]	-	-	96
·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등 서비스 지원	**3,540**	**3,540**	**3,540 [3,355]**	-	-	3,540	3,540	3,540	3,447 [2,757]	3,540	3,447 [2,757]	-	-	-
-자치단체경상보조 (330-01)	3,540	3,540	3,540 [3,355]	-	-	3,540	3,540	3,540	3,447 [2,757]	3,540	3,447 [2,757]	-	-	-
· 성폭력증거채취 응급키트	**172**	**172**	**140**	**-**	**32**	172	172	172	71	172	71	-	-	172
-일반수용비(210-01)	172	172	140	-	32	172	172	172	71	172	71	-	-	172
·성폭력 안전 실태조사	**686**	**686**	**672**	**-**	**14**	-	-	-		-	-	-	-	-
-일반연구비(260-01)	686	686	672	-	14	-	-	-		-	-	-	-	-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성폭력 피해자 지원)** 성폭력 피해자에게 상담, 의료, 법률, 보호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통해 신속한 피해 회복 지원

- (성폭력 피해상담소 및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상담, 의료, 법률, 보호 등 서비스 제공을 위해 상담소, 보호시설의 운영 지원
-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운영 지원)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상담, 의료, 수사 등 통합 지원을 위해 통합지원센터(해바라기센터)의 운영 지원
-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등 서비스 지원) 성폭력 피해자, 가족, 친지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원활히 회복되도록 의료비, 돌봄비, 치료동행 서비스, 치료회복 프로그램 등 제공
- (성폭력 증거채취 응급키트) 성폭력 피해 사건의 법의학적 증거를 신속히 채취하기 위한 응급키트를 제작하여 관련 의료기관 등에 배포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 제10조, 제12조, 제18조, 제26조, 제28조 등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을 방지하고 성폭력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를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성폭력 신고체계의 구축·운영
2. 성폭력 예방을 위한 조사·연구, 교육 및 홍보
3.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
4. 피해자에 대한 주거지원, 직업훈련 및 법률구조 등 사회복귀 지원
5.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운영
6. 성폭력 예방을 위한 유해환경 개선
7.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정비와 각종 정책의 수립·시행 및 평가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따른 예산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성폭력 실태조사)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성폭력의 실태를 파악하고 성폭력 방지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3년마다 성폭력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성폭력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상담소의 설치·운영)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피해상담소(이하 “상담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2조(보호시설의 설치·운영 및 종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8조(피해자를 위한 통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 피해상담, 치료, 제7조의2제2항에 따른 기관에 법률상담등 연계, 수사지원, 그 밖에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업

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이하 “통합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26조(경비의 보조)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상담소, 보호시설 또는 통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경비를 보조할 때에는 제4조에 따른 성폭력 실태조사와 제25조에 따른 평가 및 제32조에 따른 보고 등의 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28조(의료비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7조제2항에 따른 치료 등 의료 지원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추진경위

- ’94년「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제정·시행
- ’95년 성폭력상담소 운영지원 신규 지원
- ’95년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신규 지원
- ’02년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 및 성폭력 응급키트 제작 지원

  ※『성폭력피해자 의료지원체계 개선대책, 2002년』의 일환
- ’04년 성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지원(당초 복권기금)
- ’09년 아동성폭력 재발방지 대책 수립(’09.10월)
- ’10년 아동안전 보완대책 수립(’10.6월), 친족피해자아동청소년전용쉼터 신규설치 지원
-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운영
  - ’04년 해바라기 아동센터 운영시작
  - ’05년 원스톱지원센터(위기지원형) 운영시작
  - ’10년 해바라기 여성·아동센터(통합형) 운영시작
- ’10~’19년「여성·아동폭력피해 중앙지원단」운영
- ’11년「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정·시행, 장애인 대상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대책(’11.10월) 및 보완 대책(’11.12월) 수립

  ※ 법 제정에 따라 의무경비 지원 시행(시설입소자 생계비, 퇴소자자립지원금 등)
- ‘13년 성폭력 방지 종합대책 발표(’13.6월)
- ‘14년 성폭력 피해자 간병비·돌봄비용·치료동행서비스 등 신규 서비스 지원
- ‘15년 3종류의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명칭을 ‘해바라기센터’로 일원화(’15.1월)
- ’17년「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및「공공부문 성희롱 방지 대책」수립
- ’18년「직장 및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이주여성 성희롱·성폭력 피해 방지 보완대책」및「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수립(‘18.3월)
- ‘21년「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 시행(’21.7.13)

  ※ 성폭력사건 발생시 여성가족부로 통보 및 수사기관 신고 의무화, 재발방지대책 제출
- ‘25년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퇴소자립지원수당 신설 및 신규 서비스 지원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94년~(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3	2024	2025	2026	2027(안)
사업비	37,537	37,354	39,413	40,394	39,066

- 기타: 성폭력피해 상담소(96개소),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35개소), 해바라기센터(41개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지자체보조(50~100%)
- 사업시행주체 : 성평등가족부,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등
- 사업 수혜자 : 성폭력 피해자 및 동반가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7계획안)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성폭력 피해자 지원	보조	지자체 보조	39,066	50~10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3) 2027년도 계획안 산출 근거

ㅇ성폭력 피해자 지원

: ('26) 40,394백만원 → ('27) 39,066백만원, △1,328백만원 감액

- (요구) 종사자 처우개선, 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인건비·운영비 등 예산 요구
- (산출) ① 상담소 및 보호시설 운영·지원 17,003백만원, ② 통합지원센터 운영·지원 21,891백만원, ③ 성폭력 증거채취 응급키트 지원 172백만원

ㅇ 2026년도 계획 및 2027년도 계획안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6년 계획		2027년 계획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40,394	① **성폭력 피해 상담소 및 보호시설 운영 지원** : 16,060백만원 □ (성폭력 피해 상담소 운영 지원) 8,654백만원 ○ (인건비) 149~186백만원×99개소×50~70% = 7,799백만원 ○ (운영비) 15~27백만원×99개소×50~70% = 855백만원 □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 7,406백만원 ○ 보호시설 인건비, 운영비 지원 : 6,288백만원 - (인건비) 184~295백만원×35개소×50~70% = 5,674백만원 - (운영비) 16~39백만원×35개소×50~70% = 614백만원 ○ 보호시설 사업비 지원 : 1,029백만원	39,066	① **성폭력 피해 상담소 및 보호시설 운영 지원** : 17,003백만원 □ (성폭력 피해 상담소 운영 지원) 9,081백만원 ○ (인건비) 162~203백만원×96개소×50~70% = 8,264백만원 ○ (운영비) 14~26백만원×96개소×50~70% = 817백만원 □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 7,922백만원 ○ 보호시설 인건비, 운영비 지원 : 6,804백만원 - (인건비) 201~321백만원×35개소×50~70% = 6,190백만원 - (운영비) 16~39백만원×35개소×50~70% = 614백만원 ○ 보호시설 사업비 지원 : 1,029백만원

2026년 계획		2027년 계획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 생계비, 퇴소자립지원금 및 퇴소자립지원수당 등 : 1,029백만원 ○ 보호시설 기능보강 개보수, 증개축비, 기자재비 등 89백만원 - 5,100천원×35개소×50% = 89백만원 ②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운영 지원** : 20,622백만원 □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인건비, 운영비 등 지원 20,526백만원 ○ (위기지원형) 평균 579,350천원×18개소×50~70%=7,102백만원 ○ (아동형) 평균 738,180천원×7개소×50~70%=3,460백만원 ○ (통합형) 평균 863,117천원×16개소×50~70%=9,439백만원 ○ (거점) 525백만원×1개소×100%= 525백만원 □ 통합지원센터 기능보강비(개보수비, 기자재비) 96백만원 - 5백만원×42개소×50% = 96백만원 ③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등 지원** : 3,540백만원 □ 의료비·간병비 지원 : 2,134백만원 ○ (의료비) 170천원 × 19천명 × 50~70% = 2,108백만원 ○ (간병비) 2,502천원 × 16명 × 50~70% = 26백만원 □ 성폭력 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 운영 지원 : 474백만원 ○ (치료회복프로그램) 984명×718천원×50~70%= 474백만원 □ 피해자 치료동행 서비스, 기타 부대비용 등 지원 932백만원 ○ (치료동행 서비스) 49백만원×24개소×50~70% = 778백만원 ○ (부대비용) 6백만원×41개소×50~70% = 154백만원 ④ **성폭력 증거채취 응급키트 지원** : 172백만원 □ 응급키트 제작비 4,000개×43.2천원×100% = 172백만원		- 생계비, 퇴소자립지원금 및 퇴소자립지원수당 등 : 1,029백만원 ○ 보호시설 기능보강 개보수, 증개축비, 기자재비 등 89백만원 - 5,100천원×35개소×50% = 89백만원 ②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운영 지원** : 21,891백만원 □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인건비, 운영비 등 지원 21,795백만원 ○ (위기지원형) 평균 616,350천원×18개소×50~70%=7,556백만원 ○ (아동형) 평균 777,820천원×7개소×50~70%=3,624백만원 ○ (통합형) 평균 918,340천원×16개소×50~70%=10,048백만원 ○ (거점) 567백만원×1개소×100%= 567백만원 □ 통합지원센터 기능보강비(개보수비, 기자재비) 96백만원 - 5백만원×42개소×50% = 96백만원 ③ **성폭력 증거채취 응급키트 지원** : 172백만원 □ 응급키트 제작비 4,000개×43.2천원×100% = 172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3~2027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3	2024	2025	2026	2027	2027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이용자 만족도(점)	목표	91.9	92.0	92.9	93.0	93.2	만족도 지표특성을 고려하여 '25년 실적치와 '26년 목표치의 평균과 '26년 목표치보다 0.1점 상향하여 목표치로 설정	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상담소, 보호시설, 해바라기센터) 이용자 대상 만족도 점수 평균	설문조사 결과
	실적	92.0	92.8	93.2	-	-			
	달성도	100.1	100.9	100.3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3	○ 장애인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1개소 신규 설치
2024	○ 해바라기센터(위기지원형, 충남) 1개소 신규 설치
2025	○ 해바라기센터(위기지원형, 전남) 1개소 신규 설치

③ 향후(2027년도 이후) 기대효과

-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자립지원금·수당 지원 등 피해자 직접 지원 강화 및 성폭력상담소, 해바라기센터 운영 등을 통한 피해자의 2차 피해 최소화 및 조속한 회복 지원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성폭력피해 상담소 및 보호시설 운영 지원

·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운영지원

<table>
<tr><td>부처</td><td></td><td>피출연·피보조 기관</td><td></td><td>간접보조사업자·사업수행자</td></tr>
<tr><td rowspan="2">성평등가족부 (38,894)</td><td>=> (17,003백만원)</td><td rowspan="2">17개 시도</td><td>=> (17,003백만원)</td><td>상담소 96 소 보호시설 35개소</td></tr>
<tr><td>=> (21,891백만원)</td><td>=> (21,891백만원)</td><td>해바라기센터 41개소</td></tr>
</table>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경비의 보조)

· 성폭력 증거채취 응급키트

<table>
<tr><td>부처</td><td></td><td>수행기관</td><td></td><td>사업수행자</td></tr>
<tr><td>성평등가족부 (응급키트 제작 및 배포)</td><td>=> (배포) <= (배포요청)</td><td>17개 시도</td><td>=> (배포) <= (배포요청)</td><td>해바라기센터, 성폭력피해자 전담의료기관</td></tr>
</table>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등의 책무)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25~2029	39,413	45,138	47,723	50,807	54,104	
2026~2030		40,394	49,089	52,196	55,611	59,256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해바라기센터 종사자들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준하는 적용을 받거나 사회복지사와 같은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24년 국정감사)

○ 의료공백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일부 해바라기센터에서 성폭력피해자 증거채취를 위한 응급조치가 제한되어 지역 의료기관이나 인근 해바라기센터로 연계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연계된 곳이 경험 부족으로 피해자들을 세심하게 살펴보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것('24년 국정감사)

2) 감사원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 해당없음

3) 자체평가

○ 2025년 성평등가족부 자체평가 : 4등급

4)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 해당없음

5)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하여 중기사업계획('25~'29년)에 인건비 증액을 요청하였으며, 관계부처 협의를 추진하는 등 지속 노력하겠음

○ '25년 해바라기센터 지침 개정으로 종사자 인건비 지급 연령 기준을 완화함

○ 성폭력 피해자 전담의료기관 및 인근 해바라기센터 의료진의 응급키트 활용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찾아가는 응급키트 교육(거점센터)을 연중 추진함

* 대면교육('24.11.22.) 및 비대면 교육 실시, 전담의료기관에 응급키트 관련 설명서 및 동영상 기 배포('24.3.20.)

○ 해바라기센터 사회복지시설 지정('26.7월)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적용

○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 시 지원되는 퇴소자립지원금 지급요건 완화*('24.1월)하고 퇴소자립지원금 단가 인상(5→10백만원) 및 퇴소자립지원수당(월50만원, 신설)을 '25년 예산에 반영하여 직접지원을 강화함

* (기존) 입소 후 1년 이상 경과 → (완화) 입소 후 6개월 이상 경과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성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의 운영여건, 종사자 처우 개선 등으로 피해 지원 서비스의 품질 향상
- 피해자 통합지원 서비스의 내실화를 위해 해바라기센터의 전문성을 제고하여 실질적인 통합지원체계 마련(상담 및 치료 전문가 확충, 시설 접근성 제고 등)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2023년 보조사업연장평가 결과 : 사업방식 변경(피해자 보호시설 입소율 향상 필요)

12) 동 사업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 : 해당없음

13) 2026년도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 결과 및 후속 조치 현황

평가결과	성과평가 주요내용	조치결과
사업개선	- 성과지표 상으로 목표치를 상회하였으나 보다 도전적인 목표치 설정 필요	- 만족도 지표특성을 고려하여 '25년 실적치와 '26년 목표치의 평균과 '26년목표치보다 0.1점 상향하여 목표치로 설정 * ('26) 93.0% → (27)93.2%

14) 부처 건의사항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증감액	수정(A)							
2023	37,537	-	37,537	-	37,537	36,732 [35,182]	97.9	97.9	-	805
2024	37,354	-	37,354	-	37,354	37,313 [35,914]	99.9	99.9	-	41
2025	39,413	-	39,413	-	39,413	39,367 [38,407]	99.9	99.9	-	46
'26.7	40,394	-	40,394	-	40,394	36,268 [25,894]	89.8	89.8	-	-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계획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당초	수정(A)								
2023	37,365	37,365	36,593	36,593	158	36,751	35,043	373	1,335	93.8
2024	37,182	37,182	37,171	37,171	373	37,544	35,772	295	1,477	96.2
2025	38,555	38,555	38,555	38,555	295	38,850	37,595	150	810	97.5
2026. 7월기준	40,222	40,222	36,196	36,196	-	36,196	25,823	집행중	집행중	64.2

2) 주요 결산사항

□ 2023~2026년 결산사항

2023	- 불용 805백만원 : 응급키트 구매 낙찰차액(33), 지자체 보조사업 집행잔액(772)
2024	- 불용 41백만원 : 응급키트 구매 낙찰차액(30), 지자체 보조사업 집행잔액(11)
2025	- 불용 46백만원 : 응급키트 구매 낙찰차액(32), 성폭력 실태조사 연구용역 낙찰차액(14)
2026	- 해당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1) 해바라기센터(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사업 설명자료

(2) 성폭력 피해 상담소·보호시설 및 지원 서비스 설명자료

참고 1 해바라기센터(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 개요

□ 해바라기센터 개요

○ **(목적)**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피해자에 대하여 상담, 의료, 법률, 수사지원을 통합 제공함으로써, 피해자가 폭력피해로 인한 위기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2차 피해 방지

○ **(근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 **(추진주체)** 성평등가족부, 시·도, 지방경찰청, 운영기관(병원 등)

○ **(기능별 센터 유형)** 위기지원형, 아동형, 통합형

('26.7월 기준, 단위 : 개소)

구분	위기지원형	아동형	통합형
연혁	2005 ~	2004 ~	2010 ~
대상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자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및 지적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자
개소수	18개	7개	16개
근무 형태	**365일 24시간**	09:00 ~ 18:00 * 18시 이후 재택당직근무 실시	**365일 24시간**
경찰 근무	여경 배치 (상주)	여경 출장 지원	여경 배치 (상주)
주요 업무	상담·의료·수사·법률 지원	상담·의료·법률·심리지원 (여경 출장으로 수사지원 가능)	상담·의료·수사·법률·심리지원

□ 해바라기센터 설치·운영 현황

○ **(41개소 운영)** 위기지원형 18개소, 아동형 7개소, 통합형 16개소

<시·도별 센터 설치 현황>

('26.7월 기준, 단위 : 개소)

구 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센터 수	41	5	2	2	3	2	1	1	6	3	2	2	3	3	3	2	1

참고 2 성폭력 피해 상담소·보호시설 및 지원 서비스 개요

□ 사업 개요

○ 성폭력피해자 및 그 가족 대상 상담·의료·수사·법률·보호·숙식 제공 등 서비스 제공을 통해 건강한 사회인으로 복귀 및 자립지원

□ 주요 내용

구분		주요 기능
성폭력 피해 상담소	일반	성폭력피해자 대상 상담, 보호시설 및 의료기관 연계, 의료·법률지원, 치료회복프로그램 등 운영
	장애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일반	성폭력피해자 대상 상담, 보호 및 숙식제공, 의료·법률지원, 학업·자립지원 등
	장애	장애인 성폭력피해자 대상 상담, 보호 및 숙식제공, 의료·법률지원, 학업·자립지원 등
	특별지원	19세 미만 친족에 의한 성폭력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담, 보호 및 숙식제공, 의료·법률지원, 취학·진학 및 취업프로그램 지원 등
	(장애) 자립지원	(장애인) 보호시설 퇴소자의 자립을 위한 훈련·프로그램 등 지원

○ 피해자 지원서비스 제공

의료비 지원	성폭력 피해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치료, 낙태 및 출산 비용, 성매개 감염 검사 등
간병비 지원	입원 중인 성폭력 피해자가 가족으로부터 간병 지원을 받기 어려운 경우 지원
치료회복프로그램 지원	집단상담, 미술심리치료, 인지행동치료, 심신회복캠프 등 다양한 치유 프로그램 지원
무료법률지원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에 무료로 법률구조 지원

※ 의료·간병·치료회복프로그램 비용 : 범죄피해자보호기금 / 무료법률지원 : 양성평등기금

□ 시설 현황용('26.7월 기준)

○ 성폭력 피해 상담소

(단위 : 개소)

계	서울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99	17	1	3	3	2	2	1	16	4	6	9	6	7	7	13	2

○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단위 : 개소)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35	2	3	1	2	3	2	1	4	1	3	1	2	2	2	3	3

사 업 명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1136-305)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범죄피해자 보호기금	법무부	인권국	기금	020	022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36	305
명칭	인권활동	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지원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6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100.0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인권국	차경자	임윤규	고재호
		여성아동인권과	02-2110-3647	02-2110-3648	02-2110-3140

가. 지출계획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25년 결산	2026년 계획		2027년		증감 (B-A)	
		당초(A)	수정	요구안	조정안(B)		(B-A)/A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12,113	12,145	12,145	14,230	13,255	1,110	9.1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계획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25					2026(2026.7월말)								2027 계획안
	계획액 (수정)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당초	수정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13,225	13,225	12,113	-	1,112	12,145	11,925	11,925	7,956	12,145	7,956	-	-	13,255
· 국선전담변호사 운영	5,851	5,851	5,851 [5,155]	-	-	5,551	5,551	5,551	4,163	5,551	4,163	-	-	6,661
· 국선변호사 수당	7,315	7,315	6,205	-	1,110	6,535	6,315	6,315	3,762	6,535	3,762	-	-	6,535
· 교육, 홍보, 점검 등	59	59	57	-	2	59	59	59	31	59	31	-	-	59
○ 비목별 분류(합계)	13,225	13,225	12,113	-	1,112	12,145	11,925	11,925	7,956	12,145	7,956	-	-	13,255
· 일반수용비 (210-01)	7,325	7,325	6,215	-	1,110	6,545	6,315	6,315	3,767	6,545	3,767	-	-	6,545
· 일반용역비 (210-14)	26	26	25	-	1	26	26	26	13	26	13	-	-	26
· 국내여비(220-01)	5	5	4	-	1	5	5	5	3	5	3	-	-	5
· 사업추진비 (240-01)	18	18	18	-	-	18	18	18	10	18	10	-	-	18
· 민간경상보조 (320-01)	5,851	5,851	5,851 [5,155]	-	-	5,551	5,551	5,551	4,163	5,551	4,163	-	-	6,661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13,225	13,225	12,113	-	1,112	12,145	11,925	11,925	7,956	12,145	7,956	-	-	13,255
· 국선전담변호사 운영	5,851	5,851	5,851 [5,155]	-	-	5,551	5,551	5,551	4,163	5,551	4,163	-	-	6,661
- 민간경상보조 (320-01)	5,851	5,851	5,851 [5,155]	-	-	5,551	5,551	5,551	4,163	5,551	4,163	-	-	6,661
· 국선변호사 수당	7,585	7,315	6,205	-	1,110	6,535	6,315	6,315	3,762	6,535	3,762	-	-	6,535
- 일반수용비 (210-01)	7,585	7,315	6,205	-	1,110	6,535	6,315	6,315	3,762	6,535	3,762	-	-	6,535
· 교육, 홍보, 점검 등	59	59	59	-	2	59	59	59	31	59	31	-	-	59
- 일반수용비 (210-01)	10	10	10	-	-	10	10	10	5	10	5	-	-	10
- 일반용역비 (210-14)	26	26	25	-	1	26	26	26	13	26	13	-	-	26
-국내여비(220-01)	5	5	4	-	1	5	5	5	3	5	3	-	-	5
- 사업추진비 (240-01)	18	18	18	-	-	18	18	18	10	18	10	-	-	18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국선전담변호사 운영)** 성폭력·아동학대·장애인학대·인신매매·스토킹범죄·강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다 신속하고 전문적인 법률조력을 제공하기 위해 피해자 국선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를 채용 및 배치하여 법률조력 서비스의 지역별 불균형 해소
- **(국선변호사 수당)** 성폭력·아동학대·장애인학대·인신매매·스토킹범죄·강력범죄 피해자를 대상으로 사건 초기부터 수사, 재판에 이르기까지 전문적인 법률조력을 제공하는 비전담 피해자 국선변호사에 대한 수당 지급

  ※ 각급 검찰청별로 관할 내 국선변호사 명부를 작성,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경우 전담국선변호사에게는 급여를 지급하므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비전담 국선변호사에게는 활동 내역에 따른 수당을 지급
- **(교육, 홍보, 점검)** 피해자 국선변호사 대상 전문화 교육 실시를 통한 전문성 강화, 수사기관 및 피해지 지원 기관 등에 제도 홍보, 실태조사 실시 등 제도 관리·감독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헌법」
제30조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인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①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이하 “피해자등”이라 한다)은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피해자등에 대한 조사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조사 도중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 증거보전절차, 공판준비기일 및 공판절차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절차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증거보전 후 관계 서류나 증거물,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나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형사절차에서 피해자등의 대리가 허용될 수 있는 모든 소송행위에 대한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진다.
⑥ 검사는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피해아동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① 아동학대범죄의 피해아동 및 그 법정대리인은 형사 및 아동보호 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피해아동 및 그 법정대리인에 대한 조사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조사 도중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 증거보전절차, 공판준비기일 및 공판절차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절차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증거보전 후 관계 서류나 증거물,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나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형사 및 아동보호 절차에서 피해아동 및 그 법정대리인의 대리가 허용될 수 있는 모든 소송행위에 대한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진다.

⑥ 검사는 피해아동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형사 및 아동보호 절차에서 피해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0조(피해아동 · 청소년 등에 대한 변호사선임의 특례)

① 아동 · 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은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변호사에 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5(피해장애인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① 장애인학대사건의 피해장애인 및 그 법정대리인은 형사 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변호사에 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변호사 선임의 특례)

① 범죄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은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변호사에 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피해자”는 “범죄피해자”, “피해자등”은 “범죄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으로 본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4(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①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은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받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임된 변호사(이하 이 조에서 “변호사”라 한다)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에 대한 조사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조사 도중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변호사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 증거보전절차, 공판준비기일 및 공판절차에 출석

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절차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④ 변호사는 증거보전 후 관계 서류나 증거물,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나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다.
⑤ 변호사는 형사절차에서 피해자 및 법정대리인의 대리가 허용될 수 있는 모든 소송행위에 대한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진다.
⑥ 검사는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① 특정강력범죄사건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은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받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임된 변호사(이하 이 조에서 "변호사"라 한다)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에 대한 조사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조사 도중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변호사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 증거보전절차, 공판준비기일 및 공판절차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④ 변호사는 형사절차에서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의 대리가 허용될 수 있는 모든 소송행위에 대한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진다.
⑤ 검사는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다만, 19세 미만인 피해자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에는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법무부령 - 전체)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12. 3.)「청소년성보호법 개정,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국선변호사 제도 도입
- ('13. 6.)「성폭력처벌법」개정, 전체 성폭력범죄 피해자로 지원대상 확대
- ('13. 7.)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제도 도입, 시행
- ('14. 9.)「아동학대처벌법」개정 , 지원 대상에 아동학대범죄 피해아동 추가
- ('20. 11.)「청소년성보호법」개정, 피해아동·청소년에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추가
- ('21. 3.)「아동학대처벌법」개정, 아동학대범죄의 피해아동에 대한 국선변호사 의무적 선정
- ('21. 6.)「장애인복지법」개정, 지원 대상에 장애인학대사건 피해장애인 추가
- ('23. 1.)「인신매매방지법」제정, 지원 대상에 인신매매등범죄 피해자 추가
- ('23. 10.)「성폭력처벌법」개정, 19세미만피해자등에 대한 국선변호사 의무적 선정
- ('24. 1.)「스토킹처벌법」개정, 지원 대상에 스토킹범죄 피해자 추가
- ('25. 12.)「특정강력범죄법」개정, 지원 대상에 강력범죄 피해자 추가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12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3	2024	2025	2026	2027(안)
사업비	9,707	11,740	13,225	12,145	13,255

- 기타: '25년 피해자 국선변호사 38,605건 지원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민간경상보조
- 사업시행주체 : 법무부 → 각급 검찰청, 대한법률구조공단
- 사업수혜자 : 성폭력·아동학대·장애인학대·인신매매·스토킹범죄·강력범죄 피해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7계획안)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국선전담 변호사 운영	보조	대한법률 구조공단	6,661	100	법률구조법 제4조

3) 2027년도 계획안 산출 근거

① 국선전담변호사 운영

: (2026) 5,551백만원 → (2027요구) 6,661백만원, 1,110백만원 증액

- (요구) 강력범죄 피해자 지원 및 법률조력 지역편차 완화를 위한 전담인력 7명 증원
- (산출) (경력 2년 미만) 7명 x 97.5백만원
  (경력 2~4년) 23명 x 111.8백만원
  (경력 4년 이상) 27명 x 126.3백만원

② 국선변호사 수당

: (2026) 6,535백만원 → (2027요구) 6,535백만원, 전년동

- (요구) 강력범죄 피해자 지원 및 법률조력 확대를 위해 전년 수준 요구
- (산출) 25,329건(비전담변호사 지원 예상 건수) × 258천원(전년 단가 유지)

③ 교육, 홍보, 점검

: (2026) 59백만원 → (2027요구) 59백만원, 전년동

- (요구) 강력범죄 피해자 지원 및 법률조력 확대를 위해 전년 수준 요구
- (산출) 26백만원(전문화 교육) + 10백만원(홍보) + 23백만원(지도점검 및 간담회 등)

ㅇ 2026년도 계획 및 2027년도 계획안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6년 계획		2027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2,145	○ **국선전담변호사 운영** - **민간경상보조(320-01) : 5,551백만원** ・ 급여 : 23명×6,010천원×12월+7명×7,010천원×12월+20명 ×8,010천원×12월=4,170,000천원 ・ 4대보험료 : 23명×6,010천원×12월×11.47% +7명×7,010천원×12월×11.47% +20명×8,010천원×12월×11.47%=467,874천원 ・ 퇴직금 : 23명×6,010천원+7명×7,010천원+20명×8,010천원=347,500천원 ・ 운영비 : 50명×882천원×12월=529,561천원 ・ 교육비 : 50명×510천원=25,500천원 ○ **국선변호사 수당** - **일반수용비(210-01) : 25,329건 x 258천원 = 6,535백만원** ○ **교육, 홍보, 점검** - **일반수용비(210-01) :** 10백만원(제도 홍보) - **일반용역비(210-14) :** 26백만원(전문화 교육) + 10백만원(홍보) + 23백만원(지도점검 및 간담회 등) - **국내여비(220-01) : 5**백만원(지도점검 및 간담회 등) - **사업추진비(240-01) : 18**백만원(지도점검 및 간담회 등)	13,255	○ **국선전담변호사 운영** - **민간경상보조(320-01) : 6,661백만원** ・ 급여 : 7명×6,010천원×12월 +23명×7,010천원×12월 +27명×8,010천원×12월=5,034,840천원 ・ 4대보험료 : 7명×6,010천원×12월×11.47% +23명×7,010천원×12월×11.47% +27명×8,010천원×12월×11.47%=557,496천원 ・ 퇴직금 : 7명×6,010천원 +23명×7,010천원 +27명×8,010천원 =419,570천원 ・ 운영비 : 57명×900천원×12월=615,600천원 ・ 교육비 : 57명×580천원=33,060천원 ○ **국선변호사 수당** - **일반수용비(210-01) : 25,329건 x 258천원 = 6,535백만원** ○ **교육, 홍보, 점검** - **일반수용비(210-01) :** 10백만원(제도 홍보) - **일반용역비(210-14) :** 26백만원(전문화 교육) + 10백만원(홍보) + 23백만원(지도점검 및 간담회 등) - **국내여비(220-01) : 5**백만원(지도점검 및 간담회 등) - **사업추진비(240-01) : 18**백만원(지도점검 및 간담회 등)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3~2027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3	'24	'25	'26	'27	'26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사회적 취약계층 법률지원 실적(건)	목표	신규	16,195	17,550	18,076	19,890	'25년 목표치 대비 3% 상향	주요 사회적 취약계층 (장애인, 한부모가족, 범죄피해자, 소액임차인, 북한이탈주민 등) 법률구조 건수	대한법률구조공단 전산통계 프로그램
	실적	17,239	신규	20,066	-	-			
	달성도	신규	신규	114.3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3	○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8명 증원(총 43명) ○ 피해자 국선변호사 평가 및 실태조사 상·하반기 실시 ○ 총 37,150건 지원
2024	○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퇴직인원 충원(총 43명) ○ 피해자 국선변호사 평가 및 실태조사 상·하반기 실시 ○ 총 37,605건 지원
2025	○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신규채용 및 퇴직인원 6명 충원(총 48명) ○ 피해자 국선변호사 평가 및 실태조사 상·하반기 실시 ○ 총 38,507건 지원
2026	○ 살인, 강도 등 강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국선변호사 지원 확대 실시

③ 향후(2027년도 이후) 기대효과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으로 '26. 6월부터 강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 확대 실시 예정으로, 연간 약 1,480건 추가 지원 예상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사항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① 국선전담변호사 운영(보조사업)

추진절차	시행주체	절차내용
① 예산 편성 및 제도 관리	법무부	예산 편성 및 제도 전반 관리
⇩		
② 인력 및 예산 운용	대한법률구조공단	인력 채용 및 배치, 운영, 예산 집행
⇩		
③ 보조금 점검	법무부	실적 및 교부금 사용 점검

② 국선변호사 수당(직접사업)

추진절차	시행주체	절차내용
① 예산 집행 및 정책 편성	법무부	비전담 피해자 국선변호사 수당 지급
⇩		
② 관할 지역 국선변호사 명부 작성 및 선정	지방검찰청	국선변호사 선정 검토 및 지원 결정, 수당 산정
⇩		
③ 실적 취합 및 관리	대검찰청	국선변호사 지원 실적 관리
⇩		
④ 실적 점검	법무부	국선변호사 지원 체계 점검 및 제도 개선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5	'26	'27	'28	'29	'30
'25~'29	13,495	12,145	11,538	11,295	10,931	
'26~'30		12,145	14,676	15,825	16,541	16,541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피해자 국선변호사 전문화 교육 관련 예산 비목을 사업 추진방식에 부합하는 비목으로 조정할 필요(법사위, '24예산)
- 고소장 작성 대행 등의 초기 단계에서도 피해자 국선변호사가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운영방안의 개선 등을 고려할 필요(예결위, '23결산)
- 성과지표를 성폭력·아동학대 사건 접수 건수 대비 국선변호사 지원 건수로 개선할 것(예결위, '23결산)

2) 감사원 감사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 해당없음

3) 자체평가·감사 : 해당없음

4)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의 경우 지난 10년간 월 500만 원대로 급여가 동결되어 처우 개선 시급(법률신문, '24. 7.)
- 형소법 절차 늘었는데 피해자 법률 지원할 국선변호사는 태부족(동아일보, '26.8.)

5)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일반수용비(210-01), 임차료(210-07), 기타운영비(210-16)로 편성되어 있던 피해자 국선변호사 전문화 교육 예산 비목을 일반용역비(210-14)로 변경
- 성폭력상담소, 해바라기센터 등 피해자 지원 기관에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홍보 포스터 및 리플릿 배포
- '25년도 성인지 예산서의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사업 성과지표를 "성폭력·아동학대 등 사건 접수 건수 대비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건수 비율(%)"로 변경
-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보수 현실화를 위한 예산 935백만원 증액하여 법원 피고인 국선변호인 수준으로 보수 인상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형사사법체계 변화에 대응하여 범죄피해자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피해자 국선변호 인력 및 예산 확충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1) '26년 통합재정성과평가, 보조사업연장평가 : 사업개선

12) 동 사업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

회계연도	등급	자체평가 주요내용	조치결과
2023	보통	-	-
2024	보통	-	-
2025	미흡	- 반복적 불용 발생 및 외부적 성과 미흡	- '26년 예산 10% 감축 편성
2026	-	-	-

13) 2026년도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 결과 및 후속 조치 현황

평가결과	성과평가 주요내용	조치결과
사업개선	- 최근 범죄 발생 양상 및 지원 신청 추이의 변동성을 고려하여, 실제 수요에 부합하는 탄력적인 예산 운용 체계 마련	- 살인, 강도 등 강력범죄 피해자 지원 확대 대비하여 국선전담변호사 증원 예산 요구

14) 부처 건의사항

- 형소법 개정으로 도입된 이의신청, 기록열람등사, 면담요청 등 피해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국선변호사의 법률조력 필요성이 더욱 증대된 상황임
- 국선변호사 법률지원 대상 확대에 따른 수요 증가에 대비하고, 전문적·안정적 법률조력 및 전담 변호사 미배치로 인한 지역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국선 **전담 변호사** 증원이 필요하므로 예산 확충 필요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증감액	수정(A)							
2023	9,707	-	9,707	-	9,707	9,704	99.9	99.9	-	3
2024	12,560	-	11,740	-	11,740	11,334	96.5	96.5	-	406
2025	13,495	-	13,225	-	13,225	12,113	91.6	91.6	-	1,112
'26.7.	12,145	△220	11,925	-	11,925	7,956	66.7	66.7	-	-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계획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당초	수정(A)								
2023	4,223	4,223	4,223	4,223	-	4,223	3,766	-	467	88.9
2024	4,916	4,916	4,916	4,916	-	4,916	4,182	-	734	85.0
2025	5,851	5,851	5,851	5,851	-	5,851	5,155	-	696	88.1
'26. 7.	5,551	5,551	4,163	4,163	-	4,163	3,006	-	-	54.2

2) 주요 결산사항

□ 2023~2026년 결산사항

2023	- 해당사항 없음
2024	- 국선변호사 수당 계획변경 △820백만원 - '24년 형사조정위원 수당 예산 부족하여 800백만원 계획변경, 교육인원 증가 및 물가상승 등에 따른 진술조력인 양성 교육 예산 부족으로 20백만원 계획변경
2025	- 국선변호사 수당 계획변경 △270백만원 - '25년 범죄피해자 등 신변보호 강화 사업 예산 부족으로 피해자 국선변호사 수당 예산 270백만원 계획 변경 - '25년 재정사업 자율평가 미흡으로 '26년 예산 10% 감액 조기 확정되어 '26년 예산 수준에 맞추어 인건비 등 지출하여 불용액 발생
2026	- 국선변호사 수당 계획변경 △220백만원 - '26년 범죄피해자 이전비 등 부족으로 피해자 국선변호사 수당 예산 220백만원 계획 변경

□ 2026년 계획변경 세부내역 :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 해당없음

사 업 명
기금관리비 (7110-3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범죄피해자 보호기금	법무부	인권국		020	022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10	300
명칭	기금운영비	기금관리비	기금관리비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6예산 시 소관
	ㅇ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ㅇ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범죄피해자 치료 및 자립지원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인권국	반 지	김현우 서기관	김도후
		인권구조과	02-2110-3641	02-2110-3644	02-2110-3746

가. 계획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년 결산	2026년 계획(A)	2027년		증감 (B-A)	(B-A)/A
			요구안	조정안(B)		
기금관리비	34	60	64	64	4	6.7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25					2026('26.7월말)							2027 계획안
	계획액 (수정)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48	48	34	-	-	60	60	31	60	31	-	-	64
·사무원 인건비	35	35	21	-	-	41	41	20	41	20	-	-	46
·기금 업무 등	13	13	13	-	-	19	19	11	19	12	-	-	18
○ 비목별 분류(합계)	48	48	34	-	-	60	60	31	60	31	-	-	64
·상용임금(110-03)	28	28	18	-	-	34	34	17	34	17	-	-	38
·일반수용비(210-01)	5	5	5	-	-	11	11	5	11	5	-	-	10
·특근매식비(210-05)	4	4	4	-	-	4	4	3	4	3	-	-	4
·복리후생비(210-12)	0.5	0.5	0.5	-	-	0.5	0.5	0.5	0.5	0.5	-	-	0.6
·국내여비(220-01)	2	2	2	-	-	2	2	2	2	2	-	-	2
·업무추진비(240-02)	2	2	2	-	-	2	2	2	2	2	-	-	2
·고용부담금(320-09)	6	6	3	-	-	7	7	2	7	2	-	-	8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48	48	31	-	-	60	60	31	60	31	-	-	64
·사무원 인건비	35	35	21	-	-	41	41	20	41	20	-	-	46
-상용임금(110-03)	28	28	18	-	-	34	34	17	34	17	-	-	38
-복리후생비(210-12)	0.5	0.5	0.5	-	-	0.5	0.5	0.5	0.5	0.5	-	-	0.6
-고용부담금(320-09)	6	6	3	-	-	7	7	2	7	2	-	-	8
·기금 업무지원	13	13	13	-	-	19	19	11	19	12	-	-	18
-일반수용비(210-01)	5	5	5	-	-	11	11	5	11	5	-	-	10
-특근매식비(210-05)	4	4	4	-	-	4	4	3	4	3	-	-	4
-국내여비(220-01)	2	2	2	-	-	2	2	2	2	2	-	-	2
-업무추진비(240-02)	2	2	2	-	-	2	2	2	2	2	-	-	2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기금관리주체인 법무부에서 사무보조원 1인을 고용하여 직접 운용
-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운용심의회의 운영을 통해 심도 있는 기금 운용 추구
- 구상권 활성화를 통한 기금 재원 다양화 방안 강구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제6조

>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 1.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
> 2.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
> 3. 다른 법률에 따른 범죄피해자의 보호·지원에 관련된 사업이나 활동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4. 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영을 위한 경비의 지출
> 5. 그 밖에 범죄피해자의 보호·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② 추진경위 : 해당 없음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11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3	2024	2025	2026	2027(안)
사업비	48	48	48	60	64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법무부
- 사업 수혜자 : 해당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3) ’27년도 계획안 산출 근거

① 사무보조원

: (’26) 41백만원 → (’27안) 46백만원, 5백만원 증액

- (산출) 상용임금 38백만원, 복리후생비 0.6백만원, 고용부담금 8백만원

ㅇ 2026년도 예산 및 2027년도 예산안 산출 세부내역 비교

’26년 예산		’27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41	○ 상용임금(110-03) : 34,085천원 가. 사무보조원 기본급 등 ・1명*2,700,417원*12월=32,405천원 나. 사무보조원 정액급식비 ・1명*140,000원*12월=1,680천원 ○ 복리후생비(210-12) : 500천원 가. 사무보조원 맞춤형복지 ・1명*500,000원=500천원 ○ 고용부담금(320-09) : 6,749천원 가. 사무보조원 국민연금 등 사용자부담금 ・34,085,000원*11.47%=3,910천원 나. 사무보조원 퇴직금 적립 ・34,085,000원*8.33%=2,839천원	46	○ 상용임금(110-03) : 37,651천원 가. 사무보조원 기본급 등 ・1명*2,977,583원*12월=35,731천원 나. 사무보조원 정액급식비 ・1명*160,000원*12월=1,920천원 ○ 복리후생비(210-12) : 600천원 가. 사무보조원 맞춤형복지 ・1명*600,000원=600천원 ○ 고용부담금(320-09) : 7,572천원 가. 사무보조원 국민연금 등 사용자부담금 ・37,651,000원*11.783%=4,436천원 나. 사무보조원 퇴직금 적립 ・37,651,000원*8.33%=3,136천원

② 기금 업무

: (’26) 19백만원 → (’27안) 18백만원, 1백만원 감액

- (산출) 기금관련 인쇄비·소모성물품 구입비 등 10백만원, 특매비 4백만원, 업무협의·간담회 4백만원

ㅇ 2026년도 및 2027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6년 예산		’27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9	○ 일반수용비(210-01) : 10,701천원 가. 기금관리 관련 인쇄비, 소모성물품 구입비, 회의비 등 ・ 10,701천원 ○ 특근매식비(210-05) : 3,600천원 가. 기금 업무 특근 매식 ・ 5명*10회*12월*6,000원=3,600천원 ○ 국내여비(220-01) : 2,276천원 가. 기금편성 협의 및 집행점검 ・ 16회*140,000원=2,240천원. 나. 단수조정 36천원 ○ 관서업무추진비(240-02) : 2,089천원 가. 기금편성 협의 및 집행점검 ・ 6회*350,000원=2,089천원	18	○ 일반수용비(210-01) : 10,212천원 가. 기금관리 관련 인쇄비, 소모성물품 구입비, 회의비 등 ・ 10,212천원 ○ 특근매식비(210-05) : 3,600천원 가. 기금 업무 특근 매식 ・ 5명*10회*12월*6,000원=3,600천원 ○ 국내여비(220-01) : 2,276천원 가. 기금편성 협의 및 집행점검 ・ 16회*140,000원=2,240천원. 나. 단수조정 36천원 ○ 관서업무추진비(240-02) : 2,089천원 가. 기금편성 협의 및 집행점검 ・ 6회*350,000원=2,089천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3~'27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 해당없음

③ 향후('27년도 이후) 기대효과 :

- 감독 강화 및 기금 집행 관리를 통해 내실있는 기금운용 도모, 구상권 활성화를 통한 기금 재원 확대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해당 없음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5	'26	'27	'28	'29	'30
'25~'29	48	60	60	60	60	
'26~'30		60	60	60	60	60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해당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해당없음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 없음

12) 동 사업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 : 해당 없음

13) 2026년도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 결과 및 후속 조치 현황 : 해당 없음

14) 부처 건의사항 : 해당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계획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계획	추경 증감액	추경 (A)									
2023	48	-	48	-	-	-	48	46	95.8	95.8	-	2
2024	48	-	48	-	-	-	48	48	99.1	99.1	-	-
2025	48	-	48	-	-	-	48	34	70.8	70.8	-	14
'26. 7.	60	-	60	-	-	-	60	31	51.7	51.7	-	-

2) 주요 결산사항

□ 2023년~2026년 결산사항

2023	- 특이사항 없음
2024	- 특이사항 없음
2025	- 공무직근로자 휴직에 따른 불용액 발생
2026	- 정상 집행 중

라. 기타 추가자료 : 해당없음

사 업 명
통화금융기관 예치 (9710-3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범죄피해자 보호기금	법무부	인권국		020	022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법무및검찰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9700	9710	300
명칭	여유자금운용	여유자금 운용	통화금융기관 예치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6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통화금융기관 예치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인권국	반 지	김현우 서기관	천무용
		인권구조과	02-2110-3641	02-2110-3644	02-2110-4254

가. 계획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년 결산	2026년 계획 (A)	2027년		증감 (B-A)	
			요구안	조정안(B)		(B-A)/A
통화금융기관 예치	57,345	42,386	23,997	23,997	△18,389	△43.4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계획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25					2026('25.7월말)							2027 계획안
	계획액 (수정)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48,039	48,039	57,345	-	-	42,386	42,386	38,000	42,386	38,000	-	-	23,997
통화금융기관 예치금	48,039	48,039	57,345	-	-	42,386	42,386	38,000	42,386	38,000	-	-	23,997
○ 비목별 분류(합계)	48,039	48,039	57,345	-	-	42,386	42,386	38,000	42,386	38,000	-	-	23,997
통화금융기관 예치금(4002)	48,039	48,039	57,345	-	-	42,386	42,386	38,000	42,386	38,000	-	-	23,997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48,039	48,039	57,345	-	-	42,386	42,386	38,000	42,386	38,000	-	-	23,997
통화금융기관 예치금	48,039	48,039	57,345	-	-	42,386	42,386	38,000	42,386	38,000	-	-	23,997
통화금융기관 예치금(4002)	48,039	48,039	57,345	-	-	42,386	42,386	38,000	42,386	38,000	-	-	23,997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여유자금 운용을 위해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시행령 제4조에 의거하여, 통화금융기관에 여유자금 예치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여유자금의 운용)
- 「국가재정법」 제81조(여유자금의 통합운용)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여유자금의 통합운용을 위한 금융기관의 선정 등)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법무부장관이 관리·운용한다. ②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시행령」 제4조(여유자금의 운용) ① 법무부장관은 기금에 여유자금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국채·공채 및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에 따라 발행되는 통화안정증권의 매매
2. 「은행법」에 따른 은행 및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에 예치(預置) 또는 단기 대여
3.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에의 예탁

「국가재정법」 제81조(여유자금의 통합운용) 기획재정부장관은 기금 여유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각 기금관리주체가 예탁하는 여유자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선정된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통합하여 운용하게 할 수 있다.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37조(여유자금의 통합운용을 위한 금융기관의 선정 등) ①법 제81조에 따라 각 기금관리주체가 예탁하는 여유자금을 통합운용하는 금융기관은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이 선정하되, 다음 각 호의 선정기준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재무상태 및 경영지표의 건전성
2. 수익률 등 자산운용의 성과
3. 자산운용 전략 및 계획의 적정성

② 추진경위

- 법무부 자산운용지침 제정('11. 5.), 연기금투자풀*에 전액 위탁·운용
  · 기금운용심의회 심의결과, 부족한 기금운용인력을 보완하고 투자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연기금투자풀 예탁방안 채택
  · 연기금투자풀 상품 중 입출금이 용이하여 안정적인 사업수행에 유리한 MMF(수익증권의 일종)에 투자
- 기획재정부에서 지정한 연기금투자풀 전담주간운용사(삼성자산운용)에 위탁하여 완전위탁펀드로 운용중('22.~)

* 연기금투자풀 : 기획재정부 내에 설치된 투자풀 운영위원회가 여러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이를 주간운용사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기금 자산운용 전문시스템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11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3	2024	2025	2026	2027(안)
사업비	28,041	45,851	48,039	42,386	23,997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법무부
- 사업 수혜자 : 해당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7년도 계획안 산출 근거

ㅇ 통화금융기관 예치 : 23,997백만원 (18,389백만원 감, △43.4%)

▪ 산출내역 :

- 통화금융기관 예치금 : 23,997백만원
- '27년도 예상수입에서 사업비, 기금관리비와 예수원금 및 이자 상환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여유자금으로 운용

· 133,796백만원('27년도 예상수입) - {109,735백만원('27년 사업비) + 64백만원('27년 기금관리비)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3~'27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 해당없음

③ 향후('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ㅇ 수익성과 안정성이 보장되는 여유자금운용으로 기금사업에 필요한 재원확보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관련근거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7조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5	'26	'27	'28	'29	'30
'25~'29	45,851	42,386	52,243	54,111	57,087	
'26~'30		42,386	37,085	8,746	14,848	431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해당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해당없음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 없음

12) 동 사업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 : 해당 없음

13) 2026년도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 결과 및 후속 조치 현황 : 해당 없음

14) 부처 건의사항 : 해당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계획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추경 증감액	추경(A)									
2023	28,041	-	28,041	-	-	-	28,041	50,692	180.8	180.8	-	-
2024	45,851	-	45,851	-	-	-	45,851	54,106	118.0	118.0	-	-
2025	48,039		48,039				48,039	57,345	119.4	119.4	-	-
'26. 7.	42,386	-	42,386	-	-	-	42,386	38,000	89.7	89.7		

2) 주요 결산사항

□ 2023년~2026년 결산사항 : 특이사항 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 해당없음